2014年 東洋史學會 春季研究發表會

# 동아시아사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일시: 2014년 5월 31일(09 : 30~17 : 40)

▣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퇴계인문관(31동)

주최 : 동양사학회

주관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4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東洋史學會 2014年 春季研究發表會 日程

**▣ 전체 일정**

- **참가자 등록 : 09 : 30 ~ 10 : 00 [퇴계인문관 31동]**
- **오전발표 : 10 : 00 ~ 12 : 30 [퇴계인문관 31동]**
- **점심시간 : 12 : 30 ~ 14 : 00**
- **오후발표 : 14 : 00 ~ 17 : 00 [퇴계인문관 31동]**
- **종 회 : 17 : 10 ~ 17 : 40 [퇴계인문관 31동 604호]**

## 中國古代史

**장소: 31동 609호**

오전 사회: 민후기(연세대)

1) 김정열(숭실대): 西周 시대의 東夷
   토론: 심재훈(단국대)
2) 김종희(경북대): 秦代 縣의 曹조직과 地方官制
   - 里耶秦簡에 나타난 遷陵縣의 토지·재정운영을 중심으로 -
   토론: 김진우(고려대)

오후 사회: 임병덕(충북대)

3) 김지은(서울대): 前漢代 國外로 파견된 使者의 특징과 그 의미
   토론: 방향숙(서강대)
4) 김용찬(서울대): 中國 古代의 山川 祭祀와 국가 권력
   토론: 이성원(전남대)

## 中國中世史

**장소: 31동 603호**

오전 사회: 조성우(서울대)

1) 김진(성균관대): 唐代 流刑制度의 活用과 變容
   토론: 이준형(고려대)

2) 정면(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白子國'의 역사적 구성
- 傳說과 起源, 그리고 歷史的 歸屬 문제를 중심으로 -
토론: 홍정아(서강대)

오후 사회: 하원수(성균관대)

3) 조종성(서울대): 穆宗-武宗 시기(820-846) 唐朝의 二元的 藩鎭 制御
- 河北三鎭과 그 인근 藩鎭을 중심으로 -
토론: 김정식(성균관대)

4) 최진열(가톨릭대):『魏書』의 北齊 정통성 粉飾과 그 논리
-文宣帝의 입장에서 본『魏書』편찬의 배경-
토론: 김석우(원광대)

## 宋遼金元史 장소: 31동 602호

오전 사회: 서은미(부산대)

1) 최해별(이화여대): 宋・元 시기 '檢驗지식'의 형성과 발전
-『洗冤集錄』과『無冤錄』을 중심으로 -
토론: 이석현(서강대)

2) 조원(한양대): 大元제국 강남지역 色目人 관원과 강남지배
- 색목인 行省 長官과 地方行政 長官을 중심으로 -
토론: 고명수(고려대)

오후 사회: 김종섭(서울시립대)

3) 조복현(경희대): 송대 황실의 가계 수입과 지출
토론: 이근명(한국외대)

4) 박시현(고려대): 南宋대 '韓侂胄 정권' 초기의 권력 구조
토론: 김성규(전북대)

5) 김상범(한국외대): 북송시기 개봉의 도시경관과 祠廟신앙
토론: 김한신(단국대)

## 明 靑 史

**장소: 31동 605호**

오전 사회: 서인범(동국대)

1) 이선애(고려대): 청 초기 理藩院의 역할과 성격
   토론: 김성수(서울과기대)
2) 이준갑(인하대): 淸代의 人口移動과 天主敎徒
   - 四川 天主敎徒의 移住民 性格을 중심으로 -
   토론: 최병욱(강원대)

오후 사회: 원정식(강원대)

3) 임상훈(원광대학교 한중역사문화연구소): 洪武帝의 宦官 抑制와 實狀
   - 洪武帝의 高麗와 朝鮮 出使 使臣을 通해 본 宦官 外交 -
   토론: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4) 홍성구(경북대): 國內 所藏 滿文 文書에 대하여
   토론: 윤욱(단국대)
5) 김문기(부경대): 청어, 대구, 명태
   - 소빙기와 한류성 어류박물학 -
   토론: 홍성화(부산대)

## 中國近現代史

**장소: 31동 606호**

오전 사회: 오병수(동북아역사재단)

1) 박경석(인천대): 民國時期 東北地域의 民間信仰과 國家權力
   토론: 박철현(국민대)
2) 무라카미 에이(村上衛, 교토대): 19世紀中葉廈門苦力貿易的興衰
   토론: 문명기(국민대) 통역: 강진아(한양대)

오후 사회: 이병인(한국교원대)

3) 정형아(제주대): 전후 초기 대만 권력주체사이의 갈등
   토론: 지은주(고려대)

4) 이평수(성균관대): 異端에서 正統으로
- 近代中國의 天地會와 少林寺五祖 -
토론: 유장근(경남대)

## 日 本 史

**장소: 31동 607호**

오전 사회: 송완범(고려대)

1) 강은영(전남대): 야마토왕권과 임나문제
토론: 나행주(대진대)
2) 허지은(서강대): 근세 왜관의 館守제도 성립과 도다 도노모(戶田賴毛)
토론: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오후 사회: 방광석(인천대)

3) 김도형(영남대): 근대일본의 양학수용과 유교적 교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고찰
-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와 '천(天)'관념의 변용을 중심으로 -
토론: 김선희(동국대)
4) 유지아(국민대):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와 집단적 자위권
- 안보조약과 신안보조약을 중심으로 -
토론: 서민교(동국대)

# 目 次


〔중국고대사〕

○ 西周時代의 東夷 ····· 김정열 ····· 1

○ 秦代 縣의 曹조직과 地方官制 — 里耶秦簡에 나타난 遷陵縣의 토지·재정운영을 중심으로 — ····· 김종희 ···· 19

○ 前漢代 國外로 파견된 使者의 특징과 그 의미 ····· 김지은 ···· 47

○ 中國 古代의 山川 祭祀와 국가 권력 ····· 김용찬 ···· 61

〔중국중세사〕

○ 唐代 流刑制度의 活用과 變容 ····· 김 진 ···· 73

○ '白子國'의 역사적 구성 — 傳說과 起源, 그리고 歷史的 歸屬 문제를 중심으로 — ····· 정 면 ···· 99

○ 穆宗-武宗 시기(820-846) 唐朝의 二元的 藩鎭 制御 — 河北三鎭과 그 인근 藩鎭을 중심으로 — ····· 조종성 ·· 121

○ 『魏書』의 北齊 정통성 粉飾과 그 논리 — 文宣帝의 입장에서 본 『魏書』 편찬의 배경 — ····· 최진열 ·· 133

〔송요금원사〕

○ 宋·元 시기 '檢驗지식'의 형성과 발전 — 『洗冤集錄』과 『無冤錄』을 중심으로 — ····· 최해별 ·· 171

○ 大元제국 강남지역 色目人 관원과 강남지배 — 색목인 行省 長官과 地方行政 長官을 중심으로 — ····· 조 원 ·· 193

○ 송대 황실의 가계 수입과 지출 ····· 조복현 ·· 207

○ 南宋대 '韓侂胄 정권' 초기의 권력 구조 ····· 박시현 ·· 219

○ 북송시기 개봉의 도시경관과 사묘신앙 ····· 김상범 ·· 231

〔명청사〕

○ 청 초기 理藩院의 역할과 성격 ····· 이선애 ·· 243

○ 淸代의 人口移動과 天主敎徒
— 四川 天主敎徒의 移住民 性格을 중심으로 — ····· 이준갑 ·· 263

○ 洪武帝의 宦官 抑制와 實狀 — 洪武帝의 高麗와
朝鮮 出使 使臣을 通해 본 宦官 外交 — ····· 임상훈 ·· 289

○ 國內 所藏 滿文 文書에 대하여 ····· 홍성구 ·· 307

○ 청어, 대구, 명태 — 소빙기와 한류성 어류박물학 — ····· 김문기 ·· 327

〔중국근현대사〕

○ 民國時期 東北地域의 民間信仰과 國家權力 ····· 박경석 ·· 367

○ 一九世紀中葉廈門苦力貿易的興衰 ····· 村上 衛 ·· 389

○ 전후 초기 대만 권력주체사이의 갈등 ····· 정형아 ·· 413

○ 異端에서 正統으로
— 近代中國의 天地會와 少林寺五祖 — ····· 이평수 ·· 437

〔일본사〕

○ 야마토왕권과 임나문제 ····· 강은영 ·· 475

○ 근세 왜관의 館守제도 성립과 도다 도노모(戶田賴毛) ····· 허지은 ·· 507

○ 근대일본의 양학수용과 유교적 교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고찰 —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와
'천(天)'관념의 변용을 중심으로 — ····· 김도형 ·· 523

○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와 집단적 자위권
— 안보조약과 신안보조약을 중심으로 — ····· 유지아 ·· 553

# 西周時代의 東夷

김 정 열(숭실대)

목 차

1. 머리말
2. 동이의 범위
3. 금문에 보이는 周와 東夷의 관계
4. 출토자료에 보이는 東夷 사회의 발전
5. 맺음말

## 1. 머리말

중국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동이'에 대한 우리 학계의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것은 漢代 이후의 중국인이 만주와 한반도 일원에 거주한 거민들을 '동이'라 부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先秦시대의 동이는 대체로 현재의 山東 일원에 거주하는 비중원계 문화전통의 소유자 혹은 그 집단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주시대의 동이 역시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周가 중원의 패권을 장악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옛 商 왕실의 후예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대한 반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동이의 일부도 가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西周 초 周 왕실의 동방 원정이 진행되고, 그 결과는 동이의 고지에 齊와 魯를 필두로 한 봉건이 시행되었다. 齊와 魯의 諸侯로 봉건된 자가 太公과 周公이었음을 감안하면, 주 왕실의 입장에서, 동이의 경략과 그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주시대의 동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주요 관심이 동이보다는 주 왕실의 동방 경략에 놓여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문헌과 금문을 막론하고 주요 관련 자료가 모두 周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주 왕실의 동방 경략은 서주 초기에 집중되고 그 이후가 되면 동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희박해져서, 동이는 주의 주변에 위치한 주변부의 미개인으로 간주될 뿐 특별히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

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설정한 중심 과제는 周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東夷의 존재양상을 검토하고, 서주시대의 동이 사회가 발전하여 간 맥락을 구체화해 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사용할 주요 문자자료가 주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된 것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 그러나 금문 자료의 증가와 함께 주의 동이 경략과 상호 접촉의 내용이 풍부하게 인식되기 시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 시대의 동이에 대한 관련 정보가 크게 증가하였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 뚜렷한 성과를 거듭 내고 있는 이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조사도 동이에 대한 문자자료의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 2. 동이의 범위

고대 문헌과 금문에는 '夷'라고 지칭되는 사람, 인적 집단 혹은 정치체가 보인다. 이 '夷'의 용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넓은 범위의 것으로서 중원 지역의 四周에 거주하는 그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것으로서, 중원 지역의 동쪽에 거주하는 그것을 가리켰다. 후자의 경우에는 方位詞인 '東'을 앞머리에 붙여 '東夷'라 부르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우든 아니면 후자의 경우든 시간의 흐름과 함께 '中原' 혹은 '中國'의 공간 범위가 분명해지고 확장되어감에 따라 '東夷'가 가리키는 대상 또한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漢代 이후에 東夷가 만주 일대 나아가 한반도 및 일본열도의 거주민이나 정치체를 가리키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동이'가 문자 자료에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西周 이후이다. 이때의 동이는 '동쪽'의 '夷'를 의미한다. 동쪽은 상대적인 방위의 개념이다. 서주시대에 동서남북을 분할하는 기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주시대의 금문에 보이는 '東或' 혹은 '南或'을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 '東或' 또는 '南或'에 보이는 '或'은 일정한 구역[口]을 무장하여 수비[戈]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로서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을 뜻한다. 즉 東或이나 南或은 동쪽의 취락과 남쪽의 취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주 전기의 何尊에는 그와 대비할 만한 것으로서 '中或'이 보인다. 이 '中或'은 성주, 즉 낙양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東或이나 南或이라 할 때의 동쪽이나 남쪽 등의 방위는 모두 낙양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동이는 낙양 이동의 夷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중원 일대에 거주한 이들에 의해 붙여진 명칭이다. 주대는 물론 상대에도 '尸方(夷方)'이라는 호칭이 있었고 이것이 서주시대의 동이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었다 한다면,

상과 주를 막론하고 중원 지역의 거민들은 특정한 인적 집단이나 그들에 의해 건설된 정치체를 '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중원 지역의 거민들과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구별되는 속성이라 한다면 그것은 신체적인 특징이나 문화적인 성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시(이)'라는 글자의 의미에서 상징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그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좌전』양공 14년에 보이는 융자가 向의 회맹에서 戎子가 "우리들은 음식과 의복이 中華와 다르고 예물을 주고받는 일도 없으며 말도 통하지 않으니 어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발언을 참조하면, 중원의 거민과 비중원계의 주민을 구별하는 속성은 음식과 의복, 예법 그리고 언어 등 이를테면 다방면에 걸친 문화적 차별상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동이는 낙양의 동쪽 일대에 거주하는, 중원의 거민들과는 다른 문화적 특정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들에 의해 조직된 정치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동이를 단일한 인적 집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이는 아마도 복수의 '이'를 포괄하는 집합적인 칭호였을 것이다. 그것은 '동이'를 구성하는 '동'과 '이' 두 자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동'과 '이' 두 글자가 조합되어 성립된 것이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주 전기의 臣辰彝에는 "王이 趞으로 하여금 東反夷를 정벌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동반이는 동쪽에서 叛變을 일으킨 이를 의미한다. 이 '동반이'란 표현은 동쪽의 夷가 복수임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위에서 낙양 동쪽 일대의 '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공간의 범위는 다소 모호하다. 李成珪는 동이의 공간적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산동 지역의 선사문화를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는 안정적인 공간 범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계승성 또한 높으므로, 동이는 대개 산동 일원에서 발전한 문화공동체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서주시대에 중원의 거주민에게 인지된 동이는 낙양 이동 일대의 비중원계의 이문화 집단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현재의 산동은 물론 그 경계를 초월하는 지역에 거주한 다양한 인적 집단이 포괄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동이의 활동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낙양부터 동쪽으로 산동까지 펼쳐져 있는 하남의 동부 지역은 황하가 서북부의 황토고원지대로부터 운반하여 온 대량의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평원지대이다. 이 평원은 鄭州에서 武漢으로 이어지는 京廣鐵路 서쪽에 분포한 沖積扇의 전단과 산동성 중부의 태기산맥 사이에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예동평원'으로 지금은 중국의 주요 곡창지대이지만, 고대에는 황하를 비롯한 여러 하천의 충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하천의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소택지도 넓게 형성된, 요컨대 인류가 거주하기에

그다지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제약은 서주시대까지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

상주시대에 예동평원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문화적 공백지대가 존재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도면1]에 보이는 상주시대 산동의 문화유적 분포상황에서도 그런 현상은 분명하게 관찰된다. 산동에 분포하는 상주 유적은 중남부의 태기산맥 주위에 형성된 구릉지대와 산지에서 발원하는 하류, 예컨대 북쪽의 유하, 치하, 서쪽의 문하, 사하, 남쪽의 기하와 술하 등의 충적작용으로 산지 전면에 형성된 산지평원에 집중적으로 분포되며, 거기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 할수록 그 분포가 희소해진다. 따라서 동이의 지역을 낙양 이동으로 설정하려 할 때, 그 중심지는 현재의 산동성 내, 그 가운데서도 특히 태기산맥과 그 주변지대였음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즉 서주시대의 동이는 산동성의 태기산맥과 그 주변에 위치한, 중원과는 이질적인 문화적 속성을 소유한 것으로 인지된 사람들과 그들에 의해 구성된 정치체로 규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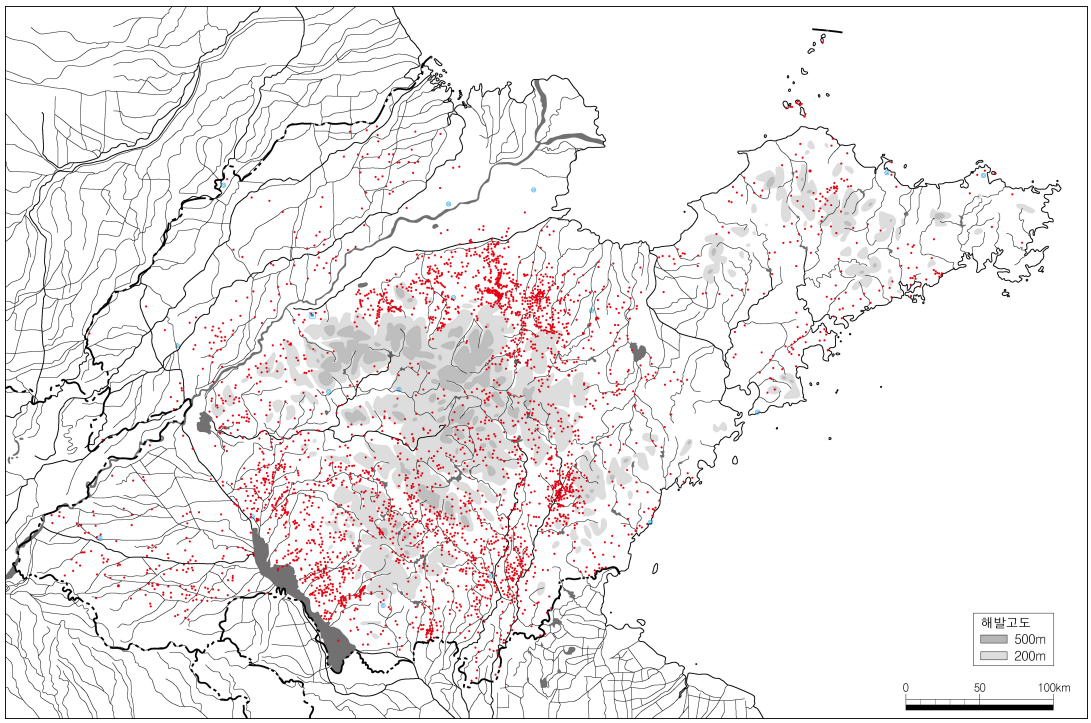


[도면1] 산동성 상주시대 유적 분포도

## 3. 금문에 보이는 周와 東夷의 관계

『사기』 주본기에는 주가 상을 타도하고 중원의 패권을 장악한 이후 상 왕실의 구세력이 주 왕실의 일부와 결탁하여 반기를 든 일이 기록되어 있다. 서주 왕실이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성왕 초년에 주 왕실에 불복하는 세력이 도전하였는데, 여기에는 옛 商 왕실의 후예와 '淮夷'라 하는 奄 등의 지방 세력, 심지어는 무왕의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주공에 의해 진압되었다는 그 전승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前漢代에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양한 전승이 성립되고 그들 사이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서주 초기의 𡙇方鼎 명문에는 "周公이 가서 東夷를 정벌하였다. 豐伯과 尃古를 모두 격멸[戕]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위 전승의 사실성은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𡙇方鼎에 대해서는 위작설도 있지만 역시 서주 전기의 禽簋에 "왕이 𡍮侯를 정벌하였다. 周公이 謀하고 禽이 祝하였다. 禽이 다시 祋祝의 의례를 행하였다. 王께서 金 100鋝를 하사하셨으므로 禽이 보배로운 제기를 만든다"는 기록에서 '𡍮'을 '奄'으로 읽는 것이나, 같은 시기의 明公簋에 "왕께서 明公에게 명하여 三族을 보내 東或을 정벌하게 하였다. □에서 魯侯에게 큰 공이 있었다. 이로써 祭器를 만든다"는 기록에 나타나는 明公이 周公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을 감안하면 서주 전기에 周公의 일족이 동방의 원정에 참여하였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 일족의 원정이 성왕이 즉위한 이후 즉각 전개된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인지는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명공궤의 명공이 주공의 아들이라면, 그 시점은 성왕기일 수도 있고 그보다 다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공 일족이 동방 정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정에 주공 일족만이 동원되지는 않았다. 예컨대 旅鼎의 "公 大保께서 와서 반란을 일으킨 夷를 정벌한 해…"에는 大保가 '夷'를 정벌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大保簋에는 "왕께서 彔子 聖을 정벌하셨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자 王께서 大保에게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명문도 있다. 명문에서 대보에게 공격을 받은 자는 彔子 聖은 대개 『상서대전』에 기록된 錄父와 동일인으로 인식되며, 그렇다면 大保簋 역시 大保의 동이 원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헌기록을 존중하면 대보궤는 성왕기의 유물로 간주하여야 하겠지만, 여정의 경우에는 그보다 후대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旅鼎과 동일한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小臣謎簋에 등장하는 伯懋父가 활약한 시대는 강왕과 소왕기에 걸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보 역시 康王

期까지 동이 정벌에 참여한 셈이 된다.

서주 전기의 금문을 통해 복원되는 주의 동이 정벌은『사기』등의 문헌이 전하는 것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벌은 성왕 즉위 후 주 왕실의 내분이 일어난 그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 강왕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그 주요한 하나라면, 이 원정에는 주공과 그 일가뿐 아니라 왕과 대보 나가서는 백무보까지 다양한 인물이 참여하여 주도하였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때 정벌의 대상이 된 자들에는, 록보, 엄, 박고, 풍백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奄과 薄古는 각각 曲阜와 博興에 해당되는 곳으로 산동의 북부와 동남부에 해당하며, 豊은 최근 高靑 陳莊 유적에서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 淄博 인근으로 비정된다.

강왕기를 지나면 문헌기록이 그런 것처럼 東夷 관련 금문 역시 급속히 희소해진다. 穆王期로 편년되는 班簋에 왕이 毛伯에게 명하여 '東或의 痡戎'을 정벌한 사례는 서주 중기 경의 동이 정벌에 관련된 유일한 기록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주 전기의 강왕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주의 동이 경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서주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때가 되면 다시 동이에 대한 기록이 금문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이 史密簋이다. 사밀궤 내용은 史密이 왕의 명을 받아 東征에 참여하여 세운 훈공에 대한 것이다. 전쟁의 발단은 南夷의 盧, 虎, 杞夷, 舟夷의 雚, 不, 折 등이 감행한 선제공격이었다. 여기에 남이와 함께 참여한 杞夷, 舟夷 등은 모두 東夷로 분류되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밀궤에 기록된 반란의 계기는 南夷가 '東或'을 공격한 것이고, 이 반란의 진압을 위해 齊𠂤가 동원된 것을 미루어 보면, 반란의 범위는 南夷는 물론 東夷까지 포괄한 넓은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동이도 참여하고 있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周의 東夷 경영이 서주 중기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접어들게 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금문자료에 의하면 서주 후기에 들어 주와 회이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어 간다. 周와 淮夷의 갈등은 대체로 주의 동이 경략이 종결되는 때 이후부터 시작되었지만, 厲王·宣王期가 되면 周와 淮夷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된다. 厲王期의 虢仲盨, 豦生盨, 噩侯馭方鼎, 敔簋, 宣王期의 史喪簋 등과 최근 알려진 厲王期 혹은 宣王期의 晉侯蘇編鐘과 柞伯鼎, 應侯見工鼎 등은 모두 周와 淮夷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관한 기록을 보여준다.

이 갈등의 근원은 경제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때 회의의 반란은 소극적인 반항에 그치지 않고 敔簋에 보이는 것처럼 주의 핵심지역까지 공략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이의 거센 도전은 周의 철저한 토벌로 이어졌다. 淮夷의 영수가 된 噩에 대한 토벌을 담고 있는 禹鼎에는 그 토벌을 위해 주 군사력의 핵심이 동원되었으며, "늙은이, 어린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남기지 말라"는 표현이 등

장할 정도로 강력했다. 그런데 이때의 전쟁은 악후에 의해 영도되었지만, 그의 휘하에 결집된 것은 회이뿐 아니라 동이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즉 회이에게서 시작된 반란은 동이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대규모의 양상으로 발전하여 간 것인데, 이와 같은 사태의 발전은 默鐘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 王께서는 文王과 武王께서 경영하신 강토를 순시[遹眚]하셨다. 南國의 𠂤子가 감히 우리 땅을 침략하여 약탈하였다. 왕께서 그를 정벌하시어 그(남국의 𠂤子)의 都를 정벌하니, 服子가 이에 화평을 구하여 사자를 보내어, 와서 맞이하여 王을 배알하였다. 南夷와 東夷 26邦이 함께 왕을 알현하였다. … 先王께서는 엄숙하게 하늘에 계시며 크고 성대하게 나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며, 나 공손한 후손이 장수를 누리도록 하신다. 默는 만년토록 사방의 國을 保有할 것이다.

默鐘은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傳世器로 厲王期의 유물로 판단된다. 명문의 내용은 회이의 영역에 인접한 정치체가 동이와 남이를 이끄는 𠂤子에게 공략당하여 이를 주왕의 군사력을 빌어 해결한 일이다. 이 명문에서도 남이에 의해 주도된 반란에 동이 역시 참여한 일이 보인다. 이 전쟁에서 𠂤子가 이끈 것은 동이와 남이의 26邦이었으며, 특히 𠂤子의 邦에는 '都'라 불리는 취락이 있었던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점증하는 불안정성은 주왕의 친정으로 연결되었다. 최근 소개된 晉侯蘇編鐘은 이 시기 동이의 동향을 짐작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 왕의 33년, 왕께서는 東國과 南國을 遹省하셨다. 正月 旣生覇 戊午일, 왕께서는 宗周에서 출발[步]하셨다. 2월 旣望 癸卯일, 왕께서는 成周에 도착하셨다. … 3월 方死覇, 왕께서는 □에 도착하시어, 대오[行]를 나누셨다. 왕께서는 晉侯 蘇에게 직접 명을 내리셨다. "너의 군대[師]를 이끌고 왼쪽으로 가서 □를 복멸하고 북쪽으로 가서 □를 복멸하여, 夙夷를 정벌하라." 晉侯 蘇는 120명의 목을 베고, 성인 남성 23인을 포로로 잡았다. 왕께서는 鬲𠂤城에 도착하셔서 직접 군대를 遠省하셨다. 왕께서는 진후 소의 군대[師]에 도착하셨다. 왕께서는 수레에서 내리셔서 남쪽을 향하여 섰다. (왕께서는) 진후 소에게 직접 명령하셨다. "서북 모서리로부터 鬲𠂤城을 敦伐하라." 진후 소는 그[厥] 亞旅, 小子, □人을 거느리고 먼저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수급 100을 베고, 성인 남성 11인을 포로로 잡았다. 왕께서 淖列에 도착하시자 淖列의 夷가 패주하여 도망쳤다[出奔]. 왕께서는 진후 소에게 명령하셨다. "大室의 小臣과 車僕을 거느리고 추격하라." … 왕께서는 귀로에 올라 성주로 돌아오셨다.

명문은 厲王 혹은 宣王 33년에 벌어진 周王의 '東國'과 '南國' 親征에 晉侯 蘇가 참여한 일의 전말을 전한다. 이때 진후가 참여한 전쟁은 夙夷와 淖列의 夷 등을 주요한 대상

으로 하였다. 夙夷는 곧『左傳』僖公 21년에 보이는 宿夷로이며 현재의 산동 東平에 해당한다. 淖列의 夷 역시 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명문은 주왕의 東或과 南或를 친정한 일을 전하는데, 이 과정에 진후가 주왕의 친정에 참여하였다. 에 따르면 진후 소는 산동 동평 일대의 夙夷 정벌을 수행하고, 왕은 淖列의 夷에 대한 정벌을 주도하였다. 東或과 南或을 동시에 정벌하는 것은 이 시기에 회이와 동이가 연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주왕의 친정을 받을 정도라면 이때의 동이의 적어도 일부는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인접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숙이와 탁열의 이를 구분하고 또 夙夷에게는 □城이라 불리는 성벽을 갖춘 취락[都]이 있었다는 정보 또한 커다란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 4. 출토자료에 보이는 東夷 사회의 발전

고대 동이의 중심 거주지인 산동 일대의 고고학적 조사 자료는 이 지역에 대한 주의 진출 양상과 동이의 존재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서주시대의 묘장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하여 관련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무덤은 아래의 곡부 노국고성 유적에서 잘 드러나듯이 造營者의 문화 전통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화 유존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적 조사의 자료 대부분은 묘장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취락 등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자료는 그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굴된 경우에도 그 보고가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서주시대 묘장이 조사된 곳은 모두 24지점에 달한다. 이들 외에 서주 청동예기가 출토된 지점도 11곳에 달한다.[도면2] 후자의 경우에는 출토 때의 유·무의적 파괴로 말미암아 유구의 성격을 알 수 없지만 청동 예기의 일반적인 출토 상황을 보면 이들 역시 대체로 묘장에서 출토된 유물로 생각된다. 묘장에 구현되는 문화 전통은 대개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무덤의 외적 형태, 장속 그리고 부장품 등인데, 이들 세 가지 요소에는 많든 적든 묘장을 營建한 자들이 소유한 문화적 배경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산동 일대에서 조사된 무덤은 크게 중원계와 비중원계 등 두 가지의 문화전통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외적 형태 가운데 토착계를 대표하는 것은 묘실을 석재로 구축하거나 사망자를 석관에 안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유행한 것이지만 중원에서는 유례가 드물다. 아울러 부장품을 매납하기 위해 '頭箱'이나 '邊箱' 혹은 '脚箱' 등의 이른바 '器物箱'을 목재로 구축하거나, 묘실 한편에 壁龕을 두는 것도 이 지역의 전통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기물상은 산동용산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 분명하며, 벽감은 商周時代 중원 지역에도 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처럼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장속의 경우에는 먼저 사자의 두향을 동향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陝西 西安과 河南 洛陽 인근에서 발견되는 서주시대 묘장에서 사자의 두향은 대부분 북향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요갱'의 장속을 꼽을 수 있다. 요갱의 장속은 전형적인 상문화의 요소로 알려져 있지만, 서주시대 이후가 되면 중원지역에서는 점차 소멸되어 간다. 반면 산동 일대에서 이 풍습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춘추시대는 물론 전국시대까지 계승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문화전통을 대변하는 부장품으로는 갈색이나 홍색의 태토에 문양이 없는 鬲과 높은 굽대[圈足]를 가진 簋와 豆 등을 포괄하는 지역적 전통이 토기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산동용산문화 이래 해당 지역에서 제작, 사용된 토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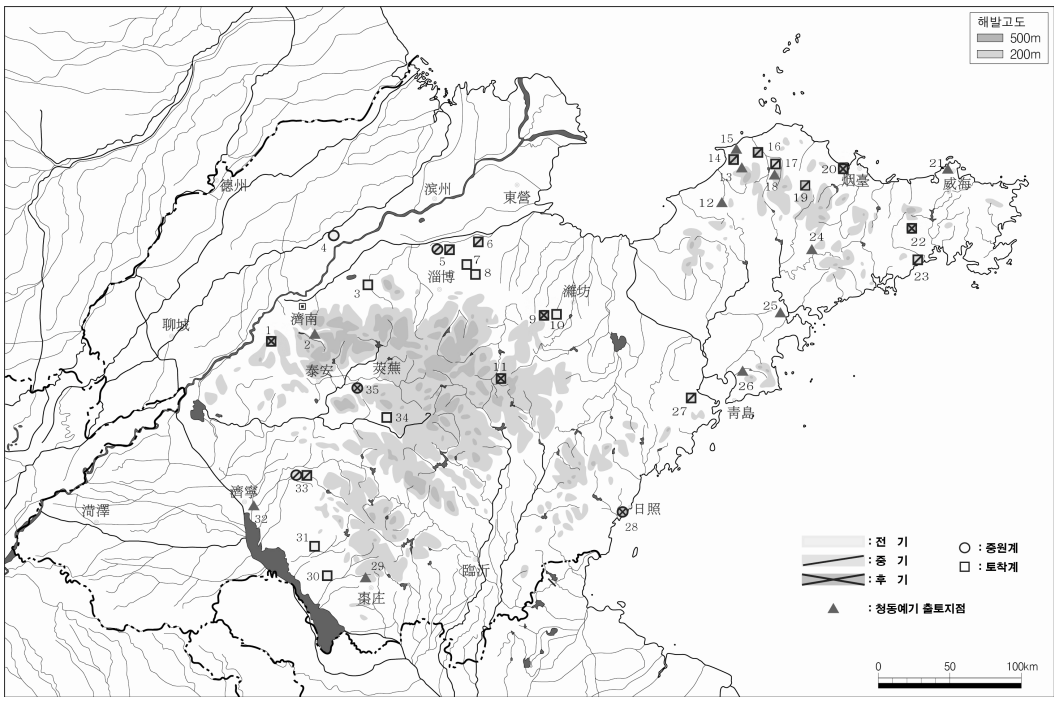


[도면 2] 산동 지역 서주시대 묘장 유적 및 청동예기 출토지점 분포도

1. 仙人臺 2. 石都莊 3. 寧家埠 4. 劉臺子 5. 陳莊 6. 五村 7. 東古城村 8. 後李 9. 岳家河 10. 宇家村 11. 姑子坪 12. 東曲城村 13. 韓奕村 14. 莊頭村 15. 徐家村 16. 歸城 17. 東營周家村 18. 魯家溝 19. 大北莊 20. 上乔村 21. 徐河北村 22. 柳格莊 23. 南黃莊 24. 上尙都村 25. 前河前村 26. 夏莊 27. 西菴村 28. 崮河涯 29. 木石鎭 30. 前掌大 31. 莊里西 32. 古槐路 33. 魯國故城 34. 府前街 35. 城前村

이들 가운데 개별적 요소는 상황에 따라 우연히 채용될 수 있지만, 복수의 요소가 하나의 유구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는 우연의 결과로 돌리기보다는 피매장자나 매장자가 토착적인 문화전통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묘장의 주인은 토착계로 간주된다. 반면 이상의 토착계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중원지역의 전형적인 풍격을 따르는 묘장은 중원계로 판단된다. 위의 근거에 입각하여 중원계와 토착계의 묘장 분포 상황을 지도에 표시하면 [도면2]와 같다. 도면에서 원형으로 표시된 것은 중원계이며,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은 토착계이다. 중원계와 토착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전기, 중기, 후기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도면2]에서 주목할 것은 중원계의 묘장이 매우 드물게 관찰된다는 점이다. 중원계로 분류할 수 있는 묘장은 濟陽 劉臺子 유적, 高靑 陳莊 유적, 日照 崮河崖 유적, 曲阜 魯國故城 유적 등 네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네 유적을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면 전기에 속하는 것은 劉臺子 한 곳에 불과하고, 중기는 陳莊과 魯國故城이 이에 해당되며, 崮河崖는 후기에 속한다. 이들 네 지점은 태기산맥을 에워싸는 형태로 분포하며 교동반도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전기로 분류되는 劉臺子 유적에서 조사된 4기의 묘장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 이들은 모두 이층대 구조의 수혈토광묘로, 장구로는 1관 1곽을 배치하였다. 墓向은 앞의 3기가 모두 12°, M6가 30°로 대체로 북편동이다. M3에서만 유일하게 요갱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3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1979년의 발굴에서는 鼎, 鬲, 觶 각 1점과 簋 2점 등 도합 5점이 청동예기와 鬲, 罐 각 1점 등 총 2점을 중심으로 한 부장품이 매납되었다. 이 가운데 鬲 1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에서 간단한 명문이 확인되었으며, 簋에서는 '夆'으로 식별되는 글자가 발견되었다. M3에서 출토된 鼎에서는 "왕계가 제기 정을 만든다[王季乍鼎彝]"는 내용의 명문 5자가, 궤에서는 "夆의 제기[夆彝]"라는 내용의 명문 2자가 확인되었다. M4에서 출토된 청동예기는 모두 24점이며 이 중 7점에서 명문이 발견되었다. 方鼎 2점에는 각각 "夆의 보배로운 제기 정[夆寶隣鼎]"과 "夆" 등 4자와 1자의 명문이, 觶, 盉, 盤 각 1점에는 "夆"이라는 1자의 명문이 발견되었다.

보고자는 劉臺子 유적의 청동예기와 토기를 서주 전기의 후반 경으로 편년하며, 이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예기의 양식이나 토기의 형식은 M4에서 출토된 흑도관 1점을 제외하면 중원계로 분류할 수 있다. 부장 토기의 조합은 鬲과 罐으로 주문화 중심지의 그것과 동일하다. 보고자는 劉臺子에서 출토된 청동예기의 명문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夆'은 '逢'이며, 이 유적은 『좌전』 소공 20년에 보이는 逢伯의 故地라고 이해한다. 연구자들은 대개 '逢'은 夏商의 舊國으로 원래 산동 淄博 일대에 위치하다가 후에 薄古에게 쫓겨 劉臺子 일원으로 근거를 옮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夆을 일찍부터 산동

에 있던 토착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劉臺子의 묘장에서는 중원의 喪葬文化와 커다란 차이를 볼 수 없다. 그것은 유적이 中原에서 山東으로 향하는 河道 인근에 입지하여 일찍부터 중원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주 전기 경 중원문화의 소유자가 이곳으로 진출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주 중기의 중원계 묘장 유적은 태기산맥의 북쪽과 동남쪽 각각 한 곳에서 확인된다. 그것은 曲阜의 魯國古城 유적과 高靑의 陳莊 유적이다.

曲阜는 西周 成王 때에 周公이 봉건된 곳이라는『史記』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근래까지 魯의 초봉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찍이 傅斯年이 魯侯로 처음 봉건된 자는 周公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伯禽이며, 그 初封地 역시 곡부가 아니고 河南 중서부의 魯山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이래 魯山 일원에서 魯侯의 초봉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 역시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자라고 해도 노후가 곡부로 이동한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異見이 있다. 그 하나는『詩經』魯頌「閟宮」편에 의거하여 伯禽이 노후로 재위한 기간 내라고 인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史記』「魯周公世家」의 集解가 인용한『世本』에 의거하여 백금이 아닌 그 다음 세대의 煬公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후자라면 魯는 봉건 이후 약 4~5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曲阜로 이주한 셈이 된다.

이처럼 曲阜는 魯侯의 初封地라는 주장과 移封地라는 주장이 있고, 이봉지라는 주장에도 이동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몇 가지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약 2년에 걸쳐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가 曲阜의 魯國故城에 대해 진행한 고고학적 조사의 결과는 몇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조사는 시굴의 수준에 그쳤지만 노국고성의 구조와 존속 연대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특히 望父臺, 藥圃, 縣城西北角, 鬪鷄臺 등 지점에서 발굴된 137기의 墓葬은 노국고성 유적의 존속 연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인식은 노국고성의 묘장 가운데는 보고자의 주장과는 달리 서주 전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곡부가 노후 백금이 초봉지라거나 혹은 봉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곳으로 이봉되었다는 주장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자에 의해 확인된 노국고성 묘장의 독특한 존재 양상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노국고성 유적에서 확인된 네 지점의 墓地와 관련된 것이다. 보고자는 각각의 묘지에서는 비교적 일치하는 葬俗과 副葬品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 望父臺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지점은 대체로 동일한 장속과 부장품을 가진 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양자를 각각 '甲組'와 '乙組'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갑

조묘와 을조묘의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장속의 차이이다. 사자의 머리 방향, 즉 두향의 경우 갑조묘의 두향은 대체로 남향이다. 특히 서주시대의 묘장은 예외 없이 남향이며, 춘추시대 이후 북향과 동향이 출현하지만 여전히 남향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을조묘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모두 서주 이래 전국시대까지의 모든 묘장이 예외 없이 북향이다. 한편, 腰坑은 갑조묘에만 보이고 을조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갑조에서는 서주시대의 경우 M501을 제외한 모든 무덤에서 요갱이 확인된다. 춘추 이후에는 요갱의 설치 사례가 감소하지만 춘추 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갑조와 을조를 각각 토착민과 중원계 이주민의 묘장으로 본다면, 서주 중기에 들어 이곳에 중원문화의 소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들이 이곳에 정착할 때는 상이한 문화 전통을 가진 토착민과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취락을 형성하였다. 이주민과 토착민은 격리된 묘지를 조영하면서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역 내에 공존하면서 생활을 영위했다.

陳莊 유적에서도 노국고성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陳莊 유적은 山東 高靑 花溝에서 최근  발굴 조사된 유적이다. 유적의 면적은 약 9만㎡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000㎡가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서주시대에 축조된 토성과 이 시기의 묘장 약간이다.

성지는 평면 근방형으로 동서, 남북 각각 약 180m 가량의 규모이다. 동변, 서변과 북변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그 윤곽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남변은 국부에서 기초시설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동·서변과 북변에서 성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쪽 성벽 중심부에 현재는 볼 수 없는 성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사주에는 壕溝가 성벽과 약 2~4m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

묘장은 성내 중부 편남부와 동남부에서 모두 14기가 조사되었다. 묘장은 장방형 수혈토광묘 9기, 단묘도의 이른바 갑자형 묘장 2기, 소형 옹관묘 3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6기에서는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M18에서 출토된 7점의 帶銘銅禮器와 M35에서 출토된 引簋 2점이다.

M18의 부장된 청동예기에서 확인된 명문은 유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M18: 3 觥에는 “豊啓가 그 祖父인 甲, 齊公의 祭器를 만든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다. 보고에 어떤 기종인지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유물에는 “豊季가 文祖 齊公의 祭器를 만든다”거나 “豊季가 그 祖父 齊公의 祭器를 만든다”는 명문이 있으므로, 이들이 豊啓라는 자가 자신의 조부인 齊公을 위해 제작한 제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유물이 출토된 M18은 남북향의 장방형 수혈토광묘로, 장구는 1관이며, 머리 쪽의 관 밖에 ‘器物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앙와신전장이지만 인골의 상황으로 보아 이차장이다. 부장품은 대부분 기물상에 안치되어 있었다.

M18 출토의 부장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결여된 상황이지만 보도된 觥의 사진으로 보아 그 제작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명문의 서체 역시 정제되지 않았다. M18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鬲 1점은 비록 승문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적갈색의 태토로 중원 지역의 그것과는 다르다. 관 외측에 기물상이 따로 마련된 점, 부장 토기에 지역적 특징이 보이는 점 등은 M18 묘주의 문화 배경이 중원 지역의 그것과는 다른 맥락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M26과 M27은 M18과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M26과 M27 모두 장방형의 수혈토광묘로 관과 곽을 갖추고 있으며 사자의 두향은 북향이다. 부장품은 사자 머리 쪽의 관과 곽 사이에 안치되었다. 전자에 鬲, 簋, 罐 등으로 구성된 토기 9점과 옥기 2점 등이, 후자에는 鬲과 罐 각 1점의 토기 및 鼎, 簋, 尊, 卣, 爵, 觶 등을 포함한 청동예기 11점과 약간의 차마기가 부장되었다. 부장품의 형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무덤의 형태는 일반적인 중원계의 수혈토광묘와 다르지 않다. M27에 鬲, 罐 각 1점씩의 토기가 부장된 것 역시 중원계의 묘장에서 널리 확인되는 조합이다.

陳莊 유적의 성격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유구는 M35이다. M35는 단묘도의 수혈토광묘로 묘실은 묘구를 기준으로 길이 5.2m, 폭 4.2m의 규모이며, 묘도는 계단형으로 길이는 약 10.5m 가량이다. 장구는 1관1곽이며 묘도에 수레 2량이 매납되었다. 鼎, 簋, 盤 등의 청동예기와 戈, 矛 등의 청동병기 그리고 약간의 차기가 관과 곽 사이에 부장되었으며 이 가운데 2점의 簋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가진 명문이 발견되었다.

> 정월 임신일, 왕께서는 龔大室에 이르셨다. 王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引아. 나는 이미 너에게 명해서 너의 祖考를 계승하여 齊𠂤를 관리하라 명하였던 바, 너에게 다시 명한다. 너에게 彤弓 하나, 彤矢 일 백, 말 네 필을 하사한다. 네가 맡은 일을 공경하여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引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왕의 은총을 널리 알린다. 군대를 모아 추격하여 병기를 노획했다. 때문에 幽公을 제사하기 위한 궤를 만든다. 자자손손 영원히 보배롭게 사용하라.

陳莊 유적의 성격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위의 M18에서 출토된 청동예기의 명문에 등장하는 풍계와 M35에서 출토된 위 명문의 引簋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M18에서는 豐啓가 조부인 제공을 위해 만들었음이 명기된 다량의 청동예기가 출토되었다. 이때 豐啓의 '豐'은 앞 장에서 인용한 塑方鼎에서 周公의 정벌 대상이 된 豐伯의 '豐'과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豐啓가 齊公의 祭器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가 齊公의 종실에 속하는 자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陳莊 유적은 齊公의 종실에게 분여된 封地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 다른 하나는 M35의 引簋 명문에 보이는 齊師는 齊

侯에게 소속된 군대의 주둔지이며, 진장 유적은 바로 이 제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齊公을 제사하기 위한 청동예기가 토착계의 묘장에서 출토된 것은 의문으로 남지만, 진장 유적 토성의 규모가 동서, 남북 각각 약 180m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규모 취락을 상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자의 '軍師城堡說'이 좀 더 그럴 듯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 유적에 중원계와 토착계의 묘장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보고자는 토성의 건립 연대가 서주 전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성내에서 발견된 모든 유구의 상한은 서주 중기이다. 따라서, 유적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해도, 서주 중기 경에 이곳에 토성이 건립되고, 여기에 중원계와 토착계의 문화전통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인군이 집거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高靑에 토성이 건설될 무렵 교동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烟臺 龍口 일원에도 성곽이 출현하였다. 歸城 유적이 그것이다. 龍口 黃城 동남쪽 6㎞ 지점에서 발견된 歸城 유적은 萊山 북쪽의 구릉 사이 하곡분지에 입지한다. 유적에서 발견된 유구에는 판축 성벽과 판축 기단 그리고 묘장과 재구덩이 등이 있다. 성벽은 내외 이중으로 구성되었다. 내성 평면은 서북쪽이 약간 內凹한 곡척형이며, 남북 490m, 동서 525m 가량이다. 내성의 바깥쪽에는 호구가 설치되었다. 외성은 내성을 외곽에서 둘러싼 형태이다. 내성 外圍의 구릉을 따라 건설된 불규칙 타원형이며, 남쪽 부분은 해발 600m가 넘는 萊山을 이용하고 따로 성벽을 만들지 않았다. 외성의 전체 길이는 약 10㎞에 달한다.

최초의 조사와 근래의 조사를 통해 보고자들은 성의 營建 시기를 서주 중기로 판단했다. 歸城 유적에서는 다수의 묘장도 조사되었는데 그중에는 서주시대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M1은 수혈토광묘지만 파괴된 상태였으므로 그 구조는 분명치 않다. 부장품은 비교적 잘 보존되었는데, 土罐 1점 이외에 대부분 청동예기로서, 銅鼎 2점을 포함하여 모두 8점이 수습되었다. 청동예기의 형식이 서주 중기의 것이므로 M1의 연대 역시 이 시기를 상한선으로 한다. M1에 부장된 토기 가운데서는 관 1점(M1: 9)만이 수습, 보고되었다. 이 관은 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이다. M2 역시 수혈토광묘로 파괴된 상태에서 정리되었다. 묘장의 방향은 100°로 동남향이다. 장구는 단관이며 사자의 두향은 동향이다, 관의 동쪽에 器物箱이 따로 설치되었으며 토기 8점이 부장되었다. 부장 토기의 기형은 대체로 서주 후기의 양식이며, 특히 豆와 罐은 현지의 토착 양식이다.

歸城 유적의 인근에는 서주 중기를 전후한 묘장과 청동예기 출토 지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일종의 유적군을 형성하고 있다. 歸城 유적의 동남쪽 약 10㎞ 지점에 위치한 石良 東營周家에서 발견된 M1은 관과 곽을 갖춘 수혈토광묘이며 조사 당시 이미 파괴되

어 그 구조를 분명히 알 수 없다. 묘장 방향은 110°로 대체로 동남향이다. 2점의 銅簋와 鬲, 罐, 豆 등의 토기가 수습되었다. 보고자는 구연 하단부의 변형수면문 장식을 근거로 서주 후기의 유물로 판단하였다. M2 역시 파괴되었으나 동쪽 2/3 가량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수혈토광묘로 1관 1곽의 장구를 갖추었다. 머리 부분의 곽실 밖에 부장품상이 따로 설치되었고, 부장품은 대부분은 이곳에 안치되었다. 묘장의 방향은 105°로 역시 동남향이며, 腰坑이 시설되었다. 부장품에 동기는 없지만 200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기형이 보고된 土鼎 2점은 南黃莊문화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토기의 기형에 입각하여 서주 중기 경에 조영된 묘장으로 생각된다.

유적의 동쪽 약 10㎞ 지점의 莊頭村에서 조사된 M1 역시 토광수혈묘이다. 발굴 당시 이미 파괴된 상태였으므로 묘장의 구조는 분명하지 않다. 1관1곽의 장구를 가졌으며 곽의 머리 쪽 밖으로 부장품상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묘장의 방향은 115°로 동남향이다. 토기, 옥기, 동기 등이 부장되었으나 토기와 옥기는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동기는 대부분 예기로 鼎 3점, 簋·爵 각 2점, 甗, 盂, 卣, 壺, 盤, 勺 각 1점이 그것이다. 이밖에 銅罐 1점도 수습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는 명문도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 가운데는 서주 전기까지 연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서주 중기 이상 소급되기 어려운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묘장의 연대 역시 서주 중기 이후라 판단된다. 이밖에 鼎, 盂의 제작수준은 높지 않고, 甗의 甑部를 장식한 대형 獸面紋은 주조 기술의 한계로 말미암아 문양이 무너졌으므로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동예기 출토 지점 가운데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清 光緒 연간에 歸城 유적 동쪽 약 10㎞ 지점에 위치한 魯家溝村에서 출토된 우언, 우정, 래백정 등이 있다. 우언과 우정은 서주 목왕 경의 작품으로 각각 38자와 31자의 명문이 있다. 그 내용은 우가 師雍父를 따라 남정에 참여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1965년과 1969년에는 姜家村과 小劉莊에서 각각 鼎 2점을 포함한 9점의 청동예기와 卣, 尊 각 1점을 포함한 4점의 청동예기가 수습되었다. 이들은 모두 출토 유구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묘장의 부장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姜家村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는 서주 전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 甗 1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함께 출토된 鼎은 垂腹의 圓鼎으로 서주 중기 경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小劉莊 출토 유물 가운데 啓卣와 啓尊는 서주 효왕기의 작품으로 啓가 왕을 따라 남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歸城 유적 일대에서 周에 의해 주도된 원정에 참여한 2명의 인물 우와 啓의 청동예기가 발견된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史密簋에는 왕명에 의한 동이와 남이에 대한 정벌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釐(萊)伯 역시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禹와 啓의 동기가 전하는 명문은 래백이 주왕의 명에 의해 그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1974년 귀성 유적에서 서북쪽으로 약 5㎞ 거리를 둔 東江 徐家村에서 簋 1점과 鬲 1점이 수습되었다. 역시 출토 유구의 상황은 분명하지 않다. 궤의 형태는 서주 중기 경에 유행한 쌍이권족궤이다. 그러나 구연 아랫부분에 장식된 이른바 '獸面紋'은 중원지역이 같은 기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궤의 안쪽 바닥 부분에서는 약 50자의 명문이 발견되었다. 명문의 구성은 역시 당시의 일반적인 명문과 차이가 없으나 文首의 "王의 11월, 王은 限에 있었다. 王子가 方에 이르렀다(唯王十又一月, 王才限)"는 부분과 文末의 "자자손손 □ 보배롭게 사용하라(子子孫其□寶)"는 부분만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할 뿐 나머지는 글자의 형태도 불명하고 그 내용 또한 일반적인 명문과는 크게 달라 석독이 어렵다. 方輝는 명문의 자체가 유치하여 전형적인 주대 동기 명문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과 출토지인 귀성 일대는 萊夷의 고지이므로 銘文에서 말하는 王은 周王이 아니라 萊夷의 군주를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歸城 유적은 약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헌에 전하는 萊夷의 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래이의 유적에서 서주 전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청동예기가 간헐적으로 출토되는 현상은 이들이 일찍부터 周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왕기의 作冊睘卣에는 成王의 부인인 王姜이 睘에게 명령하여 夷伯에게 使者로 가서 그를 安堵하게 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명문의 내용이 래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해도 주 왕실은 일찍부터 夷와의 교섭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는 래이 역시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래이는 현재의 龍口 일대에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용구 일대의 묘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기물상이 출현하며 사자의 두향 역시 동편남으로 고도의 일체성이 확인된다. 게다가 귀성에서는 내외 이중으로 구성된 대형의 성곽취락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귀성을 중심으로 상당한 영역에 걸쳐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치체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산동에서도 용구 일대는 청동예기의 출토가 가장 빈번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萊夷와 周의 교섭 결과일 것이며, 귀성을 배경으로 한 청동예기의 分與체제가 성립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方輝의 주장처럼 徐家村 출토 銅簋의 '王'이 萊夷의 군주를 지칭하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귀성이 산동 동남부와 태기산맥의 북쪽에 중원으로부터의 이주민이 본격적인 취락을 건설하였을 시점에 건설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밀궤에 보이는 것처럼 서주 중기 경에 들어 래이는 주의 지배에 복속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외래의 압력은 오히려 래이에게 성곽취락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주의 세력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토착의 정치체는 내적 결속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하여 갔다. 귀성은 진후소편종에 보이는 夙夷의 鬲城이나 䜌鐘에 보이는 南國 𠂤子의 都와 같은 역

할을 담당한 취락이었을 것이다.

## 5. 맺음말

동이는 낙양 이동에 거주하는, 중원과는 다른 문화전통을 보유한 사람, 사람들 나아가 그들의 정치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지역 범위는 낙양 이동의 예동평원 이동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자연지리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동이는 산동 태기산맥을 둘러싼 산전의 구릉지대에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이에 관련된 문헌 전승은 서주 왕조의 성립 초기에 일어난 반주활동과 그에 대한 주공의 진압에 집중되어 있지만, 금문을 통해 확인되는 바는 그것과 다소 다른 내용을 가진다. 서주 전기의 동이 경략은 성왕대를 지나 강왕대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을 주도한 것 역시 주공 일가에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서주 중기의 목왕 경이 되면 동이에 관한 기록은 문헌은 물론 금문에서도 급격히 줄게 된다. 이것은 동이에 대한 주 왕실의 지배가 안정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기 후반 이후 후기에 이르게 되면 금문 기록에 다시 동이가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때의 동이는 복수의, 게다가 성곽취락을 중심으로 일정한 정치체를 구축하여, 주에 의해 '邦'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즉 동이의 지역에는 복수의 정치조직체가 형성되고 이들의 힘은 외래의 압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만큼, 게다가 周에 커다란 위협이 될 만큼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문헌기록이 전하는 바와 달리 중원문화를 소지한 사람들이 동이의 지역에서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서주 중기에 들어서의 일이다. 이 지역에서 서주 전기에 중원의 고유한 묘제를 보이는 것은 북쪽의 외곽에 치우진 章丘의 劉臺子 유적이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이후 서주 중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즈음하여 濟寧의 曲阜나 淄博의 陳莊 일대에서 중원의 묘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모두 外圍에 성곽을 두른 방어성이 강한 취락에서 출현하지만, 그 내부의 구성은 외래민과 토착민이 공존하는 형태를 띤다. 토착민이 왕실에 주도한 전쟁에 동원된 것은 서주 전기의 오랜 경영을 통해 이때부터 주의 동방 진출이 본격화되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주의 외래세력이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전통의 토착세력도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龍口의 歸城 유적은 그것이 체현된 대표적인 유적으로 판단된다. 귀성 유적은 萊夷의 '都'였을 것이다. 래이는 귀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영역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외적인 교섭의 창구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해 나갔다. 래이의 중심지인 귀성은 그 거대한 성곽의 규모만큼 그들이 행사한 정치적 지배권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본격적인 성장의 길을 걷게 된 동이의 '邦'들은 이윽고 주 왕실의 권위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서주 후기에 들어 南或과 東或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소요 사태는 이들 정치체가 이제 본격적인 자리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 秦代 縣의 曹조직과 地方官制

## — 里耶秦簡에 나타난 遷陵縣의 토지·재정운영을 중심으로 —

김 종 희(경북대)

목 차

Ⅰ. 머리말
Ⅱ. 縣의 행정구조와 曹의 편제
Ⅲ. 縣의 토지운영과 曹
Ⅳ. 縣의 재정운영과 曹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秦帝國의 유지와 운영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중앙집권적 황제지배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체제를 확립시킨 이면에는 치밀한 행정제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다. 특히 縣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운영의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縣 행정체제 가운데 曹조직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관련 사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예컨대 기존 문헌사료에서는 漢武帝 이후 각종 曹가 등장하지만,[1] 秦代의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할 만한 내용이 매우 빈약하였다.

그러나 睡虎地秦簡[2]에서 曹가 출현하여 그 연원을 秦代까지 소급할 수 있게 되었다. 秦簡整理小組에서는 曹를 郡과 縣아래 소속된 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吏 또는 官衙로

1) 『漢書』에서는 武帝이후 시기에 功曹·議曹·賊曹 등 각종 曹가 등장한다. 이 때문에 문헌의 내용을 근거로 武帝이후가 되어야 縣에서 각종 曹조직이 정착된다고 본 견해도 있다. 즉 이 시기가 되면 縣의 屬吏가 각 曹마다 掾을 두어 郡의 曹掾처럼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白鋼 主編, 『中國政治制度通史』 3, 人民出版社, 1996, p.235; 安作璋·熊鐵基,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p.663).

2) 본고는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睡虎地秦墓竹簡』, 文物出版社, 1978년본과 2001년본을 참고했으며, 이후 인용한 자료는 2001년본을 底本으로 하였다(이하『睡虎地秦簡』으로 약칭함). 이하 본고에서 기술한 睡虎地秦簡의 해석은 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엮음, 윤재석 옮김, 『睡虎地秦墓竹簡譯註』, 소명출판, 2010을 참조하고, 해석 상 異見이 있는 경우에만 출처를 따로 기술하였다.

정의하였다.[3] 반면 曹는 官衙가 아니라 관청 산하의 실무 담당 부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 이렇게 異見이 발생한 것은 睡虎地秦簡에서 曹가 단편적으로 나오고 그 성격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5]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里耶秦簡』(壹)이 출간되면서,[6] 曹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里耶秦簡에 다수의 曹가 등장하여 秦代에 曹조직이 완비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秦代 曹조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부분적으로 里耶秦簡의 曹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있지만,[7] 여전히 曹에 대해 밝혀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縣 행정구조에서 曹의 편제와 역할을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縣廷과 官을 공간적・제도적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주목하였다. 일본학계에서 제기된 이 견해는 縣廷과 官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한 차례 소개된 바 있다.[8] 본고에서는 상술한 견해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里耶秦簡을 통해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縣廷과 官의 관계를 바탕으로 曹가 縣 행정구조에서 어떻게 편제되었는지 밝히고, 縣의 토지・재정운영을 맡은 官과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里耶秦簡에는 다양한 명칭의 曹가 등장하는 만큼 이를 모두 고찰하는 것은 무

---

3) 『睡虎地秦簡』語書, p.15의 注 2 참조.

4) 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엮음, 윤재석 옮김, 『睡虎地秦墓竹簡譯註』, 소명출판, 2010, p.68.

5) 문헌사료에 보이는 曹의 정의에 대해서는『說文解字』(段玉裁 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p.202: "曹: 獄之兩曹. 段注: 兩曹, 今俗所謂原告被告也."와『說文解字注箋』(徐灝 撰,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2) 卷5上, p.512: "職官分曹治事謂之曹, 如兵曹、刑曹之類皆是, 不專謂治獄"이라는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秦簡의 사례를 감안하면 후자의 견해대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지만, 모두 후대에 쓰여 진 문헌사료라는 점에서 秦代 曹조직을 규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6) 里耶秦簡은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文物處・龍山縣文物管理所, 「湖南龍山里耶戰國-秦代古城一號井發掘簡報」, 『文物』, 2003年 第1期와 湖南文物考古研究所 編, 『里耶發掘報告書』, 岳麓書社, 2007에서 주요 발굴 상황 및 일부 簡을 소개하였으며, 그 후 湖南文物考古研究所 編, 『里耶秦簡』 (壹), 文物出版社, 2012의 발간을 시작으로 향후 4권이 더 발간될 예정이다. 본고에서 인용한『里耶秦簡』(壹)의 釋文과 標點은 陳偉 主編,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武漢大學出版社, 2012를 참조하였다(이하『里耶秦簡牘校釋』(第1卷)로 약칭함).

7) 王彦輝,「《里耶秦簡》(壹)所見秦代縣鄉機構設置問題蠡測」, 『古代文明』 6, 2012年 第4期; 葉山, 「解讀里耶秦簡--秦代地方行政制度」,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李均明, 「里耶秦簡 '計錄' 與 '課志' 解」,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沈剛,「《里耶秦簡》【壹】中的 '課' 與 '計'-兼談戰國秦漢時期考績制度的流變」, 『魯東大學學報』, 2013; 김동오,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東洋史學研究』 126, 2014에서 『里耶秦簡』(壹)을 중심으로 曹에 대해 일부 다루었다.

8) 仲山茂, 「秦漢時代の '官' と '曹' ——縣の部局組織」, 『東洋學報』 82-4, 2001; 青木俊介, 「里耶秦簡に見える縣の部局組織について」, 『中國出土資料研究』, 2005; 土口史記, 「戰國・秦代の縣 - 縣廷と '官' の關係をめぐる一考察」, 『史林』 95-1, 2012. 국내에서는 김동오,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東洋史學研究』 126, 2014에서 한 차례 소개되었다.

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縣 내부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지와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해당 官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것이 曹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Ⅱ. 縣의 행정구조와 曹의 편제

### 1. 縣廷과 官

현재 里耶秦簡에는 吏曹・尉曹・倉曹・戶曹・獄東曹・獄南曹・尉府爵曹・司空曹・覆曹・令曹・車曹 등 다수의 曹가 등장한다. 또한 차후 里耶秦簡이 추가로 공표되면 曹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曹조직은 縣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했음이 분명하며, 縣廷과 官을 구분해서 보는 관점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縣廷-曹-官의 운영 양상을 밝히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縣廷과 官을 공간적・제도적으로 구분하는 견해를 검토하여, 縣廷과 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仲山茂는 睡虎地秦簡을 통해 縣廷과 官은 공간적・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縣에서 마음대로 公舍・官府 및 (縣)廷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9]라는 구절과 "官嗇夫와 吏가 야간에 번갈아 가면서 官을 지켜야 한다. 불이 없다는 것을 검사한 후에, 비로소 문을 닫아야 한다. 令史로 하여금 廷府를 순찰하게 한다."[10]라는 구절을 근거로 공간적으로 廷府와 官府는 구분되며, 제도적으로 官嗇夫와 吏는 官에서 근무하고 令史는 廷에서 근무한다고 파악하였다.[11]

여기서 吏는 官嗇夫를 보좌하는 佐와 史로 추론된다. 이는 睡虎地秦簡과 里耶秦簡에서 佐와 史가 官嗇夫와 더불어 근무하는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12] 그렇다면 官府라는 건축물에는 官嗇夫와 휘하 吏(佐・史)가 근무하고 이를 官으로 총칭한다. 한편 令史는 縣令의 屬吏로 문서업무를 주로 보기 때문에,[13] 縣令・縣丞과 더불어 廷府라는 건축물에서 근무한다고 할 수 있다.[14] 그리고 이는 縣廷으로 총칭한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하여 그림

9)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47: "縣毋敢擅壞更公舍官府及廷"

10)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64: "官嗇夫及吏夜更行官. 毋火, 乃閉門戶. 令令史循其廷府. "

11) 仲山茂, 「秦漢時代の '官' と '曹' ——縣の部局組織」, 『東洋學報』 82-4, 2001, pp.38-39.

12)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58: '其廩禾若干石, 倉嗇夫某・佐某・史某・稟人某';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58: '倉嗇夫及佐・史, 其有免去者, 新倉嗇夫・新佐・史主廩者, 必以廩籍度之.'라는 규정을 통해 官에는 官嗇夫 및 佐와 史가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里耶秦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식량을 낼 때 官嗇夫를 비롯해 佐・史・稟人이 함께 대동하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다. 土口史記 역시 睡虎地秦簡을 근거로 官의 기본적인 구성원은 嗇夫・佐・史로 보았다(土口史記, 「戰國・秦代の縣 - 縣廷と '官' の關係をめぐる一考察」, 『史林』 95-1, 2012, p.13).

13)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10.

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縣廷과 官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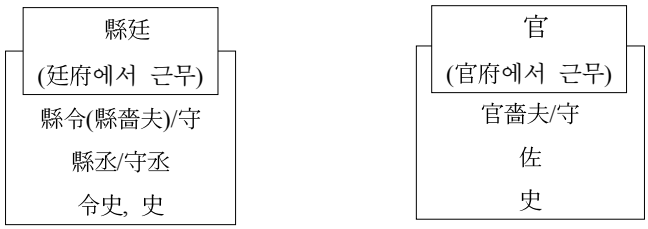


※큰 Box 안의 관직명은 縣廷과 官의 근무자를 나타냄. 守丞은 縣丞의 대리 부책임자로 추정되며, 守는 책임자(嗇夫와 동일어) 혹은 대리책임자(嗇夫의 대리)로 추정됨.

한편 靑木俊介는 官에서 縣廷으로 보내는 문서 양식에 주목하여 官과 縣廷은 여러 측면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里耶秦簡에서 官과 縣廷 사이 문서를 교환할 때 廷이 따로 등장한다는 점, 문서 전달자가 등장한다는 점, 문서작성날짜와 수신날짜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縣廷과 官은 분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15]

이러한 주장은 2012년『里耶秦簡』(壹)이 공표되면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즉 공문의 발송과 수신과정에서 몇몇 문서는 날짜 차이가 확인되고, "××以來" 형식으로 문서 전달자가 보여 공간적 거리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里耶秦簡에 나오는 守府는 郡의 泰(太)守府를 약칭한 말이자 縣의 廷守府를 약칭한 말로, 廷守府는 縣廷이 있는 건물로 추정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里耶秦簡에는 문서전달자로 "守府定"·"守府快"·"守府印"·"守府交" 등 '守府××'형식으로 다수의 인명이 등장한다. 그런데 "守府快"에서 '快'라는 인물은 里耶秦簡 8-663簡에서 廷守府에 보내진 것으로 등장한다.[16] 이는 '快'라는 인물이 廷守府의 문서전달자가 된 것으로, "守府快"의 守府는 결국 廷守府의 약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廷守府에 다수의 刑徒가 배치된 사례도 나와(뒤의 ⑤참조), 廷守府에서 刑徒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을 종합하면 廷守府는 앞서 睡虎地秦簡에 등장했던 廷府로 縣廷이 있는 건물로 판단된다. 그리고 官府의 존재도 확인되는 만큼,[17] 廷守府와 官府를 통해 縣廷과 官이 공간적·제도적으로 구분됨을 증명한다.

---

14) 靑木俊介,「里耶秦簡に見える縣の部局組織について」,『中國出土資料研究』, 2005, p.108; 土口史記,「戰國·秦代の縣-縣廷と「官」の關係をめぐる一考察」,『史林』95卷1號, 2012, pp.15-16.

15) 靑木俊介,「里耶秦簡に見える縣の部局組織について」,『中國出土資料研究』, 2005, p.107.

16)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196: "二人付□□□. AⅠ一人付田官. AⅡ 一人付司空: 枚. AⅢ …(생략)…一人廷守府: 快 AⅥ (8-663) 五月甲寅倉是敢言之: 寫上. 敢言之.◿ (8-663背)"

17) 官府의 존재는 人繕官府羅府羅(8-687), 二人繕官府: 羅·栝(8-5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官 혹은 鄕에서 縣廷으로 보내는 문서의 경우 '…行廷(廷으로 가지고 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반대로 縣廷에서 官으로 보내는 문서는 '…行司空(司空으로 가지고 감)', '…行少內(少內로 가지고 감)' 등 '…行官名'의 사례가 나오므로, 이를 통해서도 縣廷과 官이 구분됨을 시사한다.[18]

이처럼 상술한 사례를 통해 縣廷과 官이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里耶秦簡을 토대로 과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는『里耶秦簡』(壹) 가운데 官·鄕에서 縣廷으로 문서를 보낸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官·鄕에서 縣廷으로 문서를 보낸 사례(簡 번호 순)

| 簡 번호 | 발신자 | 작성날짜 | 수신자 | 수신날짜 | 날짜차이 | 문서 전달자 |
|---|---|---|---|---|---|---|
| 8-67+8-652 | 尉守 | 十二月癸丑朔辛巳 | 縣廷 | 辛巳 | 無 | 走利 |
| 8-141 | 發弩守 | 十一月庚申朔丙子 | 縣廷 | 丙子 | 無 | 守府定 |
| 8-152 | 少內守 | 四月丙午朔甲寅 | 縣廷 | 四月甲寅 | 無 | 佐處 |
| 8-173 | 庫 | 六月壬午朔庚戌 | 縣廷 | 七月壬子 | 2일 | 佐處 |
| 8-199 | 畜官守 | 十二月乙卯 | 縣廷 | 十二月乙卯 | 無 | 佐貳 |
| 8-645 | 貳春鄕守 | 九月辛亥 | 縣廷 | 九月辛亥 | 無 | 史邛 |
| 8-651 | 啓陵鄕守 | 正月壬申朔朔日 | 縣廷 | 正月庚申 | 9일 | 隸妾咎 |
| 8-672 | 田官守 | 二月己丑朔壬寅 | 縣廷 | 壬寅 | 無 | 史逐 |
| 8-767 | 啓陵鄕 | 七月戊戌朔辛酉 | 縣廷 | 七月丙寅 | 5일 | 郵人敞 |
| 8-1069+8-1434+8-1520 | 庫武 | 五月丙辰朔庚子 | 縣廷 | 五月庚子 | 無 | 佐橫 |
| 8-1443 | 都鄕守 | 六月乙巳朔壬申 | 縣廷 | 六月壬申 | 無 | 佐初 |
| 8-1477 | 尉 | 三月辛未朔丙戌 | 縣廷 | 三月丙戌 | 無 | 守府交 |
| 8-1490+8-1518 | 倉 | 六月己巳朔甲午 | 縣廷 | 六月乙未 | 1일 | 佐尙 |
| 8-1514 | 庫守 | 四月甲午朔辛巳 | 縣廷 | 四月壬午 | 1일 | 佐圂 |
| 8-1524 | 司空 | 二月丙寅朔己卯 | 縣廷 | 二月己卯 | 無 | 隸妾畜 |
| 8-1554 | 都鄕守 | 七月戊子朔己酉 | 縣廷 | 七月己酉 | 無 | 沈 |
| 8-1559 | 叚(假)倉 | 五月壬子朔辛巳 | 縣廷 | 五月辛巳 | 無 | 佐居 |
| 8-1562 | 啓陵鄕 | 七月戊戌朔乙巳<br>七月乙卯 | 縣廷 | 七月己未 | 14일<br>4일 | □□ |
| 8-1566 | 田官守 | 六月丁亥朔甲辰 | 縣廷 | 六月戊申 | 4일 | 佐壬 |
| 8-2011 | 都鄕守 | 五月壬子朔壬戌 | 縣廷 | 五月壬戌 | 無 | 佐初 |
| 8-2034 | 少內守 | 後九月庚辰朔壬寅 | 縣廷 | 壬寅 | 無 | 佐□ |

※발신자의 人名은 생략함.

※발신자·수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날짜를 알 수 없는 문서는 제외함.

※한 문서에 廷과 官의 발신·수신 과정이 중층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 제외함.

위 표에 따르면, 啓陵鄕에서 縣廷으로 보낸 문서 이외에는 문서 작성날짜와 수신날짜 사이의 날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물론 날짜 차이가 官과 縣廷의 공간적 거리를 정

18) 『里耶秦簡』(壹) 가운데 '…行廷'의 사례는 8-164簡(少內→縣廷), 8-170簡(都鄕→縣廷), 8-686+8-973簡(庫→縣廷)에서 확인되고, '…行官名'의 사례는 8-135簡(縣廷→司空), 8-155簡(縣廷→少內)에서 확인된다.

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官이나 鄕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발송은 늦게 행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서로 가까이 있지만 날짜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문서작성 당일 縣廷에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문서날짜를 조작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官은 縣廷과 가까이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

또한 官이 縣廷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업무 상 縣廷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土口史記가 지적했듯이 睡虎地秦簡에서 縣令과 縣丞이 官嗇夫 임명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20], 嗇夫가 부재한 경우 縣廷에서 근무하는 令史나 有爵者가 대리하여 佐나 史가 官嗇夫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금지한 점[21]을 근거로 官이 縣廷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官은 縣廷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 縣廷의 예속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22] 다만 官의 공간적 배치 상황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으며, 차후 규명되어야 할 점이다.

## 2. 曹의 편제와 특징

일본학계에서 제기된 縣廷·官의 구분은『里耶秦簡』(壹)을 분석해 본 결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曹는 縣廷·官 가운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曹의 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曹'라는 官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 둘째 曹가 官내부의 부서로 존재 할 가능성, 셋째 曹가 縣廷내부의 부서로 존재 할 가능성으로 나뉜다. 따라서 里耶秦簡을 분석하면서 이 세 가지 가능성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曹'라는 官자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里耶秦簡 8-145簡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 簡은 遷陵縣에 배정된 101명의 刑徒가 특정 官이나 업무로 배치된 상황을

---

19)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鄕·官과 縣廷이 실제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날짜를 조작하여 문서의 작성날짜와 수신날짜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날짜를 조작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 다만 啓陵鄕의 경우 날짜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 啓陵鄕의 治所와 縣廷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62: "官嗇夫免, □□□□□□□其官亟置嗇夫. 過二月弗置嗇夫, 令·丞爲不從令. 內史雜."

21)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56: "官嗇夫節(卽)不存, 令君子毋(無)害者若令史守官, 毋令官佐·史守. 置吏律"

22) 土口史記는 仲山茂·靑木俊介가 官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고 縣廷과 官은 구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체화된 행정시스템 속에 있었다고 주장했다(土口史記,「戰國·秦代の縣 - 縣廷と '官' の關係をめぐる一考察」,『史林』95-1, 2012, pp.18-22).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刑徒를 특정 업무나 官으로 보낼 때, '××曹'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曹가 독립된 官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23]

다음은 曹가 官의 내부 부서로 존재할 가능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이는 里耶秦簡에 등장하는 倉曹-倉(官), 司空曹-司空(官), 尉曹-尉(官) 등 '×曹'와 '×(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曹'와 '×(官)'을 별도의 행정기구로 볼 것인지, 같은 행정기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曹가 官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8-1463簡과 8-269簡이다.

①廿八年九月庚子令史華爰□ⅠⅠ
往采至今不來求弗得恐爲□ (8-1463)
・庚子史華移倉曹□□Ⅰ
九月甲辰遷陵守丞胡敢□Ⅱ
走ノ朝手ノ九月庚子水下□Ⅲ (8-1463背)

②資中令史陽里釦伐閱: AⅠ
十一年九月隃爲史. AⅡ
爲鄉史九歲一日. AⅢ
爲田部史四歲三月十一日. AⅣ
爲令史二月. AⅤ
□計. BⅠ
年卅六. BⅡ
戶計. CⅠ
可直司空曹. DⅠ (8-269)

먼저 ①에서 令史인 '華'는 庚子일에 倉曹로 이동했으며(庚子史華移倉曹), ②에서 令史인 '釦'는 "司空曹에 임명할 만하다(可直司空曹)"고 하여, '華'와 '釦'는 각각 倉曹와 司空曹에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令史와 曹가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華'와 '釦'라는 인물이 里耶秦簡에서 倉과 司空과 관계된 근무자(嗇夫/守, 佐, 史 등)로 각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4] 만약 倉曹・司空曹를 倉・司空이라는 '官'의 내부부서로 본다면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더욱이 里耶秦簡 8-1510簡[25]에 나타나는 '釦'의 행적을 보면 曹가 官 내부에 있지 않을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

23) 물론 8-145簡의 倉・司空・尉는 曹가 생략된 표현으로 각각 倉曹・司空曹・尉曹를 가리킨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倉・司空・尉는 官名과 曹名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戶曹・車曹・獄東曹・獄南曹・吏曹 등 여타 曹에 刑徒가 배치된 사례가 한 건도 보이지 않으므로, 8-145簡에 있는 倉・司空・尉는 曹名이 아니라 官名으로 판단된다. 簡의 내용은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p.84-86 참조 바람.

24) 물론 '華'의 경우는 이후에 少內의 守로 부임했다가 다시 令史로 전직하지만, 倉(官)에 근무한 기록은 없으므로, 倉曹와 倉(官)은 서로 다른 행정계통임을 암시한다.

25)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341: "廿七年三月丙午朔己酉, 庫後敢言之: 兵當輸內史, 在貳春□□□Ⅰ五石一鈞七斤, 度用船六丈以上者四艘(艘). 謁令司空遣吏・船徒取. 敢言Ⅱ之. □Ⅲ (8-1510) 三月辛亥, 遷陵守丞敦狐告司空主, 律令從事. ……Ⅰ昭行 Ⅱ 三月己酉水下九, 佐赶以來.ノ釦半Ⅲ (8-1510背)"

8-1510簡은 문서 전달과정이 庫→縣廷→司空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釦'는 庫에서 온 문서를 개봉한 자로 등장하여 司空曹가 司空에 있지 않고 縣廷에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華'와 '釦'는 각각 倉曹와 司空曹의 令史로 근무하고, 倉과 司空이라는 官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倉曹·司空曹는 倉·司空과 서로 다른 행정 계통으로 曹가 官내부에 있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만 倉·司空·尉의 경우 官名과 曹名이 같기 때문에, 업무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가능성으로 曹가 縣廷의 내부부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里耶秦簡 가운데 曹에서 문서를 처리한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曹에서 문서를 처리한 사례[26]

| 簡번호 | 曹名 | 내용 | 승인 | 도착지 | 수신날짜 | 문서 전달자 |
|---|---|---|---|---|---|---|
| 5-22 | 獄東曹 | 書一封 | 丞印 | 詣無陽 | 九月己亥水下三刻 | □□以來 |
| 5-23 | 201. | . | □印 | 一泰(太)守府, 一成固 | 九月己亥 | . |
| 8-273+8-520 | 獄東曹 | 書一封 | . | 洞庭泰守府 | 廿八年二月甲午日入時 | 牢人佁以來 |
| 8-373 | . | . | . | 一辰陽一朐忍 | 廿八年九月辛丑 | 走起以來 |
| 8-375 | 司空曹 | 書一封 | 丞印 | 詣零陽 | 七月【壬寅】 | . |
| 8-376 | . | . | . | 詣蒼梧尉府, 一南鄭 | . | . |
| 8-453 | 尉曹 | 書三封 | 令印 | 其一詣銷, 一丹陽, 一□陵 | 廿八年九月庚子水下二刻 | 走祿以來 |
| 8-475+8-610 | . | 書一封 | 遷陵丞印 | 詣啓陵鄉 | 卅五年六月甲子 | 妾孫行 |
| 8-540 | . | □封 | 遷陵印 | □ | ……卯水下四刻 | . |
| 8+728+8-1474 | 獄南曹 | 書二封 | 遷陵印 | 一洞庭泰守府, 一洞庭尉府 | 九月己亥餔時 | 牢人誤以來 |
| 8-959+8-1291 | 獄東曹 | 書一封 | 丞印 | 詣洞庭守府 | 九月戊戌水下二刻 | 走佁以來 |
| 8-1119 | . | 書三封 | 令印 | 二守府·一成紀 | 九月庚寅水下七刻 | 走佁以來 |
| 8-1155 | 獄東曹 | 書一封 | 丞印 | 詣泰守府 | 廿八年九月己亥水下四刻 | 隸臣申以來 |
| 8-1225 | 尉曹 | 書二封 | 遷陵印 | 一封詣洞庭泰守府, 一封詣洞庭尉府 | 九月辛丑水下二刻 | 走□以來 |
| 8-1467 | 獄東 | 書一封 | 丞印 | 詣競陵 | 卅五年☑ | 人 餘 以來 |
| 8-1533 | 戶曹 | 書四封 | 遷陵印 | 一咸陽, 一高陵, 一陰密, 一競陵 | 廿七年五月戊辰水下五刻 | 走荼以來 |
| 8-1616 | 尉曹 | 書一封 | . | 詣洞庭主司空 | ☑ | . |
| 8-1823 | 獄南 | 書一封 | 丞印 | 詣洞庭尉府 | 卅三年十一月癸酉夕 | . |
| 8-1829 | . | . | . | 洞庭泰守府 | 二月乙未水下八刻 | 走佁以來 |
| 8-1886 | 獄南曹 | 書三封 | 丞印 | 二詣酉陽·一零陽 | 卅年九月丙子旦食時 | 隸臣羅以來 |
| 8-2028 | □曹 | 書□封 | 遷陵丞印 | 詣定□ | . | 卒……昭行 |

26) 藤田勝久, 「里耶秦簡所見秦代郡縣的文書傳遞」,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166; 畑野吉則,「里耶秦簡の郵書記錄と文書傳達」, 『資料學の方法を探る』 12, 2013, p.38참조.

| | | | | | | |
|---|---|---|---|---|---|---|
| 16-3 | 尉曹 | 書二封 | 丞印 | 一封詣零陽, 一封詣昆陽邑 | 九月己亥水下八 | 走印(?)以□ |
| 9-1594 | 金布 | 書一封 | 丞印 | 詣洞庭泰守府 | 卅五年五月壬戌水十一刻(刻)下三 | 守府快以來(博物館) |

위 표의 簡文들은 曹에서 다른 縣이나 郡으로 문서를 발송 한 후에 그에 대한 수신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먼저 살펴 볼 점은 각 曹에서 문서를 발송할 때, 대부분 縣令이나 縣丞의 인장을 받고 각지로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曹가 縣廷에 직속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官과 縣廷 사이에 문서를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문서의 작성날짜·문서의 내용·수신날짜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날짜와 수신날짜 사이에 시간적 차이도 드러난다. 그런데 〈표 2〉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曹와 縣廷사이 문서전달 과정의 내용은 생략하고, 타 지역으로 문서를 발송한 후에 수신한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縣廷내부에서 처리한 문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문서전달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曹는 縣廷내부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曹가 縣廷내부에 있을 가능성은 里耶秦簡에 있는 '廷××發'·'廷××' 형식의 簡牘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예컨대 里耶秦簡에는 "廷戶曹發"·"廷倉曹"·"廷吏曹" 등 '廷+××+曹' 형식의 簡文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또한 "廷主吏發"·"廷主戶發"·"廷主倉發" 형식의 簡文도 다수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主'는 '주관하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27] 그렇다면 "廷主吏發"·"廷主戶發"·"廷主倉發"은 각각 "廷吏曹"·"廷戶曹"·"廷倉曹"와 서로 대응된다. 물론 이들의 상관관계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曹' 앞에 '廷'이 붙은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曹가 縣廷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鄕에서 縣廷으로 보낸 문서를 살펴보면, 曹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즉 里耶秦簡 8-769簡을 보면,[28] 啓陵鄕의 守인 '狐'라는 인물이 鮫魚와 山今盧魚의 상황을 보고하며, 마지막 부분에 戶曹를 기록했다. 이는 廣瀨薰雄의 견해에 따른다면, 啓陵鄕이 戶曹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29] 또한 簡文에서 "敢言之"라는 어구가 있으므로 鄕의 상급 기관인 縣廷에게 보내는 문서양식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

27) 高村武幸,『漢代の地方官吏と地域社會』, 汲古書院, 2008, pp.283-286의 견해 참조.

28)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222: "卅五年八月丁巳朔己未, 啓陵鄕守狐敢言之: 廷下令書曰取鮫魚與Ⅰ山今盧魚獻之. 問津吏徒莫智(知). ●問智此魚者具署Ⅱ物色, 以書言. ●問之啓陵鄕吏·黔首·官徒·莫智, 敢言之. ●戶Ⅲ8-769曹 Ⅰ 八月□□□郵人□以來ノ□發 狐手 (背) (8-769背)"

29) 廣瀨薰雄,「里耶秦簡所見的 '令書'-從里耶秦簡窺見燕齊海上之方士對秦始皇的影響的一個嘗試」,『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208참조.

8-769簡은 啓陵鄕에서 縣廷의 戶曹에게 상황을 보고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戶曹가 縣廷에 속해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曹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曹에서 처리한 문서의 성격을 분석해 보아도 曹가 縣廷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里耶秦簡의 8-487+8-2004簡이다.

> ③卅四年八月癸巳朔癸卯, 戶曹令史<u>𢦚</u>疏書廿八年以Ⅰ盡卅三年見戶數牘北(背)・移獄具集上, 如請史書. / 𢦚手. Ⅱ (8-487+8-2004)
> 廿八年見百九十一戶. AⅠ 廿九年見百六十六戶. AⅡ 卅年見百五十五戶. AⅢ
> 卅一年見百五十九戶. AⅣ 卅二年見百六十一戶. BⅠ 卅三年見百六十三戶. BⅡ(8-2004背)

③은 戶曹令史인 '𢦚'가 秦始皇 28년에서 33년까지 옥사사건과 관련된 호구수를 簡牘 背面에 나누어 적고 獄具集에 옮겨 적는데, 그 형식은 審問書와 같이 하였다는 내용이다. 먼저 주목해 볼 점은 호구수를 簡牘에 적는 자가 戶曹令史라는 사실이다. 즉 簡文의 "𢦚手"라는 어구를 통해 초록자가 戶曹令史인 '𢦚'가 분명하며, 이를 통해 戶曹에 令史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令史가 倉曹와 司空曹에 근무한 사례와 연관시키면(①②참조), 각 曹마다 令史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令史는 睡虎地秦簡에 근거해 官嗇夫 부재 시에 이를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縣廷에서 주로 활동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令史가 속한 曹 역시 縣廷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③은 문서작성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만 縣廷에서 수신한 날짜와 문서 전달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縣廷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판단된다. 물론 수신날짜와 문서 전달자가 기록되지 않은 첨부 문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초록자가 令史임을 감안하면, ③은 縣廷내부에서 쓰여 진 것으로 보이며, 簡의 성격을 통해서도 曹가 縣廷내부에 속해 있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曹와 관련된 문서작성 방식・刑徒의 배치・令史의 역할과 근무배정 등을 종합하면, 曹는 縣廷 내부부서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縣廷의 曹가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 그 실마리는 里耶秦簡에 등장하는 "司空曹計錄(8-480)"・"倉曹計錄(8-481)"・"戶曹計錄(8-488)"・"金布計錄(8-493)" 형식의 簡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金布는 '曹'라는 말이 붙지는 않지만 曹의 문서 전달 방식에도 등장(〈표3〉 참조)할 뿐만 아니라, '××計錄' 형식의 簡에도 여타 曹의 서사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曹의 일종으로 판단된다.[30] 金布만 왜 '曹'라는 명칭이 붙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金布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計錄' 형식의 簡은 모두 曹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簡의 용도에 대해서는 회계나 통계 문서로 보거나,

30) 金布를 曹로 보는 견해는 葉山, 「解讀里耶秦簡--秦代地方行政制度」,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김동오,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東洋史學研究』 126, 2014가 있다.

각 항목의 통계를 기록한 목록으로 고과의 성격도 다소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31] 이 점을 감안하면, '××計錄' 형식의 簡들은 각 曹의 이름 아래 해당 항목을 회계 기록한 문서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해당 簡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里耶秦簡에 나오는 '××計錄'

| **司空曹計錄:** ＡⅠ | **倉曹計錄**: ＡⅠ | **戶曹計錄:** ＡⅠ | **金布計錄**: ＡⅠ |
|---|---|---|---|
| 船計, ＡⅡ | 禾稼計, ＡⅡ | 鄉戶計, ＡⅡ | 庫兵計, ＡⅡ |
| 器計, ＡⅢ | 貸計, ＡⅢ | 絲(徭)計, ＡⅢ | 車計, ＡⅢ |
| 贖計, ＢⅠ | 畜計, ＡⅣ | 器計, ＡⅣ | 工用計, ＢⅠ |
| 貲責計, ＢⅡ | 器計, ＢⅠ | 租質計, ＡⅤ | 工用器計, ＢⅡ |
| 徒計, ＢⅢ | 錢計, ＢⅡ | 田提封計, ＢⅠ | 少內器計, ＢⅢ |
| 凡五計. ＣⅠ | 徒計, ＢⅢ | 髮計, ＢⅡ | 【金】錢計, ＣⅠ |
| 史尙主. ＣⅡ | 畜官牛計, ＢⅣ | 鞫計, ＢⅢ | 凡六計. ＣⅡ |
| (8-480) | 馬計, ＣⅠ | • 凡七計. ＢⅣ | (8-493) |
| | 羊計, ＣⅡ | (8-488) | |
| | 田官計, ＣⅢ | | |
| | 凡十計, ＣⅣ | | |
| | 史尙主. ＣⅤ | | |
| | (8-481) | | |

<표 3>을 보면, 각 曹의 명칭아래 여러 항목이 회계 기록되어 있다. 이는 曹의 업무 중 하나가 회계 업무임을 암시한다. 예컨대 睡虎地秦簡에는 官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죄를 저지를 경우, 관련 官뿐만 아니라 令史나 그 屬吏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32] 이는 令史가 회계를 담당하는 한편, 官의 회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각 曹의 令史도 官의 회계 업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曹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은 '××課志' 라는 簡을 살펴보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1) 李均明, 「里耶秦簡 '計錄' 與 '課志' 解」,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 ·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169; 沈剛, 「《里耶秦簡》【壹】中的 '課' 與'計'-兼談戰國秦漢時期考績制度的流變」, 『魯東大學學報』, 2013, pp.65-68.

32) 『睡虎地秦簡』 效律, p.75: '官嗇夫貲二甲, 令 · 丞貲一甲 ; 官嗇夫貲一甲, 令 · 丞貲一盾. 其吏主者坐以貲 · 誶如官嗇夫. 其它冗吏 · 令史掾計者, 及都倉 · 庫 · 田 · 亭嗇夫坐其離官屬於鄉者, 如令 · 丞'; 『睡虎地秦簡』 效律, p.76: '司馬令史掾苑計, 計有劾, 司馬令史坐之, 如令史坐官計劾然.'

<표 4> 里耶秦簡에 나오는 '××課志'

| **田課志**. ＡⅠ | **田官課志** Ⅰ | **尉課志**: ＡⅠ | **鄉課志**: ＡⅠ |
|---|---|---|---|
| 髮園課. ＡⅡ | 田□□課 Ⅱ | 卒死亡課, ＡⅡ | □□□ ＡⅡ |
| • 凡一課. ＢⅠ | • 凡一課. Ⅲ | 司寇田課, ＡⅢ | □食□□課 ＡⅢ |
| (8-383+8-484) | (8-479) | 卒田課, ＢⅠ | 黔首曆課 ＢⅠ |
| | | • 凡三課. ＢⅡ | 寡子計子課 ＢⅡ |
| | | (8-482) | • 凡四課. ＢⅢ |
| | | | (8-483) |

| **司空課志**: ＡⅠ | **畜官課志**: ＡⅠ | **倉課志**: ＡⅠ |
|---|---|---|
| □爲□□□ ＡⅡ | 徒隸牲畜死負・剝賣課, ＡⅡ | 畜堯雌狗産子課, ＡⅡ |
| □課, ＡⅢ | 徒隸牲畜畜死不請課, ＡⅢ | 畜堯雌狗死亡課, ＡⅢ |
| □□□□課,ＡⅣ | 馬産子課, ＡⅣ | 徒隸死亡課, ＡⅣ |
| 春産子課,ＡⅤ | 畜牛死亡課, ＢⅠ | 徒隸産子課, ＡⅤ |
| □船課, ＢⅠ | 畜牛産子課, ＢⅡ | 作務産錢課, ＢⅠ |
| □□□課, ＢⅡ | 畜羊死亡課, ＢⅢ | 徒隸行豂(徭)課, ＢⅡ |
| 作務□□ ＢⅢ | 畜羊産子課. ＢⅣ | 畜鴈死亡課, ＢⅢ |
| …… ＢⅣ | • 凡八課. ＢⅤ | 畜鴈産子課. ＢⅣ |
| ……ＢⅤ (8-486) | (8-490+8-501) | • 凡▨ ＣⅠ (8-495) |

<표 4>에 제시된 '××課志'는 고과항목을 기록한 簡으로 볼 수 있는데,[33] 여기서 관건은 '課志'의 대상이 '畜官'・'田官'・'司空'・'田'・'尉'・'倉'・'鄉' 등으로 官名과 鄉名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課志'는 해당 官이나 鄉의 업무를 일정부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課志'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官의 회계 상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縣廷의 각 曹에서 官의 업무를 회계 정리하여 '××計錄'을 작성하면, 縣廷에서는 이를 근거로 官을 평가하기 위한 고과지(××課志)를 만들어 官을 평가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官을 평가하는 주체는 縣令・縣丞 이상의 관료 혹은 기구일 것이다.[34] 이렇게 본다면 '××計錄'과 '××課志'는 그 성격 상 曹와 官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曹와 官의 관계를 토지・재정운영

33) 李均明,「里耶秦簡 '計錄' 與 '課志' 解」,『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74; 沈剛,「《里耶秦簡》【壹】中的 '課' 與'計'-兼談戰國秦漢時期考績制度的流變」,『魯東大學學報』, 2013, pp.66-68.

34) 이 점은 睡虎地秦簡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 먼저『睡虎地秦簡』語書, p.13: "有 (又) 且課縣官, 獨多犯令而令・丞弗得者, 以令・丞聞."이라는 내용을 통해 縣官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면 令・丞이 책임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縣내부에서 官을 평가하는 체계가 갖추어 졌을 것이다. 또한 고과항목의 성격에 따라 官嗇夫・佐만 벌금을 부과하거나 官嗇夫・佐・縣令・縣丞까지 모두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고과를 매기는 대상이 縣級 이상임을 증명한다. 관련 簡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官嗇夫・佐만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睡虎地秦簡』秦律雜抄, pp.84-85: "采山重殿, 貲嗇夫一甲, 佐一盾；三歲比殿, 貲嗇夫二甲而法 (廢)."가 있다. 官嗇夫・佐・縣令・縣丞까지 모두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睡虎地秦簡』秦律雜抄, p.84: "髮園殿, 貲嗇夫一甲, 令・丞及佐各一盾, 徒絡組各廿給. 髮園三歲比殿, 貲嗇夫二甲而法(廢), 令・丞各一甲."이 있다.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 遷陵縣의 행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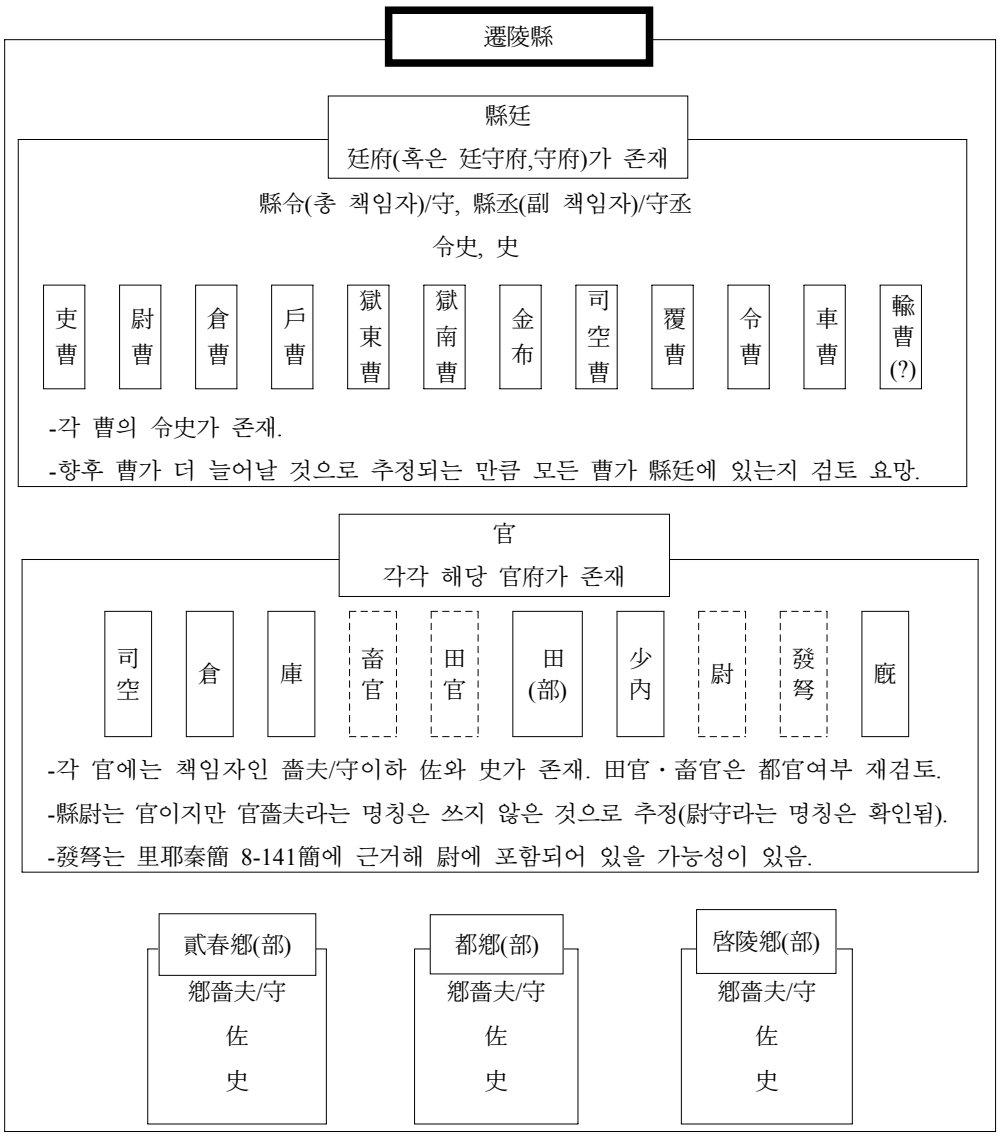


※縣廷은 都鄕에 있으며, 縣廷과 가까운 거리에 官이 있는 것으로 추정. 都官・離官・亭・里이하 조직은 생략함. 令佐는 令史의 보좌로 추정되나, 행정계통이 분명하지 않아 생략함. 獄佐는 獄曹에 소속된 令史(혹은 獄史)의 보좌로 獄曹계열로 추정되나, 역시 행정계통이 분명하지 않아 생략함.

## Ⅲ. 縣의 토지운영과 曹

### 1. 田官의 토지운영

본고에서는 田官과 田嗇夫를 서로 다른 행정계통으로 보는데, 그 근거로 刑徒를 각 官에 배치할 때 “付田官”과 “付田” 등 상이한 기록이 보이는 점, 8-149+8-489簡의 벌금내역에서 “田官佐”와 “田佐”로 따로 기입되어 있다는 점, “田官課志”(田官의 고과지)와 “田課志”(田部의 고과지)로 ‘××課志’簡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35] 이를 바탕으로 田官과 田嗇夫를 각각 나누어 운영상의 특징과 曹의 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田官은 漢代 문헌 사료에서 농사일을 담당하는 관리 혹은 관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簡文에 나오는 田官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다.[36] 이를 감안하여 里耶秦簡 9-1869簡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④秦二世 元年 8월, 庚午朔 庚寅에 田官守인 顧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 墾田에 관한 課一牒을 올리고자 하니 감히 말씀드립니다.
> 8월 庚寅 日入에 顧가 도착함. 援이 개봉함. 顧가 초록함.[37]

④는 田官守인 ‘顧’라는 인물이 墾田의 고과와 관련된 문서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田官이 墾田을 관리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簡文에 나온 墾田에 대해서는 山田勝方의 견해가 참조된다. 山田勝方은 睡虎地秦簡을 근거로 墾田이 개간하여 경지화 된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여 농작물을 심은 토지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墾田을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田官은 토지 개간뿐만 아니라 경작을 통한 농작물 생산 작업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노동력을 활용하여 상기한 작업을 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은 田官에게 刑徒를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38] 그 수도 상당한 점[39]으로

---

35) 王彦輝,「《里耶秦簡》(壹)所見秦代縣鄉機構設置問題蠡測」,『古代文明』6, 2012年 第4期, p.52.

36) 이에 대해서는 張春龍 · 龍京沙,「湘西里耶秦代簡牘選釋」,『中國歷史文物』, 2003年 第一期, p.19; 卜憲群,「秦漢之際鄉里吏員雜考-以里耶秦簡爲中心的探討」,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第26卷, 2006年 第1期, p.5; 于振波,「秦代的墾田與稅田市」,『日常秩序中的秦漢社會與政治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中國人民大學歷史學院漢唐研究中心, 2012, p.66; 王彦輝,《里耶秦簡》(20壹)所見秦代縣鄉機構設置問題蠡測」,『古代文明』第6卷, 2012年 第4期, p.51을 참고할 수 있다.

37) 葉山,「解讀里耶秦簡--秦代地方行政制度」,『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 ·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111: “元年八月庚午朔庚寅田官守顧敢言之上貇(墾)田課一牒敢言之 (9-1869) 八月庚寅日入顧以來 / 援發 顧手(9-1869背)”

38) 현재 발간된『里耶秦簡牘校釋』(第1卷)에서는 8-145簡, 8-162簡, 8-444簡, 8-663簡 등에서 田官에 刑徒가 배치된 사례가 나온다.

미루어 보아 刑徒를 토지 개간 및 경작에 활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刑徒들은 司空과 倉(官)으로부터 각각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司空課志(8-486)”와 “倉課志(8-495)”를 통해 司空과 倉(官)이 刑徒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40] 8-663簡과 8-145簡에서 司空과 倉(官)이 田官에게 刑徒를 보낸 내용이 있기 때문에[41] 田官의 刑徒 공급원이 司空과 倉(官)임을 알 수 있다.[42] 이와 관련해 里耶博物館에 전시된 두 簡文이 주목된다.[43]

⑤卅四年十二月倉徒薄(簿)取
**大隸臣積九百九十人**
**小隸臣積五百一十人**
**大隸妾積二千八百七十六人**
**凡積四千三百七十六**
…(생략)…
男卅人廷守府
…(생략)…
男卅人付司空
…(생략)…
女五百一十人付田官
女六百六十人助門淺
女卅四人助田官獲
…(생략)…(10-1170)

⑥卅二年十月己酉朔乙亥司空守圂徒作簿
**城旦司寇一人**
**鬼薪廿人**
**城旦八十七人**
**仗城旦九人**
**隸薪鬾(繫)城旦三人**
**隸臣居貲五人**
**●凡百廿五人**
…(생략)…
廿三人付田官
…(생략)…
二人付倉
…(생략)… (9-2294)

---

39) 이 점은 8-1566簡에서 田官의 守인 敬이 日食牘를 보고할 때, 刑徒가 城旦·鬼薪·舂을 포함해서 모두 56명에 이른다는 점, 본문의 ⑤⑥인 倉의 徒簿와 司空의 徒簿에서 田官에 배치된 刑徒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40)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p.165-166: “司空課志: ＡⅠ □爲□□□ ＡⅡ □課, ＡⅢ □□□□課,ＡⅣ 舂産子課,ＡⅤ…(생략)…. ⑻-486)”;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169: “**倉課志**: ＡⅠ 畜彘雌狗産子課, ＡⅡ 畜彘雌狗死亡課, ＡⅢ 徒隸死亡課, ＡⅣ 徒隸産子課, ＡⅤ…(생략)…. ⑻-495) ”

41)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196: “二人付□□□ 一人付田官 一人付司空牧…(생략)…其廿六人付田官 一人守園: 壹孫 …(생략)… 五月甲寅倉是敢言之: 寫上敢 (背) ⑻-663) ”;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85: “…(생략)… ·小舂五人 其三人付田官 一人徒養姊 一人病□(正) ◿□圂敢言之寫上敢言之 /痤手(背)(8-145)”

42) 물론 田官이 刑徒만 활용했던 것은 아니다. 즉 田官이 佐와 稟人과 더불어 식량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이 刑徒에 한정되지 않고, 屯戍를 하는 簪裹 작위의 인물도 있는 것으로 보아, 田官은 刑徒를 비롯해 일반 백성이나 작위가 있는 자의 노역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刑徒의 배치 사례 및 刑徒의 수를 감안하면, 토지 개간 및 경작의 주 노동력으로 刑徒를 활용했을 것이다.

43) ⑤⑥의 簡文 및 簡번호는 葉山,「解讀里耶秦簡--秦代地方行政制度」,『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p.120-123; 游逸飛·陳弘音,「里耶秦簡博物館藏第九層簡牘釋文校釋」,『簡帛網www.bsm.org.cn』, 2013.12.22; 游逸飛,「守府·尉府·監府」,『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148을 참조.

위 두 簡은 각각 倉과 司空의 徒簿이다. 먼저 徒簿의 구성원을 보면, ⑤의 倉徒簿에는 모두 隸臣妾과 관련된 刑徒(大隸臣・小隸臣・大隸妾)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⑥의 司空徒簿에는 城旦・城旦司寇・仗城旦・隸薪鬠(繫)城旦・鬼薪・隸臣居貲가 기재되어 있다. 그 중 城旦司寇・仗城旦・隸薪鬠(繫)城旦은 城旦과 관련된 刑徒이고, 隸臣居貲는 隸臣 가운데 居貲를 받은 자, 즉 벌금형을 받아 이를 노역으로 대체하는 자로 隸臣보다 刑이 무거운 刑徒로 추정된다. 이처럼 倉(官)과 司空의 徒簿구성원이 서로 겹치지 않아 倉(官)과 司空이 주로 관리하는 刑徒의 신분이 상이하며,[44] 그 刑徒의 일부를 田官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연말에 田官이 徒簿를 縣廷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45] 縣廷에서도 田官에 배정된 刑徒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刑徒를 주 노동력으로 삼아 개간・경작한 토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8-672簡에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 ⑦31년 2월 己丑朔 壬寅에 田官守인 敬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官田의 自食簿를 泰守府에 아뢰고자 합니다(8-672). ☐ 壬寅旦, 史逐이 옴. ノ尙이 초록함. ☐(8-672背) [46]

⑦에서 주목되는 것은 官田의 존재이다. 簡文을 보면 田官이 官田의 自食簿를 상부기관에 보고하는데, 이는 田官이 官田을 관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刑徒를 주 노동력으로 활용해 개간・경작한 토지는 官田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官田은 後漢代 문헌인『昌言』에 근거하면 授田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7] 물론 이를 秦代 官田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참고의 여지는 있다. 다만 授田을 맡은 행정 관료는 田官이 아닌 田嗇夫로 판단된다.

---

44) 물론 司空에는 隸臣妾계열의 刑徒가 전혀 없고 倉(官)에는 城旦舂・鬼薪계열의 刑徒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司空에서 倉으로 城旦舂・鬼薪계열의 刑徒를 일부 보내고(⑤의 "男卅人付司空"참조), 倉에서 司空으로 隸臣妾계열의 刑徒를 일부 보낸 사례(⑥의 "二人付倉" 참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徒簿의 인원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刑徒의 신분에 따라 주로 관리하는 官이 달랐음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 말해 司空은 그 내부에 隸臣妾계열의 刑徒가 일부 있지만 주 관리대상은 城旦舂・鬼薪계열의 刑徒로 이것으로 고과를 받았을 것이며, 倉(官)도 그 내부에 城旦舂・鬼薪계열의 刑徒가 일부 있지만 주 관리대상은 隸臣妾 계열의 刑徒로 이것으로 고과를 받았을 것이다.

45)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31: "歲田官徒薄(簿)廷. (8-16)"

46)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199: "卅年二月己丑朔壬寅, 田官守敬敢言【之】☐Ⅰ 官田自食薄(簿), 謁言泰守府□☐Ⅱ之. ☐ (Ⅲ) (8-672) 壬寅旦, 史逐以來. ノ尙手. ☐ (8-672背)"

47) 『昌言』(仲長統 撰, 孫啓治 校注, 『昌言校注』, 中華書局, 2012)損益篇, p.301: "今者土廣民稀, 中地未墾…(중략)…其地有草者, 盡曰官田, 力堪農事, 乃聽受之. 若聽其自取, 後必爲姦也."

## 2. 田嗇夫(田部)[48]의 토지운영

앞서 田官은 刑徒를 주 노동력으로 활용하여, 토지개간 및 경작업무를 맡았으며, 이 토지는 官田 형태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田官과 다른 행정계통인 田嗇夫는 縣의 토지운영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49] 먼저 睡虎地秦簡과 張家山漢簡에서 田嗇夫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백성을 관리하고,[50] 耕牛를 관리하며,[51]田籍을 정리하여 토지 분배 및 몰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52] 또한 民田 관련 업무는 鄕部의 鄕嗇夫와 田部의 田嗇夫가 함께 공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53] 睡虎地秦簡에 나오는 部佐는 鄕部의 佐와 田部의 佐 모두 가리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田嗇夫(田部)의 역할은 里耶秦簡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里耶博物館에 소장된 9-2350簡이다.

---

48) 田嗇夫와 田部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들을 모두 官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田嗇夫는 田部의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는 官職名이고, 田部는 田嗇夫휘하 官이 근무하는 官府名 혹은 管轄名으로 추정한다.

49) 田嗇夫를 언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裘錫圭, 「嗇夫初探」, 『雲夢秦簡研究』, 1981, p.249; 王勇,「秦漢地方農官建置考述」, 『中國農史』, 2008年 第3期, pp.17-18; 王彦輝,「田嗇夫·田典考釋－－對秦及漢初設置兩套基層管理機構的一點思考」,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年 第2期, pp.51-52; 卜憲群, 「秦漢之際鄕里吏員雜考-以里耶秦簡爲中心的探討」,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第26卷, 2006年 第1期, p.5.

50)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22: "百姓居田舍者毋敢釀(酖)酉(酒), 田嗇夫·部佐謹禁禦之, 有不從令者有罪. 田律."

51)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p.22-23: "以四月·七月·十月·正月膚田牛. 卒歲, 以正月大課之, 最, 賜田嗇夫壺酉(酒) 束脯, 爲旱〈皂〉者除一更, 賜牛長日三旬; 殿者, 誶田嗇夫, 罰冗皂者二月. 其以牛田, 牛減絜, 治(笞)主者寸十. 有(又)里課之, 最者, 賜田典日旬; 殿, 治(笞)卅. 廄苑律."

52) 『睡虎地秦簡』法律答問, p.130: "部佐匿者(諸)民田, 者(諸)民弗智(知), 當論不當? 部佐爲匿田, 且可(何)爲? 已租者(諸)民, 弗言, 爲匿田; 未租, 不論○○爲匿田."; 『張家山漢簡』二年律令·戶律, 322簡: "代戶·貿買田宅, 鄕部·田嗇夫·吏留弗爲定籍, 盈一日, 罰金各二兩."; 『張家山漢簡』二年律令·戶律, 323~324簡: "諸不爲戶有田宅附令人名, 及爲人名田宅者, 皆令以卒戍邊二歲, 沒入田宅縣官. 爲人名田宅, 能先告, 除其罪, 又畀之所名田宅, 它如律令."; 『張家山漢簡』二年律令·戶律, 331~332簡: "民宅園戶籍·年細籍·田比地籍·田合籍·田租籍, 謹副上縣廷, 皆以篋若匣匱盛, 緘閉, 以令若丞·官嗇夫印封, 獨別爲府, 封府戶; 卽有當治爲者, 令史·吏主者完封湊令若丞印, 嗇夫發, 卽雜治爲; ……."

53) 그 근거로 鄕嗇夫·鄕佐의 업무 중에 토지 및 부세징수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後漢書』에서 鄕佐는 부세징수 업무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里耶秦簡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張家山漢簡에는 民의 遺言에 근거해 전택·재물·노비를 나눌 때 鄕嗇夫가 관여하고 있다. 이 점은 후술 할 田嗇夫·田佐의 업무와 관련 있으며, 黔首田 관련 업무는 田部와 鄕部가 서로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後漢書』(中華書局, 1965) 券30 百官志, p.3624: "…又有鄕佐, 屬鄕, 主民收賦稅";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331: "□都鄕柀不以五月斂之不 應 (應)律。都鄕守廾謝曰 : 鄕徵斂之, 黔首未肯(肯)入Ⅰ Ⅰ□□史 Ⅱ□之寫上敢言之ノ華手 (8-1454+8-1629) □華手 (8-1454+8-1629背)"; 『張家山漢簡』二年律令·戶律, 334~335簡: "民欲先令相分田宅·奴婢·財物, 鄕部嗇夫身聽其令, 皆參辨券書之, 輒上如戶籍. 有爭者, 以券書從事; 毋券書, 勿聽").

⑧卅三年六月庚子朔丁巳, 守武爰書: 高里士五(伍)吾武□(自)言: 謁貍(墾)草田六畝
武門外, 能□藉(籍)以爲田. 典□. (9-2350)
六月丁巳, 田守武敢言之: 上黔首貍(墾)草□□□敢言之 衙手
六月丁巳, 日水十一刻刻下四佐衙以來 / □發 (9-2350背) [54]

⑧에서는 田守인 '武'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田守의 '守'는 앞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책임자 혹은 대리책임자를 뜻한다. 그렇다면 田守는 田嗇夫를 뜻하거나 田嗇夫의 대리책임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⑧을 보면 黔首가 스스로 토지를 개간했음을 아뢰고, 田守인 '武'가 이 사실을 爰書로 상부(縣廷으로 추정)에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簡文이 쓰인 시기가 秦始皇 33년으로 秦始皇 30년에 시행된 自實田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自實田은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토지를 신고하게 하여 소유권을 정하고, 그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부과한 것이라 보았는데,[55] 위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秦에 토지 사유제가 초보적으로 확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 물론 ⑧에서 黔首가 신고한 토지가 실제 사유지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이러한 토지를 田嗇夫가 주관하여 관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⑧과 비슷한 내용으로 貳春鄕에서 보고한 簡이 발견되어,[56] 일반 백성의 토지 관리는 田嗇夫(田部)와 鄕嗇夫(鄕部)가 함께 관장했음을 재차 증명한다.

또한 黔首의 토지개간을 둘러싼 문서행정에서 田嗇夫와 典이 함께 등장한 점도 주목된다. 앞서 ⑧의 경우는 잔결이 심하고 뜻이 통하지 않아 典의 역할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簡牘 자료를 종합해 보면, ⑧의 典은 田典으로 里에서 농사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小吏로 판단된다.[57] 그렇다면 縣과 鄕단위에서 이를 맡은 관리가 있었을 것이며, 睡

54) 簡文의 표점과 내용은 葉山, 「解讀里耶秦簡--秦代地方行政制度」,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 ·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112; 游逸飛 · 陳弘音, 「里耶秦簡博物館藏第九層簡牘釋文校釋」, 『簡帛網www.bsm.org.cn』, 2013.12.22참조.

55) 任仲爀, 「秦始皇 31年의 自實田」, 『中國古中世史研究』 26, 2011, p.19.

56) 해당 簡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卅五年三月庚寅朔, 丙辰, 貳春鄕茲爰書 : 南里寡婦慈自言 : 謁狠 (墾) 草田, 故桑 (桑) 地, 百廿步, 在故步北, 恒以爲桑 (桑) 田. 三月丙辰, 貳春鄕茲敢言之 : 上. 敢言之. / 詘手(9-14) 四月壬戌, 日入, 戍卒寄以來 / 瞫發 詘手. (9-14背)" 簡文의 표점 및 내용은 游逸飛 · 陳弘音, 「里耶秦簡博物館藏第九層簡牘釋文校釋」, 『簡帛網www.bsm.org.cn』, 2013.12.22에 근거하였다.

57) 張家山漢簡을 살펴보면, 농로의 유지하고 보수하는 책임을 지고, 里門의 개폐 업무를 담당했으며, 里의 호적관련 업무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里內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도 책임졌기 때문에 사실 상 田典은 里典을 도와 里內 사무의 전반을 관장했다. 龍崗秦簡에서도 일반 民인 黔首에 대한 세금 징수의 내용이 나와 秦代에도 漢初와 동일한 업무를 맡았을 것이다(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엮음, 윤재석 옮김, 『睡虎地秦墓竹簡譯註』, 소명출판, 2010, pp.89-90참고).

虎地秦簡・張家山漢簡・里耶秦簡의 사례를 감안하면 田嗇夫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면 田嗇夫(田部)는 鄕嗇夫(鄕部)・田典과 함께 黔首의 토지관리 및 그와 관련된 농사업무를 관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田部의 고과항목지인 "田課志"항목을 살펴보면, "髹園課"라는 항목이 있어 漆園관리도 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田嗇夫(田部)의 업무는 刑徒를 주노동력으로 활용해 토지개간 및 경작을 담당하는 田官과 구별된다.

### 3. 田官・田嗇夫(田部)와 曹의 관계

앞서 田官과 田嗇夫(田部)는 행정계통 및 업무 상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에 입각하여 여기서는 田官과 田嗇夫(田部)를 중심으로 官과 曹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倉曹計錄(〈표 5〉 참조)"을 보면, "田官計"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倉曹에서 田官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田官이 刑徒를 활용해 생산한 농작물도 倉曹에서 회계 정리했을 것이다. 이는 "倉曹計錄"의 "禾稼計"라는 항목이 증명한다.

다만 田官이 활용하는 刑徒는 신분별로 倉曹와 司空曹에서 각각 회계 정리했을 것이다. 그 근거로 앞서 살펴봤듯이 田官에게 刑徒를 공급하는 倉(官)과 司空이 서로 다른 신분의 刑徒를 관리하기 때문에, 刑徒의 회계 정리 역시 신분 별로 倉曹와 司空曹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倉曹計錄"과 "司空曹計錄"에 있는 "徒計"(〈표 5〉 참조)는 서로 다른 신분의 刑徒를 회계 기록한 것으로 본다.

이 밖에 고과지인 '××課志'를 통해서도 官과 曹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 "田官課志"는 잔결이 심하여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畜官課志"와 "倉曹計錄", "倉課志"와 "倉曹計錄"의 관계를 통해 畜官과 倉曹, 倉(官)과 倉曹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田官과 倉曹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해당 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⑨□朔 戊午에 遷陵丞인 遷이 畜官의 僕인 足에게 알렸다. 令에서 □書史가 없고 畜官의 課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 문서를 받는 즉시 □. 守府의 일이 끝났으니 예전과 같이 官事를 처리하고, 그대가 (8-137) □事를 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서 그대를 고핵하여 논죄할 것이다. 它承□ 就가 초록함. (8-137背)[58]

⑨는 遷陵縣의 丞인 '遷'이 畜官에게 고과 관련 문서를 올릴 것을 재촉하는 한편, 이를

58)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77: "□朔戊午, 遷陵丞遷告畜官僕足, 令Ⅰ□毋書史, 畜官課有未上, 書到亟日Ⅱ□守府事已, 復視官事如故, 而子弗Ⅲ (8-137) □事, 以其故不上, 且致劾論子, 它承 □就手. Ⅱ (8-137背)

올리지 않으면 논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畜官은 縣廷에게 고과 관련 문서를 올려야 했음을 알 수 있다.[59] "畜官課志"는 바로 이러한 고과를 기록한 簡인 것이다. "畜官課志"의 고과항목을 살펴보면, "馬産子課"·"畜牛死亡課"·"畜牛産子課"·"畜羊死亡課"·"畜羊産子課"가 있으므로 畜官은 馬·牛·羊을 관리하고 그 고과를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술한 항목들은 "倉曹計錄"의 "馬計"·"畜官牛計"·"羊計"와 대응한다(다음〈표 5〉참조).[60]

그렇다면 畜官이 馬·牛·羊에 관한 문서를 縣廷에 보고하고,[61] 縣廷의 倉曹에서 각각 "馬計"·"畜官牛計"·"羊計"로 회계 정리하면, 縣廷에서는 이를 근거로 畜官을 평가하기 위한 고과지(畜官課志)를 만들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倉(官)과 倉曹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倉課志"의 고과항목을 살펴보면, "徒隸死亡課"·"徒隸産子課"·"畜彘雌狗産子課"·"畜彘雌狗死亡課"·"畜鴈死亡課"·"畜鴈産子課"·"作務産錢課"가 있으므로, 倉(官)은 徒隸, 彘·狗·鴈 등의 가축, 수공업 활동으로 생산한 金錢을 관리하고 그 고과를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倉曹計錄"의 "徒計"·"畜計"·"錢計"에 각각 대응한다(다음〈표 5〉참조).[62]

따라서 倉(官)이 縣廷으로 徒隸, 彘·狗·鴈 등의 가축, 수공업 활동으로 생산한 金錢에 관한 문서를 보고하면, 縣廷의 倉曹는 "徒計"·"畜計"·"錢計"로 각각 회계 정리하며, 縣廷에서는 이를 근거로 倉(官)을 평가하기 위한 고과지(倉課志)를 작성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표 5〉로 나타낼 수 있다.[63]

---

59) 고과관련 문서에 대해서는『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85: "□冗募群戍卒百卌三人 AⅠ □廿六人·死一人 AⅡ □六百廿六人而死者一人 AⅢ 尉守狐課 BⅠ十一月己酉視事, 盡十二月辛未 BⅡ (8-132)"를 참조할 수 있다. 簡文을 보면 尉守인 '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모집한 戍卒 수의 변화와 이를 고과한 기록이 있다. 이는 고과가 수량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회계업무와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60) 王彦輝,「《里耶秦簡》(壹)所見秦代縣鄉機構設置問題蠡測」,『古代文明』6, 2012年 第4期, pp.52-53 참조.

61) 이 점은 앞서〈표 2〉의 刑徒 배치 상황(8-145簡) 가운데 '與吏上計' 항목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與吏上計'는 吏와 더불어 上計를 맡는 업무로 官에서 縣廷으로 회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제도화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밖에 8-164+8-1475簡에서도 少內가 縣廷에 上計하므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62) 王彦輝,「《里耶秦簡》(壹)所見秦代縣鄉機構設置問題蠡測」,『古代文明』6, 2012年 第4期, pp.52-53 참조. 다만 본고와 달리 王彦輝는 '倉課志'의 '作務産錢課'를 '倉曹計錄'의 '錢計'와 연관시키지 않았다.

63) 王彦輝는 '××計錄'·'××課志' 簡을 통해서 倉曹와 畜官·倉·田官의 관계를 일찍이 분석하였다. 그는 倉(官)과 倉曹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縣倉에서 都官인 畜官·田官의 업무를 회계 정리한 것으로 보았다(王彦輝,「《里耶秦簡》(壹)所見秦代縣鄉機構設置問題蠡測」,『古代文明』6, 2012年 第4期, pp.52-53). 그러나 필자는 倉曹와 倉(官)을 각각 曹와 官의 일종으로 분리해서 본다. 또한 畜官·田官·倉(官)이 縣廷의 倉曹에 문서를 보내면, 倉曹에서 회계 정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점에서 王彦輝와 견해를 달리한다. 다만 '××計錄'의 항목과 '××課志'의 항목 간 연관성에

〈표 5〉 '××計錄'·'××課志'를 통해 본 倉曹와 畜官·倉(官)·田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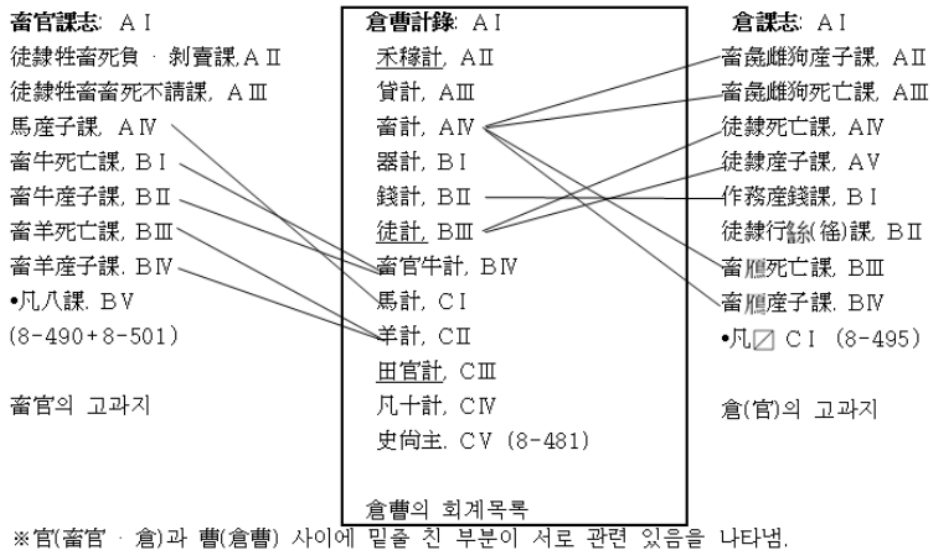


※官(畜官 · 倉)과 曹(倉曹) 사이에 밑줄 친 부분이 서로 관련 있음을 나타냄.
※田官의 경우 '田官課志'의 잔결이 심하여 내용을 알 수 없지만, 田官의 업무를 감안해 '倉曹計錄'의 '禾稼計'·'徒計'·'田官計'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官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縣廷에 보고하면, 曹에서는 항목 별로 회계 정리하고, 縣廷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官을 평가하기 위한 고과지를 만들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田官도 해당 업무의 문서를 縣廷에 올리면, 관련 曹에서 항목 별로 회계 정리하고, 縣廷은 이를 근거로 "田官課志"를 작성하여 田官을 평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官과 曹의 관계는 田嗇夫(田部)와 戶曹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戶曹計錄"을 살펴보면, 鄕의 호구 수·세금 량·토지총수·옻나무 수 등의 항목이 田嗇夫·田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는 대부분 戶曹에서 회계 정리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비록 "田課志"에는 "髦園課"라는 항목 밖에 없지만, 이 역시 "戶曹計錄"의 "髦計"와 연관된다(다음 〈표 6〉 참조). 그렇다면 田部에서 縣廷으로 髦園에 관한 문서를 보고하고, 縣廷의 戶曹에서 "髦計"로 회계 정리하면, 縣廷은 이를 근거로 田部를 평가하기 위한 고과지(田課志)를 작성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戶曹計錄"의 항목들은 鄕部의 업무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 예컨대 "鄕課志"의 고과항목을 살펴보면, "黔首曆課"·"寡子計子課"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張家山漢簡 328~330簡에서 鄕部嗇夫가 戶籍조사에 참여했음을 감안하면,[64] 鄕嗇夫 및 휘하 吏가 戶

대해서는 필자도 王彦輝의 견해에 동의한다.

64) 張家山漢簡』二年律令·戶律, 328簡: "恒以八月令鄕部嗇夫·吏·令史相雜案戶籍, 副藏其廷." 여기서 令史도 함께 호적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令史가 縣廷에 정태적으로 머물러

籍을 조사하고, 그 고과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항목은 “戶曹計錄”의 “鄕戶計”와 대응된다(아래 〈표 6〉 참조). 따라서 鄕에서 戶籍을 조사하여 관련 문서를 縣廷에 보고하면, 縣廷의 戶曹에서 회계 정리하고, 縣廷은 이를 근거로 鄕을 평가하기 위한 고과지(鄕課志)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6〉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6> ‘××計錄’·‘××課志’를 통해 본 戶曹와 田嗇夫(田部)·鄕嗇夫(鄕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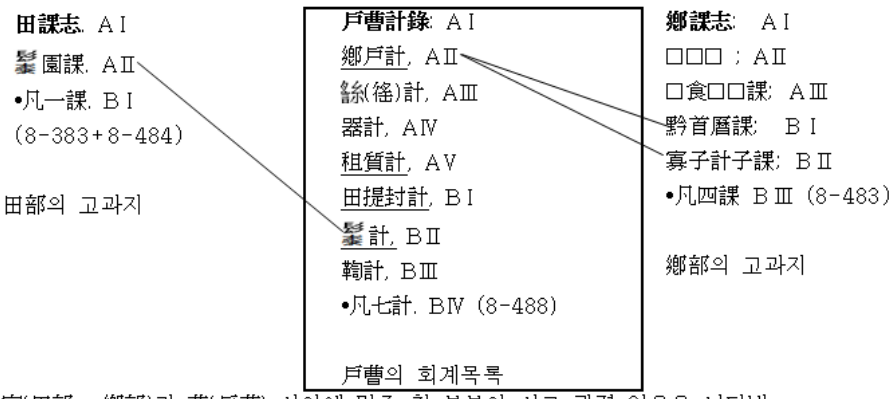


※官(田部·鄕部)과 曹(戶曹) 사이에 밑줄 친 부분이 서로 관련 있음을 나타냄.
※田嗇夫(田部)의 경우 ‘田課志’의 내용이 빈약하지만, 睡虎地秦簡·張家山漢簡·里耶秦簡에 근거해 ‘戶曹計錄’의 ‘鄕戶計’·‘租賃計’·‘田提封計’·‘髮計’가 업무 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Ⅳ. 縣의 재정운영과 曹

### 1. 少內의 재정운영

秦代 縣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官으로는 少內를 들 수 있다. 기존 문헌사료에서 少內는 금전을 주관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秦代 少內의 구체적인 행정계통과 설치상황은 알 수 없었다.[65] 이러한 상황에서 睡虎地秦簡을 통해 縣에도 少內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66] 그러나 중앙의 少府와 縣少內의 상관관계 및 少內의 행정 계통과 구체적인 업무를 둘러싸고 여전히 異見이 있다.[67] 따라서 縣少內의 재정운영을 살펴보고, 이를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鄕이나 官과 업무를 함께 처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65) 『周禮』天官塚宰·敍官의 “職內”에 대해 鄭玄의 注와 賈逵의 疏를 살펴보면, 少內가 화폐의 수입을 담당하며, 중앙의 帝室재정을 담당하는 少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周禮』(孫星衍 撰, 『周禮正義』, 中華書局, 1987)天官塚宰·敍官, p.41). 그 연장선에서 工藤元男은『漢書』丙吉傳을 분석하여, 漢代 중앙에 설치 된 少內는 少府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工藤元男, 「睡虎地秦墓竹簡に見える大內と少內 - 秦の少府の成立をめぐって - 」, 『史觀』 105冊, 1981, p.30).

66) 예컨대『睡虎地秦簡』法律答問 가운데 “‘府中公金錢私貸用之, 與同法.’? 可 (何) 謂 ‘府中’? 唯縣少內爲“府中”, 其它不爲.”에서 縣少內가 존재함을 확실히 알 수 있다.

曹의 일종인 金布와 연관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睡虎地秦簡을 통해 少內는 “府中”으로 불리고, 券을 매개로 배상금을 거두어들이며, 납입한 금전은 공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68] 또한 里耶秦簡에서는 少內가 券을 매개로 벌금 미납자를 조사하여 벌금을 받아내고자 한다.[69] 이를 통해 少內는 배상금이나 벌금으로 금전을 징수함을 알 수 있다. 8-152簡에서는 少內가 縣廷에서 하달한 御史의 문서를 토대로 의복의 가격을 보고하고자 하여,[70] 少內에서 의복의 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少內는 金錢뿐만 아니라 의복을 비롯한 특정 물품을 관리하고, 해당 물품의 가격 상황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少內가 특정 물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생산된 수공업 관련 물품(市工用)을 활용하는 장면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71] 그 외에도 다음 里耶秦簡의 내용을 통해 少內가 세금으로 징수한 재물도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⑩卅四年, 啓陵鄉見戶・當出戶賦者志: ◰ Ⅰ 見戶廿八戶, 當出繭十斤八兩. ◰ Ⅱ (8-518)
⑪繭六兩. 卅五年六月戊午朔丁卯, 少內守◰. (8-96)

---

67) 관련논문으로 楊寬,「從"少府"職掌看秦漢封建統治者的經濟特權」, 『秦漢史論叢』 第1輯,陝西人民出版社, 1981; 山田勝芳,「秦漢時代の大內と少內」, 『集刊東洋學』 57, 1987; 高敏,「秦代的經濟立法原則及其意義」, 『秦漢史探討』, 中州古籍出版社, 1998; 彭邦炯,「從出土秦簡再探秦內史與大內・少內和少府的關係與職掌」, 『考古與文物』, 1987年 第5期; 工藤元男, 「睡虎地秦墓竹簡に見える大內と少內-秦の少府の成立をめぐって -」, 『史觀』 105冊, 1981; 陳治國・張立瑩, 「從新出簡牘再探親漢的大內與少內」, 『江漢考古』 116期, 2010; 김진우, 「古代中國 皇帝權力의 '私'와 황제의 財庫-御府의 존재양태와 변화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硏究』 第27輯, 2012를 참조하였다.

68) 『睡虎地秦簡』法律答問, p.101: “‘府中公金錢私貣用之, 與同法.’? 可 (何) 謂 ‘府中’? 唯縣少內爲“府中”, 其它不爲.”;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p.39: “縣・都官坐效・計以負賞 (償) 者, 已論, 嗇夫卽以其直 (値) 錢分負其官長及冗吏, 而人與參辨券, 以效少內, 少內以收責之.其入贏者, 亦官與辨券, 入之. 其責 (債) 毋敢隃 (逾) 歲, 隃 (逾) 歲而弗入及不如令者, 皆以律論之. 金布”; 『睡虎地秦簡』封診式, p.154: “…(생략)…令少內某・佐某以市正賈 (價) 賈丙丞某前, 丙中人, 賈 (價) 若干錢.”

69)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43: “十二月戊寅, 都府守胥敢言之: 遷陵丞膻曰: 少內𠬜言冗 Ⅰ佐公士樊道西里亭貲三甲,爲錢四千卅二.自言家能入. Ⅱ 爲校□□□□□謁告樊道責. 有追, 追曰計廿八年□Ⅲ責亭妻胥亡. 胥亡曰 : 貧, 不能入.謁令亭居署所. 上眞書謁環. □□Ⅳ樊道受計. 樊道弗受計. 亭讞當論, 論. 敢言之. ◰Ⅴ (8-60+8-656+8-665+8-748) 十二月己卯, 樊道郃敢告遷陵丞主, 寫◰Ⅰ事, 敢告主. /冰手. / 六月庚辰, 遷陵丞昌告少內主, 以律令□◰Ⅱ手./ 六月庚辰水十一刻刻下六, 守府快行少內. ◰Ⅲ 六月乙亥水十一刻刻下二, 佐同以來/ 元手. Ⅳ (8-60背+8-656背+8-665背+8-748背)”

70)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92: “卅二年四月丙午朔甲寅, 少內守是敢言之: 廷下御史書擧事可爲恒程者・洞庭上裙(裙)直, 書到言. 今書已到. 敢言之. (8-152) 四月甲寅日中佐處以來. ノ欣發. 處手. (8-152背) ”

71) 이는『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242: “錢二千一百五十二. 卅五年六月戊午朔丙子, 少內沈受市工用段(假)少內唐. 瘳手. (8-888+8-936+8-2202).”에서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工用은 수공업제품 혹은 ‘工(물품을 만드는 작업)’을 위한 재료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86; 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엮음, 윤재석 옮김, 『睡虎地秦墓竹簡譯註』, 소명출판, 2010, p.517).

⑫繭六兩. 卅五年五月己丑朔甲□◿. (8-447)
⑬繭六兩. 卅五年六月戊午朔乙◿. (8-889)
⑭【繭十. 卅四年七月甲子朔己巳, 少內】□□□□□□◿Ⅰ 自受券. ◿Ⅱ (8-1353)

위 簡文 가운데 ⑪에서 ⑬까지 繭 六兩과 날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繭 六兩은 ⑩에서 매 戶당 납부해야 하는 '兩'의 수치와 일치한다는 점,[72] 簡에 쓰여 진 날짜가 5월·6월로 張家山漢簡 255簡에서 戶賦를 내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73]에 근거해서 ⑪~⑬은 戶賦납부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본 견해가 있다. 또한 ⑪⑭에서 少內가 등장하므로 少內가 戶賦징수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戶賦로 들어온 繭의 지출도 관장했다고 파악했다.[74] 이러한 견해는 繭 六兩이 기재된 簡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청할 만한 것으로 少內에서 戶賦징수를 관장했음을 시사한다. 그밖에 위 簡 중에 ⑩을 제외하고 모두 刻齒가 있어 이를 통해 少內에서 刻齒가 있는 券을 활용해 재물 출납업무를 보았음을 재차 알 수 있다.

## 2. 少內와 曹의 관계

里耶秦簡에 나타난 少內의 업무를 살펴 본 결과, 縣의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官으로서 그 운영 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少內가 曹의 일종인 金布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少內와 金布가 함께 나오는 簡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⑮四月丙午朔癸丑, 遷陵守丞인 色이 하달하였다; 少內에서 신중히 문서를 검토하고, 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회신함에, ⓐ(少內 내부의)金布에서 서명해서 발신하고 / ⓑ(少內가 회신한 문서는)'金布에서 맡아서 발신함'이라고 하고 / ⓒ(少內가 회신한 문서는)'金布에서 맡아서 開封함'이라고 하고, 이는 율령과 같이 한다. 欣이 초록함. 4月 癸丑 水十一刻 刻下五에 守府의 快가 少內로 가지로 감.(8-155)[75]

---

72) ⑩에서 28戶의 戶賦 총액은 繭 10斤 8兩이며, 兩으로 환산하면 모두 168兩(1斤에 16兩)이 된다. 이것을 28戶로 나누면 1戶에 6兩이 된다(鄔文玲, 「里耶秦簡所見 '戶賦' 及相關問題琐議」,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179).

73) 『張家山漢簡』二年律令·田律, 255簡: '卿以下, 五月戶出賦十六錢, 十月戶出芻一石, 足其縣用, 餘以入頃芻律入錢.'

74) 鄔文玲, 「里耶秦簡所見 '戶賦' 及相關問題琐議」,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2012, pp.179-180.

75)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四月丙午朔癸丑, 遷陵守丞色下: 少內謹案致之. 書到言, 署金布發, 它如Ⅰ律令/ 欣手/ 四月癸丑水十一刻刻下五, 守府快行少內.Ⅱ (8-155)"

⑮는 遷陵縣의 守丞인 ‘色’이 少內에게 命書를 하달하며 少內의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점은 “書到言, 署金布發”의 해석이다. “書到言”은 遷陵守丞의 하달한 문서에 대해 少內에서 회신하라는 뜻인데, 다음 “署金布發”과 관련해서 위 해석에 표시했듯이 크게 ⓐⓑⓒ로 의견이 나뉜다.[76] 다시 말해 ⓐ는 金布를 少內의 내부부서로 보고, ⓑⓒ는 少內와 金布를 각각 다른 기구로 보고 있다. 필자도 “署金布發”의 ‘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확답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曹가 縣廷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曹의 일종으로 판단되는 金布를 少內의 내부부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근거로 『里耶發掘報告書』의 9-1簡에서 9-12簡까지 簡文에 모두 “署金布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少內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金布가 少內의 내부부서라면 少內도 함께 등장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金布를 少內의 내부부서로 보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金布와 少內는 각각 曹와 官의 일종이자 서로 다른 행정기구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을 때 함께 등장할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견해에 따라 金布와 少內를 분리해서 보고, ‘署金布發’은 少內에서 회신한 문서를 縣廷의 ‘金布에서 맡아서 발신함(혹은 개봉함)’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위 簡文을 통해 縣廷과 少內사이 문서 왕래과정에서 金布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金布와 少內의 관계는 다음 簡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⑯**金布計錄**: ＡⅠ 庫兵計, ＡⅡ 車計, ＡⅢ 工用計, ＢⅠ工用器計, ＢⅡ 少內器計, ＢⅢ【金】錢計, ＣⅠ 凡六計 ＣⅡ (8-493)

> ⑰**課上金布副**. Ａ 黍課. ＡⅡ 作務. ＡⅢ 疇竹. ＡⅣ 池課. ＡⅤ 園栗. ＢⅠ 采鐵. ＢⅡ 市課. ＢⅢ 作務徒死亡. ＢⅣ 所不能自給二求輸. ＢⅤ 縣官有買用錢ノ鑄段. ＣⅠ 竹箭. ＣⅡ 水火所敗亡 / 園課. 采金. ＣⅢ 貲・贖・責(債)毋不收課. ＣⅣ (8-454)

위는 “金布計錄”・“課上金布副”라는 표제로 된 簡인데, 그 중 “金布計錄”은 각 항목을 회계 기록한 簡으로 曹의 특징을 드러낸다. 그리고 “金布計錄” 중에 “少內器”・“□錢”・“工用”・“工用器”는 少內의 업무와 연관되므로, 金布에서 少內의 업무를 일정부분 회계 처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官과 曹의 관계를 반영한다.

---

76) ⓐⓑⓒ의 내용은 각각 王彦輝, 「《里耶秦簡》(壹)所見秦代縣鄉機構設置問題蠡測」, 『古代文明』 6, 2012年 第4期, p.53; 藤田勝久, 『中國古代國家と社會システム-長江流域出土資料の研究』, 汲古書院, 2009, pp.195-227; 高村武幸, 「‘發(ひら)く’ と ‘發(おく)る’--簡牘の文書送付に關わる語句の理解と關連して」, 『古代文化』 60, 2009, p.115의 견해이다.

문제는 “課上金布副”의 용도인데, 文意 상으로는 어떤 곳에서 金布에게 심사 고과 항목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고과 항목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몇몇 官이 특정 고과항목과 관련된 장부의 副本을 縣廷의 金布에 보내고, 金布에서는 “課上金布副”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官이 縣廷에 고과와 관련된 문서를 보고하고, 이는 ‘××課志’ 형태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官에서는 고과 대상이 되는 항목 가운데 특정 항목에 관한 장부의 副本을 金布에 보내고, 金布에서는 副本을 정리하여 “課上金布副”라고 명명한 것이다. 또한 “課上金布副”의 각 항목에는 체크표시가 있는데, 이는 金布나 縣의 令·丞이 확인 점검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課上金布副”簡은 “金布計錄”簡과 용도가 다르다. 즉 金布는 曹로서 해당 官의 업무를 항목 별로 회계 정리하고(金布計錄), 특정 재물과 관련된 官의 고과 항목을 확인 점검도 한 것이다(課上金布副).

한편, 里耶秦簡의 9-1簡부터 9-12簡까지 내용을 보면 司空에서 벌금을 징수하고, 이 벌금은 金布에서 회계 처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77] 또한 "司空曹計錄"에도 속죄금이나 벌금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78] 이들 금전에 관한 회계 기록은 司空曹에서도 맡고 있다. 그렇다면 벌금을 징수하는 官은 司空과 少內가 맡았으며, 이렇게 징수한 금전은 縣廷의 金布와 司空曹에서 회계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金布는 여러 官의 재화나 금전에 관한 고과를 체크하고, 少內의 금전운영에도 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司空曹보다 금전의 회계처리 범위가 더 넓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Ⅴ. 맺음말

본고는 縣廷과 官을 분리해서 보는 견해에 입각하여 曹는 縣廷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曹의 令史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토지·재정운영을 담당하는 官과 曹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官의 업무를 살펴보면, 田官은 刑徒를 활용한 토지개간과 경작을 맡았고, 田嗇夫(田部)는 黔首田 관리를 비롯해 그와 관련된 농사 업무를 맡았으며, 少內는 벌금·배상금·호부 등을 징수해 공금으로 처리하는 한편 일부 재물의 가격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官의 업무는 倉曹·戶曹·司空曹·金布 등 관련 曹에 회계 기록되었다. 즉 官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이를 縣廷에 보고하면, 縣廷의 曹는 각 항목 별로 회계 정리한 것이다.

---

77) 『里耶發掘報告書』, pp.185-190.

78) 『里耶秦簡牘校釋』(第1卷), p.164: "司空曹計錄: ＡⅠ 船計, ＡⅡ 器計, ＡⅢ 贖計, ＢⅠ 貲責計, ＢⅡ 徒計, ＢⅢ 凡五計. ＣⅠ 史尙主. ＣⅡ (8-480)"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官에서 실무를 보기 위해서는 官내부의 회계 업무도 행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縣廷에서 따로 曹를 두어 官의 업무를 회계 정리한다면, 업무 상 중복이 된다. 그렇다면 회계 업무를 맡은 曹를 따로 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曹에서 해당 官이 처리한 회계 업무를 항목별로 재정리하고, 縣廷은 이를 바탕으로 官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삼음으로써 官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즉 각 曹의 令史를 중심으로 官의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官이 縣廷과 공간적으로 떨어져있어도 縣廷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秦代 曹조직이 縣廷내부 부서로서 官을 관리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으며, 각 官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밖에 중앙-郡-縣으로 이어지는 曹조직의 운영 양상, 회계 업무 이외의 曹의 업무, 漢代이후 曹와 官의 관계는 본고에서 고찰하지 못했으며, 차후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다.

# 前漢代 國外로 파견된 使者의 특징과 그 의미

김 지 은(서울대)

목 차

머리말
1. 官銜으로 본 國外파견 使者의 분포와 특성
2. 側近官의 對外 파견과 天子의 '外交'
3. 天子와 帝國 保衛의 구조
맺음말

## 머리말

일반적으로 皇帝는 丞相·御史大夫를 통해 詔令을 내려 해당 관리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1] 반면 使者의 파견은 皇帝가 정규 관료기구를 뛰어 넘어 특정한 개인 혹은 官吏에게 직접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번잡한 詔令의 전달 과정이 생략되어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할 경우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使者는 자국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皇帝를 대신하여 外國과 교섭하는 경우에도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출사지에 따라 '國外파견 使者'라 명명할 수 있겠다.

外交의 성패에 따라 일국의 존망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國外파견 使者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종래의 연구들도 대개 前漢代 國內에 파견된 使者보다는 國外로 파견된 使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보다 범위를 좁혀 國外파견 使者의 人選 방법 및 선발된 使者의 身分을 고찰한 연구,[2] 和親이나 대외 교역 등 國外파견 使者의 임무와 관련한 연구들도 있다.[3] 비교적 최근에는 國外파견 使者 일변도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

1) 漢代 詔令의 전달과정은 居延漢簡의 「元康五年詔書冊」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大史丞(定)→大常(蘇昌)→丞相(魏相)→御史大夫(丙吉)의 절차를 통해 상주문이 올라가면, 御史大夫는 이를 심사하여 皇帝에게 상주한다. 皇帝가 상주문을 인가하여, 詔令이 제작되면, 詔令은 御史大夫(丙吉)→丞相(魏相)→郡太守(張掖郡太守)→部都尉(肩水都尉)→候(肩水候)→尉·候長으로 하달된다(大庭脩, 第3篇 第2章 「居延出土の詔書冊」, 『秦漢法制史の研究』, 創文社, 1982, pp.235-245).

2) 黎虎, 「漢代外交使節的人選」, 『人文雜誌』, 2003-6; 「漢代外交使節的選拔」, 『蘭州大學學報』, 2002, 「漢代外交使團的組成」, 『中國文化研究』, 2004-1; 賈雪楓, 「漢使身分考」, 『文史雜誌』, 2002-6.

3) 張長明, 「試論西漢的漢匈關係及和親政策」, 『江淮論壇』, 1983-6, 翟宛華, 「論西漢與烏孫的和親」, 『

漢代 國內·外 使者의 구체적 업무를 고찰하고,[4]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시성을 지닌 使者에서 정식 行政官員으로 변모한 專職使者에 대해 서술한 연구도 있다.[5]

하지만 대개의 연구가 使者의 외형적 특성, 예컨대 使者업무의 일시성, 使命의 다양성 및 九卿 중 하나인 光祿勳의 屬官들이 가장 많이 파견되었다는 등 현상만을 설명할 뿐이다. 특히 使者의 身分 및 出仕 시 官職에 대해서는 특정 관직이 높은 비중을 점한 이유라든가 출사하게 된 근원적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단순한 분류와 파견빈도 수치만을 제시하는 단조로운 접근법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前漢代 國外파견 使者들의 업무와 官銜의 분석을 통한 외형적 특성을 토대로 출사하게 된 근원적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문헌사료를 기반으로 前漢代 國外파견 使者를 파견된 지역별로 분류하고, 使行시 그들의 업무와 官銜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이어서 측근 비서관이 出仕하게 된 이유를 天子 外交의 특성과 관련지어 살피겠다. 마지막으로 護衛官[武官]이 出使하게 된 원인을 천자의 保衛의 특수성과 및 天子의 內·外라는 인식과 연결시켜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분석이 前漢代 國外파견 使者의 出使 배경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속에 반영된 관념을 바탕으로 天下를 바라보는 皇帝와 天子의 시각을 살펴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1. 官銜으로 본 國外파견 使者의 분포와 특성

이 章에서는 前漢代 國外파견 使者를 재정리한 표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出仕 시 使者들의 官銜을 분석하고자 한다. 『史記』·『漢書』의 기록을 토대로 使者의 使行 목적 및 파견 시 官銜을 소속별로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國外파견 使者를 소속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光祿勳 소속(총 33건), (b) 太常 소속(총 1건), (c) 太僕 소속(총 2건), (d) 少府 소속(총 2건), (e) 衛尉 소속(총 4건), (f) 八校尉 소속(총 1건)이다. 이 중 (a)의 大夫와 謁者를 비롯하여, (d)의 謁者令과 宦官이 대체로 행정실무와 거리가 먼 황제의 측근 비서·고문들임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b)의 博士는 국가 祭祀를 관장하는 太常의 屬官이지만, 실제 역할은 국가에 疑事가 있을 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6] 역시 顧問官의 의미를 갖춘 관직이다. 또한 (c)의 太僕도 皇帝의

---

西北史地』, 1985-4, 李成珪, 「漢帝國 中央 武庫 收藏目錄의 발견-尹灣漢簡<武庫永始四年兵車器集簿>의 正體-」, 『歷史學報』 170, 2001, 김병준, 「敦煌 懸泉置漢簡에 보이는 漢代 변경무역-삼한과 낙랑군의 교역과 관련하여-」, 『한국 출토 외래유물 초기철기~삼국시대』, 2011.

4) 김은아, 「漢代 使者의 역할과 그 변화」, 西江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9.

5) 廖伯源, 『使者與官制演變-秦漢皇帝使者考論-』, 文津出版社, 2006.

6) 『後漢書』 第25 「百官」2 太常條, p.3572, "博士十四人, 比六百石. 本注曰: … 掌教弟子. 國有疑事, 掌承問對."

마부 격으로, 항상 君主의 측근에 있으며 때에 따라 皇帝를 위해 직접 수레를 御車하기 때문에,[7] 일반 行政職이라기보다는 실제 家臣의 성격이 강하다. 즉, 소속별 분류에서는 (e)의 衛尉와 (f)의 八校尉를 제외하고는 일반 行政과는 비교적 거리가 먼 皇帝의 측근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측근을 파견 원인은 本職의 특성상 황제와 개인적 친분을 형성하기 용기하며, 이를 바탕으로 皇帝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8]

그런데 國家라는 공식창구가 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외교교섭을 위해 전문적인 외교관을 파견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오늘날의 외교특성을 생각하면, 정규 관료제 안에서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四方蠻夷의 朝貢 및 侍子를 관장한 大鴻臚 및 그 屬官 대신 皇帝의 측근관이 使者로 파견된 현상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이 문제는 <표 1>에서 소속상 불확실에 포함된 建信侯가 2차례 使者로 파견된 것과 상술한 측근 중 大夫가 少府 소속의 太官에서 규정된 녹봉 이외 일상 食餌를 공급받았다는[9] 것과도 관련이 있다.

建信侯는 漢高祖 劉邦이 劉敬을 20等爵制 중 19等級에 해당하는 關內侯에 봉한 후 하사한 號로,[10] 劉敬은 公的인 官制가 아닌 禮的체계인 爵制에 편제된 인물이다. 또한 皇帝가 帝室財政으로 일반 民이나 官僚에게 賞賜할 경우, 이는 受賜者의 감읍과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爵의 원리에 의한 禮的인 정치형식으로 간주한다.[11] 따라서 大夫에게 제공된 음식이 國家財政이 아닌 帝室財政에서 지출된 것이라면, 역시 爵的인 질서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爵은 후술할 皇帝의 복합성격 중 天子와 관련 있는 것으로, 측근 역시 단순한 皇帝의 측근이 아닌 天子의 측근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하며, 國外파견 使者 중 大鴻臚 출신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역시 이와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

7) 『漢書』 卷41 「夏侯嬰傳」, p.2079, "嬰自上初起沛, 常爲太僕從, 竟高祖崩."; 同書 卷46 「石慶傳」, p.2197, "慶爲太僕, 御出, 上問車中幾馬, 慶以策數馬畢, 擧手曰:「六馬.」"

8) 崔麗芳, 「西漢使匈奴、西域使者研究」, 蘭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李大龍, 「西漢派往西域的使者述論」, 『民族研究』, 1990-6; 王慶憲, 「匈奴與西域頻繁密切的使節往來」, 『中央民族大學學報』, 2005-1); 黎虎, 「漢代外交使節的人選」, 『人文雜誌』, 2003-6; 김은아, 「漢代 使者의 역할과 그 변화」, 西江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9.

9) 『漢書』 卷72 「貢禹傳」, p.3073, "禹上書曰:「臣禹年老貧窮, 家訾不滿萬錢, 妻子穅豆不贍, 裋褐不完. 有田百三十畝, 陛下過意徵臣, 臣賣田百畝以供車馬. 至, 拜爲諫大夫, 秩八百石, 奉錢月九千二百. 廩食太官, 又蒙賞賜四時雜繒緜絮衣服酒肉諸果物, 德厚甚深."

10) 『史記』 卷99 「劉敬列傳」, p.2718, "高帝至廣武, 赦敬, 曰:「吾不用公言, 以困平城. 吾皆已斬前使十輩言可擊者矣.」迺封敬二千戶, 爲關內侯, 號爲建信侯."

11) 李成珪, 「中國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洋史學會 編, 『東亞史上의 王權』, 도서출판 한울, 1993, pp.29-30.

<표 1> 國外로 파견된 使者의 官銜 및 業務[12)]

| 時期 | 所屬 | 불확실 | | | | | | | 將軍 | 右將軍 | 光祿勳 | | | | | | | | | | 太常 | 太僕 | | 少府 | | 衛尉 | | | 八校尉 |
|---|---|---|---|---|---|---|---|---|---|---|---|---|---|---|---|---|---|---|---|---|---|---|---|---|---|---|---|---|---|
| | | | | | | | | | | | 大夫 | | | 謁者 | | 郎 | | | | | | | | | | | | | |
| | 職銜 / 業務 | 使者 | 建信侯 | 二千石官 | 車騎都尉 | 副候 | 副校尉 | 關都尉 | 軍候 | 長史 | 中大夫 | 太中大夫 | 光祿大夫 | 大謁者 | 謁者 | 中郎將 | 郎中將 | 侍郎 | 期門 | 郎 | 博士 | 平樂監 | 駿馬監 | 謁者令 | 官官 | 長樂衛尉 | 衛司馬 | 衛候 | 長水校尉 |
| 高祖 | 和親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惠帝 | 書信교환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文帝 | 使+□□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責問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和親 | | | | | | | | | | 1 | | | | | | | | | | | | | 1 | 1 | | | | |
| 武帝 | 求天馬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길 개통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內附권유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使+□□ | 2 | | | | | | | | | | | | | 1 | | | | | 1 | 1 | | | | | | | | |
| | 使臣迎送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質賜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전달 | 2 | | | | | | | | | | | | | | | 1 | | | 1 | | | | | | | | | |
| | 유해호송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세관찰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弔問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和親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昭帝 | 참살 | | | | | | | | | | | | | | | | | | | | | 1 | 1 | | | | | | |
| 宣帝 | 單于호송 | | | | 1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使臣迎送 | | | | | | | | | | | | | | 1 | | | | 1 | | | | | | | | | | |
| | 質賜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視察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유지전달 | 1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質子호송 | 1 | | | | 1 | | | | | | | | | | | | | | | | | | | | 1 | | | |
| | 冊封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和親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元帝 | 使+□□ | | | | | | 2 | | 1 | | | | | | | 2 | | | | | | | | | | | | | |
| | 使臣迎送 | | | | 1 | | | 1 | | | | | 1 | | | | | | | | | | | | | | | | |
| | 質子호송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成帝 | 單于호송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使+□□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使臣迎送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전달 | | | | | | 2 | | | | | | | | | 2 | | | | | | | | | | | | | |
| | 弔問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참살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冊封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화해주선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哀帝 | 單于호송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使+□□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유지전달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平帝 | 使臣迎送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유지전달 | | | | | | 2 | | | | | | | | 1 | 2 | | | | | | | | | | | | | 1 |
| 총 계 | | 19 | 2 | 1 | 2 | 1 | 6 | 1 | 1 | 1 | 4 | 1 | 2 | 1 | 3 | 16 | 2 | 1 | 1 | 2 | 1 | 1 | 1 | 1 | 1 | 1 | 2 | 1 | 1 |
| | | 32 | | | | | | | 1 | 1 | 7 | | | 4 | | 22 | | | | | 1 | 2 | | 2 | | 4 | | | 1 |
| | | 32 | | | | | | | 1 | 1 | 33 | | | | | | | | | | 1 | 2 | | 2 | | 4 | | | 1 |

12) <표 1>에서 '使者(19건)'·'二千石官(1건)'은 使者의 官名과 그 所屬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車騎都尉(2건)'·'副候(1건)'·'副校尉(6건)'·'關都尉(1건)'는 官名은 분명하지만, 소속은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들을 소속 불확실로 묶어서 처리했음을 미리 밝힌다. 이 밖에 '軍候(1건)'·'右將軍長史(1건)'은 將軍의 소속임은 분명하나, 漢代의 將軍은 中朝官으로서 屬官이 없는 將軍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軍候와 右將軍長史의 상관이 누구이며, 이들이 어디서 파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료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어 본고에서는 이를 보류하도록 하겠다.

한편 國外파견 使者 중 측근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례가 武官이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다. 이 점은 國內파견 使者로 武官 출신이 드문 현상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13] 武官의 官銜이 산견되는 특성은 外交사단의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前漢 외교사단의 핵심인 正使와 副使의 조합은 正使와 副使는 모두 武官이거나 혹은 正使나 副使 중 최소 한명은 반드시 武官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14]

이렇게 武官職의 出使 배경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첫째, 匈奴와 西域 문화권은 '多武少文'함이 특징이며, 둘째, 外交규범의 준수·이행 등에 있어 漢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파견되며, 또한 外交 시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武'的인 요소가 요구되며, 셋째, 지역적으로 멀고 험한 곳에 파견되기 때문에 신체가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이 적합하기 때문이라는[15] 武官의 실질적인 기능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使行의 목적과 官銜을 관련지어 살펴보면, 실질적 기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出仕의 목적은 和親, 使臣영송, 諭旨전달, 弔問, 單于 및 質子호송, 冊封 등 실로 다양한데,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중 漢朝는 漢의 使節 및 外國에서 온 使臣과 單于·質子의 迎送 관련 업무에 使者를 가장 많이 파견하였다. 이 업무에는 中郎將을 비롯한 衛尉 소속의 衛司馬나 中尉 및 郡國의 車士를 관장한 車騎都尉가 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諸國과 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략질의 피해로부터 外國의 使臣을 보호하고,[16] 客의 호송을 끝내고 귀환하면서 그 나라에 체류하던 漢의 使者를 호송해 온다는 것에서 본래의 직장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武官은 또한 賞賜나 弔問 등 본래의 직무와 파견된 업무 간 특별한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파견되기도 한다. 제 상황을 종합하면, 武官職의 출사 배경은 使臣의 護送이나 전쟁의 목적 뿐 아니라 아닌 다른 의미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前漢代 國外로 파견된 使者의 출신으로 天子의 측근관이 및 武官 출신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과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이 파견된 원인이 本職의 기능적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國外파견 使者로서 外事를 담당한 국가의 공식기관인 大鴻臚의 소속 대신 天子의 측근관이 파견된 근본적인 원인을 '天子'와 '皇帝'의 복합으로 설정된 皇帝

13) 前漢代 武官 출신의 國內파견 使者로는 河堤의 修築 등 治水를 위해 파견되었던 校尉와 騎都尉의 사례들이 있다.

14) 黎虎, 「漢代外交使團的組成」, 『中國文化硏究』, 2004-1.

15) 黎虎, 「漢代外交使節的人選」, 『人文雜誌』, 2003-6, pp.103-104.

16) 『漢書』 卷96上 「西域傳」上, p.3886, "凡遣使送客者, 欲爲防護寇害也."

의 성격 및 官·爵과 公·私의 개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側近官의 對外 파견과 天子의 '外交'

中國에서는 皇帝지배체제가 시작된 秦제국의 성립부터 마지막 왕조인 淸朝가 붕괴될 때까지 약 2,000여 년간 '皇帝'라는 칭호와 함께 또 하나의 공식 명호로서 '天子'가 병용되었다. 그렇다면 皇帝와 天子의 칭호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春秋繁露』와 『白虎通』에서 정의한 '황제'와 '천자'의 개념을 살펴보자.

『春秋繁露』에서 '황제'는 賢德에 의해, '천자'는 현덕에 상응한 天의 승인에 의해 각각 부여된 호칭으로 설명한다.[17] 여기서 '天子'는 天의 권위를 매개로 德이 뛰어난 인간 '皇帝'에게 신성성을 부회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白虎通』에서는 '天子'를 天이 사여한 爵으로 규정한다.[18] 『白虎通』의 해석을 『春秋繁露』에서 언급한 '황제'와 '천자'의 개념과 결부시켜 보면, 爵 '天子'는 德이 天地에 짝하는 皇帝의 功을 매개로 사여된 지위에 불과하다. 환언하자면, 天子란 皇帝에 부수된 爵에 불과할 뿐 실제 皇帝가 될 수 있는 요건은 德이며, 이 때문에 皇帝는 臣下를 호령하는 職事를 가질 수 있었기에 '皇帝'는 官的 속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官의 원리는 공공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정된 만큼 公的 성격을 갖고 있으며, 皇帝나 官僚의 私를 제약하는 명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皇帝나 官僚가 온전히 그들의 私的 욕구를 포기할 수는 없을 터, 관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신 모두의 私를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했다. 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이 爵制로, 결국 皇帝에 부수된 爵 天子는 私的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19]

한편 古代 中國人에게 外交란 군주의 독점적 권능에 속하는 분야로, '臣下는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없다(人臣無外交)'고 인식되었다.[20] 예컨대, 국가마다 외교활동이 활발하던 戰國時代에 有功者 또는 賢才를 예우하는 爵인 卿·大夫는 특정한 관직을 겸하지 않고 君主의 자문이나 정책의 입안 및 심의에 참여했고, 私人인 公子 역시 '父兄'이라는 신분 때문에 和戰과 영토 할양 등의 중대 국사에 참여했던 것은 모두 人臣無外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 하겠다.[21] 즉, 전통적으로 외교를 皇帝 개인의 업무라 인식한 것은 분명한데,

---

17) 『春秋繁露』(蘇輿 撰 · 鍾哲 點校, 『春秋繁露義證』, 中華書局, 1992) 「三代改制質文」2, p.201, "明此通天地、陰陽、四時、日月、星辰、山川、人倫, 德侔天地者, 稱皇帝, 天佑而子之, 號稱天子."

18) 『白虎通』 卷1 「爵」, pp.1-2, "天子者, 爵稱也. 爵所以稱天子何? 天子父天母地, 爲天之子也."

19) 李成珪, 「中國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洋史學會 編, 『東亞史上의 王權』, 도서출판 한울, 1993, pp.10-41.

20) 『禮記』(李學勤 主編, 『禮記正義』(十三經注疏 標點本), 北京大學出版社, 1999, 이하 『禮記』로 略稱) 卷25 「交特性」, p.780,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

그렇다면 과연 상술한 皇帝와 天子라는 황제의 복합적 성격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 일견 외교가 황제 개인의 업무로 私的인 성격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天子의 업무에 속한다고 단순히 치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大鴻臚에서 공식적으로 外事를 처리했던 것을 상기하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後漢書』「百官」2의 大鴻臚 기사는 大鴻臚의 구체적인 職掌 및 屬官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大鴻臚의 업무는 입조한 諸侯王·列侯·歸義蠻夷 및 君國의 上計吏를 접대하는 것으로[22] 활동영역이 帝國의 내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大鴻臚의 官名에서 鴻臚를 '腹臚가 骨幹을 보호하듯 王侯 및 藩國으로 京師를 보호한다'고 설명한 것을 상기하면, 大鴻臚의 직장의 대상 및 업무영역의 범위가 國內에 한정된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23] 이것은 前章에서 살펴본 것처럼, 國外파견 使者의 官銜 중 行人을 포함한 기타 大鴻臚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漢帝國의 영역 內에서는 공식기관인 官[大鴻臚]이 外事를 처리했고, 帝國의 밖에서 처리해야 할 外事에 대해서는 私에 해당하는 측근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외교는 비록 皇帝의 개인 업무이지만, 제국 內에서는 皇帝의 자격으로 공식기관인 官을 통해, 제국 外의 일은 天子의 자격으로 자신의 私를 통해 관할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前章에서 확인한 國外로 파견된 使者로서 측근은 엄밀히 말하자면 皇帝의 측근이 아닌 天子의 측근이라 표현해야 정확하다.

그렇다면 帝國 內·外의 外事를 전담하는 관료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帝國 內의 업무는 官[皇帝]이, 外의 업무는 측근인 私[天子]가 담당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皇帝 6璽制度가 단서가 될 것 같다. 秦代 이후 中國의 皇帝는 '皇帝行璽', '皇帝之璽', '皇帝信璽', '天子行璽', '天子之璽', '天子信璽'라 적힌 6璽를 정무에 사용하였다. 6璽의 각 쓰임에 대한 초기 기록은 後漢代 衛宏의 『漢官舊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皇帝의 6璽 중 '皇帝'라는 2字가 적힌 璽는 국내의 정무에 사용되고, '天子'라는 2字가 적힌 璽는 책봉관계에 있는 외국관계 업무 및 귀신 제사에 각각 사용되었다.[24] 즉, 皇帝 6璽의 원칙

---

21) 李成珪, 「戰國時代 秦의 外交政策」,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硏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Ⅱ, 지식산업사, 1995, pp.80-81.

22) 『後漢書』 志25 「百官」2 大鴻臚條, pp.3583-3584, "大鴻臚, 卿一人, 中二千石. 本注曰 : 掌諸侯及四方歸義蠻夷. 其郊廟行禮, 贊導, 請行事, 旣可, 以命群司. 諸王入朝, 當郊迎, 典其禮儀. 及郡國上計, 匡四方來, 亦屬焉. 皇子拜王, 贊授印綬. 及拜諸侯、諸侯嗣子及四方夷狄封者, 臺下鴻臚召拜之. 王薨則使弔之, 及拜王嗣. 丞一人, 比千石. 大行令一人, 六百石. 本注曰 : 主諸郎. 丞一人. 治禮郎四十七人. 右屬大鴻臚. 本注曰 : 承秦有典屬國, 別主四方夷狄朝貢侍子, 成帝時省並大鴻臚. 中興省驛官、別火二令、丞, 及郡邸長、丞, 但令郎治郡邸."

23) 『史記』 卷11 「孝景本紀」 中6年(B.C. 144) 3月條 注引 『索隱』, p.446, "鴻, 聲也. 臚, 附皮. 以言其掌四夷賓客, 若皮臚之在外附於身也."; 『藝文類聚』(歐陽詢 撰·汪紹楹 校, 上海古籍出版社, 1982(1985重印)) 卷49 「職官部」5 鴻臚, p.884, "腹前肥者曰臚, 此主王侯及蕃國, 言以京師爲心體, 王侯外國爲腹臚, 以養之也."

에 따르면 漢의 皇帝는 국내정무는 皇帝[官·公]로서, 대외관련 정무는 天子[爵·私]로서 처리했던 것이다.

이렇듯 皇帝와 天子가 국내외 정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는 원칙이 성립된 원인은 鄭玄이 『禮記』에 "지금 漢은 蠻夷에 있어서 天子라 칭하고, 王侯에 있어서 皇帝라 칭한다"고 注記한 것에서[25]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夷狄과의 관계를 皇帝가 아닌 天子의 범주에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皇帝'의 칭호는 秦始皇이 천하통일이라는 미증유의 위업을 달성한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이 도달하는 범위는 郡縣制가 시행되는 지역에 국한된다. 즉, 다분히 중국적인 칭호로 제국 밖의 異民族에게는 皇帝의 의미보다 종래 王과 함께 君主의 칭호로 사용되던 '天子'가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한 '天子'는 皇帝에 비해 더 원시성이 있으며, 통치권한도 이념상으로 天下에 미치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夷를 포함한 지역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匈奴가 자신들의 單于를 天을 의미하는 텡그리(撐犁: tengri)와 子를 의미하는 코토(孤塗: koto)를 결합하여 '撐犁孤塗單于'라 부른 것에서도[26] 알 수 있듯이, '天子'는 夷狄과도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夷狄과의 관계를 天子의 범주에서 인식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前元元年(B.C. 179) 文帝가 南越王 趙佗와 주고받은 書信에서 文帝는 스스로를 皇帝라 하고, 趙佗 역시 文帝를 皇帝라 호칭하는[27] 등 外國의 王과 주고받은 여러 書信에서 趙佗의 사례와 동일한 현상들이 보인다. 皇帝 6璽제도에 따르면, 황제는 南越王에 대해 天子의 칭호를 사용해야 하나 皇帝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보면, 일견 국내정무에는 皇帝璽를, 대외관련 정무에는 天子璽를 사용한다는 皇帝 6璽制度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史記』「南越列傳」의 구성을 보면, 제국內는 皇帝가, 밖은 天子가 관할한다는 6璽制度의 원칙이 오히려 고수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史記』「南越列傳」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漢의 南越 침공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①南越은 혈연적·영역적으로 漢에 귀속된다는 입장

---

24) 『漢官舊儀』(衛宏 撰 · [淸]孫星衍 校集 · 周天游 點校, 『漢官六種』, 中華書局, 1990) 卷上, pp.30-31, "皇帝六璽, 皆白玉螭虎紐, 文曰「皇帝行璽」、「皇帝之璽」、「皇帝信璽」、「天子行璽」、「天子之璽」、「天子信璽」, 凡六璽. 皇帝行璽, 凡封 按: 此句有脫字, 應云「凡封命用之」. 之璽, 按: 此句應云「皇帝之璽」. 賜諸侯王書; 信璽, 按: 此句應云「皇帝信璽」. 發兵; 其徵大臣, 以天子行璽; 策拜外國事, 以天子之璽; 事天地鬼神, 以天子信璽."

25) 『禮記』 卷4 「曲禮」下 鄭玄注, p.122, "今漢於蠻夷稱天子, 於王侯稱皇帝."

26) 『漢書』 卷94上 「匈奴傳」, p.3751, "單于姓攣鞮氏, 其國稱之曰「撐犁孤塗單于」. 匈奴謂天爲「撐犁」, 謂子爲「孤塗」, 單于者, 廣大之貌也, 言其象天單于然也."

27) 『漢書』 卷95 「兩粵傳」, p.3849, "上召賈爲太中大夫, 謁者一人爲副使, 賜佗書曰: 「皇帝謹問南粵王, 甚苦心勞意.」"; 同書 卷95 「兩粵傳」, p.3851, "因爲書稱: 「蠻夷大長老夫臣佗昧死再拜上書皇帝陛下.」"

을 천명하고, ②비록 이들이 秦末漢初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이반하였지만, ③漢은 ①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들에게 外臣의 지위를 인정해 주었는데, ④外臣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⑤침공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식의 서술이다.[28] 즉, 漢에게 南越은 영토상으로 帝國의 밖에 위치하지만, 원래부터 漢의 영역으로 夷狄이 아닌 外臣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文帝는 書信에서 天子가 아닌 皇帝의 칭호를 썼던 것이다. 따라서 漢代 人들에게 帝國의 內는 皇帝가, 밖은 天子가 관할한다는 것은 상용되는 관념이자 실제 통용되는 원칙이었다고 이해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國外로 파견된 使者로서 측근이 파견된 원인을 皇帝라는 대상에 내포된 '皇帝'와 '天子'의 복합적 성격에 근거하여 고찰해보았다. '황제'는 臣下를 호령하는 職事를 가지기에 公的인 官의 속성을 대표한 반면, '천자'는 기득권의 私的 욕구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원리인 爵의 속성을 대표한다. 이 점에서 1장에서 고찰한 國外파견 使者로서 측근은 황제의 측근이 아닌 천자의 측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天子의 측근이 使者로 파견되었던 까닭은 국내정무는 皇帝[官·公]로서, 대외관련 정무는 天子[爵·私]로서 처리한다는 皇帝 6璽제도의 원칙에 입각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國外파견 使者의 또 다른 특징으로 설명되는 武官이 使者로서 파견된 원인을 역시 天子와 관련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3. 天子와 帝國 保衛의 구조

漢代 宮殿의 경비는 郎官을 통솔하는 光祿勳이, 그 바깥에 위치하는 宮城의 경비는 衛士를 통솔하는 衛尉가, 首都 長安의 경비는 八校尉와 中尉가[29] 담당하였다.[30] 즉, 長安의 경비구역을 皇帝를 중심으로 同心圓의 형태로 설정한다면, 郎官은 바로 가장 內側에서 皇帝를 보위하며, 점차 衛尉·中尉(八校尉)라는 3중 체계로 방위체제가 넓어진다.[31] 그런데 바로 宮殿에서 수도 長安의 경비를 담당한 光祿勳·衛尉·中尉(八校尉)의 官이 國外파

---

28) 김병준,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pp.8~18.

29)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上, p.732, "中尉, 秦官, 掌徼循京師, 有兩丞、候、司馬、千人.";

30) 八校尉의 경비영역이 中尉와 중복될 뿐 아니라, 八校尉 중 하나인 中壘校尉가 본래 中尉의 屬官이었던 것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둘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31) 皇帝를 중심으로 한 光祿勳-衛尉-中尉라는 京師의 3중 保衛체제는(朱紹侯, 「略論秦漢中央三級保衛制」, 『南都學壇(社會科學版)』, 1989-4; 張金龍, 第2章 「漢代禁衛武官制度概說」, 『魏晉南北朝禁衛武官制度研究』上冊, 中華書局, 2004.) 외에 少府를 포함시켜 少府-光祿勳-衛尉-中尉의 4중 守衛체제로 보기도 한다(楊鴻年, 「宮衛制度」, 『漢魏制度叢考』, 武漢大學出版社, 2005; 廖伯源, 「西漢皇宮宿衛警備雜考」, 『歷史與制度-漢代政治制度試釋-』, 臺灣商務印書館, 1998.)

견 使者 중 武官들의 소속과 일치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사실 '宮(光祿勳)-宮城(衛尉)-京師(中尉·八校尉)'로 구성되는 수비조직체계 내에서 핵심이 皇帝의 保衛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皇帝의 측근에서 신변을 보호해야 할 護衛官 중 일부는 外國에 使者로 파견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夷狄과 관련한 出征에 참여하기도 했다.[32] 그렇다면 皇帝의 신변에 책임이 있는 친위대가 本職과 무관해 보이는 使者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황제가 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邊境까지 가서 수만 명이 동원되는 戰爭에 참여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 역시 前章에 이어 天子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殷代의 甲骨文과 『尙書』에서 '天子'는 天下의 '余一人(천하에 오직 나 한사람)'으로 표현된다.[33] 周代의 金文에서도 天子는 天下의 모든 것을 자기 한 몸에 膺受한[34] 천하의 유일한 대표자이자 천하가 가장 축약된 형태(天子=天下)이기 때문에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과[35] 같이 皇帝의 초월적인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적인 상투어도 등장하게 된 것 같다. 그런데 天命을 받은 유일한 대표자이자 天下를 膺受한 존재인 天子의 天下는 이념상으로는 문자 상의 '普天之下'이거나 '普天之下'의 구조에 夷狄의 세계를 투영시킨 '中國+四夷(國)'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皇帝의 지배영역 중 가장 외연에 위치한 邊郡까지의 공간인 帝國으로서의 中國의 天下(中國=天下)이다. 즉, 天下가 가장 축약된 형태인 天子(우주의 軸)와 受命天子의 실질적 지배가 관철되는 통치공간으로서 가장 확대된 天下인 中國은 상호 동질성을 띄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天子=中國'이라는 역설의 동질성은 天子의 측근에서 호위하는 武官들이 邊境과 外國으로 파견되어 出征과 出使에 참여하게 되는 원리를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天子와 中國의 등치개념을 따르면, 논리상 帝國의 수비를 담당한 모든 武官이

---

32) 『漢書』 卷95 「西南夷列傳」, p.3841, "及至南粵反, 上使馳義侯因犍爲發南夷兵. 且蘭君恐遠行, 旁國虜其老弱, 乃與其衆反, 殺使者及犍爲太守. 漢乃發巴蜀罪人當擊南粵者八校尉擊之. 會越已破, 漢八校尉不下, 中郎將郭昌、衛廣引兵還, 行誅隔滇道者且蘭, 斬首數萬, 遂平南夷爲牂柯郡."; 同書 卷6 「武帝紀」 元狩2年(B.C. 121) 夏條, p.176, "匈奴入鴈門, 殺略數百人. 遣衛尉張騫、郎中令李廣皆出右北平. 廣殺匈奴三千餘人, 盡亡其軍四千人, 獨身脫還, 及公孫敖、張騫皆後期, 當斬, 贖爲庶人." 이외 다수의 사례들이 있다.

33) 『尙書』(李學勤 主編, 『尙書正義』(十三經注疏 標點本), 北京大學出版社, 1999) 卷11 「泰誓」下, pp.279-280, "王曰: 嗚呼! 我西土君子, 天有顯道, 厥類惟彰. 今商王受, 狎侮五常, 荒怠弗敬. 自絶于天, 結怨于民. 斲朝涉之脛, 剖賢人之心, 作威殺戮, 毒痡四海. 崇信姦回, 放黜師保, 屛棄典刑, 囚奴正士, 郊社不修, 宗廟不享, 作奇技淫巧以悅婦人. 上帝弗順, 祝降時喪. 爾其孜孜, 奉予一人, 恭行天罰."; 胡厚宣, 「中國奴隸社會最高統治者的稱號問題」, 尹達 主編, 『紀念顧頡剛學術論文集』上, 巴蜀書社, 1990, pp.147-152참조.

34) 毛公鼎에는 "丕顯文、武, 皇天引厭闕德, 配我有周, 膺受大命, 率懷不廷方, 亡不閈于文、武耿光.(밑줄은 필자)"라고 나와 있다(銘文은 王輝 編, 『商周金文』, 文物出版社, 2006, p.259 참조).

35) 『詩經』(李學勤 主編, 『毛詩正義』(十三經注疏 標點本), 北京大學出版社, 1999) 卷13 「小雅」 北山, p.797,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皇帝의 保衛에 책임이 있게 되고 유사시 出征이나 出使가 가능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실제 邊境과 外國으로 出征·出仕한 武官은 1장에서 확인했듯이 光祿勳·衛尉·中尉(八校尉)라는 중앙관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 이들 官의 업무영역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추측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前漢代 光祿勳은 宮殿掖門戶의 경비를 담당하는 官으로,[36] 宮中의 구획 중 하나로 門閤에는 禁이 있어 侍御하는 자 이외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37] 禁中과 직결되는 掖門을 수비한다. 衛尉는 宮城의 수비를 담당한 官으로, 주된 업무는 宮闕門 內를 호위하는 것이며, 역시 宮闕門에서 宮闕 출입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출입을 허가하는 통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38] 마지막으로 中尉(八校尉)는 帝國의 수도인 京師의 治安을 담당한 官이다.[39] 즉, 光祿勳은 황제의 私的 공간인 禁中의 內를, 衛尉는 황제가 거처하는 집인 宮闕의 內를, 中尉는 제국의 內에 해당하는 皇帝의 직할지를 수비했던 것에서 모두 內이자 私的 영역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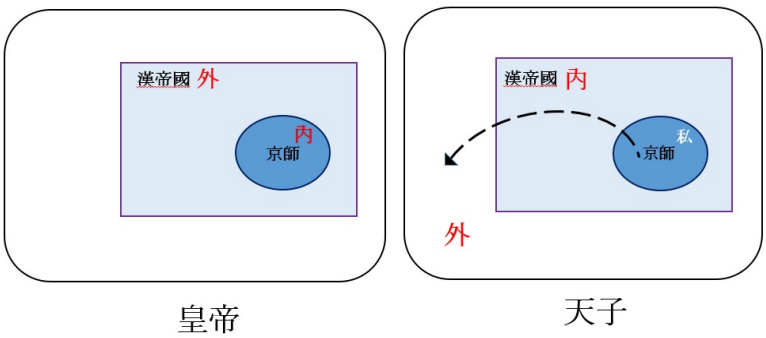


<그림 1> 皇帝와 天子의 內·外

그런데 2장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官' 皇帝와 '爵' 天子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와 천자가 內·外를 보는 관념 역시 다를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예컨대 황제의 칭호는 郡縣制가 시행되는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皇帝의 天下는 帝國 밖 夷狄의 세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즉, 皇帝에게 직할지인 京師가 內이며, 제국이 外에 해당한다. 반면, 천자의 천하는 이념상 夷狄의 세계를 투영시킨 '中國+四夷

36)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上, p.727, "郎中令, 秦官, 掌宮殿掖門戶, 有丞. 武帝太初元年更名光祿勳."
37) 『漢書』 卷7 「昭帝紀」 注引 伏儼曰, p.217, "蔡邕云本爲禁中, 門閤有禁, 非侍御之臣不得妄入. 行道豹尾中亦爲禁中. 孝元皇后父名禁, 避之, 故曰省中."
38) 安作璋·熊鐵基, 第2章 「諸卿」, 『秦漢官制史稿』 上冊, 齊魯書社, 1984, pp.192-130.
39)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 中尉條, p.732, "中尉, 秦官, 掌徼循京師."

(國)'에 해당하기 때문에, 帝國이 內이며, 帝國 밖 夷狄의 세계에 外에 해당한다. 따라서 皇帝가 '황제'로서 자신을 지킬 때에는 자신의 內에 해당하는 京師를 수호하면 되지만, '천자'로서 자신을 지킬 때에는 帝國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天子로서 帝國을 지킬 때는 관할 직무의 범위상 內에 해당할 뿐 아니라 私的인 영역을 수비한 光祿勳·衛尉·中尉(八校尉)를 출정시켰던 것이며, 外交 역시도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분야이자 천자가 관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역시 이들 官이 파견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漢의 皇帝는 帝國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外國과 교섭할 때 외교관으로서 使者를 파견하였다. 使者는 本職과는 별도로 파견자를 대신하여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임시직인데, 주로 皇帝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측근 비서관 및 황제의 측근 경호를 담당한 護衛官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外交는 '人臣無外交', 즉 臣下가 할 수 없는 皇帝 개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소위 皇帝라는 칭호에는 '皇帝'와 '天子'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즉, '황제'는 君臣들 위에 군림하며 職事를 가지기에 公的인 官의 속성을 대표한 반면, '천자'는 황제 자신과 臣下들의 私的 욕구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원리인 爵의 속성을 대표한다. 또한 皇帝 6璽制度를 통해서 漢代의 皇帝는 국내정무에 있어서는 皇帝[官·公]로서, 대외관련 정무에 있어서는 天子[爵·私]로서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國外에 使者로서 파견된 측근은 첫째, 외교는 황제 개인의 업무라는 점과 둘째, 제국 밖의 일로 천자로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측근이 아닌 天子의 측근으로서 파견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國外파견 使者의 또 다른 특징으로 언급된 武官의 파견 원인 역시 天子의 성격과 관련 있다. 天子는 天下를 한 몸에 膺受한 존재로, 천자의 天下는 이념상으로는 夷狄의 세계를 투영시킨 '中國+四夷(國)'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皇帝의 지배영역의 가장 외연인 邊郡까지의 공간인 帝國으로서의 天下(中國=天下)이다. 즉, 天下의 가장 축약된 天子(우주의 軸)와 실질적 지배가 관철되는 中國(極外)은 상호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 護衛를 담당한 武官이 出征과 出使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天子의 천하는 이념상 夷狄의 세계를 투영시킨 '中國+四夷(國)'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자에게는 帝國이 內이며, 帝國 밖 夷狄의 세계에 外에 해당한다. 따라서 皇帝가 '천자'로서 자신을 지킬 때에는 帝國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使者로 파견된 武官들은 일반적인 武官이 아니라 光祿勳·衛尉·中尉(八校尉)

소속에 국한되며, 이들은 모두 황제의 內이자 私的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 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天子로서 제국을 지킬 때는 관할 직무의 범위상 內에 해당할 뿐 아니라 私的인 영역을 수비한 武官들이 출정했던 것이며, 外交 역시도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분야이자 천자가 관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역시 이들 官이 파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中國 古代의 山川 祭祀와 국가 권력

金 龍 潔(서울大)

목 차

Ⅰ. 머리말
Ⅱ. 국가 권력의 지배 영역과 山川 祭祀
Ⅲ. 山川 祭祀와 지방 통치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무릇 나라[國]는 반드시 山川에 의지하여야 한다."[1]라든가 "나라[國]는 山川을 주인으로 삼는다."[2]라는 등의 언급은 中國 古代 國家의 존립 근거로서 山川이 가진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山川은 일찍부터 地祇의 하나로 國家 祭祀의 틀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수많은 山川 중에 누가, 무엇을 그 祭祀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무엇을 祭祀지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先秦 시기부터 이미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였다.

大夫들이 河水의 不淨 때문에 楚 昭王이 병들었다는 占卜에 따라 郊에서 河水에게 祭祀를 지내 그 不淨을 털어내자고 楚 昭王에게 청원하자, 그는 三代, 즉 夏·商·周의 祭祀 제도를 근거로 望을 넘어선 대상에 대해 祭祀를 지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3] 望은 王이나 諸侯가 領內의 山川을 멀리에서 바라보며 禮를 갖춰 지내는 祭祀나 또는 그 祭祀의 대상인 山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4] 楚 이외에도 魯나 晉 등의 다른 諸侯國들 역시 별도의 望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대상이나 숫자는 나라마다 달랐다.[5] 그

1) 『國語』(徐元誥 撰, 王樹民·沈長雲 點校, 『國語集解』, 中華書局, 2002) 卷1 「周語」上, p.27, "夫國必依山川."

2) 『春秋左傳』(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春秋左傳正義(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卷26, 魯 成公 5年(B.C.586) 夏, p.827, "國主山川."

3) 『春秋左傳』(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春秋左傳正義(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卷58, 哀公 6年(B.C.489) 7月, p.1884, "初, 昭王有疾, 卜曰, '河爲祟.' 王弗祭. 大夫請祭諸郊. 王曰: '三代命祀, 祭不越望. 江·漢·睢·漳, 楚之望也.'"

4) 諸橋轍次 著, 『大漢和辭典』 卷5, 大修館書店, 1984, "望" ⓫, p.1049 참고.

5) 魯의 望은 泰山, 河, 海(『春秋公羊傳』(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春秋公羊傳注疏(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卷12, 僖公 31年(B.C.629) 4月, pp.310-313, "乃免牲, 猶三望, …… 三望者

런데 그보다 100餘 年 前 楚 莊王은 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河水에 대해 祭祀를 지낸 바 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先君, 즉 歷代 先王들에게 알리는 의식에 先行한 것이었다.[6] 당시에도 河水는 楚의 望이 아니었지만, 전쟁터 인근의 가장 중요한 山川 중 하나로, 승리의 결과 그 지역을 장악하였다는 의미에서 楚 莊王 자신이 河水를 임시로라도 楚의 望으로 간주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 이 두 사례를 종합해보면, 春秋 시대 君主들은 자기 나라의 영역 안에 있는 주요 山川에 대해 望이라는 祭祀를 지냈고, 그 영역 밖의 山川은 기본적으로 祭祀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楚 莊王의 사례와 같이 나라 밖 戰場에서의 승리는 그 지역 神格에 대한 祭祀權의 장악과 등치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의 山川 祭祀가 그 지역에 대한 支配權을 과시하는 수단임을 示唆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楚 昭王은 河水에 대한 祭祀뿐만 아니라, 郊에서 祭祀지내야 한다는 大夫들의 의견도 거부한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당시 儒家들은 郊에서 지내는 祭祀, 즉 郊祭를 王이 아닌 諸侯들이 행하는 것은 禮에서 벗어난 越權으로 보았다. 『春秋公羊傳』은 魯의 諸侯가 郊祭를 지낸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天子만이 天을 그 祭祀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天子의 望은 제한이 없지만, 諸侯는 封內의 山川만을 祭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望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7] 즉 郊祭는 天子만이 지낼 수 있는 고유한 특권으로, 天에 대한 독점적인 祭祀를 통해 天子가 封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힘을 天下에 떨치는 유일한 지배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杞나 宋 등 일부 諸侯들이 郊祭를 지내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이 과거 夏나 商과 같은 天子의 나라를 계승하였기 때문일 뿐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魯의 郊祭는 越權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孔子 역시 견지하고 있었다.[8] 실제 郊祭가 周 初期부터 이와 같은 관념을 가진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戰國 시대 秦이 周를 멸망시킨 직후 郊祭를 지낸 것을 보면,[9] 天子만이 郊祭를 통해 天에 대해 祭祀를 지낼 수 있는 특권을

---

何? 望祭也. 然則曷祭? 祭泰山河海, 曷爲祭泰山河海? 山川有能潤于百里者, 天子秩而祭之. 觸石而出, 膚寸而合, 不崇朝而徧雨乎天下者, 唯泰山爾. 河海潤于千里. 猶者何? 通可以已也.”), 晉의 望은 梁山(『爾雅』(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爾雅注疏(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卷7「釋山」, p.240, “梁山, 晉望也.”) 등이 확인된다.

6) 『春秋左傳』(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春秋左傳正義(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卷23, 宣公 12年(B.C.597) 6月, p.754, “祀于河, 作先君宮, 告成事而還.”

7) 『春秋公羊傳』(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春秋公羊傳注疏(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卷12, 魯 僖公 31年(B.C.629) 4月, pp.310-312, “四卜郊不從, …… 魯郊, 非禮也. 魯郊何以非禮? 天子祭天, 諸侯祭土. 天子有方望之事, 無所不通. 諸侯山川有不在其封內者, 則不祭也.”

8) 『禮記』(孫希旦 撰, 沈嘯寰 · 王星賢 點校, 『禮記集解』, 中華書局, 1989) 卷21「禮運」, pp.597~598, “孔子曰: ‘ …… 魯之郊 · 禘, 非禮也. 周公其衰矣! 杞之郊也, 禹也; 宋之郊也, 契也. 是天子之事守也. 故天子祭天地, 諸侯祭社稷.’”

9) 『史記』 卷5「秦本紀」, p.218, “(昭襄王)五十二年, …… 其器九鼎入秦. 周初亡. 五十三年, 天下來賓.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였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서 주목하지 않은, 中國 古代의 山川 祭祀에 대한 통시대적인 고찰을 통해 국가 권력이 山川 祭祀를 통해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이었고, 실제 국가 통치와 山川 祭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中國 최초의 왕조라 할 수 있는 商代에 이루어진 山川 祭祀에서부터 皇帝 支配 體制를 기반으로 統一 帝國을 건설한 秦·漢 시기의 山川 祭祀까지 그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권력에게 山川 祭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용되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Ⅱ장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장악된 山川 祭祀에 대해 민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아보려 한다. 특히 後漢 시기 만들어진 여러 石刻 資料들을 보면 각 지방의 지역 엘리트들이 그 지역의 山川 祭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 長官을 통해 이들 祭祀의 공인과 국가 권력의 지원을 관철시킨 흔적들이 발견된다. 아마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국가 권력과 지역 엘리트 사이의 관계가 숨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本稿에서는 지금까지 단순히 禮制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았던 山川 祭祀를 국가 권력의 의지가 각 지역에 구현되는 구체적인 행위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의 지배가 각 지역별로 관철될 수 있었다는 가설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禮制의 변화가 儒敎의 國敎化 과정, 즉 이른바 '儒敎國家'로 가는 길의 결과물로 해석해왔던 기존의 통설에 재고를 요청할 수도 있으리라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 Ⅱ. 국가 권력의 지배 영역과 山川 祭祀

秦 始皇은 天下를 겸병한 후 祠官에게 항상 받들어야 할 天地, 名山, 大川, 鬼神은 정해 순서를 정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史記』「封禪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당시까지 일반적으로 五嶽·四瀆이라 불리며 山川 祭祀 중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모두 秦의 首都인 咸陽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중요한 山川 중 일부는 諸侯의 영역에, 일부는 天子의 영역에 속하게 되면서, 그 儀禮도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秦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山川 祭祀 儀禮를 咸陽을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다.[10]

…… 五十四年, 王郊見上帝於雍."

10)『史記』卷28「封禪書」, p.1371, "昔三代之(君)[居]皆在河洛之閒, 故嵩高爲中嶽, 而四嶽各如其方, 四瀆咸在山東. 至秦稱帝, 都咸陽, 則五嶽·四瀆皆幷在東方. 自五帝以至秦, 軼興軼衰, 名山大川或在諸侯, 或在天子, 其禮損益世殊, 不可勝記. 及秦幷天下, 令祠官所常奉天地名山大川鬼神可得而序也."

먼저 殽山을 기준으로 그 동쪽에는 名山 5곳, 大川 2곳이 있다. 名山에는 嵩山, 恒山, 泰山, 會稽山, 湘山 등이 있고, 大川에는 濟水, 淮水 등이 있다.[11]

또 華山을 기준으로 그 서쪽에는 名山 7곳, 名川 4곳이 있다. 名山에는 華山, 薄山(衰山), 岳山, 岐山, 吳岳, 鴻冢, 瀆山(汶山) 등이 있고, 名川에는 河水, 沔水, 騶衍, 江水 등이 있다.[12] 특히 이 서쪽 名川 4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祭祀를 지내야 할 장소가 각각 지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河水는 臨晉, 沔水는 漢中, 騶衍은 朝那, 江水는 蜀 등인데, 이것은 각각의 名川이 發源한 곳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東·西의 名山·大川 뿐만 아니라 咸陽 인근의 주요 하천들도 首都 근처에 있다는 중요성 때문에 山川 祭祀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그밖에 몇몇 작은 山·川 역시 그 대상에 추가되었다.[13]

統一 秦 帝國의 山川 祭祀를 살펴보면, 기존의 五嶽·四瀆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秦 帝國의 山川은 東·西로 나뉘어졌을 뿐, 中嶽을 중심으로 四方으로 배치되는 五嶽이나 4개의 큰 강을 선정한 四瀆과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이들 주요 山川에 추가로 首都인 咸陽 인근의 주요 山川을 추가하여, 五嶽·四瀆의 반열에 올렸다. 秦 帝國에 의해 체계화된 山川 祭祀의 대상은 이렇듯 기존의 정설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帝國의 중심인 咸陽을 기준으로 그 중요도에 따라 새로이 조직된 것이었다. 이것은 山川 祭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지배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漢 高祖가 통일 후 실시한 여러 제사 제도는 차이를 보인다. 漢 高祖는 즉위 2年 關中을 장악한 후 祠官에게 天地·四方·上帝·山川을 때에 맞춰 祭祀지내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처음으로 國家 祭祀의 틀을 마련하는데, 4년 뒤인 高祖 5年 天下를 평정한 후 長安에 7명의 女巫를 두어 祭祀를 지내도록 조치하였다. 이들은 각각 지정된 대상에 대해 祭祀를 지냈는데, 이들의 명칭이 흥미를 끈다. 우선 梁巫, 晉巫, 秦巫, 荊巫, 九天巫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늘을 대상으로 하는 九天巫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당시 漢의 직할 영역 안의 四方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로 河巫와 南山巫가 언급되는데, 이들은 長安 밖에 위치한다. 河巫는 臨晉에서 河水에 祭祀지내는데, 秦 帝國의 경우와 동

---

11) 『史記』 卷28 「封禪書」, p.1371, "於是自殽以東, 名山五, 大川祠二. 曰太室. 太室, 嵩高也. 恆山, 泰山, 會稽, 湘山. 水曰濟, 曰淮. 春以脯酒爲歲祠, 因泮凍, 秋涸凍, 冬塞禱祠. 其牲用牛犢各一, 牢具珪幣各異."

12) 『史記』 卷28 「封禪書」, pp.1372-1374, "自華以西, 名山七, 名川四. 曰華山, 薄山. 薄山者, 衰山也. 岳山, 岐山, 吳岳, 鴻冢, 瀆山. 瀆山, 蜀之汶山. 水曰河, 祠臨晉; 沔, 祠漢中; 湫淵, 祠朝那; 江水, 祠蜀. 亦春秋泮涸禱塞, 如東方名山川; 而牲牛犢牢具珪幣各異. 而四大冢鴻·岐·吳·岳, 皆有嘗禾."

13) 『史記』 卷28 「封禪書」, p.1374, "霸·産·長水·澧·滻·涇·渭皆非大川, 以近咸陽, 盡得比山川祠, 而無諸加. 汧·洛二淵, 鳴澤·蒲山·嶽嶓山之屬, 爲小山川, 亦皆歲禱塞泮涸祠, 禮不必同."

일하다. 南山巫는 南山에서 秦中에 祭祀지내는데, 秦中은 漢 帝國 이전 秦 帝國의 마지막 皇帝였던 二世皇帝를 가리킨다고 한다. 즉 漢 高祖가 女巫를 설치한 것은 山川 祭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영역을 다섯으로 나누어 女巫로 하여금 그 祭祀를 주관하게 한다는 점에서, 山川 祭祀를 통한 帝國의 지배라는 특징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漢 帝國의 지배 영역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河水에 대한 祭祀가 별도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도 관찰된다. 아울러 이전 왕조인 秦의 二世皇帝를 위한 南山巫를 별도로 설치하여, 왕조의 계승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렇듯 前漢 初 漢 皇帝가 주관하는 山川 祭祀의 범위는 漢의 직할 통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설사 아무리 중요한 名山大川이라 하더라도 그 영역이 諸侯國에 속해 있으면 皇帝는 祠官을 파견하거나 祭祀를 지낼 수 없었다. 齊國가 淮南國이 폐지되고 나서야 비로서 秦의 옛 儀禮에 따라 泰山과 天柱山에 天子의 祝官을 보내 祭祀를 지낼 수 있었다는 언급이나,[14] 漢 武帝가 封禪을 행하려 하자 濟北王이 泰山을 바치고 나서야 이를 행할 수 있었다는 언급을 보면,[15] 漢의 皇帝는 天子임에도 불구하고 天下를 모두 그 祭祀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先秦 시기 儒家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天子의 모습을 前漢 初期의 皇帝들은 구현할 수 없었고, 天下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립하지 못하는 이상, 漢의 皇帝는 天子로서 자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즉 儒家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天子는 諸侯를 아우르는 존재이나, 현실 속의 漢 皇帝는 諸侯와 병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諸侯가 별도의 紀年을 사용하거나, 漢과 동일한 관료 제도를 고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은 아니었을지 추측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漢 皇帝의 애매한 위치도 서서히 바뀌게 된다. 漢 武帝 元狩 年間에 濟北王이 泰山을 바치고 常山國이 郡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五嶽이 모두 天子의 郡에 속하게 된다.[16] 나아가 漢 武帝 元封 5年(B.C.106)에는 漢 武帝 자신이 天柱山에 올라 이를 南嶽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른다.[17] 이것은 국가 권력의 山川 祭祀 대상 역시 최고 권력자인 皇帝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漢 宣帝 神爵 元年에는 漢 宣帝에 의해 五嶽·四瀆에 대한 常禮가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五嶽·四瀆에 대한 祭祀는

14) 『史記』 卷28 「封禪書」, p.1380, "始名山大川在諸侯, 諸侯祝各自奉祠, 天子官不領. 及齊·淮南國廢, 令太祝盡以歲時致禮如故."; 『史記正義』, "齊有泰山, 淮南有天柱山, 二山初天子祝官不領, 遂廢其祀, 令諸侯奉祠. 今令太祝盡以歲時致禮, 如秦故儀."

15) 『史記』 卷28 「封禪書」, p.1387, "於是濟北王以爲天子且封禪, 乃上書獻太山及其旁邑, 天子以他縣償之."

16) 『史記』 卷28 「封禪書」, p.1387, "於是濟北王以爲天子且封禪, 乃上書獻太山及其旁邑, 天子以他縣償之. 常山王有罪, 遷, 天子封其弟於眞定, 以續先王祀, 而以常山爲郡, 然后五岳皆在天子之(邦)[郡]."

17) 『史記』 卷28 「封禪書」, p.1400, "其明年冬, 上巡南郡, 至江陵而東. 登禮灊之天柱山, 號曰南岳."

皇帝에 의해 파견된 祠官이 때에 따라 지내는 것이었다. 각각의 神格을 祭祀지내는 장소도 아울러 지정되었다.[18]

| | 五嶽 | | | | | 四瀆 | | | |
|---|---|---|---|---|---|---|---|---|---|
| **방위** | 東岳 | 中嶽 | 南嶽 | 西岳 | 北岳 | 河 | 江 | 淮 | 濟 |
| **명칭** | 泰山 | 泰室 | 灊山 | 華山 | 常山 | | | | |
| **장소** | 博 | 嵩高 | 灊 | 華陰 | 上曲陽 | 臨晉 | 江都 | 平氏 | 臨邑 |

漢 宣帝 시기의 五嶽·四瀆 확정을 통해 秦 始皇이 추구하였던 전국적인 山川 祭祀 제도를 漢 帝國에서도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漢 帝國의 그것은 秦 帝國과는 달리 首都인 長安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 아닌, 儒家 經典에서 전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따르고 있다. 아마도 漢 帝國의 山川 祭祀 확립 과정에 儒家가 모종의 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하다. 어쨌든 山川 祭祀 제도의 확립은 漢 皇帝가 帝國 영역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둘만 한다.

## Ⅲ. 山川 祭祀와 지방 통치

周知하듯이 前漢 中期 이후 漢의 禮制는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 儒家 지식으로 무장한 一群의 관료들에 의해 기존의 각종 禮制가 儒家의 이상적인 제도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조되고, 이와 같은 극심한 변화에 저항하는 기존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 여러 祭祀의 置·廢가 거듭되었다. 그 결과 대체로 統一 秦의 禮制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며 그 틀 속에서 발전한 前漢 初의 禮制가 儒家의 이론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禮制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故事에 대한 古禮의 승리로 묘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과 때문에 後漢 社會를 '儒敎國家'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여러 시도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禮制의 변화를 단지 儒家의 승리라고만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적어도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皇帝와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한 개혁을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이고, 결국 儒家들의 이상에 의해 禮制가 개혁

18) 『漢書』 卷25下 「郊祀志」下, p.1249, "其三月, 幸河東, 祠后土, 有神爵集, 改元爲神爵. 制詔太常: '夫江海, 百川之大者也, 今闕焉無祠. 其令祠官以禮爲歲事, 以四時祠江海雒水, 祈爲天下豐年焉.' 自是五嶽·四瀆皆有常禮. 東嶽泰山於博, 中嶽泰室於嵩高, 南嶽灊山於灊, 西嶽華山於華陰, 北嶽常山於上曲陽, 河於臨晉, 江於江都, 淮於平氏, 濟於臨邑界中, 皆使者持節侍祠. 唯泰山與河歲五祠, 江水四, 餘皆一禱而三祠云."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 그대로 실현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禮制 개혁은 국가 권력이 이를 수용할만한 이유가 있고, 그 강화를 지지해주지 않는 이상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다.

前漢 末 後漢 初 禮制의 변화 속에서 先秦 시기 儒家들이 天子만이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郊祭도 주목을 받게 된다. 漢 成帝가 즉위하자 丞相 匡衡이 주도가 되어 올린 上奏에는 帝王이 天의 뜻을 받들어 따르는 데에는 郊祭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周 文王·武王·成王이 각각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郊祭를 올렸고, "天은 王者가 거주하는 곳을 따라서 祭祀를 받았으므로(天隨王者所居而饗之)", 漢 成帝 역시 그 자신이 거주하는 長安에서 郊祭를 통해 皇天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 그러나 이와 같은 郊祭는 漢 成帝 이전의 漢 皇帝들이 하지 않던 것이고, 漢의 禮制에는 秦의 禮制를 계승한 五畤 등의 郊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匡衡은 다시 王者와 諸侯의 차이를 예로 들어, 秦의 禮制는 "諸侯가 헛되이 만든 것으로, 王者가 오랫동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로 漢 成帝를 설득하여 秦의 禮制에서 온 각종 祭祀를 모두 혁파하였다.[20] 결국 그 다음 해에는 漢 成帝가 처음으로 南郊에서 郊祭를 실시하고, 古禮에 맞지 않는 다양한 祭祀들을 전부 폐지하였다.[21] 특히 여기에서 山川 祭祀와 관련하여 주목해 봐야 할 것은 漢 高祖가 집권 당시 漢의 직할지를 아우르기 위해 처음 설치하였던 梁巫, 晉巫, 秦巫, 荊巫, 九天巫, 南山巫를 폐지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漢 高祖는 九天巫를 중심으로 東·西·南·北에 각각 梁巫, 秦巫, 荊巫, 晉巫 등을 배치하고, 여기에 秦 二世皇帝를 모신 南山巫와 河巫가 추가되었다. 이것은 前漢 初 漢의 직할 영역을 포괄하는 일종의 山川 祭祀로 볼 수 있는데, 漢 宣帝 시기 五嶽·四瀆에 대한 祭祀가 확립된 것만 보더라도 漢 成帝 시기에는 이미 부적당한 儀禮로 볼 수 있다. 이번 개혁이 아

19) 『漢書』 卷25下 「郊祀志」下, pp.1253-1254, "成帝初卽位, 丞相衡·御史大夫譚奏言: '帝王之事莫大乎承天之序, 承天之序莫重於郊祀, …… 昔者周文武郊於豐鄗, 成王郊於雒邑. 由此觀之, **天隨王者所居而饗之**, 可見也. …… 長安, 聖主之居, 皇天所觀視也.'"(강조와 밑줄은 筆者)

20) 『漢書』 卷25下 「郊祀志」下, p.1257, "衡又言: '**王者各以其禮制事天地, 非因異世所立而繼之. 今雍郻·密·上下畤, 本秦侯各以其意所立, 非禮之所載術也.** 漢興之初, 儀制未及定, 卽且因秦故祠, 復立北畤. 今旣稽古, 建定天地之大禮, 郊見上帝, 靑赤白黃黑五方之帝皆畢陳, 各有位饌, 祭祀備具. **諸侯所妄造, 王者不當長遵.** 及北畤, 未定時所立, 不宜復修.' 天子皆從焉. 及陳寶祠, 由是皆罷."(강조와 밑줄은 筆者)

21) 『漢書』 卷25下 「郊祀志」下, pp.1257-1258, "明年, 上始祀南郊, …… 是歲衡·譚復條奏: '長安廚官縣官給祠郡國候神方士使者所祠, 凡六百八十三所, 其二百八所**應禮**, 及疑無明文, 可奉祠如故. 其餘四百七十五所**不應禮**, 或復重, 請皆罷.' 奏可. …… 又罷**高祖所立梁·晉·秦·荊巫·九天·南山·萊中之屬**, 及孝文渭陽·孝武薄忌泰一·三一·黃帝·冥羊·馬行·泰一·皐山山君·武夷·夏后啓母石·萬里沙·八神·延年之屬, 及孝宣參山·蓬山·之罘·成山·萊山·四時·蚩尤·勞谷·五牀·僊人·玉女·徑路·黃帝·天神·原水之屬, 皆罷. 候神方士使者副佐·本草待詔七十餘人皆歸家."(강조와 밑줄은 筆者)

니더라도 漢 高祖가 세운 7개 巫가 담당한 祭祀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漢 成帝 시기 폐지 대상으로 河巫가 거론되지 않은 것도 이미 漢 宣帝 시기 五嶽·四瀆의 祭祀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 폐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漢 成帝 시기 처음 실시된 南·北 郊祭는 이후 置·廢가 거듭되었지만, 최종적으로 漢 平帝 元始 5年 王莽의 건의에 의해 다시 한 번 확립되게 된다.[22] 이후 前漢의 멸망과 後漢으로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郊祭는 다시 부활한다. 後漢 光武帝는 즉위 바로 다음 해 正月 새로이 首都로 지정된 雒陽城 南郊에서 郊祭를 처음 실시한다. 이 郊祭는 前漢 平帝 元始 年間의 故事에 따라 실시되었으므로, 王莽의 건의에 의해 확립된 郊祭의 연속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古禮에 따라 시행되었던 郊祭가 이제는 故事가 되어 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續漢書』「祭祀志」에는 이 당시 실시한 南郊 郊祭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때 匡衡이 漢 成帝에게 郊祭를 지낼 것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한 "天은 王者가 거주하는 곳을 따라서 祭祀를 받는다(天隨王者所居而饗之)."는 것에 따른 흔적이 명백히 보인다. 先秦 儒家의 주장에 의하면 郊祭는 기본적으로 天에 대한 祭祀가 진행되는 것으로, 封內의 地에만 祭祀지내는 諸侯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天子 고유의 祭祀이다.[23] 아울러 郊祭를 통해 天子는 그 밖의 여러 神格들에게 職分을 정해줄 수 있다.[24] 後漢 光武帝의 南郊 郊祭에는 이러한 儒家의 이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南郊 郊祭에서 모셔진 神格은 순서대로 天·地, 五帝(靑·赤·黃·白·黑), 日·月·北斗, 五星·中(宮)[官]宿·五官神·五嶽, 二十八宿·外(宮)[官]星·雷公·先農·風伯·雨師·四海·四瀆·名山·大川 등이다.[25] 여기에 덧붙여 隴西와 巴蜀 지역이 평정된 후에는 郊祭를 증설함과 동시에 漢 高祖를 郊祭의 최상위에 있는 天·地에 配祀하였다.[26] 아

---

22) 『漢書』 卷25下「郊祀志」下, pp.1264-1265, "平帝元始五年, 大司馬王莽奏言: '王者父事天, 故爵稱天子. …… 王者尊其考, 欲以配天, 緣考之意, 欲尊祖, 推而上之, 遂及始祖. 是以周公郊祀后稷以配天, 宗祀文王於明堂以配上帝. 禮記天子祭天地及山川, 歲徧. …… 皆曰宜如建始時丞相衡等議, 復長安南北郊如故.'"

23) 『禮記』(孫希旦 撰, 沈嘯寰·王星賢 點校, 『禮記集解』, 中華書局, 1989) 卷21「禮運」, p.615, "故祭帝於郊, 所以定天位也; 祀社於國, 所以列地利也."

24) 『禮記』(孫希旦 撰, 沈嘯寰·王星賢 點校, 『禮記集解』, 中華書局, 1989) 卷21「禮運」, p.615, "故禮行於郊而百神受職焉, 禮行於社而百貨可極焉."

25) 『續漢書』 志7「祭祀志」上 "郊", pp.3159-3160, "二年正月, 初制郊兆於雒陽城南七里, 依鄗. **采元始中故事**. 爲圓壇八陛, 中又爲重壇, 天地位其上, 皆南鄉, 西上. 其外壇上爲五帝位. 靑帝位在甲寅之地, 赤帝位在丙巳之地, 黃帝位在丁未之地, 白帝位在庚申之地, 黑帝位在壬亥之地. 其外爲壝, 重營皆紫, 以像紫宮; 有四通道以爲門. 日月在中營內南道, 日在東, 月在西, 北斗在北道之西, 皆別位, 不在羣神列中. 八陛, 陛五十八階, 合四百六十四階. 五帝陛郭, 帝七十二階, 合三百六十階. 中營四門, 門五十四神, 合二百一十六神. 外營四門, 門百八神, 合四百三十二神. 皆背營內鄉. 中營四門, 門封神四, 外營四門, 門封神四, 合三十二神. 凡千五百一十四神. 營卽壝也. 封, 封土築也. 背中營神, 五星也, 及中(宮)[官]宿五官神及五嶽之屬也. 背外營神, 二十八宿外(宮)[官]星, 雷公·先農·風伯·雨師·四海·四瀆·名山·大川之屬也."

울러 後漢 光武帝 33年 正月에는 北郊에서의 郊祀가 이루어졌다.[27] 이로써 南·北 郊祀의 제도가 확립되어, 皇帝를 중심으로 天·地와 陰·陽을 아우르는, 모든 神格이 한데 모이는 상징적인 祭祀가 완성되었다.

| 天神 | 人鬼 | 地祇 |
|---|---|---|
| 天 | (漢 高祖) | 地 |
| | 五帝 | |
| 日<br>月<br>北斗 | | |
| 五星<br>中(宮)[官]宿 | 五官神 | 五嶽 |
| 二十八宿<br>外(宮)[官]星 | 雷公<br>先農<br>風伯<br>雨師 | 四海<br>四瀆<br>名山<br>大川 |

南郊

| 天神 | 人鬼 | 地祇 |
|---|---|---|
| | (漢 高后) | 地 |
| | | |
| | | |
| | | 五嶽 |
| | | 四海<br>四瀆<br>名山<br>大川 |

北郊

이와 같은 郊祭의 거행을 통해 皇帝는 天·地의 모든 神格을 한꺼번에 아울러 이 세계의 중심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즉 郊祭는 단순히 새해 첫 날 연례적으로 하는 祭祀가 아니라, 皇帝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주재하며 天으로부터 부여받은 天命을 확인하고, 모든 神格을 지휘하여 질서를 바로잡는 거대한 행사인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지금까지 체계화 되었던 五嶽·四瀆과 기타 山川에 대한 祭祀도 당연히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皇帝의 望은 그전까지 皇帝의 직할지, 즉 漢의 郡·縣이 설치된 영역을 넘어 帝國 전체를 포괄하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天子로서 그 자격을 과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郊祭에 포함된 名山·大川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漢 帝國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山川을 일일이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은 名山·大川이라는 말 속에 이미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祭祀 대상으로 삼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春秋公羊傳』에서는 일찍이 天子의 祭祀 대상이 될 수 있는 山川으로 100里 이상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28] 주변을 윤택하게 하여

---

26) 『續漢書』 志7 「祭祀志」上 "郊", p.3161, "隴·蜀平後, 乃增廣郊祀, 高帝配食, 位在中壇上, 西面北上."

27) 『續漢書』 志8 「祭祀志」中 "北郊", p.3177, "是年初營北郊."; p.3181, "北郊在雒陽城北四里, 爲方壇四陛. 三十三年正月辛未, 郊. 別祀地祇, 位南面西上, 高皇后配, 西面北上, 皆在壇上, 地理羣神從食, 皆在壇下, **如元始中故事**. 中嶽在未, 四嶽各在其方孟辰之地, 中營內. 海在東; 四瀆河西, 濟北, 淮東, 江南; 他山川各如其方, 皆在外營內. 四陛醊及中外營門封神如南郊. …… 奏樂亦如南郊."

28) 『春秋公羊傳』(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春秋公羊傳注疏(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卷12, 僖公 31年(B.C.629) 4月, p.312, "山川有能潤于百里者, 天子秩而祭之."

풍년을 보장해주는 山川이 祭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은 漢代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29] 그러나 山川 祭祀 역시 典禮에 맞는 것만 增置가 될 수 있었다.[30] 秦의 경우도 지정된 몇몇 名山·大川은 太祝이 상주하며 祭祀를 지내지만, 나머지 山川은 郡·縣에서 民이 알아서 祭祀를 지내도록 하였다.[31] 秦의 경우 五嶽·四瀆의 제도가 없었고, 名山·大川은 禮制 상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히 국가 권력이 직접 간여하는 山川 祭祀의 범위를 알 수 있다. 漢의 경우는 오히려 불분명한데, 아마도 前漢 宣帝 이후 五嶽·四瀆에 대해서는 皇帝가 파견한 祠官이 직접 주도하였으나,[32] 後漢 光武帝 시기 이후에는 禮制의 축소로 인해 그 권한이 郡守나 國相 등 二千石官에게 위임된 듯하다.[33] 지방의 山川 祭祀 중에 풍년은커녕 民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지방 장관들에 의해 淫祠로 규정되어 철폐되었다.[34]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모든 山川 祭祀를 무조건 용인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금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置·廢를 지방 장관의 소관으로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前漢 시기 皇帝들은 諸侯國 영역 안에 있는 山川은 설사 五嶽·四瀆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 해도 祭祀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漢 武帝 시기 封禪을 해야 할 泰山을 濟北王으로부터 할양받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後漢 시기 常山國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皇帝의 권한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常山國에는 三公山이 있었는데, 常山國 國相이었던 馮君이 이 三公山에 祭祀를 지낸 결과 나라 안에 풍년이 들어 民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면,[35] 三公山은 山川 祭祀를 받을만한 자격을 갖췄다. 이후

---

29) 『漢書』 卷6 「武帝紀」, 建元 元年 5月, p.157, "詔曰: '**河海潤千里, 其令祠官修山川之祠**, 爲歲事, 曲加禮.'"; 『漢書』 卷25下 「郊祀志」下, p.1249, "其三月, …… 改元爲神爵. 制詔太常: '夫江海, 百川之大者也, 今闕焉無祠. **其令祠官以禮爲歲事, 以四時祠江海雒水, 祈爲天下豐年焉**.'"(밑줄과 강조는 筆者)

30) 『後漢書』 卷3 「肅宗孝章帝紀」, 元和 2年 2月, p.149, "二月, …… 詔曰: '今山川鬼神應典禮者, 尙未咸秩. 其議增修羣祀, 以祈豐年.'"; 『續漢書』 志8 「祭祀志」中 "增祀", p.3183, "章帝卽位, 元和二年正月, 詔曰: '山川百神, 應祀者未盡. 其議增修羣祀宜享祀者.'"

31) 『史記』 卷28 「封禪書」, p.1377, "諸此祠皆太祝常主, 以歲時奉祠之. 至如他名山川諸鬼及八神之屬, 上過則祠, 去則已. 郡縣遠方神祠者, 民各自奉祠, 不領於天子之祝官."

32) 『漢書』 卷25下 「郊祀志」下, p.1249, "其三月, 幸河東, 祠后土, 有神爵集, 改元爲神爵. 制詔太常: '夫江海, 百川之大者也, 今闕焉無祠. 其令祠官以禮爲歲事, 以四時祠江海雒水, 祈爲天下豐年焉.' 自是五嶽·四瀆皆有常禮. …… 皆使者持節侍祠. 唯泰山與河歲五祠, 江水四, 餘皆一禱而三祠云.";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 圖版·釋文篇』, 京都: 同朋社, 1994, 西嶽華山廟碑, p.154, "仲宗之世, 重使使者持[節祀]焉, 歲一禱而三祠."

33)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 圖版·釋文篇』, 京都: 同朋社, 1994, 西嶽華山廟碑, p.154, "建武之元, 事擧其中, 禮從其省, 但使二千石以歲時往[祠]. …… 延熹四年七月甲子, 弘農大守安國亭侯汝南袁逢, 掌嵩嶽之主位."

34) 『後漢書』 卷57 「杜欒劉李劉謝列傳」 "欒巴", p.1841, "巴使徐州還, 再遷豫章太守. 郡土多山川鬼怪, 小人常破貲産以祈禱. 巴素有道術, 能役鬼神, 乃悉毁壞房祀, 翦理姦巫, 於是妖異自消. 百姓始頗爲懼, 終皆安之."

三公山은 元氏縣 三公神主簿의 노력으로 祭祀의 增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 개인의 출자나 常山國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과정은 三公山神碑를 통해 알 수 있는데, 三公神主簿의 요청이 太常에게 보고되고, 太常은 다시 그의 보고를 검토하여 尙書에게 보고한 후, 尙書는 雒陽宮에 上奏하고, 다시 尙書令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듯하다.[36] 이때 三公山을 祭祀지내는 이유 역시 앞에서 山川 祭祀 대상이 되는 이유와 동일하게 비를 내려 百里를 윤택하게 하였던 것이었다.[37] 『春秋公羊傳』이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三公山 祭祀의 증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王家로부터 조달하겠다는 내용에[38] 의구심이 든다. 어차피 三公山은 常山國의 封內에 있기 때문에 常山國의 望에 해당할 것이고, 前漢 시기라면 그에 대한 祭祀는 漢 皇帝조차 어쩌지 못할 성격의 것이다. 그런데 五嶽·四瀆도 아닌 諸侯國의 山川 祭祀에 대해 신설이나 폐지도 아닌 단지 增設을 허락받기 위해 帝國 전체의 祭祀를 담당하는 太常을[39] 거쳐 尙書令을 통해 皇帝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郡·國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소소한 祭祀 하나하나까지 모두 皇帝의 지배 하에 이루어져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미 五嶽·四瀆에 대한 祭祀까지 지방 장관들에게 그 집행이 위임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皇帝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일 뿐이지, 그 祭祀의 진행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은 모두 皇帝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祭祀 대상이 前漢 시기까지는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던 諸侯國 소속 山川 祭祀에까지 미쳤다는 점에서, 後漢 皇帝의 專制權이 오히려 강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러한 祭祀의 增置를 통해 비단 자기 지역만의 별 볼일 없는 祭祀를 皇帝에게까지 각인시켜 國家 祭祀의 틀 속에 넣은 常山國의 여러 屬吏들의 노력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常山國 屬吏들은 자신들이 皇帝의 그늘 아래 帝國의 거대한 祭祀 체계에 합류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常山國의 三公山 祭祀가 皇帝에 의해 增設된 것은 결국 그 지역 출신 屬吏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35)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 圖版 · 釋文篇』, 京都: 同朋社, 1994, 祀三公山碑, p.56, "元初四年, 常山相隴西馮君到官, …… 以三公憙廣, …… 以寧其神, 神熹其位, 甘雨屢降, 報如景響, 國界大豐, 穀斗三錢, 民無疾苦, 永保其年."

36)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 圖版 · 釋文篇』, 京都: 同朋社, 1994, 三公山神碑, p.96, "□初元年二月丁巳朔八日甲子, 大常臣□丞臣□頓首上尙書, …… 三公神主薄 …… 給直增設 …… 二月十七日癸酉尙書令臣□奏雒陽宮 …… 丁巳朔十□日癸酉尙書令□下 ……"

37)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 圖版 · 釋文篇』, 京都: 同朋社, 1994, 三公山神碑, p.96, "具酒脯詣山請雨計得雨 …… 潤百里者"

38)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 圖版 · 釋文篇』, 京都: 同朋社, 1994, 三公山神碑, p.96, "□萬六千以王家經錢給直增設"

39) 『續漢書』 志25 「百官志」2 "太常", p.3571, "太常, 卿一人, 中二千石. 本注曰: 掌禮儀祭祀, 每祭祀, 先奏其禮儀; 及行事, 常贊天子. 每選試博士, 奏其能否. 大射 · 養老 · 大喪, 皆奏其禮儀. 每月前晦, 察行陵廟."

## Ⅳ. 맺음말

先秦 시기 각 諸侯國들은 山川 祭祀의 대상을 그 封內에 존재하는 주요 山川, 즉 望으로 생각하고, 望을 넘어선 山川에 대한 祭祀를 越權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望을 넘어서 祭祀를 지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天子로, 天子는 祭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郊祭를 통해 天下의 모든 神格에 대한 祭祀權을 보유하고 있다고 儒家들은 믿고 있었다.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군주로 등장한 秦 始皇은 이와 같은 儒家들의 이상에 가장 적합한 존재였다. 그는 통일 후 점령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새로운 山川 祭祀 制度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儒家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五嶽·四瀆과 名山·大川으로 체계화된 儒家 禮制에 따른 것이 아니라, 諸侯國으로서 기존의 秦이 제도화한 祭祀 體系에 새로 점령한 關東 지역의 여러 神格을 조합한 것이었다. 秦의 멸망 후 새로 전국을 통일한 漢 高祖는 직할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諸侯國으로 둘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山川 祭祀의 범위도 직할 영역에 머물렀다. 심지어 漢 武帝의 경우 封禪을 행하기 위해 濟北王에게서 泰山 인근을 할양받는 촌극을 벌여야만 했다. 五嶽·四瀆 祭祀가 제도화되는 漢 宣帝시기까지 漢 皇帝는 여전히 과거 先秦 시기의 諸侯王처럼 자신의 望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漢 皇帝의 처지는 漢 成帝 시기 이후 後漢 光武帝 시기까지 郊祭가 확립되면서 달라지게 된다. 儒家 관료들에 의해 촉진된 前漢의 祭祀 제도 개혁은 秦을 계승하여 복잡다단해진 漢의 祭祀 제도를 古禮에 맞춰 일변시켰다. 그 결과 儒家가 王者의 이상적인 祭祀 제도로 주장하였단 郊祭가 현실화되었고, 後漢 光武帝에 의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 郊祭에 의해 皇帝는 天下의 중심으로, 神格을 좇아다니면서 祭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있는 雒陽에서 天의 비호 아래 모든 神格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五嶽·四瀆을 비롯한 名山·大川의 神格이 모두 郊祭에 집결되고, 漢의 皇帝는 명실상부한 天下의 지배자로서 望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은 諸侯國의 山川에까지 미쳐, 常山國의 경우 그 望인 三公山 祭祀의 增設이라는 작은 일조차 皇帝의 허락이 떨어져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 皇帝는 望을 넘어 天下를 주재하는 존재로 제도적으로도 확실히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三公山이 國家 祭祀의 틀 속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지역 출신 屬吏들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상기하면, 山川 祭祀가 반드시 皇帝나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제도화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결국 지역 엘리트들이 帝國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도 주목해볼 만한 일일 것이다.

# 唐代 流刑制度의 活用과 變容

김 진(성균관대)

목 차

머리말
1. 寬刑의 理念과 流刑의 역할
2. 放還 가능성의 봉쇄: 長流와 賜死
3. 杖刑과의 결합: 決杖配流
맺음말

## 머리말

流刑은 五刑 중 死刑 바로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형벌로, 죄인을 '먼 곳'으로 추방하여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사회적 생명력을 말살하는 重刑이다.[1] 따라서 律令에는 流刑에 대해 매우 세밀하고 다양한 내용의 조항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유배지의 설정을 비롯해 유배지까지의 여정, 居作의 종류와 기간, 가족의 동행 여부, 放還의 조건 등 流刑 처벌 전반에 걸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流刑의 실례들을 살펴보면 "長流", "決杖配流"와 같이 律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상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성격의 형벌이며, 律令의 流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또한 이러한 형벌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唐代 형벌 체계 전반에 미친 효과는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들[3]은 이러한 문제를 '律令과 현실 사이의 괴리'라는

1) 『唐律疏議』에서는 流刑에 대해 "『尙書』에서 '流刑으로 五刑을 관대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차마 死刑을 집행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내 용서해주는 것이다(권1, 名例4조, 5쪽, "<疏>議曰: 書云: 「流宥五刑.」 謂不忍刑殺, 宥之于遠也.")"라고 설명하고 있다. "流宥五刑"은 『尙書』「虞書 舜典」의 經文이며, "謂不忍刑殺, 宥之于遠也."는 이에 대한 王肅의 주석(원문은 "宥之以遠方")이다. 孔安國은 "宥, 寬也. 以流放之法寬五刑."이라고 해석하였는데(『尙書正義』 권3, 「舜典 第二」, 77-80쪽), 본글의 '寬刑'이라는 표현은 이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이다. 『唐律疏議』의 조문들은 김택민 · 임대희 主編, 『譯註 唐律疏議』 名例編 · 各則上 · 各則下,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 1998를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2) 필자가 『舊唐書』 · 『新唐書』 · 『唐會要』 · 『資治通鑑』 · 『冊府元龜』 등의 사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366개의 流刑 처벌 사례 중 長流는 85개 決杖配流는 54이다.

3) 流刑에 대해 가장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陳俊强과 辻正博이다. 流刑 제도는

주제로 환원하여 원인과 현상을 동일시함으로써, 流刑의 변용을 촉발했던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加役流의 설정 과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加役流는 流刑 3000里와 居作 3년에 해당하는 형벌로,[4] 開皇律에서 絞刑으로 처벌하던 50개의 조항을 武德연간(618-626)에 斷右趾[5]로 고치고, 貞觀6년(632) 肉刑의 시행을 용인할 수 없다는 太宗의 뜻에 따라 다시 加役流로 개정한 것이다.[6] 즉 加役流는 '五刑 2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형벌로서 死刑과 流刑 사이의 범죄들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왜 流刑이 아닌 다른 형벌이 필

---

이들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의 주제로 부각되었으며, 전후 시기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陳俊强은 流刑의 '형성사'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律令의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유배지와 附加刑, 刑期 등의 문제를 통해 설명하였다(陳俊强, 「試論唐代流刑的成立及其意義」, 『唐代身分法制研究』, 五南圖書出版公司, 2003; 「三國兩晉南朝的流徒刑」, 『政治大學歷史學報』 20, 2003; 「北朝流刑的研究」, 『法制史研究』 10, 2006; 「唐代的流刑-法律虛與實的一個考察」, 『興大歷史學報』 18, 2007; 「從 <天聖・獄官令>看唐宋的流刑」, 『唐研究』 14, 北京大學出版社, 2008). 辻正博은 秦・漢初의 遷刑과 漢에서 魏晉南朝에 이르는 시기 등장한 遷徙刑에 대해 서술하며 각각의 형벌이 지닌 '강제 이동'의 의미를 밝혀 唐代 流刑의 연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流刑이 經書의 강력한 영향 하에 만들어진 형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禮敎의 형벌'이라고 규정하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변형 형태 즉 '律外의 流刑'들을 분석하였다(辻正博, 『唐宋時代刑罰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0). 이밖에 시간의 흐름에 방점을 두고 유배지와 放還, 長流 등의 실태를 분석한 戴建國의 연구(『唐宋變革時期的法律與社會』, 上海古籍出版社, 2010), 律令의 규정과 현실의 집행 상황을 비교한 연구들(齊濤, 「論唐代流放制度」, 『人文雜誌』 3, 1990; 李毅, 「論唐代的流刑及其執行情況」, 『西安外國語學院學報』 7, 1993-3; 劉啓貴, 「我國唐朝流放制度初探」, 『青海社會科學』, 1998; 郝黎, 「唐代流刑新辨」, 『厦門大學學報』 3, 2004: 韓鶴進・黃梅, 「唐代流人管理制度探析」, 『牡丹江敎育學院學報』 6, 2005; 王春霞, 「唐代長流制度研究」, 『黑龍江史志』 240, 2010; 陳璽, 「唐代長流刑之演進與適用」, 『華東政法大學學報』 88, 2013), 유배지의 지역적 특색에 초점을 맞추어 流人과 지역 발전의 관계를 서술한 연구들도 존재한다(특히 唐代 핵심적인 유배지였던 嶺南道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古永繼, 「唐代嶺南地區的貶流之人」, 『學術研究』 8, 1998; 王雪玲, 「兩《唐書》所見流人的地域分布及其特征」, 『中國歷史地理論叢』 17-4, 2002; 唐曉濤, 「唐代貶官與流人分布地區差異探究」, 『玉林師範學院學報』 23-2, 2002; 唐曉濤・蒙維華, 「唐代邕管、容管流人考」, 『經濟與社會發展』 5-2, 2007; 戚萬法, 「唐代流人與嶺南開發研究」, 『廣西社會科學』 10, 2007; 張春海. 「試論唐代流刑與國家政策、社會分層之關係」, 『復旦學報』 2, 2008).

4) 『舊唐書』(권50, 「刑法」, 2136쪽)와 『新唐書』(권56, 「刑法」, 1409쪽), 『唐會要』(권39, 「議刑輕重」, 826쪽)에서는 居作 기간을 2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5) 『韓非子』 등의 기록에 따르면 初犯일 경우 左足을 자르고(刖), 再犯이면 右足을 잘랐다고 한다. 漢代의 斬趾(止)가 바로 이 刖刑에 해당하는데 역시 右足을 자르는 것이 더욱 重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漢 文帝의 肉刑 폐지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된 형벌이다. 沈家本, 『歷代刑法考』, 196-200쪽.

6) 『唐律疏議』 권2, 名例11조, 35쪽, "其加役流、<疏>議曰: 加役流者, 舊是死刑, 武德年中改爲斷趾. 國家惟刑是恤, 恩弘博愛, 以刑者不可復屬, 死者務欲生之, 情軫向隅, 恩覃祝網, 以貞觀六年奉制改爲加役流." 斷右趾로의 개정 시점에 대해 각 사료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는데, 『唐律疏議』와 『唐六典』(권6, 「尙書刑部」, 185-186쪽)에서는 武德연간으로, 『舊唐書』(권50, 「刑法」, 2135쪽)와 『新唐書』(『新唐書』 권56, 「刑法」, 1409쪽)에서는 貞觀元年(627)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요했는가'라는 점이다. 이는 혹시 流刑이 死刑의 代替刑[7]으로 기능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징벌효과에 있어 流刑 자체가 지닌 결함이 존재했다는 의미는 아닐까. 또한 加役流라는 役을 가중하는 방식의 流刑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皇帝의 寬刑정책이 그 발단임을 알 수 있는데, 혹시 長流나 決杖配流 등의 경우도 그것과 유사한 경로를 거친 것은 아닐까. 만약 加役流의 설정 과정이 하나의 전형으로서 '流刑의 變容'이라는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다면, 寬刑정책이 流刑의 酷刑化를 추동한 이 모순적인 상황을 좀 더 개연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唐代 流刑 제도의 활용 실태와 변화상 및 그 변화의 계기를 고찰하기 위해 律令의 규정은 물론이고, 寬刑의 명분과 그것을 구현·과시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死刑 정책, 그리고 그것이 流刑 제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流刑은 唐代 황제들이 추구했던 "不忍刑殺"의 명분, 즉 死刑의 집행을 꺼리는 경향 속에서 활용도 높은 형벌로 기능하였는데, 이 점은 동시에 流刑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長流와 그 극단적 형태인 賜死, 決杖配流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寬刑정책이라는 배경과 流刑 자체의 한계라는 조건이 결합하여 流刑의 變容을 초래한 주요 계기로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1장에서는 우선 流刑이 활용되었던 토대, 즉 唐代 皇帝들이 추구했던 형벌 정책의 지향성과 이것이 流刑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 과정에서 노출된 流刑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2장과 3장에서는 1장에서 살펴본 流刑의 한계가 어떤 방법으로 보완·극복되었는지 그 대안적 형태로 등장한 長流와 賜死, 決杖配流를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流刑이라는 형벌의 '唐代적 특징'은 바로 이러한 流刑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고자 고안된 정책적 노력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닐까. 본 논문은 바로 이 이질적인 요소들로 형성된 唐代의 流刑制度를 포착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寬刑의 理念과 流刑의 역할

唐의 황제들은 死刑에 대한 신중한 태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중해 보이고자 하

7) 死刑의 代替刑을 둘러싼 문제는 漢 文帝의 肉刑 폐지로 인해 '減死一等刑'을 담당하던 刑罰의 존재가 불안정해지면서 등장한 것이다. 이후 '死刑과 生刑(徒刑) 사이의 불균형 해소'가 魏晉南北朝시기 형벌 정책의 핵심 과제였던 상황은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吳豔紅,「試論中國古代的發罪人爲兵」,『中外法學』, 2001-2; 陳俊强,「漢末魏晉肉刑爭議析論」,『中國史學』 14, 2004; 張春海,「論隋唐時期的發罪人爲兵之刑」,『史學月刊』, 2013-6.

는 태도'를 통해 "好生之德"[8]의 명분을 획득하고자 했으며, 그것은 곧 자신의 "통치가 仁에 기반한 것[以寬仁治天下]"[9]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처럼 공식적인 死刑의 집행을 꺼리는 경향은 死刑을 대체할 형벌의 필요를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바로 流刑의 활용도를 높이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流刑은 寬刑이라는 역할, 명분의 구현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한 형벌로서 나름의 체계를 구축해갔다. 물론 명분과 현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괴리가 존재하며, 명분의 천명이 야기하는 실질적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명분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호출된 이상 그 자체로 이미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不忍刑殺"의 명분은 형벌 정책에 어떤 형태로 투영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을까.

우선 唐朝 형벌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던 太宗의 정책들을 살펴보면,[10] 貞觀初 律을 개정하며 隋의 開皇律에서 사형에 해당하던 범죄 93개 조항에 대해 流刑으로 변경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11] 이처럼 死罪의 범위를 축소한 시도는 加役流의 설정은 물론이고 反逆者의 兄弟에 대한 沒官・配流 처벌 규정,[12] 覆奏制度의 확충[13]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형 금지 시기의 설정[14] 역시 사료에 기록된 몇몇 사례를 통해 그 실질적 효

---

8) "好生之德"이라는 표현은 玄宗의 '사형폐지 조칙'에는 물론 德宗(『舊唐書』 권13, 「德宗本紀」, 391쪽), 武宗(『舊唐書』 권18上, 「武宗本紀」, 592쪽) 등이 반포한 조칙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원문은 『尙書』에 수록되어 있다. 『尙書正義』 권3, 「大禹謀 第三」, 109-110쪽, "皐陶曰: 「帝德罔愆, 臨下以簡, 御衆以寬. 罰弗及嗣, 賞延于世. 宥過無大,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于民心, 茲用不犯于有司.」"

9) 『新唐書』 권56, 「刑法」, 1412쪽, "初卽位, 有勸以威刑肅天下者, 魏徵以爲不可, 因爲上言王政本於仁恩, 所以愛民厚俗之意, 太宗欣然納之, 遂以寬仁治天下, 而於刑法尤愼."

10) 貞觀11년(637)에 반포되었던 '貞觀律'은 唐律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그 대체적인 내용은 唐代 전반에 준용되었다. 陳俊强, 「唐代的流刑-法律虛與實的一個考察」, 3장; 劉俊文, 『唐代法制研究』, 27쪽; 劉俊文, 『唐律疏議箋解』, 16쪽.

11) 『唐六典』 권6, 「尙書刑部」, 183쪽, "<注: 貞觀初, 有蜀王法曹參軍裴弘獻奏駁律令不便於時三十餘條. 又命長孫無忌、房玄齡等釐正, 凡爲五百條, 減開皇律大辟入流者九十三條, 比古死刑, 殆除其半.>" 『舊唐書』(권50, 「刑法」, 2138쪽)와 『新唐書』(권56, 「刑法」, 1410쪽)에는 92조로 기록되어 있다.

12) 太宗은 同州人 房彊이 아우인 房任의 謀反에 연좌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 房玄齡 등에게 대책을 議論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로 反逆者의 형제는 사형 대신 沒官 처벌을 받게 되었다. 『新唐書』 권56, 「刑法」, 1409-1410쪽, "於是令: 反逆者, 祖孫與兄弟緣坐, 皆配沒; 惡言犯法者, 兄弟配流而已."

13) 貞觀5년(631)에 제정한 '覆奏制度'는 사형 집행 시 京師에서는 담당 관사가 다섯 번 覆奏하고, 京師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刑部가 세 번 覆奏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太宗이 大理丞 張蘊古와 交州都督 盧祖尙을 死刑에 처한 후, 그것에 대해 후회하며 제정한 것인데, 처음에는 京師와 지방 모두 세 번의 覆奏로 동일하였으나, 그것 역시 부족하다고 느낀 太宗의 명으로 京師의 경우 5번으로 늘어난 것이다. 『唐六典』 권6, 「刑部尙書」, 189쪽, "凡決大辟罪, 在京者, 行決之司五覆奏, 在外者, 刑部三覆奏. <注: 在京者, 決前一日二覆奏, 決日三覆奏, 在外者, 初日一覆奏, 後日再覆奏. 縱臨時有敕不許覆奏, 亦準此覆奏.> 若犯惡役已上及部曲、奴婢殺主者, 唯一覆奏."

14) 立春 이후 秋分 이전까지의 기간과 大祭祀, 致齋, 朔望(음력 초하루와 보름), 24절기, 斷屠月(正月・5月・9月) 등이 그에 해당되었다. 『新唐書』 권56, 「刑法」, 1410쪽, "每歲立春至秋及大祭祀、致

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神龍初 武三思의 謀逆을 고발했다 斬刑에 처하게 된 雍州人 韋月將의 경우 "發生之月"이라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大理卿 尹思貞의 상주에 의해 결국 "決杖配流" 처벌을 받게 되었다(『舊唐書』 권100, 「尹思貞列傳」, 3110쪽). 또한 永徽元年(650) 長孫無忌의 謀反을 무고했던 洛陽人 李弘泰 역시 斬刑으로 처벌될 상황이었으나 사형 집행 시기의 중요성을 역설한 侍中 于志寧의 간언에 의해 형 집행이 중지 되었다(『唐會要』 권40, 「臣下守法」, 845-846쪽). 開元14년(726)의 陳州刺史 李樂(『冊府元龜』 권150, 「帝王部 寬刑」, 1815쪽)이나 開元25년(737)의 宋廷暉, 周仁公 등의 경우(『冊府元龜』 권150, 「帝王部 寬刑」, 1815쪽)도 모두 동일한 이유로 免死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다.

太宗의 여러 정책들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玄宗이 시도했던 '死刑 조항의 폐지' 조치이다. 『唐大詔令集』과 『唐六典』에는 開元 연간부터 이미 死刑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데,[15] 특히 死罪를 범한 이들을 모두 "免死配流"로 처벌했다는 내용을 통해 死刑 정책이 流刑에 미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天寶6년(747) 正月, 玄宗은 詔를 내려 絞刑과 斬刑의 조문을 삭제하도록 명령한다.[16] 이는 그가 추구해온 死刑 폐지 정책의 완결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형태의 死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資治通鑑』의 기록[17]대로 실제로는 "杖殺" 등의 '비공식적인 死刑'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얼마 후 乾元2년(759)에는 絞刑과 斬刑의 조항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18] 그렇다면 玄宗의 死刑 폐지 정책은 "好生之

---

齊, 朔望、上下弦、二十四氣、雨及夜未明, 假日、斷屠月, 皆停死刑." 특히 立春과 秋分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徒刑1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唐律疏議』 권30, 斷獄28조(총 제496조), 571-572쪽).

15) 『唐大詔令集』 권82, 「刑法」, 474쪽, '寬徒刑配諸軍効力敕', "敕, … 朕自臨萬國, 向踰三紀, 思弘至道之化, 實務好生之德, 比者應犯極法, 皆令免死配流, 所以市無刑人, 獄無冤繫."; 『唐六典』 권6, 「尚書刑部」, 189쪽, "凡決大辟罪皆於市. <注: 古者, 決大辟罪皆於市. 自今上臨御以來無其刑, 但存其文耳.>"

16) 『全唐文』 권25, 「南郊推恩制」, 65-66쪽, "朕承大道之訓, 務好生之德, 于今約法, 已去極刑. 議罪執文, 猶存舊目, 旣措而不用, 亦惡聞其名. 自今以後, 斷絞斬刑者, 宜除削此條, 仍令法官約近例詳定處分."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冊府元龜』(권612, 「定律令4」, 7348쪽)에는 "今斷極刑云, 決重杖以代極刑法, 始于此也."라는 注가 부기되어 있다.

17) 『資治通鑑』 권215, '玄宗天寶六載', 6876쪽, "戊子, 合祭天地於南郊, 赦天下. 制免百姓今載田租. 又令除削絞、斬條. 上慕好生之名, 故令應絞、斬者皆重杖流嶺南, 其實有司率杖殺之." 曾我部靜雄은 이에 대해 "태평을 粉飾하여 周의 名君인 成王·康王 때 '天下가 안녕하여 형구를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견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唐の玄宗の死刑廢止について」, 『中國律令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71, 89-90쪽.

18) 『唐會要』 권39, 「議刑輕重」, 830쪽, "二年六月十四日, 刑部奏: 「謹按五刑, 笞、杖、徒、流、死是也. 今准敕, 除削絞死, 唯有四刑. 每定罪, 須降死刑, 不免還計斬絞. 敕、律互用, 法理難明. 又應決重杖之人, 令式先無分析 京城知是蠹害, 決者多死, 外州見流嶺南, 決不至死. 決有兩種. 法開二門.」 敕旨: 「斬絞刑宜依格律處分.」" 동일한 내용이 『通典』(권165, 「刑法3」, 4261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단 시기를 上元2년(761)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은 차이가 있다.

德”의 명분을 과시하기 위한 粉飾의 도구였을 뿐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한 행위였을까. 적어도 流刑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그 효과를 간과할 수 없을 듯하다. 玄宗 연간에 이루어졌던 長流의 확대와 決杖配流의 정착은 사형 폐지라는 급진적 정책에 힘입어 등장한 현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편 禮와 刑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流刑을 이용하여 死刑의 실행을 피하고 禮의 명분을 획득했던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長慶2년(822) 아버지를 해치려는 자를 살해한 康買得에 대해 “減死罪一等” 처벌을 한 것(『唐會要』 권39, 「議刑輕重」, 832쪽)이나, 元和6년(811) 아버지의 원수를 살해한 富平人 梁悅에 대해 免死 처벌로 “決杖一百, 配流循州”에 처한 것(『新唐書』 권195, 「孝友列傳」, 5588쪽)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寶曆3년(827) 며느리를 살해한 시어머니에 대해 “減死” 처벌을 내린 것(『唐會要』 권39, 「議刑輕重」, 832쪽)과, 太和6년(832) 취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다 아버지가 대신 구금되자 돌아와서 자수한 上官興을 死刑 대신 “決杖八十, 配流靈州”로 처벌한 것(『舊唐書』 권17下, 「文宗本紀」, 545쪽), 元和14년(819) 坐贓으로 死刑을 받게 된 權長孺를 구하기 위해 연로한 어머니가 사정하자 “免死長流” 처벌로 대신한 것(『舊唐書』 권159, 「崔羣列傳」, 4188쪽) 등도 모두 동일한 맥락의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寬刑의 태도는 그 대상이 官人 등의 통치 집단일 경우 더욱 확고하게 관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것은 唐律에 명시된 형법적 특권을 통해 보장되었는데,[19] 그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八議[20]이다. 다음은 八議의 원칙으로 인해 流刑의 활용이 추동된 실례들이다. 우선 永徽2년(651) 華州刺史 蕭齡之는 廣州都督에 부임했을 당시 범한 贓罪가 발각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八議에 해당되는 자를 죽이는 것은 “堯舜의 用刑”이 아니라는 御史大夫 唐臨의 상주로 인해 대신 流刑 처벌을 받게 되었다. 蕭齡之는 齊(南朝) 高帝의 五世孫이었다(『新唐書』 권113, 「唐臨列傳」, 4184쪽). 또한 先天2년(713) 薛伯陽은 駙馬都尉라는 이유로 “免死配流” 처분을 받았으며(『舊唐書』 권73, 「薛收列傳」, 2592쪽), 長慶2년(822) 昭義監軍使 劉承偕는 太后의 養子였기에 死刑을 피할 수 있었다(『資治通監』 권242, ‘穆宗長慶二年’, 7814쪽). 功臣의 후손들 역시 免死의 대상이 되었는데, 開元10년(722) 坐贓으로 斬刑이 선고되었던 武彊令 裴景仙(『資治通監』 권212, ‘玄宗開元十年’, 6751쪽), 至德2년(757) 安祿山의 亂에 연루되어 死刑을 판결 받았던 張說의 아들 大理卿 張均(『舊唐書』 권97, 「張說列傳」, 3058쪽), 長慶4년(824)의 李元本(『舊唐

19) 官人에게 부여되었던 형벌상의 여러 특권들과 그 집행 원칙에 대해서는 김택민, 『중국고대형법』, 서울: 아카넷, 2002, ‘제4장 관인과 죄형’ 참조.

20) 八議는 『周禮』의 八辟(『周禮注疏』 권35, 「小司寇」, 1073-1076쪽, “以八辟麗邦灋, 附刑罰. 一曰議親之辟, 二曰議故之辟, 三曰議賢之辟, 四曰議能之辟, 五曰議功之辟, 六曰議貴之辟, 七曰議勤之辟, 八曰議賓之辟.”)을 계승한 것으로, 의미는 물론이고 항목의 명칭들도 정확히 일치한다. 구체적 내용은 『唐律疏議』 권2, 名例7조-11조 참조.

書』 권142, 「李寶臣列傳」, 3871쪽),[21] 寶曆2년(826)의 藍田令 劉伉(『冊府元龜』 권707, 「令長部 貪黷」, 8418쪽), 開成3년(838) 靈武節度使 王晏平(『資治通監』 권246, '文宗開成三年', 7935쪽)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22]

이상으로 死刑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여러 정책들과 그것을 관통했던 "不忍刑殺"의 명분, 그리고 그 안에서 流刑이 수행했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조치로 인해 당시 死刑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그 구체적 수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貞觀4년(630)과 開元25년(737)에 사형에 처해진 자가 각각 29인과 58인 뿐이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23] 그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을뿐더러, 무엇보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논문의 관심사는 裴行本 등에게 免死처분을 내리면서 "古人은 죽음으로 죽음을 억제했지만, 나는 은혜로 그것을 그치게 하겠다[故人以殺止殺, 我今以恩止殺]."[24]라고 했던 則天武后의 말, 이러한 명분의 과시와 이를 위해 활용되었던 流刑의 역할에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流刑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死刑의 代替刑으로서 기존의 流刑이 지니고 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차원의 징벌 효과가 필요해졌던 것이다.

징벌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치,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流刑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들 때문이었다. 唐代 가장 주요한 유배지는 嶺南道였으며, 그

---

21) 『舊唐書』 권142, 「李寶臣列傳」, 3871쪽, "子元本, 生於貴族, 輕薄無行. 初, 張茂昭子克禮尙襄陽公主. 長慶中, 主縱恣不法, 常遊行市里. 有士族子薛樞、薛渾者, 俱得幸於主. … 上表陳聞, 乃召主幽于禁中. 以元本功臣之後, 得減死, 杖六十, 流象州. 樞、渾以元本之故, 亦從輕杖八十. 長流崖州." 李元本과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薛樞와 薛渾은 "衣冠"이라는 이유로 死刑을 면할 수 있었다(『冊府元龜』 권153, 「帝王部 明罰2」, 1857쪽).

22) 그 외 본인이 세운 功으로 인해 死刑 대신 流刑으로 처벌된 사례들도 있는데, 永徽4년(653) 房遺愛의 謀反에 연좌되었던 左驍衛大將軍 執失思力(『新唐書』 권110, 「執失思力列傳」, 4117쪽)과 柴哲威, 薛萬備(『冊府元龜』 권925, 「總錄部 譴累」, 10925쪽)는 각각 戰功과 勳舊임을 인정받아 死刑을 면하였으며, 垂拱3년(687)의 施州刺史 李孝逸(『舊唐書』 권60, 「淮安王神通列傳」, 2344쪽)과 永昌元年(689)의 洛陽令 魏元忠(『舊唐書』 권92, 「魏元忠列傳」, 2952쪽)은 徐敬業을 토벌한 공로로 "免死配流"에 처해졌다. 한편 太和4년(830) 刑部員外郎 張諷과 大理少卿 崔玘 등의 상주문은 八議 특히 '議親'과 '議貴'의 적용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건의 발단은 絳州刺史 裴鋭가 贓罪를 범한 후, 太皇太后의 親族이라는 이유로 議章을 적용받은 데서 시작한다. 이에 대해 張諷 등은 앞으로 議親에 해당하는 자가 刺史·監臨·主守에 임명된 후, 贓罪를 범해 減死 처벌을 받았다면 그의 자손들도 監臨·主守 등에 서임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刺史의 경우 議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議章의 혜택을 입는 당시의 풍토를 비판하며, 앞으로 法官 등이 官品을 詳考하지 않고 議章을 적용할 경우 그에 대해 처벌할 것을 건의하였다(『唐會要』 권39, 「議刑輕重」, 833쪽).

23) 『新唐書』 권2, 「太宗本紀」, 31쪽, "(貞觀四年)是歲, 天下斷死罪者二十九人."; 『舊唐書』 권50, 「刑法」, 2150쪽, "(開元)二十五年九月奏上, 敕於尙書都省寫五十本, 發使散於天下. 其年刑部斷獄, 天下死罪惟有五十八人."

24) 『新唐書』 권113, 「徐有功列傳」, 4189-4190쪽, "鳳閣侍郎任知古、冬官尙書裴行本等七人被誣當死, 后謂宰相曰: 「古人以殺止殺, 我今以恩止殺, 就羣公丐知古等, 賜以再生, 可乎?」… 於是悉免死."

중에서도 활용도가 높았던 곳은 京師로부터 7000里 이상 떨어진 崖州나 儋州, 振州 등이었다.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3000里를 훌쩍 넘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25] 이처럼 '먼 지역'까지 죄수를 호송하는 일은 분명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神龍2년(706) 流刑에 처해진 御史 李福業(『新唐書』 권120, 「桓彦範列傳」, 4313쪽)이나 先天2년(713)의 崔液(『舊唐書』 권74, 「崔仁師列傳」, 2624쪽), 開元初 光祿小卿 盧崇道(『舊唐書』 권70, 「王珪列傳」, 2531쪽)의 경우처럼 유배지로 가는 도중 죄수가 도주하는 사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26] 물론 律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들이 존재하지만,[27]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배지까지 죄인을 호송하는 일은 고도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여전히 '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流刑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放還 규정을 통해서도 流刑의 제한적 징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名例律 24조에는 죄수가 유배지에 도착하여 居作을 마친 이후에는 그곳의 戶口로 편입되며, "反逆緣

---

25) 律에는 流刑의 등급이 2000里 · 2500里 · 3000里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刑의 경중을 표현하는 다분히 상징적인 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流刑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貞觀연간(627-649)에 들어서면서부터 嶺南道가 주요 유배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律에 규정된 '里數'의 준수를 강조하는 대책이 존재하기도 하였지만(『唐會要』 권41, 「左降官及流人」, 865-866쪽), 현실적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流刑 사례에 등장한 유배지의 종류와 빈도를 조사해보니, 가장 큰 특징은 유배지의 분포에 있어 嶺南道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총 337개의 사례 중 무려 253개로 대략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嶺南으로 표기한 경우(嶺南외에도 "嶺南惡處", "嶺外", "嶺表" 등으로 표기)가 94개이며, 그 외 45개 지역이 유배지로 활용되었는데, 그 중 康州, 儋州, 崖州, 瀼州, 驩州 등이 주요 지역으로 기능하였다. 流刑 처벌 사례들의 대상이 주로 官人등의 통치 집단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축출이라는 流刑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嶺南道는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음이 분명하다. 黔中道의 경우 嶺南道에 이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곳으로 黔州와 播州 등 총 15개 지역이 유배지로 활용되었으며, 뒤를 이어 劍南道와 江南西道, 江南東道 등도 주요 유배지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북 변경 지역인 隴右道의 비중은 매우 미비한데, 이는 통치 집단의 경우 實邊 정책의 대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계급 차에 의한 유배지의 차이를 집중 거론한 논문이 張春海의 「試論唐代流刑與國家政策、社會分層之關係」이다). 다만 그 원인을 구명하는데 있어 隴右道가 廣德元年(763) 吐蕃에 함락되어(『新唐書』 권6, 「大宗本紀」, 169쪽) 더 이상 유배지로 기능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龍朔3년(663) 庭洲로 유배되었던 司憲大夫 楊德裔나 右相 李義府의 아들 李津, 李洽 등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6) 貞元16년(800) 于頔에 의해 유배지로 가는 도중 납치되었던 鄧州刺史 元洪의 경우(『舊唐書』 권156, 「于頔列傳」, 4130쪽)도 流刑 집행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7) 律에는 유배지로 가는 도중 流刑囚가 도주했을 경우 죄수 본인과 담당 관원이 받아야 할 처벌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唐律疏議』 권28, 捕亡9조(총 제459조), 533쪽). 또한 '行程'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법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시에는 설사 赦免令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해당 죄수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唐律疏議』 권3, 名例2조, 68쪽). 만약 담당 관리가 流刑囚의 출발을 지체하였다면 하루에 笞刑 30대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唐律疏議』 권30, 斷獄24, 569쪽).

坐流” 및 “謀反·大逆을 범했으나 死刑에서 감면되어 유배된 경우[因反逆免死配流]”를 제외하면 6년 이후 仕宦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28]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流刑의 기본적인 성격을 ‘無期刑’으로 이해하고 있는데,[29] 『新唐書』「刑法志」에는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들게 하는 기록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즉 “反逆緣坐流가 아니라면 6년 이후 석방하고 特流[本罪가 流刑에 해당하지 않는데 특별히 유배된 자]의 경우 3년 후에 석방한다. 관품을 지닌 자는 다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30]고 하여 ‘6년’이라는 刑期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31] 『天聖令』 등의 기록을 볼 때,[32] “六載以後聽仕”의 규정은 확실히 官人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唐會要』에 수록된 開成4년(839)의 敕에는 名例律과 獄官令을 인용하며 “有身名者”와 “無官爵者”의 경우를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33] 이를 통해 그것이 官人에게만 한정된 조항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官人은 “反逆緣坐流”와 “因反逆免死配流”에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유배 후 6년이 지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서임이 가능하였으며, 그것은 당연히 본거지로의 귀환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였을 것이다. 일반 百姓의 경우 『唐律疏議』의 조문에 근거해서 본다면 居作 기간이 종료되고 유배지의 호적에 편입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放還의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였지만, 늦어도 元和8년 이전 ‘6년 刑期’의 설정이 이루어지면서 無期刑에서 有期刑로의 변화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34] 따라서 ‘영구 추방’이라는 징벌 효과를

---

28) 『唐律疏議』 권3, 名例24조, “注: 役滿及會赦免役者, 卽於配處從戶口例. <疏>議曰: 役滿一年及三年, 或未滿會赦, 卽於配所從戶口例, 課役同百姓. 應選者, 須滿六年, 故令云, 「流人至配所, 六載以後聽仕. 反逆緣坐流及因反、逆免死配流, 不在此例. 卽本犯不應流而特配流者, 三載以後亦聽仕.」”

29) 戴炎輝, 『唐律通論』, 190쪽; 辻正博, 앞의 책, 124-133쪽, 陳俊强, 앞의 논문, 248-254쪽.

30) 『新唐書』 권56, 「刑法」, 1411쪽, “非反逆緣坐, 六歲縱之, 特流者三歲縱之, 有官者得復仕.”

31) 이에 대해 劉俊文은 『新唐書』의 기록은 唐 후기에 설정된 ‘6년 刑期’의 규정이 唐代 전체에 해당하는 것처럼 잘못 서술된 것이라고 그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放還의 문제에 있어서는 官人과 일반 百姓의 경우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唐代法制研究』, 309-310쪽). 戴建國 역시 劉俊文의 의견에 동의하며 『新唐書』의 기록은 官人에 대한 내용을 일반 犯人의 ‘放歸制度’로 오해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앞의 책, 248-249쪽). 반면 沈家本은 『新唐書』의 기록은 貞觀 연간의 것이고, 『唐律疏議』가 편찬되었던 永徽연간(650-655) 그 내용에 수정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는데(『歷代刑法考』, 273쪽), 가설을 보완해줄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32) 『天聖令』 권27, 「獄官令」, 341쪽, “<唐6>諸流移人移 謂本犯除名者 至配所, 六載以後聽仕. <注: 其犯反逆緣坐流, 及因反逆免死配流, 不在此例.> 卽本犯不應流而特配流者, 三載以後聽仕. 有資蔭者, 各依本犯收敘法. 其解見任及非除名移鄉者, 年限、敘法準考解例.” 『唐六典』(권6, 「尙書刑部」, 190쪽)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다만 注의 내용 중 “及因反逆免死配流”를 “及免死役流(死刑에서 감면되어 役에 충당되거나 유배된 경우)”라고 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3) 『唐會要』 권41, 「左降官及流人」, 864쪽, “其年十月五日敕節文: 「今後流人, 宜准名例律及獄官令, 有身名者, 六年以後聽赦; 無官爵者, 六年滿日放歸.」” 『宋刑統』(권3, 「名例律」, 49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六年以後聽赦”의 “赦”를 “叙”로 기록한 것과 “無官爵者”를 “應是流人”으로 표현한 것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34) 일반 流刑囚의 6년 형기 설정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元和8년(813) 刑部侍郎 王播의 상주를 수

달성하기 위해서는 長流와 같이 변용된 가중 처벌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여러 형벌상의 특권을 보장받았던 官人의 경우 '五流'[35]를 범해 유배에 처해졌다고 하더라도 居作[36]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役을 가중하는 방식의 加役流는 사실상 일반 流刑[三流]과 집행 형태에 있어 다를 바가 없었다. 주로 관인을 대상으로 한 사서의 流刑 처벌 사례에서 加役流가 단 한 건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恩赦의 빈번한 시행[37] 역시 流刑이라는 重刑의 징벌 효과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大赦나 曲赦, 降罪 등의 내용에는 流刑囚의 방환 혹은 감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은 곧 流刑 집행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恩赦의 시행이 流刑의 집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貞元연간(785-805) 李希烈의 모반에 연루되어 流刑에 처해졌던 李元平의 경우인데, 그는 恩赦로 방환되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皇帝의 명령으로 다시 流刑에 처해지게 되었다(『舊唐書』 권130, 「李元平列傳」, 3630쪽). 開元연간에 등장한 "量移"[38] 역시 流刑의 강도

---

록하고 있는 『唐會要』의 기사이다. 『唐會要』 권41, 「左降官及流人」, 861-862쪽, "(元和)八年正月, 刑部侍郎王播奏: 「天德軍五城及諸邊城配流人等, 臣竊見諸處配流人, 每逢恩赦, 悉得放還, 唯前件流人, 皆被本道重奏, 稱要防邊, 遂令沒身, 終無歸日. 臣又見比年邊城犯流者, 多是胥徒小吏, 或是鬪打輕刑, 據罪可原, 在邊無益. 伏請自今以後, 流人及先流人等, 准格例, 滿六年後, 並許放還, 冀抵法者足以悛懲, 滿歲者絶其愁怨.」 從之." 『冊府元龜』(권616, 「刑法部 議讞」, 7406쪽)에는 '准格例'가 '准長流格例'로 기록되어 있다.

35) 五流는 加役流 · 反逆緣坐流 · 子孫犯過失流 · 不孝流 · 會赦猶流를 의미하는 것으로 名例律 11조에 그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加役流는 '五刑 2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형벌로 死刑과 流刑 사이의 범죄들에 적용되었으며(流刑3000里와 居作3년), 反逆緣坐流는 謀反과 謀大逆에 연좌되어 流刑 처벌을 받은 경우(謀反과 謀大逆의 연좌에 대해서는 賊盜律1조에 규정), 子孫犯過失流는 감각이나 사려의 미숙함으로 과실에 의해 祖父母 · 父母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不孝流는 父母의 喪을 듣고도 擧哀하지 않았거나 祖父母 · 父母를 고발하고 저주한 경우, 厭魅를 만들어 祖父母 · 父母에게 아첨한 경우를 의미했으며, 會赦猶流는 赦免令이 내리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 즉 蠱毒을 제조하거나 기른 경우, 小功尊屬이나 從父兄姊를 살해한 경우, 謀反 · 大逆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36) 居作의 기간은 일반적인 流刑(三流)의 경우 1년, 加役流는 3년이었다. 주로 해당 관청의 役에 복무하거나 城隍, 창고 등의 수리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勞役에 종사할 때에는 칼(鉗)이나 차꼬(盤枷)를 착용해야 했다. 단 병에 걸렸거나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벗을 수 있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巾과 帶의 착용은 금지되었다. 또한 열흘마다 하루의 휴가를 주었으며, 臘日이나 寒食에는 이틀을 쉴 수 있었다(『唐六典』 권6, 「尙書刑部」, 190쪽). 또한 祖父母 · 父母의 喪을 당했거나, 본인이 혼인할 경우에도 각각 휴가가 허락되었다(『天聖令』 권27, 「獄官令」, 341쪽).

37) 陳俊强의 연구에 따르면, 唐代 恩赦는 총 453회 행해졌으며, 그 중 大赦는 총 188회로 이는 평균 1년에 0.65회(19개월에 한 번) 행해진 셈이라고 한다. 陳俊强, 『皇權的別一面-北朝隋唐恩赦制度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178-180쪽. 이 글에서 恩赦는 陳俊强의 견해에 따라 '황제가 반포한 大赦, 曲赦, 降罪, 錄囚 등의 범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8) 量移라는 표현이 사료에 등장한 최초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冊府元龜』 권85, 「帝王部 赦宥4」,

를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量移는 유배지 혹은 貶官된 곳으로부터 京師 가까운 지역으로 죄수를 이주시키는 것인데, 주로 大赦의 한 종류로 시행되었다.[39] 流刑囚에 대해 量移가 적용된 예로는 天寶9년(750)의 御史中丞 宋渾(『舊唐書』 권96, 「宋璟列傳」, 3036쪽)이나 德宗연간 源休(『舊唐書』 권127, 「源休列傳」, 3674쪽)의 사례 등이 있다.

이처럼 流刑은 가시적이며 직접적인 형벌의 효과를 드러내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 처벌 대상이 官人일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되었는데, 앞서 보았듯이 官人은 居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6년 이후 재서임이 가능하였으며, 그 기간마저도 종종 恩赦에 의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流刑의 처벌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을까. 流刑의 한계를 방치해 두기에는 그것에 부여된 重刑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그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2. 放還 가능성의 봉쇄: 長流와 賜死

龍朔3년(663) 右相 李義府는 그의 아들 李津과 李洽, 李洋, 사위인 柳元貞과 함께 권력을 전횡한 대가로 流刑에 처해졌는데, 이 사건을 서술하며 『舊唐書』 「李義府傳」에서는 그 처벌 형태를 각각 "長流嶲州", "長流振州"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40] 또한 乾封元年(666)의 大赦에서 "長流人"에 대한 방환을 허락하지 않자 이에 낙심한 李義府는 병을 얻어 사망하고, 이후 그의 妻子는 上元元年(674)의 大赦를 통해 비로소 洛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41]

---

1024쪽, "(開元十一年)十一月戊寅親祀南郊大赦天下制曰 … 其左貶官, 非逆人五服內親, 及犯贓賄名教者, 所司勘實奏聞, 量移近處." 한편 量移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유사한 조치가 開元3년(715)의 恩赦令에 보인다. 『冊府元龜』 권85, 「帝王部 赦宥4」, 1007쪽, "(開元三年) 其犯杖配流者, 宜免杖依前配流, 已決及流三千里者, 節級稍移近處, 二千五百里以下, 並宜配徒以殿."

39) 量移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貶官을 다룬 것들이며, 流刑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 島善高, 「唐代量移考」, 『東洋法史の探究』, 東京: 汲古書院, 1987; 張艷雲, 「唐代量移制度考述」, 『中國史硏究』, 2001-4; 陳俊强, 「唐代量移試探」, 『第五屆唐代文化學術硏討會論文集』, 麗文文化, 2001.

40) 『舊唐書』 권82, 「李義府列傳」, 2769-2770쪽. 『冊府元龜』 권334(「宰輔部 譴讓」, 3949-3950쪽)를 제외한 『新唐書』(권3 · 61 · 98 · 223上), 『資治通監』(권201) 등의 사료에서는 모두 "流"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41) 『舊唐書』 권82, 「李義府列傳」, 2770쪽. 『資治通鑑』(권201, 「唐紀」, 6347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 『新唐書』(권223上, 「李義府列傳」, 6342쪽)에는 "獨流人不許還"이라고 되어 있어 이 조치가 流刑 처벌 전반에 대한 것인지 長流에만 한정된 것인지 확언하기 어렵다. 乾封元年 大赦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른 사료들(『舊唐書』 권9, 「本紀」, 89쪽; 권23, 「禮儀志3」, 888쪽; 『冊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한 “長流”란 무엇일까. 일반적인 流刑 처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長流에 대해서는 律令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朝野僉載』에 長孫無忌의 상주로 長流에 대한 규정이 “永例”가 되었다는 간략한 기사가 있지만, 여타의 기록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42] 한편 沈家本은 『歷代刑法考』에서 “減贖”이 불가능해 法대로 “除名, 配流” 처벌을 받아야 했던 “五流”가 바로 唐代의 長流人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3] 그의 이런 견해는 타당한 것일까. 우선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長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

沈家本이 설명한 바와 같이 五流를 범했다면 減刑과 贖免이 불가능하였으며, 律의 규정대로 除名과 配流 처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것이 官人에 대한 형벌상의 특권을 설명하며, 그 예외 규정으로 언급된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官人은 官當 등에 의해 “실제 유배에 처해지지 않도록[不合眞配]”[44]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五流의 경우 바로 그 특권의 범주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 “실제 유배[眞配]”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流刑 집행 사례들 중 配流 혹은 流 등으로 표현되는 일반적 사례이지, 그에 대한 ‘가중 처벌’로서의 長流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長流가 일반적인 流刑에 비해 重刑이었다는 것은 ‘長’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45] 다음의 사례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즉 酷吏들에 대한 처벌 형태를 명시했던 開元13년(725)의 敕에 실린 내용인데, 來子珣・萬國俊・王弘義 등 23인에 대해서는 長流로 처벌하고(“宜長流嶺南遠處”),

---

府元龜』 권80, 「帝王部 慶賜2」, 927쪽; 권84, 「帝王部 赦宥3」, 993쪽)을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42) 『朝野僉載』 補輯, 155쪽, “唐趙公長孫無忌奏別勅長流, 以爲永例. 後趙公犯事, 敕長流嶺南, 至死不復回. 此亦爲法之弊.” 『太平廣記』(권121, 「報應20」, 850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위의 기록에서는 결국 長孫無忌 자신도 長流로 처벌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朝野僉載』 권1에도 長孫無忌의 長流 처벌에 대한 언급이 있다. 11쪽, “趙公長孫無忌以烏羊毛爲爲渾脫氈帽, 天下慕之, 其帽爲「趙公渾脫」. 後坐事長流嶺南, 渾脫之言, 於是效焉.”), 이는 顯慶4년(659)의 사건(『舊唐書』 권65, 「長孫無忌列傳」, 2456쪽)을 지칭하는 듯이 보인다. 다만 위의 『舊唐書』를 비롯해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문헌들(『新唐書』 권105, 「長孫無忌列傳」, 4021쪽; 『資治通監』 권200, ‘高宗顯慶四年’, 6314쪽; 『冊府元龜』 권339, 「宰輔部 譴讓」, 4011-4012쪽)에서는 “長流”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어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43) 沈家本은 禁錮에 대해 설명하며 長流를 언급하였는데, 恩赦가 시행되더라도 減贖될 수 없는 점이 禁錮와 長流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파악하였다. 『歷代刑法考』, 497쪽.

44) 『唐律疏議』 권2, 名例17조, 45쪽, “以官當流者, 三流同比徒四年. <疏>議曰: 品官犯流, 不合眞配, 旣須當・贖, 所以比徒四年. 假有八品・九品官, 犯私罪流, 皆以四官當之, 無四官者, 準徒年當・贖. 故云「三流同比徒四年」.”

45) 長任이나 長禁(長囚)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長任은 貶官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로서 그 관계가 ‘長流-流刑’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舊唐書』 권10, 「肅宗本紀」, 261쪽; 권91, 「桓彦範列傳」, 2930-2931쪽; 권86, 「許王素節列傳」, 2827쪽).

그들에 비해 죄가 가벼운 陳嘉言・魚承曄 등 4인은 보통의 流刑으로 처벌한다고(“宜配嶺南”)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通典』 권170, 「刑法8」, 4431쪽). 또한 본인은 물론이고 자손들 역시 官職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子孫亦不許仕宦”이라고 한 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子孫亦不許近任”이라고 하여 일반 관직과 “近任”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6] 다만 子孫에 대한 부분은 酷吏들에 대한 처벌로서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며, 보통의 長流와 流刑의 처벌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長流는 어떤 범주에서 어떤 형태로 流刑의 처벌 강도를 증가시켰던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들을 통해 그 윤곽을 그려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長流의 처벌 사례를 토대로 유배지의 분포, 杖刑의 부가, 처벌 대상의 신분, 가족의 동행, 刑期의 유무, 恩赦의 적용 등 구체적 특징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우선 유배지에 대해 살펴보면, 총 85개 사례 중 65개가 嶺南道로 76% 이상의 압도적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黔中道(8개)와 黔南道(3개)의 순인데, 이러한 특징은 1장에서 살펴보았던 일반 流刑의 양태와 유사하다. 杖刑의 부가 사례는 모두 9개로 長流의 집행이 반드시 決杖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47] 처벌 대상의 경우 24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9품 이상의 流內官인데, 그 24개의 사례 중 다수가 使職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례의 대부분이 官人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48] 이는 사료가 다루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지만, 더불어 官人에 대한 일반 流刑의 刑期가 6년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太宗연간 등장한[49] 長流라는 형벌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官人으로 한정했을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50] 다음으로 가족의 동행 여부[51]에 관해서는 大中5년(851년) 中書門下의 奏文을

---

46) 『舊唐書』(권8, 「玄宗本紀」, 187-188쪽)에도 각각 “子孫不許仕宦”, “子孫不許近任”이라고 하여 『通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唐會要』(권41, 「酷吏」, 871쪽)에는 두 경우 다 “子孫亦不許仕”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戴建國은 『通典』의 기록에 근거하여 陳嘉言 등의 경우 “近任”을 제외한 官職에는 再敍任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앞의 책, 254-255쪽).

47) 사료에서는 처벌 형태를 언급할 때 杖刑이 부가된 경우 명확히 기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85개의 사례 중 단 9개뿐이라면, 통상적인 長流에 杖刑은 수반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陳璽의 연구(앞의 논문, 126쪽)에서도 ‘決杖은 장류의 필요조건이 아니며, 부가여부는 法司가 聖意에 따라 權斷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杖刑이 부가된 9개의 사례에서 杖의 수가 100대, 80대, 60대, 40대의 4종류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48) 長流의 대상이 주로 官人이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陳璽, 위의 논문, 125쪽; 王春霞, 앞의 논문, 11쪽.

49) 기존의 연구들은 『朝野僉載』의 長孫無忌 일화를 근거로 長流의 등장 시기를 太宗연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戴建國, 앞의 책 254쪽; 陳璽, 위의 논문, 121쪽.

50) 즉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流刑이 有期刑으로 정착되기 전, 일반 백성에 대한 流刑은 기본적으로 無期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그 이전 시기까지의 長流는 官人에게만 해당하는 형

살펴보아야 하는데, 長流나 減死 처분을 받은 경우 유배지로 떠날 때 妻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52]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流刑과 달리 妻와 동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일까. 李義府의 사례를 보면 그의 妻도 함께 유배지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龍朔3년(663) 이후의 어느 시점에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 역시 명확한 답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長流가 流刑의 징벌 효과를 향상시켜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정된 것이라면, 역시 그 특징은 '長'이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刑期의 유무와 恩赦의 적용, 이 두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그 내용을 파악해 보자.

上元元年(760) 司農卿 李逢年은 贓貨를 탐한 죄로 長流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 『冊府元龜』에서는 "除名長流嶺南瀼州百姓, 終身勿齒"라고 기록하고 있다(권625, 「卿監部 貪冒」, 7514쪽). 또한 廣德2년(764) 宦官 程元振 역시 "長流溱州百姓"의 처벌을 받았으며(『舊唐書』 권184, 「程元振列傳」, 4763쪽), 咸通10년(869) 端州司馬 楊收(『唐大詔令集』 권58, 「楊收長流驩州制」, 309쪽)와 天祐2년(905) 登州刺史 柳璨(『舊唐書』 권20下, 「哀帝本紀」, 805쪽)의 경우도 각각 "宜除名配流驩州, 充長流百姓", "再貶長流崖州百姓"에 처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長流百姓"이라는 표현은 일반의 流刑 처벌 사례에서는 보기 힘든 것인데, 官人 신분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除名에 대해 "除名爲民"[53]이라고 서술한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단 除名을 비롯해 일반적인 流刑의 경우 6년 이후 재서임이 가능했지만, 長流는 그야말로 '終身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長流의 '長'이 지닌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李逢年의 사례에서 "終身勿

---

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만 刑期의 변화가 長流의 처벌 대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논증해줄 사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그 가능성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다.

51) 律令의 규정에 따르면, 죄인이 유배지로 떠날 때에는 반드시 妻·妾을 동반해야 했는데(父·祖·子·孫은 원할 경우 동행이 허락되었다. 『唐律疏議』 권3, 名例24조, 67쪽), 妻子가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流刑囚는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후 함께 유배지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唐六典』 권6, 「尙書刑部」, 190쪽). 妻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流刑囚는 부근의 公役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그 시간만큼 居作 기간에서 경감되었다(『天聖令』 권27, 「獄官令」, 340쪽). 특히 妻·妾에 대한 규정은 流刑 판결 이후 허위로 이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義絶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唐律疏議』 권3, 名例24조, 67쪽). 이 점은 宋代의 流刑 관련 규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天聖令』 「獄官令」의 '宋10'조에는 流刑 판결 후 양측이 합의할 시 이혼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唐會要』 권41, 「左降官及流人」, 865쪽, "五年十一月, 中書門下奏: 「今後有配長流及本罪合死遇恩得減等者, 並勒將妻同去, 有兒女情願者, 亦聽. 如流人所在身死, 其妻等並許東西, 州縣不在句留. 情願住者亦聽.」"

53) 永隆元年(680) 太子洗馬 劉納言(『新唐書』 권198, 「劉納言列傳」, 5657쪽), 長壽2년(693) 徐有功(『舊唐書』 권85, 「徐有功列傳」, 2819쪽, "於是龐氏減死, 流於嶺表, 有功除名爲庶人.") , 永泰元年(765) 華原令 顧繇(『新唐書』 권145, 「元載列傳」, 4712쪽)등의 사례 참조.

齒”라고 한 것이나 神龍2년(706) 瀧州司馬 桓彦範, 崖州司馬 敬暉 등에게 長流를 부과하며 언급한 “終身禁錮”라는 표현(『舊唐書』 권91, 「桓彦範列傳」, 2931쪽)은 仕宦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長流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長流가 “六載以後聽仕”의 범주에서 벗어난, 즉 재서임의 가능성을 불허한 流刑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名例24조에 규정되어 있는 “反逆緣坐流”와 “因反逆免死配流”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長流 처벌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으로 이 두 경우뿐만 아니라 贓罪・姦罪・殺人・직무 유기 등의 다양한 요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방환 문제와 관련하여 長流의 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지닌 성격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長流가 無期刑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放還의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恩赦 적용의 제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乾封元年(666)의 大赦에서 제외되었던 李義府나 恩赦의 적용을 엄격히 규제했던 程元振(“縱有非常之赦, 不在會恩之限”), 楊收(“縱逢恩赦, 不在量移之限”) 등의 경우는 長流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恩赦의 영향력을 차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長流 처벌 전반에 대한 것인지 혹은 長流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上元元年(674)[54]이나 景雲元年(710)에 시행되었던 大赦에서 長流와 長任을 특별히 언급하며 放還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어,[55]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放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볼 뿐이다.

그렇지만 長流 역시 ‘영구 추방’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완전한 형벌은 아니었다. 長流 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49개의 사례 중, 麟德元年(664)의 簡州刺史 薛元超(『舊唐書』 권73, 「薛收列傳」, 2590쪽), 司虞大夫 魏玄同의 경우(『舊唐書』 권87, 「魏玄同列傳」, 2849쪽)나 咸亨2년(671) 蘭臺郎 李善(『舊唐書』 권189上, 「李善列傳」, 4946쪽), 上元元年(760) 開府儀同三司 高力士(『舊唐書』 권184, 「高力士列傳」, 4759쪽) 등 총 6건의 사례에서 볼 수

54) 『冊府元龜』 권84, 「帝王部 赦宥3」, 993쪽, “上元元年八月壬辰追尊祖宗謚號,改亨五年爲上元元年, 大赦天下, 長流人並放還, 五品以上各擧所知大酺三日.”

55) 『舊唐書』 권7, 「睿宗本紀」, 154쪽, “是日卽皇帝位, 御承天門樓, 大赦天下, 常赦所不免並原之. 內外官四品已上加一階, 相王府官吏加兩階. 流人長流、長任未還者並放還.” 『新唐書』(권5, 「睿宗本紀」, 116쪽)에서는 “‘流人長流、長任未還者並放還”을 “長流、長任及流人未達者還之”로 기록하고 있어 방환의 대상이 ‘長流와 長任에 처한 流人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인지 아니면 ‘長流와 長任 그리고 (일반적인) 流刑人 중 아직 귀환하지 못한 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른 사료들(『資治通鑑』 권209, ‘睿宗景雲元年’, 6649쪽; 『冊府元龜』 권80, 「帝王部 慶賜2」, 929쪽; 권84, 「帝王部 赦宥3」, 997쪽)의 경우 大赦가 있었다는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있는 바와 같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恩赦를 통한 放還의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長安3년(703)의 右史 張說(『舊唐書』 권97, 「張說列傳」, 3051쪽)이나 先天2년(713)의 尙書右丞 盧藏用(『舊唐書』 권94, 「盧藏用列傳」, 3004쪽) 등의 예처럼 일정 기한이 지난 후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恩赦를 통한 방환이든 官職으로의 복귀든 그것은 전적으로 皇帝의 권한이었으므로 長流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방환의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법이 남아있는 것일까. 李義府의 長流 사건을 기록하며 사료에서는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걱정했던 朝廷의 관리(朝士)들이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제야 안심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는 李義府의 악행을 강조하기 위한 형식적 서술일 가능성이 크지만 더불어 流刑이라는 형벌이 지닌 '불완전성'과 그것의 해결이 流刑囚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流刑은 死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重罪를 처벌하는 형벌이었기에 집행 과정상 여러 형태의 사망 사례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더욱이 官人 신분으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流刑에 처해졌을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流刑을 둘러싸고 나타난 '사망'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유배지로 가는 도중 病死한 경우들이 있는데, 永徽4년(653) 房遺愛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流刑에 처해졌던 太常卿 李道宗(『舊唐書』 권60, 「江夏王道宗列傳」, 2356쪽), 神龍2년(706) 武三思의 모함으로 流刑 처벌을 받았던 白州司馬 崔玄暐(『新唐書』 권120, 「崔玄暐列傳」, 4317쪽), 開元10년(722) 王皇后 폐위 모의를 누설한 죄로 처벌되었던 秘書監 姜皎(『舊唐書』 권8, 「玄宗本紀」, 184쪽) 등이 그것이다. 또한 貞觀2년(628) 辰州刺史 裴虔通(『資治通鑑』 권192, '太宗貞觀二年', 6054쪽)이나 神龍2년(706) 新州司馬 張柬之(『新唐書』 권180, 「張柬之列傳」, 4323쪽)는 처벌 사실에 대한 원망과 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며, 天授2년(691) 周興의 경우는 怨讐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新唐書』 권209, 「周興列傳」, 5908쪽). 이외에 유배지로 가는 도중 自殺한 경우들도 있는데, 咸亨2년(671)에 流刑 처벌을 받았던 左散騎常侍 武敏之(『舊唐書』 권183, 「武承嗣列傳」, 4728쪽)나 垂拱4년(686)의 魯王 李靈夔(『新唐書』 권79, 「魯王靈夔列傳」, 3558쪽), 先天2년(713)의 駙馬都尉 薛伯陽(『新唐書』 권98, 「薛伯陽列傳」, 3894쪽)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원인을 기록해 놓지 않고 '流死' 혹은 '流(지역명)而死'로만 그 사망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56]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流刑 판결 이후 유배지로 떠나기 전이나 가는 도중, 혹은 도착한 후 皇帝의 명령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즉 皇帝의 적극적 살

56) 龍朔3년(663)의 董思恭(『舊唐書』 권190上, 「董思恭列傳」, 4997쪽), 光宅元年(684)의 胡元範(『新唐書』 권117, 「裴炎列傳」, 4249쪽), 開元22년(734)의 陳思問(『新唐書』 권130, 「李尙隱列傳」, 4500쪽), 貞元연간(785-805)의 令狐運(『新唐書』 권148, 「令狐運列傳」, 4767쪽) 등이 그 예이다.

해 의지가 관철된 사례들이다. 사료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주로 '賜死'[57]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66개의 流刑 처벌 사례 중 최소한 50여 차례[58]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賜死는 獄官令의 규정, 즉 5品 이상의 官人이 惡逆 이하의 죄를 범했을 경우 허락되는 自盡[59]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流刑으로 판결되고 난 상황에서 賜死를 명했다는 것은 死刑으로서 賜死를 허락했다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5품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정황은 어떠했는지 몇몇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垂拱2년(686) 嶺南으로 유배된 후 六道使에 의해 살해되었던 兪文俊(『舊唐書』 권187上, 「兪文俊列傳」, 4883쪽), 開元20년(732) 坐贓으로 流刑 판결을 받은 후 유배지로 가는 도중 사망한 幽州長史 趙含章(『舊唐書』 권8, 「玄宗本紀」, 198쪽), 開元25년(737) 瀼州로의 長流 판결 이후 賜死에 처해진 駙馬都尉 薛鏽(『資治通鑑』 권214, '玄宗開元二十五年', 6829쪽), 天寶5년(746) 李林甫의 모함으로 嶺南 臨封郡으로 유배된 후 살해당한 江夏別駕 韋堅(『新唐書』 권134, 「韋堅列傳」, 4561쪽) 등이 바로 이 賜死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寶應元年(762) 襄州刺史 裴茷의 경우 유배지인 費州로 향하는 도중 살해되었는데, 처벌 형태를 명하는 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만 관대하게 용서하여 "除名, 長流"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곧이어 賜死로 처벌하고 있는 것(『舊唐書』 권114, 「裴茷列傳」, 3364쪽)을 볼 수 있다. 동일한 해 李輔國 사건에 연루되어 流刑에 처해졌던 祕書監 韓穎과 中書舍人 劉烜(『舊唐書』 권11, 「代宗本紀」, 270쪽), 廣德元年(763) 程元振의 모함에 의해 長流로 처벌받았던 兵部尙書 來瑱(『舊唐書』 권11, 「代宗本紀」, 271쪽), 大曆14년(779)의 兵部侍郎 黎幹(『新唐書』 권145, 「黎幹列傳」, 4721쪽)이나 貞元6년(800)의 通州別駕 崔河圖(『舊唐書』 권13, 「德宗本紀」, 393쪽)등도 모두 流刑 판결 후 賜死에 처해진 자들이다.

한편 賜死의 존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는데, 앞서 언급했던 瀧州司馬 桓彦範, 崖州司馬 敬暉 등의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神龍2년(706) 武三思의 모함으로 長流에 처해진 이들이 방환되어 다시 중용될 것을 염려한 武三思가 皇帝의 명령을 사칭하여 嘉州司馬 周利貞을 통해 이들을 살해하였던 것이다(『舊唐書』 권91, 「桓彦範列傳」, 2931-2934쪽). 그렇다면 이러한 賜死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

57) 正史의 本紀에서는 주로 '殺+인명'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賜死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流刑 처벌 이후 살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58) 정황상 賜死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賜死"혹은 "殺"이라고 표현되지 않은 경우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59) 『天聖令』 권27, 「獄官令」, 339쪽, "<唐3>諸決大辟罪, 皆於市. 五品以上犯非惡逆以上, 聽自盡於家. 七品以上及皇族, 若婦人犯非斬者, 絞於隱處."

는 없었을까.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元和6년(811) 運糧使였던 董溪와 于皐謨의 사건이다. 이들은 坐贓으로 각각 封州와 春州로 유배되었는데, 유배지로 향하던 중 가볍게 처벌한 것을 후회한 황제가 密令을 내려 모두 죽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시 禮部尙書 權德輿는 이미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는데 다시 살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력하였다.[60]

이처럼 賜死는 이미 流刑 판결을 받은 자들을 皇帝의 명에 따라 살해한 것으로, 그 중에는 '皇帝의 은혜로' 死刑을 면한 자들도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死刑을 선고하여 처결하지 않고 굳이 流刑이라는 매개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 걸까. 그 원인을 단일하고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1장에서 살펴보았던 寬刑의 명분 즉 死刑을 꺼리는 경향과 그에 따른 流刑의 역할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開元27년(739) 鄫國公主의 아들인 尙衣奉御 薛諗은 李談, 崔洽, 石如山과 함께 살인을 자행했는데, 이 일이 발각되자 나머지 세 사람은 杖殺을 당했지만 薛諗은 '國親'이라는 이유로 流刑에 처해진 후 바로 賜死로 처벌되었다(『舊唐書』 권9, 「玄宗本紀」, 211쪽). 이렇듯 賜死는 공식적인 死刑 집행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長流로도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던 流刑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長流, 賜死와 더불어 流刑의 징벌 효과를 향상시켰던 決杖配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3. 杖刑과의 결합: 決杖配流

附加刑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唐代의 五刑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沈家本의 지적대로 唐代는 "하나의 죄에 대해 복수의 형벌을 규정하지 않은[無一罪二刑]" 시대였기 때문이다.[61] 流刑 역시 鞭刑 및 刺字 등이 부가되었던 전후 시기와 달리 律文에는 '가시적'인 징벌 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완화된 형벌과 징벌 효과의 제고라는 상충된 지형 속에서 어떤 방안이 모색되었을까. 流刑의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60) 『資治通鑑』 권238, '憲宗元和六年', 7683-7684쪽. 『新唐書』(권165, 「權德輿列傳」, 5078-5079쪽)와 『舊唐書』(권148, 「權德輿列傳」, 4004쪽), 『冊府元龜』(권328, 「宰輔部 諫諍4」, 3858-3859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61) 沈家本, 『奇觚文存』 권2, 2096-2097쪽, '論附加刑', " … 漢、魏以前有無一罪二刑之制, 書缺有間, 已無可考. 六代宋時, 劫竊黥頰斷筋, 徙付遠州, 不久旋廢. 梁武帝時, 髡鉗五歲刑笞二百, 劫身降死, 黥面髡鉗補冶銷士. 北齊刑罪五等加鞭. 後周徒流加鞭笞. 隋文時三流加杖. 此皆一罪而併用二、三刑者. 唐除鞭刑, 無一罪二、三刑之科, 律文具在, 最爲可法. 泊乎五季, 刺配之法興. 宋初又定折杖之法, 無不加杖. 於是竊盜等犯, 旣刺字, 又加杖, 又遠配, 一罪三刑, 遂爲永制. 金因於遼. 元、明又因於宋. 至於國朝, 相沿用之, 將垂千年. 皆習慣之法, 未易除也."

특정 시기 이후 "決杖配流"등의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비록 後代의 언급이기는 하나 王安石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流刑의 한계와 그것이 호출한 決杖配流의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唐]太宗이 비록 加役流를 써서 '斬趾刑'을 대신하기는 하였으나, 流刑은 결국 홀로 행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唐에는 이미 '決杖配流'의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당시에는 別勅이 있어 [決杖配流의 법을] 시행하였으며, 오직 律[의 규정]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律[의 규정]만을 사용하였다면 死罪 외에 流刑의 법밖에 없어 간사함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니, [流刑은] 결코 [홀로] 행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62)

流刑이 그 자체로는 간사함을 금할 수 없어 "결코 홀로 행용될 수 없었다[不可獨行]"는 王安石의 말은 決杖配流의 등장, 즉 流刑의 징벌 효과를 가중시키기 위해 杖刑이 필요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것은 長流가 활용되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다만 長流의 경우 기본적으로 律令에 규정된 流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방환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형벌의 기능을 강화했다면, 決杖配流는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한 셈이다. 그렇다면 決杖配流는 어떤 형태로 현실에서 활용되었을까.

決杖配流가 처음 등장한 사례는 則天武后 집권기인 光宅元年(684) 太僕丞 裴伷先에게 부과된 "杖之朝堂, 長流瀼州"의 처벌이다. 그는 伯父인 裴炎의 사건에 연좌되어 嶺南으로의 流刑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則天武后의 잘못을 간언하다 결국 위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63) 집행된 杖數는 100대였으며, 이는 杖刑의 등급 중 최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64) 裴伷先 이후 決杖配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神龍2년(706)의 韋月將과 景雲

62) 이것은 曾布의 '肉刑論'에 대해 神宗이 그 동의 여부를 묻자 王安石이 찬성을 표시하며 한 발언이다. 『續資治通鑑長編』 권214, '神宗熙寧三年', 5215쪽, "安石曰, 太宗雖用加役流代斬趾, 然流終亦不可獨行, 故唐已有決杖配流之法. 蓋當時自有別勅施行, 不專用律, 若專用律, 則死罪外卽用流法, 無以禁姦, 決不可行也."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 '安土重遷' 의식이 상실된 현상을 근거로 추방형으로서의 流刑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한 曾布의 발언 역시 流刑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宋史』 권201, 「刑法志」, 5008-5009쪽, "初, 韓絳嘗請用肉刑, 曾布復上議曰 … 大辟之次, 處以流刑, 代墨、劓、刖、宮, 不惟非先王流宥之意, 而又失輕重之差. 古者鄕田同井, 人皆安土重遷. 流之遠方, 無所資給, 徒隸困辱, 以至終身. 近世之民, 輕去鄕井, 轉徙四方, 固不爲患, 而居作一年, 卽聽附籍, 比於古亦輕矣."

63) 『新唐書』 권117, 「裴伷先列傳」, 4249-4250쪽. 裴伷先에게 杖刑이 집행되었던 장소인 朝堂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鄭炳俊, 「隋唐時代의 廷杖과 士人의 反撥」, 『東洋史學研究』 73, 2001.

64) 『唐律疏議』 권1, 名例2조, 4쪽, "杖刑五: 杖六十, (贖銅六斤.) 杖七十, (贖銅七斤.) 杖八十, (贖銅八斤.) 杖九十, (贖銅九斤.) 杖一百, (贖銅十斤.)"杖의 규격과 決杖 부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 관리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唐六典권6, 「尙書刑部」, 191쪽, "注: 杖皆削去節目, 長三尺五寸. 訊囚杖大頭徑三分二釐, 小頭二分二釐; 常行杖大頭二分七釐, 小

2년(711)의 張奉先, 獨孤璿이었는데, 韋月將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斬刑을 선고받았으나 "發生之月"이라는 이유로 決杖配流에 처해진 경우였고, 張奉先은 尙乘奉御를 사칭하여 內廐馬를 절도했다가 免死 처벌되었으며, 獨孤璿은 贓罪를 범했다가 "杖一百放於嶺表"로 감형된 경우였다(『冊府元龜』 권150, 「帝王部 寬刑」, 1814쪽). 즉 裴伷先의 사례와 달리 세 사람 모두 명확히 免死의 결과로 決杖配流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65] 이처럼 決杖配流는 死刑과 流刑의 중간에 위치하며 流刑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決杖配流는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 사례들 뿐 아니라, 皇帝들의 형벌 정책을 통해서도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總章2년(669) 高宗은 이른바 "先決杖"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律 외에 先決杖 100대로 처벌되던 59개 조항 중 盜竊이나 폐해가 심한 경우를 제외한 47개 조항을 폐지하도록 명령하였다.[66] 永淳元年(682)에는 私鑄錢의 처벌을 명시한 敕을 반포하였는데, 주범은 絞刑에, 從犯은 加役流에 처하도록 했으며 각각 先決杖100대와 60대를 부가하였다.[67] 또한 神龍2년(706)에 편찬된 이른바 '散頒刑部格'에도 決杖配流에 관련된 조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官文書의 印을 위조했거나 盜用했을 경우 주범에게는 "先決杖一百, 配流嶺南惡處"의 처벌이 가해졌으며,[68] 官의 낙타나 말을 훔치

---

頭一分七釐; 笞杖大頭二分, 小頭一分半. 其決笞者腿、臀分受, 杖者背、腿、臀分受, 須數等, 拷訊者亦同, 願背、腿均受者, 聽. 毆庭決杖者, 皆背受."; 『唐律疏議』 권29, 斷獄14조(총 제482조), 557쪽, "諸決罰不如法者, 笞三十; 以故致死者, 徒一年. 卽杖麤細長短不依法者, 罪亦如之."

65) 免死 처벌로 '杖刑+流刑'이 부과된 사례를 살펴보면, 杖數의 경우 100대 뿐만 아니라 80 · 60 · 40대로 다양하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長流에 부가된 杖數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決杖配流刑'의 정연한 등급을 체계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셈인데, 본 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연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66) 『唐會要』 권40, 「君上愼恤」, 841쪽, "總章二年五月十一日, 上以常法外, 先決杖一百, 各致殞斃, 乃下詔曰: 「別令於律外決杖一百者, 前後總五十九條. 決杖旣多, 或至於死. 其五十九條內, 有盜竊及蠹害尤甚者, 今後量留一十二條, 自餘四十七條並宜停." 『新唐書』 「刑法志」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단 폐지된 조항의 숫자가 『唐會要』와 달리 49개로 되어 있으며, 先決杖의 폐해를 야기한 원인으로 則天武后에 의한 혹형화 경향을 언급하고 있다(『新唐書』 권56, 「刑法」, 1414쪽).

67) 『通典』 권9, 「食貨9」, 200쪽, "永淳元年五月敕: 「私鑄錢造意人及句合頭首者, 並處絞, 仍先決杖一百. 從及居停主人加役流, 各決杖六十. 若家人共犯, 坐其家長; 老疾不坐者, 則罪歸其以次家長. 其鑄錢處, 鄰保配徒一年; 里正, 坊正, 村正各決六十. 若有糾告者, 卽以所鑄錢毁破幷銅物等賞糾人. 同犯自首免罪, 依例酬賞.」" 이러한 처벌 규정은 기존의 律에 기록된 원칙보다 더 세밀하며 가중된 형태였다. 『唐律疏議』 권26, 雜律3조(총 제391조), 480쪽, "諸私鑄錢者, 流三千里; 作具已備, 未鑄者, 徒二年; 作具未備者, 杖一百. <疏>議曰 私鑄錢者, 合流三千里. 其「作具已備」, 謂鑄錢作具, 竝已周備, 而未鑄者, 徒二年. 若「作具未備」, 謂有所欠少, 未堪鑄錢者, 杖一百. 若私鑄金銀等錢, 不通時用者, 不坐."

68) 『敦煌法制文書』(『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 甲編 第三冊), 141쪽, "僞造官文書印, 若轉將用行, 幷盜用官文書印, 及亡印而行用, 幷僞造前代官文書印, 若將行用, 因得成官, 假與人官, 情受假, 各先決杖一百, 頭首配流嶺南惡處, 從配緣邊有軍府小州, 並不在會赦之限. 其同情受用僞文書之人, 亦准此." 『唐律疏議』에 규정된 처벌은 다음과 같다. 권25, 詐僞2조(총 제363조), 453쪽, "僞寫官文書印者, 流二千里. 餘印, 徒一年. … 卽僞寫前代官文書印, 有所規求, 封用者, 徒二年."

거나 죽였을 경우 "先決杖一百, 配流嶺南"으로 처벌되었다.[69]

다시 決杖配流의 집행 실례들을 살펴보면, 총 54개의 사례 중 18건이 바로 玄宗의 통치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태의 다양성이나 관련 조칙 등의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決杖配流가 하나의 주요한 형벌로서 안정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던 '사형폐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도적으로 사형의 집행을 꺼리는 정책은 그것의 代替刑을 필요로 했으며, 그 자리에 바로 決杖配流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기 長流의 처벌 빈도가 높았던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70] 그렇다면 그 구체적 정황은 어떠했는지 우선 개별적 사례들을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開元연간에 들어서며 決杖配流의 형태상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杖數의 종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즉 앞선 사례에서 보았던 杖100대는 물론이고 60대와 40대 그리고 "決一頓"의 처벌이 등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開元25년(737)의 宋廷暉과 周仁公, 裴裔는 贓罪를 범해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死刑을 집행할 수 없는 시기였으므로["陽和在候"] "杖六十配流"로 처벌받았으며(『冊府元龜』 권150, 「帝王部 寬刑」, 1815쪽), 天寶6년(747) 楊愼矜의 謀反에 연루되었던 太府少卿 張瑄도 "決六十長流"로 처벌되었다(『舊唐書』 권105, 「楊愼矜列傳」, 3228쪽). 또한 開元10년(722)의 蔣寵은 "杖四十流"(『冊府元龜』 권152, 「帝王部 明罰」, 1843쪽)로, 秘書監 姜皎는 "決一頓配流"(『舊唐書』 권59, 「姜皎列傳」, 2337쪽)[71]로 처벌되었다. 특히 "決一頓"의 경우 開元8년(720) 9월에 반포된 '宥京城罪人敕'에도 등장하는데,[72] 開元연간 당시의 기록은 아니지만, 寶應元年(762) 9월 刑部와 大理寺가 올린 상소에 따르면 그것은 杖40대 혹은 60대를 의미했다.[73]

---

69) 『敦煌法制文書』, 147쪽, "盜及煞官駝馬一疋以上者, 先決杖一百, 配流嶺南, 不得官當贖. 其知情博換賣買, 及過致人居停主人知情者, 並准此." 『唐律疏議』에는 官私의 馬·牛를 훔쳐 죽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 『唐律疏議』 권19, 賊盜32조(총 제279조), 356쪽, "諸盜官私馬牛而殺者, 徒二年半."

70) 玄宗 연간은 전체 85개의 長流 사례 중 18건이 발생한 시기로 양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皇帝의 통치시기를 능가하며(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시기는 長流에 대한 사례가 처음 나타난 高宗 연간인데(총 14건), 上官儀·賀蘭敏之 사건 등 則天武后의 권력 확보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18건 중 9건의 사례에서 長流의 후속조치로 '賜死'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71) 동일한 내용을 언급한 『舊唐書』 권8, 「玄宗本紀」, 184쪽에는 "詔杖之六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72) 『唐大詔令集』 권83, 「恩宥1」, '宥京城罪人敕', 478쪽, "其京城內犯罪等人, 昨令按覆. 其中造僞頭首, 及謀殺人斷死罪, 杖一百配嶺南惡處, 雜斷死罪, 決一頓免死者, 配流遠處, 雜犯流移者, 各減一年, 杖罪以下並免."

73) "與一頓杖"은 40대, "至到與一頓"과 "重杖一頓"은 60대, "痛杖一頓"은 式文에 규정이 없으므로 "至到與一頓"에 준해 60대를 부과하였다. 『通典』 권165, 「刑制下」, 4262쪽, "寶應元年九月, 刑部、大理奏: 「准式, 制敕處分與一頓杖者, 決四十; 至到與一頓及重杖一頓, 並決六十. 無文至死者, 謂准式處分. 又制旨或有令決痛杖一頓者, 式文既不載杖數, 請准至到與一頓決六十, 並不至死.」 勅旨依."

그 외 天寶6년(747)의 鮮于賁과 范滔의 사례에서는 “重杖”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74] 重杖 자체의 모양이 일반적인 杖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 사료가 없어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重杖에 의한 杖殺의 사례가[75]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常行杖의 규격을 능가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重’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한편 開元연간에 決杖配流의 이용이 활발했다는 사실은 先決杖 후 流配나 移鄕, 貶官될 경우 杖刑을 부과한 뒤 한 달의 휴식기간을 허락한다는 開元16년(728)의 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76] 決杖配流의 활용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표현했던 官人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치욕스러운 형벌로서의 杖刑의 존재와 그럼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즉 “不可獨行”할 수 없었던 流刑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開元10년(722) 廣州都督 裴伷先에게 杖刑을 부과하려 하자 “士可殺, 不可辱”이라는 말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개진했던 兵部尙書 張說의 사례가 있는데, 그는 특히 얼마 전 있었던 秘書監 姜皎의 決杖配流 사건을 거론하며 死罪를 범했으면 죽이고 流罪를 범했으면 流刑에 처해야지 杖刑으로 욕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다(『舊唐書』 권99, 「張嘉貞列傳」, 3091쪽). 또한 開元25년(737) 坐贓을 범한 夷州刺史 楊濬에 대해 免死 처벌로 決杖配流가 부과되자 左丞相 裴耀卿 역시 士人에게 杖刑의 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資治通鑑』 권214, ‘玄宗開元二十五年’, 6829쪽).[77]

이처럼 玄宗 시기를 거치며 주요한 형벌의 하나로 정착한 決杖配流는 이후 시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는데, 특히 貞元11년(795) 朱華의 사례(『冊府元龜』 권153, 「帝王部 明罰2」, 1850쪽)를 시작으로 등장한 ‘杖80’의 처벌은 이후 元和14년(819) 權長孺(『冊府

---

동일한 내용이 『唐會要』(권39, 「議刑輕重」, 830쪽)에도 기록되어 있다. 『唐六典』에 따르면 “至到與一頓” 등은 殊旨 · 別敕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이었다(『唐六典』 권6, 「尙書刑部」, 188쪽).

74) 『舊唐書』 권105, 「楊愼矜列傳」, 3227쪽, “二十五日, 詔楊愼矜、愼餘、愼名並賜自盡; 史敬忠決重杖一百, 鮮于賁 、范滔並決重杖, 配流遠郡.” 重杖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 역시 開元19년(731)의 ‘孟夏疏決天下囚徒敕’에서 볼 수 있다. 『唐大詔令集』 권83, 「恩宥1」,‘孟夏疏決天下囚徒敕’, 478쪽, “其天下囚徒, 卽令疏決, 其妖訛盜賊, 造僞頭首, 旣深蠹時政, 須量加懲罰, 刑名至死者, 各決重杖一百, 長流嶺南.”

75) 唐代 杖殺의 시행 정황과 法定刑으로서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川村康, 「建中三年重杖處死法の制定とその性格」, 『中國禮法と日本律令制』, 東京: 東方書店, 1992; 川村康, 「唐五代杖殺考」,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17, 1992.

76) 『通典』 권170, 「刑法8」, 4414쪽, “開元十年六月敕: 「自今以後, 准格敕應合決杖人, 若有便流移左貶之色, 杖訖, 許一月內將息, 然後發遣. 其緣惡逆, 指斥乘輿者, 臨時發遣.」”先決一百“의 폐해를 지적한 開元12년(724)의 조칙(『唐大詔令集』 권82, ‘減抵罪人決杖法詔’, 474쪽) 역시 당시 先決杖이 활발하게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료일 것이다.

77) 역시 開元연간의 사례로 監察御史 蔣挺을 杖刑에 처하려고 하자 黃門侍郎 張廷珪 또한 張說과 동일한 논리로 그것을 반대했다(『舊唐書』 권101, 「張廷珪列傳」, 3153쪽).

元龜』 권337, 「宰輔部 循私」, 3986-3987쪽)나 太和6년(832) 上官興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免死 처벌의 하나로 기능하였던 것 같다. 이로써 決杖配流의 처벌에 부과되었던 杖數는 기존의 100대, 60대, 40대에 80대가 추가되어 총 네 종류가 되었다.[78] 그런데 貞元19년(803) 監察御史 崔蠙의 사례를 살펴보면 "笞40"이 부과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舊唐書』 권13, 「德宗本紀」, 399쪽). 동일한 사건을 『資治通鑑』에서는 "杖40"으로 기록하고 있어(『資治通鑑』 권236, '德宗貞元十九年', 7604쪽) 기존의 "杖40"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지만, 元和12년(817) 嫡母의 喪 중에 연회를 즐겼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于季友나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劉師服도 유배 전에 "笞40"이 부과되었으므로(『舊唐書』 권15, 「憲宗本紀」, 459쪽) "杖40"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처벌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특히 "杖40"의 경우 "笞40"과 달리 長流와 결합하거나,[79] 免死 처벌에 활용된 사례도[80] 있어 그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또한 長慶4년(824) 薛樞와 薛渾의 사례에서는 "輕杖"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舊唐書』 권142, 「李寶臣列傳」, 3871쪽),[81] 앞서 언급한 重杖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決杖配流의 사례는 大中2년(848) 李恪, 李克勳 등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처벌 정황을 볼 수 없는데,[82] 이들에게 부과된 先決杖의 종류가 기존의 것들과 차이를 보여 주의를 요한다. 즉 李恪과 李克勳, 劉羣에게 각각 "決脊杖十五", "決脊杖二十", "決臀杖五十"이 부과되었던 것인데(『舊唐書』 권18下, 「宣宗本紀」, 620쪽), 특히 脊杖을 "痛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寶應元年(762) 刑部의 상주문에 보이는 "痛杖"이 바로 이 脊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脊杖과 臀杖의 사용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83]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杖數의 감소와 더불어 決杖 부위를 脊과 臀으로 한정시킨 大中7년(853)의 '折杖 조치'였다.[84]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기존의 五刑

78) 決杖配流의 처벌에서 杖20대를 부과했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重杖二十"이 독자적인 처벌로 쓰인 경우는 존재한다. 『冊府元龜』 권689, 「牧守部 革弊」, 8219쪽, "王播爲京兆尹, 奏以諸縣皆有鎭軍, 並隨逐水草牧放羊馬, 賊徒因茲假詫挾帶軍器, 晨夜混雜善惡不分, 伏請從今日已後, 牧放之徒, 不得躬帶刀劍器仗等放牧, 仍請詔下後十日外有犯者, 百姓所在集衆決重杖二十."

79) 貞元3년(787)의 蕭鼎과 韋恪의 사례(『舊唐書』 권125, 「蕭復列傳」, 3352쪽)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0) 貞元13년(797) 李士政등 6人에게 부과되었던 "決四十配流" 처벌이 그에 해당된다.

81) 단 『冊府元龜』(권153, 「帝王部 明罰2」, 1857쪽)에서는 『舊唐書』의 기록과 달리 薛渾에게는 '杖八十流崖州'의 처벌이, 薛樞에게는 '杖四十流辰州'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82) 이후 唐이 멸망하는 907년까지 사료에 보이는 流刑의 처벌 사례는 총 17건인데, 그 중 11건이 長流로 처벌된 경우이며, 그 11건 중 8건에 대해서는 賜死가 집행되었다.

83) 太和3년(829)에 내려진 다음과 같은 조치는 그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冊府元龜』권501, 「邦計部 錢幣3」, 6004-6005쪽, "自今已後, 有用鉛錫錢交易者, 一貫已下, 州府常行杖決脊杖二十, 十貫以下, 決六十, 徒三年. 過十貫已上, 集衆決殺. 其受鉛錫錢交易者, 亦准此處分. 其所用鉛錫錢並納官."

84) 『唐會要』 권41, 「雜記」, 874-875쪽, "法司斷罪, 每脊杖一下, 折法杖十下, 臀杖一下, 折笞杖五下, 則

체계에서의 笞刑과 杖刑을 대신하여 이후 宋初 折杖法 제정을 전후한 시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流刑의 가중 처벌로서 기능했던 決杖配流에 대해 살펴보았다. 決杖配流는 집행이 용이하고 효과가 가시적인 杖刑이라는 형벌을 流刑에 결합시킴으로써 流刑이 지닌 형벌로서의 취약함을 보완·대체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杖刑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당시 형벌 운용의 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安史의 亂'의 연루자를 처벌하고자 정한 '6等 처벌'에서 "重杖一百"은 死刑과 自盡 다음의 등급으로 流刑보다 상위 처벌이었다.[85] 또한 建中3년(782)에는 '重杖處死法'이 제정되어 惡逆을 제외한 사죄에 적용되었다.[86] 이렇듯 杖刑의 역할은 그 비중을 점차 확대하며 附加刑과 대체형의 차원을 넘어 重罪를 처벌하는 主刑으로 기능하였으며, 그것은 곧 기존의 五刑 체제가 와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北宋 太祖 建隆4년(963) 折杖法의 시행과 함께 '杖刑 중심의 형벌 체계 구축'이라는 결과로 수렴되었다.[87] 折杖法에서 流刑은 徒刑과 杖刑의 결합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流刑이 지닌 추방형의 성격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했다.[88] 따라서 決杖配流는 이러한 변화의 도중에 등장한 '징후적 현상'으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형벌 형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맺음말

唐代 流刑은 五刑 중의 하나로 重罪를 처벌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律令에는 流刑에 해

---

吏無逾制, 法守常規." 杖의 형태가 '常行杖'이었음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資治通鑑』권249, '宣宗大中七年', 8052쪽, "夏, 四月, 丙寅, 敕:「自今法司處罪, 用常行杖. 杖脊一, 折法杖十; 杖臀一, 折笞五. 使吏用法有常准.」"

85)『資治通鑑』권220, '肅宗至德二載', 7049쪽, "爭之累日, 上從峴議, 以六等定罪, 重者刑之於市, 次賜自盡, 次重杖一百, 次三等流、貶. 壬申, 斬達奚珣等十八人於城西南獨柳樹下, 陳希烈等七人賜自盡於大理寺; 應受杖者於京兆府門."

86)『宋刑統』권1,「名例」, 5쪽, "<准>唐建中三年八月二十七日敕節文, 其十惡中惡逆以上四等罪, 請准律用刑, 其餘應合處絞、斬刑, 自今以後, 並決重杖一頓處死, 以代極法. (釋曰: 惡逆以上四等罪, 謂謀反、謀大逆、謀叛、惡逆.)"

| | 流刑 | | | | 徒刑 | | | | | 杖刑 | | | | | 笞刑 | | | | |
|---|---|---|---|---|---|---|---|---|---|---|---|---|---|---|---|---|---|---|---|
| | 加役流 | 3000里 | 2500里 | 2000里 | 3년 | 2년반 | 2년 | 1년반 | 1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 配役 | 3년 | 1년 | 1년 | 1년 | | | | | | | | | | | | | | | |
| 脊杖 | 20 | 20 | 18 | 17 | 20 | 18 | 17 | 15 | 13 | | | | | | | | | | |
| 臀杖 | | | | | | | | | | 20 | 18 | 17 | 15 | 13 | 10 | 8 | 8 | 7 | 7 |

87)『宋刑統』권1,「名例」, 3-5쪽에 기록된 折杖法의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8)『文獻通考』권168,「刑考」, 5043쪽, "於是帝舜三居之法, 至此始不用, 流罪得免遠徒, 徒罪得免役年, 笞杖得減決數, 而省刑之意, 遂冠百王."

당하는 범죄의 종류와 형벌 집행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流刑의 실제 활용 범위는 그 원칙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寬刑의 이념을 강조하여 자신의 통치를 粉飾하고자 했던 唐代 황제들의 태도가 流刑 제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형벌을 관대하고 신중하게 집행한다'는 寬刑의 태도는 무엇보다 死刑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함부로 死刑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不忍刑殺'의 명분, 그것의 관철이 바로 寬刑의 지표, 仁治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死刑을 꺼리는 경향은 그것의 代替刑으로서 流刑의 존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死刑의 영역을 일정 부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 효과가 요구되었는데, 流刑은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강력하거나 효율적인 형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流刑은 杖刑이나 死刑처럼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형벌이 아니었다. 우선 유배지까지 죄수를 호송하는 과정부터 길고 지난했으며, 고도의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죄수의 도주 등 그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 게다가 官人에 대한 6년 후 재서임 규정이나 일반 流刑囚에 대한 刑期의 설정은 恩赦의 빈번한 시행과 맞물려 流刑의 징벌 효과를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流刑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가 필요하였으며, 그것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長流와 賜死, 그리고 決杖配流였다.

長流는 刑期의 연장을 통해 流刑의 징벌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설정된 것이다. 官人에 대한 재서임 규정 등 기존의 流刑이 지닌 有期刑적 성격을 恩赦의 제한 등을 통해 無期刑으로 전환시켜 그 放還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長流 역시 '영구 추방'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완전한 형벌은 아니었다. 사실상 恩赦를 통한 放還이든 官職으로의 복귀든 그것은 전적으로 皇帝의 권한이었으므로, 長流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放還의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생명을 박탈하여 형벌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賜死가 활용되었다. 賜死는 流刑 판결 이후 유배지로 떠나기 전이나 가는 도중, 혹은 도착한 후 皇帝의 명령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들로, 공식적인 死刑 집행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長流로도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던 流刑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決杖配流는 집행이 용이하고 효과가 가시적인 杖刑이라는 형벌을 流刑에 결합시킴으로써 流刑이 지닌 형벌로서의 취약함을 보완·대체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杖刑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당시 형벌 운용의 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후 杖刑은 그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重罪를 처벌하는 핵심적 형벌로 기능하였으며, 그것은 곧 기존의 五刑 체제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北宋 초기 '折杖法'의 시행이라는 새로운 형벌 체계로 수렴되어, 이후 流刑은 명칭만 남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流刑 하나만이

아니라 杖刑을 비롯해 死刑과 徒刑, 笞刑 등이 어떻게 기능하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五刑 체계 전반을 유기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그 외곽에서 기능했던 다양한 형벌들을 포착해야만 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이처럼 流刑은 唐代의 형벌 체계 속에서 名分의 수호와 구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형벌이었다. 따라서 流刑 제도의 궤적을 고찰하는 일은 비단 형벌의 집행이라는 일차적 현상뿐만 아니라, 권력이 名分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 이념적 粉飾이 필요한 이유와 의도한 결과는 무엇인지 등 唐代의 통치 권력이 지닌 성격, 그것의 한 지점을 구명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白子國’의 역사적 구성

## — 傳說과 起源, 그리고 歷史的 歸屬 문제를 중심으로 —

鄭 勉(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목 차

1. 머리말
2. ‘張蒙禪讓’ 전설과 白子國
3. 梵僧과 大封民國, 그리고 阿育王: ‘백자국’을 둘러싼 맥락들
4. ‘白子國’과 ‘大封民國’, 그리고 南詔國의 西進
5. 결론

## 1. 머리말

雲南 지역의 역사 서술에서 ‘白子國’은 조금은 복잡한 맥락에 놓여 있으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존재이다. 우선, 명칭도 ‘백자국’, ‘白氏國’, ‘白國’ 등으로 불렸을 뿐 아니라, 해석하는 이의 입장에 따라 그 정의하는 바가 달라진다. 백자국 연구는 적어도 세 가지 층위를 갖는다. 우선 중국 운남 지역사의 관점에서 南詔 등장 과정의 일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東晋시기 이래 기록이 비어있는 대리지역 역사를 일부나마 메워줄 수 있는 존재로 해석되어 왔다. 둘째로, 백자국은 명청 제국 시기 대리 지역 백인들의 역사인 ‘白(國)史’를 구성하는 요소로 해석되어 왔으며, 이 경우 백자국의 시간적 범주는 백국의 개국부터 명제국에 의한 멸망까지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백자국’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백족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백자국은 그 역사적 실재부터가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백자국의 존재를 기록한 문헌들이 모두 후대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문헌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보다 신빙성이 있는 문헌으로 받아들여지는 중국 ‘정사’류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발견도 없었다. 백자국 관련 기록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끄는 요소는 張氏로부터 蒙氏로의 선양을 다룬 부분

일 것이다. 이 '張蒙禪讓'을 가장 먼저 언급한 문헌은 元代의『記古滇說集』이지만, '장몽선양' 고사의 핵심 내용인 '鐵柱祭祀' 장면이 남조 말기의 자료인『南詔圖傳』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선양을 모종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리고 이 선양의 한쪽 당사자인 '백자국'의 존재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이 '선양'과 백자국의 역사적 존재를 부정하거나 회의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 '백자국'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정하면서도, 남조 대리 이래 '백국'의 존재는 인정하는 연구도 있다.[1] 이때의 백국은 명청 시기 대리 지역의 '白(僰)人'의 나라이고, 남조·대리 이래 이들의 역사, 즉 '백국사'는 현재 운남성 대리지역을 가장 큰 취거구로 삼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白族'의 역사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남조왕실의 族源 문제는 20세기 초부터 논쟁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고대민족 식별'에서도 그 주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남조왕실의 족원에 관하여는, '傣族說'과 '彝族說', '白族說'의 주장들이 경합하여 왔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의 '귀속'과 '구성'이다. 즉 누구의 역사이고, 왜 그렇게 적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귀속'과 '구성' 문제가 현대의 역사해석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白族心史-《白古通記》研究』를 적은 侯冲은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明初에 만들어진『백고통기』이전과 이후의 '백(자)국'에 관한 기술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백고통기』의 저술로 인해 비로소 백국사의 계보화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이후 문헌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2] 이는 각 시기마다 사람마다 문헌의 저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백자국'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식과 배치되는 맥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남조시기 남조국 지배층이 그린 백자국과, 大理가 멸망한 직후 '滇民'이 바라본 백자국, 그리고 명청 제국 지배 하 대리 지역 지식인들이 구성하는 '백자국'이 꼭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도 '백자국'의 역사적 귀속과 구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張蒙禪讓'과 '白子國'의 역사적 실재 여부의 증명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단은 잠시 제쳐두고자 한다. 아직은 더 이상의 분석을 진척시킬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에서 당장 남조국 시기로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기까지 생산된 각 기록의 시기별 문헌별 차이를 모두 지적하고, 그 구성과 귀속의 특징을 모두 분석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남조사'의 관점에서 백자국의 역사적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南詔 시기의 사서에서 백자국을 '어떻게' 구성했는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남조국의 역사가 후대의 백자국 역사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장몽선양' 전설과 이의 존재에 관한 논쟁을 소개하는 것으

1) 侯冲,『白族心史-《白古通記》研究』,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11.
2) 侯冲(2011), pp.123~124.

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성 시기가 다른 세 문헌에서 ‘백자국’ 처한 맥락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조 시기 백자국의 의미와 후대 역사 구성에 영향을 미친 남조의 역사상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張蒙禪讓’ 전설과 白子國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장몽선양’과 백자국이 실재하였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연구자들의 입장이 갈라진다. 우선, 부정하는 입장인데,[3] 이들의 결론을 모아보면, ‘白(僰)文’을 사용하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특히 남조 이후에야 비로소 날조된 것으로, 결코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특히 ‘장몽선양’에 관하여, 侯冲은 『남조도권』에 등장하는 ‘철주 제사’ 이야기에는 ‘선양’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장몽선양’ 또한 후대에 날조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회의적 혹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연구들이 있는데,[4] 이들의 결론은 전설에 불과하지만, 그 전설이 반영하는 역사상에 대한 다른 증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자국의 존재를 긍정하는 연구들은[5] 이 전설이 완전히 허구일 수는 없으며, 허구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연구들은 『남조도전』의 ‘철주 제사’ 이야기와 題記에 등장하는 『國史』 및 『張氏國史』에 주목한다.

이 글이 백자국의 실재 여부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은 앞서 밝혔다. 이 절에서는 ‘백자국’에 관한 기록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상의 이유로, 백자국을 처음 언급하고 있는 『記古滇說集』, ‘철주 제사’ 고사의 내용이 처음 나타나는 『南詔圖傳』, 그리고 청제국 초기에 만들어진 『白國因由』에서 그리는 백자국의 모습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고전설집』에서는 ‘장몽선양’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唐代에 張仁果의 33代孫 張樂進求가 建寧을 고쳐 雲南으로 하였으며, 唐은 樂進求를 책

3) 向達, 「南詔史略論」(1933), 『唐代長安與西域文明』(河北教育出版社(2001版), p.196; 包鷺賓, 「民家非白國后裔考」, 『西南邊疆問題研究報告』(華中大學中國文學系研究室編)1942年 第1期(『包鷺賓學術論著選』, 華中師范大學出版社, 2005); 祁慶富, 「南詔王室族屬考辨」, 『西南民族研究 彝族專集』(中國西南民族研究學會編, 雲南人民出版社, 1987), p.140.; 侯冲(2002), p.164.

4) 立石謙次, 「清初雲南大理地方における白人の歷史認識について-『白國因由』の研究」, 『史學雜誌』 Vol.115, No.6, 2006, pp.1079~1104; 楊愛民, 「白子國散議」, 『西南學刊』 2012-1.

5) 方國瑜, 「有關南詔史史料的幾個問題」, 方國瑜 著, 林超民 編, 『方國瑜文集』 第2輯, 雲南教育出版社, 2001, p.367(原載 『北京師範大學學報』 1962年 第3期); 林超民, 「白子國考」, 『南詔文化論』, 雲南人民出版社, 1991, pp.104~116; 段鼎周, 『白子國探源』, 雲南人民出版社, 1998; 楊政業, 「白子國國王張樂進求及其家世評述」, 『云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5; 趙懷仁 主編, 「“白子國”再辨」, 『大理民族文化研究論叢』 第1集, 民族出版社, 2004.

> 립하여 首領 大將軍 雲南王으로 삼았다. 樂進求가 鐵柱에 제사지내다가, 金으로 주조한 鳳凰이 習農樂의 왼쪽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樂進求 等이 놀라서 특이하게 여겼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그 哀牢王의 자손에게 位를 양보하였다. 王이 '蒙'을 국호로 삼았고, 王을 일러 '奇嘉'라 불렀다. 社稷이 이곳에서 비롯한 까닭에 蒙社라고 칭하였다. 唐 高宗 永徽 4年(653)의 일이며, 바로 蒙 13王의 鼻祖이다(張道宗, 『記古滇說集』).[6]

위 기사가 '張蒙禪讓'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같은 문헌에 따르면, 張仁果는 白崖에서 창업의 기틀을 닦고 '白(氏)國'을 세운 이로, 한무제 시기에는 莊蹻의 후손을 대신하여 '滇主', '滇王'으로 책봉되었다고 한다. 전왕으로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白氏國'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리고 장락진구가 운남으로 고쳤다고 하는 건녕에 대하여는, "(諸葛亮이) 군대를 돌려 白崖에 이르렀고, 鐵柱를 세워 南征을 기념하게 하였으며, 益州郡을 고쳐 建寧이라 하고, 仁果의 17세손 張龍佑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다." 라고 적었다. 선양의 대상자가 된 '습농락'은 바로 『만서』와 『신당서』 등에 등장하는 남조의 시조 細奴邏이다. 『記古滇說集』은 '백(씨)국'을 개창한 장인과와 17세손 장용우, 그리고 653년에 세노라에게 선양하는 33대손 장락진구의 이야기를 점점이 배치하여, 白崖 지역을 중심으로 '백(씨)국'이 오랫동안 존속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898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南詔圖傳』「文字卷」은 첫머리에 『鐵柱記』를 빌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 『鐵柱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에 三賧白大首領 將軍 張樂盡求가 興宗王 等 9人과 더불어, 함께 鐵柱 곁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主鳥가 鐵柱 위로부터 날아와 興宗王의 팔뚝 위에서 쉬었다. 張樂盡求는 이 일 이후 더욱 놀라서 의아하게 여겼다. 興宗王이 이에 기억하기를, 이것은 '우리 집의 主鳥이다'라고 하면서, 비로소 스스로 기뻐하였다(『南詔圖傳』「文字卷」).[7]

위 기사는 앞서 『기고전설집』의 '철주 제사' 이야기가 『남조도전』으로부터 비롯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鐵柱記』로부터 인용하는 형식은, 이 이야기가 『남조도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유행하여 문헌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南詔圖傳』「圖卷」의 철주와 9인 사이의 공간에 표시된 文字標註에는, "살피건대, 『張氏國史』에서 이르기를, 雲南大將軍 張樂盡求, 西洱河右將軍 楊農揀, 左將軍 張矣牟揀, 巍峯刺史 蒙羅盛, 勳公大部落主 段宇揀, 그리고 趙覽宇, 施揀望, 李史頂, 王靑細莫 등 9人이 함께 鐵柱에 제사지낼

---

6) 方國瑜 主編, 『雲南史料叢刊』(第2卷), 雲南大學出版社, 1998, p.658.

7) 李霖燦, 『南詔大理國新資料的綜合研究』(中央研究院民族研究院專刊之九), 臺北: 大陸雜誌社, 1967, plate ⅩLⅢ.

때”라고 하여, 9인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또 9인의 사람들 왼 편에 “都知雲南國詔西洱河侯前拜大首領將軍張樂盡求”라고 적어 장락진구가 ‘雲南國詔’였음을 밝혀놓았는데, 앞서 『기고전설집』에서 장락진구가 ‘건넝’에서 ‘운남’으로 바꾸었으며, 당이 그를 운남왕으로 책봉하였다는 것과 조응한다.

이렇듯 『기고전설집』과 『남조도전』의 ‘철주 제사 기록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고전설집』이 『남조도전』에 실린 이야기와 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참조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두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고전설집』의 경우, 제사에 참여한 인사를 ‘習農樂(細奴邏)’라고 한 데 비하여, 위 기사는 ‘흥종왕’이라고 적고 있고, 『남조도전』「도권」은 羅盛이라 적고 있다. 흥종왕과 나성은 동일 인물로, 세노라의 아들 羅盛을 지칭하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기고전설원집』은 철주제사에 참여한 몽씨의 수령을 나성에서 세노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侯冲의 지적대로 이 ‘철주 제사’ 이야기에는 선양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남조도권 전체로 보아도 ‘백국’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清初 聖元寺의 주지 寂裕가 찬술한 것으로 알려진 『白國因由』의 기사이다. <波細背幼主移居蒙舍觀音授記 第九>에는 세노라에 대한 관음의 수기와 ‘철주 제사’ 이야기, 그리고 南詔國의 건국을 언급하고 있다.

> 觀音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大理國土의 주인이 되어, 자손 대대로 인민을 안락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떠났다. 때에 張樂進求가 雲南詔의 추장이 되었는데, 九鼎에 희생을 갖추고, 세노라를 청하여 鐵柱廟에 나아가 하늘에 제사지내고 길상을 점치고자 하였다. 갑자기 金穀鳥가 나타났는데, 일명 金漢王이라 한다. 세노라의 오른쪽 어깨로 날아와, 연이어 天命이 노라에게 있다고 세 차례 울었다. 무리가 모두 마음에 새겨 복종하였다. 세노라가 마침내 위에 올라 奇王을 칭하였으며, 마침내 唐에 조공하였다. 자손이 뒤에 대대로 왕에 봉해졌는데, 舜化眞에 이르기까지 모두 13대를 전하였으며, 모두 237년이었다.[8]

그런데 『백국인유』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 (阿育王이 白國에 封한 둘째 아들) 驃信苴는 號를 神明天子라 하였는데, 곧 5百神의 王이다. 位를 전하여 17대손 仁果에 이르렀는데, 漢의 諸葛亮이 滇에 들어와 張姓을 사여하였다. 36대손 張樂敬求가 朝覲하니, 上이 雲(南)鎭守將軍에 봉하였다. 唐 貞觀 2년(628)에 天師가 별을 보고 상주하여 말하기를, 西南에 王者가 일어날 것이라 하였다. 上이 명하여 찾아보게 하니, 細奴邏가 태어났고, 마침내 白國王이 되었다.[9]

---

8) 方國瑜 主編, 『雲南史料叢刊』(第11卷), p.164.

‘철주 제사’ 이야기에서는『기고전설집』과 마찬가지로 세노라가 등장하고 예언의 대상도 세노라였지만, 세노라에 대한 직접적인 선양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노라가 “마침내 백국왕이 되었”다고 하여, 같은 백국의 연속선상에서 세력 교체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데, 인도 阿育王(Ashoka, B.C. 273~ B.C.236)의 둘째 아들 驃信苴가 白國의 왕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장인과와 장락경(진)구는 모두 이 표신저의 후손으로 편입되었으며, 제갈량이 장인과에게 ‘張姓’을 수여한 것으로 덧붙여졌다. 백(자)국의 시조가 장인과에서 인도 아쇼카왕의 아들 표신저로 변경되고, 장씨 계보는 인도 아쇼카왕의 혈통으로 변신한 것이다. 세노라의 남조 건국 또한 백국의 연속으로 그려지고 있다.『백군인유』에서 장씨 가계와 백자국은 남조 대리국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백국의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상 현전하는 문헌 중 장씨와 몽씨 사이의 선양과 백자국의 존재를 처음으로 기록한『기고전설집』,『백고통기』계통의 문헌 중 거의 마지막으로 ‘백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는『백국인유』의 관련 기록, 그리고『남조도전』의 ‘철주 제사’ 관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그 맥락은 조금씩 달랐다. 가장 오래된 문헌인『남조도전』은 ‘철주 제사’의 고사와 장락진구의 존재 그리고 세노라의 아들 홍종왕 나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장씨와 몽씨 사이의 ‘선양’ 및 ‘백국’의 존재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기고전설집』은『남조도전』의 ‘철주 제사’와 비슷한 내용을 전하면서, ‘선양’을 직접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락진구의 조상으로 개국 비조 장인과와 장용우를 언급하고, 白崖 지역에 중심을 둔 백(씨)국의 존재를 명시하였다.『백국인유』에서는 ‘철주 제사나 세력교체에 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소카왕의 둘째아들을 백국의 시조로 제시하였고, 장씨 계보를 그 혈통에 편입시켰으며, 세노라의 남조국 또한 백국으로 규정하였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내용상의 차이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처한 맥락들은 더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 3. 梵僧과 大封民國, 그리고 阿育王: ‘백자국’을 둘러싼 맥락들

앞서 언급한 세 문헌들의 전체 내용과 관련 연구들을 통해 이들 ‘백자국’이 배치된 맥락이 각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문헌별로 백자국을 둘러싼 맥락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그 특징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번에는 문헌이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남조도전』부터 살펴보자.

9) 方國瑜 主編,『雲南史料叢刊』(第11卷), p.161.

앞서 侯冲은『남조도전』의 기록에서 ‘장몽선양’과 ‘백국’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하였는데,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는 존재한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철주기』의 ‘철주 제사’ 관련 이야기에서 장락진구를 지칭했던 ‘三賧白大首領’의 존재이다. ‘삼탐’ 즉 세 개 ‘평원’의 ‘白’을 대표하는 대수령이라는 의미가 된다.[10] 그리고 이 세 개의 평원의 위치에 대해 단서가 되는 것이「圖卷」에 등장하는 “雲南大將軍 張樂盡求, 西洱河右將軍 楊農揀, 左將軍 張矣牟揀, 巍峯刺史 蒙羅盛, 勳公大部落主 段宇揀, 그리고 趙覽宇, 施揀望, 李史頂, 王靑細莫 등” 제사 참여자 9人의 명단과 “都知雲南國詔西洱河侯前拜大首領將軍”라고 한 장락진구의 직함이다.

신성시 되는 철주 곁에서 행해진 祭天의식의 주관자는 당연 명단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운남국조’의 지위를 지닌 장락진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천의식에 참여한 나머지 8인은 당연히 장락진구의 운남국에 복속한 세력의 수령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 탐은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 의식에 참여한 9인의 직함에 보이는 지명으로는 雲南, 西洱河, 巍峯이 있으며, 부락명으로 勳公大部落이 보인다. 그리고 장락진구의 직함을 보면 ‘운남’과 ‘서이하’가 그의 관할 하에 있었거나 영향 아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운남’은 두말 할 나위 없고, ‘서이하’의 경우 장락진구가 겸대한 서이하후라는 작위와 서이하 좌장군 張矣牟揀의 존재가 당시 이 지역이 장씨 세력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외봉은 세노라와 나성이 거주하였던 蒙舍賧(현재의 巍山壩[11])일 것이다. 운남은 전통적으로 운남군치와 현치가 두어졌던 雲南賧(현재의 祥雲壩[12]) 지역이나 백애탐(현재의 彌渡壩[13]) 지역 혹은 둘 다를 지칭할 것이고, 서이하는 물론 河賧(현재의 大理壩[14])을 지칭한다.

---

10) 藤澤義美,『西南中國民族史の研究 - 南詔國の史的研究』, 大安, 1969, pp.37~38. 劍川縣石鐘山石窟第十二窟의 造像記에 따르면, 南詔 시기에 현재의 검천 부근에 三賧甸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삼탐과 직접 관련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溫玉成《世界宗教研究》2001年01期, pp.1~10).

11) 雲南省 大理州 巍山縣 文華鎭에 위치하며, 대형 斷陷盆地로 북부가 넓고, 지면이 비교적 평탄하며, 남부는 좁은 지형이다. 넓이는 167.66㎢, 해발은 1,715m이다(童紹玉 陳永森 著,『雲南壩子研究』, 雲南大學出版社, 2007, p.215).

12) 雲南省 大理州 祥雲縣 祥城鎭에 위치한다. 高原面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라앉은 대형 窪地로, 호수가 점차적으로 퇴출하면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壩內에 여전히 작은 湖泊 및 水塘들이 존재한다. 넓이는 338.75㎢이며, 해발은 1,965m이다(童紹玉 陳永森 著,『雲南壩子研究』, 雲南大學出版社, 2007, p.205).

13) 雲南省 彌渡縣 彌城鎭에 위치한다. 斷陷盆地이다. 넓이는 142.06㎢이며, 해발은 1,679m이다(童紹玉 陳永森 著,『雲南壩子研究』, 雲南大學出版社, 2007, p.208).

14) 雲南省 大理州 大理市 下關鎭에 위치한다. 단함호분이다. 고원의 단함으로 형성된 호분이다. 옛날에는 이해의 면적이 광대했는데, 나중에 호박의 면적이 축소되면서 호수가의 작은 평원이 형성되었다. 넓이는 601㎢이고, 해발은 1,965m이다(童紹玉 陳永森 著,『雲南壩子研究』, 雲南大學出版社, 2007, p.204).

이렇게 놓고 보면, 세 탐은 백애탐, 운남탐 그리고 하탐, 혹은 백애탐와 하탐 그리고 몽사탐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장락진구와 그의 세력은 당시 당제국의 기미부주 지배 체제 하에서 운남에 속하는 祥雲 지역이나 彌渡 지역에 근거를 두고, 大理 지역과 巍山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기반하여 당 제국으로부터 삼탐의 대수령으로 인정받았으며, 운남국조와 서이하후의 봉작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철주 제사가 행해지던 당시 이 지역에 장락진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상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도권」에 등장하는 『장씨국사』의 성격이나 정체를 추단할 근거는 없지만, 장씨 세력이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했으며, 실제로 이들에 대한 기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또 몽씨의 남조가 결국 서이하지역을 통일하고, 남중 지역 전역을 장악하는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이들 장씨 세력을 복속시키는 과정은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남조도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장씨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남조도전』은 阿嵯耶觀音이 梵僧과 老人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몽씨의 남조 건국을 돕고 대리 이해지역을 교화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남조 왕조(7세기후반~902)를 보우하는 내용을 7개의 부분으로[15]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즉 아차야 관음의 현신인 梵僧이 이 이야기의 주연이었다. 7 개중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관음의 화신인 범승이 출현하여 예언하기 전에 세노라와 나성 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서로운 조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龍犬이라 불리는 머리는 하얗고 몸은 검은 개의 탄생, 橙花라고 불리는 진귀한 꽃이 피는 나무 두 그루가 자라나 사시사철 꽃을 피운 일, 두 마리의 새가 이 나무에 깃들여 산 일, 황색 매의 방문 등이 그것이다.

'철주 제사'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상서로운 징조의 하나인 황색 매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배치된 장치였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철주기』 인용 기사 다음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어진다. "이 새는 興宗王 家에서 머무르다가, 11개월이 지난 뒤에야 모습을 바꾸었다." 이는 『철주기』의 "興宗王이 이에 기억하기를, 이것은 우리 집의 主鳥이다."라고 한 부분과 호응한다. 다시 말하면, 철주 제사 시에 철주 위에 있다가 나성의 팔에 내려앉은 주조는 이미 11개월 전부터 나성의 집에 살던 새였던 것이다. 그리고 『남조도전』은 그 새가 阿嵯耶觀音의 화신인 범승이 나타나기 3일 전에 세노라의 집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자권」은 이 관음의 화신이 행한 활약상, 그리고 관음이 남긴 관음상과 관음상의 발견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내용을

15) 제1화(瑞兆), 제2화(梵僧이 나타나다), 제3화(범승, 예언을 하다), 제4화(범승, 窮石村에 나타나다), 제5화(범승이 王樂을 항복시켜, 각지 수령의 예배를 받다), 제6화(범승, 관음상을 남기다), 제7화(摩訶羅嵯가 관음상을 얻다)

지닌『남조도전』의 작성 목적은「문자권」의 일곱 번째 부분에 실려 있는 南詔의 13대 황제 舜化貞의 勅書에 잘 드러나며, 말미의 후기와「圖卷」제6폭의 주기에 잘 요약되어 있다. 칙서는 관음상이 발견된 다음해에 내려졌다.

> 大封民國에는 성스러운 (관음의) 가르침이 성행하니, 혹은 胡梵(버마와 인도?)으로부터 이른 것이 있고, 혹은 吐蕃과 漢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 대대로 그것을 서로 전하여, 공경하고 우러르는 것이 여전히 다름이 없다. 이로 인하여 兵馬가 강성하고, 王業이 지극히 창성하며, 萬姓이 일찍 죽는 재앙이 없고, 五穀은 풍성하게 그득한 상서로움이 있다. 그러나 朕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古今에 널리 알지 못하고, 비록 典敎가 나라에 들어왔다고는 하나, 어느 聖人이 시작하였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삼가 마음을 더하여 (관음의) 圖像을 공양하고 (이를) 널리 流行하게 하여, 금세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재앙을 없애고 복이 이르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儒者와 승려(釋) 그리고 耆老의 무리로 고금에 통달한 자들에게 묻노니, 알거나 들은 것을 숨기지 말고 조속히 進奉하도록 하라. 이 勅은 慈爽에 부쳐 天下에 布告하니, 모두가 알게 하라. 中興 2年(898年) 이월 십팔일.(『南詔圖傳』「文字卷」<7化>)
>
> 中興皇帝에 미쳐, 儒者와 승려(釋) 耆老의 무리로 고금에 통달한 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리고 관음이) 나라에 들어온 유래를 그린 그림을 받들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異俗을 교화하는 데 이르렀다. 찬술을 맡은 臣 王奉宗, 信博士・內常侍・酋望・忍爽 張順 等이 삼가『巍山起因』,『鐵柱(記)』,『西耳河記』등을 살펴서 巍山 이래의 훌륭한 사적(勝事)을 약술하였다. 때는 中興 2年(898년) 戊午歲 三月 十四日 삼가 기록하다. (『南詔圖傳』「文字卷」<7化>)
>
> 信博士・內掌侍・酋望・忍爽 臣 張順과 巍山主掌內書金券・贊衛理昌・忍爽 臣 王奉宗 等이 진술하였습니다. 삼가『巍山起因』,『鐵柱』,『西洱河』等의 기록과 아울러 《國史》를 살펴서 개재된 圖와 書를 올립니다. 聖敎가 처음 邦國에 들어온 기원은 삼가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아울러 들은 바를 게재하여, 모두 왼쪽과 같이 나열하였습니다. (『南詔圖傳』「圖卷」<第6幅>)

남조말기 불교, 특히 관음신앙이 중요한 지배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남조도전』은, 남조왕국의 마지막 황제인 중흥황제가 대리 지역에 퍼져 있는 아차야관음 신앙이 처음 들어온 내력, 특히 자신이 즉위하기 전 해에 발견된 관음상의 내력에 관한 조사를 명하는 조칙을 내렸고, 이에 長順과 王奉宗 등이『巍山起因』,『鐵柱記』,『西洱河記』,『(張氏)國史』등의 기록을 모아 정리한 그림과 글이다.「문자권」에는 王奉宗의 이름이,「도권」에는 장순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둘이 그림과 글로 책임을 나누었는지도 모르겠다.『남조도전』은 결국 아차야 관음의 도움으로 건국되고, 그 보우 아래 존속한 남조국의 역사를 강조한 그림책이었고, ‘철주 제사’는 이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조 말기 관음상의 발견과 관음의

보우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남조국이 설 무렵부터 '범승'들에 의한 포교 활동이 적지 않게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위 기사들에서 주목되는 바들이 있다. '大封民國'이라는 국호의 자칭과 버마와 인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胡梵'이다.[16]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封은 곧 '白'과 음이 통하고, '大封民國'은 결국 '大白民國'이라고 한다.[17] 남조가 스스로 '大封人'이라 칭했다고 하는 이야기는『新唐書』「南蠻傳」에도 전한다.[18]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조의 지배계층이 스스로 '白民'으로서의 인식을 가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되면, '三賧白大首領'의 '白'도 '白部' 정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때의 '白部' 혹은 '白人'은 수당대의 '白蠻'과는 달리[19] 특정 종족 집단 혹은 정치공동체의 명칭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胡梵'을 정확하게 해석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남조를 가운데 두고 볼 때, 漢과 吐蕃을 제외하고 남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베트남 라오스 쪽과 버마 인도 쪽이 남는다. 그리고 '梵'자는 흔히 '불교' 인도의 문자와 연결되는 문자이고, '胡'는 樊綽의『蠻書』에 현재의 버마에 해당하는 驃國에서 잡아온 승려를 '胡僧'으로 부른 사례가[20] 있어서, 일단은 버마와 인도 방향으로 풀어보았다. 흔히 운남 지방에 처음 들어온 불교는 漢傳佛敎로 설명된다. 그런데 위 기사에 서 관음 신앙이 혹은 중원 지역과 티베트 지역에서 혹은 '胡梵'에서 왔다고 한 것은 적어도 이 시기에 이르면, 인도 쪽으로부터 직접 불교가 수입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蜀身毒道'가 일찍부터 열려있었음을 감안하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애초에 중국 쪽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졌다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인다.

『남조도전』은 이를테면 남조 국가 한 시기를 다룬 斷代史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기

16) 立石謙次(『雲南大理白族の歷史ものがたり ー 南詔國の王權傳說の觀音說話 ー』, 東京: 雄山閣, 2010)는 西域과 印度로 해석하였다(p.22).

17) 王忠,『新唐書南詔傳箋證』, 中華書局, 1963, p.114.

18)『新唐書』卷222中「南蠻」中 <南詔 下>, pp.6290~6291. 徐雲虔의『南詔錄』에서도 "남조의 별명을 학척이라고 하는데, 그 후 또 大封人이라고도 自稱하였다."라고 적었다(王叔武,『雲南古佚書鈔』, 雲南人民出版社, 1981, p.37). '封民'이 아니라 '封人'으로 적은 이유가 李世民을 避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19) 수당대의 '백만' 개념은 '오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혈통적 구분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구분에 가깝다. '백만'과 '오만'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만이 집단을 타자화시키면서 문화적 친근성을 기준으로 대별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남조를 비롯한 6조에 대하여 '오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시 이들이 '백만'에 속한 다른 집단들보다 중국인들과 문화적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다. 남조의 시조 세노라가 '애뢰이' 출신이라는 점은 당시 '운남' 지역집단들과 구분되겠지만, 이미 그 모집단으로부터 이탈하여 '巍山'으로 이주한 뒤, '백'에 속하는 집단들과 섞여 그 질서에 순응하였다면, '백대수령'이 통령하는 '백' 집단의 구성원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없다.

20)『雲南志補注』(雲南人民出版社, 1995), p.129.

고전설집』은 많이 다르다. 이 문헌은 1265년에 ‘滇民’ 張道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1265년은 대리국이 쿠빌라이에게 항복한 1253년으로부터 불과 12년이 지난 시점이고, 주지하듯이 이후에도 몽골제국의 용인 하에 大理國의 지배집단은 大理總管府를 통해 滇西 지역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였다. 張道宗에 관한 정보는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스스로 ‘滇民’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아, 오늘날 곤명 지역 쪽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목이 이르는 바대로 이 책은 ‘滇’을 중심으로 적은 운남 지역의 역사책이다. 이 도서의 출간은 1549년에 이루어졌다. 명조의 운남 정벌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의 하나인 沐英의 10대손 沐朝弼이 대대로 소장하고 있던 이 책을 간행한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唐虞로부터 시작하여 咸淳 연간(1265~1274)에 이르기까지, (滇 지역의) 지리(方域)와 연대기(年運), 풍속 그리고 복속하고 이반한 것을 일일이 자세히 적었다.”라고 하였다.

『기고전설원집』의 내용 구성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한적 자료를 인용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지만, 현지 자료에 의한 정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남조 국왕과 황제의 연대기를 기록한 문헌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편년체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각종 전설과 연대기를 나열하였을 뿐, 그 이야기들을 ‘계보화’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 책에도 阿育王에 관한 전설이 전하는데, 아육왕의 세 아들 福邦, 弘德, 至德 등이 滇池 지역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중국 정사에서 전하는 金馬・碧鷄 전설과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나 이들이 백자국의 張仁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남조의 황제들도 아육왕의 아들들을 추봉하고, 제사를 지냈을 뿐이다. 『사기』를 비롯한 역대 정사의 西南夷에 관한 기술들, 哀牢國 전설, 莊蹻入滇설화, 天竺으로부터 온 梵僧의 세노라에 대한 예언, ‘장몽선양’설화, 남조국의 건국과 연대기, ‘天寶戰爭’, ‘불교숭상’, 대리국에 관한 약술, 대리총관부에 관한 기술 등이 시간 순서에 의해 나열되고 있다. 그야말로 ‘滇民’ 장도종이 편년체로 구성한 ‘전’ 지역의 역사일 뿐이다. 장도종의 저술 목적도 따로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다. ‘백자국’은 滇 지역의 일부 지역을 일정 시간동안 점유한 ‘國’의 하나로 서술되었다.

다음은 타테이시 켄지(立石謙次)가 『白國因由』의 내용을 정리한 <표 1>을[21] 옮긴 것이다.

『백국인유』의 서문 부분에서는 ‘釋迦의 傳衣’ 전설과 ‘아육왕이 대리를 방문한 전설’이 소개되고,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아육왕의 둘째아들로부터 대리국 단씨로 이어지는 계보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남조도전』이 그러하였듯이, 관음이 대리 지역을 교화하는 활약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조뿐만 아니라 대리국의 건국과 이에 대한 관음의 보우 내용이 포함되고, 또 남조의 시조 細奴邏의 출생 신화가 哀牢夷의 시조

21) 立石謙次, 「清初雲南大理地方における白人の歴史認識について : 『白國因由』の研究」, 『史學雜誌』 Vol.115, No.6, 2006. 06. 20, p.41(1081).

설화에 가탁하여 설명되었다. 그리고 관음의 대리 지역 교화 활동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본문의 앞부분에 배치된 羅刹을 굴복시켜 大理 지역의 민을 구하는 일이었다. 나찰은 사람의 눈알을 뽑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잔혹한 지배자였다. 이 나찰의 정체에 대하여 토착종교로 보고, 설화는 관음신앙과 토착종교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지만,[22] 다테이시는 대리 지역의 홍수해로 보았고, 이 설화는 관음의 힘을 빌어 이 지역의 치수가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였다.[23]

<표 1> 『白國因由』 構成

| | | |
|---|---|---|
| 序 | | |
| 설명 부분 | 觀音初出大理國 第1 | 羅刹의 調伏 |
| | 觀音化身顯示羅刹 第2 | |
| | 觀音乞立券 第3 | |
| | 觀音誘羅刹盟誓 제4 | |
| | 觀音展衣得國 제5 | |
| | 觀音引羅刹入石舍 제6 | |
| | 天生細奴羅主白國 제7 | 南詔始祖의 출생전설 |
| | 茉莉媄送子與黃龍 제8 | |
| | 波細背幼主移居蒙舍觀音授記 제9 | 觀音의 授記 |
| | 觀音彫像遺愛 제10 | 觀音의 遺像 |
| | 觀音口授方廣經辭張敬入寂 제11 | 觀音, 方廣經을 전하다 |
| | 普哩降觀音 제12 | 觀音의 敎化 |
| | 觀音利人民化普哩 제13 | |
| | 觀音化白夷反邪歸正 제14 | |
| | 觀音以神通化二蒼人 제15 | |
| | 觀音累世行化救劫 제16 | 觀音, 역대 大理를 구하다 |
| | 大楊明追段思平觀音救護 제17 | 大理國의 建國 |
| | 段思平討大楊明觀音指路 제18 | |
| 跋文 | | |

『기고전설집』과 비교하여 『백국인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서술의 중심을 滇池 지역으로부터 대리 지역으로 옮겨오고, 또 그 모든 이야기들을 '계보화'하였다는 것이다. 『기고전설집』에서는 아육왕의 세 아들 중 첫째와 막내가 滇池의 西山과 東山을 선점하였고, 둘째 아들 弘德이 전지의 북쪽 지역에 정주하였다고 적었다. 그런데 『백국인유』는 둘째 아들의 이름도 驃信苴로 바꾸고, 그가 처음부터 '蒼洱之間' 즉 대리 분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이야기의 중심이 전지 지역에서 대리 지역으로 옮겨 온 것이다. 표신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驃信이 남조시기 군주의 칭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테이시에 따르면, 阿育王의 제2자가 白國의 왕

22) 徐嘉瑞, 『大理古代文化史稿』, 中國圖書刊行社, 1985, p.306.

23) 立石謙次(2006), p.53.

이 되는 이야기는 萬曆『雲南通志』 권16「白國始末」이 문헌상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24]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백국인유』는 아육왕으로부터 대리국 단씨까지 ‘백국’의 역사 안에 ‘계보화’ 하였다. 侯冲에 따르면, 이는『백고통기』 출현 이후『백고통』계 문헌들에서 고루 보이는 현상이라고 한다. 侯冲이 그린 다음 계보도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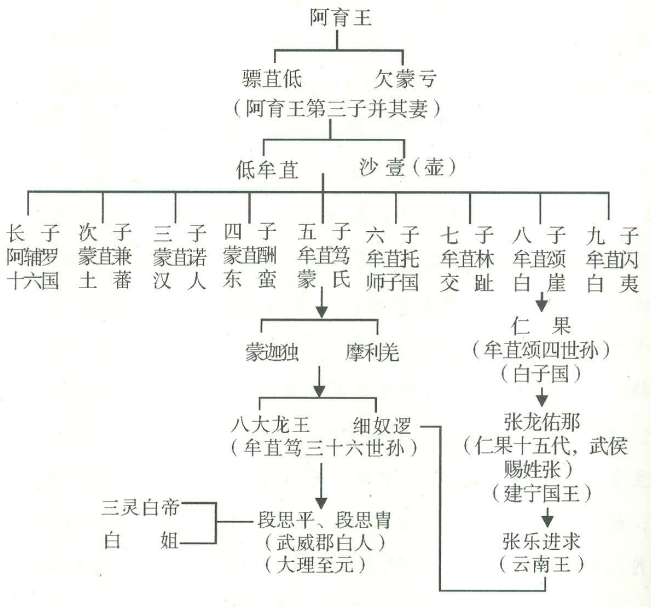


《白子國譜系》(侯冲, 2011, p.124)

위의 계보도를 보면 인도의 아육왕이 제일 위에 있다. 백국의 시조인 셈이다. 제2열의 표신저는 아육왕의 둘째 아들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국의 왕이다. 표신저와 欠蒙亏 사이에서 저모저가 나고, 저모저와 사일 사이에서 9명의 아들이 태어난다. 사일은 바로 애뢰이 시조전설(九隆전설)에 등장하는 어머니이다. 애뢰이의 구륭전설로부터 바로 세노라로 연결시키는 문헌들도 있지만, 조금 더 세련되어진 문헌들은 세노라 때까지의 시간차이를 고려하여 비슷한 전설을 한 번 더 거친다. 또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 아홉 아들이 몽씨와 장씨뿐 아니라, 16국으로부터 吐蕃, (滇 즉 운남에 거주하는) 漢人, 東蠻, 獅子國, 交趾, 白夷 등을 모두 하나의 핏줄로 묶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 16국은 다음 절에 설명하겠지만,『기고전설집』과 장승온 화권에 등장하는 서남이 16국으로 추정된다. 보이는 바와 같이 제8자의 후손인 백애의 장씨는 장락진구대에 이르러 ‘선양’을 통해 그

24) 立石謙次(2006), p.52.

세력이 제5자의 자손인 세노라에게로 옮겨진다. 흥미로운 점은 제2의 구륭전설을 통해 세노라가 출현하며, 이 혈통이 대리국의 단씨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백인' '백국' 중심의 세계사라 할 수 있다.

侯冲에 따르면, 대리 지역이 명제국의 직접 지배 하에 들어가면서, 한문화와의 전면적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후 이 지역 白(僰)人과 漢人 지식인들에 의해 '白(僰)文' 자료의 漢文으로의 대대적인 번역이 이루어졌다.[25] 이 과정에서 『백고통기』의 저술과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백고통기』의 영향을 받은 운남 지역 史志의 출판과 유행이 명청 시기 백인(북인)들의 민족의식을 강화하였고, 오늘날 大理지역을 白族의 최대 취거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侯冲의 주장이다.[26] 그리고 남조 대리국 시기 전설적 존재들과 가계의 기원을 연결시키는 묘비명과 족보 등을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묘비명과 족보 또한 명대 이후 늘어나는 점을 보면, 이 또한 새로운 문화 기제를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민족의식 운운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명청 제국 시기 대리 지역 묘비명이나 족보에는 자신들의 기원을 중원으로부터 이주한 漢人 가계에 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상 세 문헌을 살펴보았는데, 후대로 갈수록 '백(자)국'의 모습이 명현해지고, 천축으로부터의 영향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 문헌이 일관된 방향성을 갖추고 발전해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각 문헌마다 이야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맥락은 모두 달랐다. 후대의 문헌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선대 문헌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했을 뿐이다.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남조국 시기에 '백자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조국사가 후대의 백자국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문제이다. 앞서 남조국 시기의 기록인 『南詔圖傳』을 검토하면서, '백(자)국'과 관련된 단서에 대한 해석을 미루어 둔 바 있다. 이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절을 바꾸어 설명하겠다.

## 4. '白子國'과 '大封民國', 그리고 南詔國의 西進

『남조도전』에는 '백자국'과 관련하여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은 대봉민국의 '봉'과 '백'의 관계이고, 이와 관련된 『(장씨)국사』의 해석 문제이다. 또 『남조도전』의 편찬은 분명 '대봉민국' 탄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리고 이 '대봉민국'의 호칭과 『남조도전』의 편찬은 후대의 '白子國史'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봉

25) 侯冲(2011), p.11.
26) 侯冲(2011), pp.355~356.

민국’의 탄생 시점이 보여주는 맥락적 의미도 이해가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이 문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우선 ‘대봉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남조도전』에서는 ‘대봉민국’이 두 번 더 언급된다. 다음의 기사가 그것이다.

> (남조국 10대 황제 豊祐) 保和 2年(825년) 乙巳해에 西域의 和尙 菩立陁訶가 와서 우리 京都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西域 蓮花部의 어른(尊)이신 阿嵯耶 觀音께서 蕃國(吐蕃) 中으로부터 교화를 행하면서 너희(汝) 大封民國에 이르렀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7일이 지나자, 끝내 본디의 佛寺로 돌아가 버렸다. 우리 大封民國은 비로소 阿嵯耶가 와서 이곳에 이른 것을 알았다.(제7화)

이 기사에 따르면, 825년 서역에서 온 승려가 아차야 관음의 행방을 물으며, 남조국을 지칭하여 ‘대봉민국’이라 하였고, 또 기사의 화자도 스스로를 ‘대봉민국’이라 칭하였다. 825년 당시 남조의 황제를 비롯하여 지배층이 스스로를 대봉민국이라 칭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신당서』「남만전」은 南詔王 酋龍이 죽고 그 아들 法이 즉위한 878년에 “스스로 大封人이라 칭하였다”고 적고 있다.[27] 추룡은 곧 景莊皇帝 世隆이고, 법은 宣武帝 隆舜이다. 이러한 남조국의 국호 변경 시점에 관하여는『기고전설집』도 확인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建極 19年(878) 春二月에 景莊 황제가 죽고, 아들 隆舜이 섰는데, 宣武帝라 칭하였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國號를 고쳐서 大封民國이라 하였고, 연호를 세워 貞明이라 하였다. 3年(881)에 (황제가) 善闡城에 갔는데, 이어서 東京으로 삼고, 阿育王의 아들 金馬·碧雞二山景帝 및 (舅氏) 神明天子의 각 廟에 제사하였다. (선무제가 善闡에) 都를 세우고 옮겨왔다. (그리고) 善闡 東京城 밖의 山川壇과 社稷壇 두 단에서 校祀를 지냈다. 山川壇 서남쪽에 또 城 하나를 쌓았는데, 그 아들 舜化와 함께 거주한 곳이었고, 이름을 中城이라고 하였다. (선무제가) 東京에서 죽자, 大封名國으로 돌아가 장사지냈다.
>
> 舜化는 唐 昭宗 乾寧 4年(897) 冬十二月에 사자를 보내 당에 상서하였다. 孝哀帝는 輕車로 大封民國으로 돌아갔는데, 太和城宮으로 들어갔다가, 鄭買嗣에게 시해되었다. (902年) 買嗣가 마침내 그 위를 찬탈하였으며, 國號를 天長이라 하였으며, 改元하여 安國이라 하였다.

보이는 바와 같이,『기고전설집』의 ‘대봉민국’은, 善闡城이 있는 곤명 분지 지역과는 구분되는 곳이었고, 당시의 西京이 있었던 대리 분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사실 ‘國’이

---

27) 酋龍恚, 發疽死, 僞謚景莊皇帝. 子法6291 嗣, 改元貞明(878~)、承智、大同, 自號大封人. (『新唐書』 卷222中「南蠻」中 <南詔 下>, pp.6290~6291)

왕성 내지 수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국호를 정하면서 군주와 지배집단의 거주 지역이 지닌 특징을 내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878년에 공포된 대봉민국의 국호는『신당서』도 지적하였듯이 분명한 '自稱'이다.『기고전설집』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칭호는 공식적으로는 남조가 멸망할 때까지 약 20여 년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왕조국가 시기에 '民國'이라는 漢字語 그대로의 國號는 다소 어색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封民'이 南詔 황실을 비롯한 지배집단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여한 자칭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封民'은『新唐書』에서는 '封人', 그리고『記古滇說集』에서는 위 첫 기사에 보이듯이 '封名'으로도 표기된다. 그리고『南詔圖傳』에 나오는 '封氏'[28]도 '封民'의 異記로 추정된다. '封名'이라는 표기는 '民'이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음차일 가능성을 높여주며, '封人'과 '封氏'는 음차한 글자 '民(名)'이 '氏'나 '人'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封'이라 불리는 인간 집단(가계)의 의미일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封'과 '白(僰)'을 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보고, '대봉민(인)국'을 '대백민(인)국'으로, 즉 封이 곧 白이라고 하여, 백자국의 역사적 실재를 긍정하는 논리를 따르지만, 이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확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결론을 유보하고자 한다. 오히려 '봉민'이 등장하는 환경은 매우 불교적이었다. '대봉민국'이 등장하는『남조도전』의 문맥이 그렇고, '대봉민국'을 선포한 남조 황제의 성향이 그러하였다. '封氏之書' 또한 나성의 文臣 羅傍이 梵僧을 만나 가르침을 구하여 얻은 물건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에서 張樂盡求를 지칭했던 '三賧**白**大首領將軍'과 '都知雲南國詔西洱河侯前**拜**大首領將軍'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은 같은 그림에 등장하는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임에도 차이가 있다. 그것은 각기 인용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는『철주기』의 것이고, 후자는『장씨국사』의 것이다. 나성의 경우도『철주기』에서는 '興宗王'이라 하였고,『장씨국사』에서는 '巍峯刺史'라고 하였다.『장씨국사』 쪽이『철주기』보다는 당제국과의 관계를 더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시간적으로도 후대의 직함을 소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락진구를 지칭하는 두 직함을 비교하면, 우선 '삼탐'은 '운남과 서이하'에 조응하고, '장군'은 '장군'과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백대수령'은 '도지운남국조, 후, 전배대수령'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 배대수령 앞에 '전'자가 붙은 것은 장락진구가 '도지운남국조'의 직위를 얻은 뒤에 '대수령'은 다른 이에게 양보하거나 하여, 더 이상 맡고 있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拜'의 해석이다. '이전에 제수된'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그러한 용법도 발견하기 어렵고, '대수령'이라는 직함이 '제수'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

28) "次出一士, 號曰羅傍, 着錦衣. 此二士共佐興宗王統治國政. 其羅傍遇梵僧以乞書教, 卽**封氏**之書也." 立石謙次(2010)의 경우는 '封民'으로 읽었다.

다면 ‘拜’를 ‘白’에 짝하는 표현으로 볼 가능성은 없을까. ‘白大首領’과 ‘拜大首領’을 같은 의미로 파악하면, 모든 해석이 순조로워진다. ‘封’ 혹은 ‘封民’이 음차인 것처럼, ‘白’과 ‘拜’도 음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철주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질 때, 스스로를 ‘白’ 및 ‘拜’과 비슷한 음의 명칭으로 부르는 세력이 있었고, 그를 대표하는 수령이 장락진구였으며, 巍峯刺史 蒙羅盛 또한 그 세력의 구성원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특히 남조 지배집단의 경우, 이 가설이 설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디 哀牢夷 지역으로부터 巍山으로 이주해왔다는 이들이 ‘白(拜)’이라는 명칭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을지는 미지수이다.

南詔國 성립 이전에 白崖 지역에 ‘백자국’이 존재하였는지, 남조국 시기에 이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張氏國史』 혹은 『國史』의 존재이다. 백자국의 실재를 믿는 연구들이 강력하게 제시하는 증거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사』와 『장씨국사』가 같은 문헌인지 여부인데, 판단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씨국사』의 경우 ‘장씨’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다. 즉 ‘장씨국의 역사’인가 ‘장씨의 국사’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후자일 경우, 장씨가 편찬한 『국사』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상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남조도전』의 편찬목적과 다루는 시간 범주이다. 즉 아차야관음 신앙의 전파 내력을 밝힐 목적으로 ‘철주 제사’를 전후한 시기로부터 남조의 마지막 황제 시기까지를 다루는 서책이 참고해야 할 역사는 누구의 『국사』이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남조도전』 안에는 적지 않은 張氏들이 등장한다. 우선 앞서 보았듯이 「도권」의 편찬 책임자로 보이는 이의 이름이 張順이다. 그리고 『국사』와 『장씨국사』 모두 「도권」에만 등장한다. 또 『남조도전』에는 張樂進求의 후손들도 보이는데, 제7폭의 그림에서 ‘문무황제’를 시종하는 무사의 옆에는 “賞着裝龍頭刀, 臣保行卽是白崖樂盡求張化成節內人也.”라는 注記가 붙어 있다. 장보신이라는 무사가 자신이 백애의 장락진구와 장화성의 후손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 羅盛時에 梵僧이 開南의 嵯浮山 정상에 나타난 정황을 그린 제5폭에는 開南 普苴諾苴大首領 張寧健이 등장하는데, 「문자권」<5화>에서는, 범승을 만난 보저락저의 대수령 장연건이 張建成의 아비이고, 장건성은 곧 장화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고전설집』에 따르면, 이 장화성(장건성은) 남조 3대왕 盛邏皮 시기에 唐에 조공사자로 갔다가, 成都에서 佛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다. 비록 직접적인 ‘선양’의 언급은 없지만, 남조국 성립이후 장락진구의 후손 중 적어도 일부는 남조정권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남조도전』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남조가 巍山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할 무렵, ‘철주 제사’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정치 질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다. 즉, 당 제국의 기미부주체제 아래서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백대수령 장락진구가 건재하였고, 이주민 집단인 세노라와 나성 부자도 여기에 복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봉민국'을 국호로 공표한 시점은 877년이고, 12대 남조국 황제 隆舜이 즉위하자마자 취한 조치였다. 그리고 『남조도전』이 편찬된 것은 그가 죽고 1년 뒤인 898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902년에 마지막 황제 舜化貞이 鄭買嗣에게 시해되면서, 남조국은 주인이 바뀌었다. 결국, '대봉민국'은 거의 융순과 운명을 같이했다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융순이 왜 '대봉민국'으로 국호를 변경하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융순이 즉위할 당시, 그의 부친인 世隆代로부터 '稱帝'하였을 뿐 아니라, 당제국과의 책봉조공관계에서도 벗어나, 양자의 적대적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융순은 두 개의 호칭을 더 가지고 있었다.『남조도권에 따르면, 그는 '武宣皇帝摩訶羅嵯' 그리고 '驃信 蒙隆昊'으로도 불렸다.

현재까지 '摩訶羅嵯'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梵文의 "Maharaia"의 對音으로 '大王'의 의미이다.[29] 그리고 驃信은 '驃의 군주'로 해석되어왔다. 808년 尋閣勸이 즉위하면서, "스스로 칭하기를 驃信이라 하였다. 만이의 말로 君이다."[30]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오리엔탈리스트 페리오(伯希和, Paul Pelliot)는 "살피건대 '표'는 한적에서 버마인의 고칭이고, 그 대음을 혹자는 Phyu라고 한다. 이는 주로 버마종의 칭호였다. 그리고 남조왕이 버마를 침입한 것이 이미 여러 차례였다. 따라서 …… 표신은 Pyushin의 상대음이니, 버마어로 '표의 임금'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31] 심각권이 자칭하여 '표신'이라고 한 것은 남조와 표국의 정치적 관계가 상당히 긴밀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32] 이 지역에서 남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국은 여로 도시국가들로 구성되었고, 표국 및 그 주변 지역은 상업 교통 지리 측면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바로 버마의 한 역사학자가 지적한 그대로, "중국과 인도 사이의 육상 상업로의 개통 이후 중국 사천에서 오는 상인들이 육로로 인도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 북부로부터 와서 중국으로 가는 상인들도 모두 표인들의 구역을 거쳐야만 했다. 이로 인하여 표인들의 중심지 베익타노는 바로 내륙 상업교통망의 중추가 되었다."[33] 762년 尋傳을 점령하여 경영하기 시작한 남조는 이를 기반으로 이 교통로를

---

29) 李霖燦, 「南詔的隆舜皇帝與"摩訶羅嵯"名號考」, 『慶祝李濟先生七十歲論文集』上冊, 臺北, 1965. 그런데 이와 달리, 중국어의 "大黑天神"이며, 白語의 의미로는 "蒙家虎氏族"이라는 주장도 있다(徐琳, 「南詔、大理國"驃信""摩訶羅嵯"名号探源」. 『民族語文』 1996年05期).

30) 『新唐書』 卷222中 「南蠻中」 <南詔 下>, p.6281.

31) [法]伯希和著 馮承鈞譯(2003), 『鄭和下西洋考交廣印度兩道考(世界漢學論叢)』, 北京: 中華書局, p.201.

32) 谷躍娟(2007), 「南詔對尋傳及銀生地區的經營及利益趨向」, 『雲南民族大學學報』 2007-5, p.93.

장악하였고, 표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新唐書』「驃國傳」에서 말하기를, “남조는 군대가 강하고 땅이 이어져 있다고 여겨서, 늘 (표국을) 羈制하였다.”[34] 『蠻書』나 『신당서』 등에 보이는 남조와 표국의 정치적 관계는 종주국과 부용국의 관계에 가까웠다. 급기야 832년에 남조는 “표국을 겁략하고, 그 무리 3천여 명을 사로잡아다가, 柘東에 예속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 이후 표국과 표인들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남조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여러 도시 국가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이었을 뿐이다.[35]

808년 남조의 왕 尋閣勸이 즉위하면서 스스로 驃信이라 칭한 것은 바로 이들 도시국가들의 연합인 표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국제질서의 최정점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의 표국에 관한 기술은[36] 누층적으로 구성된 표국의 내부 구조와 국제관계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90개 내지 298개의 부락이 존재하고, 이들은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표왕에 역속되는 9개 진성에 의해 통할된다. 그리고 바깥에 표왕에 臣屬하는 18~20개의 속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계의 가운데 표왕과 그의 성읍(國)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동남아대륙부의 전통적 ‘봉건’ 통치 질서인 무앙(Mueang; 國)-반(Ban; 村) 체제와도 잘 들어맞는다.[37]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만다라(曼荼羅, Mandala)’형 국가구조,[38] 국제질서의 구조와도 부

33) [緬]吳儒性(1990), 李孝驥節譯, 「驃王朝時期的緬甸對外關系」, 『東南亞』 1990-1, p.60.

34) 『新唐書』 卷222下 「南蠻 下」 <驃>, p.6308.

35) 이때 남조에 의해 파괴된 것은 4세기에서 9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던 할린(Halin)성으로 추정된다표국의 도성으로 알려진 스리 크세트라는 10세까지도 번영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할린이 파괴된 이후 비로소 할린과 스리 크세트라 사이에 있던 파간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점차 표인의 세력은 버마인들에 의해 대체되어 갔다. 이윽고 11세기에 파간왕조는 버마 전역을 호령하는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李謀 李晨陽, 「驃人族屬探源」,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3, pp.123~124).

36) 『舊唐書』 卷197 「南蠻 西南蠻」 <驃國>, p.5285; 『新唐書』 卷222下 「南蠻」下 <驃>, p.6307.

37) 무앙(Muang; 國)-무반(Ban; 村) 체제에 관하여는 이시이 요네오(石井米雄)의 설명 참조. 石井米雄 · 櫻井由躬雄, 1991, 『東南アジア世界の形成』, 講談社, pp.43～46.

38) 이시이 요네오의 설명을 빌리자면,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생태 공간은 山地部와 平原 내지 平野部로 대별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국가의 형성은 늘 후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근대국가에서는 불가결한 명확한 국경 관념을 결여한, 王都에 중심을 가진 정치권력이 도달하는 범위를 ‘國’으로 인식하는 전통국가의 외연은 지배자의 자질에 의해 伸縮하였다. 강력한 지배자가 출현한 경우에 일거에 세력 범위를 확대한 ‘국’도, 다시 범용한 왕의 치하에 이르면, 그 세력 범위가 순식간에 수축하여 버릴 뿐만 아니라, 각지에 대항 세력이 떼 지어 나타나 그 지배를 이탈하는 데에 이른다. 중앙권력과 지방의 여러 국들을 묶어주는 관계는 그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약해지며, 물리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원거리의 경우에는 칭호의 수여나 공물의 봉헌 등 상징의 교환에 그친다. 중앙-지방의 관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방의 여러 권력들 사이에서도 인정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전통국가의 형태는 ‘만다라형 국가’로 불린다.”(米雄 · 櫻井由躬雄, 1999, 『東南アジア史Ⅰ』, 東京: 山川出版社, p.6).

합한다. 결국 심전지역 개발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표국을 羈制하게 된 남조왕은 표왕으로 대표되는 '세계'의 '최고 군주'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남조는 이 지역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혹은 세계질서를 수립한 것이다. 아마도 9세기 후반 이후 당에 대한 원정과 '적국' 례의 요구, 그리고 대외적 칭제는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조의 대외적 세력 팽창은 표국에 그치지 않았다. 『紀古滇說集』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남조의 외교적 교류의 범위를 잘 보여준다.

> "때는 당현종 개원 15년(727년)이다. 5조가 마침내 평정되어 복종하였고, 당이 왕을 책봉하여 特進・雲南王・越國公・歸府儀同三司[39]로 삼았다. 당으로부터 진봉된 뒤에, 永昌諸郡, 緬, 暹羅, 大秦은 모두 서쪽으로 교통하는 나라(國)들, 交趾, 八百, 眞臘, 占城, 撾國은 모두 남쪽으로 통하는 나라(國)들이 되었는데, 진기한 金寶, 鹽, 배, 棉, 氈布, 琲琚, 巴貝를 해마다 바치며, 왕에게 조공을 거르지 않으니, 이에 점차 강성하여졌다."[40]

남조가 강성해짐에 따라, 단순한 통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한 외교 관계는 점차 '차등적 외교관계'로 옮아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남조는 몰려드는 조공사절을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지어 그들을 접대해야 했다. 五華樓가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고전설집』은 또 다음과 같이 적었다. "856년(大中10年)에 (남조)왕 勸豐佑가 오화루를 세워, 西南夷 16국의 大君長들을 모았다." 그리고 이어서, 오화루는 실제로는 832년에 이미 만들어졌으며, 둘레가 사방 5리(2.5km), 높이가 100척(33m)로 1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기록하였다.[41] 16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大理國 시기에 만들어진 『張勝溫畫卷』을 통해 추정해 볼 수는 있다.

『張勝溫畫卷』 131도(圖)에서 134도까지의 그림인데, 제목은 "十六大國主衆"[42]이다. 16명의 국왕이 대리국에 이르러 조공하는 정경을 그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여기서도 16명이다. 형상으로부터 분석해보면, 분명 남아시아와 동남시아에 속하는 무리들이 있다.[43] 열여섯 대국의 국왕(혹은 그의 사자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대리국 군주의 모습을 담은 위 그림이, 사실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대리국 사람들의 이상적

---

39) 開府儀同三司의 오류일 것이라 추정된다.

40) 方國瑜 主編, 『雲南史料叢刊』(第2卷), p.661; 立石謙次(2010), p.70.

41) 方國瑜 主編, 『雲南史料叢刊』(第2卷), p.661; 立石謙次(2010), p.80.

42) 李霖燦(1967), 『南詔大理國新資料的綜合研究』(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專刊之九), 臺北: 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 圖版37.

43) 谷躍娟(2007), p.93.

꿈을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856년 서남이 16국의 대군장을 불러 모았다고 한『기고전설원집』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위 그림과 그 모습이 비슷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9세기 중반 남조국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건설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미 당제국과의 책봉조공관계로부터 벗어난 남조는 동아시아세계와 동남아시아세계에 걸쳐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림 1>『장승온화권』<十六大國主衆>

‘大封民國’의 자칭과 ‘武宣皇帝摩訶羅嵯’ 그리고 ‘驃信’의 칭호는 남조후반기 ‘남조의 서진’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러한 역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불교의 전래와 신앙과 더불어, 이러한 모습이 후대 ‘백국’ 혹은 ‘백자국’의 역사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阿育王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상상력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 5. 결론

이상『남조도전』,『기고전설집』,『백국인유』 등 작성 시기가 다른 세 개의 문헌에 등장하는 ‘백자국’ 관련 기술들을 통해, 남조국 시기 ‘백자국’의 역사적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남조국 시기 ‘백자국’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로부터 진전된 바는 없었다. 다만 남조국 말기에 작성된『남조도전』의 시각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남조국의 성립 직전 장락진구에 의해 통령되는 '白'이나 '拜'의 발음으로 타칭 혹은 자칭되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세노라와 나성의 몽씨 또한 하부 집단으로서 그 세력에 속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남조 말기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범승과 아차야 관음을 통해 '서쪽'으로의 연결은 시도하였지만, 후대의 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계보를 漢代의 張仁果로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직은 인도의 아육왕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封民' 혹은 '封'을 장락진구의 '白'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개연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이 등장하는 맥락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관음상 구득을 계기로 한『남조도전』의 편찬과 '摩訶羅嵯'의 칭호로 대변되는 불교에 대한 신앙에 더하여, 남조시기 서쪽 방면과 남쪽 방면으로의 군사적 경제적 진출은, 후대의 사서들이 백국의 기원을 아육왕에서 구하게 되는 상상력의 기초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8세기 후반기 이후 남조는 '尋傳' 지역 경영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촉으로부터 인도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장악하였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표신'의 칭호가 대변하는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대륙부 국제질서의 패자에 등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것이 '칭제'와 당제국과의 갈등, 그리고 '대봉민국'의 선포 등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 穆宗-武宗 시기(820-846) 唐朝의 二元的 藩鎭 制御

## — 河北三鎭과 그 인근 藩鎭을 중심으로 —

趙 鍾 成(서울대)

목 차

머리말
Ⅰ. 穆宗-文宗 시기(820-840) 藩鎭의 동향과 朝廷의 대처
Ⅱ. 武宗 시기(840-846) 藩鎭 제어 질서의 완비
맺음말

## 머리말

安史의 난 이후 河北三鎭 등 각지의 藩鎭이 해당 지역의 民政-財政-軍政을 통괄하면서 할거 국면을 형성하였다. 조정에 대항하는 藩鎭에서는 藩鎭 내의 관리를 임의로 임명하며 중앙 조정에 戶籍을 올리지 않고 稅賦를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藩鎭의 수장인 節度使를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1], 唐 조정은 지방을 통제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상황의 타개를 위해 憲宗(805-820) 시기 唐 조정은 藩鎭 전체에 대한 공세를 취하였다. 그 결과 조정은 일시적으로 河北三鎭을 비롯하여 각지의 藩鎭을 제압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元和中興'의 국면이다. 그러나 여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河北 지역의 藩鎭에 취한 조정의 조처는 몹시 제한적이었다.[2] 이는 결국 憲宗 사후 穆宗(820-824)의 즉위와 시기를 같이하여 일어난 河北三鎭의 재할거, 즉 河北三鎭이 조정에서 임명한 節度使를 축출하고 다시 할거 국면을 형성하면서 과거와 비슷한 상황으로 회귀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唐 後期 唐朝가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확보하는 데 河北三鎭의 세력은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穆宗 시기 河北三鎭이 조정이 파견한 節度使를 살해·추방하면서

---

1) 『舊唐書』 卷141 「田承嗣傳」, p.3838.
2) Denis C. Twitchett, 「唐末の藩鎭と中央財政」, 『史學雜誌』 74-8, 1965.

반기를 든 사건, 그리고 그 이후 唐 조정의 대처 양상에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본고의 목적은 穆宗 이후 시기 唐 조정의 河北三鎭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인근 藩鎭을 제어하려는 시도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탐구하는 데 있다.

唐 조정은 藩鎭을 통제하기 위하여 藩鎭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상이한 대응 노선을 취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는 德宗-憲宗 시기를 다룬 大澤正昭의 논문이 있다.[3] 大澤의 요지는 德宗-憲宗 시기 唐 조정이 河北三鎭을 위시한 分立 지향형 藩鎭, 즉 唐朝를 비롯한 타자가 자신의 지배영역에 간섭하지 않는 이상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藩鎭에 대한 토벌보다는 唐朝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권력 지향형 藩鎭를 제압하는 데 우선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憲宗 시기의 藩鎭 정책이 권력 지향형 藩鎭 제거에 성공하였고, 이후 河北三鎭까지 조정에 귀부해오면서 이른바 '元和中興'이 완성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穆宗 이후 河北三鎭이 재차 할거하게 된 상황은 唐朝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藩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憲宗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존 藩鎭 연구는 穆宗 시기까지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어, 穆宗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穆宗에서 武宗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唐朝가 河北三鎭과 인근 藩鎭에 대처한 실상을 살펴보는 과정은, 憲宗 이후 唐 後期 藩鎭에 대한 조정의 태도의 변화상을 파악하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 Ⅰ. 穆宗-文宗 시기(820-840) 藩鎭의 동향과 朝廷의 대처

### 1. 穆宗 초 河北三鎭의 할거 문제

穆宗의 즉위 당시 唐朝는 憲宗의 적극적 藩鎭 제어정책에 힘입어 전 藩鎭을 제압하고 있었으나, 계속된 藩鎭 토벌로 인해 재정이 바닥나 있었다.[4] 게다가, 갓 제압한 河北三鎭의 경우에는 당장은 租稅를 면제했기 때문에[5] 한동안은 그 지역에서 추가적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정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軍費를 축소하려 하였다. 銷兵政策이라 불리는 藩鎭 병력의 삭감 정책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銷兵政策의 골자는 藩鎭의 병사가 도망 혹은 사망함으로 인해 병력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10분의 1 한도 내에서는 보충하지 않는 것이었다.[6] 이러한 정책은

---

3) 大澤正昭, 「唐末の藩鎭と中央權力 -德宗・憲宗朝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32-2, 1973.

4) 『資治通鑑』(司馬光 撰, 胡三省 音注, 『資治通鑑』(全10冊), 北京: 中華書局, 2005) 卷242 「唐紀」 58 穆宗長慶元年, p.7804.

5) 『舊唐書』 卷15 「憲宗本紀」下, p.444; 『唐大詔令集』 卷117 「宣慰幽州詔」, p.561.

6) 『新唐書』 卷101 「蕭俛傳」, p.3958.

藩鎭의 병력 규모를 자연스럽게 축소하여 조정의 軍費 부담을 줄이고 納稅戶를 늘려 稅收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7]

그러나 당시 藩鎭의 병력의 핵심이었던 官健은 각지에서 고용된 傭兵 성격의 병사로, 이들은 병사의 직임을 세습하고 있었다. 장기간 병사 직임을 세습하면서 官健은 점차 農業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봉급이 주요한 생계 수단이 되었다.[8] 정원의 축소로 인해 官健이 되지 못한 이들에게 銷兵政策은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조치로 작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穆宗 초기 추진된 銷兵政策으로 인해 다수의 將兵이 群盜로 轉化하게 된 것은 오히려 필연에 가까웠다.[9]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穆宗이 즉위한 長慶 元年(821) 幽州 藩鎭에서는 將兵이 節度使 張弘靖을 감금한 사건이 발생하였고[10], 成德 藩鎭에서는 王庭湊가 節度使 田弘正를 살해한 뒤 스스로 留後를 칭하였다.[11] 위의 두 節度使는 河北三鎭이 조정에 귀부해온 후 조정에서 각 藩鎭에 임명한 節度使로, 이러한 節度使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조정에 대한 반발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조정은 이 두 藩鎭을 공격하여 상황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魏博節度使 田布가 휘하 장병과의 마찰을 거치면서 자결하고 史憲誠이 스스로 留後가 되는 등[12] 河北三鎭의 통제는 점차 더 어려워졌다.

조정에서 파견한 節度使를 축출한 이후 河北三鎭에서는 銷兵政策으로 인해 흩어졌던 옛 將兵들을 소집하여 세를 불렸고, 그 군사력은 순식간에 唐 조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에 반해 唐 조정은 빈약한 재정 상황, 銷兵政策으로 인한 군사력의 부족[13] 등의 문제로 인해 약체화된 상태로, 조정은 병력을 모아 河北三鎭을 공략하려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14]

조정의 河北三鎭 재토벌 시도가 실패로 끝남으로써, 河北三鎭은 재차 할거 국면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唐朝는 당장은 조정의 지배하에 있지만 河北三鎭과 마찬가지로 조정으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하는 藩鎭에 대한 대처 문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조정의 안전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河北三鎭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魏博 藩鎭의 경우 洛陽과는 黃河만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며, 安史의 난에서 보듯 洛陽이

---

7)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武昌: 武漢大學出版社, 1992, pp.435-436.

8) 『新唐書』 卷101 「蕭俛專」, p.3959.

9) 陳明光, 「唐朝中央對地方政府的財政監督述論」,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22-2, 2009, pp.63-66.

10) 『資治通鑑』 卷241 「唐紀」57 穆宗長慶元年, p.7793.

11)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元年, pp.7796-7797.

12)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7807.

13)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7808.

14) 해당 시기 河北三鎭의 반란을 전론한 논문으로는 鄭炳俊, 「唐 穆宗代 河北三鎭의 叛亂과 山東 藩鎭」, 『中國史硏究』 33, 2004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보다 자세한 상황의 전개 및 이에 대한 山東 藩鎭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함락될 경우 長安의 안위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河北三鎭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군사적 안전장치는 필수적이었다.

## 2. 二元的 藩鎭 통치와 그 성과

唐 조정은 河北三鎭 외의 藩鎭이 河北三鎭과 같이 할거하려는 시도를 봉쇄하기 위하여 節度使를 藩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이것은 조정이 藩鎭 내부에서 보고하는 인사에게 河北三鎭의 節度使 직위를 추인하였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었으며, 德宗-憲宗의 藩鎭 제어책과도 차별화된 것이었다. 즉, 과거와 달리 唐朝는 조정의 권위를 인정한 채 그 간섭을 배제하는 藩鎭을 河北三鎭 만으로 제한하는 二元的 藩鎭 통치를 기도하였다.

藩鎭 할거에 있어 節度使의 자임 및 내부의 임의 계승은 중요한 표지가 된다. 그런 점에서 河北三鎭의 할거 이래, 藩鎭 내에서 節度使를 추대하고 조정에 그 인정을 구한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河南의 宣武 藩鎭[15], 義武 藩鎭에서의[16] 자체적 節度使 계승 시도 및 추인 요구에 대해 唐 조정에서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이에 반발할 경우 무력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 예이다.

특히 河北에 위치한 橫海 藩鎭에서의 節度使 추인 요구에 대한 조정의 대처는 주목할 만하다. 長慶 元年(821) 幽州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橫海節度使 杜叔良이 이를 토벌하려 하였던 것에서도 나타나듯[17], 橫海는 河北三鎭을 제어하는 데 핵심적인 藩鎭이었다.[18] 그런 점에서 寶曆 2년(826) 橫海節度使 李全略의 사망 후, 그의 아들 李同捷이 스스로 留後 직위에 오른 것은 조정의 二元的 藩鎭 통제 시도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듬해인 太和 元年(827) 조정에서 吳重胤을 橫海節度使로 삼고 李同捷을 兗海節度使로 삼아 節度使 직위의 계승을 불허하였음에도 李同捷은 이동하지 않고 반란의 움직임을 보이자, 조정에서는 그 토벌을 단행하였다.[19]

河北三鎭이 李同捷의 반란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토벌이 용이하지는 않았지만, 太和 3년(829) 李同捷을 참수하면서 橫海 藩鎭 토벌은 완료되었다.[20] 조정에서 節度使 세습을 기도한 李同捷에 단호히 대처한 것은 그 직후 魏博節度使 史憲誠에 同平章事를 제수하는 모습이나[21] 成德 藩鎭이 橫海 藩鎭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그를 처

15) 『資治通鑑』 卷242 「唐紀」58 穆宗長慶二年, pp.7818-7821.
16) 『資治通鑑』 卷246 「唐紀」62 文宗開成三年, p.7935.
17) 『舊唐書』 卷124 「薛平傳」, p.3526.
18) 金宗燮, 「唐代 中央과 沿岸 藩鎭의 關係 -對外業務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50, 2007, pp.97-99.
19) 『資治通鑑』 卷243 「唐紀」59 文宗太和元年, pp.7850-7855.
20)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文宗太和三年, pp.7855-7864.

벌하지 않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는 唐朝가 河北三鎭과 나머지 藩鎭에 대해 대응방식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憲宗이 平盧節度使 李師道를 토벌한 이래 조정에서는 河北三鎭을 제외한 河南과 河北 지역의 藩鎭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조정은 河北三鎭에서 洛陽으로 넘어오기 위한 요충지인 河陽三城 藩鎭과 서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통로가 되는 河東 藩鎭 등을 포함하여 河北三鎭과의 사이에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河北三鎭은 자기 주위의 藩鎭을 조정에서 제어할 경우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축소되기 때문에[22] 인근 藩鎭의 節度使 세습에 직·간접적으로 원조하였다. 그러나 河北三鎭의 기대와는 달리 조정은 河北三鎭을 제외한 河北, 河南에 위치한 여타 藩鎭의 節度使 임명권을 거의 확보하였으며, 節度使 세습에 성공한 사례는 昭義節度使 劉從諫이 아버지 劉悟를 계승한 것이 유일하다.

조정은 이와 같이 藩鎭을 河北三鎭과 그 외의 藩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二元的으로 통치함으로써 지방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조정은 河北三鎭과 같은 성격의 藩鎭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조정의 안보를 확보함으로써 河北三鎭이 다시 할거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차단한 것이다.

다만 穆宗 이후 시기에도 河北三鎭의 인근 藩鎭 가운데 昭義節度使 劉悟와 劉從諫 父子가 節度使 직위를 임의로 계승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節度使 직위 계승이 가능했던 요인과, 그 이후 조정의 대처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 Ⅱ. 武宗 시기(840-846) 藩鎭 제어 질서의 완비

### 1. 昭義 藩鎭의 節度使 세습 문제

昭義 藩鎭은 지리적으로 河北三鎭의 서남부에 접경해 있으며, 그 藩鎭 설치 본연의 목적은 河北三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23] 특히 昭義 藩鎭은 橫海 藩鎭과 함께 河北에 위치한 藩鎭이기 때문에 河北三鎭을 포위한다는 면에서의 높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으며[24], 조정의 二元的 藩鎭 제어에 있어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昭義 藩鎭의 節度使 직을 劉悟와 그 아들 劉從諫이 2대에 걸쳐 계승하

---

21)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文宗太和三年, p.7865.

22) 鄭炳俊, 「唐 穆宗代 河北三鎭의 叛亂과 山東 藩鎭」, 『中國史硏究』 33, 2004, p.95.

23) 森部豊, 「藩鎭昭義軍の成立過程について」, 『中國史における敎と國家 -筑波大學創立二十周年記念東洋史論集-』, 東京: 雄山閣, 1994, pp.207-217.

24) 『李相國論事集』(李絳 撰, 『李相國論事集 : 附李相國遺文』, 北京: 中華書局, 1985) 卷3 「澤潞事宜」, p.21.

고 있었던 것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劉悟와 劉從諫 사이의 節度使 계승은 穆宗 이후 河北三鎭 외에 節度使 직위를 전임 節度使의 친족이 세습한 드문 사례로, 이는 해당 시기 조정의 藩鎭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본래 李師道 밑에 장수로 있었던 劉悟는 조정에 저항하던 平盧節度使 李師道가 자신을 제거하려 하자 李師道를 살해하고 元和 14년(819) 唐朝에 항복하였다.[25] 이후 劉悟는 昭義節度使에 취임하게 되었으며[26], 寶曆 元年(825) 劉悟가 사망하자 그 아들인 劉從諫은 昭義節度使 직의 내부 계승을 조정에 요청하여 인가를 받았다.[27] 비슷한 시기 조정에서 橫海 藩鎭에서의 節度使 세습을 승인하지 않고 결국 공격을 통해 이를 제압한 것을 생각하면, 劉從諫의 세습을 허락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劉從諫의 昭義節度使 계승 허락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것일까. 劉悟가 지니는 특수한 위상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劉悟는 平盧節度使 李師道를 죽이고 항복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한 藩鎭의 節度使를 제압한 사건이 아니라 憲宗 시기 '元和中興'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과였기 때문에 唐朝는 이런 劉悟의 공을 높이 평가하였다.[28] 劉悟가 昭義節度使가 된 후 監軍使 劉承偕와 마찰을 빚을 때 劉悟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정의 高官인 裴度에게 적극적인 비호를 받았던 것은[29] 唐 조정 내에서 劉悟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사례이다. 또한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劉從諫 이후 節度使 직위를 세습하려는 과정에서 발발한 劉稹의 난 와중에서도 조정에서는 劉悟의 후사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타날 정도로[30] 劉悟의 위상은 독특했다.

唐朝가 전반적인 정책 노선과 달리 寶曆 2년(826) 劉從諫에게 昭義節度使 직을 제수하게 된 것은[31] 이러한 劉悟의 위상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昭義節度使 세습을 허용한 결정은 河北三鎭을 둘러싼 방어선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여차하면 昭義 藩鎭까지 할거하면서 河北三鎭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일한 선택이었다.

昭義節度使가 된 劉從諫은 節度使 임직 초기 조정에 忠義를 지니고 있음을 자임하였다고는 하나, 적어도 太和 7년(833)이 되면 이미 조정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 듯하다.[32]

---

25) 鄭炳俊, 「李師道 藩鎭의 滅亡과 郭釿」, 『中國學報』 52, 2005, pp.258-260.
26) 『資治通鑑』 卷241 「唐紀」57 憲宗元和十五年, p.7785.
27) 『新唐書』 卷214 「劉悟傳」, p.6014.
28) 『資治通鑑』 卷243 「唐紀」59 敬宗寶曆元年, p.7844.
29) 『舊唐書』 卷170 「裴度傳」, pp.4424-4425.
30)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9.
31) 『舊唐書』 卷17上 「敬宗本紀」, p.519.
32)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文宗太和七年, pp.7882-7883.

이후 劉從諫이 망명한 사람을 불러서 받아들이고 병기를 수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기 때문에 昭義 藩鎭는 唐朝와의 사이가 점차 벌어졌을 뿐 아니라, 인근 藩鎭들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33] 이는 河北三鎭 주변 藩鎭들을 엮어 河北三鎭에 대한 방어선으로 삼는 조정의 구상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조정 및 주변 藩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昭義節度使 劉從諫은 죽음을 앞두고 河北三鎭의 예를 좇아 節度使 직위를 조카인 劉稹에게 세습시키려 하였다.[34] 이것은 조정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이러한 昭義 藩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당시 위구르 제국이 붕괴함으로 인해 會昌 3년(843)까지 唐은 해당 지역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지만[35], 唐朝는 昭義 藩鎭의 節度使 세습을 강경하게 거부하였다.[36]

武宗은 昭義 藩鎭을 제압하기 위해 河北三鎭의 병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정은 昭義 藩鎭과는 달리 河北三鎭의 節度使 세습과 할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대신 昭義 藩鎭 공격에 참여할 것을 명하였다.[37] 河北三鎭은 이러한 조정의 명령에 따라 劉稹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였고, 그 이후에 武宗은 劉從諫을 위해 輟朝하며 劉稹에게 洛陽으로 오라고 하여[38] 昭義節度使의 계승을 불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출하였다. 劉稹이 洛陽으로의 소환을 거부하자 武宗은 먼저 그의 관직과 작위를 삭탈하였다. 이어서 唐 조정에서는 昭義 藩鎭을 둘러싸고 있는 藩鎭의 節度使들로 하여금 藩鎭의 병력을 이끌고 劉稹을 토벌하게 하였다.[39]

흥미로운 것은 唐 조정과의 전쟁 과정에서 劉稹이 보여주는 태도이다. 朱泚, 李希烈, 李師道 등 과거 반란을 일으켰던 節度使들의 예와 달리, 劉稹은 시종일관 節度使 직위를 조정을 통해 공인받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劉稹의 태도는 薛茂卿에 대한 처우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토벌군 내에 분열이 생겼을 즈음 劉稹 진영에서는 상대방의 내분을 틈타 薛茂卿을 보내 河陽의 科斗寨를 깨뜨리고 대장 馬繼를 사로잡는 성과를 거두었다.[40] 그러나 劉稹은 이에 대해 상을 내리지 않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33)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p.7978-7979.
34)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79.
35) 村井恭子, 「九世紀ウイグル可汗國崩壞時期における唐の北邊政策」, 『東洋學報』 90-1, 2008, pp.33-59.
36)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pp.7980-7981.
37)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1.
38)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p.7981-7982.
39)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4. 昭義 藩鎭 토벌에 동원된 節度使는 成德節度使 王元逵, 魏博節度使 何弘敬, 河中節度使 陳夷行, 河東節度使 劉沔, 河陽節度使 王茂元으로, 이는 昭義 藩鎭을 둘러싼 藩鎭의 節度使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같다.

> 薛茂卿은 科斗寨에서의 공로를 가지고 내심 (등급을) 뛰어넘어 승진시켜주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이 劉稹에게 말하였다. "留後(劉稹)께서 구하는 바는 (節度使의) 符節일 따름입니다. 薛茂卿은 너무 깊이 들어가 官軍을 많이 죽임으로 조정을 격노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符節이 늦게 오는 이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상을 내리지 않았다.[41]

이는 劉稹의 최종적 목표가 唐朝가 그의 昭義節度使 직을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환언하면, 劉稹은 昭義 藩鎭이 조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거상태를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라는 인식을 唐 조정에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劉稹이 지속적으로 버티면서도 최대한 공격을 자제한 것은 조정이 각종 부담에 못이겨 節度使 세습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노선은 이미 河北三鎭 이외의 藩鎭에서는 節度使를 세습하여 할거하는 것을 불허하는 二元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때문에 唐朝는 공격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劉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쟁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토벌군 병력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昭義 藩鎭을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점차 唐朝의 포위가 강화되자 會昌 4년(844) 昭義 藩鎭에서 내분이 일어나, 결국 郭誼가 劉稹을 비롯하여 그의 가솔 및 劉從諫과 劉稹 부자에게 중용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살해한 뒤 항복하면서 劉稹의 난은 진압되었다.[42]

劉稹의 난 진압은 河北三鎭 이외의 藩鎭에서 節度使를 세습하려 하였던 시도의 최종적인 좌절로, 조정이 河北三鎭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節度使를 세습하면서 지방 세력화하는 藩鎭의 출현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武宗 시기 劉稹의 난 진압은 唐 조정이 穆宗 이후 藩鎭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해온 조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河北三鎭을 제외한 여타 藩鎭을 모두 평정한 이후에도 조정은 河北三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會昌 4년(844) 昭義 藩鎭 평정 이후 宰相 李德裕가 조정의 병력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대항하지 않았던 전 幽州節度使 李載義가 藩鎭에서 축출된 후 조정에서 그를 우대하였음을 말하는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李載義가 幽州(節度使)로 있을 때(826-831)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滄景(橫海 藩鎭)을 평정하였으니, 軍中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節度使 직위를 잃지 않았고 그 후에는 太

40)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89.
41)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武宗會昌三年, p.7993.
42) 『資治通鑑』 卷248 「唐紀」64 武宗會昌四年, pp.8007-8008.

原에서 鎭守하다가 지위가 宰相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楊志誠은(831-834) 大將을 보내어 敕使의 말을 막고 관직을 구하였더니, 軍中에서 쫓겨났을 때 조정은 끝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는 두 사람의 화복은 사례로써 보여주기에 충분하다."[43]

즉 조정은 河北三鎭 외의 藩鎭이 節度使를 세습하면서 할거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河北三鎭에 대한 조치는 그보다 상당히 유화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武宗 시기 劉稹의 난 진압과 사후처리 과정은 穆宗 이후로 지속되어온 唐朝의 二元的 藩鎭 제어책의 면모와 그 정비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昭義 藩鎭 토벌 과정에서 소요된 軍費 문제는 조정을 압박하였다. 조정의 재정 상황은 위구르 문제와 劉稹의 난을 연이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 문제에 대한 조정의 대처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른바 '會昌廢佛'의 조치이다.

## 2. 會昌廢佛의 경과와 河北三鎭

위구르 사태 해결과[44] 劉稹의 난 진압으로 인해 조정이 지출한 軍費는 막대하였다. 1년 3개월이 걸린 劉稹의 난 진압 과정에서 활용된 병력은 총 6-7개 藩鎭에서 차출된 것이었다. 병사의 급료 가운데 軍糧을 살펴볼 때[45], 12,500명 규모의 軍이 1년에 필요로 하는 糧은 9萬石에 달하였으므로[46] 병력의 양을 총 15만으로만 잡을 때 필요한 軍糧은 140萬石에 육박한다. 거기에 藩鎭의 병력이 각 藩鎭의 경계를 넘어서 出兵하게 될 경우 藩鎭 내에서 지급받던 것의 3배에 해당하는 出界糧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47], 총 필요한 軍糧은 400萬石을 넘게 된다.

開成 2년(837) 당시의 租賦 가운데 조정으로 上供되는 곡물의 액수는 대략 200萬石으로 추정된다.[48]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두 전쟁을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은 실로 막대한 것으로, 劉稹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唐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43) 『資治通鑑』 卷p248 「唐紀」64 武宗會昌四年, p.8010.

44) 村井恭子, 「九世紀ウイグル可汗國崩壞時期における唐の北邊政策」, 『東洋學報』 90-1, 2008, pp.42-54.

45) 唐 後期 官健의 급료는 衣賜와 糧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淸木場東, 『帝賜の構造(唐代財政史硏究 支出編)』, 福岡: 中國書店, 1997, pp.495-496) 본문에서는 稅額와 더불어 논의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糧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6) 『神機制敵太白陰經』(李筌 撰, 『神機制敵太白陰經』(叢書集成初編 943-944), 北京: 中華書局, 1985) 卷5 「人糧馬料篇」, p.120.

47) 『新唐書』 卷52 「食貨志」2, p.1353.

48) 李錦繡, 『唐代財政史稿』 3(全5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pp.48-49.

그런 점에서 劉稹의 난 진압과 더불어 會昌廢佛이 시기를 같이한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劉稹의 난 토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오래지 않은 會昌 3년(843) 10월, 조정은 僧尼의 사유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단행하였다.[49] 이어서 劉稹이 죽고 劉稹의 난 토벌이 정리과정으로 접어들던 會昌 4년(844년) 7월, 조정에서는 200칸에 미치지 못하거나 賜額을 받지 못한 山房, 蘭若, 普通佛堂, 義井, 村邑의 齋堂 등을 헐고 그 僧尼는 모두 환속시켜 여러 雜役에 충당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50], 조정은 대대적이고 강력한 廢佛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會昌 5년(845) 4월 조정은 우선 승려 및 寺院의 수를 파악하였고, 곧이어 5월의 制에서는 寺院을 파괴하고 승려를 還俗시켜 兩稅戶로 충당시키는 한편, 寺院이 소유한 수천만 頃의 비옥한 田土를 압수하고 15만에 달하는 奴婢를 兩稅戶로 돌리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행하였다.[51] 廢佛 과정은 劉稹의 난의 진행과 시간상으로 상호 교차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양자가 연결된 사건이었을 개연성은 적지 않다.

주목할 것은 廢佛 과정에서 여타 지역에서의 佛敎 탄압 정도와 비교할 때 河北三鎭에 해당하는 成德 藩鎭과 魏博 藩鎭의 경우는 廢佛의 여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52] 바꾸어 말하면, 唐朝의 二元的 藩鎭 통제체제는 會昌廢佛 진행 과정 중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圓仁이 기록한 河北三鎭 내의 廢佛과 관련된 소식은 당시의 정황을 추측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된다.

> 다만 黃河 이북의 鎭(成德 藩鎭)·幽(幽州 藩鎭)·魏(魏博 藩鎭)·潞(昭義 藩鎭) 등의 네 節度使는 원래 佛敎를 숭상하고 중히 여겨 절간을 허물지 않았으며 승니도 규제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불교에 관한 일은 일체 흔들림이 없었다. 번번이 勅使를 보내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그들은 말하기를 "天子께서 스스로 와서 寺院을 허물고 경전과 불상을 불살라버린다고 하면 곧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臣 등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53]

해당 기록은 河北三鎭의 영역에서 廢佛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방증 자

---

49) 『入唐求法巡禮行記』(圓仁 撰, 小野勝年 編,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東京 : 鈴木學術財團, 1964) 卷3, p.459.

50)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p.71.

51) 『舊唐書』 卷18上 「武宗本紀」, p.606.

52) 西尾賢隆, 「圓仁の見聞した會昌廢佛」, 『中國近世における國家と禪宗』, 京都: 思文閣出版, 2006, pp.69-74.

53)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p.245. 이미 昭義 藩鎭의 경우 조정에서 제압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이 기록은 소문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圓仁이 河北과 인접한 山東 지역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승려였음을 감안할 때, 廢佛과 관련된 위 기록은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료로서 의미가 있다. 조정의 河北三鎭에 대한 통제력이 극도로 축소되었음은 昭義 藩鎭 토벌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었으며, 이와 같은 藩鎭에 대한 二元的 대응 방식은 廢佛의 시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 五臺山의 승려들이 幽州 藩鎭으로 도주한 기사를 통해 幽州 藩鎭 내에서 廢佛 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54], 成德 藩鎭이 이후 禪宗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역시[55] 조정의 二元的 藩鎭 통제와는 나누어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會昌廢佛은 단순히 종교 문제의 영역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직전 시기에 크게 소모된 軍費로 인해 위기에 빠진 재정을 보강하려는 조정의 노력, 그리고 조정과 河北三鎭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의 특이성 전반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다. 즉, 河北三鎭 및 여타 藩鎭에 대한 조정의 二元的 통제 방식은 穆宗에서 武宗에 이르는 시기 唐 조정의 행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맺음말

穆宗 초기, 조정이 藩鎭 병력을 삭감하기 위해 취한 銷兵政策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河北三鎭이 다시금 할거 형세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河北三鎭은 조정에서 임명한 節度使를 차례로 축출하고 조정과 대치하였는데, 조정은 병력과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河北三鎭을 토벌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조정은 河北三鎭과 유사한 행보를 취하려는 藩鎭의 등장, 그리고 河北과 인접한 洛陽에의 위협 등 일련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정은 河北三鎭의 할거는 인정하되, 그 외의 藩鎭이 河北三鎭과 유사한 행보를 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二元的 노선을 취하였다. 조정은 특히 節度使를 계승하려 시도하는 河南 및 河北의 藩鎭들을 저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節度使 직위의 세습은 해당 藩鎭 내의 제어권 일체가 조정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穆宗에서 文宗에 이르는 시기 조정은 이러한 시도를 철저히 억눌렀고, 이를 통하여 조정은 節度使의 임명권을 확보함으로써 河北三鎭과 인접한 藩鎭을 장악하여 河北三鎭과의 사이에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는 곧 河北三鎭을 제외한 河南과 河北의 藩鎭이 조정에 순복하는 二元的 구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藩鎭 제어 질서를 완비시키기 위해서는 昭義節度使의 세습 문제를 해결할

54) 『資治通鑑』 卷248 「唐紀」64 武宗會昌五年, pp.8018-8019.

55) 柳田聖山, 「唐末五代の河北地方に於ける禪宗興起の歷史的社會的事情について」, 『日本佛教學會年報』 25, 1959, pp.171-86.

필요가 있었다. 憲宗 시기 平盧節度使 李師道를 죽이고 항복한 劉悟는 조정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어 昭義節度使가 되었으며, 劉悟의 사후 敬宗이 그 아들 劉從諫의 昭義節度使를 계승한 것도 劉悟가 지닌 위상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昭義節度使가 된 후 劉從諫은 조정의 통제에서 이탈하려는 등, 조정이 구상하는 二元的 통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

武宗 시기 劉從諫이 죽으면서 그 조카인 劉稹에게 節度使 직위를 계승시키려하는 행위는 때문에 조정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조정은 河北三鎭이 할거하는 상황을 묵인하여 조정의 군사적 요청에 응하는 것에 그 역할을 한정짓는 대신 昭義 藩鎭 제압에 河北三鎭의 병력을 활용하였고, 河北三鎭이 토벌군에 합류하면서 昭義 藩鎭은 고립되었다.

고립된 상태에서도 昭義 藩鎭의 劉稹이 節度使 직위를 조정을 통해 추인받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하지만 조정은 더 이상 河北三鎭을 제외한 여타 藩鎭의 할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와 달리 조정에서 藩鎭에 대한 二元的 통제 구도를 관철시키려 하였기 때문으로, 재상 李德裕는 오히려 토벌군을 채근하여 기어이 昭義 藩鎭을 토벌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의 행보는 河北三鎭과 나머지 藩鎭을 크게 구분하는 二元的 태도를 보여주며, 武宗 시기 이와 같은 藩鎭 제어 질서가 완성된 것은 그를 이은 宣宗(846-859)이 '작은 太宗'의 治世[56]를 펼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劉稹의 난 진압에 소요된 軍費 부담을 위해 唐朝가 져야했던 부담은 결코 적지 않았다. 武宗 시기 佛敎의 대탄압을 일컫는 이른바 '會昌廢佛'은 그런 점에서 극단적이지만 절실한 조치였을 개연성이 있다. 劉稹의 난으로 인한 재정적 필요가 생기는 시점과 廢佛의 시행은 시간적으로 교차하여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때문에 廢佛 조치가 劉稹의 난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목할 것은 廢佛의 과정에서도 河北三鎭에서는 해당 조치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廢佛로 인해 외부의 승려가 河北三鎭으로 유입되는 정황에도 조정에서 해당 藩鎭을 압박할 수 없었던 것은 唐 조정이 河北三鎭의 자율성을 여타 藩鎭과는 달리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조정의 태도는 穆宗에서 武宗에 이르는 시기 지속적으로 추진된 藩鎭 對策의 二元的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穆宗 초 河北三鎭이 조정에서 파견한 節度使를 축출하고 할거하면서 새로이 정비될 필요가 있었던 조정의 藩鎭 제어 질서는 武宗 시기에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河北三鎭과 여타 藩鎭을 구분하는 二元的 구도를 구상・정비하게 되었고, 때문에 조정과 河北三鎭 사이에는 독특한 관계가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양자의 특수한 관계는 해당 시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56) 『資治通鑑』 卷249 「唐紀」65 宣宗大中十三年, p.8076.

# 『魏書』의 北齊 정통성 粉飾과 그 논리

## — 文宣帝의 입장에서 본 『魏書』 편찬의 배경 —

최 진 열(카톨릭대)

목 차

머리말
Ⅰ. '정통왕조' 北魏의 歷史觀
Ⅱ. "北魏=東魏"의 歷史觀
Ⅲ. 鄴 定都의 粉飾
Ⅳ. 『魏書』와 北齊의 정통성
맺음말

## 머리말

北齊初 魏收가 편찬한 『魏書』는 반포 당시부터 논란이 많아 穢史로 불렸던 史書였다.[1] 唐代의 劉知幾[2]와 淸代의 趙翼[3]도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여 『魏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魏書』를 긍정적으로 기술하였다.[4] 『魏書』에 대한 찬반양론은 20세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魏書』를 穢史로 평가하는 견해[5]와 반대하는 견해[6]가 나뉜다. 好惡의 가치 판단을 넘어서 『魏書』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米

1) 『北史』 卷56 「魏收傳」, 2032쪽, "於是衆口諠然, 號爲'穢史', 投牒者相次, 收無以抗之." 이하 正史類 史書는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의거한다.

2) 『史通』(劉知幾 原著, 姚松・朱恒夫 譯註, 『史通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7) 卷12 「外篇・古今正史」2, 95쪽.

3) 趙翼, 『廿二史箚記』(王樹民 校證, 『廿二史箚記校證』, 中華書局, 1984) 卷13 「魏書多曲筆」, 263-264쪽.

4) 『四庫全書總目提要』(水瑢・紀昀 主編, 四庫全書總目提要編委會 整理, 海口: 海南出版社, 1999) 卷46 「史部・正史類」2, 262왼쪽-262오른쪽.

5) 岡崎文夫, 「魏收穢史」, 『文化』 1-5, 1934;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4[初版 1985]

6) 尾崎康, 「魏書成立期の政局」, 『史學』 34-3・4, 1962; 瞿林東, 「說《魏書》非"穢史"」, 『江漢論壇』 1985-5, 1985; 周一良, 「魏收之史學」, 『周一良集』 第一卷(魏晉南北朝史論), 瀋陽: 遼陽敎育出版社, 1998.

文平이 1980년 內蒙古自治區 呼倫貝爾盟 鄂倫春自治旗에서 발견한 北魏 太武帝시대의 憂仙洞石刻文이었다.[7] 이 石刻文은『魏書』「禮志」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皇帝와 皇后 대신 유목민 고유의 군주호인 可寒・可敦의 칭호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魏書』를 편찬할 때 魏收가 鮮卑의 언어・習俗・제도를 삭제하거나 중국의 것으로 바꾸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8] 1990년대 중반 공개된「文成帝南巡碑」[9]도『魏書』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胡族(鮮卑)系 官名[10]을『魏書』에서 異民族支配를 연상시키는 기록을 누락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11] 松下憲一은 각종 石刻・文書史料에서 東魏・西魏초까지도 '大代'라는 국호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魏書』에는 국호 '代'의 용례가 없음을 밝혀 魏收가 고의로 배제했다고 보았다.[12] 필자는 이를 北魏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13] 이처럼 20세기 후반기에 발견된 금석문을 분석하면 魏收가『魏書』를 편찬할 때 의도적으로 拓跋鮮卑를 중심으로 한 이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魏書』의 사료비판의 흐름을 보면『魏書』의 편찬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행연구에서는『魏書』의 列傳이 家譜的 요소가 있었음에 착안하여『魏書』의 편찬 목적을 貴族制의 再編成으로 파악하거나[14] 東魏・北齊의 왕조교체(魏齊革命)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기 위해『魏書』에서 孝文帝 시기를 부각시키고 孝文帝의 漢化政策을 강조했다고[15] 이해하기도 한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魏書』편찬의 정

---

7) 米文平,『鮮卑史研究』, 開封: 中州古籍出版社, 1994.

8) 紀游,「一個千古求索的重要史迹-記大興安嶺北段的拓跋鮮卑石室」,『文史知識』 1982-7, 1982; 朴漢濟,『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서울: 一潮閣, 1988.

9) 靳生禾・謝鴻喜,「北魏皇帝《南巡之頌》碑考察報告」,『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2, 1994; 山西省考古研究所・靈丘縣文物局,「山西靈丘北魏文成帝《南巡碑》」,『文物』 1997-12, 1997; 張慶捷,「北魏文成帝《南巡碑》碑文考證」,『考古』 1998-4, 1998.

10) 張慶捷,「北魏文成帝《南巡碑》碑文考證」,『考古』 1998-4, 1998; 張慶捷・郭春梅,「北魏文成帝《南巡碑》所見拓跋職官初探」,『中國史研究』 1999-2(K 22 1999-5); 張金龍,「北魏前期的內侍・內行諸職」,『北大史學』 7, 2000; 川本芳昭,「北魏文成帝南巡碑について」,『九州大學東洋史論集』 28, 2000; 松下憲一,「北魏石刻史料に見える內朝官-「北魏文成帝南巡碑」の分析を中心に-」,『北大史學』 40, 2000; 張金龍,「北魏文成帝《南巡碑》所見禁衛武官制度」,『魏晉南北朝禁衛武官制度研究』, 中華書局, 2004, 713-745쪽; 崔珍烈,「北魏前期 近侍官의 性格-「文成帝南巡碑」의 분석을 중심으로-」,『역사문화연구』 28, 2007.

11) 川本芳昭,「魏晉南北朝時代における民族問題研究についての展望」,『中國の歷史世界-統合のシステムと多元的發展-』, 東京: 東京道立大學出版會, 2002.

12) 松下憲一,『北魏胡族體制論』, 札幌: 北海道大學出版會, 2007(原載「北魏の國號「大代」と「大魏」」,『史學雜誌』 113-6, 2004).

13) 崔珍烈,「雲崗石窟 曇曜五窟 五帝의 재해석-廟號와 國號로 본 北魏의 정체성-」『中央아시아研究』 10, 2005.

14) 尾崎康,「魏書成立期の政局」,『史學』 34-3・4, 1962.

15) 佐川英治,「東魏北齊革命と『魏書』の編纂」,『東洋史研究』 64-1, 2005, 58쪽.

치적 의도에 동의하지만, 北齊 文宣帝가 范陽 盧斐, 頓丘 李庶, 太原 王松年 등 門閥임을 자랑하는 漢人官僚들의 반발을 무릅쓰고『魏書』의 반포를 강행한 의도를 해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魏書』를 孝文帝 중심의 역사로 재편했다는 佐川英治의 견해는 탁견이다. 그러나 여전히 鮮卑의 습속을 지녔던 文宣帝가 孝文帝의 漢化政策에 동의하고, 이것이『魏書』편찬의 주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漢人官僚들의 반발과 '穢史'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北齊 文宣帝가『魏書』의 편찬과 공포를 강행한 배경은 北齊의 정통성 확립과 北齊의 실질적 창업군주인 高歡 부자에 대한 褒貶에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다. 五胡十六國・北朝時代에 최초로 禪讓을 통해 왕조교체를 감행한 北齊로서는 魏晉南朝처럼 선행 왕조인 東魏의 정통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魏書』「太祖紀」의 鄴 遷都 기사와「地形志」의 州郡縣 배열이 東魏의 정통성과 관련있음을 발견하고『魏書』와 北齊의 정통성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魏書』에서 北齊의 정통성을 분식한 장치와 방법을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1장에서는『魏書』에서 계보의 조작, 국호와 行次의 제정, 魏晉南北朝 역사관의 재정립 등의 방법으로 北魏를 정통왕조로 분식시키려는 서술 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2장에서는『魏書』에서 東魏와 北魏를 동일한 왕조로 粉飾시키기 위한 장치와 서술 방식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東魏의 鄴 천도의 정당성을『魏書』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4장에서는『魏書』에서 東魏의 뒤를 이은 北齊의 실질적인 창업군주 高歡과 禪讓의 정당화를 위한 기술 등을 분석하려고 한다.

## Ⅰ. '정통왕조' 北魏의 歷史觀

魏收는『魏書』에서 鮮卑 拓跋部의 정통성 粉飾에 노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魏書』에서는 拓跋部를 비롯한 유목민 집단을 지칭할 때 '鮮卑'와 '胡'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可汗(카간)을 皇帝로 기록하는[16] 등 遊牧君主가 아닌 中華帝王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拓跋氏의 선조를 黃帝의 후예였으나 堯 임금 시기에 북방으로 쫓겨났다고 기록하였다.[17] 이는 拓跋部(北魏) 황실이 漢族과 혈연적 관계가 있다는 中華帝王의 이미

16) 米文平,『鮮卑史研究』, 開封: 中州古籍出版社, 1994; 紀游,「一個千古求索的重要史迹-記大興安嶺北段的拓跋鮮卑石室」,『文史知識』 1982-7, 1982; 朴漢濟,『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서울: 一潮閣, 1988.

17)『魏書』卷1「序紀」, 1쪽, "昔黃帝有子二十五人, 或內列諸華, 或外分荒服, 昌意少子, 受封北土, 國有大鮮卑山, 因以爲號. 其後, 世爲君長, 統幽都之北, 廣漠之野, 畜牧遷徙, 射獵爲業, 淳樸爲俗, 簡易爲化, 不爲文字, 刻木紀契而已, 世事遠近, 人相傳授, 如史官之紀錄焉. 黃帝以土德王, 北俗謂土爲托, 謂后爲跋, 故以爲氏. 其裔始均, 入仕堯世, 逐女魃於弱水之北, 民賴其勤, 帝舜

지를 만들려는 시도였다.[18]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北魏의 정통성 문제였다. 이민족왕조였고 禪讓이 아닌 정복을 통해 華北을 통일한 北魏는 정통성 문제에 부딪혔다. 이는 國號[19] 문제뿐만 아니라 行次의 제정에서 나타났다. 道武帝는 天興元年(398) 崔宏(崔玄伯)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行次를 土德으로 정하고 服色은 황색, 聖數는 5, 달력은 夏正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20] 孝文帝 太和 14년(490)에 土德을 水德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었다.[21] 이때 中書監 高閭은 北魏土德說에 입각하여 土德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李彪는 高閭의 中原占據說에서 물러나 漢이 周를 계승한 고사를 답습하여 西晉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孝文帝는 高閭의 주장 대신 李彪의 의견을 채용하여 北魏가 西晉을 계승한 行次의 논리대로 土德에서 水德으로 바꾸었다.[22] 이러한 논의과정을 보면, 孝文帝 시기의 行次 변

---

嘉之, 命爲田祖. 爰歷三代, 以及秦漢, 獯鬻·獫狁·山戎·匈奴之屬, 累代殘暴, 作害中州, 而始均之裔, 不交南夏, 是以載籍無聞焉."

18) 川本芳昭,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8(原載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5, 1997), 73-74쪽.

19) 北魏의 국호 문제는 松下憲一, 「北魏の國號「大代」と「大魏」」, 『北魏胡族體制論』, 札幌: 北海道大學出版會, 2007(「北魏の國號「大代」と「大魏」」, 『史學雜誌』 113-6, 2004); 崔珍烈, 「雲崗石窟 曇曜五窟 五帝의 재해석-廟號와 國號로 본 北魏의 정체성-」 『中央아시아硏究』 10, 2005.

20) 『魏書』 卷2 「太祖紀」 天興元年十二月己丑條, 34쪽, "十有二月己丑, 帝臨天文殿, 太尉·司徒進璽綬, 百官咸稱萬歲. 大赦, 改年. 追尊成 帝已下及后號謚. 樂用皇始之舞. 詔百司議定行次, 尙書崔玄伯等奏從土德, 服色尙黃, 數用五, 未祖辰臘, 犧牲用白, 五郊立氣, 宣贊時令, 敬授民時, 行夏之正."

21) 『魏書』 卷108之1 「禮志」1, 2744-2745쪽, "十四年八月詔曰: '丘澤初 志, 配尙宜定, 五德相襲, 分敍有常. 然異同之論, 著於 往漢, 未詳之說, 疑在今史. 羣官百辟, 可議其所應, 必令合衷, 以成萬代之式.' 中書監高閭議以爲: '帝王之作, 百代可知, 運代相承, 書傳可驗. 雖祚命有長短, 德政 有優劣, 至於受終嚴祖, 殷薦上帝, 其致一也. 故敢述其前載, 擧其大略. 臣聞居尊據極, 允應明命者, 莫不以中原爲正統, 神州爲帝宅. 苟位當名全, 化迹流洽, 則不專以世數爲與奪, 善惡爲是非. 故堯舜禪揖, 一身異尙; 魏晉相代, 少紀運殊. 桀紂至虐, 不廢承歷之敍; 厲惠至昏, 不闕周晉之錄. 計五德之論, 始自漢劉, 一時之議, 三家致別. 故張蒼以漢爲水德, 賈誼·公孫臣以漢爲土德, 劉向以漢爲火德. 以爲水德者, 正以嘗有水溢之應, 則不推運代相承之數矣. 以土德者, 則以亡秦繼曆, 相卽爲次, 不推逆順之異也. 以爲火德者, 懸證赤帝斬蛇之符, 棄秦之暴, 越惡承善, 不以世次爲正也, 故以承周爲火德. 自茲厥後, 乃以爲常. 魏承漢, 火生土, 故魏爲土德. 晉承魏, 土生金, 故晉爲金德. 趙承晉, 金生水, 故趙爲水德. 燕承趙, 水生木, 故燕爲木德. 秦承燕, 木生火, 故秦爲火德. 秦之未滅, 皇魏未克神州, 秦氏旣亡, 大魏稱制玄朔. 故平文之廟, 始稱『太祖』, 以明受命之證, 如周在岐之陽. 若繼晉, 晉亡已久; 若棄秦, 則中原有寄. 推此而言, 承秦之理, 事爲明驗. 故以魏承秦, 魏爲土德, 又五緯表驗, 黃星曜彩, 考氏定實, 合德軒轅, 承土祖未, 事爲著矣. 又秦趙及燕, 雖非明聖, 各正號赤縣, 統有中土, 郊天祭地, 肆類咸秩, 明刑制禮, 不失舊章. 奄岱踰河, 境被淮漢. 非若齷齪邊方, 僭擬之屬, 遠如孫權·劉備, 近若劉裕·道成, 事繫蠻夷, 非關中夏. 伏惟聖朝, 德配天地, 道被四海, 承乾統曆, 功侔百王. 光格同於唐虞, 享祚流於周漢, 正位中境, 奄有萬方. 今若幷棄三家, 遠承晉氏, 則蔑中原正次之實. 存之無損於此, 而有成於彼; 廢之無益於今, 而有傷於事. 臣愚以爲宜從尙黃, 定爲土德."

22) 川本芳昭,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

경은 中國史에서 北魏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중국을 상징하는 黃色과 土德을 버리고 水德으로 바꾼 것은 이민족 왕조 北魏가 마지막 통일왕조 西晉의 뒤를 계승한 정통왕조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였다.

孝文帝와 李彪·崔光 등이 北魏가 西晉의 뒤를 잇는 正統王朝로 闡明할 당시 漢族이 정통성으로 여겼던 東晉과 南朝 여러 나라의 자리매김이 쟁점이 되었다. 『魏書』에서는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을까? 이는 『魏書』 卷95부터 卷99에 실린 '僭僞 국가'들의 배열과 그 의도를 살펴보자.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魏書』 卷95-99 列傳의 구성

| 卷數 | 列傳名 | 國名 | 위치 | 卷數 | 列傳名 | 國名 | 위치 |
|---|---|---|---|---|---|---|---|
| 卷95 | 匈奴劉聰 | 前趙 | 華北 | 卷97 | 島夷桓玄 | 楚 | 長江 中河流 |
| | 羯胡石勒 | 後趙 | 華北 | | 海夷馮跋 | 北燕 | 華北(遼西) |
| | 鐵弗劉虎 | 夏 | 華北 | | 島夷劉裕 | 宋(劉宋) | 長江 유역 |
| | 徒何慕容廆 | 前燕, 西燕, 後燕, 南燕 | 華北 | 卷98 | 島夷蕭道成 | 齊(南齊) | 長江 유역 |
| | | | | | 島夷蕭衍 | 梁 | 長江 유역 |
| | 臨渭氐苻健 | 前秦 | 華北 | 卷99 | 私署涼州牧張寔 | 前涼 | 河西回廊 |
| | 羌姚萇 | 後秦 | 華北 | | 鮮卑乞伏國仁 | 西秦 | |
| | 略陽氐呂光 | 後涼 | 河西回廊 | | 鮮卑禿發烏孤 | 南涼 | |
| 卷96 | 僭晉司馬叡 | 東晉 | 長江 中河流 | | 私署涼王李暠 | 西涼 | |
| | 竇李雄 | 成漢 | 長江 上流 | | 盧水胡沮渠蒙遜 | 北涼 | |

<표 1>을 보면 卷95는 後涼을 제외하면 대부분 華北 지역에 할거했던 五胡諸國, 卷96은 東晉과 成漢, 卷97은 東晉末 權臣 桓玄이 세운 단명 왕조 楚와 北燕, 劉宋, 卷98은 南朝, 卷99는 河西回廊에 세운 諸涼과 隴右의 西秦을 배열하였다. <표 1>에 보이는 『魏書』의 국가 배열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東晉과 南朝의 폄하이다. 卷96에서는 강남의 정통왕조 東晉과 巴蜀을 지배한 十六國의 하나인 成漢을 同列로 놓았다. 卷97에서는 南朝史에서 정식 왕조로 간주하지 않는 桓玄의 楚와 북방의 北燕을 강남의 정통왕조 劉宋과 同列로 놓았다. 그리고 東晉은 '僭晉司馬叡'로, 나머지 江南의 여러 나라는 '島夷'로 폄하하였다.[23] 이는 魏收뿐만 아니라 高閭도 "僭擬의 무리는 멀리는 孫權·劉備, 가까이는 劉裕·蕭道成은 모두 蠻夷와 관련되어 있으니 中夏라고 할 수 없다."[24]라고 하여 劉宋과 南朝를 蠻夷로 엮어 僭僞로 간

題』, 東京: 汲古書院, 1998(原載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5, 1997), 72-78쪽.

23) 川本芳昭,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8(原載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5, 1997), 81-82쪽.

24) 『魏書』 卷108之1 「禮志」4之1 祭祀上, 2745쪽, "非若齷齪邊方, 僭擬之屬, 遠如孫權·劉備, 近若劉裕·道成, 事繫蠻夷, 非關中夏."

주하였다. 따라서 魏收는 高閭와 동일한 史觀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魏書』列傳의 체례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高閭의 시각이 결코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漢人官僚의 상당수의 지지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川本芳昭는 이러한 史觀이 北魏 太武帝의 華北 統一 무렵부터 漢人官僚에게 널리 수용되었다고 추정하였다.[25]

東晉에 대한 폄하는 體例뿐만 아니라 東晉의 창업군주 司馬睿(元帝)에 대한 서술에서도 잘 들어난다.『魏書』卷96「僭晉司馬叡傳」冒頭에 기록된 司馬睿의 이력을 살펴보자.

> "僭晉 司馬叡는 字가 景文이며, 晉將 牛金의 아들이다. 예전에 晉 宣帝가 大將軍 琅邪武王 伷를 낳았고, 伷는 冗從僕射 琅邪恭王 覲을 낳았다. 覲의 妃 譙國夏侯氏는 字가 銅環인데, 牛金과 姦通하여 叡를 낳았다. 그렇지만 司馬라는 姓을 冒稱하였고 覲의 아들로 행세하였다. 이 때문에 스스로 河內 溫人이라 칭하였다."[26]

위의 인용문에서는 司馬睿는 司馬覲의 아들이 아니라 西晉 將領 牛金과 夏后氏가 사통해서 나은 사생아라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혈연적으로 司馬氏가 아니므로 司馬氏로 "冒姓"하였고, 西晉 宗室의 본적인 河內郡 溫縣 사람이라고 "自言"한 것이다. 東晉의 정통성은 통일왕조 西晉을 세운 司馬氏가 江南으로 피난하여 晉왕조를 계승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司馬睿가 사생아라는 기술은 혈연적으로 東晉이 西晉을 계승한 정통왕조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北魏가 西晉을 계승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北魏에 중요한 문제였다.『晉書』에는 당연히 司馬睿가 사생아임을 시사하는 구절은 없고 司馬覲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하였다.[27] 司馬睿에 대한 악의적인 기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司馬睿는 西晉의 멸망을 예건하고 스스로 대사면을 내리고 丞相이 되었으며, 政刑이 淫虐하고 督

---

25) 川本芳昭,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8(原載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5, 1997), 81-82쪽.

26) 『魏書』 卷96 「僭晉司馬叡傳」, 2091쪽, "僭晉司馬叡, 字景文, 晉將牛金子也. 初晉宣帝生大將軍・琅邪武王伷, 伷生冗從僕射・琅邪恭王覲. 覲妃譙國夏侯氏, 字銅環, 與金姦通, 遂生叡, 因冒姓司馬, 仍爲覲子. 由是自言河內溫人."

27) 『晉書』 卷6 「元帝紀」, 143쪽, "元皇帝諱睿, 字景文, 宣帝曾孫, 琅邪恭王覲之子也. 咸寧二年生於洛陽, 有神光之異, 一室盡明, 所藉藁如始刈." 『魏書』 卷97 「島夷劉裕傳」에서 劉裕의 가정환경을 기록하면서 본래 項氏였다가 劉氏로 바꾸었으며, 彭城彭城人이라는 본적을 자칭했다고 劉裕에게 불리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然亦莫可尋也"이라 하여 이러한 기록에 신빙성이 없음도 밝혔다(『魏書』 卷97 「島夷劉裕傳」, 2129쪽, "島夷劉裕, 字德輿, 晉陵丹徒人也. 其先不知所出, 自云本彭城彭城人, 或云本姓項, 改爲劉氏, 然亦莫可尋也, 故其與叢亭・安上諸劉了無宗次."). 이를 보면 『魏書』의 東晉南朝기록이 악의적이긴 하지만 사실과 풍문을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司馬睿가 사생아라는 『魏書』 「僭晉司馬叡傳」의 기록은 상식적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魏書』의 기술 태도를 보면 반대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運令史 淳于伯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형벌도구를 사용하여 당시 사람들이 원망했다고 기록하였다.[28] 이보다 적나라한 기술은 司馬睿의 건국 기사이다.

> "平文帝初에 叡는 晉王이라 자칭하고 建武로 개원하였으며, 宗廟와 社稷을 세우고 百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아들 紹를 太子로 삼았다. 叡는 晉王으로써 南郊에 제사를 지냈다. 그해 叡는 참람되이 大位에 올라 大興元年이라 改元하였다. 朝廷의 儀와 都邑의 制는 王者의 것을 본따고, 中國을 擬議하였다. 수도로 정해진 丹陽은 孫權의 舊所였으니 곧 禹貢의 揚州之地였고 洛陽에서 2,700里 떨어진 곳에 있었다. … (중략) … 東南을 揚州라고 하며, 그 山鎭을 會稽, 그 藪澤을 具區, 그 川을 三江, 그 浸을 五湖라고 한다. 날카로운 것은 金錫竹箭이며, 그 民은 二男五女이고, 그 가축은 鳥獸가 적합하며, 그 곡식은 稻가 적합하다. 春秋시대에 吳越의 땅이었다. 吳越이 참람되이 王이라 칭하였고, 편벽되고 먼 한 구퉁이를 차지하였으며 華土에 알려지지 않았다."[29]

위의 인용문에서 司馬睿의 즉위에 '僭'字를 사용하여 정통성있는 皇帝가 아님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수도 建康이 위치한 揚州가 中原에서 멀고 春秋時代 미개한 吳越의 땅이었다고 기록하였다. 후자의 경우 중국인의 고향 黃河유역, 즉 中原에서 먼 변방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僭晉司馬叡傳」의 史臣曰의 기록을 보자.

> "司馬叡는 江表로 달아나서, 魁帥의 이름을 몰래 훔쳤으나, 君長의 實이 없었으며, 황송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였고, 거듭 의심하였다. 李雄에 대해서는 각자 一方의 小盜였고 그들은 孫皓만 못하였다."[30]

『魏書』의 史臣曰에서는 元帝(司馬睿)는 변방을 지배하는 魁帥 혹은 小盜로 폄하했으며, 王敦 등 瑯琊王氏에 휘들려 군장으로 군림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였다. 사생아로 혈통에 문제가 있으며 中原이 아닌 변방 吳越을 지배한 司馬睿가 군주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기록에서 『魏書』는 司馬睿를 정통성도 없고 무능한 군주로 묘사했음을 알

---

28) 『魏書』 卷96 「僭晉司馬叡傳」, 2092쪽, "建興元年, 晉愍帝以叡爲侍中 · 左丞相 · 大都督 · 陝東諸軍事, 持節 · 王如故. 叡改建業爲建康. 七月, 叡以晉室將滅, 潛有他志, 乃自大赦, 爲大都督 · 都督中外諸軍事, 又爲丞相. 叡號令不行, 政刑淫虐, 殺督運令史淳于伯, 行刑者以刀拭柱, 血流上柱二丈三尺, 倥頭流下四尺五寸, 其直如弦. 時人怨之."

29) 『魏書』 卷96 「僭晉司馬叡傳」, 2092쪽, "平文帝初, 叡自稱晉王, 改元建武, 立宗廟 · 社稷, 置百官, 立子紹爲太子. 叡以晉王而祀南郊. 其年, 叡僭卽大位, 改爲大興元年. 其朝廷之儀, 都邑之制, 皆準模王者, 擬議中國. 遂都於丹陽, 因孫權之舊所, 卽禹貢揚州之地, 去洛二千七百里. …… 東南曰揚州, 其山鎭曰會稽, 其藪澤曰具區, 其川三江, 其浸五湖, 其利金錫竹箭, 其民二男五女, 其畜宜鳥獸, 其穀宜稻. 春秋時爲吳越之地. 吳越僭號稱王, 僻遠一隅, 不聞華土."

30) 『魏書』 卷96 「僭晉司馬叡傳」, 2113쪽, "史臣曰: 司馬叡之竄江表, 竊魁帥之名, 無君長之實, 跼天蹐地, 畏首畏尾, 對之李雄, 各一方小盜, 其孫皓之不若矣."

수 있다.

다음으로『魏書』卷97「島夷桓玄傳」의 桓玄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자.

> "島夷 桓玄은 字가 敬道이며, 본래 譙國 龍亢의 楚[譙國龍亢楚]이다. 僭晉 大司馬 [桓]溫의 아들이었다. 桓溫은 桓玄을 총애하여 죽을 때 그를 후사로 삼도록 명령하였다. 나이 7세에 南郡公의 작위를 襲封하였다."[31]

위의 인용문을『晉書』「桓玄傳」과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다. 桓玄의 아버지 桓溫의 아버지, 즉 桓玄의 祖父 桓彝의 본적을 "譙國龍亢人"이라 기록하였다.[32] 이밖에 桓玄의 神異한 탄생을 제외하면 冒頭의 기록은 비슷하다.[33] 여기에서 본적 뒤에 "人"이 아닌 "楚"를 붙인 차이는 무엇일까? 陳寅恪에 따르면,『魏書』에서 말하는 龍亢楚・丹徒楚・武進楚는 南朝 境內의 북방 사람에 대한 貶稱이다. 北朝 사람들은 東晉南朝로 간 中原 사람들을 모두 '楚'라 불렀다. 따라서 '楚'라는 명칭은 하나의 경멸조의 명사로 변하였다.[34] 따라서 환현을 "譙國龍亢楚"라고 기록한 것은 "島夷"와 함께 桓玄을 폄하하기 위해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馮跋에 대한 표기를 살펴보자.

> "海夷 馮跋은 字가 文起이고, 小名은 乞直伐이며, 본래 長樂信都에서 나왔다. 慕容永이 長子에서 僭號를 칭하자[西燕을 지칭함], 馮跋의 父 馮安을 將으로 삼았다. 慕容永이 慕容垂에게 멸망당한 후 馮安은 동쪽의 昌黎로 遷徙되었으며 長谷에 거주하였다. 馮跋은 술을 마실 때 1石을 마시고도 흐트러지 않았다. 母弟 素弗과 丕, 洪은 모두 任俠의 기질이 있었고 거리낌없이 행동하였으며, 行業을 닦지 않았다. 반면 馮跋은 공손하고 신중하였으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이미 昌黎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결국 夷俗과 같았다."[35]

---

31)『魏書』卷97「島夷桓玄傳」, 2117쪽, "島夷桓玄, 字敬道, 本譙國龍亢楚也. 僭晉大司馬溫之子, 溫愛之, 臨終命以爲後. 年七歲, 襲封南郡公."

32)『晉書』卷74「桓彝傳」, 1939쪽, "桓彝 字茂倫, 譙國龍亢人, 漢五更榮之九世孫也."

33)『晉書』卷99「桓玄傳」, 2592쪽, "桓玄字敬道, 一名靈寶, 大司馬溫之孼子也. 其母馬氏嘗與同輩夜坐, 於月下見流星墜銅盆水中, 忽如二寸火珠, 冏然明淨, 競以瓢接取, 馬氏得而吞之, 若有感, 遂有娠. 及生玄, 有光照室, 占者奇之, 故小名靈寶. 妳媼每抱詣溫, 輒易人而後至, 云其重兼常兒, 溫甚 愛異之. 臨終, 命以爲嗣, 襲爵南郡公. 年七歲, 溫服終, 府州文武辭其叔父沖, 沖撫玄頭曰: '此汝家之故吏也.' 玄因涕淚覆面, 衆並異之."

34) 陳寅恪, 「楚子集團與江左政權的轉移」, 萬繩楠 整理, 『陳寅恪魏晉南北朝史講演錄』, 黃山書社, 2000

35)『魏書』卷97「海夷馮跋傳」, 2126쪽, "海夷馮跋, 字文起, 小名乞直伐, 本出長樂信都. 慕容永僭號長子, 以跋父安爲將. 永爲垂所滅, 安東徙昌黎, 家于長谷. 跋飮酒至一石不亂. 母弟素弗, 次丕, 次洪, 皆任俠放逸, 不修行業, 跋恭愼勤稼穡. 旣家昌黎, 遂同夷俗."

위의 인용문을 『晉書』「馮跋載記」와 비교하면 대부분 비슷하다.[36] 다만 위의 인용문에서 馮跋을 海夷로 칭하였고 漢族이었지만 鮮卑人들이 사는 昌黎로 이주한 후 夷俗, 즉 鮮卑의 풍습에 동화되었다는 점이 『晉書』「馮跋載記」와 다른 점이다. 『晉書』「馮跋載記」冒頭에는 "遂同夷俗."이란 구절은 없지만 馮跋이 北燕을 세운 후 柔然 카간에게 樂浪公主를 시집보낼 때 "朕은 바야흐로 殊俗을 崇信하는데 어찌 이를 속일 수 있겠는가?"[37]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馮跋은 漢文化와 다른 殊俗을 따른다는 기술은 『魏書』 卷97「海夷馮跋傳」의 "遂同夷俗."과 부합한다. 또 王曉衛에 따르면 馮跋의 小字는 乞直伐[38]이며, 長弟의 이름은 素弗, 從兄의 이름은 萬泥으로 모두 鮮卑語 이름인데, 이는 馮氏가 언어습관상 諸夷에 전염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처럼 長樂馮氏는 비록 漢人이지만 馮安 이후 오랫동안 북방 유목민들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鮮卑의 習俗에 익숙하였다. 또 馮跋은 夷人들의 지지 하에 北燕을 세웠고, 馮跋은 "崇信殊俗"[39]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통치했다.[40]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馮跋을 "海夷"라고 기록한 것은 혈통상 漢族이었지만, 胡俗에 전염된 馮跋의 상황을 直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宋(劉宋)을 세운 劉裕에 대한 『魏書』 卷97「島夷劉裕傳」의 기록을 살펴보자.

> "島夷 劉裕는 字가 德輿이며, 晉陵郡 丹徒縣 사람이다. 劉裕의 선조는 출신을 알 수 없는데, 스스로 彭城郡 彭城縣 사람이라고 칭하며, 혹은 本姓이 項이었으나 劉氏로 바뀌었다고도 하는데 [역시 기록의 신빙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叢亭·安上의 諸劉와 宗次가 없었다."[41]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劉裕의 출신과 姓은 劉裕의 주장과 달리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폄하하였다. 마지막 구절에서 劉裕의 가문과 叢亭里 및 安上里 출신의 劉氏[諸劉]와 宗次

---

36) 『晉書』 卷125「馮跋載記」, 3127쪽, "馮跋字文起, 長樂信都人也, 小字乞直伐, 其先畢萬之後也. 萬之子孫有食采馮鄉者, 因以氏焉. 永嘉之亂, 跋祖父和避地上黨. 父安, 雄武有器量, 慕容永時爲將軍. 永滅, 跋東徙和龍, 家于長谷. 幼而懿重少言, 寬仁有大度, 飮酒一石不亂. 三弟皆任俠, 不修行業, 惟跋恭愼, 勤於家産, 父母器之."

37) 『晉書』 卷125「馮跋載記」, 3130쪽, "蠕蠕勇斛律遣使求跋女僞樂浪公主, 獻馬三千匹, 跋命其貳下議之. 素弗等議曰: '前代舊事, 皆以宗女妻六夷, 宜許以妃嬪之女, 樂浪公主不宜下降非類.' 跋曰: '女生從夫, 千里豈遠! 朕方崇信殊俗, 奈何欺之!' 乃許焉."

38) 『晉書』 卷125「馮跋載記」, 3127쪽, "馮跋字文起, 長樂信都人也, 小字乞直伐, 其先畢萬之後也."; 『魏書』 卷97「海夷馮跋傳」, 2126쪽, "海夷馮跋, 字文起, 小名乞直伐, 本出長樂信都."

39) 『晉書』 卷125「馮跋載記」, 3130쪽, "蠕蠕勇斛律遣使求跋女僞樂浪公主, 獻馬三千匹, 跋命其貳下議之. 素弗等議曰: '前代舊事, 皆以宗女妻六夷, 宜許以妃嬪之女, 樂浪公主不宜下降非類.' 跋曰: '女生從夫, 千里豈遠! 朕方崇信殊俗, 奈何欺之!' 乃許焉."

40) 王曉衛, 「論北魏文明太后的族屬及所受教育」, 『歷史教學』 1998-1, 1998, 11左-11右쪽.

41) 『魏書』 卷97「島夷劉裕傳」, 2129쪽, "島夷劉裕, 字德輿, 晉陵丹徒人也. 其先不知所出, 自云本彭城彭城人, 或云本姓項, 改爲劉氏, 然亦莫可尋也, 故其與叢亭·安上諸劉了無宗次."

가 없었다는 구절은『宋書』卷78「劉延孫傳」의 기록에서 그 연유를 확인할 수 있다.『宋書』卷78「劉延孫傳」에 따르면 劉裕의 가문을 포함한 彭城劉氏는 彭城縣의 綏輿里와 安上里, 叢亭里의 劉氏, 呂縣의 劉氏 등 四劉, 즉 네 家系의 劉氏로 나뉘었다. 이들은 楚元王의 후손에서 나왔지만 昭穆을 따질 수 없었다.[42] 따라서 劉裕의 가문과 叢亭里 및 安上里 출신의 劉氏[諸劉]와 宗次가 없었다는 구절은 家系가 명확하지 못한 彭城劉氏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唐代의 사학자 劉知幾는 彭城 叢亭里의 劉氏가 楚元王 劉交의 후손이 아니라 宣帝의 아들 楚孝王 劉囂의 증손 居巢侯 劉愷의 후손이라고 밝혔다.[43]『新唐書』「宰相世系表」에서도 彭城劉氏의 선조가 楚元王 祇敎가 아닌 宣帝의 아들 楚孝王 劉囂이라고 서술하였다.[44] 이러한 彭城劉氏의 族譜과 家系를 살펴보면『魏書』卷97「島夷劉裕傳」의 劉裕 家系 기록은 불명확한 彭城劉氏의 현실을 그대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宋書』卷1「武帝紀」上에서는 劉裕의 선조가 漢高祖의 아우 楚元王 劉交이었으며, 劉交부터 劉裕 사이 조상들의 관직과 家系를 상세히 기술하였다.[45]『宋書』卷1「武帝紀」上 冒頭 기록을 보면 劉裕는 瑯琊王氏·陳郡謝氏같은 최고 門閥은 아니더라도 대대로 太守와 縣令을 역임할 정도로 東晉南朝의 중하층 지배층에 속하였다. 그리고 劉裕의 조상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였다. 그러나『宋書』「武帝紀」上에 집이 가난했다는 기록을 보면[46] 대대로 지방관을 역임했던 가문인지 의심이 든다.『魏書』卷38「刁雍傳」에 따르

---

42)『宋書』卷78「劉延孫傳」, 2019-2020쪽, "延孫與帝室雖同 是彭城人, 別屬呂縣. 劉氏居彭城縣者, 又分爲三里, 帝室居綏輿里, 左將軍劉懷肅居安上里, 豫州刺史劉懷武居叢亭里, 及呂縣凡四劉. 雖同出楚元王, 由來不序昭穆."

43)『舊唐書』卷102「劉子玄傳」, 3171쪽, "知幾自負史才, 常慨時無知己, 乃委國史於著作郎吳兢, 別撰劉氏家史十五卷·譜考三卷. 推漢氏爲陸終苗裔, 非堯之後. 彭城叢亭里諸劉, 出自宣帝子楚孝王囂曾孫司徒居巢侯劉愷之後, 不承楚元王交. 皆按據明白, 正前代所誤, 雖爲流俗所譏, 學者服其該博.";『新唐書』卷132「劉子玄傳」, 4521쪽.

44)『新唐書』卷71上「宰相世系表」1上 劉氏條, 2244쪽, "劉氏出自祁姓. 帝堯陶唐氏子孫生子有文在手曰: '劉累', 因以爲名. 能擾龍, 事夏爲御龍氏, 在商爲豕韋氏, 在周封爲杜伯, 亦稱唐杜氏. 至宣王, 滅其國. 其子隰叔奔晉爲士師, 生士蔿. 蔿生成伯缺, 缺生士會. 會適秦, 歸晉, 有子留於秦, 自爲劉氏. 生明, 明生遠, 遠生陽, 十世孫, 戰國時獲於魏, 遂爲魏大夫. 秦滅魏, 徙大梁, 生淸, 徙居沛. 生仁, 號豐公. 生煓, 字執嘉. 生四子：伯·仲·邦·交. 邦, 漢高祖也. 高祖七世孫宣帝, 生楚孝王囂, 囂生思王衍, 衍生紆, 紆生居巢侯般, 字伯輿. 般生愷, 字伯豫, 太尉·司空. 生茂, 字叔盛, 司空·太中大夫, 徙居叢亭里. 愷六世孫訥, 晉司隸校尉. 孫憲生羨. 羨二子：敏·該."

45)『宋書』卷1「武帝紀」上, 1쪽, "高祖武皇帝諱裕, 字德輿, 小名寄奴, 彭城縣綏輿里人, 漢高帝弟楚元王交之後也. 交生紅懿侯富, 富生宗正辟彊, 辟彊生陽城繆侯德, 德生陽城節侯安民, 民生陽城釐侯慶忌, 慶忌生陽城肅侯岑, 岑生宗正平, 平生東武城令某, 某生東萊太守景, 景生明經洽, 洽生博士弘, 弘生瑯邪都尉悝, 悝生魏定襄太守某, 某生邪城令亮, 亮生晉北平太守膺, 膺生相國掾熙, 熙生開封令旭孫. 旭孫生混, 始過江, 居晉陵郡丹徒縣之京口里, 官至武原令. 混生東安太守靖, 靖生郡功曹翹, 是爲皇考. 高祖以晉哀帝興寧元年歲次癸亥三月壬寅夜生."

면 劉裕가 社錢 3萬錢을 갚지 않자 刁雍의 伯父 刁逵가 劉裕를 잡아서 징벌하였다. 앙심을 품은 劉裕는 권력을 장악한 후 刁氏를 주살하였다.[47] 이 사례로 보아 劉裕가 가난했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따라서 대대로 벼슬했다는 『宋書』「武帝紀」上의 기록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魏書』 卷97「島夷劉裕傳」과 『宋書』「武帝紀」上의 劉裕 가계와 출신 기록을 검토하면 『魏書』 卷97「島夷劉裕傳」의 기록은 劉裕가 속한 彭城劉氏의 가족사를 간략하면서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魏書』 卷97「島夷劉裕傳」에서는 劉裕의 本姓이 項氏였다는 풍문을 곁들여 劉裕가 근본없는 집안 출신이었다고 폄하하였다. 이는 "島夷"라는 貶稱과 결합하여 劉裕를 더욱 깎아내리는데 기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魏書』 卷96과 卷97의 東晉南朝와 北燕의 列傳의 기록에서 東晉南朝와 北燕을 폄하하기 위하여 출생이나 家系의 비리를 언급하였고 "島夷"와 "海夷"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南朝와 北燕을 폄하하였다. 이는 魏收를 비롯한 『魏書』 편찬에 종사한 史官뿐만 아니라 孝文帝 시기의 高閭도 劉宋과 蕭齊를 蠻夷라고 간주하였다.[48] 이는 『魏書』

---

46) 『宋書』 卷1「武帝紀」上, 1쪽, "家貧, 有大志, 不治廉隅. 事繼母以孝謹稱."

47) 『魏書』 卷38「刁雍傳」, p.865, "刁雍, 字淑和, 勃海饒安人也. 高祖攸, 晉御史中丞. 曾祖協, 從司馬叡渡江, 居于京口, 位至尚書令. 父暢, 司馬德宗右衛將軍. 初, 暢兄逵以劉裕輕狡薄行, 負社錢三萬, 違時不還, 執而徵焉. 及裕誅桓玄, 以嫌故先誅刁氏." 渤海郡 饒安縣 출신인 刁氏는 東晉初 刁協이 元帝의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이후 刁逵 형제는 재산 증식에 힘써 1萬頃의 田과 奴婢 수천인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晉書』 卷69「刁協傳附逵傳」, 1845쪽, "兄弟子姪並不拘名行, 以貨殖爲務, 有田萬頃, 奴婢數千人, 餘資稱是."). 『晉書』 卷69「刁協傳附逵傳」에 따르면 劉裕가 刁氏를 제거한 후 刁氏의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晉書』 卷69「刁協傳附逵傳」, 1846쪽, "刁氏素殷富, 奴客縱橫, 固吝山澤, 爲京口之蠹. 裕散其資蓄, 令百姓稱力而取之, 彌日不盡. 時天下饑弊, 編戶賴之以濟焉.").

48) 『魏書』 卷108之1「禮志」1, 2744-2745쪽, "十四年八月詔曰: '丘澤初志, 配尙宜定, 五德相襲, 分紀有常. 然異同之論, 著於往漢, 未詳之說, 疑在今史. 羣官百辟, 可議其所應, 必令合衷, 以成萬代之式.' 中書監高閭議以爲: '帝王之作, 百代可知, 運代相承, 書傳可驗. 雖祚命有長短, 德政有優劣, 至於受終嚴祖, 殷薦上帝, 其致一也. 故敢述其前載, 擧其大略. 臣聞居尊據極, 允應明命者, 莫不以中原爲正統, 神州爲帝宅. 苟位當名全, 化迹流洽, 則不專以世數爲與奪, 善惡爲是非. 故堯舜禪揖, 一身異尙; 魏晉相代, 少紀運殊. 桀紂至虐, 不廢承歷之紀; 厲惠至昏, 不闕周晉之錄. 計五德之論, 始自漢劉, 一時之議, 三家致別. 故張蒼以漢爲水德, 賈誼 · 公孫臣以漢爲土德, 劉向以漢爲火德. 以爲水德者, 正以嘗有水溢之應, 則不推運代相承之數矣. 以土德者, 則以亡秦繼曆, 相卽爲次, 不推逆順之異也. 以爲火德者, 懸證赤帝斬蛇之符, 棄秦之暴, 越惡承善, 不以世次爲正也, 故以承周爲火德. 自茲厥後, 乃以爲常. 魏承漢, 火生土, 故魏爲土德. 晉承魏, 土生金, 故晉爲金德. 趙承晉, 金生水, 故趙爲水德. 燕承趙, 水生木, 故燕爲木德. 秦承燕, 木生火, 故秦爲火德. 秦之未滅, 皇魏未克神州, 秦氏旣亡, 大魏稱制玄朔. 故平文之廟, 始稱『太祖』, 以明受命之證, 如周在岐之陽. 若繼晉, 晉亡已久; 若棄秦, 則中原有寄. 推此而言, 承秦之理, 事爲明驗. 故以魏承秦, 魏爲土德, 又五緯表驗, 黃星曜彩, 考氏定實, 合德軒轅, 承土祖未, 事爲著矣. 又秦趙及燕, 雖非明聖, 各正號赤縣, 統有中土, 郊天祭地, 肆類咸秩, 明刑制禮, 不失舊章. 奄岱踰河, 境被淮漢. 非若齷齪邊方, 僭擬之屬, 遠如孫權 · 劉備, 近若劉裕 · 道成, 事繫蠻夷, 非關中夏. 伏惟聖朝, 德配天地, 道被四海, 承乾統曆, 功侔百王. 光格同於唐虞, 享祚流於周漢,

편찬자만의 史觀이 아니라 北魏의 일부 漢人官僚들도 지니고 있었던 역사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三崎良章의 지적처럼 북방의 十六國과 東晉南朝의 배열에 일정한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49]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魏書』卷96의 列傳은 長江 유역, 즉 남방에 있었던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巴氐가 세운[50] 成漢[51]은 巴蜀, 즉 長江상류에, 東晉은 荊州와 揚州, 즉 長江 中下流에 있었다.『魏書』卷98의 列傳은 長江 유역 전체를 지배한 南朝의 왕조였다.『魏書』卷99의 列傳은 西秦이 後涼・南涼・北涼과 자주 전쟁하였고 南涼을 멸망시켰으며, 河西回廊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므로 河西回廊과 隴右 지역에 있었던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魏書』卷95의 列傳에 배열된 前趙・後趙・夏・慕容燕・前秦・後秦・後涼 가운데 後涼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華北의 山東(關東)과 關隴 지역에 있었던 나라이다. 이와 달리 後涼은 河西回廊에 있던 나라였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魏書』卷95의 列傳에 배열된 나라는 皇帝 혹은 天王을 자칭했다는 공통점이 있다.[52] 반면『魏書』卷99의 列傳의 諸涼과 西秦은 王을 칭했을 뿐이다. 이 점에 주목하면『魏書』卷95의 列傳는 皇帝나 天王을 칭했던 華北의 僭僞帝國,『魏書』卷99의 列傳은 王에 불과한 지방정권을 나누어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魏書』卷97의 列傳의 島夷桓玄, 海夷馮跋, 島夷劉裕, 즉 楚, 北燕, 劉宋의 조합은 외형적으로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지역적으로 볼 때 楚와 劉宋이 長江 유역을 지배한데 비해 北燕은 북방 遼西에 존재했던 나라였다. 桓玄, 馮跋, 劉裕 세 사람의 공통점은 찬탈자라는 점이다. 桓玄은 簡文帝 시기 찬탈을 시도했던 桓溫의 아들로 長江 중류의 荊州・雍州・江州 등지를 지배하고 建康으로 진격하여 권력자 會稽王 司馬道子・司馬元顯 부자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元興 2년에 安帝를 내쫓고 帝位에 올랐다.[53]

---

正位中境, 奄有萬方. 今若幷棄三家, 遠承晉氏, 則蔑中原正次之實. 存之無損於此, 而有成於彼; 廢之無益於今, 而有傷於事. 臣愚以爲宜從尙黃, 定爲土德."

49) 三崎良章 저, 김영환 옮김,『五胡十六國-中國史上의 民族 大移動-』, 景仁文化社, 2007, 37-38쪽.

50) 成漢을 세운 李特 일가의 種族과 종교는 唐長孺,「范長生與巴氐據蜀的關係」,『魏晉南北朝史論叢續編』, 三聯書店, 1959 참조.

51) 成漢에 대한 연구는 狩野直禎,「五胡時代の豪族-巴蜀の豪族と成漢國-」,『歷史敎育』14-5, 1966; 최진열,「後漢末・魏晉時期 僑人政權과 巴蜀社會」,『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25집, 2001 참조.

52) 呂光은 酒泉公, 三河王을 거쳐 396년 天王에 즉위하였다. 이후 아들 呂紹에게 天王의 자리를 물려주고 太上皇帝가 되었다. 天王은 皇帝와 동급이지만 皇帝로 가는 전단계라는 주장이 있지만(谷川道雄,「五胡十六國・北周における天王の稱號」,『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1971), 呂光이 讓位 이후 太上皇帝가 된 것을 보면 後涼에서는 天王=皇帝이었음을 알 수 있다. 呂光 사후 懿武皇帝라는 諡號를 받은 것도 이를 입증한다(『晉書』卷122「呂光載記」, 3064쪽, "光以安帝隆安三年死, 時年六十三, 在位十年. 僞諡懿武皇帝, 廟號太祖, 墓號高陵.").

53)『資治通鑑』卷113「晉紀」35 安帝元興二年條, 3554쪽, "詔楚王玄行天子禮樂, 妃爲王后, 世子爲太子. 丁丑, 卞範之爲禪詔, 使臨川王寶逼帝書之. 寶, 晞之曾孫也. 庚辰, 帝臨軒, 遣兼太保・

馮跋도 後燕의 慕容熙를 죽이고 高雲을 君主로 세워 권력을 잡은 다음[54] 高雲 피살 후 즉위하였다.[55] 北府兵의 將領이었던 劉裕도 桓玄을 타도한 후 南燕과 後秦을 정복하고 巴蜀의 譙縱을 제거하였으며, 결국 東晉의 恭帝에게 帝位를 讓位받아 즉위하여 宋을 세웠다. 魏晉南朝의 왕조 교체는 禪讓과 찬탈로 행해졌지만, 五胡十六國時代에는 오히려 禪讓과 찬탈보다 정복으로 王朝 혹은 국가의 교체가 있었다. 이러한 필자의 추정에 대과없다면,『魏書』卷97의 列傳에 수록된 세 나라는 찬탈을 한 不忠의 이미지를 가진 공통점을 지닌다.

셋째,『魏書』에서 北魏는 중국의 정통왕조임을 자임하고 나머지 왕조나 국가는 僭僞, 즉 皇帝를 참칭하거나 지방정권으로 격하시켰다.『魏書』卷95부터 卷99까지 나열된 국가들은 현재의 용어로는 十六國과 東晉, 南朝이다. 이 가운데『資治通鑑』와 南朝系 史書 등 史書에는 東晉과 南朝가 중국의 정통왕조로 간주된다. 그러나『魏書』에서는 東晉과 成漢, 劉宋과 楚·北燕을 同卷에 나열함으로써 東晉南朝의 입장에서 보면 正統王朝가 '오랑캐 나라'와 동급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東晉을 僭晉司馬叡, 劉宋을 島夷劉裕, 南齊를 島夷蕭道成, 梁을 島夷蕭衍으로 표기하여 皇帝國 혹은 正統王朝가 아닌 江南의 지방정권으로 격하시켰다. 따라서 非正統인 五胡十六國과 東晉南朝과 달리 北魏는 正統王朝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魏書』는 계보의 조작(黃帝의 후예), 天命, 讖緯說, 중국식 제도의 도입, 華北統

---

領司徒王謐奉璽綬, 禪位于楚；壬午, 帝出居永安宮；癸未, 遷太廟神主于琅邪國, 穆章何皇后及琅邪王德文皆徙居司徒府. 百官詣姑孰勸進. 十二月, 庚寅朔, 玄築壇於九井山北, 壬辰, 卽皇帝位. 冊文多非薄晉室, 或諫之, 玄曰: '揖讓之文, 正可陳之於下民耳, 豈可欺上帝乎!' 大赦, 改元永始；以南康之平固縣封帝爲平固王, 降何后爲零陵縣君, 琅邪王德文爲石陽縣公, 武陵王遵爲彭澤縣侯；追尊父溫爲宣武皇帝, 廟號太祖, 南康公主爲宣皇后, 封子昇爲豫章王；以會稽內史王愉爲尙書僕射, 愉子相國左長史綏爲中書令. 綏, 桓氏之甥也. 戊戌, 玄入建康宮, 登御坐而忽陷, 群下失色. 殷仲父曰: '將由聖德深厚, 地不能載.' 玄大悅. 梁王珍之國臣孔樸奉珍之奔壽陽. 珍之, 晞之曾孫也."

54)『晉書』卷125「馮跋載記」, 3127쪽, "遂與萬泥 等二十二人結謀. 跋與二弟乘車, 使婦人御, 潛入龍城, 匿于北部司馬孫護之室. 遂殺熙, 立高雲爲主. 雲署跋爲使持節·侍中·都督中外諸軍事·征北大將軍·開府儀同三司·錄尙書事·武邑公."; 『魏書』卷97「海夷馮跋傳」, 2126쪽, "後慕容熙僭號, 以跋爲殿中左監, 稍遷衛中郎將. 後坐事逃亡. 旣而熙政殘虐, 民不堪命, 跋乃與從兄萬泥等二十三人結謀, 跋與二弟乘車, 使婦人御, 潛入龍城, 匿於孫護之室以誅熙. 乃立夕陽公高雲爲主, 以跋爲侍中·征北大將軍·開府儀同三司, 封武邑公, 事皆決跋兄弟."

55)『晉書』卷125「馮跋載記」, 3128쪽, "跋戒其勿言. 雲爲其幸臣離班·桃仁所殺, 跋升洪光門以觀變. 帳下督張泰·李桑謂跋曰: '此豎勢何所至! 請爲公斬之.' 於是奮劍而下, 桑斬班于西門, 泰殺仁于庭中. 衆推跋爲主, 跋曰: '范陽公素弗才略不恒, 志於靖亂, 掃淸凶桀, 皆公勳也.' 素弗辭曰: '臣聞父兄之有天下, 傳之於子弟, 未聞子弟藉父兄之業而先之. 今鴻基未建, 危甚綴旒, 天工無曠, 業係大兄. 願上順皇天之命, 下副元元之心.' 羣臣固請, 乃許之, 於是以太元二十年乃僭稱天王于昌黎, 而不徙舊號, 卽國曰燕, 赦其境內, 建元曰太平."; 『魏書』卷97「海夷馮跋傳」, 2126쪽, "太宗初, 雲爲左右所殺, 跋乃自立爲燕王, 置百官, 號年太平, 于時永興元年也."

一 등의 장치를 통해 鮮卑 拓跋部가 세운 이민족 왕조 北魏를 中原王朝 혹은 正統王朝로 粉飾시켰다. 그러나 북방과 남방이 분열되고 통일국가인 西晉 붕괴 이후 西晉의 정통성을 자임한 東晉과 東晉을 계승한 南朝의 정통성 주장을 깨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였다.『魏書』에서는 東晉과 南朝가 五胡十六國과 동일한 지방정권임을 강조하는 列傳의 배열을 시도하여 東晉南朝를 격하시켰다. 그리고 東晉 元帝(司馬睿)를 사생아로 조작함으로써 西晉과 東晉의 계승관계에 생채기를 냈다. 또『魏書』는 東晉과 南朝를 '미개지' 吳越을 지배하는 지방정권으로 격하시키는 서술방식을 취하여 상대적으로 中原을 지배하는 北魏의 정통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孝文帝는 北魏가 西晉을 계승했음을 천명하며 水德을 채택함으로써 五胡十六國을 非正統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역사적 위치를 격하하였다.『魏書』卷95부터 卷99의 五胡十六國・東晉南朝의 列傳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 Ⅱ. "北魏=東魏"의 歷史觀

『魏書』는 北齊 文宣帝 시기에 완성된 北魏時代를 서술한 역사서이다. 그런데『魏書』「地形志」는 특이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첫째,「地形志」는 上・中・下로 나뉘며 광역 지역별로 나뉜다. 上卷에는 司州, 定州, 冀州, 幷州, 瀛州, 殷州, 滄州, 肆州, 幽州, 晉州 懷州, 建州, 汾州, 東雍州, 安州, 義州, 南汾州, 南營州, 東燕州, 營州, 平州, 恒州, 朔州, 雲州, 蔚州, 顯州, 廓州, 武州, 西夏州, 寧州, 靈州를 수록하였다. 中卷은 兗州, 靑州, 齊州, 鄭州, 濟州, 光州, 梁州, 豫州, 北豫州, 徐州, 西兗州, 南兗州, 廣州, 膠州, 洛州, 南靑州, 北徐州, 北揚州, 東楚州, 東徐州, 海州, 東豫州, 義州, 潁州, 譙州, 北荊州, 陽州, 南司州, 楚州, 合州, 霍州, 睢州, 南定州, 西楚州, 蔡州, 西淮州, 譙州, 揚州, 淮州, 仁州, 光州, 南朔州, 南建州, 南郢州, 沙州, 北江州, 湘州, 汴州, 財州를 나열하였다. 下卷은 雍州, 岐州, 秦州, 南秦州, 南岐州, 東益州, 益州, 巴州, 梁州, 南梁州, 東梁州, 涇州, 河州, 渭州, 原州, 涼州, 鄯州, 瓜州, 華州, 北華州, 豳州, 夏州, 東夏州, 泰州, 陝州, 洛州, 荊州, 襄州, 南襄州, 南廣州, 郢州, 南郢州, 析州를 열거하였다. 열거된 州의 이름과 분포를 살펴보면, 上卷은 黃河 이북, 즉 현재의 山西・河北 2省과 河南省의 황하 이북 지역, 遼寧省 遼河 서쪽 등의 지역을 다루고 있다. 中卷은 黃河 이남, 즉, 현재의 黃河 이남의 河南省, 山東省, 江蘇省과 安徽省 북부 지역이다. 下卷은 關隴과 河西回廊지역, 즉 현재의 陝西・甘肅 2省과 寧夏回族自治區, 내몽골의 오르도스 지역이다.

둘째,『魏書』「地形志」의 행정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上卷과 中卷은 北魏洛陽時代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東魏의 행정구역이다. 京畿를 지칭하는 司州는 洛陽이 아니라

鄴과 그 주변지역이었다. 『魏書』「地形志」 序文에서 밝힌 것처럼 『魏書』「地形志」는 東魏 孝靜帝 시기 武定년간(543-550)의 행정구역과 戶口를 기록했기 때문이다.[56] 따라서 『魏書』「地形志」의 기록만으로는 洛陽遷都 이후 北魏後期 지방행정과 州郡縣의 통속관계와 戶口를 알 수 없다. 勞榦이 州郡縣 복원작업을 시도한 후[57] 毋有江이 비슷한 작업을 시도한 것도[58] 이런 사정 때문이다.

셋째, 戶口가 누락된 州郡縣이 빈출하였다. 『魏書』「地形志」上의 후반 부분에는 아래의 구절이 있다.

> "恒州부터 아래의 10州는 永安년간 이후 禁旅가 나오는 곳이므로 戶口의 수는 알 수 없다."[59]

라고 하였다. 『魏書』「地形志」를 보면 恒州 이하 10州는 恒州·朔州·雲州·蔚州·顯州·廓州·武州·西夏州·寧州·靈州였다.[60] 이 지역은 東魏北齊의 실질적인 수도 太原(晉陽)[61] 주변에 위치하였다. 毛漢光의 고증에 따르면 이 10州 가운데 5州는 舊六鎭 출신 鮮卑軍士를 僑置시킨 것이다.[62]

이어서 『魏書』 卷106上「地形志」中에는

> "前件에 陽州 已下 23州는 모두 緣邊의 新附한 州로 險遠한 곳에 居하였다. 따라서 郡縣의 戶口는 이때에 闕하였다."[63]

라고 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陽州 이하 23州, 즉 陽州·南司州·楚州·合州·霍州·睢

---

56) 『魏書』 卷106上 「地形志」上, 2455쪽, "今錄武定之世以爲志焉. 州郡創改, 隨而注之, 不知則闕."

57) 勞榦, 「北魏州郡志略」, 『中央研究院歷史於焉研究所集刊』 32, 1961, 181-283쪽.

58) 毋有江, 『北魏政區地理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59) 『魏書』 卷106上 「地形志」上, 2504쪽, "前自恒州已下十州, 永安已後, 禁旅所出, 戶口之數, 並不得知."

60) 『魏書』 卷106上 「地形志」上, 2497-2504쪽.

61)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編,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1998, 162쪽; 毛漢光, 「北魏東魏北齊之核心集團與核心區」, 『中國中古政治史論』,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2, 98쪽; 崔彦華, 「晉陽在東魏北齊時的覇府和別都地位」, 『晉陽學刊』 2004-3, 2004, 22왼쪽; 崔彦華, 「"鄴-晉陽"兩都體制與東魏北齊政治」, 『社會科學戰線』 2010-7, 2010, 245왼쪽.

62) 王仲犖, 「東西魏北齊北周僑置六州考略」, 『北周地理志』(北京: 中華書局 1980[2007重印]), 1149-1152쪽.

63) 『魏書』 卷106上 「地形志」中, 2593쪽, "前件自陽州已下二十三州並緣邊新附, 地居險遠, 故郡縣戶口有時而闕."

州・南定州・西楚州・蔡州・西淮州・譙州・揚州・淮州・仁州・光州・南朔州・南建州・南郢州・沙州・北江州・湘州・汴州・財州 등의 戶口가 누락되었다.[64] 이는 北魏末・東魏初 梁으로부터 점령한 영토였으므로 제대로 戶口를 파악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65]

마지막으로『魏書』「地形志」下에 기록된 關隴지역의 雍州 이하 州郡縣의 戶口 역시 누락되어 기록되지 않았다.[66]『魏書』「地形志」의 시대적 배경인 東魏 武定년간에는『魏書』「地形志」下에 해당하는 지역은 西魏의 영토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魏書』「地形志」는 州郡縣의 戶口數 누락이 너무 심하였다. 이는 지방 州郡縣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州郡縣의 戶口가 정기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東魏가 실제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던 關隴 지역, 즉 西魏 영토의 戶口數는 東魏의 중앙정부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魏書』「地形志」에 기록될 수 없었다.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魏書』「地形志」는 北魏의 州郡縣이 아닌 東魏의 州郡縣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배하지 못한 西魏의 영토, 즉 關隴과 河西回廊 지역까지「地形志」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개설서에서는 534년 孝武帝의 西遷과 孝靜帝의 즉위, 鄴 遷都 등으로 北魏가 東西로 분열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후세 사람들의 관점이고 당시 東魏와 西魏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의 국호를 '魏'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墓誌銘에서 墓主의 관명 앞에 '大魏', '魏', '皇魏'라는 국명을 붙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西魏文帝 大統 15년(549)에 죽고 大統 17년(551)에 華陰縣 潼鄕에 매장된 楊保元 처 元氏(479-549)의 墓誌銘 冒頭에는 "魏故平西將軍汾州刺史華陰伯楊保元妻華山郡主元氏誌銘"[67] 라고 표기하였다. 여기에서 西魏가 아닌 '魏'라는 국명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魏 武定 2년(544)에 사망한 封柔(478-544)의 墓誌銘은 "魏故諮議封府君墓誌銘"으로 시작하였다.[68] 여기에서도 국명을 東魏가 아닌 '魏'로 표기하였다.『魏書』에서는 東魏와 北魏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동일한 나라임을 강조해야 했다. 따라서 孝靜帝를 東魏의 皇帝가 아닌 北魏의 皇帝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 孝靜帝 시기를 東魏가 아닌 北魏時代로 粉飾해야 했다. 이를 위해『魏書』의 本紀에서는 孝武帝를 '出帝'로 격하하고 孝靜帝를 '出帝' 다음의 皇帝로 배치하였다. 卷11에서는 前廢帝(『北史』의 後廢帝(『北史』의 廢帝), 孝武帝의 本紀를 배치하고 卷12에는 孝靜帝의 本紀를 두었다. 이러한 배치는 孝靜帝가 東魏가 아닌 北魏의 皇帝, 특히 마지막 皇帝임을 강조한 것이다.

---

64)『魏書』卷106上「地形志」中, 2567-2593쪽.

65) 최진열,「東魏北齊의 華北 지배와 그 한계」,『東洋史學研究』125, 2013, 85-86쪽.

66)『魏書』卷106下「地形志」下, 2607-2643쪽.

67)「魏故平西將軍汾州刺史華陰伯楊保元妻華山郡主元氏誌銘」,『漢魏南北朝墓誌彙編』(趙超, 天津古籍出版社, 1992), 385쪽.

68)「魏故諮議封(柔)府君墓誌銘」,『漢魏南北朝墓誌彙編』(趙超, 天津古籍出版社, 1992), pp.369-371.

그리고 列傳과 志에서도 東魏 孝靜帝 시기의 인물과 史實을 수록하였다. 즉『魏書』는 東魏의 역사를 北魏史의 일부로 편성한 것이다. 이러한『魏書』의 서술 태도를 이해하면『魏書』「地形志」에 東魏 孝靜帝 武定년간의 州郡縣과 戶口를 기재한 것은『魏書』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北魏의 지방행정 기록일뿐이었다.[69]

특히 東魏의 官制가 北魏의 官制를 그대로 답습한 것도 北魏와 東魏가 동일한 국가라는 인식 때문이었다.『隋書』卷27「百官志」中 後齊條에서는 "後齊의 制官은 대부분 後魏의 것을 따랐다."[70]라고 기술하였다.『魏書』「官氏志」와『隋書』「百官志」의 後齊(北齊) 官制를 비교하면 양자의 유사성과 계승성이 확인된다. 그런데, 北齊의 官制를 자세히 살펴보면 北齊의 영토가 아닌 지명이 보인다. 北齊의 六尙書 가운데 五兵尙書는 左中兵·右中兵·左外兵·右外兵·都兵 五曹로 구성되었다.『隋書』卷27「百官志」中 後齊條의 細注를 보면, 左外兵曹는 河南과 潼關已東의 諸州 丁帳과 兵의 징발 등을, 右外兵曹는 河北과 潼關已西 諸州의 丁帳과 兵의 징발 등을 각각 관장하였다.[71] 여기에서 左外兵曹는 河南과 潼關의 동쪽, 右外兵曹는 河北과 潼關 서쪽으로 지역별로 軍事 업무를 분담하였다. 潼關은 당시 北齊의 영토가 아니었다. 孝武帝가 關中으로 西遷하여 北魏가 東西로 분열되었던 永熙 3년(534) 八月 高歡은 潼關을 함락하였다.[72] 그러나 같은 해 九月 己酉日에 孝武帝는 親征하여 潼關과 華州를 점령하였다.[73] 이후 東魏北齊는 潼關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隋書』「百官志」의 기록처럼 右外兵曹가 潼關 서쪽의 軍事 사무를 관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右外兵曹가 潼關 서쪽의 軍事 사무를 처리한다고 기록한 것은 실제 행정업무 이외의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지배하지 못한 潼關 서쪽, 즉 西魏北周의 영토가 北齊의 것임을 粉飾한 것이다. 이러한 관제는 北魏의 官制를 계승하고 고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北齊의 官制에 北齊의 영토가 아닌 지역이 언급된 부분은『隋書』卷27「百官志」中 後齊太府寺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金帛과 府庫를 관장하고 器物을 營造하는 사

---

69) 반면 西魏北周를 계승한 隋唐에서 편찬된 史書에서는 東魏시대를 北魏時代의 일부로 파악하는 歷史觀에 동의할 수 없었다. 따라서 唐初에 편찬된『北史』에서는 孝武帝 뒤에 西魏文帝, 西魏廢帝, 西魏恭帝, 東魏孝靜帝의 순서로 나열하여 孝武帝를 北魏의 마지막 皇帝로 파악하였다. 西魏文帝 등 3帝를 孝武帝의 뒤에 배열하여 西魏가 北魏를 계승했다는 효과와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또 東魏孝靜帝를 마지막에 배치하여 西魏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70)『隋書』卷27「百官志」中 後齊條, 751쪽, "後齊制官, 多循後魏, ……"

71)『隋書』卷27「百官志」中 後齊條, 752-753쪽, "五兵統左中兵·右中兵·左外兵(掌河南及潼關已東諸州丁帳, 及發召徵兵等事)·右外兵(掌河北及潼關已西諸州, 所典與左外同)·都兵五曹."

72)『周書』卷1「文帝紀」上 永熙三年八月條, 13쪽, "八月, 齊神武襲陷潼關, 侵華陰. 太祖率諸軍屯霸上以待之. 齊神武留其將薛瑾守關而退. 太祖乃進軍討瑾, 虜其卒七千, 還長安, 進位丞相."

73)『北史』卷5「魏本紀·孝武帝紀」永熙三年九月己酉條, 174쪽, "九月己酉, 歡東還洛陽. 帝親督衆攻潼關, 斬其行臺薛長瑜, 又克華州."

무를 맡았던 太府寺는 左尙方·中尙方·右尙方·左藏·司染·諸冶東西道署·黃藏·右藏·細作·左校·甄官等署의 부서를 관할하였다. 이 가운데 中尙方은 別局·涇州絲局·雍州絲局·定州紬綾局 등 四局丞을 거느렸다. 司染署는 京坊·河東·信都 三局丞을 거느렸다.[74] 中尙方과 司染署의 局 가운데 涇州絲局의 涇州와 雍州絲局의 雍州, 河東局의 河東[75]은 당시 北齊의 영토가 아니었다. 특히 雍州는 西魏北周 수도 長安의 治所였다. 이러한 지명이 北齊 官制에 보이는 것은 北齊가 北魏와 東魏의 官制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北齊의 영토가 아닌 北周의 영토에 해당하는 北齊의 영토인 양 그대로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北齊는 당시의 복잡한 사정을 官制에 반영하면서도 北魏의 官制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특히 현실과 맞지 않은 北周 영토에 해당하는 관청이나 업무도 그대로 두어 北齊가 北魏의 전 영토, 즉 華北을 지배한 것처럼 분식하였다. 『隋書』「食貨志」의 北齊 화폐 서술에도 雍州靑赤라는 私鑄의 명칭[76]에 雍州가 언급되는 것도 같은 상황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北齊의 官制는 東魏시대의 官制를 계승하였고, 東魏는 北魏의 관제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右外兵曹와 中尙方, 司染署에 東魏가 지배하지 못한 潼關 서쪽, 雍州, 涇州, 河東 등의 지명이 포함되는 것은 東魏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하였

---

74) 『隋書』 卷27 「百官志」中 後齊太府寺條, 757쪽, "太府寺, 掌金帛府庫, 營造器物. 統左·中·右三尙方, 左藏·司染·諸冶東西道署·黃藏·右藏·細作·左校·甄官等署令·丞. 左尙方, 又別領別局·樂器·器作三局丞. 中尙方, 又別領別局·涇州絲局·雍州絲局·定州紬綾局四局丞. 右尙方, 又別領別局丞. 司染署, 又別領京坊·河東·信都三局丞. 諸冶東道, 又別領滏口·武安·白間三局丞. 諸冶西道, 又別領晉陽冶·泉部·大邗·原仇四局丞. 甄官署, 又別領石窟丞."

75) 河東 지역은 東魏의 영토였다. 그러나 西魏의 宇文泰는 537년(東魏 天平 4년=西魏 大統 3년) 東魏의 高歡과 沙苑에서 싸워 이긴 후(『魏書』 卷12 「孝靜紀」 天平四年十月條, 301-302쪽, "壬辰, 齊獻武王西討, 至沙苑, 不克而還. 己酉, 寶 炬行臺宮景壽·都督楊白駒寇洛州, 大都督韓延大破之. 寶炬又遣其子大行臺元季海·大都督獨孤如願逼洛州, 刺史廣陽王湛棄城退還, 季海·如願遂據金墉. 潁州長史賀若徵執刺史田迅西叛, 引寶炬都督梁回據城. 寶炬又遣其都督趙繼宗·右丞韋孝寬等攻陷豫州.") 左僕射 馮翊王 元季海와 開府 獨孤信은 步騎 2萬을 이끌고 洛陽으로, 洛州刺史 李顯은 荊州로, 賀拔勝과 李弼은 河東의 蒲坂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東魏의 牙門將 高子信은 賀拔勝의 西魏軍에게 투항하고 東魏 將 薛崇禮는 도망가다 생포되었다. 결국 西魏는 汾·絳을 평정하였다(『周書』 卷2 「文帝紀」下 條, 40쪽, "遣左僕射·馮翊王元季海爲行臺, 與開府獨孤信率步騎二萬向洛陽; 洛州刺史李顯趨荊州; 賀拔勝·李弼渡河圍蒲坂. 牙門將高子信開門納勝軍, 東魏將薛崇禮棄城走, 勝等追獲之. 太祖進軍蒲坂, 略定汾·絳."). 汾水 하류에 교두보를 마련한 이후 北周 明帝 2년(558) 河東郡에 蒲州, 河北郡에 虞州, 正平郡에 絳州, 邵郡郡에 邵州를 설치하였다(『周書』 卷4 「明帝紀」 明帝二年春正月丁巳條, 54쪽, "丁巳, 雍州置十二郡. 又於河東置蒲州, 河北置虞州, 弘農置陝州, 正平置絳州, 宜陽置熊州, 邵郡置邵州."). 北周 武帝 保定初에 玉壁에 勳州를 설치하였다(『周書』 卷31 「韋孝寬傳」, 538쪽, "保定初, 以孝寬立勳玉壁, 遂於玉壁置勳州, 仍授勳州刺史.").

76) 『隋書』 卷24 「食貨志」, 690-691쪽, "齊神武霸政之初, 承魏猶用永安五銖. 遷鄴已後, 百姓私鑄, 體制漸別, 遂各以爲名. 有雍州靑赤, 梁州生厚·緊錢·吉錢, 河陽生澀·天柱·赤牽之稱. 冀州之北, 錢皆不行, 交貿者皆以絹布. 神武帝乃收境內之銅及錢, 仍依舊文更鑄, 流之四境. 未幾之間, 漸複細薄, 奸僞競起."

다. 왜냐하면 『魏書』의 논리와 北齊 사람들의 역사관에 따르면, 孝靜帝 재위 시기는 北魏時代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지배하지 못한 지역을 관장하는 관직과 기구를 놔두는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조치였을 것이다.

## Ⅲ. 鄴 定都의 粉飾

孝武帝의 西遷과 北魏의 동서 분열의 원인은 皇帝權을 강화하려는 孝武帝와 孝武帝의 洛陽 朝廷을 통제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高歡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었다.[77] 이와 함께 高歡의 晉陽 遷都 강행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高歡은 尒朱兆를 비롯한 尒朱氏를 제거한 후 尒朱榮처럼 "戎馬之地" 晉陽에서 洛陽의 北魏朝廷을 통제하였다.[78] 高歡은 孝武帝에게 鄴 천도를 권했지만[79] 孝武帝는 반대하였다.[80] 高歡은 孝武帝가 친위세력을 확대하여 자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간파하고 孝武帝를 洛陽보다 가까운 晉陽으로 옮겨 통제하기 위해 遷都를 강행하였다. 孝武帝는 高歡과 대항하려고 계획하였으나 高歡의 공격을 받자 우군이라 여긴 宇文泰가 있는 關中으로 달아났다. 이에 高歡은 孝靜帝를 세우고 鄴城으로 천도하였다.[81] 高歡이 洛陽을 버리고 鄴으로 遷都한 것은 孝靜帝가 孝武帝처럼 關中으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洛陽이 西魏와 가까운 지리적 사정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鄴이 수도로 적합하기는 했지만,[82] 東魏北齊의 지배자 高歡과 그 후손들은 수도의 정치적 정통성을 합리화해야 했다. 다행히 鄴은 北魏初부터 정치적인 緣故가 있었다. 道武帝는 皇始 2년(397) 中山城을 점령한 다음 해인 天興元年(398) 正月 庚子日 中山에서 常山郡의 眞定縣과 趙郡의 高邑縣을 거쳐 鄴에 도착하여 백성들을 위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道武帝는 鄴을 둘러보면서 鄴에 定都할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鄴에 行臺를 설치하고 中山으로 돌아갔다.[83] 그리고 正月 辛酉日 道武帝는 中山을 출발하여 望都堯山으

77) 佐川英治, 「孝武西遷と國姓賜與-六世紀華北の民族と政治」, 『岡山大學文學部紀要』 38, 2002, 17아래쪽.

78) 『北齊書』 卷18 「司馬子如傳」, 242쪽, "高祖以晉陽戎馬之地, 霸圖攸屬, 治兵訓旅, 遙制朝權, 京臺機務, 情寄深遠."

79) 『北齊書』 卷2 「神武紀」下, 16쪽, "初, 神武自京師將北, 以爲洛陽久經喪亂, 王氣衰盡, 雖有山河之固, 土地褊狹, 不如鄴, 請遷都."

80) 『北齊書』 卷2 「神武紀」下, 16쪽, "魏帝曰: 「高祖定鼎河洛, 爲永永之基, 經營制度, 至世宗乃畢. 王旣功在社稷, 宜遵太和舊事.」"

81) 崔彦華, 「"鄴-晉陽"兩都體制與東魏北齊政治」, 『社會科學戰線』 2010-7, 2010, 242왼쪽-242오른쪽.

82) 鄴의 都城으로써의 가치는 朴漢濟, 「魏晉南北朝時代 각 왕조의 首都 선정과 그 의미-洛陽과 鄴都-」, 『歷史學報』 168, 2000 참조.

로 향했으며, 이때 山東, 즉 河北 六州의 民吏와 徒何·高句麗·雜夷 36萬을 遷徙하였다.[84] 二月에는 平城의 남쪽인 繁畤宮에 도착했으며[85] 七月에는 平城으로 遷都하였다.[86] 『魏書』의 기록에 따르면, 道武帝는 鄴을 都城으로 정할 생각이 있었음을 피력하였지만, 결국 平城을 都城으로 정하고 다시는 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87]

明元帝는 神瑞 2년(415) 鄴 천도를 신중히 고려하였다.

> "神瑞 2년 秋穀이 익지 않자, 太史令 王亮과 蘇垣이 華陰公主 등이 讒書에 '國家가 鄴을 도성으로 정하면, 50년 동안 大樂을 누릴 것이다'라는 말한 것에 근거하여 太宗[明元帝]에게 遷都를 권하였다. 崔浩와 特進 周澹은 太宗에게 '지금 국가의 鄴 遷都는 올해의 기근을 없앨 수는 있어도 長久之策은 아닙니다. 東州人들은 늘 國家가 廣漠之地에 居하며 民畜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牛毛처럼 많다고 말합니다. 지금 舊都[平城]을 留守하고 무리를 나누어 南徙한다고 해도 아마 諸州의 땅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郡縣에 參居하고 잡목이 우거진 숲 사이에 거처하면 水土에 익숙하지 않아 疾疫이 발생하여 죽거나 상하게 됩니다. [國家의 각종 나쁜] 사정이 드러나게 되면 百姓들은 국가의 무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四方[의 국가]가 이를 듣고 [우리를] 輕侮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 屈丐[赫連勃勃의 卑稱, 필자]와 蠕蠕[柔然의 卑稱, 필자]가 반드시 드러내놓고 쳐들어와 雲中과 平城은 곧 危殆하게 되고 恒代의 千里之險이 가로막아 비록 救援하고자 해도 恒代까지 가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렇게 되면 名과 實을 모두 잃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88]

崔浩는 鄴으로 遷都하면, 漢人들이 정복자인 胡族의 인구수가 적은 것을 알고 北魏를 경시할 것이며, 柔然과 赫連夏가 이를 얕잡아보아 雲中과 平城을 공격하여, 그 결과 두 지역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89] 이는 平城과 雲中 등 北魏前期 京畿지역이 북쪽

---

83) 『魏書』 卷2 太祖紀 天興元年春正月條, p.31, "天興元年春正月, 慕容德走保滑臺, [元]儀克鄴, 收其倉庫. 詔賞將士各有差. [元]儀追[慕容]德至於河, 不及而還. 庚子, 車駕自中山行幸常山之眞定, 次趙郡之高邑, 遂幸于鄴. 民有老不能自存者, 詔郡縣賑恤之. 帝至鄴, 巡登臺榭, 遍覽宮城, 將有定都之意. 置行臺, 以龍驤將軍日南公和跋爲尙書, 與左丞賈彝率郎吏及兵五千人鎭鄴. 車駕自鄴還中山, 所過存問百姓. 詔大軍所經州郡, 復貲租一年, 除山東民租賦之半."

84) 『魏書』 卷2 太祖紀 天興元年春正月條, pp.31-32, "辛酉, 車駕發自中山, 至于望都堯山. ... 車駕次于恒山之陽."

85) 『魏書』 卷2 太祖紀 天興元年春二月條, p.32, "二月, 車駕自中山幸繁畤宮, 更選屯衛."

86) 『魏書』 卷2 太祖紀 天興元年秋七月條, p.32, "秋七月, 遷都平城, 始營宮室, 建宗廟, 立社稷."

87)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63-165쪽.

88) 『魏書』 卷35 崔浩傳, 808쪽, "神瑞二年, 秋穀不登, 太史令王亮·蘇垣因華陰公主等言讖書國家當治鄴, 應大樂五十年, 勸太宗遷都. [崔]浩與特進周澹言於太宗曰, '今國家遷都於鄴, 可救今年之飢, 非長久之策也. 東州之人, 常謂國家居廣漠之地, 民畜無算, 號稱牛毛之衆. 今留守舊都, 分家南徙, 恐不滿諸州之地. 參居郡縣, 處榛林之間, 不便水土, 疾疫死傷, 情見事露, 則百姓意沮. 四方聞之, 有輕侮之意, 屈丐·蠕蠕必提挈而來, 雲中·平城則有危殆之慮, 阻隔恒代千里之險, 雖欲救援, 赴之甚難, 如此則聲實俱損矣."

89) 『魏書』 卷35 「崔浩傳」, 808, "

의 柔然 및 서쪽의 赫連夏와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즉, 北魏皇帝들이 平城일대를 벗어나면 그 힘의 공백을 틈타 柔然이나 赫連夏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北魏皇帝들은 京畿일대를 巡幸하면서 柔然과 赫連夏를 견제하고 가끔씩 이들에게 무력시위를 했던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陰山일대에 있던 鮮卑諸部가 平城주변으로 옮긴 이유는 柔然의 위협 때문이었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柔然의 위협 때문에 北魏皇帝들이 京畿의 북쪽 경계 바깥지역부터 陰山까지의 지역으로 巡幸하지 못했음을 뜻한다.[90]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明元帝는 결국 鄴 천도를 포기하였다.[91]

明元帝의 아들 太武帝와 太武帝의 손자 文成帝는 11월-2월 혹은 1월-3월 사이 山東, 그 가운데 주로 中山・信都・鄴 등 定州와 冀州, 相州의 治所를 巡幸하였다. 太武帝는 427년부터 448년까지 幽州・中山[定州]・冀州・鄴 등을 7 차례, 文成帝는 453년부터 461년까지 5 차례 巡幸하였다.[92] 특히 太武帝는 鄴과 연고가 있었다. 鄴은 太武帝의 생모 杜氏의 본적이었다.[93] 神䴥 3년 生母 杜氏(密皇太后)의 廟를 鄴에 세우도록 명령하였고[94] 太延元年 河北巡幸 때에는 鄴을 방문하여 密太后廟에 제사를 지냈다.[95] 文成帝는 461년 中山・鄴・信都 巡幸 중 巡幸 지역의 연장자들을 친히 만나보며 백성들의 疾苦를 살피고, 80세 이상 老人이 있는 집에는 한 명의 아들의 役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96] 이처럼 鄴은 太武帝와 文成帝의 河北 巡幸의 주요 방문지였다.

鄴은 孝文帝의 洛陽遷都 당시 임시로 머무르던 곳이기도 했다. 孝文帝는 太和 17년(493)에 南伐을 명분으로 步騎 100여 만을 이끌고 平城을 출발하여 幷州를 거쳐 洛陽에 이르렀다. 이때 신하들이 南伐을 만류하자 이에 洛陽에 머무르며 遷都하기로 하였다.[97]

---

90) 何德章, 「"陰山却霜"之俗解」,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12, 武漢: 武漢出版社, 1993, 103쪽.

91) 최진열, 「北魏의 地域支配方式과 그 性格-華北지역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2, 2005, 120-121쪽.

92)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172-173쪽.

93) 『北史』 卷13 「后妃上・魏・明元密皇后杜氏傳」, 493쪽, "明元密皇后杜氏, 魏郡鄴人, 陽平王超之妹也."

94) 『魏書』 卷4上 「世祖紀」上 神䴥三年九月癸卯條, 76쪽, "癸卯, 立密皇太后廟于鄴."

95) 『魏書』 卷4上 「世祖紀」上 太延元年條, 86쪽, "[冬十月]甲辰, 行幸定州, 次于新城宮. 十有一月乙丑, 行幸冀州. 己巳, 校獵于廣川. 丙子, 行幸鄴, 祀密太后廟. 諸所過, 對問高年, 褒禮賢俊."

96) 『魏書』 卷5 高宗紀 和平二年二月條, p.119, "二月辛卯, 行幸中山. 丙午, 至于鄴, 遂幸信都. 三月, 劉駿遣使朝貢. 輿駕所過, 皆親對高年, 問民疾苦. 詔民年八十以上, 一子不從役."

97) 『魏書』 卷7下 「高祖紀」下 太和十七年條, 172-173쪽, "[八月]己丑, 車駕發京師, 南伐, 步騎百餘萬. 太尉丕奏請以宮人從, 詔曰: '臨戎不語內事 宜停來請.' 壬寅, 車駕至肆州, 民年七十已上, 賜爵一級. 路見眇跛者, 停駕親問, 賜衣食終身. 戊申, 幸幷州. 親見高年, 問所疾苦. 九月壬子, 詔兼員外散騎常侍高聰・兼員外散騎侍郎賈禎使於蕭昭業. 丁巳, 詔以車駕所經, 傷民秋稼者, 畝給穀五斛. …… 庚午, 幸洛陽, 周巡故宮基趾. 帝顧謂侍臣曰: '晉德不修 早傾宗祀 荒毀至此 用傷朕懷.' 遂詠黍離之詩, 爲之流涕. 壬申, 觀洛橋, 幸太學, 觀石經. 乙亥, 鄧至王像舒彭遣子舊詣闕朝貢, 幷奉表, 求以位授舊, 詔許之. 丙子, 詔六軍發軫. 丁丑, 戎服執鞭, 御馬而出, 群臣稽顙於馬前, 請停南伐, 帝乃止. 仍定遷都之計."

이어서 金墉城에 행차하여 司空 穆亮과 尙書 李沖, 將作大匠 董爵에게 洛陽 건설을 명령하였다. 이에 滑臺의 동쪽에 壇을 설치하고 行廟에 洛陽遷都의 뜻을 고하였다. 이어 鄴城에 행차하여 鄴宮을 만들고 11월에 鄴宮이 완성되자 洛陽 건설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렀다.[98] 마지막으로 宣武帝는 景明 3년 九月 丁巳日에 鄴을 방문하였고, 戊寅日에 鄴南에서 閱武를 거행하였다.[99] 鄴은 宣武帝부터 北魏末까지 가장 멀리 간 巡幸지역이었다.

앞에서 北魏와 鄴의 緣故를 살펴보았다. 道武帝와 明元帝 시기 鄴 遷都를 고려하고 孝文帝는 洛陽遷都를 결정한 후 임시로 거주하였다. 이처럼 北魏時代 鄴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따라서 高歡이 534년 孝文帝의 西遷 이후 孝靜帝를 鄴으로 천도한 조치는 이해할 만했다.

이보다 東魏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鄴 定都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했다. 따라서 魏收는 『魏書』에서 鄴 遷都의 정당성을 기술해야 했다. 『魏書』 卷2 「太祖紀」 天興元年春正月庚子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다.

> "庚子日에 車駕는 中山에서 常山郡의 眞定縣으로 行幸한 후 趙郡의 高邑縣에 머무른 후에 드디어 鄴을 방문하였다. 늙어서 自存할 수 없는 民이 있으면 郡縣에 명령을 내려 賑恤하였다. 鄴에 이르러 臺榭에 올라 두루 宮城을 둘러보았으며, 장래에 定都의 뜻이 있었다. 行臺를 설치하고 龍驤將軍 日南公 和跋을 尙書로 삼고 左丞 賈彝와 함께 郎吏와 兵 5千 人을 거느리고 鄴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車駕는 鄴에서 中山으로 돌아왔으며 지나는 곳의 백성들의 질곡을 살폈다. 조서를 내려 大軍이 지나간 州郡에는 貲租 1년을 면제하고 山東民에게 租賦의 半을 면제하였다."(강조는 필자)[100]

위의 인용문을 보면 道武帝는 鄴의 宮城을 둘러보며 定都의 뜻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문 "將有定都之意"는 道武帝의 말을 직접화법도 아니었고 『魏書』의 다른 기록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鄴의 定都에 관심이 있었다던 道武帝는 오히려

---

98) 『魏書』 卷7下 「高祖紀」下 太和十七年條, 173쪽, "冬十月戊寅朔, 幸金墉城. 詔徵司空穆亮與尙書李沖·將作大匠董爵經始洛京. 己卯, 幸河南城. 乙酉, 幸豫州. 癸巳, 次於石濟. 乙未, 解嚴, 設壇於滑臺城東, 告行廟以遷都之意. 大赦天下. 起滑臺宮. 又詔京師及諸州從戎者賜爵一級, 應募者加二級, 主將加三級. 癸卯, 幸鄴城. 乙巳, 詔安定王休率從官迎家於代京, 車駕送於漳水上. 初, 帝之南伐也, 起宮殿於鄴西; 十有一月癸亥, 宮成, 徙御焉."

99) 『魏書』 卷8 世宗紀 景明三年九月條, pp.194-195, "九月丁巳, 車駕行幸鄴. …… 戊寅, 閱武於鄴南. 帝親射 遠及一里五十步 羣臣勒銘於射所."

100) 『魏書』 卷2 太祖紀 天興元年春正月條, 31쪽, "天興元年春正月, 慕容德走保滑臺, [元]儀克鄴, 收其倉庫. 詔賞將士各有差. [元]儀追[慕容]德至於河, 不及而還. 庚子, 車駕自中山行幸常山之眞定, 次趙郡之高邑, 遂幸于鄴. 民有老不能自存者, 詔郡縣賑恤之. 帝至鄴, 巡登臺榭, 遍覽宮城, 將有定都之意. 置行臺, 以龍驤將軍日南公和跋爲尙書, 與左丞賈彝率郎吏及兵五千人鎭鄴. 車駕自鄴還中山, 所過存問百姓. 詔大軍所經州郡, 復貲租一年, 除山東民租賦之半."

죽을 때까지 河北을 다시 巡幸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요 관심은 漠南의 유목민집단과 漠北에 웅거한 柔然의 동향이었다. 따라서 道武帝는 당연히 鄴을 巡幸하지도, 定都하지도 않았다.[101] 明元帝가 神瑞 2년(415) 기근으로 鄴 천도를 신중히 검토했을 때, 崔浩가 반대주장을 관철시킨 예를 보면[102] 鄴이 수도로 고려된 적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생모의 고향이었던 연고 때문에 密太后廟를 세우고 직접 제사지냈던 太武帝도 河北巡幸 때 鄴을 방문하였지만 특별히 중시하지 않았다.

또 鄴 定都에 대한 道武帝의 뜻이 자손들에게 중시된 것도 아니었다. 흉년 때문에 鄴 遷都를 고려했던 明元帝를 제외하면 遷都를 계획했던 孝文帝는 長安과 鄴이 아닌 洛陽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將有定都之意"라는 구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구절이 道武帝의 실제 의중이라기보다 北魏가 東魏와 西魏로 분열된 후 東魏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魏收, 혹은 高歡政權에서 삽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鄴 遷都의지를 기술한 문장 자체가 직접화법이 아닌 간접화법이고, 이후 道武帝의 동선에 鄴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孝文帝가 定都한 洛陽을 버린 것도[103] 鄴의 정통성 粉飾이 더욱 필요한 이유였다.

게다가 北魏의 마지막 황제 孝武帝(『魏書』의 出帝)가 長安으로 도망친 상황에서 東魏 北齊를 세운 高歡集團이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은 궁색했다. 孝武帝가 高歡과 대립하다가 宇文泰가 있던 長安으로 西遷한 이후 洛陽과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西魏에 호응하였다. 元洪威가 潁州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潁州民 趙繼宗은 潁川太守 邵招를 살해하고 元洪威에 호응하였다. 堯雄이 趙繼宗을 쫓아내자 城人들은 王長을 刺史로 추대하고 西魏를 끌어 들였지만 堯雄과 侯景에게 진압되었다.[104] 또 天平(534-537) 末에 潁川人 張儉이 西魏와 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다.[105] 『北齊書』에서는 이러한 반란을 평정했다는 기록만 있지만, 『周書』에서는 西魏北周로 넘어온 사람들의 기록이 산견된다. 東魏北

101)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163-165쪽.

102) 『魏書』 卷35 崔浩傳, 808쪽.

103) 洛陽은 北魏의 수도였지만, 北魏가 동서로 분열되자 洛陽은 西魏와 가깝고 四戰之地이며 방어할 험한 지형이 없었다. 따라서 東魏는 洛陽을 수도로 정할 수 없었다. 또 洛陽은 西魏를 막는 군사거점으로 적합하지 않았다(牟發松, 「東魏北齊的地方行臺」,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9·10, 1988, 102쪽). 이처럼 당시 洛陽은 전략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수도로 둘 수 없었다.

104) 『北齊書』 卷20 「堯雄傳」, 268쪽, "魏武帝入關, 雄爲大都督, 隨高昂破賀拔勝於穰城. 周旋征討三荊, 仍除二豫·揚·郢四州都督, 豫州刺史. 元洪威據潁州叛, 民趙繼宗殺潁川太守邵招, 據樂口, 自稱豫州刺史, 北應洪威. 雄率衆討之, 繼宗敗走. 民因雄之出, 遂推城人王長爲刺史, 據州引西魏. 雄復與行臺侯景討平之."

105) 『北齊書』 卷20 「斛律羌擧傳」, 266쪽, "天平末, 潁川人張儉聚衆反叛, 西通關右, 羌擧隨都督侯景·高昂等討破之."

齊의 영토인 梁郡 下邑縣 사람인 李彦은 534년 孝武帝를 따라 入關하였다.[106] 東魏에서 벼슬한 高賓은 大統 6년(540) 가족을 버리고 西魏로 귀순하였다.[107] 西魏로 귀순한 李延孫은 특히 孝武帝 西遷 이후 西魏로 망명한 廣陵王 元欣, 長孫熾, 潁川王 元斌之, 安昌王 元子均, 建寧·江夏·隴東 諸王 등 北魏 皇室과 관료들과 그 가족들을 西魏로 갈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 호위하였다.[108]

특히 大統 3년(537)은 東魏에서 西魏로 대거 망명한 사람들이 많았던 해였다. 이 해에 西魏의 宇文泰가 沙苑에서 싸워 東魏軍을 대파하였다.[109] 宇文泰는 패주하는 東魏軍을 공격하며 洛陽까지 진격하였다. 裴果는 東魏가 沙苑에서 패하자 宗黨을 이끌고 西魏에 항복하였다.[110] 孝武帝 西遷 때 司馬裔는 鄴에서 향리(河內)로 돌아갔던 司馬裔는[111] 大統 3년(537) 西魏軍이 弘農 점령하자 溫縣에서 西魏에 귀의하였다.[112] 5년 후인 大統 8년(542) 司馬裔의 同鄕인 河內 4천여 家가 歸附하였고 司馬裔는 河內郡守 겸임하며 流民을 安集하였다.[113] 이때 獨孤信이 洛陽을 점령하자 東魏 賀若統이 潁川을 가지고 항복하였다. 東魏 堯雄·趙育·是雲寶 등이 2만을 거느리고 공격하자 宇文貴는 洛陽에서 步騎 2천 거느리고 구원하고 東魏軍을 격파하였다.[114] 洛陽 서쪽의 滎陽郡 사람인 鄭偉는 친족을 설득하여 鄭榮業과 함께 州里 규합하여 陳留에서 기병하였다. 그리고 梁州를 점령하고 刺史 鹿永吉과 令狐德, 陳留太守 趙季和를 생포하여 西魏軍에 항복하였다. 이 영향으

106) 『周書』 卷37 「李彦傳」, 665쪽, "李彦字彦士, 梁郡下邑人也. …… 從魏孝武入關, 兼著作佐郎, 修起居注."

107) 『周書』 卷37 「高賓傳」, 670쪽, "仕東魏, 歷官至龍驤將軍·諫議大夫·立義都督. 同列有忌其能者, 譖之於齊神武. 賓懼及於難, 大統六年, 乃棄家屬, 間行歸闕. 太祖嘉之, 授安東將軍·銀青光祿大夫."

108) 『周書』 卷43 「李延孫傳」, 774쪽, "自魏孝武西遷之後, 朝士流亡. 廣陵王欣·錄尙書長孫稚·潁川王斌之·安昌王子均及建寧·江夏·隴東諸王並百官等攜持妻子來投延孫者, 延孫卽率衆衛送, 並贈以珍玩, 咸達關中. 齊神武深患之, 遣行臺慕容紹宗等數道攻之. 延孫奬勵所部出戰, 遂大破之, 臨陣斬其揚州刺史薛喜."

109) 『周書』 卷2 「文帝紀」下 大統三年冬十月條, 24쪽, "癸巳旦, 候騎告齊神武軍且至. 太祖召諸將謀之. 李弼曰: '彼衆我寡, 不可平地置陣. 此東十里有渭曲, 可先據以待之.' 遂進軍至渭曲, 背水東西爲陣. 李弼爲右拒, 趙貴爲左拒. 命將士皆偃戈於葭蘆中, 聞鼓聲而起. 申時, 齊神武至, 望太祖軍少, 競馳而進, 不爲行列, 總萃於左軍. 兵將交, 太祖鳴鼓, 士皆奮起. 于謹等六軍與之合戰, 李弼等率鐵騎橫擊之, 絶其軍爲二隊, 大破之, 斬六千餘級, 臨陣降者二萬餘人. 齊神武夜遁, 追至河上, 復大克獲. 前後虜其卒七萬. 留其甲士二萬, 餘悉縱歸."

110) 『周書』 卷36 「裴果傳」, 647쪽, "及齊神武敗於沙苑, 果乃率其宗黨歸闕. 太祖嘉之, 賜田宅·奴婢·牛馬·衣服·什物等."

111) 『周書』 卷36 「司馬裔傳」, 645쪽, "及魏孝武西遷, 裔時在鄴, 潛歸鄕里, 志在立功."

112) 『周書』 卷36 「司馬裔傳」, 645쪽, "大統三年, 大軍復弘農, 乃於溫城起義, 遣使送款."

113) 『周書』 卷36 「司馬裔傳」, 645쪽, "頃之, 河內有四千餘家歸附, 並裔之鄕舊, 乃授前將軍·太中大夫, 領河內郡守, 令安集流民."

114) 『周書』 卷19 「宇文貴傳」, 312쪽, "三年, 進車騎大將軍·儀同三司. 與獨孤信入洛陽. 東魏潁州(刺)[長]史賀若統據潁川來降, 東魏遣其將堯雄·趙育·是雲寶率衆二萬攻潁. 貴自洛陽率步騎二千救之, 軍次陽翟. …… 明旦合戰, 俘斬甚多. 祥軍旣敗, 是雲寶亦降. 師還."

로 梁陳之間 지역이 西魏에 항복하였다.[115] 潁川에 거주했던 崔彦穆은[116] 孝武帝 西遷 때 따라가지 않았으나 大統 3년(537) 형 崔彦珍과 함께 成皐에서 기병하여 滎陽을 점령하고 東魏의 군수 蘇淑을 사로잡고 東魏의 刺史 李景遺를 죽였다.[117] 汝潁 지역에 거주했던 劉志는[118] 永熙 3년(534) 孝武帝 西遷 때 長安으로 가지 않았지만 長安에 표를 올려 내응하였다.[119] 그러던 중 大統 3년(537) 獨孤信이 洛陽을 점령할 때 廣州를 바쳐 西魏에 항복하였다.[120] 이때 趙肅도 宗人을 이끌고 西魏軍의 향도가 되어 특히 糧儲를 감독하여 軍用이 부족하지 않게 하였다. 宇文泰는 군량 보급을 잘한 趙肅을 洛陽主人이라고 칭찬하였다.[121] 宇文泰의 말에서 獨孤信의 군대에 공급하는 糧儲는 趙肅이 洛陽 주변 지역에서 징발하여 보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122] 또 柳虯는 陽城에, 裴諏는 潁川에 은거하다가 大統 3년(537) 獨孤信에 辟召되어 西魏에서 벼슬하였다.[123]

이처럼 서쪽 변방에 살던 사람들이 西魏로 도망가거나 항복한 가장 큰 이유는 孝武帝의 西遷 이후 西魏가 정통성을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東魏치하의 일부 지배층과 백성들이 西魏를 정통으로 여기고 西魏로 도망가거나 도망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東魏의 정통성 부각이 더욱 절실했다. 東魏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屬人主義(孝武帝의 향방)가 아니라 東魏北齊가 北魏의 주요 영토를 계승하였다는 屬地主義였다. 東魏가 全魏之墟를 지배하고 있다는『魏書』「天象志」의 구절[124]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115)『周書』 卷36「鄭偉傳」, 634쪽, "大統三年, 河內公獨孤信旣復洛陽, 偉乃謂其親族曰: '今嗣主中興鼎業, 據有崤·函. 河內公親董衆軍, 克復瀍·洛, 率土之內, 孰不延首望風. 況吾等世荷朝恩, 家傳忠義, 誠宜以此時效臣子之節, 成富貴之資. 豈可碌碌爲懦夫之事也!' 於是與宗人榮業, 糾合州里, 建義於陳留. 信宿間, 衆有萬餘人. 遂攻拔梁州, 擒東魏刺史鹿永吉及鎭城令狐德, 並獲陳留郡守趙季和. 乃率衆來附. 因是梁·陳之間, 相次降款."

116)『周書』 卷36「崔彦穆傳」, 640쪽, "崔彦穆字彦穆, 淸河東武城人也, 魏司空·安陽侯林之九世孫. 曾祖顗, 魏平東府諮議. 祖蔚, 遭從兄司徒浩之難, 南奔江左. 仕宋爲給事黃門侍郎, 汝南·義陽二郡守. 延興初, 復歸於魏, 拜潁川郡守, 因家焉. 後終於郢州刺史. 父稚, 篤志經史, 不以世事嬰心."

117)『周書』 卷36「崔彦穆傳」, 640쪽, "魏孝武西遷, 彦穆時不得從. 大統三年, 乃與兄彦珍於成皐擧義, 因攻拔滎陽, 擒東魏郡守蘇淑. 仍與鄕郡王元洪威攻潁川, 斬其刺史李景(道)[遺]."

118)『周書』 卷36「裴果傳附劉志傳」, 648-649쪽, "志, 弘農華陰人, 本名思, 漢太尉寬之十世孫也. 高祖隆, 宋武帝平姚泓, 以宗室首望, 召拜馮翊郡守. 後屬赫連氏入寇, 避地河洛, 因家於汝潁. 祖善, 魏(大)[天]安中, 擧秀才, 拜中書博士. 後至弘農郡守·北雍州刺史. 父瑰, 汝南郡守, 贈徐州刺史."

119)『周書』 卷36「裴果傳附劉志傳」, 649쪽, "三年, 齊神武擧兵入洛, 魏孝武西遷. 志據城不從東魏, 潛遣間使, 奉表長安."

120)『周書』 卷36「裴果傳附劉志傳」, 649쪽, "大統三年, 太祖遣領軍將軍獨孤信復洛陽. 志糾合義徒, 擧廣州歸國. 拜大丞相府墨曹參軍, 封華陰縣男, 邑二百戶."

121)『周書』 卷37「趙肅傳」, 663쪽, "大統三年, 獨孤信東討, 肅率宗人爲鄕導. 授司州治中, 轉別駕. 監督糧儲, 軍用不匱. 太祖聞之, 謂人曰: '趙肅可謂洛陽主人也.'"

122) 張文華·蘇小華,「西魏北周的財政與政治」,『求索』2006-11, 2006, 205왼쪽-205오른쪽.

123)『周書』 卷38「柳虯傳」, 680쪽, "大統三年, 馮翊王元季海·領軍獨孤信鎭洛陽. 於時舊京荒廢, 人物罕極, 唯有虯在陽城, 裴諏在潁川. 信等乃俱征之, 以虯爲行臺郎中, 諏爲都督府屬, 並掌文翰."

124)『魏書』 卷105之4「天象志」4, 2450쪽, "是時兩主立, 而東帝得全魏之墟, 於天官爲正."

만든 장치였다. 그러나 北魏 영토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지배하고 代遷戶와 舊六鎭民 다수를 장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였다. 영토의 계승뿐만 아니라 수도 鄴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해야 했다. 따라서 神元皇帝의 廟號를 太祖로 정하여 실질적인 창업군주로 정한 西魏와는 달리[125] 東魏北齊의 수도 鄴이 孝文帝의 廟號 개혁[126]으로 北魏의 창업군주가 된 道武帝가 수도로 낙점했었다는 "將有定都之意"라는 구절의 삽입은 東魏가 北魏의 '창업군주'[127]인 太祖 道武帝의 권위를 빌어 北魏를 정신적으로 계승했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Ⅳ.『魏書』와 北齊의 정통성

### 1. 高歡의 행적과 文宣帝 禪讓 미화

曹丕가 後漢 獻帝로부터 禪讓을 받아 즉위한 후 北宋의 건국까지 禪讓은 왕조교체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十六國·北朝時代는 달랐다. 서로의 攻滅이 점철하여 禪讓은 東魏에서 北齊로, 西魏에서 北周를 거쳐 隋로 이어진 단 세 차례밖에 없었다. 東魏에서 北齊로의 왕조교체는 十六國·北朝時代 최초의 禪讓이었다. 따라서『魏書』를 편찬할 때 이에 주의해야 했다. 禪讓으로 왕조 교체가 될 때 역사기술의 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史書는 陳壽의『三國志』였다.[128] 魏收는『三國志』의 體例를 따라『魏書』편찬 때 이용하였다. 北魏와 東魏의 신하였지만 실질적인 창업자였던 高歡을 이름대신 '齊獻武王'으로, 高歡의 아들 高澄을 '齊文襄王'으로 표기하였다. 또 高歡의 지배를 벗어나 關中으로 西遷한 孝武帝를 '出帝'로 폄하하였다. 그리고 西魏의 군주를 '寶炬'처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宇文泰를 胡語 이름인 '宇文黑獺'로 표기하였다. 十六國·北朝時代의 胡人 이름과 병기된 字는 胡語 이름인 경우가 많았다.『周書』「文帝紀」에 따르면 宇文泰의 字는 黑獺이었다.[129] 따라서『魏書』에서는 宇文泰의 胡語 이름인 '宇文黑獺'로 표기하였다.

---

125)『北史』卷5「魏本紀·西魏文帝紀」大統二年冬十一月條, 176쪽, "冬十一月, 追改始祖神元皇帝爲太祖, 道武皇帝爲烈祖."

126)『魏書』卷 181「禮志」1, 2747-2748쪽, "[太和十四年(490)四月] 詔曰:「祖有功 宗有德 自非功德厚者 不得擅祖宗之名 居二祧之廟. …… 烈祖有創基之功 世祖有開拓之德 宜爲祖宗 百世不遷. 而遠祖平文功未多於昭成 然廟號爲太祖; 道武建業之勳 高於平文 廟號爲烈祖. 比功校德 以爲未允. 朕今奉尊道武爲太祖 與顯祖爲二祧 餘者以次而遷.」";『魏書』卷 7下 高祖紀 太和十五年秋七月條, p. 168, "己卯 詔議祖宗 以道武爲太祖."

127) 이는 序紀時代와 北魏를 별개의 나라로 보고 道武帝를 北魏의 첫 번째 皇帝로 간주하는『魏書』의 논리에 따를 때 가능한 표현이다. 拓跋部人들은 神元皇帝 力微를 자신의 始祖로 간주하였다.

128) 趙翼,『廿二史箚記』(王樹民 校證,『廿二史箚記校證』, 中華書局, 1984) 卷6「三國志書法」및「三國志多迴護」, 121-125쪽.

129)『周書』卷1「文帝紀」上, 1쪽, "太祖文皇帝姓宇文氏, 諱泰, 字黑獺, 代武川人也."

이는 일종의 蔑稱이었다.

무엇보다 『魏書』에서는 北齊의 실질적인 창업군주 高歡을 미화해야 했다. 『北史』 卷6 「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와 『北齊書』 卷1 「神武紀」의 冒頭에는 高歡과 선조의 이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齊 高祖 神武皇帝의 姓은 高氏이고, 諱는 歡이며, 字는 賀六渾, 勃海[郡] 蓨[縣]사람이다. 六世祖 隱은 晉 玄菟太守였다. 隱은 慶을 낳고, 慶은 泰를 낳았으며, 泰는 湖를 낳았다. 三世[高隱・高慶・高泰]는 慕容氏에 벼슬하였다. 慕容寶가 敗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高湖는 무리를 이끌고 魏에 귀순하여 右將軍에 임명되었다. 湖는 네 아들을 낳았다. 第三子 謐은 魏에 벼슬하여 侍御史에 이르렀으나 法을 어기고 죄를 지어 懷朔鎭으로 徙居하였다. 謐은 皇考 樹生을 낳았다. 樹生은 성격이 通率하여 家業에 종사하지 않고 白道의 남쪽에 住居하였다. 여러차례 赤光紫氣의 기이함이 있어서 이웃 사람들이 이를 괴상히 여겼고 樹生에게 徙居를 권하여 피하고자 하였다. 皇考는 '어찌 그것이 길하지 않다고 하겠는가?'라고 말하며 평소대로 살았다. 神武가 태어나고 皇妣 韓氏가 죽자 同産 姊壻인 鎭獄隊 尉景의 집에서 양육되었다. 神武는 이미 여러 세대 北邊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습속에 익숙해져서 드디어 [습속이] 鮮卑와 같게 되었다."(강조는 필자)[130]

高歡의 세계를 보면 그의 선조는 유명한 渤海高氏이며, 懷朔鎭에 徙居하여 鮮卑人들과 오래 살다가 鮮卑의 습속에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혈연적으로는 漢人이지만 문화적으로는 鮮卑의 胡俗에 동화되어 高歡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술하였다. 高歡은 鮮卑語를 사용하였고,[131] 그의 아들 文宣帝는 漢人 李氏와 사이에서 낳은 高殷이 漢家性質을 지녀 자기와 달라 廢太子하였던 것으로 보아 鮮卑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132]

선행연구에서는 高歡의 家系와 種族에 대해 史書의 高歡의 가계가 위조되었고 高歡의 선조가 鮮卑人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133]과 胡化된 漢人이라는 주장,[134] 高句麗人이라는

---

130) 『北史』 卷6 「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09쪽, "齊高祖神武皇帝姓高氏, 諱歡, 字賀六渾, 勃海蓨人也. 六世祖隱, 晉玄菟太守. 隱生慶, 慶生泰, 泰生湖, 三世仕慕容氏. 及慕容寶敗, 國亂, 湖率衆歸魏, 爲右將軍. 湖生四子. 第三子謐, 仕魏, 位至侍御史, 坐法徙居懷朔鎭. 謐生皇考樹生, 性通率, 不事家業, 住居白道南, 數有赤光紫氣之異, 隣人以爲怪, 勸徙居以避之. 皇考曰: '安知非吉?'居之自若. 及神武生而皇妣韓氏殂, 養於同産姊壻鎭獄隊尉景家. 神武旣累世北邊, 故習其俗, 遂同鮮卑."; 『北齊書』 卷1 「神武紀」上, 1쪽, "神武旣累世北邊, 故習其俗, 遂同鮮卑."

131) 『北齊書』 卷21 「高乾傳附昂傳」, 295쪽, "于時, 鮮卑共輕中華朝士, 唯憚服於昂. 高祖每申令三軍, 常鮮卑語, 昂若在列, 則爲華言. 昂嘗詣相府, 掌門者不納, 昂怒, 引弓射之. 高祖知而不責."

132) 『北史』 卷7 「齊本紀中・廢帝紀」, 263쪽, "文宣每言'太子得漢家性質, 不似我', 欲廢之, 立太原王."; 『北齊書』 卷5 「廢帝紀」, 73쪽.

133) 姚薇元, 「北朝帝室氏族考」, 『說文月刊』 1944-6, 1944; 同氏, 『北朝胡姓考』, 北京: 科學出版社, 1958, 135-136쪽; 濱口重國, 「高齊出自考-高歡の制覇と河北の豪族高乾兄弟の活躍-」, 『秦漢隋唐史の硏究』 下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0(原載 『歷史雜誌』 49-7・8, 1938), 685-736쪽; 王仲犖, 『魏晉南北朝史』 下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581-582쪽; 呂春盛, 『北齊政治

주장,[135] 史書의 가계를 믿을 수 있다는 주장[136]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었다. 高歡의 家系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魏收가 『魏書』에서 高歡의 家系를 정교하게 세탁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가운데 어떤 주장이 옳건 간에 위의 인용문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高歡이 鮮卑人의 습속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高歡을 유서깊은 渤海高氏의 후손으로 분식하여 鮮卑的 속성을 탈색시킬 필요가 있었다. 『魏書』 卷2 「太祖紀」에는 "十二月 甲午日에 慕容盛의 征虜將軍 燕郡太守 高湖가 戶 2千을 거느리고 內屬하였다."[137]고 特記하였다. 北魏의 道武帝가 後燕의 河北을 점령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거나 귀순했다. 이 가운데 本紀에 高湖의 귀순을 特記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魏書』 卷32 「高湖傳」에서는 高湖를 漢 太傅 裒의 후손이라고 기록하였고, 祖 慶은 後燕의 司空, 父 泰는 吏部尙書를 역임했다고 기록하여,[138] 대대로 정치적으로 현달한 가문임을 밝혔다. 그리고 『北史』와 『北齊書』의 기록과는 달리 『魏書』에는 高湖의 셋째 아들 高密이 懷朔鎭으로 徙居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139] 魏收가 자신이 섬기던 文宣帝 선조의 단점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文宣帝를 의식한 조치였다. 이는 高歡의 祖父라는 高密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魏書』에 따르면, 高歡의 父 高樹生은 六鎭의 난 때 大都督에 임명되어 北魏軍에 종군하였다.[140] 그러나 高歡이 懷朔鎭의 동향

---

史硏究-北齊衰亡原因之考察-」, 臺北: 臺灣大學出版委員會, 1987, 299쪽. 특히 姚薇元은 高歡의 선조가 是樓氏라고 보았다.

134) 韓國磐, 『魏晉南北朝史綱』, 北京: 人民出版社, 1983, 495쪽; 周一良, 「北朝的民族問題旅民族政策」, 『周一良集』 第一卷(魏晉南北朝史論), 瀋陽: 遼陽敎育出版社, 1998(原載 『燕京學報』 39, 1949), 159쪽; 毛漢光, 「北魏東魏北齊之核心集團與核心區」, 『中國中古政治史論』,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2(原載 『中央硏究院歷史硏究所集刊』 57-2, 1985), 95-96쪽

135) 繆鉞, 「東魏北齊政治上漢人與鮮卑之衝突」, 『讀史存稿』, 北京: 三聯書店, 1963, 93쪽; 陳連慶, 『中國古代少數民族姓氏硏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160쪽.

136) 李培棟, 「高歡族屬家世辨疑」, 『魏晉南北朝史緣』, 上海: 學林出版社, 1996; 張金龍, 「高歡家世族屬眞僞考辨」, 『文史哲』 2011-1(總第322期), 2011, 47-67쪽.

137) 『魏書』 卷2 「太祖紀」 天興二年十二月甲午條, 36쪽, "十有二月甲午, 慕容盛征虜將軍·燕郡太守高湖, 率戶三千內屬."

138) 『魏書』 卷32 「高湖傳」, 751쪽, "高湖, 字大淵, 勃海蓨人也. 漢太傅裒之後. 祖慶, 慕容垂司空. 父泰, 吏部尙書."

139) 『魏書』 卷32 「高湖傳附謐傳」, 752쪽, "第三子謐, 字安平, 有文武才度. 天安中, 以功臣子召入禁中, 除中散, 專典秘閣. 肅勤不倦, 高宗深重之, 拜祕書郎. 謐以墳典殘缺, 奏請廣訪羣書, 大加繕寫. 由是代京圖籍, 莫不審正. 顯祖之御寧光宮也, 謐恒侍講讀, 拜蘭臺御史. 尋轉治書, 掌攝內外, 彈糾非法, 當官而行, 無所畏避, 甚見稱賞. 延興二年九月卒, 時年四十五. 太昌初, 追贈使持節·侍中·都督靑徐齊濟兗五州諸軍事·驃騎大將軍·太尉公, 靑州刺史, 謚武貞公. 妻叔孫氏, 陳留郡君."

140) 『魏書』 卷32 「高湖傳附樹生傳」, 752쪽, "長子樹生. 性通達, 重節義, 交結英雄, 不事生産, 有識者並宗奇之. 蠕蠕侵掠, 高祖詔懷朔鎭將陽平王頤率衆討之, 頤假樹生鎭遠將軍·都將, 先驅

인 尉景・段榮・蔡儁과 함께 杜洛周의 반란에 참여했다가 후에 葛榮에 투신했던 이력을 보면[141] 사실로 보기 어렵다. 高歡의 적수인 宇文泰의 예와 비교해보자. 宇文泰의 父 宇文肱은 破六韓拔陵의 난을 진압하는 편에 섰고 후에 六鎭降戶를 河北으로 遷徙할 때 河北으로 이주한 후 鮮于脩禮의 진영에 가담하였다.[142] 이때 宇文泰는 아버지와 행동을 함께하였고, 이는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143] 賀拔勝의 아버지 拔拔度拔은 六鎭의 난 당시 懷朔鎭將 楊鈞 휘하 統軍에 임명되었고 賀拔勝도 함께 참전하였다. 그후 武川鎭과 懷朔鎭이 함락되자 賀拔勝부자는 포로가 되었다. 후에 賀拔度拔・賀拔勝은 宇文肱・輿珍・念賢・乙弗庫根・尉遲眞檀과 모의하여 衛可孤를 살해하였다.[144] 宇文肱・宇文泰 부자와 賀拔度拔・賀拔勝 부자가 六鎭의 난 당시 함께 행동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六鎭民들은 氏族 사이에 정치적 견해와 행동이 달랐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부자 사이에는 함께 행동했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高歡은 반란군에 가담한 반면 高歡의 아버지 高樹生은 北魏軍에 종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魏書』에서는 高歡의 아버지 高樹生이 반란군 편에 것을 숨기고 오히려 반대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

有功. 樹生尙氣俠, 意在浮沉自適, 不願職位, 辭不受賞, 論者高之. 居宅數有赤光紫氣之異, 鄰伍驚恐, 僉謂怪變, 宅不可居. 樹生曰: '何往非善.' 安之自若. 雅好音律, 常以絲竹自娛. 孝昌初, 北州大亂, 詔發衆軍, 廣開募賞. 以樹生有威略, 授以大都督, 令率勁勇, 鎭捍舊蕃. 二年卒, 時年五十五."

141) 『北史』 卷6 「齊本紀」上 高祖神武帝紀, 210쪽, "孝昌元年, 柔玄鎭人杜洛周反於上谷, 神武乃與同志從之. 醜其行事, 私與尉景・段榮・蔡儁圖之, 不果而逃, 爲其騎所追. 文襄及魏永熙后皆幼, 武明后於牛上抱負之. 文襄屢落牛, 神武彎弓將射之以決去, 后呼榮求救, 賴榮透下取之以免. 遂奔葛榮, 又亡歸尒朱榮於秀容."

142) 『周書』 卷1 「文帝紀」上, 2쪽, "肱任有有氣幹. 正光末, 沃野鎭人破六汗拔陵作亂, 遠近多應之. 其僞署王衛可孤徒黨最盛, 肱乃糾合鄕里斬可孤, 其衆乃散. 後避地中山, 遂陷於鮮于修禮. 修禮令肱還統其部衆. 後爲定州軍所破, 歿於陣. 武成初, 追尊曰德皇帝."

143) 『周書』 卷1 「文帝紀」上, 2쪽, "少隨德皇帝在鮮于修禮軍. 及葛榮殺修禮, 太祖時年十八, 榮遂任以將帥. 太祖知其無成, 與諸兄謀欲逃避, 計未行, 會爾朱榮擒葛榮, 定河北, 太祖隨例遷晉陽. 榮以太祖兄弟雄傑, 懼或異己, 遂託以他罪, 誅太祖第三兄洛生, 復欲害太祖. 太祖自理家冤, 辭旨慷慨, 榮感而免之, 益加敬待."

144) 『周書』 卷14 「賀拔勝傳」, 215-216쪽, "父度拔, 性果毅, 爲武川軍主. 魏正光末, 沃野鎭人破六汗拔陵反, 南侵城邑. 懷朔鎭將楊鈞聞度拔名, 召補統軍, 配以一旅. 其賊僞署王衛可孤徒黨尤盛, 旣圍武川, 又攻懷朔. 勝少有志操, 善騎射, 北邊莫不推其膽略. 時亦爲軍主, 從度拔鎭守. 旣圍經年, 而外援不至, 勝乃慷慨白楊鈞曰: '城圍蹙迫, 事等倒懸, 請告急於大軍, 乞師爲援.' 鈞許之. 乃募勇敢少年十餘騎, 夜伺隙潰圍而出. 賊追及之. 勝曰: '我賀拔破胡也.' 賊不敢逼. 至朔州, 白臨淮王元彧曰: '懷朔被圍, 旦夕淪陷, 士女延首, 企望官軍. 大王帝室藩維, 與國休戚, 受任征討, 理宜唯敵是求, 今乃頓 兵不進, 猶豫不決. 懷朔若陷, 則武川隨亦危矣. 逆賊因茲, 銳氣百倍, 雖有韓・白之勇, 良・平之謀, 亦不能爲大王用也.' 彧以勝辭義懇至, 許以出師, 還令報命. 勝復突圍而入, 賊追之, 射殺數人. 至城下, 大呼曰: '賀拔破胡與官軍至矣.' 城中乃開門納之. 鈞復遣勝出覘武川, 而武川已陷, 勝乃馳還. 懷朔亦潰, 勝父子遂爲賊所虜. 後隨度拔與德皇帝合謀, 率州里豪傑輿珍・念賢・乙弗庫根・尉遲眞檀等, 招集義勇, 襲殺可孤."

또『魏書』에는 北齊 文宣帝의 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魏書』卷105之4「天象志」4 武定八年條에는 禪讓과 관련된 점괘가 있었다.

> "[武定] 8년(550) 三月 甲午日에 歲·鎭·太白은 虛에 있었다. 虛는 齊의 分野이니 이는 王位가 흔들리고 行이 끊기는 驚立絶行의 궤이니, 王公을 改立하였다. 熒惑은 또 따라서 들어오니 四星이 熒惑에 모여들었다. 五月 丙寅日에 帝는 齊에 禪位하였다. 이해는 西主 大統 16년이었다. 이때 兩主가 즉위하였으나 東帝는 全魏之墟를 얻었고 天官에서도 정통이었다. 옛날에 宋武[帝]가 北伐할 때, 四星이 奎에 모였고, 서쪽으로 秦[後秦]을 정벌할 때 四星이 井에 모였다. 四星이 參에 모이자 勃海[王 高歡이] 처음으로 霸業을 달성하였고 四星이 危에 모이자 文宣[帝]가 帝位를 이어받았다. 이로써 말하면, 帝王之業에는 징험이 있다."[145]

위의 기사는 천문현상과 北齊 文宣帝의 禪讓을 결합한 기사이다.『漢書』卷26「天文志」에서는 三星이 모이는 현상을 驚立絶行이라 하며 나라의 내외에 兵이나 喪이 있어서 백성들이 궁핍하고 굶주리며 王公을 改立한다고 설명하였다.[146] 歲·鎭·太白 三星이 모인 천문현상을 驚立絶行이라 하며 禪讓의 징조로 본 것이다. 즉『魏書』卷105之4「天象志」4 武定八年條에서는 東魏가 北魏의 영토를 계승하고 天文學의 점괘로도 정통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文宣帝의 禪讓도 하늘의 뜻에 따라 행해졌음을 역설하였다. 즉 魏收는 天人感應說에 기반하여 천문학의 현상을 北齊의 禪讓과 결부시켜 정통성을 지닌 東魏를 계승한 北齊와 文宣帝가 정통성이 있다고 粉飾한 것이다.

사실 北齊 文宣帝가 北魏 孝靜帝의 禪讓을 받아 즉위하기 전 十六國과 北魏의 교체과정에서 禪讓은 거의 없었다. 왕조 혹은 국가의 교체는 전쟁과 정복으로 진행되었다. 東晉南朝의 禪讓 사례를 참고했겠지만, 十六國·北朝時代 최초의 禪讓의식을 거행하고 이를『魏書』에 반영하는 것은 南朝史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쉽게 보이지만 北齊의 관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위의 인용문은 天人相關說에 입각하여 文宣帝의 禪讓과 즉위를 天文현상으로 粉飾한 점에서 중요한 글이었다.

## 2. 反高歡派의 폄하

『魏書』에서는 高歡 일족의 과오를 숨김과 동시에 高歡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

---

145)『魏書』卷105之4「天象志」4, 2449-2450쪽, "[武定]八年三月甲午, 歲·鎭·太白在虛. 虛, 齊分, 是爲驚立絶行, 改立王公. 熒惑又從而入之, 四星聚焉. 五月丙寅, 帝禪位於齊. 是歲, 西主大統十六年也. 是時兩主立, 而東帝得全魏之墟, 於天官爲正. 昔宋武北伐, 四星聚奎; 及西伐秦, 四星聚井; 四星聚參而勃海始霸; 四星聚危而文宣受終. 由是言之, 帝王之業其有徵矣."

146)『漢書』卷26「天文志」, 1287쪽, "三星若合, 是謂驚立絶行, 其國外內有兵與喪, 民人乏飢, 改立王公."

다.『魏書』卷105之1「天象志」1 永熙三年四月癸丑條에는

> "[永熙] 3년(533) 四月 癸丑日에 日蝕이 있었다. 占에는 '天子를 어지럽히고 죽인 자("有亂殺天子者")가 있었다. 七月 丁未日에 出帝는 斛斯椿 등의 협박과 위협을 받아 드디어 長安으로 나갔다."[147]

라고 하였다. 원문의 "有亂殺天子者"는 점괘 뒤의 기록을 보면 斛斯椿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 孝武帝가 長安으로 西遷한 것은 斛斯椿의 협박과 위협이라기보다 皇帝權의 복원을 시도하고[148] 太原(晉陽) 천도에 반대하여 高歡과 대항했으나 이기기 어렵게 되자 도망간 것이다.[149] 따라서 孝武帝 西遷의 직접적인 책임은 高歡에게 있었다. 그러나『魏書』卷80「斛斯椿傳」에서도 위의 인용문처럼 斛斯椿이 高歡의 군대와 싸우다 패하자 出帝(孝武帝)를 협박해 入關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斛斯椿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斛斯]椿은 간사하고 꾀가 많아 많은 사건을 만들어 내며 亂을 좋아하고 禍를 즐겨 시세를 반하고 나라를 해쳤으니 朝野에서 그를 원수처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150]

『魏書』에서는 高歡에 대항하고 北魏를 동서로 분열시킨 斛斯椿을 악평하였다. 그러나 西魏北周의 歷史觀을 계승한『北史』를 보면 斛斯椿은 孝武帝의 명령을 받아 入關하였고 尙書令과 司徒, 太保, 太傅 등 고관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의 초상에 皇帝가 직접 문상하고 장지까지 따라가 통곡할 정도로 대접을 받았다.[151] 西魏北周의 입장에서는 정통성

---

147)『魏書』卷105之1「天象志」1, 2343-2344쪽, "[永熙]三年四月癸丑, 日有蝕之. 占曰'有亂殺天子者'. 七月丁未, 出帝爲斛斯椿等迫脅, 遂出於長安."

148) 孝武帝의 호위부대 증강과 高歡 공격 등 皇帝權 강화를 주도한 인물은 곡사춘이었다(『魏書』卷80「斛斯椿傳」, 1774쪽, "椿自以數爲反覆, 見寧等之死, 意常不安. 遂密構間, 勸出帝置閤內都督部曲, 又增武直人數, 自直閤已下員別數百, 皆選天下輕剽者以充之. 又說帝數出遊幸, 號令部曲, 別爲行陳, 椿自約勒, 指麾其間. 從此以後, 軍謀朝政, 一決於椿. 又勸帝徵兵, 詭稱南討, 將以伐齊獻武王, 帝從之.").

149) 崔彦華,「"鄴-晉陽"兩都體制與東魏北齊政治」,『社會科學戰線』2010-7, 2010, 242왼쪽-242오른쪽.

150)『魏書』卷80「斛斯椿傳」, 1774쪽, "又勸帝徵兵, 詭稱南討, 將以伐齊獻武王, 帝從之. 遂陳兵城西, 北接邙山, 南至洛水, 帝詰旦戎服與椿臨閱焉. 獻武王以椿亂政, 欲誅之. 椿譖說旣行, 因此遂相恐動. 出帝勒兵河橋, 令椿爲前軍, 營於邙山北. 尋遣椿率步騎數千鎭虎牢. 椿弟豫州刺史元壽與都督賈顯智守滑臺, 獻武王令相州刺史竇泰擊破之. 椿懼己不免, 復啓出帝, 假說遊聲以劫脅. 帝信之, 遂入關, 椿亦西走長安. 椿狡猾多事, 好亂樂禍, 干時敗國, 朝野莫不讎疾之."

151)『北史』卷49「斛斯椿傳」, 1787쪽, "帝勒兵河橋, 命椿自洛而東, 至武牢. 帝以賈顯智背叛, 東師失律, 將幸關中, 乃遣使命椿, 因從入關. 拜尙書令, 侍中如故, 封常山郡公. 歷位司徒·太保, 仍尙書令. 時寇難未息, 內外戒嚴, 唯椿得列威儀, 鳴騶淸路. 遷太傅, 薨, 年四十三. 帝親臨弔, 百僚赴哭. 詔賜東園

의 근거인 孝武帝의 西遷을 이끈 공신이었지만, 東魏北齊의 입장에서 斛斯椿은 배신자이자 동서 분열의 원흉이었다. 따라서『魏書』「天象志」와「斛斯椿傳」에서는 斛斯椿의 악행을 부각시켜야 했다.

"有亂殺天子者"은 외형상 斛斯椿에 해당하지만 宇文泰를 은유하기도 하였다. 孝武帝는 長安으로 西遷한 그해 十二月에 사망하였다.『魏書』「孝靜紀」에서는 宇文黑獺(宇文泰)이 出帝(孝武帝)를 살해하고 南陽王 寶炬를 옹립했다고 기록하였다.[152]『周書』卷1「文帝紀」上 永熙三年閏十二月條에서는 孝武帝가 붕어하니 宇文泰가 南陽王 寶炬를 옹립했다고 기록하였다.[153] 이 기사를 보면 宇文泰와 孝武帝의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北史』卷5「魏本紀・孝武帝紀」永熙三年條에서는 宇文泰가 孝武帝를 鴆殺했음을 암시한 기록을 남겼다.[154]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孝武帝를 실제로 살해한 사람은 宇文泰였기 때문에 "有亂殺天子者"에 해당하는 실제 인물은 宇文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西魏北周의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한 斛斯椿과 宇文泰를 비판한 것이었다.

『魏書』의 宇文泰 비판은 宇文泰 선조의 계보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1>은『周書』와『魏書』의 宇文泰 선조 계보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을 보면『周書』「文帝紀」上과『魏書』「匈奴宇文莫槐傳」의 계보가 다르다. <그림 1>『周書』「文帝紀」上의 系譜에서 알 수 있듯이『周書』「文帝紀」上에서는 宇文泰의 직계 조상이 慕容皝에게 망한 侯豆歸라고 하였다. 그리고 侯豆歸의 9世祖를 陰山에서 遼西로 이주한 莫那라고 기록하였다.[155] 그리고 莫那 이전에 鮮卑 12部落을 지배하며 대대로 大人이 되었다고 밝혔다.[156]『魏書』「匈奴宇文莫槐傳」에서는 宇文氏가 南單于의 먼

---

祕器, 遣尙書・梁郡王景略監護喪事. 贈大將軍・錄尙書・三十州諸軍事・侍中・恒州刺史・常山郡王, 諡曰文宣, 祭以太牢. 又詔改大將軍, 贈大司馬, 給輼輬車. 及葬, 車駕臨於渭陽, 止紼慟哭."

152)『魏書』卷12「孝靜紀」天平元年十二月丙子條, 298쪽, "閏月, 蕭衍以元慶和爲鎭北將軍・魏王, 入據平瀨鄉. 宇文黑獺旣害出帝, 乃以南陽王寶炬僭尊號."

153)『周書』卷1「文帝紀」上 永熙三年閏十二月條, 13쪽, "閏十二月, 魏孝武帝崩. 太祖與羣公定策, 尊立魏南陽王寶炬爲嗣, 是爲文皇帝."

154)『北史』卷5「魏本紀・孝武帝紀」永熙三年條, 174쪽, "帝之在洛也, 從妹不嫁者三: 一曰平原公主明月, 南陽王同産也; 二曰安德公主, 淸河王懌女也; 三曰蔡蔡, 亦封公主. 帝內宴, 令諸婦人詠詩, 或詠鮑照樂府曰: '朱門九重門九閨, 願逐明月入君懷.' 帝旣以明月入關, 蔡蔡自縊. 宇文泰使元氏諸王取明月殺之. 帝不悅, 或時彎弓, 或時推案, 君臣由此不安平. 閏十二月癸巳, 潘彌奏言: '今日當甚有急兵.' 其夜, 帝在逍遙園宴阿至羅, 顧侍臣曰: '此處彷彿華林園, 使人聊增悽怨.' 命取所乘波斯騧馬, 使南陽王躍之, 將攀鞍, 蹶而死, 帝惡之. 日晏還宮, 至後門, 馬驚不前, 鞭打入. 謂潘彌曰: '今日幸無他不?' 彌曰: '過夜半則大吉.' 須臾, 帝飮酒, 遇酖而崩, 時年二十五. 諡曰孝武. 殯於草堂佛寺, 十餘年乃葬雲陵. 始宣武・孝明間謠曰: '狐非狐, 貉非貉, 焦梨狗子齧斷索.' 識者以爲索謂本索髮, 焦梨狗子指宇文泰, 俗謂之黑獺也."

155)『周書』卷1「文帝紀」上, 1쪽, "普回子莫那, 自陰山南徙, 始居遼西, 是曰獻侯, 爲魏舅生之國. 九世至侯豆歸, 爲慕容晃所滅. 其子陵仕燕, 拜駙馬都尉, 封玄菟公. 魏道武將攻中山, 陵從慕容寶禦之. 寶敗, 陵率甲騎五百歸魏, 拜都牧主, 賜爵安定侯. 天興初, 徙豪傑於代都, 陵隨例遷武川焉. 陵生系, 系生韜, 並以武略稱. 韜生肱."

親屬으로 대대로 東部大人이 되었고 普撥에서 乞得龜까지 宇文部 首長의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기록하였다.[157] 그러나 別部人 逸豆歸이 乞得龜를 죽이고 宇文部를 장악했으나, 昭成帝(什翼犍) 建國 8년 慕容皝에게 패해 宇文部가 망했다고 기록하였다.[158]

<그림 1>『周書』와『魏書』의 宇文泰 조상 계보[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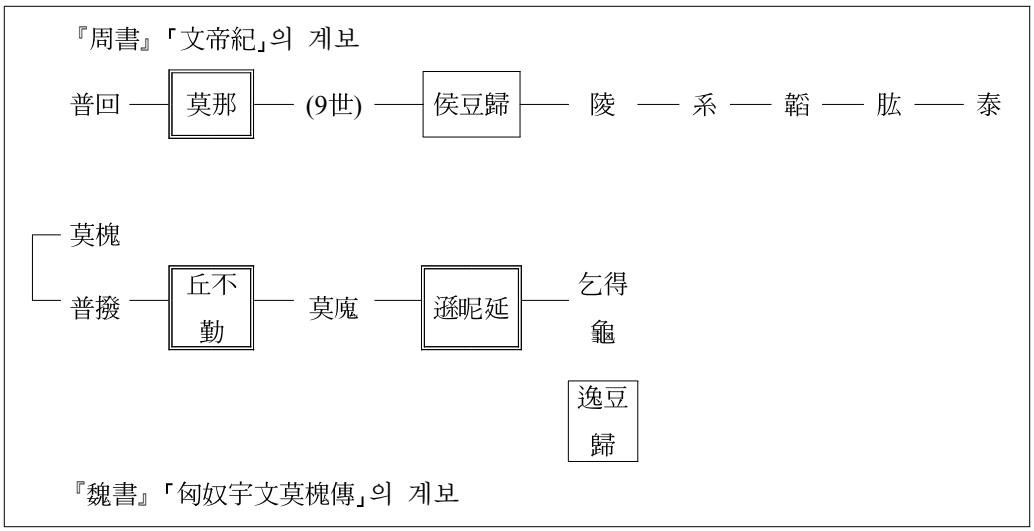


【범례】 ▣ : 拓跋部와 통혼한 인물 □ : 宇文部 멸망 당시 首長

156)『周書』 卷1「文帝紀」上, 1쪽, "其先出自炎帝神農氏, 爲黃帝所滅, 子孫遯居朔野. 有葛烏菟者, 雄武多算略, 鮮卑慕之, 奉以爲主, 遂總十二部落, 世爲大人. 其後曰普回, 因狩得玉璽三紐, 有文曰皇帝璽, 普回心異之, 以爲天授. 其俗謂天 曰宇, 謂君曰文, 因號宇文國, 幷以爲氏焉."

157)『魏書』 卷103「匈奴宇文莫槐傳」, 2304-2305쪽, "匈奴宇文莫槐, 出於遼東塞外, 其先南單于遠屬也, 世爲東部大人. …… 莫槐虐用其民, 爲部人所殺, 更立其弟普撥爲大人. 普撥死, 子丘不勤立, 尙平文女. 丘不勤死, 子莫廆立, 本名犯太祖諱. 莫廆遣弟屈雲攻慕容廆, 廆擊破之; 又遣別部素延伐慕容廆於棘城, 復爲慕容廆所破. 時莫廆部衆强盛, 自稱單于, 塞外諸部咸畏憚之. 莫廆死, 子逐昵延立, 率衆攻慕容廆於棘城. 廆子翰先戍於外, 逐昵延謂其衆曰: '翰素果勇, 必爲人患, 宜先取之, 城不足憂也.' 乃分騎數千襲翰. 翰聞之, 使人詐爲段末波使者, 逆謂逐昵延曰: '翰數爲吾患, 久思除之, 今聞來討, 甚善, 戒嚴相待, 宜兼路早赴.' 翰設伏待之, 逐昵延以爲信然, 長驅不備, 至於伏所, 爲翰所虜. 翰馳使告廆, 乘勝遂進, 及晨而至. 廆亦盡銳應之. 逐昵延見而方嚴, 率衆逆戰, 前鋒始交, 而翰已入其營, 縱火燎之, 衆乃大潰, 逐昵延單馬奔還, 悉俘其衆. 逐昵延父子世雄漠北, 又先得玉璽三紐, 自言爲天所相, 每自跨大. 及此敗也, 乃卑辭厚幣, 遣使朝獻于昭帝, 帝嘉之, 以女妻焉. 逐昵延死, 子乞得龜立, 復伐慕容廆, 廆拒之. 惠帝三年, 乞得龜屯保澆水, 固壘不戰, 遣其兄悉跋堆襲廆子仁于栢林, 仁逆擊, 斬悉跋堆. 廆又攻乞得龜克之, 乞得龜單騎夜奔, 悉虜其衆. 乘勝長驅, 入其國城, 收資財億計, 徙部民數萬戶以歸. 先是, 海出大龜, 枯死於平郭, 至是而乞得龜敗."

158)『魏書』 卷103「匈奴宇文莫槐傳」, 2305쪽, "別部人逸豆歸殺乞得龜而自立, 與慕容晃相攻擊, 遣其國相莫渾伐晃, 而莫渾荒酒縱獵, 爲晃所破, 死者萬餘人. 建國八年, 晃伐逸豆歸, 逸豆歸拒之, 爲晃所敗, 殺其驍將涉亦干. 逸豆歸遠遁漠北, 遂奔高麗. 晃徙其部衆五千餘落於昌黎, 自此散滅矣."

159)『周書』의 宇文泰 계보는『周書』 卷1「文帝紀」上, 1-2쪽,『魏書』「匈奴宇文莫槐傳」의 계보는『魏書』 卷103「匈奴宇文莫槐傳」, 2304-2305쪽의 기록을 토대로 만들었다.

<그림 1>에서 慕容部의 慕容皝에게 망한 宇文部의 마지막 首長 이름 테두리를 둘러(□) 다른 首長과 구별하였다.『周書』「文帝紀」上에는 宇文部의 마지막 首長 이름을 侯豆歸,『魏書』「匈奴宇文莫槐傳」에서는 逸豆歸라고 기록하였다. 侯豆歸와 逸豆歸는 동일인인가? 아니면 다른 인물인가?『晉書』「康帝紀」 建元二年二月條에는 慕容皝에게 망한 宇文部의 首長을 宇文歸라고 기록하였다.[160]『晉書』「石季龍載記」上에서는 鎭北將軍 宇文歸가 段遼의 아들 蘭을 사로잡아 石季龍(石虎)에게 항복했다고 기록하였다.[161]『資治通鑑』에서는 같은 기사에서 宇文歸가 아닌 宇文逸豆歸라고 표기하였다.[162] 이 네 史書의 표기를 비교하면『周書』「文帝紀」上의 侯豆歸와『魏書』「匈奴宇文莫槐傳」의 逸豆歸는 동일인이며,『晉書』에서는 '侯豆歸'와 '逸豆歸'의 '歸'字만을 따서 宇文歸로 약칭했음을 알 수 있다.『資治通鑑』은 이 가운데『魏書』「匈奴宇文莫槐傳」의 표기를 따랐다.

<그림 1>에서 보듯이『魏書』「匈奴宇文莫槐傳」에서는 逸豆歸의 후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侯豆歸와 逸豆歸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宇文泰도 逸豆歸, 즉 侯豆歸의 후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周書』「文帝紀」上에서는 宇文部의 亡主 侯豆歸의 父와 祖 등 가까운 선조의 이름과 世系는 생략하고 9世祖 莫那를 언급하였다. 그러나『魏書』「匈奴宇文莫槐傳」에서는 莫槐의 4世孫 乞得龜가 혈연관계가 불분명한 '別部人' 逸豆歸에게 宇文部의 지배권을 빼앗기고 살해되었다고 기록하였다.[163] 수장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은 유목민 집단에서는 흔한 일이지만,『魏書』를 쓴 北齊시대의 魏收나『周書』를 쓴 唐代의 令狐德棻을 대표로 한 史官은 漢人이었음을 상기하자. 魏收가 방계 혹은 宇文部 首長과 혈연관계가 불명확한 逸豆歸의 찬탈을 기록한데 비해 令狐德棻 등 唐代 史官들은 이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왕조는 바뀌었으나, 宇文氏를 비롯한 武川鎭 군벌 혹은 關隴集團이 西魏北周・隋・唐의 지배층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서술 태도의 차이를 보면 魏收의 기록이 直書에 가깝다.『資治通鑑』에서는 宇文乞得歸(『魏書』「匈奴宇文莫槐傳」의 乞得龜)가 東部大人 逸豆歸에게 쫓겨나 죽었다고 기록하였다.[164] 北宋시대 편찬된『資治通鑑』의 저자 司馬光은 소위 '正史' 이외의 다양한 史書를 섭렵하였고 이를『資治通鑑』에 실었다. 따라서『資治通鑑』은 正史類에 없는 사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예처럼 서로 어긋나는 기록이 있을 경우 남아 있는 史書를 바탕으로

160)『晉書』 卷7「康帝紀」 建元二年二月條, 186쪽, "二月, 慕容皝及鮮卑帥宇文歸戰于昌黎, 歸衆大敗, 奔于漠北."

161)『晉書』 卷106「石季龍載記」上, 2774쪽, "鎭北宇文歸執送段遼之子蘭降于季龍, 獻駿馬萬匹."

162)『資治通鑑』 卷97「晉紀」19 康帝建元元年條, 3056쪽, "宇文逸豆歸執段遼弟蘭, 送於趙, 幷獻駿馬萬匹. 趙王虎命蘭帥所從鮮卑五千人屯令支."

163)『魏書』 卷103「匈奴宇文莫槐傳」, 2305쪽, "別部人逸豆歸殺乞得龜而自立, ……"

164)『資治通鑑』 卷95「晉紀」17 成帝咸和八年條, 2987쪽, "宇文乞得歸爲其東部太人逸豆歸所逐, 走死于外."

판단하여 취사선택하였다. 따라서『資治通鑑』이『魏書』「匈奴宇文莫槐傳」과 비슷한 기록을 남긴 것은『魏書』의 기록이 맞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魏書』「匈奴宇文莫槐傳」은 北齊 文宣帝의 父 高歡과 경쟁관계였던 宇文泰의 단점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효율적인 장치였다. 먼저 宇文泰가 五胡十六國時代 慕容部·段部와 경쟁하던 宇文部 首長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음을 암시함으로써 宇文泰의 신성성과 정통성에 먹칠을 했다. 그리고 宇文泰의 선조 逸豆歸(侯豆歸)가 首長 乞得龜(乞得歸)를 제거하고 宇文部의 首長이 되었음을 기록하여 不忠하였음을 直書하였다. 漢字로 씌여진『魏書』의 독자층인 儒學者와 漢人官僚, 漢字를 읽을 수 있는 일부 胡人에게 이러한 논리구조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또「匈奴宇文莫槐傳」이 실린『魏書』卷103에는「蠕蠕(柔然)傳」,「高車傳」,「徒何段就六眷傳」등이 실려 있다.『魏書』卷103에 열거된 柔然, 宇文部, 段部, 高車, 吐突隣部, 紇突隣部, 侯呂隣部, 薛干部, 破多蘭部, 黜弗部, 素古延部, 越勒倍泥部는 존속시기와 국력의 강약 등이 상이하고 同卷에 수록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 집단 대부분의 공통점은 일부 존재한다. 柔然은 北魏初부터 숙적이었고 공격을 주고받았고 나라가 분열하였지만, 北魏보다 오래 존속하였다. 柔然이 突厥에 망한 후 東魏北齊는 柔然의 잔존 세력을 격파하고 柔然人과 가축을 노획하였다.[165] 高車의 일부는 北魏初 北魏에 복속하였고, 柔然에 복속했던 일부의 高車는 東魏에 항복하였다.[166] 吐突隣部, 紇突隣部, 侯呂隣部, 破多蘭部, 黜弗部, 素古延部는 道武帝, 越勒倍泥部는 明元帝, 薛干部는 太武帝 시기에 北魏에 복속하였다.[167] 다만 宇文莫槐의 宇文部와 段就六眷의 段部는 北魏에 직접 복속되지 않았고 慕容部에 병합되었다.[168] 바꿔말하면『魏書』卷103는 북방의 유목민 집단이라는 이유와 함께 宇文部와 段部를 제외하면 北魏와 東魏에 멸망하거나 복속했던 공통점이 있다. 따

165) 崔珍烈,「東魏北齊의 華北 지배와 그 한계」,『東洋史學研究』125, 2013, ???쪽.

166)『魏書』「高車傳」은 高車를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전반부에 언급되는 狄氏·袁紇氏·斛律氏·解批氏·護骨氏·異奇斤氏 등은 道武帝-太武帝시기 北魏에 복속되었다. 반면 柔然에 복속했던 泣伏利氏·吐盧氏·乙旃氏·大連氏·窟賀氏·達薄干氏·阿崙氏·莫允氏·俟分氏·副伏羅氏·乞袁氏·右叔沛氏 등 十二姓은 독립하였으나 嚈噠에게 패한 후 다시 柔然에 패해 일부가 東魏에 항복하였다(『魏書』卷103「高車傳」, 2307-2312쪽).

167)『魏書』卷103「高車傳附吐突隣部·紇突隣部·侯呂隣部·薛干部·破多蘭部·黜弗部·素古延部·越勒倍泥部傳」, 2312-2314쪽.

168)『魏書』卷103「匈奴宇文莫槐傳」, 2305쪽, "別部人逸豆歸殺乞得龜而自立, 與慕容晃相攻擊, 遣其國相莫渾伐晃, 而莫渾荒酒縱獵, 爲晃所破, 死者萬餘人. 建國八年, 晃伐逸豆歸, 逸豆歸拒之, 爲晃所敗, 殺其驍將涉亦干. 逸豆歸遠遁漠北, 遂奔高麗. 晃徙其部衆五千餘落於昌黎, 自此散滅矣."; 『魏書』卷103「徒何段就六眷傳」, 2305-2306쪽, "末波自稱幽州刺史, 屯遼西. 末波死, 國人立日陸眷弟護遼爲主, 烈帝時, 假護遼 驃騎大將軍·幽州刺史·大單于·北平公, 弟鬱蘭撫軍將軍·冀州刺史·勃海公. 建國元年, 石虎征護遼於遼西, 護遼奔平岡山, 遂投慕容晃, 晃殺之. 鬱蘭奔石虎, 以所徙鮮卑五千人配之, 使屯令支. 鬱蘭死, 子龕代之. 及冉閔之亂, 龕率衆南移, 遂據齊地. 慕容儁使弟玄 恭帥衆伐龕於廣固, 執龕送之薊, 儁毒其目而殺之, 坑其徒三千餘人."

라서 魏收가 「匈奴宇文莫槐傳」을 『魏書』 卷103에 실은 것은 宇文部의 亡主 逸豆歸(侯豆歸)의 후손인 宇文泰가 세운 西魏北周가 결국 東魏北齊에 정복될 것이라는 願望 때문이었을 것이다.

## 맺음말

본문에서는 『魏書』가 東魏北齊의 정통성을 粉飾하는 논리와 장치를 살펴보았다.

1章에서는 北魏를 東晉·十六國·南北朝時代 정통왕조로 분식하는 논리를 살펴보았다. 拓跋部의 선조를 黃帝의 후손으로 기록하는 系譜의 조작, 受命, 중국식 國號의 제정 등은 北魏를 中原王朝로 분식하는 방법이었다. 여기에 孝文帝 시기의 行次 변경, 즉 土德에서 水德으로 바꾸어 北魏가 西晉을 계승했음을 천명하였다. <표 1>의 『魏書』 卷95-99 列傳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魏書』는 漢族의 시각에서 정통성을 지닌 東晉南朝와 十六國을 섞어서 배치함으로써 정통성을 희석시켰다. 예컨대 東晉과 成漢을 同卷에 배치한 것은 東晉이 長江 상류를 지배하는 成漢처럼 長江 중하류를 지배하는 지방정권임을 암시하였다. 또 東晉을 僭晉, 東晉의 창업군주 元帝(司馬睿)를 사생아로 기록한 것은 西晉과 東晉의 혈연적 계승을 부정하기 위한 복선이었다.

2章에서는 『魏書』에서 東魏의 역사를 北魏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北魏史의 일부임을 강조하는 장치를 살펴보았다. 魏收는 『魏書』를 집필할 때 東魏를 北魏와 별개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동일한 나라, 즉 東魏 孝靜帝 시기를 北魏史의 일부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本紀뿐만 아니라 列傳과 志에도 적용되었다. 『魏書』 「地形志」에 東魏시대의 州郡縣과 戶口를 기재하고 지배하지 못한 西魏의 강역인 關隴과 河西回廊 지역을 배치한 것은 北魏와 東魏가 별개의 왕조가 아니라 동일한 나라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다. 北魏의 관제를 이어받은 東魏와 北齊의 官制에서 潼關 以西, 雍州, 涇州, 河東 등 西魏北周의 영토를 관장하는 관직과 기구를 유지한 것도 北魏와의 계승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3章에서는 東魏北齊의 수도 鄴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魏收는 『魏書』 「太祖紀」의 皇始 2년(397) 道武帝의 鄴 방문 기사에 "將有定都之意"라는 구절을 삽입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는 屬地主義의 시각에서 東魏北齊가 北魏의 뒤를 계승했음을 粉飾한 것이다.

4章에서는 『魏書』에서 北齊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東魏를 北魏의 일부로 인식하고 西魏를 僭僞의 국가로 기술하였으며, 高歡의 家系를 粉飾하고 천문현상을 빌려 高歡의 尒朱氏 토벌과 孝武帝의 西遷, 文宣帝의 禪讓을 정당화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 宇文泰가

孝武帝를 살해한 사실을 直書하고 宇文泰의 선조가 宇文部의 찬탈자이자 亡主임을 부각시켜 宇文泰를 흠집내었다.

요컨대 北齊 文宣帝를 섬겼던 魏收는 文宣帝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魏書』에 北齊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구절과 기사, 史實 등을 배치하였다. 北齊 文宣帝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유일한 正統王朝 北魏=東魏"를 계승한 국가가 北齊임을 입증하는 것이『魏書』 편찬 목적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魏書』 편찬 의도는 가려지고 門閥 사이의 紛爭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다.『北史』와『北齊書』의「魏收傳」에서는『魏書』가 穢史라는 증거로 당시 권력자 楊愔과 高德政에 영합하기 위해 佳傳을 짓고 당시 門閥이었던 范陽盧氏(盧斐와 盧思道), 頓丘李氏(李庶), 太原王氏(王松年)의 반발을 사고 인척 博陵崔氏(崔綽)을 옹호하는 등 사심과 자기와의 親疏 여부, 정치적 이해를 반영했음을 지적하였다.[169] 이러한 비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宣帝가『魏書』의 반포를 강행한 것은 魏收의『魏書』가 北齊의 정통성 확립과 아버지 高歡의 褒貶, 宇文泰 정권의 비하 등 北齊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西魏北周는『魏書』의 정통성 粉飾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 2> 北魏의 시대구분 및 歷史像[170]

<table>
<tr><td>사 건</td><td colspan="2">代公책봉</td><td>'北魏건국'<br>(河北점령)</td><td>廟號改稱<br>洛陽遷都</td><td colspan="2">북위멸망<br>(東西魏분열)</td></tr>
<tr><td>연 대</td><td colspan="2">312년</td><td>398</td><td>491・494년</td><td colspan="2">534년</td></tr>
<tr><td>(가) 현재의<br>시대구분</td><td colspan="2">序紀시대=代國시대<br>(拓跋部부족연합체)</td><td colspan="3">北魏</td><td>東魏<br>西魏</td></tr>
<tr><td>(나)『魏書』의<br>역사관</td><td colspan="2">序紀시대=代國시대<br>(拓跋部부족연합체)</td><td colspan="4">北魏(正統王朝)</td><td>北齊</td></tr>
<tr><td>(다) 西魏北周의<br>역사관</td><td colspan="6">序紀시대=代=北魏</td><td>北周</td></tr>
</table>

169)『北史』 卷56「魏收傳」, 2031-2032쪽, "時論旣言收著史不平, 文宣詔收於尙書省與諸家子孫共加論討. 前後投訴, 百有餘人, 云遺其家世職位; 或云其家不見記錄; 或云妄有非毁. 收皆隨狀答之. 范陽盧斐父同附出族祖玄傳下; 頓丘李庶家傳, 稱其本是梁國蒙人. 斐・庶譏議, 云史書不直. 收性急, 不勝其憤, 啓誣其欲加屠害. 帝大怒, 親自詰責. 斐曰: '臣父仕魏, 位至儀同, 功業顯著, 名聞天下, 與收無親, 遂不立傳. 博陵崔綽, 位至本郡功曹, 更無事迹, 是收外親, 乃爲傳首.' …… 時太原王松年亦謗史, 及斐・庶並獲罪, 各被鞭配甲坊, 或因以致死. 盧思道亦抵罪. 然猶以羣口沸騰, 敕魏史且勿施行, 令羣官博議. 聽有家事者入署, 不實者陳牒. 於是衆口諠然, 號爲'穢史', 投牒者相次, 收無以抗之. 時左僕射楊愔・右僕射高德正二人勢傾朝野, 與收皆親. 收遂爲其家並作傳, 二人不欲言史不實, 抑塞訴辭, 終文宣世, 更不重論."

170) 崔珍烈,「雲崗石窟 曇曜五窟 五帝의 재해석-廟號와 國號로 본 北魏의 정체성-」,『中央아시아硏究』 10, 2005, 9쪽 <표 2> 北魏의 시대구분 및 歷史像을 수정.

<그림 2>에서 (나)가 『魏書』가 粉飾한 東魏北齊의 정통성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면 (다)는 西魏北周의 歷史觀이다. 西魏는 北魏의 마지막 군주 孝武帝가 長安으로 西遷하여 屬人主義의 측면에서 정통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宇文泰가 곧바로 孝武帝를 살해하고 孝武帝의 후손이 아닌 다른 皇族을 皇帝로 옹립하여 스스로 屬人主義의 정통성을 없앴다. 그리고 西魏北周는 北魏의 역사서를 편찬하지 못했다. 대신 宇文泰는 西魏文帝 冬十一月에 始祖 神元皇帝에게 太祖, 道武皇帝에게 烈祖라는 廟號로 변경하였다.[171] 孝文帝가 太祖를 平文帝에서 道武帝로 바꾼 것은 道武帝가 中原王朝를 개창한 공적을 평가하고 代國時代와 선을 그으려고 한 것이었다. 이것에 대하여 宇文泰는 代國의 시조였던 神元帝를 太祖로 삼아 南郊에서 제사지내게 함으로써 西魏가 拓跋部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왕조였음을 천명하였다.[172] 이는 孝文帝가 실시한 胡姓의 漢姓 改稱을 뒤엎고 大統 15년(549) 五月 己巳日에 代人의 옛 胡姓을 회복하는 조치[173]에서도 확인된다. 이어서 西魏 恭帝元年(554)에 戰功의 高下에 따라 諸將과 軍人을 각각 三十六國과 九十九姓의 후예로 삼았다.[174] 이러한 과정을 보면 宇文泰와 西魏北周는 廟號 변경, 胡姓의 복귀, 胡姓 사여 등 史書의 편찬이 아니라 武川鎭출신을 비롯하여 잡다한 세력에게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西魏北周를 계승한 隋唐時代, 특히 唐初 편찬된 『北史』에서는 東魏와 西魏를 구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孝武帝 이후 北魏가 東魏와 西魏로 분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 拓跋部=代와 北魏를 구분하는 『魏書』의 시각과 東魏와 西魏를 구분하는 『北史』의 형식이 현재까지 채택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시각에서 『魏書』를 보면 文宣帝의 의도가 아닌 漢人門閥들의 분쟁만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

171) 『北史』 卷5「魏本紀・西魏文帝紀」 大統二年冬十一月條, 176쪽, "冬十一月, 追改始祖神元皇帝爲太祖, 道武皇帝爲烈祖."

172) 佐川英治, 「孝武西遷と國姓賜與-六世紀華北の民族と政治」, 『岡山大學文學部紀要』 38, 2002, 19아래쪽.

173) 『北史』 卷5「魏本紀第五・西魏文帝紀」 大統十五年五月己巳條, 180쪽, "初詔諸代人太和中改姓者, 並令復舊."

174) 『周書』 卷2「文帝紀」下 恭帝元年條, 36쪽, "魏氏之初, 統國三十六, 大姓九十九, 後多絶滅. 至是, 以諸將功高者爲三十六國後, 次功者爲九十九姓後, 所統軍人, 亦改從其姓."

# 宋·元 시기 '檢驗지식'의 형성과 발전

## — 『洗冤集錄』과 『無冤錄』을 중심으로 —

최 해 별(이화여대)

목 차

머리말
Ⅰ. "更曆" 중시에서 「考試程式」을 근간으로
Ⅱ. 『洗冤集錄』과 『無冤錄』의 死因 분류
Ⅲ. "今古驗法"의 異同 - 他物·手足·刃物로 인한 인명사건을 중심으로
맺음말

## 머리말

송(960-1279)·원(1271-1368) 시기는 중국 역사상 검험 제도가 완전하게 정비되는 시기로 인명 사건이 발생하면 검험을 하게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 현장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관들도 검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남송 淳祐 7년(1247) 湖南提點刑獄을 맡고 있던 宋慈(1186-1249)의 『洗冤集錄』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판되었다.[1] 아울러 원대에 이르면 杭州路의 鹽官州 提控案牘을 맡았던 王與(1261-1346)가 『洗冤集錄』등에 기초하여 至大 元年(1308)(혹은 至元元年 (1335)에『無冤錄』을 저술하였다.[2] 『세원집록』과 『무원록』은 당시 수사를 담당하는

1) 지금 전해지는『洗冤集錄』의 판본으로는 북경대학도서관 소장의 원대 판각된 『宋提刑洗冤集錄』이 있으며, 통행본은 『宋提刑洗冤集錄』(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1985)이 있다. 이 외에 高隨捷, 祝林森 등은 元刊本을 저본으로 『洗冤集錄譯註』(상해고적출판사, 2008)를 출판하였다. 본 논문의 원문은 이 역주본을 근거로 하였다. 이외에, 羅時潤, 田一民의 『洗冤集錄今譯』(福建科學技術出版社, 2006) 등이 있지만 역주에 오류가 많다.

2) 『無冤錄』의 판본은 沈家本이 수집한『枕碧樓叢書』의 판본이 가장 완정하다고 전해지며, 이는 조선에서 필사된 『무원록』필사본이다. (余德芹, 吳志剛, 「略述王與的《無冤錄》」, 『貴州民族學院學報』 2009-3, 136쪽) 통행본으로는 楊奉琨의 『無冤錄校注』(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등이 참고할 만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에서 『신주무원록』을 편찬했을 때 『무원록』원문의 내용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기에 이를 근거로 하였다.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2012, 사계절. 『무원록』의 편찬 시기에 관해서는 楊奉琨, 「元代大法醫學家王與生平著述考略」(『浙江學刊』 1985-2, 119, 121쪽) 참조.

지방관들이 검험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검험 '참고서'로서, 검험관련 법규, 검험의 행정 절차, 사체 처리와 검험 내용 및 死因 판별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두 저서는 송·원 시기의 사법 현장에서 검험을 직접 장관했던 지방관들이 이해하고 또 활용했던 당시의 검험 지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저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하여 그 異同을 분석하면 송·원 시기 검험 지식의 형성 과정과 발전 경향을 고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세원집록』과 『무원록』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그것의 역주 작업 외에 서양보다 300여 년 이른 동양 법의학의 성립과 발전 및 그 성취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였다.[3]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송원 시기 검험제도의 운영 등 그 제도적 측면 혹은 행정 운영상의 측면에서 두 저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연구 성과들이 있었다.[4] 근래에는 근대 이전의 중국 역대 사법 검험의 역사에 대한 통사적 연구 성과가 있어 송원 시기를 다룰 때 두 책을 언급하기도 하였다.[5] 그러나 이 두 책이 반영하는 송·원시기의 검험 지식 자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원집록』과 『무원록』을 중심으로 송·원시기 '검험지식' 의 형성 과정과 발전 경향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소위 '검험지식'이라 지칭한 것은,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한 '법의학'이라는 용어와 구분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전통법의학'의 지식성격에 관한 대만의 張哲嘉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명청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전통법의학'은 의학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전통 시대 지식 분류 체계 하에서는 '法家'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고, 당시의 '醫家'와는 그 연원 관계가 깊지 않다고 규명하였으며, 그것은 원래 '검험'으로 명명된 지식이라 하였다.[6] 송·원 시기 역시 그 어느 사료에서도 '法醫' 또는

---

왕여의 序에는 그 편찬 시기를 "至大改元"이라 쓰고 있다. 이를 至大 원년(1308)으로 보기도 하며, 이 경우 본문에서 그가 언급한 "昔任鹽官"(1323)과 충돌한다. 이에 楊奉琨은 "至大改元"을 "至元改元(1335)"의 오자로 고증했다.

3) 諸葛計, 「宋慈及其洗冤集錄」, 『歷史研究』 1979-4. 宋慈著, 楊奉琨譯, 『洗冤錄校譯』, 北京: 群衆出版社, 1980. Sung Tz'u, Brian E. McKnight 1981, *The Washing Away of Wrongs: Forensic Medicine in Thirteenth-Century China*,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楊奉琨, 『無冤錄校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熊思量, 「宋慈與『洗冤集錄』之研究」, 福建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余德芹, 吳志剛, 「略述王與的《無冤錄》」, 『貴州民族學院學報』 2009-3.

4) 石川重雄 1990, 「南宋期における裁判と檢死制度の整備 -「檢驗(驗屍)格目」の施行を中心に-」 『立正大學東洋史論集』 3. 郭東旭, 黃道誠 2008, 「宋代檢驗制度探微」 『河北法學』 2008-7. 余德芹, 「元朝法醫檢驗制度初探」, 『貴陽中醫學院學報』, 2009-1. 최해별, 「송대 검험제도의 운영 - 「檢驗格目」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20, 2013. 최해별, 「송대 검험 제도에서의 결과 보고: "驗狀"類 문서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47, 2013.

5) 閻曉君, 『出土文獻與古代司法檢驗史研究』, 文物出版社, 2005, 136-199쪽.

6) 張哲嘉, 「"中國傳統法醫學"的知識性格與操作脈絡」,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44, 2004, 1-30쪽. 청대 『四庫全書存目』 또는 『續修四庫全書』 등은 『세원집록』 및 상관 서적들을 「子部」의 「法家類」에 분류 하였으며 「醫家類」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그리고 청대 이들 서적들의 저자나 독자

'法醫學'이라는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당시 사람들은 이를 '檢驗'(또는 '檢屍')이라 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7] 이에 본 논문에서도 '검험지식'이라 지칭하며, 그것은 검험 관련 법률 규정, 행정 절차, 사체 처리 방식, 검험 내용 및 결과 판단 기준, 그리고 관련 인사에 대한 심문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

그러나 '중국전통법의학'의 지식성격에 관한 張哲嘉의 연구는 '법의학'이라는 용어가 서양에서 들어온 용어인 만큼 이를 벗어나 중국 전통 지식 체계 하에서 당시의 검험지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도, '중국전통법의학' 지식의 성격을 언급할 때 여전히 '법가' 또는 '의가'라는 이분법적 체계 속에서 규명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관련 지식이 '법가'에 가깝고 '의가'와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이분법적 토론 방식에 여전히 매몰돼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법학, 의학이라는 개념 또는 법가, 의가라는 틀을 벗어나 송・원 시기 당시 사람들이 검험 지식을 어떻게 구성해 냈는지 그 형성 과정과 발전 경향 자체를 복원하는 데에 힘쓰고자 한다.

송・원 시기 검험지식의 형성과 발전을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두 저서의 序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편찬 경위와 더불어 저자가 책을 편찬할 때 무엇을 가장 중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관련 지식을 어떻게 입수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 연후 두 저서의 체례 속에 검험 대상인 사체를 사인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비교하고 양자의 차이를 살피어 그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사인을 판별하는 검험 지식 자체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세원집록』과 『무원록』의 저자가 어떻게 당시까지의 집적된 검험지식을 정리하고 수정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세원집록』과 『무원록』의 서, 체례, 내용에 대한 분석은 송・원시기 검험지식의 형성 과정과 그 발전의 경향을 능히 짚어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Ⅰ. "更曆" 중시에서 「考試程式」을 근간으로

『세원집록』과 『무원록』은 대략 반세기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편찬되었다.[8] 우선 두 책의 편찬 배경 및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序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각 저자들의 집필 의

---

는 모두 법률 관련 일을 하는 법관들이라는 점, 아울러 관련 지식의 실천적 측면 등에서 볼 때, 소위 '중국전통법의학'의 성격은 법가에 가깝다고 강조하였다.

7) '檢驗'은 일반적으로 인명 사건과 관계된 옥사를 해결할 때 사체나 상처를 검사하여 사인 또는 상처의 손상 정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이르며, 사체에 대해 또는 살아 있는 자의 상처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인용한 송 원 시기 기록에서 "檢驗"은 대체로 사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檢屍"와 같이 쓰이기에, 본 논문에서도 "檢驗"이라는 당시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8) 『무원록』의 편찬 연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至大 元年(1308) 혹은 至元 원년(1335)으로 추정된다. 주2) 참조.

도와 그들이 기록한 검험지식의 '출처'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 특별히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검험지식을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검험지식의 형성과 그 발전 경향의 추세를 짚는 데 유용할 것이다.

먼저 송자가 쓴『세원집록』序를 보면, 편찬 경위 및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송자가『세원집록』을 편찬할 때 무엇을 가장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옥사는 大辟보다 중한 것이 없고, 大辟은 처음의 정황보다 중한 것이 없으며, 처음의 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檢驗보다 중한 것이 없다. …… ① 근래 州縣에서 모두 그 일을 初官에게 맡기고 무관에게 맡기니, 更歷이 많지 않고, 함부로 시도하여, 거듭 仵作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吏胥의 간교함에 꼬여 사실을 마음대로 조작해 변경시키고, 모호하여 문책할 수도 없다. 비록 영민한 자가 있어 한 마음 두 눈으로 보더라도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없으니, 하물며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친히 가서 코를 만져보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는 오죽할까! ② 나는 네 번이나 제점형옥을 담당했고, 다른 장점은 없으나 유달리 옥사는 세심하게 또 세심하게 살폈고, 조금이라도 태만하거나 경솔히 한 일이 없다. 만약 속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끝까지 반박하며 싸우고, 혹 의심이 생겨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하여 심사숙고하니 오직 걱정했던 것은 성급히 진행해 죽은 자가 헛되이 많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했다. ③ 매번 옥사가 잘 못 되는 것을 생각해보니 대부분이 그 시작에서 잘못되어 그런 것이며 검험의 오류는 모두 歷試의 미천함에서 온다. ④ 마침내 근래까지 대대로 전해오는 여러 책들, 즉 《內恕錄》 이하 여러 책들을 모아 중요한 것을 추려 고증하고 바로잡아 나의 의견을 더해 하나의 책으로 편하여 《洗冤集錄》으로 이름하고, 湖南憲治에서 출간하여 내 동료들에게 보여 검험에 참고하도록 하게 한다. 이는 의사가 古法을 토론하는 것과 같아 脈絡表裏를 먼저 확실히 이해하여 일단 이에 따라 침을 놓게 되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을 것이다. 즉 원망함을 잘 풀어주면, 이는 곧 의사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과 같은 효용을 가진다.
>
> 淳祐 丁未년 嘉平 節前 十日, 朝散大夫, 新除直秘閣, 湖南提刑充大使行府參議官 宋慈 惠父가 서를 쓰다.
>
> ⑤ 현명한 사대부 중 혹 보고 들은 것과 직접 경험한 것들 중 이 책에서 수록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라건대 편지를 써서 나에게 보내주면 미비한 것을 보충할 것이다. 송자가 삼가 쓰다.[9]

송자는 인명 사건의 판결에서 검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① 부분에서 검험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 책의 출판 배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초임관 또는 무관에게 검험 업무를 맡기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경력의 미천함'과 '함부로 시도함' 등으로 오작 등에게 속임 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아울러 파견 관원이 직접 검험을 하지

9) 高隨捷, 祝林森,『洗冤集錄譯註』(이하『세원집록』), 상해고적출판사, 2008, 1쪽.

않는 당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계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로 『세원집록』 편찬의 목적이 될 것이다. 경력의 미천함을 보완해 주고, 오작 등 하급 실무자들에게 속임 당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일러주며 검험관은 반드시 친히 검험을 해야 한다는 당시 법규 등을 소개하는 것 등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②의 내용은 저자 스스로 이 책의 편찬자로서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에 대한 언급 등이 아니라 관련 업무에서의 경력을 첫째로 꼽고 있다. “제점형옥사를 네 번이나” 맡았던 그의 경력을 강조한 것이다. 앞에서 경력의 미천함을 운운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어서 “옥사는 세심하게 또 세심하게 살폈다”고 하여 그의 또 다른 장점을 언급했다. 검험 관련 저서를 편찬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꼽는 데 있어서 그는 옥사를 세심히 살피는 그의 특징을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자기 이해는 이 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그의 경력에서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③ 부분은 책의 출판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험의 오류는 모두 경력의 미천함에서 온다”라고 하여 검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경력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결국 경력의 미천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경력이 풍부한 그가 검험관련 지식을 모아 책을 편찬한 것이다.

④ 부분은 그가 참고한 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內恕錄』이하 여러 책들을 모으고”, “나의 의견을 더해” 『세원집록』을 편찬한 것이다. 『內恕錄』은 지금 전해지지 않아 그 구체적 내용을 알 길이 없고, 그 이하 “여러 책들”이 어떤 책을 의미하는지 역시 알 수 없지만, 당시까지 집적된 관련 지식과 그의 경력을 통해 얻어진 견해들을 더하였다고 하니 관련 저서들과 그의 제점형옥사로서의 경력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책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⑤의 내용을 보면 그의 경력에 대한 중시 및 그것이 곧 책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현명한 사대부들”에게 그들의 경험 중 얻은 지식에서 추가할 것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관련 정보를 구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대부들, 즉 법관의 경력이 있는 “현명한 사대부들”에게 구했다는 것은 당시 검험지식의 수집 과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①②③④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통된 핵심 내용은 검험 관원의 ‘경력’에 있어 보인다. 경력이 미천한 자들이 종종 검험관으로 파견되는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험의 오류는 경력의 미천함에서 온다는 그의 인식, 그리고 경력이 풍부하다 자처할 수 있는 그의 네 번의 제점형옥 역임에 대한 강조 등은 그가 검험에 있어서 경력을 가장 중시했

고, 아울러 『세원집록』의 편찬 목적은 다른 관원들의 경력의 미천함을 보완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內恕錄』과 그 이하 관련 책들을 참고한 것 외에 그의 경험에서 얻은 검험 지식이 『세원집록』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며 그리고 현명한 사대부들의 경험이 이후 보완될 내용의 잠정적 출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 관원으로서 검험에 대한 '경력'의 강조는 『세원집록』에 반영된 당시 검험 지식이 검험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축적된 결과물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재미있는 것은 검험지식을 수집하여 정리한 송자가 의학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의서를 참고했다거나 의사에게 지식을 구하지 않았다. 물론 그 역시 '醫師'를 언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검험에서의 의학 지식 또는 의사의 역할을 언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검험의 유용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비유로서 의사와 시침을 언급하고 있어 오히려 의학에 대한 그의 무심함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사가 古法을 공부하듯 검험서를 참고하여 검험하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 아울러 "원망함을 잘 풀어주면, 이는 곧 의사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과 같은 효용을 가진다"고 비유를 들어 검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검험에서의 의학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저자였다면 의학을 언급할 때 이를 비유의 대상으로만 쓰지는 않았을 터인데 말이다.

왕여의 『무원록』은 『세원집록』이 편찬된 이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때에 쓰였다. 그 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무원록』을 쓴 배경과 그가 중시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송자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드러나 우리의 주목을 끈다.

> 대개 옥송은 중요한 일이므로 옥사를 처리하는 일은 진실로 어렵고 옥사를 판결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게다가 옥사가 인명에 관계된 것이라면 오직 검시가 가장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는 경우 사람의 생사가 바뀌기 때문이다. 진실로 검험이 정확하지 못하면 비록 옥사를 처리하고 판결하는 것을 잘하는 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전에 송의 惠父가 옥사의 잘못된 처리가 검험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을 생각하여 『洗冤錄』을 편찬하고, 趙逸齋는 다시 『平冤錄』 펴냈다. …… 삼가 생각건대, 聖朝에서 여러 옥사에 신중을 다하여 진실로 다 밝힌 후에야 벌을 주어 천하에 원통한 백성이 없으니 오직 한나라만 칭송할 수는 없다. 내가 외람되게 案牘의 소임을 맡아 역대의 초검과 재검의 어려움을 두루 보았다. 그러던 중 ① 『洗冤』과 『평원』 두 가지를 보니 서로 덜어내거나 더할 것들이 있었다. 마침내 ② 省部에서 내려 보낸 「考試程式」을 지키고 따라야 할 근본으로 삼고, 그 異同을 참고하여 항목을 나누어 편찬하였다. 무릇 「檢驗格例」를 권 앞에 실었으니 잘 따라 행하여 처음부터 신중하게 임해 백성들이 저절로 원통하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라니, 외람되이 『무원록』이라 이름 한다.[10]

10) 김호 옮김, 『新注無冤錄』(이하 『무원록』), 사계절, 2012, 50-53쪽.

왕여 역시 가장 먼저 옥사의 처리와 판결에서 검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책을 편찬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하나는 『세원집록』과 『평원록』이라는 두 책을 참고하였다고 밝혔으며 그가 이 두 책을 살핀 결과 수정하고 보충할 것이 있음을 느꼈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하나는 "省部에서 내려 보낸 「考試程式」"이다. 그는 「考試程式」을 "지키고 따라야 할 근본"으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시정식」은 『元典章』의 기록에 따르면 元貞 3년(1297) 반포된 것으로, 儒吏를 선발할 때 "반드시 程式에 합격해야 비로소 임용한다(必中程式, 方許錄用)"고 하였다.[11] 儒吏가 알고 있어야 할 「고시정식」에서 검험과 관련한 내용은 '屍', '傷', '病', '物' 글자 아래의 여러 조항들로, '시'는 사체에 대해, '상'은 살아 있는 자의 상처에 대해, '병'은 병환이 있는 자에 대해, '물'은 독물 등 범죄에 사용된 물질에 대해 검험하는 내용을 이른다. 『무원록』의 원문에는 대개 각 내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보면 『세원록』, 『평원록』, 『結案式』 등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결안식』이 곧 「고시정식」을 의미하며, 『무원록』의 인용된 내용을 보건대 『원전장』의 「고시정식」과 일치한다. 그는 "「고시정식」을 근본으로 삼고 그 異同을 참고하여 항목을 나누어 편찬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무원록』은 「고시정식」을 기준으로 삼고, 『세원록』과 『평원록』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로써 보건대, 남송 송자가 『세원집록』을 저술하였을 때와 원대 왕여가 『무원록』을 저술하였을 때의 상황은 상당히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송자는 검험 절차와 관련된 행정 관련 법률 규정들을 스스로 모아 책의 가장 첫머리에 「條令」으로 실었고, 『무원록』 역시 「檢驗格例」를 실어 검험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법규를 싣고 있다. 그런데 송자와는 달리 왕여가 『무원록』을 쓸 때는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행정 법규 외에 검험 내용 및 사인 판별 기준에 대해서도 조정이 반포한 기준을 참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시정식」은 구체적 검험 내용과 사인 판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것의 출현은 두 저서가 편찬된 반세기 이상의 시간 동안 집적의 과정을 거쳐 조정의 승인과 반포까지 거친 검험지식이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원 조정은 검험내용과 그 사인의 판별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반포하였고, 왕여는 이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된 검험서를 편찬한 것이다.

"『內恕錄』 이하 여러 책들"을 참고하였다고는 하나 무엇보다도 경력, 즉 현장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의 제점형옥 경력을 운운하였던 송자와는 달리 왕여는 중앙에서 반포된 기준을 근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고시정식」의 검험지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 정리되고 완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 지방관들이 해오던 관례를 중심으로

11) 陳高華, 張帆 等 點校, 『元典章・吏部』 권6「儒吏考試程式」, 中華書局, 天津古籍出版社, 2012, 426쪽.

정리된 것을 조정이 반포한 것일 터이니 원대 왕여가 『무원록』을 편찬할 당시에는 검험 지식이 어느 정도 집적되어 중앙이 이를 정리하여 지방에 반포할 정도는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송자의 시기는 검험 지식이 '체계'를 이루기 전 여러 관련 서적들의 내용을 수집하고, 현장의 경험에서 얻은 것을 두루 모아 그리고 현명한 사대부들에게 정보를 공개적으로 구하는 절차까지 거쳐 검험지식이 수집되고 정리되는 과정에 있었다면, 원대 왕여의 시대는 검험 지식이 어느 정도 집적된 형태로 "시, 사, 병, 물"의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조종의 승인을 거친 기준이 등장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 Ⅱ. 『洗冤集錄』과 『無冤錄』의 死因 분류

"경력"의 중시에서 "「고시정식」을 근간으로"하는 변화는 『세원집록』과 『무원록』에 반영된 송·원시기 검험 지식의 축적과 체계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전의 여러 책들과 경력에서 얻어진 것들이 점점 규정으로서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의 반포를 통해 각지에 반포된 것이다. 그리고 『무원록』은 이러한 조정이 반포한 규정을 중심으로 새롭게 검험참고서를 재편한 결과물이다.

이는 『세원집록』과 『무원록』의 체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양자 모두 크게 '條令(또는 格例) - 총설 -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원록』은 「격례」 앞에 '논변' 형식의 저자의 견해를 덧붙인 부분이 추가 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중에서도 각론의 부분은 검험 대상인 사체에 대해 사망에 이른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구체적 검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세원집록』과 『무원록』의 분류상(또는 체례상)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 자세히 살펴볼 만하다.

먼저 송자는 『세원집록』에서 검험관이 가장 자주 검험을 하게 되는 사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칼, 他物, 손발로 구타 살상을 당한 경우, 자액 혹은 줄에 묶여 죽는 경우, 물에 빠져 죽는 경우, 그리고 병환으로 죽는 경우이다.[12] 『세원집록』과 『무원록』은 모두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한 후 나머지 화상, 독살 등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참조)

12) 『세원집록』 권1 「疑難雜說上」, "무릇 사체를 검험하는 경우는 ① 칼로 살상하거나 他物로 구타를 하거나 주먹으로 공격을 하거나 혹은 ② 목을 매는 자살 혹은 묶어 죽이거나 혹은 ③ 물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이 물에 빠뜨리거나 혹은 ④ 병환으로 죽거나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묶어 죽이는 것은 스스로 목매는 것과 유사하고, 익사당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것과 유사하며, 구타는 保辜 기한 내에 죽어도 실제로 병환으로 죽는 경우도 있다", 26쪽.

<표 1>『세원집록』과『무원록』의 死因 분류 비교

| | 『세원집록』의 항목 | 『무원록』의 해당항목 | | 『무원록』 원 순서 | 『고시정식』의 항목 |
|---|---|---|---|---|---|
| 1 | 自縊 | 自縊死 | 1 | 勒死 | 勒死 |
| 2 | 被打勒死假作自縊 | 勒死 | 2 | 自縊死 | 自縊死 |
| 3 | 溺死 | 落水投河死 | 3 | 落水投河死 | 落井投河死 |
| | | 相毆後落水死 | 4 | 相毆後落水死 | |
| 4 | 驗他物及手足傷死 | 捧毆死 | 5 | 捧毆死 | 捧毆死 |
| | | 拳手足踢死 | 6 | 刃傷死 | 刃傷死 |
| 5 | 自刑 | 自害死 | 7 | 刺死 | 刺死 |
| 6 | 殺傷 | 刃傷死 | 8 | 拳手足踢死 | |
| | | (『세원』無) | 9 | 辜內病死 | 辜內病死 |
| | 殺傷 | 刺死 | 10 | 自害死 | 自害死 |
| 7 | 火死 | 火燒死 | 11 | 毒藥死 | 毒藥死 |
| 8 | 湯潑死 | 湯潑死 | 12 | 火燒死 | 燒死 |
| 9 | 服毒 | 毒藥死 | 13 | 湯潑死 | |
| 10 | 病死 | 病患死 | 14 | 病患死 | 病死 |
| | | 凍死 | 15 | 凍死 | 凍死 |
| | | 餓死 | 16 | 餓死 | 餓死 |
| 11 | 針灸死 | 被人針灸當下致死 | 17 | 杖瘡死 | 杖瘡死 |
| 12 | 驗罪囚死 | 罪囚被勘死 | 18 | 罪囚被勘死 | 罪囚被勘身死 |
| 13 | 受杖死 | 杖瘡死 | 19 | 驚謼死 | 驚謼死 |
| | | (『세원』無) | | | |
| 14 | 跌死 | 擷死又跌死 | 20 | 擷死又跌死 | 擷死 |
| 15 | 塌壓死 | 壓死 | 21 | 壓死 | 壓死 |
| 16 | 外物壓塞口鼻死 | 外物壓塞口鼻死 | 22 | 馬踏死 | 馬踏死 |
| 17 | 硬物癮痞死 | 硬物癮痞死 | 23 | 車碾死 | 車碾死 |
| 18 | 牛馬踏死 | 馬踏死 | 24 | 被人針灸當下致死 | |
| 19 | 車輪拶死 | 車碾死 | 25 | 雷宸死 | |
| 20 | 雷震死 | 雷宸死 | 26 | 虎咬死 | |
| 21 | 虎咬死 | 虎咬死 | 27 | 酒食醉飽死 | |
| 22 | 蛇蟲傷死 | 蛇蟲傷死 | 28 | 外物壓塞口鼻死 | |
| 23 | 酒食醉飽死 | 酒食醉飽死 | 29 | 硬物癮痞死 | |
| 24 | 築踏內損死 | | 30 | 蛇蟲傷死 | |
| 25 | 男子作過死 | 男子作過死 | 31 | 男子作過死 | |
| 26 | 遺路死 | (『무원』無) | | | |

두 책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세원집록』에서『무원록』으로 갈수록 항목이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세원집록』(이후 ‘전자’로 약칭)의 경우 죽음의 종류를 모두 2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무원록』(이후 ‘후자’로 약칭)은 이를 31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는 “溺死”로 명명한 것을 후자는 “落水投河死” “相毆後落水死”로 나누었고, 전자는 “他物及手足傷死”로 명명한 항목을 후자는 “棒毆”, “手足”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殺傷”에 있어서도 전자는 이를 한 항목으로 기록하였다면 후자는 “刃傷”과 “刺死” 로 나누어 설명했다. 전자는 “病死”라 하였고 후자는 같은 내용을 “病患死”, “凍死”, “餓死”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후

자의 이러한 항목의 세분화는 왕여가 그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考試程式」을 지키고 따라야 할 근본으로 삼고 그 異同을 참고하여 항목을 나누어 편찬"한 결과였다. 후자의 새로운 항목은 모두 「考試程式」의 「屍」부분에 언급된 것을 따른 것으로,[13]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考試程式」의 내용을 먼저 싣고 그 아래 『세원집록』의 해당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는 형식을 취했다.

둘째, 전자에서 서로 상관된 두 항목을 후자에서는 하나로 모아 기록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전자는 "酒食醉飽死"와 "築踏內損死"를 구분하였다. 이는 술과 음식을 많이 먹어 죽은 경우와 술과 음식을 많이 먹은 후 밀쳐지고 밟히어 내장이 손상되어 죽은 경우를 나누어 설명한 것인데, 후자는 이를 "酒食醉飽死"에서 함께 적고 있다. 아울러 전자의 "遺路死"의 경우는 죽음에 이른 원인에 기인한 정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단지 구타당해 죽은 후 길에 버려진 경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 후자에서는 이를 따로 설정하여 분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셋째, 후자에서 새로이 추가된 항목들도 있는데, 바로 "辜內病死"와 "驚謔死"이다. 이는 모두 「고시정식」에 등장한 항목이며, 왕여는 『무원록』에서 『세원집록』에는 없었던 그 항목들을 새로 설치하고 그 내용도 「고시정식」을 그대로 따랐다. 특히 "辜內病死"의 문제는 판정이 까다로운 경우로서 송자 역시 「疑難雜說」에서 "保辜 기한 내에 죽었지만 실제로 병환으로 죽은 경우"를 "의난"으로 분류하고 있다.[14] 중국 전통 법률에서는 구타치사의 경우 保辜 기간을 두었다. 당률은 "手足으로 사람을 살상한 경우 十日, 他物로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二十日, 刃이나 湯火로 상해를 입힌 자는 三十日, 지체를 부러뜨리거나 뼈를 손상시킨 자는 五十日"로 보고기한을 두었고, "限內死者, 各依殺人論"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기한이 지나 혹은 기한 내라도 他故로 죽은 자는 각각 원래의 毆傷法을 따른다고 하였다. "他故"에 대해서는 "謂別增餘患而死者"라고 밝혔으며, 그러나 맞은 사람이 머리가 손상되어 "風從頭瘡而入" "風致死之類"의 경우 殺人으로 논한다고 하였다.[15] 송원 시기는 대체로 이 규정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세원집록』은 「조령」에서 당률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16] 「의난잡설」에서도 같은 법률 규정을 인용하였으며,[17] 「他物手足傷死」에서도 保辜와 관련하여 머리에 상처가 있을 때 風이 들어가 상처

13) 『元典章・吏部』 권6「儒吏考試程式」, 435쪽.

14) 주12) 참조.

15) 당률은 "手足殺傷人限十日, 以他物毆傷人者二十日, 以刃及湯火傷人者三十日, 折跌支體及破骨者五十日"라고 하였고, "限內死者, 各依殺人論, 其在限外及雖在限內, 以他故死者, 各依本毆傷法. 他故, 謂別增餘患而死者", "假毆人頭傷, 風從頭瘡而入, 이風致死之類, 仍依殺人論."『당률소의』 권21 "諸保辜者"條, 中華書局, 1983, 388-389쪽.

16) 『세원집록』 권1 「조령」, 5쪽.

17) 『세원집록』 권1 「의난잡설상」, 27쪽.

가 깊어 죽음에 이른 경우가 아닌지 잘 살피라고 주의를 하였다.[18] 『세원집록』의 기록은 당률의 규정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보고 기한 내에 다른 병환으로 죽었을 경우 살인죄로 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여러 쟁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고, 게다가 다른 병으로 죽음에 이른 것을 증명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고시정식」은 보고 기간 내 병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설명하였고, 왕여는 이를 그대로 『무원록』에 삽입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원록』은 여러 항목의 배치 순서를 수정하였다. 송자가 지적한 네 종류의 죽음, 즉 구타와 살상, 자액 또는 줄에 묶여 죽는 경우, 물에 빠져 죽는 경우, 그리고 병환으로 죽는 경우 중에서도 두 저서에서 가장 편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칼로 살상하거나 他物로 구타를 하거나 주먹으로 가격을 하는" 구타와 살상이다. 다른 경우와 달리 구타와 살상은 두 책에서 그 구체적 순서와 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전자는 <표 1>의 4, 5, 6 항목에 해당되고, 후자는 5, 6, 7, 8, 9, 10 항목에 해당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타물 등 구타 살상 자살에 관한 항목 비교

| 『세원집록』의 항목 | 『무원록』의 해당 항목 | 『무원록』의 순서 |
|---|---|---|
| 驗他物及手足傷死 | 棒毆死 | 棒毆死 |
| | 拳手足踢死 | 刃傷死 |
| 自刑 | 自害死 | 刺死 |
| 殺傷 | 刃傷死 | 屍首異處 |
| | 刺死 | 拳手足踢死 |
| 屍首異處 | 屍首異處 | 辜內病死 |
| | 辜內病死 | 自害死 |

他物・手足・刃物로 인한 인명 사건을 傷死(致死), 殺傷, 自害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양자를 비교해 보면 각 내용의 배치 순서가 달라졌다. 전자는 타물 및 수족으로 인한 치사, 자해, 살상 등의 순서로 배치하였다면, 후자는 타살을 먼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해를 배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족이 아닌 도구로 인한 인명사건을 먼저 배치하였다. 즉 봉구사(타물), 칼날로 인한 인명사건 그리고 이로써 발생될 수 있는 사체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를 설명했다. 그 연후에 수족으로 인한 것을 보충하고, 치사 살상에서 꼭 언급되어야 할 "고내병사"를 언급한 후 마지막에 자해를 언급하여 내용 배치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순서는 「고시정식」을 따른 것이라기보다 왕여 스스로 조정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18) 『세원집록』 권4 「他物手足傷死」, 27쪽.

아울러 후자는 타물, 수족, 인물로 인한 인명사건과 관련하여 전자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 새롭게 정리하였다. 『세원집록』은 「검복총설」과 「의난잡설」 등 총설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타물, 수족, 인물로 죽음에 이른 사체를 검험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록하였는데, 『무원록』은 이를 「棒毆死」등 해당 항목에 적절히 배치하였다.[19] 아울러 『세원집록』에서는 「자형」, 「살상」에서 따로 언급한 부분을 『무원록』은 살상인지 자해인지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부분을 한 곳에 모아쓰기도 했다.[20] 이로써 지방관들이 검험이 필요한 해당 사건의 유형에 따라 편리하게 『무원록』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무원록』은 『세원집록』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시정식」에 따라 항목을 분류한 후 내용을 보충하였다. 『평원록』을 참고한 부분 역시 보이지만 이 부분은 거의 『세원집록』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러한 수정과 보충 과정에서 항목이 더욱 세분화되고, 내용이 첨삭되기도 하였으며, 각 항목의 배치 순서 역시 유형별로 훨씬 더 체계화되었다. 무엇보다도 판정이 까다로운 "辜內病死"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시정식」을 참고하여 항목을 새로이 배치하였고, 아울러 『세원집록』에서는 흩어져 있던 내용을 각 항목에 맞게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이로써 보건대, 송원 시기 검험 지식은 『세원집록』에서 『무원록』으로 갈수록 항목이 구체화되고 그 구성과 내용이 조금 더 체계화되는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명 남송시기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수집·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원대 조정의 승인과 반포를 거쳐 좀 더 공식화 되는 추세가 말해주는 결과이다.

## Ⅲ. "今古驗法"의 異同 - 他物·手足·刃物로 인한 인명사건을 중심으로

송·원 시기 송자와 왕여가 편찬한 각각의 검험 참고서는 현장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여 얻어진 지식이 조정의 반포와 승인을 거치게 되면서 조금 더 체계화되는 경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두 사람이 검험지식을 수집 정리할 때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또 그들이 검험 대상인 사체를 사인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였는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면모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序의 내용이나 체례의 분류에서가 아닌 검험 지식의 구체적 내용 측면에서 이러한 형성 과정과 발전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

19) 예를 들면, 『세원집록』 권1 「검복총설하」, "무릇 검험하여 보고할 때의 글은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났다'라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대개 피부가 찢어지면 피는 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피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는데 피가 났다.'"(凡檢驗文字, 不得作"皮破血出", 大凡皮破卽血出. 當云, "皮微損, 有血出.") 이 내용을 『무원록』에서는 각론의 「棒毆死」에서 적고 있다.

20) 『무원록』 卷下 「自害死」, 448쪽.

다. 이에 본 장은 앞서 송자가 사인을 기준으로 검험 대상을 구타(와 살상), 익사, 자액(및 륵사), 병사 등 네 가지로 분류한 것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여 가장 많은 편폭을 차지하고 있는 구타(와 살상)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송원시기 검험지식의 구체적 발전 과정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두 검험서는 분명한 계승관계를 가지면서도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송자의 "厘而正之, 增以己見"

송자는 그의 서에서 "근래까지 대대로 전해오는 여러 책, 즉『內恕錄』이하 몇 권의 책들을 수집하여 중요한 것을 모아 추려 정리하고 바로잡은 후 나의 의견을 더해(博採近世所傳諸書, 自『內恕錄』以下凡數家, 會而粹之, 厘而正之, 增以己見)"라고 하였다. 여러 책을 참고하고 또 이를 수합하고 수정한 후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책으로 편찬하였던 것이다. 『內恕錄』이 어떤 내용이고 아울러 그 "以下凡數家"가 어떤 책을 이르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므로『세원집록』에 반영된 검험지식 중 어느 부분이 전하여지는 책에서 참고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자신의 견해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책들 중 당시의 송자도 보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서의 관련 내용을 찾아『세원집록』과의 비교를 통해 그 대략적인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중 송대 宣和 6년(1124) 進士가 되어 南宋(1127-1279) 초 관직 생활을 했던 鄭克이 춘추 전국 시기부터 북송까지의 명판례들을 모아 당시 지방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한『折獄龜鑑』은 송자가 참고한 저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21] 혹은 적어도 송자가『세원집록』을 편찬하기 이전의 당시 사람들의 검험 지식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折獄龜鑑』의 내용을 보면 송대의 명판결을 모아 놓고 있지만, 그 중 인명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검험이 언급되는 사례는 몇 건에 불과하다. 다행스럽게도 그 몇 건 안 되는 사안 중 살상무고 사건과 관련한 한 판결에서 검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사람들의 검험지식을 엿볼 수 있다.

> 錢惟濟는 絳州의 지주를 맡았다. 한 백성이 뽕잎을 따고 있었는데 도적이 이를 강탈하려다가 얻지 못하자 이에 스스로 그 오른쪽 팔을 상처내고 살인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관에서는 판별을 할 수가 없었다. 유제가 [도적을] 불러 심문하면서 바로 앞에서 밥을 먹게 하였다. 도적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먹었다. 이에 [유제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칼을 찌를 때는 윗부분이 깊고 아래는 가볍다. 지금은 아래가 깊고 위가 가볍다. 바

21) 鄭克은『절옥귀감』에서 춘추 전국 시기부터 북송 大觀, 政和 연간까지의 案例를 모아 놓았다. 또한 그는 '按'이라고 명시하여 자신의 분석과 해석을 첨가하고 있다. 鄭克編撰, 劉俊文譯注点校,『折獄龜鑑譯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로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찌른 것이다." 이에 무고한 자가 자복하였다.

[案] 이것은 그 상처가 아래가 깊고 위가 가벼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칼로 찌른 것임을 안 것이다. 다만 오른쪽에 상처가 있는 것이 의심되었는데, 이에 그에게 밥을 주어 그 손을 본 것이다. 무고한 정황이 드러나니 저가 어찌 불복하겠는가![22]

이 사건은 刃物로 인한 사건인데, 自害인지 타인에 의한 殺傷인지 판별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전유제는 그 상처를 검험하였다. 다른 사람이 찌른 경우 일반적으로 "上重下輕"인데, "下重上輕"이 이상하여 自害임을 눈치 챘고, 오른쪽 팔에 상처 낸 것이 이상하여 밥을 먹게 해 본 결과 왼손잡이 임을 알아낸 것이다. 당시 전유제는 지방관으로서 "刃物殺傷" 관련 검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써 명 판결을 내려 정극이 이를 『절옥귀감』에 수록하였다. 아울러 정극은 '안'을 통해 "以其傷下重上輕, 知爲自用刃矣"라고 정리하였다. 이는 상처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깊이를 통해 자해와 살상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을 송자가 참고하였을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는 『세원집록』의 「自刑」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을 명기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 상처는 시작되는 부분이 깊고, 끝 부분이 가볍다. (만약 왼손으로 칼을 쥐어 상처를 냈다면 인후의 오른쪽 아래 손을 댄 부분이 깊고, 왼쪽 칼을 거둔 쪽이 얕다. 그 가운데는 오른쪽 만 못하다. 대개 칼을 댄 곳이 가장 깊으며 점점 통증이 와 손이 오그라들어 이에 상처가 얕아지는 것이다. 왼손은 반드시 물건을 쥐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런 경우이다. 오른손 역시 그러하다)[23]

정극이 소개한 판결과 案 그리고 송자의 설명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정극이 "그 상처가 아래가 깊고 위가 가벼운 것(以其傷下重上輕)"이라고 정리한 것을 송자는 "그 상처는 시작되는 부분이 깊고 끝 부분이 가볍다(其痕起手重, 收手輕)"라고 표현했다. 上, 下보다는 상처가 난 위치에 따라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起手'와 '收手'로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아울러 小注를 달아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에 따라 다른 상황을 명기하였고, 또 輕重의 의미를 상처의 深淺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상처의 중간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 깊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상처의 깊이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명시하여 "통증으로 손이 오그라들어" 나타난 결과라 적고 있다. 끝으로 상처를 낸 왼손의 모양까지 덧붙였다.

이 자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검험지식을 송자가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22) 『折獄龜鑑譯注』, 141-142쪽.
23) 『세원집록』 권4 「자형」, 105쪽.

또는 정극의 시대에서 송자의 시기가 되면 검험 지식이 어떻게 보충 정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표현대로 라면 “會而粹之, 厘而正之, 增以己見”의 구체적 상황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용어를 각종 다양한 상황에 모두 부합하도록 더욱 정확하게 사용하고, ‘輕重’ 등 의미가 모호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였으며, 각종 경우의 수(오른 손, 왼손 사용에 따라)에 대해 검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였다. 또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까지 덧붙였으며, 그 외에 관련 사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이점들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수정과 보충이 바로 기존의 지식을 정리하고 바로잡아 송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왕여는『무원록』에서 이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왕여는『세원집록』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다만 송자가 小注로 처리한 부분을 왕여는 본문으로 그대로 싣고 있다.[24] 그가 근간으로 삼았다고 한「고시정식」의 “자해사”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사체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그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아마도「고시정식」을 근간으로 삼았다는 실질적 의미는 검험 대상인 사체의 항목 분류 등 체계 면에서 그것을 참고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내용은 대개 송자의『세원집록』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왕여의 “今古驗法不同”

왕여의『무원록』은『세원집록』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그 가장 첫머리에서 “今古驗法不同”이라고 지적하면서『세원집록』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 중 타물, 수족, 인물로 인한 구타 살상의 검험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다. 이러한 구타 살상 사건의 검험 지식에 대한 왕여의 수정 내용을 통해 우리는 송・원 시기 검험지식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발전 경향을 짚어 볼 수 있다.

우선, 왕여는 “今古驗法不同”이라고 지적하면서 ‘타물’에 대한 정의 문제에 대해 논하였다. ‘타물’의 범위는 당률에서부터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 여러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진다. 송자는『세원집록』의「他物手足傷死」에서 그 수정 과정을 기록하며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역대 조정과 지방관들이 ‘타물’의 규정을 두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여는 이에 대해 다시 부연하며 원대까지의 변동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먼저,『세원집록』의「他物手足傷死」에서는 “률에서 이르기를, 피가 보이면 ‘상’이라고 했다. 손과 발로 한 것이 아닌 그 나머지는 모두 타물이다. 병기이나 칼날이 없는 것이라도 또한 그렇다”라고 당률의 규정을 인용한 뒤 여러 관련 勅을 기록함으로써 그 이후의

24)『무원록』 권하「자해사」, 448쪽.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5] 즉, "鬪訟勅"을 인용하여 "무릇 사람을 문 경우, '타물법'을 따른다"고 하였다. 즉 '타물'에 사람이 이로 문 경우까지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元符(1098-1100) 연간의 『신명형통』을 인용하면서 "靴鞋"로 사람을 차서 상하게 한 경우 官司의 검험을 거쳐 견고하고 딱딱한 경우 곧 타물로 보고 만약 견고하거나 딱딱하지 않으면 타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이마, 팔꿈치, 무릎, 머리로 쳐서 죽음에 이른 경우 이는 타물의 상처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타물의 범위를 "쇠로 만든 채찍, 자, 도끼머리, 칼등, 나무방망이, 말채찍, 장작, 벽돌, 돌, 기와, 거친 천으로 만든 신(粗布鞋), 밑바닥 창을 기워 덧댄 신(衲底鞋), 가죽신(皮鞋), 짚신(草鞋) 등"으로 규정하였다.[26] 『세원집록』이 새로 부기한 당시 수정된 규정은 당률의 다소 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한 경향이 보인다. 사람을 문 경우, 딱딱한 신발, 손발이 아닌 이마, 팔꿈치, 무릎, 머리를 포함시켰고, 아울러 "타물"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이는 당 중 후기부터 송대 이르기까지 개정되고 보충된 법률 규정을 한 자리에 모은 것으로, 확실히 당시 지방관들은 『세원집록』을 통해 변화된 일련의 규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타물로 인한 인명사건을 검험하고 판결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왕여는 "今古驗法不同"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타물'에 대한 정의를 꼽았다. 이는 그 이후 왕여의 시대까지 또한 지속적인 변동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먼저, 그는 사람을 문 경우에 한해 송대의 규정과 원대 조정의 판례가 다름을 지적하였다. 省部의 斷例에서는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수족으로 상처를 낸 경우와 保辜기간이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보고 기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수족으로 상처를 낸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또 靴鞋는 "수족이 아니므로 타물이라 칭할 수 있지만, 이마 팔꿈치 무릎 머리로 받는 것 등은 모두 수족과 머리로 가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의 근거는 『송형통』의 "수족을 예로 들자면 머리로 받는 경우도 역시 그와 같다"고 한 부연 설명이었다.[27] 이것은 당률에도 나와 있다.[28] 즉 당송 률에서 이미 머리도 수족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니 "이마, 팔꿈치, 무릎" 등은 모두 수족과 머리로 하는 것에 포함되어 타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물의 규정에 관하여 송대 『세원집록』에 추가된 규정 중 왕여는 사람이 입으로 문 것은 수족으로 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고, 靴鞋를 타물로 규정한 것은 동의했으며, 이마 팔꿈치 무릎을 타물로 보는 것에 반대 했다. 그의 근거는 『송형통』 또는 省部의 斷例등이었다.

왕여가 靴鞋를 타물로 보고 있음은 분명하며, 각론의 「拳手足踢死」의 설명에서도 이를

25) 『세원집록』 권4 「타물수족상사」, 99쪽.
26) 『세원집록』 권4 「타물수족상사」, 99쪽.
27) 『무원록』 권하 「拳手足踢死」, 62-67쪽.
28) 『당률소의』 권21 "諸鬪毆人者"條, 383쪽.

잘 알 수 있다. 수족으로 구타한 경우를 설명하면서, "靴鞋를 신었다면 간간이 약간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둘레가 도드라져 보일 것이며, 타물로 구타한 경우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굳이 수족으로 구타한 경우를 설명할 때 화혜를 신었을 경우에 대해 언급하였음은 신을 신었을 때의 규정이 맨발로 찼을 때와 다름을 염두 해 둔 것이며, 아울러 타물로 인한 상처도 이와 같다고 한 번 더 언급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화혜의 경우 딱딱하거나 견고하지 않으면 타물로 보기 어렵다"는 설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세원집록』에서 "딱딱하고 견고한 경우"라고 단 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며, 이러한 세부적 조건이 오히려 판결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29]

무엇보다도 왕여는「拳手足踢死」에서 사람이 물어 상해를 낸 경우에 대해 더욱 상세히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독이 있어 그것이 상처에 미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상흔의 이빨 자국 등을 언급하여 검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을 아무런 부가 설명 없이「拳手足踢死」에 실은 것은 이를 '타물'로 보지 않은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충 부분을 상세히 보면 이는『세원집록』의「自刑」에 나오는 내용으로 "有人因自用口齒咬下手指者" 부분에서 발췌해 온 것이다. 유사한 상황이기에 사람이 문 경우를 설명하면서『세원집록』의 관련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였다.[30]

주의할 만 한 것은, 왕여가 앞서「今古驗法不同」에서는 머리 팔꿈치 무릎 등으로 가격하거나 머리로 받는 경우 타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지만,「拳手足踢死」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이마, 팔꿈치, 무릎, 머리 등으로 가격하여 치사했다면 타물로 본다"고 적고 있다.[31] "치사"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세원집록』에는 없는 그렇다고「고시정식」에도 따로 설정되지도 않은 항목인「拳手足踢死」항목을 왕여가 따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타물'의 범위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들, 즉 송대와는 달라진 원대의 규정 또는 그에 대한 그의 해석을 싣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手足으로 인한 상해 자체에 대한 내용은『세원집록』의 타물과 관계된 내용을 참고한 후 발췌하여 적었고 그 외에 사람이 문 경우, 화혜로 가격한 경우, 이마 팔꿈치, 무릎, 머리로 가격한 경우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전부이다. 즉, 이 항목은 타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의 정리를 위해 그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9)『무원록』권하「拳手足踢死」, 438-440쪽.
30)『무원록』권하「拳手足踢死」, 440쪽.
31)『무원록』권하「拳手足踢死」, 440쪽.

<표 3> '他物'의 범위에 대한 규정 비교

| | 『당률소의』 (『송형통』) | 『세원집록』 | 「고시정식」및 斷例 | 『무원록』 |
|---|---|---|---|---|
| 기 본 정의 | 손과 발로 한 것이 아닌 나머지 | | | |
| | 칼날이 없는 병기 | | | |
| 嚙人 | | 사람을 문 경우 타물 (鬪訟勅) | 사람을 문 경우 手足으로 상처를 낸 경우와 保辜기간이 동일 (斷例) | 사람을 문 경우 手足으로 상처를 낸 경우와 保辜기간이 동일(斷例) |
| 靴鞋 | | 靴鞋는 딱딱하고, 견고한 경우 | | 화혜는 딱딱하지 않아도 모두 타물 |
| 머리 | 머리로 가격하는 것도 손발에 포함 | 이마, 팔꿈치, 무릎, 머리로 받아 가격하여 치사한 경우는 타물 | | 이마, 팔꿈치, 무릎, 머리는 모두 수족에 해당. 치사한 경우는 타물. |
| 타 물 사례 | | 쇠로 만든 채찍, 자, 도끼머리, 칼등, 나무방망이, 말채찍, 장작, 벽돌, 돌, 기와, 거친 천으로 만든 신(粗布鞋), 밑바닥 창을 기워 덧댄 신(衲底鞋), 가죽신(皮鞋), 짚신(草鞋) 등 | | 쇠로 만든 채찍, 자, 도끼머리, 칼등, 나무방망이, 말채찍, 장작, 벽돌, 돌, 기와, 거친 천으로 만든 신(粗布鞋), 밑바닥 창을 기워 덧댄 신(衲底鞋), 가죽신(皮鞋), 짚신(草鞋) 등 |

그 다음으로 왕여는 『세원집록』과 「고시정식」의 내용을 비교하던 중 "피육이 가지런하게 잘려진 경우"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고민하였던 듯하다. 그는 「今古驗法不同」에서 "피육이 가지런하게 잘려진 경우"에 대한 다른 해석을 소개하였다. 『결안식』(즉 「고시정식」)에는 "피육이 가지런하게 잘려진 경우 이는 칼에 상처를 입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세원록』에는 "피육이 가지런하게 잘리어져 있으면 이는 사후에 거짓으로 칼로 베인 상처를 만든 것이거나 타물로 상해를 한 것"이라 적고 있다고 언급하였다.[32] 그는 『결안식』에 근거하여 「刃傷死」라는 새로운 항목을 배치하면서, "상흔의 피부가 가지런하게 잘려 있다면 칼날 등에 의해 죽은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결안식』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아울러 『세원집록』 「살상」의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서도, "만약 피육의 흔적이 가지런하게 잘려져 있다면 사후에 칼로 인한 상처를 내어 가장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다시 『세원집록』의 이 부분을 언급하며, "살의 흔적이 가지런한 경우에 대한 설명은 지금의 「고시정식」과는 다른데 앞에서 이에 대해 이미 논의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33] 왕여는 「고시정식」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그리하여 각론인 「인상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고, 가장 마지막에 이

32) 『무원록』 권상 「고금험법부동」, 64쪽.
33) 『무원록』 권하 「인상사」, 416, 422, 430쪽.

부분을 다시 언급하며 『세원집록』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왕여가 『세원집록』의 기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食氣頶之辨"과 관련한 내용이다. 문제가 된 기록은 『세원집록』의 자해와 관련한 부분에서 기도와 식도가 끊어진 것과 관계된 것이다. 즉, "스스로 숨통 아래를 끊은 경우 한 번의 칼의 흔적이 있다. 만약 현장에서 죽었을 때는 상처의 깊이는 1촌 7분이며, 식계, 기계 모두 끊어졌을 것이다. 만약 상해를 입은 지 하루 이상 지난 후 죽었다면 깊이는 1촌 5분이며 식계는 끊겼을 것이고 기계는 조금 파열되었을 것이다. 만약 상처를 입은 지 3-5일 이후 죽은 자의 경우 깊이는 1촌 3분이다. 식계가 끊어지고 반드시 머리와 상투 등이 흐트러져 있을 것이다."[34] 왕여는 혹자가 이 구절을 보고 "식계는 앞에 있고, 기계는 뒤에 있다. 이로써 다행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식, 기계가 『결안식』의 "食氣頶"이라 덧붙이고 있다. 「고시정식」의 "자해사"에는 "목 아래 상처가 한 군데 있고 길이는 약간 촌, 깊이는 약간 분이며 식, 기상이 끊어져 있으면 생전에 칼로써 자해하여 죽은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35] 그런데 왕여는 이에 대해,

> 내가 일찍이 醫書를 읽었는데, "무릇 사람의 몸에는 咽이 있고, 喉가 있다. 후는 앞에 있으며 공기가 통하고, 인은 뒤에 있으며 음식물을 삼킨다. 두 구멍은 각각 서로 붙어 있지 않다. 후는 하늘의 기운에 응하여 폐로 통하고, 아래로 폐경에 닿아 호흡의 길이 되며, 인은 땅의 기운에 응하여 위로 통하고 아래로는 위장에 연결되어 음식물의 통로가 된다." 문장을 뒤집어 뜻을 드러내니 『세원록』의 설명이 통하지 않게 되어 진실로 후대 사람이 전하는 과정에서 식, 기 두 글자를 뒤집어서 써서 어그러지게 된 것이다.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喉氣頶은 앞에 咽食頶은 뒤에 있으며 의서로 가히 증명할 수 있다. 나는 異說을 좋아하지 않아 의서로 증명하니 역시 오로지 그 뜻만이 옳았다. 진실로 이는 나의 말이니 여기서 다 말하지 않은 바가 있어도 역시 미루어 알 수 있다.[36]

왕여는 혹자가 『세원집록』의 기록을 보고 식계가 앞에 있고, 기계가 뒤에 있다고 정리한 견해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그의 근거는 醫書였다. 그가 본 의서에 따르면 공기가 통하는 후, 즉 기계가 앞에 있고, 음식물이 통하는 인, 즉 식계가 뒤에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의서의 내용이 정확함을 믿고,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세원집록』의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식, 기 두 글자를 혼동하여 적은 결과라 여기고 이를 바로 고치고자 의서를 근거로 삼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왕여는 「자해」부분을 설명할 때, 『세원집록』의 「자형」부분을 인용하면서 식, 기

34) 『세원집록』 권4 「자형」, 105쪽.
35) 『元典章 · 吏部』 권6 「儒吏考試程式」, 435쪽.
36) 『무원록』 권상 「食氣頶之辨」, 94-96쪽.

가 언급되는 부분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식, 기 순서를 그대로 쓰고 있다.[37] 즉 그가 의서를 참고하여 바로잡은 내용대로 수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는 나의 말이니 여기서 다 말하지 않은 바가 있어도 역시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가 앞에서, "비록 지금 두 책을 하나로 만들지만 감히 망령되이 고치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것과 상응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여기서 서로 다른 異論을 해결하기 위해 참고한 것이 '의서'라는 점이다. 대만의 학자 張哲嘉는 '중국전통법의학'의 지식성격을 규명하면서 법가와의 연관성이 매우 깊고, 의가와의 연관성은 그리 깊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38] 그러나 『무원록』을 보면 '의가'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곳곳에 '의가'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39] 위에서 '의서'를 참고하여 식, 기상의 판별에 오류를 잡고자 한 것도 의학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실례이다. '중국전통법의학'의 지식 성격을 규명하면서 전통 지식체계에서 법가에 속하느냐 혹은 의가에 속하느냐라는 식의 결론은 논의를 다시 이분법적으로 몰아가는 한계를 보인다. 그보다는 당시의 검험지식이 당시의 의학 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선입견 없이 고찰해 보는 것이 당시의 검험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왕여는 刃物로 인한 자해를 설명하면서 『세원집록』의 식, 기 관련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그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의서를 인용하면서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 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세원집록』의 기록을 마음대로 고치지 않아 또한 그 신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학적 내용을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검험서의 저자가 의서를 충분히 참고하였음을 말해준다. 의서 또는 당시 의학에서 지식을 구했던 태도는 송자의 『세원집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태도로 송자는 그저 병환으로 죽은 환자를 검험할 때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언급했다든지 임산부 및 죽은 태아를 검험할 때 산파에게 도움을 청하는 정도였다. 왕여는 직접 의서를 참고하여 『무원록』에서 언급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검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송자는 당시까지의 검험지식을 정리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얻어진 견해들을 덧붙여 『세원집록』을 편찬하였다. 그의 작업은 당시까지 여러 책에서 산발적으로 전해오는 지식을 기초로 정확한 용어의 사용을 시도하고 사체가 현 상태로 있게 된 원인을 언급하며 그리고 유사한 사체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이점 등을 보충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왕여의 『무원록』은 대체로 『세원집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따랐

37) 『무원록』 권하 「자해」, 451쪽.

38) 張哲嘉, 「"中國傳統法醫學"的知識性格與操作脈絡」,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44, 2004, 1-30쪽.

39) 『무원록』 권상 「病死罪囚」, 118쪽.

다. 그러나 검험 법률 규정 상 또는 검험 지식 상 『세원집록』과 「고시정식」의 다른 내용 및 사이사이 혹자들이 전해주는 異見들에 대한 정리와 수정을 가하였다. 원대까지 더욱 세밀해진 법률 규정들을 반영하였고, 의서를 통해 이견들을 정리한 흔적들은 송원 시기 검험지식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맺음말

송・원 시기는 그 이전 시기부터 발전해 온 중국 전통 '검험지식'이 더욱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였다. 『세원집록』과 『무원록』의 편찬과 발간은 이를 압축적으로 드러내 준다. 다만 『세원집록』은 이전의 산발적으로 전해오는 지식을 정리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의 축적을 적극 반영하여 하나의 검험서로서 그 전체적 규모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무원록』은 당시 조정의 반포를 거친 검험지식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세원집록』의 내용을 재편함으로써 당시의 검험지식을 좀 더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분명한 계승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왕여가 『무원록』의 서두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수 있다.

> 무릇 『세원록』은 고서이며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많으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불편함 점도 역시 있다. 어찌 하나하나 다 살피겠는가? 두 책이 서로 득실이 있으므로 비록 지금 하나로 만들지만 감히 망령되이 고치지는 않았다. 반드시 사건에 임해 살피고 참작하여,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그 좋은 것을 골라 따라야 할 것이다.[40]

소위 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원집록』과 『평원록』을 이름이다.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이 두 책의 내용을 "감히 망령되이 고치지는 않았다." 그는 여러 異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참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형편에 맞게 좋은 것을 골라" 참고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세원집록』의 해당 내용은 거의 모두 『무원록』에 수록되었다. 구성상의 재배치, 항목 분류상의 변동으로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왕여는 『세원집록』의 내용을 거의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아도 무관하다. 다만 그가 근본으로 삼았다고 하는「고시정식」을 기준으로 분류상 및 내용상의 수정 보충이 있었고, 더불어 『평원록』의 내용을 참고하였는데, 그가 『평원록』에서 참고한 내용은 『세원집록』과 거의 중복되므로, 결과적으로 왕여의 『무원록』은 『세원집록』의 내용을 「고시정식」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보충한 형태

40) 『무원록』 권상 「今古驗法不同」, 66쪽.

라고 이해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전 시기의 지식을 기반으로 송자의『세원집록』과 왕여의『무원록』으로 이어지는 검험 지식 자체의 발전은 점점 전문화되는 경향을 띠었다.『세원집록』은 검험 용어의 정확한 사용, 사체의 현 상태를 초래하게 된 원인 규명, 비슷한 사인을 가진 사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등의 형태로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분명 현장에서의 경험의 축적이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무원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반포한 기준을 중심으로 검험 지식을 재편하고 시대마다 다른 법률 규정의 변화를 반영하며 의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異見들을 조율하는 형태를 띠었다.

결국『세원집록』과『무원록』을 통해 볼 수 있는 송원 시기 검험 지식의 형성과 발전은 산발적 형태의 지식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의 집적을 바탕으로 그 규모를 갖추게 되고, 조정의 승인을 거친 기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검험 용어의 등장이나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변화된 법률 규정의 정리 및 의서를 통한 이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송·원 시기의 검험지식은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화 될 수 있었다.

# 大元제국 강남지역 色目人 관원과 강남지배

## — 색목인 行省 長官과 地方行政 長官을 중심으로 —

조 원(한양대)

목 차

1. 머리말
2.. 몽골의 江南지배체제 정비와 색목인 관원의 활약
3. 색목인 관원과 지방통치의 실제
4. 맺음말

## 1. 머리말

몽골 대칸들은 유라시아를 망라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서아시아로부터 동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치리하는데 다양한 종족 출신의 협력자들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대개 몽골에 의해 정복된 지역의 관료, 귀족, 엘리트 출신들로서 몽골제국 중앙정부에 등용되어 대칸에게 통치의 지혜를 제공했다. 또한 몽골인들을 대신하여 상이한 통치 지역에 파견되어 피정복 지역을 직접 치리하는 지방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제국 통치의 경험이 없었던 몽골인들을 대신할 실무형 행정관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쿠빌라이 집권 이후 몽골제국의 정치 중심이 한지로 이동되면서, 몽골의 중원지역에 대한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원제국 초기 몽골로부터 관할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아 한지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던 한인세후 세력과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는 한인들이 중앙을 비롯하여 관부의 요직에서 배제되는 계기가 되었다. 몽골인들이 한지 통치에 활용했던 한인들을 대신하여, 대원제국의 官界에서 색목인들의 비중이 확대되어 이들이 몽골 조정내부를 비롯하여 지방관부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송정복 이후의 정비된 강남지역의 行省 및 지방관부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몽골의 南宋병합 이후, 강남지역이 몽골제국에 편입었고 강남지역에 화북 지역과 동일한 지방 행정체제가 마련되었다. 대원제국 내의 지방관부가 증설됨에 따라, 지방행정

관원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몽골의 강남지배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南宋 관원들이 원의 지방행정체제에 흡수되었고, 지방행정을 감독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한 다루가치와 總管들 가운데 색목인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본고에서는 몽골제국 초기부터 제국통치의 협력자로 활용되었던 색목인들이 쿠빌라이 집권시기 직접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강남과 화북을 포괄하는 대원제국체제를 구축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종족 복합사회에 기반한 몽골제국에서 타종족 출신들이 몽골의 지배전략과 맞물려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검토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南宋의 통합 및 강남 지역 치리 과정에서 색목인 집단의 부상과 실제적인 역할에 주목하였다. 몽골의 대칸들은 몽골제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상이한 통치전략을 취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편입되었던 강남지역을 치리하는데 있어서 잠재적인 반란의 위협과 통치 환경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색목인 다루가치들을 포진시켰다.

몽골이 강남 지역에 대한 지배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몽골이 南宋의 체제를 계승・보전하였다는 점에서 강남지배의 취약성을 지적한 견해가 있으며[1], 이러한 관점을 계승 발전시킨 연구에 따르면 강남지역사회의 특징과 그에 부합하는 몽골의 경제정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몽골이 강남 지역의 사회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수의 관원들을 수용하는 가운데 강남지배 체제를 유지 보존했다고 보았다.[2] 국내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이 대체로 대원제국 권력의 내적 필요라는 측면을 경시하고 강남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몽골의 강남지배를 몽골 통치자들의 내적 요구원조의 강남병합을 강력한 황제지배체제를 위한 재정의 보고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특히 원의 통치집단의 내적 필요에 따라 진휼과 같은 한법적 지배와 賜與 및 서북에 출진한 직할군의 군비를 위한 기반으로서 강남지역을 확보하고 활용했다고 분석을 내놓았다.[3]

한편, 몽골의 강남지배의 문제를 원의 한지와 강남 통합을 통한 지배체제 확립의 측면에서 전개한 논의들이 있다. 화북지역과 강남지역은 상이한 기후・지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장기간 서로 다른 경제체제와 문화를 일구어왔으며, 중국 역사에서 통합과 분열의 상태를 반복하여 각자의 역사적 궤적을 걸어왔다. 몽골은 마지막으로 南宋을 정복하면서 영토의 병합을 바탕으로 장기간 분열체제 속에 있었던 화북과 강남의 통합을 이루었으며, 강남의 물자를 북방으로 공급하는 안정적인 수취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기반으로 남과 북을 잇는 원활한 경제체제를 구축하였고, 더불어 인적・물적 교류를 비롯하

---

1) 愛宕松男,「元の中國支配と漢民族社會」『元朝史』(東京: 三一書房, 1988)
2) 植松正, 『元代江南政治社會史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7)
3) 이개석,「元朝의 南宋併合과 江南支配의 意義」『慶北史學』21,1998.

여 서적의 유통을 통한 문화・사상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측면에서 통합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종족과 계급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원제국 내부는 여전히 분열의 국면에 처해있었다고 지적한다. 몽골인, 색목인들을 제외하고 여타 종족들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종족 및 계급 갈 갈등이 심화되어갔다는 점에서 사회적 분열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 한편, 국내에서는 몽골 통치자들의 통치 이상과 현실적 요구에 입각한 몽골의 통합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강남지배를 논의한 연구가 최근 발표됐다. 쿠빌라이는 강남지역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남북 상업권을 통합하고 유라시아의 내륙 교역권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5] 이상의 논의들은 몽골의 남송정복과 지배정책을 몽골 통치집단의 요구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써 몽골 통치의 특징과 의미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몽골의 한지 통치, 강남지배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몽골통치집단의 이상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어떠한 충돌에 부딪혔는가하는 과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래 대원제국 통치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그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원대 관인들의 성격과 역할 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6]그 가운데 몽골 통치집단을 대신하여 강남지배에 활용되었던 집단들에 관한 연구로는 대원제국 국고의 원천으로서 강남지역에 주목하고 기존의 향리질서 유지와 지역 엘리트들을 통한 강남지배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7]가 있다. 몽골의 강남지배의 실제적인 측면을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으나 재지관원과 세력들을 중심으로 南宋의 지배체제를 계승・활용했다는 점에서 몽골 강남지배의 취약론과 타협론으로부터 진전하지 못했다. 한편, 근래 몽골의 강남지배에 활용되었던 다양한 타종족 집단들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원대 몽골의 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강남지역으로 이주한 몽골 색목인 僑寓人들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종족 연합적 지배체제와 문화교류의 문제를 다룬 연구성과[8]가 있으며 원대 오르톡 상인들의 활동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원제국이 해상무역이 팍스 몽골리카의 동인이되었다고 보는 연구[9]와 원의 운남통치에 활용되었던

4) 蕭啓慶,「元朝的 統一與統合: 以漢地, 江南爲中心」『內北國而外中國』(上冊)(北京: 中華書局, 2007)

5) 고명수,「쿠빌라이 시기 몽골의 南宋정복과 江南지배 보전, 개발, 발전의 관점에서 」『東洋史學研究』 116, 2011.

6) 근래 국내 연구자들이 쿠빌라이 시기 관원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쿠빌라이시기 대신들과 관리들 가운데 한인들이 배제되었으며, 몽골인과 색목인들이 요직을 올랐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호동,「쿠빌라이 카안의 大臣들」『東洋史學研究』 125, 2013; 고명수,「쿠빌라이 집권 초기 관리등용의 성격」『동국사학』 55, 2013; 조원,「大元제국 다루가치체제와 지방통치」『東洋史學研究』 125, 2013.

7) 蘇力,『元代地方精英與基層社會 以江南地區爲中心』(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8) 潘清,『元代江南民族重組與文化交融』(南京: 鳳凰出版社, 2006)

몽골, 색목, 한족 관원들과 현지인들의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몽골의 지배를 다룬 연구[10] 등이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원대 사료에 나타난 강남지역에 대한 현안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당수의 색목인 관원들이 강남지배체제에 활용되었던 측면에 주목하여 색목인들을 통한 강남지배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강남지역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색목인 관원들의 활용을 검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행성, 행대 장관과 지방행정 관부의 최고 장관인 다루가치 및 로총관부 장관을 중심으로 강남정복 이후 색목인 장관들의 역할과 위상을 검토하겠다. 치리 과정에서 색목인 다루가치들은 지방 관부에서 다수의 한인관원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였으며, 재지세력들과 접촉을 통해서도 다양한 양상의 교류가 발생했다. 지방통치 과정에서 색목인 다루가치들과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갈등과 협력이 발생했으며, 지방통치에 있어서 색목인들과 한인들의 협력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색목인 다루가치들의 임관 배경, 한지 파견 과정, 지방통치의 실제적인 과정들을 고찰함으로써 몽골 제국통치의 전략으로서 색목인들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이들이 한지통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2. 몽골의 江南[11]지배체제 정비와 색목인 관원의 활약

### 1) 강남 行省체제 정비와 색목인 世家의 형성

징기스칸 시기 이래로 몽골 대칸의 권위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확보되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대칸의 카리스마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을 통해 획득한 인적·물적 자원은 황금가족의 물적 기반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賜與는 황금가족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칸의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中統 원년(1260) 재위에 오른 쿠빌라이는 행정체제의 정비를 통해 한지에 대한 직접지배를 강화함으로써 대원제국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를 기반으로 몽골은 대남송 전쟁을 개시하여 至元 10년(1273)에 襄陽을 점령하였고, 至元 13년(1276) 남송의 수도인 臨安을 함락했으며, 至元 16년(1279)에 남송을 멸망시켰다. 쿠빌라이는 막대한 생산력을 보유한 江南지역을 확보함으로써 화북과 강남을 아우르는 중국의 막대한 인적·물적 자

9) 고명수,「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톡 정책과 해상무역의 발전」『몽골학』34, 2012.
10) 배숙희,「蒙元제국의 雲南統治와 諸 종족간의 소통」『東洋史學研究』114, 2011.
11) 본고에서 언급하는 江南 지역은 江浙, 江西, 湖廣 세 곳의 行省을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대원제국의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되었다. 이 세 행성의 稅額을 합산한 액이 열 한 곳 행성의 세수 총액의 절반을 초과하였던 것을 미루어 대원제국의 강남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가늠케 한다.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쿠빌라이는 강남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남송이 멸망한 직후, 화북지역과 동일한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하였다. 전쟁이 완료된 직후, 반란의 가능성이 잠재되어있던 점령 도시에 按撫司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들을 두어 현지 백성들을 감시하고 다스리게 하였다. 강남지역의 상황이 안정된 이후 원 조정에서는 按撫司를 폐지하고 路總管府를 설치하여 정복지역의 민정을 담당하게 했으며, 각 城에는 錄事司를 두었다. 湖南北, 江東西, 兩浙, 兩淮 지역을 시작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강남지역의 路總管府는 至元17년(1280)에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12] 강남지역의 지배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관원의 확보와 임명을 위해 원 조정에서는 몽골인, 위구르인, 한인 14명으로 구성된 관원들을 남방의 행성에 파견했으며, 그 과정에서 몽골에 투항한 다수의 남송 관원들이 지방관에 재임용되었다.[13]

한편, 강남 지역이 대원제국에 편입되고 강남지역의 지배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시의 임시적 군사기구였던 行省이 路이하의 지방행정관부를 민정과 군정을 관할하는 고정적인 행정기구로 변모되어 갔다. 湖廣, 江浙, 江西의 江南 三省은 몽골이 남송 부대를 섬멸하는 과정에서 건립되었으며, 그 가운데 湖廣行省의 정비에 위구르인 阿里海牙의 업적이 컸다.[14] 湖廣行省의 창건자와 다름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 阿里海牙는 쿠빌라이의 숙위 출신으로서 中統 3년에 中書省郎中을 시작으로 관직생애를 시작했고, 至元 元年(1264)에 參議中書省事를 역임하였다. 이후, 僉南京, 河南, 大名, 順德, 洺, 磁, 彭德, 懷孟 등 路의 行中書省事를 맡았다. 쿠빌라이가 중원지역에 통치체제를 정비한 직후 南宋 經略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行省체제가 마련되었다. 남송 정벌에 참여했던 阿里海牙는 至元 7년(1270) 參知河南等路行尙書省事를 맡았다. 至元 10년(1273) 宋將 呂文煥의 투항을 계기로 襄陽이 몽골에 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阿里海牙가 鄂州지역을 점령함으로써 南宋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湘, 桂, 璟, 黔 등의 성을 정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鄂州에 할거하면서 투항한 백성들을 按撫하고, 징세제도를 마련했으며, 군사 주둔과 관리 임용 등 湖廣行省체제의 기초를 마련했다. 至元 11년(1274)에는 "伯顔, 史天澤을 左丞, 阿術을 平章政事로 하고, 阿里海牙를 右丞, 呂文煥을 參知政事로 하는 荊湖行省체제"가 구성되었다.[15] 이후 至元 13년(1276)에는 平章政事 직을 맡았다. 쿠빌라이로부터 安南, 占城 등 동남 연해지역 정복의 사명을 받들어 至元 20

12) 남송이 정복된 후에 진행된 원 조정의 강남지역 지방행정체제 정비에 관해서는, 조원,「元 前期 達魯花赤의 제도화와 그 위상의 변화」『동아시아문화연구』 51(2012), pp. 288 293 참조.

13) 植松正, 『元代江南政治社會史研究』(東京: 汲古書院, 1997), p.227.

14) 南宋 經略과 江南 지배체제 구축에 있어서 阿里海牙의 활약에 관해서는, 李治安, 『行省制度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pp.239 277; 馬娟,「元代畏吾兒人阿里海牙史事探析」『元史及民族與邊疆研究』 18,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p. 48 59; 植松正, 1997, pp. 271 289 참조.

15) 『元史』 卷8「世祖紀五」(北京: 中華書局, 1975) p.154.

年(1280)부터 23년(1283)에는 연해도서 왕국들의 경략에 나섰다. 至元 23년(1286)에 湖廣行省의 최고위직인 左丞相에 임명됐으나 같은 해 上都에서 사망했다.[16]

남송 정복과 행성체제 정비에 큰 역할을 했던 위구르인 阿里海牙에 이어, 그의 자제들과 일족들은 강남지역의 行省 장관으로서 몽골의 강남지배에 한 축을 담당했다. 그의 자제인 忽失海牙는 湖廣行省 左丞을 맡았고, 貫只哥는 湖廣行省參知政事, 江浙行省參知政事, 河南行省平章政事, 江西行省平章政事를 차례로 역임했으며, 和尙은 湖南道宣慰使직을 맡았다.[17] 또한, 그의 손자인 小云石海涯는 부친이었던 貫只哥의 達魯花赤직을 세습하여, 兩淮萬戶府 達魯花赤을 역임했다. 이상에서 기술한 사실을 통해 阿里海牙의 湖廣 평정을 계기로 원대 色目人[18] 가문을 형성하며 남송 지배의 중요한 역량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阿里海牙 외에도 남송정복과 湖廣 행성을 중심으로 行省지배에 활용되었던 것처럼 강남지역의 行省 建置 및 治理에 색목인 世家들이 참여했다. 江西行省은 원대 강남 지역의 삼대 행성 가운데 하나로, 江西, 廣東 대부분과 福建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江西지역을 정복하고, 行省 체제를 건립하는데, 탕구트 李氏 일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唐兀 李氏는 西夏출신의 색목인 세가로서, 宋元전쟁에서 활약했던 李恒, 李世安을 비롯하여 그 일족들은 몽골제국에서 武將과 官人으로 명성을 날렸다. 宗王 移相哥를 따라 중원 경략에 참여했던 李惟忠은 이후 한지에 들어와 山東 淄州 에 임명되었으며, 일족들이 淄州 지역에 대대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 李恒은 쿠빌라이 시기 남송 경략에 투입되었고, 江西 지역 경략과정에서 활약을 보였다. 강서 지역이 평정된 후, 至元 17년(1280), 李恒은 “”[19]에 올랐고, 자제 李世安은 廣州路 達魯花赤직을 시작으로 同知江西宣慰司事, 僉江西等處行中書省事, 江西行省參知政事를 역임했고, 江西行省平章政事로 致仕했다.[20] 李恒, 李世安뿐 아니라, 唐兀 李氏

---

16) 馬娟,「元代畏吾兒人阿里海牙史事探析」,pp.49 50.

17)『元史』卷128「阿里海牙傳」, p.3128; 歐陽玄,『圭齋文集』卷9「貫公神道碑」, 四部叢刊本.

18) 몽골통치자들은 제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족들을 범주화했고, 그 가운데 위구르, 回回, 也里可溫 등 서역에서 이주하여 온 종족들을 통칭하여 色目人이라 했다. 이 가운데 위구르 인들은 9세기 서역으로 이주하여 高昌[Qara Qocho]과 別失八里에 정착했던 回紇人을 지칭한다. 이들은 정주생활하며, 위구르 문자를 만들었고, 文學, 藝術에도 조예가 깊었다. 몽골제국 초기 塔塔統阿, 岳璘帖穆兒 등의 위구르출신 엘리트들이 궁정에서 文敎를 담당하고, 번역과 통역을 담당했다. 湖基德,「元代畏吾兒人華化的再探討」『中國邊境史學術研討會論文集』(臺北: 蒙 藏委員會, 1995), pp. 169 201; 蕭啓慶,「元朝多族士人圈的形成初探」『南北國而外中國』(下)(北京: 中華書局, 2007), p.481 참조. 몽골제국 시기 위구르인들과 관한 연구로, Michael C. Brose, *Subjects and Masters: Uyghurs in the Mongol Empire* (Bellingham: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007); 尙衍斌,『元史畏兀兒研究』(北京: 民族出版社, 1999) 원대 색목인에 관한 연구는, 張沛之,『元代色目人家族及其文化傾向研究』(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19)『元史』卷129「李恒傳」

일족은 湖廣, 江浙, 河南의 行省을 중심으로 고위관직을 맡으며 몽골의 강남지배의 한 축을 형성했다. 이들은 江西지 역 정복, 建省, 治理의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특히 몽골의 江西지역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軍事, 行政, 司法刑獄 등 군정과 민정을 모두 관할했다.[21]

이렇듯 南宋 정복 과정에서 투입되었던 위구르, 탕구트 등 색목인 출신 장수들은 강남지역에 行省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行省관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들의 자제들과 일족들이 江南 일대 관원으로 임명되면서 색목인 世家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를 형성했다. 이는 쿠빌라이 집권 초기 직접지배과정에서 한인세후 세력들과 충돌하고, 한인들의 반란을 계기로 몽골의 한인들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난 한지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몽골제국 초기부터 제국의 건설에 참여했던 색목인들은, 몽골의 강남지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몽골제국내에서 다종족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몽골제국 통치의 한축을 담당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했다.

한인들을 대신하여 다수의 색목인들이 한지 통치에 활용되었다. 특히 몽골이 강남지역의 다수 한인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武將으로 투입되었던 색목인 장수들을 行省 長官으로 임명했으며, 路,府,州,縣의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색목인들이 다루가치 및 地方長官에 임명되었다.[22] 색목인 관원들은 대부분 반정주・반유목 출신자들로서 정주지역과 유목지역에 대한 언어, 문화적 이해를 갖추며 몽골통치자와 피정복지역 사이에서 교량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기후・환경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 강남지역이 체류할 수 없었던 몽골인 관원들을 대신하여 몽골의 강남지배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시기별 鎭江路 達魯花赤의 종족구성을 중심으로 강남지역 색목인 지방관원들의 역할을 검토하겠다.

### 2) 강남지역 色目人 지방관원: 鎭江路 達魯花赤를 중심으로

원 조정은 남송 정벌과정에서 강남지역에 대한 지배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路總管府를 설치해갔다. 湖南北, 江東西, 兩浙, 兩淮 지역에 이어 廣東, 海南海北, 四川에 路總管府를 설치했고, 마지막으로 廣西에 설치함으로써 강남지역의 路總管府체제는 至元 16, 17년에 완성되었다. 路總管府와 그 이하의 府, 州, 縣에 관리들을 임명했고, 각급 관부에 다루가

20) 吳澄, 『吳文正集』 卷42「元故榮祿大夫江西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李公墓誌銘」『元人文集珍本總刊』 3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1985), p.580.

21) 원대 몽골 강남지배에서의 唐兀 李氏世家의 역할에 관해서, 張沛之, 2009, p.160 171 참조.

22) 植松正은 몽골의 강남지역 지배에 관한 연구에서 강남 行省 宰相의 명단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명단 가운데 위구르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탕구트 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들이 몽골 세력의 비호 하에 새로운 활동의 무대로서 남중국 지역에서 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植松正, 1997, pp.185 221.

치들을 두어, 행정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했다.『至順鎭江志』에는 鎭江路와 소속 錄事司와 縣에 임명된 장관의 종족구성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있다. 아래 표에는 至元 12年부터 26年까지 다루가치들의 종족구성을 보여주고 있다.[23]

<표 1> 至元 12年부터 至順 2年 鎭江路 다루가치

| 인명 | 종족 | 작위 | 임관일자 및 재임기간 |
|---|---|---|---|
| **鎭江陰鎭江安撫使司達魯花赤（至元12－13年）** | | | |
| 忽剌出 | 蒙古 | 蒙古萬戶（兼達魯花赤） | 至元12年3月 |
| 李占哥 | 汉人（女真） | 壽州等處招討使(行達魯花赤） | 至元12年3月 |
| **鎭江府路總管府達魯花赤（至元13－26年）** | | | |
| 昔剌罕 | 蒙古 | 昭勇大將軍 | 至元13年2月 |
| 严忠杰 | 汉人 | 昭勇大將軍兼管軍萬戶 | 至元14年3月－15年5月 |
| 马薛里吉思 | 色目(也里可温） | 懷遠大將軍 | 至元15年正月－8月 |
| 张炤 | 汉人 | 太中大夫 | 至元15年11月－16年5月 |
| 史桓 | 汉人 | 嘉議大夫 | 至元16年10月 |
| 札剌儿丁 | 色目（回回） | 朝列大夫 | 至元20年8月－22年11月 |
| 忻都察 | 色目（回回） | 通議大夫 | 至元22二年11月－26年正月 |
| **鎭江路總管府達魯花赤兼管內勸農使(至元26－至順 2年)** | | | |
| 帖哥术 | 色目（畏兀儿） | 太中大夫 | 至元26年正月　28년12月 |
| 撒的迷失 | 色目（畏兀儿） | 昭武大將軍 | 至元28년12月－元貞元年正月 |
| 斡魯勸牙里 | 色目（畏兀儿） | 中議大夫 | 元貞元年正月－大德元年12月 |
| 卓馬兒 | 色目（回回） | 中議大夫 | 大德元年12月－4年11月 |
| 烏馬兒 | 色目（回回） | 少中大夫 | 大德4年11月　7年6月 |
| 狗兒 | 色目（畏兀儿） | 太中大夫 | 大德7年11月　10年11月 |
| 廉都魯迷失海牙 | 色目（畏兀儿） | 少中大夫 | 大德10年11月　11年7月 |
| 闊里吉思 | 色目(也里可温） | 亞中大夫 | 至大元年8月　皇慶元年12月 |
| 太平 | 色目(也里可温） | 中大夫 | 皇慶元年12月　延祐3年11月 |
| 亦剌馬丹 | 色目（回回） | 武德將軍 | 延祐3年11月　6年6月 |
| 朶兒只 | 色目（畏兀儿） | 安遠大將軍 | 延祐3年6年6月　至治2年6月 |
| 兀魯失海兒 | 色目（畏兀儿） | 中大夫 | 至治2年6月　泰定2年6月 |
| 答合納 | 色目(康里) | 嘉議大夫 | 泰定2年6月　天曆元年7月 |
| 明里答失 | 色目（畏兀儿） | 中大夫 | 天曆元年7月　至順2年6月 |
| 狗兒 | 色目（畏兀儿） | 嘉議大夫 | 至順2年6月 |

23)『至順鎭江志』 卷15,「元剌守」(南京: 江蘇古籍出版社,1999)

<표 2> 至元 12年부터 26年 鎭江路 관할 錄事司, 縣다루가치[24]

| | | | |
|---|---|---|---|
| **錄事司達魯花赤** | | | |
| 侯景安 | 蒙古 | | 至元13年闰3月 |
| 田愿 | 汉人 | 進義校尉 | 至元15年5月 |
| 忻都 | 色目（畏兀儿） | 進義副尉 | 至元20年11月 |
| 亦剌马丹 | 色目（回回） | | 至元24年2月 |
| **丹徒縣達魯花赤** | | | |
| 苍博都察 | 色目（察剌温） | 忠翊校尉 | 至元12年10月 |
| 伯牙兀歹 | 色目（河西） | 敦武校尉 | 至元14年正月 |
| 阿老瓦丁 | 色目（回回） | 忠顯校尉 | 至元14年2月 |
| 亦速福铁直 | 色目（回回） | 修武校尉 | 至元21年正月 |
| 帖木海牙 | 色目（畏兀儿） | 承務郎 | 至元25年2月 |
| **丹阳縣達魯花赤** | | | |
| 张振 | 汉人 | 進義副尉 | 至元12年3月 |
| 乌马儿 | 色目（回回） | 敦義校尉 | 至元14年 |
| 火者赤 | 色目（回回） | 進義校尉 | 至元18年 |
| 木斜飞 | 色目（回回） | 進義校尉 | 至元25年 |
| **金坛縣達魯花赤** | | | |
| 亦黑迷失 | 色目 | | 至元13年9月 |
| 张振 | 汉人 | | |
| 沙不丁 | 色目（回回） | | |
| 爱速丁 | 色目（回回） | 敦武校尉 | 至元19年9月 |
| 众家奴 | 色目 | 承務郎 | 至元20年7月 |
| 拜降 | 色目 | 承事郎 | 至元22年10月 |
| 要斜不 | 色目 | 敦武校尉 | 至元23年10月 |

원 조정에서는 至元 12년(1275) 鎭江路를 복속한 직후 임시적 軍政 기구의 성격을 지닌 江陰鎭江安撫使司를 설치하였다가 강남 지역에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통치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至元 13년(1276) 지방행정기구인 鎭江府路總管府를 설치하고 安撫使司는 폐지했다. 원의 남송 지배가 안정화된 이후, 조정에서는 至元 26년(1289)에 鎭江府路를 鎭江路로 개칭하고 다루가치와 總管에게 勸農使의 직임을 함께 주어 民政에 주력하게 했다.[25] 위의 <표1>에 따르면, 남송 정복전쟁에 武將으로 활약했던

24) 지면상의 한계로『至順鎭江志』기재된 鎭江路 관할 錄事司, 縣다루가치는 강남지역의 지방행정체제가 완비되었던 至元 12年부터 26年까지 임명된 자들로 한정하였다.

25) 남송 정벌 시기 강남 다루가치체제 정비와 변화에 관해서, 拙稿,「元 前期 達魯花赤의 제도화와 그 위상의 변화」『동아시아문화연구』51(2012),pp.288 297 참조.

몽골인과 한인들이 복속지역의 임시적 軍民政 기구인 安撫使司에 임명되었다. 至元 15년(1278) 강남 정복이 완료된 이후부터 11월부터 문관출신들이 다루가치들을 맡았던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몽골의 南宋 정벌 전쟁이 끝나면서 강남지역에 대한 정복 활동이 안정적인 통치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路總管府 다루가치의 종족 구성을 살펴보면, 색목인 다루가치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至元 15년(1278)이후 몽골인은 다루가치는 찾아볼 수 없으며, 至元 20년(1283)부터는 색목인들만이 路總管府 다루가치에 임명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표2>에서도 나타나듯이, 鎭江路의 錄事司도, 같은 해부터 색목인들만이 錄事司다루가치에 위임되었으며, 직할 縣에는 지방행정체제가 정비된 초기에 한인이 다루가치로 임명되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색목인들이 縣다루가치를 맡았다.

이상의 표에서 나타난 鎭江路 다루가치 종족 출신에 있어서 색목인들이 다수 임용되었던 것은 쿠빌라이 시기 대한인정책과 강남통치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측면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빌라이 집권 초기, 대한지 지배체제를 직접지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쿠빌라이의 세력기반이 되었던 한인세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과 세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충돌이 격화되어 나타났던 李璮의 반란을 계기로 쿠빌라이는 한인들을 관계의 요직에서 배제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至元 5년(1268)에 “모든 한인 다루가치들을 해임시키도록 하라”[26]는 명을 내렸다. 이후 남송 정벌과정에서 투입되었던 한인 무장들이 임시적인 행정기구의 다루가치에 임명되기도 했지만, 강남지역이 안정되자 至元 16년(1279)에 원 조정에서는 한인들을 다루가치에서 해임할 것을 논의했다.[27] 이러한 몽골 통치자의 정책으로 인해 강남지역의 路總管府와 직할 縣에 한인들이 배제되었으며 다수의 색목인들이 앞서 보았던 行省을 비롯하여 지방관부의 요직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인들이 임관에 제한을 둔 이후, 그들을 대체할만한 세력으로서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의 수적 열세와 실무행정 능력의 취약한 점을 보완해줄 존재들로서 색목인들이 적극 활용되었던 것이다. 색목인들은 남송 정복 전쟁과정에서 활약했던 몽골 북방으로 귀환한 이후, 행정 장관으로서 대거 투입되었다. 이는 몽골통치자들이 색목인들을 통한 강남 지배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몽골통치자들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至順鎭江志』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남송 정벌 전쟁에서 활약했던 몽골인 무장들이 격전지역이 원에 복속된 이후 현지 다루가치에 임명되었으나, 임명된 직후에 북방으로 귀환하여 鎭江路 다루가치직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8]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

26)『元史』卷6「世祖紀三」, p.106.
27)『元史』卷10「世祖紀七」, p.216.
28)『至順鎭江志』卷15,「元刺守」,p.594.

없지만 북방의 건조한 기후에서 생활하던 몽골인들이 남방의 다습한 기후와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색목인 관원과 지방통치의 실제

쿠빌라이가 자신의 근거지인 한지를 중심으로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관료행정기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관료기구의 원활한 운용과 대칸으로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북방 宗王 세력을 방비하고, 넉넉한 사여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적인 공급처가 필요했으며, 그러한 목적에서 南宋 통합전쟁이 전개되었다.[29] 몽골의 강남지배 정책은 南宋 통합전쟁 본연의 목적대로 안정적인 수취체계 정비를 통해 몽골제국의 재부의 원활한 공급과 직결되었다. 이후 강남지역은 실제로 원 정부 세제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湖廣, 江浙, 江西의 三省이 세수입의 70% 이상을 부담했다.[30]

원 조정에서는 한지에서 대칸의 직접지배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강화했으며,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해 각 지방장관의 종족구성에 있어서, 몽골, 색목인, 한인이 공조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至元 2년(1265)에 조를 내린바 있는데,[31] 강남의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강남지배를 위해 몽골, 색목인, 한인이 연합하여 공조체제 속에서 효과적으로 강남지역을 치리하도록 주문했다. 至元 22년(1285) 江西行省에서 조정에 올린 上奏文에서, "앞서, '몽골, 회회, 위구르, 남인들과 함께 공조하여 일하도록 하라'고 성지를 내리셨는데, 현재 남방 지역을 보니, 城에 몽골, 回回, 위구르인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하자, 조정에서는 징기스칸이 한지를 수복할 때, 몽골인, 서역출신 무슬림, 한인으로 하여금 함께 공조하여 치리하게 했었던 선례를 들어, 강남지역에서도 몽골, 色目인과 현지인이 함께 공조하여 지방행정을 운용할 것을 명했다.[32] 몽골제국에서는 일찍이 제국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몽골, 색목인들을 정복지역에 파견하여 지방을 치리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현지의 할거세력과 협력하면서 그들을 감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조체제가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제국통치의 현실적인 방식으로서 지향되어 왔다. 강남지역을 지배하는데 있어서 몽골지배집단은 몽골인들와 회회, 위구르을 강남 행정기구의 실제적인 권력집단으로 삼아 현지인들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강남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 소수의 몽골인들만이 강남지역에 임관하여 강남통치에 참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강남지

29) 이개석,「元朝의 南宋併合과 江南支配의 意義」, p.17.
30) 張沛之, 2009, pp.31 32.
31)『元史』卷6「世祖紀三」, p.106.
32)『元典章』卷8,「吏部一 · 官制二 · 選格」"色目漢兒相參勾當"條, p.246.

배에서 투입되었던 것은 위구르인, 탕구트인, 무슬림과 소수의 네스토리안들이었다.

대원제국의 財富의 공급처로 주목되었던 강남지역에 안정적인 수취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豪民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강남의 호민세력들 가운데에는 일찍이 몽골의 남송 정복 전쟁시기 투항하여 원 조정에 협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받았던 경우가 있었으며[33] 원의 지배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南人출신의 말단 관리들과 결탁하여, 지방에서의 지위와 부를 유지하기도 했다.[34] 실제적으로 '지주세력'들이 세가 상당하여, 몽골이 강남지역에 안정적인 수취체제를 마련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至元 31년(1294) 원 조정에 보고된 上奏文에 관련된 기록이 나와있다.

> "대칸이 재위에 오르시고 반포하신 조서에 따르면, '漢兒、蠻子 백성들에게 금년의 세액 가운데 三分을 면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항주의 성관들이 보낸 문서에 따르면, '蠻子 백성들은 漢兒 백성들과 달리, 富戶들마다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백성들 토지가 없어, 부호들의 땅을 경작하고, 또한 세를 납부합니다. 지금처럼 稅糧 가운데 三分을 면하게 된다면, 지주들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지주들이 佃戶들에게 稅糧을 요구한다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佃戶들에게 二分만을 감면해주고, 지주로 하여금 佃戶들에게 부담시켜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35]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南宋이래로 형성되어온 강남지역의 地主들은 토지겸병을 통해 지역의 부를 독점하고 뿌리깊게 견고한 세력을 형성하며, 佃戶를 수탈함으로써 이중고에 시달려 도탄에 빠지게 했으며,[36]몽골의 직접적인 대민 지배를 어렵게 했다. 이는 원 조정으로부터 강남지역에 파견되었던 타종족 출신 지방장관이 강남지역을 치리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했다. 강남지역에 임관된 다루가치들은 이러한 몽골 강남지배의 현안에 직면하여,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통해 府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취체계의 유지를 통해 몽골제국의 안정적인 재정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주력했다.

至元 연간, 信州路 總管, 平江路 總管을 역임했던 위구르인 道童은 江淮 지역의 세수를 관할하여 대칸실에 사용할 財貨를 공급하는 江淮等處財賦都總管府[37] 達魯花赤직을 맡았

---

33) 植松正은 朱淸과 張瑄을 중심으로 일찍이 몽골에 투항하여 남송 정벌과 강남 지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강남 豪民세력들에 관해 분석했다. 植松正, 1997, pp. 297 300.

34) "蠻子田地裏富戶每多, 書吏每蠻子人內委用, 有資那富戶每來往, 勾當裏窒礙有."(『元典章』 卷12,「吏部六 · 職官吏員」 "保擧官員書吏 "條, p. 449)

35) 『元典章』 卷3,「聖政二 · 減私租」

36) "平江土壤雖沃腴, 而頻年曠潦, 民氣破傷, 重以貪殘侵牟, 費出無藝, 舊號兼并而以財雄吳下者, 數年來困于誅求, 殫于掊剝, 至蕩析奔潰, 父子兄弟不相保。"(鄭元祐, 『僑吳集』 卷11「前平江路總管道童公去思碑代貢推官作」, 『元代珍本文集彙刊』, 臺北: 國立中央圖書館編印, 1970)

37) 江淮等處財賦都總管府를 비롯하여, 江浙等处财赋都总管府와 각종 提举司는 대부분 강남지역에 분

다. 그는 임직기간 동안, 세수가 부족할 경우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충당했고[38], 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관부에서 사용할 물자를 확보하고, 민간의 화폐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전개했다.[39] 또한, 강남지역에서 지주세력들이 지방관부의 坊正을 충원하여 관부의 물자를 사사로이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자 道童은 이를 금지하는 令을 내림으로써 폐단을 바로잡아 지주세력의 전횡에 제제를 가했다.[40] 이외에도, 강남지역의 路, 縣에 임관한 색목인 다루가치들은 지방의 재지세력들의 발호행위에 제제를 가하고[41], 부당한 항목으로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42] 주도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의 안정을 꾀했다.

南宋 시기부터 장기간 재지세력으로 견고하게 지방에 뿌리를 내린 지주세력들은 몽골의 강남지배와 안정적인 財源 확보를 위협하며, 지방관원들과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몽골 통치자들은 실무행정과 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색목인들을 강남지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색목인들은 강남지역의 行省 장관, 다루가치, 總管 등의 관직에 위임되어 지방의 발호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자율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지방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南宋이 몽골에 병합되면서, 강남지역의 막대한 경제적·인적 자원이 대원제국에 편입되었고, 대칸과 몽골 지배집단의 물적 기반이 되었다. 강남지역의 토지와 戶口는 諸王을 비롯한 황금가족과 공신들에게 분배되어 몽골통치집단의 家産制적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어 대칸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으며, 강남지역의 막대한 토지로부터 확보된 세수는 제국을 운용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관원들의 俸祿이 되었

---

포한 官田를 관할하는 기구로서, 원 정부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財源을 관할했다. 白壽彝, 『中國通史』 13(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p. 745 746.

38) "稅務月虧課, 郡遣官監收, 則務預抑商賈以足之, 次月則復虧課耳."(鄭元祐, 『僑吳集』 卷11「前平江路總管道童公去思碑代貢推官作」)

39) "郡用物和雇和買, 官償其直, 動經歲年.公至, 物裁入官, 鈔卽償民, 民大便之."(鄭元祐, 『僑吳集』 卷11「前平江路總管道童公去思碑代貢推官作」)

40) "郡素富侈, 百司與寓公宴客排辦皆出於坊正。坊正者, 郡富民輪充, 宴散家奴留其什器, 須坊正出鈔, 乃得什器還。公正身率物, 私第未嘗燕客, 人家宴席為之稀少, 坊正獲少蘇云。酒課户供讌席必上等名酒, 公一切禁止, 酒課辦集。"(鄭元祐, 『僑吳集』 卷11「前平江路總管道童公去思碑代貢推官作」)

41) 裂奸貪, 震豪橫, 抑奔競之風, 禁苛暴之政, 使民畏刑。"(程鉅夫, 『雪樓集』 卷15「溫州路達魯花赤伯帖木兒德政序」『元代珍本文集彙刊』, p.593)

42) "津助賦役法……考之縣乘, 驗其消長, 而均征之"『僑吳集』 卷11「長洲縣達魯花赤元童君遺愛碑」, pp. 475 - 478.

다. 또한 강남의 경제력은 광역 해상 교역망을 통한 몽골제국의 상업 경제체제에 활력을 더하였다.

몽골의 강남지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은 색목인들이었다. 한인들이 중원지배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그 위상이 격하되고 요직에서 배제되면서, 색목인 관원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지방관부에서 색목인 관원들의 활약은 남송병합과 강남지배체제 정비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南宋 정복 과정에서 투입되었던 색목인 출신 장수들은 강남지역에 行省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行省 장관으로 임명되어 강남지역 행성체제 확립에 한 축을 담당했으며, 그 일족들은 江南지역의 관부에 임명되어 강남지역의 색목인 世家를 형성했다. 한편, 정복전쟁 직후 강남지역 행정관부에 몽골인 무장들이 임명되기도 했으나, 이들은 북방과 상이한 남방의 기후·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화북지역으로 서둘러 귀환했다. 그 결과 몽골이 강남지역에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색목인들이 다루가치, 總管직에 임명되어 강남지역의 지방행정을 총괄했다. 몽골 통치자들이 다수의 색목인들을 지방관부에 파견하였던 데에는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수취체제를 마련하고, 강남지역으로부터 물적 자원을 원활하게 공급받는데 있어서 상업활동과 理算에 밝은 색목인들을 강남통치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남지역에 파견된 색목인들은 장기간 지방에서 부를 축적하며 세를 과시해왔던 지주세력들과 협력·충돌하며 지방행정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다. 몽골 통치집단의 요구에 부합하여 이들은 강남지역의 경제질서 안정화에 주력하였으며, 색목인 관원들은 주도적인 경제정책과 법적 조치들을 통해 지방의 부민들을 착취하고, 하급관료들과 결탁하여 몽골의 질서체제에 긴장을 야기했던 지주세력들에게 제제를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색목인 출신 지방관원들은 몽골통치자들의 수족이 되어 강남지배에 있어서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겠다.

# 송대 황실의 가계 수입과 지출

조 복 현(경희대)

목 차

1. 머리말
2. 황실의 생활
3. 황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출
4. 종실의 생활

## 1. 머리말

황실은 황제의 가족으로서 황제의 부인만 하더라도 황후를 비롯한 內命婦 5품이 있는데 夫人(정1품)은 貴妃 등 네 개의 등급이 있고, 嬪(정2품)은 太儀와 貴儀 등 17개 등급이 있다. 다음으로 婕妤(정3품)와 美人(정4품)과 才人(정5품) 등이 있다. 이렇게 많은 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황자 혹은 황녀라고 하고, 이들 가운데 황제의 후계자로 지목되면 황태자로서 東宮에 거주한다. 다른 아들들은 장성하여 결혼하면 궁궐을 나가서 생활하는데 이들 가운데 왕으로 책봉을 받으면 親王이 된다. 이러한 직계 가족 이외에도 많은 궁녀와 내시들이 궁중에 거주하면서 황실을 위하여 일하면서 황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황실의 대단히 큰 규모로 구성된다.

## 2. 황실의 생활

송왕조가 다른 통일왕조에 비교하여 국력이 강하지 못하고, 재정이 넉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황실과 종실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황실과 종실에 대한 지출은 매우 많은 편이었다.

황실에서 필요한 경비는 주로 太府寺 휘하에 황실의 물품을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內藏庫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각지의 공품으로 충당한다. 내장고는 태종 太平興國 3年(978)에 左藏北庫를 나누어 내장고를 만들고 태조가 건립한 封樁庫의 재물을 보관하게 하면서 처음 설립되었다.

이후 내장고는 재정을 담당하는 三司의 경비가 부족할 때에 대비하기도 하고, 황실의 수요, 3년마다 한 번씩 거행하는 대형 국가급 제사인 南郊, 군사적인 필요, 이재민의 구휼 등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물품 보관 창고가 되었다.[1] 내장고의 기능에서 보이듯이 황실에서 필요한 물품은 내장고에서 공급하는데 황실에 대해서 지출은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지출과 관혼상제 등에 대한 지출로 나누어진다.

황실의 식료품비를 보,면 황궁에는 御廚라고 하는 이를테면 황제의 주방을 뜻하는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여기에 예속된 사람들이 북송 초기에는 "구당관 4명을 경조관으로서 諸寺使나 諸寺副使 및 내시로 충임하고, 요리사와 병사 등 모두 1,069명"이 있었다. 이후 북송대에 가장 많을 때에는 1,521명이 있었는데,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 초기에 700명으로 줄였다가 孝宗 乾道6년(1170)에는 400명[2]으로 감원하였지만 역시 대단한 규모임에는 분명하다.

어주의 인원만 많은 것이 아니라 1년에 소비하는 주식과 부식의 양도 대단한데 神宗 熙寧10年(1077)에 어주의 연간 소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쌀 5,578.8005석, 면 1,110,664근 4량, 양고기 434,463근 4량, 새끼 양 19마리, 돼지고기 4,131근, 돼지와 양의 머리와 발굽과 같은 부위들을 사용한 것은 이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다"[3] 그 외에도 땔감 1,450,413근 반, 석탄 3,557칭 6근, 식용유 34,787근 12량, 식초 1,083.084석, 기타 여러 물품 80,310근, 석, 냥, 장이다.

희녕 10년에 어주의 소비량에 나타난 황실 음식문화의 특징은 첫째, 쌀이 5,578석 정도로 다시 환산하면 연간 334톤 정도를 소비하는데 반해 면의 소비량이 110만 근으로서 660톤에 이른다. 둘째, 양고기의 소비량이 대단히 많고,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소고기와 같은 기타 육류의 사용은 더욱 적다는 것이다.

송대의 황실에서 양고기의 소비를 보면, 북송대에는 "어주에서 단지 羊肉만을 사용한다"[4]는 원칙이 있었지만 매우 소량의 돼지고기도 사용하였다. 眞宗 咸平5年(1002)에 "어주에서 1년에 양 수만 마리를 소비하는데 陝西에서 구입하는데 매우 번거롭고 소란스럽다"고 하였고, 仁宗 嘉祐3年(1058)에 궁중의 어식을 도용한 사건이 있었는데 "발각 이전에는 하루에 양 280마리를 사용하였으나 발각 후에는 단지 40마리만 사용하였다"[5]고 하

---

1) 龔延明, 『宋代官制辭典』, 中華書局, 1997년, 332~333쪽.

2) 『宋會要輯稿』「方域」4之1. "勾當官四人, 以京朝官諸司使、副及內侍充. 食手兵校共千六十九人.……"

3) 『宋會要輯稿』「方域」4지10. "米五千五百七十八石八斗五勺. 麪一百一十一萬六百六十四斤四兩. 羊肉四十三萬四千四百六十三斤四兩, 常支羊羔兒一十九口. 豬肉四千一百三十一斤, 猪羊頭蹄等隻副不具.……"

4) 『長編』 卷480「元祐八年 正月 丁亥」, 11417쪽. "御廚止用羊肉."

5) 『宋會要』「食貨」21之10. "帝謂宰臣曰; 御廚歲費羊數萬口, 市於陝西, 頗爲煩擾." 『長編』 卷187「嘉祐3年 3月 癸酉」4506쪽. "象中等未敗以前, 日宰二百八十羊, 以後日宰四十羊爾."

였다. 그러나 "남송이 건국된 후에는 하루에 양 한 마리와 취병(炊餠)을 먹을 뿐이다"고 하여 양고기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후 紹興8年(1138)의 기록에서도 "현재 牛羊司에서 도살하여 공급하는 황제의 음식으로 쓰이는 양은 하루에 1마리이고 매월 공급하는 것은 40마리를 정해진 액수로 한다."[6]고 하였다.

양고기 한 근의 가격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쌀 한 말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비쌀 경우도 있다. 쌀 한 말은 한 가구 다섯 식구가 하루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인데 북송대에는 희녕 연간에 황실에서는 연간 2600 톤의 엄청난 양의 양고기를 소비하였다.

다음으로 황제의 주거생활을 보면 황제가 거주하는 궁궐은 대단히 호화롭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송왕조가 건립되고 초기에 도성인 개봉을 건설하면서 건축자재의 품귀현상이 나타날 정도였다. 특히나 황제가 거주하는 궁궐은 모두 최고 고급의 자재만을 사용하여 건축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비용이 필요하다.

궁궐이 완공되고 난 후에도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수십 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수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仁宗 明道元年(1032)에 廣聖宮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崇德殿을 비롯한 8개의 전각들이 소실되자, 경동서로、하북로、회남로、강동서로 등 지역의 공장들을 동원하여 부역하게 하고 좌장고에서 현금 20만 관을 주어서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7] 궁궐의 보수에 대해서 司馬光은도 "보수와 개조가 점차로 많아져서 단지 대궐 안에만 하여도 900여 칸에 이릅니다. 황성의 여러 문들과 네 변의 행랑 및 南薰門과 같은 것들은 조석을 다툴 만큼 급한 것이 아닌데도 다시 보수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부역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소비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8]고 하였다.

남송대에는『吹劍綠』의 기록을 정리하면, 남송 건국 초기에 궁궐의 보수에 필요한 자재는 양절과 사천지방에서 공급받았는데, 소흥 말년에 매년 20만 관을 보냈고, 그 이후로 점차로 많아져서 60만 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비용은 점차로 많아져서 마침내 160만 관에 이르렀다. 지금도 수내사는 무슨 전각을 보수해야 하던지 어떤 기둥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京兆에서는 그저 이에 따라서 30만 혹은 40만 관의 돈을 바친다고 하였고, 理宗대에는 내전을 수리하는데 5천 근의 칠을 하면서 外帑庫의 비용 15만 관을 사용하였다.[9]

송대 일반 서민들의 주택 가격은 수백 관에서 수천 관이고, 이나마 없는 사람들은 하

---

6) 『繫年要錄』 卷20 「建炎三年 二月 壬戌」, 400쪽. "渡江後, 日一羊煎肉炊餠而已." 『宋會要』 「職官」 13之43. "禮部言; 見今年牛羊司宰供御膳羊 每日一口. 供應每月收四十口爲額, 內十口充泛索使用."

7) 『宋史』 卷85, 「地理志」, "發京東西、河北、淮南、江東西路工匠給役, 內出乘輿物, 左藏庫易緡錢二十萬助其費."

8) 『司馬文正公傳家集』 卷35 「論修造札子」, "修造稍多, 只大內中自及九百餘間, 以至皇城諸門幷四邊行廊及南薰門之類, 皆非朝夕之所急, 無不重修者, 役人極衆, 費財不少."

9) 『杜淸獻集』 卷11 「辛丑四月直前奏札」 "近有內殿修造, 破漆五千斤, 而費外帑十五萬緡,."

루 수십 문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황실에서는 그 수리비만 해도 정기적으로 수십만 관이 되고, 칠을 한번 하더라도 15만 관이 소비되어 황실 재정의 적지 않은 부분이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성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궁중의 부녀자들은 기생들과 함께 송대 여성들의 패션과 유행을 선도하는 집단이었다. 송대에 가장 유행했던 복장은 大袖라고 하는데 福州의 黃昇의 무덤에서 출토된 대수는 전체 길이가 120cm인데 소매의 넓이가 69cm에 이른다. 또 하나는 背子라고 하는 도포와 비슷한 복장인데 이 두 종류의 의복은 명확한 가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고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0]

황실에서는 또한 대단히 많은 양의 의복 재료를 필요로 하였는데 개봉에서는 綾錦院이 있고, 西京、眞定府、靑州、益주、梓州의 작업장에서는 錦綺、鹿胎、透背 등을 주로 생산하였고, 江寧府와 潤州에는 織羅務가 있으며, 梓州에는 綾綺場이 있었다.[11]

궁중에서 피복류를 소비한 예를 보면, 慶曆3年(1143)에 張美人이 황녀를 출산할 때 좌장고에서 능라 8천 필을 수취하였다. 남송시기에는 궁중에서 황자나 황녀가 태어날 때는 두 달 전에 예에 따라 하사하는 56종의 물품을 내장고에서 지급받는데, 그중 옷감류는 능라 200필, 명주 4,670여 필이고, 이 액수는 이전보다 3분의 1을 삭감한 액수이다.[12] 물론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피복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하사품이면 당시 도성인 항주에서 중등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정도가 되는 큰 물품이다.

궁중의 많은 여인들은 아연을 가공하여 물에 풀어서 얼굴에 하얗게 바르고, 검은 가루를 눈썹에 바르는 방식으로 화장하였다. 궁중 여인들의 화장품 비용은 樓店務라고 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의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북송대 개봉에는 天禧元年(1017)에 23,000간, 天聖3年(1025)에 26,100간의 건물을 보유하여 있었다. 그러한 주택들을 임대해 주고 획득한 수입은 端拱2年(989)을 기준으로 하루에 100관으로서 연간으로는 36,000관 정도였고, 이후 大中祥符5年(1012)에 14만 관에 이른 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주택이 없는 빈곤한 도시 영세민을 대산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고 매월 500문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서 궁중 부녀자들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이다.[13]

황실에서 음용하는 차는 建州에 특별히 官焙를 설치하여 매년 황제에게 전문적으로 상

---

10) 劉秋根、任歡歡,「宋代女性時尙消費」,『河北學刊』, 2011년 3기, 71～75쪽

11) 『宋史』 卷175,「食貨 上3」, "其繼麗之物, 則在京有綾錦院, 西京、眞定、靑益梓州場院主織錦綺、鹿胎、透背, 江寧府、潤州有織羅務, 梓州有綾綺場."

12) 『歐陽文忠公文集』 卷103,「論美人張氏恩寵宜加裁損札子」, "于左藏庫取綾羅八千匹" 『武林舊事』 卷7, "照先朝舊例三分減一"

13) 『長編』 卷30「端拱2年 12月」, 692～693쪽. "國初, 有樓店務, 太平興國中改爲左右廂店宅務. 是歲併爲都店宅務, 以所收錢, 供禁中脂澤之用, 日百千." 『宋會要』「食貨」55之5～6.

공하였는데 그 중 龍鳳茶 가운데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은 가격이 황금과 비슷하다고 하였다.[14] 여기서 관배라는 것은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 품질의 차를 황실에 제공하여 그 가격이 같은 무게의 금과 같다고 의미이다. 송대까지도 차를 마시는 풍속은 의식주에 문제가 없는 계층에서 소비하는 물품으로서『宋史』「食貨志」를 보면 차의 가격이 대단히 고가부터 저가까지 다양한데 고급 제품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구입할 수 있었고, 이들에 의해서 鬪茶의 풍속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향은 일부 약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귀족들의 사치풍조를 반영하는 물품으로는 그 종류가 100가지 이상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향약은 국산이면 한 근에 1관 이하이거나 4~5관인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향료는 "여러 향 가운데 龍涎香이 가장 귀중하여 광주의 시장에서 가치는 1냥에 100관 이상이며 차등은 5·60관이다." 향은 대부분이 동남아나 아라비아 지역에서 해운을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眞宗 天禧2年(1018)에 三佛齊의 사신이 가지고 온 乳香의 무게가 81,680근이었고, 神宗 熙寧年間에 明州와 杭州와 廣州 市舶寺에서 매입한 유향은 354,449근이었다. 또한 남송 高宗 昭興25년(1155)에 占城에서 泉州항으로 운송되어 온 상품 가운데 향은 모두 7종류에 무게는 65,000여 근이었다.[15]

향은 향낭에 담아서 오래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회적으로 태우고 나면 회색의 재만 남는 호화 소비용품이다. 이러한 향 1냥 37.5g을 구입하기 위하여 100관에서 200관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만일 200관의 비용으로 토지를 구입한다면 상등 토지 25무에서 하등 토지 100무까지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고, 이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섯 식구 정도의 농가가 1년을 편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이다.

북송의 휘종과 남송의 고종운 호화로운 생활로 유명한데, 휘종은 비록 예술적 자질이 매우 높은 황제였지만 당시에 정부는 부패하고 사치풍조가 만연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남송 초기에도 그치지 않았으니 남송 고종은 "甲庫"를 어전에 설치하고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이 무려 수백 관이다."[16] 송대에 가마와 같은 탈 것들에 그림을 그리거나 호화로운 집기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하루에 수백 관을 사용한다면 하루에 100관으로 계산해도 1년이면 36,000관이나 된다. 이를 통해서 황실의 호화로운 생활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14) 歐陽脩,『歸田綠』 卷2

15) 夏時華,「宋代上層社會生活中的香藥消費」,『雲南社會科學』 2010년 5기, 139쪽.

16)『建炎以來朝野雜記』 甲集 卷17「御前甲庫」

## 3. 황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출

황실의 지출 가운데 봉록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컸다. 봉록을 지급하는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여 황제의 부인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황태후나 태황태후에게도 지급되었다. 그런데 문무백관과는 달리 황실 구성원에 대한 봉록은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현존하는 황실의 봉록 관련 기록 중 가장 많은 액수는 남송 고종이 효종에게 선양하고 덕수궁에 기거하고 있을 때 지급한 것이다. 당시에 효종은 한 달에 10만 관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고종은 군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니 조서를 내려서 6만을 삭감하라고 하였다.[17] 또한 남송 寧宗 때에 조서를 내려 태황태후의 월봉으로 민전 20,000관, 황태후는 15,000관, 상황태후는 50,000관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당시에 재상이 300관의 料錢을 받고, 三司使가 200관의 요전을 받았다. 전체 중앙관의 봉록으로 "희녕과 원풍년간에는 한 달에 36만 관을 지출했고, 선화 말년에는 220만 관을 사용하였고, 남송이 건국된 초기에는 매년 금국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한 달에 지출은 오히려 80만 관이 되지 않았는데, 근래에는 한 달에 120만 관 이상을 지출합니다."[18]

황후의 봉록을 보면, "昭慈聖獻皇后(원우황후)가 建康에 있을 때 유사에서 매월 봉록으로 천 관 이상을 지급하고, 황후의 생일에는 별도의 봉록으로 1만 관을 지급하였다. 그 후 顯仁皇后(고종의 생모)가 금국에서 돌아왔는데, 1년에 봉록으로 20만(매월 봉록 만 관, 동지、원단、한식、생일에는 두 배)과 비단 2여만 필(생일에 명주 1만 필, 원단、동지、단오에 각 3천 필, 능라 2천 필), 겨울에 솜 오천 냥, 술 하루에 한 말, 양 세 마리"[19]라고 하였다.

황태자와 공주의 봉록은 북송 전기의 규정에서는 "황태자의 요전은 1천관인데, 공주의 요전은 예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장공주가 궁중에 있으면서 (매달) 10관을 청했는데 말년에는 700관이 되도록 증가하였고, 복강공주는 출가 후에는 매월 1천관을 지급하였다"[20]고 하여 개별적인 사례가 있을 뿐이다.

---

17) 『建炎以來朝野雜記』 甲集 卷1「中興奉親之禮御前甲庫」

18) 『宋會要輯稿』「食貨」56之 70 "熙豊間月支三十六萬, 宣和末用二百二十萬, 渡江之初, 雖連年用兵, 月支猶不遇八十萬, 比年以來, 月支不下百二十萬. 大略官俸居十之一, 吏祿居十之二, 兵廩居十之七."

19) 『建炎以來朝野雜記』 甲集 卷1「中興奉親之禮御前甲庫」,"昭慈聖獻皇后之在建康也, 有司月奉千緡而上, 后生辰別奉緡錢萬, 時朝廷用度不給, 故其禮不及承平時. 其後顯仁后自北來歸, 歲奉錢二十萬緡(月奉萬緡, 冬、年、寒食、生辰倍之), 帛二萬餘匹(生辰絹萬匹, 春、冬、端午各三千匹, 綾、羅二千匹), 冬綿五千兩, 酒日一斗, 羊三牽"

『宋會要輯稿』「后妃」2지8, "皇太后俸錢月一萬貫, 冬至、寒食、生辰各二萬貫, 生辰加絹一萬匹, 春、冬端午各三千匹, 各加綿五千兩, 線羅各一千匹."

20) 孔平仲, 『談苑』 卷2 "皇太子料錢千貫, 無公主料錢例""李長主在宮中請十千, 晚年增至七百千. 福康出降後, 月給千貫."

황제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수많은 황실의 구성원들과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봉록이 있었다. 歐陽脩가 말하기를 “대체적으로 후궁에 대한 은택이 너무 많아서 궁중의 소비가 너무 사치스럽다”[21]고 하였다. 신종과 왕안석의 대화중에 “궁중의 한 私身의 봉록으로 매월 80관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심귀비(진종의 비빈, 994～1076)의 요전은 매월 800관이다”고 하였다.

스스로 근검하다고 하는 인종대에도 “才人 한 명의 봉록 가운데 한 달의 가치가 중호 100가구의 세금이다.”[22]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인종이 총애하던 張貴妃가 죽자 장귀비의 동생을 才人으로 삼는 과정에서, 은 5천 냥과 금 5백 냥을 하사하였지만 사양하자 인종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월봉이 27,000인데 지금은 20만이다. 어찌 고생하면서 사양하며 물리치는가?’ 대답하기를 ‘27,000도 첩이 쓰고도 남는 것이 있는데 어찌 이십만이나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마침내 받지 않았다. 인종 가우년간에는 20만으로 봉록이 증가했다면 200관으로 재상을 제외한 어떤 관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를 같은 등급의 정5품 문관과 비교하면, 秘書省監에 해당하고, 매월 봉록으로 45관을 받았다.

황실의 소비 생활 가운데 특히 생일과 喪葬의례에 더욱 많은 비용을 소비하였다. 고종이 효종에게 선양하고 생일을 맞이하자 효종은 10일 전에 덕수궁으로 가서 향을 올리고 은 5만 냥, 명주 5천 필, 돈 5만 관, 도첩 100 장, 녹색 유약을 칠한 상자 200개를 바쳤다..[23]

효종의 황후 成肅皇后의 생일에 광종은 3만 냥과 금 5백 냥을 바치고, 다음에도 壽聖皇太后의 생일에 은 3만 냥과 금 5백 냥을 갖추어 바치게 하고, 매년 이와 같이 하도록 하였다.……소희4년에는 壽聖隆慈備福皇太后의 존호와 冊寶를 올리는데 은 3만 냥을 바치게 하였다. 또한 提領封椿庫에 보관하고 있는 금 2만 냥과 은 5만 냥、동전 11만 관、명주 2만 필、度牒 15장를 수성황태후가 다음해 설날에 궁중에서 장수를 비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치게 하였다.[24] 후일 성숙황후가 寧宗은 붕어하자 성숙황후의 동생인

---

21) 『國朝諸臣奏議』 卷29「上仁宗論美人張氏恩寵意加裁損」“大凡後宮恩澤太多, 宮中用度奢侈.” 『續資治通鑑長編』 卷189「仁宗嘉祐四年六月丁卯」 “初, 進才人, 加賜銀五千兩、金五百兩, 固辭不受. 上曰 : ‘鄕也月俸二萬七千, 今也二十萬, 何苦而辭退?’ 對曰 : ‘二萬七千妾用之已有餘, 何以二十萬爲?’卒辭之.”

22) 『宋史』 卷179「食貨下一·會計」 “宮中一私身之奉有及八十千者,……沈貴妃料錢月八百緡.” 『宋史』 卷302「范師道傳」, “一才人之奉, 月直中戶百家之賦.”

23) 『武林舊事』 卷7. “先十日, 駕詣德壽宮進香, 幷進奉銀五萬兩, 絹五千匹, 錢五萬貫, 度牒一百道, 用綠油匣二百個, 上貼簽云 : 臣育謹進.”

24) 『宋會要輯稿』「後妃」2之19 “淳熙十六年七月三日, 詔皇太後生辰奉銀三萬兩、金五百兩. 令在藏西上庫依例排辦投進.……七月八日, 詔壽聖皇太後生辰, 令左藏西上庫排辦銀三萬兩、金五百投進. 每歲如之.……四年十一月十九日, 奉上壽聖隆慈備福皇太後尊號冊寶、銀三萬兩, 令左藏封椿庫投進. 三十日, 詔提領封椿庫所排辦金二萬兩、銀五萬兩、錢一十萬貫、絹二萬匹、度牒五十道, 供進壽聖隆慈備福皇太後爲來歲元日宮中上壽用.”

謝淵에게도 금 2천 냥, 동전 10만 관, 토지 10경(頃)을 하사하였다. 이처럼 일개 시녀로 입궁하여 황후와 황태후를 거쳐 태황태후까지 된 사씨에게 1189년부터 1193년까지 4년간 황제가 하사한 물품의 총액은 은 23만 냥(8,625kg), 금 22,500냥(843.75kg), 동전 11만 관, 명주 2만, 도첩 15장이다.

만일 황제가 붕어하면 재정 지출은 더욱 막대하다. 진종이 붕어하였을 때에는 1,100만 관필량을 사용하였다. 인종이 붕어하자 장사를 지내는데 동원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에만 돈 150만 관과 綢絹 250만 필과 은 50만 냥을 사용하였다. 장사를 치른 이후에도 陵園의 보수와 제사를 위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예를 들면 元祐6年(1091)에 "京西提刑司에 조서를 내려 해마다 20만 관의 돈을 주어 陵寢을 받들도록 하였다."[25]

비단 송대 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왕조에서도 황제가 죽으면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재력을 투입하였다. 이는 곧 황실 성원의 신분이 고귀하여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그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 4. 종실의 생활

황태가가 아닌 다른 황자와 공주들은 궁궐을 떠나서 외부에서 생활하면서 종실집단을 형성한다. 종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황제와 부계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비록 부계는 아니지만 부마가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그 외에 황제와 인척관계에 있는 종실의 여성과 결혼을 해도 역시 신분적 경제적 혜택을 된다.

건국 초기에는 종실의 수가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황제를 중심으로 상하로 4대 좌우로 8촌까지 緦麻 이상의 근친들이 비교적 많은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9촌과 10촌의 범위에 들어가는 袒免親, 혹은 그보다 더욱 촌수가 멀어지는 非袒免親도 약간의 특권은 남아 있다.

송대에는 종실의 범위가 넓어서 周, 漢, 唐王朝에서는 위의 동종구족도와 같이 五服의 범위에서 벗어난 5대조 이상의 자손들은 종실이 될 수 없지만 송대에는 황제의 10촌이나 12촌까지도 모두 종실에 포함되어 어떤 사람들은 송대의 재정을 궁핍하게 만든 三冗에 冗宗을 합해서 四冗이라고 하기도 한다.

종실의 숫자는 인종대에 "자손이 번창해서 거의 수백 명이다"고 하고, 영종대에는 "종실 가운데 率府率(종7품) 이상이 800여 명이고 朝請郎(정7품)의 봉록을 받는 자가 4백여 명이다."고 하였지만 이미 치평년간에 이르면 종실의 숫자가 4천여 명이라는 기록을 보

25) 『長編』 卷198 「仁宗嘉祐八年四月癸酉」, "優賞諸軍如乾興故事, 所費無慮一千一百萬貫、匹、兩, 在京費四百萬.……三司奏乞內藏庫錢百五十萬貫、紬絹二百五十萬疋、銀五萬兩助山陵及賞賚. 從之." 『宋史』 卷17 「哲宗紀」, "詔京西提刑司歲給錢物二十萬緡, 以奉陵寢."

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북송이 멸망할 때 많은 종실들이 금국으로 끌려가고 남송이 건국될 때에 종실의 수는 많지 않아서 "건염초기에 종정사를 처음 설치할 때 종실 자제가 349명이었다. 그후 경원년간(1195～1200)에는 종실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300여명이고 외부에서 거주하는 자가 887명이었다."[26]라고 하여 송대에 종실의 수는 가장 많을 때가 4천 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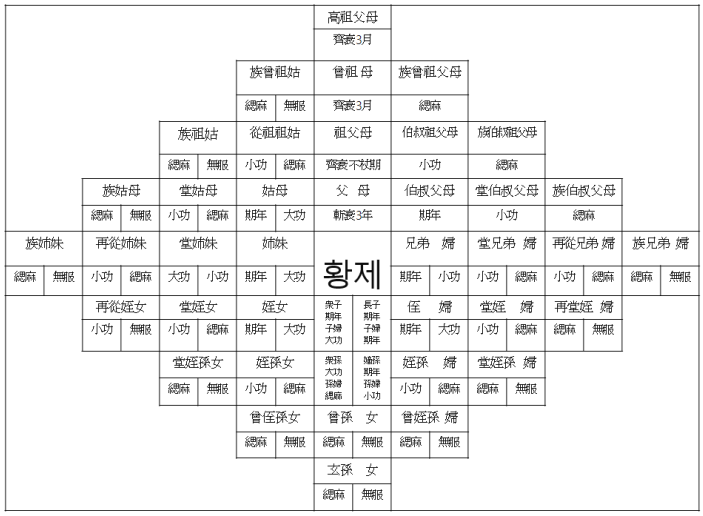


<그림 1> 동종구족도

그러나 국가에서 종실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매우 많았다. 蘇軾은 "종실이 번성해서……녹봉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백관보다 많고."고 하였고, 洪邁는"戚里와 종실의 부녀자를 郡國夫人으로 책봉하거나, 종실의 여자를 郡主나 縣主로 책봉하면 모두 봉록으로 받는 돈과 쌀이 있고, 봄과 겨울의 명주와 솜이 있는데 그 수가 대단히 많다."[27] 위의 기록을 보면 종친운 물론이고 종실의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까지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특권을 누리면서, 다른 계층과 같이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종실로 태어나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의 역시 관원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송대의 종실은 과거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후에는 특권이 감소하여 황제와 관계가 먼 종실들은 과거시험에 합격해야 하였지만 역시 서민과 구분되는 과거를 통해서 쉽게 관리가 될 수 있었다.

황제의 근친은 원래 "종실 자손은 7세가 되면 이름을 하사하고 관직을 제수하는데 지금은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들도 이미 은택을 받았지만"寶元2年(1039)에는 지금부터 인종의 생일과 남교의 제사에 종실의 아들 한 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5세가 되기 기다렸다가 청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28] 종실 가운데 "諸王의 아들이 처음에

---

26) 『宋會要輯稿』「帝系」4之6 "國家之興, 八十餘載, 子孫蕃衍, 幾數百人." 『宋會要輯稿』「帝系」4之14 "初, 帝以宗室自率府副率以上八百餘人, 其奉朝請者四百餘人." 范鎭, 『東齋記事』 卷1, 204쪽. 『眞西山先生文集』 卷15「申尙書省乞撥降度牒添助宗子請給」

27) 『欒城集』 卷21「上皇帝書」, "宗室之盛……祿廩之費, 多於百官," 『容齋三筆』 卷14「夫人宗女請受」 中華書局, 2005年, 596쪽, "戚裏宗婦封郡國夫人, 宗女封郡縣主, 皆有月俸錢米, 春冬絹綿, 其數甚多"

28) 『宋會要輯稿』「帝系」4之6 "(寶元二年七月)二十八日, 大宗正司言 :「先朝故事, 宗室子孫七歲始賜名

관직을 받으면 諸衛將軍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관직과 족속의 근친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진종 天禧元年(1017)에 "宣祖와 태조의 손자들은 처음 음보로 제위장군에 제수하고, 증손자는 右侍禁에 제수하고, 고손자는 右班殿直에 제수하라"[29]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태조의 모든 손자와 조카들에게 제수한 제위장군은 環衛官이라고 하여 일반 관원은 임명하지 않고, 정원이나 실제의 직무도 없이 매월 20관의 봉록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는다. 태조의 증손자와 5촌 조카들에게 제수된 우시금과 태조의 고손자와 7촌 조카에게 제수된 우반전직은 모두 정9품으로서 7관과 5관의 봉록을 받는다. 이러한 5관이나 7관의 돈은 당시의 미곡 가격으로 7석에서 10석의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황제와 8촌의 범위에만 들어가면 최소한 정9품에 해당하는 관원의 봉록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은 熙寧2年(1069)에 조서를 내려 "非袒免親은 더 이상 賜名授官하지 않고, 다만 과거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한다."[30]고 하였다. 하지만 袒免親에 대해서는 남자는 우반전직에 제수하고 여자는 미혼시 매일 음식을 제공하고, 기혼이면 요전으로 3관을 지급한다."[31]고 하였다. 이는 곧 9촌과 10촌의 단면친이라면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일단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단면친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관직에 오르고 그렇지 못하면 "빈곤한 종실"이 되었다. 특히 신종대에 이르면 "창릉의 후예들은 적막하고 쓸쓸하여 들리는 바가 없게 되고, 점차로 빈곤해져서 거의 서민과 같았다."[32] 조광윤의 후손들은 이때부터 점차 비단면친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조정에서는 종실들의 과거는 일반 사인들과 별도로 시행하고, 과거 시험의 내용도 간단하면서, 합격률은 높여 주었지만 실제로 합격한 사람은 많지 않아서, "희녕부터 원부 초년까지 30여 년 동안 과거에 합격한 자가 겨우 20여 명이다"[33]고 할 정도로 적었다. 그러나 남송 소흥18년(1148)의 과거에서는 합격자 330명 중 종실이 16명으로 전체의 4.8%였고, 寶祐4年(1256)의 과거에서는 601명 가운데 종실이 76명으로 12.6%를 차지하였다. 일반 사인들이 과거에 합격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지만 종실의 자제는 대

---

授官. 今在繈褓者已有恩澤. 請自今遇乾元節、南郊, 聽官其一子, 餘須俟五歲方得陳乞.」從之."

29) 『長編』 卷89「眞宗天禧元年二月壬午」, "先是, 諸王子初授官, 卽爲諸衛將軍, 餘以父官及族屬親疎差等.……宣祖、太祖孫初蔭授諸衛將軍, 曾孫授右侍禁, 玄孫授右班殿直,……"

30) 『長編紀事本末』 卷67「裁定宗室授官」"非袒免親, 更不賜名授官, 只許令應擧."

31) 『宋會要輯稿』「帝系」4之20 " 祖宗袒免男, 近制賜名授官, 與右班殿直.……時服、南郊賞給依外官例. 至赴朝參日, 賜馬一匹價錢. 祖宗袒免女, 未出適, 日給食. 出適, 支料錢三貫."

32) 『揮麈三錄』 卷1,"致使昌陵之後寂寥無聞, 奔進藍縷, 儘同民庶."

33) 『宋朝事實』 卷8「玉牒·徽宗朝增神宗敎養選擧法」"自熙寧至元符初三十餘年 中科擧者才二十餘人"

략 문장의 뜻만 이해할 수 있어도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종실의 자제는 관직에 나가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승진도 빨라서 북송 인종 景祐2年(1035)에 "옛날에는 三班借職에서 10번 승진하면 諸司副使였는데 지금은 率府副率에서 4번 승진하면 遙領刺史가 되고 8번 승진하면 절도사가 된다."[34] 그리하여 철종 원우년간에 蘇轍이 말하기를 "종실이 많아서 황우년간에 節度使가 3명이었는데 지금은 9명이고, 節度觀察留后는 1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이다. 觀察使는 1명인데 지금은 15명이고, 防御使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42명이다"[35]고 하였다.

절도사는 요전만 매달 400관에 祿米 150석, 절도관찰유후는 요전 300관과 녹미 100석, 관찰사는 요전 200관에 녹미 100석과 쌀과 밀을 각각 15석씩, 방어사는 요전 200관에 녹미 100석과 쌀과 밀 각각 12.5석씩을 받는다. 소철의 말에 분석해 보면, 송정부에서는 74명의 종실에게 연간 208,800관의 돈과 79,150석의 양식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빈곤한 종실을 위해서는 "종실 부녀자 가운데 자손이나 봉록이 없는 자에게는 봉록을 차등 있게 지급하는데 무릇 조종의 緦麻의 종실은 매년 96관, 쌀 36斛, 비단 28필을 지급하고, 단면친에게는 돈과 쌀은 3분지 1을 삭감하고, 비단은 절반을 감해서 지급하라"[36]고 하였다. 9촌과 10촌에 해당하는 단면친에게는 3분지 1을 삭감하여 돈은 연간 64관과 쌀은 24곡을 주고 비단은 절반을 삭감하여 14필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여성이 홀로 생활하면 돈이나 쌀이나 의복 모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종실의 성원들이 결혼하거나 죽게 되면 종정시에서는 규정에 따라 물품을 지급하였다. 예를 들면 철종 원우5년(1090)에 "종실이 결혼할 때 재물을 소비하는데 시마친은 2,250관, 단면친은 250관을 지급하고, 두 번째 결혼하면 시마친은 70%만 지급하고 단면친은 전부 지급하는데, 이후로는 시마친은 3분지 1을 지급하고 단면친은 지급하지 않는다."[37]고 하였다. 종실의 여성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奩具錢 혹은 臥房錢이라고 한다. 그 금액은 희녕 이후에 "조종의 원손은 500관, 5세손은 350관, 6세손은 300관, 7세손은 250관, 8세손은 150관을 지급한다. 소흥7년(1137) 겨울에 원손은 5분의 2를 삭감하고(300관), 6세손과 8세손은 3분지 1을 삭감하며(200관과 100관), 5세손과 7세손은 7분지 2를 삭감한다.(250관과 약 180관) 이미 시집을 갔다가 다시 결혼하는 사람은

---

34) 『長編』 卷117 「景祐二年十一月丙午」, "舊自借職十遷乃至諸司副使, 今副率四遷卽遙領刺史, 八遷卽爲節度使."

35) 『欒城後集』 卷15 「元祐會計綠收支叙」, "宗室之衆, 皇祐節度使三人, 今爲九人矣. 兩使留后一人, 今爲八人矣. 觀察使一人, 今爲十五人. 防御使四人, 今爲四十二人矣."

36) 『朝野雜記』 甲集 卷1 「宗室賜予」,"詔南班宗婦無子孫食祿者, 廩給有差. 凡祖宗緦麻親, 歲給九十六千, 米三十六斛, 帛二十八匹. 袒免親, 錢米減三之一, 錦帛幷減半"

37) 『長編』 卷437 「元祐五年正月甲申」"宗室娶妻財費, 緦麻二千二百五十千, 袒免二百五十千. 再娶, 緦麻七分, 袒免全支, 今後緦麻三支一, 袒免不支."

절반을 삭감해서 지급한다.”고 하였다.

염구전만이 아니라 봉록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어서 희녕8년(1075)에 신종은 종실의 여자가 결혼하고 郡主나 縣主가 되고 두 번 대례를 거치면 봉록의 청구 금액을 더할 수가 있었다. 元豊6年(1083)에 태위 劉從廣의 부인인 普寧郡主가 봉록의 증급을 청구하자 “특별히 월봉 100관을 지급하고 봄과 겨울의 옷감을 각각 10필씩 더해주고 생일에는 은 50냥을 증급하라.”[38]고 하였다. 따라서 송대 사가의 남성이 종실의 여성과 결혼하면 관직에 나갈 수 있었기에, 북송 후기에는 종실의 수가 증가하면서 군주나 현주의 지위도 상품화되어 이들과 결혼하는데 5천관이 소요되더라도 한 집안에 10명의 縣主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개봉에 거주하는 장씨성의 부호의 집에는 현주가 30여 명에 이르렀다고도 한다.[39]

## 5. 맺음말

이상에서 송대 종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관직을 받고 생활을 보장받는 각종 조치들과 그들의 실제 생활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런데 황제와의 친척으로 태어나 각종 혜택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종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 종실 그 내용을 보면 紹聖2년(1095)에 “종실의 단면 외의 2대 가운데 조부와 부친이 모두 죽었는데 관직이 없거나 비록 관직은 있으나 실제 직무가 없어서 빈곤한 자들에게는 비록 돈과 쌀 비록 돈을 지급하지만 그 수가 균등하지 않으니 한 사람당 매월 돈으로 2관과 쌀 1석을 지급하고 가족이 12명 이하이면 2칸짜리 집을 주고자 한다.”[40]고 하였다. 이는 종실로 태어나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매월 2000문의 돈과 1석의 쌀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만일 다섯 식구가 함께 생활한다면 매월 10관의 돈과 5석의 쌀 그리고 거주할 집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한 가구에 다섯 식구가 있다면 농촌에서는 매월 3석의 쌀이 있으면 생활하고, 도시에서는 4석 정도 혹은 돈으로 7.5관 정도의 돈이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종실로 태어나면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어 궁핍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10관의 현금과 5석의 쌀과 주택을 지급받으며 황제의 친족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8) 『長編』 卷269 「熙寧八年十月庚寅」 “詔濮安懿王第三女長樂郡主自改封日增請給. 舊制, 宗室女適人, 遷至郡、縣主, 兩經大禮乃增給。此以特恩也” 『長編』 卷334 「元豊六年四月壬戌」 壬戌 “贈太尉劉從廣妻普寧郡主趙氏, 乞依曹誦妻延安郡主例增俸. 詔 : ‘吳王元儼女, 皇家尊親, 同行存者止此一人, 可特給月俸百千, 春冬衣各增十匹, 生日增銀五十兩.’”

39) 『長編』 卷269 「元祐七年四月戊午」. 『萍洲可談』 卷1.

40) 『宋會要輯稿』 「帝系」 4之20 “宗室袒免外兩世, 祖父、父俱亡而無官, 雖有官而未釐務, 各貧乏者, 雖許支錢米, 其數未均. 欲每口月支錢二貫、米一碩, 十二口以下給屋二間.”

# 南宋대 '韓侂胄 정권' 초기의 권력 구조

박 시 현(고려대)

목 차

서론
一. 慶元 연간 집권 관료들의 성격
二. 慶元 연간 내정과 관료들의 관계
三. 皇權의 강화와 반도학 관료군의 약화
四. 韓侂胄의 정국 장악과 국정 이념의 전환-반도학에서 북벌로
결론

## 서론

光宗 퇴위와 寧宗 옹립을 주도했던 재상 趙汝愚의 실각 및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道學派' 사대부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慶元黨禁이라 불린다. 외척 韓侂胄는 이를 통해 전권을 장악하고 權相으로 독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전통적인 설명이었다. 또한 慶元黨禁은 朱熹를 비롯한 개혁 성향의 道學派에 대한 사상 탄압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1949년 이후 대륙 학계는 反朱子學의 입장에서 반동적인 道學에 대한 승리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 역시 기존 사상 투쟁이라는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이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사상의 문제가 아닌 정치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특히 南宋 중기 정치사 연구에서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余英時의『朱熹的歷史世界』이다. 余英時는 黨禁의 역사적 기원을 孝宗 시기부터 계속 이어져 온 道學派와 反道學派 관료들의 대립에서 찾았다. 양 당파의 오랜 대립의 역사가 한시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黨禁이며, 이를 주도한 것은 韓侂胄가 아니라 京鐟 등을 위시한 반도학 관료들이었다는 것이다. 余英時는 이들 반도학 성향의 사대부들을 '官僚派士大夫'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1)]

정치 투쟁론은 기존의 사상 투쟁론에 비해 당시 정치문화에 대한 진일보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새롭게 나타난다. 먼저 韓侂胄의 권력 장악 문제이다. 즉 黨禁을 '관료파'가 주도했다면 韓侂胄 독재 체제의 성립 방식과 시점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관료파'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면, 韓侂胄와 관료들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皇權과 相權 내지 臣權의 문제이다. 道學派와 反道學派라는 관료 내부 대립이 강조되면서, 역설적으로 黨禁을 포함한 韓侂胄 정권 시기 皇權과 신권 문제는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집권 관료들이 韓侂胄의 앞잡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황권에 대한 관료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다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南宋 정치사의 특색 중의 하나로 꼽히는 權相의 문제 역시 새롭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韓侂胄는 대표적인 權相 가운데 하나였으며, 權相이라는 존재는 皇權의 약화와 직접 결부되어 다루어진다. 그런데 韓侂胄는 다른 대표적 權相인 秦檜 史彌遠과 정치의 지향과 권력 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南宋 역사상 가장 강력한 皇權을 행사하였던 孝宗 시기와 유사한 특징을 다수 보이고 있다. 따라서 韓侂胄 정권을 권상의 존재만으로 皇權의 약화라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검토해야 할 점이다.

## 一. 慶元 연간 집권 관료들의 성격

韓侂胄가 아닌 '관료파'가 黨禁을 이끌어 냈다는 주장에서 먼저 京鐗 등 관료들이 반도학 활동을 주도한 것은 확인된다. 하지만 정치 세력으로서 강력한 '官僚派士大夫' 집단이 존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孝宗 재위기에 정치적 사안 별로 다양한 변주를 보이면서 상호 대립각을 세운 관료군들이 있었으며, 많은 인물들이 反道學派 감정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들이 慶元 연간까지 정치적 당파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의 문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孝宗 시기 반도학 관료들과 黨禁을 주도한 관료들 사이에는 연결 고리가 매우 미약하며, 상당수는 慶元 연간 정치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道學派에 대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상호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조직화되어 당파를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관료 사회의 적체가 심화되고 승진을 둘러싼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道學派의 同黨伐異적 배타성으로 인해 상당수 관료들은 적대적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

1) 余英時, 『朱熹的歷史世界』, 生活 讀書 新知三聯書店, 2004.

지만 黨禁 주도 인물들은 道學派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라는 공통점 외에, 상호 간에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黨禁의 실제 진행 과정은 당파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준비된 정치 음모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상당수 존재한다. 趙汝愚 및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朱熹, 彭龜年 등은 京鐗을 중심으로 韓侂胄의 도움을 통해 간관에 임명된 何澹 劉德秀 胡紘 등이 탄핵을 통해 빠르게 실각시키고 있다.[2] 하지만 그 이후 도학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처리는 느리고 분산적이었다. 이는 慶元 3년 이전 단계에선, 개별 관료의 저항 움직임과 이에 대응하는 보복적 성격의 인사 조치라는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道學派의 실각이 확실해면서, 강력한 처벌 주장에 가담하는 관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하위직 관료들로 정치적 영달을 목적으로 한 기회주의적 행동이었다. 따라서 개인적 이해 관계에 따른 탄핵이 늘어나게 되어, 京鐗 등이 애초에 목표로 한 인물들 외에도 공격의 대상 범위가 늘어나고 그만큼 빠른 처리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余英時가 ‘관료 집단’라 칭한 반도학 관료들은 경력면에서 대부분 폭넓은 인간 관계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북방 출신의 빈곤한 가정 출신인 京鐗은 對金使節로서의 활약으로 孝宗에게 발탁되었으며, 楊萬里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당파적 태도를 견지한 인물은 아니었다.[3] 관료 집단의 대표적 존재로 지목되는 何澹 劉德秀 등은 간관으로서의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주로 탄핵 등을 통해 승진하지만 타 관료들과 친화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胡紘은 朱熹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지만, 그 자신도 道學派가 비판받던 원인이었던 타 관료들에 대한 무시나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성격으로 인해 원만한 인간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의 경력이나 성격상의 공통점은 역설적으로 관료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派黨을 멀리하고 있던 인물들이 강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들 관료들은 추천 등으로 京鐗과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되지만, 京鐗과 韓侂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 역시 상호 간의 인적 관계보다는 그들이 탄핵에서 보여준 개인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慶元 연간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파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혐의였다. 何澹이 僞學論을 펴며 중점적으로 강조한 부분도 당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4] 劉德秀 역시 자신이 직접 경험한 葉適 詹體仁 등의 자파가 아닌 관료들에 대한 무례를 道學派가 배

2) 慶元黨禁의 대략적인 전개 과정은 滄州樵叟, 『慶元黨禁』와 李心傳, 『道命錄』 등 참조.

3) 楊萬里, 『誠齋集』 卷123 「宋故太保大觀文左丞相魏國公贈太師謚文忠京公墓誌銘」; 『宋史』 卷394 「京鐗傳」; 羅大經, 『鶴林玉露』 卷5 甲編 「使虜辭樂」.

4) 佚名, 『續編兩朝綱目備要』 卷4 慶元 元年 秋七月 丁酉; 李心傳, 『道命錄』 卷7 「何澹論專門之學短拙奸詐宜錄眞去僞」, 四庫全書本.

격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5] 이는 道學派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黨禁의 주도 인물인 胡紘이 科場案으로 실각하게 된 것도, 출제와 채점에서 자신의 기준을 다른 考官들에게 강요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6] 여기에 평소 그의 오만한 처신이 겹쳐 道學派처럼 당파적 행위를 하려한다는 의심을 받고 정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관료파'집단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韓侂胄의 독주가 본격화된 이후의 경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北伐 계획의 본격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후 韓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각자 개별적 행보를 보인다. 何澹은 金과의 전쟁에 대해 끝까지 부정적 자세를 보이면서 반은퇴 상태에 있다가 韓侂胄 사후에야 중앙으로 복귀한다. 劉德秀의 경우 기회주의적 태도를 유지하여 宰執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최대한 가담을 회피하였다. 정치적 당파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상호 간의 교류 자체가 사라진 체 자신의 이해타산에 맞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慶元 연간의 정계 분위기를 고려할 때 道學派와 이에 대항한 관료들의 대립이 黨禁의 원인인 것은 타당하지만, 이를 당파적 존재로서 '관료파 사대부'들의 집단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韓侂胄가 비교적 쉽게 권력 중추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와 손잡고 있던 관료들이 분산된 개개인의 느슨한 집합에 불과한 점이 작용하였다.

## 二. 慶元 연간 내정과 관료들의 관계

趙汝愚의 실각은 光宗 퇴위 등을 거치면서 약화된 皇權이 다시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道學派 제거는 內詔를 통해 간관 계통을 장악하여 탄핵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간관을 이용한 숙청과 이에 필요한 관료 선택에서 京鐗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內詔는 孝宗이 皇權 강화를 위해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趙汝愚의 실각은 內廷의 승리이기도 하였다.

탄핵을 주도한 내정과 관련 관료들이 정국을 장악할 수 있게 되면서, 寧宗과 內廷에게 皇權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道學派가 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관료 집단이 내정에 종속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韓侂胄의 권력은 아직 제한적이었고 고위 관료들과의 관계 역시 상호 이익이 되는 선에서의 협력이었다. 따라서 道學派가 사라졌음에도 내정은 정치적 사안에서 관료들의 저항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온전히 관철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道學派 처벌의 강도와 환관 처리 문제

---

5) 葉紹翁,『四朝聞見錄』下 丁集「慶元黨 考異」.
6) 徐松,『宋會要輯稿』職官 73: 慶元五年三月三日.

는 양자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寧宗과 吳太后는 당초부터 道學派에 대한 탄압이 지나치게 과격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는 道學派에 대한 동정 측면보다는 정치 역학 면에서 관료 사회가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道學派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지만 京鏜 劉德秀 등은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고 사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寧宗과 吳太后는결국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御筆을 수정하여 타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수정 내용은 황실의 체면을 지켜주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黨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7]

韓侂胄조차 자신의 권력이 점차 공고해짐에 따라 黨禁의 극단화에 수동적인 자세를 보인다. 蔡璉의 무고 사건 처리 과정은 이를 반증하는 예이다. 趙汝愚가 異謀를 꾸미고 있었다고 誣告는 이제 黨禁이 僞學의 단계를 넘어 역모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건 확산을 막기 위해 찾아온 中書舍人 范仲藝과 韓侂胄의 대화는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자신이 이 사태의 주모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諸公이란 지칭한 京鏜 劉德秀 등의 강력한 요구에 자신도 떠밀려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黨禁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은 아직 이들 관료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처리 과정 역시 韓이 아직 절대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韓侂胄는 范仲藝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건이 더 이상 비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간관들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彭龜年에 대해 재차 강등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8] 거기에 范仲藝 역시 지방관으로 내보내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韓侂胄 자신의 약속도 事案에 따라서는 아직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실과 韓侂胄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黨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고 처벌 역시 갈수록 가혹해지는 상황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황실의 입장에서 역모 사건으로 道學派를 일거에 소멸시키는 것은, 그로 인한 부담은 황제에게 돌아가는 반면 실익은 없는 것이었다. 韓侂胄 역시 자신의 권력 강화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이미 道學派가 아니라 집권 관료들인 상황에서, 부정적 반응을 굳이 자초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아직 확고한 지지 기반이 다져지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관계를 단절하는 것 역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단 道學派에 대한 역모론 조사에 동의하고, 다시 신중한 처리로 돌아서는 것은 韓侂胄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응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친신들을 포함한 간관들의 거듭된 상소에 결국 양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蔡璉 무고 사건은 道學派에 대한 처리 문제에서 황실과 집권 관료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韓侂胄가 확고하게 권력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7) 李心傳, 『建炎以來朝野雜記』甲 卷6 「御筆禁言舊事」.

8) 佚名, 『續編兩朝綱目備要』 卷5 慶元 5年 春正月 庚子; 脫脫, 『宋史』 卷37 「寧宗1」.

慶元 연간 황제와 관료들은 환관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자신의 등극 과정에서 적극적인 환관의 움직임으로 도움을 받은 寧宗은 환관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환관에 대한 경계는 반도학 관료들 역시 동일한 것이었다. 오히려 趙汝愚 집정기가 격렬한 당쟁으로 인해 寧宗 주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태에서 환관들의 권세가 커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趙汝愚 실각 이후 지속적으로 환관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王德謙 사건은 잠재되어 있던 寧宗과 관료들의 갈등이 격렬하게 터진 경우이다. 王德謙을 節度使에 임명하려는 寧宗에게 何澹 등 관료들은 집행을 거부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나아가 재상 京鐏은 자신을 회유하려는 寧宗에게 王德謙을 파직할 것을 강하게 상소하고 있다. 결국 節度使 임명은 철회되고 王德謙이 유배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9] 寧宗 즉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또 다른 환관 關禮 역시 왕덕겸과 연좌되어 간관들의 집요한 탄핵으로 축출되었다.[10] 이 외에도 환관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 요청은 慶元 연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황제의 친신 중용에 대한 우려와 저항은 도학에 관한 문제와 별개로 여전히 강한 저항을 받고 있었으며, 皇權 행사가 명분이 약한 경우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王德謙 사건은 동시에 다른 의미의 정치적 파장을 낳는다. 환관을 둘러싼 관료들과의 대립은 본래 정치에 그다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던 寧宗이 정치에 관심을 끊고 韓侂胄에게 위임하는 계기 중의 하나였다.

## 三. 皇權의 강화와 반도학 관료군의 약화

寧宗과 韓侂胄는 皇權의 확대 강화를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래 정치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던 寧宗은 환관 등의 승진에 이를 행사하는 정도에 그쳤고, 그나마 문관 관료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王德謙 사건의 처리를 거치면서 寧宗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고 뒤로 물러나고 있다.[11]

韓侂胄는 다른 방향에서 권력 강화을 얻기 위해 움직였다. 韓侂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외척 신분이었다. 하지만 吳太后와 韓皇后가 잇달아 사망하고 있음에도, 嘉泰 이후 도리어 권력이 더욱 강해지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권력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외척들의 정치 간여를 극도로 경계하였던 吳太后가 韓侂胄에게는 예외적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이점은 孝宗 시기 韓侂胄가 외척으로서

9) 脫脫, 『宋史』 卷468 「宦者4 王德謙傳」; 葉紹翁, 『四朝聞見錄』乙集; 邢凱, 『坦齋通編』 「高秉文命題京鐏攻中官王德謙二事」.

10) 徐松, 『宋會要輯稿』 「職官」73 續會要(黜降官10).

11) 衛涇, 『後樂集』卷10 奏議 「乙卯歲除郎上殿箚子」.

는 드물게 정치적 경력을 쌓았다는 점이다. 다른 외척들과 달리 韓侂胄는 孝宗 밑에서 閤門事 등을 거치면서 상당한 정치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吳太后 사망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寧宗의 입장에서 韓侂胄는 관료들과 궁중 사이의 정치적 조율을 맡는 메신저 역할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선 대상이었다. 宋代 정치에서 황제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황제 자신이 이에 대해 간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寧宗을 대신하여 정치를 다룰 존재가 필요하였다. 嘉泰 이후 韓侂胄가 장악력을 더욱 높이게 된 것은 외척 신분이 아닌 황제의 대리자라는 특징에서 나온 것이다.

慶元 연간 韓侂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 少傅 등으로 승진이 이루어지지만, 황실의 장례 등 주로 전례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종 의전 활동에 있어서도 京鏜의 전례 서열상으로 아래에 놓여 있었다.[12] 의전상으로 韓侂胄가 신료들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光宗의 장례 호송에서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상 謝深甫가 山陵 관련 업무를 맡기 꺼려하여 이를 대신한 것으로 재상과 韓侂胄의 의전상의 위치는 아직 모호한 상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후 韓侂胄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위가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慶元 연간 실제 정무와 관련된 관직을 회피하였지만 嘉泰 이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嘉泰 원년 夏允中이 文彦博의 전례에 따라 平章軍國에 임명해 달라는 상소에 대해, 자신이 야심이 없음을 강조하여 사양하고 夏允中을 곧바로 유배보냄으로써 자신과 무관함을 과시하려고 하였다.[13] 그럼에도 이후 韓侂胄는 결국 平章軍國으로 재상을 넘어서는 지위에 취임하고 확고하게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平章軍國 취임은 외척의 재상 취임을 둘러싼 孝宗과 관료들 사이의 갈등을 의식한 것이었다. 외척이자 문관 계통 출신이 아닌 자신의 경력을 고려하여 재상 취임을 피하면서도 권력을 장악할 방법이었다.

韓侂胄는 집정 관료들과 갈등을 피하면서, 별도로 자신의 친신 그룹을 배양하고 있었다. 嘉泰 이후 韓侂胄가 권력을 농단할 수 있게 된 것은 慶元 초기 자신과 손잡았던 관료 그룹과 결별하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측근 관료들을 권력의 중추부에 서서히 진입시키는 과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陳自强 蘇師旦 程松 鄧友龍 등 새롭게 부상된 친신 관료들은 黨禁 주도 관료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관료로서의 경력 등에서 京鏜 何澹 등과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들로 전적으로 韓侂胄의 신임을 통해서만 승진하고 있다. 따라서 韓侂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철저하게 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었다.

이들 측근들을 파격적 승진을 분식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는 개혁 문제였다. 陳自强 程

12) 徐松, 『宋會要輯稿』「禮」14 慶元三年八月二十三日.
13) 徐松, 『宋會要輯稿』「職官」73 續會要(黜降官10) 嘉泰元年五月二十七日.

松 高文虎 등 친신 그룹은 당시 南宋이 직면하고 있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안을 제기함으로서 정당성을 얻으려 하였다. 陳自强 高文虎 등이 慶元 5년 무렵 장문의 수십 개 항목에 달하는 개혁안을 寧宗에게 올리고, 그보다 앞서 慶元 3년 胡紘의 科場案에서 程松은 과거 시험에서의 공정성을 지키려 함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들이 韓侂胄의 친신임은 공인된 것이었지만 명분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시정 개혁 주장을 펴면서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세를 구축하고 개혁론이 득세하게 되면서, 기존의 재집들도 이에 대처해야 될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何澹이 寧宗에게 개혁안을 올리는 것도 이러한 상황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京鏜 사후 宰執의 구성 역시 파격보다는 서열에 따른 안정 위주의 인선이 이루어졌다. 정무를 사실상 보기 어려웠던 京鏜의 사퇴 청원을 반려하고 오히려 左丞相으로 승진시키지만, 업무 처리를 위해 謝深甫를 右丞相으로, 何澹을 知樞密院事兼參知政事로 승진시켰다. 謝深甫의 재상 발탁은 그의 경력과 정무 능력을 고려한 것이지만 동시에 타협적인 태도와 성격 역시 중요한 것이었다. 謝深甫는 道學派에 대한 탄핵에 가담하였지만 지나친 강경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격적으로도 대결보다는 온화한 자세를 유지하였다.[14] 이러한 처세 태도는 관료들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 동시에 韓侂胄 등의 입장에서는 京鏜 何澹 등과 다른 유형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좀 더 다루기 편한 상대로, 趙汝愚 실각 후 재상에 취임하였던 余端禮와 비슷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

謝深甫가 재상으로 韓侂胄와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은 楊皇后 冊封이 거의 유일한 경우였다. 하지만 황후에 책봉된 貴妃 楊氏는 원래 吳太后가 寧宗에게 하사한 점에서 韓侂胄도 강하게 반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15] 嘉泰 연간에 들어서면서 謝深甫는 병을 이유로 계속 사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황후 책봉 과정에서 韓侂胄와 의견을 달리한 점이 이유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韓侂胄에게 권력이 쏠리고 陳自强 등이 권력 중추에 자리 잡는 반면, 黨禁에 같이 관여하였던 胡紘 劉德秀 何澹 등은 이미 중앙 정계에서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이 은퇴의 근본 원인이었다.

## 四. 韓侂胄의 정국 장악과 국정 이념의 전환-반도학에서 북벌로

吳曦 귀환 문제로 촉발된 何澹의 파면은 韓侂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북벌이 통치 이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

14) 脫脫, 『宋史』 卷394 「謝深甫傳」.
15) 脫脫, 『宋史』 卷243 列傳2 「楊皇后傳」.

何澹의 퇴임은 표면적으로는 慶元 5년 何澹의 동생 何濼의 私鹽 밀매와 단속 나졸들에 대한 폭행 및 이들 나졸에 대한 무고한 처벌과 연루된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나졸들을 오히려 처벌한 丁逢의 파직과 何濼의 강등으로 마무리되었고, 何澹의 사직 청원을 불허하였다. 오히려 慶元 6년 何澹을 참지정사로 승격시키고 있다. 따라서 嘉泰 元年 何澹의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吳曦의 사천 귀환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吳曦의 사천 귀환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무장의 승진 문제가 아니었다. 慶元 연간 韓侂胄가 적극적으로 간여한 것은 군사와 관련된 분야였다. 무장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고, 무장들의 승진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와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무장들의 진퇴나 대우 문제는 寧宗과 韓侂胄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 韓侂胄의 오랜 동료인 吳曦 역시 오랜 감시 하의 지방관 생활을 끝내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문관들의 반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16]

하지만 吳曦가 興州都統制에 임명되어 사천에 돌아가는 것은 무장의 승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吳曦의 귀환은 孝宗 말년 이래 문관 관료들의 吳氏 일족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권력 축소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무장들에 대한 문관 관료들의 의구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고종과 孝宗이 관료들의 거듭된 탄핵에도 吳氏 일족을 비호한 것은 對金 전선에서 대체할 존재가 없다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孝宗의 경우 북벌을 단행할 경우 四川에서 출병하는 전략적 구도와 얽혀 있었다. 반면 탄핵에 나선 관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금과의 적극적인 용병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무장에 대한 문관들의 견제, 지방 할거 세력의 용인, 對金 관계에서 용병론과 主守論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吳曦의 전선 복귀는 孝宗 말년 이후 잠잠해졌던 북벌론이 정치적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동시에 급진적 용병론에 회의적이며 黨禁과 같은 내부 문제에 집착하고 있던 관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였다. 정쟁에서 강경론을 주도하는 何澹이 앞장 선 것은 대다수 관료들의 우려를 대표한 것이었다.[17] 다만 何澹은 변화한 정국 현실과 북벌에 대한 韓侂胄의 의지를 과소 평가하고 있었다. 다수의 관료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관료들 사이에서 충분히 자신의 친신 그룹을 확보하고 있었던 韓侂胄는 이전과 달리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면으로 何澹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하여 이를 관철시킨 것이다. 慶元 연간 공개적으로 정쟁과 관련된 활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대금 용병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구상에 따라 전선을 구축

16) 佚名,『續編兩朝綱目備要』卷6 慶元6年 12月; 魏了翁,『鶴山集』卷18「應詔封事」.
17) 樵叟,『慶元黨禁』.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吳挺 사후 오씨 일족을 배제하기 위해 임명된 무장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興州에 대한 인선난을 해결하고, 금과의 최전선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시에 在地勢力의 통솔 등에도 최선의 인사라는 점 역시 중요한 것이었다.[18]

결국 何澹의 실각 과정에서 韓侂胄의 권위는 확고해지게 되었고, 慶元 연간 이래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던 북벌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다. 내부 문제가 아닌 대금 관계 즉 북벌이 이제 국가적 목표가 된 것이다.

## 결론

韓侂胄 정권은 주로 權相에 의한 독재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즉 南宋의 독특한 정치적 현상인 權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秦檜, 韓侂胄, 사미원, 가사도는 흔히 南宋의 4대 권상이라 칭해지며 이들을 한 묶음으로 다루어 南宋 정치의 특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4인의 권력자는 세부적으로 정국의 운영, 지향점 등에서 서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권력을 독점하였다는 점만으로 하나의 범주로 묶어 南宋 정치의 공통적 특색을 찾으려는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韓侂胄가 장기간 권력을 장악하면서 배타적으로 정국을 운영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 점에 주목한다면 권상이라는 측면은 분명하다. 하지만 송대 정치사의 쟁점 중의 하나인 皇權과 상권의 측면에서 정권의 성격을 본다면 진회 사미원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존재한다. 진회 사미원은 황제를 비롯한 내정의 신임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皇權 행사의 제약을 통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 이들 집정 시기에는 皇權이 약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韓侂胄의 경우는 皇權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皇權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南宋에서 가장 강력한 皇權을 행사한 황제로 孝宗이 손꼽힌다. 그런데 孝宗 정치의 특색으로 재상 권력 약화를 통한 황제권 강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북벌을 통한 북송 영토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孝宗은 대내적 목표인 황제권 강화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고, 후자는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결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韓侂胄 집정기에는 재집을 약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북벌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韓侂胄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는 孝宗 정치의 완성이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주도한 인물이 황제 寧宗이 아니라 韓侂胄라는 점이였다. 이 경우 韓侂胄를 권상으로 볼 것인가, 皇權의 대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치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韓侂胄

18) 葉適, 『水心集』 卷17, 「運使直閣郎中王公墓誌銘」.

는 황제와 신료 양 쪽 견제를 통해 권력을 휘두른 권상의 측면보다는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寧宗을 대신하여 皇權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인 대리자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송시기 개봉의 도시경관과 사묘신앙

김 상 범(한국외대)

목 차

Ⅰ. 머리말
Ⅱ. 개봉 사묘신앙의 발전배경과 전개양상
Ⅲ. 開封의 神祠 철폐령과 祠廟재배치

## Ⅰ. 머리말

北宋 東京 開封은 唐宋變革期에 발생했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도시사의 전개과정 속에 응축적으로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도성이었다. 10세기 이전까지 중국정치의 중심지였던 長安은 秦嶺산맥과 呂梁산맥 등으로 둘러싸인 황토고원의 천연 險地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개봉은 동부 화북평원의 개방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안이 隋의 大興城을 계승한 좌우대칭의 격자형 계획도시인데 반해서, 개봉은 唐의 汴州와 宣武軍節度使 治所가 있던 곳에 後梁이래로 연이어 都城이 건립되면서 팽창을 거듭하다가, 後周시대에 둘레를 감싸는 外城이 축조되면서 宮城-內城(裏城)-外城의 三重城 구조로 자연스럽게 발전한 도시였다. 개봉은 육로와 수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였다. 황하하류의 화북평원과 새롭게 부상한 경제중심지 강남델타가 하천과 운하망을 통해 만나는 십자로에 위치하였으며, 漕運에 이용되던 蔡河(惠民河), 汴河, 五丈河, 金水河가 성내를 관통하고 있었다.[1] 수도가 개활지에 자리잡게 되자 방어를 위해서 두터운 성벽이 축조되고 禁軍 重兵軍團이 배치되었으며, 유통망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전국의 물류가 집중되었고 상인들이 운집했다. 수당제국의 장안성이 왕조의 운영자들이 기획한 패쇄적인 정치·군사형 도시였다면, 개봉은 도성으로 정치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전통적인 도시구조를 변형시키고 도시의 특징을 새롭게 형성해 간 개방된 경제형 수도였다.[2] 북송시대 개봉에서는 새로이 유입된 다수의 군인들과 관료들이 두터운 소비층을 형

1) 楊寬,「中國古代都城制度史硏究」, 上海古籍出版社, 1993, pp.280~343.
2) 朴漢濟는 역대 수도의 유형을 장안형과 개봉형으로 나누고 개봉형 도성의 특징을 '경제수도'라고 요약하였다. 朴漢濟,「中國歷代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唐·宋 變革期를 중심으로」, 동양사학회 편『역사와 도시』, 서울대학교 출판부, pp.69-89.

성하였고, 각지에서 몰려온 상인과 밀려든 물자로 인해 상업적 에너지가 충만했다. 이러한 기운은 도성내부를 또 다른 성벽으로 분할했던 坊牆과 특정구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었던 市場을 와해시켰고, 시간적으로 상업행위를 제한하던 夜禁制마저 형해화했다. 새로운 경제적 흐름이 결국 개봉의 주민들로 하여금 과거 도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았던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허물어버리게 한 것이었다.

장안시대의 종결과 함께 10세기 이후 중국의 새로운 도성으로 부상한 개봉은 이처럼 중요한 도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正史・編年體・典章類 의 傳統史書와 더불어 『東京夢華錄』이나 『淸明上河圖』처럼 도시의 景觀과 居民의 일상생활을 알려주는 매력적인 사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개봉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한 개괄적인 연구[3]와 더불어 거시적으로 당송변혁기와 도시사적인 변화의 관계를 탐구한 논문[4], 개봉의 도시구조[5]와 치안[6], 개봉의 도시제도와 기능 등에 관한 연구[7], 개봉의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여 運河와 交通・水利 그리고 漕運 문제를 다룬 논문[8], 수도방어와 禁軍문제에 관한 연구[9], 『東京夢華錄』과 『淸明上河圖』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개봉시민의 세시풍속과 일상생활을 복원한 연구[10], 각 시기별 도시의 경관변화를 섬세하게 추적한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북송시대 동경 개봉성을 관통하던 네 개의 河道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蔡河에는 13개의 다리가 있었다. 外城에서 陳州門으로 들어와 첫 번째로 마주치는 아치교는 '觀橋'인데 근처에 위치한 道觀 五嶽觀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채하 상단에 위치한 汴河는 도성과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하도인데, 변하의 다리 역시 대부분 아치교였지만 大相國寺 앞에 있는 '相國寺橋'는 궁성 앞에 위치한 까닭에 橋板을 낮게 함으로써 배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1072년 중국을 방문했던 日僧 成尋도 바로 이곳의 부두를 통해서 동경에 도착했다.[11] 唐都 장안이 우주론에 근거한 상징성이 강한

---

3) 那波利貞,「宋都汴京の繁華」,『歷史と地理』 517, 1922. 曾我部靜雄, 『開封と杭州』, 富山房, 1940. 鄭壽彭, 『宋代開封府研究』, 臺北: 國立編譯館, 1980. 吳濤, 『北宋都城東京』, 河南人民出版社, 1984.

4) 朴漢濟, 앞의 논문. 本田知生, 「宋代の都市をめぐる諸問題」, 『東洋史研究』 37-2, 1978.「」, 『』

5) 田銀生, 『走向開放的都市-宋代東京街市研究』,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1.

6) 久保田和男, 「宋都開封の治安制度と都市構造」, 『史學雜誌』 104-7, 1995.

7) 梅原郁,「宋代の開封と都市制度」, 『鷹陵史學』 3・4, 1977. 金成奎, 「宋代 開封의 外交的 機能」, 『中國歷代都市構造와 社會變化』,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8) 西岡弘晃, 『中國近世の都市と水利』(福岡: 中國書店, 2004), pp.39-57.

9) 久保田和男, 「宋都開封の治安制度と都市構造」, 『史學雜誌』 104-7, 1995.

10) 관련 연구성과는 伊原弘, 『中國開封の生活と歲時-描かれた宋代の都市生活』, 山川出版社, 1991. 伊原弘編, 『淸明上河圖をよむ』, 東京: 勉誠出版社, 2003)등에 실려있음.

11) 成尋著・王麗萍校點, 『新校參天台五臺山記』(上海古籍出版社, 2009), p.275. 成尋의 책에서는 이 다리를 '延安橋'로 기록하고 있는데, 東京夢華錄에서는 연안교를 相國寺橋로 지칭하고 있다.

계획도시였기에 坊이나 城門의 명칭도 우주론적이고 유교적인 의미의 단어로 명명되었다면, 宋都 개봉은 이처럼 종교가 생활 속에 녹아있어서 자연스레 지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던 그런 도시였다. 개봉 곳곳에 산재한 불사와 도관은 개봉이라는 새로운 도성의 발전이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전개되었음을 알려주는데, 개봉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정치와 도·불과의 관계를 도시사적으로 접근한 연구와 皇家寺院인 相國寺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한 연구[12] 등이 대표적이다.

종교·신앙과 관련된 개봉의 도시사 연구는 여전히 도·불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당말·오대이후 발생하는 중요한 정신사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로 민간 사묘신앙의 약진을 지적하고 있으며 관련연구도 미국·일본·중국학계를 풍미했지만, 도시사 연구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세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宋 徽宗 大觀3년(1109)부터 政和元年(1111)까지 수도 開封府를 중심으로 단행되었던 神祠 철폐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唐代에 단행된 狄仁傑과[13] 李德裕의 음사철폐조치[14]가 모두 강남지역에서 전개되었고, 북송대의 禁巫와 淫祠撤廢 조치 역시 대부분이 강남에 집중되었는데, 휘종시기의 음사철폐령은 화북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수도 개봉부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15] 두 번째로는 강남은 원래부터 "俗信鬼神, 好淫祠"라고 표현될 정도로 사묘친화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었고, 적인걸과 이덕유는 강남전역과 절서지역이라는 광범위한 권역을 대상으로 각각 1,700여개 소와 1,010여개 소의 음사를 훼멸한 것인데, 휘종연간의 조치는 개봉 한 도시에서만 무려 1,038개 소 음사를 철폐시킨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대규모의 사묘철폐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개봉부 내부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많은 神祠가 존재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고, 그 만큼 사묘가 정부의 도성운영과 도성내 공간의 분포와 작동 그리고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이 논문은 대다수 민간사회의 신앙적 정서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사묘신앙이 10세기 이후 도시사의 새로운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화북

---

12) 段玉明,『相國寺-在唐宋帝國的神聖與凡俗之間』, 成都: 巴蜀書社, 2004.

13) 狄仁傑은 垂功4년(688)에 江南安撫使에 취임하여, 강남지역에서만 무려 1700餘所의 淫祠를 폐기시켰다.『舊唐書』卷39「狄仁傑傳」, 2887쪽.『新唐書』卷115「狄仁傑傳」, 208쪽. 狄仁傑의 음사철폐 조치에 관해서는 김상범,「國家禮制와 民間信仰의 충돌-唐初 狄仁傑의 淫祠撤廢措置를 중심으로」,『中國史硏究』제17집, 2002년 2월을 참조.

14) 長慶2년(822)에 李德裕는 浙西觀察使로 부임하여 浙西四郡내에서만 1010餘個所의 淫祠를 폐지시켰다.『舊唐書』卷174, 李德裕傳, 4511쪽.

15) 巫의 治病呪術을 규제하고 醫術을 통해 대체하겠다는 禁巫 詔令이 북송시기에만 여섯 명의 황제들에 의해 14차례 공포되었는데 대부분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삼고있다. 김상범,「醫術과 呪術: 唐代 醫療知識의 확산과 禁巫措置」,『中國古中世史硏究』第31輯, 2014. 2.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도성 개봉에 민간 사묘가 급속히 팽창하게 된 배경과 전개양상에 보이는 특징을 검토해보고,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봉사묘의 유형과 기능,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신사철폐령과 통합조치로 인한 개봉 내 종교 공간의 재조정과 도시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 Ⅱ. 개봉 사묘신앙의 발전배경과 전개양상

북송시기 개봉지역 사묘의 종류와 전개양상을 검토해보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별적인 요인에 접근하기에 앞서서, 일단 당말·오대시기이래 전반적인 사묘신앙의 동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후반기이래로 민간 사묘신앙은 빠르게 팽창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그 요인으로는 우선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민간신앙의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강남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이 지역을 연결하는 내륙수로가 정비되면서 생산성과 유동성이 동시에 제고되어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당말이래 정부의 사묘정책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玄宗 天寶연간이래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묘제사의 대상이 嶽鎭海瀆과 名山大川·帝王先賢을 넘어서, 名臣·義士·烈女·孝婦에까지 확대되었고, 廟額과 封號를 통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사묘를 공식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특히 안사의 난 이후 藩鎭體制 성립으로 발생한 당제국의 균열이 십국지방정권이 수립으로 분열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정권들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착 사묘신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 민간사묘가 묘액이나 봉호의 하사를 통해서 공인된 신앙으로 국가차원의 보호와 후원을 받게 되었다.[16] 묘액과 봉호를 통해서 민간신앙을 선별하여 수용하고, 이를 祀典에 기록하여 사묘를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송정부는 이처럼 민간의 사묘신앙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封號와 廟額의 하사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이를 정비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정부에서 지방단위에 이르기까지 공인된 祭祀를 등재한 祀典의 편찬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北宋 仁宗 皇祐2년(1050)경부터 본격화되는데, '名山大川' 등을 제사하는 祠廟 중에 祈雨에 특별히 영험한 곳을 상세히 조사하여 祀典에 기입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神宗 熙

16) 김상범,「唐末·五代 浙西地域의 祠廟信仰과 地域社會」『東洋史學研究』第101輯, 2007. 12. 김한신,「지역정권과 민간신앙: 唐末·五代시기 江南地域 藩鎭割據勢力들의 民間信仰에 대한 後援」,『중국고중세사연구』제30집, 2013. 8.

寧7년(1074)의 詔令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데, 전국에 있는 祠廟 가운데 백성들에게 功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爵號가 하사되지 않거나, 설사 내려졌어도 합당치 못한 것 등을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기초로 다음해에는 37개 所의 사묘에 封號가 하사되었다[17] 그러나 누차에 걸쳐 조사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팽창한 사묘들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神宗 元豐3年(1080)에도 정부는 '爵位'를 근거로 사묘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는 조령을 반포했다. 封號 下賜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太常寺 博士였던 王古는 '先廟額, 後封號'의 원칙 하에, 封號의 下賜는 廟神의 地位에 따라 侯・公・王의 순서로, 封號의 字數도 처음에는 二字에서 시작해 四字, 六字(후에는 八字로 늘어남)로 증가해가는 규정을 확립하였고, 神의 家族들에 대한 封號의 확대적용과 女神에 대한 규정도 확정하였다.[18] 많은 수의 사묘를 관리하기 위해 일단 지방에서 상세한 조사를 통해 地誌를 작성하고, 다시 중앙에서 祀典에 기입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唐末에 이미 단서가 나타났지만,[19] '爵位의 원리'가 사묘를 관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封號와 廟額의 운영세칙이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祠廟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哲宗 紹聖2년(1085) 12월에는 禮部侍郎 黃裳의 건의로 天下州軍은 모든 境內 사묘에 대해 정리하여 '某州祀典'으로 편찬하라는 조령이 하달되었다.[20] 지방관들이 현지 祠廟의 동태를 정확히 장악할 수 있는 祀典의 체계가 정비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층의 '祀典'을 갖추었던 것이다. 어쨌든 국가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大・中・小 三祀로 제한되어 있던 국가제사체제의 하부에 방대한 수의 祠廟를 포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묘정책은 개봉부 내에

17) 『宋會要輯稿』 第19冊 禮20之二.

18) 『宋史』 卷105, 禮八 「諸祠廟」, p.2561; 『宋會要輯稿』 第19冊 禮20之六. (太祖) 開寶(968-975), (仁宗)皇祐(1049-1053)이래, 무릇 천하에서 地志에 명기되어, 功德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宮觀陵廟와 名山大川중에 능히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에게는 (廟宇)를 숭엄하게 장식해주고 祀典에 기입하였다. 神宗 熙寧年間(1068-1077)에는 거듭 詔를 내려 祠廟가 기도에 응해 영험을 드러냈으나, 아직까지 爵號가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연유로 太常博士 王古가 청하길 "오늘 이래로 爵號가 없는 諸神祠에는 廟額을 내리고, 이미 묘액이 하사된 자에게는 封爵을 가한다. 처음에는 侯에 封하고, 다음으로 公에 封하고, 그 다음에 王에 봉하는데, 살아서 작위가 있었던 자들은 본래의 封爵에 따른다. 婦女의 神에게는 夫人을 封하고, 다음에 妃에 封한다. 封號는 처음에는 두 자이며, 다음에는 네 자로 더해진다. 이렇듯 命을 내려 신을 통어함으로써, 恩禮에 질서가 있게 된다.....

19) 이덕유는 "按方志, 前代名臣・賢后則祠之, 四郡之內, 除淫祠一千一十所"라는 구문에서 언급되다시피 지방지를 淫祠 與否를 판별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은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湖州 吳康縣의 龍神을 모시는「淵德廟」와 관련된 "唐元和8년(813), 縣令劉汭禱雨有驗, 始載祀典."이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嘉泰吳興志』, p.4745).

20) 『宋會要輯稿』 第19冊 禮20之九.

서는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개봉 사묘신앙의 전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개봉이 중앙정부가 위치한 都城인 만큼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개봉사묘에 대한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이 지역 사묘신앙 전개배경을 분석해보겠다. 송조의 황제들은 개국이래로 수도 개봉의 사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관심은 우선 吉禮 즉 국가제사차원의 祠廟祭祀라고 할 수 있는 文廟와 武廟의 정비에 반영되었다. 송 태조 조광윤은 건국 후에 먼저 後周 顯德2년(955)에 축조된 國子監과 學舍를 방문하고, 先聖과 亞聖 그리고 十哲像을 塑造像으로 제작하여 봉안하게 하였으며, 72명의 先賢과 21명의 先儒는 東西廡의 목벽에 畵像으로 그리게 하였다. 조광윤은 建隆연간(960-962) 동안에 세 차례나 국자감을 방문하여 文宣王廟를 배알하였는데, 직접 先聖과 亞聖의 贊을 찬수하기도 했다. 태종 역시 재위기간동안 세 차례에 걸쳐 문묘를 배알하였다.[21]

태조는 건국한 바로 다음 해인 建隆2年(961)에는 武成王廟를 방문했는데, 다음해 9월 16일에는 詔를 내려 국자감 맞은편에 새롭게 무성왕묘를 건립할 것을 명령하였다. 建隆4년(963) 4월에는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工事의 진척을 시찰하고, 武成王廟의 從祀 神象가운데, 齊相 管仲은 塑像으로 승격시켜 堂에 봉안하게 하였고, 吳起는 강등하여 東西廡에 畫像으로 그려 넣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성 개봉에는 비로소 三祀禮 가운데 中祀에 해당하는 文廟와 武廟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22]

北宋 정부는 唐代부터 국가제사의 일환으로 운영되던 五龍廟(五龍祠로도 지칭함)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五龍祠는 원래는 현무문 근처에 있었는데, 太祖 建隆3年(962)에 東京城 동쪽의 春明坊으로 옮겼다. 이후 정부는 기본적으로 唐朝의 오룡의례를 계승하여 中祀禮에 의거해 春, 秋로 정기의례를 거행하였다. 眞宗은 大中祥符 元年에 조령을 내려 오룡묘를 修飾해 주었으며, 哲宗 元祐4年(1089) 7월에는 會應廟라는 묘액을 하사해주었는데, 앞서 神宗 熙寧10년(1077)에 信州 五龍廟에서 기우제에 대한 응답이 즉각 나타나자 '會應'이라는 묘액이 하사된바 있는데, 이후 도성을 포함하는 모든 오룡묘는 이 名額으로 불리게 되었다. 徽宗 大觀2년(1108)에는 天下의 오룡신에게 王爵이 하사되었는데, 靑龍神에게는 廣仁王, 赤龍神에게는 嘉澤王, 黃龍神에게는 孚應王, 白龍神에게는 義濟王, 黑龍神에게는 靈澤王이라는 봉호가 하사되었다.[23]

---

21) 『宋史』 卷105, 志第58, 禮8 吉禮8, p.2547.

22) 『宋史』 卷105, 志第58, 禮8 吉禮8, pp.2555-2558.『宋會要輯稿』, 禮16: 幸武學詔曰 : "其武成王廟從祀神象, 齊相管仲宜塑像升於堂, 魏(河西)太守吳起宜畫像降於廡. 餘依昭等議外, 並從舊制."

23) 『宋會要輯稿』 禮21 嶽瀆諸廟 <會應廟>: 廟在東京城東春明坊.五龍祠, 太祖建隆三年自元武門徙於此. 國朝緣唐祭五龍之制, 春秋常行其祀, 用中祀禮.眞宗大中祥符元年四月, 詔修飾神帳.哲宗元祐四年七月, 賜額.先是熙寧十年八月, 信州有五龍廟, 禱雨有應, 賜額曰會應, 自是五龍廟皆以此名額云.徽宗

乾德初(963)부터는 歷代帝王을 시작으로 前代功臣, 烈士, 義父節夫에 이르기까지 陵墓의 관리와 祠廟의 건립, 운영을 포함하는 관련법령들이 차례로 반포되었다.[24] 주목되는 것은 송정부의 관심이 東京 開封府 소재 각종 지역사묘에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태종 이래로 송의 황제들은 국가의례가 있을 때마다 개봉의 지역사묘에도 해당 官吏를 파견하여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雍熙4년(987)에 '親耕籍田禮'를 거행하겠다는 조칙을 공포했는데, 의례를 거행하기에 앞서서 九龍廟・黃溝廟・扁鵲廟・吳起廟・信陵君廟・張耳廟・單雄信廟 등 개봉 소재 7개 祠廟에 관리를 파견하여 告祭를 올리도록 했다. 이들 廟宇는 보이는 바처럼 각기 廟神의 성격이 분명하게 다르다. 심지어 秦漢교체기에 項羽에 의해 常山王에 분봉되었다가 劉邦에게 투항한 張耳나 隋末 王世充 세력으로 李世民 휘하의 蔚遲敬德과 交戰을 치르다가 피살된 單雄信등은 유교제사의 立廟 원칙에 입각한다면, 생전행적 만으로는 廟神이 된 정당성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어찌되었든,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大禮 때마다 관리를 파견해 별도의 제사를 거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都城의 여러 지역신 가운데 이들 七廟의 神들이 개봉주민들로부터 가장 널리 숭배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25] 당시 가장 번화가인 內城 左軍第二廂의 潘樓東街巷에 위치했던 單將軍廟에는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개봉주민들이 단웅신이 사용하던 대추나무 槍에서 싹이 돋은 것이라며 이 거리를 대추무덤거리[棗塚子巷]로 불렀다고 하는 점에서, 간접적이나마 단웅신과 주민 간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26] 후에 告祭의 범주에 德安公廟와 嶽台廟가 추가되었고, 景德2年(1005)에는 南薰門과 朱雀門 밖에 있는 二坊橋에도 제사를 올리게 했다. 大中祥符元年(1008) 東封을 떠날 때에는 開封縣의 文宣王廟와 胡王廟, 樊將軍廟 등 세 묘에도 告祭를 올리게 했는데, 이로써 국가의례의 시행을 알리는 개봉사묘, 즉 국가의례에 연동된 도성의 지역사묘는 7개에서 14개, 二坊橋를 제외하면 1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27]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감안할 때, 이들 사묘에 대한 신앙행위가 처음부터 개봉에서 시작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북송

---

大觀二年十月, 詔天下五龍神皆封王爵, 靑龍神封廣仁王, 赤龍神封嘉澤王, 黃龍神封孚應王, 白龍神封義濟王, 黑龍神封靈澤王.

24) 『宋史』 卷105, 志第58, 禮8 吉禮8, pp.2558-2561.

25) 『宋會要輯稿』 禮18 <祈雨>: "雍熙四年(987)十二月二十一日, 詔以親耕籍田, 遣官奏告外, 又命官祭九龍、黃溝、扁鵲、吳起、信陵君、張耳、單雄信七廟. 自後每大禮, 皆遣官祭此七廟, 後又添德安公廟.

26) 『東京夢華錄』 卷2, p.104.

27) 『宋會要輯稿』禮14 <群祀>: "雍熙四年十二月二十一日, 詔以親耕籍田, 遣官奏告外, 又命官祭九龍、黃溝、扁鵲、吳起、信陵君、張耳、單雄信七廟. 自後每大禮, 皆遣官祭此七廟, 後又添德安公廟. 咸平五年, 又告嶽台廟. 景德二年, 又告南薰、朱雀門外二坊橋. 大中祥符元年東封, 又告開封縣文宣王、胡王、樊將軍三廟.

시기에는 이미 장기적으로 개봉주민들에게 숭배되어 적어도 도성내에서는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추세를 요약하면, 북송 정부는 건국 초부터 도성 내에 유교국가의 사상적 지향성을 반영하는 문선왕묘와 국가의 무운을 관장하는 무성왕묘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당대이래 국가제사로 운영된 오룡묘 역시 中祀에 의거해 적극 운영하였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大禮를 거행할 시에는 개봉의 영향력있는 사묘에서 고제를 거행하게 하였는데, 개봉지역사묘와의 연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대례를 거행하거나 봉선의례와 같은 국가대사가 있을 때마다, 告制의 형식을 통해서 개봉 지역의 유력한 사묘들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은, 비록 告祭가 神主를 대상으로 의례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廟祝・지역인사・기층신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개국 초기의 도성 현지주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이들 지역사묘에 대한 신앙의 공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범주도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봉지역사묘의 발전과 팽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개봉의 사묘신앙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배경으로 개봉의 도시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대이후 제국의 수도로 급부상한 개봉은 운하와 하천 그리고 육상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결절 점에 위치하여 전국의 물류가 몰려드는 곳이다. 또한 종전의 도성과는 달리 평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대병력을 집결시켜야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도시였다. 경제적 기능이 정치군사적 기능을 압도하는 그런 곳이었다. 이처럼 유동성이 강한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 인력과 물자의 이동에 따라 사묘신앙도 유입된 것이다. 따라서 개봉의 외지사묘는 전국각지에서 유입되었으며, 사묘의 유입주체와 방식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방에서 유입되어 개봉 주민들의 애호를 받은 대표적인 사묘로는 崔府君祠를 들 수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崔府君의 이름은 崔珏인데 唐 貞觀年間에 滏陽令을 지내다가, 죽은 뒤에 磁州의 土地神이 되었다고 한다. 太宗 淳化(990~994) 初에는, 民이 개봉 도성 북쪽에 처음으로 최부군 사묘를 건립했다고 한다. 물론 초기에는 소형의 사묘였을 테지만, 至道2년(996)년에 晉國公主 石氏씨가 기도를 올린 뒤 바로 감응을 얻게 되면서, 공주와 황실이 주요한 후원자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빠른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사료된다. 『宋會要輯稿』 관련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內侍를 파견하여 묘우를 수리해주었고 依物 등을 후원해주었다. 眞宗때에도 잇따른 사묘의 중수조치가 내려졌으며, 춘추 두 차례의 정기제사가 확정되었고, 咸平5년(1002)에는 ‘崔府君廟’라는 묘액이 하사되었다. 仁宗 景祐2년(1035)에는 ‘護國顯應公’이라는 새로운 봉호가 하사되었고, 開封府와 본묘가 있는 磁州

에 관리를 파견하여 고제를 올리게 했으며, 神宗 熙寧8년(1075)년에는 재차 봉호를 더한다는 조령이 발표되었다.[28] 이처럼 지속되는 국가의 후원은 개봉사회에서 최부군 신앙의 차지하는 위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인데, 매년 6월 6일 최부군의 탄신일이 되면 사묘는 개봉주민 갖다 바치는 예물들로 넘쳐났다고 한다.

遠方에서 유입된 대표적인 사묘로는 도성 서쪽 만승문 밖 1리 지점에 위치했던 灌口二郎神廟를 거론할 수 있다. 二郎神廟에 대해서는 都江堰 二王廟와 같이 李氷과 그의 차남을 모시는 治水神의 사묘라는 설과 四川 嘉州 홍수 때 異蹟을 발휘하여 灌口에 입묘된 趙昱의 사묘라는 설이 병존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이랑신앙이 사천에서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최부군묘와 마찬가지로 이랑신의 탄신일인 6월 24일에는 대대적인 축하행사가 벌어졌다. 북송정부는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後苑作과 書藝局 등에서 제작한 다양한 제사 관련 기구들을 공급해주었고, 本殿 露臺에는 공연용 무대인 樂棚을 설치해주었으며, 教坊과 鈞容直은 연주와 雜劇공연을, 太官局에서는 식사를 지원해주었다. 새벽이 되면 주민들은 서로 먼저 향을 꽂겠다고 경쟁했으며, 아침에는 여러 관청과 다양한 상인조합에서 온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들은 묘신께 풍성한 헌물을 받쳤고, 신을 맞기 위해서 노대에서는 각종 잡희를 공연했다.[29]

五通神廟 역시 먼 외지에서 유입된 사묘였다. 五通廟는 五顯廟로도 불리는데, 원래 徽州 婺源縣의 土神으로서, 상인들에 의해 臺州와 蘇州를 시작으로 강남각지로 확산되었다. 개봉은 당시 물류의 집결지이자 상인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북송시기에 오통신앙은 이들에 의해 개봉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선박들은 長江, 淮河, 汴河(汴渠)를 경유한 뒤, 外城 동남부의 東水門을 통해 개봉성으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당시 내성 동남부의 左軍第一箱 지역에는 남방음식점이 생겨났고 남방에서 온 상인들과 관료들이 숙박하는 여관도 다수 건립되었다. 오통묘 역시 그들에 의해 유입되어 처음에는 이들 공동체를 응집시키는 향토신의 역할을 하다가 점차 개봉의 토착주민들에게도 점진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쨌든 진입 초기에 오통신은 당연히 개봉주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음사처럼 보였을 것인데, 政和元年(1111)에 대대적인 신사철폐령이 단행되면서는 음사로 판명되어 철폐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

28) 『宋會要輯稿』禮21 嶽瀆諸廟 <護國顯應公廟>: "廟在東京城北, 卽崔府君祠也. 相傳唐滏陽令歿爲神, 主幽冥事. 廟在磁州, 太宗淳化初, 民有於此置廟. 至道二年, 晉國公主石氏祈禱有應, 以其事聞, 詔遣內侍修廟, 賜名, 並送衣物供具. 眞宗景德元年重修, 春秋二祀. 磁州廟, 咸平元年重修, 五年賜額曰崔府君廟. 朝廷常遣官主廟事. 仁宗景祐二年七月, 封護國顯應公, 仍令開封府、磁州遣官祭告, 具上公禮服. 一在西京慶州. 神宗熙寧八年十二月, 詔府君廟特加封號.

29) 『東京夢華錄』 卷3, pp.279-280.

## Ⅲ. 開封의 神祠 철폐령과 祠廟재배치

물론 祠廟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신앙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자, 송조는 민간문화의 전개양상이 전반적인 교화의 추진방향과 배치됨으로써 정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향심력에 중대한 손상이 올 것을 경계하였다. 중앙 뿐 아니라, 유교이념을 통한 도덕적 교화를 통치의 핵심으로 교육받아온 적지 않은 지방관들도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런 까닭에 주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民生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敎化를 해치는 무허가 '淫祠'라는 이유를 결부시켜 수시로 이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모색해 왔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강경한 방법은 역시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철폐시키는 정책이다. 중앙에서 주도한 음사철폐조치 가운데 비교적 저명한 사례로는 北宋 徽宗 大觀3년(1109)에 조칙이 내려진 후 2년 후인 政和元年(1111)까지 수도 開封府에서 진행된 음사철폐조치를 들 수 있다. 『宋會要輯稿』에 보이는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09년) 8월 26일, 京師에 있어 祀典에 기록되지 않은 淫祀는 훼멸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귀신에 가탁해 妖言으로 민중을 현혹하는 자들은 開封府로 하여금 체포해 형을 내리게 하고, 인근 州로 보내 관리하게 했으며, 만일 죄질이 엄중할 시에는 上奏해 결정하게 했다.[30]
>
> (1111년) 正月 9일, 詔書에 開封府는 神祠 1038개소를 훼멸하였다. 또한 일부 神像은 寺觀이나 本廟로 옮겼는데, 眞武神의 像은 醴泉下觀으로, 土地神의 像은 城隍廟로 옮기는 등등의 예를 들 수 있다. 五通, 石將軍, 妲己 세 묘는 淫祠로써 폐기해버렸다. 또한 軍民들이 멋대로 세운 大小 祠廟도 금지시켰다.[31]

상문은 대략 세 방면에서 눈길을 끄는데, 우선 開封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무려 1038개 소의 淫祠가 철폐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32] 역대 淫祠禁毁 조치 가운데 人口에 膾炙하는 사례로 唐代 狄仁傑과 李德裕의 경우를 드는데, 각각 1700餘所와 1110餘所의 淫祠를 焚毁하여 典範처럼 칭송되었다.[33] 그러나 狄仁傑과 李德裕의 조치가 전체 江南地域 혹은 浙西四郡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對象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開封에서만 이렇게 많은 淫祠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은 宋代이후 민간 사묘신앙의 발전추이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음과 이에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

30) 『宋會要輯稿』「刑法」2-50.
31) 『宋會要輯稿』「禮」20-14.
32) 『宋會要輯稿』「禮」20-14.
33) 이 부분에 대해서는 拙稿, 「國家禮制와 民間信仰의 충돌-唐初 狄仁傑의 淫祠撤廢 조치를 중심으로」(『中國史硏究』17, 2002) 참조,

이다. 두 번째로 예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大小祠廟에 대한 금지를 언급하기에 앞서 특별히 五通, 石將軍, 妲己廟를 지명했는데 正祠로 인정받지 못한 사묘들 가운데 특히 이들 세 묘우가 수도지역에서 가장 번창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일부 神像을 寺觀이나 本廟로 재배치하는 내용은 이 사건이 단순히 몇몇 음사를 철폐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道, 佛 혹은 祠廟 내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의도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특히 民間神像을 재배치하는 실례로 든 眞武像의 醴泉下觀, 土地像의 城隍廟[34] 移轉은 城隍 역시 宋代이래로 점차 道教神의 반열에 편입되기 시작한 점[35]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사건이 도교세력의 면밀한 계획 하에 성립되었음을 확증해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徽宗은 宮內에 道觀을 세우고 劉混康, 林靈素 등 道士들을 끌어들이는 등 도교에 심취했는데, 음사철폐 2년 전인 大觀元年(1107)에는 尙書省에 도교의례를 주관하는 禮儀局을 별도로 설립한 바 있다. 특히 음사철폐를 단행하는 당해년도에는 黃帝를 先師로, 風后등 8인을 配享으로, 巫咸을 위시한 70인을 從祀로 하는 道教神統과 祭祀體系를 확립하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음사철폐가 민간문화를 통제하겠다는 종전의 목표와 더불어 道教正神을 중심으로 神系를 재확립해보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36] 그러나 홀시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조치들이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기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인데, 이는 신앙행위에 있어서 '중국적 특성'이라 불리는 적지 않은 요소들이 국가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었음을 시사해준다.

34) 土地神像의 城隍廟 이전은 말단 향촌의 수호신인 土地公과 州縣이상의 상급 지역수호신인 城隍사이에 이미 관료조직에 보이는 상하관계와 같은 누층적인 종속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상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35) 鄧嗣禹는『輿地紀勝』같은 책에 道士들이 醮祭를 올리는데 '二城隍'이 참여했다는 등의 언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宋代이래로 성황과 도교사이에 결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城隍考」(원 논문은『史學年報』, 第二卷 第二期, 1935年 9月에 게재됨; 黃培, 陶晋生편『鄧嗣禹先生學術論文選集』, 食貨出版社, 1980), p.87 참조.

36) 卿希泰,『中國道教史(第二卷)』(四川人民出版社, 1992), p.618.

# 청 초기 理藩院의 역할과 성격

이 선 애(고려대)

목 차

서론
1. 숭덕 말년 이번원 지위를 둘러싼 논쟁
2. 순치 연간 이번원의 역할
3. 순치 말년 이번원 지위의 변화
결론

## 서론

理藩院(tulergi golo be dasara jurgan)의 前身인 蒙古衙門(monggo jurgan)은 홍타이지 통치기에 내몽고 부족들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립되었다. 몽고아문은 숭덕3년(1638) 이번원으로 개칭되었고 이번원은 청 말까지 外藩의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구로서 존속했다. 이번원은 후금 정권과 내몽고 각부의 밀접한 정치·군사적 관계에서 탄생되었고 청의 외번이 확대됨에 따라 그 업무 범위와 조직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원은 설립 초기에 주로 내몽고와 관계된 업무를 담당했지만 강희 중엽 청의 영향력이 칼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번원의 조직과 역할에도 변화가 생겼다. 옹정·건륭 시기를 거쳐 청의 영역이 몽고를 넘어 티베트와 신강까지 확장되면서 이번원의 역할도 이 지역의 정치·경제·행정·종교관련 업무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원은 청대 외번 통치의 핵심 기구였으며 그 조직과 역할의 확대는 청대 외번 확장 과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번원 설립 시기 및 초기 조직구성의 세부적인 측면은 명확하지 않다. 몽고아문을 이번원으로 개칭한 시기는 사료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되지만 몽고아문이 설립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기존에는『淸史稿』「職官志」理藩院條의 "숭덕 원년에 몽고아문을 설립하고 승정과 참정을 두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 숭덕 원년 설립설이 유력했다.[1] 그러나 만문사료인『內國史院檔』과『淸太宗實錄』천총8년(1634) 5월條에 '몽고아

1)『淸史稿』卷115 志90「職官」二 '理藩院'. "初, 崇德元年, 設蒙古衙門, 置承政,參政各官."

문의 관리'가 언급된 기록을 근거로 숭덕 원년보다 이전, 적어도 천총8년경에는 이미 몽고아문이 설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 이와 같이 몽고아문 설립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몽고아문 설립 직후 활동에 관한 사료가 충분하기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대 이번원의 역할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설립 시기의 特定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번원이 설립된 배경과 만주족 정권 내에서 몽고아문-이번원이 차지한 위치와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원의 설립 배경은 후금의 만몽연합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누르하치 치세부터 내몽고 각부와 후금의 관계는 친선과 갈등, 연합과 대립을 반복했다. 홍타이지는 명과 차하르부 릭단 칸에 대한 전쟁을 진행하면서 내몽고 각부에 대한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그는 만주족 정권의 체제를 완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내몽고 각부를 전담 관리할 부서를 설립해 군사 동원 때의 임시적 성격이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화된 행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홍타이지의 개혁에 대해 명의 제도를 모방해 관제를 세우고 한인 관료를 등용해 권력집중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코르친 부와의 혼인관계를 강화하고 내몽고에 대한 영향력을 심화시켜간 일련의 정책들도 그가 大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몽고아문은 몽고와의 관계가 정권의 안녕과 직결된 당시 만주족 정권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이번원은 그 설립 배경부터 이민족 정권인 청조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번원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청조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 학계의 경우 청의 지배층은 만주족이었으나 이들은 한화되었고 청은 중국왕조의 일부로서 중국의 최대 판도를 완성한 다민족・다문화적 통일국가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청대 외번은 내지화・일체화 혹은 한화되었고 청대 외번 통치의 연원은 商代에 확립된 宗藩體制에 있으며 이번원의 연원도 商代의 이민족 관리 기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3] 미국 학

---

2) Ning Chia,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Renovation of the Manchu dynasty Lifanyuan and Libu in the Qing Empire building"(Workshop "Administrative and Colonial Practices in Qing Ruled China: Lifanyuan and Libu Revisited"); 包文漢,「清代"藩部"一詞考釋」『清史研究』2000年第4期, p.100; 達力扎布,「清代內扎薩克六盟和蒙古衙門設立時間蠡測」『明清蒙古史論稿』; 片岡一忠,『清朝新疆統治研究』, 雄山閣出版, 1991; 村上信明,「清朝前期における理藩院の人員構成」『滿族史研究』4, 2005. 이 기록의 만문원문은 'ere bederebure de ocibe, karacin i cooha tucibure de ocibe, monggoi jurgan i niyalma akū ohode ojorakū'이다. 즉 '이들(귀순한 온 사람들)을 후퇴시킬 때에도, 카라친의 군대를 내보낼 때에도 몽고아문의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內國史院檔 天聰8年』天聰8年 5月, p.155).『內國史院滿文檔』의 기록은『淸太宗實錄』卷18, 天聰8年 5月初 기록에도 보인다.

3) 청대 이번원을 비롯한 소위 '藩部', '邊疆'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趙雲田, 馬大正, 馬汝珩, 張永江 등의 연구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이번원에 대해 전론한 趙雲田은 이번원의 기원을 商代 한족의 前身인 華夏族이 소수민족 귀족들의 朝覲을 관장하고 접대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에서 찾았다. 趙雲田,『淸代蒙古政教制度』, 中華書局, 1989; 趙雲田,『淸代治理邊陲的樞紐-理藩院』,

계는 이러한 중국 학계의 시각에 비판적이다. 특히 미국에서도 한동안 정설로 자리 잡은 한화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한 新淸史(New Qing History) 학파는 청조의 다문화적 특질은 만주족의 정체성과 연관되며 이번원은 이러한 만주족의 고유한 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청대 이번원을 연구한 Chia Ning은 청조의 내륙아시아적 특징에 주목하고 청조가 몽고 및 내륙아시아 지역의 非한족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원은 청조가 한족과 내륙아시아 민족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기능했다고 강조했다.[4] Chia Ning은 기본적으로 청조가 한화된 왕조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다민족 통일국가로의 평화적 통합의 틀에서 청대 외번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신청사(New Qing History) 학파와는 다른 입장에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이번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청조의 민족적·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이번원의 특수한 역할과 의미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원을 만주족 고유의 기구로 평가하는 경향은 청 초기 정치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인다. 홍타이지가 중앙집권화를 위해 만·한 제도를 병용해 설립한 중앙기구들 중 내삼원과 육부, 도찰원 등은 명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이번원(몽고아문)은 만주족의 독창적인 제도로 분류된다.[5] 강희 초기 만주족 섭정들이 순치제가 추진한 한족 편향적 정책을 부정하면서 추진한 관제 개편에서도 각 중앙기구의 만·한적 성격이 드러난다. Robert Oxnam은 오보이 섭정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강희 연간 지속된 한화와 만주족 지배체제의 갈등관계를 강조했다.[6] 순치제 사후 오보이[oboi, 鰲拜]를 비롯한 만주족 섭정대신들이 예부에 예속되었던 이번원의 지위를 회복시킨 조치도 순치제의 한화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청 초기 정치상황에 관한 연구에서는 만·한 대립의 구도에서 이번원을 만주족의 기구라고 분류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결여되었다. 반면 이번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 초기에 발생한 이번원의 지위 변화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해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원에 대한 청 조정 내부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청 황제와 관료들이 이번원을 만주족 고유의 기구로 인식했을까? 순치 말년과 강희 초기에 발생한 이번원의 지위 변화는 이번원 역할의 성격이나 중요도의 변화로 초래된 결과는 아니었을까?

---

新疆人民出版社, 1995; 馬汝珩·馬大正 主編,『清代邊疆開發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馬汝珩·馬大正 主編,『清代的邊疆政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馬大正,『中國邊疆史地論集續編』, 黑龍江教育出版社, 2003; 張永江,『清代藩部研究-以政治變遷爲中心』,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4) Ning Chia, *The Li-fan Yuan in the Early Ch'ing Dynast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2(Ph.D.).

5) 劉小萌,『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2007(→이훈·김선민·이선애 역,『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푸른역사, 2013, p.417).

6) Robert B. Oxnam, Ruling From Horseback: Manchu Politics in the Oboi Regency 1661-166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본고에서는 청 초기에 발생한 이번원의 지위 변화가 청 조정 내부의 만·한 제도의 대립을 반영하며 이는 청 조정 내부에서도 이번원을 만주족의 기구로 명확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번원에 대한 만·한 관료의 입장 차이와 갈등은 순치 말년, 강희 초기뿐만 아니라 이미 숭덕 말년에도 존재했다. 이는 홍타이지 통치기에도 이번원을 통해 조정 내 만·한 간의 갈등이 노정되었고 조정 관료들이 이번원을 만주족 고유의 기구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숭덕 말년에 있었던 이번원 지위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이번원에 대한 만·한 관료의 인식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순치 연간 이번원이 담당했던 주요 업무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순치 말년에 이번원이 예부에 예속된 것은 對蒙 관계의 중요도가 저하되었거나 이번원의 역할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순치 말년과 강희 초기 이번원 지위의 변화를 당시 정치적 상황의 맥락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 1. 숭덕 말년 이번원 지위를 둘러싼 논쟁

『滿文老檔』에 崇德 元年(1636) 10월 "16일에 외번 몽고 버일러들과 대신들에게 백성의 절도와 혼란함에 대해 논하고자 법도의 글을 내리고 회맹에 참가하고자 차하르, 칼카의 버일러들에게 도찰원 승정 아시다르한 낙추와 몽고아문 승정 다야치 타부낭을, 코르친의 버일러들에게 홍문원 대학사 히펴, 몽고아문 승정 니칸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7] 이를 통해 이 시기 몽고아문의 상급 관원으로 승정과 참정을 두었고 승정은 1명 이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숭덕3년(1638) 6월에 몽고아문을 이번원으로 개칭한 데 이어 7월에 部院의 관제를 개혁해 각 부원에 만주 승정 1명과 좌·우 참정 각 1명씩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번원도 이 원칙에 따르게 되었다. 이때 버이서(貝子) 볼로[Bolo, 博洛/波洛]가 승정으로 임명되었고 이전에 몽고아문 승정이었던 니칸은 이번원 우참정으로 옮겨졌다. 이외에 실무 처리 관원으로 만·몽결의 副理事官 8명과 啓心郎 1명을 두었다.[8] 이번원 승정과 참정의 지위는 육부와 동일했고 이번원은 육부, 도찰원, 內三院과 함께 소위 三院八衙門 체제를 구성했다.

숭덕8년(1643) 7월 홍타이지가 내삼원 아문을 이번원 밖으로 옮기고 이번원을 내삼원

7) 『滿文老檔』 太宗 崇德31, 崇德元年 10月, p.1335.

8) 『淸太宗實錄』崇德3年 7月 丙戌. "先是,六部都察院理藩院滿洲蒙古漢人承政每衙門各三四員,其餘皆爲參政官止二等.至是范文程,希福,剛林等奏淸,每衙門止宜設滿洲承政一員,以下酌量設左右承政,理事,副理事,主事等官,共爲五等.上可其奏.于是命吏部和碩睿親王更定八衙門官制, · · · 以貝子博洛爲理藩院承政,塞冷爲左參政,尼堪爲右參政.副理事官八員,諾木圖,希福,胡什格,扈什布,羅畢,阿布達理,艾松古,羅多.啓心郎多惠."

자리로 이전하려했다가 좌절된 일이 있었다. 도찰원 승정 祖可法과 張存仁 등은 홍타이지가 이번원을 내삼원 자리로 이전하고자 내린 명에 대해 내삼원과 도찰원은 원래부터 가까이 위치해 政事를 의논했고 내삼원은 조정의 近臣임으로 멀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내삼원 이전을 반대했다. 결국 홍타이지는 도찰원과 내삼원 관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내삼원을 다시 이번원 자리로 복귀시키고 이번원은 예부 아문 옆에 별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9] 내삼원은 內國史院(suduri ejere yamun, 역사를 기록하는 아문), 內弘文院(kooli selgiyere bithei yamun, 例를 선포하는 문서의 아문), 內秘書院(narhūn bithei yamun, 비밀 문서의 아문)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존의 文館(bithei yamun)을 기반으로 설립된 '세 아문(ilan yamun, 三館/三院)'이다. 1636년에 황제의 직속 기구로 설립된 이후 홍타이지가 황권을 강화하고 국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추적인 기구로 기능했다. 내삼원은 홍타이지 통치기에 건설된 심양 고궁의 中路 건축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崇政殿의 동남측에 건설되어 황제의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10]

내삼원과 이번원의 위치를 바꾸고자 했던 홍타이지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심양고궁의 아문 전각들이 정치적인 중요도를 고려해 배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문 위치의 이동은 단순한 자리바꿈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11] Chia Ning은 이것이 청 조정 내에서 이번원의 역할과 지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홍타이지 정권에서 이번원이 관할하던 몽고 관련 업무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이번원의 지위도 격상되었다는 것이다.[12] 한편 이 문제는 홍타이지 정권의 내부 상황과 도찰원과 내삼원 그리고 이번원이라는 중앙기구들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9) 『淸太宗實錄』崇德8년 7월 己未條. "都察院參政祖可法,張存仁,理事官雷興等奏言. 皇上膺圖御宇, 撫馭臣民. 凡禮樂制度, 昭萬歲之成規. 前旨命設內三院及臣等衙門,相隣不遠,立朝侍班,諮商政事,皆聖心之所載定也. 考諸古制,甚爲合宜. 近聞將內三院衙門移於理藩院之外.臣等思內三院理合仍近臣院,宜將理藩院外移. 蓋三院系朝廷近臣,豈可遠居. 臣等身任言路,凡立衙門定規度等事,或有未協,理應陳奏,伏冀聖監,疏入. 上是之,命部臣改理藩院衙門爲內三院,另建理藩院,近禮部衙門."

10) 欒曄, 李理, 「從沈陽故宮宮殿建築看滿漢文化的交融」, 『沈陽建築大學學報』, 第12卷 第2期, p.168. 심양고궁의 건축군은 누르하치 시기에 大政殿과 十王亭이 지어진 東路와 홍타이지 시기에 지어진 中路, 건륭기에 증건된 행궁의 일부인 西路로 나뉜다. 누르하치 시기에는 大政殿을 중앙에 두고 좌우로 여덟 버일러들의 집무실이 배열되어 있어 칸과 버일러들의 공동통치의 특징을 보인다. 이에 비해 홍타이지는 中路의 중앙에 大殿인 崇政殿을 중심으로 동·서로 각 아문의 전각인 朝樓·朝房을 건립해 동로의 십왕정을 대체했다. 이는 八旗 旗主 버일러들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황권을 강화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11)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 심양고궁의 건축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井曉光, 「淸初宮廷建築淺議-兼談皇太極的皇權思想」, 『淸史硏究』, 1995年 第4期; 謝慧君, 「淸代盛京城六部建置及坐落位置」, 『滿族硏究』, 2005年 第4期.

12) Chia Ning,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Renovation of the Manchu dynasty Lifanyuan and Libu in the Qing Empire building",Workshop "Administrative and Colonial Practices in Qing ruled China: Lifanyuan and Libu revisited", p.4. 이 글에서 Chia Ning은 이 기록의 날짜를 1638년 8월 17일로 오기했다. 이는 崇德8년(1643) 7월 己未일의 일이다.

홍타이지에게 내삼원의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던 도찰원 관원들은 承政 祖可法, 張存仁, 都察院理事官인 雷興 등이다. 조가법은 후금에 투항한 명의 총병 祖大壽의 양자로 조대수와 함께 후금에 투항했으며 장존인은 요양 출신으로 寧遠城 副將이었다가 천총5년(1631) 大凌河 전투 때 조대수와 함께 후금에 항복한 인물이다. 뢰흥은 요동 출신 한인으로 누르하치 시기에 直文官이 되었고 천총 연간에 내삼원의 하나인 秘書院의 副理事官을 거쳐 숭덕 연간에 도찰원 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조가법과 장존인, 뢰흥은 한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홍타이지 시기 중앙기구와 제도를 정비하면서 명조의 제도를 참고했고 이에 따라 중앙기구 관원으로 한인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특히 명대 관제와 관련이 깊은 내삼원과 도찰원에는 한인 관원들이 대거 포진해있었다.

예컨대 내삼원 설립 직후인 숭덕 연간 초기에 내국사원 대학사에 가린(Garin, 剛林), 학사에 羅繡錦과 로쇼(Lošo, 羅碩), 거인・생원에 梁正大・楊方興・宜成格・張應魁가 임명되었다. 내홍문원 대학사로 히퍼(Hife, 希福), 학사에 후키오(Hūkio, 胡丘 혹은 胡球)와 王文奎, 거인・생원에 齊國儒・馬國柱・王鐸이 임명되었다. 내비서원 대학사는 鮑承先과 范文程, 학사는 잠바(Jamba, 詹巴 혹은 詹霸), 거인・생원은 엉거더(Enggede), 뢰흥, 李棲鳳, 赫德이 임명되었다.[13] 가린과 히퍼, 로쇼, 잠바, 엉거더 등은 한문에 능한 만주족이었고 나머지 나수금, 양정대, 제국유, 뢰흥, 의성격, 이서봉, 혁덕 등은 한인이었다. 도찰원이 상주를 올린 숭덕8년 당시 도찰원에는 승정인 宗室 만다하이(Mandahai, 滿達海 혹은 滿打亥), 참정인 차하르부 출신 도르지 다르한(Dorji darhan, 多爾濟達爾漢), 만주족 쿠르찬(Kurcan) 등과 함께 조가법, 장존인, 뢰흥 등의 한인 관원들이 병용되었다. 조가법과 장존인은 후금에 투항한 후 도찰원이 설립된 숭덕 원년(1636) 도찰원 승정에 제수되었다가 숭덕 3년(1638)에 팔아문의 관제를 개혁해 도찰원 승정을 만주인 한 명으로 규정하면서 右參政이 되었다. 이후로 도찰원 승정은 國舅 아시다르한[asidarhan, 阿什達爾漢][14], 버이서 로토(Loto, 洛託), 만다하이 등 만주 종실과 관련된 인물들이 맡았고 참정과 부이사관 등은 만・한・몽결로 분배되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장존인・조가법・마국주・뇌흥 등의 한인관료들이 담당했다.[15]

내삼원과 도찰원 그리고 육부는 명의 제도를 연용해 설립되었고 만주족과 함께 한인을 고위직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몽고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관원도 만・몽결만 있는 이번원

---

13) 유소맹 지음, 이훈・김선민・이선애 옮김, 『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푸른역사, 2013, pp.412-416.

14) 아시다르한은 여허 수장층 가문인 나라[nara, 納喇]씨 출신으로 홍타이지의 생모인 孝慈高皇后의 族弟였기 때문에 아시다르한 낙추(nakcu, 삼촌) 즉 國舅라고 불렸다. 그는 후금 정권의 몽고 관련 업무를 전담했고 숭덕 원년 6월까지 몽고아문의 승정을 맡았다.

15) 『淸史列傳』 卷78「貳臣傳甲」 張存仁 pp.6431-6434, 祖可法 pp.6435-6438 (中華書局, 2005); 劉玉杰, 「淸關外時期都察院初探」, 『齊齊哈爾工程學院學報』, 2013年 第1期, p.82.

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찰원 관원들은 상주문에서 '옛 제도를 살펴보아도 내삼원과 도찰원은 함께 정사를 의논해야 함이 마땅하고 내삼원은 조정의 近臣이므로 멀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내삼원이 아니라 이번원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에서 도찰원 관원들이 내삼원과의 관계를 동질적 혹은 협업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번원에 대해서는 도찰원·내삼원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간취된다. 따라서 이번원과 내삼원 아문의 이전을 둘러싼 논의는 한인관료들이 명의 제도를 모방한 중국적 중앙기구와 후금-청의 만몽연합적 특성에서 만들어진 이번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번원을 내삼원보다 가까이 두려는 홍타이지의 의도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숭덕 말년 이번원과 내삼원 위치 이전에 대한 논란은 당시 청 조정 내 만·한 관료들의 긴장 관계를 노정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청 조정 내부에서 이번원을 만주족 고유의 기구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순치 연간 이번원의 역할

이번원의 조직구성은 순치 연간에 관제를 정비하면서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순치 원년(1644)에 관직 명칭을 개정해 이번원 승정을 尙書로, 참정을 侍郎으로, 부이사관을 員外郎으로 바꾸었다. 또 啓心郎 3명(만주 1명, 한군 2명), 堂主事 2명, 司務 2명, 漢副使 1명을 두었다.[16] 순치5년(1648) 2월에는 漢院判, 知事를 1명씩 증설했고[17] 하급 실무관으로 漢缺이 생기긴 했지만 육부 상서에 적용된 만한병용의 제도가 이번원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원의 경우 몇몇 하위직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직은 모두 만주인과 몽고인이 담당했으며 이러한 원칙은 청말까지 유지되었다.

순치14년(1657)에 唐古忒學敎習 1명을 이번원의 속관으로 설치했는데 이는 청 조정이 티베트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청 조정이 티베트와 접촉을 시도한 것은 홍타이지가 대청 황제로 즉위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숭덕2년(1637) 8월 칼카의 세첸 칸과 투시예투 칸이 홍타이지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들은 달라이 라마를 심양으로 초청하려는 홍타이지의 뜻을 알고 있으며 자신들과 오이라트 4부도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고자 하니 동행하자고 제안했다.[18] 이 서신을 통해 이 시기에 이미 홍타이지가 달라이

16) 『淸史稿』 卷115 志90 職官二 '理藩院'.

17) 『淸世祖實錄』 順治5年 2月 丙寅條.

18) 『淸太宗實錄』 崇德2年 8月 辛丑條에 外칼카의 마하사마디 세첸칸의 서신이, 庚戌條에는 투시예투 칸의 서신이 기록되어있다. 두 서신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내몽고 지역에 분포했던 5오톡 칼카와 구분해 고비 사막 이북지역에 분포한 칼카 세력을 北칼카 혹은 外칼카라고 지칭한다. 내·

라마 초청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숭덕2년 11월과 숭덕4년(1639) 10월에도 홍타이지는 티베트 측에 사절을 보내 천하 중생에게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현능한 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홍타이지 시기 달라이 라마의 심양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순치제가 등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조는 달라이 라마의 초청을 추진했다. 차이가 있다면 홍타이지 시기에는 주로 청에서 티베트로 사신을 파견했지만 순치제가 등극한 이후에는 티베트 측에서 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청이 입관하고 중원을 장악하자 티베트도 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19] 이렇게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면서 숭덕 연간부터 추진해왔던 달라이 라마의 초청이 순치9년(1652) 12월에 성사되었다.[20]

순치9년 말에 결실을 맺은 달라이 라마와 순치제의 회견은 청과 티베트 그리고 티베트의 군정을 장악한 청해 호쇼트부 구시 칸과 우호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순치제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데 공을 들인 이유에는 개인의 종교적 동기도 있겠지만 티베트가 서북부 몽고 세력과 갖는 정치・종교・군사적 관계가 매우 밀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관 직후 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이 서북부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정권의 안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북부 몽고 각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티베트의 종교・정치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순치 연간 청은 칼카와의 변계 지역에 위치한 내몽고 부족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칼카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숭덕 4년(1639)에 청에 복속한 수니트부의 텡기스가 순치제가 등극한 후 칼카 좌익 지역으로 도주한 사건은 순치 연간 내내 청과 칼카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청조는 교역제한이라는 경제봉쇄 조치를 통해 칼카를 압박하는 한편 달라이 라마를 통해 칼카와의 마찰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홍타이지와 순치제가 달라이 라마 초청에 공을 들인 이유 중의 하나가 몽고 세력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諸王・버일러・대신・九卿・科道에게 諭를 내려 말하길 '태종 황제 때 아직 칼카는 복속하지 않았고 외번몽고는 오직 라마(달라이 라마)의 말에 복종하니 이 때문에 달라이 라마에게 가서 초청했는데 사신이 도착하기 전에 태종 황제가 승하하셨다. 이후 睿王(예친왕 도르곤) 섭정 시 달라이 라마에게 가서 청했는데 아마도 용의 해에 올 거라 했다. 짐이

---

외 칼카는 모두 다얀 칸의 자손들로 내칼카는 다얀 칸의 다섯 번째 아들 알추볼로드의 후예이고 외칼카는 다얀 칸의 열한 번째 아들인 게레센자의 후예들이다. 內칼카는 비교적 초기에 청에 흡수되어 이후 사료에서는 外칼카를 칼카라고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도 편의상 칼카라고 지칭하겠다.

19) 李保文,「順治皇帝邀請第五世達賴喇嘛考」『西藏研究』, 2006年 第1期, p.21.

20)『淸世祖實錄』順治9年 12月, 癸丑條.

> 친정한 이후 그를 부르니 달라이 라마가 즉시 길을 떠나 왔는데 從者가 3천명이다. 지금 짐이 친히 邊外에 가서 그를 맞이하고자 달라이 라마를 변외에 머물게 했다. 외번몽고 버일러들이 달라이 라마를 보고자 하는 경우 변외에서 만나게 하라. 만약 라마가 내지로 들어오면 올해는 심한 흉년인데 라마의 從者가 많아 나에게 무익할까 염려된다. 만약 라마를 맞이하러 가지 않으면 내가 불러 오게 하고는 맞이하러 가지 않는 것이니 (달라이 라마가) 분명 중도에서 되돌아가 칼카 역시 이로 인해 귀순하러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각각 견해를 밝혀 상주하라'고 했다. 만주 신하들이 의논하길 '저희들이 청하여 라마가 와 황제께서 친히 변외로 가서 그를 맞이하고자 라마를 변외에 머물게 하셨으나 라마가 내지로 들어오고 싶다면 수행인을 조금만 데리고 내지로 들어오게 하면 되고 만일 변외에 있겠다고 한다면 라마가 편한 대로 들어주십시오. 황상께서 만약 그를 친히 맞이하신다면 칼카 역시 이에 따라 내귀할 것이니 크게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청해 놓고 맞이하지 않는다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저희가 예로써 라마를 공경해 주고 라마의 敎에 入敎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한인 신하들이 의논하길 '황상은 천하 국가의 주인이시니 친히 가서 라마를 맞이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마의 종자가 3천명이고 흉년을 만났으니 내지로 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특별히 청한 것 때문이라면 제왕·대신 중에서 한 사람을 대신 보내 맞이해도 됩니다. 라마를 변외에 머물게 하고 그에게 金銀 등의 물품을 주는 것은 역시 라마를 공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라고 했다. 두 논의를 모두 상주하자 황제가 말하길 '짐이 마땅히 헤아릴 것이다.'라고 했다.[21]

위의 기록은 순치9년(1652) 9월 달라이 라마를 황제가 친히 영접하는 문제에 관해 순치제가 滿·漢 대신들에게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순치제는 홍타이지 시기부터 추진된 달라이 라마의 초청을 외번몽고 즉 내몽고뿐만 아니라 청에 복속하지 않은 칼카와의 관계와 연계시켜 언급했다. 순치제는 만일 자신이 친히 맞이하지 않아 달라이 라마가 불만을 품고 중도에 돌아가면 달라이 라마를 신봉하는 칼카도 청에 귀순하지 않으리라고 염려했다.

티베트 불교는 이미 몽고인들의 정치사상과 생활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칼카 좌익은 투시예투 칸 굼부의 아들이 젭준담바 호톡토로서 달라이 라마에게 인정

---

21) 『淸世祖實錄』 卷68, 順治9年 9月, 壬申條. "諭諸王貝勒大臣九卿科道曰, 當太宗皇帝時尙有喀爾喀一隅未服, 以外藩蒙古惟喇嘛之言是聽, 因往召達賴喇嘛其使未至, 太宗皇帝晏駕. 後睿王攝政時往請達賴喇嘛許於辰年前來, 及朕親政後召之, 達賴喇嘛卽啓行前來, 從者三千人. 今朕欲親至邊外迎之, 令喇嘛卽住邊外. 外藩蒙古貝子欲見喇嘛者, 卽令在外相見. 若令喇嘛入內地, 今年稅收甚歉, 喇嘛從者又衆, 恐於我無益, 儻不往迎喇嘛, 以我旣召之來, 又不往迎, 必至中途而返, 恐喀爾喀亦因之不來歸順. 其應否往迎之處, 爾等各抒所見以奏. 滿洲諸臣議, 我等往請, 喇嘛卽來, 上親至邊外迎之, 令喇嘛住於邊外, 喇嘛欲入內地, 可令少帶隨從入內. 如欲在外, 聽喇嘛自便. 上若親往迎之, 喀爾喀亦從之來歸, 大有裨益也. 若請而不迎, 恐於理未當, 我以禮敬喇嘛, 而不入喇嘛之敎, 又何妨乎. 衆漢臣議, 皇上爲天下國家之主, 不當往迎喇嘛. 喇嘛從者三千餘人, 又遇勢歉, 不可令入內地. 若以特請之故, 可於諸王大臣中, 遣一人代迎, 其喇嘛令住邊外, 遣之金銀等物, 亦所以敬喇嘛也. 兩議具奏, 上曰, 朕當裁之."

받고 독자적인 활불체계를 세웠다. 칼카 좌익 수장 가문에서 티베트 불교의 고위 활불이 탄생한 것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칼카 우익인 자삭투 칸이 홍타이지와 정통성 문제로 대립할 때 주고받은 서신에서도 '몽고국의 권좌, 주군의 자리'와 더불어 '三寶를 받드는' 자격이 언급되었다.[22] 삼보를 받든다는 것은 곧 불법을 받들고 수호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칼카 몽고인들에게 정치적 정통성은 종교적 정통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고 청은 政과 敎 두 방면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입증하려했다.[23] 이와 같이 순치제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데에는 티베트 불교를 통해 칼카와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재해 있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와의 접견 장소와 황제 親迎에 대한 순치제의 하문에 만주 대신들과 한인 대신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만주 대신들은 순치제의 의견과 같이 황제가 달라이 라마를 친영하는 것이 칼카 몽고를 유인하는 데 이롭다고 했고 한인 대신들은 이에 반대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만주 대신들과 달리 한인 대신들은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에서 만주・몽고・티베트가 공유한 소위 '티베트 불교세계'와 한인 유교 세계의 괴리를 엿볼 수 있다.[24] 달라이 라마와 그의 후원자이자 티베트의 정권을 장악한 청해 호쇼트부 구시 칸은 청 황제가 호흐호트(귀화성)나 장성 밖 다이가(岱噶, 지금의 내몽고자치구 烏蘭察布市 남부 凉城縣 지역)로 와서 달라이 라마를 친영할 것을 요구했다. 달라이 라마 측은 천연두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 내지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고 했고 순치제는 내지의 변란으로 인해 경성을 비울 수 없다며 달라이 라마의 친영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순치제 본인은 달라이 라마의 요구대로 다이가에서 달라이 라마를 친영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순치제는 달라이 라마에게 서한을 보내 다이가로 가서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학사 洪承疇와 陳之遴이 欽天監에서 보고한 불길한 징조까지 운운하며 강력히 반대하자 친영의 뜻을 접었다.[25] 결국 달라이 라마와 순치제의 최초 접견은 南苑에서 이루어졌다.[26]

달라이 라마의 북경 방문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이번원에서 담당했다. 청조는 달라이

---

22) 烏雲畢力格,「清太宗與喀爾喀右翼扎薩克圖汗素班第的文書往來」『西域研究』 2008年 第2期, pp.3-4에 번역된『內秘書院蒙古文檔案滙編』, 第1輯, pp.255-257의 사료 재인용.

23) 김성수,「五世 달라이라마 北京行의 배경과 17세기 내륙아시아 네트워크」,『明淸史研究』 제29집, pp.126-129 참조.

24) '티베트불교세계'는 이시하마 유미코가 사용한 용어로 티베트 불교가 전파된 청조 및 내륙 아시아에 구축된 독자적인 지역 질서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청을 비롯한 티베트와 몽고는 티베트 불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했으며 이들의 정치이념에 티베트불교가 깊숙이 자리 잡아 독자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했다. 石濱裕美子,『チベット佛敎世界の歷史的研究』, 東方書店, 2001; 김성수, 앞의 글, p.119 참조.

25)『淸世祖實錄』 卷68, 順治9年 9月 庚辰條.

26)『淸世祖實錄』 卷70, 順治9年 12月 癸丑條.

라마의 북경 방문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기 위해 여러 번 사신을 파견했으며 일이 성사된 후에는 북경 安定門 바깥에 黃寺를 지어 달라이 라마의 숙소로 사용하게 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북경으로 오는 경로에 사묘를 건립하고 이번원에서 米糧을 지급하는 등 달라이 라마를 영접하고 그의 귀로를 호송하는 일까지 모든 업무를 이번원에서 총괄했다. 순치9년(1652) 2월 달라이 라마가 수행원 3천여 명을 이끌고 라싸를 출발하자 순치제는 이번원 시랑 샤지다라[šajidara, 沙濟達喇]를 필두로 호부·예부·병부·공부의 理事官들을 파견해 맞이하도록 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와 그를 초청하는 데 도움을 준 라마들에게 각종 하사품을 내렸다.[27] 이번원은 달라이 라마의 북경 방문에 동원된 내몽고 지역의 고위 라마들을 관리했다. 달라이 라마의 북경 방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라마로 호흐호트 출신의 반디타 노문 한[bandida nomon han, 班第達諾們罕]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달라이 라마가 북경에 있는 동안 머물렀던 黃寺 건립의 책임을 맡았으며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로 돌아갈 때 다이가까지 호송했다. 달라이 라마는 라싸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다이가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몽고 왕공들과 라마승들을 접견했는데 반디타 노문 한은 이 기간 동안 달라이 라마의 곁을 지켰다. 원래 반디타 노문 한은 달라이 라마가 북경을 떠나자마자 자신의 駐錫地로 돌아가고자 이번원을 통해 황제에게 상주했으나 달라이 라마가 다이가에 머무는 동안 함께 있으라는 명을 받았다.[28] 이와 같이 이번원은 내몽고 지역에서 온 라마들과 달라이 라마의 사신으로 온 라마들을 관리했으며 그들의 공헌에 따라 하사품을 내리는 역할을 맡았다.[29] 그리고 달라이 라마가 머문 다이가 지역 사찰의 라마들에게 매년 곡식을 지급했다.[30] 달라이 라마와 구시 칸에게 冊印을 하사하는 일도 예부 상서 羅郎球와 함께 이번원 시랑 시다리[sidari, 席達禮]가 담당했다.[31]

---

27) 『淸世祖實錄』 卷63, 順治9年 2月 丁未條.

28) 이번원에서는 판디타 노문 한이 달라이 라마에 대한 책임을 다했으니 자신의 駐錫지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한 일을 황제에게 상주했다. 순치제는 달라이 라마가 다이가에서 티베트로 출발할 때까지 판디타 노문 한이 달라이 라마의 곁에 머물도록 명했다. 『淸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 卷1, 順治10年 2月 24日, 「理藩院尙書尼堪等題議班第達諾門罕於達賴喇嘛自代噶起行前暫留該地本」, p.2; 順治10年 6月 18日, 「理藩院侍郎席達禮等題爲達賴喇嘛起程回藏請准班第達諾們罕返回原住錫之地本」, p.16.

29) 『淸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 卷1, 順治10年 4月 16日, 「理藩院尙書尼堪等題賞賜達賴喇嘛所遣呈進奏書者索諾木旺扎本」, p.9.

30) 『淸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 卷1, 順治10年 閏6月 初6日, 「理藩院侍郎席達禮等題准看管達賴喇嘛所住代噶廟喇嘛每年由部發給米本」, p.21-22.

31) 『淸世祖實錄』 卷74, 順治10年 4月 丁巳條. 청조는 달라이 라마와 구시 칸에게 금으로 만든 冊文과 印章을 하사했다. 달라이 라마에게 하사한 책인에는 만·한·티베트 문자를 사용했으며 달라이 라마를 '西天大善自在佛所領天下釋敎普通瓦赤喇怛喇達賴喇嘛'로 봉하고 인장에 '西天大善自在佛所領天下釋敎普通瓦赤喇怛喇達賴喇嘛之印'이라 새겼다. 구시 칸을 '遵行文義敏慧顧實汗'에 봉하고 만·한·몽문으로 책문과 인장을 만들어 인장에는 '遵行文義敏慧顧實汗印'이라 새겼다.

달라이 라마의 북경 방문을 계기로 순치 연간에 티베트와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티베트문으로 쓰여진 경전을 해석하고 티베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순치14년(1657)에 唐古忒教習을 이번원 소속 관원으로 설치했으며 경사와 성경 및 내몽고 지역의 티베트 불교 거점 지역에 라마승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사크라마[扎薩克喇嘛]제도를 확립했다.[32] 티베트 불교 고승에게 자사크라마와 首領라마라는 직위를 부여해 경성에는 자사크라마를 성경・시레투 쿠레[西勒圖庫倫][33]・호흐호트에는 수령라마를 두어 경사를 정점으로 한 독자적인 티베트 불교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자사크라마와 수령라마로 임명된 인물들은 티베트・암도・호흐호트 등지 출신의 학식이 높은 고승들로 달라이 라마의 초청과 방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34] 자사크라마와 수령라마는 각 거점 지역에서 라마와 속민, 사원에 대한 관리를 담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는 이번원이 총괄했다. 이와 같이 티베트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칼카와도 비교적 안정적인 조공관계가 이어지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번원의 업무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순치 말년, 강희 초기에 이번원 관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 3. 순치 말년 이번원 지위의 변화

순치16년(1659) 이번원 상서를 禮部尙書銜掌理藩院事로, 이번원 좌・우시랑을 禮部侍郎銜協理理藩院事로 개칭하고 이번원을 예부에 예속시켰다.[35] 그러나 2년 후인 순치18년(1661) 순치제가 사망하고 강희제가 즉위한 후 이번원을 예부에 예속시킨 것이 舊制와 맞지 않다고 하여 兼銜을 중지하고 다시 독립시켰다.[36] 이번원을 다시 독립시키면서 錄

32) 康熙朝『大淸會典』권144, 理藩院3, 柔遠淸吏司, 喇嘛條.

33) 만문으로는 siretu kuren이라고 한다. '쿠레'란 가축과 속민을 동반한 이동식 사원을 의미하는데 이 이동식 사원이 고착되어 지역화하기도 했다. 한자로는 庫倫, 몽문으로는 küriy-e, 만문으로는 kuren으로 표기한다. 시레투 쿠레는 홍타이지가 아샨 만주시리 호톡토 라마에게 1632년 성경 변외의 法庫 지역에 영지를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내몽고자치구 通遼市 庫倫旗 지역이다. 이후에 남부 몽고 지역의 티베트 불교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 아샨 만주시리 호톡토와 시레투 쿠레에 대해서는 池尻陽子, 앞의 책, pp. 44-50 참조.

34) 池尻陽子, 앞의 책, pp.65-70.

35)『淸世祖實錄』권125, 順治16年 閏3月 辛酉朔. "更定在京各衙門滿漢官銜品級・・・・・・六部滿漢尙書,侍郎,郎中,員外郎,主事,司務等官,稱謂品級俱仍舊. 兵部督捕侍郎,稱謂品級仍舊. 左右理事官俱改爲太僕寺少卿, 仍協理兵部督捕堂上事務, 正四品. 理藩院尙書, 稱禮部尙書, 掌理藩院事, 正二品. 左右侍郎, 稱禮部左右侍郎, 協理理藩院事, 正三品. 副理事官, 從五品. 院判仍正六品. 知事,副使, 稱謂品級如舊."

36)『淸聖祖實錄』卷2 順治18年 3月 戊寅條. "諭吏部,禮部, 太宗皇帝時, 蒙古各部落盡來歸附, 設立理藩院專管外藩事務, 責任重大. 今作禮部所屬, 于舊制未合. 嗣後, 不必兼禮部銜, 仍稱理藩院尙書,侍郎, 其印文亦著改正鑄給."

勳清吏司(hafan sindaha bolgobure fiyenten, 관원을 임명하는 清吏司)·賓客清吏司(antaha be tuwašatara bolgobure fiyenten, 빈객을 돌보는 清吏司)·柔遠清吏司(goroki be bilure bolgobure fiyenten, 먼 곳을 慰撫하는 清吏司)·理刑清吏司(weile beidere bolgobure fiyenten, 죄를 審理하는 清吏司) 4개의 清吏司를 설치해 六部에 준하는 체제를 만들고 낭중과 원외랑을 증원했다. 아울러 육부상서의 예에 따라 이번원도 의정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工部의 다음 반열에 들게 했다.[37]

이번원 지위의 변화는 순치 연간 정치적 상황과 순치제의 친정 후 추진된 정치개혁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도르곤의 섭정 시기에 청은 북경에 입성하긴 했지만 復明 세력과 이자성·장헌충의 잔존세력, 동남 연해 일대의 정성공 세력 등을 진압해야하는 상황에 있었다. 장성 부근의 몽고 부족들도 청이 중원에서 고전하는 틈을 노려 변경을 침범하는 등 불안정한 요소를 제공했고 청에 항복한 명의 장수들도 혼란을 틈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38] 그리고 홍타이지 사후 황위계승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된 분열 양상은 도르곤의 섭정 시기에 당파 간 분쟁으로 이어져 입관 후 청 조정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했다.

반청 세력을 진압하는 문제는 순치7년(1650) 12월 도르곤이 죽기 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조정 내부의 당파 분쟁은 도르곤의 사후에 심화되었다. 순치제는 친정을 시작하면서 한인관료를 기용해 정치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고자 했다.[39] 순치제가 친정을 한 지 2년째 되는 해인 순치9년(1652)에 諸王 버일러·버이서의 部院

37) 『清聖祖實錄』 卷3, 順治18年 秋7月, 乙卯條. "設立理藩院四司名目, 爲錄勳清吏司,賓客清吏司,柔遠清吏司,理刑清吏司, 給印信."; 卷4, 8月 戊申條. "諭吏部,理藩院, 職司外藩王,貝勒,公主等事務及禮儀刑名各項, 責任重大, 非明朝可比. 凡官制體統, 應與六部相同. 理藩院尙書, 照六部尙書入議政之列. 該衙門向無郎中, 今著照六部, 設郎中官. 爾部議奏. 尋議復, 理藩院見設錄勳,賓客,柔遠,理刑四司, 今應增設各司郎中共十一員,員外郎共二十一員. 得旨, 依議. 理藩院尙書銜名, 著列于工部之後."

38) 칼카의 타이지인 얼추후르가 사냥을 핑계로 청과의 변계지역 즉 장성까지 접근했다. 도르곤은 왕·대신들을 모아 의논하고 아지거·볼로·쇼사이 등을 파견해 大同을 수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지거 등이 대동에 도착했을 때 大同 總督 등 관리들이 성을 나온 사이 大同總兵官 姜瓖이 문을 닫아걸고 반란을 선언했다. 강양은 청에 투항한 명의 장수로 宣化와 대동총병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강양의 반란에 호응해 대동 부근의 11개 성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지거 등이 이끄는 청군은 대동성을 포위공격하면서 변경의 몽고를 경계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清世祖實錄』 順治5년 11월 癸未條. "攝政王獵至蹇家莊, 會報喀爾喀部落二楚虎爾行獵, 向我邊界. 于是集諸王大臣議, 遣和碩英親王阿濟格,多羅端重郡王博洛,多羅承澤郡王碩塞,固山貝子拜尹圖,公傅勒赫,岳樂,護軍統領鰲拜巴圖魯等統兵戍守大同"; 『清世祖實錄』順治5年 12月 戊戌條. "和碩英親王阿濟格等奏。十二月初三日, 大同總督,司道,餉司,知府各官, 出城驗草。大同總兵官姜瓖閉門叛。其收驗糧草之鍾古等,俱被陷。總督奔入陽和臣隨統兵星夜前往。於初四日圍其城請發紅衣炮, 以爲攻城之用."; 12月 丙午條. "和碩英親王阿濟格奏報, 我軍已圍大同, 而蒙古之警適至。若遂徹軍親往則攻圍大同無兵, 且恐蒙古遁回,追逐又復不及. 必待至我邊界, 方可追勦。臣等與諸王大臣會議. 欲分兵一半馳赴隨又二次遣人偵探實信. 因叛者不止大同其附近十一城皆叛故必待實信,方敢啓行也."

39) 순치 시기 정치적 상황과 개혁에 관한 내용은 Jerry Dennerline, "The Shun-Chih Reig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Part 1 The Ch'ing Dynasty to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73-119 참조.

업무 관리를 중지시켜 황실 버일러들의 정무 전담을 견제하는 등 議政王大臣會議의 권력을 약화시키고자했다.[40] 순치15년(1658)에는 內三院秘書・弘文・國史 大學士를 殿閣大學士로 개칭하여 내삼원을 내각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각대학사가 육부 상서를 겸하게 하여 내각과 육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림원을 별도로 설치해 기존에 내삼원이 맡았던 문사를 담당하게 했다.[41] 이로써 내삼원 즉 내각은 주요 정무를 처리하는 중앙기구의 중추로 자리 잡았다. 내삼원을 내각으로 개칭하고 내각대학사가 육부 상서를 겸하도록 관제를 바꾼 다음 해에 이번원을 예부에 예속시킨 것은 육부를 관할하게 된 내각의 권한과 업무를 집중・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내각과 육부, 도찰원을 강화하고 한인 관료를 기용한 순치제의 정책은 이전 명대의 정치체제를 모방한 측면이 다분했다.

어린 강희제가 즉위한 후 청 조정을 장악한 숙사하[Suksaha, 蘇克薩哈], 어빌룬[Ebilun, 遏必隆], 소니[Soni, 索尼], 오보이[Oboi, 鰲拜]로 구성된 輔政大臣들은 순치제가 추진했던 일련의 정책을 부정했다. 순치제가 설립한 十三衙門을 폐지하고 내무부를 부활시켰으며 내각을 다시 내삼원으로 바꾸고 한림원을 내삼원으로 병합시켰다. 또 도찰원을 약화시키고 의정왕대신회의의 권한을 강화했다. 십삼아문은 순치제가 친정 이후에 황궁 내의 업무가 번다하다는 이유로 명조의 환관들을 기용해 설립한 기구이다.[42] 입관 전 청은 환관을 두지 않고 황제에게 직속된 上三旗의 보오이 니루[booi niru, 包衣牛彔, 包衣佐領]로 구성된 조직 즉 내무부의 前身인 內府가 궁내의 잡무를 담당했다.[43] 청 조정은 명대 환관의 전횡으로 인한 폐해를 교훈 삼아 북경에 입성한 후에도 환관의 정치 간섭을 극도로 제한했다. 명조에 복무한 太監을 황궁에 남겨두긴 했지만 도르곤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르곤이 사망하자 순치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

---

40) 『淸世祖實錄』 卷63, 順治9年 3月 丙戌條.

41) 『淸世祖實錄』 卷119, 順治15年 7月 戊午條; 王亞英, 「論淸初順治帝的改革」, 『北京林業大學學報』, 1988年 增刊, p.1.

42) 순치10년 6월 상유를 내려 설립을 명했을 당시에 乾淸宮執事官・司禮監・御用監・內官監・司設監・尙膳監・尙衣監・尙寶監・御馬監・惜薪司・鐘鼓司・直殿局・兵仗局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순치17년(1660)에 司吏院・宣徽院・禮儀院・尙方院・御用監・御馬監・尙衣監・尙膳監・尙寶司・惜薪司・司設局・兵仗局・文書館으로 정리되었다. 순치11년부터 17년까지 존속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관제는 여러 번 바뀌었다.

43) 內務府는 만주어로 dorgi baita be uheri kadalara yamun 즉, '안의 일을 모두 관리하는 아문'이라고 한다. 이 명칭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강희18년(1679)이었다. 그 이전에는 주로 '內府'라고 불렸다. 이 기구는 홍타이지가 장악한 鑲黃旗・正黃旗・正白旗 즉 上三旗의 하부 계층민인 보오이들로 구성된 보오이 니루가 궁정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되었다. 순치제가 명조의 二十四衙門을 모방해 十三衙門을 설립하고 환관을 기용해 궁중의 일을 관리하게 하면서 보오이 니루의 보오이들은 십삼아문의 각 부서로 흡수되었다. 순치제 사망 후 십삼아문이 폐기되고 보오이들이 다시 궁중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고 일부 환관들은 내무부의 敬事房에 배치되어 내무부의 감독을 받았다. 내무부의 명칭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강희 18년이었지만 그 출범 시기는 순치제가 사망하고 강희제가 등극한 1661년으로 볼 수 있다.

관을 중용하여 十三衙門을 설립했다.

순치제는 십삼아문의 설립을 명하며 내린 諭에서 환관을 임용하는 것은 경계해야하는 일이지만 內府의 일은 어쩔 수 없이 환관들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십삼아문의 寺人은 4品을 넘지 못하고 差遣이 아니면 황성을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직분 이외에 어떤 일에도 간섭할 수 없으며 外人을 불러들이거나 外官과 결친할 수 없으며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했다. 官府를 좌지우지하거나 민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환관의 횡포를 방지하는 규정들을 제시했다. 또 십삼아문에 滿洲近臣과 寺人을 겸용함을 강조했다.[44] 이와 같이 순치제가 십삼아문 설립의 당위성과 만주족 관원의 겸용을 강조하고 환관 기용의 폐단 방지책을 제시한 것은 당시 십삼아문의 설립을 두고 조정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십삼아문의 설립은 만주족 관료뿐 아니라 한인관료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순치제가 황권 강화를 위해 환관을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십삼아문의 설립과 폐지 과정은 황권과 신권의 대립 구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입관 전 만주족이 국가를 형성한 이후에도 환관제도는 없었고 내무부의 기원이 만주족 특유의 팔기제 체제에서 上三旗 旗主인 황제와 보오이의 사적 예속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내무부와 십삼아문의 설립과 폐지 과정은 만·한 간 정치문화 대립의 산물로 봐야 한다.[45]

이번원을 예부에 예속시킨 조치도 이번원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육부와 내각을 강화시키고자 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번원이 예부에 예속된 이후에도 이번원이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예부는 이번원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원이 예부에 예속된 전후 시기에 업무를 총괄한 인물은 이번원 좌시랑이었다. 이번원이 예부에 예속되기 전 이번원 상서와 시랑을 맡은 인물은 밍안다리[minggandari, 明安達禮]와 시다리[sidari, 席達禮]였다. 밍안다리는 코르친부 출신 정백기몽고 소속이었으며 예부와 병부의 시랑과 상서를 역임했다. 그는 숭덕 연간 對明 전투와 입관 후 이자성 군대를 추격하는 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수니트부 텡기스를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양황기몽고 도통에 임명되었고 순치7년(1650) 병부상서에 임명되었다.[46] 『清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의 제본 작성자 명단에 의하면 밍안다리는 순치10년(1653)에서 11년(1654)까지 이번원 상서를 대리했다. 그리고 순치제는 밍안다리의 戰功과 육부와 이번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높이 평가해 순치13년(1656)에 정식으로 그를 이번원 상서로

44) 『清世祖實錄』 卷76 順治10年 6月 癸亥條. 李鴻彬, 「簡論清初十三衙門」, 『史學集刊』, 1990年 第2期; 祁美琴, 「清初內務府及其與十三衙門的關係」, 『清史研究』, 1997年 1期 참조.

45) 청대 보오이 조직과 내무부에 대한 연구로는 祁美琴, 『清代內務府』, 遼寧民族出版社, 2009 참조.

46) 밍안다리에 대해서는 『清史列傳』 卷5, 「大臣畫一傳檔正編二」, '明安達禮'; Arthur W. Hummel,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p.576 참조.

임명했다.[47] 그의 아래에서 시랑직을 맡은 인물은 國舅 아시다르한의 아들 시다리[sidari, 席達禮]이다. 그는 이미 순치4년(1647)에 이번원 시랑에 임명된 후 순치16년까지 이번원 좌시랑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순치13년(1656) 5월 이번원좌시랑 시다리의 임기가 다되어 羊酒를 하사하고 아들 한 명을 음서로 국자감에서 독서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48] 그는 임기가 다한 순치13년 이후로도 이번원 좌시랑으로서 밍안다리와 함께 내몽고, 라마 관련 업무와 칼카의 조공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이다.

『淸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에 의하면 시다리는 순치10년(1653)부터 순치16년(1659) 5월까지 이번원좌시랑의 직함으로, 순치16년 7월부터는 兼管理藩院事務禮部左侍郎의 직함으로 상주했다. 이는 순치16년(1659) 윤3월에 이번원이 예부에 예속되어 이번원 상서와 시랑의 관함이 겸관이번원사무예부상서와 시랑으로 변동된 상황을 반영한다. 그런데 순치13년에 이번원 상서가 된 밍안다리는 순치15년(1658) 2월 安南將軍에 임명되어 鄭成功 토벌을 위해 貴州와 荊州에 부임했다. 그리고 북경에 돌아온 순치17년(1660)에 병부상서에 임명되었다. 밍안다리가 공식적으로 이번원 상서직을 맡은 임기는 순치13년부터 18년까지이므로 그는 이번원 상서직을 유지한 채 귀주에 부임했다가 병부상서로 임명된 것이다. 즉 이번원이 예부로 예속되기 전후 순치15년 중반부터 순치17년 시기에 밍안다리는 이번원 상서로서의 직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淸朝前期理藩院滿蒙文題本』에서도 순치15년 8월 이후 이번원의 상주는 모두 이번원좌시랑 시다리의 명의로 올려졌다.『淸世祖實錄』의 기록에서도 외번 왕공의 봉호와 승습, 관원의 선발, 법령 등과 관련된 몽고 관련 주요 업무를 모두 이번원좌시랑 시다리가 주관하고 있다.[49]

이와 같이 이번원이 정식으로 예부에 예속되기 한 해 전부터 이번원 상서는 공석으로 남겨두고 실질적인 업무는 시랑인 시다리가 처리했다. 한편 이번원이 예부에 예속되긴 했지만 몽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이번원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고 직함만 바뀌었을 뿐 계속해서 시다리가 이번원의 실질적 최고 관원으로서 이번원 업무를 관할했다. 관제상 예부 상서가 이번원을 관할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시다리를 비롯한 이번원의 고위 관원들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이번원에서 몽고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업무의 성격이 다른 예부에서 이들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번원의 예부로의 예속이 이번원의 역할과 중요도가 저하에 의한 결과라거나 이번원의 역할을 저하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치제는 도르곤 사후 친정을 시작하면서 조정 내 당파 분쟁을 종식

47)『淸世祖實錄』 卷101, 順治13年 5月 己亥條. “又諭固山額眞明安達禮在部日久, 練達政務, 著則補授理藩院尙書.”

48)『淸世祖實錄』 卷101, 順治13年 5月 壬午條. “理藩院左侍郎席達禮考滿, 賜羊酒, 蔭一子入監讀書.”

49)『淸世祖實錄』 卷132, 順治17年 2月 乙巳條; 卷133, 順治17年 3月 丙辰朔; 丙寅條.

시키고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명의 제도를 모방한 일련의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청조의 만몽 연합 정권적 성격을 상징하는 이번원을 예부에 예속시킨 것도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청조에게 몽고와의 관계는 정치적 안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고 칼카와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는 없었다. 순치제가 사망한 직후 이번원이 다시 예부에서 독립해 육부와 동등한 지위를 회복한 배경에는 만주족 중심 체제로의 회귀라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이러한 이번원의 실질적 역할과 지위의 일단을 이번원 시랑에서 겸관이번원사무예부시랑이 된 시다리의 역할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50] 이와 같이 예부에 예속됐던 이번원을 다시 독립시키고 예부와 동급의 기구로서 의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순치제의 유교적 정책을 폐기하고 만주족 관료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였다.[51] 보정대신들이 도찰원, 내삼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번원을 예부에서 독립시킨 것은 만주족 관료들이 이번원을 만주족 고유의 기구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원의 체계를 육부와 동일하게 하도록 명할 때 "이번원의 직무는 외번왕・버일러・공주 등과 관계된 사무와 禮儀・刑名 등을 담당하여 책임이 막중함이 明朝와 비할 수 없다"고 한 언급은 청대 이번원의 직무와 책임이 명대의 예부가 담당했던 역할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52] 홍타이지가 내삼원과 이번원 아문을 맞바꾸려 하자 내삼원과 도찰원의 한인관료들이 반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주족 관료들도 이번원을 명대 제도를 연용 해 설립한 기구들과는 다른 만주족 고유의 기구로 인식했으며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원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 결론

강희8년(1669) 강희제가 오보이를 숙청하고 실질적으로 친정을 시작한 이후에 내삼원을 다시 내각으로 바꾸고 한림원을 다시 설치하는 등 보정대신들의 섭정 기간에 폐기했

50) 무라카미 노부아키는 순치제가 이번원 상서를 실질상 공석으로 해 예부상서가 이번원을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村上信明, 「清朝前期における理藩院の人員構成」, 『滿族史研究』 4號, 2005. p.146. 그러나 그도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예부상서가 이번원 사무를 관할하지 않았고 순치 초기부터 이번원 시랑으로서 계속해서 이번원 업무를 담당한 시다리가 이번원 업무를 주관했으므로 예부상서의 이번원에 대한 관여는 제한적이었다고 봐야 한다.

51) Jonathan D. Spence, "The K'ang-hsi Reig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Part 1 The Ch'ing Dynasty to 1800*), p.126.

52) 『淸聖祖實錄』 卷4, 8月 戊申條. "諭吏部,理藩院, 職司外藩王,貝勒,公主等事務及禮儀刑名各項, 責任重大, 非明朝可比. 凡官制體統, 應與六部相同. 理藩院尙書, 照六部尙書入議政之列. 該衙門向無郎中, 今著照六部, 設郎中官. 爾部議奏. 尋議復, 理藩院見設錄勳,賓客,柔遠,理刑四司, 今應增設各司郎中共十一員,員外郎共二十一員. 得旨, 依議. 理藩院尙書銜名, 著列于工部之後."

던 순치제의 정책을 부활시켜 만·한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을 일신하는 개혁이 추진되었다.[53] 그러나 육부와 동등해진 이번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고 外칼카·오이라트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진행됨에 따라 역할과 체계가 확대되었다. 강희 30년(1691)을 전후로 준가르의 침공을 받은 칼카가 청에 복속하게 되면서 강희 초기 錄勳·賓客·柔遠·理刑淸吏司로 구성되었던 이번원의 조직체계는 강희38년(1699)에 錄勳·賓客·柔遠淸吏前司·柔遠淸吏後司·理刑司로 개편되었다. 즉 칼카 업무를 담당한 유원사가 분리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순치 연간에 설치한 漢副使·漢院判·漢知事 등 한인을 임용하는 漢缺을 모두 없애어 이번원의 堂官부터 하급직인 主事·筆帖式에 이르는 모든 관원이 만주족과 몽고족으로 채워졌다.[54] 이후 이번원 산하 漢檔房에 漢軍 주사1명과 한군 필첩식 6명을 두긴 했지만 이들은 팔기한군이었으므로 협의의 의미로 한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인을 임용하는 漢缺과 다르다.[55] 이들을 제외하고는 청 말까지 이번원 상서·시랑 등 고위직은 물론이고 하위직에도 한인이 임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조치가 몽고와 관계된 사무에 한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취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청대 部院의 관원 임용에서 만·몽·한 중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일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원의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청대 중앙기구의 하나인 理藩院은 이름 그대로 청의 外藩(tulergi golo)을 다스리는 중추 기관으로 기능했다. 몽고아문은 홍타이지 시기에 몽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립되었고 이번원으로 개칭된 이래 청 외번의 확대 과정에 따라 그 조직체계와 역할도 변화했다. 누르하치가 주변 여진 부족을 병합해 후금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내몽고 세력과 상호 충돌과 연맹을 반복했으며 홍타이지가 明에 대해 우세를 점하게 되기까지 몽고 세력은 만주 정권의 흥망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변수였다. 홍타이지가 몽고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전문 부서를 설립한 것도 만주 정권이 몽고와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것은 청의 지배계층이 만주인이라는 정권의 특징과도 유관한데 몽고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방식에서 명과 청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청 초기 조정 내부에서 일어난 이번원 위상에 대한 만주 대신과 한인 대신 사이의 의견 대립은 이번원이 만주 정권의 특징을 담고 있는 기구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이번원 조직체계와 역할의 변화는 정권 초기에는 조정의 내부 정세와 관련이 깊었지만 강희 이후에는 외번의 확장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다. 입관 후 순치제에 의

---

53) 『淸聖祖實錄』 卷33, 康熙9年 8月 乙未條. "命改內三院爲內閣, 其大學士學士官銜, 及設立翰林院衙門等官, 見著察順治十五年例議奏."

54) 『淸聖祖實錄』 卷194, 康熙38年 秋7月, 乙酉條. "裁宗人府滿員外郎二員,漢經歷一員, 內閣滿侍讀三員, …理藩院漢院判一員, 漢知事一員, 漢副使一員, 滿司務一員, 蒙古司務一員, …"

55) 呂士朋, 「淸代的理藩院-兼論淸代對蒙藏回諸族的統治-」 『東海大學歷史學報』, 第1期, 1977年 4月, p.64.

해 이번원이 예부 산하로 격하되었다가 강희제 등극 후 육부와 동등한 지위로 복귀하게 된 배경에는 입관 초기 섭정왕 및 만·한대신의 갈등 그리고 황권강화를 둘러싼 길항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만주족 정권의 특징과 관련이 있고 만주족의 기구로 인식된 이번원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입관 초기 이번원의 조직체계 변화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강희 중엽 이후 정권이 안정되면서 이번원의 조직체계와 역할은 그 직무와 부합하게 외번의 확장과 궤를 같이하게 되었다. 이번원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청 초기와 이후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조정 내부의 만·한 갈등이나 외번의 확대는 모두 청조의 특징을 담고 있다. 후금 시기 몽고와의 관계가 정권의 안녕과 직결되었고 입관 후에는 내륙아시아 지역의 각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재설정됨에 따라 청조의 외번과 이번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淸代의 人口移動과 天主敎徒

## — 四川 天主敎徒의 移住民 性格을 중심으로 —

李 俊 甲(仁荷大)

목 차

머리말
Ⅰ. 湖廣 출신 天主敎徒의 移住와 定着
Ⅱ. 江西 출신 天主敎徒의 移住와 定着
Ⅲ. 土着人 天主敎徒의 活動
Ⅳ. 地域社會 속의 天主敎徒
맺음말

## 머리말

본고는 종교를 종교 내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시켜 종교 현상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려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대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천주교도들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왕의 청대 천주교사 관련 연구성과들은 천주교라는 종교 내적인 논리 혹은 탄압과 저항이라는 정치사적 시각, 혹은 동서문화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주로 연구해왔다.[1] 물론 이런 연구들이 많은 학문적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천주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는 그것이 뿌리 내린 지역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성장

1) 청대의 천주교사 연구성과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다만 청대의 수많은 천주교 관련 연구성과들을 몇몇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는 있다. 그 유형은 (1) 동서문화 교류사의 관점을 취한 것 (2) 서양의 선교사나 중국인 신부 혹은 천주교도들의 활동을 주목한 것 (3) 청조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정책을 분석한 것 (4) 천주교의 사상적, 학술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 (5) 청조 지식인과 관료, 혹은 일반 서민들의 천주교의 수용 혹은 배척에 관한 연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49년 이래 2007년까지 중국에서 간행된 천주교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한 색인(金以楓, 『1949年以來基督宗敎硏究索引』,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에는 1만 여건 이상의 논저나 신문기고 등의 관련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개신교관련 연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서방의 기독교에 대한 연구 성과도 포함하는 등 중국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통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통시대적인 천주교(기독교) 연구 성과들이 모두 담겨 있다.

하거나 혹은 쇠퇴하였다. 그러한 성장과 쇠퇴를 이끄는 요소에는 종교적 정치적 혹은 문화적 요인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근래 침체나 답보 상태에 빠진듯한 청대 천주교사 연구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사회의 관점과 사회경제사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사천은 청대 사회경제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명말청초의 동란을 거치면서 전국에서 가장 처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사천에 대량의 주인없이 버려진 토지가 나타난 것이다. 전란의 참혹함을 증언하는 이 버려진 토지들은 역설적으로 동란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물적 자원으로 등장했다. 그 기회의 땅으로 각 지역 이주민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의 활동은 사천의 행정과 경제 사회와 문화 등 각 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지역성을 형성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주민 가운데는 천주교도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주민 천주교도들의 존재와 활동. 이것이야 말로 청대 천주교사, 나아가 중국 천주교사에서 사천의 천주교와 천주교도가 차지하는 독특함이다. 明淸時代에 천주교가 확산되는 일반적인 형태는 농촌이나 도시에 서양인 선교사나 중국인 천주교도가 포교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주교도는 주로 토착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사천에서는 대규모로 외지의 인구가 유입하여 天主敎徒들의 대부분은 청대에 유입한 移住民으로 구성되었다.

청대 사천의 천주교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독특한 측면은 청대 천주교를 종교사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사적 관점과 접목하여 천주교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이에 필자는 청대 사천으로 이주한 호광, 강서 지역의 천주교도의 정착과 활동 상황은 물론 토착인 천주교도들의 성장과 활동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초 이래 청중기까지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지방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려한다. 천주교 전파와 확산을 인구이동 현상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건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고, 천주교도들의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목하는 본 연구가 청대 천주교사 연구나 중국 천주교사 연구의 시각과 지평을 확장하는데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Ⅰ. 湖廣 출신 天主敎徒의 移住와 定着

청대 사천으로의 인구유입 물결을 기록한 지방지와 실록 따위에는 호광인, 섬서인, 광동인, 복건인, 귀주인 등 각 省 주민들의 이주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 그 주민들의 성분을 세분하여 천주교도들의 이주 사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천주교도들

의 사천 이주에 대해서는 천주교 측에서 기록한 문건에 의존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천주교 측에서 기록한 청대 천주교도들의 사천 이주 관련 문건으로『聖教入川記』[2]가 있다. 여기에는 四川 敍州府・潼川府 安岳縣・重慶府・綏定府・夔州府 등 주로 川東일대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도의 이주 실태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 의존해서는 사천 전체의 이주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자료는 청대 천주교도들의 사천 이주 정황을 국지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聖教入川記』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청대 천주교도 가문의 사천 유입 정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清代 天主教徒 家門의 四川 移住 情況

| 原籍 및 其他 / 移住地 | 原籍地 | | | | | | | | | | 移住時期 | | | | 奉教時期 | | | |
|---|---|---|---|---|---|---|---|---|---|---|---|---|---|---|---|---|---|---|
| | 湖廣 | 江西 | 福建 | 廣東 | 四川 | 貴州 | 浙江 | 北京 | 不明 | 小計 | 康熙 | 乾隆 | 土着 | 不明 | 移住前 | 移住後 | 土着 | 不明 |
| 安岳縣 | 1 | | | | | 1 | | | 1 | 3 | 2 | | | 1 | | | | 3 |
| 筠州 | | | | | | | | | 1 | 1 | | | | 1 | | | | 1 |
| 敍州府 | | 1 | | | | | | | 1 | 2 | 1 | | | 1 | 1 | | | 1 |
| 重慶府 | 2 | 2 | | | 1 | | | | 2 | 7 | 1 | 1 | 1 | 4 | 2 | 1 | 1 | 3 |
| 巴縣 | | | | | | | | | 5 | 5 | | 2 | | 3 | 2 | | | 3 |
| 江津縣 | | | | 1 | | | | | 2 | 3 | 1 | | | 2 | 1 | | | 2 |
| 永川縣 | | | | | | | | 1 | 5 | 6 | 1 | | | 5 | 1 | | | 5 |
| 榮昌縣 | | | | | | | | | 2 | 2 | | | | 2 | | | | 2 |
| 大足縣 | | | | | | | | | 2 | 2 | | | | 2 | | | | 2 |
| 璧山縣 | | | | | | | | | 1 | 1 | | | | 1 | | | | 1 |
| 銅梁縣 | | | 1 | | 2 | | | | 2 | 5 | 1 | | 2 | 2 | 1 | | 2 | 2 |
| 合州 | 2 | | | | | | | | | 2 | 1 | | | 1 | 1 | 1 | | |
| 涪州 | | | | | | | | | 1 | 1 | | | | 1 | | | | 1 |
| 渠縣 | | | | | | | | | 6 | 6 | | | | 6 | | | | 6 |
| 綏定府 | | | 1 | | | | | | 2 | 3 | | | | 3 | | | | 3 |
| 巫山縣 | | | | | | | | | 2 | 2 | | | | 2 | | | | 2 |
| 萬縣 | | | | | | | | | 1 | 1 | | | | 1 | | | | 1 |
| 梁山縣 | 2 | | | | | | | | | 2 | | 1 | | 1 | 1 | | | 1 |
| 彭水縣 | | | | | 1 | | | | 1 | 2 | | | 1 | 1 | | | 1 | 1 |
| 長壽縣 | 1 | | | | 1 | | 1 | | | 3 | | | 1 | 2 | 1 | | 1 | 1 |
| 綦江縣 | | | | | | | | | 1 | 1 | | | | 1 | | | | 1 |
| 合計 | 8 | 3 | 2 | 1 | 5 | 1 | 1 | 1 | 38 | 60 | 8 | 4 | 5 | 43 | 11 | 2 | 5 | 42 |

[2] 1866년에 파리외방선교회에서 파견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중경 일대에서 포교활동에 종사한 Gourdon(古洛東: 1840?~1930)이 기록하였다. Gourdon은 中文으로 본서를 기록하고 1918년 무렵에 천동교구의 주교 Chowvellon의 승인을 얻어서 聖家書局에서 출간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어 1990년대 무렵에 간행된 사천 각지의 신판 지방지 천주교 항목에서는 본서의 내용을 대거 인용하였다. 본고에서는 1981년에 간행된 四川人民出版社本『聖教入川記』를 참조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청대 사천 천주교도 가문들의 원적지 분포는 호광 8, 사천 5, 강서 4, 복건 2, 광동 1, 귀주 1, 절강 1, 북경 1, 不明 38 건이다. 표본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호광의 천주교도 이주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청대에 사천으로 유입한 이주민 가운데 호광인이 가장 많았던 정황과 일치한다. 또 강서 출신의 천주교도가 복건이나 광동 출신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도 청대 강서인의 사천 이주가 복건인, 광동인에 비해 많았던 정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착인 천주교도가 적지 않게 확인되는 점 역시 청대 사천에 토착인들이 드물지 않았던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섬서 출신의 천주교도가 전혀 포착되지 않는 점은 <표 1>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청대 섬서인들은 사천과 인접한 지리적 요인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요인도 작용하여 사천 북부 지방과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표 1>은 주로 사천 동부 지방의 이주 정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섬서 출신 천주교도들의 유입 정황은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표 1>에 근거하여 표본의 수가 많은 湖廣 출신 천주교도, 江西 출신 천주교도의 이주와 정착 사례를 그리고 土着人 천주교도들의 활동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청초 호광의 천주교 중심지는 省都인 武昌이었다. 이곳에서 천주교가 활발하게 전파되었던 까닭은 현지의 재정 지원・청조 관원의 보호・선교사의 포교 노력이 삼위일체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명말의 고위관료이자 천주교도였던 徐光啓의 孫女 許太婦人(세례명 甘第大)이 1661년 武昌에 教堂을 건설하고 선교사의 처소도 마련해 주었다. 그녀의 아들이자 호광의 고위 관료였던 許纘曾은 스스로도 선교사를 보호했지만 호광의 관원들에게도 선교사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부탁했다. 이들 母子와 협력한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자께 모뗄(穆迪我. Jacques Motel)이 포교활동에 전념하자 1665년 무렵에 武昌에는 2,200여명의 천주교도가 탄생하였고 省의 최고 武官인 馮某(Fong Tsang-ping)조차도 入教하였다.[3] 모뗄은 1692년 사망할 때까지 호북성 일대에서 포교활동에 종사하였고 예수회 선교사들도 지속적으로 黃州府, 德安府, 荊州府, 沙市 등지에서 활동하여 천주교도들의 수를 늘렸다.[4]

黃州府는 청대에 호광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명대 이래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고 사회 모순이 심화되면서 호광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을 사천으로 배출한 지역이었다. 그 밖의 호광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紳士와 勢豪들이 토지를 겸병하고 세역부담을 회피하였다. 이에 가난한 농민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稅役을 더욱 많이 부담하는 불공평이 심화되자 견디지 못하고 사천으로 이주하는 자들이 늘어났고[5] 천주교도들 역시 이주 물결 속

3) 費賴之 著, 馮承鈞 譯,『在華耶蘇會士列傳及書目』上, 中華書局, 1995, p.307.
4) 康志杰,「湖北天主教開教述略-兼評明清在湖北活動的耶蘇會士」,『江漢論壇』, 1999-2, pp.46-47.
5) 이준갑,『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 개발과 지역질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p.97-98.

에 포함되었다.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들은 다른 지역 출신 천주교도에 비해 사천에서 지역적으로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사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유입한 관계로 이주한 시기도 빨랐다. <표 1>에 따르면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들은 潼川府 安岳縣, 重慶府와 예하의 長壽縣, 合州, 忠州 梁山縣 등지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長江(揚子江), 嘉陵江, 涪江 등 사천의 水系이다. 호광에서 장강(양자강) 수로를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먼저 충주 양산현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계속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경부 장수현에 닿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장강과 가릉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중경부에 닿는다. 중경부에서 가릉강을 거슬러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부강·가릉강·거강이 합해지는 합주에 닿고 합주에서 부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동천부 안악현에 이른다. 장강과 嘉陵江, 涪江, 渠江 등을 포함하는 사천의 주요한 水系들은 중경을 중심으로 하여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로 연결되었으며 호광으로까지도 연결되었다.[6] 乾隆 43년(1778) 湖南 湘潭縣의 船號 龍國珍은 사천 宜賓에서 호북 宜昌에 걸쳐 있는 川江(장강 상류의 일부분)에서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다가 손님인 廣東出身의 천주교도 胡姓에게서『日課』,『要理』같은 천주교 서적을 건네받은 적이 있었다.[7] 이런 사례로 보아 광동인들 보다 훨씬 많이 사천으로 이동했던 호광인들은 빈번하게 장강 수로를 이용하였고 그 가운데 천주교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들 가운데는 사천에서 주인 없이 버려진 땅(무주황전)을 차지하여 정착한 자들이 많았다. 청조는 사천의 피폐함을 짧은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 강희 29년(1699)에 이주민들이 무주황전을 개간하면 소유권을 영구하게 보장하고[8] 세역을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천에서 자제들의 考試를 허락했다.[9] 또 그보다 일찍이 전국적으로 개간지의 과세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10] 따라서 무주황전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청대 사천으로 이주한 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사천으로 이주하게 된 강력한 동기였

---

6) 「嘉慶九年三河幇差務章程清單」,『清代乾嘉道巴縣檔案選編』(四川大學歷史系·四川省檔案館主編)上, 四川大學出版社, 1989, pp.402-403;「嘉慶九年八省局紳公議大河幇差務條規」,『清代乾嘉道巴縣檔案選編』上, pp.403-404.

7) 「湖廣總督特成額奏呈起獲私藏天主教經像清單」(乾隆49年9月18日),『清中前期西洋天主教在華活動檔案史料』(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이하『天主教在華活動檔案』으로 약칭) 第1冊, 中華書局, 2003, pp.418-419. 문건번호 194.

8) 光緒『清會典事例』(中華書局影印本, 1991) 第2冊 卷166, 戶部 15, 出賦, p.1110.

9) 光緒『清會典事例』 第2冊 卷158, 戶部 7, 戶口, p.999; (清)『聖祖實錄』(中華書局影印本, 1985)卷149, 15앞, 康熙 29년 11월 甲午條,

10) 康熙 15년부터 전국적으로 새로 개간한 水田은 6년, 旱田은 10년간 免稅하였다. 光緒『清會典事例』第2冊 卷166, 戶部 15, 出賦, p.1109.

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물적 토대였다. 강희 39년(1700) 이전에 호광에서 潼川府 安岳縣으로 이주한 천주교도 黃氏 가문은 流河浦 지방에서 無主荒田을 揷占(말뚝을 박아서 영역을 표시하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차지하던 행위)하고 정착하여 훗날에는 司鐸(천주교 신부)를 배출하였다.[11] 강희연간에 호광에서 이주해온 천주교도 盧家는 重慶府 合州 小白塔 지방에서 무주황전을 揷占하여 정착하였다. 盧家는 건륭연간의 천주교 탄압에도 背敎하지 않고 1900년대까지 7대에 걸쳐 천주교를 신봉하였다.[12] 호광에서 온 夏家들도 合州의 天星橋 일대에서 무주황전을 揷占하면서 정착하였다. 이들이 사천으로 온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무주황전을 차지한 사실로 미루어 강희연간 무렵인 것으로 추정된다. 夏家는 族員 가운데 한사람이 건륭연간에 甘肅으로 갔다가 그곳에 유배당한 천주교도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를 신봉하였다. 그가 귀향한 후에 집안이 合州의 大石橋 太平鋪로 재차 이주하였고 1760년 무렵부터 온 집안이 천주교를 신봉하였다.[13]

이처럼 호광출신의 천주교도 가운데 康熙年間에 이주한 세 집안은 농촌(安岳縣)이나 도시의 변두리(合州 小白塔・天星橋)에서 무주황전을 차지하고  농업을 경영하여 사천에 정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이 어느 정도의 무주황전을 차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호광 이주민들의 일반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康熙年間 夔州府 雲陽縣에서는 湖廣 이주민들이 方十里 方百里에 달하는 무주황전을 차지하였고,[14] 康熙 20년 무렵 成都府 漢州로 이주한 湖廣 武岡州 출신의 한 이주민은 500畝의 무주황전을 차지하였다.[15] 또 인구가 너무 적어서 重慶府 合州에 병합된 舊 定遠縣 일대에서는 康熙 28년 호광인을 비롯한 이주민들에게 畝 단위가 아니라 場, 壩, 里 단위로 무주황전을 분급하였다.[16] 이런 사례로 보아 호광에서 이주한 천주교도로서 무주황전을 揷占한 자들 역시 적어도 100畝 이상의 토지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 토지에 사천 토착인보다 앞섰다고 평가된 호광의 집약 농업기술 곧 노동력과 비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사천에서 자작농으로 혹은 지주로 성장하였다.

물론 호광에서 온 이주민들이 모두 무주황전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시기적으로 늦게 유입한 경우에는 차지할 땅이 없었다.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만 빠른 곳은 이미 강희 초에 무주황전이 없어져 버리기도 했다.[17] 또 무주황전을 차지하였지만 회귀한 토

---

11) 古洛東, 『聖敎入川記』, 四川人民出版社, 1981, p.67.
12) 古洛東, 『聖敎入川記』, p.80.
13) 古洛東, 『聖敎入川記』, p.80.
14) 涂鳳書, 「功亮公傳」, 『雲陽涂氏族譜』, 卷19, 4앞뒤.
15) 武來雨, 「黃公嘉會墓志銘」, 同治『續修漢州志』 卷22, 藝文中, 7뒤-8앞.
16) 民國『武勝縣新志』 卷9, 士女, 6뒤-7뒤.
17) 예컨대 成都府 灌縣에서는 順治年間까지는 無主荒田이 있었으나 강희 초에는 모두 없어졌다. 民國『灌縣志』 卷17, 古實紀, 14앞뒤.

착인들과의 분쟁이나 소송에서 패하거나,[18] 혹은 紳士들의 횡포에 눌려 마침내는 개간한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19] 무주황전을 차지하는 행운을 만나지 못한 이주민들은 남의 토지를 사거나 소작하거나 혹은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傭工과 같은 일용노동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無賴로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천에서 삶을 꾸려갔다.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 가운데에도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드물지 않았다. 이들은 사천의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인 重慶에 정착했다. 호광에서 중경으로 이주한 仝家는 城內에서 機房을 열고 綢緞을 織造하여 팔아 재산을 많이 모았고 자손들도 번성하였다.[20] 사천은 청대 비단의 주산지중 한 곳에 속하기는 했지만 織造 技術者가 흔하지 않았고 또 비단 織造術은 당시 최고급 기술에 속하였으므로 仝家가 어떻게 機房을 경영하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강희연간 호광에서 중경으로 이주한 천주교도 張姓의 경우엔 비단 직조에 종사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張姓의 아들이 비단 직조기술이 있는 羅姓 천주교도 집안의 딸과 혼인하여 그 기술을 습득하고 대대로 비단 직조에 종사하여 道光年間에는 巨富가 되었다.[21] 두 집안이 同鄕 출신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천주교도 집안의 자녀끼리 혼인한 사실은 분명하다. 두 집안은 공동의 信仰과 姻戚관계를 바탕으로 고급 기술인 비단 직조술을 전수, 습득함으로써 함께 정착하고 번성하였다. 이 사례는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가 청대 사천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천주교 신앙을 매개로 형성된 인간관계가 성공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이런 현상은 사천에서 同鄕關係나 血緣을 매개로 상부상조하였던 일반적인 이주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22] 천주교도 출신 이주민들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다.

정착에 성공한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들은 포교활동을 펼치는 중국인 신부나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의지할만한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희 말년의 전례 논쟁 이후 청조는 공식적으로 천주교 禁敎 정책을 취했으므로 이들이 몰래 포교 활동을 지속하려면 천주교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중경의 仝家는 이런 역할에 충실했다. 梅신부는 건륭연간에 仝家의 집에 머물며 중경일대의 천주교도들을 보살폈고 가경 연간에는 黃主敎(Trenchant)가 이 집에 머물며 敎務를 처리하다가 病死하였다.[23] 앞서 언급한 重慶府 合州의 盧家 역시 雍正年間에 成都府 金堂縣, 潼川府 安岳縣을 거점으로 포교하던 독일 출

18) 民國『新修合川縣志』 卷35, 鄕賢 1上, 25앞-26뒤; 民國『新修合川縣志』 卷62, 叢譚, 3뒤-4앞.
19) 秦先明, 「董子能傳」, 咸豊『隆昌縣志』 卷36, 藝文, 傳, 又31앞뒤.
20) 古洛東, 『聖敎入川記』, p.74.
21) 古洛東, 『聖敎入川記』, p.71.
22) 淸代 四川으로 유입한 移住民들이 同鄕關係나 血緣을 매개로 상부상조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山田賢, 『移住民の秩序-淸代四川地域社會史硏究』,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pp.100-126.
23) 古洛東, 『聖敎入川記』, p.74.

신의 遣使會 선교사 뮐레너 主教(穆天尺. Jean Müllener)가 合州 천주교도를 巡訪할 때면 항상 자신의 집을 처소로 제공하였다. 이들이 자신의 거처를 서양인 포교자의 은밀한 활동 거점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집안에 後苑이라든가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들은 다른 성 출신들에 비해 사천에서 농업으로 정착하고 성장한 사례가 많다. 이들은 무주황전을 차지할 기회가 많았으므로 지주로 성장할 기회도 많았다. 반면 그러지 못한 자들은 상업이나 수공업을 영위하여 정착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한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들은 사천에서 혼인과 같은 우연한 기회에 그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후술하는 바처럼 강서 출신의 천주교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익숙하게 보아오던 상업이나 수공업 분야에 투신한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호광의 경우는 주로 농민으로 구성된 농업 이민이 강서의 경우는 상인이 주축이 된 상업 이민이 주류를 이룬 까닭일 것이다.

## Ⅱ. 江西 출신 天主教徒의 移住와 定着

강서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말 천주교의 중심지는 省都인 南昌에서 이었다. 이곳에서는 명 萬曆23년(1595) 이래 3년에 걸쳐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利瑪竇. Matteo Ricci)가 거주하며 王族과 紳士들과 교제하며 천주교 포교의 기반을 닦았다. 리치가 북경으로 떠난 후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소에이로(蘇如望. Giovanni Soeiro)가 그의 뒤를 이어 포교하였다. 萬曆 35년(1607) 소에이로가 결핵으로 사망한 후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디아즈(李瑪諾. Emanuele Dias)가 선교 사업을 계승하여 극소수의 서민과 신사를 천주교도로 개종시켰으나 生員層이 중심이 된 紳士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南昌教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24]

청초에는 강서 각지로 천주교가 확산되었다. 이 확산과정에서 이채로운 인물은 청 황실의 外戚이자 實勢였던 佟國器였다. 그는 청군의 남방 정복에 참여하면서 각처에서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教堂을 重修하였다. 江西에서는 順治 12년(1655)에 南贛巡撫를 역임하면서 贛州, 吉安, 建昌 등지의 教堂을 重修하고 천주교 서적을 간행, 보급하여 청초 동란기에 江西省 천주교의 보호자이자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였다.[25] 천주교 선교사와 동국기

---

24) 吳金成,「最初의 反基督教 運動, 南昌教案」,『矛 · 盾의 共存 -明淸時代 江西社會 硏究』, 知識産業社, 2007, pp.149-180.

25) 佟國器는 천주교를 마음속으로는 신봉하였으나 황실의 외척(순치제 황후의 친척)이란 신분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그의 부인은 천주교도였다. 佟國器의 천주교 옹호 활동에 대해서는 方豪,『中國天主教史人物傳』, 宗教文化出版社, 2007, p.262를 참조.

의 활동으로 康熙 3년(1664) 江西省 각지의 천주교도는 南昌 1,000명, 建昌 500명, 吉安 200명, 贛州 2,200명, 汀州 800명에 달했다.[26] 이후에도 선교사들은 포교 활동을 지속하여 康熙 39년(1700)에는 南昌, 建昌, 贛州, 饒州, 撫州, 九江의 6大 敎區를 설치하고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지속하였다. 포교 활동이 결실을 맺어 康熙 40년(1701)말에 江西에 도착한 세 명의 이탈리아 선교사는 불과 6개월 만에 贛州일대에서 110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27] 江西에서도 다른 省과 같이 강희 말년의 전례논쟁 이후 옹정, 건륭 연간을 거치면서 청조의 천주교 탄압이 지속되었으므로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많았다. 반면에 청조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고수하여 流配당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천주교를 신봉하는 자들도 많았다.[28]

그런데 臨江, 吉安, 建昌, 撫州 등 4府는 높은 인구 압력이나 호광과 비슷한 사회 모순으로 인해 청대 강서에서 외지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이었으며[29] 南昌府와 더불어 천주교도들의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었다. 청대 강서에서 사천으로 이주한 천주교도 가운데는 호광출신의 천주교도처럼 無主荒田을 插占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이들은 藥鋪나 綢緞鋪를 경영하거나 煤炭廠이나 鹽戶를 개설하는 등 농업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여 주로 상인으로서 교역이 활발하고 시장이 번성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였다.

江西 출신의 천주교도 가운데 呂씨 가문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강희 말년에 敍州府로 이주하였다. 呂씨들의 고향은 江西省 臨江府였다. 臨江府에 소속된 淸江縣 樟樹鎭은 중국 10대 藥市 혹은 2大 藥市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졌다. 명말청초 樟樹鎭에는 200여家에 달하는 藥商이 활동하였고 居民 12,000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藥業에 종사하였다.[30] 臨江府 출신의 천주교도 呂씨가 사천의 유명한 藥材市場 중 한 곳인 敍州府[31]에서 藥鋪를 경영하면서 정착하였던 까닭은 藥市가 번성했던 고향에서 藥材와 藥材業 관련 지식과 경

---

26) 徐宗澤,『中國天主敎宣敎史槪論』, 上海世紀出版集團, 2010, p.145.

27) 吳薇,「明淸江西天主敎的傳播」,『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6卷 第1期, 2003, pp.54-59.

28) 「護理江西巡撫印務署布政使李承鄴奏報拿獲西洋宣敎士李瑪諾審辦摺」(乾隆50年2月5日),『天主敎在華活動檔案』 第2冊, pp.669-670. 문건번호 330; 「江西巡撫伊星阿奏報拿獲宣敎西洋人李瑪諾等訊明辦理摺」(乾隆50年3月17日),『天主敎在華活動檔案』 第2冊, p.714. 문건번호 351; 「衣斯罷尼亞國人李瑪諾及劉桂林等人供單」(乾隆50年3月17日),『天主敎在華活動檔案』第2冊, p.715. 문건번호 352.

29) 葛劍雄 主編 · 曹樹基 著,『中國人口史』, 第5卷 上, 復旦大學出版社, 2005, p.135,

30) 李敏鎬,「淸代 '懷慶藥商'의 商業과 네트워크 形成」,『明淸史硏究』 35, 2011, pp.329-330.

31) 사천의 전통적인 약재시장은 成都와 灌縣, 中壩市場이었다. 청말 光緖年間에 장강 상류에 위치한 重慶, 萬縣 등지가 개항되면서 重慶, 萬縣, 敍州府의 藥材市場이 번성하였다. 따라서 敍州府에서는 淸 初中期에는 淸末만큼은 아니지만 약재시장이 있었던 짐작된다.(彭朝貴 · 王炎主編,『淸代四川農村社會經濟』, 天地出版社, 2001, p.47). 嘉慶『宜賓縣志』 卷51, 物産志, 63뒤-63앞에 따르면 敍州府治 소재지인 宜賓縣은 何首烏를 비롯한 22종의 약재가 산출되는 藥材産地였다.

험을 축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呂씨 집안의 呂曾은 건륭연간 무렵에 敍州府 敎友會 會長으로 활동하였다.[32]

고향에서부터 천주교를 신봉했던 呂씨와는 달리 重慶에 정착한 江西 출신의 李씨 집안은 사천으로 이주한 후인 乾隆 40년(1775)에 이르러 처음으로 천주교를 신봉하였다. 그 까닭은 천주교도인 羅씨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李씨 집안에서 천주교를 수용하는 데는 큰 진통이 뒤따랐다. 외지에서 官員으로 활동하던 두 사람이 퇴직하고 돌아와 집안에 천주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震怒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중경에서 천주교를 탄압하려고 하였으나 집안사람들의 간곡한 만류와 그들이 전해주는 천주교 교리를 듣고는 마음을 바꾸어 결국에는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李家는 부유하여 3곳의 綢緞鋪를 소유하고 경영하였다. 綢緞鋪에서 나온 수입으로 李家의 사람들은 慈善을 행하였는데 특히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돌보았다. 李家의 어느 醫員은 가난한 병자들에게는 진찰료(脈禮)를 받지 않았다. 천주교도로서의 활동에도 힘을 쏟아 집안에서 司鐸(신부) 두 사람을 배출하였으며 李天福은 가경 연간에 重慶 敎友會 會長으로 활동하다가 嘉慶 22년(1817)에 殉敎하였고 綢緞鋪와 저택도 관에 몰수당했다. 重慶의 李家는 官僚 집안이자 부유한 비단 商人으로서 지역사회에서 救濟와 奉仕에 나섰고 집안에서 두 사람의 신부와 한 사람의 순교자를 배출하여 명망 있는 천주교 가문으로 성장하였다.[33]

江西省 瑞州府 高安縣에서 乾隆연간에 重慶으로 홀로 이주한 高鳳榮도 李氏들처럼 사천에 정착한 후에 천주교를 신봉하였다. 처음에는 重慶 江北廳의 東陽鎭에 살면서 煤炭廠을 열어 생계를 꾸렸다. 강북청 일대에는 질이 좋은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이 분포하였고 건륭연간에는 중경일대의 땔감 감소와 석탄 수요의 증가로 인해 탄광업은 전도가 유망한 新興産業으로 대두했고 그 경영자들은 큰 재산을 모우기도 했다.[34] 高鳳榮의 고향인 高安縣은 일찍이 南朝시대에 채탄한 기록이 있으며 청대에는 땔감을 대신하여 석탄을 사용하였으나 주로 농한기에 채탄하였다.[35] 고향의 채탄업에 대한 見聞이나 經驗이 高鳳榮으로 하여금 이주지인 重慶에서도 채탄업에 종사하게 하였을 것이다. 다만 채탄업에 종사하려면 탄광을 빌리거나 매입하고 광부들을 고용하는 데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이주한 직후부터 탄광을 경영한 高鳳榮은 상당한 자금을 지참하고 重慶으로 유입한 江西商人으로 짐작된다. 高鳳榮은 같은 東陽鎭에서 거주하던 李姓 천주교도와 왕래하다가 천주교를 신봉하고 李家의 여자와 혼인하였다. 강서 출신의 이씨 집안처럼 高鳳榮도

---

32) 古洛東,『聖敎入川記』, pp.69-70.
33) 古洛東,『聖敎入川記』, p.72.
34) 이준갑,『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 개발과 지역질서』, pp.294-295.
35) 江西省高安縣史志編纂委員會 編纂,,『高安縣志』第4章「能源」, 江西人民出版社, 1988, p.169.

혼인 관계가 천주교 수용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高鳳榮은 혼인한 후에는 重慶府城의 桂花街로 이사하고 업종을 바꾸어 소금을 판매하는 裕記通 鹽戶를 경영하고 財富를 축적하였다.[36] 高鳳榮의 경우에는 천주교도로서 대외적으로 헌신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직 집안에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수해주는데 힘썼다. 그는 천주교도로서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생을 보냈지만 채탄업과 소금 판매업이라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잇달아 성공을 거두면서 商人으로서는 상당한 수완을 발휘하였다.

정착에 성공한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도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처럼 포교 활동을 펼치는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중경의 李氏들은 重慶府城 來龍巷에 저택을 마련하고 그 일부를 천주교도들이 미사를 드리고 誦經하는 經堂으로 사용하였다. 동시에 이 經堂은 중경으로 온 서양인 선교사들의 처소로도 사용되었다. 프랑스인으로 파리외방선교회 출신의 徐德新監牧[37]은 嘉慶 7년(1802) 이후 중경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때 수년간 이 經堂을 이용하였다. 그 후에도 川東의 敎務를 管理하던 서양인 선교사들은 여기서 머물렀다. 經堂은 중국인 천주교도들의 誦經과 예배 처소이자 서양인 선교사의 은거 처소였으므로 여기서 중국인 천주교도와 서양인 선교사의 만남과 예배, 포교 등 천주교 전파와 관련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禁敎 상황 하에서 이씨 집안의 經堂은 敎堂의 기능을 대신한 것이다.[38]강서 출신 천주교도가 서양인 선교사를 보호하고 협력하는 이런 모습은 호광출신의 천주교도의 생활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은 호광 출신 천주교도들과 비교해서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이주지에서 정착할 때 종사하는 분야가 대부분은 고향에서 이미 친숙하게 접하던 분야라는 점이다. 藥鋪를 경영한 敍州府의 呂씨, 탄광업에 종사한 중경 강북청의 高鳳榮의 사례에서 이를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이 각지의 天主敎友會 회장으로서 지역 천주교도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敍州府와 重慶의 교우회장이 모두 강서 출신 천주교도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는 지역의 共益사업이나 慈善 활동에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이 적극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중경 이씨 집안이 좋은 사례이다.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이 이런 특징은 명청 시대 상인들의 특성과 겹친다. 명청시대 商

---

36) 古洛東, 『聖敎入川記』, pp.73-74.

37) 원래 이름은 Gabriel Taurin Dufresse(1750-1815)이며 중국 이름은 李多林, 徐德新 등이다. 1775년 중국으로 들어와 李多林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사천에서 활동하다가 건륭 50년(1785) 정월에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당해 투옥되었다가 그해 10월 석방되었다. 마카오로 돌아갔다가 건륭 54년(1789)에 다시 徐德新으로 기름을 바꾸어 사천으로 잠입하여 활동하다가 가경 20년(1815) 成都府 新津縣에서 체포되어 成都로 압송당해 斬首되었다. (淸)『仁宗實錄』(중화서국 영인본, 1986) 卷310, 16앞뒤, 嘉慶 20年 9月 辛丑條.

38) 古洛東, 『聖敎入川記』, p.72.

人들은 외지로 진출할 때 우선 고향에서 익숙했던 품목들을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서 성공하면 업종을 다각화하였다.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이 고향에서 견문했던 업종에 종사한 행위는 이런 상인들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명청시대에 성공한 각 지역의 商人들을 순수한 동기에서든 혹은 반대급부를 노리려는 의도에서건 간에 대부분 公益事業이나 慈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의 공익이나 자선 사업 참여는 천주교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구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위에 商人으로서(중경 이씨들은 한편으로는 紳士家門으로서) 공익사업에 참여한 측면도 있다.[39] 그리고 이들이 천주교도들을 아우르고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지속해야하는 각 지역 교우회의 회장 직임을 수행한 것도 평소 폭넓은 대인관계나 활동 영역을 構築하며 장사에 나섰던 상인들 행동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의 이런 특징은 명청 시대 상인들의 특성과 겹치는 것으로 강서 출신 천주교도들이 대부분은 사실상 상인이었다는 측면을 드러낸다.

## Ⅲ. 土着人 天主教徒의 活動

명말청초 동란의 와중에 토착인들이 많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피난을 갔다가 동란이 끝나면서 고향으로 되돌아 온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 중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되찾고 나아가 무주황전을 차지하면서 지주로 성장하고 신사를 배출하면서 지역사회의 지배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강희, 옹정, 건륭 연간까지 사천 각 지역에서 토착인들이 신사들을 배출하고 지주로서 혹은 상인으로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이주민들을 압도하면서 지역사회의 질서를 주도해 나갔다.[40]

회귀한 토착인 가운데에는 천주교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명청시대 사천에 천주교를 최초로 전한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불기오(利類思. Ludovicus Buglio)와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마갈렌(安文思. Gabriel Magallaens)이었다. 불기오와 마갈렌은 숭정 15년(1642)에 성도에 도착하여 선교하던 중 장헌충군에 사로잡혔다. 그 후 순치 3년(1646) 청군이 사천을 공격했을 때 다시 청군에게 잡혀 북경으로 가서 활동하였다. 장헌충 군에 사로잡히기 전에 두 선교사는 주로 성도부 일대에서 포교활동에 종사하였다. 강희 2년(1663)에 작성된 천주교 문서에 成都의 經堂 한 곳에 教友 300명가량이 있

39) 명청시대 江西商人이 진출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公益事業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吳金成,「江西商人의 選擇과 運命」,『矛·盾의 共存 -明淸時代 江西社會 硏究』,pp.410-411 참조. 휘주상인이 진출한 지역에서 공익사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영헌,『대운하와 중국상인 -회·양지역 휘주상인 성장사』, 민음사, 2011, pp.405-410.

40) 이준갑,『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 개발과 지역질서』, pp.63-93.

었다[41]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선교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제시된 5사례의 토착인 천주교도들은 모두 川東의 중경부 일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불기오나 마갈렌의 포교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끌로드 모뗄(穆格我. Claude Motel. 자께 모뗄의 동생)과 순치초년에 武昌에서 근무지를 옮겨와서 그의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川東道台 許纘曾과 모친 許太夫人의 영향을 받은 곳이었다. <표 1>에 따르면 토착인 천주교도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은 重慶府 銅梁縣이었다. 銅梁縣에서는 명말청초 동란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죽거나 흩어져 강희 초년에 지방관이 토착인의 회귀를 촉진하고 이주민 초치에 적극 나섰다. 토착인과 이주민들은 무주황전을 插占하였는데 官에서는 삽점한 토지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면서 주민의 수를 늘리려 애썼다.[42] 이런 招民開墾策이 효과를 거두어 康熙 元年(1662)에는 인구와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合州에 歸併되었던 銅梁縣은 康熙 60년(1721)에 들어와 復設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銅梁縣은 土壤이 척박하였으며 塘堰이 적어 농업용수를 저장하지 못해 가뭄과 홍수가 비교적 자주 찾아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초에서 건륭연간까지에는 인구가 급증하지 않았고 세금도 가벼웠으므로 주민들의 생활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43]

농촌인 銅梁縣에서 천주교를 가장 먼저 믿은 집안은 尹家였다. 이들은 縣治所 남쪽 90리에 위치한 尹家市[44]라고 이름붙인 시장을 개설하였다. 자신들의 성씨를 시장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은 尹家市를 개설할 때 필요한 시장 敷地와 가게 등을 윤씨들이 모두 제공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이들이 차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씨 집안이 銅梁縣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사실도 나타낸다.[45] 집안의 어른인 尹伯多祿은 康熙 52년(1713)에 뮐레너 주교에게서 銅梁縣 천주교우회 會長으로 임명받아 활동했다.[46]

---

41) 古洛東,『聖敎入川記』, p.66.

42) 于成龍,「規劃銅梁條議」,『于淸端政書』(文淵閣本 四庫全書 影印本) 卷1, 30뒤-33뒤.

43) 光緖,『銅梁縣志』卷3, 食貨志, 倉儲, 11뒤-12앞.

44) 光緖,『銅梁縣志』卷2, 建置志, 場鎭, 25뒤.

45) 청대 복건에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종족들이 시장을 새로이 개설하면서 필요한 부지와 가게 건물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집안의 재산으로 삼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元廷植,『淸代 福建社會 硏究-淸 前·中期 閩南社會의 變化와 宗族活動』, 서울大學校 大學院 東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pp.99-100 참조. 山根幸夫,『明淸華北定期市の硏究』, 汲古書院, 1995, pp.27-50에 따르면 명청시대 화북지방 農村에 위치한 시장인 鄕集을 開設하는데는 지역의 유력자인 紳士와 豪民이 개입하였다. 이런 현상은 집안에 유력자가 없다면 시장을 개설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46) 古洛東,『聖敎入川記』, p.78.

두 번째로 유력한 토착인 천주교도 집안으로는 劉家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순치, 강희초년 무렵부터 천주교를 신봉하였다. 劉家에서는 건륭연간에 兄弟 司鐸을 배출했다.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들은 雍正연간에 뮐레너 主教의 門下生으로 지내다가 열 살 무렵인 乾隆 초년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廣州로 갔다. 마카오를 거쳐 나폴리로 간 형제는 15, 6년간 서양의 언어를 익히고 神學을 공부하였다. 乾隆 17년(1752)에 司鐸으로 임명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兄 老劉必約은 호광의 教務를, 아우 劉必約은 섬서의 教務를 관리하였다. 劉必約은 처음에는 陝西 涇陽縣에서 藥鋪를 개설하였다가 곧 省城인 西安으로 이사하여 30여년간 섬서 지역에서 教務를 처리하면서 서양인 선교사와 협력하였다.[47] 형제가 나폴리로 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神學을 배워 당시 중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신학 지식을 습득한 신부가 되었다는 점, 귀국 후에 각각 호광과 섬서의 教務를 책임졌다는 점, 장기간 서양인 선교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토착인 천주교도 유씨 집안의 공간적 활동 범위나 천주교계 내의 영향력은 청 중기 사천 천주교도 가운데 가장 유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銅梁縣의 劉氏들은 宗族이 늘어나자 인근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동량현 劉家의 支派들은 강희 40년(1701) 무렵에 長江에 인접한 重慶府 長壽縣 巴豆灣으로 이주하였다. 여기서도 정착 여건이 여의치 않았는지 이주한 지파들 가운데 한 支派는 강희 말년에 다시 長壽縣 偏岩子로 이주하였다. 사실 巴豆灣이나 偏岩子는『長壽縣志』에도 등장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현 내에서 비중 있는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무주황전을 차지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강희연간 長壽縣에서 농민들이 넓은 경작지에 곡식을 파종한 후에는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조방농업을 행한 것으로 보아,[48] 토지에 대한 인구 압박은 심하지 않았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파두만이나 편암자로 이주한 유씨들의 자세한 생활 여건은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렵다. 偏岩子로 이주한 劉氏들은 마을의 주민들과 신앙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祈禱의 異蹟을 보여줌으로써 민간신앙을 받들던 이웃들을 천주교도로 변화시켰다.[49]

銅梁縣의 劉氏들이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이주한 사례에 속한다면 동량현의 寡婦인 宋劉氏는 천주교 신앙을 지키려는 종교적 동기에서 중경으로 이주하였다. 동량현의 송씨는 천주교도였으나 일찍 죽자 그의 아내 宋劉氏는 娚家의 친족들에게서 강제로 배교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따르지 않아서 뭇 친족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자 宋劉

47) 「陝西巡撫畢沅奏報續獲延請西洋人宣教之劉必約張多明我等摺」(乾隆49年12月17日),『天主教在華活動檔案』第2冊, p.629. 문건번호 305; 古洛東,『聖教入川記』, pp.77-78. 토레와 山陝商人이자 천주교도 焦振綱과 秦伯多祿의 활동에 대해서는 李俊甲,「乾隆49年(1784)～51年(1786)의 教案과 乾隆帝」,『東洋史學研究』, 117, 2011, pp. 176-182, 189-193 참조.

48) 康熙『長壽縣志』卷6, 19뒤-20앞.

49) 古洛東,『聖教入川記』, p.94.

氏는 乾隆 29년(1764)에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銅梁縣에서 重慶으로 이사 와서 화를 피하였다. 이후 宋劉氏 자신의 천주교 관련 활동은 분명하지 않으나 그녀의 아들과 딸의 행적은 분명하게 전해진다. 그녀의 아들 宋元才는 重慶 敎友會長으로 활동하다가 嘉慶年間에 천주교가 크게 탄압당할 때 관에 체포되어 充軍流配에 처해졌으나 유배형을 떠나기도 전에 1819년 감옥에서 순교하였다. 그녀의 딸 羅宋씨는 重慶 三牌坊에서 錢鋪를 경영하면서 銀錢을 兌換하던 천주교도 羅氏 집안에 시집가서 두 차례 貴州省으로 가서 포교활동을 펼쳤다. 첫 번째는 건륭 39년(1774)년 貴州省의 省都인 貴陽으로 가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펼쳐서 30여명을 入敎시켰으나 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사천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는 가경 3년(1798) 사천의 천주교도 胡世祿과 함께 다시 貴陽으로 가서 현지 천주교도들과 함께 돈을 모아 처소를 마련하고 婦女敎徒들에게 經典道理를 가르쳤다. 그녀가 두 차례나 귀주로 가서 선교활동을 펼친 까닭은 건륭 27년(1762) 로마교황청에서 귀주와 사천의 宣敎區를 合併하여 四川代牧主敎가 貴州의 敎務도 관할하게 한 조치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천 女性 天主敎徒의 대표로 파송을 받아 貴州에서 포교활동을 펼친 것이다. 그 후 그녀는 다시 綏定府로 파송을 받고 가서 포교활동을 펼치다 官差에게 체포되어 1년이 넘도록 투옥되었다.[50] 宋劉氏와 그녀의 아들 딸 역시 집안이 裕福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에 참여 순교하거나 四川代牧主敎의 파송을 받아 귀주에까지 선교활동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사천의 천주교 名門家를 이루었다. 羅宋씨의 사례나 劉氏 형제들의 사례로 보아 토착인 천주교도의 활동영역은 사천 내에 머물지 않고 省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이뤄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秀山縣에서 彭水縣으로 이주한 楊斯德望 역시 사천의 토착인 천주교도였다. 그는 원래 秀山縣 사람이었지만 강희 중기에 천주교가 제재를 받지 않았을 때 重慶府 華光樓 聖堂에서 천주교를 신봉했다. 그러다가 강희 40년(1701) 무렵에 彭水縣으로 이주하여 康熙 42년(1703)에서 강희 45년(1705) 사이에 늘 涪州와 彭水縣을 오가며 商人으로서 장사에 종사하였다.[51] 장사하는 도중에 만난 孫家, 游家, 袁家, 蔣家를 비롯한 많은 姓氏들에게 天主를 알도록 소개하고 이들을 인도하였다. 마침 蔣家는 貴州 婺川縣에 거주하였으므로 뮐레너 주교는 강희 59년(1720) 楊斯德望에게 귀주에서 천주교가 왕성하게 전파되는 婺川縣의 敎務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는 건륭 19년(1754)에 사망할 때까지 성실하게

50) 古洛東,『聖敎入川記』, p.71.

51) 楊斯德望이 涪州와 彭水縣을 오가며 거래한 品目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光緖『彭水縣志』卷3, 風俗志, 物産, 63 뒤에 따르면 國初에는 화폐유통이 안되어 단지 粟과 布만을 거래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楊斯德望은 彭水縣의 布를 涪州에다 판 것으로 보인다. 涪州의 경우 同治『重修涪州志』卷1, 輿地志, 物産 32뒤-33앞에 따르면 油, 鐵, 糖, 漆, 松油, 松煙, 絲, 麻, 靛, 紙 등을 상인들이 많이 거래하였다고 하는데 楊斯德望이 彭水縣으로 가져가서 판 물품은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직무를 감당하였다.[5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省에서 사천으로 이주한 천주교도들은 원적지에서 신봉하던 천주교를 이주지인 사천에서도 신봉하였다. 이리하여 이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사천에 천주교를 유입시키는 전파자 역할을 감당했다. 토착인 천주교도 중에도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성공한 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천주교를 四川省 內에서 확산시키기도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貴州・陝西・湖廣 등 다른 省으로 진출하여 宣教하기도 하고 教務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청대 四川省은 다른 省으로부터 천주교도와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른 성으로 천주교와 천주교도를 확산시키는 이중적 위치에 있었다.

## Ⅳ. 地域社會 속의 天主教徒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주교도들은 평상시에는 같은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었다. 이들은 함께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혹은 이웃한 수공업자나 상인으로서 생활하면서 할당된 세금을 부담하고 또 외적의 침입을 공동으로 방어하며 도시든 농촌이든 말단 행정조직에 포함된 이웃으로 살았다. 국가가 주도하고 편제한 통치기구 속에서 천주교도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차이가 없이 일상생활을 꾸렸다.

명말청초 동란기의 혼란이 점차 수습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주인이 없는 토지들이 많아 이주민이든 토착인이든 생활 여건이 여유가 있었던 순치, 강희 연간의 사천 사회에서는 천주교도들과 비교도들 사이에 종교문제로 인한 갈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시기의 사천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차지한 무주황전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일을 둘러싸고 토착인과 토착인, 토착인과 이주민, 이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분쟁과 소송이 발생한 것이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사천 주민들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사천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隱田을 파악하여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에 입각하여 田賦(토지세)를 징수함으로써 청조의 대민지배력을 제고하는 일이었다. 청조가 사천에서 단행한 옹정연간의 장량은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53]

사천사회의 이런 분위기 하에서 천주교도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포교활동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는 사례는 천주교가 전해진 초기부터 확인된다. 崇禎 15년(1642), 16년(1643) 무렵 安岳縣의 천주교도이자 鐵匠이자 商人 黃達陟은 추수를 전후하

---

52) 古洛東,『聖教入川記』, p.91; 貴州省 宗教事務局 홈페이지「貴州天主教 : 第一節 天主教傳入貴州」 부분 참조. http: //www.gzszj.gov.cn/art/2011/8/2/art_184_4704.html

53) 이준갑,『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 개발과 지역질서』, pp.119-160.

여 이웃한 수녕현으로 가서 낫이라든가 칼 따위의 간단한 철제 농기구를 팔면서 주민 席宗友에게 천주교에 입교하기를 권유했다. 그후 석종우는 천주교에 입문하고 자신이 이웃에게 천주교의 도리를 전파하여 신도가 크게 늘어났다.[54] 黃達陟은 또 潼南縣으로도 가서 추수하는 계절에 낫이나 나무를 베는데 쓰는 칼(柴刀) 등을 팔면서 손님들에게 천주교의 도리를 전파하였다. 雙江鎭의 黃光順이 온 가족과 더불어 천주교에 입문하여 潼南縣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55] 황달척이 전도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이 생산한 철제 농기구들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상인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청대의 상인 겸 천주교도들은 장사를 하는 동시에 광주나 마카오에서 전해지는 선교 자금이나 편지들을 내륙에서 활동하는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중국인 천주교도나 신부들을 연결하는 연락책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였다.[56] 동시에 중국인들에게 천주교의 도리를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도 감당하였다. 요컨대 청대 천주교의 확산과 전파에는 원격지 상인은 물론이고 자신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상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

명말 청초에는 지방관들도 강희 말년의 전례 논쟁까지는 천주교가 탄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사천에서는 오히려 천주교 포교에 협조하는 관원이나 신사층도 드물지 않았다. 전술한 許纘曾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康熙 元年(1662) 陝西省 漢中에서 重慶으로 건너온 예수회 宣敎師 끌로드 모뗄에게 자신의 官署 일부를 처소로 제공하였고 天主敎堂도 마련해주었다. 허찬증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끌로드 모뗄은 7, 8개월 만에 170여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사천 북부의 保寧府로 가서 새롭게 천주교를 전파하였다. 이때 保寧府 일대의 현임 知縣과 전임 知縣 여러 명, 그리고 많은 生員들이 세례를 받고 천주교도가 되었다. 특히 南江縣 知縣은 세례를 받은 후에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도 천주교를 신봉하게 하였다. 康熙 3년(1664)에 끌로드 모뗄은 150여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南江縣 知縣이 전도한 열매였다.[57] 이처럼 청초 사천의 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지방관이나 신사(생원)들이 천주교에 귀의하고 포교에 협력했던 현상은 명말 마테오 리치의 선교에 협력했던 관료 徐光啓, 李之藻의 경우와 비슷하다. 마테오 리치는 관원이나 신사층을 주된 포교 대상으로 삼는 선교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성과를 거두었는데

54) 秦和平・申曉虎編,『四川基督敎資料輯要』, 巴蜀書社, 2008, p.309.
55) 秦和平・申曉虎編,『四川基督敎資料輯要』, 巴蜀書社, 2008, p.486.
56) Adrien Launay, *Journal D' André Ly, prêtre, chinois, missionnaire et notaire apostolique, 1746-1763,* Paris, 1906, pp.85-86.
57) 費賴之 著, 馮承鈞 譯,『在華耶蘇會士列傳及書目』上, pp.305-306.

끌로드 모뗄은 예수회 선배 선교사의 이런 노선을 자신의 선교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였다. 자신의 최대 조력자가 서광계의 손녀와 그녀의 아들이었던 사실도 '상층 노선' 전략을 펼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체로 순치, 강희연간까지 경제적으로 사천의 물질적 생활여건에 여유가 있고 정치적으로 천주교가 금압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기에는 천주교도와 비교도들의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나 지방관들의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雍正·乾隆연간에 들어와 천주교가 금압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변화하였다. 물론 개중에는 천주교도들의 뇌물을 받고 처벌을 경감하거나 묵인하는 지방관들도 있었고,[58] 또 수하에서 부리던 서리들이 천주교를 신봉하여 체포되어 오면 훈계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었다.[59] 심지어는 천주교도 중국인 神父와 교제하고 그 아들에게 말을 선물하는 지방관도 있었다.[60]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관들은 천주교도를 색출하여 조정의 지침에 따라 처벌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은 江津縣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直隸 順天府 宛平縣 출신의 谷耀文 신부(일명 若翰. 1701~1763. 1734년 사제 서품)는 옹정 13년(1735)부터 건륭 11년(1746)까지 10여년 동안 사천 동부지방의 敎務를 관리하였다. 그가 중경부 江津縣에서 교무를 처리할 때 인근 각 州縣의 교우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經堂에 모여서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경전을 읽어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울려 퍼졌고 遠近의 주민들이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 각 大瞻禮慶期(천주교의 祝日)에는 江津縣은 물론이고 인접한 重慶府, 永川縣, 銅梁縣, 合州, 涪州 등지에서 매번 천주교도 사백여명이 모여서 瞻禮를 慶賀하느라 며칠 동안 시끌벅적했다. 생황(笙), 퉁소(簫) 등의 악기를 불며 축일을 즐겼다.[61]

이처럼 건륭 초까지 사천의 천주교도들이 공개적으로 천주교의 축일을 즐기고 또 신앙활동을 하게 된 데는 순치 강희연간 이래 천주교도들이 신앙 활동을 숨기지 않던 관행을 답습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미처 청조의 변화된 조치 곧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사천에서는 천주교도들에게 아직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위협으로 인식될 만큼 강력하게 집행된 적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천주교도들이 이처럼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신앙활동을 하는 것을 마땅치 않

---

58) Adrien Launay, *Journal D' André Ly, prêtre, chinois, missionnaire et notaire apostolique, 1746-1763,* 1906, p.23.

59) Adrien Launay, *Journal D' André Ly, prêtre, chinois, missionnaire et notaire apostolique, 1746-1763,* 1906, pp.12-13.

60) Adrien Launay, *Journal D' André Ly, prêtre, chinois, missionnaire et notaire apostolique, 1746-1763,* 1906, p.5.

61) 古洛東,『聖敎入川記』, p.76.

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천주교도들을 모함하고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江津縣의 保長 劉勉士, 周奇玉 등은 건륭 11년(1746) 5월 28일 날이 새기 전에 縣衙의 捕役, 兵士 등 33명과 李華玉, 楊衛君를 비롯한 地鄰 20여명 등을 이끌고 백련교에 관련된 모반 정황을 수색한다며 강진현 천주교도 지도자 駱有祥의 집을 급습하였다.[62] 捕役, 兵士들은 駱有祥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녀를 불문하고 난타하고 체포한 후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백련교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집주인인 낙유상과 谷耀文 신부를 체포하여 현아로 압송하였다. 지현은 이들을 심문하고 강진현의 천주교도는 누구인지, 천주교의 교리와 예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심문을 마친 후에 지현 彭維銘은 이들에게 앞으로 천주교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地鄰과 保長에게 보증을 세우고 석방하였다.[63] 또 이름이 거론된 천주교도들에게 背敎한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64]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보장과 지린, 포역과 병사들이 합동으로 백련교도를 색출하기 위한 공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지만 내면의 계기를 살펴보면 정착에 성공한 이주민 천주교도에 대한 지역 사회 유력자들의 시기와 질투, 誣告 때문에 발생하였다. 강진현 지현은 4월 무렵에 관내에 백련교 관련자들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이에 保長 劉勉士, 周奇玉은 건륭 11년(1746) 5월 3일에 자신들의 관할구역을 逐戶調查해보니 낙씨 가문의 駱有餘, 駱有祥, 駱有貴 등이 吃齋, 拜佛하는 백련교도라고 보고하였다. 이후 지현의 허락을 얻어 5월 28일에 낙유상의 집을 급습하여 谷耀文 신부와 駱氏一家, 천주교도들을 체포한 것이었다.

강진현 지현은 직접 심문한 후에 체포된 이들은 천주교도이지 백련교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保長과 地鄰에게는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보장과 지린이 연대보증하기를 머뭇거리자 知縣이 그러면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며 압박하였다. 보장과 지린은 마지못해 보증을 섰다. 地鄰 李華玉과 楊衛君이 지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駱家는 원래 선량하고 부지런히 농사짓는 집입니다. 대대로 천주교를 신봉하였으며 결코 匪類나 邪敎를 신봉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들과 20여년을 이웃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보증합니다." 保長인 劉勉士도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진술하였다.[65]

---

62) 「天主敎徒駱有相等狀告豪棍侵擾幷對證等事」(乾隆11年6月19日), 『惟一堂西軒存稿』(『歐洲所藏雍正乾隆朝天主敎文獻匯編』, 上海人民出版社, 2008, p.162)

63) 「谷耀文拿至四川江津縣審問」(乾隆11年5月28日), 『惟一堂西軒存稿』(『歐洲所藏雍正乾隆朝天主敎文獻匯編』, pp.159-162)

64) Adrien Launay, *Journal D' André Ly, prêtre, chinois, missionnaire et notaire apostolique, 1746-1763,* Paris, 1906, p.18; 古洛東, 『聖敎入川記』, p.76.

地鄰은 낙유상의 집과 인접한 있는 이웃으로 함께 이십여년 동안 같이 생활하였다면 낙씨가 당연히 천주교도이지 백련교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다. 보갑의 우두머리인 보장 역시 보갑책에 등록된 보갑 성원들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保長과 地鄰이 知縣에게 연대보증을 서면서 駱家에 대해 진술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保長과 地鄰은 駱家들이 백련교도가 아니라 천주교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백련교도를 색출하라는 지현의 명령을 받고서는 보장은 지현에게 이들이 백련교도라고 무고한 것이다.

이처럼 청대 말단지방행정 기구에 포함된 보장이나 향약들이 주변사람들을 지방관에게 무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里甲의 甲에 설치되어 甲內 주민들의 公的 薦擧나 전임자의 私的 薦擧를 통해 지방관에게서 임명받은 지역의 有力者들이었다. 이들은 甲內 주민의 여론을 지방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납세를 독촉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반면에 이들은 공무 수행을 빙자하여 평소 눈 밖에 난 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개인적인 보복을 가하기도 했다.[66]

保長 劉勉士가 駱家는 천주교도인줄 뻔히 알면서도 백련교도로 모함한 처사도 평소 낙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복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천주교는 邪敎로 분류되지 않았으므로 천주교도가 신앙포기를 거부하여 가장 무겁게 처벌을 받더라도 新疆 일대로 유배형에 처해지는데 그쳤다. 신앙을 포기하면 곤장을 맞고 석방되었다. 반면에 邪敎인 백련교 신봉자로 낙인이 찍히면 우두머리는 絞(監候)刑에 처해지고 추종자는 杖 100대에 삼천리 유배형에 처해졌다.[67] 백련교도로 낙인이 찍혀 처벌당하는 것이 천주교도로 지목되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가혹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駱家와 保長 劉勉士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과 마찰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駱家가 康熙 말년에 廣東에서 江西를 거쳐 雍正 元年(1723)에 江津縣으로 이주해 온 천주교도로서 정착에 성공하여 만만치 않은 경제적, 사회적 실력을 길러[68] 평소 保長에게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는

---

65) 「谷耀文拿至四川江津縣審問」(乾隆11年5月28日), 『惟一堂西軒存稿』(『歐洲所藏雍正乾隆朝天主教文獻匯編』, p.162)

66) 건륭연간 중경부 파현의 향약들의 개인적인 보복 사례는 다양하다. 어느 兵房胥吏는 향약이 부과한 군수전 1300文을 내지 않다가, 어느 皂役은 평소에 향약과 불화하다가 향약에게 사적인 보복을 당했다. 또 煤炭洞 경영자는 향약의 뇌물요구를 거절하였다가 보복을 당했다. 향약이 서리나 아역 등에게도 사적으로 보복할 정도였다면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파현에서 보장의 사적 보복 사례는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장은 향약처럼 甲內의 교화기능은 없으나 치안유지 기능은 공유하면서 함께 같은 사건을 처리했던 사례가 많았으며 또 말단행정기구의 집행자로서 항상 대민 접촉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장의 사적 보복 역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준갑, 『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 개발과 지역질서』, pp.271-282.

67) 田濤 · 鄭秦 點校, 『大淸律例』(法律出版社, 1999) 卷16, 禮律, 祭祀, pp.277-278.

駱家가 석방된 후에 保長을 豪棍으로 낙인찍고 奉公不公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江津縣衙에 고소한 점, 그리고 駱家들이 金龍廟에 지역 주민과 農官등의 유력자를 불러 모아 주민들의 여론을 힘입어 保長에게 이번 처사를 해명하도록 위압을 가하였던 점, 궁지에 몰린 保長이 駱家를 白蓮敎徒라고 관에 보고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69] 원칙적으로 土着人이 임명되는 保甲의 保長은 이십여 년 전에 廣東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출신의 천주교도로서 정착에 성공하여 재산을 모으고 주변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면서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만은 않은 駱家를 평소에 벼르고 있었다. 駱家의 이웃으로 保長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駱家의 수색에 동참하였던 地鄰들의 속마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저에는 정착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이주민 천주교도들에 대한 非天主敎徒 이웃들의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짙게 깔려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구조의 문제로 눈을 돌려보면 이 사건은 지역사회의 안정성이 무척 낮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보갑조직의 수장인 보장은 보갑 구성원을 통솔하여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구성원을 질시하고 모함하여 질서를 와해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보장의 통솔을 받고 협조해야 할 구성원 역시 오히려 보장을 무뢰(豪棍)로 낙인찍고 고소하여 지역의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켰다. 지역의 치안조직이자 공동체인 보갑을 구성하는 보장과 보갑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마찰은 청대 후기 사천의 지역사회가 무척 불안정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근본적인 까닭은 청초 이래 청중기까지 대량의 이주민이 사천으로 유입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개간할 수 있는 토지가 고갈되면서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이주민과 이주민, 이주민과 토착인, 토착인과 토착인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청대 중후기의 사천에서 지역사회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인 살인사건과 강·절도사건의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까닭은 이런 사회적 불안 현상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였다.[70] 江津縣의 천주교도와 비천주교도

---

68) 駱家의 原籍은 廣東인데 康熙연간에 江西의 南康縣으로 이주하였다. 康熙 34년에 천주교를 신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강희 39년(1700) 혹은 강희 40년(1701) 무렵에 서주부에 도착하여 거주하다가 옹정 원년(1723)에 강진현으로 이주하고 정착하였다. 이들의 부유함과 재산은 한 지방을 진동시킬 정도였는데 강진현의 성당과 신부의 거처를 자신의 땅에다 지었다. 다른 姓氏들도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다. 또 婚姻關係를 천주교를 신봉하게 된 자들도 적지 않았다. 古洛東, 『聖敎入川記』, pp.74-76.

69) 「天主敎徒駱有相等狀告豪棍侵擾幷對證等事」(乾隆11年6月19日), 『惟一堂西軒存稿』(『歐洲所藏雍正乾隆朝天主敎文獻匯編』, 上海人民出版社, 2008, pp.162-163)

70) 魏淑民, 『清代乾隆朝省級司法實踐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 pp.244-249에는 「內閣大庫現存清代漢文黃冊 · 刑部 · 五刑類」를 자료로 삼아 건륭13년, 25년(11.2%), 27년(10.3%), 30년(11.1%), 36년(13.0%), 42년(2위. 9.1%. 직예가 1위. 285건 10.0%), 46년(26.8%), 48년(24.2%), 55년(2위. 14.9%. 1위는 광동 264건.17.8%)에 전국 각 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강 · 절도사건 수치가 작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은 구조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런 청대 사천 사회의 역사적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이주민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에 淵源을 두고 있었다.

嘉慶 연간에 발발한 白蓮敎反亂은 사천의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백련교 반란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던 巴山老林을 비롯한 嘉陵江 동쪽의 주민들은 반란으로 생존을 위협당하며 갖가지 고초를 겪었다. 또한 전장의 후방에 위치한 成都나 重慶 등지의 주민들은 淸軍과 鄕勇을 지원하기 위한 갖가지 전쟁물자와 군비를 조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9년에 걸친 백련교반란이 가까스로 진압되었을 때 그 여파로 사천에는 은유통의 확산, 지역방어 체계의 변경과 같은 경제적, 군사적 변화가 나타났다.[71]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 사이에 백련교에 대한 경각심이 뿌리 깊게 내렸다는 점이었다.[72] 특히 戰場으로 화해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당했던 巴山老林지대의 주민들에게 白蓮敎는 소탕과 박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巴山老林지대에 위치한 산골인 渠縣에서 가경연간에 천주교 박해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백련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천주교가 백련교와 同類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渠縣에 천주교가 최초로 전해 때는 건륭 55년(1790) 무렵으로 가경 백련교반란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다. 渠縣으로 천주교를 최초로 유입한 자는 이 고장의 商人으로 李渡壩에 거주하며 重慶을 오가며 장사하던 董朝貴였다. 그는 重慶의 雜貨商人에게서 천주교의 道理를 전해 듣고 이를 신봉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 온 후에 그는 민간신앙의 偶像들과 天地君親師의 位牌를 불태우고 친척과 친지들에게 천주

---

성되어 있다. 여기서 사천은 건륭13년의 통계에는 빠져 있고 건륭42년과 건륭55년 두해에 2위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여섯 해는 전국 각성에서 살인사건과 강·절도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각 연도 괄호 안의 퍼센트는 전국의 살인강도 사건 발생 건수 가운데 사천성의 수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륭 41년(1776) 사천의 인구는 778.9만(王笛, 『跨出封閉的世界-長江上游區域社會研究 1644-1911』, 中華書局, 1993, p.72) 혹은 1,681만(曹樹基, 『中國人口史』 제5권·下, 復旦大學出版社, 2005, p.703)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전국 인구는 3억 1150만으로(曹樹基, 『中國人口史』, p.832) 사천 인구는 중국 전체의 2.5% 혹은 5.4%였다. 어느 경우이든 사천은 전국적인 인구 비중에 비해 살인과 강·절도 사건의 발생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청말에도 도광제의 발언이나, 도광연간 사천안찰사 이성원·장집형, 광서연간의 사천총독 정보정의 지적에 따르면 사천은 살인과 강·절도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이준갑, 『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 개발과 지역질서』, p.357)

71) 백련교반란으로 유입된 대량의 軍需銀이 사천지방의 銀流通을 확산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이준갑, 『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 개발과 지역질서』,pp.225-268 참조. 巴山老林地域의 방어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周琳, 「白蓮敎起事與巴山老林附近地區鄕村防禦體系」,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第22卷 第1期, 2004, pp.77-79 참조.

72) 백련교비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청말에 간행된 사천 지방지의 백련교란 관련 기록이나 『淸中期五省白蓮敎起義資料』(1冊~5冊, 江蘇人民出版社, 1982)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교의 도리를 설파하여 李渡壩와 徐家壩의 董家, 李渡壩의 劉家, 火峰廟의 陳家 등이 천주교를 신봉하게 되었다. 1810년 무렵에 들어와 渠縣의 천주교도는 1,5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1810년 非교도 주민들은 천주교도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면서 이들이 謀叛을 준비했다며 縣衙에 고소하였다. 고소한 주도자는 渠縣署 내의 第一名卯役이라 불리던 差役 何貴였다. 그가 주도하여 천주교도들은 白蓮敎의 叛黨들과 同類라고 誣告하였다. 謠言이 유포되자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非敎徒 주민들은 천주교도들이 백련교도들처럼 반란을 일으켜 자신들을 살육할까 두려워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백련교란 시기에 縣내의 산악지대에 수축해놓았던 堡寨를 다시 보수하였다. 백련교반란의 소용돌이가 스쳐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백련교와 관련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渠縣의 민심은 극히 뒤숭숭해졌다.

극히 긴장된 순간에 渠縣의 非교도 주민들은 천주교도들을 먼저 공격하였다. 이들은 천주교도를 구타하거나, 그들의 糧食을 약탈하거나 가옥을 불태워 버리고 심지어 천주교도들의 아내나 딸, 여자천주교도들을 폭행하고 강간하였다. 縣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渠縣 지현은 사건을 묵살하고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천주교도들은 반역도의 누명을 쓰고 해를 입었다고 격분하여 成都府로 가서 上訴하였다. 사천총독 常明은 사건을 심리하여 주민들이 천주교도를 구타하고 그들의 재산을 掠奪하거나 放火한 죄는 추궁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를 당한 천주교인들을 禁敎의 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는 委員 3인을 渠縣으로 보내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委員들이 渠縣에 도착하자 지역 주민들은 교우들의 이름을 이들에게 투서하여 알렸으므로 委員들은 천주교도를 지명하여 체포하고 背敎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에 굴복하여 천주교도의 대부분은 背敎하고 끝까지 背敎하기를 거부한 세 사람은 伊犁로 充軍되었다. 四川總督은 천주교를 받드는 것을 금지시키고 渠縣 지현을 천주교도들의 죄를 비호했다는 혐의로 해임시키고 新官을 파견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백련교반란이라는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巴山老林지대의 渠縣 주민들은 천주교도를 적대시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런 직접적인 공격 방식은 강진현에서 천주교도들을 국가권력에 의존하여 공격했던 간접적인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다. 渠縣의 주민들이 이처럼 합법적인 테두리를 넘어 직접적으로 천주교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행한 까닭은 이들이 백련교도들과 연합하여 반란을 도모한다는 소문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백련교반란의 무대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던 파산노림 속의 渠縣 주민들은 또 한번의 재난이 덮쳐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백련교도 소탕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천주교도들을 직접 탄압한 것이다. 백련교반란의 쓰라린 경험이 축적된 파산노림지대에서 非교도들에게 있어서 천주교도들은 토착인이든 이주민

이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천주교도들은 반란에 참여하여 지역의 평안과 질서를 깨트리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백련교도들과 연대하거나 연대할 가능성이 농후한 반란음모자로 비쳐질 뿐이었다.

渠縣의 주민들이 천주교도를 백련교도와 동류의 모반자로 인식하게 된 직접적인 까닭은 천주교에 대해 주동자인 差役 何貴가 그렇게 선동하였기 때문이다. 差役 何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가 천주교와 백련교의 교리에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이해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백련교에서 받드는 無生老母나 天主教의 上帝가 만물의 창조자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비슷하다.[73] 이런 점에서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양자가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가경 연간 사천에서 천주교는 天主邪教로 지목되면서 천주교 역시 백련교와 다름없는 邪教의 범주에서 인식된 점도 주민들이 양자의 차별성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순치, 강희연간까지 경제적으로 사천의 물질적 생활여건에 여유가 있고 정치적으로 천주교가 금압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기에는 천주교도와 非교도들의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나 지방관들의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雍正·乾隆연간에 들어와 천주교가 금압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변화하였다. 지방관들은 청조의 명에 따라 천주교도들을 탄압하였다. 그리고 보갑을 이끄는 保長과 같은 지역사회의 유력자들도 정착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이주민 천주교도들을 질시하면서 官衙에 이들을 모함하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개인적인 원한에 기초한 보복의 성격이 짙었다. 가경 연간에 들어와 사천에 백련교반란의 영향이 미치면서 개별적인 보복은 주민들의 천주교도에 대한 집단적인 공격으로 비화하였다. 천주교도들과 백련교도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조작된 풍문이 주민들을 자극한 결과였다. 주민들의 천주교도에 대한 감정이나 대응방식이 점차 격렬하게 변화하는 것은 청초 이래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청중기 이래 토지가 부족해지고 생활여건이 악화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맺음말

명말청초의 동란기를 겪으면서 屠蜀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했던 사천으로 토착인이 회귀하는 한편 전국 각 省에서 다수의 이주민이 유입하였다. 청초 인

73) 白蓮教에서 받드는 無生老母의 창조자이자 구세주 성격에 대해서는 崔甲洵,『中國近世民間宗教研究-'白蓮教 傳統'의 구성』,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pp.54-69 참조.

구이동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던 이주민의 사천 유입은 이후 사천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주민의 유입은 청대 사천의 천주교 전파와 확산 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청대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천주교 전파와 확산은 해당 지역에 정착해 있는 토착인 위주로 진행되었다. 반면 사천에서는 천주교를 신봉한 이주민들이 유입하여 천주교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들은 혈연관계와 동향관계라는 민간인의 일반적인 상호부조의 원리 이외에도 천주교도라는 신앙적 유대감과 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천에서 정착하였다.

이주민 천주교도들은 신앙적 유대감과 결속성을 바탕으로 상호부조하였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출신지역에 따라 각자 독특한 정착 방식을 나타내었다.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들은 다른 성 출신들에 비해 사천에서 농업으로 정착하고 성장한 사례가 많다. 이들은 무주황전을 차지할 기회가 많았으므로 지주로 성장할 기회도 많았다. 반면 그러지 못한 자들은 상업이나 수공업을 영위하여 정착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한 호광 출신의 천주교도들은 사천에서 혼인과 같은 우연한 기회에 그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강서 출신의 천주교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익숙하게 보아오던 상업이나 수공업 분야에 투신한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호광의 경우는 주로 농민으로 구성된 농업 이민이 강서의 경우는 강서상인이 주축이 된 상업 이민이 주류를 이룬 까닭이다.

토착인 중에도 無主荒田을 차지하여 지주로 성장한 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특히 강희, 옹정, 건륭연간에 사천의 각 지역에서 지역의 질서를 주도하는 지배층으로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는 서양인 선교사나 혹은 사천의 토착인 천주교도 등의 포교로 천주교를 수용한 자들이 나타났다. 토착인 천주교도들 가운데는 부를 축적하는데 성공한 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천주교를 四川省 內에서 확산시키기도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貴州·陝西·湖廣 등 다른 省으로 진출하여 宣敎하기도 하고 敎務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토착인 천주교도들의 신앙적 활동 영역은 상대적으로 사천성 내에서 집중했던 이주민들의 그것보다 지역적으로 범위가 더 넓었다고 할 수 있다.

순치, 강희연간까지 경제적으로 사천의 물질적 생활여건에 여유가 있고 정치적으로 천주교가 금압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기에는 천주교도와 非교도들의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나 지방관들의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는 雍正·乾隆연간에 들어와 천주교가 금압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변화하였다. 특히 가경 연간에 들어와 이전에는 개별적인 원한 갚기의 형태로 진행되던 사천 주민들의 천주교도에 대한 공격은 격렬한 집단적 공격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가경연간 이후 사천 주민들의 천주교도에 대한 공격이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 차원으로 변모한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백련교 반란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기성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집단이나 사람들에 대해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자신들과는 '이질적' 천주교도들을 공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건륭 후반기 이래 인구과잉으로 인한 토지부족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천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불만 해소의 한 방편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천주교도들을 공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洪武帝의 宦官 抑制와 實狀

## — 洪武帝의 高麗와 朝鮮 出使 使臣을 通해 본 宦官 外交 —

임 상 훈(원광대 한중역사문화연구소)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洪武帝의 高麗·朝鮮에 대한 宦官 外交
Ⅲ. 洪武帝의 宦官 抑制와 그 實狀
Ⅳ. 洪武帝의 宦官 出使 原因과 特徵
Ⅴ. 맺음말

## Ⅰ. 들어가며

明의 멸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淸代 사람들은 "流賊(李自成)에 의해서가 아니라 宦官에 의해서"[1]라고 지적하면서, 환관의 專橫이 明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듯 명의 멸망과 관련하여 宦官의 跋扈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명대의 환관 발호 원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明史』의 기록에 따라 永樂帝가 환관에게 권력으로 향하는 대문을 열어준 것으로 여겨왔다.[2] 靖難之役을 통해 皇位를 찬탈했던 영락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환관의 도움을 받아, 등극 이후 환관을 중용하였다. 이렇듯 영락제는 환관들에게 권력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여 명말 환관의 禍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영락제는 환관을 자주 외국에 出使하여 명대 외교의 특징을 '宦官 外交(Eunuch Diplomacy)'라고 표현하기도 한다.[3]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명대에는 많은 사신을 환관으로 충당했다. 영락년간에는 7차례나 서양을 항해했던 鄭和외

---

1) 論者率謂 : "明亡, 不亡於流賊, 而亡於宦官"((淸)鄂爾泰、張廷玉 等 編纂,『國朝宮史』 卷1,「聖論」(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94) 1쪽)

2)『明史』에서는 명대 환관의 전횡이 모두 永樂帝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蓋明世宦官出使、專征、監軍、分鎭、刺臣民隱事諸大權, 皆自永樂間始。(『明史』 卷 304,「宦官一 · 序」))

3) 동남아 華僑 연구자 王賡武는 명과 동남아 諸國과의 외교에서 특히 환관을 많이 사용했던 점에 주목하며 명대 외교에 '宦官 外交(Eunuch Diplomacy)'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였다.(王賡武 著; 姚楠 編譯,『東南亞與華人－王賡武敎授論文集』, (北京, 友誼出版公司, 1987), 31쪽) 본문에서도 이 환관 외교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에도 그와 함께 서양을 항해했던 王景弘, 각각 서역, 몽골, 티벳을 전담했던 李達, 海童, 侯顯 등의 수많은 환관들이 명과 외국을 잇는 架橋 역할을 하였다.[4] 이러한 명대 환관의 외교적 활약은 그들의 권력 신장과 연결이 되었고, 이는 결국 이후 그들의 발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5]

영락제는 직접적으로 환관들에게 권력 상승의 길을 열어주었다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와는 반대로 明 太祖 洪武帝는 환관의 억제에 힘을 썼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漢唐의 멸망과 환관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여겨[6], 鐵牌를 궁문에 세워 "宦官은 政事에 干預할 수 없고, 干預하는 자는 벤다"[7]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들어 현대에도 많은 학자들은 홍무제가 환관을 억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史書에서 볼 수 있는 홍무제의 환관 억제 발언과 정책은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청말의 역사가 龍文彬은『明會要』에서 홍무제가 사실 환관을 억제하면서도 "사신으로 보내며, 군대를 열병케 하여 일찍이 그 (권력상승의) 틈을 열었다"라며 "스스로 그것(환관)을 금지하고, 스스로 그것(환관)을 문란케 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8] 최근 들어 중국의 欒成顯 역시 논문에서 홍무년간 군사・경제・정치 등에서 환관의 활동을 정리하며 홍무년간 이미 명대 환관 발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역설하였다.[9] 필자 역시 여타 많은 명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환관에 관한 일련의 제도와 법규 역시 홍무년간에 정비되어 후대에 들어 이것이 더욱 '變本加厲'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특히 명대 환관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인 외교를 통한 권력 신장이 바로 홍무제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명대의 환관은 외교 활동을 통해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발호하여 후에는 명의 멸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문은 홍무제가 외교에서 환관들을 활용했던

---

4) "當成祖時, 銳意通四夷, 奉使多用中貴(宦官)。西洋則 (鄭) 和、 (王) 景弘；西域則李達；迤北則海童, 而西番則率使侯顯。"(『明史』 卷 304, 「宦官一・鄭和」) 이 국가들 외에도 명은 조선에도 은밀히 많은 환관들을 보내 비밀리에 공녀, 보라매, 젓갈 등의 사적인 조공품을 요구하였다.(임상훈, 「明初 朝鮮 貢女의 性格」,『東洋史學研究』(東洋史學會)122, 2013, 173-208쪽)

5) 全淳東은 명대 환관 세력의 발호는 외교와 관련이 크다고 여기며, 명대 환관의 실태와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全淳東, 「明朝 前期 宦官 勢力 推移 機能」,『中國史研究』(中國史學會)61, 2009, 39-82쪽; 「明初 宦官 外交 活動 實態 特性」,『中國史研究』(中國史學會)77, 2012, 109-155쪽)

6) 吾見史傳所書, 漢唐末世皆爲宦官敗蠹, 不可拯救, 未嘗不爲之惋歎。(『明 太祖實錄』 卷31, 洪武元年 4月 丙辰條)

7) 嘗鐫鐵牌置宮門曰：“內臣不得干預政事, 預者斬。”(『明史』 卷 304, 「宦官一・序」)

8) 論者咸咎成祖階之厲, 而不知太祖實未得所以制之之道也。……太祖馭內侍甚嚴, 而奉使、觀兵, 早開其隙。是自禁之而自紊之, 又何怪後人之變本加厲耶？((淸)龍文斌, 『明會要』 卷37, 「職官十一・宦官」(北京, 中華書局, 1956), 697-699쪽))

9) 欒成顯, 「洪武時期宦官考略」, 『明史研究論叢』(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明史研究室)第二輯, 1983, 90-113쪽.

사례 중 특히 홍무년간 명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高麗, 朝鮮을 예로 들어 홍무제의 환관 외교와 그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Ⅱ. 洪武帝의 高麗·朝鮮에 대한 宦官 外交

본장에서는 먼저 명과 교류가 가장 많았던 고려와 조선의 예를 통해 명의 사신 중 환관들의 비중과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명과 고려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홍무 원년에 명에서 먼저 고려에 사신을 보내와 명의 건국을 알렸다는 것이다. 홍무 원년(공민왕 17년, 1368년) 12월에 보낸 사신은 北元과 나하추(納哈出)의 遼東 점거로 海路로 올 수밖에 없어, 이듬해 4월에서야 고려에 도달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홍무제는 1392년 고려 멸망까지 25년간 18차례의 사신을 보내왔다.

<표 1> 洪武年間 高麗 出使 使臣 一覽表

| 次數 | 國王年代 | 使臣姓名 | 官職 | 任務 | 出處 | 備考 |
|---|---|---|---|---|---|---|
| 1 | 恭愍王 18년 | 偰斯 | 符寶郎 | 璽書와 紗羅段匹 摠四十匹을 하사하며, 명의 건국을 알림 | 『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4, 18年 4月 壬辰條<br>『명 태조실록』 권34, 洪武元年 12월 壬辰條 | |
| 2 | 洪武 2년 | 金麗淵 | 宦者 | 幽燕의 백성 중 고려인 165명을 돌려보냄 | 『고려사』 권41, 「공민왕세가」 4, 18年 6月 丙寅條<br>『명 태조실록』 권40, 洪武 2年 4월條 | |
| 3 | 恭愍王 19년<br>洪武 3년 | 徐師昊 | 道士 | 고려의 산천에 제사 |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19年 4月 庚辰條<br>『명 태조실록』 권48, 洪武 3年 1월 庚子條 | |
| 4 | | 偰斯 | 尙寶司丞 | 고려의 조공에 대한 감사 |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19年 5月 甲寅條<br>『명 태조실록』 권43, 洪武 2年 8월 丙子條 | |
| 5 | | 栢禮 | 禮部主事 | 홍무제의 아들 책봉과 관련한 조서 반포하고, 科擧 程式을 보내옴 |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19年 6月 辛巳條 | |
| | | 卜謙 | 侍儀舍人 | | | |
| 6 | | 丁志 | 百戶 | 고려에 있는 명의 반군 陳君祥 무리의 반송 요구 |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19年 6月 辛巳條 | |
| | | 孫昌甫 | 百戶 | | | |
| 7 | | 夏祥鳳 | 秘書監直長 | 명의 神號를 고려에 통지 |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19年 7月 壬寅條<br>『명 태조실록』 권58, 洪武 3年 6월 癸亥條 | |
| 8 | | 孟原哲 | 中書省宣史 | 북원의 패퇴에 관한 조서 | 『고려사』 권42, 「공민왕세가」 5, 19年 7月 乙巳條 | |
| 9 | 恭愍王 | 延達廐失 | 宦者 | 元末 群雄 陳友諒과 明玉珍 | 『고려사』 권43, 「공민왕세가」 | 延達廐失里의 |

| | | | | | | |
|---|---|---|---|---|---|---|
| | 21년<br><br>洪武<br>5년 | 里<br>孫內侍<br>(이름<br>不明) | 前元<br>院使<br>內侍 | 을 패퇴시키고 사로잡은 가족들을 고려로 유배 보냄 | 6, 21年 5月 癸亥條<br>『명 태조실록』 권71, 洪武 5年 1월 乙丑條 | 성명은 『명 태조실록』에 延安答里로, 직관도 樞密使로 기록 |
| 10 | 恭愍王<br>23년<br><br>洪武<br>7년 | 林密<br>蔡斌 | 禮部<br>主事<br>孳牧<br>大使 | 貢馬 2000 마리 요구 | 『고려사』 권44, 「공민왕세가」 7, 23年 4月 戊申條 | 채빈은 후에 密直副使 金義에게 살해 |
| 11 | 禑王<br>5년<br><br>洪武<br>12년 | 任誠 | 鎭撫 | 고려가 포로로 잡아간 遼陽의 官民 송환 강요 | 『고려사』 권134, 「신우열전」 2, 5年 1月 乙亥條 | |
| 12 | 禑王<br>11년<br><br>洪武<br>18년 | 程與 | 百戶 | 遼東都司를 공격한 원인 추궁 | 『고려사』 권135, 「신우열전」 3, 11年 2月 丙申條 | |
| 13 | | 桑麟 | 不明 | 원말 유민 李朶里不歹 등 47명 귀환 | 『고려사』 권135, 「신우열전」 3, 11年 7月 戊戌條 | |
| 14 | | 張溥<br>段祐<br>周倬<br>雒英 | 國子監<br>學錄<br>行人<br>國子監<br>典簿<br>行人 | 공민왕에 대한 謚冊과 우왕에 대한 誥命 | 『고려사』 권135, 「신우열전」 3, 11年 9月條<br>『명 태조실록』 권174, 洪武 18年 7월 甲戌條 | |
| 15 | 禑王<br>14년<br><br>洪武<br>21년 | 王得明 | 百戶 | 鐵嶺衛 설치 通告 | 『고려사』 권137, 「신우열전」 5, 14年 3月條 | 李成桂의 威化島 回軍 |
| 16 | | 喜山<br>大卿<br>普化<br>金麗 | 前元<br>院使 | 貢馬와 閹人 요구, 北元 皇族의 제주도 유배 | 『고려사』 권137, 「신우열전」 5, 14年 12月條<br>『명 태조실록』 권196, 洪武 22年 4월 甲寅條 | 『명 태조실록』의 기록이 『고려사』보다 늦음 |
| 17 | 恭讓王<br>3년<br><br>洪武<br>24년 | 韓龍<br>黃禿蠻 | 前元<br>中政<br>院使 | 貢馬 1만 필과 閹人 200명 요구 | 『고려사』 권46, 「공양왕세가」 2, 3年 4月 壬午條<br>『명 태조실록』 권207, 洪武 24年 3월 己丑條 | |
| 18 | | 康完者篤 | 宦者<br>前元<br>承徽<br>院使 | 貢馬 1만 필과 閹人 200명을 채우기 위해 너무 무리하지 말 것 명령 | 『고려사』 권46, 「공양왕세가」 2, 3年 12月 甲子條 | |

李成桂는 恭讓王에게 禪讓받아 朝鮮을 건국하였다. 조선과 명의 관계는 '典型的 朝貢冊封關係'로 일컬어지며 수많은 방면에서 교류를 이어갔지만, 이 시기 즉, 건국초기에는 두 신생국 명과 조선간의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복잡・미묘한 외교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심지어는 戰雲이 감돌기까지 하였다. 홍무 26년(태조 2년, 1393년)부터 시작해 그가 눈을 감은 홍무 31년(태조 7년, 1398년)까지, 6년 동안 홍무제는 총 8회 사신을 조선에 출사하였다. 조선 초기 홍무제가 조선에 파견한 사신들은 아래와 같다.

<표 2> 洪武年間 朝鮮 出使 使臣 一覽表[10]

| 次數 | 國王年代 | 使臣姓名 | 官職 | 任務 | 出處 | 備考 |
|---|---|---|---|---|---|---|
| 1 | 太祖 2년<br>洪武 26년 | 黃永奇<br>崔淵 | 內史 | 三釁二侮로 조선을 詰責하는 詔書 | 『太祖實錄』 권3, 2년 5월 丁卯條 | 사신 모두 조선인 |
| 2 | | 高閪閪出 | 千戶 | 홍무 26년 2월 28일 진헌한 말 값을 지급하는 禮部의 咨文 말 9880필에 紵絲 9880필과 綿布 9880필 | 『明 太祖實錄』 권225, 홍무 26년 2월 癸巳條; 『태조실록』 권3, 2년 6월 庚辰條 | |
| 3 | | 金仁甫<br>張夫介 | 內史 | 左軍都督府의 咨文 | 『태조실록』 권4, 2년 12월 己卯條 | |
| 4 | 태조 3년<br>홍무 27년 | 盧他乃<br>朴德龍<br>鄭澄 | 內史 | 左軍都督府의 咨文 | 『태조실록』 권5, 3년 1월 壬子條 | |
| 5 | | 崔淵<br>陳漢龍<br>金希裕<br>金禾 | 內史 | 左軍都督府의 咨文<br>말 1만 필과 閹人 및 金完貴의 가족 압송 | 『明 태조실록』 권231, 홍무 27년 2월 甲午條; 『태조실록』 권5, 3년 4월 癸酉條 | 사신 모두 조선인 |
| 6 | | 黃永奇 | 內史 | 左軍都督府의 咨文,<br>명의 沿海를 약탈하고 염탐한 이들을 태조의 장남 혹은 차남에게 압송 명령,<br>海岳山川에게 告祭 | 『태조실록』 권5, 3년 4월 甲午條 | 사신 모두 조선인 |
| * | 태조 4년<br>홍무 28년 | 黃永奇 등 20인 | | 조선인 환관 黃永奇、李仁敬、申用明、辛興奇、金禾、鄭澄、金希裕、李原義、崔淵 등 20여 인 조선에서 사사로이 물품을 가지고 입궐하다가 발각되어 조선으로 송환됨 | 『태조실록』 권7, 4년 5월 癸卯條 | 조선인 환관이 명궁에서 쫓겨난 사건. |
| 7 | 태조 5년<br>홍무 29년 | 牛牛 | 尙寶司丞 | 홍무제의 政略結婚 제의 聖旨.<br>表箋文 사건 발발, 鄭道傳과 柳珣의 가족 압송의 禮部 咨文 | 『明 태조실록』 권243, 홍무 28년 12월 己酉條; 『태조실록』 권9, 5년 6월 丁酉條 | |
| | | 王禮<br>宋孛羅<br>楊帖木兒 | 內使 | | | |
| 8 | 태조 7년 | 張炳 | 禮部左侍郎 | 명의 조선 宦者 申貴生을 송환하는 禮部의 咨文 | 『태조실록』 권14, 7년 6월 戊辰條 | |
| * | 홍무 31년 | 陳綱<br>陳禮 | 不明<br>不明 | 홍무제의 訃音과<br>建文帝 登極의 禮部 咨文 | 『태조실록』 권15, 7년 12월 甲子條 | |

본장에서는 명대의 환관 외교가 홍무년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설로 삼아, 환관들이 실제로 얼마나 출사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홍무년간 환관의 고려·조선 출사 기록

10) 표1과 2는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明實錄』 등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한국측 기록과 중국측 기록 사이의 차이는 備考에 기입하였다. 左軍都督府에서 온 인원도 황제의 宣諭 등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신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史書에는 대부분 명확한 正使와 副使의 구분이 없어서 사서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입하였다. 표 2의 '*'는 명에서 온 사람이긴 하나 사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홍무제 사망 후 홍무제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온 사신으로서 홍무년간의 사신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들이다.

을 조사해 보았다. 위의 <표 1, 2>를 근거로 明使들을 宦官과 환관이 아닌 朝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 출사 명사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洪武年間 高麗·朝鮮 出使 使臣 區分

| | 고려 | 조선 |
|---|---|---|
| 기간 | 홍무 원년(공민왕 17년, 1368년)<br>- 홍무 24년(공양왕 3년, 1392년)<br>25년 | 홍무 26년(태조 2년, 1393년)<br>- 홍무 31년(태조 7년, 1398년)<br>6년 |
| 회수 | 18회 | 8회 |
| 조관 | 18명 | 2명 |
| 환관 | 10명 | 16명 |
| 불명 | 1명 | 0명 |
| 총계 | 29명 | 18명 |

위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홍무제는 홍무 2년부터 金麗淵이라는 고려 출신 환관을 고려에 출사하며 환관 외교의 장을 열었다. 홍무년간 고려와 조선에 출사한 환관 사신은 전체 47명중 절반 이상인 26명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不明으로 기록된 표1의 桑麟 역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임무를 통해 봤을 때 환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신의 인원수뿐만 아니라, 환관 使臣團의 출사 회수 역시 전체 사신 파견 회수 26회중 절반인 13회에 이르고 있다. 홍무제의 환관 출사는 이미 초기부터 시작했으나, 조선이 건국된 이후 홍무 말기에 들어서는 그 회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洪武年間 朝官·宦官 使臣 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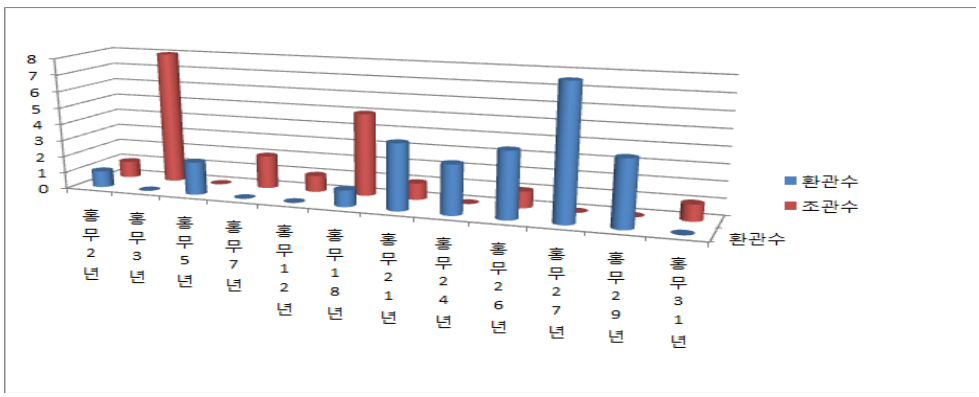

## Ⅲ. 洪武帝의 宦官 抑制와 그 實狀

위의 표 1, 2에서 볼 수 있듯이, 홍무제는 많은 환관을 외교에 활용했는데, 그 원인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인식처럼 그가 환관을 어떻게 억제했는지, 또 그 실상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듯이 홍무제는 漢 高祖 劉邦과 비슷하게 미천한 신분에서 출발해 皇位에 오른 인물이다. 이렇듯 힘겨운 과정을 겪어 帝位에 오른 홍무제는 어렵게 쌓아놓은 '朱家江山'을 千歲萬歲 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명대 수많은 제도들의 확립, 胡藍之獄 등을 비롯한 수많은 權臣들에 대한 兎死狗烹, 또 중국 역사상 마지막 宰相인 胡惟庸을 제거하고 새롭게 수립한 內閣制와 皇權强化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홍무제의 노력을 통해 명은 기반이 공고히 해져갔고, 이로서 특히 희대의 기이한 황제들[11]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77년, 16명의 황제로 중국 역사에서 그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존속했다.

이렇듯 명대의 많은 제도들은 홍무년간에 정착되어 갔고, 환관에 관한 제도 역시 이 시기 확립되어 갔다. 하지만, 홍무제의 환관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明末淸初의 史家들이 남긴 기록 때문이다. 正史인 『明史·宦官傳』의 기록, 그리고 王世貞의 『弇山堂別集』, 沈德符의 『萬曆野獲編』 등과 같은 많은 개인 筆記 등의 기록에 따르면, 명대의 멸망은 '宦官之禍'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영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환관이 득세하기 시작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한다. 반면, 홍무제는 환관에게 각종 정책을 사용하여 환관의 득세를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明史·宦官傳』에는 환관의 專橫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홍무제는) 鐵牌를 만들어 宮門에 두고 "內臣(환관)은 政事에 干預할 수 없고, 간예하는 자인 벤다"라고 하였다. (환관들의) 諸司에게 勅하여 文移로 往來하지 못하게 하였다.…… 대개 명대 환관의 出使, 專征, 監軍, 分鎭, 臣民의 隱事를 정탐하는 여러 大權은 모두 永樂年間부터 시작되었다.
>
> 처음에 太祖는 內臣(환관)이 책을 읽고 글을 아는 것을 不許하도록 정하였다. 후에 宣宗이 內書堂을 설치하고, 어린 內侍를 선택해 大學士 陳山에게 명하여 그들을 가르치게 하여, 점차로 제도로 정해졌다. 이로서 文墨에 통하고, 古今을 알아 그 지혜와 교묘함을 드러내며, 君主를 만나면 간사함을 행했다. 몇 대가 지나고 난 후, 세력이 쌓이고 무거워

11) 明 武宗 正德帝는 豹房을 만들어, 수많은 미녀들과 지내며 표범을 애완동물로 키웠다. 또 남방에 반란이 일어나자 자신이 朱壽라는 허공의 인물이 되어, 스스로에게 '鎭國公 總督軍務 威武大將軍 總兵官'이라고 봉하였다. 후에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는 것을 따라하다 강물에 빠졌고, 결국 병에 걸려 31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이 외에도 土木堡에서 포로로 납치되었다가 버려진 明 英宗, 불로장생을 꿈꾸다가 궁녀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明 世宗 嘉靖帝, 30여년간 정사를 돌보지 않았던 明 神宗 萬曆帝 등 명대에는 특히 기상천외한 황제들이 많았다.

져, 王振부터 시작해서 魏忠賢에서야 끝났다.[12]

위 『明史·宦官傳』의 기록에 의하면, 영락년간부터 환관들에게 권력을 주기 시작하였고, 宣德年間에 이르러 글을 알게 하고, 正統年間에 이르러 王振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환관들의 전횡이 시작되어, 명말 崇禎年間에서야 비로소 魏忠賢을 위시로 하는 閹黨을 처단하며 환관들이 일망타진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明史』의 편집자들은 명대 환관의 화를 일으킨 주범이 영락제였다고 여기며, 이와는 반대로 홍무제는 환관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한 漢唐의 몰락을 경계하며, 환관 세력을 억압했다고 여긴 것이다. 홍무제가 환관세력을 억제했던 행적은 『明實錄』에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

> 상(홍무제)께서 侍臣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역사로 전해져 오는 책을 보니, 漢과 唐의 말년은 모두 환관에 의해 부패하여 돌이킬 수 없었고, 이를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리들은 君主의 옆에서 매일 보며 가까워지고 조심스럽고 근면하게 일한다. 呂强과 張承業 같은 이들이 어찌 없겠는가? 하지만, 나라를 열고 이어가는데 소인배들을 쓰는 것을 성인들은 매우 조심하였다. 이들은 궁궐에서 청소, 심부름, 명령을 전달하는 데에만 써야 하는데, 어찌 정치에 干與하고 병사를 통솔하는가? 한과 당의 禍는 비록 환관의 죄라고 하지만, 역시 군주가 그것을 총애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환관을 부리는 자가 (환관이) 병사의 통솔과 정치 간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록 어지럽히고 싶어도 그가 할 수 있겠는가?"[13]

> 상(홍무제)께서 吏部에게 명하여 內侍 諸司의 官制를 정하시며 말씀하시길 "짐이 『周禮』의 기록을 보니 (환관이) 100명이 안 되었는데, 후세에 수천을 넘어, 결국 大患이 되었다. 지금 비록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역시 防止策을 세워야만 한다. 옛날에 이 무리들을 다스리는 것은 술과 젓갈을 담그고, 황제의 의복을 담당하던 司服과 묘지기 守祧의 몇 가지 일에만 머물렀다. 이제 짐 역시 부리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참작해서 그들(환관)을 부리며, 過多해서는 안 된다." 또 侍臣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무리들은 自古로 그 착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데에, 千百中에 한둘도 보이지 않는다. 귀와

---

12) (洪武帝) 嘗鐫鐵牌置宮門曰 : "內臣不得干預政事, 預者斬。"敕諸司不得與文移往來。……蓋明世宦官出使、專征、監軍、分鎭、刺臣民隱事諸大權, 皆自永樂間始。初, 太祖制, 內臣不許讀書識字。後宣宗設內書堂, 選小內侍, 令大學士陳山教習之, 遂爲定制。用是多通文墨, 曉古今, 逞其智巧, 逢君作奸。數傳之後, 勢成積重, 始於王振, 卒於魏忠賢。(『明史』 卷 304, 「宦官一」)

13) 上謂侍臣曰 : "吾見史傳所書, 漢、唐末世皆爲宦官敗亂, 不可拯救, 未嘗不爲之惋歎。此輩在人主之側, 日見親信, 小心勤勞。如呂强、張承業之徒, 豈得無之？但開國承家, 小人勿用, 聖人之深戒。其在宮禁, 止可使之供灑掃、給使令、傳命令而已, 豈宜預政、典兵？漢唐之禍, 雖曰宦官之罪, 亦人主寵愛之使然。向使宦者, 不得典兵、預政, 雖欲爲亂, 其可得乎？"(『明 太祖實錄』 卷31, 洪武 元年 3月 丙辰條)

> 눈으로 활용하려면 귀와 눈이 막힌다. 이를 心腹으로 하려면, 心腹에 병이 생긴다. 이들을 부리는 道는 단지 자주 훈계하고 그들이 法을 두려워하게 하며, 功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공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법을 두려워하면 檢束하게 되고, 검속하게 되면 스스로 감히 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14]

> 內使(환관) 등이 못된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며, 不道한 말을 꺼내는 자는 능지처참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있으나 숨겨준 자도 같은 죄이다. 그 일을 알고 있지만, 自首하지 않은 자는 벤다. 자수한 자는 銀 300량을 상으로 준다.[15]

위의 기사들은 홍무제가 환관을 어느 정도로 경계했는지, 그리고 환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기록들이 후대에 의해 濾過된 사료가 아니라, 홍무제의 당시의 행적을 기록한 編年體 史書인『明實錄』이라는 점이다. 이 점으로 보아 홍무제가 환관들이 글을 못 읽게 하고 鐵牌를 세워 환관의 정치 간여를 엄금했던 것 등, 환관세력을 다방면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억제하려고 했던 점이 사실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어렵게 皇位에 오른 만큼 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홍무제는 많은 노력을 했고, 역사의 鑑戒 속에서 답안을 찾으려 했다. 이로서 그는 漢과 唐의 말년에 환관들이 득세하며 亂政하였던 것을 보고 환관의 폐해를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위의『明實錄』기사에서 홍무제의 환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환관을 억제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을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과는 矛盾되게 환관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홍무제는 환관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다. 그는 呂强과 張承業[16]의 예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훌륭한 환관도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즉, 홍무제는 환관들을 활용하되 그 역할과 권한을 최대한으로 축소한

---

14) 上 (洪武帝) 命吏部定內侍諸司官制, 諭之曰："朕觀『周禮』所記未及百人, 後世至踰數千, 卒爲大患。今雖未能復古, 亦當爲防微之計。古時此輩所治, 止于酒漿醯醢, 司服守祧數事, 今朕亦不過以備使令。非別有委任, 可斟酌其宜, 毋令過多。"又故謂侍臣曰："此輩自古以來求其善良, 千百中不一二見。若用以爲耳目, 卽耳目蔽矣；以爲腹心, 卽腹心病矣。馭之之道, 但常戒敕, 使之畏法, 不可使之有功。有功則驕吝, 畏法則檢束, 檢束則自不敢爲非也。"(『明 太祖實錄』 卷44, 洪武 2年 8月 己巳條)

15) 內使等有心懷惡逆, 出不道之言者, 淩遲處死；有知情而蔽之者同罪；知其事而不首者斬；首者賞銀三百兩。(『明 太祖實錄』卷74, 洪武 5年 6月 丙子條)

16) 呂强(?-184)은 東漢 말기의 환관으로 한 靈帝에게 수차례 간언을 한 忠臣 환관이다. 張承業(846-922)은 唐末에서 五代十國 시기의 환관으로, 오대십국 중 後晋의 군주 李克用을 모셨으며, 이극용 사후 그의 어린 아들 李存勖을 보필하며 內治에 힘을 썼고, 군사를 이끌어 後梁을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후에 이존욱이 그의 간언을 듣지 않자 크게 울며 식음을 전폐하다가 晉陽에서 절명한 충신으로 알려져 있다.

다면, 환관들에 의한 禍에 의한 漢, 唐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환관의 역할을 청소, 심부름, 명령 전달, 술과 젓갈 담그는 등 황실 내부의 家事와 예전과 같이 황제의 의복을 담당하던 司服과 皇家의 陵墓를 지키던 守祧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홍무제는 환관에 의한 폐단이 그 이점을 훨씬 압도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홍무제는 '勤於政事'하여 환관들의 발호를 지속적으로 경계하였고, 홍무년간 환관의 발호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명 중기 이후 속출한 무능한 황제들은 홍무제와 같이 환관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환관들은 이 틈을 타고 그 세력을 伸張하게 되었다.[17]

둘째로, 홍무제는 환관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였지만, 그들을 '使令'하였다. 즉, 홍무제는 첫 번째 이유에서 환관에게 政治 參與와 兵權 등만을 엄금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겨, 황제 개인의 '심부름꾼'으로는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물론 심부름을 시키되 상황에 따라 환관을 부리고 과다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며, 連坐와 같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관의 활동을 제약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홍무제가 환관을 심부름꾼으로 활용했던 것은 환관들에게 숨통을 트여주어, 도리어 이들은 이 좁은 틈을 통해 세력을 늘려가게 되었다. 홍무제는 환관들을 명내의 藩國, 심지어는 외국에 出使시켜 그들에게 외교적 권한을 주었다. 그는 외교에서의 동아시아 전통사상 중 하나인 '人臣無外交', 즉 신하된 자는 외국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에 따라[18] 외국에 출사하는 사신을 단순히 외교 문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겨, 환관을 자주 출사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홍무제가 환관을 자주 외국에 출사했던 원인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이 홍무제는 환관의 禍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관의 발호를 막기 위해 그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환관이라는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하였고, 또 '심부름'에 한해서만 환관을 활용한다

---

17) 환관의 폐해와 관련하여 같은 동아시아문화권의 일본의 예가 독특하다. 일본은 隋唐 이래로 중국의 많은 것을 배워갔지만, 환관만은 배워가지 않았다며,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한다. 환관의 존재와 그 폐단에 관해서는 일본 학자 桑原騭藏가 그의 저서『東洋史說苑』에서 아래와 같이 자세히 피력하였다. "오직 우리나라(일본)만이 隋唐 이래로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광범위하게 채용했으나, 오직 宦官 制度만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는 실로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스텐트(Stent)는『중국의 환관』에서 東洋 諸國에 환관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다지 유행하지 않은 원인으로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에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이 야만적인 풍속에 물들지 않아 더욱 자랑스럽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선각자들의 사유와 변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환관들의) 지위를 낮추거나 엄격하게 관리하더라도, 환관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긴 세월 속에서 반드시 폐단이 나타나게 된다. 명청시기의 사실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桑原騭藏 著; 錢婉約、王廣生 譯,『東洋史說苑』, (北京, 中華書局, 2005), 135-143쪽)

18) 홍무제는 遼東의 邊將들이 고려와의 私的으로 외교하는 것을 엄금하였다.(爲人臣無外交, 爾等其愼之, (『明 太祖實錄』卷124, 洪武 12年 4月 庚申條))

고 하였다. 하지만, 이 심부름에는 외국에 출사하는 사신의 역할도 포함되었고, 명대의 환관들은 사실상 이미 홍무년간부터 이렇게 외교권을 가지면서 권한이 서서히 강력해져 갔다. 全淳東은 이러한 '宦官外交'가 환관의 권력을 강하게 하였다고 가정하였는데,[19] 필자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형적인 예로 조선에 출사했던 명의 환관 사신들을 들 수 있다. 조선은 명과 事大關係를 맺어, 조선에 오는 명의 환관 사신들을 天子를 대신하는 上國의 天使로 떠받들며 융숭하게 대접했다. 조선 초기, 조선 출신 명 환관 사신 黃儼, 尹鳳 등은 수많은 재물을 요구하였고, 그들의 가족에게 벼슬을 주길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는 자신의 고향마저도 승격을 요구하여 縣監(從六品)이 다스리는 지역을 縣令(從五品)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바꾸기도 하였다.[20] 이렇듯 명의 환관들은 외교를 통해서 권력이 모이기 시작했고, 홍무제는 자신의 바램이었던 환관세력의 억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다. 이에 대해 청대의 龍文斌이 말한 "스스로 그것을 금하고, 스스로 그것을 문란케 했다."[21]는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Ⅳ. 洪武帝의 宦官 出使 原因과 特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무제는 환관에게 제한된 역할만을 맡기고, 엄하게 다스리면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많은 부분의 권한을 엄금하였지만, 외국으로의 사신은 허락하였고, 이는 환관들의 권한 신장과 직결되었다. 사실 사신 출사와 관련하여 홍무제는 홍무 13년에 行人司라는 관서를 만들고, 明文으로 외국 출사를 이들에게 전담케 하였다.[22] 또 行人 외에도 翰林官, 給事中 등 많은 朝官들을 사신으로 활용하였다.[23] 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표 1, 2>에서 볼 수 있듯이 조관보다 환관이 더 많이 출사되었다. 환관 사신이 점점 늘어나면서 명의 환관 사신 출사에 대해 조선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졌고, 결국 조선뿐만 아니라 명 내부에서도 수차례 황제에게 환관

19) 全淳東, 「明初 宦官의 外交 活動 實態와 그 特性」, 『中國史硏究』(中國史學會)77, 2012, 110-111쪽.

20) 조선 역시 건국 초기 명과의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 속에서, 명의 사신으로 온 본국 환관들을 회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조선 초기, 조선 출신 명 사신과 그들의 행적에 관한 연구로 아래를 참고할 수 있다. 曹永祿,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 – 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 鄭同」, 『國史館論叢』(國史編撰委員會) 14, 1990, 107-134쪽; 鄭求先, 「鮮初 朝鮮出身 明使臣의 行跡」, 『慶州史學』(慶州史學會)23, 2004, 109-155쪽.

21) 自禁之而自紊之, ((淸)龍文斌, 『明會要』 卷37, 「職官十一 · 宦官」(北京, 中華書局, 1956), 697-699쪽)

22) 행인사는 조서의 반포, 외국 출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일에도 파견되었으나, 그 주요 업무는 외국 출사였다.("凡賚奉詔赦、奉使外夷、諭勞、賞賜、祭祀、徵聘賢才、賑濟軍務、整點軍馬等事,則遣之, 餘非奉旨,諸司不得擅差而行人之任重矣。"(『明 太祖實錄』 卷232, 洪武 27年 3月 戊申條))

23) 孫衛國, 「明代使臣述論」, 『廣東社會科學』(廣東社會科學院)第二期, 1992, 69-74쪽.

사신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奏請을 올리기에까지 하였다. 본장에서는 홍무제가 지속적으로 환관을 보내온 원인과 함께 홍무년간 환관 외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홍무제의 환관 출사 원인으로 첫 번째는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홍무제가 환관들을 '심부름꾼'으로 활용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환관 사신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더욱더 명확해진다. 위의 <표 1과 2>를 살펴보면 朝官 사신들의 주사명은 주로 명 황제의 詔書 반포와 고려·조선 임금에 대한 謚冊과 誥命, 金印 하사 등의 正式 外交 事案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처음으로 고려에 보낸 사신 偰斯의 임무는 명의 건국을 알리며 고려에 璽書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였다.[24] 홍무제가 왜 설사를 고려에 출사했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기록한 사료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해상으로 빈번하게 고려와 관계를 맺어오던 張士誠의 부하였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25]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아직 北元이 존재하고 많은 국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고려를 회유하기 위해 첫 사신 人選에 주의해 설사를 출사시켰으리라 생각한다. 당시 고려는 恭愍王의 집권으로 反元親明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홍무제는 그 이전에 고려와 원이 서로 通婚하던 '舅甥之好'의 밀접한 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 고려에 처음으로 출사하는 明使 설사는 위구르인으로, 그 친척들은 원말에 고려로 이주해 관직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며, 공민왕의 후대를 받고 있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볼 때 홍무제가 설사의 고려와의 인연에 착안하여 그를 사신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26]

조관 사신들의 사명이 정식 외교 사안이었다면 환관들의 사명은 일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황제의 '심부름'과 관련이 크다. 명 황제는 조선에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보통 환관을 보내왔고[27], 詔書보다는 황제의 구두 명령인 '宣諭'를 활용하였다.[28] 위의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홍무년간 환관 사신들은 주로 고려인을 돌려보내거나, 원말 群雄과 그 가족들을 고려에 유배 보내거나, 貢馬와 閹人 등을 요구할 때 주로 활용되었다. 앞서 표1에서 신원이 불분명했던 桑麟의 사명 역시 원말 고려 유민의 송환이었다. 桑麟의 임무 역시 이 시기 다른 환관들과 비슷한 걸로 보아 그의 신분 역시 환관일 가능성이 매우

---

24) 설사는 후에 吏部尙書에까지 오르는 이로, 조관 사신이다.

25) 李新峰, 「明前期赴朝鮮使臣叢考」, 『明淸論叢』(中國 故宮博物院, 北京大學歷史系)第四輯, 2003, 92쪽.

26) 麗末鮮初에 수차례 명에 출사하였던 偰長壽가 바로 설사의 친척이다. 조선 역시 명에서 吏部尙書를 맡고 있는 설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설장수를 출사하였고, 그를 통해 많은 명과의 복잡한 외교문제를 해결하였다.

27) 林常薰, 「明初 朝鮮 貢女의 性格」, 『東洋史學研究』(東洋史學會)122, 2013, 173쪽

28) 陳學霖은 홍무제의 선유를 통해 당시 황제의 포장되지 않은 일면을 분석했다.(「明太祖致高麗國王的白話聖旨」, 『明史研究論叢 (第八輯) ——明代詔令文書研究專輯』(北京, 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明史研究室, 2010), 55-68쪽)

크다. 홍무제는 비록 환관들을 외국에까지 출사시켰지만, 환관들의 이러한 사명은 그가 앞서 환관들의 업무를 "청소, 심부름, 명령을 전달하는 데"[29]로만 정해놓은 범위 안이었다. 홍무제는 이들이 황제의 심부름꾼으로서 황제의 명령만 잘 지킨다면 明內뿐만 아니라, 명의 外部까지도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듯 명에서 정식적인 외교사무가 아닌 일에는 환관을 보내는 관습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조선도 명의 관례에 익숙해져, 명의 사신 출사 목적에 따라 조관 사신인지 환관 사신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예로 中宗代에 嘉靖帝의 皇太子 탄생과 관련하여 명의 사신이 오는데, 조관인지 환관인지 불분명하여 혼란스러웠다. 조관이 사신으로 오면 준비할 물건이 적고, 환관이 사신으로 오면 그들이 요구하는 물건이 많아, 사신 접대의 기준을 조관과 환관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심하자, 중종은 단호하게 "우리나라 일은 즉 (조선 출신 명) 태감이 오고, 中原(명)의 일은 즉 문관이 온다."[30]라며, 황태자 탄생이라는 명의 大事를 알리러 사신이 온다는 점을 통해 이번 사신은 조관 사신이라고 단언하였다. 결국 중종의 추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져, 이번에 조선에 출사한 이는 후에 조선에서의 기행 경험을 바탕으로『使朝鮮錄』을 쓴 翰林院 修撰 龔用卿이었다.[31]

환관 출사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명 초기에는 전 왕조인 元의 舊習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홍무제는 명의 수많은 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실제로 명초 많은 제도들은 원의 것을 계승하였다.[32] 외교문서의 서식이나, 의례적인 요소, 실질적인 외교의 관례에서도 원의 것을 상당 부분 따랐다.[33] 이 뿐만 아니라, 원의 악습인 殉葬을

---

29)『明 太祖實錄』卷31, 洪武 元年 3月 丙辰條.

30) "我國事, 則太監來。中原事, 則文官來。"(『中宗實錄』 卷76, 28年 10月 戊寅條); "封太子, 則必朝官天使出來。"(『中宗實錄』卷76, 28年 10月 庚辰條)

31) 皇太子의 탄생으로 명에서 사신을 출사한다는 소식은 중종 28년에 처음 알려지지만, 실제로 龔用卿이 사신이 되어 조선에 온 시기는 4년 후인 중종 32년이다.(『中宗實錄』卷84, 32年 3月 癸巳條)

32)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去除胡風'과 '漢唐舊制'의 회복이 그 주요 骨幹이라고 여기고 있다. 장기간 이민족 몽골에게 통치당하며 뿌리 깊게 내려진 몽골족의 습관을 없애고(去除胡風), 이로서 변질되거나 사라진 한족의 정통을 세운다(恢復漢唐舊制)는 것이다. 元과 명을 성격이 크게 다른 왕조로 구분 짓고, 명과 淸을 설명할 때에는 청이 명의 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세운 왕조로 보아 '明淸時期'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현대 중국은 '統一的 多民族 國家'임을 주창하며 민족간의 화합을 중시하나, 90%가 넘는 漢族이 주민족이기 때문에, 한족 우월주의인 '大漢族主義'가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민족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민족인 몽골의 뒤를 이어 漢族 왕조인 명이 들어서자 元의 제도 등을 무시하고 다시금 한족의 정통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하고, 명의 뒤를 이은 이민족 왕조 淸이 명의 많은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대한족주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원과 명은 칼로 자르듯이 절단된 것이 아니고, 물처럼 이어진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로 원의 문화들이 희석 · 변모해 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 金暻綠,「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韓國史論』(서울大學校 國史學科)44, 2000, 1-54쪽; 정동훈,「명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려의 위상 - 홍무 연간 명의 사신 인선을 중심으로」,『歷史와

비롯하여, 황제 개인의 기호와 관련된 희귀한 조공품을 많이 요구했다. 사냥개와 海東靑, 그 밖에도 貢女와 火者 등 사람의 요구 역시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34] 원대 징발되어진 火者들을 원 조정에서 일하다가 고려에 사신으로 종종 출사하였고, 홍무제는 이러한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명 조정 내의 고려 출신 환관들을 조선에 출사하였던 것이다. 고려와 조선에 출사한 명의 환관들은 대부분이 고려인으로서 이 점 역시 원의 관습을 따른 것이었다. 이후에도 명은 조선에 지속적으로 환관들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징집되어 명에 간 환관들은 또 다시 사신으로 조선에 오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명 중기 이후, 자세히 얘기하면 成化 19년(成宗 14년, 1483년), 火者의 진헌을 완전히 중지함으로서 환관의 조선 출사 역시 그 수를 차츰 줄여가게 되었고, 이후 조선에 온 명의 환관 사신 역시 조선 출신이 아닌 明人이 대부분이었다.[35]

세 번째 원인으로는 홍무제가 朝臣을 不信하였기 때문이다. 홍무제는 지속적인 황권의 강화를 위하여 錦衣衛라는 특무기구를 설치하여 신하들을 감시하였다. 금의위는 자유로이 체포, 심문, 고문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당시 臣權 약화에 매우 효율적이었다. 여기에서 더욱 재미있는 것은 금의위의 長이 바로 환관이었다는 것이다. 이 원인은 앞서 설명했듯이 홍무제가 환관을 자신 개인의 신하인 私臣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홍무제는 환관을 궁궐 내에서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는, 즉 집안 노비와 같은 존재인 內臣으로 여겼고, 자신이 제대로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조신들은 내신에 반대되는 外臣으로서, 황권강화를 위해 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또한 조신들의 외국어 실력에 대한 불신 역시 환관을 외국에 자주 출사했던 주요한 원인이었다. 홍무년간 고려와 조선에 출사한 환관 사신의 대부분은 원대에 징집되어간 고려 火者들로서 당연히 모국어인 한국어에 精通해 있었다. 이에 반해 사신 출사를 전담했던 행인사의 관리들은 과거 출신으로 그들의 외국어 실력은 고려 또는 조선 출신 환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행인들이 외국에 가서 황제의 사사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이에 현지 출신 환관을 출사시켰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원인으로 홍무제가 상대국에 대한 예우로서 환관을 출사했다는 것이다. 고려, 조선의 명 환관 사신에 의한 폐해와 그로 인한 불만은 이미 앞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

現實』(韓國歷史硏究會)89, 2013, 124쪽

34) 林常薰, 「明初 朝鮮 貢女의 性格」, 『東洋史學硏究』(東洋史學會)122, 2013, 174쪽

35) 曹永祿은 成化 19년보다 더 이후인 嘉靖 이후부터 조선의 화자 진헌을 중지시켰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曹永祿,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 – 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 鄭同」, 『國史館論叢』(國史編撰委員會) 14, 1990, 110쪽) 실제로는 成宗 14년(成化 19년, 1483년) 10월 辛酉에 小宦 林璉 등 19명을 명에 보낸 이후로 명에 환관을 보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성종실록』 권159, 14년 10월 辛酉條)

것이 실은 홍무제가 고려와 조선을 우대하여 환관을 보냈다는 것이 의외이다. 먼저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 고려 왕 王顓(恭愍王)은 朕이 즉위한 이래로 신하라 칭하고 조공을 바쳐 짐은 항상 그를 성심껏 대우해 三韓의 사람을 사신으로 많이 써 그를 편안케 했다.[36]

> 三韓의 왕자와 왕손은 지금 나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있어 (나는) 성심껏 대우했다. 무릇 삼한에 출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지방 사람 환관이 가게 했고, 짐의 뜻은 바로 성심성의에 있다.[37]

위의 두 기사에서 홍무제가 고려를 우대하여 고려 출신 환관을 보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고려를 "편안케"하고, 자신의 "성심성의"를 전달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이다. 홍무제가 고려에 고려 출신 환관을 출사한 원인은 환관을 자신의 '私臣'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홍무제는 환관들이 곁에서 자신을 보필하는 최측근, 즉 親信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중과 황궁의 속사정을 잘 파악하여, 황제의 뜻을 숨김과 거짓 없이 고려에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여겨 이들을 자주 출사했던 듯하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 당초, 내가 즉위한 후에 너희 나라 원나라 火者 관인(宦官)을 파견하여 왕을 방문케 하였다. 그(환관)가 너희 사람이라, 이곳의 숟가락과 밥그릇이 크고 작은 것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 나는 너에게 상세히 말해 주려고만 생각했지만, 이 화자(홍무 5년 사신 孫內侍) 하나를 죽이고, 후에는 또 국왕(恭愍王)도 시해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38]

여기에서 홍무제가 환관을 자신의 '심부름꾼'이자 '私臣'으로 여겨,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고려와 通好하기 위해 환관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홍무제가 상대국을 우대하기 위해 환관을 출사시킨 用心은 결국 조선에서도 중기에 이르러 알게 된다. 아래 기사는 명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독 조선에만 환관을 보내는 것이 실은 자신을 우대한다는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 許筠이 말하기를, "皇上(嘉靖帝)이 등극하고 皇長子가 탄생하여 본국에 詔書를 반포하는

---

36) 高麗王王顓, 自朕卽位以來, 稱臣入貢, 朕常推誠待之, 大要慾使三韓之人, 擧得其安(『明 太祖實錄』 卷170, 洪武 18年 正月 戊寅條)

37) 三韓王子、王孫, 今善貢於我, 卽推誠以待. 所以, 凡使三韓者, 必土人閹者行, 朕意正在推誠.(『高麗史』 卷136, 「辛禑列傳」4, 12年 7月條)

38) 當初, 我卽位之後, 便差那裏土人元朝火者官人, 每去動問王。只想他是姊士人, 我這裏匙大椀小都知道, 交仔細說與姊, 不想把一箇火者殺了, 後頭王又弒了。(『高麗史』 卷136, 「辛禑列傳」4, 13年 5月條)

> 데에는 翰林이나 科道를 사신으로 쓰고 事故가 있으면 혹 郎署나 行人을 쓰며, 弔祭에도 行人을 쓰며, 본국에서 왕을 봉하거나 세자를 봉하면 內官을 쓰는데, 내관이 조서를 받들고 오는 것은 큰 恩典이다. 중국에서 親藩을 봉하는 데에도 내관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보낸다고 한다."[39]

비록 고려와 조선에서는 환관 사신에 의한 폐단이 속출하고 그 피해가 막심해 조관 사신의 출사를 강력히 원했지만, 홍무제의 환관 사신 출사는 실은 이처럼 상대국을 우대한 처사였다.

## Ⅴ. 맺음말

'宦官의 禍'는 明亡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明史·宦官傳』을 포함한 많은 史書들은 명대 환관의 跋扈가 永樂帝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영락제와는 반대로 홍무제는 환관을 억제하였다고 칭송받아왔다.

명대는 중국 역대 왕조 중 가장 무능한 황제들이 많았던 시기였으나, 景泰帝와 泰昌帝를 포함한 16명의 황제로 277년간, 그래도 중국의 역대 왕조 중 비교적 장수한 왕조였다. 그 이면에는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國初에 홍무제가 쌓아놓은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홍무제가 정립한 명의 여러 제도와 마찬가지로 환관 제도 역시 홍무년간에 정착되어 후대에 계승·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환관 발호의 기점이 영락제가 아니라 실은 홍무제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의구심에서 명과 가장 빈번한 교류를 이어오던 고려와 조선의 예를 들어 홍무제의 환관 외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홍무제는 국초에 명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환관 문제에 주의하였고, 이들을 억제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았다. 정치 간여를 엄금하고, 글을 못 읽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홍무제는 환관의 존재 가치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아, 이들을 '使令' 즉, '심부름꾼'으로 활용하고 엄하게 다스리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겼다. 또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사상인 '人臣無外交'에 따라 사신을 그저 황제의 조서와 선유를 전달하는 역할로 여겨, 이러한 '심부름'을 환관들에게 많이 맡겼던 것이다. 이렇게 홍무년간 환관들은 외국 출사를 통해서 점점 권한을 축적해 나갔고, 후대의 무능한 황제들이 속속 등장하는 과정에서 득세하게 되었다. 결국 홍무제는 자신이 환관

---

39) 許筠曰 : "皇上立極、皇長子誕生, 頒詔于本國, 用翰林、科道。有故則或郎署行人, 吊祭亦用行人。本國封王、封世子則用內官。內官奉詔是大恩典, 中國親藩之封, 亦不許內官, 而我國獨得之。"云。(『增補文獻備考』卷174, 「交聘考」4)

을 옭아맸으면서도 환관을 풀어주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홍무제가 환관을 사신으로 출사했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원인으로 홍무제가 환관들을 '심부름꾼'으로만 활용하는데 사신의 역할이 포함되었던 것을 살펴보았다. 홍무제는 심부름의 역할 반경 안이라면 명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환관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여겨 詔書의 頒布 등과 같은 정식적인 일 이외에 貢馬와 閹人 등 개인적인 일일 경우 주로 환관을 출사하였다. 둘째로 홍무제는 비록 元의 舊習 打破를 기치로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원의 관습을 따랐다. 명초에 존재했던 殉葬이라든지, 貢女・火者의 진헌 등이 바로 이런 예인데, 환관 출사 역시 원의 구습을 그대로 계승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홍무제가 朝官들을 不信하였던 것이다. 홍무제는 황권 강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환관을 首長으로 둔 錦衣衛를 동원해 신하들을 탄압했다. 이 반면에 환관들은 궁궐이라는 자신의 저택에 사는 노비, 즉 內臣으로 여겨 권한을 주지 않고 엄하게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들을 적극 활용하였던 것이다. 홍무제가 환관을 사신으로 보냈던 마지막 이유는 고려와 조선이 명의 환관 사신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과는 반대로 홍무제는 오히려 고려와 조선을 우대하여 환관을 사신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황제의 최측근으로 황제의 의중과 궁내의 사정을 잘 아는 환관을 출사한다면, 자신의 뜻을 성심성의껏 전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본문은 명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환관의 발호와 그 始原을 살펴보기 위해, 홍무제의 환관 출사와 그로 인한 환관 세력의 伸張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무제의 환관 출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주장해왔던 환관 억제와 그와 상반되는 환관 중용을 살펴보았다. 홍무제 역시 완벽하게 환관을 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환관에게 발호의 기회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한계로 환관의 출사와 이들의 명 내부에서의 직접적인 권력 신장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쉬우나, 고려와 조선에서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명 내부에서도 충분히 권력을 축적해 나갔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본문의 한계점을 더욱 보완하기로 하며, 환관 외교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는 永樂年間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 國內 所藏 滿文 文書에 대하여

洪 性 鳩(慶北大)

목 차

1. 국내의  만문 문서 소장 상황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서
3. 규장각 및 장서각 소장 문서
4. 국립중앙도서관 및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장 문서
5. 결론

## 1. 국내의  만문 문서 소장 상황

과문한 탓이겠지만, 관견으로는 국내 소장 만문 문서를 일괄해서 정리해 놓은 논고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문학계에서 만주어 학습서와 사전류에 관해 소개해 놓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밖의 만문 문헌 및 문서 자료의 소장 상황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놓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

사실 조선과 청조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면, 적어도 외교 문서로서의 만문 문서는 상당수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조는 공식 문서를 대부분 滿漢合壁로 작성하였으므로 조선에서 접수한 청조의 공식 외교 문서도 역시 상당수가 만한합벽 문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현재 국내에 보존되어 있는 만문 문서의 수량은 극히 적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남아있는 조선과 청 사이에 오고 간 문서는 절대 다수가 청대 후기(근대 이후)의 것이고, 이것들은 실무 기관 간에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고받은 문서이므로, 만문으로 작성된 문서는 거의 없는 것 같다.[2)] 이와 관련하여 청조와 조선 사이의 외교 문서에서 만문을 어느 시기까지, 어떤 문서에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살펴 본 바로는, 주로 황제가 발급한

1) 근래 서울대 김주원 교수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을 조사하여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김주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2, 2012)

2) 駐朝鮮淸國公使館과 조선 정부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문서가 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72; 『駐朝鮮使館檔案』, (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檔案館 所藏; 『舊韓國外交文書』「淸案」,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所藏 등등)

문서와 황제를 수신자로 하는 문서는 만한합벽으로 제작되거나 혹은 이후에 만문 번역이 첨부되었지만, 현안을 다루기 위해 실무 기관 간에 주고받은 平行 문서(咨文 등)는 주로 한문으로 작성된 것 같다. 그래도 책봉조공과 관련하여 의례적으로 주고받은 문서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한합벽 문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파손 또는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외교문서에 관한 업무는 承文院이 담당하였고, 문서 원본의 보관에 관한 책임도 역시 승문원에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외교 문서를 藏書閣에서 보존하였는데, 英祖46년(1770)에 詔勅을 보존하기 위해 慶熙宮에 敬奉閣을, 昌慶宮에 欽奉閣을 세웠다. 또 冊封誥命은 正祖 이전에는 珍藏閣에 보존하였으나, 정조9년(1785)에 奉安閣에 옮겨 보존하였다.[3]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외교문서의 보관은 중요한 국가 업무였고, 특히 황제가 발급한 문서의 보존에는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내용을 참고하고 활용하기 위해 원본과는 별도로『同文彙考』와 같은 謄錄類의 책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 왕조에 의해 청조에서 발급한 외교문서가 고의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다. 다만, 대한제국의 성립은 청조에 대한 자주와 독립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무렵을 즈음해서는 정부 차원의 모종의 조치가 취해졌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 이 밖에도 6.25 당시 부산으로 소개되었던 문화재가 1954년 12월 26일 발생한 부산 광동동 대화재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을 때 함께 소실되었을 가능성[4], 또는 6.25 전란의 와중에 서울에서 분실되었거나 북한군에 의해 북한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5]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는 몇몇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약간 만문 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국내 소장 만문 문서를 조사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만문 문서를 실물 조사하였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도 만문 문서가 최소한 1건 이상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6] 이 문서들은 전시회나 연구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것도 있지만, 이 중 4건의 문서는

---

3) 김경록,「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 · 보존체계」,『한국사연구』136, 2007, p.150.

4)『경향신문』1954.12.31. 3면 기사,「國寶等을 燒失?-釜山火災에 關係側急遽向釜」참고.

5)『경향신문』1972.2.14. 5면 기사,「眞相 안 밝혀진채 亡失 처분된 藏書閣 李朝 실록」및『동아일보』1979.2.12. 5면 기사,「북한「朝鮮王朝實錄」所藏說」기사 참고. 후에 장서각에서 보관하던 赤裳山本 실록을 1950년 7월 북한군이 옮겨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문화재 관리 실태를 미루어 6.25 당시와 그 후 일정 시기는 구황실 유물의 수난시대였다.

6)『경향신문』1964.3.24. 4면 기사,「진짜냐? 가짜냐? 國璽 찍힌 國書」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박물관에 金榮國 교수 소장의 청나라 誥文(1697년 청국 황제가 신하에게 준 敍勳狀)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 유물은 당시 창덕궁에 전시된 영조의 왕세제 책봉 고명과 국왕 책봉 고명(【표】의 4, 6 문서와 동일 문서로 추정됨)의 진부를 판단하는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또『동아일보』1970.12.1. 5면 기사,「「康熙帝 詔諭」발견」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崔鶴根 교수가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철에서 "강희24년(1675) 12월 강희제가 乾隆의 東宮 封立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詔諭"를 발견했다고 전하면서, 이 밖에도 '咨文 등 만문 자료가

본고에서 처음 소개하는 자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 소장 만문 문서를 소개하고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약간의 문제를 초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국내 소장 만문 문서 목록

| 번호 | 소장기관 | 자료명칭 및 자료정보 | 작성연대 | 비고 |
|---|---|---|---|---|
| 1 | 國立中央博物館 | 朝鮮國王李玧奏謝表 | 道光7年(1827) 10月28日 | 구2487 |
| 2 | | 朝鮮國王李昇奏謝表 | 咸豊2年(1852) 10月27日 | |
| 3 | 서울大學校 奎章閣 | 皇后黑舍里氏崩逝勅諭* | 康熙13年(1674) 5月26日 | |
| 4 |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 李昤(英祖)封王世弟誥命 31×460㎝ | 康熙61年(1722)4月10日 | |
| 5 | | 王世弟冊封禮物單子 | 康熙61年(1722)4月10日 | 1의 부속문서 |
| 6 | | 李昤(英祖)封王誥命 31×450㎝ | 雍正3年(1725)1月22日 | |
| 7 | | 諭朝鮮國王書 | 雍正3年(1725)1月22日 | 3의 부속문서 |
| 8 | | 朝鮮國王冊封禮物單子 | 雍正3年(1725) 1月22日 | 3의 부속문서 |
| 9 | | 李緈(眞宗)封王世子誥命 31×452㎝ | 雍正3年(1725) 9月23日 | |
| 10 | | 王世子冊封禮物單子 | 雍正3年(1725) 9月23日 | 6의 부속문서 |
| 11 | 國立中央圖書館 | 賴都授通議大夫誥命 30.5×325.2㎝ | 康熙52年(1713) 3月18日 | 奉天誥命 古3-73-2 (10885號) 1冊 貴305 |
| 12 | | 佟時茂母黃氏贈淑人誥命* | 康熙52年(1713) 3月18日 | 康熙雍正兩帝下賜敎勅 古6-21-2 2冊 貴284 |
| 13 | | 佟時茂父佟賦斌贈光祿大夫, 母石氏, 生母黃氏贈一品夫人誥命* | 雍正13年(1735) 9月3日 | |
| 14 | 大邱가톨릭大學校 博物館 | 海蘭察晋封一等超勇公誥命* 31.8×691.4㎝ | 乾隆57年(1792) 9月3日 | 사령장 2268 |
| 15 | 高麗大學校圖書館 | 甲辰增廣別試譯科初試白完培試券[7] | 憲宗11년(1844) | |

*표는 본고에서 처음 소개되는 문서임.

국립도서관에 몇 건, 서울대 도서관에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문서를 조사할 때에도 위 기사에서 언급한 「康熙帝 詔諭」는 찾을 수 없었고, 그 밖에 咨文 등의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다.

7) 이 자료는 현존하는 유일한 만주어 譯科 試券으로, 조선시대 역관의 만주어 교육과 시험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물 자료이다. 하지만 시험 답안지이므로 발급자와 수신자가 명확한 행정적인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참고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이에 관해서는 鄭光, 『朝鮮朝 譯科 試券研究』, 大東文化研究院, 1990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참고.

##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서

【표】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 2 문서는 朝貢 儀禮에 따라 조선 국왕이 청 황제에게 보낸 表(文)이다. 유물 관리를 담당하는 學藝官의 설명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구입한 유물이라고 하는데, 그 전의 소장 상황에 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다. 1문서는 도광6년(1826) 3월 27일 臺灣에 표류한 전라도의 高元三 등 9인을 돌려보내 준 것에 대하여 조선의 순조가 청의 도광 황제에게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고, 2문서는 함풍2년(1852) 도광제의 신위를 太廟에 合祀하는 의식을 거행한다는 사실을 조선의 사은사를 통해서 알려온 것에 대해서 조선의 철종이 청의 함풍 황제에게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다.[8]

명청시대의 表는 王公百官과 文武大臣 및 朝貢 各國이 황제의 생일이나 元旦, 冬至 등 기념일과 명절에 慶賀 및 感謝의 뜻을 담아 보내는 문서이다. 表는 황제와 황태후를 대상으로 한 문서이고, 황후를 대상으로 한 문서는 箋이라고 하였다. 表와 箋은 문서 수신자의 지위가 다를 뿐 같은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흔히 表箋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듯 표문은 그 자체로서 외교문서는 아니지만, 조공국의 군주(왕)가 황제에 보내는 경우에는 외교문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며, 조선에서는 事大文書로 인식하였다.

조선에서 중국에 발송하는 사대문서에는 表文, 箋文 외에도 奏文, 咨文 등이 있었다. 각각 문서의 형태와 크기, 글자의 크기와 모양, 문장의 형식과 내용 등 文書式이 정해져 있었다. 문서식에 관해서는『欽定大淸會典事例』卷318 禮部, 表箋[9]에 상세하다. 순치 연간은 표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 정비되어 가는 과도기였는데, 대체로 萬壽・元旦・冬至(혹은 長至)의 三大節에, 5品 이상의 直省의 文武官이, 內閣에서 작성하여 頒發한 표문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정해졌다.[10] 하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강희44년 이전까지 정해진 문서식에 따라 표문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 같다.『同文彙考』原編 卷35, 表箋式에 수록된 禮部 咨文「(乙酉)禮部頒三節表式咨」[11]에 따르면, “강희44년 2월 초3일 太學

---

8) 내용에 관해서는 愛新覺羅 烏拉熙春이 만문 부분을 로마자로 전사하고, 한문 원문을 초록하여『朝鮮王朝實錄』과『淸實錄』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1문서와 관련된 내용은『淸宣宗實錄』도광6년 12월 병인; 을해; 도광7년 12월 기해조 및『朝鮮純祖實錄』순조26년 冬10월 을해; 12월 경술; 순조27년 2월 정묘; 冬10월 경자조를 소개하였고, 2문서와 관련된 내용은『淸文宗實錄』함풍2년 4월 계미; 8월 병오; 9월 무신삭조 및『朝鮮哲宗實錄』철종3년 6월 경인; 10월 을미조를 소개하였다. 愛新覺羅 烏拉熙春・吉本道雅,『韓半島から眺めた契丹・女眞』下編, 第4章(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1), pp.225~226.

9)『欽定大淸會典事例』12, 新文豊出版公司 印行, pp.9320~9337.

10)『欽定大淸會典事例』卷318 禮部,「表箋」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용을 보충하면, 三大節의 表箋式은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정해졌다. 그리고 강희 연간에 황태자의 立廢가 거듭되면서 황태자에 대한 箋式이 시행되다가 정지되기도 하고, 건륭제가 太上皇帝에 오름에 따라 太上皇帝의 三大節에 대한 表式이 새로 제정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표전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士 馬[12] 등이, 各省 督撫의 慶賀表箋은 모두 頒給한 定式이 있는데 다만 조선국이 陳奏하는 表箋만은 매년 文辭를 바꾸어 撰進하는 까닭에 字句 간에 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선국도 또한 마땅히 在京 諸王大臣과 各省 督撫처럼 定式을 頒給할 것을 口頭로 陳奏"하였고, 이 건의가 禮部의 의논을 거쳐 시행됨으로써 조선도 三大節에는 내각이 작성하여 頒發한 문서식에 따라 표전을 제작하였다.[13]

『同文彙考』에는 청조에서 조선에 반급한 「太上皇帝萬萬壽表」와 「太上皇帝長至表」를 문서식을 그대로 轉載하고 있는데, 이것을 『欽定大淸會典事例』에 수록된 式과 비교하면 글자의 異同이 약간 있고, 擡頭에도 두 군데의 異同이 있다. 擡頭는 表文의 성격 상 당시 외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례였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지 않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同文彙考』가 이 부분의 轉載에 작아 보이지만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14]

비슷한 예로 조선 자료인 『通文館志』 事大上, 「文書封進」에도 문서식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表箋의 경우에는 帖의 형태로 副本을 만들고 매 帖마다 6行 20字를 쓴다고 하였다. 이 규정을 1, 2문서에 적용해보면, 帖의 형태로 되어 있어 1, 2문서가 正表가 아닌 副本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覽王奏謝知道 勅該部知道"라는 황제의 朱批가 쓰여 있는 겉면에 '表副'라는 글자가 있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15] 그런데 2문서의 경우는 『通文館志』의 설명과는 달리 한 帖에 6行 21字가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실제 문서는 문서식의 규정과는 달리 작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6]

---

11) 『同文彙考』 1, 국사편찬위원회, p.672.

12) 太學士는 大學士를 표현하는 것이고, '馬'는 당시 武英殿 大學士 馬齊를 가리킨다.

13) 관련 기사를 『淸聖祖實錄』 卷219 康熙44年 2月 乙亥(11日)條와 『欽定大淸會典事例』 卷318 禮部, 表箋, 「進表箋事宜」의 康熙44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欽定大淸會典事例』 12, 新文豊出版公司, p.9326) 『同文彙考』의 해당 기사와 비교하면 간략한 편이다.

14) 擡頭의 격식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예를 아래에 소개한다. 謝恩使 昌城君 李佖 등이 鳳凰城에 돌아와서 馳啓하였다. "淸人이 우리나라의 表文 · 箋文 가운데에 있는 稱謝라는 말의 '謝'字가 한 곳에서는 連書되고 한 곳에서는 特書되었으므로 크게 詰責하였고, 또 禮部의 咨文 가운데에 있는 原旨는 너그러이 벌을 면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表文 가운데에 聖旨를 말한 것은 '金 1만 兩으로 減罰한다'로 적었으므로 성지를 말한 것이 원지와 맞지 않는다 하여 使臣에게 진술시키고 갖가지로 操縱하며 장차 살펴서 밝힐 것이라고 뇌물을 요구하였는데, 5천 냥으로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조선숙종실록』 숙종8년 1월 을묘).

15) '表副'의 '副'字 위에 만문 'coohiyan gurun i wang ni doron', 한문 '朝鮮國王之寶'라는 滿漢合璧의 御寶가 찍혀있어, 글자의 존재를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副'字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6) 李光濤, 『明淸檔案論文集』(聯經出版事業公司, 1986)에 수록된 「朝鮮國表文之硏究」, pp.902~903에서 '乾隆二十九年內閣典籍廳收文檔'의 내용을 분석하여 황제의 朱批는 正表의 封面에 작성하였고, 부본에는 '俱例不票簽'이라고 하여 朱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1, 2문서는 모두 副本임에도 朱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문서식의 규정과 실물 문서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李光濤는 위의 책, p.916에서도 印寶의 위치와 관련하여 문서 규정과 실물 문서

그리고 1, 2문서는 모두『同文彙考』에서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문서는「謝漂民出送表」[17]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역시 글자에 약간의 異同이 있고, 조선 국왕의 諱가 나오는 부분과 '皇帝陛下' 4字가 빠져 있으며, 예부 자문을 인용한 부분이 대거 생략되어 있을 뿐, 내용은 거의 같다. 그런데 2문서의 경우에는「賀祔廟表」[18]라는 제목으로 전재되어 있지만, 동일 문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同文彙考』의 기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19] 원본 문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또한 1, 2 문서는 모두 滿漢合璧 문서이지만, 언뜻 보아도 한문 부분 종이의 색과 질이 만문 부분의 그것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문 부분은 조선에서 작성하여 발송한 副表의 원문이고, 만문 부분은 청조에서 문서를 접수한 후에 만문으로 번역하여 어람용으로 제작하여 원문에 덧붙인 것이다. 1, 2문서에는 번역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표기되어 있다. 1문서에는 만문 부분 뒷면에 bešan akui, canghing kingde라고 쓰여 있고, 2문서의 만문 부분 뒷면에도 cingga kingšeo, gifu ?-ng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대해서 愛新覺羅 烏拉熙春는 한문으로 百總 阿奎, 長慶, 慶德, 그리고 靑噶, 慶壽, 吉福 □□ 라고 음역하고, 百總은 관직명이며 阿奎, 長慶, 慶德 3인과 靑噶, 慶壽, 吉福 □□은 아마도 百總의 지위를 가지고 만문 번역을 담당할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20]

그렇다면 조선에서 보낸 표문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번역되었을까? 문서 행정과 관련하여 공문서 접수와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大淸會典』이나『大淸會典事例』 등에는 표문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奏本, 특히 通本의 처리 과정을 통해 조선에서 보낸 表文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21] 우선 외국의 貢使가 북경에 도착하면 정해진 儀禮에

---

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17)『同文彙考』4, 국사편찬위원회, p.3559.

18)『同文彙考』3, 국사편찬위원회, p.2687.

19) 2문서가 가짜라면 모르거니와『同文彙考』의 문서 초록의 정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 愛新覺羅 烏拉熙春은 bešan은 beson으로, canghing을 cangking으로 전사하였다.(앞의 책, p.227) 수차례 확인하였지만 愛新覺羅 烏拉熙春의 전사가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akui로 전사된 부분도 angui로 읽혀지나, 만주어에서 ng- 다음에 오는 음은 반드시 g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angui 역시 정확하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愛新覺羅 烏拉熙春의 전사를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bešan(beson)을 百總이라고 번역한 근거, 인명을 각각 阿奎, 長慶, 慶德, 靑噶, 慶壽, 吉福□□ 등으로 音譯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만문 번역을 담당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한 부분은 만문 부분 뒷면 끝에 쓰여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1) 보통 奏本은 通本과 部本으로 나뉘는데, 通本은 各省의 將軍, 督撫, 提鎭, 學政, 鹽政, 順天 · 奉天府尹, 盛京五部 등이 通政司를 통해 內閣으로 보내는 문서이고. 部本은 在京의 各部 · 院 · 府 · 寺 · 監의 衙門에서 六部를 통해 접수하는 문서이다. 部本은 모두 滿漢合璧 문서이므로 번역할 필요가 없지만, 通本은 漢文으로 작성되고 滿漢合璧 문서가 없으므로 漢本房에서 奏本의 요약본인 貼黃을 滿文으로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따라 禮部에 表를 제출하고, 다음 날 禮部에서는 奏文을 갖추어 內閣으로 보낸다.[22] 이후 內閣에서는 漢本房으로 보내 滿文으로 번역하고, 만문 번역의 草本을 滿本房으로 보내어 교열을 받은 다음 만문 正本을 작성하여 한문본의 뒤에 첨부한다. 이것을 漢票籤處로 이송하면 여기에서 漢文 奏本에 근거하여 한문 草籤을 작성하고, 다시 滿票籤處로 보내어 滿文 奏本에 근거하여 滿文 草籤을 작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奏本과 草籤은 內閣大學士의 확인을 거쳐 滿·漢票籤處에서 正籤을 작성하고 內閣大學士가 畫押한다. 이것을 滿票籤處에서 批本處(紅本房)으로 보내면, 다시 內奏事處로 이송하고 奏事太監이 황제에게 올려 御覽하게 한다. 御覽 후 正籤대로 批答이 결정된 문서는 다시 거꾸로 內奏事處를 거쳐 批本處로 이송되는데, 여기에서 滿文籤에 따라 滿文 부분에 滿文으로 批答을 베껴 쓰고, 다음 날 內閣의 典籍廳에서 漢文籤에 따라 漢文 부분에 漢文으로 批答을 베껴 쓴다. 이 문서를 收發紅本處(紅本處 혹은 收本房)에서 접수하여 六科로 이송하는데, 六科에서는 原本을 보관하고 副本 2부를 더 베껴 제작한다. 그 중 하나를 史書라고 하는데 후에 內閣에서 보존하고, 다른 하나는 錄書라고 하여 해당 科에서 보존한다. 原文은 연말에 內閣에 제출하면 紅本處에서 紅本庫에 보존한다.[23]

그러나 三大節 表箋의 경우에는 정해진 문서식이 있고 의례적인 내용이므로 별도의 번역 작업이 거의 필요 없으며 또한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1, 2문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표문이다. 이러한 표문의 번역은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때때로 번역 오류로 인해 작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 상이 다음과 같이 下敎하였다. "어제 陳奏使의 狀本을 보았는데, 가져간 表文 가운데 '하늘은 맑고 땅은 골라졌다[乾淸坤夷]'는 문구를 가지고 따져 물은 일이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번 進香使의 문서 중에도 혹시 이와 같은 문자가 있는지 該房 승지는 자세히 살펴 아뢰도록 하라." 이때 진주사 인평 대군 이요 등이 다음과 같이 馳啓하였다. "漢人으로서 청국에 벼슬살이하는 자들이 갖가지로 허점을 엿보아 기어코 우리나라에 불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사신이 가져간 표문 중에 있는 '하늘은 맑고 땅은 골라졌다[乾淸坤夷]'는 말을 한인이 淸語로 번역하여 淸主에게 고하기를 '이는 하늘은 淸이요 땅은 胡라고 한 말로서 우리를 淸夷라고 하여 비난하는 뜻이 뚜렷하다' 하자, 청주가 서장관 鄭知和에게 따져 묻게 하기를 '무슨 이유로 하늘은 맑고 땅은 평안하다[乾淸坤寧]고 하지 않고

22) (光緖)『大淸會典』 卷39 禮部, 主客淸吏司(『淸會典』, 中華書局. p.350)

23) 『欽定大淸會典事例』 卷13 內閣; 卷14 內閣(『欽定大淸會典事例』 6, 新文豊出版公司, pp.5217~5348)에 근거하고, 趙彦昌, 「明淸奏本運轉流程研究」, 『檔案學通訊』 2010年 4期, pp.31~34를 참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漢本房의 滿洲侍讀學士 2인, 漢侍讀學士 2인, 滿洲侍讀 3인, 漢軍侍讀 2인, 滿洲中書 31인, 漢軍中書 8인, 滿洲貼寫中書 16인이 번역을 담당하였다. 앞에서 번역관으로 추정한 인물들이 이들일 것이다.

> 굳이 '淸夷'라고 말하여 감히 위를 비난했느냐?' 하여, 知和가 처음에는 우연히 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가 겁을 먹고 마침내 두 글자를 잘못 쓴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24]

위 사료는 순치8년(1651) 정월, 冬至・元旦・萬壽聖節使로 파견된 인평대군이 제출한 표문을 만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관의 고의적인 오역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순치 연간의 前期는 아직 三大節의 表箋式을 頒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번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이고, 특히 위 사례는 효종이 倭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城池修理'의 허가를 요청하여 청조와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므로 번역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고의적인 번역 오류의 문제는 강희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辛卯, 大學士 등에게 諭를 내렸다. "本章의 번역은 관계되는 것이 매우 크다. 어제 본 本章에 '假官' 두 字가 있었는데 '僞官'이라고 번역하였으니 오류가 매우 심하다. 전에 太宗皇帝 때에 朝鮮國에서 表를 제출함에 원래 不恭한 말이 없었는데 翻譯官이 不和를 일으킬 작정으로 고의로 表文을 잘못 번역하여 죄를 물으려고 가서 정벌하기에 이르렀다. 후에 『實錄』을 찬수할 때에 그 表內의 漢文을 보니 번역한 滿文과 크게 달라 비로소 당시 번역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다. 또한 '僞官'은 假冒하는 것과는 다르니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이 모두 翻譯 各官이 滿文에 익숙하지 못하여 생긴 일이니 앞으로는 신중히 하라."[25]

위의 사료는 정묘, 병자호란의 원인으로 고의적인 번역의 오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 사실의 여부는 신중한 실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사료의 맥락은 강희제가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26]

이처럼 표문은 朝貢 儀禮를 표현하는 儀禮性이 강한 문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례와 관련해서는 문서식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

24) 『조선효종실록』 효종2년 1월 을사. 李光濤, 앞의 책, p.921. 해당 표문은 『同文彙考』 1, 국사편찬위원회, p.357에 「聖節表」라는 제목으로 전재되어 있다. 순치8년 정월 29일자로 되어 있다.

25) 『청성조실록』 강희51년 3월 신묘. 趙志强, 「翻譯與戰爭: 金淸兩征朝鮮原因及啓示」, 『청대 만주문화와 만주학』(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4년 5월 16일, p.16.

26) 유사한 사례를 『강희기거주』강희45년 10월 23일 정미조(『강희기거주』 제3책, 중국제일역사당안관, p.203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諭를 내렸다. '翻譯의 일은 관계되는 바 크다. 전에 實錄을 纂修할 때에, 번역한 朝鮮의 表文을 보니 滿文과 漢文의 의미가 모두 서로 맞지 않았다. 이에 前大學士 圖海, 杜立德이 황급히 짐이 살펴보도록 (表文을) 올렸다. 朕이 2년간 고심하여 비로소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알았다. 역사를 쓰는 일은 특히 중대하니 한 글자라도 가볍고 쉽게 증감해서는 안 된다.'" 『청성조실록』 강희45년 10월 정미조에도 같은 기사가 있다. 趙志强, 위의 논문, p.16.

따라서, 또 번역의 오류로 인해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표문 연구는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책봉조공질서에서 의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 3. 규장각 및 장서각 소장 문서

1, 2문서가 조선에서 청에 보낸 上行 문서라면, 3~10문서는 모두 청에서 조선에 보낸 下行 문서이다. 3문서는 강희13년(1674) 청조에서 강희제의 황후인 孝誠仁皇后의 崩逝를 알려온 勅諭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7]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문서이므로 만문의 로마자 전사를 아래에 적시한다. 한문 원문은 앞 부분이 크게 훼손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同文彙考』卷16에「(甲寅)頒皇后崩逝勅」이라는 제목으로 전재되어 있으므로 원문의 서식에 맞춰 아래에 적시한다.[28]

hūwangdi hese . coohiyan gurun i wang li yuwan de wasimbuha ..
bi abkai fejergi be dasara de . hing seme taifin obure be sithūme . yamji cimari kicere de . kemuni dorgi aisilara de akdaha bihe .. hūwangheo hešeri hala elhe taifin i juwan ilaci aniya sunja biyai ice ilan de urihe .. wang si fiyanji dalikū I tušan de bifi . urgun gasacun be uhelere be dahame . cohome hafan takūrafi . sinagan be donjibume unggihe .. tuttu ofi hese wasimbuha ..
elhe taifin i juwan ilaci aniya sunja biyai orin ninggun de ..

27) 이 문서에는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도서관의 만주어 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에 따르면, 문서 자료는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규장각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해당 고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규장각 만문 문서는 직접 실물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편.『고문서』1.(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6)의 서문격인 <서울대학교도서관소장 고문서에 대하여>에 따르면, "표 · 전 · 주본(97) · 자문(119) · 칙(1) · 고명(2) · 국서(4) · 조회(7)"(( )는 건 수; 필자주)이 소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중 1건의 '勅'과 2건의 '誥命'은 청대의 것이라면 틀림없이 만한합벽 문서일 것이다. 여기에 소개한 문서는 서울대학교 최승희 교수가 약 40여년 전 규장각에서 고문서를 정리하던 중 발견하여 복사한 것을 대구가톨릭대학교 김동소 교수가 다시 복사하여 보관해오던 것이다.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복사본의 형태로만 확인하였다. 이 문서가 앞에 언급한 1건의 '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8)『동문휘고』1, 국사편찬위원회, p.303.

皇帝勅諭朝鮮國王李棩
朕撫御函夏圖治維殷宵旰之
勤良資內助玆皇后黑舍利氏
於康熙十三年五月初三日崩
逝以王職列藩屛誼關休戚特
用遣官訃知故諭
康熙十三年五月二十六日

장서각 소장 문서(4~10문서)는 대부분 英祖 관련 자료이다. 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사의 설명에 의하면, 원래는 영조의 생모인 淑嬪 崔氏의 神主를 모신 毓祥宮에 보관되었던 것을 1970년대에 文化財管理局으로 移管하였다가 후에 다시 장서각으로 옮겼다고 한다. 육상궁은 1882년(고종19)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 해 복구하였다고 하니 이 화재 때에 일부 자료의 소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장서각 소장 문서는 청 황제의 조선 왕실에 대한 冊封 誥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康熙帝가 延礽君(후의 英祖)를 王世弟에 책봉하는 고명과, 雍正帝가 英祖를 朝鮮 國王에 책봉하는 고명, 그리고 역시 옹정제가 영조의 長子 緈(후에 眞宗으로 추존)를 王世子로 책봉하는 고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연이 그 형태와 粧潢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한 바 있다.[29] 이 밖에 【표】의 5, 7, 8, 10은 4, 6, 9의 책봉 고명과 함께 발급된 문서들이다.[30] 6, 7, 8문서의 경우는 上使 散秩大臣 覺羅舒魯, 副使 翰林院 學士 阿克敦이 칙사로 파견되었을 때 가져온 문서들이다.[31] 기록에 따르면 이 밖에도 왕비 책봉 고명과, 景宗大王을 위한 祭文을 함께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32]

칙유는 청대 황제의 詔令을 하달하는 문서인 '勅'의 한 종류이다. 勅은 크게 勅命과 勅

29) 장을연, 「청대 조선왕실 책봉고명과 조선 교명의 형태 비교연구」, 『장서각』 24, 2010. pp.144~149. 책봉 고명은 왼쪽은 만문, 오른 쪽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각각 다른 색으로 직조된 비단을 연결해 놓은 모양인데, 장을연은 오른 쪽부터 제1質(紅色), 제2質(藍色), 제3質(黑色), 제4質(白色), 제5質(黃色)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p.146) 순서를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나열하고 있어 한문 문서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른 쪽 끝이 원통형의 玉軸으로 되어 있고. 왼쪽 끝이 얇은 竹片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른 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말아 간 두루마리의 형태이다. 따라서 왼쪽을 문서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은 청조에서 작성한 만한합벽 문서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만문 문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어느 기관도 이에 관해 주의하지 못하고 있다.

30) 『영조대왕』(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특별전 圖錄. 이하 『圖錄』이라고 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의 圖版 番號 39, 40, 45, 46, 47, 59, 60이 그것이다.

31) 『도록』, p.54의 설명에 따르면, 太監 胡良輔가 가져왔다고 하였으나 잘못이다. 太監 胡良輔는 인조3년(1625) 明 熹宗 天啓帝가 仁祖를 조선 국왕에 책봉할 때 파견한 勅使이다.

32) 洪性鳩, 「18世紀 中國의 朝鮮認識-阿克敦의 朝鮮出使와 「東游集」·『奉使圖』를 통해 본 朝淸關係, 그리고 그 時代的 特徵」,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단, 2005.

諭로 구분할 수 있는데, 外藩을 勅封하거나 6品 이하 官員 및 世爵有襲次者를 封贈하는 경우에는 勅命라고 하고, 外藩에 諭誥할 때나 혹은 外任官에게 발급하는 坐名勅·傳勅은 勅諭라고 한다.[33] 칙유는 3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는데, 첫째는 주로 外任 관원을 勅任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로 난을 평정하였거나 일정한 지역의 臣民에게 명령을 반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셋째로는 外藩을 勅封하거나 諭告할 때 사용한다. 특히 조공국의 국왕이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 청 황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칙봉하거나, 外藩이 사신을 파견하여 入貢한 데 대해 嘉奬하고 예물을 頒賞할 때에 사용하였다.[34] 3문서는 外藩에 諭告하는 예에 해당할 것이다.

誥命은 勅命과 대비되는 문서로서 5품 이상의 관원 및 世爵承襲罔替者를 봉증하는 것이다. 誥勅의 반급은 기본적으로 內閣의 誥勅房에서 담당하였다. 고명이나 칙명 역시 정해진 문서식에 따라 翰林院에서 문장을 작성하여 內閣에 보내 보존하였는데, 평소 草本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各官에서 봉증을 청하면 초본에 성씨를 채워 넣고 中書科에 보내 정서하게 한 후 誥勅房에서 교열하고 반급하였다. 그리고 이임하게 되면 다시 내각에 반납하게 하였다.[35]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이상의 문서는 조선과 청 사이의 책봉조공 의례에 따른 보기 드문 실물 외교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4. 국립중앙도서관 및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장 문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3건(11~13문서)의 誥命이 소장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모두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부 도서관 시절 수집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들은 앞에서 살펴본 조선 왕실에 대한 책봉 고명이 아닌, 청조의 관료 임명 고명이다. 11문서는 장을연 논문에서 다루었으나 내용 설명과 관련하여 약간의 오류가 있다.[36] 고명의 대상인 '佐領' 賴都의 職名을 '左領'이라고 잘못 적었고, 새로 승급된 품계인 '通議大夫'를 '通正大夫'로 잘못 적었다.[37] 그의 두 妻에 대한 표기인 '舒木魯氏'. '忒克特氏'도 각각 '舒木 魯氏'. '忒克 特氏'라고 잘못 적었다. 또 만문 "고명에는 연호 위에 있어야 할 御寶 '制誥之寶'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물을 확인해 보면

33) (光緒)『大清會典』 卷2, 內閣(『清會典』, 中華書局, p.11)

34)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清代文書檔案圖鑒』, 岳麓書社, 2004, pp.38~39.

35) (光緒)『大清會典』 卷2, 內閣(『清會典』, 中華書局, p.19); 『欽定大清會典事例』 卷15, 內閣(『欽定大清會典事例』 6, 新文豊出版公司, pp.5249~5261);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清代文書檔案圖鑒』, 岳麓書社, 2004, pp.13~16.

36) 장을연, 2010, pp.143~144.

37) 실제 문서를 보면, '通議' 두 글자가 쓰인 부분이 유난히 바래있다.

흐릿하여 글자를 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御寶가 찍힌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한문 고명에 어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한문 고명의 연호가 쓰인 부분이 붉은색 비단이어서 색이 바랜 붉은 색 인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을연 논문의 이러한 오류는 아마도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해당 자료의 抄錄을 참고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초록에서는, “어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선의의 목적으로 정교하게 모작한 것이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模作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佐領 賴都의 두 처로 나오는 舒木魯氏와 忒克特氏는 적어도 한자 표기만으로는『八旗滿洲氏族通譜』에서는 그 姓氏를 찾을 수 없다. 성씨의 만주어 원음은 각각 šumuru와 sakda인데 각각의 음역에 가까운 성씨를 찾아보면. šumuru는 舒穆祿氏와 몽골 성씨인 舒穆爾氏가 가깝고. sakda는 薩克達氏가 원음에 가깝다고 하겠다. 薩克達(중국어음; sakeda)와 忒克特(중국어음; tekete)은 중국어음으로도 전혀 다르므로 sakda를 왜 忒克特로 표기하였는지는 의문이다.

11, 12문서는 모두 佟時茂라는 인물과 관련된 문서이다. 佟時茂는『八旗滿洲氏族通譜』에서는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淸世宗實錄』,『淸高宗實錄』,『(雍正)八旗通志』,『平定准噶爾方略』에 적지 않은 기록이 있고, 中國第一歷史檔案館과 臺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소장 명청사료에도 관련 자료가 있다. 다만 가계와 생애의 전모를 보여주는 列傳과 같은 전기류의 자료가 없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두 문서는 근래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존재가 확인되어 아직 연구에 활용된 적이 없는 자료이다. 따라서 아래에 만문의 로마자 전서와 한문 원문을 제시한다.

11문서:

abkai hesei g'oming ..

abkai hesei forgon be aliha

hūwangdi hese . hehei doro iletulefi . dorgide gucishūn kicebe be akūmbuha .

eme i durun yongkiyafi . boode gosingga mergen be algimbuha . tuwašara hafan bime faidan be tuwancihiyara hafan juwe jergi nonggiha tung ši moo i baciha eme hūwang ši . si ginggun ohoba i eigen de acabuha . ujen kicebe i jui be tacibuha . ūshūn be tob obume . yamji cimari kicebe be iletulehe . sain obume hūwašabufi . baturu keyangkiyan sukdun be yendebume mutehe . te kesi selgiyehe doroi simbe amcame mergen hehe fungnehe . ai . sain be urunakū niyaman de obure be dahame . doshūn hese wasimbume huwekiyebure be tuwabuha . jui i turgunde wesihun oho be dahame . fungnere kooli be alifi derengge oho ..

elhe taifin i sunja juweci aniya . ilan biyai juwan jakūn de ..

奉
天承運
皇帝制曰婦順幸彰執卑榮於房闥母儀克備播慈淑於庭幃爾拖沙喇哈番兼整儀尉加二級佟時茂之生母黃氏敬戒承夫敦動訓子用順爲正嘗聞夙夜之勤式穀有戒克壯英豪之氣玆以 覃恩贈爾爲淑人於戲善必歸親錫寵章以示勸貴因從子荷贈典以知榮
康熙五十二年三月十八日

12문서:
abkai hesei g'oming ..
abkai hesei forgon be aliha
hūwangdi hese hurun be algimbume hūsun be akūmbure de ama be weilerengge be jafafi ejen be weilembi hūtori isibume kesi be selgiyere de hiyoošun be tacibure be da arafi tondo be tacibumbi isebure huwekiyebure doro be tuwabufi eldembure iletulere goiya be selabumbi . gūsa be kadalara amban bime nirui janggin kamciha jalan sirara tuwašara hafan emu jergi nonggiha tung ši moo i ama tung fu bin si yebken kiyangkiyan geren ci colgoroko ujen nomhon durun be tutabuha sain jui banjifi booi tacihiyan be ulara jakade gurun de ošoho argan i gese hafan baha baturu amban faššame ejen de karulame gung ilibure jakade niyalma ši dorolon be jiramilaha te kesi selgiyehe doroi simbe amcame doro de aisilaha amban fongnefi g'oming buhe ai ginggun hafan teme mutefi amaga be elgiyen obure te be badarambuha mugūn ci colgoroko jui bifi siden i jalin faššara gūnin eme yendehe bi hafan šang be hairarakū si jalan halame gung faššan be mutebu ..
hūwangdi hese hafan tere de tondo be tacihuha be dahame sain oburengge gosingga tacihiyan ci kacinaha kesi bada?mbume fejergi de selgiyere be dahame derengge be bahahure de eme de isibumbi tuttu hūwašabuha ujihangge de karulame cohome wešihun kesi be ????gumbi gūsin be kadalara amban bime nirui janggin kamciha jalan sirara tuwašara hafan emu jergi nonggiha tung ši moo i emu ši ši si ijishūn nemeyen i ejidemu de acanaha nesuken hūwaliyasun boo be acabuha se akiyaha de gulu nomhon ofi tashūn i irgen de aisilaha hehei weile be kiyeme de kesi selgiyehe (doroi) i…ba a… me …u jergi unenggi hehe fungnehe ai gurun be sadara boo be am… obure de mergen han amba jurgan be saha tondo be yetebu… hiyoošun be …ibure de hengge amban be … ge …teo be sa… bisire de …bu… tulehe be dahame akū oho seme mohon akū oho ..
hūwangdi hese gebu de banjihangge be …me ofi jui … de sasa wesihun obumbi . kesi de beye be u…ngge be jui …fi amba sargan i sirame derengge be bahabumbi …se gūnin … banjiname dorolon jurgan ci der(e)bumbi kūsa be te… amban bime

nirui janggin kamciha jalan sirara tuwašun hafan emu jergi nonggiha tung ši moo i banjiha eme hūwang ši si hehei koro be songkoloho sain karun be ilatula… hehei jalan ba kiyen …gan jui bure de dahaburengge sain sere gisun de teisulehe wesere baita be gingguleme asigan hehe mergen seren ši de acanaha . mini tondo be akūmbure amban yargiyan i sini boo be mukdembuhe jui te kesi selgiyehe doroi simbe uju jergi unenggi hehe gungnehe . ai miyamigan sejen eldengge ofi neneme aisilame wehiyehe de karulaha fungnehe bithei wesihun be isibufi te i gūnire gosihon be surembuhe ..

hūwaliyasun too i juwan ilaci aniya uyun biyai ice ilan de .

奉

天承運

皇帝制曰宣威效力事父資以事君錫類推恩敎忠本於敎孝道存激勸志慰顯揚爾佟賦斌乃都統兼佐領世襲拖沙喇哈番加一級佟時茂之父倜儻負奇老成垂範鯉庭授傳家之訓國有爪牙虎臣策報主之勳人敦詩禮玆以覃恩贈爾爲光祿大夫錫之誥命於戲涖官能敬已弘昌後之基有子亢宗益勵在公之念予何吝於爵賞爾克世其弓裘

制曰能仕敎忠式穀固由於母訓推恩逮下疏榮必逮於慈幃用答恩勤特頒榮寵爾都統兼佐領世襲拖沙喇哈番加一級佟時茂之母石氏順柔叶德婉嬪宜家盛年不御丹鉛相夫以儉永夜時聞機杼敎子能勞玆以覃恩贈爾爲一品夫人於戲先國後家惟賢母獨知大義作忠移孝俾勞臣能紹前徽生而有聞歿且不休

制曰名重所生恒因子而並貴恩隆自出亦從嫡以分榮文以情生理緣義起爾都統兼佐領世襲拖沙喇哈番加一級佟時茂之生母黃氏式是嬪則克有令儀絺綌明勤應歸妹以娣之吉蘋蘩將事叶有齊季女之賢惟我効忠之臣實爾克家之子玆以覃恩贈爾爲一品夫人於戲翟車煥采用酬佐篚於當年綸誥疏榮俾獲伸情於此日恩施泉壤痛釋蓼莪

雍正十三年九月初三日

이 두 문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관련 정보도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록이 전부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가장 기초적인 문자 해독에서부터 오류가 있다. 다른 고명과 마찬가지로, 고명의 양쪽 끝에는 昇降龍紋과 함께 왼편에는 만문 ‘abkai hesei g'oming’과 한문 전서 ‘奉天誥命’이라는 문자가 직조되어 있는데, 이것을 ‘奉而誥命’으로 잘못 해독하였다. 그리고 두 문서에 모두 佟時茂의 생모 黃氏에 대한 贈職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生母인 黃氏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 추정의 암묵적 전제가, ‘관련 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佟時茂의 생모 黃氏는 조선인이었다고 추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2건의 고명을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유 혹은 근거를 나름대로 추론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지나친 牽强附會라고 여겨진다. 八旗에 속한 漢姓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

다.[3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만문 문서의 소장 경위와 관련해서는 1970년 12월 1일자『東亞日報』5면의「康熙帝 詔諭 發見」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참고가 된다.[39] 기사의 내용은 故 崔鶴根 敎授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문 문서인 '康熙帝諭詔'를 발견하였고, 문서 내용은, '강희14년(1675) 12월 강희제가 '乾隆의 東宮 封立'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조유이며, 만한합벽의「皇帝之寶」라는 어보가 낙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27년 일본 오사카에서 90圓에 구입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밖에도 국립도서관 및 서울대 도서관 등에 咨文 등 몇 건의 만문 자료가 더 있다'고도 하였다. 1927년 무렵이 軍閥時期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혼란기에 일본으로 유출된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3건의 문서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만문 문서가 더 소장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 기사 내용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측에서도 이 기사의 내용을 전혀 확인해주지 못하였다. 기사 내용 중 '乾隆의 東宮 封立'은 물론 잘못된 내용이다. 강희제의 황태자였던 胤祉은 강희13년(1674) 孝誠仁皇后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孝誠仁皇后는 胤祉을 낳다가 사망하였다.[40] 胤祉은 강희제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황후가 낳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2세 때인 강희14년(1675)에 만 1세의 나이에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胤祉의 황태자 책봉에 관한 기사는『淸聖祖實錄』卷58에 있다. 여기에서 詔諭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恩款30條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恩款30條는『同文彙考』原編 卷10의 進賀4에「頒冊立皇太子詔」[41]의 原文과 恩款30條의 全文이 轉載되어 있다. '康熙帝諭詔'를 발견한다면, 청조가 조선에 발급한 詔諭의 체제와 형식 및 문서의 장황 등을 실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朝鮮肅宗實錄』권5에는 숙종 2년 2월 13일, 14일, 15일(詔書 頒布)의 기사에 조서 반포를 위한 칙사 도착에 관한 기사만 있고 詔諭의 내용은 없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4문서는 11~13문서와 같은 관료 임명 고명이다. 소장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담당 學藝士는 소장 기관의 특성상 누군가 가톨릭 司祭에게 선물한 것을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

38) 오히려 11문서와 12문서가 내용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발급 날짜가 같다는 점에서 소장 경위에 관한 모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39)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120100209205008&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12-01&officeid=00020&pageNo=5&printNo=15123&publishType=00020

40) 康熙帝의 皇后인 孝誠仁皇后 赫舍里氏의 崩逝를 알리는 勅諭가 앞에서 다룬 【표】의 3문서이다. 황후의 姓氏 hešeri가 칙유의 한문 부분에는 '黑舍里氏'로 표기되어 있다.

41)『同文彙考』1, 국사편찬위원회, p.181.

abkai hesei forgon be aliha

han i hese .. erdemu be tukiyere . gung de karularangge . gurun i amba kooli . tondo mujilen i afaha weile be akūmburengge . ambasai jurgan .. julgei enduringge han se . coohai horon i gurun be toktobuhabi .. bithei erdemui doro be dasahabi .. bi julge be alhūdame . gung erdemu be tukeneme . bithe . coohai hafan ilibuha .. ere ejehe be gaiha niyalma . tondo mujilen i beye be yabubu .. sain mujilen i geren be uji .. mergen mujilen i majige ba be kimci . jalingga be sere .. gidašara be ilibu .. beye be šolo ume tucibure .. enteke be mutebuci .. kesi . ama mafa de isinambi .. hūturi . juse omosi de tutambi .. beye boo enteheme wesihun banjimbi kai .. ginggule ume huledere .. k'ork'a dzang ni bade facuhūrame yabume balai tabacilame ofi . fuk'anggan sebe cooha gaifi gisabume unggihe . ududu mudan afame etefi amargi dzang ni jecen i jirung ni jergi babe dahūn gaifi . hūlha i bade šumin dosifi geren hūlha be nišalame gisabuha turgunde . dalaha hūha geleme olhome durgefi bithe alibufi dahaki seme baihangge . gūnin gisun umesi hing sehe . geli nimanggi nimarafi jugūn kabure be boljoci ojorakū seme cohome hese wasimbufi ini alban jafanjire be yabubufi fuk'anggan sebe cooha gocifi amasi bederebumbi . duleke aniya fudaraka hūlha amargi dzang ni bade facuhūrame yabuha nerginde . aika erdaken i bodome icihiyafi labdukan i hafan cooha be fidefi hūdun ibeme afame . geli jeku caliyan coohai agūra i jergi geren baita hacin be bireme tosome belhefi juweme isibume tookaburakū bici cooha labdu caliyan fulu ojoro be dahame . ere hese ser sere ajige hūlha i yeru be efuleme dalaha hūlha be jafara de nokai ja bihe . te icihiyahangge majige sitabuha bime . dzang ni ba i erin sukdun šahūrun ohongge erde nimanggi de hanggabure be boljoci ojorakū . erdeken i cooha be bedereburakū oci ojorakū . damu amba cooha gisabume dosika ci ebsi . nurhūme afame etefi emgeri jirung niyelmu i babe dahūme gaiha bime . geli ze' so kiyoo . heyebulu . dunggiyoo . gimgi i jergi babe afame baha . fudarakū hūlha asuki be donjiha ici umuhun tuheke . weile be aliyame dahaki seme baihabe tuwaci . dzang niba i baita inu sain i ujihabi . bi daci fuk'anggan se šuwe hūlhai teru de dosifi hūlha be huthume olji alibufi amba gungge mutehe erinde . ubui nonggime kesi isibume . gungge de šangnara be huwekyebuki sembihe . te udu hūlha i babe wacihiyame necihiyehekū bicibe . geren hafan coohao uruse haksan hafirahūn babe tafame yabume gala bithe fome fiyahanatala . aga be funtume yafahalame afahangge . yargiyan i jobome suilame hūsun bume fašshabi . cooha be gaifi yabure hafasa . emgeri mudan mudan i kesi isibume wesibuhe bime . geli baturu colo šangname bahabuha . fuk'anggan se uherileme kadalara ujulaha amban ofi . jakanjame bodome icihiyame gamahangge gemu nashūn giyan de acanaha be dahame . inu giyan i ilgame gisureci acambi . hailanca daci jai jergi colgoroko baturu gung bihe . uju jergi cogoroko baturu gung wesibume fungnefi jalan halame lasahalakū sirabumbi ..

abkai wehiyehe i susai nadaci aniya uyun biyai ice ilan .
(4행 불명)
(5행 불명)

誥命
奉
天承運
皇帝制曰朕惟尙德崇功國家之大典輸忠盡職臣子之常經古聖帝明王戡亂以武致治以文朕欽承往制甄進賢能特設文武勳階以彰激勸受玆任者必忠以立身仁以撫衆智以察微防姦禦侮機無暇時能此則榮及前人福延後嗣而身家永康矣敬之勿怠[직조?]廓爾喀滋擾衛藏肆行搶掠命福康安等領兵進剿屢次克捷收復後藏邊界濟嚨等處地方深入賊境痛殲賊衆賊酋畏懼震懾報稟乞降情詞懇迫因恐雨雪阻途特頒諭旨准其納款令福康安等撤兵凱旋矣上年賊匪侵擾後藏時若早爲籌辦多調官兵迅速進討並糧餉軍火各事宜一切預備轉運不悞則兵多糧足將此么麾小醜無難搗穴擒渠今因辦理稍遲恐藏內氣候早寒致爲雪阻不得不及早撤兵但大軍自進剿以來連獲勝仗業經收復濟嚨聶拉木並攻克熱索?協布?東覺集木集等處賊匪聞風胆落悔罪(?)乞降?功已屬完善朕本?俟福康安等直抵賊巢縛醜獻俘于大功?竣時備加?賞用志酬?玆雖未得?平賊境而?將士攀旋(?)險艱手足胼胝冒雨步戰實爲勞苦虫力其帶兵將弁已經節次加恩予以??及賞(?)?巴?魯名號福康安等爲統率大臣調度布置悉協?宜亦應加以甄叙海蘭察本係二等超勇公爵(?)著晋封一等超勇公世襲罔替
乾隆五十七年九月初三日
海蘭察病故將伊子安祿仍承襲一等超勇公世襲罔替
乾隆五十八年十二月十六日
(4행 불명)

고명의 내용은 西藏을 침입한 廓爾喀 정벌에 功을 세운 海蘭察을 一等超勇公에 晋封한다는 것과 그의 아들 安祿에게 一等超勇公을 承襲하다는 고명이 부기되어있다.[42] 海蘭察은 乾隆帝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福康安과 함께 준가르, 타이완 林爽文의 난, 구르카 정벌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인물로, 이 고명에도 福康安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하나의 고명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를 함께 책봉하거나 임명하는 형식은 앞에서 검토한 고

42) 海蘭察에 관해서는『淸史稿』卷331, 列傳118;『淸史列傳』卷25, 大臣畫一傳檔正編22에 그의 열전이 실려 있고, 中央民族大學 圖書館에『滿文海蘭察列傳』이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淸史列傳』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근래 中國第一歷史檔案館, 鄂溫克族自治旗民族古籍整理辦公室 編,『淸宮珍藏海蘭察滿漢文奏摺匯編』, 遼寧民族出版社, 2008가 출판되어 海蘭察에 관한 진일보한 연구가 가능한 여건이 되었다. 최근 香港浸會大學(Hong Kong Baptist University) 金由美(Loretta E. Kim) 교수는 이 밖에도 海蘭察에 관한 전설, 고사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Loretta E. Kim, “The Pen is as Mighty as the Sword: Evaluating Sources for the Biography of Hailanča”(海蘭察 傳記와 사료 비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제3회 해외저명 만주학 전문가 초청강연 시리즈, 2014년 5월 14일을 참고.

명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14문서의 경우에는 海蘭察를 晋封하는 고명을 내린 날짜(건륭57년(1792)9월4일)와 아들 安祿에게 승습하도록 하는 고명을 내린 날짜(건륭58년(1793)12월16일)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고명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앞의 것은 海蘭察가 病死하기 전, 뒤의 것은 그 후에 書寫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문 부분의 경우 筆體도 현저하게 다르다.『대청회전』의 규정에 따르면, 승습하는 경우에 원본 고명을 제출하여 추가로 기록하게 되어있고,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각에서 새로 제작하여 발급하였다. 이 규정의 실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 고명은 양쪽 끝의 직조된 昇降龍紋 부분에서 왼쪽에는 만문 'abkai hesei forgon be aliha'가 書寫되어 있고. 오른 쪽에는 한문 전서 '誥命'이 직조되어 있다. 11~13의 관료 임명 고명, 4, 6, 9의 조선 왕실 책봉 고명에 모두 'abkai hesei g'oming'과 '奉天誥命'이 직조되어있는 것과 구별된다. 앞의 예를 보면, 'abkai hesei forgon be aliha'은 昇降龍紋 사이에 삽입되는 문구가 아니라 고명 첫 문장의 시작에 해당한다. 한문으로는 '奉天承運'에 해당한다. 한문 부분의 昇降龍紋 사이에 한문 전서 '誥命'이 직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응하는 만문은 'g'oming'이 직조되어야 마땅하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문제이다. 또 4, 6, 9고명과, 11~13고명, 그리고 14고명을 작성한 비단 직물의 양식과 문양도 서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또한 밝혀내야 할 과제이다.

## 5. 결론

이상에서 현재 국내 각 기관에 소장된 만문(滿漢合璧) 문서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문서식 및 문서 처리 절차 등을 살펴보면서 해당 문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최대한 교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적지 않은 문제점과 과제를 남겨놓았다.

결론을 대신하여 국내 소장 만문 문서의 특징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국내 소장 만문 문서는 모두 만한합벽 문서이다. 이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문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존하는 문서가 상급의 외교 문서이거나 고위 관료의 임명 고명이기 때문에 정해진 문서식에 따라 만한합벽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소장 문서는 크게 조선과 청 사이의 외교문서와 청조의 관리 임명 고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교문서로서의 고명은 모두 책봉조공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의례적 문서이고, 실질적 외교 현안을 다루는 자문과 같은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관리 임명 고명 경우에도 정해진 문서식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서 내용이 특별히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문서는 아니다. 다만 12, 13문서는 佟時茂라는 한 인물과 관련된 문서로서, 다양한 사료에서 적지 않게 언급되면서도 열전 등의 전기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에 비해 14문서는 海蘭察이라는 워원크인 영웅의 고명으로 근래 그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발간되어 확장된 연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셋째, 상당수의 문서가 거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서라는 점은 그 동안 국내 학계가 만문 문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문서를 소장하는 국가 기관의 이해도 극히 미흡하고 또 부정확하다는 점에서, 단지 만문 문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고문서에 대한 연구 관심이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43]

조선 표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만 중앙연구원의 內閣大庫 殘餘檔案 중에 청대 조선 표문이 68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그리고 중국제일역사당안관에도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지만 많은 조선 표문이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본 문서를 조사한다는 것은 문서 내용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관련한 일련의 실제 문서 행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풍부한 표문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면 조선과 청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최소한 1건 이상,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2건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문 문서도 하루 빨리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附記: 여기에 소개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華城市廳 장을연 선생님, 국립중앙박물관 李載貞 선생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김효경 선생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강효신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

43) 최근 구범진, 『조선시대 외교문서-명 · 청과 주고받은 문서의 구조 분석』, 한국고전번역원, 2013이 출간된 것은 한국 학계의 중국 고문서 연구라는 시각에서 보면 개척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견으로 국내에서 출판된 중국 고문서에 관한 거의 유일한 연구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4) 李光濤, 앞의 책, pp.900~902에 목록이 있다.

# 청어, 대구, 명태*

## — 소빙기와 한류성 어류박물학 —

김 문 기(부경대)

목 차

Ⅰ. 머리말
Ⅱ. 魚名의 증언: ‘조선 물고기’에서 ‘동아시아 물고기’로
Ⅲ. 소빙기의 풍요: 한류성어류의 부상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조선 후기의 문인 成海應(1760-1839)은,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다양한 방면의 종합적인 지식을 추구했다. 문집인 『研經齋全集』에서 그는 ‘北海(함경도 바다)’의 물고기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 천하를 둘러싼 바다는 물고기가 자라는 곳이니, 海內가 그것을 공유한다. 다만 우리 北海에서만 나는 물고기가 있으니, 그 族類는 『爾雅』, 『埤雅』, 『廣雅』 등의 여러 책에서는 일체 보이지 않는다. 단지 우리나라사람(東人)만이 그 이익을 專有하는 것은 4종이 있다. 明太魚, 大口魚, 靑魚, 牧魚가 그것이니, 모두 俗名이다.[1]

성해응은 우리바다에서만 나는 물고기로 명태, 대구, 청어, 그리고 도루묵을 지적했다.[2] 중국바다에서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아』, 『패아』, 『광아』 등의 중국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한류성어류로 ‘주로’ 동해에서 잡히는 물고기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俗名’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魚名’이라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1031673)

1)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9, 文10, 記, 「北海魚族記」.

2) 조선시대에 도루묵은 牧魚, 木魚, 目魚, 銀魚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는 의미이다.

성해응의 지적처럼, 이들 물고기이름은 우리고유의 것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청어, 대구, 명태는 난류성어종인 서해의 조기와 더불어 조선시대를 대표했던 물고기였다는 점이다.[3] '이름(名)'뿐만 아니라 '실제(實)'에서도 조선을 대표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청어, 명태, 대구, 도루묵이 중국바다에서 나지 않았다는 성해응의 언급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사정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이들 물고기 중의 일부가 중국바다에서도 나기 시작했고, 이미 '이름'을 갖고 있었다. 시선을 일본으로까지 돌리면 더욱 흥미롭다. 일본에서도 '어느 때'부터인지 이들 한류성어류가 대거 출현하여, 학자들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성해응은 이들 물고기가 '北海'에서만 나는 우리나라만이 '專有'하는 물고기라고 했지만,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이미 동아시아 3국에서 모두 중요한 물고기였던 것이다. 그 자신이 이런 변화를 몰랐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를 대표했던 청어, 대구, 명태를 중심으로 이것이 역사에 끼친 영향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이들 물고기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적지 않았다.[4] 그렇지만 이것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비교하려는 시도는 없었다.[5] 청어, 대구, 명태가 동아시아 3국에서 중요성을 띄고 출현했던 것은 근세의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들 한류성어류의 등장이 가지는 거시적인 '역사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6] 각각의 물고기에 대한 상호비교를 통

---

3) 박구병,「어 · 염업의 발달」,『한국사33: 조선후기의 경제』(국사편찬위원회, 1997), pp.213-218. 박구병은 조선시대 주요 어류로 명태, 조기, 청어, 대구, 멸치를 들었다. 이 중 멸치어업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4) 청어에 대해서는 박구병,「한국청어어업사」『부산수산대논문집』 17(1976); 內田惠太郎,「朝鮮沿岸のニシンに就いて」『朝鮮之水産』 128(1936); 川名武,「ニシン漁業」(大日本水産會,『漁業篇』 8, 1949); 閻淑珍,「黃海北部靑魚資源考」『海洋科學』 30-1(2006), 대구에 대해서는 內田惠太郎,「朝鮮近海のタラに就いて」『朝鮮之水産』 130(1936); 今村豊,「タラ漁業」(大日本水産會,『漁業篇』 8, 1949), 명태에 대해서는 鄭文基,「朝鮮明太魚」『朝鮮之水産』 128(1936); 鄭文基,「朝鮮明太魚(續き)」『朝鮮之水産』 129(1936); 박구병,「한국명태어업사」『부산수산대논문집』 20(1978) 등이 있다. 저술로는 今田光夫,『ニシン文化史: 幻の鰊・カムイチェップ』(共同文化史, 1986); 今田光夫,『ニシン漁家列傳: 百萬石時代の擔い手たち』(幻洋史, 1991); 山內景樹,『鰊來たか: 蝦夷地と近世大阪の繁榮について』(かんぽう, 2004); 葛間寬,『鰊場育ち: 北海道泊村一網打盡の記憶』(幻冬舍ルネッサンス, 2012); 今西一 · 中谷三男,『明太子開發史』(成山堂書店, 2008);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국학자료원, 2009) 등이 있다.

5) 유럽의 역사에서도 청어와 대구는 매우 중요한 물고기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Mike Smylie, *Herring: A Hsitory of the Silver Darlings* (Tempus Publishing Ltd, 2004); Bo Pouisen, *Dutch Herring: An Environmental History, 1600-1860* (Alsant Academic Publishers, 2008); Mark Kurlansky, *Cod: A Biography of the Fish That Changed the World* (Penguin Books, 1997). 후자는 최근 국내에서 다시 완역되었다. 마크 쿨란스키(박중서 옮김),『대구: 세계의 역사와 지도를 바꾼 물고기의 일대기』(RHK, 2014).

해 이런 역사성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먼저 주목한 것은 한류성어류의 '물고기이름' 자체이다. 얼핏 물고기이름을 추적하는 것이 역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물고기이름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도 각기 단절되었던 바닷물고기에 대한 지식이 17세기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물고기의 이름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박물학적인 경향과 맞물려, 동아시아 지성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이전의 글에서 동아시아에서 물고기에 대한 박물학적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7] 이 글은 청어, 대구, 명태라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에서 시작된 靑魚, 大口, 明太라는 단어가 중국과 일본의 魚名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각국의 물고기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과정에서, 물고기이름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청어, 대구, 명태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동아시아 3국에서 이들 물고기의 어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를 통해, '조선 물고기'가 '동아시아 물고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Ⅱ장에서 살펴본 청어, 대구, 명태의 어명박물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먼저, 이들 한류성어류의 지식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교류되었는지를 확인했다. Ⅱ장이 이들 물고기의 어명박물학을 개별적으로 살펴봤다면, Ⅲ장에서는 이것을 종합하면서 이들 한류성 어류박물학이 활발하게 교류했던 시기가 '17세기'였음에 착안하여 어류박물학의 상호영향에 주목했다.

다음으로 청어, 대구, 명태라는 한류성어류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살폈다. 이들 물고기는 '주로' 동해에서 잡히던 물고기로 중국에는 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터 중국과 일본의 바다에도 대거 출현하여 중대한 물고기로 부상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동아시아의 바다에서 거의 볼 수 없다. 일본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幻影의 물고기'가 되어버린 것이다.[8]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근대이후의 폭력적인 남획이 한 원인이지만, 보다 거시적으로는 지구적인 기후변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15세기 중반부터 동아시아는 소빙기(Little Ice Age) 기후변동의 영

---

6) 청어, 대구, 명태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박구병, 『한국수산업사』(태화출판사, 1966), pp.84-97; 박구병, 앞 논문(1997), pp.213-218; 이영학, 「조선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역사와 현실』35 2000), pp.192-199. 일본의 경우, 山口和雄, 『日本漁業史』(東京大學出版會, 1979), pp.91-117, pp.330-335에서 청어와 대구의 역사를 다루었다.

7)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 어보 출현 이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41(2014).

8) 今田光夫는 그의 저서 『ニシン文化史』에서 일본을 풍요롭게 했다가 홀연히 사라져 버린 청어를 '幻の鰊・カムイチェップ'라고 했다. '幻影의 물고기'이자 '神의 물고기'였던 것이다.

향을 받았다.[9] 한랭해진 기후는 해수온도의 하강을 불러왔고, 이것은 다시 해양어류의 이동을 초래했다.[10] 소빙기 동안 청어, 대구, 명태라는 한류성어류가 동아시아의 바다에 대거 출현했던 것은 이러한 지구적인 기후변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소빙기의 기후변동이 해양환경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天・海・人'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실례로써 청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다.[11] 그 과정에서 청어뿐만 아니라 대구, 명태 등의 한류성어류가 소빙기 동안 대단히 중요한 물고기로 부상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3국에서 청어, 대구, 명태가 중요한 물고기로 등장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지구적인 기후변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박물학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우리학계에서 역사 주제로서 '어류박물학'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어류박물학이 동아시아의 환경사와 해양사에 일정하게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 Ⅱ. 魚名의 증언: '조선 물고기'에서 '동아시아 물고기'로

17세기는 동앙시아의 어류박물학 발전에 일대 轉機였다. 李時珍의 『本草綱目』과 許筠의 『東醫寶鑑』이 전해지면서 일본에서는 박물학이 크게 발전했다. 그 성과의 하나가 1707년에 간행된 貝原益軒의 『大和本草』이다.[12] 일본의 본초학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貝原益軒은[13] 동물, 식물, 광물에 대한 박물학적 접근의 어려움을 다음 같이 토로했다.

> 하물며 天下・四海는 광활하니 각국의 물산은 있고 없고, 같고 다름이 있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무릇 草木禽獸蟲魚介 등은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중국에는 없기도 한다. 그 중에서 魚品과 介蟲은 종류가 많아서 일본 안에서도 각 州에 따라서 있고 없고, 같고 다름이 있으니 모두 다 알 수는 없다.[14]

---

9)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소빙기 기후변동」『역사와 경계』 77(2010).

10) 국내학계에서 해수저온과 어류이동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문기, 「기후, 바다, 어업분쟁: 1882-1910년간 조・청어업분쟁의 전개」『중국사연구』 63(2009); 심민정, 「조선시대 명태어장과 어로기술」(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 국학자료원, 2009); 김덕진, 「17세기 해수저온과 수산공물」『이화사학연구』 43(2011).

11) 김문기, 「소빙기와 청어: 천・해・인의 관점에서」『역사와 경계』 89(2013); 김문기, 「온난화와 청어: 천・해・인의 관점에서」『역사와 경계』 90(2014).

12)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 pp.129-130.

13) 衫本つとむ, 『江戸の博物學者たち』(講談社, 2006), pp.58-72; 西村三郎, 『文明のなかの博物學: 西歐と日本(上)』(講談社, 2006), pp.121-129.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물산의 차이가 심한데,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그 차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곳에 나는 물고기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나지만 이곳에는 없는 물고기가 헤아릴 수 없다. 같은 한자라고 해도 그것이 가리키는 물고기가 전혀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물고기 기록을 검증하여 그 이름을 확정하는 것이 어류박물학의 시작이다. 물고기의 이름에도 역사가 있는 것이다. 물고기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물고기이름'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동아시아 3국에서 청어, 대구, 명태의 어명은 어떠할까? 오늘날을 기준으로 동아시아 3국의 이들 한류성어류의 대표이름은 다음과 같다.

<표 1> 동아시아 3국 청어, 대구, 명태의 대표명칭

| 어명 | 한 국 | 일 본 | 중 국 |
|---|---|---|---|
| 청어 | 청어(靑魚) | 니신(鰊, 鯡) | 페이위(鯡魚) |
| 대구 | 대구(大口) | 타라(鱈) | 쉬에위(鱈魚) |
| 명태 | 명태(明太) | 스케토우다라(鱈, 介黨鱈, 佐渡鱈) | 시아쉬에(狹鱈) |

○典據: 能勢幸雄 等編,『魚の事典』(東京堂出版, 1989); 김용억 공저,『한국해산어류도감』(한글, 2001)
○중국에서 청어는 太平洋鯡, 대구는 大頭魚・大頭鱈, 명태는 黃線狹鱈, 明太魚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대표이름만을 보게 되면, 한국의 어류명칭이 고립된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다. 청어는 일본에서 '니신', 혹은 '카도'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鰊', 혹은 '鯡'이다. 중국은 일본의 영향으로 '鯡魚'라고 한다. 대구는 일본에서 '타라(鱈)'라고 하는데, 중국은 '鱈魚'라고 한다. 명태의 경우에도, 중국은 '狹鱈'이라고 한다. 일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 이후 일본수산학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그 이전의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靑魚, 大口, 明太'라는 우리 이름이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물고기이름은 때론 경쟁하고 충돌하면서, 결국 '선택'되었다. 그것이 선택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써 역사이다.

### 1) 청어의 어명박물학

'靑魚'라는 이름의 역사성은 이미 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다.[15] '청어'라는 말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前漢代 '五侯鯖'의 고사가 그것이다.[16] 다만 이때의 '鯖'은 바

14) 貝原益軒,『大和本草』卷1,「論物理」.
15) 김문기, 앞 논문(2013), pp.81-85.
16) 葛洪,『西京雜記』卷2;『太平廣記』卷234, 食, 五侯鯖. 五侯鯖의 유래에 대해서는 김문기, 앞 논문(2013), p.82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다청어(herring)가 아니라, 강과 호수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로 草魚의 일종이다. 이에 대한 李時珍의 설명을 들어보자.

> 청어는 강과 호수 사이에 사는데 남방에 많다. 북쪽 지방에도 간혹 그것이 있다. 계절에 가림 없이 잡는다. 잉어와 비슷한데 등이 순청색이다. 남쪽 사람들이 많이들 이것으로 젓갈(鮓)을 잠근다. 옛사람들의 이른바 '五侯鯖'이 이것이다.[17]

『本草綱目』의 권위로 인해, 청어에 대한 위의 설명은 조선과 일본의 청어박물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선의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즐기는 '청어'를 자주 오후청에 빗대었다.[18]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지만, 이 둘이 전혀 다른 어종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인물이 許浚이었다. 그는 중국의 본초서에서 말하는 청어가 조선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우리나라의 청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19] 이에 대해서는 이익과 정약용도 마찬가지의 지적을 했다.[20] 민물청어와 바다청어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靑魚'는 민물고기였고, 바다청어가 아니었다. 또한 중국의 여러 서적들을 확인할 때, 바다청어를 가리키는 한자는 없었다. 바다청어(herring)를 '靑魚'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그 연원을 찾아보면 늦어도 고려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공식문서에 '청어'가 기재되었다. 청어는 조선 고유의 물고기이름으로 정착했던 것이다.[21]

조선시대를 대표했던 물고기답게 청어는 많은 별칭을 가지고 있다.[22] 경북에서 일컫는 '과메기'가 청어를 말린 '貫目'에서 나왔음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23] 동해안에서는 '東魚'라고 했다는 것도 흥미롭다. 일본에도 청어를 '東魚'라고도 불렀기 때문이다.[24] 청어의

---

17) 李時珍, 『本草綱目』 卷44, 鱗部, 靑魚.

18) 한국 최초의 어보인 『우해이어보』를 저술했던 김려도 그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중국의 청어와 우리나라 청어는 다르다고 한 허준의 말을 의심하며, 진해에서 잡히는 청어(眞鯖)를 '五侯鯖'으로 보았다. 민물청어와 바다청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金鑢, 『牛海異魚譜』(『薄庭遺藁』 卷8), 「眞鯖」.

19)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2, 靑魚.

20) 李睟光, 『芝峯類說』 卷20, 禽蟲部, 鱗介, 靑魚, "或言醫方所謂靑魚. 非我國之靑魚也"; 丁若鏞, 『經世遺表』 卷14, 均役事目追議1, 魚稅, 湖西, "靑魚, 卽碧魚, 非中國之所謂靑魚."

21) 김문기, 앞 논문(2013), pp.82-83.

22) 정문기의 연구에 의하면 청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별칭이 있었다. "東魚, 비웃(肥儒), 구구대, 고심청어, 푸주치, 눈검쟁이, 과미기, 과목이, 갈청어, 울산치, 과묵숙구기" 등이 그것이다. 정문기, 『韓國魚圖譜』(일지사, 1977), p.111.

2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鯖魚辨證說」; 趙在三, 『松南雜識』, 魚鳥類, 「靑魚貫目」. 이외에 『음식디미방』, 『閨閤叢書』에도 '貫目'에 대한 각기 다른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24) 일본에서 청어를 나타내는 한자로는 '鯡'이 있다. 에도시대 일본학자들 중에는 '鯡'이 아니라 '鯡'

대표이름은 '비웃'이었다. 1527년에 간행된 『訓蒙字會』에는 鯖을 '비운 쳥'이라는 음을 달았다.[25]

청어의 또 다른 이름은 '碧魚'였다. 정약용은 청어를 '碧魚'라고 했다.[26] 이것은 '푸른 물고기'라는 본래의 뜻을 살려, 같은 의미인 '碧'을 쓴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청어를 대신하여 碧魚라는 말도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예컨대 이순신의 『亂中日記』에는 청어를 '벽어'라고 했으며,[27] 구한말 김윤식은 청어를 노래하면서 제목을 「碧魚嘆」이라고 했다.[28] 조선에서 靑魚는 곧 碧魚이기도 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정약용은 『雅言覺非』에서 '비웃'의 유래를 碧魚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는 중국의 蜀黍를 잘못 옮겨 '수수'가 되고, 白菜를 잘못 옮겨 '배초'(배추)가 되었던 것처럼, "碧魚를 잘못 옮겨서 비유(蜚腴)가 되었다"고 했다. '碧魚'의 중국 발음이 '비유'라서 청어가 '비웃'이 되었다는 것이다.[29]

19세기 후반, 黃泌秀는 『名物紀略』에서 '碧魚'에서 '비웃'이 나왔다는 정약용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비웃'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했다.

> 우리나라 正祖 때에 五部에 令을 내려 窮居讀書의 선비에게 碧魚를 나누어 주게 하면서, "이 물고기는 값이 천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貧寒한 선비가 먹기에 적합하다"고 하여, 肥儒魚라는 이름을 내렸다.[30]

청어를 가리키는 '비웃'이 선비를 살찌운다는 '肥儒'에서 유래한다고 오해되는 연원이 여기에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肥儒魚'라는 말은 正祖가 하사한 이름이라는 사실이다.

---

이라고 해야 하며, '東魚'를 의미한다고 했다. 물론 청어의 별칭으로서 '東魚'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親緣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越谷吾山, 『物類稱號』 卷2 動物, 靑魚.

25) 崔世珍, 『訓蒙字會』 上, 鱗介.

26) 丁若鏞, 『經世遺表』 卷14, 均役事目追議1, 魚稅, 湖西.

27) 李純信, 『李忠武公全書』 卷7, 「亂中日記」 3, 乙未, 11월, 21일 기축.

28) 金允植, 『雲養集』 卷6, 詩, 東茁稿, 「碧魚嘆」.

29) 丁若鏞, 『雅言覺非』 卷2. 한편, 이태원은 비웃의 유래를 "청어를 중국말로 비유(鯡魚)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이 중국명들을 새로이 해석하여 비유어를 만들어냈고, 다시 이를 줄여서 비웃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3)』 (청람미디어, 2002), p.58. 나중에 살피겠지만, 중국에서 청어를 '鯡魚'라고 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만약 중국어 발음에서 '비웃'이 유래했다면, 정약용의 말처럼 '碧魚'가 좀 더 근접할 것이다. 다만, 중국에도 '碧魚'라는 이름이 있지만, 바다청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정약용의 이 학설도 한계가 있다.

30) 黃泌秀, 『名物紀略』 卷4 鱗介類, 靑魚. 『명물기략』에서 '靑魚'는 민물청어를 가리키며, 그 별칭인 '鰷'도 당연히 민물고기이다. 『명물기략』에서 바다청어는 '碧魚'이다. 그렇기에 황필수는 "민간에서 碧魚로서 靑魚를 통칭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李晩永의 『才物譜』의 '靑魚'도 민물청어를 가리킨다. 李晩永, 『才物譜』 卷7, 物譜2, 鱗蟲, 靑魚. 일찍이 정문기는 『명물기략』과 『재물보』를 인용하며 고문헌에 청어를 '鰷'라고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鰷'가 민물청어를 가리키는 것임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정문기, 『물고기의 세계』(일지사, 1997), pp.128-129.

이미 16세기 전반의 『訓蒙字會』에 '비웃'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肥儒魚'에서 '비웃'이 나왔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그릇된 것이다. 오히려 '비웃'이라는 말에서, '肥儒'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비웃'에 비해, '비유어'라는 말이 훨씬 뒤에 출현하기 때문이다.[31]

청어의 명칭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부산의 방언인 '세가이'라는 말이다. 1890년대 일본인의 기록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청어를 '세가이, 소가이, 쇼게에, 세게에'라고 불렀다.[32] 박구병은 일본의 큐슈에서도 '세가이'라는 말이 있음을 비교하여,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큐슈지방과 한국 남해안 일대 지방에서는 다 같이 청어를 세가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았다.[33] 그렇지만 '세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가이'라는 이 독특한 방언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이제 중국에서 바다청어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자. '靑魚'와 '鯖'이라는 한자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바다청어와는 관련이 없었다. 중국의 바다에는 청어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청어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16세기 후반이었다. 산동성 榮成縣에 '靑魚灘'이라는 지명이 출현했던 것이 이때 즈음이었다.[34] 이후의 기록들을 확인하면, 여기에서의 '靑魚'가 바다청어임은 틀림없다. 17세기에 접어들면 문집과 方志에서 청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宋琬은 고향인 萊陽의 해산물 맛을 그리워하면서 "청어는 '서시의 젓(西施乳)'보다 희도다"라고 했다.[35] 蒲松齡은 「靑魚行」이라는 시에서 "동해의 청어, 맛이 뛰어나구나"라고 노래했다.[36] 물론 '靑魚'와 '鯖'은 민물청어에 대한 명칭으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산동과 요동의 연해지역에서는 바다청어를 지칭하는 말로 정착했다.[37]

'바다청어'에 대한 설명에서도 '오후청'의 고사가 별다른 비판 없이 실려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38] 하지만 점차로 이것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同治 『黃縣志』의 '鯖魚'에 대한 기록도 그 중의 하나이다.

---

31) 국내 많은 학자들이 『명물기략』을 인용하여, '비웃'의 어원으로 '肥儒魚'를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인용하는 것은 청어에 대한 설명의 뒷부분으로, 전체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황필수의 말에 따르면, '肥儒魚'라는 말은 18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32) 關澤明淸 · 竹中邦香, 『朝鮮通漁事情』(團々社書店, 1893), p.76.

33) 박구병, 앞 논문(1976), pp.2-3.

34) 章潢, 『圖書編』 卷56, 海運; 道光 『榮成縣志』 圖, 「縣境圖」.

35) 宋琬, 『安雅堂未刻稿』, 入蜀集上, 「船中無事忽憶故鄕海錯之美因疏其狀戲爲俳體」. 여기에서 '西施乳'는 河豚, 곧 복어를 의미한다.

36) 蒲松齡, 『聊齋詩集』 卷3 辛未, 「靑魚行」. 蒲松齡은 「偶興」이라는 시에서도 "海棠花卸後, 雕梁燕到初, 般城三月盡, 猶自賣靑魚"라고 하여, 고향인 淄川에까지 청어가 판매되는 모습을 노래했다.

37) 王賽時, 『山東海疆文化硏究』(齊魯書社, 2006), pp.248-250.

38) 道光 『招遠縣續志』 卷1, 物産補遺, 鱗屬,; 光緖 『文登縣志』 卷3, 土産, 鱗介之屬, 靑魚.

> 『본초강목』에는 靑魚라고 했는데, '靑'자는 어떤 곳에서는 '鯖'이라고 쓴다. 잉어(鯇)와 비슷한데 등은 순청색이라고 했다. 지금 海産의 鯖魚를 살펴보니, 머리는 뾰족하고 등은 푸르며 몸은 좁아 길이는 7-8촌, 폭은 2촌 정도이다. 靑魚와는 마땅히 다른 것이다.[39]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에서도 바다청어가 『본초강목』의 '청어'와는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다. 이런와 혼란함을 피하기 위해 遼東에서는 '海靑魚'라는 말이 생겼다. 18세기 전반의 『欽定盛京通志』에서는 바다청어의 생태를 설명하면서 '海靑魚'라는 말을 사용했다.[40] 민물청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말 그대로 '바다청어'인 것이다. 遼東과 渤海灣에서는 20세기전반에도 '海靑魚'라는 말을 사용했다.[41] 民國 『臨榆縣志』는 해청어를 이렇게 설명했다.

> 길이는 5-6촌이며, 성질에 열이 많다. 이전에 臨海縣에 나왔다. 嘉慶연간부터 임유현에 대거 몰려들었다. 한 번 그물을 던지면 수천만 마리를 잡으니 가격이 극히 쌌다. 후에 海船에 싣고 다른 곳에 가서 파니 조금 귀해졌다. 그렇지만 10마리가 십 수 制錢에 불과했다.[42]

그런데 민물청어와 구분하기 위해 '해청어'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본래 중국의 바다에는 청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최초의 목격자는 유성룡이었다. 그는 요동에는 본래 청어가 없었는데, 16세기 후반에 청어가 출현하자 이를 '新魚'라고 했다고 기록했다.[43] 이를 기점으로 중국에서는 바다청어로써 '靑魚'라는 어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조선에서 사용하던 靑魚(herring)라는 말을 이 '新魚'에 붙였던 것이다. 靑魚라는 말은 중국에서 먼저 등장했지만, 바다청어를 일컫는 '靑魚'의 원조는 조선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靑魚'를 뭐라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일본에도 고대부터 靑魚, 혹은 鯖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다청어가 아니라 고등어를 의미했다. 일본에서 '청어'라는 어명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등어를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에서 고등어는 古道魚, 高登魚, 碧文魚 등이라고 했다. '벽문어'를 제외하면 우리 音價를 따른 것이다.[44] 중국에서는 주로 鮐, 鮐魚, 靑花魚라고 했으며, 방지에는 靑魚 혹

---

39) 同治『黃縣志』卷3 物産, 鱗介之屬, 鯖魚.
40) 『欽定盛京通志』卷
41) 民國『錦縣志』卷19 物産下, 魚類, 海靑魚; 民國『興城縣志』卷12 物産, 魚類, 海靑魚.
42) 民國『臨榆縣志』卷7 輿地編, 物産, 鱗介類, 海靑魚.
43) 柳成龍,『懲毖錄』, 錄後雜記.
44) 이 외에 古刀魚, 古亡魚, 古同魚, 古登魚, 皐登魚 등의 한자가 있다.

은 鯖이 고등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45] 일본은 고등어를 '사바'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靑魚, 鯖을 사용했다. 동아시아 3국에서 '靑魚'라는 한자의 의미는 그 출발부터 달랐던 것이다.

일본에서 청어(herring)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新譯魚名考』에는 8개의 지방명과 漁期에 따른 7개의 별칭을 소개하고 있다.[46] 『日本産魚名大辭典』에는 '아도니신, 아부라니신' 등 모두 26개의 어명이 실려 있다.[47] 대표적인 것은 '니신'과 '카도'로써, 한자명은 '鯡'과 '鰊'이다. '鰊'의 경우, 에도시대에는 '鰊'이 아닌 '鯡'을 주로 사용했다. '니신'은 '二親', 혹은 '二身'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전자의 경우, 人見必大는 '鯡'의 어명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二親魚'에서 왔다고 했다.

> '鯡'자는 비록 중국 글자라고 하지만, 倭의 음과 뜻이 없다. 이 물고기는 오로지 東海에서 나고 다른 지방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東'자는 붙여서 차용했던 것이다. '二親'은 부모이다. 무릇 사람이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은 부모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청어(鯡) 알(數子: カズノコ)의 많음은 다른 물고기가 미칠 바가 못 된다. 이로써 이름 붙였다.[48]

'鯡'은 동해서 난다는 의미에서 '東魚'인 것이다. 나아가 그는 청어 알이 많고 많음을 의미하는 '數子(カズノコ)'에서 '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49] 한편 1930년대 간행된 『大言海』에서는 '니신(鯡)'을 설명하면서, "몸통을 두 개로 쪼갠다는 뜻이다. 土人들이 잡으면 물고기가 아니라 쌀이 된다. 때문에 '魚'자 옆에 '非'를 쓴 것이다"라고 했다. 청어를 가공할 때 몸을 둘로 가르는 '二身'에서 '니신'이 유래했으며, 그 가치가 물고기가 아닌 쌀과 같아서 '非'자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아닌(魚非)' 것이다. [50] 이 외에 '봄을 알리는 물고기'라는 의미로 '하루츠게오우(春告魚)'라는 말도 있다.[51] 그럼에도 이들 어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여전히 많다.[52] 이런 상황에서 바다청어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여 경쟁했다. 바로 조선의 '靑魚'였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 '靑魚'라는 한자는 본래 고등어를 의미했다. 아래의 <표 2>는 일본의 본초서, 어보 등에 있는 청어, 고등어, 대구, 명태의 어명에 대한 대표 표기

---

45) 중국의 경우 등이 푸른 물고기를 모두 靑魚라고 부른 경우가 많았다(정문기, 『물고기의 세계』, p.147). 그렇지만 17세기 이후부터는 산동과 요동에서 '청어'는 주로 바다청어를 가리킨다.
46) 榮川省造, 『新譯魚名考』(靑銅企劃出版, 1982), pp.388-389.
47) 日本魚類學會 編, 『日本産魚名大辭典』(三省堂, 1981), p.249.
48) 人見必大, 『本朝食鑑』 卷8 鱗部2, 江海有鱗, 鯡.
49) 많다는 의미의 '數(かず)'에서 '카도(カド)'로 전이되었다는 것이다.
50) 大槻文彦, 『大言海』(富山房, 1935) 卷3, ニ志ン, p.698.
51) 魚類文化研究會 編, 『魚と貝の事典』(柏書房, 2005), pp.291-292.
52) 北水協會 編, 『北海道漁業志稿』(國書刊行會, 1975), pp.13-14.

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고등어(サバ)를 靑魚(鯖)라고 한 것은 10세기의『延喜式』까지 거슬러 올라간다.[53] 이후에도 靑魚(鯖)는 고등어의 한자명으로 일본에 자리 잡았다. 그렇기에 李時珍의『본초강목』이 전래되어 일본에서 박물학의 열풍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多識編』에서 林羅山은『本草綱目』에 소개된 '靑魚'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左波'라고 번역했던 것이다.[54] 중국에서 민물고기였던 '청어'는 일본에서 '고등어'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이런 오류는 이후의 본초학에서 오랫동안 교정되지 않았다.

1629년의『宜禁本草』를 비롯하여 1699년의『日本釋名』까지 고등어는 모두 '鯖', 혹은 '靑魚'로 표기되었다.『訓蒙圖彙』는 "鯖은 사바로 읽는다. 靑魚이다"라고 했다.[55]『庖廚備用倭名本草』,『增補日用食性』은『다식편』과『본초강목』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민물청어와 고등어 사이의 모순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56] 그렇지만 박물지식이 축적되면서『본초강목』의 '청어'가 고등어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名古屋玄醫는 중국에서 말하는 五侯鯖이 일본에서 말하는 '佐波'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57] 나아가 新井玄圭는 "이 물고기를 청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58] 이제 일본학자들도 중국의 '靑魚'와 일본의 '靑魚(サバ)'를 구분했던 것이다. 일본의 청어는 사바, 곧 고등어였다.

그런데 1709년에 간행된『大和本草』에는 고등어를 뜻하는 '鯖'외에 또 따른 '靑魚'가 등장한다. 조선과 같이 바다청어를 의미하는 '靑魚'이다. 문제는, 앞에서 살폈듯이, 일본에는 청어에 대한 고유한 한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鯡'과 '鯷'가 그것이다. 15세기 중엽부터 松前에서 청어어업을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지만,[59] 청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548년의『運步色葉集』에 있는 '鯷'라는 기록이다.[60] 16세기 중반에 이름이 출현했지만, <표 2>에서 보듯이, 本草書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1670년대에 新井玄圭는 '加土'라는 항목에 "동해에서 나기 때문에 옛 풍속에 鯡魚라고 했으며," "독이 있어서 먹기

53)『古事類苑』動物部17, 魚中, 鯖.『古事類苑』에 의하면, 이 외에도 鯖, 鰆, 鰳, 鮪, 鯆 등이 사용된 적도 있었지만, 끝내 靑魚(鯖)가 대표적인 한자가 되었다.

54) 林羅山,『多識編』卷4, 鱗部5, 靑魚. '左波'의 일본음이 곧 'サバ'이다.

55) 中村惕齋,『訓蒙圖彙』卷14, 龍魚, 靑魚.

56) 向井元升,『庖廚備用倭名本草』卷8, 魚部, 鱗類, 靑魚; 福田松白,『增補日用食性』卷6 魚部, 靑魚.

57) 名古屋玄醫,『閱甫食物本草』下卷, 鯖.

58) 新井玄圭,『食物摘要』卷5, 魚1, 鱗魚類, 附錄, 左波. 新井玄圭는 중국의 한자어명과 다른 물고기들을 附錄에 音借字로 실었다. 거기에는 고등어(左波: サバ), 청어(加土: カド), 대구(多良: タラ)이 포함되어 있다.

59) 北水協會 編, 앞 책, p.111.

60) 魚類文化硏究會 編, 앞 책, p.292.『運步色葉集』의 간행연도를 '1584'년이라고 했는데, '1548'년의 誤記이다.

에 합당치 않으니, 병든 사람은 더욱 꺼리는 것”이라고 하여 대단히 부정적으로 서술했다.[61] 청어에 대한 지식이 분명치 못했던 것이다. 청어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체로 1690대였다. 1666년 간행된『훈몽도휘』에서 고등어(鯖)만 실었던 中村惕齋는 1695년의 증보판에서는 ‘鯡’와 ‘鱈’을 추가했다.[62] 人見必大는『본조식감』에서 ‘鰊’을 사용했는데, 청어의 산지 및 이용법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비해 지식이 훨씬 확장되었다.[63] 청어의 한자로 ‘鰊’과 ‘鯡’라는 일본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표 2> 일본 서적들의 청어, 대구, 명태에 대한 대표 표기

| 저 자 | 서 명 | 간행 연도 | 대 표 표 기 | | | |
|---|---|---|---|---|---|---|
| | | | 고등어 | 청어 | 대구 | 명태 |
| | 延喜式 | 927 | 鯖 | - | - | - |
| 源順 | 和名類聚抄 | 931 | 鯖 | - | - | - |
| 林羅山 | 多識編 | 1612 | 靑魚 | - | - | - |
| 曲直瀨道三 | 宜禁本草 | 1629 | 靑魚 | - | 雪魚 | - |
| 中村惕齋 | 訓蒙圖彙 | 1666 | 鯖 | - | - | - |
| 名古屋玄醫 | 閱甫食物本草 | 1671 | 鯖 | - | 鱈 | - |
| 新井玄圭 | 食物摘要 | 1678 | 左波 | 加土 | 多良 | - |
| 向井元升 | 庖廚備用倭名本草 | 1684 | 靑魚 | - | - | - |
| 福田松珀 | 增補日用食性 | 1690 | 靑魚 | - | - | - |
| 中村惕齋 | 增補頭書訓蒙圖彙 | 1695 | 鯖 | 鯡 | 鱈 | - |
| 人見必大 | 本朝食鑑 | 1697 | 鯖 | 鰊 | 鱈 | 介黨 |
| 貝原益軒 | 日本釋名 | 1699 | 鯖 | - | 大口魚 | - |
| 貝原益軒 | 大和本草 | 1709 | 鯖 | 靑魚 | 吞魚 | - |
| 寺島良安 | 倭漢三才圖會 | 1713 | 鯖 | 鯡 | 吳魚 | 須介黨 |
| 香月牛山 | 卷懷食鏡 | 1716 | 鯖 | 靑魚 | 吳魚 | - |
| 神田玄泉 | 日東魚譜 | 1731 | 鯽 | 靑魚(鰊) | 吳魚(大口魚) | 助藤吳魚 |
| 松岡玄達 | 食療正要 | 1769 | 靑魚 | 靑魚 | 吞魚 | 詩蹶篤吾鱈 |
| 越谷吾山 | 物類稱號 | 1775 | - | 靑魚 | - | - |
| 小野蘭山 | 大和本草批正 | 1783 | 鯖 | 靑魚 | 吞魚 | - |
| 曾槃 | 占春齋魚品 | 1809 | 鯖魚 | 靑魚 | 大口魚 | - |
| 小野蘭山 | 大和本草會識 | 1820 | 鯖 | 靑魚 | 吞魚 | - |
| 小野蘭山 | 卷懷食鏡會識 | 1827 | 鯖 | 靑魚 | 吳魚 | - |
| 毛利梅園 | 梅園魚譜 /魚品圖正 | 1843 /37 | 鯖 | 靑魚 | 吳魚 | スケトウタラ |
| 大村登代 | 啓蒙字類 | 1887 | 鯖 | 鯡 | 大口・鱈 | - |
| 明治政府 | 古事類苑 | 1914 | 鯖 | 鯡 | 鱈 | - |
| *沐紹良 | 魚類圖鑑 | 1936 | 鯖魚 | 鰊魚 | 鱈 | - |

○『日東魚譜』에서 고등어는 鯽으로 쓰고, “作鯖, 非也”라고 했다.
○『日東魚譜』에는 ‘海鱗魚’의 바다 ‘청어’ 외에 ‘河産鱗魚’의 민물 ‘청어’도 실려 있다.
○沐紹良의『魚類圖鑑』(商務印書館, 1936)은 ‘中學生自然叢書’로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다.

61) 新井玄圭,『食物摘要』卷5, 魚1, 鱗魚類, 附錄, 加土.
62) 中村惕齋,『增補頭書訓蒙圖彙』卷14, 龍魚, 鯡.
63) 人見必大,『本朝食鑑』卷8 鱗部2, 江海有鱗, 鰊.

이런 상황에서 『대화본초』에서는 청어의 한자로 '鯡'과 '鯖'가 아니라, '靑魚'를 사용한 것이다. 일본의 본초학을 自立시켰다고 평가받는 貝原益軒, 그는 왜 일본의 한자를 버리고, '청어'라는 한자를 사용했을까? 이에 대한 한 단서는 『대화본초』로부터 7년 뒤에 간행된 『卷懷食鏡』에서 찾을 수 있다. 香月牛山도 청어의 한자로 '靑魚'를 쓰면서 다음 같이 말했다.

> 내(啓益)가 이 물고기를 살펴보니, 『본초강목』에 실린 청어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것이다. 『동의보감』에 실린 청어는 그 형태가 정어리와 비슷하고 길이는 1척 남짓하다. 倭俗에 카도노스(加登能合)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이가 조선인이 來朝했을 때, 카도(加登)를 뭐라고 하는지 물으니 조선인이 靑魚라고 대답했다. 그 알을 말려 저민 것을 國俗에는 카도노코(加登乃古)라고 하는데 年初나 혼례날에 祝儀로 쓰인다.64)

香月牛山의 말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 바로 『동의보감』이다. 1611년에 간행된 『동의보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때에 이르면 일본 본초서에서 본격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표 2>의 서적들에 한정할 때, 이것을 본격적으로 인용했던 최초의 인물이 貝原益軒이었다.

> 정어리(鰮)와 닮았다. … 總州, 常州, 奧州, 특히 津輕, 蝦夷 등의 바다에 많이 난다. 朝鮮에서 오기 때문에 筑紫의 방언에 '高麗鰮'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에 이 물고기를 기록한 형상은 '카도'에 부합한다. 옛날 조선인에게 어떤 이가 '카도'를 물으니 靑魚라고 했다. … 살피건대, 『본초강목』에서 말하는 청어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65)

청어가 조선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고려정어리(高麗鰮)'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채롭다. 일본의 학자들은 청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조선통신사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했던 것이다. 나중에 살펴볼 대구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682년의 조선통신사 일행일 것이다. 貝原益軒이 일본의 한자를 버리고 조선의 한자를 사용한 것은 『동의보감』의 영향력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고등어는 '鯖', 청어는 '靑魚'로 분리했다. 이전까지 고등어를 의미했던 鯖과 靑魚는 이제 각각 고등어와 청어로 분리되었던 것이다.

<표 2>에서 확인할 있듯이, 이런 구분은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면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寺島良安의 『倭漢三才圖會』는 '鯡'를 사용하고 있다. 寺島良安는 대구(吳魚)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을 인용했다. 그런 그가 청어(鯡) 항목에서는 『동의보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그 자신이 조선의 靑魚가 일본의 鯡인지 몰랐

64) 香月牛山, 『卷懷食鏡』 魚類, 靑魚.
65) 貝原益軒, 『大和本草』 卷13, 魚下, 海魚, 靑魚.

을 가능성이 있다.[66] 이와 반대로 일본 최초의 어보인『日東魚譜』는 청어를 '靑魚'로 표기하면서, 고등어를 뜻하는 '鯖'은 아예 부정했다. 神田玄泉은 "이 나라에서는 예부터 청어를 사바어(裟婆魚)라고 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 鯖魚는 河魚이다"라고 했다.『본초강목』의 설명을 들어서 고등어를 의미했던 靑魚(鯖)를 부인하면서, '鯽'을 쓸 것을 주장했다.[67] 스스로 고유의 한자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鯖과 靑魚를 분리하는 기술이 그대로 이어졌다.

흥미롭게도『食療正要』에는 두 개의 '靑魚'가 등장한다.[68] 하나는 '사바', 곧 고등어이며, 다른 하나는 '니신', 곧 청어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 나(達)는 말한다. '靑魚'에는 두 가지 물고기가 있다. 本邦에서 부르는 것은 곧 사바(索跋)이다. 여기에서의 靑魚는 조선에서 부르는 것이다. 본방에서 부르는 것은 니신(女新)으로, 일명 카도코(葛讀子: 청어알)를 카도노코(葛詩那谷)라고 한다.[69]

고등어를 의미하는 '청어'에 대해서는 '本邦所呼'라고 하여 일본한자임을 표시하였고, 청어를 의미하는 '청어'에 대해서는 '朝鮮所呼'라고 하여 조선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했다. 조선에서 사용하던 '靑魚'라는 한자가 '鯖'과 '鯡'를 대신하여 일본 청어의 정식명칭으로 자리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어의 명칭에 대한 하나의 질문을 남겨 놓았었다. 부산의 방언으로 '세가이'라는 명칭이 그것이다. 일본 최초의 방언집인『物類稱號』에서는 "靑魚는 카도인데, 일명 니신이다. 츠쿠시에서는 '카우라이이와시(高麗鰯)'라고 하는데, 세가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다.[70] 小野蘭山은『本草綱目啓蒙』에서 이와 똑같은 지적을 했다.[71] 구한말 일본인은 부산에서는 여전히 청어를 '세가이, 소가이, 쇼게에, 세게에'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세가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것은 부산이 가진 독특한 위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로 倭館이다. 조선전기에 대마도 왜인들이 우리바다에서 어업을 했는데, 청어도 그 중의 하나였다.[72] 삼포왜란 이후 대마도 어민들의 어업이 금지되었지

---

66) 寺島良安,『倭漢三才圖會』卷49, 魚類, 江海有鱗魚, 鯡.

67) 神田玄泉,『日東魚譜』卷2, 海魚鱗部, 鯽.『日東魚譜』은 5卷本, 7卷本, 상하합본 등 여러 판본이 있다. 판본에 따라서는, 靑魚를 鯖으로, 못魚를 大口魚로 표기한 사례가 있지만, '靑魚'와 '못魚'가 대부분이다. 이 글은 5卷本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

68) 이들 일본 본초서 중에는『본초강목』을 인용하여 민물고기에 대해서도 '靑魚'라고 표기한 경우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사례는 굳이 다루지 않았다.

69) 松岡玄達,『食療正要』卷4, 魚部,「靑魚 サバ」·「靑魚 ニシン」.

70) 越谷吾山,『物類稱號』卷2 動物, 靑魚.

71) 小野蘭山,『本草綱目啓蒙』卷40, 鱗3, 魚類, 靑魚.

72)『중종실록』권8, 중종 4년 3월 16일. 1508년 가덕도왜변일 발생했을 때, 대마도 왜인의 우두머리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청어와 대구잡이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청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했다. 청어는 倭館에 중요한 공급물자로써 왕성한 거래가 이루어졌다.[73] '靑魚'는 일본어로 '세이교'라고 읽는다. 그렇기에 대마도인과 거래할 때 이것을 '세가이'라고 했다.[74] 靑魚의 일본식 발음인 '세이교'를 부산사람들이 '세게에, 세가이' 등으로 부르면서, 부산과 큐슈사이에 공동의 발음이 쓰인 것이다. '세가이'의 어원도 결국 조선의 '靑魚'였던 것이다.

1718년 중국에 사행 갔던 李觀命은 그곳에서 발견한 청어를 '우리나라 물고기,' 곧 '朝鮮魚'라고 했다.[75] 이것은 중국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6세기 후반 이후 바다에 청어 떼가 급작스럽게 출현하자 중국에서는 이것을 '新魚'라고 했다가, 끝내 조선에서 사용하던 '靑魚'라는 말을 사용했다. 일본에는 청어를 나타내는 '鰊'과 '鯡'가 있었지만,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에서 사용하던 '靑魚'가 이를 대신했다. 조선의 물고기였던 '靑魚'는 어느 순간에 동아시아의 물고기로 대표했던 것이다.

### 2) 대구의 어명박물학

대구(Cod)는 청어, 명태와 더불어 대표적인 한류성어류이다. 한국의 대구에 대해 처음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했던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內田惠太郎은 대구의 종족과 분포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 조선 근해의 대구의 분포는 흡사 청어의 경우와 같다. 동부 동해방면의 계통과 서부 황해방면의 계통으로 나뉜다. 동해방면의 대구는 서시베리아 연해주방면에서, 함경남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 조선 동해안 일대에 분포하고, 경상남도의 서단에까지 미친다. 황해방면의 대구는 전라남도 대흑산도부근부터 이북의 황해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황해의 대구가 동해방면의 한 분파인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이 양자가 직접적으로 교통하여 섞인 것인가, 혹은 황해의 대구는 황해에서 독립 번식하여 대를 거듭했던 것인가는 단정할 근거가 현재는 충분치 않다. … 황해의 대구는 황해에서 독립하여 번식하여 성장했던 것으로 때로 양자 사이에 교통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부분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76]

內田惠太郎은 대구의 종족이 동해방면과 서해방면으로 크게 나뉘는데, 서해방면의 대구는 동해방면의 대구와는 교류가 없이 독립적인 계통군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이런 지적은 청어에 대한 그의 서술과도 내용상 거의 일치한다.[77] 대구는 청어처럼 동해와 남해

---

73) 양흥숙,「조선후기 왜관 통제책과 동래 지역민의 대응」『역사와 세계』37(2010), pp.138-140.
74)『倭語類解』乾, 水族, 鯖魚.
75) 李觀命,『屛山集』卷2 詩,「見靑魚有感」.
76) 內田惠太郎,「朝鮮沿岸のニシンに就いて」, p.24.

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수광은 "대구어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나는 것으로 중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이름이 서적들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이것을 진미로 여긴다. 북경에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간다"라고 했다.[78] 대구는 동해에서 나는 조선의 대표 산물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 사행 갈 때 대구는 중요한 방물로써 진상되었고, 중국인들의 대구에 대한 욕구는 대단했다. 또한 대마도에도 하사품으로 빈번하게 내려졌다. 조선의 대구는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중요한 물품이었던 셈이다.[79] 예컨대 명대의 황제들 중에 成化帝가 대구를 특히 좋아했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80]

조선전기의 기록에 대구는 서해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물고기였다. 세종 19년(1437) 호조의 보고에 따르면, 대구는 함길도, 강원도, 경상도에서만 나고 있었다.[81]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도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준다.[82] 대구는 동해와 남해에서만 나는 물고기로써 서해에는 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명대의 학자는 "대구어는 朝鮮國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기록했던 것이다.[83] 이런 사실은 대구의 어명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청어가 조선의 물고기였던 것처럼, 대구도 조선의 물고기였던 것이다.

'大口魚'는 말 그대로 '입이 큰 물고기'이다. 중국에는 대구를 의미하는 한자가 없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대구의 한자명으로 '吞魚'를 제시하면서, "대구는 성질이 평이하고 맛은 짜고 독이 없다. 먹으면 기운을 북돋우는데 창자와 비게는 더욱 맛있다. 동북해에서 나는데 민간에서는 大口魚라고 한다"라고 했다.[84] 대구는 '吞魚'외에도 '呑魚'라고도 했다.[85] 어떤 것이든 '大口'라는 글자를 합한 모양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吞'라는 글자이다. 중국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글자였다.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중국의 저명한 문인인 李調元은 廣東의 어류를 기록했던 『然犀志』의 말미에서 조선의 물고기들을 소개할

77) 内田惠太郎, 「朝鮮近海のタラに就いて」, p.39.

78) 李睟光, 『芝峯類說』 卷12, 禽蟲部, 鱗介, 大口魚.

79) 『萬機要覽』 財用編5, 方物; 金堉, 『潛谷遺稿』 卷15, 「朝京日錄」, 崇禎丙子年 8월 27일; 金景善, 『燕轅直指』 卷1 出疆錄, 壬辰年, 11월 22일. 이런 사실들은 『朝鮮王朝實錄』, 『朝天錄』, 『燕行錄』, 『同文彙考』 등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의 외교적 국제성은 다음 기회에 별고를 통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다.

80) 『성종실록』 권80, 8년 5월 22일; 『성종실록』 권136, 12년 12월 22일.

81) 『세종실록』 권77, 19년 5월 1일.

82) 박구병, 앞 책(1966), pp.78-82.

83) 宋詡, 『竹嶼山房雜部』 卷4 養生部4 鱗屬制, 海水江水所産, 大口魚.

84)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2, 吞魚.

85) 丁若鏞, 『經世遺表』 卷14, 均役事目追議1, 魚稅, 嶺南.

때, 대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吞魚는 동북의 바다에서 난다. 성질은 평이하고 맛은 짜다. 먹으면 기운을 북돋운다. 창자와 비게는 맛이 더욱 뛰어나다. 字書를 살펴보면 '못'자가 있는데 注에는 '입이 큰 물고기'라고 했다. 조선인이 '吞'라는 글자를 만들었으니, 글은 달라도 뜻은 같다.[86]

이조원은『동의보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吞'라는 글자는 조선인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했다. 1716년에 완성된『康熙字典』에도 '못'자는 있지만, '吞'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못에 대해서는『字彙』를 인용하여 "물고기의 큰 입을 '못'라고 한다"라고 했다.[87] 중국에는 '못'자는 있었지만, '吞'자는 없었던 것이다. 서유구도 이조원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동의보감』에는 '吞魚'라고 썼는데, 字書에는 이런 글자가 없다"고 하여, 이를 다시 확인시켰다.[88] 이규경도 조선의 '土俗字'로 소개할 때, '吞'자를 중요한 실례로 들었다. 또한 "중국 민간에서 우리나라 大口魚를 못口魚라고 일컫는다"는 崔世珍의『四聲通解』도 소개했다.[89] '大口魚'가 기존의 글자를 조합하여 물고기의 이름으로 삼았다면, '吞'는 아예 새롭게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한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구를 지칭하는 말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서해에도 대구가 나타났던 것이다.『松南雜誌』에서 趙在三(1808-1866)은 중국인들이 대구를 얼마나 선호했는지를 다음 같이 묘사했다.

> 『강희자전』에서 '못'라고 했다. 중국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서적들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大口'라고 한다. 지금 교역 시장에서 중국인들은 대구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대구 한 마리를 방에 던져 넣어주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린다고 한다. 그들은 대개 대구를 진미로 여기기에 육즙을 좋아하는 파리처럼 맛나게 먹는다. **근래에 서해에서 잡힌다.**[90]

대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열광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말미에 있는 서해에서도 대구가 잡혔다는 기록이다. 그는 '근래'라고 했지만, 이보다는 더 오래되었다. 영조 후반기에 편찬된『輿地圖書』에는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외에 충청도와 황해도의 물산에 '大口魚'가 기재되어 있다. 어느 때부터였는지, 서해에도 대구가 출현하여 어획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에는 나지 않았을까?

---

86) 李調元,『然犀志』卷下, 附, 吞魚.
87)『康熙字典』丑集上, 三劃, 口部.
88) 徐有榘,『蘭湖漁牧志』, 魚名考, 海魚, 吞魚.
89)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詩文篇, 論文類, 文字,「東國土俗字辨證說」.
90) 趙在三,『松南雜誌』, 漁獵類14, 魚鳥類, 比目大口.

앞에서 살폈듯이, 중국에는 대구가 나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한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렇지만 중국에도 언제부터인지 대구가 출현했다. 다만 기록에서 대구를 나타내는 어명을 찾기는 쉽지 않다. 道光『榮成縣志』에는 영성현에서 많이 잡히는 바닷물고기를 소개했는데, "가장 늦게 나타나 겨울을 지나서까지 있는 것은 大口"라고 했다.[91] '大口'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大頭魚'라고도 불린 대구는[92] 청대에는 황해북부의 주요한 경제어류였다.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이 산란기로 산동의 龍須石島와 海卽어장이 주요산란장이었다.[93] 기억해야 할 것은 대구(Cod)의 어명이 '大口'로써, 바로 조선의 그것이라는 점이다. 본래 대구가 나지 않았던 중국 바다에 '어느 때'부터인지 대구가 출현하자, 이를 조선에서 사용했던 '大口'를 사용했던 것이다. 조선의 물고기이름이 중국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청어처럼 일본에서 대구가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던 것은 17세기였다. <표 2>에서 보듯이, 고대에는 대구의 어명이 보이지 않았다. 16세기 후반의 公卿日記에 점차로 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여, 에도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어업으로 발전했다.[94] 1629년에 간행된『宜禁本草』에서 '雪魚: タラ'라는 어명만이 소개되어 있다.[95] 42년 뒤의『閲甫食物本草』에는 '鱈'이라고 했다.[96] 대구(타라)를 '雪魚'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本朝食鑑』은 이렇게 설명했다.

> 鱈은 音은 雪이며 訓은 타라(多良)이다. '鱈'자는 古書에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일본(本朝)에서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뜻에서는 서로 보완한다. 일찍이 들으니, 鱈魚는 겨울(冬月) 첫눈이 내린 이후에 반드시 많이 잡힌다고 한다. 때문에 글자에 雪이 붙은 것이다.[97]

겨울철 첫눈이 내리는 때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雪魚'라고 했다는 것이다. '鱈'은 이것을 합친 글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鱈'이라는 한자가 일본에서 만든 글자라는 점이다. 조선에서 '大口'를 합쳐 '吞'라는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도 대구에 대한 자신들의 고유한 한자를 만들었던 것이다. 중국의 字典에 있는 한자로는 이 새로운 물고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17세기까지 일본에서 대구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못했다. 新井玄圭는『食物摘要』에

---

91) 道光『榮成縣志』卷3 物産.
92) 民國『霑化縣志』卷1 疆域志, 物産, 水族, 鱈; 民國『牟平縣志』卷1 地理志1, 物産, 動物, 水族, 鱈.
93) 陳冬生,「淸代山東海洋漁業擧要」『古今農業』(1996-4), pp.71-72.
94) 山口和雄, 앞 책, p.330.
95) 曲直瀨道三,『宜禁本草』坤, 宜禁追加三段, 蟲魚類, 雪魚.
96) 名古屋玄醫,『閲甫食物本草』下卷, 鱈.
97) 人見必大,『本朝食鑑』卷8 鱗部2, 江海有鱗, 鱈.

서 '多良'를 "민간에서는 鱈魚라고 하는데, 北海에서 난다"라고 하면서, 독은 없지만 그것을 많이 먹으면 냉병에 걸린다고 했다.[98] 人見必大는 기존의 편견을 비판하며 그 효용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했다. 그는 대구가 "동・서・남해에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북해에 여러 연해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오늘날 官家에서 그것을 진귀하게 여겨 칭찬했기 때문에 北州와 奥羽의 太守와 刺史가 다투어서 헌상했다"고 기록했다.[99] '오늘날(今日)'이라는 말을 보면 17세기 후반에야 일본에서 중대한 물고기로 자리 잡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中村惕齋가 『訓蒙圖彙』에는 기록하지 않다가 그 증보판인 『增補頭書訓蒙圖彙』에 청어와 대구를 기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해도에서 나는 대구는 청어와 더불어 17세기 후반에야 '혼슈'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대구를 '타라(多良)'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구의 껍질에 작은 '얼룩(マダラ:斑)'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魚名이 유래했다고 한다.[100] 청어와 마찬가지로 17세기까지는 '鱈'이라는 한자가 일본의 대구를 대표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1699년에 간행된 『日本釋名』에서 貝原益軒은 '鱈'을 대신해 '大口魚'를 사용했다. 10년 뒤의 『大和本草』에서는 '鰊'과 '鯡'를 대신해 '靑魚'를, '鱈'을 대신해 '못魚'를 채택했다. 청어와 대구의 이름에서 모두 조선의 한자가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자신들의 한자인 '鱈'을 대신해 조선의 '大口魚'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鱈'이 조선의 '大口魚'와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本朝食鑑』을 저술한 人見必大는 그 과정을 다음같이 말했다.

> 韓國에는 대구가 많이 난다. 임술년(1682)에 韓人이 바다를 건너 來朝했다. 洪世泰가 副使裨將으로 왔는데, 博物强識했다. 내가 世泰에게 鱈魚에 대해 물으니, "우리나라에서는 大口魚라고 합니다. 北地에서 많이 잡히는데 햇살에 말려서 그것을 팝니다"라고 했다.[101]

일본의 '鱈'이 '大口'임을 확인시켜 주었던 사람은 1682년 조선통신사의 수행원이었던 홍세태였다. 人見必大는 '鱈'의 조선이름을 조선인을 통해 직접 확인했던 것이다. 그는 당시 대마도를 통해 조선의 마른대구가 대거 유입되었다는 사실도 기록했다. 북해도 대구뿐만 아니라 대마도를 경유한 조선의 마른대구도 왕성하게 유통되었던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구의 대표명칭으로 '大口魚'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인물은 見原益

98) 新井玄圭, 『食物摘要』 卷5, 魚1, 鱗魚類, 附錄, 多良.
99) 人見必大, 『本朝食鑑』 卷8 鱗部2, 江海有鱗, 鱈.
100) 魚類文化研究會 編, 앞 책, p.380. 『日本産魚名大辭典』에는 아카하다, 아라, 아보다라 등 11개의 지방명이 소개되어 있다. 日本魚類學會 編, 앞 책, p.327.
101) 人見必大, 『本朝食鏡』 卷8, 魚部2, 江海有鱗, 鱈.

軒이었다. 『大和本草』에서 그는 '吝魚'를 정식명칭으로 사용하면서, "『동의보감』에서 吝魚의 俗名은 大口魚"라고 밝혔다.[102] 청어와 마찬가지로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왜한삼재도회』에도 이어졌다. 『왜한삼재도회』에서는 '못魚'를 대표로 쓰면서, 大口魚가 『동의보감』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혔다.[103] 이후부터 일본의 본초서, 어보 등에서는 조선에서 대구를 뜻하는 '大口魚', '못魚', '吝魚'이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조선과 일본은 대구에 대한 한자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다. '吝'와 '鱈'이 그것이었다. 조선의 학자들도 '鱈'이 일본에서 만든 한자임을 알고 있었다.[104]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吝는 韓字'라고 하여, 조선에서 만든 한자임을 알았다.[105] 흥미롭게, 이 두 한자는 서로 경쟁했고, 끝내 조선의 한자가 승리했다. 香月牛山은 『卷懷食鏡』에서는 '吝魚'를 대표한자로 삼으면서 '鱈'이 正字가 아니라고 했다.

> 내(啓益)가 『동의보감』을 살펴보니, "吝魚는 민간에서 大口魚라고 한다. 성질은 평이하고 맛을 짜고 독이 없다. 먹으면 기운을 돋운다. 창자와 비게는 더욱 좋다"라고 했다. 이 물고기는 조선에서 매우 많은데, 脯를 만들면 맛이 더욱 좋다. 그러나 그 육질이 단단하고 딱딱하여 소화가 어렵다. 脾胃가 약한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 **倭俗에 '鱈'자로써 訓을 삼는데, 正字가 아니다.**[106]

香月牛山은 일본의 한자인 '鱈'이 正字가 아니기 때문에 '吝魚'라는 한자를 채택했다. 문제는 '吝'라는 글자도, 字典에는 없는 것으로, 正字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식의 한자인 '鱈' 대신에 조선식의 한자인 '吝魚'로 대구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최초의 어보인 『日東魚譜』는 대구를 어떻게 표기했을까? '못魚'라고 했다. 神田玄泉은 "『동의보감』에서 吝魚라고 하는데, 俗名은 大口魚"라고 했다. 이에 반해 '鱈'은 '名義未詳'이라고 부정적으로 기술했다.[107] 『食療正要』에서도 대표한자로 '吝魚'를 쓰면서 '朝鮮所呼', 곧 조선의 호칭임을 밝혔다. 松岡玄達은 『동의보감』의 내용을 인용한 다음에, "吝魚은 속명으로 타라(他辣)이고 글자는 鱈을 쓴다"고 소개했다. 조선의 호칭임을 알면서도 '吝魚'를 대표한자로 사용했던 것이다.[108]

貝原益軒은 '鱈'이 일본에서 만든 한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일본 고유의

---

102) 貝原益軒, 『大和本草』 卷13, 魚之下, 海魚, 吝魚.
103) 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 卷49, 魚部, 江海有鱗魚, 못魚.
10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詩文篇, 論文類, 文字, 「日本土字辨證說」, "鱈, 大口魚之俗字".
105) 小野蘭山, 『大和本草批正』 卷13 魚下, 海魚, 吝魚.
106) 香月牛山, 『卷懷食鏡』 魚類, 吝魚.
107) 神田玄泉, 『日東魚譜』 卷2, 海鱗魚部, 못魚.
108) 松岡玄達, 『食療正要』 卷4, 魚部, 吝魚.

한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그는 일본의 고서와 민간에서 부르는 草木・鳥獸・蟲魚 등의 한자에 뜻이 잘못된 것이 헤아리기 어렵게 많다고 했다. 그래서 "國俗에 正字를 알지 못하여 망령되이 倭字를 만드는 것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한자가 '鱈'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舊俗의 그릇됨을 바루기 위해," 正字와 正訓을 사용하겠다고 했다.[109] 그런 그가 '鰊'과 '鯡'를 대신한 것이 '靑魚'였고, '鱈'을 대신한 것이 '古魚'였음은 흥미롭다. 조선의 어명을 '正字'로 채택했던 것이다. 일본 본초학의 수립했다는 『大和本草』가 일본에서 만든 한자가 아닌 조선에서 만든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에서 시작된 '大口'라는 물고기 이름이 동아시아를 대표했던 것이다.

### 3) 명태의 어명박물학

명태(pollock)는 청어, 대구와 더불어 대표적인 한류성어류이지만, 동아시아에서 그 역사는 청어, 대구와는 많이 다르다. 명태는 분포범위가 청어와 대구보다 훨씬 북쪽이다. 또한 서해에 유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근대이전까지 명태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에도시대에는 명태가 나기는 했지만,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다. 중국과 일본이 명태를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에 반해 조선에서 명태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물고기였다. 명태의 역사에서 조선이 중요한 이유이다.

조선후기에 명태는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로써 전국적으로 공급되었다. 19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趙在三은 '明太'의 어원과 그 번성함을 다음 같이 말했다.[110]

> '北魚'는 우리나라 德原 元山島에서 난다. 明川에서는 옛날에 잡히지 않았다. 명천의 '太'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처음으로 北魚를 잡았는데, 크면서 살지고 맛난 까닭에 '明太'라고 이름 붙였다. 겨울에 잡으면 '冬太', 봄에 잡으면 '春太'라 하고, 그 알은 '明卵'이라고 한다. 대개 물고기 중에서 숫자가 많아서 비록 깊은 산골의 궁벽한 고을이라고 하더라도 물리도록 먹지 않는 곳이 없다.[111]

유사한 내용을 이규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명태는 전국에 유통되어 한 마리에 몇 푼 되지 않고 매일의 식사에 항상 오르는 반찬으로 쓰인다고 했다.[112] 때문에 명태에 대한 명칭은 대단히 다양했다. 조재삼은 '명천의 태씨가 잡았다'고 하여 '明太'라

109) 貝原益軒, 『大和本草』 卷1, 凡例.
110) 한국 명태어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鄭文基, 「朝鮮明太魚」; 박구병, 앞 논문(1978); 부경대학교해양문화연구소, 앞 책(2009) 등이 있다.
111) 趙在三, 『松南雜誌』, 漁獵類14, 魚鳥類, 北魚明太.
11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北魚辨證鱈」.

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柳僖는『物名考』에서 “북어는 대구어의 작은 것이다. 동해의 북변에서 나기 때문에 이름을 얻었다”고 했다.[113] “北海에서 나는 물고기”라서 북어라고 했던 것이다.[114] 이와 더불어 봄에 잡히는 것을 ‘春太’, 겨울에 잡히는 것을 ‘冬太’, 명태 알젓을 ‘明卵’이라고 했다. 徐有榘는 생것을 명태, 마른 것을 북어라고 부른다고 했다.[115] 명태와 북어가 生鮮인가 乾物인가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정문기는 명태에 대한 연구에서 鮮太, 鮐魚, 凍太를 비롯하여 18개의 명칭과 그 의미를 자세히 소개했다.[116] 역사적으로 명태의 수요가 컸던 만큼 명칭도 다양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明太’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은 언제일까? 그것은 17세기였다. 효종 3년(1652), 강원도의 진상품인 ‘대구알젓(大口卵醢)’을 대신하여 ‘명태알젓(明太卵醢)’을 바친 것을 문책하면서, ‘明太’라는 단어가 등장한다.[117] 당시 명란젓이 대구알젓보다 훨씬 하급으로 인식되었음을 볼 때, 그때까지 명태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명태가 본격적으로 중앙의 조정에 명함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명태라는 말은 17세기에 등장하지만, 명태어업의 연원은 이보다 더 오래 되었을 것이다. 박구병은 명태어업의 기원으로 ①고려시대설과 ②조선시대설을 소개했다. 전자의 경우, 일제강점기 정문기의 채록에 의하면 명태는 ‘6백 년 전’인 고려시대부터 많이 어획했지만 이름 모르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미신으로 어업이 쇠퇴했다가, 명태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활성화되었다고 한다.[118] 한편 1908년에 편찬된『韓國水産誌』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 때에 明川의 ‘太’씨 성을 가진 어부가 진귀한 물고기를 잡아 군수에게 바치면서 명태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명태어업의 기원은 ‘약 5백 년 전’이 된다.[119] 또 다른 기록에는 ‘조선 건국 250년경’에 명천의 태씨 어부가 처음으로 어획했지만 그 이름을 알지 못했는데, 명천군의 명과 태씨의 태를 합쳐 ‘명태’로 이름 지었다고 했다.[120] 멀리는 고려시대, 가까이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구병은 전설만으로는 정확한 기

113) 柳僖,『物名考』卷2, 有情類, 鱗蟲, 北魚.

114) 李成之,『才物譜』卷7, 物譜2, 鱗蟲譜, 北魚, “北魚, 出北海, 故名北魚.”

115) 徐有榘,『蘭湖漁牧志』, 魚名考, 海魚, 明鮐魚.

116) 鄭文基,「朝鮮明太魚」, pp.11-14. 이외에 綱太, 釣太, 왜太, 애太, 江太, 杆太, 막물太, 銀魚바지, 冬至바지, 섣달바지, 北魚, 干太, 北鼸魚, 더덕北魚의 별칭이 있다. 30여년 뒤의『한국어도보』에서는 明鮐魚, 無泰魚, 노가리를 덧붙였다. 정문기, 앞 책(1977), p.259.

117)『승정원일기』효종 3년 9월 10일; 10월 8일. 이에 대해서는 박구병, 앞 논문(1978), pp.31-32 참조. 이에 반해 ‘北魚’라는 명칭은,『才物譜』에서 확인되듯이, 18세기 후반에야 본격적으로 나온다. 심민정은 ‘북어’라는 명칭이 정조대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것은 명태를 말려 포로 만드는 가공법이 활성화, 보편화된 것이 정조대 이후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심민정, 앞 논문, p.38.

118) 鄭文基,「朝鮮明太魚」, p.18.

119) 農商工部水産局,『韓國水産誌』1(1908), pp.218-219.

120) 鄭文基,「朝鮮北魚明太」『朝鮮』273(1938), pp.47-48.

원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121]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당시의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명태어업의 연원을 밝혀줄 단서로 주목되는 것이 '無泰魚'이다. 청어와 대구는『세종실록지리지』에 이미 출현하고 있음은 살펴보았다. 그런데 같은 한류성어류임에도 명태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명태로 추정되는 무태어가 처음으로 출현하는 것은 1530년에 완성된『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鏡城과 明川의 土産에 '無泰魚'가 '新增'되어 있다.[122] 이후에 18세기 중엽의『輿地圖書』에는 종성, 명천의 無泰魚와 더불어 吉州에 明太가 기재되어 있다. 무태어와 명태가 동일한 것인지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박구병의 지적처럼 "과거의 토산에 올라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쓴 탓"으로 보인다.[123] 1870년경의『名物紀略』에서 黃泌秀는 명태의 대표 어명을 '無泰魚'로 하여, "무태어는 민간에서 북어라고 하는데 北道에서 나는 것을 이른 것이다. 또한 명태라고 하는데 명천의 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잡았던 것"이라고 했다.[124]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16세기에는 명태어업이 제법 발달한 것 같다. 다만 이때까지는 함경도의 일부에 잡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명태어업의 발전에 일대 전기가 되었던 것은 17세기 중후반이었다. 예컨대 17세기 전반에 간행된 허준의『동의보감』이나 허균의『성소부부고』에는 명태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당시까지는 중요한 물고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후반의『임하필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李裕元은 명천의 어부가 도백에게 '이름 모를 물고기'를 바치고, 이에 명태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음을 서술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 이로부터 이 물고기는 해마다 수천 석씩 잡혀 팔도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北魚라고 불렀다. 老峯 閔鼎重이 말하기를, "300년 뒤에는 이 고기가 지금보다 귀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이 들어맞은 셈이다. 내가 元山을 지나다가 이 물고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오강(五江: 漢江·龍山·麻布·玄湖·西江)에 쌓인 땔나무처럼 많아서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125]

민정중(1628-1692)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비록 전설적인 요소를 띠고 있지만, 17세기 중후반에 명태어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조선후기에는 가장 중요한 어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명태어업은 늦어도 16세기 초반에 이미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17세기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발전했던 것이다.

---

121) 박구병, 앞 논문(1978), pp.28-29.
122)『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鏡城都護府; 明川縣.
123) 박구병, 앞 논문(1978), p.31.
124) 黃泌秀,『名物紀略』卷4, 鱗介部, 無泰魚.
125) 李裕元,『林下筆記』卷27, 春明逸事, 明太.

청어나 대구와는 달리 명태는 중국의 바다나 출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중국에는 명태를 가리키는 한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明太’라는 말은 조선 고유의 어명이었다.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명태는 ‘스케토우다라’라고 한다. 대구(タラ)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1831년에 간행된『魚鑑』에는 ‘타라’의 항목에 “몸이 옅은 흑색으로 왜소한 일종으로 ‘싯코케다라’, ‘스케도우다라’라고 한다. 佐渡, 金山의 사이 가까운 곳에 잡히는 것이 맛이 좋기 때문에 ‘스케토우’라고 한다”고 했다.[126] 명태를 대구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어원을 ‘佐渡(スケト)’에서 왔다고 했다.[127] 한자는 鰰, 佐渡鱈, 介黨鱈, 助宗鱈 등이 있다.[128]

일본에서 명태라는 말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7세기 후반이다. 新潟縣의 역사에서, 1670년 대구와 명태 어업을 둘러싼 소송에 ‘鰰(スケト)’가 처음 등장한다. 다만 1584년경부터 佐渡에서 명태어업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명태에 대한 이용이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17세기였다.[129] 그렇지만 <표 2>에서 보듯이, 명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本草書에서 명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697년에 간행된『本朝食鑑』이다. 대구(鱈)에 대한 설명의 끝에 대구의 일종으로 ‘介黨’을 언급했다.

> 대구의 일종으로 민간에서 ‘介黨(スケトウ)’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몸은 연한 흑색이고 흰색을 띠었다. 형체는 작고 맛도 또한 좋지 않다. 가장 하품이다.[130]

명태에 대한 기록이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명태는 형체도 작고 맛도 나쁜 최하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왜한삼재도회』에는 대구(못魚) 항목의 끝에 ‘須介黨’, 곧 ‘스케토우다라’가 등장한다. “대구와 비슷하지만 작다. 몸체는 검은데 흰색을 띠었다. 그 맛은 좋지 못하다”라고 했다.[131]『일동어보』에는 醃못魚 부분에서 ‘助藤鱈’을 소개했다.[132]『食療正要』는 吞魚에서 ‘詩厥篤吾鱈’라고 했다.[133] ‘스케토우다라’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나마 이를 제외하면 명태에 대한 기록도 찾기 어렵다. 17세기 이후에 명태가 등장했지만, 중요한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전국적으로 공급되

126) 武井周作,『魚鑑』卷下, たの部, たら.
127) 어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①鮭(すけ)の鱈, ②어업에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助っ人ダラ’, ③佐渡의 명산이기에 ‘佐渡鱈’, ④‘스케소’가 원래 호칭이라는 설 등이 있다. 魚類文化研究會 編, 앞 책, p.228.
128) 能勢幸雄 等編, 앞 책, p.230; 今西一・中谷三男, 앞 책, p.1.
129) 今西一・中谷三男, 같은 책, p.13, p.53, 295.
130) 人見必大,『本朝食鏡』卷8, 魚部2, 江海有鱗,「鱈」.
131) 寺島良安,『倭漢三才圖會』卷49, 魚類, 江海有鱗魚, 못魚.
132) 神田玄泉,『日東魚譜』卷5, 醃魚類, 醃못魚.
133) 松岡玄達,『食療正要』卷4, 魚類, 吞魚.

어 조선 제일의 어업으로 성장했던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1876년 修信使로 일본에 갔던 金綺秀는 이런 사실이 매우 의아했다.

> 北海에 있는 물고기를 明太라고 한다. 또 北魚라고도 하니 북쪽의 물고기이다. … 다만 나는 것이 매우 많아서 그 값이 싼 까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深山窮谷의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북어를 모르는 자가 없다. 지금 博物院에 물고기들(鱗族)이 배열된 것을 보았는데, 다만 北魚만이 보이지 않으니, 저들도 말하기를 "없는 것은 이것뿐이다"라고 했다.[134]

일본의 박물원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 중에 조선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명태만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일본 측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과는 달리, 그들은 명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런 일본이 명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조선'이 있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의 체결로 함경・강원・경상・전라도의 바다가 일본에 개방되면서 일본어민들의 조선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135] 초기에 일본어민들은 상어지느러미, 전복, 해삼, 도미 등을 주로 잡았지, 조선에서 선호하는 명태, 대구, 청어 등은 잡지 않았다.[136] 그들은 대부분 일본서부에서 진출한 어민들로 이들 한류성어류는 낯선 것이었다.[137] 그렇지만 일본어민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어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때 그들이 특히 주목한 것이 명태, 대구, 청어 등의 한류성어류였다. 그 중에서 명태의 조선에서의 수요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1893년, 조선의 수산업을 침탈하기 위해 최초로 체계적인 조사를 했던 關澤淸明은 조선의 명태가 관혼상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소비되는데, 특히 '명란젓'은 맛이 뛰어나 일본인의 입에도 적당할 것이라고 했다.[138] 그의 '예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현되었다.

일본어민들이 조선의 바다에서 명태를 잡기위한 시도는 청일전쟁부터 있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어업은 1901년부터였다. 일본정부의 장려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조업을 시

---

134) 金綺秀, 『日東記遊』 卷3, 物産.

135) 김문기, 앞 논문(2009), p.77. 개항이후 일본의 어업침탈에 대한 연구는 한우근, 「개항후 일본어민의 침탈(1860-1894)」『동양학』 1(1971); 김수희, 「개항기 한국내의 일본인 어민의 조직화 과정」『수산연구』 20(2004); 이영학,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역사와 현실』 18(1995); 이근우, 「19세기 일본의 어업침탈과 조선의 대응」(『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 연구에 대해서는 김문기, 앞 논문(2009), pp.67-68 참조.

136) 이근우, 「근대 초기 조선의 명태어업과 일본의 진출」(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앞 책), p.207.

137)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朝水會, 1954), pp.187.

138) 關澤淸明・竹中邦香, 『朝鮮通漁事情』(團々社書店, 1893), pp.73-75.

도했지만, 1910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39]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서이다. 이전에도 명태어업이 없진 않았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던 것도 이때였다. 1899년부터 북해도에 조업이 시작되어 1903년, 1904년경에는 專業의 명태어업으로 발전했다.[140] 에도시대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명태가 20세기에 각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북해도에서 성황을 이루었던 청어어업이 갑작스럽게 쇠퇴하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어종으로 명태가 떠오른 것이다.[141]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明卵'이다.

명태의 밋밋한 맛은 일본인들이 좋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에도시대에 '하품'으로 취급받은 것은 이런 이유이다. 이런 일본인들이 명태의 알, 곧 명란에 매료되었다. 그 계기는 조선의 명란젓이 일본어민 및 상인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였다. 이로 인해 명태는 일본에서 새롭게 조명되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명이었다. 190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명태는 '스케토, 스케토우다라, 스케소우다라' 등 다양하게 불렸다. 이들 명칭 중에 '스케토우다라'가 정식적으로 공인받은 것은 1909년이었다.[142] 흥미롭게 일본에서는 명태의 알을 '멘타이코(明太子)'라고 했다. 1907년경에 창업한 '桶口商店'을 통해 조선의 명란젓이 일본으로 대거 수입되면서 '明太子'라는 이름이 일본에 정착했던 것이다.[143] '明太子'의 맛에 매료되면서 명태는 1977년까지 일본의 제일 어업으로 성장했다.[144] 일본에서 명태가 각광을 받았던 배경에는 조선으로부터의 '맛의 교환'이 있었던 것이다.

'明太'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물고기이름이었다. 청어와 대구와 달리 명태는 근대가 된 이후에야 중국과 일본에 알려졌다. 일본에서 명태는 하찮은 물고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선에서 전해진 명란젓(明太子)의 '맛'은 일본인을 매료시켰다. 때문에 한국의 '明太'라는 말이 일본에서도 명태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명태를 '狹鱈'이라고도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明太魚'라고 한다.[145] 명란젓의 '맛'이 근대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에 '명태'라는 조선의 어명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

139) 박구병, 앞 논문(1978), p.37; 이근우, 앞 논문(2009), pp.216-218.
140) 鄭文基,「朝鮮明太魚」, p.21.
141) 今西一・中谷三男, 앞 책, p.55.
142) 今西一・中谷三男, 같은 책, pp.14-15.
143) 今西一・中谷三男, 같은 책, pp.31-32.『明太子開發史』의 부제는 '그 루트를 찾는다'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明太子'의 연원이 조선의 명란젓에서 유래했음을 상세하게 밝혔다.
144) 能勢幸雄 等編, 앞 책, p.231.
145) 榮川省造, 앞 책, p.303; 日本魚類學會 編, 앞 책, p.181.

## Ⅲ. 소빙기의 풍요: 한류성어류의 부상

동아시아 물고기의 이름에서 중국의 한자어명이 가지는 지배력은 대단했다. 조선의 경우 물고기를 공유하는 황해의 물고기들은 대부분 중국식 한자 어명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한류성어류인 청어, 대구, 명태는 조선의 물고기 이름이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다. 앞의 <표 1>에서 오늘날 청어, 대구, 명태에 대한 공식적인 어명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Ⅱ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어, 대구, 명태의 어명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청어, 명태, 대구의 어명(魚名) 박물학

| 어종 | 국가 | 어명(魚名) | | |
|---|---|---|---|---|
| | | 근세 | 근대 | 현대 |
| 청어 | 韓 | 靑魚, 鯖, 肥儒魚, 碧魚 | 靑魚 | 靑魚 |
| | 日 | 鰊, 鯡, 靑魚 | 靑魚→ 鰊, 鯡 | 鰊, 鯡 (靑魚) |
| | 中 | 靑魚, 鯖, 海靑魚 | 靑魚→ 鰊, 鯡 | 鯡魚 (靑魚) |
| 대구 | 韓 | 大口魚, 吞魚, 吳魚 | 大口魚 | 大口 |
| | 日 | 鱈, 大口魚, 吞魚, 吳魚 | 大口魚→ 鱈 | 鱈 |
| | 中 | 大口魚, 大頭魚 | 大口魚→ 鱈 | 鱈 (大口魚) |
| 명태 | 韓 | 明太, 北魚 | 明太, 北魚 | 明太 |
| | 日 | 鱈, 介黨, 須介黨, 佐渡鱈, | 鱈, 須介黨, 佐渡鱈, 明太魚 | 鱈, 須介黨, 佐渡鱈 (明太魚) |
| | 中 | × | 明太魚 | 狹鱈 (明太魚) |

○靑魚, 大口魚: 근대까지 동아시아 3국의 공통 魚名으로 사용
○일본에서 '鯖'은 'サバ', 곧 고등어를 의미
○明太: 근대 이후 일본과 중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사용
○러시아에서도 명태는 '민타이(минтай )'라고 함
○괄호안의 어명은 민간에서는 여전히 靑魚, 大口魚, 明太魚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3>이 다양한 별칭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짚어볼 수 있다. 흥미롭게 근세 동아시아 3국은 공통된 어명을 가지고 있었다. 靑魚와 大口가 그것이다. 근대 이후에는 明太도 여기에 합류한다. 조선의 물고기 이름이 동아시아에 공통의 어명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조선 물고기'에서 '동아시아 물고기'로의 변화였다. 이번 장에서는 Ⅱ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한류성 어류지식의 교류

靑魚, 大口, 明太는 한국 고유의 물고기 이름이다. 물론 '靑魚'는 중국에서 고대부터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민물고기였지 바닷물고기는 아니었다. 바다청어(herring)에 '靑魚'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늦어도 고려시대부터였다. 大口와 明太는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물고기 이름이다. '大口'의 경우, 이것을 합한 '吞'라는 글자는 중국에 없는 한자이다. 중

국의 한자 어명을 정확히 몰라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146] 청어, 대구, 명태는 중국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 어명 자체가 없었다. 이것들은 모두 한류성어류라는 공통점이 있다.

동아시아 청어, 대구, 명태의 역사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17세기'라는 시점이다. 조선의 경우, 청어와 대구는 조선초기부터 중요한 어종이었다. 이에 반해 '명태'라는 단어는 17세기 중반에 등장한다. 물론 16세기에도 명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물고기였던 명태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했던 것이다.[147] 한편, 중국은 본래 청어(herring)가 나지 않았지만, 17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바닷물고기로서의 '靑魚'가 등장했다. 蒲松齡의 시에도 나올 정도로 17세기에는 산동과 요동에서 대거 어획되어 유통되었다.[148] 일본의 경우, 16세기 중후반에 청어와 대구의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이들 물고기가 본초서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던 것은 17세기 후반이었다. 명태의 기록도 17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등장했지만, 20세기까지 그다지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상에서처럼 17세기는 이들 한류성어류가 동아시아 3국의 서적들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17세기에 청어, 대구, 명태에 대한 지식이 동아시아 3국에 광범위하게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박물학의 발전이다. 17세기는 동아시아 박물학 발전에서 하나의 轉機였다.[149] 17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에는 李時珍의 『本草綱目』과 王圻의 『三才圖會』가 출현했다. 각각 1590년과 1606년의 일이었다. 조선에는 1611년 허준의 『東醫寶鑑』이 완성되었다. 이시진의 『본초강목』과 허준의 『동의보감』은 등장은 동아시아 본초학의 발전을 추동했다.[150] 이에 가장 자극받은 곳은 일본이었다. 1612년 林羅山이 『본초강목』의 한약명칭을 일본이름으로 번역한 『多識編』을 출간한 이후, 일본에는 박물학의 열풍이 거세게 일었다.[151]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은 중국과 조선의 약물이 일본의 그것과 같은가 혹은 다른가를 확인하는 문제였다. 어류박물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전했다.

---

146) 예컨대 고등어의 경우 중국에는 鮐, 靑花魚 등의 한자가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古道魚, 古刀魚, 高登魚 등의 우리발음을 빌린 어명이 생겼다. 19세기의 徐有榘도 고등어의 중국명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徐有榘, 『佃漁志』, 魚名考, 海魚, 無鱗類, 古刀魚.

147) 박구병, 앞 논문(1978), pp.30-32; 심민정, 앞 논문, p.30.

148) 蒲松齡, 『聊齋詩集』 卷3 辛未, 「偶興」·「靑魚行」.

149)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 p.140.

150) 杉本つとむ, 앞 책, pp.31-32. 다만 일본의 박물학연구자들은 『동의보감』의 영향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의보감』이 일본박물학, 특히 어류박물학에 끼친 영향은 컸다.

151) 西村三郎, 앞 책(下), pp.105-112.

일본이 어류박물학을 수용할 때, 이들 한류성어류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조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당연하다. 중국에는 청어, 대구를 의미하는 한자어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청어와 대구를 조사할 때, 조선인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本朝食鑑』을 저술한 人見必大는 조선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왔던 홍세태를 만나 직접 '鱈'의 朝鮮魚名을 물어보았다.[152] 또한 『卷會食鏡』을 저술한 香月牛山도 조선통신사를 통해 '鰊'의 조선어명을 확인했음을 기록했다.[153] 이들 기록을 종합할 때, 그들이 청어와 대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된 것은 1682년의 조선통신사로부터였을 것이다.

이들 일본학자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貝原益軒이다. 일본 본초학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154] <표 2>에 있는 서적들에 한정할 때, 처음으로 『동의보감』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동의보감』이 언제 일본에 유입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貝原益軒이 『동의보감』에 대단히 경도되었다는 사실은 어명박물학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청어와 대구에 대한 일본식 한자인 '鰊'·'鯡', 그리고 '鱈'이 있었음에도, '靑魚'와 '古魚'라는 조선의 어명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서 그때까지 고등어(サバ)를 의미했던 '鯖'과 '靑魚'를 분리하여, 고등어는 '鯖', 청어는 '靑魚'로 표기했다.[155] 『대화본초』를 저술하면서, 그는 "正字를 알지 못하여 倭字를 사용하는" 그릇됨을 고치기 위해 正字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156] 조선의 '古魚'를 正字로 삼은 것이다. 놀라운 것은 '古'도 또한 중국에 없는 순수하게 조선에서 만든 글자라는 점이다. 일본 최초의 어보인 『일동어보』를 저술한 神田玄泉, 일본 박물학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小野蘭山도 '古'가 조선에서 만든 한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것으로 正字로 삼았다.[157] 일본의 漢字魚名을 버리고, 조선의 한자어명을 채택한 것이다. 寺島良安의 『倭漢三才圖會』에서 청어를 '鯡'로 표기한 것을 제외하면,[158] <표 2>에서 보듯이 『대화본초』의 靑魚(ニシン), 大口(タラ), 鯖(タラ)라는 한자어명은 19세기 전반까지 일본을 지배한다. 『동의보감』의 짙은 그림자인 것이다.

19세기에 이르면, 이런 일본의 어류박물학은 거꾸로 조선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의 어류박물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倭漢三才圖會』였다.[159] 조선의 학자들은 이들

152) 人見必大, 『本朝食鑑』 卷8 鱗部2, 江海有鱗, 鱈.
153) 香月牛山, 『卷懷食鏡』 魚類, 靑魚.
154) 西村三郎, 앞 책(上), pp.121-129.
155) 貝原益軒, 『大和本草』 卷13, 魚下, 海魚, 古魚 · 靑魚 · 鯖.
156) 貝原益軒, 『大和本草』 卷1, 凡例.
157) 神田玄泉, 『日東魚譜』 卷2, 海鱗魚部, 吳魚; 小野蘭山, 『大和本草批正』 卷13 魚下, 海魚, 古魚.
158) 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 卷49, 魚類, 江海有鱗魚, 鯡.
159) 조선후기 丁若銓의 『玆山魚譜』에는 『倭漢三才圖會』가 인용되지 않고, 중국자료의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李德懋, 李圭景, 徐有榘 등의 박물학자는 『倭漢三才圖會』를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다. 『

한류성어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수용했을까? 불행히도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청어, 대구, 명태, 그리고 청어와 헷갈리기 쉬운 고등어에 한정할 때, 정확하게 변증한 것은 대구뿐이었다.

徐有榘는『蘭湖漁牧志』에서 대구의 일본어명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160] 명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그 알을 明卵이라 하며, 그 말린 것을 北薨魚라고 하는데, 本草諸家에는 실려 있지 않다"라고 했다. 중국의 본초서에 명태에 실리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서유구는『왜한삼재도회』에 명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161] 고등어에 대해서는 "『왜한삼재도회』는 崔禹錫의『食經』을 인용하여 '鯖은 鰹과 비슷한데 꼬리는 희고 가시가 차례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아마 이 물고기를 이른 것일 게다"라고 했다.[162] 서유구는 고등어를 鯖으로 본 것이다.[163] 그런데 鯖은 일본어로 '아지(アジ)', 곧 '전갱이'이다.[164] 전갱이를 고등어로 오인했던 것이다. 왜 이런 오류를 범할 것일까? 이것은 청어를 오해하면서 예견되었다. 서유구는 조선의 청어가 중국의 청어와 전혀 다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165] 그렇지만『왜한삼재도회』의 물고기를 변증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鯖'이었다.[166] 서유구는 "4월 중에 수 만 마리가 물결에 떠내려가 낚시나 그물을 쓰지 않아도 잡을 수 있다"는 기록에서 "우리나라 청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하겠는가"라고 했다.[167] 그는 자신했지만, 그가 지칭한 '鯖'은 '사바(サバ)', 곧 고등어였다. 서유구는 고등어를 청어로 착각했던 것이다. '鯖'이라는 한자가 그를 강력하게 유인했을 것이다. 일본에서 鯖(サバ)과 靑魚(ニシン)가 분리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한 번 잘못 끼운 단추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오류들이 속출했다.

이규경은 어떠할까? 그는『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왜한삼재도회』의 물고기를 변증한 것은 조선 박물학의 한 쾌거일 것이다.[168] 그렇지만 그의 고증도 오류가 심상치 않다. 이규경은 "鱈은 倭의 俗字로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大口魚"라고 하여,[169] '鱈'이 대구를 가리킴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170] 한편 그는『왜한삼재도회』에 있는 阿羅魚, 俗字로 鱲

---

蘭湖漁牧志』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일본자료였다.

160) 徐有榘,『蘭湖漁牧志』魚名考, 海魚, 吳魚.

161) 徐有榘,『蘭湖漁牧志』魚名考, 海魚, 明鮐魚.

162) 徐有榘,『蘭湖漁牧志』魚名考, 海魚, 古刀魚.

163) 寺島良安,『倭漢三才圖會』卷51, 魚類, 江海中無鱗魚, 鯖.

164) 榮川省造, 앞 책, p.86; 최윤,『식용바닷물고기』(교학사, 2007), p.154.

165) 徐有榘,『蘭湖漁牧志』魚名考, 論華産未見, 靑魚.

166) 寺島良安,『倭漢三才圖會』卷49, 魚類, 江海有鱗魚, 鯖.

167) 徐有榘,『蘭湖漁牧志』魚名考, 海魚, 靑魚.

168)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萬物篇, 蟲魚類, 魚.

169)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萬物篇, 蟲魚類, 魚,「北魚辨證說」. 이규경은 이 인용문을 이어 "中原所稱吳魚也"라고 했는데, 吳魚는 대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오류인 것이다.

170)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詩文篇, 論文類, 文字,「日本土字辨證說」, "鱈, 大口魚之俗字."

를[171] 명태로 보았다. “형태와 색을 보면 대구와 비슷하지만 크고, 그 입은 鱸魚와 비슷하며, 3월 北海에서 잡힌다.” “이것이 어찌 北魚가 아니랴”라고 했다.[172] 그렇지만 명태는 대구보다 작다. 그의 예상과 달리 阿羅魚는 명태가 아니라 ‘다금바리’이다.[173] 『왜한삼재도회』에서 명태는 ‘대구(못魚)’의 말미에 있는 ‘須介黨’이다. 阿羅魚가 ‘못魚’ 바로 다음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있었을 듯하다.[174] 한편 이규경은 서유구와 달리 ‘鯖’이 청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鯖으로써 靑魚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니, 곧 鯆魚가 그것”이라고 했다.[175] 그렇다면 『왜한삼재도회』에 있는 ‘鯆’은 무엇일까? 『왜한삼재도회』에는 鯆은 鰶라고 했으며, ‘고노시로’라는 음을 붙였다. ‘전어’인 것이다.[176] “준치(鰣)보다는 작은 것”이라는 기록과도 부합한다.[177] 오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鱱’자는 곧 北魚이다. ‘鯉’자는 곧 고등어의 別字”라고 했다. 그는 ‘鯉’을 우리나라의 고등어로 본 것이다.[178] 그렇다면 ‘鯉’은 무엇인가?[179] ‘카츠오’, 곧 다랑어이다.[180] 사실 이규경의 이러한 오류는 그의 조부인 이덕무에게서 이미 예견되었다. 이덕무는 『왜한삼재도회』의 중요성에 일찍부터 주목했지만, ‘鯆은 비웃, 鱱는 倭字이고 명태, 鯉은 倭字이고 고등어’라고 하여 이미 잘못된 안내를 했다.[181] 이규경이 이런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상에서 조선후기의 박물학자들이 『왜한삼재도회』의 물고기를 엉뚱하게 이해했음을 볼 수 있다. 서유구는 전갱이를 고등어, 고등어를 청어로 오해했다. 이규경은 다금바리를 명태, 전어를 청어, 다랑어를 고등어라고 잘못 변증했다. 왜 이런 오류가 생긴 것일까? 『왜한삼재도회』의 기록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寺島良安은 ‘鱈’을 대신해 조선의 한자어명인 ‘못魚’를 대표표기로 삼았다. 이에 반해 ‘鯡’가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靑魚’임을 밝히지 않았다. 이규경과 서유구는 『왜한삼재도회』의 ‘鯡’가 청어임을 전혀 몰랐다. 『왜한삼재도회』에 기록된 대구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혀 변증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조선의 박물학이 ‘문자’에 의지하고 있

171) 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 卷49, 魚類, 江海有鱗魚, 阿羅魚.
17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北魚辨證說」.
173) 榮川省造, 앞 책, pp.96-98; 명정구, 『우리바다 어류도감』(예조원, 2010), p.115.
174) 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 卷49, 魚類, 江海有鱗魚, 못魚.
17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鯆魚辨證說」.
176) 榮川省造, 앞 책, pp.96-98; 최윤, 앞 책, p.46.
177) 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 卷49, 魚類, 江海有鱗魚, 鰶.
178)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鯉節酒盜辨證說」.
179) 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 卷51, 魚類, 江海中無鱗魚, 堅魚. 「日本土字辨證說」에서 “古刀魚, 或曰鯖”이라는 구절이 있지만, 그 자신이 고등어를 다랑어로 동일시 한 것은 분명하다.
180) 榮川省造, 앞 책, pp.182-184; 명정구, 앞 책, p.217.
18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7 盎葉記4, 禽獸魚大小相類.

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실물'을 직접 검증했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그림'으로 물고기를 변증했다. '문자'와 '그림'의 갈림길에서 19세기 조선 박물학자들의 한계가 뚜렷했던 것이다.[182]

청어, 대구, 명태라는 한류성어류는 동아시아 어류박물학에서 중대한 주제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물고기 이름이 중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발은 없었을까? 18세기에 활동했던 伊勢貞丈은 일본식의 한자를 버리고, 조선의 한자를 사용하는 당시의 세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 鱈은 '타라'라고 읽는다. 이 글자는 字書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이다. 때문에 訓은 있어도 音은 없다. 중국에는 대구가 없기 때문에 문자도 없다. 조선에는 이 물고기가 있어 大口魚라고 이름 붙였다. 또한 일명 口大魚라고도 부른다. 조선인이 저술한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타라'라고 말하는 글자는 字書에도, 本草類에도, 중국의 책에도 없다면, 漢名도 正字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鱈'자를 사용함에도, '鱈'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 조선의 大口魚, 口大魚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왜 우리나라의 글자를 버리고 이웃나라의 글자를 사용하는가? … 이런 사람들은 중국인의 똥을 상자에 넣고서 보물이라고 말할 것이다.[183]

당시 일본에서 조선의 한자어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의 이들 한류성 한자어명이 일본을 지배했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 일본은 수산학이 크게 발전하면서[184]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명을 쓰기 시작했다. 조선의 한류성어류인 靑魚와 大口라는 한자어명은 일본에서 점차로 사라져갔다. 민국시기 중국도 일본의 근대수산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185] 그 결과 靑魚와 大口를 대신해 일본의 鯡과 鱈이 공식적인 어명으로 자리 잡았다.[186]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어류박물학에서 조선의 한류성어류가 가졌던 지배력은 상실되었던 것이다.

### 2) 소빙기, 바다, 한류성 어류어업

청어, 대구, 명태라는 한류성어류가 17세기에 동아시아 3국에서 동시에 주목받기 시작

---

182) 박물학에서 '圖像'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박물학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玆山魚譜』와 『海族圖說』: 동아시아 魚類圖譜의 역사」라는 글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183) 伊勢貞丈, 『安齋隨筆』 卷20, 「鱈」.

184) 이근우, 「수산전습소의 설립과 수산교육」, 『인문사회과학연구』(부경대), 11-2(2010).

185) 民國 『霑化縣志』는 "鱈, 俗稱大頭魚, 亦稱大口魚"라고 하여, 일본의 한자어명인 '鱈'이 대구를 대신했다. 民國 『牟平縣志』는 중국의 고등어(鮐魚)를 대신해 '鯖'이, 대구어를 대신해 '鱈'이, 청어를 대신해 '鰛'이 대표 표기로 사용되었다. 일본 수산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民國 『霑化縣志』 卷1, 疆域志, 物産, 水族; 民國 『牟平縣志』 卷1, 地理志1, 物産, 動物, 水族.

186) 沐紹良 編譯, 『魚類圖譜』(商務印書館, 1936), 鰊魚 · 鱈 · 鯖魚.

했던 것은 박물학의 발전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 하필 '한류성어류'가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소빙기(Little Ice Age)'라는 기후변동이다. 지구적인 기후변동의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의 그의 전 시기는 소빙기에 해당한다. 동아시아의 기후를 살펴보면, 15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한랭한 날씨가 두드러졌다. 그 중에서 17세기는 특히 극심했다.[187] 소빙기의 한랭한 날씨는 해수수온을 저하시켜 어류의 이동을 가져왔다.[18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살펴본 바가 있다. 17세기를 전후하여 동아시아에 거대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청어였다.[189]

이러한 거대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기록이 柳成龍의『懲毖錄』이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의 조짐으로 동해의 물고기가 서해에 출현했던 것을 들었다.

> 또한 동해의 물고기가 서해에서 나서 점차로 한강에 이르렀다. 海州는 본래 청어가 났는데, 최근 10년 동안 전혀 나지 않고, 遼東의 바다로 이동하여 났다. 요동사람들이 그것을 '新魚라고 했다.[190]

유성룡의 기록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동해의 한류성어류가 서해로 대거 유입되었고, 조선의 서해에서 나던 청어가 중국의 요동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이수광의 관찰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는 1570년을 전후하여 서해의 청어가 '산동'의 바다에서 나고 있다고 했다.[191] 16세기 후반부터, 동해의 한류성어류가 서해로 유입되는 거대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17세기에도 이어진다. 1673년 김간은 스승인 송시열과 나눈 대화에서 "요동에는 옛날에는 청어가 없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요동사람들이 무수히 잡으면서, 그것을 新魚라고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처럼, 동해의 물고기가 서해로 이동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192] 1700년에 접어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목격된다. "근래 嶺東의 어족이 서해로 옮겼는데,"[193] 이것은 "동해의 수세가 바뀌어,"[194] 그렇다는 것이다. 17세기의 해수저온은 동해의 한류성어류를 서해로 옮기게 했던 것이다.[195] 이런 증언은 1730년대까지 이

187) 김문기, 앞 논문(2010), pp.137-155.
188) 김문기, 앞 논문(2009); 심민정, 앞 논문; 김덕진, 앞 논문 참조.
189) 김문기, 앞 논문(2013); 김문기,「온난화와 청어」.
190) 柳成龍,『懲毖錄』, 錄後雜記.
191) 李睟光,『芝峯類說』卷20 禽蟲部, 鱗介.
192) 金榦,『厚齋別集』卷3, 雜著,「尤齋先生語錄」, 癸丑九月先生在西郊.
193)『숙종실록』권35, 27년 3월 22일.
194)『숙종실록』권37, 28년 7월 1일.

어진다.[196]

유성룡과 이수광의 말에 따르면, 16세기 후반에 서해의 청어가 중국의 요동과 산동의 바다로 대거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요동사람들이 청어를 '新魚'라고 했다는 것은 그들의 당혹감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바다청어를 지칭하는 '말'(靑魚)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 이때였다. 요동에서 '海靑魚'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도 이 낯선 '新魚'를 민물청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197] 이후에 중국에서 청어어업의 발전은 눈부셨다. 郝懿行은 "그 물을 치는 것이 매우 많아 무려 천만에 이를 정도이니, 사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천하게 여겼다"고 했다.[198] 宋琬은 바닷가 사람들은 이것으로 식사를 대용하여, 이것을 '靑魚鬻'이라고 불렀다고 했다.[199] 공급이 넘쳐 청어를 잡으면 소금에 절여 천 리 밖으로 판매했다.[200] 16세기 후반부터 출현한 '낯선 물고기'는 이후 3백여 년 동안 중국인을 살찌웠던 것이다.

일본에서 청어의 의미는 더욱 눈부셨다. 청어어업에 대한 전설은 15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지만 청어를 지칭하는 '鯡'가 처음 출현했던 것은 16세기 후반이었다. 청어어업이 본격화한 것은 마츠마에(松前)藩이 에조(蝦夷)에서 청어어업을 시작했던 17세기였다. 18세기에는 에조 깊숙이까지 어업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일본 전역에 판매되었다. '청어알(カドノコ)'은 귀족들에게 공급되는 고급음식이었지만,[201] 나머지는 너무나 흔해 賤民이나 고양이의 먹이로 사용될 정도였다.[202] 특히 北前船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魚肥는 근세의 농업혁명을 불러왔다.[203] 에조와 오사카를 잇는 거대한 교역망은 에도시대의 상업발전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204]

조선에서 청어어업은 고려말부터 이미 중요한 어업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에서 청어어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것은 17세기였다. 이규경은 "민간에서 '궁핍한 선비나 가난한 백성들이 만약 청어가 없었다면 어떻게 소찬을 해결했으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명언이다"라고 했다.[205] 중국은 '청어죽'으로 식사를 대용했으며, 일본에는 천민과 고

195) 김덕진, 앞 논문, pp.143-145.
196) 김문기, 「소빙기와 청어」, p.95.
197) 『欽定盛京通志』 卷107 物産2, 水族類, 海靑魚.
198) 郝懿行, 『記海錯』, 靑魚.
199) 宋琬, 『安雅堂未刻稿』, 入蜀集上, 「船中無事忽憶故鄕海錯之美因疏其狀戱爲俳體」.
200) 吳振棫, 『花宜館詩鈔』 卷8 古今體詩, 「萊州春日」.
201) 人見必大, 『本朝食鑑』 卷8 鱗部2, 江海有鱗, 鯡.
202) 小野蘭山, 『本草綱目啓蒙』 卷40, 鱗3, 魚類, 靑魚.
203) 山內景樹, 앞 책, pp.34-38.
204) 牧野隆信, 『北前船の時代』(敎育社, 1986), pp.46-49; 中西聰, 『近世·近代日本の市場構造: '松前鯡' 肥料取引の硏究』(東京大學出版會, 1998), pp.83~112.
20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鯖魚辨證說」.

양이의 먹이로 쓰일 정도였다.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없었겠지만, 이것은 소빙기가 동아시아에 가져다 준 '혜택'이었다.

그렇다면 대구는 이러한 변화가 없었을까? 이미 살폈듯이, 조선전기까지 대구는 동해와 남해에서만 나는 물고기였다. '어느 때'부터인지 서해에도 출현했다. 오늘날, 수산학자들에게 서해에서 잡히는 이른바 '왜대구'는 하나의 미스터리이다.

> 우리나라에서 명태는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지만, 대구는 동해와 남해, 서해안에 모두 출현한다. 그런데 서해에서 나오는 대구는 동해안의 대구에 비해 크기가 작아서 '왜대구'로 불리기도 한다. 어미의 전장이 동해안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일한 대구가 왜 이런 크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동해안의 한류가 세력이 강해지는 때가 있었는데**, 남하하는 한류가 제주도 근해에서 난류에 막혀 그 세력이 서해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때 동해안 대구의 일부가 서해로 가게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서해안에 서식하는 작은 대구로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206]

왜대구는 동해에서 나던 대구가 서해에 유입되어 오랜 세월동안 독립적인 개체군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없기에, 막연하게 '동해안의 한류가 세력이 강해진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때'는 언제였을까? 역사에서 이런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역시 『懲毖錄』의 기록이다. 유성룡(1542-1607)은 동해의 한류성어류가 서해로 유입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대구도 유입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유성룡과 동시대를 살았던 高尙顔(1553-1623)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 대구어는 동해에서 나는 것이다. 백여 년 전에 점차로 남해에서도 났다. 50-60년 전에는 또한 서해에서도 났다. 다만 점차로 잘아져서 동해에서 나는 것만 못하다.[207]

고상안의 이 글은 그의 말년에 지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동해에서만 나던 대구가 1백여 년 전에는 남해에서 나고, 50-60년 전에는 서해에서도 났다고 했다. 동해의 대구가 남해를 거쳐 점차로 서해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성룡이 동해의 물고기가 서해에 나타났다는 것과 비슷한 시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16세기 후반에 대구가 서해로 대거 유입되었던 것이다. '왜대구'의 기원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17세기를 전후하여 대구가 서해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허균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대구는 동해, 남해, 서해에서 모두 난다. 북해에서 나는 것이 가장 크고 누른색이

---

206) 최윤, 앞 책, p.61.

207) 高尙顔, 『泰村集』 卷5, 「效嚬雜記」下, 餘話, 大口魚眞魚石首魚.

며 두껍다. 동해에서 나는 것은 붉고 작은데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 서해에서 나는 것은 더욱 작다"라고 했다.[208] 서해에서 나는 대구가 동해의 그것보다 훨씬 작다고 말은 고상안과 일치한다. 이런 사실은 영조 51년(1775), 균역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우의정 李思觀이 "대구는 때로 海西에서도 잡힌다고 하는데, 이로 보건데 물고기가 왕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9] 소빙기로 인해 해수저온현상이 초래되자, 동해의 한류성어류들이 대거 서해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영조 후반기에 편찬된『여지도서』에 충청도와 황해도의 물산으로 대구가 소개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명태가 동해, 조기가 서해를 대표하는 물고기였다면, 대구는 남해를 대표하는 물고기였다.[210]

대구는 본래 중국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는 대구에 대한 이름이 따로 없었다.[211]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대구를 '珍味'로 여겨 선호했다.[212] 중국의 학자들은 대구가 조선에서 나는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213] 대구는 조선의 물고기였던 것이다.[214] 17세기를 전후하여 대구가 서해로 대거 유입되고, 어느 때부터인지 중국에도 대구어업이 시작되었다. 늦어도 19세기 전반에는 '大口'라는 어명이 중국의 方志에 보이고 있다.[215] 조선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대구를 직접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대구어업도 청어와 마찬가지로 17세기에야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人見必大는 대구는 "동, 서, 남해에는 보이지 않고, 단지 北海의 해변에 많이 출현한다"고 했다.[216] 북해도에 주로 서식하던 대구가 에도시대에는 혼슈의 동해방면으로 남하한 것은 대구어업 발전의 한 계기였다.[217] 加賀藩, 福井藩에서는 겨울의 특산품으로 쇼군에게 헌상되었고, 17세기 후반에는 조정에서도 賞讚하여 北國의 大名들이 앞 다투어 헌상했다.[218] 대구는 담백한 맛으로 에도사람들이 정월에 그 성찬을 즐겼다.[219] 그렇지만 조선에 비하면 대구어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다.

같은 한류성어류이지만 명태의 역사는 청어나 대구와는 달랐다. 먼저 명태는 청어나

208) 許筠,『惺所覆瓿藁』卷26, 說部5, 屠門大嚼, 大口魚.
209)『승정원일기』, 영조 51년 3월 7일(갑인).
210) 박구병, 앞 논문(1997), p.218.
211) 趙在三,『松南雜誌』, 漁獵類14, 魚鳥類, 比目大口.
212) 李睟光,『芝峯類說』卷20, 禽蟲部, 鱗介.
213) 宋詡,『竹嶼山房雜部』卷4 養生部4 鱗屬制, 海水江水所産, 大口魚.
214) 李調元,『然犀志』卷下, 附, 杏魚.
215) 道光『榮成縣志』卷3 物産.
216) 人見必大,『本朝食鑑』卷8 鱗部2, 江海有鱗, 鱈.
217) 山口和雄, 앞 책, pp.330-335.
218) 魚類文化研究會 編, 앞 책, p.381.
219) 松岡玄達,『食療正要』卷4, 魚部, 杏魚.

대구와는 달리 서해로 유입되지 않았다. 명태의 분포지역이 청어와 명태보다는 북쪽이었기 때문에 한류가 강했을 때에도 서해까지는 이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에도 명태가 있었지만 명태의 밋밋한 맛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다. 명태가 중요한 어업으로 발전했던 곳은 조선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명태가 서해로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소빙기 동안 동해에서 분포지역이 남하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전기에는 함경도의 경성과 명천에서만 나던 명태는 17세기 이후에는 강원도까지 내려왔다.[220] '명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17세기라는 점은 이러한 해양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서유구는 명태를 "사시사철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당시 동해의 수온이 오늘날보다 훨씬 낮았음을 의미한다. 그는 당시의 번성함을 다음 같이 말했다.

> 모두 원산에서 남쪽으로 실어 보내는데, 원산은 사방의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배에 실은 것은 동해를 거쳐서 가고, 말에 실은 것은 철령을 넘어가는데, 밤낮으로 이어져 팔도에 흘러넘친다. 대개 우리나라 팔도에서 번성하게 유통되는 것은 오직 이 물고기가 청어와 더불어 가장 으뜸이기 때문일 것이다.[221]

성해응은 아무리 깊고 후미진 深山窮谷일지라도 명태를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222] 한류성어류인 명태가 청어와 더불어 조선후기에 가장 중요한 물고기가 되었던 것은 소빙기라는 기후변동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명태에 주목했던 것은 명란젓이라는 '맛'의 교환을 통해서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청어의 생산량이 급감하자 명태에 주목했던 것이다. 이후에 명태는 일본 제일의 어종이었다.[223] 그렇지만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명태는 동해와 북해도에서도 사라졌다.[224] 이것은 명태만의 일은 아니다. 청어와 대구도 20세기에 어획량이 급감하여 사실상 동아시아 바다에서 사라졌다.[225] 물론 황해의 냉수괴에 청어와 대구가 격리되어 일부 남아 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226] 소빙기 동안 동아시아를 살찌웠던 이들 물고기의 공급은 이제 베링 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거대한 지구적인 기후변동을 반영한다.

일찍이 이관명은 청어를 '우리나라 물고기'라고 했다. 그는 요동사람들이 청어가 났을

---

220) 심민정, 앞 논문, pp.39-48.

221) 徐有榘, 『蘭湖漁牧志』, 魚名考, 海魚, 明鮐魚.

222)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9, 文10, 記, 「北海魚族記」.

223) 能勢幸雄 等編, 앞 책, p.231.

224) 石弘之, 『火山噴火・動物虐殺・人口暴發: 』(洋泉社, 2010), pp.114-117.

225) 20세기에 이들 한류성어류의 北進현상은 유럽의 바다에서도 일어났다. D. H. Cushing, *Climate and Fisheries* (Academic Press INC, 1982), pp.122~155.

226) 동아시아 바다에서 청어의 소멸과정은 김문기, 「온난화와 청어」, pp.207-215 참조.

때 그 이름을 알지 못해 ‘조선 물고기’라고 불렀다고 했다.[227] 일본에서 청어의 또 다른 이름은 ‘고려정어리(高麗鰯)’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조선의 ‘靑魚’를 바다청어의 대표이름으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구와 명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물고기가 동아시아에 중요하게 등장했던 것은 소빙기의 기후변동의 영향 때문이었다. 소빙기 기후변동은 인간의 역사에 거대한 ‘위기’를 가져주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일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빙기는 다른 한편으로 한류성어류의 풍요를 가져주었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박물학에서 청어, 대구, 명태라는 조선의 물고기가 중국과 일본에 주목을 받은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이전의 글에서 청어는 지구적인 기후변동의 ‘무언의 증언자’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228] 이제 이 증언자의 이름에 대구와 명태도 함께 올려야 할 것이다.

## Ⅳ. 맺음말

유럽의 역사에서 청어와 대구는 대표적인 ‘금요일의 물고기(Fish on Friday)’였다.[229] 최근 물고기를 통해 인류문명사를 조명한 ‘슈퍼피쉬’라는 다큐멘터리의 4부의 제목도 ‘금요일의 물고기’였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대구가 청어와 더불어 “유럽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렸다”고 했다.[230] 이 말은 청어와 명태에 대한 동아시아 3국의 기록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지만 다큐멘터리 어디에도 동아시아 역사 속의 청어, 대구, 명태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는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학계의 역사학적 관심이 이들 한류성어류의 중요성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한류성어류인 청어, 대구, 명태의 어류박물학이 동아시아에서 교류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이들 ‘물고기이름’의 역사성이었다. 오늘날 靑魚, 大口, 明太의 공식명칭은 일본에서는 鯡, 鱈, 介鱈鱈, 중국에서는 鯡魚, 鱈魚, 狹鱈이다. 중국과 일본이 거의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어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

227) 李觀命, 『屛山集』 卷2 詩, 「見靑魚有感」.

228) 김문기, 「온난화와 청어」, p.215.

229) ‘금요일의 물고기’란 중세시대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에는 肉食이 엄격하게 금지된 반면에 물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되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사순절에도 육식은 금지되고 물고기는 허락되었다. 유럽인들이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에 물고기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기후가 역사에 끼친 영향에 주목해 왔던 브라이언 페이건은 마크 쿨란스키의 ‘대구’ 이야기를 더욱 확장하여 세계사에서 ‘금요일의 물고기’가 가지는 역사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Brain Fagan, *Fish on Friday: Feasting, Fasting, and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Basic Books, 2006).

230) 송웅달, 『슈퍼피쉬: 물고기로 보는 인류문명사』(페이퍼스토리, 2013), p.296.

전에는 달랐다. 오히려 조선의 청어, 대구, 명태라는 이름이 중국과 일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중국은 본래 청어, 대구, 명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물고기를 지칭하는 한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17세기를 즈음하여 청어와 대구가 중국의 바다에서도 나기 시작하면서 '靑魚'와 '大口'라는 조선의 한자를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청어는 鰊・鯡, 대구는 鱈, 명태는 介黨鱈이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었다. 17세기를 기점으로 이들 물고기에 대한 박물학적 지식이 깊어지면서, 18세기부터는 조선에서 사용하던 '청어', '대구'라는 말이 일본 고유의 한자어명을 제치고 정식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명태는 이것과는 조금 달랐다. 명태라는 어명이 일본과 중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조선의 '명란젓'이 '明太子'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명태'라는 한국어명이 일반적인 어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후에 '명태'라는 어명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조선에서 사용했던 어명이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른바 '조선 물고기에서 동아시아 물고기'로의 변화인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한류성어류의 어명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17세기였다는 점이다. 왜 17세기에 이들 한류성어류가 동아시아 3국에서 중요하게 등장했던 것일까? 그 배경의 하나는 동아시아에서 일고 있던 박물학의 발전이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중국과 조선에서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이 나왔다. 이것은 일본으로 전해져서 박물학의 발전을 추동했다. 그 결과 어류박물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중국에는 한류성어류인 '청어'와 '대구'에 대한 한자어명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물고기 이름을 검증했다. 그 영향으로 일본의 박물학자들은 일본에서 사용했던 고유한 어명을 버리고, 조선의 어명을 적극 수용했다. 19세기에는 반대로 일본의 박물지식이 조선에 전래되어 영향을 끼쳤다. 서유구와 이규경을 중심으로 『왜한삼재도회』에 있는 이들 물고기를 辨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대구'를 제외하면, 일본의 물고기 이름들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문자'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변증하려 했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했다. 당시 일본이 '실물', 혹은 '그림'을 통해 박물학을 발전시켰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왜 하필 청어, 대구, 명태라는 한류성어류가 17세기를 전후하여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물고기를 떠올랐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소빙기'라는 기후변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세기를 전후하여 기후가 더욱 한랭해지면서 한류성어류가 대거 남하했다. 그 결과 동해에서 나던 청어, 대구를 비롯한 한류성어류가 서해로 계속 유입되었다. 중국의 바다에 청어가 대거 출현했던 것이 이때였다. 일본이 北海道로 진출하면서 청어와 대구어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것도 17세기였다. 조선은 건국초기부터 청어와 대구는 중요한 물고기였다. 그렇지만 청어와 더불어 조선후기를 대표했던 '명태'의 어명이 처음 출현했던 것도 17세기였다. 조선은 이들

한류성어류에 대해 가장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이후, 이들 한류성어류가 동아시아에 중요하게 부상하게 된 것은 '소빙기'의 관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반적으로 소빙기의 한랭화현상은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했다고 알려져 왔다.[231] 그렇지만 이런 한랭화현상은 다른 한편으로 이들 한류성어류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들 물고기들은 深山幽谷의 가난한 백성까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했다. 소빙기의 '위기' 속에서도 이들 한류성어류는 동아시아를 풍요롭게 했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청어, 대구, 명태라는 조선의 어명을 사용했던 것은 이들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 일찍부터 발전했던 조선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19세기 후반부터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성해응이 우리의 '北海'에서만 난다고 했던 청어, 대구, 명태, 도루묵은 20세기 후반에는 우리바다에서 사라져갔다. 한류성어류의 北進현상은 중국과 일본의 바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늘날 이들 한류성어류의 공급은 훨씬 북쪽의 베링 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어, 대구, 명태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남획이 주요한 한 원인이다. 그렇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이들 물고기가 동아시아의 바다에 대거 몰려들었다가 현재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은 지구적인 기후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청어, 대구, 명태의 어명박물학은 이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이들 물고기들은 지구적인 기후변동의 '무언의 증언자들'인 셈이다.

우리학계에서 '박물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동아시아 3국과 비교하려는 시도는 찾기 어렵다. 어류박물학은 근세 동아시아 해양사의 중요한 한 주제이다. 부족하나마 이 연구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박물학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231) Geoffrey Paker, *Global Crisis: War, Climate Change & Catastrophe in the Seventeen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2013).

# 民國時期 東北地域의 民間信仰과 國家權力

박 경 석(인천대)

목 차

Ⅰ. 머리말
Ⅱ. 민간종교결사의 개황과 국가권력의 대응
Ⅲ.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복합성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본고는 중층적 역사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검증된, 그리고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무형의 사회운영시스템으로서의 '관행'을 통해 중국사회의 통시적 변화와 지속을 조망하려는 관점에서[1] 출발한다. 민간신앙은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일상적인 삶과 민간사회의 변화와 지속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기층민중의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에 틀림없으며, 장기적인 역사변천과정에 있어 일반민중의 사유방식과 사회관계, 정치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2] 또한, 민간의 원시신앙으로부터 변이되고 전승되어진 '思維觀念의 習俗이자 慣例'[3]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신앙을 통해 '관행'이 근대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접근해 보려는 것이다.

사실 민간신앙이라는 용어는 흔히 쓰이지만 매우 모호한 개념이고, 각 나라마다 학문적 전통과 언어 습관에 따라 매우 복잡한 차이를 보인다.[4] 본고에서 말하는 민간신앙이란 말 그대로 '예부터 전해져 내려와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영위되는 신앙, 체계화되지 않은 종교적 관행'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몇 가지를 포괄한다. 첫째, 불교나 도

1)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전인갑/장정아,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試論的 接近」, 『中國近現代史硏究』 제48집, 2010.12. 참조.
2) 金相範, 「唐代 民間 祠廟信仰 硏究의 回顧와 展望」, 『中國史硏究』 第14輯, 2001.8, 213쪽.
3) 江沛, 「近代華北城鄉民間信仰述評」,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7卷 第4期, 2002, 18쪽.
4) 민간신앙 및 민간종교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준, 102~104쪽.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 - 민간종교결사와 권회에 관한 연구』, 1~3쪽. 송요후, 246~255쪽. 吳眞, 「民間信仰硏究三十年」, 40쪽. 등 참조.

교와 같은 지배종교와 구분되는 이른바 '民間宗教結社'가 포함된다. 사료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邪教'로 규정되었다. 둘째, 歷代로 「祀典」에 기재되어 국가에서 공식 제사를 지내는 '正祀'를 제외하고,[5] 민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른바 '淫祀'가 포함된다.[6] 셋째, 呪術(呪術治病 포함), 占卜 및 예언, 風水, 禁忌 등 지배세력에 의해 '迷信'으로 치부되었던 광범위한 신앙 행위 및 현상을 포함한다. 모두가 국가권력과는 별개의 영역, 때로는 상반된 영역에서 존재했던 민간의 신앙이었다.

이런 민간신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실로 방대하여 본고에서 정리해 언급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민국시기의 민간종교로 한정해 본다면, 기존 연구는 대체로 종교 자체에 관한 분야와 민중반란과 연관된 분야로 나뉜다. 말하자면, 민간종교결사의 정치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인데, 白蓮教를 비롯한 민간종교가 민중반란을 통해 국가권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一貫道나 道院, 紅槍會와 같은 큰 조직의 추이를 좇아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었다. 또한, 일정한 시공간 안에서의 일상적 삶 가운데 민간신앙을 인식하기보다는 근대적 내셔널리즘에 입각해 민간신앙을 조망함으로써, 대체로 근대화와 국민국가의 건설, 미신타파 등과 같은 거시적인 담론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국시기의 대표적인 민간종교결사가 전국화, 세력화, 조직화를 도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7]

아무튼 일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민간신앙의 존재양태에 폭넓게 접근하는 연구는 별로 없다. 이에, 본고는 민국시기(만주국 성립 이전) 동북지역에 한정하고 국가권력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일상 속에서의 민간신앙을 살펴보고자 한다.[8] 민간신앙 연구에서 지역성

---

5) 正祀와 淫祀는 유동적이다. 正祀가 淫祀가 되고 淫祀가 正祀가 되기도 한다. 正祀와 淫祀를 구분하고, 淫祀를 철폐하려는 것은 漢代부터 계속되어 온 정책이다.(曺貞恩, 「崇拜와 禁止 : 清代 福建의 五瘟神 信仰과 國家權力」, 『明清史研究』 제27집, 2007.4, 328쪽) 清代만 보면, 正祀의 대상은 社稷, 風雲雷雨, 山川, 公厲, 先農, 孔子(從祀 포함), 城隍, 關羽, 文昌 등이었다.(이윤석, 「중국 근세의 祠廟와 지방 통치 - 全國通祀 및 神像存廢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제119집, 2012.6, 131쪽)

6) '淫祀'의 숭배 대상, 즉 '民神'으로는 자연 숭배에 해당하는 天地神, 太陽神, 月神, 水神, 火神, 山神, 牛王, 馬王, 蟲王, 胡仙, 黃仙, 白仙, 柳仙, 灰仙, 苗王, 瓜王 등, 생활을 보호하는 城隍, 子孫娘娘, 送子觀音, 送子張仙, 瘟神, 痘神, 藥王, 門神, 財神, 福神, 祿神, 壽神, 喜神, 關帝, 龍神 등, 行業을 보호하는 酒仙杜康, 茶神陸羽, 獄神皐陶, 窯神太上老君, 梨園神唐明皇, 飮食業灶君, 文人文昌帝君, 木匠魯班 등등 무수히 많다.(黃云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3期, 2007.6, 94~95쪽)

7)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 - 민간종교결사와 권회에 관한 연구』, 7~14쪽.; 이은자, 『중국 민간 종교 결사, 전통과 현대의 만남』, 책세상, 2005, 24쪽.; 이은자, 「秘密結社의 遺産과 現代中國 — 法輪功의 歷史的 起源」, 『中國學報』 第47輯, 2003. 참조.

8)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中國東北史』에서 原始時代부터 滿洲國時期까지 各 章別로 宗教와 信仰을 다루고 있어 기초자료로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서술이 개설에 그치고 내용도 주로 지배종교에 치중되어 있다.(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全6卷), 吉林文史出版社, 2006.1.) 이밖에,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이나 '民神'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글이 있고,

자료에 기초한 개별연구는 특수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일정한 시공간 안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건설이나 미신타파 등과 같은 거시적인 담론이 지방 차원에서 표현되는 또 다른 방식이나 이에 대한 지방 사회의 응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동북지역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아마도 쓸모 있는 자료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遼寧省檔案館에서 펴낸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을 구할 수 없었다면 연구를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9] 이 자료집은 총 27冊에 걸쳐 약 13,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본고와 관련해서는 國家地方祭祀(제4~5책), 演劇酬神(제5책), 邪教와 迷信(제8책) 및 滿洲國時期 향촌조사 보고서(제9~12책) 등이 유용하다. 이밖에는 기타 民俗 및 文物古跡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10] 시기적으로는 清末과 民國時期에 걸쳐 있다. 본고는 『盛京時報』 등을 일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이 자료집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자료집이 해당 시기의 유관 檔案資料를 모두 수록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편집자의 취사선택이 있었겠지만, 사안별로 상당수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대략적인 全貌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11]

이하에서는 그 존재양태 및 국가권력의 대응 등에 주목하여 민국시기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특징적 면모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민간신앙은 當局에서 '邪教'로 규정했던 民間宗教結社, 巫俗과 결부된 巫醫의 질병치료행위 및 액막이굿(跳大神), 여러 祠廟에서 거행된 '演戲酬神' 및 廟會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간종교결사와 나머지 민간신앙으로 나누어 접근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민간종교결사의 존재양태 및 특성을 국가권력과의 관계와 함께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조직체계를 갖지

(黃云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3期, 2007.6.; 최준, 「중국 동북지역의 민간신앙」, 『중앙민속학』 제12호, 2007.) 단편적으로 黃天教나 祈雨祭의 양상을 고찰하는 연구가 있을 뿐이다.(曲晓范, 「清末民初中国东北地区黄天教活动考」, 『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6卷 第4期, 2005.8.; 王虹波, 「民國時期東北地區的巫術救荒-以盛京時報記載爲中心的考察」, 『求索』 2010-6.; 趙英蘭、劉揚, 「清末民初東北民間祈雨信仰与社會群体心理態勢」,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1卷 第5期, 2011.9.) 이들 연구는 본 연구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으나, 본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는 아니었다.

9) 遼宁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全27冊), 广西師范大學出版社, 2005.

10) 2005년 출간된 이래 이처럼 귀중한 자료집이 거의 활용되지 않아 다소 의아하다. 필자가 검색한 바로는 이 자료집을 인용한 연구가 모두 6편 있는데, 민간신앙과 관련이 있는 논문은 1편뿐이다.(趙英蘭、劉揚, 「清末民初東北民間祈雨信仰与社會群体心理態勢」,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1卷 第5期, 2011.9.) 그것도 단 한 곳에서 단편적으로 인용하였을 뿐이다.

11) 檔案(공문서)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주목했던 사안에 한정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본고가 민간신앙과 국가권력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정 정도 자료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民衆은 스스로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이 직접 기록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어쩔 없는 측면이 있다.

않은) ‘순수한’ 민간신앙을 고찰하여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특성에 접근해 볼 것이다. 전반적으로 동북지역이 이주민에 의해 개발된 이민사회임을 고려할 것이고, 민간신앙을 정치적 맥락에서 볼 것인가, 일상의 측면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염두에 둘 것이다.

## Ⅱ. 민간종교결사의 개황과 국가권력의 대응

전술하였듯이, 白蓮教를 비롯한 민간종교결사는 민중반란을 통해 국가권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반역’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런 경향이 연구에도 일정 정도 반영되었다. 그렇다면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는 실제 어떤 존재양태를 보였을까. 아래에서 우선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이하 ‘檔案資料’라고 칭함)에 나타나는 민간종교결사가 대략 어떤 양태를 보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일상성’에 주목하여 특징적 면모를 간취해 보고자 한다.

### ⑴ 黃天教

동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민간종교결사는 黃天教였다. 黃天教는 黃天道, 黃天道教라고도 했는데, 明代 嘉靖年間에 河北省 萬全縣 사람 李賓에 의해 창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賓은 군대에 갔다가 전쟁 중에 눈을 잃고 明末의 여러 秘密教門을 떠돌다가 黃天道教를 창립했다고 한다. 淸代 初期에 그의 후예들이 계속 傳道에 나서 화북지방에 널리 퍼졌고, 당시 영향력이 비교적 컸던 민간종교의 하나가 되었다. 이후, 乾隆 28년(1763) 4월, 黃天教의 오랜 거점이었던 碧天寺(河北省 萬全縣 膳房堡 소재)에서 회동하고 있던 지도부가 대거 체포되는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黃天教徒가 체포되는 일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淸末에는 교세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던 터였다.[12]

동북지역에서는 民國 初年에 갑작스럽게 그 존재를 드러낸다. 1914년 6월과 8월에 『盛京時報』에는 黃天教의 내용, 蔓延함, 최근의 거동을 알리는 장문의 기사들이 실리는데,[13] “雙陽縣의 저명한 黃天教 教主 蔡國山이 체포되어 黃天教의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14]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주 蔡國山의 존재는 ‘檔案資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5]

---

12) 張莉, 「黃天教在淸代的傳播」, 『歷史檔案』 1996年 3期.

13) 「東三省之邪教世界」, 『盛京時報』 1914.06.06.; 「黃天教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黃天教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黃天教最近之擧動」, 『盛京時報』 1914.08.21. 등.

14) 「黃天教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15) 「北鎭縣查明縣屬境內並無黃天邪教(1915.08.3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

黃天敎를 비롯해 민간종교가 흥기하는 배경에는 대개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도사리고 있었다. 『盛京時報』의 관련 기사는 1910~12년간 동북에 크게 유행했던 콜레라 전염병이 黃天敎의 흥기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고 한다. 1912년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黃天敎는 木板을 만들어, '콜레라의 발생을 인민이 黃天敎를 믿지 않아 하늘이 재앙을 내릴 징조라고' 선전하였고, 전염병에 대한 인민의 공포심을 부추겨 입교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콜레라를 피할 수 있는 符籍을 인쇄해서 판매하였고 그 돈으로 각지에 靈岩閣과 같은 시설을 건축하자 다수의 인민이 앞 다투어 입교했다고 한다.[16]

콜레라의 유행이 黃天敎의 확산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黃天敎가 설파한 敎義를 보아도 앞뒤가 맞아떨어진다. 입교를 권유하는 敎義의 골격은 비교적 단순하다.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대재앙이 있을 터인데, '입교하지 않은 자는 이를 피할 수 없고, 입교한 자는 樂土로 들어가 일하지 않아도 金銀과 토지,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부금을 포함한 기여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는데, 衆生, 天恩, 保恩, 正恩, 丁行이라는 다섯 등급이 있었고, 그나마 여성은 正恩까지만 올라 갈 수 있었다.[17] 주지하듯이 白蓮敎 이래 비밀결사종교가 갖는 勸敎의 기본 골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18]

전도 방법으로는 單度法(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전도) 또는 齊度法(남녀가 상호 전도)이라 하여 '맨투맨'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다.[19] 또한, 明正學堂과 같은 '宣講堂'을 빌려 宣講을 통해 전도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乩壇을 세우고 砂盤과 木筆 등을 마련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扶乩를 시행했다고 하는데,[20]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점술의 일종이다.

이상의 黃天敎는 동북지역에서 민간종교 가운데 가장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檔案資料'를 살펴보면, 奉天, 哈爾濱, 呼蘭, 遼陽, 錦西, 興城, 西豊, 本溪, 雙陽, 北鎭, 黑山, 蓋平, 開原 等 거의 전역에서 黃天敎가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거나, 黃天敎徒가 적발되었다.

### ⑵ 大乘門

민국시기 동북지역에서 당국이 주목한 또 다른 민간종교는 大乘門(大乘敎)이다. 大乘門 역시 워낙에 전국적인 비밀종교결사였다. 주로 河北, 山東, 安徽, 浙江, 江西, 福建, 臺灣,

---

一) 第8冊』, 广西師范大學出版社, 2005, 15쪽.

16) 「黃天敎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17) 「黃天敎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18) 특히, 黃天敎는 워낙에 '無生老母' 신앙이 체계화되는 과정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한다.(沈偉華, 「芻議黃天敎无生老母信仰的形成及其在民間宗教信仰体系中的地位」, 『淮陰師范學院學報』 第35卷, 2013.5.)

19) 「黃天敎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20) 「黃天敎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甘肅, 寧夏 등에 널리 퍼져 있었다. 계통으로 볼 때 大乘門은 黃天教와 마찬가지로 羅教에서 연원하는 하나의 支派로 볼 수 있다. 元代 말기 미륵신앙과 白蓮宗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白蓮教의 탄생이 민간종교결사의 기점이었다면, 羅教의 등장은 白蓮教 이후 민간종교결사의 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劃期를 이루었다. 羅教는 明代 중기 羅淸이라는 인물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無生老母'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신격을 창출하고, 이를 최고의 神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설정하였다. 羅教는 白蓮教와 명확히 다른 교파였지만 明末淸初 백련교의 교리, 특히 미륵하생신앙과 혼용되면서 여러 중요한 교파들을 창출시켰다. 羅教가 등장한 이래 淸代에 걸쳐 성립한 민간종교결사는 대부분 羅教의 교리와 백련교의 미륵하생신앙이 혼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 大乘門 또한 이런 맥락에서 성립된 수많은 教門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민국 이후 大乘門은 일정 정도 변질되어 官僚나 政客과 결합해 세력을 확장하고 기층 인민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고, 다수의 수령이나 간부가 지주 토호나 지방 관리였다고도 한다.[22] 일반적으로 말해서, 明淸時期에는 일부 몰락 지식인과 游民, 無賴 등을 제외하고 농민이 민간종교결사의 대부분을 이루었지만, 민국시기에 들어서면서는 군벌, 관료, 지주, 자본가 등도 참여하였다는[23] 점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다. '檔案資料'를 보아도, 鳳城縣에서 大乘門 教徒를 적발했는데 吉林省 省議員 全家人 등이 大乘門을 믿었고, 1922년 1월 邪教 혐의로 체포된 楊樹泰가 '필경 省議員의 명의를 빌려 사람들을 속이고 入教하게 했다'고 한다.[24] 정치적 유력자와의 결탁이 엿보인다.

이런 大乘門 教徒가 동북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곳은 鳳城縣 大湯溝 일대였다.[25] 아무튼 大乘門은 민국시기 奉天省(1928년 遼寧省으로 개칭해 오늘날에 이름)의 鳳城縣 일대를 장악했고, 大乘門과 鳳城縣의 관계가 특별했다. '檔案資料'에서도 大乘門 관련 언급은 鳳城縣에서만 나오고, 鳳城縣에서 발견된 민간종교는 大乘門뿐이었다.

### ⑶ 白陽教

奉天省의 黑山縣과 昌圖縣에서는 白陽教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淸代 민간종교가 보편적으로 수용했던 이른바 '三期末劫說'에 따르면, 無生老母가 창조한 우주는 시작부터 최후 멸망까지 세 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과거는 練燈佛이 장악한 靑陽世이고, 현재는 釋

21) 이은자, 『중국 민간 종교 결사, 전통과 현대의 만남』, 35~44쪽.
22) 趙嘉朱, 「綜論會道門的流傳演變与活動特点」, 『貴州文史叢刊』 2005年 第3期, 3쪽.
23) 이은자, 「秘密結社의 遺産과 現代中國 — 法輪功의 歷史的 起源」, 594쪽.
24) 「鳳城縣查獲大乘門邪教教徒(1922.01.2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74쪽.
25) 「鳳城縣解送邪教大乘門首領焦玉珍、張萬通(1923.11.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83쪽.

迦佛이 장악한 紅陽世이며, 미래는 彌勒佛이 장악한 白陽世가 된다. 민간종교는 대개 '미래의 구원'을 간절히 기원했기 때문에, '白陽'은 민간종교결사의 명칭으로 흔하게 사용되었고, 明淸代에 걸쳐 龍天教, 羅教의 별칭 내지 支派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26] 가깝게는 1815년에 '天理教 反亂'을 일으켰던 林淸이 본래 紅陽教 계통의 白陽教 教徒였다. 그가 나중에 天理教라는 새로운 教名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들 紅陽教, 白陽教, 天理教 등은 모두 山東에서 흥기했던 八卦教에서 연원한다.[27]

'檔案資料'에 따르면, 동북지역에서 白陽教는 1924년 6월 李夢月을 비롯한 15명의 信徒가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孫慶海라는 巡官이 순찰 도중에 黑山縣 小三家子 西街에서 손에 令旗와 令箭을 들고 북을 치며 길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李夢月 무리를 갑자기 발견하고 치안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체포했다는 것이다.[28] 이밖에, 1925년 7월 昌圖縣 八面城에서 경찰이 白陽教 신도 郭貴元 등을 체포하는 사건도 있었다.[29]

### ⑷ 동북 자생의 민간종교결사 : 大聖門, 二角二分五, 家理教

'檔案資料'에서 거론되는 민간신앙결사 중에 大聖門, 二角二分五, 家理教 등은 다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동북지역 토착의 민간종교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檔案資料'에 따르면, '1919년 1월에 黑山縣과 開原縣의 知事가 각각 산하 警察所에 大聖門이라는 일종의 邪教가 사람들을 홀려 재물을 편취하고 있으니 조사해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30] 지시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1926년 1월에도 奉天全省警務處가 黑山縣 知事에게 大聖門으로 인한 인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조사해 엄금하라는 訓令을 내리고 있는[31] 것으로 보아, 대개의 민간종교가 그렇듯이 당국의 일시적 단속으로는 근절되지 않았다. 아무튼 大聖門은 '大聖'이라는 명칭에서 유교적 색채가 엿보이는 특이함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孔教會의 會員證과 徽章 등을 도용하여 孔教會 會員임을 사칭하기도 했다.[32]

---

26) 馬西沙/韓秉方,『中國民間宗教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8, 689; 691; 986쪽.

27) 李尙英,「八卦教的淵源、定名及其与天理教的關系」,『淸史硏究』 1992年 第4期.

28) 「黑山縣拿獲斂財邪教教匪李夢月等(1924.06.14)」, 遼寧省檔案館 編,『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1~128쪽.

29) 「查禁昌圖縣境內白陽邪教(1925.07.25)」, 遼寧省檔案館 編,『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2~147쪽.

30) 「黑山縣查禁邪教(1919.01.08)」; 「開原縣查禁大聖門邪教(1919.01.27)」, 遼寧省檔案館 編,『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44~54쪽.

31) 「奉天全省警務處查禁邪教巫醫騙財害人(1926.01.28)」, 遼寧省檔案館 編,『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8~152쪽.

32) 「開原縣查禁大聖門邪教(1919.01.27)」, 遼寧省檔案館 編,『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53~54쪽.

1913년 6월 孫立志라는 일반인의 신고로 적발된 '二角二分五'라는 민간종교도 다른 지역에서는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檔案資料'에 따르면, 遼陽, 海城, 營口, 蓋平 등에서 '二角二分五'라는 '邪教'가 '큰 재난(大劫)이 와서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터인데, 자기 教에 들어오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고, 나중에 관직을 얻어 眞主를 모시고 升平을 누릴 수 있다'고 전도하여 수만 명의 신도를 모았다. 또한 헌금에 따라 土盤, 銅盤, 金盤이라는 등급을 부여해 거액을 편취하였다고 한다.[33] 1919년 1월 14일자 『盛京時報』에서도 '海城縣 북쪽의 西陽寺 山廟에 二角二錢五라는 邪教가 있어 勸教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은 鄕民을 愚弄하여 金錢을 편취'한다고 전하고 있다.[34]

家理教도 동북지역에서 자생한 민간종교결사인 것으로 보인다. '檔案資料'에 따르면, 1930년 4월 遼寧全省警務處訓令 第451號에, "家理教, 즉 安淸幇(安靑幇)의 一種이 따르는 무리를 모아 結黨하였다"[35]고 적고 있다. 安靑幇은 靑幇의 한 집단인데,[36] 주지하듯이 靑幇은 淸初 이래 가장 널리 전파되고 영향력도 가장 컸던 會党(민간비밀결사)의 하나로서, 淸末民國時期에는 洪門, 哥老會와 함께 3대 幇會 중의 하나였다. 家理教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은데, 아무튼 靑幇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官吏, 軍人, 商人, 소수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전교하여 활동을 동북 각지로 확대하였다고 한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靑幇의 武裝自衛活動에 종사하였는데, 尙武의 기운이 농후했다고 한다.[37]

### ⑸ 사회단체 형태의 민간종교결사 :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法師會

이밖에, '檔案資料'에는 동북지역 민간종교로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法師會 등의 명칭이 나온다. 이들은 '邪教'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래의 某某教라는 명칭을 피하고 조직체계도 일반 사회단체를 모방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1924년 3월 奉天全省警務處와 保甲總辦公所가 공동으로 黑山縣 知事에게 보낸 「密令」에 따르면, '興城縣, 凌源縣, 朝陽縣 등에서 자칭 北京輔國仁義軍이라는 邪教가 護身 符籍으로 인민을 현혹하고, 劉寶善이라는 教主가 군대처럼 司令部를 설치해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北京輔國仁義軍라는 조직이 동북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이들이 이런 명칭을 사용한 것은 당시 軍閥內戰 즉, 1, 2차 直奉戰爭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당시는 1922년 4월에 일어난 1차 直奉戰爭과 1924년 9월에 발발한

33) 「遼海營盖等處邪教惑衆幷借名斂財應通飭查拿(1913.7.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3~6쪽.
34) 「邪教惑人」, 『盛京時報』 1919.10.14.
35) 「遼寧全省警務處查禁家理教收徒結黨(1930.04.0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77쪽.
36) 池子華, 「流民與近代盜匪世界」, 『安徽史學』 2002年 第4期, 2002.11, 41쪽.
37) 慕俠, 「宗道臣与日本少林武術(上)」, 『精武』 2004年 第6期, 47쪽.

2차 直奉戰爭의 와중에 있었다.

1930년 7월 撫順縣 公安局長이 遼寧全省警務處에 '教匪 首領 劉敏峯, 楊兆隆, 張雲普 등이 萬國道德會라는 이름으로 傳教 行爲를 벌여 체포했다'[38]고 보고하였다. 萬國道德會는 1921년 山東 지역에서 江錘秀, 江希張 父子가 만든 공개조직으로 당시 閻錫山, 康有爲, 孔德成 등의 지지를 받았다. 儒教, 佛教, 道教, 기독교, 이슬람교를 혼용해 '道德의 회복을 통한 救世'를 교리로 내세웠고, 정교한 章程과 조직체계를 갖추었다.[39] 동북지역에서는 1929년에 朝陽縣 사람 王鳳儀가 萬國道德會 東北分會의 책임자가 되면서 전파되기 시작했다.[40] '檔案資料'에서 萬國道德會가 민간종교로 거론된 것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민간종교가 당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공개된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사실상 민간종교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과잉 탄압')이다. '檔案資料'의 「遼寧全省警務處訓令」에서도 이들을 '邪教'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教匪 수령으로 체포된 자들도 진술에서 자신의 활동이 정당하고 공개적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萬國道德會를 教匪로 몰아 信徒를 체포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法師會의 경우에도 '邪教'의 혐의가 분명하지는 않았다. 黑山縣 大夏窩堡村에서, 三皇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집회를 열어 經法을 강연하고, 槍旗를 만드는 등의 일이 있자, 村長이 혹시나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까 염려해 이들을 고발하였고, 해당 지역의 大隊長이 체포에 나섰다. 이에 法師會 會長이 '우리가 官府에 반항했던 적인 있었느냐'고 항의하자, 大隊長은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깨닫고 우선 會長만 체포한다. 결국에는 22명의 信徒가 체포되고, 다수의 장물이 압수되었다.[41]

이상에서 보았듯이, 본고에서 기본 자료로 채용한 '檔案資料'에는 二角二分五, 黃天教, 大聖門, 大乘門, 北京輔國仁義軍, 白陽教, 家理教, 萬國道德會, 法師會 등의 민간종교결사가 등장하였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명망을 얻었던 九宮道, 先天道, 在理教, 道院의 紅卍字會 등이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

38) 「遼寧全省警務處查禁邪教萬國道教會(1930.07.0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86~192쪽. 제목에 '萬國道教會'로 되어 있는 것은 편집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 '萬國道教會'가 한 차례 나오지만, 그 뒤에는 '萬國道德會'로 되어 있고 다른 자료 어디에도 '萬國道教會'라는 것은 없다.

39) 萬國道德會에 대해서는 雷輝, 「萬國道德會的歷史考察」, 山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 참조.

40) 雷輝, 「萬國道德會的歷史考察」, 188~189쪽.

41) 「黑山縣拿獲邪教法師會教徒(1931.11.2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95~202쪽.

42) 濮文起, 「民國時期民間秘密宗教簡論」, 『天津社會科學』 1994年 第2期, 94~96쪽.; 「東三省之邪教世界」, 『盛京時報』 1914.06.06. 특히 在理教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扶餘縣에서는 在理教가 佛教, 儒教를 포함한 전체 종교에서 10%를 차지했다고 한다.(「吉林省扶餘縣

이상의 동북지역의 민간종교를 보면, 內地에서 이미 유행하던 민간종교결사가 동북지역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 전술했듯이, 黃天敎, 大乘門, 白陽敎, 在理敎,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道院의 紅卍字會 등이 關內에서 유입된 사례들인데, 이것들은 二角二分五, 大聖門, 家理敎 등 자생적인 것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민간종교의 유입은 근대 이후의 동북 사회가 내지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을 통해 성립되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檔案資料'에서도 黃天敎 하얼빈 分部의 部長 李繼業이라는 사람은 山東 掖縣 사람으로서, 하얼빈의 黃天敎가 이민과 함께 유입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43]

이런 민간종교결사가 동북에 유입되고 흥기하는 데에는, 2천년에 걸친 중국 민간종교결사의 역사로 볼 때도 그렇듯이, 天災와 人禍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했다. 우선 天災의 경우는 전술하였듯이 콜레라의 유행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예컨대, 黃天敎는 '콜레라의 발생을 인민이 黃天敎를 믿지 않아 하늘이 재앙을 내릴 징조라고' 선전하였고, 전염병에 대한 인민의 공포심을 부추겨 입교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44]

人禍와 관련해서는, 1922년 4월 1차 直奉戰爭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민간신앙의 흥기와 연결되는 명확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922년 6월 21일자 「奉天省長公署訓令」에 따르면, 당시 我軍(奉天軍)이 패퇴하자 흉흉한 '유언비어'가 횡행하였는데, 첫째, 奉天軍이 이번 패배로 철저하게 괴멸 당하였으니, 아무도 군대에 가서는 안 된다. 군대에 가게 되면 곧 바로 돌아가겠다고 울부짖어라. 둘째, 군대의 패배에 이어 대재앙이 따라올 것이니, 지금 회개(修好)하지 않으면 모두가 橫死할 것이고, 회개하면 능히 超脫할 수 있다. 여자는 伴仙이라고 하여 산에 올라 밤을 지새워야 한다.(당국은 이때 온갖 음탕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함.) 셋째, 掛號라 하여, 긴급하게 每人 大洋 5元을 보내면 災厄을 면할 수 있다. 넷째, 장래 萬人이 구덩이에 묻힐 것이니, 인민은 가능한 빨리 이사를 해야 한다. 단, 산 속으로 피신해서는 保佑費라고 해서 반드시 大洋 2元을 보내야 한다. 이는 黃陽敎의 경우인데, 이를 통해 直隸 쪽과 가까운 奉天省 서부 일대를 중심으로 敎徒가 수만에 이르렀다고 한다.[45]

기본적으로 인민이 민간종교를 찾는 이유가 불안과 위험에 대처해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민간종교가 더 잘 확산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

四家子屯風俗習慣、生活水平(1938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1冊』, 202쪽.

43) 「北鎭縣查明縣屬境內並無黃天邪敎(1915.08.3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5~18쪽.

44) 「黃天敎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45) 「奉天省長公署查禁邪說惑衆(1922.06.2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78~82쪽.

않게 짐작할 수 있겠다. '檔案資料'를 통해, 민간종교결사 이외에 廟會나 演戲를 통해 기원하는 것을 살펴보아도,[46] 각종 자연재해와 전염병, 兵亂과 戰禍, 匪災 등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불모지를 개척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신앙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민간종교결사의 결성과 입교는 기본적으로 天災人禍의 위기상황에 대처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세적' 행위였다. 이러한 '수세적' 태도는 당국의 처벌에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淸末의 상당수 '民変'이 이른바 '官逼民反, 紳逼民死'의 矛盾과 口號를 배경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47] 민간종교결사가 본래 저항을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민국시기 동북지역에서는 '官逼'(당국의 단속과 탄압)조차에 대해서도 '民反'(저항)을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1923년 11월 '邪教' 혐의로 체포된 大乘門 教徒 焦玉珍, 張萬通 등은 '保甲에 의해 무고를 당한 것으로 농사꾼인 자신들은 감히 異端에 힘 쓴 일이 없고, 不學無術한 잘못밖에 없으니, 살펴주시면 大德無極하겠다'고 관용을 간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教徒들은 이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바로 잠적하였다.[48] 또한, 전술했던 白陽教 首領 李夢月은 '자신들은 기우제에 참가했을 뿐이고, 令旗나 令箭과 같은 물품은 大民屯에 얻은 것이며, 부정 해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世人을 救濟하기 위해 좋을 일에 힘쓰고 있으니 너그러이 살펴주기를' 간청하였다.[49] 하지만 또 다른 공문에서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지방에서 패거리를 지어 焚香하고, 謠言으로 대중을 미혹한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50] 결국 李夢月은 경황 중에 도망해 숨고, 몇 명의 教徒들은 체포되어 令旗, 令箭을 포함한 다수의 장물과 함께 縣警察所로 송치되었고, 나머지 教徒들은 해산하였다고 한다.[51] 저항이나 '반역'은커녕 곤란을 회피하려는 '수세적', '소극적' 태도가 역력하다.

---

46)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5冊』, 375~500쪽.

47) 章征科, 「辛亥革命時期鄉村民變的特点及成因探析」, 『華東師范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3卷第2期, 2001.3.; 王先明, 「士紳階層与晚淸"民變"－－紳民沖突的歷史趨向与時代成因」, 『近代史硏究』 2008年 第1期. 참조.

48) 「鳳城縣解送邪教大乘門首領焦玉珍、張萬通(1923.11.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83~89쪽.

49) 「黑山縣拿獲斂財邪教教匪李夢月等(1924.06.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1~128쪽.

50) 「黑山縣淸查邪教白陽教情形(1924.06.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9~131쪽.

51) 「黑山縣拿獲邪教白陽教餘黨(1924.07.0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32~135쪽.

또한, 동북지역 민간종교결사의 활동이나 조직을 보면 '공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요컨대, 전술한 黃天敎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도 방식이 상당히 공개적이었다. '맨투맨'으로 전도하는 방법 이외에, 宣講堂을 빌려 宣講을 통해 전도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黃陽敎의 경우에도 여러 곳의 宣講堂에서 집회를 열면 40~50명의 인원이 참가했다고 한다.[52] 1923년 11월의 「奉天省長公署布告」에서도 '각 寺廟가 대담하게도 學堂을 假借하여 宣講 명의로 邪敎를 성대히 제창하고, 黨徒를 모으니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지적하였다.[53] 또한, 민국시기에는 '扶乩'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통적인 점술이 전도나 민간신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런 경향이 동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檔案資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54] 扶乩라는 점술은 보통 여러 사람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한다. 이밖에, '길거리 전도' 같은 것도 보인다. 일례로 전술했듯이 白陽敎徒 李夢月 무리는 '손에 令旗와 令箭을 들고 북을 치고 폭죽을 터뜨리며 路上에서 勸敎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전술한 大乘門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종교결사가 지역의 유력자와 결탁했던 경향도 공개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전술했듯이 일반 사회단체를 모방한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法師會나 당시 '남만주 지역 중국인의 종교계 및 사상계에 가한 신선한 衝動이 적잖았다'[55]고 하는 道院 附設 紅卍字會의 다양한 사회활동도 민간신앙의 공개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동북지역 민간종교결사의 '공개적 성격'을 볼 때, 공세적 '반역'을 함의하는 '**비밀**결사'로서의 성격(비밀성)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白蓮敎를 비롯한 대개의 민간종교결사는 민중반란을 통해 국가권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반역'이나 '비밀결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런 경향이 연구에도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동북지역 민간종교결사의 '수세적', '소극적' 태도나 '공개성'은 이러한 이미지와 상당히 배치된다. 필자는 민간종교결사에 상기한 '정치적' 기능과 일상의 신앙생활을 담보해주는 '일상적'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에는 '일상성'이 한층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종교결사의 '일상성'은 당국의 민간종교결사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민국시기 동북의 지방 당국은 민간종교결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

52) 「奉天省長公署查禁邪說惑衆(1922.06.2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78~82쪽.

53) 「奉天省長公署查禁邪敎惑衆斂財(1923.11.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90~105쪽.

54) 「東三省總督等嚴令禁止入廟燒香扶鸞請乩(1910.04.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쪽.; 「奉天省長公署查禁邪敎惑衆斂財(1923.11.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90~105쪽.

55) 松尾爲作, 『南滿洲ニ於ケル宗敎槪觀』, 敎化事業奬勵資金財團, 1931, 33쪽.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민국시기 東三省 省政府 및 縣政府는 상기한 민간종교를 모두 '邪教'로 규정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히 금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런 '邪教'에 대하 엄단 의지는 漢代 이후 歷代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다. 代代로 왕조 말기에는 어김없이 '비밀종교결사'가 '반역'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엄단 의지의 저변에는 민간종교결사가 언제 '반역'의 중심에 서서 기존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민국시기 동북지역에서는 국가권력이 '邪教'의 어떤 측면을 우려하였을까? 1925년 7월에 발령된 「奉天省長公署訓令」은 當局이 '邪教'에 대해 무엇을 우려하는지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 邪教의 해로움은 작게는 다중을 홀려 愚民의 재물을 편취하고, 때로는 失業을 야기하고, 크게는 반역(不軌)을 도모하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것에 있다. 黃巾賊이나 白蓮教를 다시 불러낼 수도 있으니, 지방을 책임 맡은 자는 마땅히 진지하게 조사하고 금지해야(查禁) 한다.[56]

'檔案資料'를 분석해 보면, '邪教'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惑衆斂財'이다.[57] '다중을 미혹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뜻인데, '邪教'가 거론되는 거의 모든 공문에서 관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술했듯이, 실제로 민간종교결사에서는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는 사례가 많았다. 大聖門의 경우, '재물을 내면 長生할 수 있다'고 했고, 二角二分五는 헌금 액수에 따라 土盤, 銅盤, 金盤 등으로 등급이 매겨졌다. 黃陽教도 '掛號'라 해서 '긴급하게 大洋 5元을 내면 災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인민이 재물을 편취 당하는 바를 '邪教'의 가장 큰 폐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邪教를 선전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편취함에 그 뜻이 있다'[58]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奉天省長公署訓令」에서 보듯이, '치안'이나 '반역'에 대한 우려 또한 당국이 '邪教'를 보는 주요 시각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邪教'를 엄격히 '查禁'하여 '치안'을 확보하라는

---

56) 「查禁昌圖縣境內白陽邪教(1925.07.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4쪽.

57) 「遼海營盖等處邪教惑衆幷借名斂財應通飭查拿(1913.07.02)」; 「奉天省長公署查禁邪教惑衆斂財(1923.11.17)」; ; 「黑山縣拿獲斂財邪教教匪李夢月等(1924.06.14)」; 「黑山縣政府嚴令查禁邪教巫醫惑衆斂財(1929.04.26)」; 「復縣縣政府取締復縣白雲山朱仙姑惑衆斂財(1931.08.19)」,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3~6쪽; 90~105쪽.; 121~128쪽.; 163~168쪽.; 193~194쪽. 등등.

58) 「奉天全省警務處查禁邪教巫醫騙財害人(1926.01.28)」,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8쪽.

언급이 상기한 '惑衆斂財'와 대구를 이루어 관용적으로 표현된다. 다만, 전술한 민간종교 결사의 '수세적' 태도나 후술하는 단속의 느슨함을 고려해 볼 때, '반역'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현실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치안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반역'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경우는 상기한 「奉天省長公署訓令」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檔案資料'의 문맥을 보아도, 국가권력 차원의 저항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었다는 느낌이다.

이밖에, 인민이 '邪教'에 빠져 일을 하지 않아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59] 이외에, 男女 教徒가 야심한 밤에 어울려 풍속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다소 있었다. 예컨대, 1918년 8월 黑山縣公署에서 각지 게시한 「告示」에는 '近者에 男女 教徒로 인해 省都의 야심한 밤이 어지럽다'[60]는 구절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男女의 混雜'에 대한 우려는 '迷信'에 대한 당국의 인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교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邪教'와 관련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 아래 省政府나 縣政府는 산하 경찰 및 향촌의 保甲, 村長 등에게 '邪教'를 엄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거듭해 발령하였다. 은밀히 비밀요원(密查員)을 보내 조사하기도 하였으나,[61] '邪教'의 활동이 향촌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기층의 保甲, 警甲, 村長의 손에 달려 있었다.[62]

그러나 '邪教'를 대하는 基層과 上級의 인식과 태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층의 행정체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상급에서는 기층의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책망하였다. 심지어는 村長으로 하여금 해당 향촌에 '邪教'가 없다는 보증서(切結)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63]

> '邪教'를 단속해야 하는 區長, 警甲, 村長 등이 이를 放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64]
>
> 各縣은 (邪教를 단속하는) 일에 대해 경솔히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는 규정으로 여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았다.[65]

---

59) 「奉天省長公署布告第1號(1923.11.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05쪽.

60) 「黑山縣公署查禁邪教維護治安(1918.08.2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42쪽.

61) 「黑山縣查禁邪教北京輔國仁義軍(1924.03.2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12쪽.

62) 「開原縣查禁大聖門邪教(1919.01.2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53~54쪽.

63) 「黑山縣清查邪教白陽教情形(1924.06.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9쪽.

64) 「查禁昌圖縣境內白陽邪教(1925.07.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2~147쪽.

65) 「遼寧省政府嚴令查禁邪教(1929.03.1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 邪術로 재물을 편취하는 일은 본디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로, 省政府에서 거듭해 명령을 내렸으나, 날이 좀 지나면 다시 해이해져 警察이 단속에 힘을 쏟지 않는다.[66]
>
> 여러 차례 查禁을 공식 嚴令했는데, 각 지방관은 奉行하는 데에 힘쓰지 않고, 시일이 흘러 소홀한 마음이 생겼다.[67]

이상에서 보듯이, 기층에서는 대체로 민간종교에 대한 단속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연구에 따르면, 清代에도 '邪教' 단속에 대한 민간의 태도는 완전 무관심이었고, 保甲制는 邪教의 체포를 위한 관방의 무기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邪教'를 적극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보면 그 동기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邪教 자체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한다.[68] '檔案資料'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례로 1923년 11월 大乘門 혐의로 체포된 陳得和 등은 保長, 區長, 村正이 모두 근일에 제멋대로 취임한 무뢰배로서 자신들을 허위로 고발해 무고를 당했다고 호소하였다.[69]

민간종교결사는 教徒 나름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국의 느슨한 대응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전술했듯이 단속을 계속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종교결사는 계속되었다. 일례로, 鳳城縣 羊峪의 주민 楊樹泰는 大乘門을 믿었는데, '安東審判廳에서 徒刑(징역)을 판결 받아 죄 값을 치른 후에도 여전히 邪教를 신앙했다'고 한다.[70]

이상에서 민간종교결사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재물 편취'에 치중된 인식, '邪教'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상급 정부와 기층 행정체계의 괴리와 그로 인한 느슨한 대응, 이에 따른 민간종교의 지속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권력의 대응에서도 민국시기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일상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 156쪽.

66) 「安東縣嚴禁巫醫跳大神騙錢(1930.05.3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84쪽.

67) 「奉天省長公署布告第1號(1923.11.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05쪽.

68) 梁景之, 「從"邪教"案看清代國家權力与基層社會的關系」, 『清史研究』 第3期, 2003.8, 53~57쪽.; 周向陽, 「查禁"邪教": 清代民間的回應及原因探析」, 『南昌航空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4卷 第2期, 2012.6. 참조.

69) 「鳳城縣解送邪教大乘門首領焦玉珍、張萬通(1923.11.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87~89쪽.

70) 「鳳城縣查獲大乘門邪教教徒(1922.01.2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74쪽.

## Ⅲ.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복합성

清代 咸豊年間 封禁政策의 철폐 이후 급증한 내지인의 이주는 민간종교결사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의 민간신앙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清代 중기 이민이 이루어지기 이전,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은 샤머니즘이 대세였다. '샤먼'은 본래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종교지도자를 이르는 말인데, 巫術과 儀式에 종사하면서 신령의 세계와 교류하는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家神 제사를 주재하고, 굿판(跳神)을 벌여 신령과 소통했고, 이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물리치고, 福을 기원하고, 占卜을 행하였다. 따라서 이전의 만주족은 병이 나면 먼저 샤먼에게 굿을 청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의사를 찾아 진료를 했다고 한다. 샤머니즘에서는 숭배하는 神靈도 동식물을 비롯한 自然崇拜가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샤머니즘은 자연숭배, 조상숭배, 토템숭배 등의 내용과 제사의식 활동을 포괄하였다.[71]

清代 中期 이래 이민이 급증하고 이민자에 의해 동북사회가 새롭게 건설되면서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지형도 크게 변하였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信仰体系를 함께 가지고 왔으며 동북사회에 複製, 移植하였다. 요컨대, 동북에서는 원래 娘娘廟, 關帝廟, 城隍廟, 龍王廟 등과 같은 祠廟가 거의 없었으나, 이민 이후에는 이민의 유입과 비례해서 祠廟가 건립되었고, 그 祠廟에서 숭배했던 神靈들도 내지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72] 샤머니즘을 믿는 현지인들은 갈수록 적어졌고, 특히 이민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은 전통적 샤머니즘과 더욱 더 멀어졌다.[73] 기본적으로 일종의 文化的 複製와 移植을 통해 내지의 신앙체계가 동북지역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複製와 移植이 전부는 아니다. 내지인의 이민 이후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을 구성했던 많은 요소들은 이민과 함께 유입된 것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동북지역 토착의 신앙체계와 융합되고 동북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지리적 조건이 반영되면서 나름의 다원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은 다층적 '복합화'를 통해 '복합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나름의 다원적 색채 내지 '복합성'은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동북의 신앙체계의 주축이었던 샤머니즘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檔案資料'에 따르면, 巫醫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다수

71) 邵小翠,「試論近代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 延邊大學 碩士論文, 2010.5, 31~32쪽.
72) 杜臻,「近代山東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1860－1911)」, 山東大學 碩士論文, 2006.5, 24~33쪽.
73) 邵小翠,「試論近代移民對東北文化的影響」, 32쪽.

문제가 되었다. 예컨대, 1919년 2월 錦西縣에서는 張文德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 차도가 없자 巫醫에게 治病을 의뢰하였고, 巫醫가 병을 고치매 굿판을 벌이고 환자의 배꼽 아래를 칼로 절단해 출혈 과다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74] 1919년 7월에는, 東豐縣의 주민 劉雲貴가 굿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칼로 배를 절단 당해 죽음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75] 錦西縣과 東豐縣의 사건으로 奉天省政府에서 경계령을 내렸으나 머지않아 盤山縣에서 부녀자 郭谷씨가 巫醫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76] 海城縣 주민 竇長生의 아들 竇忠文이 매독에 걸렸는데, 1924년 3월 巫醫 王恩吉이 작두로 잘려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77] 7월에는 鳳城縣에서도 王國福이라는 巫醫가 작두와 占術(邪乩)로 治病한 일이 적발되었다.[78] 1927년 6월에는 開原縣 戴家庄子 주민 梁玉泰가 '동생 梁玉衡이 黃天教 東派 수령 梁自修라는 巫醫의 감언이설에 홀려 醫業을 배척하고 온갖 仙法, 仙丹, 符籍에 의지해 많은 돈을 탕진하고 있다'[79]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꾸준히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各地 廟宇에서 일상적으로 仙丹, 藥籤(일종의 제비뽑기), 神方, 乩方(점술 처방)으로 治病하는 일이 많고, 仙丹을 仙佛이 선사한 좋은 처방으로 여기고, 이로 인해 매년 사망하는 자가 셀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80] 또한, '各縣・市・鎭・村・屯에 일종의 巫醫가 있어 굿판(跳大神)을 벌이고 治病을 구실로 재물을 편취하고 있는데, 환자가 醫藥으로 생명을 지킬 기회가 없어져 마땅히 엄히 단속해야'[81]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盛京時報』에서도 이런 사정을 전하고 있는데, '「奉天省長公署訓令」에서 누차 지적하기를, 各處에 巫女가 있어 廟宇를 假借하여 藥品을 배합해 神方이라고 하고, 심지어 (독극물인) 砒素까지 복용할 수 있다고 했다'[82]고 한다.

---

74) 「開原縣巫醫治病害人致死(1919.02.26)」,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55~57쪽.

75) 「黑山縣嚴禁邪術治病(1919.07.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58~60쪽.

76) 「奉天全省警務處查禁巫醫邪術治病殘害人命(1921.06.2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63~64쪽

77) 「海城縣巫醫治病害人致死(1924.03.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06~109쪽.

78) 「奉天全省警務處查禁巫醫害人(1924.07.2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36~139쪽.

79) 「開原黃天教邪術騙財戕害生命(1927.06.1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50~152쪽.

80) 「衛生部嚴禁各地廟宇中施給仙丹神方(1921.04.13)」,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61~62쪽.

81) 「遼寧省民政廳嚴令查禁巫醫跳大神誆騙金錢(1929.04.2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60~162쪽.

그러나 당국의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기층사회에서는 巫醫의 '의료행위'를 비롯한 샤머니즘(巫俗)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없었고,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형사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奉天省政府는 기층에서 '巫覡(무당)이 사람을 미혹해도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엄금하지 않았음'[83]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 또한, 1924년 3월「昌圖縣公署布告 第4號」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거듭 포고하니 엄금하라.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북을 치는 굿판을 살펴보니 풍속을 크게 해쳐 나타날 때마다 거듭 엄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소홀해진다**. 近日 향촌을 방문해보니 또 떠들썩한 액막이 굿판을 벌인 무리가 **멋대로 행동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다**. 각 區長 및 警甲, 村長은 맡은 바 소임이 무엇인가. 저들이 제멋대로 망동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거듭 표명하는 포고는 邑 전체의 紳民이 일체로 잘 숙지해야 한다. 이 제부터는 향촌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떠들썩한 액막이굿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 區長 및 警甲, 村長이 책임을 지고 查禁을 嚴行하고,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 ... **의도적으로 관망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발각되거나 고발되면 해당 관할의 區長, 警甲, 村長을 瀆職律에 따라 징계 처분하라. ..... [84]

省政府나 縣政府 차원에서 엄단하라는 지시가 누차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기층의 각 區長, 警甲, 村長은 '의도적으로 관망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 鳳城縣 警察所가 縣公署에 보낸 공문에서 보이는 巫女에 대한 '동정어린' 시선에서도 기층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3~4년래에 신 내림을 받은 한 巫女가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리기 위해 神에 依託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이것으로 입에 풀칠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고 있다.[85]

이처럼 巫醫, 巫俗과 같은 샤머니즘이 이주민으로 구성된 東北社會 各地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巫醫'라는 것이 '中醫'와 서로 배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호 의존하고 포용하는 관계였으나, 이른바 '巫醫不分'은 예전부터 심히 경계되어 왔고,[86] 위에서 열거한 사례처럼 굿판을 벌여 치료를 하거나 작두로 사람을 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굳이 '巫醫'임을 숨기지 않았

---

82)「禁止神方」,『盛京時報』1913.11.6.

83)「盤山縣巫醫殘害病人致死(1921.07.31)」, 遼寧省檔案館 編,『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65~67쪽.

84)「昌圖縣嚴禁跳大神布告(1924.03.22)」, 遼寧省檔案館 編,『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10~111쪽.

85)「鳳城縣查獲男女巫醫及器物(1924.04.27)」, 遼寧省檔案館 編,『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17~120쪽.

86) 朱敏爲/王繁可/趙晶晶/李柳,「明朝對巫医的批判研究」,『湖北中医藥大學學報』第15卷 第6期, 2013.12, 45쪽.

고 焚香하고 신령에 빌어 처방을 내렸지만, '巫醫'들도 의술에 통달해 있었고 이런 의료 행위 방식은 일정한 신앙행위를 통해 (신뢰감을 높여) 이득을 얻고자 할 따름이었다.[87]

따라서 전통시기 中醫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內地에서는 의료행위에 굿판(跳大神)을 동원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巫醫와 액막이굿(跳大神)이 문제가 된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동북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는 대규모 이민 이전에 있었던 동북지역 고유의 특징, 즉 샤머니즘 위주의 민간신앙체계라는 특징이 역으로 이주민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민과 함께 유입된 內地의 민간신앙체계가 동북지역에 단순히 이식, 복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동북지역에 내재해 있던 요소가 이주민의 신앙체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북지역 토속의 신앙체계에 이민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요소가 중첩됨으로써, 일정 정도 민간신앙의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동북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檔案資料'에는 第9~12冊에 걸쳐 총 76건의 '社會生活 調查報告書'가 수록되어 있다. 모두가 滿洲國時期에 작성된 보고서로 보고서마다 하나의 縣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일정한 포맷 하에 작성되었다. 토지관계, 소작제, 노동 및 고용관계, 매매관계, 借貸關係, 금융관계, 자치와 사회생활, 풍속, 습관, 촌락의 형태와 분포, 연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풍속 및 습관' 부분에서 민간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체로 東三省을 남북으로 나눌 때 남북의 향촌 신앙생활이 구별되었다. 말하자면, 東三省 중에 내지와 가깝고 경제문화가 비교적 번영했던 熱河省, 奉天省, 錦州省[88], 安東省, 吉林省 등에는 주로 娘娘廟, 土地廟, 七聖祠, 藥王廟, 關公廟, 孔子廟, 財神廟 등이 있어 山神, 財神, 虫王, 馬王, 關聖帝君, 龍王, 火德眞君, 牛王, 苗王, 五道君 등의 神位가 배치되어 있고, 정월대보름, 단오절, 중추절, 연말연시(年關) 등에 때때로 廟會 및 演戲를 열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祈雨祭나 虫節祭를 지내기도 했다. 반면에 興安南省, 興安北省, 興安西省 등과 (黑)龍江省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전히 고유의 샤머니즘과 라마교가 민간의 신앙생활을 지배했던 것으로 나타난다.[89]

셋째, 이민과 함께 민간신앙이 다양하게 유입됨으로써 생겨난, 동북지역 민간신앙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적인 면모는 '여러 다양한 神位가 하나의 祠廟에 몰려 배치되는 현상'이 농후했다는 점이다. 하나의 祠廟에 여러 신위가 병렬되어 있거나 한 사람이 여러 신령을 숭배하는 일은 內地에서도 이상할 것이 없다. 주지하듯이, '多神混雜性'은 중국 민간신앙의 특성 중에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90]

---

87) 王曉翠, 「民國時期中西医論戰研究」, 曲阜師范大學 碩士論文, 2010.4, 7~8쪽.

88) 1934년 12월 滿洲國政府가 奉天省과 熱河省의 일부 지역을 떼어내 새로 만든 행정구역임.

89)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9~12冊』, 广西師范大學出版社, 2005. 참조.

다만, 동북지역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훨씬 심했다는 것이다. 『中國東北史』에서도 '多教一廟와 一人多教'를 동북지역 종교 및 신앙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지적했다.[91] 이는 '檔案資料'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숭배대상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演戲酬神'이나 廟會가 土地廟나 娘娘廟와 같은 몇 곳의 祠廟에서 거행되었다.[92] 奉天省 西豊縣에 대한 '사회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屯에서는 土廟가 있어 대개의 축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93] 吉林省 扶餘縣과 黑龍江省 洮南縣의 '本屯에는 土地廟 1개가 있는데, 土地, 山神, 苗王, 牛王, 龍王, 馬王, 虫王, 財神, 五道 등 9개의 神位를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94] 七聖祠나 九聖祠와 같이 여러 신령을 한꺼번에 모시는 祠廟가 유난히 많았던 것도 이에 해당된다.[95]

이처럼 동북지역에서 '多教一廟'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이민과 함께 새로 유입된 신령이 기존의 신령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져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봉하는 신령이 너무 많아졌고 전담 祠廟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져 '아파트 방식의 廟宇'[96]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는 祠廟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응한 측면이 있고, 신앙이 각기 다른 정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채택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의 재원이 유한한 조건에서, 하나의 廟를 지어 여러 종류의 신앙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재원을 아껴서 祠廟의 생존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다. 信徒의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 신앙생활의 목적이 祈福이었으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금전적 행복이나 재해나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었다.[97] 이런 실용주의적 信仰觀과 함께, 이민으로 인해 동북사회에 축적된 신앙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하나의 祠廟에 여러 신령이 섞여 들어가게 했고, 이로써 동북지역에 민간신앙의 다원화 내지 복합성이 초래되었다.

넷째, 동북지역 민간신앙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연숭배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동북지역에서는 동물을 신격화한 신령의 세력이 內地에 비해

---

90) 沈洁, 「反迷信与社區信仰空間的現代歷程－－以1934年蘇州的求雨儀式爲例」, 『史林』 2007年 第2期, 46쪽.

91) 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 第4卷』, 1921쪽.

9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5冊』, 广西師范大學出版社, 2005.

93) 「奉天省西豊縣農村自治及社會生活(1935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0冊』, 18쪽.

94) 「吉林省扶餘縣四家子屯風俗習慣、生活水平(1938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1冊』, 202쪽.; 「龍江省洮南縣農村自治及社會生活(1935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2冊』, 17쪽.

95) 黃雲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96쪽.

96) 黃雲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96쪽.

97) 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 第4卷』, 1921~1923쪽.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례로 연말에 여러 신령을 모아 제사지내는 '八蜡'이라는 일종의 合祀가 있었는데, 이것이 동북에 들어온 후에는 점차 虫王에게 작물의 보호를 기원하는 虫王廟로 단순화되었다. 또한, 동북 북부에는 동굴이 많고, 산이 깊고 삼림이 우거져, 野獸가 출몰함으로써 때때로 사람들의 근심이 되었고, 수렵, 채집, 벌목 등을 위해 산림에 자주 출입하였기 때문에 山神을 崇祀하여 보호를 기원하는 山神廟가 매우 성행하였다. 이밖에 목조 가옥이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火神廟가 많았다. 말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해, 매년 봄에 '馬祖'에게 제사를 지냈고, 生畜이 번성하고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馬王廟를 짓고 馬王에 제사를 지냈다. 또한 여우, 족제비, 고슴도치, 뱀, 쥐를 신격화해 胡仙(胡三太爺), 黃仙(黃三太爺), 白仙, 柳門, 灰門으로 존숭하였는데, 이를 통칭하여 '五大門' 또는 '五大家'라 하였다. 특히 胡仙堂과 黃仙堂이 많았고, 여기에 초상화를 걸어 놓고 섬겼다고 한다.[98]

상술했듯이 자연숭배의 강세는 동북지역의 자연 지리적 조건이 반영되어 나타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샤머니즘의 영향도 있었다. 특히, 胡仙과 黃仙은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신령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99] 이민 이전 동북지역에서는 샤머니즘 위주로 신앙체계가 구성되었고, 샤머니즘은 자연숭배, 토템숭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상통한다.

하지만 상술한 祠廟를 세워 동물 신령을 숭배하는 방식이 동북 고유의 것은 아니었고, 이민과 함께 출현한 신앙체계의 일부로서 그 연원은 대개 內地에 있다. 유입과 동시에 현지화 과정을 거쳐 일정한 동북지역의 특징이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複製나 移植이 아닌 다원적 색채 내지 복합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胡仙이나 黃神은 동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中原은 儒家思想의 영향으로 그 구속력이 약한데, 동북은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라 구속력이 강해 胡仙과 黃仙에 대한 숭배가 보편화된 것이다.[100] 화북지방의 경우, 淸末民國에 이르면 동물신앙이 점차 쇠락하여 숭배 儀式이 한층 더 간단해지고 祭物도 감소하였고, 자연현상에 대한 숭배는 워낙에 많지 않았다고 한다.[101] 內地와 東北이 상대적으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Ⅳ. 맺음말

이상에서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의 존재양태와 국가권력의 대응, 특징 등에 대

98) 佟冬 主編,『中國東北史(修訂版) 第4卷』, 1913~1916쪽.; 黃雲鶴,「淸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97쪽.
99) 瀧澤俊亮,『滿洲の街村信仰』, 滿洲事情案內所, 1940, 217쪽.
100) 黃雲鶴,「淸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97쪽.
101) 江沛,「近代華北城鄉民間信仰述評」, 21~22쪽.

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淸代 後期의 이민의 급증과 동북지역 민간신앙 전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민간종교결사들도 대개는 이민과 함께 내지에서 유입된 것이었고, 祠廟와 廟會, '演戲酬神'과 같은 새로운 민간신앙의 전개는 이민과 함께 내지의 민간신앙이 移植되고 複製되는 과정이었다.

둘째, 민간종교결사에는 본래 '정치적' 기능과 '일상적'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데,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에는 '일상성'이 한결 강했다는 점이다. 이는 동북지역 민간종교결사의 '수세적', '소극적' 태도, 다양한 측면의 '공개성' 등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물 편취'에 치중된 인식, '邪敎'에 대한 상급 정부와 기층 행정체계의 괴리와 그로 인한 느슨한 대응, 이에 따른 민간종교의 지속 등 국가권력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일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이 내지에서의 移植과 複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입된 민간신앙과 동북 고유의 신앙체계 및 자연 지리적 조건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합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름의 독특한 '복합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복합성은 샤머니즘의 활성화, 신구 민간신앙의 지역적 편차, '여러 神位가 하나의 祠廟에 배치되는 현상', 동물신 등 자연숭배를 중시하는 경향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신앙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이 상당 정도 느슨했다는 점이다. 省政府나 縣政府는 민간종교결사를 '邪敎'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의 주체인 기층사회의 保甲, 警甲, 村長 등은 민간종교에 대하여 매우 느슨한 태도를 취하였다. 巫俗이나 廟會와 같은 민간신앙에 있어서는, 縣 이상의 당국에서도 철저히 금지하기보다는 관리, 통제하려는 태도를 취하였고, 기층 행정체계의 대응은 더욱 관용적이었다. 물론, 민간신앙은 일반 인민에게 생활 그 자체라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국가권력의 대응이 실질적으로 빡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 이후 '邪敎'와 '迷信'이라는 비판 담론을 기초로 한 국가권력 및 지배엘리트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앙이 중국사회의 장기지속적 토대로서 지속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一九世紀中葉廈門苦力貿易的興衰

村上 衛（日本 京都大学）

목 차

前言
一 苦力貿易的興起
二 苦力貿易的各種問題
三 對廈門暴動與苦力貿易的態度
四 苦力貿易的衰退與移民向東南亞的集中
結語

## 前言

自一九世紀中葉開始至一八七〇年代為止，出現了由華南遷往東南亜以外地区的契約移民的交易，本文将此定義為「苦力貿易」[1]。関於苦力貿易，本文嘗試在充分考量中国沿海地区的社会、経済状況之下，以廈門為対象，探討苦力貿易形成的原因、問題点，以及英国外交官員和清朝地方官僚在解決問題的過程中所扮演的角色。

正如前面所言及的，近年与華人有関的研究盛行，到一九八〇年代為止已有許多有関苦力貿易的研究積累。[2]関於与苦力貿易有密切関聯的英国方面，有坎貝爾所作的探討「大英帝国」整体的経典性著作，[3]也有探討英国政府所扮演的角色及与英国商人的関聯的研究。[4]関於清朝政府方面，其対苦力貿易所採取的政策受到矚目。[5]此外尚有研究探討移民制度[6]、与苦力貿易相

---

1) 貴堂嘉之認為，実際上苦力貿易無法視前往的目的地而区別自願移民与近於奴隷貿易的形態，但主張苦力貿易能依前往的目的地而有上述両種区分的言論，其流伝的原因在於英、美担負了近代「自由」的規範化之縁故。貴堂嘉之，《アメリカ合衆国と中国人移民――歴史のなかの「移民国家」アメリカ》，名古屋大学出版会，2012年，頁49－50。当然這様的傾向也是存在的，但如本文所示，即使是同様的英国業者所経営的労動者移民，其形態也会有時期上的変化，此点応也很重要。

2) 中国将相関史料翻訳、編纂，出版了史料集。陳翰生，《華工出国史料匯編》，全11冊，中華書局，1980―1985年。

3) Persia Crawford Campbell, *Chinese Coolie Emigration to Countries within the British Empire*, London: Frank Cass & Co. Ltd, 1923.

4) Elliot Campbell Arensmeyer, “British Merchant Enterprise and the Chinese Coolie Labor Trade 1850　1874,”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79.

関的暴動等事件[7]，以及対被拐騙、綁架者的救援等問題。[8]当然，也有関於移民僑居地的研究。[9]

尽管有如此豊富的研究積累，但仍留有一些課題有待探討。首先，以往的研究多只関注苦力貿易，未探討中国沿海地区社会、経済的動向，特別是一九世紀中葉的変動与其関聯。再者，招募苦力時所発生的綁架、詐欺等問題，在当時就已有所指摘，但卻未探究這些問題発生的原因。当時雖然販売人口盛行，遷往東南亜的移民也具有与苦力相似的性格，但只有苦力貿易成為厳重的社会問題，其原因也尚未被充分探討過。此外，以往的研究以「中国」「英国」等国家框架為前提，探討各国，具体而言是中央政府和公使等，在廃除苦力貿易上所扮演的角色，因此対於末端的英国外交官和清朝地方官僚実際所扮演的角色不太加以考量。[10]特別是在沿海地区的社会秩序逐漸崩潰的一九世紀中葉，清朝地方官僚已不具有充分掌控住地方社会的実力，但幾乎没有研究具体討論過這些地方官僚是如何因応、処理問題的。

因此，本文擬於第一節中探討苦力貿易出現的原因，並在沿海地区社会経済史上的変動中将其加以定位；在第二節中一面将焦点置於移民的招募者——「客頭」上，一面検視苦力貿易本身的問題；第三節中以廈門暴動為線索，解明各勢力対苦力貿易所持的態度；在第四節中将思考這些問題在地方社会中如何被解決。並且，在探討這些問題時，也会対福建人与広東人所扮演的角色的差異加以注意，同時将東南亜移民与苦力貿易的相異之処也列入考量。

至於所討論的区域，是以廈門及其附近地区為対象。以廈門為対象的理由，第一是因廈門是

---

5) Irick, *op. cit.*; Yen Ching hwang, *Coolies and Mandarins*. 庄国土，《中国封建政府的華僑政策》，廈門大学出版社，1989年。従外交史的側面来探討的有：箱田恵子，《外交官の誕生——近代中国の対外態勢の変容と在外公館》，名古屋大学出版会，2012年，第2章。

6) Wang Sing wu, *The Organization of Chinese Emigration 1848 1888: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ese Emigration to Australia*, San Francisco: Chinese Materials Center, 1978.

7) 関於廈門暴動，有以下的研究：小沢純子，〈1852年廈門暴動について〉，《史論（東京女子大学）》，38集，1985年；Ng Chin keong, "The Amoy Riot of 1852: Coolie Emigration and Sino British Relations", in K. S. Mathew ed., *Marines, Merchants and Oceans Studies in Maritime History*, Newdelhi: Manohar Publishers & Distributors, 1995. 関於上海的外国人襲撃事件，有：可児弘明，〈咸豊九（1859）年、上海における外国人襲撃事件について〉，《東洋史研究》，43巻3号，1984年。此外，西里嘉行，《清末中琉日関係史の研究》，京都大学学術出版会，2005年，第1編第3章中，将載運苦力的美国船羅伯特・巴恩（*Robert Bowne*）号上発生的暴動在琉球史的脈絡中加以定位。

8) 可児弘明，《近代中国の苦力と「豬花」》，岩波書店，1979年。

9) Watt Stewart, *Chinese Bondage in Peru: A History of the Chinese Coolie in Peru*, 1849 1874,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0. 関於南、北美洲移民的僑居地与中国的関係，参照園田節子，《南北アメリカ華民と近代中国——19世紀トランスナショナル・マイグレーション》，東京大学出版会，2009年。関於僑居地与美国政治的関係，参照貴堂嘉之，《前引書》。

10) 関於英法聯軍佔領広州時期与清朝督撫所作的区域性協調，参照Campbell, *op. cit.*, pp. 116 124; Irick, *op. cit.*, pp. 89 137. 関於在此之前地方上「苦力問題」的解決，参照Irick, *op. cit.*, pp. 11 79。

苦力貿易開始得最早，也衰退得最早的都市。廈門苦力貿易的衰退導致了広東省，特別是澳門，苦力貿易的拡大，対苦力貿易的発展影響極大。其次，廈門是将移民送往東南亜的主要港口，是近代中国海外移民最重要的港口之一。

在史料方面，本文主要採用的是英国領事的報告。這是因為一九世紀中葉廈門的貿易大半是英国資本，由英国商人経営,[11]苦力貿易亦是以英国商人為中心進行的。再者，由於清廷禁止移民，地方官僚均避免発出与苦力貿易有関的文書，因此管見所及，未見清朝方面留有与該時期廈門苦力貿易有関的記録，此也是以英国史料為依拠的原因之一。

## 一 苦力貿易的興起

### （1）廈門苦力貿易的興起

衆所周知，在奴隷貿易中扮演重要角色的英国，随著自一八世紀末開始的黒人奴隷解放運動的進展，一八〇七年廃止了奴隷貿易，一八三三年頒佈奴隷解放令。欧洲其他諸国大多也随之跟進。但中南美洲等地栽培熱帯経済作物的種植園対労動力的需求有増無減，而北美和澳洲発現了金砿，秘魯対於作為肥料用的鳥糞石的需求量也有所拡大，這些都需要更多新的労動力，只靠白人労工移民是無法満足這些需求的。因此，亜洲労工的需求量大増，這就是苦力貿易的背景。

苦力貿易採契約移民的形式，簽訂労動契約，契約工（苦力）在一定的期間、条件之下工作。雖然簽約時明訂由僱主負担出洋船費等費用，但契約工仍会陥入負債的状況，其権利受到各種限制。[12]

移民的招募時期主要在十一月至三月，此時為農閑期，也是船隻的出航受限於季風的時期。[13]移民的乗船地因時期而異，主要在廈門、汕頭、香港、澳門及其附近。移民的目的地有：需要能替代奴隷的労動力的西印度群島，以及新的労動力需求増大的美洲、加拿大、澳洲、秘魯等。

廈門的苦力貿易始於一八四五年，由一艘法籍船将苦力送往印度洋的法属波旁島（即留尼汪島）。此事的背景被認為是因以前曾有法国船貨監工自海峡殖民地運送華人至波旁島之故，[14]自東南亜引進中国移民至印度洋的法属殖民地之嘗試影響了苦力貿易的開始。

---

11) FO663/10, Robertson to Bonham,No. 28, Apr. 15, 1853.

12) Campbell, *op. cit*., pp. 90　160.

13) BPP, China, Vol. 3, Correspondence with the Superintendent of British Trade in China, upon the subject of Emigration from that country（以下Emigration）, Encl. No. 1 in No. 8, Elmslie to Bowring, Aug. 25, 1852, p. 8 (18).

14) FO663/9, Encl. No. 3 in No. 127, Aug. 26, 1852, Note by Dr. Winchester.

至一八五二年八月為止，廈門苦力貿易的規模估計達六二五五人，其中英国船四艘三九四六人，西班牙船二艘八五〇人，法国船、美国船、秘魯船各一艘。移民澳洲者最多，有二六六六人；其次為古巴，有九九〇人之多。根拠清朝官僚所言，福建每年有五万人移民海外，而同時期的海峡殖民地每年至少有五〇〇〇名男性移入，[15]因此東南亜移民的規模遠比苦力貿易龐大。

### （2）苦力貿易興起的背景

苦力貿易為何早期会在廈門発展開来？関於此問題，有人認為是因廈門入超厳重、貿易失衡，導致船隻出航時無貨可載之故。[16]此外，也有人認為是因廈門非省都，官僚権力微弱之故；[17]但由苦力貿易在省都広州的発展来看，此説法欠欠説服力。更有人将福建人与広東人相比較，認為是因福建人比広東人温順，適於移民之故；[18]但苦力貿易其後転変成以「不温順」的広東人為主体，故此説法亦不足為拠。

鑑於上海、寧波、福州均不見苦力貿易盛行，因此也許由五口通商前的延続性来思考較易得到理解。廈門本就有移民台湾及東南亜的伝統；在遷往台湾的移民之間出現了一種類似預付工資制度的賒単制（credit ticket system），此制度後来也被広泛用於遷往東南亜等地的移民身上。[19]

再者，廈門自開埠前已開始販売人口至東南亜。例如，鴉片戦争前夕在対外国人及協助外国人従事鴉片貿易的「奸民」、「漢奸」的敵意高漲之中，一八三九年五月二八日湖南道監察御史焦友麟上奏指出，福建省軍務鬆散，特別是漳州和泉州；泉州府的海港有「黒夷」在収購内地的少女，這些少女是内地的奸民誘拐来販売的，並且士兵也有所関聯。[20]軍機章京穆蔭亦在六月二七日奏陳，外国船在沿海収購未満一歳的孩童，少則数十人至数百人，多則千人，其中女孩居多；並請求令閩浙、両広総督加以查緝。[21]同日上諭即命閩浙、両広総督加以調查。[22]

---

15) FO663/9, Encl. No. 3 in No. 127, Aug. 26, 1852, Note by Dr. Winchester. 自1838年的年初開始至4月為止，来到新加坡的中国旅客有2,069人，幾乎全部来自福建省。*The Canton Press*, Vol. 3, No. 34, Apr. 28, 1838. 因此，拠推測五口通商以前僅新加坡就有数千名来自福建的移民。

16) 小沢純子，〈前引文〉，頁54。

17) Yen, *op. cit.*, pp. 41　47.

18) 拠1847年6月15日《香港紀事報（*The Hong Kong Register*）》的記事，A. Bogue在1846年12月6曰致塞姆的信函中提到，福建的百姓比広東的樸実、順従，適合到澳洲移民。FO228/71, Encl. 1 in Layton to Davis, No. 61, July 16, 1847.

19) Wang, *op. cit.*, pp. 5　6, 119　120.

20)《鴉片戦争档案史料》，1冊，頁553，〈湖南道監察御史焦友麟奏為福建漳泉両府営務廃弛請旨查辦摺〉（道光19年4月16日〈原摺〉）。

21)《鴉片戦争档案史料》，1冊，頁603，〈穆蔭奏為外国船隻収買幼孩請恂飭禁片〉（道光19年5月17日〈軍録〉）。

22)《鴉片戦争档案史料》，1冊，頁604，〈福建巡撫呉文鎔奏為英船実無収買幼孩事摺〉（道光19年5月17

対此，福建巡撫呉文鎔於同年一〇月二七日上奏回報説，調査的結果並無此事，接著又作了如下的陳述，承認有販売人口至海外之事，其曰：

> 惟王佐才、曾承基、劉捷鰲等数員言較詳，云数年前連値荒旱，聞有浜海貧民挈帯子女，往呂宋、実力等国謀生。該国頗以中華女子為貴，肯出重価売（買）娶為婦。各貧民以該国等去閩較近，向多内地民人往彼貿易，音信常通，故有情願将幼女売給者。然亦荒歳偶有之事，此外未聞有他。[23]

由此顕示，侭管禁止移民海外，但仍有販売人口至海外者，甚至連取締都未曾有過。

根拠《広州紀事報（Canton Register）》的記事，一八三七年二月七日一艘由福建航向台湾的船上約有一五〇名女奴和童奴，女奴的価格為三〇～八〇元，童奴的価格為二〇～五〇元。船上還被目撃到有数名清朝官員同乗。[24]此外，一八三二年到廈門的郭実臘（Karl F. A. Gutzlaff，又訳為郭実猟、郭立士等）也提到当地有組織性地進行女性人口販売之事。[25]因此可推知，大規模的対国内的人口販売已在廈門附近公然進行。[26]

五口通商之後，一八四九年前後経常発生男孩被誘拐至東南亜之事。[27]駐廈門的英国領事館員C. A. Winchester一八五二年八月二六日在他的備忘録中也提到，廈門毎年可能有一〇〇～二〇〇名未纏足的女性公然被購買送出洋。[28]此外，寧波的葡萄牙人購買了四十多名少女後，用英国船茵格伍徳（Inglewood）号載運至廈門；此事被発覚後，徳記洋行的代理人弁称葡萄牙人在寧波購買少女是很普遍的事，並説来到廈門的老閘船（lorcha，是一種中西混合式帆船）未載運這種少女才是稀奇的事。[29]

由上述内容可知，無論是移民海外或為移民而預支工資的制度，還是販売包括女性的人口至東南亜或台湾之事，均自五口通商之前即已存在，開埠後亦持続存在且極可能更為拡大。並且，清廷的取締行動鬆弛，応可視為苦力貿易興起的一個背景。再者，由開埠前的延続性来看，徳記洋行及和記洋行等従事苦力貿易的外国洋行曾在馬尼拉或新加坡設立。[30]這些地区自五口通商之前，便与廈門在移民、貿易方面有很深的関係。

---

日〈上諭档〉）。

23)《鴉片戦争档案史料》，1冊，頁714－715，〈福建巡撫呉文鎔奏為英船実無収買幼孩事摺〉（道光19年9月21日〈軍録〉）。

24) *The Canton Register*, Vo. 10, No. 9, Feb. 28, 1837.

25) Gutzlaff, *op. cit.*, p. 175.

26) 但這些「人口販売」的現象也極可能是由童養媳等地区習俗而来的，幼女被購買去当作買家子嗣将来的婚配者而撫養。

27) FO228/111, Layton to Bonham, No. 4, Jan. 15, 1850.

28) FO663/9, Encl. No. 3 in No. 127, Aug. 26, 1852, Note by Dr. Winchester.

29) FO228/188 Winchester to Bowring, No.43 Feb. 26, 1855.

30) Arensmeyer, *op. cit.*, pp. 83, 98.

另一方面，苦力貿易与自一九世紀初葉以来持続拡大的鴉片貿易間的類似性，也是很重要的。廈門苦力貿易的結構是：外国商人－大客頭（広東人）－客頭（福建人）－苦力（福建人）。大客頭当初由受外国代理商信任且通暁外語者担任，大多是広東人。[31]此結構与福建沿海鴉片貿易的構図類似[32]，其為：外国商人－通暁外語的広東人、福建人－鴉片零售商人（福建人）。在一八五八年的事例中，大客頭之下有三〇名小客頭出去進行誘拐，還有非客頭者拐騙人来売予客頭。[33]後述的一八六〇年美国船阿恩（Ann）号事件中可見到三名大客頭其下各有一〇〇多名小客頭。[34]此種「交易」的零砕性与不固定性与一般的商業交易相同，鴉片貿易亦不例外。

因此，鴉片貿易和苦力貿易的共同点是：無数的沿海人民通過広東人等知暁外語者，群聚在外国人帯来的利益之下。和記洋行等正是従事鴉片貿易的公司，故鴉片貿易的経験極可能被応用在苦力貿易上。[35]然而与為躲避查緝而経常迴避主要港口改在小港交易的鴉片貿易相比，開埠後広東人以欧美公司買辦的身份進出成為通商港口的廈門，応能使苦力貿易更容易進行。

若再将視野拡大来看，一九世紀初葉以後清廷在中国東南沿海地区的管理体制，就如鴉片貿易日益活絡化所顕示的，已開始動揺，鴉片戦争時完全崩潰。五口通商後，東南沿海地区仍然処於混乱状況，「走私」横行，海盗猖獗，故沿海地区的管理体制遅遅未能重新建立起来。加之，貿易停滞，白銀不足，景気悪化，[36]使苦力貿易的拡展具備了充分的条件。

総之，廈門苦力貿易興起的主要原因，除了既有的海外移民伝統和鬆弛的管理体制之外，廈門的外国人和移民仲介者能利用一九世紀初葉以来逐漸拡大的鴉片貿易形態，以及開埠後沿海地区秩序混乱、経済不景気的情況也応列入考量。那麼，苦力貿易為何会演変成厳重的問題呢？

## 二 苦力貿易的各種問題

苦力貿易経常被指出存在著許多問題，其中最為詬病的就是由後述的客頭招募移民之事。此外還有在通商口岸収留乃至於監禁苦力的「猪仔館」（“Barracoon”）対苦力的虐待，運送苦力的移民船（招工船）内的悪劣環境和運送途中的高死亡率，在移住地（特別是古巴和秘魯）所

31) Yen, *op. cit.*, pp. 37　41.

32) 関於開港以前福建沿海鴉片貿易的結構，参照拙著《海の近代中国——福建人の活動とイギリス・清朝》，名古屋大学出版会，2013年，頁44　45。

33) FO228/251, Encl. 2 in Morrison to Bowring, No. 46, June 2, 1858.

34) FO228/285, Encl. 4 in Gingell to Bruce, No. 20, Feb. 21, 1860.

35) 包令指出，鴉片貿易的拠点是適合装運苦力的場所。*BPP*, China, Vol. 3, *Emigration,* No.16, Bowring to Malmesbury, Jan. 5, 1853, pp.83　84 (97　98).

36) Lin, *op. cit.*, pp. 72　142.

受到的悪劣待遇（例如長時間労動、低報酬、虐待）等，在許多研究中已有所指摘。以下主要将針対与沿海地区的社会関聯極深的客頭所引起的問題作一探討。

### （1）客頭

在苦力的招募系統中占最重要地位的客頭究竟是什麼様的存在？「客頭」一語拠説是源自於安排由閩南至台湾非法移民的「頭目」一詞，「客頭」出現於一八世紀中葉，[37]故応也可見於開埠前的廈門。

客頭的本質与其説是商人，不如説主要是貧困無依的青壮年男性。[38]換言之，客頭可説是属於下層社会的沿海人民。当清廷対客頭的取締変厳，開始処以死刑時，外国人能信頼的代理人紛紛迴避危険，於是成為客頭者往往是性格悪劣的無頼之徒。[39]

客頭所得的報酬不一，招募一名苦力一日可得五〇文，而装載上船後可得一元。[40]因此，客頭募集的苦力人数多寡与其利益直接相関，此便成為客頭竭尽所能地想募集衆多苦力的動機。

苦力的招募資金採預付的方式，由外国商人預付給大客頭、客頭。澳門的事例顕示，客頭若無法如期募集到苦力，就会被強迫退回已収的預付款。[41]若無此圧力，客頭反而可能会捲款潜逃。澳門的情況是，大客頭和客頭及苦力皆是広東人，故能在相同的方言集団内有效地施圧。另一方面，廈門因採取外国商人—大客頭（広東人）—客頭（福建人）—苦力（福建人）的招募制度，故組織内的互信関係和強制力可能比澳門薄弱。

那麼，為何客頭要強行進行招募呢？

### （2）労動力的確保

苦力招募者所希望招募的是何種労工？由徳記洋行一八四七年在廈門募集想移民的「耕種之人」之事[42]可知，招募者希望募集到的是農民。既然労動力短欠，招募者的此種想法是理所当然的。

---

37) Yen, Coolies and Mandarins, p. 37; Wang, *op. cit*., p. 20.

38) 根拠1859年11月在黄埔逮捕到的25名誘拐犯的供述，他們全是窮人，有幾人是単身漢，年齢24～40歳，従事船員等各種職業，其中有8人已喪父。Wang, *op. cit*., pp. 53-54, *BPP*, China, Vol. 4, Correspondence respecting Emigration from Canton, Encl. 20 in No. 6, Parkes to Hammond, Nov. 13, 1859, pp. 32-40 (136-143).

39) FO228/265, Morrison to Bruce, No. 14, June 22, 1859.

40) FO663/9, Encl. No. 3 in No. 127, Aug. 26, 1852, Note by Dr. Winchester.

41) BPP, China, Vol. 4, Measures Taken to Prevent the Fitting out of the Ships at Hong Kong for the Macao Coolie Trade, Encl. in No. 1, Kennedy, K. to Kimberley, June 7, 1872, pp. 1-2(313-314), A correct Statement of the Wicked Practice of Decoying and Kidnapping, Respectfully Laid before His Excellency.

42) FO228/70, Encl. 6 in Layton to Davis, No. 23, Feb. 25, 1847.

至於対労動者而言，以苦力的身分移民海外是否很具吸引力？首先，就工資而言，例如有資料顕示，一八五二年前後廈門附近労工一日的工資是八〇～一〇〇文，石匠、木匠、裁縫師、鞋店等的工資是二倍，一級的農業労動者比照技術熟練的工匠為一六〇文，而一年長期契約（長工）的農業労動者，除伙食外日工資是二五～四〇文，計日雇用的雇佣労動（日工）無伙食，日工資是七五～一〇〇文。[43]一八四九年前後，廈門許多家庭平均每月的収入是三元。[44]

另外，苦力在海外僑居地每月工資有的三元，[45]有的三～四元。[46]以一八五五年在廈門、汕頭募集的苦力為例，契約中的月工資都是四元。[47]此外，根拠「猪仔館」裡的苦力証言，他們的預定工資除伙食外，每日是一二〇文或八〇文。[48]当時中国国内白銀短欠，一両超過二〇〇〇文；[49]一元若以〇.七両計，則相当於一〇〇〇文以上。[50]換言之，苦力的月工資若是三〇〇〇文，日工資便超過一〇〇文，未必算低。侭管如此，対熟練的労動者而言，条件不算優渥，且考慮到船費和衣、食等各種経費的負担，実際的工資有可能比廈門当地還低。

再者，苦力貿易的移民是由外国人主導的，故発生了海外移民在僑居地的情況未伝達回故郷的問題。在後述的廈門暴動時的掲帖中，有云：

> …而且音信不通，生死未卜到家人，父母家人肝腸砕裂。卒至覆宗絶嗣，害伊胡底。嗟呼，生為中華之人，死為異域之鬼。[51]

与親人音訊断絶，回国的可能性也喪失了；一族可能「覆宗絶嗣」的危険性，在被拐騙、綁架来的苦力身上更加厳重。

僑居地与移民故郷間的聯絡状況，会影響移民与親属之間的信頼関係。一八六六年因英国移民局（Emigration Board）的訓令而停止西印度的移民向家人、親属的滙款，苦力的親属們於

---

43) FO663/9, Encl. No. 3 in No. 127, Aug. 26, 1852, Note by Dr. Winchester; FO228/141, Incl.2 in Backhouse to Bowring, No. 48, Sept. 23, 1852. FO228/70, Encl. 6 in Layton to Davis, No. 23, Feb. 25, 1847.

44) FO228/98, Layton to Bonham, No. 22, Aug. 9, 1849.

45) FO663/9, Encl. No. 3 in No. 127, Aug. 26, 1852, Note by Dr. Winchester.

46) *BPP*, Command Papers (976), *Correspondence on the Slave Trade with Foreign Powers*, 1847-1848, Consul-General Crawford to Viscount Palmerston, Havana, Aug. 4, 1847, p. 43.

47) FO228/211, Encl. No. 1 in Backhouse to Bowring, No. 17, Jan. 30, 1856.

48) 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8 in No. 14, Minutes of Evidence taken at a Court of Inquiry held at Amoy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late Riots, and into the manner in which Coolie Emigration has been lately carried on at that Port（以下Minute of Evidence）, pp. 62-63(74-75).

49) Lin, *op. cit.*, pp. 86-87, 121-124.

50) 五口通商時，1843年11月廈門的兌換率是，1両相当於各幣的1.11～1.13元。FO228/31, Gribble to Pottinger, No. 3, Nov. 13, 1843.

51) FO228/903, Chinese Enclosure.

是向領事請求解除停止滙款的命令。[52]然而，移民的苦力卻抱怨，自己完全不知滙款之事。[53]此顯示，実際上苦力有可能是被親属売掉的；另外，此也可視為是在中国伝統的「同居共財」原理下所作的滙款。[54]無論如何，僑居地与移民故郷間的聯絡状況不佳，妨碍了海外移民与親属間信頼関係的建立。

反之，関於移民在当地所受的悲惨待遇，有時也会走漏消息。例如，哈瓦那的西班牙医師Jose Villate，将描述徳記洋行所募集的阿蓋爾公爵（Duke of Argyle）号商船中的苦力在哈瓦那所受的虐待之中文伝単和海報在香港印刷，並在廈門散発、公布。[55]

在此種状況下，苦力移民極可能是欠乏魅力的；而且此種状況下招募到的移民，其素質当然不符合招募者的期待。根拠一八四七年二月二五日駐廈門英国領事雷頓（T. H. Layton）的報告，自廈門送来的年軽労動者大部分不是流浪漢就是賭徒或盗賊，対出洋很積極，但対契約内容或契約期限是三年還是八年毫不在意。[56]駐廈門的英国領事館員Winchester曾厳厲批評，志願当苦力移民者皆是最貧困的「社会敗類」；[57]而類似的報告並不僅止於廈門。

哈瓦那的英国総領事J. T. Crawford在一八四七年八月四日的報告中，対於由廈門来到哈瓦那的六〇〇名移民，有以下的描述：

> 在中国募集調度這些人時，似乎不太或者説是完全未加以留意。他們幾乎都是廈門鄰近沿海的漁民，不習慣吃重的体力労動，且很早就表示不願与黒人一起在田裡工作。
>
> 他們之中有四〇〇人是英国船阿蓋爾公爵号載運来的。由船長那裡得知，他們幾乎全是流氓，毫無用処。……[58]

以往的研究指出，以苦力身分移民者大多是：被承諾能来金山者、為償還負債者、械闘的俘虜及賭博的輸家等；[59]在招募之際，有可能会募集到最不適当者。[60]並且，前来応徴者也可能会作出一些不法的行為；香港的中国住民対澳門的苦力貿易有以下的描述：

---

52) FO228/405, Swinhoe to Alcock, No. 4, May 19, 1866.

53) FO228/405, Encl. 2 in Swinhoe to Alcock, No. 4, May 19, 1866.

54) 在此原理下，出外打工的収入須納入家計中。滋賀秀三，《中国家族法の原理》，創文社，1967年，頁68－73。

55) FO228/98, Layton to Bonham, No. 37, Nov. 19, 1849.

56) FO228/70, Layton to Davis, No. 23, Feb. 25, 1847.

57) FO663/9, Encl. No. 3 in No. 127, Aug. 26, 1852, Note by Dr. Winchester.

58) *BPP*, Command Papers (976), *Correspondence on the Slave Trade with Foreign Powers*, 1847-1848, Consul-General Crawford to Viscount Palmerston, Havana, Aug. 4, 1847, p. 43.

59) Irick, *op. cit.*, pp. 27-28.

60) 従檳城遷往模里西斯的華人移民之中，也有一些是檳城当地的「人滓」，許多後来都被送回檳城。*BPP*, Command Papers (1204), *Colonial Land and Emigration Commission, Tenth General Report, 1850*, Memorandum by Mr. Muir, of Hong Kong on the probability of inducing Chinese Labourers to Emigrates to the British West Indian Colonies, October 3, 1849, p. 87.

> 志願以労動者身分出洋者，大半是貧窮的男性，其中許多是流氓、無賴。他們在当地同意移住海外，自客頭処領到添購衣服或其他所需的経費後，有的中途逃亡，有的強行讓同伴釈放他們。如此，客頭就会無法償還借款。此乃客頭訴諸誘拐手段的理由之一。61)

総之，因為苦力的待遇欠乏魅力，所以造成「優質」労動力的供需失衡；用一般的方法，只能募集到不符合僑居地需求的「劣質」労動力。結果，随著需求的増高，為了多少能確保一些「優質」労動力，客頭乃採取強行募集的方法，62)誘騙、詐欺、賭博、人口販売、綁架等，不択手段。63)

### （3）対客頭的反感

如前所述，廈門附近以往就有販売人口到海外之事，但未引起紛争。那麼，為何客頭的不法行為特別受到強烈的譴責？

根拠客頭的証言，因客頭的不法行為而受害者，有：裁縫師、理髪師、工匠、短工、売柴火者、轎伕、挑伕、農夫、収集糞便者，其他還有回郷探親者、離郷後正在陸路或水陸途中者。64)無論何者都是従事体力労動或正在移動途中的人們，雖然職業各式各様，但大多是農民或離郷求職者，65)社会階層並不高。因此，這些離郷背景的人之中，有許多人即使受害也無可奈何。此外，一八五五年漳浦附近的居民佔拠要塞抵抗，地方官僚最後也認可了居民的移民，66)很可能是希望藉此将「麻煩製造者」駆逐到海外。因此，地方上的「麻煩製造者」即使成為受害者，地方官僚也不会視為問題。

然而，雖説是離開了家郷，也有些人被綁架後会引起問題。一八五八年同安知県向英国領事作了如下的陳述：

> 其中惨境，或妻哭其夫，或親哭其子。甚至全家惟賴一人謀生，被拐則全家絶食；或数代只有一人継承，被拐則数代絶嗣。言之殊覚痛心，此情之可憫者也。67)

---

61) BPP, China, Vol. 4, Measures Taken to Prevent the Fitting out of the Ships at Hong Kong for the Macao Coolie Trade, Encl. in No. 1, Kennedy, K. to Kimberley, June 7,1872, p. 3(315).

62) 1852年在苦力市場需求升高之中，苦力価格也随之上漲，貪婪的客頭於是用詐欺的方法募集苦力。Campbell, *op. cit.*, p. 95.

63) Wang, *op. cit.*, pp. 56-64.

64) FO228/251, Encl. 2 in Morrison to Bowring, No. 46, June 2, 1858.

65) 広州附近的苦力貿易受害者的案例中，許多是従農村到城市工作的体力労動者。June Mei, "Socioeconomic Origin of Emigration: Guangdong to California, 1850-1882," *Modern China*, Vol. 5, No. 4, October 1979, pp. 479-481.

66) FO228/188, Winchester to Bowring, No. 32, Feb. 14, 1855.

67) FO663/65,〈泉州府同安県正堂陳致英国領事照会〉（咸豊9年6月）。

由此可知，負責養家者或要継承香火的成年男子被綁架時，就会発生問題。一八五九年七月一四日寡婦葉氏向廈防同知投訴説，她二〇歳的独子五月一八日在劉五店遭客頭綁架。[68]正如此案例所示，寡母独子的情形，問題会更厳重。[69]再者，廈防分府李廷泰亦曾向英国領事陳述廈門的某個大客頭所作的綁架之事，其曰：

> 嵩等確査，廈門現有大客頭延慶，隷籍漳州，絜眷来廈，歴年以来，遍処拐騙良民，売番射利，枉害生霊，指不勝屈。即如南安県鳳坡郷郷飲賓梁鶴年之侄梁挺慘被延慶拐売，現有信拠。又如恵安県白鶴郷郷耆郭近之子郭南坤、同安県新店社寡婦彭氏之子洪臨均被延慶拐売，俱有信拠。[70]

如此段内容所示，郷飲賓和耆老等地方社会的指導階級，其親属遭遇綁架之事被視為問題。総之，下層社会的移民和女性、孩童的人口販売以往就已存在，但卻未被地方社会視為問題。然而客頭無差別地進行綁架，除了弱勢者和被社会排除者之外，其他人們，即一家的生計維持者、香火継承者甚至是地方社会指導階級的相関者，也遭到綁架，故成為問題。並且，有異於既存的小規模綁架，与苦力貿易相関的綁架常是大規模且有組織性的，此也引起了強烈的反感。

対客頭的反感昇高是理所当然的。後述的廈門暴動発生時，外国人被認為自廈門開放通商以来，在当地収購人口並勾引内地奸匪誘騙良民，而客頭則被認為是「奸匪」受到敵視。[71]因廈門暴動而被派遣来的英国官員也将客頭当作品行最為卑劣者，[72]可見客頭与苦力同様都深受鄙視。

此外，対於当大客頭的広東人亦極為反感。広東人仗恃雇主英国商人的保護而胡作非為，廈門的商民和官員們後就対他們深感不満，[73]而対同様受到保護的広東人客頭亦是如此。廈門暴動発生時，廈門民人陳砂請願要求賠償被英国人庇護的「粤匪」（広東人）所射殺的無辜百姓；[74]広東人被称作「粤匪」，受到敵視。

如此，対於勾結外国人、受外国人保護的客頭（下層社会的沿海人民、広東人）所抱持的反感，類似於鴉片貿易或鴉片戦争時清朝官僚対「奸民」、「漢奸」的看法。但極為不同的是：自当

---

68) FO663/65,〈廈房分府陶為英国領事馬照会〉（咸豊9年7月23日）。

69) 不過也有由寡婦立継承人的選択，一家香火的伝承不会軽易就継絶。前掲滋賀秀三，《中国家族法の原理》，頁111－113、311－339。

70) FO663/65,〈廈房分府李廷泰致英国領事照会〉（咸豊7年4月3日）。

71) FO228/903,〈廈門士商仝白為慣匪誘騙図陥民命告暁預防事〉。

72) *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7 in No. 14, Harvey to Bowring, p. 41(53).

73) 自従開埠之後，時有廈門商民向英国領事控訴受雇於外国人的広東人的蛮横暴行。FO663/50，〈大英駐廈管事府記致廈防分府霍照会〉（道光23年11月初7日）。

74) FO228/903,〈具稟人大清国廈門民人陳砂為英商包庇粤匪銃斃無辜乞提償究辦事〉。

時従事鴉片貿易的広泛民衆中，剔除掉官僚、商人後余留下的下層社会貧困人民，才是成為客頭者，且人数也有限。

伴随著這様的客頭行動而来的苦力貿易，損害了地方社会的安定。並且，位於客頭組織頂点的外国人所引起的排斥、反抗，也很可能会演変成重大紛争。於是，対其加以管制，便成了貿易管理和沿海秩序的恢復等開埠後的課題之一。

## 三 対廈門暴動与苦力貿易的態度

一八五二年一一月廈門発生了暴動。此暴動起因於和記洋行的苦力貿易，導火線是：和記洋行的客頭林還在拐騙平民為苦力時，引起衆怒被関入衙門，一一月二二日和記洋行的老闆塞姆（F. D. Syme）至参将衙門強行要求釈放林還。対此，廈門民衆群情激憤，遂引発了暴動。当日廈門的商店全面罷市，附近村落的無頼亦聚集到廈門，士紳和商人們向興泉永道趙霖請願査禁苦力貿易。翌日二三日英国水兵向群衆開槍，造成一二人死亡，一二～一六人受傷。其後，英国領事一面与興泉永道、廈防同知交涉，一面行使領事裁判権判決塞姆等人有罪，命其繳交罰金以充当被牽連的傷亡者的慰問金；此暴動於是平息。[75]

此暴動雖属小規模的事件，但能由此事件的相関史料得知開埠口岸的各勢力対苦力貿易所抱持的態度。以下即就此問題加以検視。

外国商人

首先，就外国商人中最主要的英国商人来看，其態度明顕地分為二派。一派是像徳記、和記洋行等直接与苦力貿易有関的商人。另一派是像怡和、顛地洋行等英国主要公司，認為苦力貿易会成為普通貿易的障碍。[76]

英国外交官

駐華的英国領事等英国外交官也対苦力貿易不抱好感。一八四七年駐廈門英国領事雷頓因阿蓋爾公爵号商船的苦力貿易類似奴隷貿易而感到担心，故発函給経営苦力移民的徳記洋行和船長，詢問苦力移民的内容。[77]

然而，一八五二年三月羅伯特・巴恩（Robert Bown号事件発生後，英国公使包令（J. Bowring）収到雷頓領事対航向西印度的移民船所作的報告；包令以自己未収到本国政府要推

---

75) 小沢純子，〈一八五二年廈門暴動について〉，《史論（東京女子大学）》，33集，1985年。Ng, *op. cit.*, pp. 423-440.

76) Campbell, *op. cit.*, pp. 102-103; *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8 in No. 14, pp. 68-69(80-81). 但怡和洋行与徳記洋行有関聯，怡和洋行提供載運苦力的移民船，也是苦力貿易的獲利者。Arensmeyer, *op. cit*., pp. 69-76.

77) FO228/70, Encl. 4 in Layton to Davis, No.23, Feb. 25, 1847.

行或妨碍移民的訓令故無法決定方針，僅指示雷頓領事以後継続注意苦力貿易並向他報告。[78] 英国本国的政府也要求当地提供有関苦力貿易的報告，企図瞭解情況；而就在此時暴発了廈門暴動。換言之，廈門暴動発生之前，雖無准許中国人移民的規定，但也無査禁的規則，英国外交官很難従法律上取締苦力貿易。加之，他們也必須考慮到在殖民地使用苦力的殖民者的利益。

另一方面，英国領事的職務是譲英国人遵守条約；廈門暴動時，在此点上的因応運用是可能的。当時用領事裁判裁定塞姆等人要求地方官釈放客頭之挙違反南京条約及虎門条約，応科以罰金。[79]英国公使包令則認為塞姆的行為違反《中英五口通商章程》第一三条条文，侵犯了領事的権限。[80]

此外，廈門暴動時被包令公使派遣到廈門調査真相的秘書哈維（F. Harvey）反対苦力貿易，他認為廈門的外国人与中国人関係良好，但苦力貿易卻很可能会対此関係造成打撃。[81]包令公使也持同様的看法，[82]而此種看法也逐漸被本国政府所接受。[83]

伝教士

伝教士也反対在人道上有問題的苦力貿易。於是，有些苦力的親属便委託伝教士的朋友，透過伝教士譲英国商人釈放苦力。[84]居民的此種解決問題的方式因是依頼伝教士的影響力，故可能会動揺以清朝地方官僚為中心的地方社会秩序；由維持地方社会安定的角度来看，確実是個問題。因此，由清朝的地方官員而非伝教士来解決苦力貿易的問題，就変得極為重要。

清朝地方官

清朝的地方官員們起初対苦力貿易是採黙認的態度，廈門海関附近就有苦力収容所之事経常被用来当作佐証。[85]

此外，地方官員最感不満的是，外国商人対地方官権力的侵犯。廈門暴動平息後，哈維与清

---

78) FO663/9, Bowring to Sullivan, No. 36, Aug. 3, 1852.

79) *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5 in No. 14, Minutes of Consular Court of Amoy, p. 38(50).

80) FO663/9, Bowring to Backhouse, No. 67, Dec. 29, 1852.《中英五口通商章程》第13条規定，英国臣民対中国人無論有何不満，都必須先至領事処申訴。ADM125/95, General Regulations under which the British trade is to be conducted at the five ports of Canton, Amoy, Fuchow, Ningpo, and Shanghai.

81) *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7 in No. 14, Harvey to Bowring, p. 42 (54).

82) *BPP, China,* Vol.3*, Emigration*, No. 12, Bowring to Malmesbury, Dec. 14, 1852, p. 29.

83) Arensmeyer, *op. cit*., pp. 177-178.

84) 1851年11月英国伝教士賓威廉（W. C. Burns）応佣人的請求，透過和記洋行的書記，従和記洋行的「猪仔館」裡救出了此名佣人的朋友之弟。此外，英国伝教士J. H. Young受到他的中文老師的一位女性親戚的請託，透過徳記洋行的合伙人，将這位女士的侄児（或者是外甥）従徳記洋行的苦力移民船上解救出来。*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8 in No.14, *Minutes of Evidence*, pp. 44-47 (56-59).

85) Yen*, op. cit.,* p. 74.

朝地方当局会談；清方最不満的是，英国商人為了釈放客頭，又是向地方官送信又是親至衙門，使地方官権威低下。[86]不僅只限於苦力問題，此種行為以前也曾成為問題。例如，一八四八年泰特為了討回中国人対和記洋行的欠債，利用代理西班牙領事時的頭銜与道台交涉，並還闖入廈防庁衙門久坐四小時不去，態度粗暴蛮横，而且対近鄰的中国人亦是此種態度。対此，英国領事以泰特違反了一八四七年法令的第二号擾乱了平静，命其今後勿再犯。[87]

総之，英国外交官員是従条約的観点、清朝地方官員是従地方官権力的観点来看苦力貿易問題；両者雖然観点不同，但同様都視侵犯到自己権限的塞姆、泰特等英国商人的行動為問題；在此点上，両者的利害是一致的。

対清朝地方官員而言，重要的是自己轄下的地方社会的安定，故侭量避免与英国対立，試図抑止暴動拡大。廈門暴動之後，廈防同知在一一月二七日的布告中，亦声称廈門的民衆与外国人関係良好。然而布告中也指出，侭管廈門民衆与外国人相処和睦，但仍有奸匪尋釁肇事，雖已発布告示加以厳禁，但近来街道上屢有匿名伝単張貼，偽称士商造謠挑釁；因此命令廈門居民，如有張貼敵視外国人的伝単者，立即向官府通報。[88]地方官員除了憂心治安的悪化，同時也担憂治安悪化会加深与英国的対立導致騒動拡大。再者，地方官員還協助領事裁判，将苦力兄弟在廈防同知前所説的証詞提供給裁判。[89]為了地方社会今後的安定，抑制苦力貿易是必要的。

另一方面，清朝実施禁止移民海外的政策；正如廈防同知拒絶英国領事所提出的検査移民船的提議，[90]只要清廷在政策上不承認海外移民的存在，地方官員就無意親自検査移民船。加之，地方官員並無足以管制客頭等的権力。因此，若要査緝客頭，除了需要地方百姓的協助之外，還需与外国領事取得協調。

廈門紳商

廈門的紳商一方面強烈反対苦力貿易，一方面也希望能避免発生排外運動或与外国的衝突。根拠領事裁判時某位美国伝教士的証言，地方上有影響力的中国人聚集起来開会，有人提議破壊英国公司或攻撃苦力移民船，但因料想其成功只是暫時性的，二、三日後自香港調派来的軍艦便会到達，且推測群衆掠奪完外国公司後，就会転而無差別地掠奪中国人的商店，所以判断強硬手段会損害自己的利益而対其加以否決。[91]在此須注意的是，這些地方有力人士所戒懼的

---

86) *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7 in No. 14, Harvey to Bowring, p. 43 (55). 具体而言，是指泰特或塞姆到廈防庁要求釈放客頭之事。FO663/9, Encl. No. 10 in No. 177, Nov. 1852 to FO, Account of the Interview at the Marine Magistrate on the 14th instant.

87) FO228/84, Layton to Davis, No. 12, Feb. 25, 1848.

88) FO228/903, Papers relating to Coolie traffic at Amoy brought by Mr. Harvey.

89) FO228/141, Encl. 1 in Backhouse to Bowring, No. 63, Dec. 18, 1852.

90) FO663/9, Encl. No. 10 in No. 177, Nov. 1852 to FO, Account of the Interview at the Marine Magistrate on the 14th instant.

91) *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8 in No. 14, *Minutes of Evidence*, p. 70(82).

不只是英国的報復，還有下層社会階級的民衆失控、脱序的行為。紳商之中拠説有来自東南亜的帰国華僑，[92]他們既能理解対外事務，又能尽力謀求地方社会的安定。実際上，相当於廈門市区的十八保[93]在立約時也規定：凡与和記、徳記洋行交易者及包庇客頭不交予官府者死，但不製造与外国人的糾紛，[94]只以地方社会居民内部的管制為目標。此点与主導排外運動的広州近郊士紳們的態度大為不同。

若在上述各勢力中再加進客頭与地方社会的居民，便能将囲繞著苦力貿易問題而産生的対立看作是以下（A）、（B）両個集団的対立。

（A）直接参与苦力貿易的一部分外国商人＋広東人大客頭＋福建人客頭

（B）地方社会居民、紳商＋清朝地方官＋英国外交官＋廈門当地的外国人社会（外国商人＋伝教士)

整体来説，（A）比（B）結構脆弱，且集団内欠少信頼關係。另一方面，（B）集団反対苦力貿易的勢力包括官員与地方領導階層，他們希望地方社会安定，反対外国商人無法無天的行為，在許多点上利害一致。並且，廈門近郊的排外運動並不活躍，清朝地方官与英国外交官之間的頻繁交涉所針対的是其他的問題，而清朝地方官和英国外交官双方皆視苦力貿易問題為切身的問題。因此，両者之間透過外交管道来処理苦力問題是很重要的，而廈門暴動時清朝地方官員与英国領事的交涉正好提供了適当的機会。那麼，廈門暴動平息之後，苦力貿易又是如何発展的呢？

## 四 苦力貿易的衰退与移民向東南亜的集中

### （1）苦力貿易的衰退

中英双方的合作

廈門的苦力貿易因廈門暴動的発生而衰退，此点在以往的研究中已有所指摘。[95]実際上，苦力貿易的拠点在暴動之後由廈門移到了南澳。[96]一八五三年二月駐廈門英国領事羅伯遜（D. B. Robertson）也懐抱期待地陳述，苦力貿易応該不会再度出現在廈門了。[97]

---

92) 小沢純子，〈前引文〉，頁56－59。

93) 同安県綏徳郷嘉禾里的21都之中，市区分為4社，分別為：福山社，轄4保：懐徳社，轄4保：附寨社，轄5保：和鳳前後社，轄5保，共計18保。道光《廈門志》，巻二，〈分城略〉，都図。此処所説的十八保即指此。

94) FO228/903, Papers relating to Coolie traffic at Amoy brought by Mr. Harvey.

95) 小沢純子，〈前引文〉，頁59－60。

96) FO228/141, Backhouse to Bowring, No. 59, Nov. 20, 1852. *BPP, China,* Vol. 3, *Emigration*, Encl. No. 7 in No. 14, Harvey to Bowring, p. 42(54).

然而，一八五三年五月廈門発生了小刀会之乱，到同年一一月為止廈門一直被叛乱勢力所佔領，故豈止是苦力貿易，連廈門貿易本身都陥於停滞状況。因此，只根拠一八五三年的状況，応無法判断苦力貿易是否已衰退。

事実上，一八五五年三月二日徳記洋行曾自金門島移送了二四〇名苦力到汕頭；[98]此也有可能只是将収容苦力的場所従廈門移至汕頭而已。一八五五年法国招買苦力送往法属瓜徳羅普島和馬提尼克島，[99]同年内在廈門募集到苦力二四九八人、汕頭五三三二人；汕頭的苦力貿易在市場上所占的比例逐漸升高，但廈門的苦力貿易距根絶的状況也還相距甚遠。[100]

為了地方社会的安定，対於負責招募移民的客頭加以管理就変得非常重要。一八五七年三月一七日駐廈門英国領事馬理生（M. C. Morrison）説道：

> 上述的「客頭村」位於離廈門約八～九英里的漳州府沿海，在廈門官員的管轄之外。我請求興泉永道将其所在通知有関当局，而此村的居民可能極有勢力，能漠視当局的存在。[101]

正如他所説的，清朝地方官僚的管制能力有限。豈止如此，対於隷属於地方上有力的宗族集団的大客頭Woo所進行的逮捕、処罰，甚至遭到興泉永道的阻撓；[102]地方官僚対於有勢力的宗族集団，完全無法出手干預。再者，如前所述，位於苦力貿易組織末端的客頭人数衆多，也有一些客頭是暫時性的，故取締工作很難進行。

只要苦力貿易以人為商品，就很難像查緝鴉片等商品那様，可以独佔交易、売掉没収物品，以其為財源創立取締組織。因此，為取締客頭，必須利用外国領事来取締苦力貿易組織根幹部的大客頭。

一八五五年発生了一起案件：寡婦葉氏向興泉永道控訴，其子被拐騙至廈門売予英商徳記、和記洋行後被帯至英国船上；興泉永道乃命令廈防同知李廷泰拘捕客頭進行調查。廈防同知将此案件与謝氏控訴其子被客頭売予英商的案件合併調查，但因客頭蔵身於英国公司内無法拘捕，故於七月二四日向英国領事要求交出客頭及被綁架者。[103]

由此案例可知，寡婦→興泉永道→廈防同知→英国領事的這個聯絡通路是有発揮機能的。寡婦之子遭綁架一般被認為是很厳重的事，故地方官員們也有可能利用這些寡婦的陳情対英方施加圧力。対於廈防同知的要求，同年七月二七日英国領事回覆説：関於和記洋行，因船已出港

---

97) FO228/171 Encl. 6 in Robertson to Bonham, No. 17, Feb. 27, 1853.
98) FO228/188, Winchester to Bowring, No. 46, Mar. 3, 1855.
99) FO228/188, Winchester to Bowring, No. 32, Feb. 14, 1855.
100) FO228/211, Encl. No. 2 in Backhouse to Bowring, No. 18, Jan. 31, 1856.
101) FO228/233, Morrison to Bowring, No. 14, Mar. 17, 1857.
102) Woo後来被委任承包鴉片的釐金。FO228/285, Gingell to Bruce, No. 63, Aug. 7, 1860.
103) FO663/62,〈廈防分府李廷泰致英国副領事巴克好照会〉（咸豊5年6月11日）。

故難以調查，且領事館翻訳官在船上検査的結果並無綁架之事；徳記洋行客頭雇用的労工正在海上等待船隻，将会対其加以調査。[104]

另外，拠廈防同知李廷泰一八五七年四月二六日所発照会文，廈門的挙人、廩生、生員、監生、童生等発起了別種形式的請願。他們控訴客頭延慶綁架等的行為，以廈防同知→英国領事的管道要求逮捕客頭延慶。[105]

如此，因地方官僚、地方精英的推動形成了地方民衆、地方精英→清朝地方官僚→英国領事→英国商人層層施圧的構造，於是英国商人很難再庇護客頭，客頭的活動逐漸被封鎖無法施展。

同時，英国領事也直接対商人施加圧力。当和記洋行藉Zetland号商船進行招募企図重啓苦力貿易時，Winchester警告和記洋行，若発生糾紛将不給予任何支援，並敦促其只招募自願移民者。[106]和記洋行因此放棄了在廈門募集苦力的念頭。[107]此外，根拠駐廈門英国領事J. Backhouse一八五六年一月的報告，因為在廈門無法招募苦力，所以徳記洋行也放棄了在廈門招募苦力的念頭。[108]如此，一八五〇年代後期英国公司逐漸自苦力貿易中撤出。

另一方面，由制度上対船舶加以管制的是，英国於一八五五年八月一四日公布、翌年一月一日開始生效的「中国人船客法」（An Act for the Regulation of Chinese Passenger Ships）。此法規的適用対象是，自香港或中国各港、中国沿岸前往英国領地，需航行七日以上的英国船；並規定須検査移民船上的食物、医薬品、設備及船隻的設備、装備、人員等，還須確定移民是自願的且同意移民的目的地和契約内容，才能準許移民船出航。[109]此法規無法取締英国以外的船舶，在香港形同虚設，故有些評価認為此法規無法讓苦力貿易沈寂下来。[110]此法規的影響其実是視地区而異的。

関於此船客法中管理移民的移民官（emigration officer）之職，受到首相徳比（E. G. G. S. Stanley, 14th Earl of Derby）忠告的外相馬爾墨斯白雷（J. H. Harris, 3rd Earl of Malmesbury）指示由英国領事来担任，[111]在廈門也是由領事進行検査。一八五七年二月二七日一艘由西班牙人Armero租貸開往古巴的英国船Goldstream号在接受検査時被発現有非自願移

104) FO663/61,〈英国副領事巴克好致廈防分府李廷泰照覆〉（咸豊5年6月14日）。

105) FO663/65,〈廈防分府李廷泰致英国領事照会〉（咸豊7年4月3日）。英方認為延慶是合記洋行的買辦而非客頭，対延慶的控訴是誣告，主張処罰誣告者。FO663/64,〈英国領事馬致廈防分府王照会〉（1857年12月20日）。

106) FO228/188, Winchester to Bowring, No. 23, Jan. 30, 1855.

107) Zetland号商船其後在漳浦附近的天主教徒村荘進行招募。FO228/188, Winchester to Bowring, No. 32, Feb. 14, 1855.

108) FO228/211, Backhouse to Bowring, No. 15, Jan. 22, 1856.

109) 18 & 19 Vict., c. 104.

110) Campbell, *op. cit.*, pp. 115-116. 可児弘明,《前引書》, 頁25。

111) FO228/250, Malmesbury to Bowring, No. 28, Apr. 17, 1858.

民的苦力，這些苦力獲得了釈放。[112]再者，一八五八年五月二九日在検査英国船Cleopatra号時，也讓簽約後開始対出洋感到猶予的移民下船。[113]因此，「中国人船客法」賦与了英国領事取締移民船的根拠，対毫無限制的苦力貿易可説是発揮了制止的作用。一八五七年一二月二四日的《徳臣報（China Mail）》也認為此法規促成了廈門苦力貿易的衰退，[114]可見其具有一定的影響力。

在此種情況下，一八五八年五月末Cleopatra号未載満移民便啓程出海了；而六月進港的Scotia号因移民招募困難而転駛至澳門。[115]一八五七年、一八五八年和記洋行因在廈門的移民招募難行，而将移民船調至汕頭或澳門；[116]由英国船所進行的苦力貿易至此完全衰退。

対諸外国船的因応

另一方面，対英国船以外的船舶所作的因応処理也很重要。因為中国人船客法生效後，苦力貿易雖已由利用英国船転換為利用英国以外的船舶，[117]但即使那些是英国船以外的船舶所做的，也讓中国人対「外国人」全体的感情更加悪化。[118]

在此点上進行得最順利的是，与批判苦力貿易的美国的合作。一八五八年駐廈門美国副領事多迪（E. Doty）提議興泉永道司徒緒発布告，昭示苦力貿易是違法的，不許参与苦力貿易的船隻出港；英国副領事也同意予以配合。[119]一八六〇年清朝地方官員向英国領事施圧，美国領事収到英国領事的聯絡対同年二月駛抵廈門的美国船阿恩（Ann）号展開調査，結果「解放」了四六名苦力，参与苦力貿易的英国人也受到了審判。[120]其後，美国政府於一八六二年通過了「苦力貿易禁止法」，与英国也継続保持合作。[121]

如此，英、美間的合作雖然成立，但其他国家的船舶，特別是領有苦力貿易中心澳門的葡萄牙及領有苦力移民目的地古巴的西班牙船隻，便成為問題。一八五九年五月末，西班牙船和澳門的船隻募集苦力時発生了問題。同年六月一五日興泉永道以英国商船和呂宋船（西班牙船）停泊在廈門港外勾結沿海奸匪購買人口，要求英国領事派遣軍艦共同緝査救出苦力。[122]対此，英国領事以船舶非英国船籍為由，要求興泉永道向西班牙、葡萄牙領事交涉。

---

112) FO228/233, Morrison to Bowring, No. 14, Mar. 17, 1857.
113) FO228/251, Morrison to Bowring, No.49, June 16, 1858.
114) *China Mail*, Dec. 24, 1857, p. 206.
115) FO228/251, Morrison to Bowring, No.49, June 16, 1858.
116) FO228/265, Morrison to Bruce, No.14, June 22, 1859.
117) Wang, *op. cit.*, p. 167.
118) 馬理生領事向西班牙領事指出，中国人対外国人的感情与外国人社会全体有関。FO228/265, Encl. No. 2 in Morrison to Bruce, No.18, Aug. 22, 1859.
119) Irick, *op. cit.*, 1982, pp. 60-67.
120) FO228/285, Gingell to Bruce, No.20, Feb. 21, 1860; FO663/19, Haifang Yu to Gingell, No. 5, Feb. 10, 1860.
121) 貴堂嘉之，《前引書》，頁62－63。
122) FO663/65,〈興泉永道陳致英国領事照会〉（咸豊9年5月14日）。

然而，同一時期発生了英国領事派遣到漳州当局的使者，在石碼被誤認為客頭而遭到百姓攻撃的事件。在七月上旬，一些伝教士警告外国商人（主要為英国商人），廈門附近的百姓対綁架之事非常憤怒。此外，中国的有力人士曾警告英国領事馬理生可能会再発生類似廈門暴動那様的事態，並指出客頭的活動比一八五二年時更凶暴。[123]廈門的生員、郷耆等人也向同安知県陳松鶴請願，投訴説呂宋船来廈門収購人口，廈門的奸民為謀利而謊称是客頭，誘騙綁架百姓，状況悲惨；其曰：

> 咸豊二年十月間，曾因此事罷市三日，外国人約自今以後不敢再販人口。詎料日久弊生，数年来外国買人之船再至本地，誘人之計再生。至今日客頭仍旧結党成群，有可誘者則誘之，不可誘者則拐之，使在在皆成危地，人人具有危心。若非知会外国掌事官預為禁止，誠恐衆怒一発，地方必至動揺。[124]

事実上，中英双方処理廈門暴動事件時，並無約定外国人停止買売人口。此処所言応是地方社会精英利用対廈門暴動的記憶，向地方官僚甚至是外国人施加圧力。於是，同安知県向英国領事要求送還被誘騙綁架的百姓，並禁止誘騙綁架的行為。[125]其後，発生了葡萄牙的老閘船載運移民出港航向澳門和黄埔之事。英国領事向西班牙領事表明其願意担任西班牙与清方之間的中介人，西班牙領事乃同意在英国領事和清朝官員的面前検査出港前的移民船。然而，移民船卻在未通知清方的状況下出港了，此事就此不了了之。[126]

在此事件中，地方官僚利用地方社会居民的情感向英国方面施加圧力。[127]再者，廈門暴動不只事件本身，其視需要而被動員的記憶也具有很大的意義。藉由此種圧力，地方官僚与居民終於能透過英国領事影響英国以外的船舶、商人，而英国領事則担任中介人的角色。

同様地，一八六〇年一一月二一日廈防同知俞林向英国領事指出客頭的活動譲地方百姓十分激動，為安撫民心，請求英国領事向在廈門進行貿易的各国伝達，請各国検査全部的船隻，発現被綁架、販売者立刻予以釈放。[128]此次雖然英国領事未順従廈防同知的要求採取行動，[129]但卻忠実地顕現出地方官方面是如何看待英国領事的。

這些来自英国領事等的圧力也有影響，西班牙、葡萄牙船所進行的苦力貿易也逐漸転移到澳

---

123) FO228/265, Encl. No. 2 in Morrison to Bruce, No. 18, July 16, 1859.
124) FO663/65,〈泉州府同安県正堂陳致英国領事照会〉（咸豊9年6月）。
125) FO663/65,〈泉州府同安県正堂陳致英国領事照会〉（咸豊9年6月）。
126) FO228/265, Encl. No. 1 in Morrison to Bruce, No. 18, July 16, 1859; FO228/265, Encl. No. 2 in Morrison to Bruce, No. 18, July 16, 1859.
127) 地方官僚為停止苦力貿易而利用地方社会居民的情感，此現象在上海等其他地区也可看到。Irick, *op. cit*., pp. 15, 32.
128) FO663/19, Haifang Yu to Gingell, No. 79, Nov. 21, 1860.
129) FO663/19, Gingell to Taoutae Pan, No. 99, Nov. 22, 1860.

門。其後，西班牙在一八六七年至一八六九年期間試図在廈門重新開始苦力貿易，結果遭美国領事的反対而失敗。[130]

広東人勢力的衰退

廈門暴動之後的史料中，逐漸不見広東人的客頭出現，可見広東人在廈門附近的活動変得困難。另一方面，利用当地的福建人客頭募集苦力的現象変得明顕，一八五八年客頭江隠水事件[131]及一八六〇年阿恩号事件中的客頭全是同安人。[132]再者，在江隠水等人的案例中可見到，由四人合股成為大客頭平分利益；[133]由此可知，資金不多的同安人，也就是福建人客頭，藉由合股而成為大客頭。

這些大客頭的社会地位也発生了変化。一八五八年的事件中，小客頭藍査某父母兄弟全亡，当工人維生；不只是藍査某，大客頭江隠水也是喪父並以工人身分維生者；[134]可見成為大客頭的是社会地位低、幾乎無資金的人們。由此可知，不只是末端，客頭組織整体也日益小規模化。此種変化応也降低了大規模苦力貿易重新再展開的可能性。

另一方面，一八五〇年代前期広東海盗的勢力拡大，苦力貿力也有可能因此拡大。広東的村荘遭到来自澳門的武装老閘船的攻撃，村民被綁架；[135]可見海盗与苦力貿易関係密切。再者，一八六〇年阿恩号事件時，人頭掮客的小艇有二～四門火砲武装；[136]顕然地，苦力貿易相関業者的武装化達到某個程度。此外，和記洋行的買辦与海盗勾結[137]，很可能透過広東人的海盗船広艇従広東省売出苦力。

実際上也有従広艇上釈放苦力的案例。一八五八年四月三日有一名貧窮的中国女性向英国領事控訴她的児子遭到誘拐，事件因此暴露，英国領事立刻将此事告知興泉永道。加之，清朝水師的兵士也被広艇綁架。但此船配備重武装且有外国人乗坐，地方官員無法出手干預。興泉永道方面於是向英国領事請求支援；七日英国砲艦出動，領事捜索広艇，釈放了一五〇名被綁架来的人；二二名客頭被交給清方懲処。[138]因此，広東海盗確定与苦力貿易有関。

然而，一八五〇年代後期以後一方面有英国海軍的干預，広東海盗的活動開始衰退[139]。由

---

130) Irick, *op. cit.*, pp. 239-250.

131) FO228/251, Encl. 3 in Morrison to Bowring, No. 46, June 2, 1858.

132) FO228/285, Encl. 4 in Gingell to Bruce, No. 20, Feb. 21, 1860.

133) FO228/251, Encl. 2 in Morrison to Bowring, No. 46, June 2, 1858.

134) FO228/251, Encl. 3 in Morrison to Bowring, No. 46, June 2, 1858.但根拠証言，藍査某只不過是厨師，並非客頭。FO228/251, Encl. 1 in Morrison to Bowring, No. 50, June 19, 1858.

135) Wang, *op. cit.*, p. 58.

136) FO228/285, Encl. 4 in Gingell to Bruce, No.20, Feb. 21, 1860.

137) 前引拙著，頁162。

138) FO228/251, Gingell to Bowring, No. 26, Apr. 8, 1858. FO663/65,〈興泉永道司徒致英国領事馬照会〉（咸豊8年3月16日）。

139) 前引拙著，頁166-169。

広東人主導的苦力貿易因此受到打擊，導致日後広東人的網絡被自福建沿海排除。另一方面，広東人的活動集中於広東，広東省的苦力貿易以遠超過廈門的規模持続進行下去。[140]

如上所述，英国領事与地方官僚之間囲繞著苦力問題而形成的合作関係，還有中国人船客法的制定以及広東海盗掃蕩的進行等各種因素的影響，使廈門的苦力貿易衰退。直至一八五九年為止，広州附近的苦力貿易急劇増加；[141]此情況剛好与廈門成対比。

### （2）移民向東南亜的集中

如前所述，向東南亜方面的移民従最初就超過苦力貿易的規模，然而其是否未発生問題呢？

地方官僚的態度対外国人而言，向東南亜移民是他們所期盼的；但只要清朝禁止海外移民，地方官僚就有可能阻撓百姓移民到東南亜。但如前所述，実際上早在開埠之前清朝的官僚們便知道有販売人口到海外之事。開埠後立刻成為承包関税徴収的海関銀号的商人李泰昌（Ty-cheong & Co.），利用与当局的関係而執移民東南亜商務的牛耳；[142]可見開埠後也継続対移民之事予以黙認。

此外，一八五八年七月五日興泉永道会見美国領事時，宣称当事人与家属、親友期望的自願移民並不構成重大問題，[143]対英国領事也作了同様的発言。[144]継任的興泉永道也表示無意妨碍自願的移民。[145]因此，対於比苦力貿易自主性高的向東南亜的移民，地方官僚的態度可説是近乎黙認。特別是，這些移民与地方的安定無関才是最重要的。

東南亜移民的客頭与当地情報

東南亜移民的客頭也与苦力貿易的客頭不同。一八六〇年招募前往海峡殖民地移民的客頭中，許多曾在外国停留過；[146]有研究指出，東南亜移民的客頭多是帰国的東南亜華人；[147]正如其所説的，東南亜移民的客頭至少造訪過移民的目的地，此点有異於無移民経験的苦力貿易的客頭。再者，自新加坡和雪梨帰国的華人所説的伝聞也有促進移民的效果；[148]帰国者提供

---

140) 可児弘明在《前引書》（頁83－84）中認為苦力総数有50万人以上。廈門的苦力総数估計有1～2万人，従全部的苦力総数来看只占一部分而已。

141) Campbell, *op. cit.*, pp. 117-118.

142) 有些移民因未透過Ty-cheong & co.而受到地方官的処罰。FO228/50, Sullivan to Davis, No. 84, Nov. 26, 1845.

143) *ADPP*, Vol. 17, Minute of a meeting held on boar the U. S. Ship “Levant” on the 5th July 1856, p. 42.

144) FO228/251, Gingell to Bowring, No. 26, Apr. 8, 1858.

145) FO228/251, Morrison to Bowring, No. 46, June 2, 1858.

146) FO228/285, Gingell to Bruce, No. 87, Dec. 4, 1860.

147) Wang, *op. cit*., p. 58. 但是19世紀後期新加坡也有輿論譴責客頭在新加坡販売中国内地人口，存在与苦力貿易類似的問題。Wang, *op. cit*., pp. 99-100.

148) FO228/155, Backhouse to Bowring, No. 5, Jan. 11, 1853.

了当地的情報，此点也有很大的不同。此外，自願移民者許多已有親属居住在移民的僑居地，[149]可能也有来自已移民的親属的情報。

至於不攜帯家眷到東南亜的理由，被認為是因移民能経常返郷，家属可留在故郷負責祖先祭祀之事。[150]東南亜移民能与故郷保持聯絡，此点也与苦力貿易大不相同。

移民的僑居地与故郷之間藉此得以保持聯繫，有助於緩和移民業者与移民之間情報無法対称吻合的問題。此後発展成能信頼的人（移民業者）選出能信頼的人（移民）去移民的体制，与相関人員間的信頼関係薄弱的苦力貿易相異。因此，這種移民形態不会招致像苦力貿易那様厳重的対立，阻碍移民的要素也非常少。在此背景下，遷往東南亜的移民就益発増加了。[151]

此外，遷往東南亜的移民在招募的過程中，並非没有発生違法之事；[152]在僑居地也有与苦力貿易類似的労工待遇問題；[153]這些問題需要時間才能解決。[154]

這些問題雖未獲得解決，但重要的是在早期一八五〇年代末，廈門便已因苦力貿易衰退而出現了福建人主導的移民集中遷往東南亜的現象。此事再結合上僑居地的確保，奠定了福建人在東南亜的基礎。

## 結語

廈門的苦力貿易是在移民的伝統以及一九世紀初葉後沿海的外国与中国人合作関係的成立，還有一九世紀中葉沿海秩序的混乱之中誕生的。然而，因労動力需求的拡大与苦力的飽受批評造成了移民供需的落差，在此情況下客頭為尽量確保優質的労動力而做出不法的行為。並且，因其無差別地発生，地方社会必需的人材也遭到拐騙綁架，故招致強烈的反弾。廈門暴動成為中、英双方共同因応処理地方社会苦力問題的契機，排除客頭和海盗等広東人的勢力，対各外国船舶和商人們也施加圧力，藉此打撃了苦力貿易。另一方面，往東南亜的移民既得到地方官

149) FO228/285, Gingell to Bruce, No. 87, Dec. 4, 1860.

150) FO663/9, Encl. No. 3 in No. 127, Aug. 26, 1852, Note by Dr. Winchester.

151) 関於以海関統計為基礎的移民人数的推移，参見藤村是清，〈還流的労働移住の社会的条件〉，富岡倍雄、中村平八，《近代世界の歴史像——機械制工業世界の成立と周辺アジア》，世界書院，1995年；前引杉原薫，《アジア間貿易の形成と構造》，第10章。

152) 1873年左右福建通商局司道和按察使指出，漳州、泉州一帯的客頭綁架或拐騙「愚民」和年少子女販売；此若属実，極可能是被売往東南亜。《華工出国史料匯編》，1輯1冊，頁90－91，〈閩浙総督李鶴年為漳泉一帯拐人出洋承工擬責成地方官厳密緝査並厳定功過致総署咨文〉（同治11年12月30日〈総署清档〉）。

153) 若未自付船費，在当地就必須無工資地労動；諸如此類，有各式各様的待遇問題。W. L. Blyth, "Historical Sketch of Chinese Labour in Malaya,"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0, 1947, pp. 71-72.

154) 東南当地華人労工的条件要到1930年代以後才有所改善。杉原薫，《前引書》，頁311－312。

僚的黙認，又很少引起地方社会的反弾，因此海外移民很早就開始往東南亜集中。

針対苦力貿易所引起的各種問題，中、英双方能共同採取行動因応処理，除需巧妙運用参与苦力貿易者以外的全部民衆，地方社会上的排外感情並不那麼強烈也有很大的影響。因此，関於対苦力貿易的因応処理問題，不僅只是国家的因応方式，也応将地方社会的情況列入考量。此外，関於苦力貿易衰退的問題，不僅只局限在苦力問題，還需尋求与沿海地区各種問題的関聯。

広州在第二之鴉片戦争英法聯軍佔領的軍事圧力下，清朝地方官員与外国外交官員共同因応処理地方上的移民問題；一八六〇年両広総督労崇光制定了厳禁販売人口、重視自願意志的招工章程，受到管理的移民系統於是成立，並也拡大到了汕頭。[155]儘管如此，広東省因為有香港、澳門等苦力貿易拠点以及有広東人的客頭存在，故苦力貿易問題的解決需要一些時間。最後，澳門在一八七四年三月停止招募苦力，為苦力貿易畫下了句点。

在管制苦力貿易的過程中，清朝方面利用地方社会居民的情感，対英国領事要求取締英国商人。不只如此，清朝方面還利用英国領事充当与他国交涉時的中介人，並讓英国領事也対英国以外的商人施加圧力。原本応由清朝方面施加的圧力，転而讓英国領事代行。再者，移民的検查実質上也委託英方進行。例如，一八六〇年英国領事向興泉永道提議共同検查移民船，但廈防同知以生病為由加以拒絶，[156]可見其無意参与検查事務。此雖与当時清朝禁止海外移民有関，但允許中国人移民海外的天津条約与北京条約簽訂之後，此種態度也未有所改変。実際上，即使在一八八三年，清朝方面対乗船前的移民也完全無任何監督；[157]移民的管理業務長期委託外国各国進行。由此看来似乎可説，英国領事当初在無意間無報酬地自清朝地方官僚処承攬了移民管理業務。一八八一年廈門民衆（紳士和商人）感念於英国領事翟理斯（H. A. Giles）的功績，特別是対超載的英国船的取締，向他贈呈一把万名傘（又作「万民傘」）。[158]万名傘通常是用来贈送給有功績的官僚的，像這様贈呈万名傘給領事，[159]応是表示廈門居民也肯定英国領事代行移民管理業務的成果。

与苦力貿易同様地，藉由与英国等欧美諸国的合作、実質上讓欧美諸国代行的「業務委託」，以及対各種欧美制度的利用，包括：海関的整備、英国海軍的利用等，終於減少了走私，使海盗活動歩入衰退，清朝的沿海統治得以逐漸恢復。[160]

---

155) Irick, *op. cit.*, pp. 89-140. 以此章程為基礎再加入具労動基準法性質的部分，制成了1865年的招工章程。箱田恵子，《前引書》，頁49－52。

156) FO228/285, Gingell to Bruce, No. 87, Dec. 4, 1860.

157) FO228/721, Encl. in Forrest to Parkes, No. 18, October 25, 1883.

158) FO228/671, Giles to Wade, No. 9, Mar. 8, 1881.

159) 例如1893年8月担任興泉永道18個月的許秋槎要自廈門離任之際，紳商軍民製作了万民傘11柄、徳政匾6方、徳政牌旗数十対，擺放在興泉永道衙門。《申報》，1893年9月12日，〈餞儀誌盛〉。

160) 前引岡本隆司，《近代中国と海関》，頁179－203。

如此，利用這些欧美諸国、欧美人、欧美的制度，対沿海百姓而言，清朝的沿海統治也許比以往拘束、死板。但在另一方面，由福建人主導的東南亜移民的拡大給福建人帯来了新的機会。沿海地区秩序的恢復雖給沿海民的無秩序的自由空間帯来了終結，但另一方面卻拡大了往東南亜活動的空間，而那也将在未来引起動揺既存秩序的新的問題。

# 전후 초기 대만 권력주체사이의 갈등

정 형 아(제주대)

목 차

1. 머리말
2. 陳儀의 사람들
3.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과 대만출신의 권력집단들
4. 진의와 각 계파들의 갈등
6. 맺음말

## 1. 머리말

대만의 2·28사건은 우리나라의 5·18광주민주항쟁이나 제주의 4·3사건과 자주 비교되는 대만의 민중항쟁으로, 1947년에 발생하였다. 이때는 광복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로, 이 사건의 발단은 결코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배경에 내재한 여러 원인들을 고찰해 본다면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한다. 특히 사건 후 권력주체자(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는 냉전이라는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 좌우이념 대립으로 단순화하였고, 사건의 강경진압을 공비 토벌로 해석해 버렸다. 또한 그 이후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수도, 재고될 수도 없었던 상황은 이 사건으로 하여금 왜곡된 체로 역사 속에 남아 있게 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대만 민주화의 바람에 편승하여 2.28 사건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배상 뿐 아니라 학술적 연구도 시작되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학계 뿐 아니라 일반 민중의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크고 작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배경적인 연구를 놓고 본다면 현재까지의 연구가 단순히 좌우의 이념대립적인 상황이었다는, 사건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부정하는 데에 치중하는 면이 다분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후 대만 사회에 존재했던 사회적 모순에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2·28사건에 대한 연구 중, 그 배경에 관해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공산당선동설을 부정하고 있다.[1] 그리고 공산당 선동설을 부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2·28사건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전후 초기 대만의 정치, 사회, 경제를 연구하여 정치의 부패와 파벌투쟁, 경제적 위기, 섬 문화와 대륙 문화의 충돌, 타이완 민중의 심리적 불안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2]

필자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2·28사건의 배경을 주목하였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간접적 원인에 해당하는 권력갈등의 부분을 주목하였다. 즉 2·28사건이 일본의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새로이 통치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력주체자들을 주목하였다. 일본 식민당국자가 떠나간 후 권력을 이양 받은 새로운 통치 집단이 지배력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강압적인 통치행태가 나타나 통치 집단과 토착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갔다. 대만 총독부가 물러간 자리를 대신한 통치 집단은 국민정부와 그들이 파견한 진의를 대표로 하는 대만 행정장관공서였다. 국민정부가 카이로회담으로 전후 대만 수복을 확인한 이후, 국민정부는 대만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대만 접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훈련된 간부들이 대만의 새로운 행정방면의 주체자들이 되었다. 필자가 주목한 연구의 시작점은 종전 후 식민통치자가 대만을 떠난 이후에 나타난 대만 사회의 혼란기가 아닌 그 이전 국민정부가 대만 접수를 준비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제기하기 되는 질문은 대만조사위원회의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정부를 대표하여 대만의 통치자가 된 陳儀는 거의 독점적 권력을 부여받았는데 일본식민세력이 물러난 이후 대만

---

1)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裴可權(『台共叛亂及覆亡經過紀實』, 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87), 陳儀深(「論台灣二二八事件的原因」, 陳琰玉主編의 『二二八事件學術研討會論文集』(1991) 에 수록), 詹彩鳳(「共産份子與二二八事件』, 陳利甫編의 『禁忌、原罪、悲劇: 新生代看二二八事件』에 수록, 台北: 稻鄉出版社, 1990)등이 있다.

2) 張旭成(「二二八事件的政治背景及其影響」, 陳芳明編의 『二二八事件學術論文集』(1991) 에 수록, 台北: 前衛出版社, 1989)은 대만 행정장관공서의 전횡, 전매와 약탈, 횡령과 부패, 무능한 정책 등을 지적하였고, 姚禮明(「1949年以前的台灣海峽兩岸關係研究」, 『北京大學學報』 1999年第3期)은 陳儀와 대만행정장관공서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대만출신의 인사와 외성출신의 인사를 불평등하게 함으로써 대만인의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陳嬈清(「陳儀治台與台灣"二二八"起義」, 『學海』 1992年第6期)는 경제적 원인을 지적하며 대만 화폐가치의 동요, 광공(鑛工)기업의 진흥부진으로 인한 실업자수 급증, 관공서의 기업체에 대한 뇌물수수, 곡물의 외부유출과 밀수로 인한 식량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李筱峰(「二二八事件前的文化衝突」, 『思與言』 第29卷第4期, 1991年12月)는 문화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건은 체질이 중국사회와 다른 대만이 조국에 돌아간 후에 발생한 사회문화의 충돌과 마찰 때문이라고 하였고, 許雪姬(「台灣光復初期的民變: 以嘉義三二事件爲例」, 賴澤涵主編의 『台灣光復初期歷史』에 수록, 台北: 中央研究院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93)도 같은 맥락에서 대만과 중국대륙의 단절이 너무 오래되고 쌍방 간의 의식차이가 매우 컸는데, 행정당국은 이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도 정신의학전문가인 林宗義는 「二二八學術研討會」(1991)의 폐회사에서 대륙사람들은 대만인을 그들보다 낮은 등급으로 보았고, 대만인은 스스로 일제통치를 거치면서 대륙사람들보다 더 잘 지내고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심리상태를 가진 것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켰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고찰은 2·28사건이 현재 대만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심각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시 대만총독부에게서 대만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에는 대만접수위원회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행정가들 뿐 아니라, 기존의 국민당 내부의 각 계파들도 黨務, 정치, 경제, 군대 등 각 방면을 접수하기 위에 대만으로 들어와 새로운 권력 주체자들이 되었으며, 이들과 협력하면서 권력계층의 일부로 정착하고자 하는 대만출신자 또는 일본통치시기부터 유지해 오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원했던 대만인들이 시기의 권력주체자들이었다. 이들의 구성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들 권력 주체자들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이들과 진의의 관계를 통하여 당시 대만사회가 가진 모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陳明通은 파벌투쟁의 각도에서 2·28사건의 배경을 고찰한 거의 유일한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민당중앙·행정장관공서 및 본토 사회라는 3개 파벌의 부패과 투쟁으로 진의 가 전후 부흥공작을 수행할 수 없었고, 이것이 228사변을 일으킨 주요원인을 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3] 필자의 관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다만 陳明通의 구분처럼 국민당 중앙과 진의의 행정장관공서, 그리고 대만본토사회라는 삼각구도를 완벽하게 분리 구분할 수 있었을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엄밀히 말하면 진의도 국민당 중앙 소속이었고, 이들 세 계파간의 상호 연계나 갈등구조가 단순하지 않을 것에 주목하며 그 구조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고찰대상을 크게 진의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구분하였다. 진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시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과 대만본토 출신의 권력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륙에서 온 집단은 모두 국민당과 중국 대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孔宋집단를 제외한 CC파와 군통, 삼민주의 청년단은 성격과 활동이 대동소이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은 각각 장개석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는 陳明通의 표현처럼 국민당 중앙이라는 표현도 전혀 손색이 없다.[4] 또한 본문 2장에서 살펴보게 될 陳儀의 집단에 대해 보자면 陳儀도 정학계 출신이며 국민당 중앙에서 임명하여 대만에 파견되었다는 점에서는 국민당 중앙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권력의 갈등 구도에서 이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추구한 권력과 이익의 선점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이들 양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대만의 발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3)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臺論」, 賴澤涵主編,『臺灣光復初期歷史』, (臺北: 中央研究院中山人文科學研究所, 1993)

4) 위의 글, p.252.

대만에 대해서 陳儀는 국민당 내의 다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대만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분석활동을 거치면서 대만 재건에 대한 기대와 이상이 있었다. 그가 굳이 행정 장관공서제도라고 하는 대륙의 각 성과는 다른 제도를 고집했던 것도 물가와 통화의 심각한 상황에 있던 대륙과는 차별화시켜 독립적인 화폐와 은행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5] 재정금융 외에도 경제, 생산, 교통운수, 교육, 치안 등 민생을 우선 고려해서 이미 일본 식민통치시기부터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어온 대만에서 민생의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이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비해서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은 대만에서 국민당이 안정적으로 세력을 뿌리내리는 것을 바라기도 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정치적 위치와 경제적 이익을 다른 집단보다 우위에 두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직접 통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陳儀의 행정장관공서가 대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 대한 기대는 분명 대륙에서 온 다른 권력집단보다는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들을 국민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아닌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이라는 단어로 구분 짓고 陳儀정부와 그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陳儀의 사람들

우선 살펴볼 계파를 필자는 진의의 사람들이라고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진의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당 중앙의 한 계파인 신정학계와 전쟁 시기 대만수복을 위한 준비기구로 조직된 대만조사위원회, 그리고 전후 대만에서의 실제 접수와 관리를 담당한 대만행정장관공서가 있다. 이들은 진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진의와 다른 계파와의 관계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주었다.

### (1) 陳儀와 新政學系

陳儀는 절강 소흥출신이다. 그는 1907년 일본 사관학교 포병과를 졸업한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무창봉기 후에 軍務部部長 겸 陸軍小學校長에 임명되었다. 1914년 북경으로 가서 政事堂統率辦事處參議를 지냈고, 1916년 袁世凱가 제제운동을 벌이자 사직하고 다시 일본으로가 육군대학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귀국하였으나 국내 상황이 혼란하여 정치에 종사하지 않고 친구와 합작하여 江北裕華墾植公司를 운영하였다.[6]

1923년 江蘇군벌 齊燮元과 절강군벌 盧永祥이 江浙전쟁을 일으켰을 때, 福建의 孫傳芳이 齊燮元을 지지하여 절강으로 들어갔다. 당시 절강지역의 지주 신사들은 孫傳芳군을

5) 文史資料研究會 編,『陳儀生平及被害內幕』(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87), p. 96.
6) 錢履周,「我所知道的陳儀」, 戴國輝,『愛憎二二八』, (臺北: 遠流出版社, 1992), p.2.

환영했고, 陳儀도 그중의 하나였으며, 孫傳芳을 지지한 陳儀는 절강 第一師師長이 되었다. 1926년 북벌군이 江西를 진격했을 때, 진의는 자신의 참모장 葛敬恩의 권고에 따라 葛敬恩을을 파견하여 장개석을 만났고, 葛敬恩은 陳儀를 第十九路軍 군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과 장개석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7] 이렇게 장개석과 인연을 맺게 된 陳儀는 1927년 7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1928년 3월에는 국민정부의 유럽각국의 兵工廠 상황을 알아보다는 명을 받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시찰하였다.[8] 이때, 독일 유학중인 張果爲, 陳東生등을 만나게 되었는데,[9] 張果爲는 후에 陳儀가 복건성을 주관할 때, 복건성의 財政과 地政방면의 중임을 맡기게 된다. 귀국 후, 1929년 4월 陳儀는 軍政部 兵工署署長에 임명되었고, 그 다음달에는 軍政部 常務次長이 되었으며, 1934년에는 복건성 주석으로 임명되었다.

정학계는 1916년 袁世凱가 죽고 북경에 段祺瑞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회가 다시 회복되자 張耀曾, 李根源, 楊永泰 등이 政團을 조직하여 '政學會'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정학회는 정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을 표방하였다.[10] 그들은 국회에서 국민당 의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들은 우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정학계라고 불렸다.[11] 1918년 段祺瑞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安福國會를 성립시켰을 때, 정학계의 구원성의 상당수는 북경을 떠나 남방정부로 가서 정치활동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1927년 국민정부의 북벌시기에 국민당내에서 군권은 장악하였으나 행정적 인재기반이 부족했던 장개석이 행정부문을 장악한 汪精衛와 겨루기 위해 정학계 출신의 張群을 등용하면서 정학계는 중앙정계에서의 활동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장개석이 馮玉祥, 閻錫山, 桂系, 동북군 등의 군벌세력을 약화시키고 공산당 토벌시키는데 참여함으로써 정학계는 국민정부 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張群은 북벌군사령부 總參議를 지냈고 楊永泰도 국민정부의 군사위원회의 참모장, 豫鄂皖 剿匪總司令部비서장등의 요직을 거쳤다. 특히 공산당토벌이 계속되는 동안 장개석의 신임을 얻은 楊永泰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력그룹을 형성하였는데, 張群 뿐 아니라 熊式輝, 吳鐵城, 翁文灝, 陳儀, 王寵惠, 王世杰 등이 참여하였고, 陳儀도 그 당시 軍政部 정무차장을 지냈다. 이때 구성된 그룹을 新정학계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국민당 내에서 하나의 계파로 성장하며 행정권을 통제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고, 또한 湖南, 河南, 湖北, 安徽 등 지역에서 당무대권을 장악해 나가자 CC파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陳果夫는 정학계의 해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936년 湖北省 省長으로 있던

---

7) 全國政協文史資料研究委員會 等編,『陳儀生平及被害內幕』,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87), pp.7-8.
8) 全國政協文史資料研究委員會 等編,『陳儀生平及被害內幕』,p.20.
9) 錢履周,「我所知道的陳儀」, p.4.
10) 趙英蘭,「論南京國民政府時期的新政學系」,『史學集刊』 1995年第3期, p.32.
11) 趙英蘭,「論南京國民政府時期的新政學系」, p.32.

楊永泰가 암살을 당한 후 신정학계의 활동은 침체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陳儀가 대만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陳儀를 지지했던 국민당 중앙설계국의 국장은 같은 신정학계 소속인 雄式輝이었다. 그들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신정학계가 타이완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한 바 있으며,[12] 또한 1947년 국민정부가 개조할 때, 張群, 翁文灝, 王寵惠, 王世杰등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2) 대만조사위원회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전한 청의 요청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李鴻章은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에서 청은 일본에 遼東반도, 대만, 澎湖를 할양하기로 하였는데, 이때부터 대만은 일본 식민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37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대만은 이미 42년간 중국의 통치역량이 미치지 않는 땅이 되어 있었지만, 중국 국민정부의 수반인 蔣介石은 대만의 수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38년 4월 1일 개최된 임시전국대표대회 제4차 대회에서 장개석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이며, 고려와 타이완을 일본 제국주의자의 손에 두어서는 안 되며, 고려와 대만의 인민해방을 직무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힌바 있다.[13] 사실 영토의 주권을 중시하는 중국인민들은 전후 대만의 수복을 아주 당연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타임지가 『태평양 관계』라는 표제의 소책자를 발행하여 전후 대만의 "국제 공동관리"를 상정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42년 11월 3일, 중국 외교부장 宋子文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침범한 영토인 중국의 東北과 대만, 오키나와는 마땅히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뿐만 아니라 1942년 11월 13일 국민정부의 군사신문인 『掃蕩報』 또한 입법원장 孫科의 글을 통해 전후 대만의 국제 공동관리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였다.[15]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는 대만에 대한 전후 처리는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고, 중국을 동아시아에서의 盟友로 결정한 미국은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카이로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장개석에게 대만의 반환을 약속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카이로 선언은 전후 중국이 동북지역과 대만, 팽호열도를 수복할 것이라고 천명하였고, 이에 장개석은 대만 수복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이때부터 熊式輝가 비서장으로 있는 중국 국민당 중앙설계국은 대만 수복 준비계획에 착수하였고, 1944년 4

---

12) 唐德剛,「政學系探源」,『傳記文學』 第63卷第6期(1993年12月), p.28-29.
13) 張瑞成,『抗戰時期收復臺灣之重要言論』(臺北: 近代中國出版社, 1990), p.1.
14) 陳志奇,『中華民國外交史料匯編』(十一)(臺北: 渤海堂文化事業有限公司, 1996), p.5475
15) 『掃蕩報』(聯合版) 1942年 11月 13日.

월 17일 대만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당시 국민당 중앙 黨政工作委員會 考核委員會의 비서장 겸 중앙훈련단 교육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陳儀가 대만조사위원회의 주임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16], 陳儀는 국민당 내에서도 '臺灣通'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1935년 陳儀가 福建성 주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만 총독부가 일제 통치 4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 때 陳儀는 대만의 근대화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크게 경악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사람을 파견하여 대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게 한 후, 시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정부 내에서 대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이다. 국민당 내에서 대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인물로 陳儀가 손꼽혔던 만큼 陳儀도 대만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전후 대만의 거취가 결정되기 전부터 陳儀는 熊式輝와 자주 대만 수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개석은 대만출신자 혹은 대만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양성하여 타이완이 수복되자마자 黨政기구와 관련책임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의 명령에 따라 발족된 대만조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中央設計局臺灣調查委員會組織規程』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①대만에 관한 자료 수집, 대만의 실제상황 조사, ②대만 문제에 관한 자료 편집, ③대만문제에 관한 의견과 방안을 연구, ④대만을 수복하고 처리할 각 부문의 인재 훈련, ⑤미래 대만 행정체제와 각종기구 접수 방안을 계획 등이었다.[17] 대만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주임위원인 陳儀 외에 沈仲九, 王芃生, 錢宗起, 周一鶚, 夏濤生이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대만조사위원회가 존재하는 동안 많은 수의 겸임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예를 들면, 謝南光, 黃朝琴, 游彌堅, 林忠受, 宋斐如, 林忠, 連震東, 李萬居, 劉啓光, 謝掙强등이었는데[18] 이들 중에는 대만출신인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적 자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륙 내지인 중에서도 초빙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대만조사위원회는 1944년 4월 17일부터 1945년 10월말까지 陳儀의 지휘아래 활동하면서 일본통치하의 대만의 행정제도, 호구조사, 사회사업, 경찰제도, 전매사업, 교육, 교통, 무역, 위생, 금융 등 여러 방면에 대해 조사 분석, 번역, 편집을 하여 많은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그들이 분류하고 분석한 식민통치하의 대만 행정제도에 관한 자료가 13종, 법령자료가 5종이 있었고, 오키나와와 대만의 지도도 작성하였으며, 또한『臺灣地方行政制度法規』,『臺灣財政法領選集』,『日本統治下的臺灣行政制度』,『日本統治下的臺灣教育』등 대량의 자료와 책도 번역되었다. 그 후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臺灣接官計劃綱要』를 출간하여 대만의 地政, 金融, 經政, 교육 분야에 대한 접수관리계획의 기초

16) 孫彩霞,「陳儀與臺灣(上)」,『海峽評論』74期(1997年2月), p.1

17)『中央設計局臺灣調查委員會組織規程』(1944年4月); 中國第二歷史檔案館,「抗戰勝利前國民黨政府接受臺灣準備工作檔案史料選」,『民國檔案』(1989年第3期)에서 재인용.

18) 陳鳴鐘, 陳興唐,『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상)』(南京: 南京出版社, 1989) p.3

로 삼았다. 그 중『臺灣接官計劃綱要』는 수정과 토론을 거친 후에 장개석에게 보고되어 수정을 거친 후 1945년 3월 23일에 발표되었다.[19] 그러나 이들 자료는 아직 일본이 투항하기 이전에 수집한 자료들로, 대체로 책과 잡지 등 문서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현지조사를 통한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만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만조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하는 대만 수복의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은 실무종사자의 양성이었다. 대만을 치리하던 일본 관원과 주요 직무를 담당하던 일본인이 본국으로 귀환한 자리를 중국이 즉시 접수하여 대만의 각 부문의 주요업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런 필요에서 단지 대만을 조사할 전문가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자의 준비작업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陳儀는 일찍이 陳立夫에게 보낸 서신에서 인력배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대만 수복 후 제일 어려운 문제점은 인재수급의 문제로 대만의 각 기관 고급 인력은 거의 대부분 적(일본)인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수복 후 중국인이 즉시로 인수하여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많은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20] 이처럼 대만접수 후 행정의 공백을 없도록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陳儀는 인력배양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만조사위원회는 인력 배양 작업에도 착수하였다.

당시 陳儀가 중앙훈련교육부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훈련단에서 黨政幹部訓練班을 개설하였고, 각 훈련반의 모든 행정은 모두 중앙훈련단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12월 25일 제1기 대만 행정간부훈련반이 개설되었고 陳儀는 친히 훈련반의 주임은 담당하였으며 120명의 수강생이 선발되었다. 수강생의 출신지역별로 구분을 하면 복건성 출신이 31명으로 제일 많았고 江蘇와 廣東출신이 23명과 2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만출신자는 6명뿐이었다.[21] 이 훈련반의 수강생은 중앙 각 기관 혹은 부속기관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 중 선발하여 보낸 것으로, 연령은 25세에서 45세 사이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는데, 1.고등고시합격자, 2. 荐任이라고 하는 3등 문관의 직무를 역임한 적이 있어야 하며, 3. 전문학교 이상의 상급학교 졸업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4. 반드시 업무 성적이 우수한 자여야 했다. 수강생은 민정, 재정금융, 공상교통, 농림수산과 목축, 교육, 사법의 6개 조로 나누어 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기간은 4개월이었기 때문에 제1기는 다음해 4월20일에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외에도 대만경찰간부강습반과 경찰고급간부훈련반도 각각 개설하여 대만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준비를

---

19) 陳鳴鐘, 陳興唐,『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상)』, p.3-4

20) 『陳儀致陳立夫函』(1944年5月15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抗戰勝利前國民黨政府接受臺灣準備工作檔案史料選」에서 재인용.

21) 賴澤涵, 朱德蘭,『歷史視野中的兩岸關係(1895-1945)』(臺北: 海峽學術出版社, 2005) p.219.

하였다. 이 두 훈련반은 훈련을 통해 각급 경무인원 932명을 배출하였다.[22] 또한 四聯總處[23]는 국내외의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 40명을 모집하여 「臺灣銀行人員調訓班」을 개설하고 대만 금융방면의 접수간부가 되도록 하였다.[24]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장차 대만을 접수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상식적으로 대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은 대만출신자라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훈련반 수강생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위에 나열한 조건이나 상황에 의거하여 선발되었기 때문에 대만출신자가 극소수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 훈련반 출신자들은 대다수가 내지인 출신자들로 비록 4개월 정도의 훈련과정을 거쳤지만, 훈련자가 대만출신이든 내지인이든 간에 당시 일본통치하에서 살아온 대만인들의 상황과 정서, 또한 해방과 더불어 중국에 귀속되면서 겪게 될 복잡한 심리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접수공작에 참여하였고, 또한 대만의 식민당국의 통치지위를 이어받은 陳儀의 행정장관공서 내에서 주요 직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전후 초기 대만의 권력주체자 내부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세력이 되었다.

### (3) 대만 행정장관공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였고, 8월 28일 국민정부는 陳儀를 대만성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또한 그에게 대만성 경비총사령관의 직위도 겸임하도록 하였다. 8월 30일에는 접수를 위해 葛敬恩을 먼저 파견하여 대만성 행정장관공서와 경비총사령부의 前進指揮所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9월 1일에 陳儀와 대만성 행정장관공서는 우선 重慶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25] 陳儀는 10월 24일 臺北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대만 인민들은 陳儀와 국민정부가 파견한 관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10월 25일 陳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오늘부터 대만과 팽호열도는 중국의 영도로 다시 편입되었다. 모든 일체의 토지, 인민, 政事는 모두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주권 하에 있다”고 선포하였다.[26] 이때부터 50년간 일본 총독부가 차지하고 있던 대만의 통치 지위는 중국 국민정부에게 넘어갔으며 陳儀는 국민정부를 대표하여 대만을 치리하는 최고 수장이 되었다.

대만수복 후 대만의 행정체제는 다른 대륙의 省들과는 다르게 제정되었다. 대륙의 省

---

22) 陳鳴鐘, 陳興唐, 『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상)』, p.7-8.

23)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농민은행 연합회를 지칭.

24) 陳鳴鐘, 陳興唐, 『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상)』, p.8.

25) 『國民政府公報』, 渝字第八四六號(1945年 9월 1日)

26) 「臺灣省行政長官兼警備總司令陳儀正式宣布臺灣日軍投降廣播詞」, 秦孝儀, 張瑞成主編, 『光復臺灣之籌劃與受降接受』(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會, 1990), p.201.

들은 省政府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무는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위원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省政府의 주석도 위원회 위원 중의 한사람으로, 다른 위원들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지는 않았으며, 위원들은 省政府의 각부처장을 겸임하기는 하지만, 그 지위적인 측면에서도 省政府 주석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만은 대륙의 성들과는 다른 체제인 행정장관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통치와 경영을 받은 대만을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특수한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陳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정부가 반포한 「臺灣行政長官公署 組織條例」에 따르면 장관공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법령에 의거하여 대만성 전체의 행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②그 직권범위 내에서 각 서의 명령을 반포하되 대만성이 단독으로 제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③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을 처리해야 한다. ④대만성 중앙의 각 기관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27]

이에 근거하여 행정장관에게는 다른 省政府 주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위의 ①의 내용은 행정장관 1인이 행정대권을 독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臺灣省長官公署政務會議暫行判法」에 근거하여 형식상 정무회의가 존재하고 행정장관과 장관공서는 비서장, 각부처장, 각위원회의 주임위원, 타이완성 경비총사령 참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무회의의 의제범위는 행정장관이 제출하고 회의 출석자들이 세부적인 의제를 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 그러나 실제로 정무회의는 결정권이 없이 행정장관의 결책을 자문하는 정도였고, 행정장관공서 내의 각 부처장은 대체로 행정장관 陳儀의 막료들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행정장관과는 상하예속관계에 있었다. 이 뿐 아니라 행정장관은 대만 현지 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제도와 규칙을 반포 실행할 수 있었고, 대륙의 전국각지에서 적용되는 민국의 법령에 대해서도 장관이 독자적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臺灣省充實地方自治辦法』,『人民團體組織辦法』,『專賣品販賣辦法』,『日産處理辦法』등의 법규는 대만이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규들이다. 陳儀는 사법, 고시, 감찰, 중앙은행, 세관, 육해공군 등 중앙정부가 만든 대만의 지부기관에 대해서도 모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29] 이러한 면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의 행정장관은 대륙의 다른 성 주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주성과 독점적 권한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한 속에 陳儀는 임기 반 년 만에 機要, 人事 두 개의 室, 秘書, 民政, 教育, 財政, 工礦, 農林, 交通, 警務, 會計의 아홉 개 部處와, 法制, 宣傳, 設計考核, 土地, 적산

27) 臺灣省行政長官公署秘書處編輯室編,『臺灣省行政各機關組織規則』(1946年 4月).
28) 臺灣省行政長官公署秘書處編輯室編,『臺灣省行政長官公署公報』, 第一卷第一期(1945年 12月)
29) 秦孝儀, 張瑞成,『光復臺灣之籌劃與受降接受』, p.150.

처리, 일본교포관리, 學産관리, 경제, 물가의 아홉 개 위원회, 전매, 무역, 식량, 기상의 네 개 局, 농업, 수산, 糖業, 공업, 해양의 5개 실험소, 그 밖에 박물관, 경제원, 省은행 등 많은 기관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다. 1946년의 통계에 따르면 행정장관공서 산하에 만들어진 기관은 183개, 직원은 1만8736명에 달했는데,[30] 당시 대륙의 어떠한 성정부도 이와 같은 방대한 조직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과 인력이 陳儀 1인의 독점적 지휘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면 비록 그 조직이 방대하기는 하나 상당히 효율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더불어 陳儀 막료들은 오래동안 진의와 함께 해 온 사람들로 대만에서 그들의 세력도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개략적으로 陳儀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전후 陳儀가 대만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측근들을 출신배경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일부는 陳儀가 복건성 주석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수하이거나 대만조사위원회의 위원들, 또 대만간부훈련반 출신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부류도 중첩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또한 국민당 내의 파벌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陳儀가 政學系에 속하였으므로 이들 부류의 상당수가 정학계 소속이기도 하였다. 우선 복건성 재임시절의 수하 중 대표적인 인물로 대만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임물로는 沈仲九, 周一鄂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만 행정 장관공서에서도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沈仲九는 陳儀의 종제로, 일찍이 일본과 독일에서 유학하였는데, 陳儀가 복건성에 재임할 때 그의 비서이자 고문으로 활동했고, 또한 복건성의 「縣政人員訓練所」를 주관하였다. 대만에 온 후에는 장관공서에서 인사와 정책설계부문에 관여를 하였기 때문에 대만 각 縣의 科長, 科員, 區長, 區員, 衛生院長, 圖書館長등 각 방면의 인물들이 대부분 沈仲九의 인맥이었고 이들 장관공서에서 중요한 계파를 이루었다.[31] 陳儀가 복건성 재임시절 省委員會의 위원이자 省식량관리국장을 지낸 周一鄂은 대만조사위원회 위원, 중앙훈련단 대만간부훈련반부주임을 지냈고, 전후 대만으로 와서는 장관공서에서 민정처장, 토지위원회상무위원, 日産처리위원회위원, 日僑관리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밖에도 徐學禹, 李擇一, 嚴家淦, 夏濤聲, 范壽康, 河遠芬등은 陳儀가 복건성 재임 시절부터 함께 한 사람들로 타이완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장관공서의 각 부처와 위원회, 각 실에서 활동한 陳儀의 수하들이라고 할 수 있다.[32] 이 중 徐學禹는 진의의 광복회 옛 친구인 徐錫麟의 조카로 일찍이 독일에서 유학하였다. 陳儀가 유럽에 시찰갔을 때 서로 알게 되었는데, 陳儀가 복건 재임 시의 건설청장과 성정부 고문 겸 복건성 무역, 공광, 운수공사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장관공서 내에서 沈仲九의 인맥과 대

30) 陳鳴鐘主編,『臺灣光復和光復後五年省情』(上), p.265.
31) 錢履周,「陳儀主閩事略」, 李敖編著,『二二八研究三集』(臺北: 李敖出版社, 1989), p.42
32) 錢履周,「陳儀主閩事略」, 李敖編著, p.42.

립하는 한 세력을 이루었다.[33] 李擇一은 일본유학시절에 陳儀와 알게 된 사이로 복건성 陳儀의 휘하에서 省政府 顧問을 지냈으며, 그는 일본통으로 대외관계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대만에서도 장관공서의 고문으로 그에 대한 진의에 신뢰가 남달랐기 때문에 李擇一이 추천하는 많은 인물들이 성정부와 그 부속기관에서 중임을 맡았다.[34] 이를 기반으로 李擇一도 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비록 陳儀정부 내에는 陳儀의 사람으로 채워졌고,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계파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그룹들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진의의 사람으로 陳儀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대만의 시스템은 진의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치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양상은 그러한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진의가 집권한 후 대만에는 혼란상황이 나타났고 오히려 최근 적지 않은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전후 대만은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 국민정부가 대만에 와서 접수하기 전까지 총독부의 관할 하에서 더 안정적인 사회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하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것을 제외하고 물가는 총독부의 물가 안정화조치에 따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 하락하면서 민생은 안정적이었고 사회 질서도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총독부가 관할하던 시기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35] 반면 10월 25일 국민정부가 타이완을 접수하고 타이완 행정장관공서가 직접 타이완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대만 물가는 폭등하기 시작하여 경제는 악화되었으며, 더불어 사회 불안마저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陳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완벽한 통치권한을 부여받은 陳儀가 완전하게 통일된 통치 권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필자는 장관공서의 진의의 사람들은 대체로 진의의 통제 하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외에 陳儀가 부여받은 독점적 권한 범위로 제어할 수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 3.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과 대만출신의 권력집단들

본문에서는 陳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권력으로 대륙에서 온 세력과 대만 본토 출신 세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3) 錢履周, 「陳儀主閩事略」, 李敖編著, pp.42-43.
34) 錢履周, 「陳儀主閩事略」, 李敖編著, p.42.
35)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 第13期(2007年9月), p.66.

### (1)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

우선 대륙에서 온 권력집단들은 국민당 내 오래된 계파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들로 당시 대만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진의 정부와 갈등하였다. CC파, 삼민주의 청년단, 軍統, 孔宋집단이 있다. 순서대로 그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CC파

CC파는 중국어의 中央俱樂部의 영문번역인 Central Club를 줄인 것이기도 하지만, CC파의 리더인 陳立夫, 陳果夫형제의 성인 陳(Chen)의 영문 첫 글자의 중복사용으로 두 陳(Chen)씨 형제를 지칭하기도 한다. 陳씨형제는 장개석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의형제 陳其美의 조카들로 陳其美의 사후 장개석은 그들에게 당조직공작의 중임을 맡겼고, 이들은 장개석의 보살핌 속에 국민당내의 세력기반을 다져나갔다. 1927년 장개석이 1차로 하야했을 때, 중요한 당무는 대부분 陳果夫가 담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조직된 것이 중앙구락부였다.

1926년 장개석이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부 부장시절에 조사과를 설립하여 등기당원의 상황을 조사하는 임무를 주었는데 당시 조사과는 정보기구는 아니었다. 1928년 장개석이 하야한 후 진과부가 건의하여 조사과를 黨務에 관한 정보수집을 전담하게 하면서 미국에서 돌아온 그의 동생 陳立夫를 중앙조직부 조사과장으로 임명했다. 이때부터 조사과는 국민당 내에서 정보를 전담하는 최초의 기구가 되었다. 중앙조직부 조사과는 1932년 9월에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으로 개편되는데, 이는 장개석의 명령으로 戴笠이 주도하는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과 통합하면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때 출현한 군사위원회의 조사통계국은 陳立夫가 국장되었고, 그 아래는 3개 처로 구성하였다. 제1처 처장은 徐恩曾으로 각 당파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였고, 제2처 처장은 戴笠으로 軍警조사를 담당하였으며, 제3처 처장은 丁默邨으로 우편전신방면의 조사를 주관하였다.[36] 장개석이 통합을 추진한 목적은 정보 조직의 일원화에 있었으나, 陳立夫와 戴笠이 각각 독자적으로 각자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국장으로서 陳立夫가 戴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조사통계국의 3개 처는 분리하게 되었다. 제1처는 국민당 중앙당부로 이관하여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사 통계국을 설립하였고, 제2처는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으로 격상하여 군사위원회 侍從室 주임인 賀耀祖가 국장을 겸임하고 戴笠은 부국장이 되었다. 제3처는 군사위원회 특검처가 되어 丁默邨가 담당처장이 되었다.[37]

이렇게 분리되어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조사통계국을 이를 줄여 '中統'이라

36) 蕭李居,「戴笠與特務情報工作組織的開展」,『國史館館刊』第33期(2012年6月30日), pp.5-6.
37) 蕭李居,「戴笠與特務情報工作組織的開展」,p.6.

고 부른다. 중통은 일종의 특무기관으로, 黨務, 정치, 경제부문으로 그 활동영역을 제한하였다. 중통은 역시 陳씨형제를 중심으로 한 CC파가 장악하였다. CC파의 세력 확대는 특무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938년 陳立夫가 교육부장이 되면서 교육계를 CC파가 장악해 나갔고, 중앙농민은행과 교통은행 등을 장악하면서 경제계에 대한 영향도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陳씨형제의 당내의 세력이 날로 성장해 감에 따라「蔣家天下, 陳家黨(장씨집안의 천하, 진씨집안의 국민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38]

②軍統

군통은 국민당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을 줄인 말이다. 1927년 장개석이 하야했을 때, 장개석은 황포군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황포 졸업생을 규합하여 戴笠으로 하여금 비밀특무소조인 '調查通訊小組'를 조직하게 하였다.[39] 이를 기반으로 1932년 장개석을 따르는 황포생도들이 비밀특무조직인 '三民主義 力行社'를 만들었는데,[40] 역행사 내의 특무처는 戴笠이 주도하는 곳이었고, 이것이 군통의 전신이다.[41]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조직부 조사과와 통합을 하여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의 제2처가 되었다가 1938년 분리되어 제1처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사통계국이 되면서 제2처는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이 되었고 이를 줄여서 軍統으로 불렸다.

앞서 언급한 군사위원회 특검처로 분리되었던 제3처는 그 수장인 丁默邨가 왕정위 정권에 의탁하면서 특검처의 업무쟁탈을 두고 중통과 군통이 대립을 벌이다가 결국은 군통이 그 업무를 맡게 되었다.[42] 그리하여 군통의 업무는 원래 맡았던 군경과 관련된 특무활동 외에 공공철로와 수륙운송, 항공우편, 국가동원에 관련된 물자조사관리, 군수산업경비와 관련 업무를 맡았다.

③삼민주의 청년단

삼민주의청년단은 陳誠이 리더가 되어 만든 황포군관학교 교우회세력이 그 기반이다. 장개석은 황포군관학교의 교장으로 군사생도와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였지만, 군사총교관이면서 장개석이 일본 진무학당시절의 동기인 何應欽과 경쟁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황포군사계열에서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陳誠을 통해 황포 세력을 조직화하여 지지 세력을 확보 하려 했다.[43] 1938년 4월 국민당 임시 전국대표대회에서 삼민주의청년단

38) 徐恩曾 等著,『細說中統軍統』(臺北: 傳記文學社, 1992), p.3-5
39) 唐縱手稿, 姚孔行選註, 「唐縱失落在大陸的日記--從結識戴笠到任職侍從室」, 『傳記文學』 60(4, 5: 1992), p.60.
40) 周美華編,『事略稿本』 第13冊(臺北縣 新店市: 國史館, 2004), p.311
41) 蕭李居,「戴笠與特務情報工作組織的開展」, p.5.
42) 徐恩曾 等著,『細說中統軍統』, pp.14-16.

의 설립안이 통과되었다. 장개석은 "復興社"와 "CC계"를 파견하여 우한(武漢)등 지역에서 삼민주의 청년단을 설립하여 많은 공직인사, 군경, 정공인사의 입단을 독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흥사를 완전히 삼민주의 청년단의 핵심역량으로 병합하였다. 그해 7월 9일, 삼민주의 청년단은 무창(武昌)에서 정식으로 성립대회를 개최하였고, 장개석이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陳誠, 陳立夫를 포함한 31인으로 중앙간사회를 조직하였으며, 陳誠은 서기장이 되었다.

④孔宋집단

孔宋집단이란 孔祥熙와 宋子文의 세력을 지칭한다. 宋子文은 孔祥熙의 부인인 宋靄齡의 동생으로 孔宋 두 집안 모두 민국시기 최고의 재벌가문이었다. 宋子文의 여동생인 宋美齡이 장개석과 결혼하면서 孔宋 두 집안은 政財界에서 최고의 지위와 이익을 누렸다. 두 사람 모두 재정부장을 역임했고, 宋子文은 외교부장과 행정원장까지 지냈으며, 그 외에도 두 사람은 각각 정부 은행인 중앙은행과 중국은행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산업분야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거의 독점적 이익을 취하였다.[44]

종전 후 행정원장이 된 宋子文은 자원위원회를 행정원에 예속시켰다. 원래 자원위원회는 1932년 남경에서 성립된 이후 국민정부 참모본부, 군사위원회, 경제부를 거치게 되는데 宋子文이 행정원장이 되면서 행정원에 예속된 것이다. 처음 설립될 당시 자원위원회는 30여 명의 직원을 가진 한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후에는 석유, 금속철강, 광산, 기계 등 각 방면 거의 일천 개의 중대형 기업을 관할하였고, 그 직원은 30만 명에 달했다.[45] 자원위원회는 전후 초기 대만에서 일본의 적산을 처리하면서 전국의 주요 산업을 장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陳儀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 (2) 대만출신의 권력집단들

① 半山派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는 기간에 일부 대만인은 일본통치에 불만을 갖고 대륙으로 이주하여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였다. 특히 항전기간에는 대륙에 와서 종군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의가 대만접수를 준비하면서 국민정부 각 부서의 인원을 차출하여 대만조사위원회와 대만간부훈련반을 조직할 때 이들 대만에서 온 사람들 중 일부도 여기에 합류시켰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장관공서와 대만 인민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고 각종 정책의 실시에

43)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臺論」, p.243.
44) 許師愼 編,『國民政府建制職名錄』(臺北縣 新店市: 國史館, 1984), p.403.
45) 薛毅,「資源委員會接管臺灣工礦企業略論」,『史學月刊』, 2004年第10期, p.71.

도움을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들 반산인사들은 대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후에는 대부분 장관공서에서 요직을 맡았다.[46] 이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臺灣憲政協進會"이나 "臺灣文化協進會"등의 단체를 조직했는데, 때로는 함께 또는 따로 활동을 하며 세력을 구축하였다.[47] 이들은 모두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던 시기에 대륙으로 가서 반쯤은 대륙화된 사람들로 대만사람들은 대륙을 唐山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와서 반쯤 대륙화한 이들을 半山派라고 불렀다. 반산파에는 臺灣省 參議會 議長 黃朝琴, 臺北市長 游彌堅, 新竹縣長 劉啓光, 臺北新生報社長 李萬居, 삼민주의 청년단 臺灣區團長 李友邦등이 있었다.[48]

이들이 대만조사위원회나 대만행정장관공서를 통하여 陳儀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들이 陳儀의 적극적인 지지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륙에 있을 때부터 제각기 국민당의 각 계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游彌堅은 일찍이 부친이 재정부에 근무하면서 宋子文의 부하로 있었고 유미견도 그 배경을 통해 재정부 稅警總團 軍需처장이 되었기에 공송집단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49] 李萬居는 1937년부터 군사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에 들어가 일본에 대한 군사정치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때 군통과 관계하게 되었다.[50] 劉啓光도 군사위원회 총정치부에서 上校科員과 대만공작단 주임 등의 직위를 거치면서 군통과 연을 맺었다.[51] 黃朝琴는 1928년 1월부터 국민정부 외교부에 들어가서 이후로 줄곧 외교방면의 직무를 맡았고 또한 그는 정학계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정학계소속이 되었다.[52] 반산파의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정학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黃朝琴에 대한 陳儀의 지지는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1945년 8월에 대북시장이 되었던 黃朝琴은 얼마 후 시장직을 사임하고 省 참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되었고, 의회 의장자리를 두고 林獻堂과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陳儀가 林獻堂을 압박하여 물러나게 함으로써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53]

이들 반산파들에는 자신들의 직위와 관계들을 이용해서 나름의 계파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 대만본토인민을 위하여 혹은 진의의 행정장관공서를 위하여  혹은 대륙에서 온 국민당세력과도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

46)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p.245.
47) 葉石濤, 《台灣文學史綱》, (臺北: 春暉出版社, 2003), p.81.
48)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p.246.
49) 張炎憲、李筱峰、張永明(編撰),『臺灣近代名人誌(一)』(臺北: 自立晚報社, 1987), pp.152.
50) 張炎憲、李筱峰、張永明(編撰),『臺灣近代名人誌(一)』, p.164.
51) 張炎憲、李筱峰、張永明(編撰),『臺灣近代名人誌(一)』, p.222.
52) 鄭梓,『本土菁英與議會政治--臺灣省參議會史研究(1946-1951)』(華世, 1985), p.24.
53) 鄭梓,『本土菁英與議會政治--臺灣省參議會史研究(1946-1951)』, p.24.

② 臺中派

臺中派은 林獻堂을 중심으로 대만본토의 지주 신사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파이다. 林獻堂는 일본 통치 시기부터 대만 도민의 민족의식 고양을 위한 계몽운동을 펼쳐왔고,[54] 10여 차례에 걸쳐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을 펼쳤다.[55] 중일전쟁 발발이후 국민정부의 항전에 줄곧 관심을 쏟아왔던 林獻堂은 광복과 더불어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56] 광복 후 대만성 참의회 의원에 참가한 후 의장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陳儀의 압박에 물러났다.[57]

1946년 2월 장관공서는 각 항목의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일본통치시대 皇民奉公會에서 중요한 업무경험자란 사실이 확인된 자”, “간첩혐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 자”는 등기하고 공권력을 중지한다는 규정을 반포하였다. 이 규정은 일본강점기 황민봉공회 직무를 맡은 적이 있는 대만출신 인사로 하여금 전후 공직에 참선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 규정은 임헌당, 林茂生, 陳炘 등 많은 대만 본토 지주 신사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이들은 “臺灣政治研究會”를 조직하여 정권참여를 요구하였다.[58]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陳儀와 반목할 여지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③ 阿海派

阿海派는 蔣渭川과 許丙 두 사람이 결합한 계파로, 이들은 대만에서 상당한 민중기반과 정치활동력을 가지고 있던 대만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대만본토세력들은 광복초기에 陳儀정부와 순조롭게 결합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陳儀정부내의 대만출신인 반산파들의 배척을 받았다. 蔣渭川과 許丙도 각기 반산파의 공격으로 투옥된 적이 있기 때문에 출옥 후 반산파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결합하였던 것이지만, 각자 독자적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59] 또한 陳儀정부의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륙에서 온 국민당계파들과 연계할 수 있었다. 蔣渭川은 국민당 대만당부의 협력 하에 “대만성정치건설협회”를 설립하였고, 대만성당부는 蔣渭川을 통하여 많은 수의 기층 본토세력을 “정치건설협회”와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때 阿海派와 결합한 국민당 세력이란 cc파와 삼민주의 청년단으로 이들은 阿海派를 이용하여 대만 각지에서 당조직을 발전시켰는데, 당시 대만인의 눈에 보기에 “진보인사와 열혈청년은 삼청단을 따르고...보수인사와 유력한 士

54) 李付寶,「談日據時期林獻堂, 蔣渭水的早期活動」,『東京文學』, 2011年第11期, p.367.
55) 徐魯航, 「試論日本統治時期的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 『中共福建省委黨校學報』 2001年第2期, pp.69-71.
56) 陳思,「林獻堂眼中的國民黨與臺灣」,『臺灣研究集刊』(厦門), 2014年第1期, p.50.
57)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p.251.
58) 陳思,「林獻堂眼中的國民黨與臺灣」, p.52.
59)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p.251.

紳은 국민당에 들어갔는데, 동일한 주의 하의 양대 파벌을 형성하는 기형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회고하였다.[60]그만큼 이들은 진의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또한 그 배후에는 이들과 진의의 관계를 이용하려는 대륙의 계파가 존재하고 있었다.

## 4. 진의와 각 계파들의 갈등

### (1) 孔宋집단과의 갈등

陳儀의 장관공서와, 정학계를 제외한 대륙에서 온 네 개의 집단은 분명 이익추구를 위한 갈등을 연출한 권력주체들이다. 우선 공송집단과 진의의 장관공서 사이에 가시화된 갈등 원인에는 일본적산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다. 전후 대만의 각 기관의 접수와 통치에 대해서 국민정부는 행정장관공서에 전권을 주었다.[61] 그러나 행정원 산하의 資源委員會는 특별히 따로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접수하려고 하였고, 陳儀는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쌍방의 거듭된 협의를 거쳐 타이완 기업을 3종류로 나누어, 國營, 國省合營, 省營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國營과 國省合營은 자원위원회가 경영업무를 책임지기로 하였는데,[62] 국영과 국성합영으로 결정된 기업들은 모두 당시 타이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한 기업이었다. 예를 들면 電力公司, 水泥公司, 紙業公司, 石油公司[63]등으로 주요한 관리책임자는 모든 자원위원회에서 파견한 고위관료들 이었다.[64] 이로써 타이완 행정장관공서는 주요 기업을 결국 국영 또는 국성합영으로 내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전후 적산처리와 기업을 접수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자원위원회에 빼앗겼다. 자원위원회의 주요 인재들은 대부분 중국 내의 고등 교육기관 출신자들이었는데, 항전이 발발한 후 위원회 내의 인재를 다시 선발하여 순차적으로 미국 등지로 파견하여 교육하고 시찰하게 하는 등의 재교육을 거쳤던 사람들이었다.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었는데 종전 후 宋子文이 행정원장이 되면서 자원위원회를 행정원 산하에 두고 錢昌照를 위원장으로 삼아 적산의 접수, 공업배치의 조정, 중공업건설계획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국영기업과 국성합영기업의 總經理는 자원위원회에서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각 주요기관에도 공송집단의 사람들로 채워넣었다.[65]

---

60) 『吳新榮回憶錄』, p.191, 陳翠蓮의 『派系鬪爭與權謀政治--二二八悲劇的另一面相』, (臺北: 時報文化出版企業有限公司, 1995), p.243에서 재인용.

61) 鄭梓, 『戰後臺灣的接收與重建』 (臺北: 新化圖書有限公司, 1994) , p.136.

62) 錢昌照, 『錢昌照回憶錄』(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8), p.72.

63) 「資源委員會在臺各事業聯席會議記錄-第十七次聯席會議紀錄」(1947年1月24日, 臺灣國史館所藏)

64) 薛毅, 「資源委員會接管臺灣工礦企業略論」, 『史學月刊』(2004年第10期), p.73

65) 馮世勇, 「錢昌照與資源委員會」, 『炎黃春秋』(2007年第11期), pp.39-40.

자원위원회는 중공업 분야 뿐 아니라 재정과 금융, 지방세 징세부분에까지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일찍이 대만 조사위원회가 간부훈련반을 운영할 때에 국내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생 40명을 모집하여 「臺灣銀行人員調 訓班」을 개설하고 대만 금융방면의 접수관리 간부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와 금융방면의 인사에 있어서 陳儀는 孔宋 집단에 밀려나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었다.[66] 이로써 대만의 적산처리와 중요 산업분야는 자원위원회로 대표되는 孔宋집단의 영향 하에 있었고, 대만을 대륙 각 省과는 다른 체제에서 자주성을 갖고 운영하고자 했던 陳儀의 이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그런 상황에 대해 진의 스스로도 한탄하였다.[67]

### (2) 삼민주의 청년단과의 갈등

진의은 陳誠가 영도하는 삼민주의 청년단과는 비록 표면적으로 중대하게 충돌한 것은 없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군인출신으로, 진성은 장개석의 嫡系 황포군 세력이었고, 진의는 일찍이 군벌 孫傳芳에게 의지하여 후에 다시 장개석의 권력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이 둘은 선천적으로 그다지 융합되기 어려운 관계였을 것이다.[68] 그러나 대륙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삼민주의청년단이나 陳誠이 陳儀와 표면적인 갈등을 빚었던 적은 없었다.

李友邦은 원래 대만 출신으로 1924년 대만을 떠나 중국 廣州로 가서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대만혁명청년단에 가입하였고, 1929년에는 좌익을 대신하여 군대에서 활동하다가 국민당에 체포되어 옥살이도 하였다. 1937년 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대만의용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참가하였고, 1940년 초, 李友邦이 대만의용대의 정식 비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重慶에 갔을 때, 삼민주의청년단 중앙간사회의 간사장인 康澤便은 대만의용대의 비준조건으로 대만의용대 내에 삼민주의청년단을 조직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 걸었다. 이에 따라 1942년 李友邦이 그 책임자가 되어 대만의용대에 삼민주의 청년단 설립을 준비하였고, 1943년 1월에 삼민주의청년단 대만의용대 分團을 설립하였다.[69]

전후 삼민주의청년단의 영수인 陳誠은 李友邦, 張士德에게 일본강점기 대만의 반일 지식 분자를 흡수하여 대만에서 삼민주의 청년단을 조직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李友邦은 1945년 12월 대만 삼민주의 청년단의 책임자로 대만의용대 전우들과 함께 대만으로 갔다.[70]진의는 우선은 각 지역 접수공작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대만의용대 해산명령을 내렸고 李友邦은 이로 인해 매우 비통해 하였다.[71] 대만의용대의 해산 이후 李友邦은 삼민

66) 文史資料研究會 編,『陳儀生平及被害內幕』, p.108.
67) 文史資料研究會 編,『陳儀生平及被害內幕』, p.107.
68)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p.254.
69) 陳在正, 「李友邦領導的臺灣"三青團"與臺灣光復」,『臺灣研究集刊』(厦門)(2010年第1期), p.1-2.
70) 陳在正, 「李友邦領導的臺灣"三青團"與臺灣光復」, p.4.

주의 청년단 臺灣區團을 중심으로 다시 체제를 정비하면서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대만문화협회의 동지들을 규합하였고, 또한 대만 내의 반일 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던 좌익 활동가들을 흡수하였는데 예를 들면, 王添燈, 陳復志, 陳逸松, 王萬德 등이 각 지역의 삼민주의 청년단 설립공작에 가담하였다. 이우방이 이들을 근거로 정치역량을 강화하자 진의는 이들이 좌익색채가 농후하다고 하여 삼청단의 활동 경비도 줄이는 등 견제하였고 배척함으로써 陳儀와 대만 삼민주의 청년단은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72]

### (3) CC파와의 갈등

진의와 CC파와는 일찍이 진의가 복건성에 재임시절에 충돌의 경험이 있었다. 당시 CC파가 복건성 경찰부문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진의와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장개석은 CC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경찰부문은 CC파가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진의와 CC파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73] 진의와 CC파의 대립은 대만에서도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진의와 陳立夫와의 갈등이었는데, 그 첫 번째는 장관공서의 人選에 대해 陳立夫가 정학계가 행정장관공서를 독점한 것에 우려를 표하였던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관공서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정학계 출신으로 채워진 것을 보고 陳立夫는 장개석에게 李翼中을 국민당 대만지부의 총책임자로 강력히 추천하였다.[74] 그는 李翼中을 파견하여 앞에서는 당무를 통하여 진의의 통치를 지지하게 하였지만 뒤에서는 그를 감시하는 이중적인 활동을 하였고, 매번 CC파의 모임에서는 진의를 비난하곤 하였고, 여기에는 阿海派의 張渭川을 이용하여 진의를 우회적으로 공격하게 하기도 하였다.[75]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만출신의 阿海派는 진의의 장관공서가 이용했던 반산파와 대립하여 투옥되었던 적이 있는데 출옥 후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의 계파 중 CC파와 삼민주의 청년단과 결합하게 되었으며, 역으로 CC파는 진의를 공격할 때 阿海派의 장위천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CC파와 陳儀와의 갈등은 매체와 문화산업분야에서도 나타났었다. 1946년 국민정부는 각 지역 당부 스스로가 운영경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국민당 臺灣省黨部는 이를 구실로 장관공서에 영화관련 산업의 권리를 省黨部의 운영경비 마련을 위해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진의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다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대만성당부의 요구를 허락하자, 臺北國際映畵院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

71) 鐘逸人,『辛酸六十年』(臺北: 前衛出版社, 1995), p.364.
72) 鐘逸人,『辛酸六十年』 p.410.
73) 錢履周,「陳儀主閩事略」, p.54-55.
74) 賴澤涵,『悲劇性的開端: 臺灣二二八事變』(臺北: 時報文化, 1993), p.113.
75) 陳三井, 許雪姬,「林衡道先生訪問記錄」,『口述歷史』(2)(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1), p.225

는 성당부에 넘겨주었다. 이때부터 장관공서는 대만의 영화산업에 대해서 간여할 수 없었다.[76] 이 또한 진의정부가 CC파와의 경쟁에서 패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 (4) 軍統과의 갈등

전술한 바와 같이 진의가 복건성에 재임하던 시절에, CC파의 중통이 복건성의 경찰계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진의는 군통을 끌어들였다.[77] 그러나 군통에서 파견한 張超는 복건성의 건달들을 모아 복건성 경찰조직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빠르게 확대하였는데, 오히려 CC파보다도 더 거침없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진의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張超를 살해함으로써 군통의 戴立과도 대립하게 되었다.[78]

진의는 대만성 경비총사령관으로 표면상으로 대만의 군권도 장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만의 군 지도층에는 군통세력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었다. 특히 군통의 세력은 대만의 경비 총부와 헌병 제4단에 집중되었는데, 대만 경비총사령부 참모장인 柯遠芬, 헌병 제4단 단장 張慕陶, 대만역 역장 林頂立, 대만보안사령부조사처장 陳達元 뿐만 아니라 진의가 복건성 주정시절에 원수처럼 보았던 당시 복건성 경비국장 李進德도 후방근무 총사령부 대만 供應局局長으로 임명되어 있었다.[79] 이러한 人選 결과들은 진의가 군부 내에서도 권한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 (5) 대만 본토세력과의 갈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복 후 대만 출신으로 세력을 이루기 시작한 그룹들로 半山派, 臺中派, 阿海派가 있다. 陳明通은 陳儀정부가 半山派는 이용하고 臺中派는 배척하고, 阿海派는 공격하였다고 주장한다.[80] 그러나 그의 표현에는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다. 청일전쟁이후 50년간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온 대만과 중국대륙의 정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한 국민정부는 대만출신자들을 찾아 대만의 접수와 행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대만 기층사회의 교량을 삼고자 하였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대만출신으로 대륙에서 활동했던 반산파였다. 陳儀도 이러한 관점에서 黃朝琴과 劉瀰堅등 반산파를 지지했던 것이다. 대만 각 지역의 행정기관 수장으로 삼았고, 놓고 臺中派의 林獻堂과 대만성 참의회 의장직을 두고 경쟁 중이던 黃朝琴을 위해 林獻堂을 압박했던 것도 그러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반산파가 진의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76) 陳景峰,「戰後陳儀與CC派在臺灣電影産業上的爭奪」,『臺灣風物』第51卷4期, p.100.
77) 錢履周,「陳儀主閩事略」, p.55.
78) 余鐘民,「陳儀槍殺張超的前前後後」, 李敖編,『二二八研究三集』, p.70.
79) 陳翠蓮,『派系鬪爭與權謀政治--二二八悲劇的另一面相』, p.232.
80)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p.254.

다. 기본적으로 반산파 인사들 중에는 대륙에서부터 국민당 각 계파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劉瀾堅은 공송집단과, 李萬居과 劉啓光은 군통과, 黃朝琴은 정학계, 李友邦은 삼민주의 청년단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이 각 계파와 연계되어 있었고, 또한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파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진의에 충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산파와 진의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산파 중 삼민주의 청년단의 李友邦에 대해서 진의는 대만의용대를 해산하고 삼민주의청년단을 견제하는 조치로 인해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만을 접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반산파의 도움이 진의에게는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의는 그들을 이용했지만,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지 국민당의 기타 계파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진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게다가 이우방에 대해서는 공격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반산파를 진의의 지지 세력이라거나 진의에게 우호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臺中派에 대해서 진의는 배척하는 입장을 취했다. 앞에서 본 臺中派의 대표적인 인물인 林獻堂은 광복초기 국민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하였기에 공개적인 강연에서 국민정부를 찬양하면서 국민당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열렬한 환영의 태도를 보였다.[81] 그러나 陳儀정부의 무능과 그들이 대만본토인에 대해 취한 태도는 林獻堂으로 하여금 국민당에게 실망하고 돌아서게 했다. 진의가 참의회 의장 경선에 참여하려던 林獻堂을 압박하여 자진해서 물러나게 하고 黃朝琴이 의장이 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林獻堂을 비롯한 대만 紳士층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려고 한 것이었다. 일본 식민시기의 첩자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진의정부는 1946년 2월 21일, 辜振甫, 陳炘, 許丙, 林熊祥 등 각지의 紳士를 체포하였고, 이들에게 대만독립을 획책한 간첩이라는 죄명을 붙였다. 林獻堂은 이를 두고 진의 정부가 신사층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82] 더 나아가 진의 정부는 각 항목의 선거를 치르기에 앞서 식민통치시기 식민당국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해 참선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 조치는 林獻堂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그는 비록 회의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1945년 4월에 대만 총독부의 貴族院 의원이었고, 광복 후에 아직 국민정부가 대만에 입도하기 전에 林獻堂은 총독부와 상의하여 “治安維持會”를 조직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林獻堂은 일본의 어용신사라는 의심을 받았다.[83] 이러한 일들은 모두 臺中派와 대만본토 신사층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국민정부의 대만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했던 대만출신 인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

81) 陳思,「林獻堂眼中的國民黨與臺灣」,『臺灣研究集刊』(厦門), 2014年第1期, p.51.
82) 許雪姬,『灌園先生日記』(十八), (臺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2004), p.68.
83) 許雪姬,『灌園先生日記』(十八), p.66.

렇게 참선제한과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陳儀가 臺中派에게 취한 태도가 배척보다는 좀 더 공격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阿海派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격하였다. 阿海派의 許丙은 林獻堂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 통치 시기 貴族院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御用紳商라 불렀고, 이 뿐 아니라 許丙이 일본이 투항할 무렵 일본군과 草山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정부의 접수를 거부하는 무장 항의를 논했다는 죄목으로 투옥하였다.[84] 阿海派의 張渭川은 CC파의 지원을 얻으면서 진의의 시정에 대한 불만을 신문과 강연회를 통해 표출하고, 비난하면서 진의에 의해 기소된 적이 있는데 후에 회개서를 쓰고 사면되었다. 2·28사건이 발발했을 때, 진의는 張渭川을 통해 삼민주의청년단이 통제하는 "2·28 사건처리위원회"를 분열시키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장위천을 음모반란자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체포하기도 하였다.[85]

## 6. 맺음말

본 논문은 전후 대만의 혼란정국의 원인으로, 전후 대만에 새로이 등장한 권력주체들의 갈등을 주목하였다. 전후 국민정부이 파견한 새로운 대만의 통치주체인 진의가 항복의식을 거행하는 10월 말까지 대만의 통치는 여전히 대만 총독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10월 말까지 2개월의 기간 동안 대만 경제, 민생, 치안 방면에서 아주 안정되었으나 진의 정부가 접수공작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혼란의 양상은 날로 가중되어 대만민중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86]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정부는 카이로 회담에서 대만의 중국 귀속이 결정된 이후부터 계속 대만 접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비록 문서에 근거한 대만 조사와 분석이 대만 실질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진의의 대만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만 접수 준비는 대만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륙의 일본 점령지 수복보다는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의의 접수 공작과 통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필자는 그 원인을 표면적으로는 진의가 軍政대권을 장악하여 통치체제를 일원화한 듯 보였으나 실상은 진의가 통제할 수 없는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실 진의는 표면상으로는 행정과 군사방면의 대권을 장악한 대만 최고 권력의 위치에

84)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p.255.
85) 陳明通,「派系政治與陳儀治台論」, pp.255-256.
86)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pp.64-79.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군사, 경제 각 부문에서 대륙에서 온 권력들과 겨루어 갈등을 초래하였다. 즉 전후초기 대만에서 CC파는 국민당 당무, 군통은 군사와 정보, 삼민주의 청년단은 청년 지식분자를 흡수, 공송집단은 경제와 금융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각 파는 원래 대륙시절에서부터 정학계 혹은 진의 본인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대만 접수과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각 파의 이익쟁취와 세력 확대에 힘을 쓰다 보니 진의는 여전히 통합 지휘할 수 있는 통일된 계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각 파벌은 진의와 대립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만 본토의 세력을 끌어 들여 이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진의를 공격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당 내부계파들의 권력투쟁과 대만본토 세력의 양분된 갈등양상처럼 보이나 실상은 진의와 국민당 각 계파의 갈등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계파와의 계속된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 진의가 애초에 구상했던 이상적인 대만 재건의 길은 순조롭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만의 혼란은 가중되어 갔다.

장개석은 대만에 중국 대륙의 정치경제적 혼란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안정되게 정치와 경제의 건설을 이루기 위해 진의에게 軍政一體의 권력과 엄밀한 통제체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대륙정치의 영향을 차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즉 진의를 둘러싸고 계파세력들의 각축이 대륙에서 온 권력주체들 뿐 아니라 이들이 이용한 대만 본토세력에도 이식되어 대륙의 기존 계파정치의 폐단이 대만에서도 심화되어 나타났다. 그로 인해 진의는 결국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전후 초기 대만의 권력 주체자들의 갈등 양상은 대륙에서 온 권력과 진의의 갈등 구조였고, 여기에 대만본토세력도 반산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륙에서 온 권력을 대리하여 진의와 맞서는 형세였다고 볼 수 있다.

# 異端에서 正統으로

## — 近代中國의 天地會와 少林寺五祖 —

이 평 수(성균관대)

목 차

序論
Ⅰ. 異端의 出現과 少林寺五祖
Ⅱ. 少林寺五祖의 崇拜
Ⅲ. 正統으로의 確立: 五祖祠의 建立
結論

## 序論

근대 중국의 會黨系 비밀결사를 대표하는 天地會는 三國志演義나 水滸傳에 보이는 피로써 義兄弟의 관계를 맺는 전통사회의 유산을 계승하여 18세기 후반 福建에서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천지회는 相互扶助의 정체성, 反淸復明을 지향하는 정체성, 生存手段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점철된 결사[1]로서 인민들을 대거 흡수한 결과, 지역적으로 福建·廣東·廣西·江西·湖南·貴州·雲南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결사의 내부문서인 會簿를 토대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가면서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여기에서 학술적인 관심이 아니더라도 天地會라는 비밀결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으레 '少林五祖'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일찍이 1974년 홍콩에서 영화 소림오조가 최고의 흥행작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아마 국내에서는 反淸復明이라는 천지회의 소재를 가지고 1994년 저 유명한 중국의 무협배우인 李連杰이 이른바 '小林十虎' 중에서도 최고의 무공을 자랑하는 洪熙官의 역할로 등장하는 영화 소림오조(원명: 新少林五祖, 1993년 작품, 자료 1)에서의 소년 소림오조로 더욱 잘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해의 2월 초 국내의 거의 모든 신문의 광고에서 "강호

1) 李平秀, 「淸代 秘密結社 天地會 硏究—1761~1900年 廣東의 事例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02쪽.

의 벌판에 혈풍이 회오리친다!"(자료 2)라는 문구 아래 영화 소림오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 적어도 이 영화는 2000년대 초반까지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방송된 단골 홍콩의 무협영화 중의 하나였다. 국내의 상황이 이 정도였다면,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에서는 국내보다도 훨씬 더 큰 열풍이 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무협영화에서 이처럼 천지회와 직결되는 소림오조, 정확히 말하자면 少林寺五祖는 과연 청대와 민국시대 천지회의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인물이었고, 또 어떠한 역사적 함의를 담고 있었던 것일까? 적어도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 영화 新少林五祖

(1993년, 중국의 광고포스터)

<자료 2> 영화 少林五祖

(1994년, 한국의 광고 포스터)

의외의 놀랄만한 사실은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天地會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음[3]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필자의 질문에 대하여 학술사적으로 전문적인

2) 예컨대『한겨레신문』1994년 2월 4일 16면의 하단 광고인 <자료 2>를 참조.

3) 天地會의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專論으로는 유장근,『근대 중국의 비밀결사』, 서울: 고려원, 1996; 秦寶琦,『淸前期天地會硏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8; 秦寶琦,『洪門眞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0; 秦寶琦,『中國洪門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2; 胡珠生,『淸代洪門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赫治淸,『天地會起源硏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雷冬文,『近代廣東會黨: 關于其在近代廣東社會變遷中的作用』,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2004; 陸寶千,『論晩淸兩廣的天地會政權』, 臺北: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75; 莊吉發,『淸代天地會源流考』,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1; 佐佐木正哉,『淸末の秘密結社: 前篇天地會の成立』, 東京: 巖南堂書店, 1970; Dian H. Murray, *The Origins of the Tiandihui: the Chinese Triads in Legend and Histor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David Ownby, *Brotherhoods and Secret Societies in Early and Mid-Qing China: The Formation of a Tradi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康熙 13년(1674) 천지회의 창립설을 주장하는 이른바 康熙派를 대표하는 赫治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지회의 창립자를 萬五道宗(=기원전설의 萬雲龍)으로 한정하고 소림사오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리적 설명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4] 乾隆 26년(1761) 洪二和尙 鄭開에 의한 천지회의 창립설을 주장하는 秦寶琦를 필두로 하는 소위 乾隆派의 많은 학자들은 결사의 기원전설 자체를 허구적인 비역사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설에 등장하는 少林寺五祖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5] 사실상 천지회의 기원전설에 출현하는 소림사오조를 실제의 역사적 인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림사오조는 천지회의 연구 영역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지금까지 그나마 少林寺五祖에 주목한 것은 康熙派의 胡珠生과 구미학계의 천지회 연구를 대표하는 하르(Haar)의 연구에서이다. 호주생은 소림사오조를 萬五道宗과 함께 천지회의 실제 창립자로 간주하였고, 이 때문에 천지회가 소림사오조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였다.[6] 하르(Haar)의 경우, 프리드만(Freedman)의 종족 연구에 기초하여 천지회가 전설상의 인물인 소림사오조를 숭배한 것은 이른바 '洪家'를 창출해 내기 위해 천지회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성행한 종족 조직의 조상 숭배를 모방한 전형적인 형식이었다고 주장하였다.[7] 적어도 호주생과 하르의 이러한 언급들은 천지회의 연구에서 소림사오조가 갖는 중요성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소림사오조가 바로 천지회라는 결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관건적인 인물 중의 한 명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은 필자가 본고를 전개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가설 중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어떤 결사에서 그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은 그 대상이 실제냐 허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구비하여 체계화되었느냐의 여부이다. 이 문제는 결사 구성원들의 믿음 내지는 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허구 인물이지만 결사 구성원들이 실제 인물로 믿기 시작하면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급기야 숭배의 대상으로 승격된다면, 이러한 허구 인물조차 구성원들에게 실제 인물의 형상을 뛰어 넘어 결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신적인 존재로까지 격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8세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천지회가 19세기 이

---

1996; Barend J. ter Haar, *Ritual and Mythology of the Chinese Triads: Creating an Identity*, Leiden · Boston · Köln: Brill, 1998 등이 있다.

4) 赫治清, 『天地會起源研究』, 72-82쪽, 252-278쪽, 320쪽.

5) 주석 2)번에 열거된 秦寶琦 등 기존 乾隆派의 관련 연구 성과를 참조.

6) 胡珠生, 『清代洪門史』, 108-111쪽, 545-546쪽.

7) Barend J. ter Haar, *Ritual and Mythology of the Chinese Triads: Creating an Identity*, pp.204-210.

후로 廣東을 중심으로 華南의 각 지역사회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少林寺五祖가 결사의 내부에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전개되어 나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연구자들은 天地會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淸代와 民國時代라는 시기로 구분하여 단절적으로 파악해 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청대의 전통 중국에서 등장한 천지회는 마치 존립의 의의가 있는 반면에 근대 중국으로 진입한 민국시대의 천지회는 그러한 존립의 의의를 잃고서 쇠퇴 혹은 변질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에는 천지회의 역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스스로 커다란 장벽을 세우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천지회가 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청대라는 구시대 모습의 연장(불변) 혹은 탈피(변화)라는 기로 속에서 훨씬 다양한 모습과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요컨대 淸末民初라는 시기를 하나의 연속된 시간으로 상정하고 辛亥革命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이후의 천지회가 결사의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기능의 변화는 물론 조직 자체의 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와 방향으로 분화되어 나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8]

이상과 같은 필자의 가설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근대 중국의 天地會와 少林寺五祖의 문제에 대하여 異端과 正統이라는 구도 속에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단과 정통의 사이를 상징적으로 매개해 주는 것이 바로 소림사오조인데, 이는 마치 도로의 가변차선처럼 소림사오조가 이단의 결사로서 천지회를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정통의 결사로서 천지회를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가변인물'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천지회가 이단의 결사로서 내몰려진 상황을 청조 국가권력이 규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천지회의 結會事件과 결사의 傳說·儀式·記號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허구 인물인 소림사오조가 결사의 創立·宗旨·再建을 상징하는 신격화된 인물로 숭배된 상황과 증거들을 제시해 본다. 이후 이단과 정통의 경계가 무너졌던 해외 지역과 민국 초기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소림사오조가 공개적·합법적으로 숭배되었던 상황을 검토해 본다. 이러한 서술 과정에서 제시되는 일부 미 공간된 檔案이나 문헌 자료, 그리고 공간된 몇몇 사진 자료는 본고의 논의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소림사오조와 관련된 자료가 현재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료적 한계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근대 중국의 천지회에서 소림사오조가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물론이거니와 淸末民初라는 정치 격변기를 경과하면서 천지회가 소림사오조를 매개로 이단에서 정통으로 일대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졌던 상황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8)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필자의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이평수, 「淸末民初 洪門史를 보는 시각과 전망」, 수선사학회 2013년 추계 학술대회 제출논문, 대진대, 2013년 11월 2일 참조.

## Ⅰ. 異端의 出現과 少林寺五祖

청조 국가권력은 국초부터 민간에서 歃血・盟誓・焚表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이른바 義兄弟集團에 대하여 국법의 律例와 이를 보완한 條例를 통해 엄격히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일찍이 順治 18년(1661) "'歃血・盟誓・焚表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의형제 집단[歃血盟誓焚表結拜弟兄者]'은 사형으로 집행한다."는 조례로부터 시작되었다.[9] 이후 몇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康熙 10년(1671)에 이르러 의형제집단은 기본적으로 謀叛未行律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으니, "'歃血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의형제 집단[歃血結拜兄弟]'은 人數의 多寡를 구분하지 않고 謀叛未行律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10] 이러한 내용은 雍正 5年(1727)『大淸律集解附例』의 刊行과 이것의 최종 수정본인 乾隆 5년(1740)의『大淸律例』의 간행을 거치면서「刑律・盜賊」의 謀叛律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릇 '歃血・盟誓・焚表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의형제 집단[異姓人歃血訂盟焚表結拜兄弟]'은 人數의 多寡를 구분하지 않고 謀叛未行律에 따라 처리하는데, 우두머리는(首者)는 絞監候로 처리한다. 삽혈・맹서・분표의 事情이 없는 의형제 집단은 우두머리의 경우 杖 1백으로 처리하고, 그 따른 자(從者)의 경우 일등을 감한다.[11]

이처럼 歃血・盟誓・焚表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의형제집단은 결사의 명칭 유무와 상관없이 적어도 康熙 10년(1671) 이후로 청조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위 '十惡不赦'의 죄명 중에서도 謀叛를 일삼는 이른바 '異端의 결사'로 낙인찍혔던 것이다. 이후 위의 律例과 관련하여 의형제집단이 福建에서 점차 會名을 갖기 시작한 '會黨'의 출현과 발맞추어 乾隆 29년(1764) 급기야 '閩省'과 "會를 결성하고 黨을 심는다."는 의미의 '結會樹黨'이란 등의 문구가 추가된 律例가 증첨되었다.[12] 나아가 건륭 39년(1774) 人數에 따라 죄의 輕重을 달리하는 등 좀 더 세분화된 律例도 증첨되었다.[13]

淸初의 義兄弟集團과 會黨은 기본적으로 회원들 간의 상호부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란 지역사회에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면 무력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거

---

9) 雍正『大淸會典』卷194「刑部」「奸徒結盟」
10) 雍正『大淸會典』卷194「刑部」「奸徒結盟」
11) 雍正『大淸律集解附例』卷18「刑律・賊盜・謀叛」
12)『大淸律例根源』卷54「刑律・賊盜・謀叛」'續纂',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2, 846-847쪽.
13)『欽定大淸會典事例』卷779, 光緖12年本,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續修四庫全書』史部・政書類 798-814,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553쪽;『淸高宗實錄』卷951, 乾隆39年1月條, 北京: 中華書局本, 11쪽.

나 혹은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고,[14] 결사 내부적으로는 청조 국가권력에 도전할만한 어떠한 사상적・이론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明의 멸망 이유를 文人結社의 횡행에서 찾은 청조는 애초부터 민간에서 조직되는 결사 자체를 國法에 명문화하여 철저히 금지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국법을 내화한 宗族의 규율 역시 개인이나 사회집단을 正(=정통)과 邪(=이단)로 구분하여 의형제집단과 회당과 같은 결사를 후자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것이다.[15]

적어도 天地會는 청조의 국가권력이 국초부터 민간사회에서 叢生하기 시작한 義兄弟集團과 會黨과 같은 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였다. 천지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淸末 이래로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왔지만, 현존하는 檔案資料에 의하면 僧名이 提喜・涂喜・洪二和尙으로 알려진 鄭開라는 인물에 의해 乾隆 26년(1761) 福建 漳州府 漳浦縣 雲宵 지방에서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16] 이로부터 건륭말년(1795)까지 약 35년간 활동한 천지회의 실상을 복원해 보면, 그것은 확실히 그 이전의 의형제집단과 회당과는 구별되는 발전적 형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天地會는 우선 결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록 간단하긴 하지만 朱姓과 李姓에 의한 洪家의 탄생, 즉 천지회의 창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것이 馬九龍과 萬和尙으로 이어진다는 일종의 '천지회 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창립된 천지회를 전파하기 위해 洪字로부터 파생되거나 이것이 상징하는 다양한 암호 장치를 창조하고 개발했는데, 이는 결사의 내부에 독특한 특징을 창출 혹은 추가시킴으로써 결사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담보해 내었다. 여기에서 천지회의 특징과 성격이란 홍자에서 연유하여 면식이 없더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암호장치의 운용', 회원들 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고 하는 상호부조의 '사회적 성격', 집단의 힘을 이용하면 재물을 약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암호장치 등 '천지회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성격',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이념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서 결사의 힘으로 정치적 사건을 일으키고 심지어 반란으로까지 나아가 국가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성격', 歃血結盟과 桃園結義라는 전통문화에 기초한 忠義 관념으로 가득 찬 盟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들 수 있다.[17]

비밀성과 암호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결사의 계보와 정치성이 새롭게 추가된 天地會는

---

14) 莊吉發,『淸代秘密會黨史硏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1994, 50-51쪽.

15) 유장근,「근대기 양광의 지역사회와 국가권력」,『근대중국의 지역사회와 국가권력』, 서울: 신서원, 2004, 39쪽.

16) 「閩浙總督伍拉納等奏審擬行義陳彪摺」(乾隆54年5月3日), 中國人民大學淸史硏究所・中國第一歷史檔案館 合編,『天地會』7,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0-88, 522-527쪽.

17) 이평수,「淸 乾隆 中末葉 天地會의 出現과 實相」,『東洋史學硏究』126, 2014, 310쪽.

청조 국가권력에 의해 발각되는 순간 異端의 결사를 대표하는 이단 중의 이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흥미로운 점은 청조의 국가권력이 적어도 26년 동안 천지회가 출현하여 활동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乾隆 51년 11월(1787년 1월) 福建 臺灣府에서 林爽文의 천지회 반란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천지회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후 임상문의 천지회 반란의 여파로 발생한 乾隆 56년(1791) 張標·謝志의 천지회 사건은 더 이상 청조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천지회와 같은 민간의 전형적인 異端적 결사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급기야 청조 국가권력은 건륭 57년(1792)『大淸律例』를 重修하는 과정에서 '천지회'라는 이름을 謀叛律에 명문화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臺灣의 불법적인 匪徒들이 사람들의 규합을 몰래 모의하여 天地會라는 명목으로 부흥할 경우, 약탈을 하고 체포에 대항한 자 중에서 우두머리·일찍이 사람들을 규합한 자·스스로 무리에 들어간 자·약탈을 도모하려고 한 자는 모두 斬首刑으로 즉결하고, 사람들을 규합하지 않았거나 혹은 위협을 받아 가입했지만 소질이 불량한 자는 絞首刑으로 즉결한다. 수년 후에 이러한 풍조가 점차 수그러들면 다시 舊例에 따라 처리한다.[18]

이제 청조 국가권력은 乾隆 39년(1774)의 律例를 통해 歃血·盟誓·焚表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의형제 집단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위와 같이 별도의 律例를 설치하여 천지회라는 회명을 謀叛律에 직접적으로 명문화시킴으로써 천지회가 적어도 모반을 기도하는 '異端'의 결사라는 점을 명백히 규정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천지회라는 회명이 갖는 '정치적 힘'은 이처럼 청조가 스스로 천지회에게 더욱 배가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포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셈이다. 그리고 "수년 후에 이러한 풍조가 점차 수그러들면 다시 舊例에 따라 처리한다."는 청조 국가권력은 희망은 그것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가경 16년(1811) 위의 율례에서 "臺灣"을 "閩粵"로 수정하였다.[19]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천지회를 처벌하는 율례로서 淸末까지 존속되었다.

그렇다면 天地會가 淸朝 국가권력으로부터 謀叛을 기도하는 異端의 결사로 내몰려진 직접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청조가 大淸律例를 통해 천지회를 모반을 기도하는 이단의 결사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歃血·盟誓·焚表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의형제집단'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청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천지회가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이념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林爽文의 천지회 반란처

18)『大淸律例根源』卷54「刑律·賊盜·謀叛」'續纂', 847쪽;『欽定大淸會典事例』卷779, 555쪽.
19)『大淸律例根源』卷54「刑律·賊盜·謀叛」'修改', 850쪽.

럼 실천적 목표로써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른바 乾隆派(혹은 檔案派)로 일컬어지는 많은 학자들은 현존하는 檔案資料에 근거하여 乾隆年間 천지회의 반청복명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당안자료에서도 관련 기록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廣西巡撫 成林의 奏摺에서는 "건륭 58년(1793) 浙江人 范七이 병사하기 이전에 전파한 천지회의 會簿[簿子]에 '청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부흥하자(反淸復明), 眞人은 四川에서 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건륭 51년 11월(1787년 1월) 林爽文의 천지회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이전에 사용한 盟誓에는 "'明主가 천지회를 전수하니[明主傳宗]', 오늘 밤 피로써 盟誓하고 結義하여 同胞兄弟가 되었다."는 구절이 보이고,[20] 반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임상문의 천지회 지휘부가 "開國先鋒들에게 용감하고 전투를 잘하는 兵將을 선발하고 단련시켜 '명나라를 보존하고 청나라를 토벌하자[保明伐淸]'라는 命令"[21]을 예하의 부대에게 내리기도 하였다.

단편적으로나마 乾隆末葉부터 보이는 천지회의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이념은 嘉慶·道光年間 이래로 결사의 구성원들이 남겨 놓은 각종 기록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반청복명이라는 정치이념이 가경연간 이후로 천지회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성장하면 할수록 결사의 구성원들에 의해 그것의 사실 유무나 실천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일종의 '信念' 내지는 결사의 '信仰'으로까지 발전해 나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과 신앙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천지회 인물 중의 하나가 바로 '少林寺五祖'였다. 지역사회에서 천지회의 급속한 확대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가경·도광연간 천지회의 結會事件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잣대를 제공해 주는데,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사례들을 보자.

첫 번째 사례는 林閏才의 天地會 結會事件이다. 林閏才는 廣東 翁源縣人으로 乾隆末葉 高要縣人 王氏를 義父를 삼았다. 의부인 왕씨는 당시 天地會人이었기 때문에 임윤재 역시 천지회에 가입하였다. 嘉慶 元年(1796) 임윤재는 廣西 西隆州 八達地方으로 이주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다. 가경 16년(1811) 2월 廣東 嘉應州人 鐘名揚은 점쟁이로 이곳 팔달지방으로 왔다가 임윤재를 만났는데, 이들은 천지회의 암호를 통해 피차 천지회인임을 알아차렸다. 이들은 翁源縣人으로 古嶂地方에 거주하고 있는 張效元을 끌어들여 천지회를 조직하기로 상의하였다. 마침내 10월 총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종명양은 장효원의 집 후원에 香案을 설치하여 五祖의 位牌를 봉양하였다. 이후 탁자에 두 개의 칼을 꽂아 놓고 땅바닥에는 火坑를 파 놓고서 입회자들로 하여금 화갱을 뛰어넘어 칼 밑으로 뚫고 지

20) 「天地會盟書誓詞」(乾隆52年2月), 『天地會』 1, 161쪽; 赫治淸, 「「天地會盟書誓詞」辨正」, 『淸史硏究通信』 1985-1, 22쪽.

21) 李鵬年, 「故宮明淸檔案部所存主要檔案述略」, 『淸代檔案史料叢編』 3, 1979, 208쪽.

나가게 한 다음에 오조의 위패 앞에 이르러 盟誓를 진행하고 表文을 하늘로 불태우며 모두 血酒를 마시게 하였다. 이와 같이 鑽刀·跳火·立書·焚表·歃血의 방식으로 천지회가 조직되자 임윤재의 명령을 받은 종명양은 입회자들에게 천지회의 口訣·手訣 등의 암호를 전수해 주었다. 가경 17년(1812) 2월 임윤재와 종명양은 廣西 師宗縣으로 가서 다시 총 49명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馬街의 뒷산에서 천지회를 재차 조직하였다. 이후 천지회의 조직자인 임윤재는 체포되어 결국 國法에 따라 斬立決에 처해졌지만, 종명양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였다.[22]

두 번째 사례는 張摒의 三合會 結會事件이다. 廣東 番禺縣人 張摒은 道光 10년(1830) 8월 樂昌縣에서 英德縣人 范孝友를 만났을 때 범효우가 三合會의 결회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먼저 紅紙에 '五祖之會'라는 네 글자를 써서 위패를 만든다. 五色의 紙旗를 만들고 그 위에 '彪·驫·彪·颮·颼'이라는 다섯 글자를 쓴다. 또한 米斗를 만들어 尺剪과 戥子를 꽂아 놓고, 香·燭·鷄·酒를 올려 놓는다. 결회의 우두머리는 위쪽에 서서 竹圈을 설치한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입화자들을 오조의 위패를 향해 꿇어앉히고, 죽권을 뚫고 지나가게 한다. 오조의 위패 앞에 이르면 결회자의 성명을 쓴 것을 불태우고, 맹서를 하며, 닭을 죽여 그 피를 술에 섞어 각각 한 모금씩 먹는다. '開口不離本'이라는 口號와 '出手不離三'이라는 手勢를 전수해 준다. 또한 범효우는 결회의 歌訣(=歌本)을 장병에게 보여주면서 오조에 대하여 "長房 蔡德忠은 福建에, 二房 方大洪은 廣東에, 三房 馬超興은 廣西에, 四房 李色開는 江西에, 五房 胡德地는 山東에 있으며, 後五房은 吳天成·洪太歲·李色悌·桃必達·林永昭다."라고 언급하면서, "紅旗가 휘날리니, 영웅들이 모두 모였네, 해외의 天子가 와서 明朝를 부흥시킬 것이네."와 같은 詩句들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장효우로부터 천지회의 歌訣을 얻은 張摒은 道光 10년(1830) 湖南 藍山縣으로 와서 기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도광 11년(1831) 1월 남산현에서 장병은 李金保 등 총 3명은 규합하여 천지회를 조직하였고, 2월 장병과 이금보는 다시 39명을 규합하여 천지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앞서 범효우가 전수해준 방법 그대로였다. 그러나 3월 남산현 生員 黃河의 신고로 인해 장병과 이금보 등은 모두 체포되어 국법에 따라 斬立決에 처해졌고, 특히 장병의 경우 戮屍하여 梟示되었다.[23]

위의 두 사례는 嘉慶·道光年間 天地會의 結會 사례 중에서도 過關과 歃血結盟의 의식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천지회의 결회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즉 五祖의 位牌를 향해 關門을 통과한 이후 결회자들이 오조의 위패 앞에 이르러 盟誓·焚表·歃血하는 일련의 순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림사오조가 천지회의 결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자 의식 최고의 주재자임과 동시에 숭배자로서 결회를 위해 설치된 제단의 위패로 봉양

22) 「雲貴總督伯麟等奏拿獲天地會首林閏才等情摺」(嘉慶17年10月29日), 『天地會』 7, 427-429쪽.
23) 「湖南巡撫吳榮光奏拿獲藍山縣三合會首張摒等人摺」(道光12年5月19日), 『天地會』 7, 506-509쪽.

되고 있었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林閏才의 天地會 結會事件에서 임윤재가 乾隆末葉에 이미 천지회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인데, 이러한 정황은 張摒의 三合會 結會事件을 조사·보고한 湖南巡撫 吳榮光(1773～1843)의 奏摺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영광은 도광 11년(1831) 閩浙總督 孫爾准(1770～1832)의 주접에 근거하여 "福建省은 건륭 40년(1775) 이후로 添弟會匪를 낱낱이 처리한 안건에서 花帖·會簿를 압수하였을 때 모두 五房 吳添成 등의 명칭이 있었는데, 그 중의 歌訣은 장병 등의 歌本과 그 語句가 대체로 相同합니다. 장병 등은 가본을 빌려왔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할 수 없으며, (가본은) 여러 곳을 두루 걸치면서 抄寫되어 왔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24]고 주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보기에 따라서 건륭 중말엽의 천지회에 이미 소림사오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보여줌과 동시에 특히 가경·도광연간에 이르러 이것이 더욱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남순무 오영광이 근거했던 민절총독 손이준의 원본 주접에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乾隆 40년(1775) 이후로 모든 添弟會의 명칭을 가진 저명한 會匪를 낱낱이 체포하여 처벌하였는데, 이들 匪徒는 雙刀會·仁義會·百子會 등의 會名으로 바꾸어 갖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니, 또 여러 차례 체포하여 처벌해 왔습니다. 신은 嘉慶 19년(1814) 汀州府로 부임해 온 이래로 張顯魯·態毛·僧海文 등을 체포하여 각 안건에서 會簿 등의 문건을 압수하였습니다. 조사해보니, 가경 15·17·21년(1810·1812·1816)에 회비 鍾家旭·謝佩成·朱士達·侯二八을 차례로 처리하여 각 안건에서 花帖·會簿·符紙·旗·布 등을 압수하였는데, 여기에는 吳天成 등 두목의 이름을 모두 열거한 것도 있고, 단지 吳天成·李色弟·林永昭 세 사람만을 열거한 것도 있었으며, 房과 省의 구분도 서로 달랐고, 川大車日·洪水橫流 …… 등의 어귀가 있었다. …… 또 조사해보니, 가경 22년(1817) 湖南省에서 貴州人 楊正才를 체포하여 逆書를 색출했는데, 그 안에 五房의 두목과 五色으로 구분하는 旗號가 있었고, 역시 吳天成이라는 성명이 있었습니다.[25]

閩浙總督 孫爾准의 이러한 조사는 각 안건마다 소림사오조의 성명이나 五房의 지역적 배분의 순서가 다소 불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적어도 嘉慶年間에 이르러 天地會의 花帖·會簿·符紙·旗·布 등을 통해 少林寺五祖와 관련된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손이준은 오방의 두목, 즉 오조의 성명을 모두 열거하지 않으면서도 그 중에 유독 吳天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아마도

---

24) 「湖南巡撫吳榮光奏拿獲藍山縣三合會首張摒等人摺」(道光12年5月19日), 『天地會』 7, 510쪽.
25) 「閩浙總督孫爾准奏添弟會傳播情形摺」(道光11年6月19日), 『天地會』 6, 229쪽.

이것은 손이준이 가경 19년(1814) 福建 汀州府 知府로 부임해 오기 3～4년 전에 汀州府에서 발생한 鍾家旭・謝佩成의 천지회 사건에 대하여 福建巡撫 張師誠(1762～1830)과 閩浙總督 汪志伊(1743～1818)의 주접에서 소림사오조와 관련해서는 "五房 吳天成・李色弟 등의 姓名"[26]과 "五房大哥 吳天成 등의 名字"[27]와 같은 언급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소림사오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손이준가 위 인용문의 후반부에 언급한 이른바 '楊正才의 天地會 逆書事件'에서 볼 수 있다.

'楊正才의 天地會 逆書事件'은 湖廣總督 阮元의 奏摺에 의하면 嘉慶 22년(1817) 7월 貴州 湄潭縣人 楊正才가 黃奉潮의 천지회 逆謀事件를 고발하기 위해 그 증거로 이들의 逆書를 抄寫하여 소지한 채 京師로 가던 도중에 湖南 沅陵縣에서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완원은 주접에서 양정재가 "마땅히 즉시 운남성 지방관에게 고발을 해야지 어찌하여 시간을 허비해가며 그 먼 京師까지 가고자 했는가?"라고 하며 그의 공술에 큰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28] 이러한 완원의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다. 양정재를 인계받고 황봉조의 천지회에 가담한 자들을 체포하여 대질 심문을 진행한 결과를 종합한 雲貴總督 伯麟의 奏摺에는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경 21년(1816) 4월 양정재가 雲南 廣南府 土司地方에서 訓蒙의 일을 하고 있을 때 母貴・郭兆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원한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母貴・郭兆 등은 가경 16년(1811) 周大賓・黃奉潮 등을 회수로 하는 添弟會에 소속된 천지회인이었다. 결국 양정재가 생각해 낸 보복의 방법은 역서의 성격을 갖는 천지회의 회부를 구입하여 이들을 역모사건으로 엮어 官府에 고발하는 것이었다. 가경 21년 6월 양정재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동향인 傅添材의 구술을 통해 천지회 회부의 일부 내용을 획득하게 되었다. 당시 부첨재는 숙독한 회부의 일부분을 구술하면 양정재가 그것을 받아 적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설해서 안 된다는 맹서까지 하였다. 이후 10월 고향인 미담현으로 돌아온 양정재는 집을 저당한 돈으로 경비를 마련하고, 11월 黃奉潮의 천지회를 逆謀事件으로 조작한 탄원서와 천지회의 역서를 가지고 경사로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湖南 沅陵縣에 이르러 적발되었던 것이다.[29] 이 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天地가 根本을 일으켜 세우니, 朱家의 天下를 일으키자.
> (중략)
> 始祖의 姓名은 洪信이고 字는 啓勝이며, 별명의 성명은 洪順天인데, 福建 汀州府 連城

---

26) 「福建巡撫張師誠奏審擬鍾家旭等摺」(嘉慶15年8月8日批), 『天地會』 6, 172쪽.
27) 「閩浙總督汪志伊奏續獲汀州天地會首謝佩成等人摺」(嘉慶16年2月7日批), 『天地會』 6, 175쪽.
28) 「湖廣總督阮元奏盤獲赴京呈控黃奉潮之滇民楊正才摺」(嘉慶22年8月27日批), 『天地會』 7, 459-460쪽.
29) 「雲貴總督伯麟等奏審擬楊正才所控黃奉潮結會摺」(嘉慶22年12月5日批), 『天地會』 7, 462-464쪽; 「雲貴總督伯麟等奏楊正才誣控多人入會及黃奉潮等結會摺」(嘉慶23年4月6日批), 『天地會』 7, 464-468쪽.

縣人이다. 長房祖는 성명은 蔡興이고 자는 忠德이며 福建 漳州府 漳浦縣人인데, 福建・江西 두 省에서 起義하였다. 二房祖는 성명이 方榮이고 자는 大洪이며 복건 延平府 南平縣인데, 廣東・廣西 두 성에서 기의하였다. 三房祖는 성명이 吳全이고 자는 天成이며 복건 福州府 古田縣人인데, 陝西・甘肅 두 성에서 기의하였다. 四房祖는 성명이 吳旺이고 자는 德帝이며 복건 정주부 연성현인데, 湖南・湖北 두 성에서 기의하였다. 五房祖는 성명이 李相이고 자는 色開이며 복건 장주부 都陽縣人인데, 雲南・貴州・四川 三省에서 기의하였다.

(중략)

무릇 제단을 세울 때에는 다섯 개의 聖牌를 설치하는데, 위쪽에 네 문을 찾아서 건다.

東門의 대련에는 '絶淸興明乾坤在, 翻天復地日月明'라 쓴다.

南門의 대련에는 '南天飄下木立斗世, 玉闕誰許八八之秋'라 쓴다.

中營의 대련에는 '五祖傳下詩一首, 存記當初拜洪旗'라 쓴다.

西門의 대련에는 '不用妙法除淸主, 天地會中扶宋王'라 쓴다.

北門의 대련에는 (이하 잔결임)[30]

위의 역서가 보여주듯이 傅添材가 구술로 楊正才에 전해준 내용은 소림사오조의 구체적인 성명과 오방의 배분에 관한 것으로 천지회를 결회하거나 입회를 진행할 때의 사용 방법이었다. 이 역서에 蔡興(=蔡德忠)・方榮(=方大洪)・吳全(=吳天成)・吳旺(=吳德帝)・李相(=李色開)의 貫籍이 모두 복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道光帝는 閩浙總督 董教增에게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上諭가 내려졌다. 민절총독 동교증은 멀게는 乾隆 33년의 盧茂의 천지회 사건으로부터 가까이는 가경 15・16년(1810・1811) 鍾家旭・謝佩成의 천지회 사건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결과 이러한 인물이 진행한 역모 사건은 현재 자신의 관할 지역에 없다고 주접하였다. '楊正才의 天地會 逆書事件'은 이처럼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가경연간 이후로 소림사오조가 역서에서 "朱家의 天下"와 "絶淸興明"라는 표현처럼 천지회의 정치이념인 반청복명을 상징하는 숭배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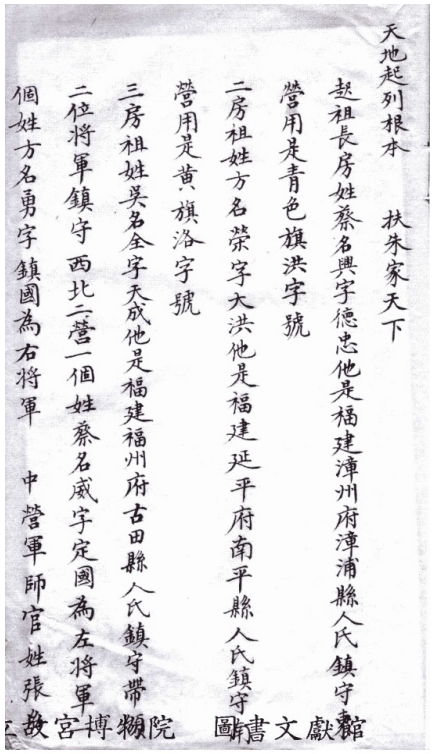
天地起列根本　扶朱家天下
趙祖長房姓蔡名興字德忠他是福建漳州府漳浦縣人氏鎮守
營用是青色旗洪字號
二房祖姓方名榮字大洪他是福建延平府南平縣人氏鎮守
營用是黃旗洛字號
三房祖姓吳名全字天成他是福建福州府古田縣人氏鎮守帶
二位將軍鎮守西北二營一個姓蔡名威字定國為左將軍
個姓方名勇字鎮國為右將軍　中營軍師官姓張
院　博物宮故　館　文獻　書圖

<자료 3>「沅陵縣盤獲之逆書」의 서두
<출처> 臺北國立故宮博物院 所藏, 軍機處檔摺件 編號 052755.

30) 臺北國立故宮博物院 所藏,「沅陵縣盤獲之逆書」(嘉慶22年8月1日), 軍機處檔摺件 編號 052755.

사실 '楊正才의 天地會 逆書事件'을 언급한 앞서의 閩浙總督 孫爾准의 주접은 道光 11년(1831) 湖廣道 監察御史 馮贊勛이 남방의 각 성에서 만연되고 있는 천지회의 활동 상황에 대한 주접을 올리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道光帝가 남방 각성의 督撫들에게 각 지역의 상황을 보고하라는 상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풍찬훈은 "廣東의 瀕海는 海洋으로 통하고 종래 匪徒들이 拜盟結黨하였는데, 처음에는 鄕曲을 剽掠하는 것에 그쳤지만", "匪徒들 중에서 다년간 結拜하여 5~6개의 省에 걸쳐서 결탁하고 있는 三合會는 그 사람 수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奏摺을 올렸던 것이다.

> 三合會는 五房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福建을 長房, 廣東을 二房, 雲南을 三房, 湖廣을 四房, 浙江을 五房으로 삼는다. 매 房에는 각기 頭目이 있고 五色旗를 旗幟로 삼으며, 입회자는 口號를 전수받고 각기 圖 한 장씩을 갖게 된다. 비록 평소에 면식하지 않더라도 일단 口號가 서로 일치하면 불러서 兄弟가 되고, 錢財를 통용하고 患難을 함께 하며 義氣를 가칭하고 있기 때문에 愚民들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吏役兵丁도 그 절반이 羽翼이 되었다. 일부 선량한 집안의 사람들은 입회하지 않으면 스스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脅從者 또한 적지 않다. 마치 不知不識間에 싹이 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굴이 없는 듯해 보여도 都邑·市廛에 모두 산포되어 있고, 몰려드는 무리가 없는 듯해 보여도 兵民胥役이 모두 心腹의 사람들이니, 만일 이들이 蠢動하여 한 번의 외침에 100명씩 호응하고 六省의 義氣가 서로 연결된다면, 그 후환은 결코 엷지 않을 것이다.[31]

위의 주접 내용의 서두에서는 천지회가 다섯 개의 省마다 각각의 지부인 房을 설치하고 頭目을 두어 이를 五色旗로 이를 구분하였다는 이른바 '天地會의 五房制'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천지회는 長房을 정점으로 하여 5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조직을 운용하였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오방제의 기술은 馮贊勛이 마치 앞서 楊正才의 逆書에 보이는 내용을 실제의 현상으로 오해한 것이거나 혹은 도광연간에 이르러 각 省에서 만연되고 있는 천지회의 상황을 천지회의 오방제를 통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嘉慶·道光年間 天地會의 結會事件에서 보이는 少林寺五祖의 등장은 이 시기 천지회가 소림사오조를 구심적으로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이념을 결사 내부에서 더욱 강화시켰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천지회가 결사의 기원전설을 精緻化하고 결사의 각종 의식을 定型化했던 과정과 그 괘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단락을 바꾸어 논의해 보자.

---

31) 「湖廣道監察御史馮贊勛奏請緝拿廣東等省會黨摺」(道光11年5月4日), 『天地會』 6, 518-519쪽.

## Ⅱ. 少林寺五祖의 崇拜

### 1. 傳說

천지회의 기원전설은 천지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건륭 26년(1761)이라는 시점에서 약 반세기가 지난 嘉慶 16년(1811) 廣西 東蘭州 知州 董儲의 보고에 의해 武緣縣에서 姚大羔를 大哥로 하는 천지회 사건이 발각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천지회의 내부 문건인 會簿(=姚大羔本)가 발견되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이 회부의 첫 머리에는 천지회의 창립역사가 이른바 '기원전설'의 형태로 실려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청나라 康熙年間 西魯라는 이민족이 중국을 침략하자 少林寺의 승려들이 출정하여 이들을 격퇴한다. 그러나 康熙帝와 그의 奸臣에게 모함을 받은 소림사는 불에 태워지고 최후로 다섯 명의 소림사 승려만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들은 청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反淸復明'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香爐를 발견한다. 이후 다섯 명의 소림사 승려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崇禎帝의 후손인 小主와 승려 萬雲龍 등과 회합하여 반청복명의 정치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天地會를 결성한다. 얼마 후 이들은 淸軍과의 전투에서 만운룡이 사망하면서 패배하고, 급기야 소주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섯 명의 소림사 승려는 결국 훗날을 기약하며 다섯 지역으로 흩어진다.[32]

<자료 4> 姚大羔本 起源傳說의 서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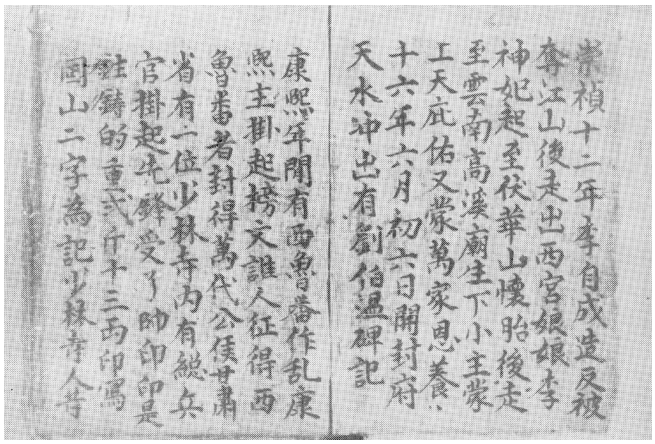

<출처>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所藏(『天地會』 1, 1쪽에 수록)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허구의 내용으로 가득 찬 이러한 천지회의 창립역사는 적어도 19세기 전반기 천지회가 각 지역사회에서 성장을 거듭해 가는 상황과 발맞추어 일정한 각색을 통한 변천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원래의 기원전설에 등장하는 皇帝·少林寺五僧·小主·奸臣·萬雲龍 등의 기본 등장인물 이외에도 鄭君達·少林寺의 背信者·船夫·5명의 말 장사꾼·陳近南·五虎將軍·蘇洪光(=天佑洪)과 같은 새로운 인물이 대거 추가됨

32) 「姚大羔本」, 『天地會』 1, 3-30쪽.

으로써 기원전설의 서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야기의 박진감과 생동감이 가미되었으니, 이는 곧 반청복명이라는 결사의 정치이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해 내도록 각색되었던 것이다.[33] 천지회 기원전설의 판본 중에서, 清末民初 영국인 볼 부인(Mrs. Ball)이 廣州와 홍콩(香港) 등에서 구매・수집하여 이후 대영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중국학자 蕭一山이 초록하여 1935년 출판한 『近代秘密結社史料』(=蕭一山本)에 실려 있는 기원전설[34]이나, 캐나다 밴쿠버(咸水埠)의 천지회 조직인 洪順堂이 光緒丙午 32년(1906)에 光緒壬辰 18년(1892)의 판본을 토대로 重修한 『蘚黫　党錦囊傳』(=錦囊本)이란 회부에 실려 있는 기원전설[35]은 최종적으로 '각색된 기원전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36]

<자료 5> 長房 蔡德忠

(蕭一山本)

<자료 6> 長房 蔡德忠

(錦囊本)

19

세기 전반기에 진행된 천지회의 '각색된 기원전설'에 출현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천지회의 창립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少林寺五僧・小主・萬雲龍・鄭君達・5명의 말 장사꾼・陳近南・五虎將軍・蘇洪光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이른바 '천지회의 창립

33) 이평수, 「清代 天地會 起源傳說의 脚色과 變遷—인물과 이야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제41집, 2014년, 참조.

34) 蕭一山 編, 『近代秘密結社史料』 卷2 「西魯序」,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1(1935년 影印本), 3-7쪽.

35) 洪順堂, 『蘚黫　党錦囊傳』, 加拿大 咸水埠, 光緒 壬辰年(1892)刊本, 光緒 丙午年(1906) 重修(洪順堂 編, 『秘密社會叢刊』 第四輯 『蘚黫　党錦囊傳』, 臺北: 古亭書屋, 1975에 수록, 91-134쪽)

36) 청대 천지회 기원전설의 판본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평수, 「清代 天地會 起源傳說 板本現況과 特徵—결사 창립의 시간・장소의 비교를 겸론하여—」, 『中國史研究』 제89집, 2014년 참조.

자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설사 ‘천지회의 창립자들’이 실제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비실존적 가공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천지회 내부에서 구성원들로부터 마치 실제의 역사에 존재하여 천지회의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로서 점차 찬양과 숭배의 대상으로 승화되어 갔다는 점이다. 천지회의 會簿가 증첨되는 과정에서 繡像圖의 출현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대고본과 같은 초기의 會簿에서는 단순한 언어의 묘사에 그치고 있었던 ‘천지회의 창립자들’이 蕭一山本과 錦囊本과 같은 후기의 회부에서 언어의 묘사뿐만 아니라 수상도의 형태로까지 출현하였던 것이다.[37] 여기에서 수상도란 명청시대 이른바 章回小說의 권두 혹은 매 장에 인물 등의 삽화를 가리키는 말이니, ‘천지회의 창립자들’의 수상도는 마치 水滸傳이라는 소설이 출현하고 이후 그것이 대중적인 큰 인기를 얻자 수호전을 상징하는 宋江・吳用 등 40명 인물을 수록한 이른바 ‘水滸葉子’라는 수상도[38]가 출현한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특히 ‘천지회의 창립자들’ 중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少林寺五僧이 천지회의 창립역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의 상징성을 부여받은 인물로 정립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즉 천지회의 기원전설이 각색되는 과정에서 소림사오승은 단순히 소림사의 소실로부터 탈출하여 최후까지 살아남았던 다섯 명의 소림사 승려가 아닌 결사의 다섯 개창자란 의미인 ‘五祖’라는 명칭으로 승격되어 숭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림사오조의 구체적인 성명도 蔡德忠・方大洪・馬超興・胡德帝・李色開로 기록하면서 고정화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훗날의 재건을 위해 흩어진 다섯 개의 지역인 五房도 각각의 지역에 따라 長房・二房・三房・四房・五房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기원전설이 각색되는 과정에서 5명의 말 장사꾼이 새롭게 추가되어 이야기가 증첨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소림사오승을 가리키는 오조와 오방는 다시 ‘前五祖’와 ‘前五房’의 명칭으로 분화되었고, 5명의 말 장사꾼도 ‘後五祖’와 ‘後五房’으로 승격되었다. 아래의 <표 1>처럼 姚大羔本 등과 같이 각색되기 이전인 제1형태의 기원전설에서는 단순히 ‘五僧’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守先閣本 등 각색이 진행되는 과정인 제2형태의 기원전설이나 蕭一山本(A)처럼 제3형태의 ‘각색된 기원전설’에서는 소림사오승을 五祖・五房・前五祖 등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

37) 『近代秘密結社史料』 卷1 「圖像」, 1-48쪽의 관련 인물 그림; 「繡像圖」, 『蘚黯 岑錦囊傳』, 9-42쪽의 관련 인물그림.

38) 汶振鑫, 「從『水滸葉子』看陳洪綬人物畵藝術的淵源」, 『美與時代』(中旬), 2001年 第8期; 崔寒石, 「陳洪綬的『水滸葉子』與尙意情神」, 『飛天』 2011年 第10期 참조.

<표 1> 기원전설 각 판본에 보이는 少林寺五僧・前五祖・前五房

| 구분 | 기원전설 판본 | 前五祖와 前五房 | | | | |
|---|---|---|---|---|---|---|
| | | 長房 | 二房 | 三房 | 四房 | 五房 |
| 제1형태 | 요대고본 | 五僧 | | | | |
| | 전림본 | 五僧 | | | | |
| | 소일산본(B) | 五僧 | | | | |
| 제2형태 | 수선각본 | 五僧, 五祖 | | | | |
| | 귀현본 | 五僧, 五祖 | | | | |
| | 슈레겔본 | 五僧, 五房 | | | | |
| | | 蔡德忠 | 方大洪 | 馬超興 | 胡德帝 | 李色開 |
| | | 福建 | 廣東 | 雲南 | 湖南 | 浙江 |
| 제3형태 | 소일산본(A) | 五僧, 五房 | | | | |
| | | 蔡德忠 | 方大洪 | 馬超興 | 胡德帝 | 李色開 |
| | | 福建 | 廣東 | 雲南・廣西 | 湖廣 | 浙江 |
| | 금낭본 | 五僧, 五祖, 前五祖 | | | | |
| | | 蔡德忠* | 方大洪* | 馬超興* | 胡德帝* | 李色開* |
| | | 福建 | 廣東・廣西 | 雲南・四川 | 湖廣 | 浙江・河南 |

<참고내용> 금낭본 기원전설의 전오조의 성명(*부분)은 기원전설이 시작되기 전의 앞부분에 수록된 그림과 '천지회 계보'의 기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표기해 둔 것이다. 이 표는 이평수, 「淸代 天地會 起源傳說의 脚色과 變遷—인물과 이야기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인용함.

여기에서 少林寺五僧이 천지회의 창립역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의 상징성을 부여받은 인물로 정착해 갔던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첫째로 기원전설에서 천지회의 창립역사에 대한 서사 구조가 기본적으로 소림사 승려의 '충성→배신→유랑→보복'이라는 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림사 승려 중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소림사오승은 천지회를 개창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소림사오승은 청군의 추격을 피해 '유랑'하는 과정에서 上天으로부터 反淸復明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香爐를 처음으로 발견하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소림사오승은 천지회의 창립 종지인 반청복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셋째로 소림사오승 등 '천지회의 창립자들'이 '보복'의 과정에서 淸軍에게 패배한 이후 결국 훗날의 재건을 기약하며 다섯 지역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소림사오승은 다섯 지역의 각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각색된 기원전설의 서사 구조에서 소림사오조는 天意 혹은 天命을 부여받은 천지회의 開倉者이자 결사의 반청복명이라는 종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나아가 와해된 천지회를 훗날 재건시켜 반청복명의 실현을 상징하는 再建者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천지회의 소림사오승은 결사의 창립・종지・재건을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소림사오조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전환의 결과 소림사오조가 그것의 이름이 부여하는 상징에 걸맞게 결사의 구성원들에 의해 숭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천지회가 청조에서 異端을 대표하는 비밀결사였다면, 소림사오조는 천

지회라는 결사를 상징하는 이단자들이었으니, 천지회의 창립 역사는 그야말로 이단의 기원전설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 2. 儀式

천지회의 기원전설이 출현하고 이후 그것이 각색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少林寺五僧은 이른바 '少林寺五祖'로서 구성원들에게 결사의 창립·종지·재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점차 숭배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은 천지회가 진행한 각종 의식 활동의 발전 과정, 특히 입회의식의 定型化 과정과도 그 괘를 같이하며 진행되고 있었다.

천지회의 입회의식은 기본적으로 속세에서 낙원으로의 진입이라는 過關儀式과 의형제의 관계를 정립하는 歃血結盟의 의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결사를 최조 조직할 때 보이는 結會儀式의 연장선상에서 그 확대된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회의식을 통해 천지회가 일단 조직되면 조직의 확대를 위해 광범위한 회원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입회원을 진정한 천지회의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장치가 바로 입회의식이었던 것이다.

천지회의 '정형화된 입회의식'[39]은 '무대'(의식장소), '배우'(신입회원)와 '관객'(기존회원), '희곡'(기원전설)이라는 연극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이른바 '연극의 형태'(혹은 '연극적 공연')로 진행되었는데, '準備過程→關門通過→兄弟結拜→神秘旅行→宴會晩餐'이라는 일련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림사오조는 결사의 창립과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다.[40]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결사의 기원전설, 특히 '각색된 기원전설'이 정형화된 입회의식의 희곡이 되기 때문에 입회의식의 과정은 마치 기원전설에서 淸軍의 습격을 받아 이리저리 유랑하는 少林寺五僧이 過關儀式과 같이 고난과

---

39) 福建과 廣東을 중심으로 천지회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여주는 乾隆 中末葉에서 嘉慶 初中葉의 사례들은 대부분 천지회가 최조 조직을 한 이후에 조직이 확대되어 가는 도중에 적발된 안건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서는 결회의식과 입회의식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이평수,「淸 嘉慶年間 天地會의 會員募集과 結社의 擴大·擴散—廣東地域 天地會의 事例 檢討를 中心으로—」,『史林』 제21호, 2004년, 126-150쪽). 따라서 시기적으로 볼 때 嘉慶末葉 이후로 천지회가 비로소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후의 상황에서만 비로소 결사의 '정형화된 입회의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남아 있는 檔案이나 地方志의 자료에서는 정형화된 입회의식의 일부분을 엿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전모를 밝혀내는데 큰 한계가 있다. 청대 천지회의 정형화된 입회의식은 1870년대 싱가포르의 義興會라는 천지회에서 진행한 것의 복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40) 이평수,「天地會의 入會儀式 —演劇과의 關聯性을 中心으로—」,『明淸史硏究』 21, 2004년, 189-218쪽; 이평수,「天地會 入會儀式의 節次와 暗號化 —19世紀 末葉 싱가포르 天地會의 事例 檢討를 中心으로—」,『明淸史硏究』23, 2005, 311-345쪽.

역경을 극복한 이후에 천지회의 창립을 상징하는 盟約의 땅인 紅花亭에 도달하는 구조[41]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입회의식의 백미라 할 수 있는 紅花亭에서의 結義兄弟에서는 '盟誓'·'歃血'·'斬奸'·'焚表'·'八拜' 등의 세부적인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홍화정에 마련된 제단인 이른바 木斗에는 五祖의 位牌가 안치되고 그 주위에는 오조를 상징하는 五房의 깃발인 五色旗가 꽂이며, 그 앞의 제단에는 오조를 기념하는 五茶·五酒·五牲 등의 祭品과 오조의 이야기와 관련된 紅燈·白錠爐·算盤·寶劍 등의 물건들이 놓여진다.[42]

<자료 7> 입회의식의 상상도

<출처> J. S. M. Ward & W. G. Stirling, *The Hung Society or The Society of Heaven and Earth* Vol. Ⅰ, 권두.

사실상 천지회의 '정형화된 입회의식'은 그 자체가 '각색된 기원전설'에 보이는 少林寺五僧의 결사 창립의 이야기를 이들의 위패와 상징적인 물건으로 가득 찬 장엄한 의식 속으로 체현해 놓았던 것이다. 19세기말 홍콩에서 '각색된 기원전설'을 접한 스탠튼(Stanton)은 "천지회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계승하고 신봉하여 시대에서 시대로 流傳되는 이 결사의 기원에 관한 전설적이고 전통적인 이야기를 숙지해야만 한다."[43]고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입회의식의 전체적인 과정과 그것의 상징성은 소림사오조를 기념하고 숭배하는 것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천지회의 기원전설이 각색되는 과정에서 소림사오조 등 '천지회의 창립자들'이 繡像圖처럼 숭배된 것처럼, 정형화된 입회의식의 경우도 구성원들에 의해 한 폭의 그림으로 재현해 놓기도 했는데, 스털링이 수집한 천지회 자료(자료 7)에서 이러한 그림을 볼 수 있다.

---

41) Barend J. ter Haar, *Ritual and Mythology of the Chinese Triads: Creating an Identity*, pp.108-109; 山田賢, 『中國の秘密結社』, 東京: 講談社, 1998, 70-72쪽.

42) W. A. Pickering, "Chinese secret societies: Part Ⅱ", *Journal of the Straits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 1879, pp.7-9; 입회의식에 사용된 각 소품에 대한 의미는 William Stanton, *The Triad Society or Heaven and Earth Association*, Hongkong: Kelly & Walsh, 1900, pp.40-42; W. P. Morgan, *Triad Societies in Hong Kong*, Hong Kong: The Government Printer, 1960, pp.105-160 참조.

43) William Stanton, *The Triad Society or Heaven and Earth Association*, p.29.

이 뿐만 아니라 천지회의 입회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각종 세부적인 의식에서도 소림사오조를 숭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증거 중의 하나가 바로 입회의식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천지회의 花帖·歌本·表文·祭文·祝文의 내용에서 소림사오조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이러한 문건 속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청대 천지회 花帖·歌本·表文·祭文·祝文에서 보이는 少林寺五祖

| 하한연대 | 형태 | 명칭 | 소림사오조의 내용 | 근거 |
|---|---|---|---|---|
| 嘉慶11년 (1806) | 花帖 | 紅布花帖 | 五房大哥: 吳天成, 李色弟, 方大洪, 張元通, 林永招<br>後五房大哥 | ① |
| 嘉慶13년 (1808) | 歌本 | 桃園歌 | 長房祖 蔡德忠, 二房祖 方大洪, 三房祖 吳天成, 四房祖 胡德帝, 五房祖 李色開 | ② |
| 道光8년 (1828) | 表文 | 爺娘忠義表章 | 五祖 | ③ |
| 불명 | 祭文 | 三朝祭文 | 五祖 | ④ |
| 1863년 | 祝文 | 請神表文 | 五祖: 蔡德忠, 方大洪, 馬超興, 胡德帝, 李色開 | ⑤ |
| | | 太平入會式* | 五祖 | ⑥ |
| | 祝文 | 請神祝文 | 五祖聖賢: 長房 蔡德忠, 二房 方大洪, 三房 馬超興, 四房 胡得帝, 五房 李色開 | ⑦ |
| 1892년 | 祝文 | 請神咒 | 長房 蔡德忠, 二房 方大洪, 三房 馬超興, 四房 胡德帝, 五房 李式開 | ⑧ |
| 1895년 | 祝文 (prayer) | | 五祖(the Five Patriarchs) | ⑨ |
| 1890년대 | 祝文 (prayer) | | 五祖(the five founders) | ⑩ |

<참고내용> 太平入會式이란 명칭은 大英博物館에서 붙여 놓은 이름이지만, 蕭一山은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원전설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로 '洪門小引'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원전설의 성격보다는 입회의식에 사용되었던 내용으로 보인다. 위 표의 근거자료는 ①『天地會』6, 304쪽; ②『天地會』7, 214쪽; ③『廣西會黨資料彙編』, 493쪽; ④『廣西會黨資料彙編』, 493-494쪽; ⑤ Gustave Schlegel, *Tian Ti Hui: The Hung League or Heaven-Earth-League: a Secret Society with the Chinese in China and India*, Vatavia: Lange & Co, 1866, pp.128-134; ⑥『近代秘密結社史料』 卷, 1쪽, ⑦『近代秘密結社史料』 卷3, 13-14쪽; ⑧『蠡黯 岑錦囊傳』, 148-153쪽, ⑨ William Stanton, *The Triad Society or Heaven and Earth Association*, Hongkong: Kelly & Walsh, 1900, p.60; ⑩ J. S. M. Ward & W. G. Stirling, *The Hung Society or The Society of Heaven and Earth* Vol. Ⅰ, London: The Baskerville Press, 1925, p.63.

花帖·歌本·表文·祭文·祝文 등 그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의 용도는 천지회가 진행한 입회의식 등의 각종 의식에서 사용된 제사용 축문이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천지회의 의식 활동이 기존 민간사회에서 성행한 제례나 의식, 그리고 종교적 활동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신앙을 구성하는 각종 도교와 불교의 신들이 이러한 축문에 대거 등장한다. 예컨대 정형화된 입회의식에 사용된 蕭一山本의 「請神祝文」을 보면, "皇天의 玉皇上帝, 日月, 三光, 五星, 七星, 七政, 五斗, 神君, 天官賜福, 太上老君, 四

方如來, 釋迦佛祖, 阿彌陀佛, 大慈大悲觀世音菩薩, 十八羅漢, 四大天王, 四大金剛, 北方玄天上帝, 雲夢山鬼谷先師, 關聖帝君, 無漏康公, 五顯大帝, 無後元君, 惠福天人, 左天蓬, 右天蓬, 守天門, 三十六天罡, 七十二地煞, 週天三百六十五度星君, 風伯雨師, 雷公雷母, 行雲使者, 値日功曹, 五海龍王[五], 値年太歲와 허공을 왕래하는 모든 神·佛님"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온갖 신들을 일제히 제단 앞으로 불러내기를 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의 등장은 천지회가 이들 자체를 숭배하기보다는 "長房 蔡德忠, 二房 方大洪, 三房 馬超興, 四房 胡得帝, 五房 李色開" 등 少林寺五祖를 비롯한 大哥 萬雲龍과 軍師 陳近南 등 이른바 '천지회의 창립자들'의 신성성을 담보하고 보증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소림사 오조 등 천지회의 창립자들이 축문에 등장시킨 목적은 바로 이 축문의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兄弟들과 合同하여 개개인이 忠心意氣로 모두 天地會에 참여하러 왔으니, 피를 내어 盟誓하여 모두 모여 義를 맺은 兄弟들은 萬年동안 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바뀌지 않을 것"과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모두 明主를 扶助하여 江山을 정복·회복하고 正位를 계승하자"는 反淸復明에 있었던 것이다.[44]

<자료 8> 三十六誓의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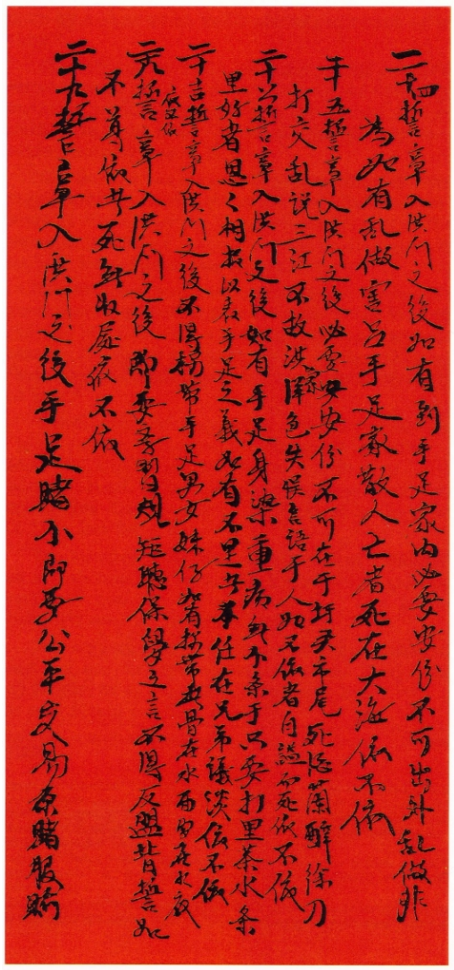

<출처> J. S. M. Ward & W. G. Stirling, *The Hung Society or The Society of Heaven and Earth* Vol. I, pp.66-67 사이.

천지회의 입회의식이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소림사오조를 숭배하였다는 또 다른 증거는 위와 같이 축문을 읽고 태우는 의식의 전후로 진행된 이른바 盟誓의 낭독과 八拜의 의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선 盟誓의 경우 道光 22년(1842) 廣州府에서 활동한 三合會의 入會儀式 정황을 묘사한 『香山縣志』에서 입회자는 "알몸으로 머리칼을 풀어헤치며, 꿇어 엎드려 木斗에 절하고, 三十六咒를 낭독한다."[45]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십육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사의 會簿나 수집된 천지회 자료에 三十六誓의 형태로 실려 있다. 蕭一山本에 실려 있는 삼십육서의 序文에 의하면, 이른바 천지회의 삼십육서란 異姓인 자들이 천지회에 가입하게 되면 桃園結義를 모방하여 洪이라는 同姓을 가진 의형제로 새롭게

44) 『近代秘密結社史料』 卷3 「請神祝文」, 13-14쪽.
45) (光緖)『香山縣志』 卷22 「紀事」, 49쪽.

태어나 모두 洪門의 형제자매가 되는데,[46] 바로 홍문의 형제자매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36개로 규정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형제의 결합원리인 도원결의가 상징하는 忠·義의 관념을 근간으로 전통적인 유교질서의 범위 내에서 五倫과 같은 원칙적인 생활강령을 천지회의 구성원들에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삼십육서도 소림사오조가 관여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청대 천지회의 삼십육서의 현황에 보이는 소림사오조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2> 淸代 天地會의 三十六誓와 少林寺五祖

| 회부 / 자료 | 명칭 | 관련조항 | 근거자료 |
|---|---|---|---|
| 슈레겔본 | 洪家三十六誓 | 第4, 12, 18, 22誓 | ① |
| 蕭一山本 | 三十六書(有序) | 第35誓 | ② |
| | 三十六書(有詩) | 第29, 34, 35誓 | ③ |
| | 洪門三十六誓(有罰規) | 第7誓 | ④ |
| 스털링본 | the Thirty Six Oaths | 第33誓 | ⑤ |
| 스탠튼본 | the thirty-six oaths | 第3, 9, 12, 21, 23, 31誓 | ⑥ |
| | 五祖遺下三十六誓<br>(The Five Patriarchs bequeathed the thirty-six oaths) | 第12, 36誓 | ⑦ |

<참고내용> 蕭一山本에서 「三十六書(有序)」의 경우 19誓에서 23誓까지 殘缺이다. 근거자료는 ① Gustave Schlegel, *Tian Ti Hui: The Hung League or Heaven-Earth-League: a Secret Society with the Chinese in China and India*, pp.135-144; ②『近代秘密結社史料』卷3, 1-4쪽; ③『近代秘密結社史料』卷3, 4-8쪽; ④『近代秘密結社史料』卷3, 8-13쪽; ⑤ J. S. M. Ward & W. G. Stirling, *The Hung Society or The Society of Heaven and Earth* Vol. Ⅰ, pp.64-70; ⑥ William Stanton, *The Triad Society or Heaven and Earth Association*, pp.61-65; ⑦ William Stanton, *The Triad Society or Heaven and Earth Association*, pp.118-124.

위의 표에 보이는 각각의 三十六誓에서는 少林寺五祖와 관련된 규정을 적어도 1개 이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소림사오조가 三十六誓를 제창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蕭一山本 중에서 「三十六誓(有序)」에는 "五祖規條律例"의 표현이 있고, 「三十六誓(有詩)」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詩句를 부가하여 소림사오조가 이러한 삼십육서를 遺傳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洪門三十六誓(有罰規)」에서도 第七誓에 "五祖法律"의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第三十六誓에 "五祖가 처음에 기의하였을 때 이러한 三十六誓를 律法으로 삼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탠튼본의 삼십육서 역시 그 명칭 자체가 "오조가 삽십육서를 전해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둘째는 소림사오조는 이러한 삼십육서를 감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체벌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三十六誓(有詩)」의 第三十四誓에는 "洪棍은 오조가 遺傳한 보물이니" 이것을 가지고 홍문의 "범죄자는 五祖臺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소림사오조는 결사 내부에서 봉양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三十六誓(有序)」의 第三十五誓에는 매년 정월 15일, 7월 25일, 9월 7일에 천

46)『近代秘密結社史料』卷3「三十六書(有序)」, 1-2쪽.

지회의 조상들을 제사지내야 하는데, 이때마다 五祖를 供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三十六誓(有詩)」의 第二十九誓에서도 매년 7월 25일은 오조 형제들의 聖誕日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슈레겔본의 삼심육서 第四誓에서도 "五祖는 원래 승려들이었고, 우리들은 그들을 (결사의) 창립자로 숭배해야만 한다. 우리들 역시 이들의 제자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던 것이다.[47] 이처럼 삼십육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림사오조는 그것의 제창자나 감시자의 모습이었으니, 결국 결사 내에서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八拜 의식의 경우 천지회의 정형화된 입회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슈레겔본에서는 祝文의 의식과 三十六誓의 의식 사이에 팔배의 의식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 | |
|---|---|
| 첫 번째 절은 父인 天에게 한다. | 一拜天爲父 |
| 두 번째 절은 母인 地에게 한다. | 二拜地爲母 |
| 세 번째 절은 兄인 日에게 한다. | 三拜日爲兄 |
| 네 번째 절은 嫂인 月에게 한다. | 四拜月爲嫂 |
| 다섯 번째 절은 五聖賢에게 한다. | 五拜五聖賢 |
| 여섯 번째 절은 萬雲龍에게 한다. | 六拜萬雲龍 |
| 일곱 번째 절은 衆兄弟에게 한다. | 七拜衆兄弟 |
| 여덟 번재 절은 萬年香에게 한다. | 八拜萬年香.[48] |

의식 활동에서 위와 같은 八拜는 그 절하는 대상의 순서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부모형제를 의미하는 천지일월을 제외하면 사실상 五聖賢으로 표현된 소림사오조가 제일 먼저 숭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슈레겔본에는 위의 팔배와 조금 상이한 팔배의 사례를 부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순서는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절은 尊長인 五祖에게 한다."고 되어 있다.[49] 貴縣本의 경우 「祭五祖」라는 詩句로 팔배의 내용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절은 五祖에게 한다."고 되어 있고, 여섯 번째의 萬雲龍 大哥과 일곱 번째의 陳近南 先生보다 앞서 나온다.[50] 蕭一山本의 경우도 「八拜之用」에서 위의 인용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역시 "다섯 번째 절은 五聖賢에게 한

47) Gustave Schlegel, *Tian Ti Hui: The Hung League or Heaven-Earth-League: a Secret Society with the Chinese in China and India*, p.136.

48) Gustave Schlegel, *Tian Ti Hui: The Hung League or Heaven-Earth-League: a Secret Society with the Chinese in China and India*, pp.134-135.

49) Gustave Schlegel, *Tian Ti Hui: The Hung League or Heaven-Earth-League: a Secret Society with the Chinese in China and India*, p.134.

50) 「貴縣修志局發現的天地會文件」, 羅爾綱 編著, 『天地會文獻錄』, 香港: 實用書局, 1942, 9쪽.

다.”고 규정하여 萬雲龍 등 기타 천지회의 창립자들보다 먼저 나온다.[51] 스털링본의 경우도 “eight salutations”라 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위 인용문에 보이는 슈레겔본의 것과 거의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다.[52]

### 3. 記號

앞서 전설과 의식에서 少林寺五祖가 구성원들에 의해 천지회의 창립·종지·재건을 상징하는 인물로 숭배되었다면, 천지회의 구성원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기호 체계를 통해서도 소림사오조가 숭배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천지회의 기호 체계가 기원전설의 형태로 된 결사의 창립역사와 결사가 진행한 각종 의식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천지회의 會簿에는 결사의 기호 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수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깃발·찻잔·碑亭 등으로 표현된 기호 체계이다.

먼저 깃발의 경우를 보자. 현존 最古의 천지회 會簿인 姚大羔本에는 「五色旗」라는 제목으로 “五色旗號分五省, 匕省兄弟結拜盟, 若是明王登寶殿, 一統江山就團圓”의 詩句를 전하고 있다.[53] 그리고 이보다 후대에 작성된 회부인 蕭一山本과 錦囊本에는 이러한 오색기와 관련된 시구 이외에도 결사의 다양한 깃발을 그림의 형태로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오색기의 깃발을 싣고 있다. 천지회의 회부가 증보되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흐름은 적어도 오색기가 결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깃발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天地會가 결사의 기호 체계에서 五色旗를 중요시한 이유는 숫자 五가 부여해주는 민간문화의 상징에 기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이 결사의 창립·종지·재건을 상징하는 少林寺五祖와 직결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乾隆 中末葉 천지회의 기호 체계에서는 “손을 들면 혹은 손을 내밀면 三을 떠나지 않는다.”(擧手不離三 혹은 出手不離三)처럼 숫자 三을 중요시했다면,[54] 嘉慶·道光年間 이후의 천지회는 이러한 요소를 지속하면서도 소림사오조를 숭배해가는 흐름 속에서 숫자 오와 소림사오조의 결합을 통해 결사의 새로운 기호 체계를 정립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오색기는 민간문화의 상징을 넘어서 각각의 깃발마다 소림사오조를 상징하는 彪·驌·馳·駟·駟이라는 글자로 상징화되어 재탄생되었으니, 이는 곧 천지회의 재건을 위한 소림사오조의 五房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

51) 『近代秘密結社史料』 卷2 「八拜之用」, 7쪽.

52) J. S. M. Ward & W. G. Stirling, *The Hung Society or The Society of Heaven and Earth* Vol. Ⅰ, p.64.

53) 「姚大羔本」, 『天地會』 1, 18쪽.

54) 이평수, 「淸 乾隆 中末葉 天地會의 出現과 實相」, 285-292쪽.

天地會가 결사 내부에서 위와 같은 기호 체계로서의 五色旗를 정립해간 상황은 당시 이것을 목격한 외부인들의 관찰과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道光 22년(1842) 廣東 廣州府의 三合會가 진행한 入會儀式을 전하고 있는『香山縣志』에서는 "매번 拜會할 때마다 亞媽가 紅巾을 머리에 두르고 白衣를 입으며 五色旗를 설치하는데, 旗 위에 彪·驫·虣·颮·飓의 글자를 쓰고 五方으로 배치한다. 어떤 方에서 온 자는 어떤 旗에 속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55] 또한 道光年間 광동에서 천지회의 만연 상황을 묘사한 湖廣道監察御史 馮贊勛은 "匪徒들 중에 다년간 의형제집단을 조직하여 五·六省에 걸쳐 결탁하고 있는 三合會는 그 사람 수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면서, "三合會는 五房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福建을 長房, 廣東을 二房, 雲南을 三房, 湖廣을 四房, 浙江을 五房으로 삼는다. 매 房에는 각기 頭目이 있고 五色旗를 旗幟로 삼으며, 입회자는 口號를 전수받고 각기 圖 한 장씩을 갖게 된다."고 주접했던 것이다.[56] 영국인 피커링(Pickering)이 1870년대 싱가포르에서 조직된 義興會라는 천지회의 입회의식을 참관하여 각각의 장면을 그린 자료에서는 제단에 위치한 木斗의 좌우로 꽂혀 있는 오색기를 볼 수 있고,[57] 1890년대 스탠튼(Stanton)이 수집한 천지회 자료의 삽화에서도 彪·驫·虣·颮·飓의 글자가 새겨진 오색기가 꽂혀 있다.[58]

<자료 9> 姚大羔本의 五祖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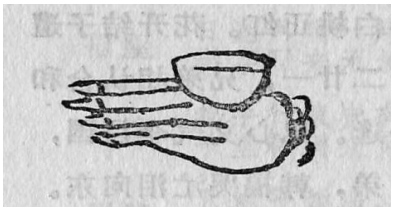

<출처>『天地會』1, 22쪽.

<자료 10> 蕭一山本의 五祖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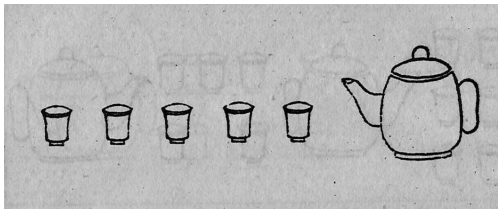

<출처>『近代秘密結社史料』卷2, 5쪽.

少林寺五祖가 숫자 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숭배되었던 정황은 결사의 會簿에 보이는 찻잔과 관련된 기호 체계에서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존 最古의 회부인 姚大羔本에서 찻잔을 잡는 방식과 찻잔의 숫자와 관련된 간단한 기호 체계가 이미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의 古本인 田林本에서도 찻잔의 숫자와 관련된 기호 체계가 일정하게 수립되어 있었다. 아마도 결사의 초기에는 크게 찻잔을 잡는 방식과 찻잔의 숫자와 관련된 기호 체계가 출현했는데,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蕭一山本과 스탠튼본에 보이는 것처럼

55) (光緖)『香山縣志』卷22「紀事」, 49쪽.
56)「湖廣道監察御史馮贊勛奏請緝拿廣東等省會黨摺」(道光11年5月4日),『天地會』6, 518-519쪽.
57) W. A. Pickering, "Chinese secret societies: PartⅡ", pp.6-7의 사이.
58) William Stanton, *The Triad Society or Heaven and Earth Association*, p.39.

찻잔의 숫자와 관련된 방향으로만 다소 복잡한 기호 체계로 발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姚大羔本에 보이는 찻잔의 기호 체계에서는 찻잔을 잡는 방식 중에서 손 등위에 올린 찻잔을 '五祖茶'(자료 9)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경우 이것을 마시면 안 되며, "一杯香茶本爲先, 二世明王拜祖先, 兄弟扛來把手接, 扛轉高溪奉祖先"라는 詩句를 읊조리고 탁자 위에 찻잔을 올려놓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59] 찻잔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姚大羔本과 田林本에서 보이지 않던 少林寺五祖가 蕭一山本에 이르러서 명확히 보이고 있다. 소일산본에는 찻잔의 숫자와 관련된 총 12가지의 기호 체계가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찻잔의 숫자와 관련해서 소림사오조가 등장한다. 일렬로 나란히 선 5개 찻잔의 명칭은 역시 '五祖茶'(자료 10)이다. 이와 관련한 詩句에서는 "五人結拜在高溪, 五杯茶來兄弟齊, 五人分別開各省, 五祖祈杯來發誓, 五行天下順明歸"라고 읊조리고 있다.[60] 이처럼 찻잔의 기호 체계에서 소림사오조와 관련된 내용이 '五祖茶'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한 기호 체계는 결사의 구성원들이 소림사오조를 숭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1> 忠香先 碑亭

<출처> 『近代秘密結社史料』 卷1 「碑亭第二」, 1쪽.

<자료 12> 洪花亭 碑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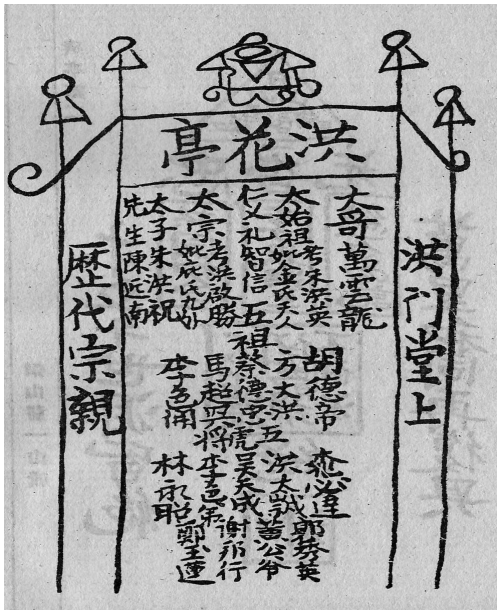


<출처> 『近代秘密結社史料』 卷1 「碑亭第二」, 1쪽.

59) 「姚大羔本」, 『天地會』 1, 22쪽.

60) 『近代秘密結社史料』 卷6 「茶陣第九」, 5쪽.

忠香先의 碑亭(자료 11)을 보자. 蕭一山은 충향선 비정이 長房 蔡德忠과 香主 先生과 관련되어 있으나 氵川口가 洪順堂의 암호이기 때문에 二房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61] 그러나 "木立斗世汨皆絶, 萬里和同再復興"이라는 反淸復明을 적시하고 있는 충향선의 경우 彪·驫·虣·颮·颶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림사오조를 숭배하는 碑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洪花亭 비정(자료 12)에서 洪花亭은 紅花停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비정의 좌우에 새겨진 "洪門堂上, 歷代宗廟"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것처럼 천지회의 전설과 의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이다. 그 내용을 보면, 仁·義·禮·智·信을 상징하는 蔡德忠·方大洪·馬超興·胡得帝·李色開라는 소림사오조의 성명을 중심으로 그 좌우측으로 太宗考 洪啓勝와 太始祖 朱洪英 등을 비롯한 '천지회의 창립자들'의 성명이 나열되었고, 그 하단으로 吳天成·洪太歲·李色開·桃必達·林永昭이라는 五虎將軍의 성명과 郭秀英·鄭玉蓮 등 鄭君達 가족의 성명들도 보이고 있다.

한편 蕭一山本에는 '碑亭'이라는 제목으로 天地會가 결사의 창립역사나 각종 의식에서 숭배하는 亭·堂·廟 등을 묘사한 그림을 수록하고 있다. 忠香先·洪花亭·忠義堂·金蘭堂·靈王廟·高溪廟·關帝廟·觀音廟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정 중에서도 천지회의 四大忠賢을 모시는 靈王廟의 비정과 香爐를 모셔놓은 高溪廟의 비정, 그리고 關帝와 觀音佛祖를 각각 모셔놓은 關帝廟와 觀音廟의 비정을 제외한다면, 忠香先·洪花亭·忠義堂·金蘭堂의 비정에서는 모두 少林寺五祖가 일종의 기호 체계로서 숭배되고 있었다.[62]

忠義堂 碑亭(자료 13)의 경우 洪花亭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역시 소림사오조를 상징하는 仁·義·禮·智·信을 중심으로 결사의 이른바 '歷代宗親'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神位'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좌우에 "金蘭堂上, 列位聖賢"이 걸려 있는 金蘭堂 비정(자료 14)에는 蔡德忠·方大洪·馬超興·胡得帝·李色開이라는 五房祖의 성명과 吳天成·洪太歲·桃必達· 林永招·李色弟이라는 五虎將軍의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이들 천지회의 碑亭은 천지회가 각종 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하거나 혹은 천지회의 亭·堂·廟를 기념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정의 형태나 그 안의 내용·성명으로 미루어 볼 때, 천지회가 각각의 亭·堂·廟와 관련된 '천지회의 창립자들'을 비롯한 인물과 소품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일종의 위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의 비정에서는 五虎將軍의 성명을 後五祖의 성명으로 기술하는 등의 혼동을 볼 수 있지만, 洪花亭과 忠義堂의 비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림사오조는 천지회의 '歷代宗親'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구성원들에게 찬양·숭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

61) 『近代秘密結社史料』 卷1 「碑亭第二」, 5쪽.
62) 『近代秘密結社史料』 卷1 「碑亭第二」, 1-4쪽.

<자료 13> 忠義堂 碑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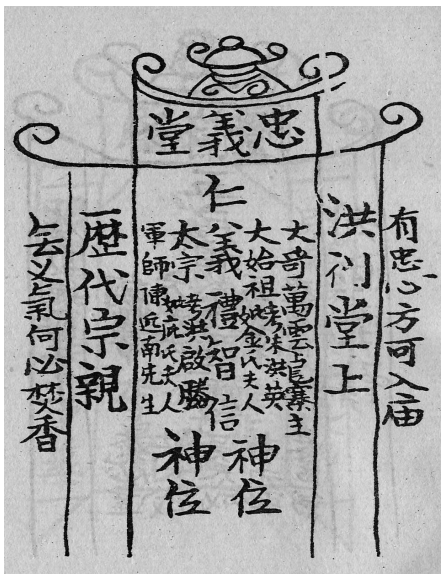


<출처>『近代秘密結社史料』 卷1 「碑亭第二」, 2쪽.

<자료 14> 金蘭堂 碑亭

<출처> 『近代秘密結社史料』 卷1 「碑亭第二」, 2쪽.

## Ⅲ. 正統으로의 確立: 五祖祠의 建立

1844년 홍콩(香港)總督 겸 英國駐華公使로 임명된 데이비스(Davis)는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天地會에 대하여 한 때 "청조의 통치체제에 반대하는 애국단체"로 규정하기도 하였다.[63] 또한 道光 27년(1847) 중국에 입국하여 咸豊 9년(1859) 영국으로 귀국한 스카스(Scarth)의 경우 그 이듬해 출판한 『중국에서의 12년』이란 견문록에서 함풍 4년(1854) 廣東 天地會人의 洪兵起義는 청조 내부의 부패는 물론이거니와 그 통치자들의 기만·탐욕·비겁함, 나아가 관료들의 태만과 나쁜 품행 등에 저항한 일종의 '혁명가들'의 소행이었다고 언급하였다.[64] 이러한 지적은 한 왕조나 국가에서의 異端과 正統이란 말이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 준다. 청조의 국가권력은 천지회를 謀叛을 일삼는 異端의 결사로 규정하여 국법의 철저한 적용 아래서 강력하게 처벌했지만, 청조의 입장이 아닌 천지회의 입장에서 결사의 성질을 규명하거나 청조의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앞서의 '애국단체'나 '혁명가들'의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이단과 정통의 경계는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63) 余繩武·劉存寬 主編, 『十九世紀的香港』, 北京: 中華書局, 1994, p.423.

64) John Scarth, *Twelve Years in China: The People, the Rebels, and the Mandarins*, Edinburgh, T. Constable and co, 1860, p.230, pp.235-236, p.239.

淸代 天地會와 관련해서 異端과 正統의 경계가 무너진 곳은 바로 청조의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범위를 넘어선 해외에서 활동한 천지회의 경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福建과 廣東의 인민들이 해외로의 이주라는 물결을 타고 가깝게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의 각 국가로, 멀게는 캐나다·미국 등 구미의 각 국가로 대규모의 移民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러한 해외 각 국가의 華人社會에서도 義興會나 致公堂 등의 이름을 가진 천지회가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해외의 화인사회에서 조직된 천지회는 기본적으로 이단의 결사, 즉 불법적인 결사가 아니었다. 예컨대 말라야(Malaya: 현재 말레이시아의 서부지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지역)의 경우, 이 지역의 천지회는 英國 海峽植民地(the British Colony of the Straits Settlements) 정부로부터 적어도 1889년까지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65] 천지회 등의 會黨이 화인사회의 구심점이었던 會館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오히려 발전하고 있었다.[66]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 천지회가 문제로 되었던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싸고 화인사회와 식민지정부 뿐만 아니라 화인사회의 회당 조직들 간에 발생하기 시작한 각종 이권 분쟁 때문이었지, 결코 反淸復明이라는 결사의 정치이념 때문이 아니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19세기 중엽 이후로 해외의 華人社會에서 활동한 천지회의 경우도 중국 대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심적 역할을 하는 천지회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少林寺五祖가 여전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라야의 싱가포르 천지회의 상황을 보자. 싱가포르 천지회의 내부 사정은 영국 해협식민지 싱가포르 정부의 華民政務司署 서장인 피커링(Pickering)의 조사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다. 당시 이 지역 최대의 천지회 조직인 義興會에 직접 가입까지 한 피커링은 각 지부의 천지회 수령들과 교제하면서 결사 내부의 많은 기밀들을 조사하여 1878～79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천지회의 기원전설과 입회의식을 비롯한 각 지부의 현황에 관한 것이었다.[67] 이 보고서에서 피커링은 자신이 직접 가입하여 경험한 이 지역의 천지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전하고 있다.

> 이론적으로 말하면, 천지회의 모든 회합(Meetings)은 정글이나 산속에서 개최된다. 모든 새로운 구성원들은 그들이 초청된 곳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산속에서 개최된다는 대답을

65) Wilfred Blythe, *The Impact of Chinese Secret Societies in Malaya: A Historical Stud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220-221.

66) 渡邊惇, 「十九世紀植民地マラヤにおける華人社會と會館·會黨」, 『東南アジアの華人と文化摩擦』, 酒井忠夫 編, 東京: 巖南堂書店, 1983, 143-218쪽.

67) W. A. Pickering, “Chinese secret societies and their origin”, *Journal of the Straits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 1878; W. A. Pickering, “Chinese secret societies: Part Ⅱ”, *Journal of the Straits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 1879.

> 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이는 청조 관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海峽植民地에서 (천지회의) 각 지부(Lodge)는 상당한 규모의 '會館'(Hui-Koan)이나 '회합 건물'(Meeting-house)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천지회의 총본부(the Grand Lodge)는 로쳘(Rochore)에서 최상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건물에서는 1년에 2번, 즉 음력 1월 25일과 7월 25일에 '五祖'(the five ancestors)가 숭배되었는데, 자신들의 조직을 경축하기 위해 연극을 동반한 축제행사가 '義興會'(Ghee Hin Society) 소속의 9개 지부인 福建義興·福興·潮君義興·廣福義氣·松栢館·廣惠肇·義信·義福·瓊州館義興에서 개최되었다.[68]

피커링의 위와 같은 기록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하나는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천지회가 청조에 의해 異端의 불법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천지회의 각종 회합은 적어도 청조 관료의 감시망을 피해야 했지만, 영국 해협식민지 정부로의 통제를 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합법적인 조직인 천지회의 각 지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會館이나 건물에서 입회의식 등의 각종 會合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피커링의 조수였던 스털링(Stirling)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커링이 가입하여 입회의식을 진행한 회관은 1872년 천지회가 1,850 Straits Dollars의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China Street 3번지에 위치한다고 하였다.[69] 다른 하나는 인용문의 뒷부분에서 9개의 지부를 거느리고 있는 이 지역 최대의 천지회 조직인 義興會가 1년에 2번, 즉 음력 1월 25일과 7월 25일에 결사의 시조인 少林寺五祖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결사의 창립을 경축하는 일종의 정기적인 축제의 장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피커링은 소림사오조의 구체적인 성명에 대해서도 소림사의 소실 과정에서 탈출한 5명의 승려인 蔡德忠(Chhoa-tek-tiong)·方大洪(Png-tai-ang)·馬超興(Ma-chiau-hin)·胡德帝(O-tek-te)·李色開(Li-sek-khai)이라고 주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70]

청조의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범위를 넘어선 싱가포르에서는 天地會가 결코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異端의 결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공식적이고 합법화된 華人社會를 대표하는 正統의 결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통의 결사로서 천지회를 상징하는 시조이자 인물로서 少林寺五祖가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결사의 상징적인 인물인 소림사오조를 제사지냄과 동시에 이날을 결사 구성원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삼았던 상황은 소림사오조가 천지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7월 25일이란 날짜는 거의 모든 결사의 기원 전설 판본에서 소림사오조 등 이른바 '천지회의 창립자들'이 결사를 창립한 날짜로 등장

---

68) W. A. Pickering, "Chinese secret societies: Part Ⅱ", p.2의 "the five ancestors" 주석.

69) J. S. M. Ward and W. G. Stirling, *The Hung Society or The Society of Heaven and Earth* Vol. Ⅰ, p.18.

70) W. A. Pickering, "Chinese secret societies: Part Ⅱ", p.2.

한다.[71]

소림사오조의 이러한 위상은 피커링이 직접 참여한 입회의식의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피커링의 관찰에 의하면, 제단에 위치한 紅斗의 중앙에는 五祖의 位牌(the Spirit Tablet of the five ancestors)가 모셔져 있었다. 또한 그 주위로 소림사오조의 姓을 각각 담은 삼각형 모양의 5개 깃발이 5개 省을 대표하여 홍두의 좌우로 꽂이는데, '川大丁首'(=順天行道. Obey Heaven, Walk righteously)와 '滅淸'(Exterminate the Chheng) 혹은 '反淸復明'(Overturn the Chheng, restore the Beng)의 글자가 모두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五色旗이다. 나아가 홍두 앞의 제단에는 그야말로 소림사오조를 위한 다섯 가지의 각종 제사 음식 등과 관련하여 五茶(five cups of Tea)·五酒(five cups of Wine)·五飯(five bowls of Rice)·五箸(five pairs of chop-sticks)·五牲(five sacrificial meats)의 이름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72]

해외에서 天地會에 대한 異端과 正統의 경계가 무너졌던 상황은 중국 대륙의 경우 淸朝가 멸망하고 民國의 시대가 개창된 상황에서도 출현하였다. 淸末 孫中山 등을 중심으로 革命派 세력이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전개된 청조 타도를 위한 일련의 武裝蜂起의 과정에서 천지회의 많은 인사들이 봉기군의 지휘부와 대오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辛亥革命의 과정에서 천지회는 청조를 타도하고 민국을 건립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73] 민국이란 공화국의 탄생은 천지회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결사의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이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이를 실천한 결과이기도 했으니, 이는 청대에 이단의 결사로 내몰린 천지회가 민국시대에 정통의 결사로 급격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던 셈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臨時大總統으로 취임한 손중산은 1912년 3월 11일 대총통의 명의로 參議院에서 「中華民國臨時約法」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고 이를 선포하였는데, 이 약법의 제1장 總綱의 제6조에 "人民은 좌측에 나열된 각 항목의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4항에 "인민은 言論·著作·刊行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이었다.[74]

이제 새로운 민국이라는 시대에서 천지회는 이념적인 측면이든 제도적인 측면이든 간

---

71) 이평수, 「淸代 天地會 起源傳說 板本 現況과 特徵—결사 창립의 시간·장소의 비교를 겸론하여—」, 188쪽.

72) W. A. Pickering, "Chinese secret societies: Part Ⅱ", pp.6-8.

73) 이평수, 「19世紀末 廣東地域의 革命活動—廣東天地會와 興中會의 合作이라는 觀點에서—」, 『東洋史學研究』 81, 2003; 이평수, 「20세기 초 중국의 공화혁명과 비밀결사——동맹회와 천지회의 무장기의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54, 2012 참조.

74) 孫文, 「中華民國臨時約法」(1912年3月11日), 南京 『臨時政府公報』 第三十五號, 揚州: 江蘇廣陵古籍刻印社影印, 1981, 1-2쪽.

에 이단의 결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정통의 결사로 재탄생할 수 있게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청대 이단의 결사로서 천지회를 대표하고 상징했던 인물인 少林寺五祖 역시 민국의 탄생에 걸맞게 정통의 결사로서 그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로 재설정되어야만 했다. 청조가 멸망하고 민국이 탄생하는 급격한 정치적 대변동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여 천지회를 異端의 결사에서 정통의 결사로 공개적·합법적으로 위치지우고자 시도했던 최초의 인물은 바로 신해혁명시기 革命黨의 영수이자 천지회(=洪門)의 지도자였던 譚人鳳(1860～1920)이었다.

譚人鳳은 민국이 성립한 직후에 "구식의 秘密會黨을 개량하여 지방의 영구적인 치안을 유지한다."는 宗旨를 가지고 社團改進會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912년 3월 11일「臨時約法」이 공포된 이후에 담인봉은 사단개진회의 立案을 신청하기 위해 사단개진회에 관한 意見書와 章程을 작성하였고, 마침내 이것을 1912년 9월 28일 內務部 警政司에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담인봉은 천지회의 창립자인 少林寺五祖와 그 先烈들을 기념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의견서에서 담인봉은 "福建에 기거하는 少林寺는 무형의 국가를 이루었으니, 이는 천지회(=洪家)의 출발점이 되었다."[75]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지회의) 先賢에 대하여 祀廟를 세워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정에서 담인봉은 "천지회(=홍가) 선열들의 事實을 고찰하여 功德을 표창하고, 각 省에 祀廟를 세워 제사를 지내서 기념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대하여 매년 봄과 가을 두 번 소림사오조 등의 선열들을 기념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76] 담인봉이 초안한 이러한 사단개진회의 의견서와 장정의 내용에 근거해 보면, 이러한 기념의 범위는 매우 광대하여 소림사오조부터 신해혁명시기까지 천지회의 선열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담인봉이 건의한 천지회 선열에 대한 이러한 기념 방식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민국시대에 소림사오조 등 천지회의 기념을 처음으로 제창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美洲의 천지회 조직을 대표하는 洪門致公堂에서도 천지회를 정통으로 확립하려는 차원에서 위의 譚人鳳과 같은 천지회의 기념 문제에 주목했는데, 1916년에 이르러서야 少林寺五祖를 숭배하기 위한 五祖祠의 건립을 중국 대륙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77]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샌프란시스코(舊金山=San Francisco) 홍문치공당의 영수였던 黃三德(1863～1946)이었다. 그는 우선 1917년 廣東으로 건너와 省長인 朱慶瀾을 접견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천지회(=홍문)의 입안에 대한 비준을 받은 이후에 廣州에서

---

75)「社團改進會發起意見書」, 石芳勤 編, 『譚人鳳集』,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8年(原刊: 1985年), 75-76쪽;「社團改進會意見書」, 陳浴新, 『湖南會黨與辛亥革命』,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編,『文史資料選集』第34輯, 1963년, 137쪽.

76)「社團改進會章程草案」,『譚人鳳集』, 77쪽, 81쪽.

77)「致公堂五祖祠將行落成禮」, 上海『申報』1925年 9月 5日, 第14版.

오조사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1930년대 그의 회고록에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자료 15> 上海 五祖祠의 전경

<출처> 陳昌福, 「上海'五祖祠'建撤始末」, 24쪽.

> 西南에서 護法軍이 일어난 이후에 각 성의 인사들이 廣州로 모여 들었는데, 五祖祠의 창건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오직 孫文만 반대하여 서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 그 후에 義捐을 통한 오조사의 창건은 적절한 사람을 얻지 못하여 실행되지 못했고, 많은 분쟁이 일어났다. 지금에 이르러서 오조사는 비록 上海에 건립되었지만, 여전히 분규가 그치지 않고 있다.[78]

이처럼 당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五祖祠는 廣州에서 건립되지 못했지만, 결국 건립 지역을 상해로 옮기면서 오조사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위의 회고록에서 黃三德이 언급한 上海에서 五祖祠의 건립은 1923년 10월 진행된 '오대륙 홍문 제3회 간친대회(五洲洪門第三次懇親大會)'에서 그것의 건축의 방법과 재원의 모금방식, 그리고 책임자의 선정 등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79] 전 세계의 홍문 昆仲의 노력으로 10만 美元 이상의 기부금이 모아졌고, 五祖祠 건립의 책임자 趙昱(1888~?)은 1924년 9월 각 지역 치공당의 오조사 건립 대표들과 함께 오조사의 건립에 착수하였다. 이후 1925년 9월 오조사가 낙성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 "오조사는 서양식 벽돌의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2畝 1分 7厘 (약 1,362.47㎡)이다. 1층과 2층은 사무실과 휴게실 용도이다. 3층의 앞쪽에 神壇이 설치되어 있는데, 五祖와 홍문의 모든 역대 선현을 제사지내는 곳이다. 오조사의 좌측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고, 화조와 수목이 있으며, 뒤편에는 단층집이 있다."[80]

9월 4일 趙昱 등은 上海의 각계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익일 9월 5일 『申報』에서는 "미주 화교의 저명한 단체인 致公堂이 상해에서 오조기념사를 창립했는데, 지금 낙성되었기에 이번 달 12일 오후에 개막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오조사의 유래(五祖祠緣起)」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78) 黃三德, 『洪門革命史』, 出版社不明, 1936, 39-40쪽.

79) 「建五祖祠」(1923年10月10日), 簡建平 編著, 『中國洪門在加拿大』, 溫哥華: 中國洪門民治黨駐加拿大總支部, 1989, 50쪽; 「籌備五祖祠開辦費」(1923年10月10日), 『中國洪門在加拿大』, 50쪽.

80) 陳昌福, 「上海'五祖祠'建撤始末」, 『世紀』 2009-4, 24-25쪽.

> 明朝는 이미 멸망하고 滿洲族의 鐵騎가 중원을 유린한 이래로, 당시의 遺老遺民들은 漢族의 멸망을 차마 견딜 수 없어 비밀리 결합하여 폭력에 항거했는데, (이들을) 이름하여 洪門이라고 한다. (홍문은) 康熙 甲寅年(1674)에 기원하여 民國 辛亥年(1911)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을 내려오면서 淸朝를 멸망시키고 우리 山河를 회복시켰는데, 그 사이 죽음을 무릅쓰고 곤란함에 처해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전진한 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다섯 사람이 蔡德忠・方大洪・馬超興・胡德帝・李式開였다. 그 후에 다시 다섯 사람이 더 있었으니, 바로 吳天成・洪太歲・桃必達・李式太・林永招였다. 이들이 바로 前五祖와 後五祖로, 모두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몰래 (성명을) 가탁하여 禍를 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 성명은 고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들의) 忠義의 氣運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항상 보존되어 왔으니, 그 德을 숭상하고 그 功에 보답하는 것은 훗날 死者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들 先賢을 추도함에 있어서 애통하게도 문헌이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德이 끝내 끊어져버릴까 두려운 것이다. 이에 民國 5년(1916) (홍문) 내부의 명령을 받들어 廣州와 上海 등의 지역에 五祖祠를 건립하여 존경의 본보기로 삼고자 했는데, 해외의 동지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호응하여 일어나서 앞 다투어 재물을 헌납하니 성대하게 완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조사가 건립된 이유인 것이다.[81]

위의 내용에 의하면, 천지회(=洪門)는 明朝遺民이 1674년 康熙 甲寅年에 비밀리 결성되었고, 1911년 宣統 辛亥年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년 이상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천지회의 인사 가운데에서 그 先賢으로 추모해야 할 인물이 바로 前五祖와 後五祖라는 것이다. 특히 위 오조사의 유래에서 적시한 전오조와 후오조의 성명을 美洲 洪門致公堂 내부에서 유전되어 온 天地會의 會簿인『蠡黶 党錦囊傳』[82]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일치한다. 비록 여기에서는 전오조와 후오조의 실제 성명은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고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적어도 민국시대 천지회의 구성원들은 少林寺五祖를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천지회 창립의 관건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9월 12일 趙昱의 진행 아래서 五祖祠의 開幕式이 거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上海의 저명인사로는 唐少川, 張君勱, 張其煌, 江天鐸, 莫克明, 潘公弼과 서양기자 雷特 등이 있었고, 모두 약 500 여명이 참석하여 매우 북적북적하였다.”[83] 개막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81)「致公堂五祖祠將行落成禮」, 上海『申報』1925年 9月 5日, 第14版.

82)『蠡黶 党錦囊傳』, 83-85쪽.

83)「致公堂五祖祠開幕紀」, 上海『申報』1925年 9月 15日, 第14版.

1. 開會
2. 연주
3. 개막의식의 선포, 建祠總理 趙昱 선생의 개막식, 國旗와 黨旗에 대한 경례
4. 建祠 董事局長 湯展雲 先生의 開幕詞 낭독
5. 趙總理의 五祖祠 건립의 경과보고
6. 祝詞와 祝電의 낭독
7. 來賓 연설
8. 洪門人 연설
9. 趙總理의 來賓에 대한 答辭
10. 國歌의 연주
11. 기념촬영
12. 끽차
13. 오락공연
14. 散會[84]

前國務總理 唐紹儀(1862～1938)는 내빈 연설에서 "다행히 금일 五祖祠의 開幕盛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축하문과 축하전보가 해외에서 많이 보내온 것을 보니, 致公堂이라는 團體가 偉大하고 그 세력이 雄厚한 것을 족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五大洲에서 모두 대표를 파견하여 귀국하였으니 조국에 대한 마음도 족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致公堂 團體가 국가를 위해서 出力할 것을 심히 기대합니다."라 언급하였다.[85] 이어서 文教界를 대표하는 張君勱(1887～1969)은 내빈 연설에서 "옛날의 淸教徒 100여 명이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 식민지 개척자가 되었는데, 100여 년 사이에 마침내 淸教堂이 되어 大團體를 성립시켜 각종의 建設을 일으켰다. 이것을 五祖가 각종의 핍박을 받아 대단체를 성립시켜 각 지역에 전파되고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五祖祠가 있게 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사건이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홍문의) 미래의 建設 또한 마땅히 청교도가 미국에 건설한 능력과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86]

요컨대 천지회의 少林寺五祖는 기원전설에서 천지회(=洪門)의 創立者일 뿐만 아니라 천지회의 정치적 이념인 '反淸復明'의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며, 나아가 천지회가 청조에 정치투쟁을 전개할 때의 정신적 支柱이기도 했던 것이다. 비록 淸朝는 천지회의 正統을 부정하고 異端으로 취급하여 역대로 금지하고 탄압을 진행해 왔지만, 청조가 멸망

84) 「致公堂五祖祠將行落成禮」, 上海『申報』 1925年 9月 5日, 第14版.
85) 「致公堂五祖祠開幕紀」, 上海『申報』 1925年 9月 15日, 第14版.
86) 「致公堂五祖祠開幕紀」, 上海『申報』 1925年 9月 15日, 第14版.

하고 民國이 성립한 이후에 천지회의 인사들은 五祖祠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천지회와 그 先烈들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소림사오조가 있었던 것이다. 唐紹儀과 張君勱과 같은 당시 상해의 저명인사들도 오조를 "民國(국가)를 위해 出力"하고 "장래의 建設"을 상징하는 천지회의 역사적 인물로 추앙하고 있었던 것이다.

## 結論

비밀결사의 연구가 갖는 사료적 접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도, 천지회 연구의 영역에서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역사적 사실로서 사료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사적 현상과 인물에 대하여 이미 괄목할만한 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해 온 것처럼 이른바 천지회의 창립・종지・재건을 상징하는 少林寺五祖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않아온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소림사오조가 천지회의 역사에서 '실제 인물'이 아니라 천지회인이 창작해 놓은 '허구 인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이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명청시대 민간의 비밀종교결사를 대표하는 無爲教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주만물의 궁극적 창조자로서 이 결사를 주재하는 최고의 신인 無生老母의 존재[87]를 사장시키고 무위교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는 아니었을까?

胡珠生과 같은 학자는 少林寺五祖를 역사적 실제 인물로 간주하여 天地會의 창립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소림사오조는 천지회인이 창작한 허구 인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 속의 인물은 19세기 이후로 천지회가 마치 중세 유럽의 각 국가로 퍼져나간 흑사병과 같은 매우 놀라운 속도로 華南의 각 지역사회에 급속히 정착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사의 창립・종지・재건을 상징하는 인물로 숭배하기 시작하였다. 소림사오조는 결사의 창립역사가 각색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결사의 전설적인 창립자로 등장한다. 결사의 창립역사를 함축적으로 재현해 놓은 입회의식에서 소림사오조는 마치 無爲教의 無生老母와 같은 최고의 신처럼 당당히 제단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패로 모셔지며 숭배되었다. 비밀결사로서의 천지회가 만들어놓은 각종 기호체계에서도 소림사오조는 어김없이 등장하여 이를 주재하였다. 청조 국가권력의 힘이 작동하는 중국 대륙에서 천지회는 불법적인 이단의 결사였기 때문에 상상 속의 허구 인물인 소림사오조가 만들어 놓은 결사 내부의 활동 모습은 사료적으로 검출해 내기가 사실상 매우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지역 華人社會에서 조직된 천지회에서는 소림사오조가 더 이상 이단의 주재자가 아닌 합법적인 정통의 결사로서 천지회를 주재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소림사오조가 五房으로 흩어져 五色旗를 펄럭거리며

87) 유장근, 「민간종교」, 오금성 외 지음,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서울: 이산, 403-406쪽.

反淸復明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예언이라도 했듯이, 청조가 멸망하고 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譚人鳳과 黃三德과 같은 열성적인 천지회의 인사들은 결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소림사오조를 공개적으로 숭배할 수 있는 祠堂 건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결국 천지회인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趙昱에 의해 마침내 1925년 上海에서 五祖祠가 건립되었던 것이다.

근대 중국의 천지회 역사에서 少林寺五祖가 결사의 기원·전설·의식·기호체계의 담론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결사 내부에 미친 영향들, 그리고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천지회의 역사상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少林寺五祖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소림사오조가 천지회의 창립·종지·재건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은 천지회인이 스스로의 상상 속에서 창작해 낸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적 담론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 야마토왕권과 임나문제

강 은 영(전남대)

목 차

1. 머리말
2. 연구사와 문제소재의 검토
3. 대왕계승원리와 임나문제
4. 맺음말

## 1. 머리말

한일관계사 뿐만 아니라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에 가야(임나)와의 관계가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음은 모두가 인지하는 바이다. 이처럼 임나문제는 한일관계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나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는 크다[1]. 특히 임나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 민족의 자기중심적 시각에 의해 객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가야사와 6세기 이전 일본고대사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에 의하여 6세기 이전 사료는 사장되고 있다. 또한 임나멸망 후, 646년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임나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단지 『일본서기』의 사관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룰 임나 멸망후의 '임나문제'는 일본 연구자들과 같이 임나일본부의 기본적인 군사기지의 기능이 임나멸망 이후에도 존속했다고 보거나 '임나의 조'가 임나영유에 대한 승인조치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멸망 후 80여년간 꾸준히 등장하는 임나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것도 역사를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멸망후의 '임나문제'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임나의 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상 실존하지 않는 '임나문제'는 '임나의 조'만이 아닌 '임나사'와 '임나의 조'를 얻기 위한 군사파병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현재 왜왕권의 임나일본부에 의한 임나지배나 멸망 후에도 임나일본부의 군사기능이 존속했다고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멸망이후에도 80여 년간 꾸준히 역사서에 등장하는 '임나문제'를

1) 임나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김태식, 『가야사연맹사』, 일조각, 1993; 同, 「고대 한일관계 연구사: 임나문제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 27, 2002; 김은숙, 「일본서기 '임나'기사의 기초적 검토」『한국사시민강좌』 11, 일조각, 1992이 대표적이다.

대한반도관계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라가 ‘임나의 조’를 야마토정권에 제공하는 이유는 백제나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가야멸망 후 철을 비롯한 광물공급원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외교류를 통해 ‘임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연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임나문제’를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임나는 멸망했지만 야마토 조정과 한반도의 국제관계 속에서 임나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즉 흠명천황과 민달천황은 임종의 순간까지도 임나의 부흥을 외치고 있었고 이후의 천황들은 임나의 부흥이야말로 후계왕의 지상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임나멸망 이전 흠명조에 나타나는 야마토조정의 태도는 ‘임나부흥’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았고, 군사행동 또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562년 대가야 멸망 이후 ‘임나부흥’문제가 대신라・백제관계 뿐만 아니라 야마토조정의 중심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야마토조정의 ‘임나문제’에 대한 태도의 온도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즉 야마토 왕권 내부의 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멸망 후의 ‘임나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임나문제가 단순한 상징의 문제 또는 실질적인 한반도관계가 아닌 야마토 왕권의 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임나의 조’의 성립에서 폐지에 이르기까지 ‘임나문제’는 각 천황대마다 일정한 규칙성을 띠고 등장한다. 이는 ‘임나문제’가 야마토왕권의 대왕계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임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7세기 야마토왕권의 대왕계승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6세기 야마토왕권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왕이다. 그러나 7세기가 되면 천황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天皇號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추고조성립설>과 <천무조성립설>이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병인년(천지5, 666)의 野中寺 彌勒菩薩像 명문에 보이는 「天皇」은 근래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즉 천황호는 확신할 수 없지만 추고조・효덕조・천지조 가운데 어느 시기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지조이전성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2]. 본고에서 살펴볼 시간적 범위는 임나 멸망 이후부터 ‘임나의 조’가 폐지되는 대화2년까지로 대왕제에서 천황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화개신이 중대형황자와 中臣鎌足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이라는 점과 천황호의 성립이 천지천황(중대형황자)대에 확고해진다는 점에서 ‘임나의 조’폐지는 대왕제에서 천황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임나사’・‘임

2) 吉川眞司『シリーズ日本古代史③ 飛鳥の都』、岩波書店、2011、p30.

나의 조'에 대한 제학설을 살펴봄으로써 제학설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멸망 후 사료에 나타나는 '임나사'·'임나의 조'·신라로의 군사파병 등 '임나문제'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 2. 연구사와 문제소재의 검토

『일본서기』흠명 23년 춘정월조에는 '신라가 임나관가를 쳐서 멸망시켰다'고 하여 임나멸망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化2년(646) 9월의 '임나의 조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하는 기사까지 임나의 멸망 이후 84년간이나 임나문제가 사료 상에 언급되고 있고, 한반도 문제의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많은 개설서들과 연구서들은 임나문제를 중심으로 고대일본의 국가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멸망 후의 '임나문제'만을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임나멸망 이후 사료에 나타나는 '임나사'·'임나의 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기 쉽게 구분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임나문제를 당시 국제관계와 결부하여 역사적 실체로 보는 실체론과 한반도를 내관가로 인식하는 8세기 일본 지배층의 인식이나 관념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상징론, 그리고 『일본서기』찬자에 의한 조작이라고 파악하는 부정론이다.

'임나일본부'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末松保和[3]를 들 수 있다. 末松은 '남한경영론'을 피력하며, 왜가 369년 한반도 남부를 평정함으로써 임나지배를 시작하였고, 6세기에 들어 백제가 점차 남쪽 지역에 대해 팽창해옴에 따라 임나 지역의 일부를 백제에게 할양해 주기도 했으며, 신라의 무력진출에 의해 남가라·탁순 등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금관가야멸망)고 한다. 게다가 임나의 지배기관인 임나일본부가 이를 막지 못하여 임나는 점차 약화, 결국 562년 신라 진흥왕이 보낸 군대의 공격을 받아 멸망(대가야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멸망 후에도 '임나의 조'를 통해 임나지역에 대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임나의 조'에 대한 末松의 설을 살펴보면, 敏達4年(575)에 신라가 바친 多多羅·須羅羅·和陀·發鬼의 調와 같은 4읍의 調가 임나의 조이고, 임나의 조 또한 4읍의 종주권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후 '임나의 조'와 관련하여 신라에 파견되는 문책사나 신라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임나의 조를 재촉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645년 7월, 고구려·백제·신라의 사신이 조공을 바쳤는데 백제의 사신이 임나의 사신을 겸하고 임나의 조를 진상한 것이다. 임나 멸망 후, 임나를 영유한 신라가 임나의 조를 바

3) 末松保和『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1949.

쳤으나 645년에 와서 백제가 임나의 조를 바치게 된 것은 642년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성의 탈취와 관계있는 것으로 이 40성은 옛 가야지역, 즉 임나 구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末松保和가 제시했던 임나일본부에 의한 임나지배는 그 설자리를 잃었지만, 임나 멸망후 '임나문제'에 관한 커다란 골조는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답습・계승되고 있다.

末松保和의 전통적인 임나관을 계승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本位田菊士[4]는 임나멸망 후, 임나일본부가 한반도남부에서 어떠한 형태든 실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만, 임나멸망 후 야마토정부가 부르짖던 '임나재건'은 허구이고 신라에게 '임나의 조'의 정기적 대납을 약속하게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임나사'나 '임나의 조'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주로 파견되는 吉士집단을 주목하여 초기 '임나의 조' 신설 목적이 임나계도래인(吉士집단)의 부양을 위한 것이었고, '임나의 조'의 일부는 교섭의 주역인 임나계도래인의 권리적 요소로서 인정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임나계도래인인 漢氏와 秦氏는 '임나의 조'를 관장하는 宰領의 위치에 있었고, 蘇我氏와 阿部氏는 그들과 결탁하여 얻은 부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야마토정권을 움직이게 되었으며 '임나의 조'의 기성사실화의 방향이 마침내 신라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을 낳았고, 허구의 영광을 과거의 역사에 투영시켜 신공황후 전설 성립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였다. 本位田菊士는 진평왕대에 설치된 영객부의 본명이 倭典[5]인 점에 착목하여 왜전이야말로 신라가 임나문제의 처리를 왜와 협의하기 위해 만든 기관으로 보고 있다.

한편 鈴木英夫[6]는 '임나의 조'가 진상된 敏達4년(575)・推古8년(600)・推古18년(610)・추고19년(611)・推古31년(623)・舒明10년(638)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575년・610년・611년・623년만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로서 인정한 기사는 '임나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외교기사의 기재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鈴木英夫는 민달4년조에 보이는 '四邑의 調'가 '임나의 조'의 기원이고 가야멸망 후 卒支公 武力이 식읍으로써 실제로 지배한 지역이며, 외교의 주체로서 '임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금관국 왕가로 보았다. 신라가 임나로 하여금 進調시킨 이유는 백제의 대왜외교에 대항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고 왜왕권의 군사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6세기전반의 왜왕권과 가야의 예속관계를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 '임나의 조'는 왜국의 고유한 제도인 調制(츠키)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라의 調제도에 유래한다. 신라의 대외외교의 변화

---

4) 本位田菊士「吉士と任那の調」『日本古代國家形成過程の研究』、名著出版、1978.

5) 「置領客府令二員」<『三國史記』신라본기 진평왕13년 2월조>
「領客府, 本名倭典. 眞平王四十三年 改爲領客典後又別置倭典」<『三國史記』雜志 職官上>

6) 鈴木英夫「「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國史學』 119、1983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1996에 재수록)

로 인해 '임나의 조'는 622년을 마지막으로 정지되었다고 한다. 신라는 왜왕권의 군사적 원조를 획득하려고 했지만 백제처럼 왜왕권의 중화의식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권위에 의해 실현하려고 하였고, 이는 '임나의 조'의 납입・왜왕권의 중화의식에 영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鈴木이 '임나의 조'가 백제의 대왜외교의 산물이었다고 하였다면, 西本昌弘[7]은 고구려의 영향을 중요시하였다. 西本昌弘에 따르면, 왜국으로부터의 잦은 재촉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임나사'를 파견하여 '임나의 조'를 진상한 것은 575년・610년・611년・638년의 4차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라는 고구려가 왜에게 접근하거나, 고구려의 침공으로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수당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만 왜국에 '임나사'를 파견하여 '임나의 조'를 공상하였다고 보았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임나문제'관련 연구는 연구사가 축적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末松保和와 같이『일본서기』가 전하는 바대로 '임나일본부' 및 '임나문제'를 맹신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임나문제'의 인식은 6세기전반의 가야와 왜의 관계를 신라가 계승한 것이고, 단지 신라가 '임나문제'를 통해 왜와 통교한 것은 배후의 백제나 고구려 혹은 왜왕권내의 도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각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김은숙[8]은『일본서기』의 임나관계기사를 검토하여 '임나일본부'는 실재했던 大和조정의 군사기관이 아니라 대화조정을 구성한 씨족들, 즉 주로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계나 가야계 씨족들의 가야지역에서의 옛 활약담을 바탕으로 하여『일본서기』의 편찬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았다. '임나부흥운동'이란 6세기 전반에 백제측이 일본측을 군사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였던 논리였으며 백제계 이주민인 소가씨 중심의 大和조정도 이 논리로 백제와의 군사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백제로부터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따라서 대가야 멸망 이후 '임나의 조'의 확보는 소가씨 중심의 大和정권이 친신라외교를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이었고 소가씨의 本宗家를 타도하고 대화개신을 단행한 중대형황자와 중신겸족 등의 정부는 소가씨 중심의 '임나의 조'를 폐지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대신라외교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효운[9]은 '임나일본부'설이 부정되는 현학계의 연구수준에서 '임나의 조'가 실제로 존재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의 한반도 정세를 살핌으로써 鈴木英夫說과 西本昌弘說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즉 '임나의 조'

---

7) 西本昌弘「倭王權と任那の調」『ヒストリア』129, 1990.

8) 김은숙, 위의 논문(1992).

9) 정효운,「일본서기 비판서설1-推古8,30년조의 '임나의 조'기사를 중심으로-」『한일관계연구』2, 1994.

가 보내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의 한반도 정세는 삼국이 만성적인 전쟁시기에 돌입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양국에 의해 공격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전쟁의 시기와 규모면에서 볼 때 신라가 왜의 원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역사적 조건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신라를 둘러싼 정세가 신라에 불리하게 된 시기는 642년 백제의 공격으로 대야성을 비롯한 40여성이 함락될 때이다. 또한 멸망후의 실체를 입증하는 '임나의 조'기사는 기존의 제설에 의하면 575년과 611년만이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575년・611년을 '임나의 조'의 공조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고 8년(600)과 추고31년(623) 기사는 추고31년 기사가 30년으로 정정되어야 하며 1주갑을 올려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추고8년과 추고30년을 1주갑씩 소급하면, 540년과 562년으로 540년은 안라의 귀속을 둘러싸고 신라와 백제가 갈등한 소위 '임나부흥회의'시기이고 562년은 대가야가 멸망한 해이므로 이는『일본서기』편자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정효운은 '임나의 조'가 외교상으로도 상징적인 존재로도 전혀 실재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일본서기』편자의 실수 또는 고의적인 조작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연민수[10]는 임나는 금관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금관국과 왜국은 몇 세기에 걸쳐 친연관계를 맺어 왔고, 양 지역을 매개한 것은 철자원 등의 선진문물이었으며, 금관국 멸망 후 서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미야케가 설치된 것도 금관국 멸망에 따른 왜국 내의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보았다. 금관국에 대한 내관가 인식은 금관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후 파견된 近江毛野臣의 전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러한 毛野臣 전승기록은 후예들이 가야지역에서의 그의 활동에 기초하여 군사적인 면을 강조해서 편찬한 가전에『일본서기』편찬자가 율령적 이데올로기로 가필・윤색을 가한 결과인 것이다. 즉 일본천황의 내관가로서의 남가라, 이곳을 후계왕의 지상의 과제로서 부흥・재건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하고 그 전제로서『일본서기』편자는 '임나의 조'를 설정했다고 보았다. 이것은 추고조라고 하는 국가의식이 가장 고양되었던 시대적 사상에 의해 일층 깊어지고,『일본서기』편찬 단계의 신라 적시관・번국관과 융합되어 역사적 사실로서 고정화되었다고 한다.

나행주는 수편의 관련논문[11]을 통해 임나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는데, 왜왕권의 가야제국에 대한 직접지배를 전제로 하는 통설(末松保和)이나 정치세력간의 지배권의 계승과 한반도제국에 대한 왜왕권의 정치적 우위를 전제로 하는 수정설(鬼頭淸明), 그리고 '임나의 조'의 유래를 신라의 대왜정책의 산물로 보고 임나사의 존재를 중시해 '임나의

10) 연민수,「일본서기 '임나의 조' 관계기사의 검토」『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11) 나행주,「신라와 임나의 조」『한일관계사연구』29, 2008;「임나의 조의 실체와 의미」『일본역사연구』27, 2008;「임나의 조와 임나사」『일본역사연구』11,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2009;「왜국의 對한반도 정책-「임나의 조」정책의 전개과정-」『한일관계사연구』40, 2011.

조’=임나부흥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신설 등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설파하였다. 특히 ‘임나의 조’문제를 기본적으로 왜국의 대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對신라정책, 더욱이 신라와의 외교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국 내의 극히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입안된 대외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왜왕권이 ‘임나의 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견신라・임나사’파견과 신라출병을 행하였고, 신라로부터의 ‘임나의 조’의 제공・증여는 왜왕권의 견사 혹은 군사적 움직임에 따른 강한 외교・군사적 행동이 있었을 때에만 비로소 실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견신라・임나사 파견 즉 각 시기 ‘임나의 조’ 정책추진의 구체적인 배경 및 목적은 공통적으로 각종 궁의 조영, 불교문화 즉 절 및 불상의 조영이나 불사리 봉납, 관위제의 시행, 견사(견수사 및 견당사)의 비용 마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왜국내의 금속광물자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상, ‘임나문제’와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위의 연구들은 실체론, 상징론, 부정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실체론에 포함되는 견해들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실체론은 ‘임나문제’를 역사상 실재한다고 보는 末松保和의 의견부터 ‘임나의 조’가 왜관을 통해 한반도와 친연성을 갖고 있는 도래인의 부양을 위한 것(本位田), 신라측의 고구려・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공조로 보는 鈴木・西本등의 일본연구자들의 견해들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상징론과 부정론은 ‘임나문제’의 역사적 실재는 부정하지만 사료상에 나타난 ‘임나문제’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일본서기』편찬자가 율령적 이데올로기로 가필・윤색을 가한 결과로 보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은숙・연민수・나행주의 견해가 전자에 속한다면 정효운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의 대가야 멸망 이후 등장하는 ‘임나문제’관련 사료들에 대한 입장은 ‘임나의 조’만을 역사상 실재하거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든지, 혹은 ‘임나사’의 인명이 등장하는 ‘임나의 조’만을 사실(史實)로 인정하는 등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가야 멸망 이후 사료 상에 등장하는 ‘임나문제’가 역사적으로 실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굳이 ‘임나사’와 ‘임나의 조’를 선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가야 멸망 이후 등장하는 ‘임나문제’는 ‘임나사’와 ‘임나의 조’뿐만 아니라 임나와 관련하여 종종 군사파견 논의가 언급되는 ‘신라파병’기사까지도 포괄하여 살펴야만 ‘임나문제’의 진상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임나사’・‘임나의 조’ 등의 ‘임나문제’가 전적으로 야마토왕권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떠한 사정에서든 신라의 호응 없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 3. 대왕계승원리와 임나문제

### (1) 흠명계의 성립과 대왕계승원리의 형성

532년 금관국과 562년 대가야국의 멸망은 야마토왕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본 고대 발전과정상 중요하게 인식되던 임나이지만, 어째서 금관국 멸망 후 43년, 대가야국 멸망 후 13년 만에 일본 역사상에 다시 부상하게 된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임나문제'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나의 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575년부터 폐지되는 646까지의 신라・왜의 견사관계를 살펴보면, 견신라사가 15회 이상, 신라사가 19회 이상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임나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임나의 조'는 실제로 신라에서 야마토 왕권에 보내진 것이 총 6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임나의 조'가 공진되는 경우에도 먼저 야마토 왕권 측으로부터 신라에 대한 외교・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신라에 비해 야마토 왕권 측의 적극성이 현저하다.

사실 이미 신라영역이 되어버린 임나를 현실적으로 부흥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야마토 왕권은 신라로부터 '임나사'를 내조시키고, 야마토왕국의 朝庭에서 '임나의 조' 진상의례를 행함으로써 소위 의례적으로 임나를 부흥시켜 諸蕃의 왕인 천황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임나부흥책은 6세기대에 형성되어 7세기대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추구되었는데, 이는 흠명계대왕들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대왕계승원리 하나로 자리 잡았고, '대왕에서 천황'으로 전환하는 대화개신 이후에는 더 이상 대왕계승원리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적어도 6세기에는 야마토왕권이 「임나」=금관국을 '미야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흥시키는 것은 대왕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대왕에서 태자에게로 계승되어야 할 대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임나」=금관국을 '미야케'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미야케가 야마토왕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로 이 시기는 야마토왕권의 대왕이 야마토 각지의 수장들의 대표자인 대왕에서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천황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이다. 당시 야마토왕권의 수장들의 권력기반은 部民과 屯倉이었다. 부민과 둔창은 현실적으로 야마토왕권의 대왕가를 비롯하여 제호족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이었다. 이를테면 당시 대표적인 호족으로 用明 2년(587)에 멸망한 모노노베노 모리야(物部守屋)의 중심적인 部民과 田莊(둔창)은 가와치국(河內國) 토유라(豊浦)의 땅에 있었고, 이 부민과 전장의 절반은 성덕태자와 인연이 깊은 四天王寺에 기진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노노베씨 토멸에 참가한 왕족들과 유력씨족들이 점유하였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모노노베씨의 남은 部民과 田莊은 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인물인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의 소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일본서기』崇峻卽位前紀는 호족들의 권력기반

인 부민과 둔창의 존재양태를 잘 나태내고 있다.

A-1)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蘇我大臣의 처는 物部守屋大連의 누이다. 대신은 헛되게 처의 계략을 써서 대련을 죽였다. 난을 평정한 후에 攝津國에 사천왕사를 지었다. 대련의 노비의 반과 집을 나누어 대사의 노비와 전장으로 하였다. 田1萬頃을 迹見首赤檮에게 주었다[12].

A-2)壬子(6일), 蘇我大臣蝦夷는 병에 의하여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몰래 紫冠을 아들 入鹿에게 주어 대신의 위와 비슷하게 하였다. 또 그의 아우를 불러 物部大臣이라 하였다. 대신의 조모는 物部弓削大連의 누이다. 母의 재력에 의하여 위엄을 세상에 떨쳤다[13]。

위의 A-1)에 따르면, 소가대신(우마코)의 처는 모노노베노 모리야의 여동생인데 대신이 아내의 계책을 이용하여 大連(모리야)을 죽였다고 한다. 한편 사료 A-2)에서는 대신의 조모가 物部弓削守屋大連의 누이동생이라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대신은 에미시가 아닌 이루카(入鹿)이고, 문의 상 뒤에 나오는 문장은 어머니의 재력이 아니라 조모의 재력에 의해 권세를 떨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A-2)의 「그의 아우를 불러 物部大臣이라 하였다」는 弟를 第로 기록한 것도 있기 때문에 弟가 第로 치환될 수 있다면, 「그 저택으로 인해 物部大臣이라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14]. 이루카가 거주하던 저택은 舊物部氏의 소령이었거나 物部氏의 재력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여겨진다. 소가씨가 모노노베씨의 소령을 소유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모노노베노 모리야 토멸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四天王寺御手印緣起」에 의하면, 율령제적인 용어이지만 몰관(沒官)된 모리야의 소령의 총수가 18萬6千8百9十代라고 하고[15], 위의 사료A-1에서는 소령(부민과 둔창)의 절반이 사천황사로 기진되었으며, 1만경은 모리야를 죽여 공을 세운 성덕태자의 도내리(舍人) 도미노오비토 이치이(迹見首赤檮)에게 사여하였다. 원래 頃은 지적단위로 100畝를 뜻하지만, 『일본서기』우라베(卜部)본에서는 頃의 훈이 ‘시로(代)’로 되어 있으므로 1만경은 1만대이다. 즉 성덕태자의 도내리(舍人) 도미노오비토 이치이(迹見首赤檮)가 받은 1만경은 모리야가 지녔던 소령의 극히 미미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사료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모리야의 구소령 중, 절반은 성덕태자가 소유하고, 나머지 절반은 소가노 우마코가 차지하였던 것이다.

---

12) 「時人相謂曰, 蘇我大臣之妻, 是物部守屋大連之妹也. 大臣妄用妻計, 而殺大連矣. 平亂之後, 於涉津國, 造四天王寺. 分大連奴半與宅, 爲大寺奴田莊. 以田一萬頃, 賜迹見首赤檮.<『日本書紀』崇峻天皇 卽位前紀 秋七月條.>

13) 「壬子。蘇我大臣蝦夷、緣病不朝。私授紫冠於子入鹿。擬大臣位。復呼其弟曰物部大臣。大臣之祖母物部弓削大連之妹。故因母財取威於世.」<『日本書紀』卷二十四 皇極天皇二年(643) 十月條>

14) 門脇禎二『人物叢書 蘇我蝦夷・入鹿』、吉川弘文館、1977, pp37~38.

15)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下』、岩波書店、1965, p165.

한편 이 시기의 대왕가는 흠명의 자식대의 대왕계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왕계승권을 둘러싸고 유력한 왕족이 분립하였으며, 권력이 분산되는 경향을 띠었다. 上宮王家와 押坂王家가 당시 대표적인 유력 왕족들이었다. 상궁왕가의 권력기반은 미부베(壬生部)와 둔창이었고, 압판왕가의 권력기반은 오시사카베(刑部・押坂部)와 둔창이었다.

B-1)온 나라의 백성으로 모두 180부곡을 징발하여, 쌍묘를 今來에 미리 만들었다. 하나를 대릉이라 한다. 대신의 묘로 하였다. 하나를 소릉이라 한다. 入鹿의 묘로 하였다. 죽은 후에 사람을 괴롭히지 말자고 한 일이었다. 다시 上宮의 乳部〔乳部, 이를 美父(미부)라고 한다〕의 백성을 모두 모아 묘소에 사역하였다. 때문에 上宮大娘姫王이 분개하고, 한탄하여 "蘇我臣은 국정을 전단하여 무례한 일이 많다.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 없고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 마음대로 封民을 사역시키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원한을 맺어 두 사람이 다 멸망하였다[16].

B-2)山背大兄은 말의 뼈를 집어 침전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妃와 자제들을 거느리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하여 膽駒山에 숨었다. 三輪文屋君, 舍人 田目連 및 그 딸, 菟田諸石, 伊勢阿部堅經이 측근으로 모셨다. 巨勢德太臣들은 斑鳩宮을 불태웠다. 재 가운데 뼈를 발견하고 왕이 죽었다고 잘못 생각하여 포위를 풀고 퇴거하였다. 이 때문에 山背大兄王들은 4・5일간 산에 머물러 있었으나 먹을 것이 없었다. 三輪文屋君이 권하여 "부디 深草屯倉에 가시고, 거기에서 말을 타고 동국으로 가셔서 乳部의 백성을 근거로 하여 군사를 일으켜 돌아와 싸웁시다.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17].

B-3)임오, 황태자가 사람을 시켜 주상하였다. "옛 천황들의 세상에서는 천하는 혼연히 하나가 되어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나뉘고 떨어져 나가 업〔국가의 업을 말한다〕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천황이신 우리 임금이 만민을 다스리는 세상에 와서는 천과 인이 상응하여 그 정사가 새롭습니다. 이 때문에 경하하고 정례하여 복주합니다. 현신으로서 팔도국을 다스리는 천황이 신에게 '諸臣, 連 및 伴造, 國造 소유의 옛 천황의 시대에 두었던 子代入部, 황자 등이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御名入部, 皇祖大兄〔彦人大兄을 말한다〕의 御名入部 및 그 둔창을 고대처럼 두어야 하는가 어떤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신은 삼가 詔한 바를 듣고,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 없고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로 천하를 합쳐 가지며, 만민을 부릴 사람은 오직 천황뿐입니다. 따로 入部 및 봉해진 백성을 仕丁에 골라 쓰는 것은 전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외에 사사롭게 쓸 염려가 있습니다. 고로 入部 524口, 屯倉 181所를 헌상합니다'라고 답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18].

---

16) 「是歲…又盡發舉國之民幷百八十部曲。預造雙墓於今來。一曰大陵。爲大臣墓。一曰小陵。爲入鹿臣墓。望死之後勿使勞人。更悉聚上宮乳部之民。〈乳部。此云美父。〉役使塋所。於是上宮大娘姫王發憤而歎曰。蘇我臣專擅國政。多行無禮。天無二日。國無二王。何由任意悉役封民。自茲結恨。遂取俱亡。」<『日本書紀』卷二十四 皇極天皇元年 (642) 十二月是歲條>

17) 「山背大兄仍取馬骨投置內寢。遂率其妃幷子弟等。得間逃出。隱膽駒山。三輪文屋君。舍人田目連及其女菟田諸石。伊勢阿部堅經從焉。巨勢德太臣等燒斑鳩宮。灰中見骨。誤謂王死。解圍退去。由是山背大兄王等。四五日間淹留於山。不得喫飮。三輪文屋君進而勸曰。請移向於深草屯倉。從茲乘馬。詣東國以乳部爲本。興師還戰。其勝必矣。」<『日本書紀』卷二十四 皇極天皇二年(643) 十一月條>

먼저 B-3의 사료는 대화개신의 제개혁이 발표된 뒤 3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개신정부의 개혁중의 하나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사료는 황태자(중대형황자)의 주청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주청문의 전반은 효덕천황이 당시 일반적으로 황실소유로 생각되었던 子代・名代 및 그에 부수되는 屯倉에 대해 개신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황태자에게 묻는 것이다. 주청문의 후반은 천황의 하문에 답한 황태자의 봉답과 그에 수반된 구체적인 조치로써 入部・屯倉의 헌상을 언급하였다. 薗田香融의 연구[19]에 의하면, 대화개신 이전의 황족들이 소유한 사유민(部民)과 둔창은 '諸臣, 連 및 伴造, 國造 소유의 옛 천황의 시대에 두었던 子代入部'와 둔창, '황자 등이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御名入部'와 둔창, '皇祖大兄(彦人大兄)의 御名入部'와 둔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子代入部'와 '御名入部'는 子代・名代를 지칭하는 것으로 후비의 생계는 생가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황족출신의 후비에게 주어진 사민이 名代이고, 황족출신의 후비가 황자를 낳을 경우, 모후의 명대는 확대되어 그 일부가 황자의 양육을 위한 子代로 충당되었다. 또 황자가 성장하여 황위를 계승하고, 혹은 황위계승이 예정되어 새롭게 궁을 세울 경우에는 그 궁의 이름을 관칭한 명대가 신설되었다. 두 번째의 '황자 등이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御名入部'가 바로 황자들의 명대에 해당한다. 세 번째의 '皇祖大兄(彦人大兄)의 御名入部'는 분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押坂彦人大兄皇子의 명대를 의미한다. 중대형황자에게 押坂彦人大兄皇子는 부계 쪽으로 조부, 모계 쪽으로 증조부에 해당한다. 즉 押坂彦人大兄皇子의 御名入部(명대)가 押坂部로써 그의 사후 부인인 糠手姫(田村皇女)에게 상속되고 아들 서명천황(田村皇子)를 거쳐 손자인 中大兄皇子에게 상속되었다고 한다[20].

한편 씨족출신의 후비는 생가가 책임지게 되고, 후비가 자녀를 출생하면, 그 양육도 모가의 임무가 되며 양육을 위해 씨족재산의 일부를 자대로 충당하게 된다. 이 경우 자대의 구체적인 명칭은 각 씨족의 우지(氏)를 관칭하게 되어 春日氏 출신은 春日部, 蘇我氏 출신은 蘇我部를 칭하게 된다. 이후 제씨족의 명대와 자대는 후비나 황자가 사거한 뒤 다시 모가로 귀속된다. 따라서 효덕천황이 하문한 첫 번째 '諸臣, 連 및 伴造, 國造 소유의 옛 천황의 시대에 두었던 子代入部'는 씨족출신의 황자에게 주어졌던 자대이고, 이 자대는 훗날 '諸臣, 連 및 伴造, 國造'에게 반환되었을 것이다.

---

18) 「壬午。皇太子使使奏請曰。昔在天皇等世。混齊天下而治。及逮于今。分離失業。〈謂國業也。〉屬天皇我皇可牧萬民之運。天人合應。厥政惟新。是故慶之尊之。頂戴伏奏。現爲明神御八嶋國天皇問於臣曰。其群臣連及伴造。國造所有昔在天皇曰所置子代入部。皇子等私有御名入部。皇祖大兄御名部入部。〈謂彦人大兄也。〉及其屯倉。猶如古代而置以不。臣卽恭承所詔。奉答而曰。天無雙日。國無二王。是故兼幷天下。可使萬民。唯天皇耳。別以入部及所封民簡死仕丁。從前處分。自餘以外。恐私駈役。故獻入部五百廿四口。屯倉一百八十一所」<『日本書紀』卷二十五 大化二年(646) 三月壬午條>

19) 薗田香融「皇祖大兄御名入部について-大化前代における皇室私有民の存在形態-」『日本書紀研究』三、塙書房、1968.

20) 薗田香融, 앞의 논문, 1968, pp194~200.

사료B-2는 상궁왕가의 권력기반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643년 겨울, 蘇我本宗家의 수장인 된 이루카(入鹿)는 蘇我출신 후비에게서 태어난 舒明의 황자인 후루히토노 오오에(古人大兄)를 천황으로 세우고자 상궁왕가의 토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斑鳩宮에서는 상궁왕가의 舍人들이 토멸군과 응전하였고 그 틈에 야마시로노 오오에(山背大兄)皇子는 후비, 자제 등을 거느리고 生駒山으로 피신하였다. 토멸군에 의해 斑駒宮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산속에 피신한 야마시로노 오오에 皇子에게 종자 미와노 우미야(三輪文屋)는 후카쿠사노 미야케(深草屯倉)을 거쳐 동국으로 나가 壬生部를 중심으로 군대를 편성하도록 권하였다. 여기에서 상궁왕가의 권력기반이 미부(壬生部)와 미야케(屯倉)임을 알 수 있다. 이 미부는 추고15년(607) 2월에 성덕태자를 위해 설치된 미부를 야마시로노 오오에가 상속한 것이거나 혹은 이것에 야마시로노 오오에의 이름[21]에서 확인되듯이 야마시로노 미코(山背王)가 大兄이 되었을 때 설치된 것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궁왕가의 미부 중에는 蘇我部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듯하다. 성덕태자의 모후가 蘇我氏 출신의 황녀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B-1에서는 소가노 에미시(蘇我蝦夷)가 상궁의 미부를 동원하여 자신과 아들 이루가의 묘를 조성하자 상궁가의 왕녀가 이를 원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에미시가 마음대로 차출해 사용한 상궁왕가의 미부는 소가씨가 흠명의 후비인 蘇我堅鹽媛・小姉君을 위해 설치한 명대로 출발하여 그 자녀들인 用明天皇와 穴穗部間人皇女를 거쳐 성덕태자에게 상속되었던 것이다. 에미시와 이루카는 상궁왕가의 미부에 포함되어 있던 소가씨 소령의 자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마음대로 부민을 차출하여 쌍묘조영에 사역하였던 것이다. 전통적인 상속원리에 따르면 씨족출신의 자대는 후비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임무를 마치면 당연히 후비의 생가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상속원리는 『일본서기』추고32년 10월조[22]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대신 우마코(馬子)는 만년에 심복인 阿曇連과 阿部臣摩呂를 추고천황에게 보내어 소가씨의 소령이었던 葛城縣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추고천황은 자신이 소가씨 출신이고 우마코가 외숙부이기는 하지만 황실령이 된 葛城縣의 반환은

---

21) 門脇禎二에 따르면, 천황호가 도입되기 전인 6~7세기 전반에는 대왕 · 대후 아래에 대왕의 후계자로서 대형이 위치하고, 대형은 황태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대형은 한시기에 복수의 대형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한명의 대형만 존재하였다. 즉 山背大兄과 古人大兄, 中大兄이 한시기에 대형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라 山背는 大兄田村皇子가 대왕이된 이후에 대형이 되었고, 古人皇子는 山背大兄王이 대형에서 폐위된 뒤에 대형이 된 것이다. 또한 중대형은 645년 황태자가 된 뒤에 대형이 되었다(門脇禎二, 앞의 책, 1977, pp13~14).

22) 「冬十月癸卯朔。大臣遣阿曇連。〈闕名。〉阿倍臣摩侶二臣。令奏天皇曰。葛城縣者。元臣之本居也。故因其縣爲姓名。是以冀之。常得其縣、以欲爲臣之封縣。於是。天皇詔曰。今朕則自蘇我出之。大臣亦爲朕舅也。故大臣之言。夜言矣夜不明。日言矣則日不晩。何辭不用。然今當朕之世。頓失是縣。後君曰。愚癡婦人臨天下。以頓亡其縣。豈獨朕不賢耶。大臣亦不忠。是後葉之惡名。則不聽。」<『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32年(624) 十月癸卯朔條>

후대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며 돌려주기를 거부하였다. 이는 葛城縣이 원래 소가씨의 소유였으나 소가씨 출신의 흠명후비였던 堅鹽媛과 그 소생들을 위한 자대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통적인 상속원리에서 씨족출신의 후비와 그 자손을 위해 설정된 자대·명대는 그 임무가 달성된 뒤 모후의 생가로 반환되어야 함이 마땅하였으나 대왕권이 강화되어가는 7세기가 되면 씨족의 소령이었던 자대·명대를 대왕가의 사유재산으로 합병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사료B-3은 대화개신정부가 대대적인 부민제의 개혁에 앞서 먼저 황실사유민과 둔창을 개혁하고자 하였고 당시 개신정부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중대형황자가 공지공민제를 실행하고자 효덕천황의 자문과 그에 대한 봉답이라는 형태를 빌려 자발적으로 황실사유민을 정부에 반환한 것이다. 물론 중대형황자가 황실사유민 전체를 반납한 것은 아니다. 사료B-3의 황태자 봉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지공민이 원칙이지만 예외로써 入部(壬生部)와 食封民은 종전의 규정대로 給主가 이를 仕丁으로 사역해도 되지만,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入部(部民)를 仕丁으로서 사역하려는 것은 공민제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황태자가 소유한 入部(名代)와 屯倉을 헌상한다고 하였다. 上宮王家·蘇我本宗家·古人大兄皇子가 잇달아 멸망하면서 이들의 막대한 재산은 최종적으로 왕권(중대형황자)에 집약되었고, 이 중심을 이룬 것이 부민과 둔창이었다. 이처럼 중대형황자는 종전보다 많은 명대·둔창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大化元年 황태자가 되면서 이와 별도로 새롭게 황태자의 식읍으로서 임생부를 받았다. 이것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入部」이다. 중대형황자는 천황의 자문을 계기로 종래부터 소유하던 入部·둔창 전부를 반환하게 되었지만 황태자 식읍으로서의 입부(임생부)는 개신정부의 신제도인 식봉에 준하는 것이므로 남겨둔 것이다.

이상, 효덕천황의 하문과 중대형황자의 봉답을 중심으로 당시 대왕가의 권력기반인 入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중대형황태자가 상속하여 반납한 입부는 15720호[23]와 181곳의 둔창이었다. 薗田香融에 의하면 당시 총 향수의 10분의 1을 상회하는 광대한 지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광대한 지역은 物部氏·上宮王家·蘇我本宗家·古人大兄皇子가 잇달아 멸망하면서 이들의 막대한 재산이 최종적으로 왕권에 집약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대왕가의 실질적인 권력은 부민과 둔창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며 부민과 둔창의 장악이야말로 야마토 수장들의 대표자에서 왕중의 왕인 대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6세기에 이루어진 흠명계대왕들은 부민과 둔창의 장악에 힘썼을 것이고, 부민과 둔창은 현실적인 의미를 넘어 대왕가가 지녀야 할 상징적인 의미로까지 확대되었을

23) 사료에서는 "入部 524口, 屯倉 181所를 헌상"한다고 하였는데, 입부 524구는 차출된 仕丁의 숫자이므로 대화개신 이전의 규정은 30호당 1인의 사정이 차출되었기 때문에 호수로 따지면 15720호의 규모가 된다.

것이다. 이를 통해 등장하는 것이 ‘임나=미야케’의식이고, 이는 실질적인 부와 둔창의 폐지와 함께 계승원리로서의 운동력을 잃게 된다. 이를테면, ‘임나=미야케’의식은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흠명계대왕들이 부와 둔창을 확장해가는 과정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확대・재생산되어 흠명계의 대왕계승자들에게 계승해야 할 책무가 되었으며, 대화개신의 부민제 폐지와 함께 운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의 대화2년 3월 중대형의 부민과 둔창의 헌상과 연동하여 대왕계승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던 ‘임나의 조’가 같은 해 3월에 폐지된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다음 사료들은 ‘임나=미야케’의식이 대왕계승원리의 하나로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C-1)이때 額田大中彦皇子가 倭의 둔전 및 둔창을 관장하려고 하여 그 둔전의 관장인 出雲臣의 선조 淤宇宿禰에게 “이 둔전은 본래 山守의 땅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 그대는 관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淤宇宿禰가 태자에게 여쭈었다. 태자가 “大鷦鷯尊에게 여쭈라”고 하였다. 淤宇宿禰가 大鷦鷯尊에게 “신에게 주어진 둔전을 대중언황자가 방해하여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대초려존이 倭直의 선조 麻呂에게 “왜의 둔전이 본래 山守의 땅이라 함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신은 모릅니다. 다만 신의 아우 吾子籠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때에 吾子籠은 韓國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24]

C-2)8월, 고구려・백제・신라・임나가 같이 사신을 보내고, 아울러 공물을 보내왔다[25]。

C-3)夏4월 戊寅朔 壬辰, 천황이 중병이 들었다. 황태자는 출타하고 없었다. 역마를 달려 불러들여, 누운 자리에서 손을 잡고 詔하여, “짐은 병이 중하다. 후의 일은 그대에게 맡긴다. 그대는 신라를 쳐서 임나를 세워라. 옛날처럼 두 나라가 친하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달에 천황은 드디어 내전에서 돌아가셨다[26].

C-4)천황은 임나의 부흥을 생각하고 坂田耳子王을 사자로 삼았다. 이때 천황과 대련이 갑자기 두창에 걸렸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는 것이 중지되었다. 橘豊日皇子에 詔하여, “先天皇의 칙을 배반하지 말고, 임나의 정사를 잘 보라”라고 말하였다.[27]

사료 C-1는 초기 미야케에 관한 기사로 응신천황 사후, 倭屯田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었을 때 韓國에 나가 있던 吾子籠에 의해 倭屯田은 수인천왕때 태자 大足彦尊(景行)에게

24) 『日本書紀』巻十一 人德天皇 즉위전기.

25)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並遣使獻, 並修貢職.」<『日本書紀』卷十九 欽明天皇元年(540) 八月條>

26) 「夏四月戊寅朔壬辰, 天皇寢疾不豫. 皇太子向外不在. 驛馬召到, 引入臥內, 執其手詔曰, 朕疾甚. 以後事屬汝. 汝須打新羅, 封建任那. 更造夫婦, 惟如舊曰, 死無恨之. 是月, 天皇遂崩于內寢. 時年若干.」<『日本書紀』卷十九 欽明天皇32年(571) 四月壬辰條>

27) 「天皇思建任那, 差坂田耳子王爲使. 屬此之時, 天皇與大連卒患於瘡. 故不果遣. 詔橘豐日皇子曰, 不可違背考天皇勅. 可勤修乎任那之政也.」<『日本書紀』卷二十 敏達天皇14年(585) 三月丙戌條)>

명하여 설정된 것으로 천황가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졌다. 처음에 천황가의 미야케로 설치되었던 倭屯田이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 소유가 불분명해지고, 이를 사적으로 소유하려는 황족이 등장하였다. 당시 야마토에서는 倭屯田의 설치유래와 소유권을 확실하게 밝혀줄 인물이 없었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나 韓國에 나가있던 吾子籠에 의해 미야케의 귀속이 정해졌다. 왜둔전의 屯田司조차도 몰랐던 미야케에 대한 정보를 韓國에 있던 吾子籠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야케의 설치와 한반도의 관계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사료 C-2은 사실적인 기사라기보다는 8세기 일본 귀족들의 미야케관이 투영된 것으로 한반도 제국을 야마토왕권의 內官家로 위치지우고 다 함께 사신과 공물을 보내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다. 미야케(둔창)는 벼를 수납하는 창고를 중심으로 경작지와 경작민이 부속되고, 지방호족과 조정에서 파견된 관인에 의해 경작되며 야마토왕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미야케는 屯倉 이외에도 屯家, 三宅, 屯宅, 御宅, 官家로도 표기되며 야마토왕권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國造등의 영내에 두었던 정치적・군사적 거점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사자가 다스린다. 야마토왕권은 국조의 영내에 미야케를 설치하고 평상시는 그 관리를 국조나 그 일족에게 맡겨두지만, 국조나 반조 등의 지방관에게 왕권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직무내용을 관찰할 때에는 미야케에 미코토모찌(宰=왕권의 사자)를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28].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야케는 부민제와 한 세트를 이루는 지배체제이다. 물론 이 사료는 후대의 부회로 보이지만, 문제는 야마토왕권이 '고구려・백제・신라・임나의 사신' 전체가 조공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였고 이것이 흠명천황 원년조에 사실로써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사료 C-3는 흠명이 임나부흥이라는 사업을 유조로 대왕위계승자인 태자에게 남긴 것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임나를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 대가야가 멸망하기까지 실질적인 임나부흥은 백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야마토왕권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임나문제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가야가 멸망한지 10여년이 지나서나  임나부흥을 유조로서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흥책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C-4에 나타나듯이 민달조를 거치면서 점점 대왕계승원리로 자리매김해가게 된다.

『일본서기』 사료의 신빙성과 함께 대왕계승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6세기이다. 6세기 초대 대왕인 계체의 경우, 부계세습제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의 창시로 조차 인식되기도 하였다[29]. 그러나 당시 야마토인들에게 그러한 인식은 존

28) 熊谷公男『日本の歷史03　大王から天皇へ』、講談社、2001.

29) 岡田英弘『日本史の誕生』筑摩書房,2008. 일명 '왕조교체설'로 1952년 水野祐가 제창한 崇神王朝,

재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로 연속된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30]. 이는 여계의 혈통을 통해 雄略의 대왕위가 단절 없이 연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31]. 웅략의 대왕위는 여계를 통해 欽明에 이르러 비로소 부계상속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6세기 부계에 의한 대왕계승권은 흠명에 이르러서야 완결성을 갖게 된다. 6세기대의 대왕위는 흠명의 자식들에게 계승되고 있고 7세기 추고조를 지나서야 손자대로 이양된다. 河內祥輔에 의하면 대왕위계승에는 대왕과 그 후계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하고, 대왕은 사망시까지 재위하며 양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대왕은 황녀, 혹은 황족 여성을 아내로 가진 예가 많은데, 황녀에게서 출생한 대왕은 자손에게 대왕위를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왕은 자신 1대에 한하고 있다. 즉 河內祥輔는 전자를 직계, 후자를 방계라 구분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은 모후의 출신성분이 대왕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대왕은 '마츠리고토'를 총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교를 담당하여 나라를 대표하고, 아침 일찍 태양이 떠오르기 이전에 정치를 행하였다[32]. 이에 비해 大后는 후세의 황후와 비교하면 보다 집정의 성격이 강했고, 내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대왕의 후계자 선정에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대왕계승자의 자격으로 모후의 출신성분이 중요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성인남성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흠명왕계가 성립되고 부자상속이 확립되면서 <계체-흠명-민달>로 이어지는 직계가 성립되었지만, 이와는 다른 원리로 대왕에게서 다음 대왕에게로 '임나문제'해결이라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즉 '임나문제'해결이라는 과제는 흠명에게서 민달로, 다시 민달에서 橘豊日皇子로 이어지는 모후의 출신성분과는 관계없이 야마토의 대왕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대왕계승 후계자의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 (2) 敏達朝의 임나문제

종래에는 임나문제와 관련된 사료 중, 임나사의 입조가 확인되는 사료만 '임나의 조'로 인정되었다. 특히 敏達朝는 민달4년(575) 6월조만이 '임나의 조'의 기원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임나의 조'가 역사적으로 실재했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기

---

応神王朝, 継体王朝의 3왕조설에서 시작하여 그 후 葛城王朝, 九州王朝, 吉備王國와 出雲王國 등이다.

30) 河內祥輔「六世紀型の皇統形成原理」『古代政治史における天皇制の論理』、吉川弘文館、1986.

31) 『일본서기』『고사기』의 계보에 따르면, 계체의 황후이자 흠명의 어머니인 手白香皇女는 仁賢과 春日大娘皇女 사이에서 태어났고, 春日大娘皇女는 雄略의 딸이므로 웅략의 혈통이 외손녀를 통해 欽明에게 전하고 있다. 즉 5세기대의 야마토왕권은 仁賢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계를 통해 欽明에 이르러 다시 남계로 전환하고 있다.

32) 「開皇二十年、倭王姓阿每、字多利思比孤、號阿輩雞彌、遣使詣闕。上令所司訪其風俗。使者言倭王以天爲兄、以日爲弟、天未明時出聽政、跏趺坐、日出便停理務、云委我弟」<『隋書』倭國傳>

기 때문이다. 물론 '임나의 조'가 임나문제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나 임나문제가 전적으로 야마토왕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료 상에 나타나는 모든 임나관련 사료는 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임나문제를 살피는데 있어 임나관련 사료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야마토왕권의 대왕권 계승문제와 관련하여 재검토하고자 한다.

D-1)2월 을축,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 예년보다 많았다. 천황은 아직도 신라가 임나를 세우지 않는 것을 보고 황자와 대신에게 조서하여 "임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였다[33].

D-2)4월 을유삭 경인, 吉士金子를 신라에 사자로 보냈다. 吉士木蓮子를 임나에 사자로 보냈다. 吉士譯語彦을 백제에 사자로 보냈다[34].

D-3)6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 예년보다 많았다. 아울러 다다라, 수나라, 화타, 발귀의 4읍의 조를 바쳤다[35].

종래 위의 6월 기사에 보이는 '4읍의 조'는 600년 이후 등장하는 '임나의 조'의 기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임나의 조'의 실체는 532년에 멸망한 임나의 본거지인 임나가라(남가라)의 '다다라, 수나라, 화타, 발귀' 4읍이고, 임나가 병합된 뒤에 신라 측에 의해 조의 진공이 약속되었거나, 575년에 이르러 약속된 것이라고 보았다[36]. 그런데 '사읍의 조'='임나의 조'가 사료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가야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13년이나 지나서이다. 만약 종래의 견해처럼 '임나의 조'가 신라·백제의 임나지역을 둘러싼 대립항쟁이나 그 영유권 등에 어떤 관련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영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혹은 '임나의 조'라는 것이 그런 일정한 효과를 기대하고 제공한 전략물자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575년 이전시기 즉 임나지역을 둘러싼 백제·신라 양국 사이의 대립항쟁이 가장 격렬했던 530년과 562년을 전후한 시기에 야마토 왕권에 '임나의 조'가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37]. 따라서 가야가 멸망한지 13년이나 지난 민달 4년에 와서야 '사읍의 조'='임나의 조'가 이루어졌다면 백제·신라 양국이 아니라 야마토 왕권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33) 「乙丑。百濟遣使進調。多益恒歲。天皇以新羅未建任那。詔皇子與大臣曰。莫懶懈於任那之事」<『日本書紀』卷二十 敏達天皇四年(575) 二月乙丑條>

34) 「夏四月乙酉朔庚寅。遣吉士金子使於新羅。吉士木蓮子使於任那。吉士譯語彦使於百濟」<『日本書紀』卷二十敏達天皇四年(575) 四月庚寅條>

35) 「六月。新羅遣使進調多。益常例。幷進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四邑之調」<『日本書紀』卷二十敏達天皇四年(575) 六月條>

36) 末松保和, 앞의 책, 吉川弘文館, 1949, pp193~195.

37) 나행주, 「신라와 임나의 조」『한일관계사연구』 29, 2008, p45.

위의 D-1)・2)기사는 6월 신라에 의한 '4읍의 조'의 진공에 앞서 이를 유발시키고자 내린 조서이고 이 조서의 수령인은 황자와 대신이다. 이로써 대왕에서 후계자로 계승되어야 할 임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 조서의 수령 주체는 황자로 대신은 황자를 도아 임나문제를 해결할 한반도의 상황에 정통한 蘇我馬子이다. 그렇다면 조서의 수령 주체인 황자는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당시 민달천황이 임나문제를 논의할 만한 황자의 후보자로는 민달천황의 황자인 押坂彦人大兄皇子와 민달의 이복동생인 橘豊日皇子(用明天皇)와 穴穗部皇子를 들 수 있다. 민달천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계이자 장자인 押坂彦人大兄皇子에게 임나문제를 논의하여 대왕위를 계승하고자 하였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당시 押坂彦人大兄皇子는 유소의 나이로 10세 전후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38]. 따라서 여기에서의 황자는 橘豊日皇子(用明天皇)나 穴穗部皇子 둘 중 하나일터인데, 양자 모두 蘇我氏 출신의 후비 태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임나문제가 대신 蘇我馬子와 함께 상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蘇我氏 출신의 두 황자 중 한명일 가능이 높다. 당시 유력한 대왕계승 후보자로 이 두 명이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민달조 후반기 조정의 대세는 橘豊日皇子에게로 기울었던 것 같다. 민달이 죽음 직전에 임나부흥이라는 유조를 橘豊日皇子에게 부탁함으로써 橘豊日皇子이 정식적인 후계자가 된 반면, 유력 계승 후보였던 穴穗部皇子는 민달천황의 殯庭에서 대왕계승위를 두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 그러므로 민달이 임나문제를 상의한 황자가 두 황자 중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민달 4년의 임나사 파견과 '4현의 조'의 진공은 민달이 즉위한 이후, 흠명천황으로부터 받은 유조를 실천함으로써 흠명에 이어 직계천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가야멸망 후, 등장하는 임나문제는 단순한 사신의 왕래나 조공의 문제가 아니라 야마토 왕권가에 있어서 누가 대왕 계승에 적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즉 누가 <계체-흠명-민달>을 잇는 직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천명하는 것이다. 다음은 임나문제에서 제외 되는 사료이나 역시 임나에 관한 것이 언급되고 있고, 역사적 실재성을 떠나 야마토왕권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나문제를 살핌에 있어 그 어느 것도 도외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38) 민달4년 정월조에는 息長眞首姬가 皇后에 봉해지는 기사와 함께 소생인 押坂彦人大兄皇子가 기술되어 있다. 息長眞首姬의 입비는 민달의 즉위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押坂彦人大兄皇子도 즉위 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민달 4년 당시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년후인 민달천황 14년(585)에는 숙부인 橘豊日皇子가 대왕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아 押坂彦人大兄皇子는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押坂彦人大兄皇子의 아들인 서명천황은 「皇胤紹運錄」과 「一代要紀」에 의하면 49세에 붕어하였다고 하므로, 推古元年(593)년을 전후하여 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押坂彦人大兄皇子와 糠手姬 사이에는 서명천황의 동생들도 태어난 것으로 보아 押坂彦人大兄皇子는 추고천황 초기에는 존명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E-1)12년 추 7월 정유삭, 조하여 “나의 선고천황의 세에 신라는 내관가의 나라를 멸하였다〔天國排開廣庭天皇 23년에 임나는 신라에게 멸망당하였다. 고로 신라는 내관가를 멸하였다라고 하였다〕. 선고천황은 임나를 회복하려고 도모하셨다.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붕어하셨다. 그러므로 짐은 위대한 계획을 도와서 임나를 부흥시키려고 생각한다. 지금 백제에 있는 火의 위북국조 아리사등의 아들 달솔 일라가 현명하고 용기가 있다. 그래서 짐이 그 사람과 계획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기국조압승과 길비해부직우도를 백제에 보내 불렀다[39].

E-2)13년 춘 2월 계사삭 경자, 難波吉士木蓮子를 신라로 보냈다. 드디어 임나에 갔다[40].

위의 사료 E-1)는 일라의 소환과 관련된 전승이다. 그런데 일라를 백제로부터 불러들인 이유가 임나의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단순히 인물 전승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일라와 임나부흥이 연관되어 기술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일라가 火國 韋北의 國造인 刑部靫部阿利斯登의 아들로 刑部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라는 肥後國 韋北郡에 위치한 刑部(오시사카베=押坂部)의 부민으로 押坂彦人大兄皇子와 사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달천황은 아직 어리지만 자신이 재위해 있는 동안 충분이 장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장자 押坂彦人大兄皇子를 대왕 계승 후보자로서 삼고자皇子와 관련이 깊은 한반도 사정에 정통한 일라는 소환하여 임나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사료 E-2)는 민달 12년 유력 대왕 계승 후보자가 된 押坂彦人大兄皇子를 중심으로 한 임나문제 제기로 이듬해 임나사의 파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임나사 파견 이후 ‘임나의 조’와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押坂彦人大兄皇子가 정식적인 후계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한 듯 하다.

F)14년 3월 병술, 천황은 임나의 부흥을 생각하고 坂田耳子王을 사자로 삼았다. 이때 천황과 대련이 갑자기 두창에 걸렸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는 것이 중지되었다. 橘豊日皇子에 조하여 “先天皇의 칙을 배반하지 말고, 임나의 정사를 잘 보라”라고 말하였다.

위의 사료는 민달천황을 중심으로 한 物部弓削守屋과 中臣勝海에 의한 폐불사건이 중심을 이룬 기사 속에 돌연히 등장한다. 특히 천황은 전혀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임나의 부흥을 생각하고 坂田耳子王을 사자로 삼고 있는데 坂田耳子王은 흠명32년(571)

39) 「十二年秋七月丁酉朔。詔曰。屬我先考天皇之世。新羅滅內官家之國。〈天國排開廣庭天皇廿三年任那爲新羅所滅。故云新羅滅我內官家也。〉先考天皇謀復任那。不果而崩。不成其志。是以朕當奉助神謀復興任那。今在百濟火葦北國造阿利斯登子。達率日羅賢而有勇。故朕欲與其人相計。乃遣紀國造押勝與吉備海部直羽嶋喚於百濟」<『日本書紀』卷二十 敏達天皇十二年(583) 七月丁酉朔條>

40) 「十三年春二月癸巳朔庚子。遣難波吉士木蓮子使於新羅。遂之任那」<『日本書紀』卷二十 敏達天皇十三年(584) 二月庚子條>

에도 임나멸망을 책망하기 위해 신라에 사신으로 간 인물이다. 민달14년의 坂田耳子王의 사신파견과 관련된 일화의 구조는 흠명32년조의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에 이는 임나문제와 관련되 흠명천황의 유조를 강조하기 위한『일본서기』찬자의 의도적인 기입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해 민달천황이 사거하자 당시의 대신들은 민달의 직계로서 橘豊日皇子를 선택하였고, 대왕 계승자는 직계의 자격인 임나문제 또한 계승하였다.

### (3) 用明朝・崇峻朝의 임나문제

민달천황의 사거 직전, 야마토 조정의 중의는 민달천황의 장자 押坂彦人大兄皇子가 아닌 민달천황의 이복동생인 橘豊日皇子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야마토 조정의 중의에 승복하지 못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橘豊日皇子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유력한 계승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穴穗部皇子였다. 用明元年(586)의 기사에 의하면, 穴穗部皇子는 민달천황의 황후였던 炊屋姬皇后를 겁탈하고자 민달천황의 殯宮에 난입하려고 하였으나 민달천황의 총신 三輪君逆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三輪君逆의 무례함을 이유로 대신과 대련에게 三輪君逆의 제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대련 物部守屋을 시켜 三輪君逆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민달천황의 빈례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41], 엄연히 새로운 천황이 즉위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穴穗部皇子의 참월된 행동이 용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용명천황의 정권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정권의 안정은 용명천황이 <계체-흠명-민달>로 이어지는 직계임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이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임나문제의 제기와 해결이었다. 임나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즉위하였더라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다른 유력한 계승 후계자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穴穗部皇子는 三輪君逆의 제거를 物部守屋에게 의뢰했고, 穴穗部皇子가 이를 응원하고자 物部守屋에게 가려고 하자 대신 蘇我馬子는 “왕 될 사람은 죄있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는다. 스스로 가면 안된다”[42]고 간하였다. 蘇我馬子는 穴穗部皇子가 전 천황의 총신인 三輪君逆의 제거에 직접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간하면서 왕자로서의 처세를 언급하고 있다.

---

41) 대화개신 이전에는 전 대왕의 殯禮가 진행되는 사이에 대왕 계승 후계자들간의 정쟁이 가장 첨예하였고, 후계자가 정해지면 전 대왕의 빈례가 끝난다고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5년간이나 지속되는 천황의 빈례도 존재하는데, 이는 빈례가 행해지는 동안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정권이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和田萃、「殯の基礎的考察」『日本古代の儀礼と祭祀・信仰』上、塙書房、1995、7~88.)

42) 「蘇我馬子宿禰外聞斯計。詣皇子所。卽逢門底。〈謂皇子家門也。〉將之大連所。時諫曰。王者不近刑人。不可自往。皇子不聽而行。馬子宿禰卽便隨去。到於磐余〈行至於池邊也。〉而切諫之。皇子乃從諫止」<『日本書紀』卷二十一 用明天皇元年(586) 五月條>

이때까지도 穴穗部皇子는 유력한 대왕 계승 후보자로서 유효했던 것이다. 민달천황의 빈궁에 난입하여 전 황후를 겁탈하려고 한 것도 당시 황후(대후)가 가진 대왕계승자의 선택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穴穗部皇子가 物部守屋의 편에 서는 것을 확인한 대신 蘇我馬子는 다음 대왕 계승 후보자로서 穴穗部皇子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용명2년(587) 4월 2일, 新嘗을 위해 이와레의 하천에 행행했던 천황은 병을 얻어 환궁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蘇我・物部 양씨의 숙명적인 대립은 더욱 긴박해 지고 대련 物部守屋과 그에게 동조하는 中臣勝海는 자택에서 병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준비한다.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蘇我馬子의 의중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炊屋姬皇后(額部田皇女, 추고천황)는 竹田皇子를, 物部守屋은 彦人大兄皇子를 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물부수옥은 穴穗部皇子의 명령대로 三輪君逆을 제거했지만 穴穗部皇子와 뜻을 같이 한 것 같지는 않다. 용명이 병에 들어 불교귀의를 이야기하자 穴穗部皇子가 법사를 데리고 내전에 들어왔고 이를 본 물부수옥이 크게 노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 물부수옥에게 군신들에 의한 물부씨 토멸의 사실을 알려준 것도 押坂部史毛屎라는 押坂部의 씨를 가진 인물이다. 물부수옥에 동조한 중신승해가 자신의 집에서 태자 彦人大兄皇子와 竹田皇子의 상을 만들어 저주했다가 사태가 불리해지자 彦人大兄皇子에게 의탁하였다는 기록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彦人大兄皇子가 태자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炊屋姬皇后(추고천황)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장남인 彦人大兄皇子보다는 자신의 아들인 竹田皇子를 다음 천황으로 만들고 싶었으나 竹田皇子가 유소하기 때문에 蘇我馬子와의 합의하에 중계적인 성격을 지닌 천황으로서 泊瀨部皇子를 택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대왕계승자 선정에 황후(대후)의 발언권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연령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竹田皇子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彦人大兄皇子보다는 죽전황자가 성장할 때까지 그 공백기를 매워줄 천황으로서 배다른 형제인 泊瀨部皇子(숭준천황)를 선택한 것이었다. 용명천황은 민달을 이어 새로운 천황이 되었으나 대왕계승자로서의 자격요건(임나문제)을 해결하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짧은 재위를 마감한다.

용명을 이어 대왕 계승자가 된 숭준천황에게 요구된 것은 중계자적인 위치였다. 천황이 즉위하면 가까운 시기에 후비책봉이 이루어지지만 이례적으로 숭준조에는 후비책봉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숭준이 <계체-흠명-민달-용명>으로 이어지는 직계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蘇我馬子에게 살해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왕계승원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후계자가 성인이라는 점과 모후와 왕후가 황녀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43]. 모후와 왕후의 자격요건이 중요시 된 이유는 이들이 천황사후 후계자 선정에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

43) 河內祥輔, 앞의 논문, 吉川弘文館, 1986, pp29~66.

문이다. 당시 炊屋姬皇后(추고천황)는 민달천황의 부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민달4년(575) 정월조에는 彦人大兄皇子의 모후이자 황족출신인 息長眞手王[44]의 딸 廣姬가 立皇后되었다고 기록하지만, 廣姬의 계보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또 한명의 황후인 추고천황은 『일본서기』추고즉위전기에 의하면, 18살에 민달의 황후가 되어 628년 75세의 나이로 사거하였기 때문에 추고천황의 立皇后는 廣姬보다 빠른 571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서기』민달기에서는 廣姬가 사거한 이듬해인 민달 5년(576)에 추고천황을 황후로 삼았다고 한다. 혈통적으로 廣姬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추고천황을 제치고 廣姬가 立皇后되었다고는 믿기 어렵다. 아마도 이러한 부정합적인 기사는 후대 彦人大兄皇子系의 천지・천무조에 이루어진 창작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숭준조의 가장 유력한 대왕 계승 후보자는 혈통적으로 가장 우위에 서 있던 추고천황의 아들 竹田皇子가 된다. 그러나 竹田皇子의 활동은 용명2년의 物部守屋 토멸군 참가를 마지막으로 역사상 자취를 감춘다. 추고36년(628) 추고천황이 죽음 직전에 자신을 竹田皇子의 능에 장사해주기를 유조로 남기고 있어 숭준천황 초기에 요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1후보였던 竹田皇子의 죽음으로 인해 당시 유력한 대왕계승 후보자는 彦人大兄皇子와 聖德太子 두 사람이 남게 된다. 이는 대왕계승의 직계인 敏達과 그의 정비였던 炊屋姬皇后 사이에서 태어난 황녀들의 남편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달5년조에 의하면, 민달과 炊屋姬皇后 사이에는 2남 5년의 자녀가 있었다[45]. 『고사기』는 황자녀의 이름과 기재순서가 『일본서기』와 동일하지만 葛城王이라는 왕족이 한명 더 추가되어 있다. 같은 부모일 경우, 황자녀의 기재순서는 태어난 순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첫째 딸 菟道貝鮹皇女는 '東宮 聖德', 둘째 딸 小墾田皇女는 '彦人大兄皇子', 넷째 딸 田眼皇女는 '舒明天皇'과 각각 결혼하였다. 민달과 炊屋姬皇后 사이에 태어난 황녀들은 다음 대왕위계승 후보자에게는 최상의 배필이었을 것이고, 대왕가 또한 가능한 한 대왕위계승 후보자들에게 딸들을 시집보냄으로써 변동 많은 앞날의 정세에 대응하고자 하

44) 薗田香融에 따르면, 息長氏는 5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몇 명의 후비를 배출하였지만 葛城氏・和珥氏・蘇我氏 와 같이 강대한 외척씨족으로서 발전하는 길을 가지안고 오히려 황실 내부에서 황실씨족으로 존재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息長氏만의 씨족으로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은 진정한 황족이 아닌 준황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彦人大兄皇子의 모친 廣姬는 황족이 아닌 준황족에 속하는 인물로 그 가계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炊屋姬皇后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그 소생 또한 현격한 차가 있었다고 여겨진다(薗田香融, 앞의 논문, 1968, pp198~200).

45) 『일본서기』민달5년 3월조에 민달과 炊屋姬皇后(추고)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1.菟道貝鮹皇女, 2.竹田皇子, 3.小墾田皇女, 4.鸕鷀守皇女, 5.尾張皇子, 6.田眼皇女, 7.櫻井弓張皇女이고, 『고사기』敏達天皇段에서는 1.靜貝王(貝鮹王), 2.竹田王(小貝王), 3.小治田王, 4.葛城王, 5.宇毛理王, 6.小張王, 7.多米王, 8.櫻井玄王으로 나타난다.

였을 것이다. 한편『고사기』에 따르면 막내딸인 櫻井玄王(櫻井弓張皇女)는 '彦人大兄皇子'와 결혼하여 山代王과 笠縫王을 낳았다고 하지만 손위 자매인 田眼皇女가 '彦人大兄皇子'의 아들인 '서명천황'과 결혼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고사기』가 小墾田皇女를 櫻井玄王으로 오인한 듯하다. 넷째 딸 田眼皇女와 서명천황과의 결혼은 추고조말기 즉 성덕태자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竹田皇子라는 직계 대왕계승 후보자를 상실한 추고천황(炊屋姬皇后)과 소가마자는 다음 후보로 추고의 첫째 사위이자 소가계의 핏줄인 성덕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중계자로서의 역할만이 기대되었던 숭준이 대왕계승원리에 직계라는 정통성을 부여하는 임나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蘇我馬子에 의한 천황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 G-1) 4년 추 8월 경술삭, 천황이 군신에게 詔하여 "짐은 임나를 세우려고 생각한다. 경들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군신이 주하여 "임나의 관가를 세우는 것은 다 폐하의 생각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46].
>
> G-2) 4년 동 11월 기묘삭 임오, 紀男麻呂宿禰, 巨勢猿臣, 大伴囓連, 葛城烏奈良臣을 대장군으로 하였다. 각 씨족의 臣과 連을 비장, 부대로 하여 2만여의 군사를 거느리고 筑紫로 출병하였다. 吉士金을 신라로 보내고 吉士木蓮子를 임나로 보내서 임나의 일을 묻게 하였다.[47]

일반적으로 사료G-2) 숭준4년의 신라출병계획은 임나문제와는 상관없이 蘇我氏의 정치적 이해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筑紫로의 출병은 蘇我氏가 주도하는 숭준천황의 살해라는 내란을 전제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48]. 그러나 신라출병계획은 임나문제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筑紫까지 출병하여 신라・임나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이는 숭준이 단순한 중계자로서의 자격에 머물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대왕계승의 직계로 편입시키고자 일으킨 임나부흥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炊屋姬皇后(추고천황)와 소가마자는 이미 다음 대왕 계승 후계자로서 용명의 아들 성덕을 새로운 직계로서 선택하였고 이를 위해 炊屋姬皇后가 추고천황으로 즉위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

46) 「秋八月庚戌朔。天皇詔群臣曰。朕思欲建任那。卿等何如。羣臣奏言。可建任那官家。皆同陛下所詔」<『日本書紀』卷二十一 崇峻天皇四年(591) 八月庚戌朔條>

47) 「冬十一月己卯朔壬午。差紀男麻呂宿禰。巨勢巨比良夫。狹臣。大伴囓連。葛城烏奈良臣。爲大將軍率氏氏臣連爲裨將部隊。領二萬餘軍。出居筑紫。遣吉士金於新羅。遣吉士木蓮子於任那。問任那事」<『日本書紀』卷二十一 崇峻天皇四年(591)十一月壬午條>

48) 山尾幸久、『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1989、18~500.

### (4) 推古朝의 임나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대왕계승원리에 의해 <계체-흠명-민달>로 이어지는 직계라인은 민달과 炊屋姬皇后(額部田皇女, 추고천황) 사이에서 태어난 竹田皇子로 계승되어야 했지만 민달 사후는 竹田의 미성년으로 인해 방계인 用明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용명천황 이후, 가장 유력한 계승 후보였던 竹田의 요절로 인해 대왕계승에 지장이 생겼고, 왕권 주변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용명의 장자인 廐戶皇子(성덕태자)를 직계후보로 하는 것이었다. 廐戶皇子(성덕태자)가 성년이 되기까지 그 사이를 매워줄 중계적인 천황으로는 崇峻을 내세웠지만, 숭준이 직계로의 전환을 시도하다 蘇我馬子에게 암살당하고 숭준을 대신해 중계적 천황으로서 炊屋姬皇后(額部田皇女)가 추고천황으로 즉위하였다. 그리고 직계의 지위를 공고이하기 위해 廐戶皇子에게는 태자로서의 경험과 실적을 쌓게 하고 다음 세대의 준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추고조의 정권중추부는 <추고천황-성덕태자-소가마자>라고 하는 蘇我色이 짙은 인물들로 이루어졌다. 추고조의 임나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1) 8년 춘 2월, 신라와 임나가 서로 공격하였다. 천황은 임나를 도우려고 하였다. 이 해, 境部臣을 대장군에 임명하였다. 穗積臣을 부장군으로 하였다〔둘 다 이름이 빠졌다〕. 만여의 군사를 거느리고, 임나를 위해 신라를 쳤다. 신라를 목표로 하여 배로 갔다. 신라에 도착하여 다섯 성을 공략하였다. 신라왕이 두려워하여 백기를 들고 장군의 기 아래 와서 섰다. 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迦羅, 阿羅羅의 6성을 떼어, 복종하려고 청하였다. 때에 장군은 의논한 후, "신라는 죄를 알고 복종하였다. 강제로 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상주하였다. 천황은 또 難波吉師神을 신라에 보냈다. 또 難波吉士木蓮子를 임나에 보냈다. 그리고 아울러 사정을 살피게 하였다. 신라와 임나 두 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상주문을 올려, "하늘에는 신이 있습니다. 땅에는 천황이 있습니다. 이 두 신을 제하고는 어디에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서로 싸우는 것을 그치겠습니다. 또 배의 키가 마르지 않도록 해마다 조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장군을 소환하였다. 장군들이 신라로부터 돌아왔다. 그러나 신라는 또 임나를 침범하였다[49](600년).

H-2)3월 갑신삭 무자, 大伴連囓을 고구려에 보내고, 坂本臣糠手를 백제로 보내어 "속히 임나를 도우라"고 하였다. …冬 11월 경진삭 갑신, 신라를 칠 것을 의논하였다[50](601년).

---

49) 「八年春二月。新羅與任那相攻。天皇欲救任那。是歲。命境部臣爲大將軍。以穗積臣爲副將軍〈並闕名。〉則將萬餘衆。爲任那擊新羅。於是。直指新羅。於是直指新羅以泛海往之。乃到于新羅攻五城而拔。於是。新羅王惶之。擧白旗到于將軍之麾下。而立割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加羅。阿羅々六城以請服。時將軍共議曰。新羅知罪服之。强擊不可。則奏上。爰天皇更遣難波吉師神於新羅。復遣難波吉士木蓮子於任那。並檢校事狀。爰新羅任那王二國遣使貢調。仍奏表之曰。天上有神。地有天皇。除是二神。何亦有畏乎。自今以後。不有相攻。且不乾般柁。每歲必朝。則遣使以召還將軍。將軍等至自新羅。弭新羅亦侵任那」<『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八年條(600)>

H-3)10년 춘 2월 기유삭, 來目皇子를 신라를 칠 장군으로 삼았다. 여러 神部 및 국조, 반조들을 합해서 군사 25,000인을 주었다. 夏4월 무신삭, 장군 來目皇子가 筑紫에 도착하였다. 다시 나아가 島郡에 주둔하여 선박을 모으고 군량을 날랐다. 6월 정미삭 기유, 大伴連囓, 坂本臣糠手가 같이 백제에서 돌아왔다. 이때 來目皇子가 와병하여 정벌에 나갈 수 없었다[51](602년).

H-4)11년 춘 2월 계유삭 병자, 來目皇子가 筑紫에서 薨하였다. 곧 역에서 역으로 급사를 보내 상주하였다. 이에 천황은 듣고서 크게 놀라 황태자 및 蘇我大臣을 불러 "신라를 칠 대장군, 來目皇子가 薨하였다. 대사에 임하여 후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몹시 슬프다"라고 하였다. …夏4월 임신삭, 다시 來目皇子의 형 當摩皇子를 신라를 칠 장군으로 하였다. 秋7월 신축삭 계묘, 當摩皇子가 難波에서 발선하였다. 병오, 當摩皇子가 播磨에 도착하였다. 따라왔던 처 舍人姬王이 赤石에서 薨하였다. 그래서 赤石의 檜笠岡 위에서 장사지냈다. 그리고 當摩皇子가 돌아왔다. 결국 정벌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52](603년).

H-5)추 7월, 신라의 사신 沙喙部 奈末竹世士와 임나의 사신 喙部 大舍 首智買가 筑紫에 왔다[53](610년).

H-6)추 8월, 신라가 沙喙部 奈末 北叱智를 보내고, 임나가 習部 大舍 親智周智를 보내어 같이 조공하였다[54](611년).

H-7)31년 추 7월, 신라가 대사 奈末 智洗爾를 보내고, 임나는 達率 奈末智를 보내 같이 내조하였다[55].

H-8)이 해에 신라가 임나를 쳤다. 임나는 신라에 복종하였다. 천황은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대신과 의논하고 여러 경들에게 물었다. …그런데 磐金이 돌아오기 전에, 그해에 大德 境部臣雄摩侶, 小德 中臣連國을 대장군으로 하고, 小德 河邊臣禰受, 小德 物部依網連乙等, 小德 波多臣廣庭, 小德 近江脚身臣飯蓋, 小德 平群臣宇志, 小德 大伴連〔이름이 빠졌다〕, 小德 大宅臣軍을 부장군으로 하였다.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정벌하였다[56].

---

50) 「三月甲申朔戊子。遣大伴連囓于高麗。遣坂本臣糠手于百濟。以詔之曰。急救任那。…冬十一月庚辰朔甲申。議政新羅」<『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九年條(601)>

51) 「十年春二月己酉朔。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授諸神部及國造。伴造等。幷軍衆二萬五千人。夏四月戊申朔。將軍來目皇子到于筑紫。乃進屯嶋郡。而聚船舶運軍粮。六月丁未朔己酉。大伴連囓。坂本臣糖手。共至自百濟。是時。來目皇子臥病以不果征討」<『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十年條 (602)>

52) 「十一年春二月癸酉朔丙子。來目皇子薨於筑紫。仍驛使以奏上。爰天皇聞之大驚。則召皇太子。蘇我大臣。謂之曰。征新羅大將軍來目皇子薨之。其臨大事而不遂矣。甚悲乎。仍殯于周芳娑婆。乃遣土師連猪手令掌殯事。故猪手連之孫曰娑婆連。其是之緣也。後葬於河內埴生山岡上。夏四月壬申朔。更以來目皇子之兄當麻皇子爲征新羅將軍。秋七月辛丑朔癸卯。當麻皇子自難波發船。丙午。當麻皇子到播磨。時從妻舍人姬王薨於赤石。仍葬于赤石檜笠岡上。乃當麻皇子返之。遂不征討」<『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十一年條(603)>

53) 「秋七月。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士。與任那使人喙部大舍首智買。到于筑紫」<『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十八年(610)七月條>

54) 「秋八月。新羅遣沙喙部奈末北叱智。任那遣習部大舍親智周智。共朝貢」<『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十九年(611)八月條>

55) 「卅一年秋七月。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任那遣達率奈末智。並來朝」<『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三十一年(623)七月條>

56) 「是歲。新羅伐任那。任那附新羅。於是天皇將討新羅。謀及大臣。詢于群卿。…然磐金等未及于還。

위의 사료 중, 논자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H-1)・5)・6)・7)의 네 사료만이 임나문제의 관련 사료로서 인정되고 있다. 사료 H-1)에 대한 학계의 주된 견해는 신라가 야마토 조정에 바친 6성이 금관・안라의 할양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계체 23년 4월조의 연장선에 있고 그것이 확대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사료 H-1)로 인해 촉발되는 H-2)・3)・4)의 신라정벌기사도 당연히 그 실재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임나문제의 기본사료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위의 사료들을 그냥 폐기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야마토 조정의 대왕위 계승권의 주요한 인자로 인식한다면 사료로서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사료 H-1)은 일본역사상 최초로 즉위한 여성천황인 추고천황의 대왕계승과 관련된 기사이다. 비록 새롭게 직계로 선출된 廐戸皇子에게 태자로서의 경험과 실적을 쌓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중계적 천황의 역할을 하게 된 추고천황이지만 6세기 이래 형성된 전통적인 대왕계승원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실재성은 의문이지만 추고8년 2월의 신라 항복과 6성의 할양은 추고천황의 대왕계승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의 항복과 6성의 할양 이후로 등장하는 일련의 신라정벌 기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이는 신라정토전쟁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료 H-2)・3)・4)의 신라정벌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성덕태자의 근친자들이었다. 특히 신라정벌의 선봉장인 장군에는 성덕태자의 동모제인 來目皇子와 當摩皇子가 임명되었다. 이는 당시 <용명-성덕>라는 새로운 직계라인의 성립으로 인해 성덕태자의 대왕계승의 명분을 위해 범용명계가 주축이 되어 행한 임나부흥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용명계'의 임나부흥책이 실시되기 한 달 전에 성덕태자의 정치적 거점이 될 이카루가 궁실이 조영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57]. 즉 『일본서기』는 성덕태자가 추고천황의 즉위와 함께 바로 황태자가 된 듯이 기록하고 있지만 고대의 그 어떤 천황도 즉위와 함께 바로 황태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성덕태자가 본격적으로 황태자의 위치 혹은 치자로서의 위치에 오른 것은 바로 이카루가궁을 조영하고, 태자의 근친자들에 의해 임나부흥책이 이루어지던 추고9년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고9년(601)에 시작된 성덕태자의 임나부흥을 위한 노력은 H-5)・6)와 같이 추고18・19년(610・611)의 신라・임나사가 來日로 귀결된다. 이처럼 성덕태자는 차기대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태자로서 경험과 실적을 쌓는 한편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인 임나문제

---

卽年以大德境部臣雄摩侶。小德中臣連國爲大將軍。以小德河邊臣禰受。小德物部依網連乙等。小德波多臣廣庭。小德近江脚身臣飯蓋。小德平群臣宇志。小德大伴連〔闕名〕小德大宅臣軍爲副將軍。率數萬衆以征討新羅…」<『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三十一年條(623)>

57) 『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九年 春二月條.

도 해결을 보았다. 그렇지만 추고29년(621)년 2월 갑작스런 성덕태자의 죽음으로 인해 성덕태자를 새로운 직계로 세우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58]. 그렇다면 사료 H-8의 신라정벌계획은 성덕태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덕태자의 후계자 혹은 추고의 후계자를 위한 임나정책일 것이다. 이로써 추고조의 <추고천황-성덕태자-소아마자>라는 정치중추부는 성덕태자의 탈락과 함께 <추고천황-소아마자>의 이원체제가 되었다. 따라서 사료 H-8의 신라정벌계획은 추고천황과 소아마자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암시한다. 추고천황의 경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던 것[59]으로 보아 H-8의 신라정벌계획은 소아마자가 주축인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추고 31년의 신라정벌계획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9명의 대장군과 부장군 중 소아씨 일족이 5명이나 되며, 대장군중의 한명인 境部臣雄摩呂는 추고천황이 사망한 이후 조정의 중론이 彦人大兄皇子의 아들인 田村皇子와 성덕태자의 아들인 山背大兄王으로 나뉠 때 山背大兄王의 편에 섰다가 멸망한 境部摩理勢臣과 동일인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H-8의 신라정벌계획은 山背大兄王을 차기 대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대왕이 되기도 전에 경험과 실적이 필요했던 것은 山背大兄王이 지닌 혈통적인 약점 때문일 것이다. 山背大兄王는 母가 황녀가 아닌 蘇我氏 출신이었고, 아버지인 성덕태자 또한 정식적인 대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계인 소아씨의 도움으로 출생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5) 舒明・皇極・孝德朝의 임나문제

성덕태자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대왕위 직계라인에 공백이 생기게 되자 추고천황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반면, 소아마자는 소아의 혈통을 이어받은 성덕태자의 아들인 山背大兄王을 지지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추고24년에 소아마자가 사망하자 대왕위계승을 둘러싼 조정중론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소아마자를 이어 大臣이 된 蘇我蝦夷의 견해가 아버지와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蘇我蝦夷는 山背大兄王이 아니라 자신의 누이 蘇我法提郎女와 결혼하여 제1자 古人大兄皇子를 얻은 田村皇子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는 이미 성년이 되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고, '上宮王家'의 수장이 된 山背大兄王 대신에 조카인 古人大兄皇子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고대의 관습상, 결혼 후 생기는 아이의 양육은 외가의 몫으로 외조부나 외숙부와의 관계가 밀접했던 것에 기인한다. 田村皇子는 황족이기는 하지만 山背大兄王보다 혈통 상 월등한 조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彦人大兄皇子라는 점에서 대왕이 되지 못했던 인물이

58) <天壽國繡帳>에는 성덕태자가 추고30년(622) 2월 22일, <법륭사금당석가상>에는 추고30년 정월 22일, <법기사탑로반>에는 추고30년 2월 22일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성덕태자의 죽음은 『일본서기』가 전하는 추고29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9) 『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三十六年 三月條와 『日本書紀』卷二十三 舒明天皇 卽位前記.

고, 어머니 또한 민달천황의 황녀이지만 외조모가 氏女로 山背大兄王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두 명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왕위계승 후보자가 존재할 때 조정은 이들을 둘러싸고 이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열은 현천황인 추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추고는 죽는 그 순간까지 후계자의 선택을 미루었다. 소아마자의 사망한 2년 후에 추고천황이 죽게 되자 조정의 분열상은 극에 달하였고, 山背大兄王의 지지자였던 境部摩理勢臣의 죽음으로 田村皇子가 서명천황이 되었다. 그러나 田村皇子가 천황이 되었다하더라도 서명천황계가 직계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직계가 정해지지 않은 채 10여년이 경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서명천황과 추고천황의 딸인 田眼皇女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로써 직계가 확정되었을 터이지만, 불운하게도 田眼皇女와의 사이에서 직계혈통이 생기지 않았다. 이는 이후 대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과 서명계의 내부항쟁을 낳게 된다. 다음 사료들은 직계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왕계승원리의 하나로서 이용되던 임나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사료를 통해 서명천황이후 임나문제가 대왕계승문제에 어떠한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J-1)이 해, 백제・신라・임나가 같이 조공하였다[60](舒明10년,638년).

J-2)2월 무신, 고구려와 백제의 손에게 難波宮에서 향응하였다. 대신에게 詔하여"津守連大海를 고구려에, 國勝吉士水鷄〔水鷄, 이를 俱毗那라고 한다〕를 백제에, 草壁吉士眞跡을 신라에, 坂本吉士長兄을 임나에 사신으로 보내라"라고 하였다[61](皇極元年, 642년).

J-3)병자, 고구려・백제・신라가 같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올렸다. 백제의 조공사는 임나의 사신을 겸하여, 임나의 조공도 올렸다. 다만 백제의 대사 좌평 연복만은 병이 나서 항구의 관에 묵고 京에 들어오지 않았다. 巨勢德太臣은 고구려의 사신에게 詔를 전하여 "明神인 천하를 다스리는 일본천황이 詔를 宣한다. 천황이 보내는 사자와 고구려의 神의 아들이 보내는 사자와는 과거는 짧아도 장래는 길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음을 온화하게 가져, 계속하여 왕래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또 백제의 사신에 詔하여 "明神인 천하를 다스리는 일본천황이 詔를 宣한다. 처음에 먼 우리 황조의 세에 백제를 내관가로 하신 것은 말하자면, 세 줄로 된 동아줄과 같은 것이다. 중간에 임나국을 백제에 속하게 하였다. 후에 三輪栗隈君東人을 보내 임나국의 경계를 시찰하게 하였다. 백제왕은 칙대로 그 경계를 모두 보였다. 그런데 조공을 빼놓은 일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조를 돌려 보냈다. 임나가 바친 물건은 천황이 밝히보시는 바이다. 금후는 상세하게 나라와 그 내는 조를 표기하도록 하라. 그대 좌평들,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 오너라. 빨리 모름지기 보고하여라. 지금 거듭 三輪君東人, 馬飼造〔이름이 빠졌다〕를 보낸다"라고 하였다. 또 칙하여 "鬼部達率意斯의 처자들을 모두 보내라"라고 말하였다[62](大化元年, 645년).

---

60) 「是歲。百濟。新羅。任那並朝貢」<『日本書紀』卷二十三 舒明天皇十年條(638)>

61) 「戊申。饗高麗。百濟於難波郡。詔大臣曰。以津守連大海可使於高麗。以國膳吉士水鷄可使於百濟〔水鷄。此云俱比那〕以草壁吉士眞跡可使於新羅。以坂本吉士長兄可使於任那」<『日本書紀』卷二十四 皇極天皇元年(642)二月戊申條>

J-4)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가 아울러 사자를 보내 조부를 바쳤다[63](大化2년, 646년)

J-5)9월, 小德 高向博士黑麻呂를 신라에 보내 인질을 바치게 하였다. 임나의 조를 그만 두게 하였다〔흑마려의 다른 이름은 玄理이다〕[64](大化2년, 646)

사료 J-1과 J-2는 기존의 임나관련 사료에 비해 단략적이다. 즉 J-1은 서명이 대왕으로 즉위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백제・신라・임나의 조공 사실을 전하고 있다. 물론 사신들의 정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서명의 아들인 중대형황자(천지)가 대왕위 계승의 직계가 되면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사료 J-2도 J-1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추가된 것일 것이다. 사료 J-2는 황극천황(寶皇女)의 대왕위계승의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황극천황은 등위조차 사실성이 의문시되고 있다[65]. 황극천황은 추고천황과 같은 황녀 출신이 아니다. 부계로 민달천황의 증손이기는 하지만 방계가 되고도 3대가 지났기 때문에 혈통의 가치도 소실된 상태였다. 게다가 『일본서기』齊明 즉위전기에 의하면, 황극은 田村皇子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피의 순혈성을 중시하여 직계를 고집해왔던 야마토 대왕가에서 결혼경력이 있고 황녀출신도 아닌 여성을 황후로 삼았을 리가 만무하다. 황극의 대왕위계승은 그의 소생인 천지・천무천황에 기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황극의 재위연대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서명과 황극의 아들인 중대형황자(천지)가 대왕위의 직계가 되는 과정에서 효덕과 제명의 즉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河內祥輔의 견해를 빌리자면, 서명천황 사후에 일어난 대왕위계승의 내부분쟁은 천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갔다. 그렇지만 천지가 바로 즉위하지 못하고, 게다가 즉위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한 이유는 성덕태자의 예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 즉 혈통 상으로는 직계가 될 수 없지만 주변의 경쟁자를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 치자로서의 경험과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은 태자인 채로 남아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오랜 인고 끝에 직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료 J-3과 J-4는 황극천황의 동모제인 효덕천황(輕皇子)과 관련된 임나문제이다. 효덕천황의 혈통은 황극천황과 같기 때문에 그의 대왕위 등극은 천지천황에게 힘입은 바가

---

62) 「丙子。高麗。百濟。新羅。並遣使進調。百濟調使兼領任調那使。進任那調。唯百濟大使佐平縁福遇病。留津館而不入於京。巨勢德大臣。詔於高麗使曰。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天皇所遣之使。與高麗神子奉遣之使。既往短而將來長。是故可以溫和之心相繼往來而已。又詔於百濟使曰。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始我遠皇祖之世。以百濟國爲內官家。譬如三絞之綱。中間以任那國屬賜百濟。後遣三輪栗隈君東人觀察任那國堺。是故百濟王隨勅悉示其堺。而調有闕。由是却還其調。任那所出物者。天皇之所明覽。夫自今以後。可具題國與所出調。汝佐平等。不易面來。早須明報。今重遣三輪君東入。馬飼造〔闕名〕又勅。可送遣鬼部率意斯妻子等』<『日本書紀』卷二十五 大化元年(645) 七月丙子條>

63) 「高麗。百濟。任那。新羅並遣使貢獻調賦」<『日本書紀』卷二十五 大化二年(646) 二月戊申條>

64) 「九月。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遂罷任那之調〔黑麻呂更名玄理〕」<『日本書紀』卷二十五 大化二年(646) 九月條>

65) 河內祥輔, 앞의 논문, 吉川弘文館, 1986, p50.

크다고 할 수 있다. 상궁왕가의 토벌과 을사의 변을 통해 대왕위계승 후보자를 정리한 중대형황자(천지)는 꼭두각시로 외숙부인 효덕을 내세우고 자신은 황태자의 위치에서 야마토의 내부개혁과 대외외교에 힘쓰게 된다. 천지는 새롭게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직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6세기이후로 흠명계 대왕계승권의 계승원리였던 임나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즉 그 단초를 연 것이 대화2년 3월에 이루어진 황실소유의 子代・名代 및 그에 부수되는 屯倉의 폐지이다. 이는 미야케의 폐지라기보다 미야케가 공전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된 것이다. 황실소유의 미야케가 공전으로 흡수되면서 야마토왕권의 대왕가가 가지고 있었던 미야케=임나의 인식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개념이 되어 버렸고, 실제로 大化 2년 3월에 베민과 미야케 폐지의 조서가 내려진 이후 곧바로 사료 J-5와같이 '임나의 조'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실재상의 미야케폐지와 '임나의 조'의 폐지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4. 맺음말

본 논문은 임나 멸망 후에 등장하는 '임나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왜왕권의 임나일본부에 의한 임나지배나 멸망 후에도 임나일본부의 군사기능이 존속했다고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멸망 이후에도 80여년간 꾸준히 역사서에 등장하는 '임나문제'를 대외관계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논의 또한 분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연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임나문제'를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종래의 연구들은 '임나의 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역사상 실존하지 않는 '임나문제'는 '임나의 조'만이 아닌 '임나사'와 '임나의 조'를 얻기 위한 군사파병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임나문제가 단순한 상징의 문제 또는 실질적인 한반도관계가 아닌 야마토왕권의 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임나의 조'의 성립에서 폐지에 이르기까지 '임나문제'는 각 천황대마다 일정한 규칙성을 띠고 등장한다. 이는 '임나문제'가 야마토왕권의 대왕계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미 신라영역이 되어버린 임나를 현실적으로 부흥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야마토 왕권은 신라로부터 '임나사'를 내조시키고, 야마토왕국의 朝庭에서 '임나의 조' 진상의례를 행함으로써 소위 의례적으로 임나를 부흥시켜 諸蕃의 왕인 천황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임나부흥책은 6세기대에 형성되어 7세기대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추구되었는데, 이는 흠명계대왕들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대왕계승원리 하나로 자리 잡았고, '대왕에서 천황'으로 전환하는 대화개신 이후에는 더 이상 대왕계승원리로

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적어도 6세기에는 야마토왕권이 「임나」=금관국을 '미야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흥시키는 것은 대왕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대왕에서 태자에게로 계승되어야 할 대사업이었다. 이처럼 6세기에 이루어진 흠명계대왕들은 부민과 둔창의 장악에 힘썼고, 부민과 둔창은 현실적인 의미를 넘어 대왕가가 지녀야 할 상징적인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등장하는 것이 '임나=미야케'의식이고, 이는 실질적인 부와 둔창의 폐지와 함께 계승원리로서의 운동력을 잃게 된다. 이를테면, '임나=미야케'의식은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흠명계대왕들이 부와 둔창을 확장해가는 과정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확대・재생산되어 흠명계의 대왕계승자들에게 계승해야 할 책무가 되었으며, 대화개신의 부민제 폐지와 함께 운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 근세 왜관의 館守제도 성립과 도다 도노모(戶田賴毛)

허 지 은(서강대)

목 차

1. 머리말
2. 근세 조일관계와 관수의 성립
3. 왜관에서의 관수의 역할과 기능
4. 관수 도다 도노모(戶田賴毛)
5. 결론

## 머리말

근세 조·일관계에서 倭館은 일본인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조선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왜관에는 조·일간의 외교와 무역업무를 위해 일본인이 장기간 체류하기도 했고, 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왜관에는 왜관운영과 일본인들의 감시를 위해 150여명의 조선인 관리가 있었고, 쓰시마에서도 일본인 관리를 파견하였다. 일본인 관리 가운데에는 조선과 외교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해 파견되었던 裁判, 왜관 내에서 이루어지던 조일간의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代官을 비롯하여 왜관 내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館守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왜관에 관한 연구는 제도사적인 관점에서 왜관의 설치 및 변천, 직관구성 등을 고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1] 왜관이관의 교섭과정에도 주목하였다.[2] 또한 왜관을 지역사, 생활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거나[3] 왜관에 대한 조선의 통제책에 주목한 연구도 이루어

1) 이현종,「釜山倭館略考」,『성균』7, 1956. 김용욱,「釜山倭館考」,『韓日文化』11-2, 釜山大 韓日文化研究所, 1962, 김의환,「李朝時代の 釜山倭館起源と 變遷」,『日本文化史研究』2, 帝塚山短期大學 日本文化史學會, 1977;「釜山倭館の 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 -李朝の對日政策の一理解のために- 」,『朝鮮學報』108, 1983; 小田省吾,「釜山の和館と設門に就て」,『朝鮮』125, 1925;「釜山に於ける和館變遷と遺址」,『朝鮮史學』, 1926, 李氏朝鮮時代における倭館の變遷」, 朝鮮支那文化の研究, 邊江書院, 1929, 長正統,「日鮮關係における記錄の時代」,『東洋學報』50卷 4號, 1968.

2) 장순순,「조선후기 倭館의 설치와 移館交涉」,『한일관계사연구』5집, 1996.荒野泰典,「釜山倭館の草梁移轉-倭館移轉を朝鮮側から考える-」『靑丘學術論集』3,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3.

졌다.[4] 그 외에 동래부와 왜관의 조일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된 문서양식에 관한 연구[5]와 왜관을 중심으로 한 쓰시마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6]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왜관에서 체류했던 일본인 관리에 주목한 연구는 조선어통역관인 조선어통사, 조일간의 외교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왜관에 파견되었던 재판차왜에 관한 연구 정도에 불과하다.[7] 왜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왜관업무를 총괄했던 관수에 대해서는 왜관의 직관구성을 다루면서 간략하게 언급하거나[8] 관수가 왜관 체재 기간 동안 남긴 매일기에 주목하여 왜관  안에서의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9]

관수는 왜관업무의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그 직책이 언제부터 존재했고, 또 어떠한 배경에서 언제부터 왜관에 상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조일관계상에서의 관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쓰시마의 기록과 관수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왜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쓰시마가 조선과의 업무에서 어떠한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아가 관수가 실제로 왜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일관계상에서의 관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쓰시마번에서 조선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朝鮮方에서 작성하여 관수에게 주었던『館守調書』의 내용파악과 분석을 통해 관수가 수행했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셋째, 역대 관수 가운데 네 차례나 조선에 파견되었던 도다 도노모라는 인물을 통해 그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왜관에서 실제로 담당했던 역할과 조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손승철,「倭人作孼謄錄을 통하여 본 倭館」,『항도부산』10, 1992.제임스 루이스,「朝鮮後期 釜山倭館의 紀錄으로 본 朝日關係 -'폐・성가심(迷惑)에서 相互理解로-『한일관계사연구』제6집, 玄音社, 1996;「 釜山 倭館을 중심으로 한 조일교류 -교간사건에 나타난 권력・문화의 갈등-」『정신문화연구』66, 1997.)김동철,「15세기 부산포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지역과 역사』제22호 2008;「17~19세기 東萊府 小通事의 編制와 對日活動」,『지역과 역사』제17호, 2005.

4) 尹裕淑,「近世癸亥約條の運用實態について -潛商・闌出を中心に」,『朝鮮學報』164, 1997;「約條にみる近世の倭館統制について」,『史觀』138, 1998, 허지은,「17세기 조선의 왜관통제책과 조일관계의 변화-계해약조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15, 2001.

5) 이훈,「조선후기 東萊府와 倭館의 의사소통 -兩譯관련「實務文書」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27.

6) 김강일,「조선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分類紀事大綱 25』「風說之事」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29, 2008.4, 허지은,「근세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정보수집경로와 내용」,『한일관계사연구』32, 2009.4.

7) 이혜진,「17세기 후반 朝日外交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한일관계사연구』8, 1998, 허지은,「쓰시마(對馬) 朝鮮語通詞의 성립과정과 역할」,『한일관계사연구』29, 2008.4.

8) 김용욱, 앞의 논문(1962), 김의환, 앞의 논문(1983)

9) 田代和生,『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학술 24)』(논형, 2005)

## 2. 근세 조일관계와 관수의 성립

관수가 왜관에 파견된 시기는 일본과 한국측 자료상에 차이가 있다. 일본자료인『通航一覽』「館守事考」·『改訂 對馬島誌』에는 1637년에 관수가 처음 왜관에 파견되었으며, 첫 번째 관수는 平成連, 즉 우찌노 곤베(內野權兵衛)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설치 이유는 왜관이 설치되고 주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며,[10] 館司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11]

長正統은『通航一覽』의「館守事考」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왜관 관수는 쓰시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 대인 1637년에 임명된 우찌노 곤베이가 최초라고 한다", "조선의 예조에 통고한 서한과 그 통고를 승낙한다는 예조참의의 답서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관수 제도가 1637년 우찌노 곤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12] 소 요시나리가 예조에 보낸 서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꾸어 館守가 왜관의 일을 主幹하고 앞으로 왕복하게 될 것입니다"[13]라고 서한의 앞부분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은 조선에서 표류해 온 일본인을 송환해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이다. 예조에서 보낸 답서를 보면 "고쳐서 관수가 왕래하여 공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게 되니 또한 기뻐할만합니다"[14]라고 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長正統의 주장대로 조선이 관수설치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조선에서 우찌노 곤베를 제 1대 관수로 인정한 것 같지는 않다.

조선에서는 1639년 쓰시마도주 소 요시나리가 平智連, 즉 시마오 곤노스케(嶋雄權之介)를 보내 국서개작사건을 거론하며 이권이 자신의 가신이었던 야나가와 시게오키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주에게 권한이 없고, 왜관에서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아서 국서개작사건이 일어나는 단서가 되었다고 보고한 것을 계기로 平智連을 관수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국서개작사건 이후 이 사건이 조일양국간에 몰고 올지 모르는 파장 때문에 긴장했으며, 계속된 논의에서 그들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들의 동향에 주목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15] 더구나 이듬해인 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에서는 일본과의 불란은 가능하면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고, 왜관에 있는 수 백 명의 일본인의 동향은 주목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런 입장이었던 조선에서는

---

10) 林韑 等編·國書刊行會 校,『通航一覽』卷125 (東京 : 國書刊行會, 1912-13), pp. 459~460.

11) 對馬教育會,『改訂 對馬島誌』(長崎: 對馬教育會, 1940).

12) 長正統,**「日鮮關係における記錄の時代」**,『東洋學報』50-4, 1968.3, p. 76.

13) 林韑 等編·國書刊行會 校,『通航一覽』卷125「館守事考」(東京 : 國書刊行會, 1912-13), p. 460. 玆改更館守, 主幹館事, 將成往復…

14) 林韑 等編·國書刊行會 校,『通航一覽』卷125「館守事考」(東京 : 國書刊行會, 1912-13), p. 460. 改換館守, 往來公幹, 主管有人, 亦足可喜…

15) 한명기,『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서울; 푸른역사, 2009), pp. 305~308

소 요시나리의 보고를 바탕으로 왜관의 일본인 단속을 강화할 목적으로 관수의 파견을 허락하고 관수 및 그의 솔속들에 대한 접대규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선에서는 국서개작사건을 계기로 조일 양국간에 외교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왜관 안의 모든 일을 주장하며 단속·정비하고, 왜관 안에 있는 일본인을 제재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16] 왜관의 총괄책임자인 관수의 파견을 인정하여 평지련에게 관수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17]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수는 사망하거나 병이 들어 면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는 대략 2년이었으며, 관수가 사망하거나 병이 들어 업무를 관장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과 一代官이 겸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임 관수가 내정되어 쓰시마에서 현직 관수에게 통보를 하면 관수는 館守家를 비우고 一代官家, 裁判家, 知掌官家 등으로 이사를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관수가 조선에 도착하여 서계를 올릴 때 下船茶禮, 관수가 조선조정에 진헌하는 물건을 올릴 때 下船宴, 조선에서 서계에 대한 답서를 관수에게 줄 때 禮單茶禮, 관수가 쓰시마로 돌아갈 때 上船宴을 각 1차례씩 실시하였는데,[18] 연향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주관하였다.[19]

관수에 대한 접대는 正官 1명, 伴從 3명까지 연례 제1선송사와 동일하게 했다.[20] 별도

---

16) 『변례집요』 卷之四 館守 1639년 7월조, 『弘齋全書』 第11卷 「翼靖公奏藁典禮類叙」 交隣引 "館守倭率禁徒戢館倭始於仁廟朝"

17) 『인조실록』 1642(인조 20)년 1월 8일조

18) 『東萊府事例』 第2卷 「倭館」

19) 쓰시마도주의 서계를 보면 정3품 당상관인 동래부사와 예조의 亞貳官, 부산 첨사와 平禮로 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래부사와 관수는 동급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실제 1787년 2월 16일 영의정 金致仁이 올린 상소를 보면 관수에 대한 연향과 접견 때 파견하는 사자에 관해 언급하면서 관수를 '도주의 管下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정조실록』 1787년 2월 16일조) 또한 동래부사 南泰耆 역시 관수에 대해 "신이 通信使로서 일본에 갔을 때 재판왜와 奉行倭의 무리들은 겨우 기둥 밖에서 절을 올렸고 관수왜와 歲船差倭는 재판왜나 봉행왜에 비하여 더욱 비천하여 賤役을 집행하며 뜰아래에서 분주히 다니는 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차 그들과 賓主의 예로 마주 대해야 하니, 한 개인의 수치는 논할 것도 없고 또한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있을 듯합니다"(李裕元, 『林下筆記』 제19권 「文獻指掌編」 동래 부사를 존대하는 데 대한 계사)라고 하였고 결국 조선 국왕은 조정의 체면이 경시될 듯하다고 하면서 관수에 대한 접대를 다른 관리로 교체해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조선에서는 관수를 쓰시마도주의 管下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관리로는 동래부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增正交隣志』 第1卷 志 「差倭」·「年例送使」 정관 1인에게 백미 4되, 찹쌀 1되, 콩 6되, 酒米 2되 4홉, 醋米 4홉, 醬太 4홉, 참기름 1홉 3작, 백합젓 6작, 소금 3홉, 겨자 4작, 乾魚 5마리, 미역 2냥, 청어 4마리, 木米 1되, 찹쌀 1되, 꿀 5작, 광어 4條, 전복 2介, 황밤과 대추 각 3홉, 생선·대구어 각 1마리, 상어 4조, 문어 1조, 곶감 2꿰미, 해삼 5홉, 생닭 반 마리, 계란 3개, 생밤1되, 眞曲 7홉을 제공했다. 반종 각각에게는 요미 3되 5홉, 병미 1되, 콩 4되, 주미 2되 4홉, 초미 4홉, 장태 4홉, 참기름 1홉, 백합젓 6작, 소금 2홉, 겨자 4작, 건어 3마리, 미역 2냥, 청어 4마리, 목미 1되, 찹쌀 5홉, 꿀 3작, 전복 1개, 대구어 4조, 상어 4조, 해삼 5홉, 개암 3홉, 진곡 7홉을 제공했다.

로 기록을 담당하는 書記倭 1명, 통역을 담당하는 通事倭 1명을 비롯하여 의원(醫倭) 1명,[21] 從倭 8명, 格倭 40명이 있었으나 料는 지급하지 않았다.[22]

<그림 1>

<그림 2>

<그림 3>

21) 쓰시마에서 관수를 파견할 때 의사를 딸려 보내기 시작한 것은 1664년 6월 12일 파견된 관수인 요시카와 로쿠로자에몽(吉川六郎左衛門) 때부터이다. 아비루 겐세츠(阿比留玄雪)라는 의사가 초대 왜관의사로 부임하고 있다.(田代和生지음 · 정성일옮김, 『왜관』, (논형; 서울(2005)), p. 164)

22) 『增正交隣志』 第1卷 志「差倭」

관수의 집무소인 館守屋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변박이 그린 초량왜관도인 <그림 1>과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량왜관도인 <그림 2>의 □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해 있다. <그림 3>은 <그림 2>에서 館守屋 부분만 확대한 것이다.『增正交隣志』「館宇」조에 의하면 館守屋은 48칸, 中門 3칸, 구부러진 담장(曲墻) 75칸(담에는 작은 문). 변소는 안과 밖에 각 1칸이 있었다[23]고 한다.

館守屋의 규모는 왜관 체류 일본인이 사용했던 어떤 건물보다도 그 규모가 컸다. 조선과의 외교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裁判差倭의 집무소인 裁判倭家의 경우 규모가 32칸, 중문 1칸 구부러진 담장 68칸(담에는 작은 문), 변소 안과 밖에 각 1칸이었다.

한편 관수는 매달 조선과 쓰시마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쓰시마도주로부터는 매달 銀 8매. 15인분의 扶養米와 손님 3명분 접대비용을 받았다. 한편 조선에서는 관수와 그에 딸린 솔속들에게 한 달에 쌀 44가마, 술 8백64병, 생선 3백60축, 기름, 꿀, 대구포, 해삼, 식초, 밀가루, 팥, 겨자, 소금, 찹쌀, 콩, 무명, 숯, 땔감, 붓, 먹, 호랑이 가죽, 표범 가죽, 인삼 등을 지급하였다.[24]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국서개작사건 이후 조일간에 관수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조선의 관수에 대한 접대 및 支供 등에 대한 규정도 확립되었으며, 1873년 메이지 정부에서 왜관을 침탈할 때까지 100명이 넘는 관수가 조선에 파견되어 왜관의 총괄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총괄책임자로서 관수가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왜관에서의 관수의 역할과 기능

왜관에서 관수가 수행했던 역할과 기능은 쓰시마번의 조선관련 업무 담당자인 朝鮮御用支配가 작성한『館守條書』[25]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館守條書』의 작성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모두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로 카즈이도 조일간의 통교무역사를 다루면서 초량왜관의 설치와 기능에서 관수의 의무에 대해 언급할 때『館守條書』의 1, 3, 5, 6조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26] 전문의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관수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6개 항목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기로

23)『增正交隣志』第1卷 志「館宇」

24) 金義煥,「釜山倭館の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李朝の對日政策の一理解のために-」『朝鮮學報』108, 1983, pp. 133~136.

25)『館守條書』(韓國: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770, 이하『館守條書』)

26) 田代和生,『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東京 : 創文社, 1981), pp. 178~181. 다시로 카즈이는『館守條書』가 모두 17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오보에(覺)라는 한자 다음에 각 항목마다 一이라는 한자를 쓰고 내용이 시작되는데, 모두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하겠다.

『館守條書』의 가장 앞부분에는 쓰시마에서 출발한 관수일행이 조선으로 갈 때 판사, 즉 조선의 역관들이 본선에 올라 서한확인을 요구했을 때 쓰시마에서 발급해 준 도항증(札)만 보여주고 서한은 절대로 개봉하지 말 것과 이름을 물어보더라도 별도의 종이에 써주어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있다.[27] 그리고 <그림 4>와 같이 다음 페이지에 각서라는 의미의 오보에(覺)라고 씌여있고 첫 번째 항목이 나온다.

2010/12/21 National Institute of K H

<그림 4>

첫 번째 항목에서 '朱印이 있는 條目'이란 다시로 카즈이에 의하면 쓰시마에서 관수가 교체될 때 주었던 '倭館壁書'이다. 쓰시마번에서는 1671년 관수에게 처음으로 19개 조항

27) (조선으로)건너갈 때 만일 편승(協乘)하게 되었을 때 判事들이 본선에 타서 서한을 확인하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개봉하지 말고 써준 도항증만 보여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만약 성명을 물어보면 별도의 종이에 써서 건네주어야 할 것입니다. 월 일

으로 된 왜관벽서를 주면서 도항선과 통교자의 제재, 왜관 안의 제반 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 벽서는 이후 역대 관수가 교대할 때마다 신임 관수에게도 반드시 하달하였다고 한다.[28] 그리고 왜관의 일본인들이 사카노시타에 갈 때 통행증을 지참해야 했던 것은 1683년에 체결된 계해약조와 관련이 있다. 즉, 1682년 임술통신사행 때 쓰시마에서 약정된 5개조항의 약조내용을 사행의 귀국 후 1683년 5월 조선조정과 쓰시마간의 첨부 조항에 관한 협의를 거쳐 '왜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만약 용무가 있을 때에는 관수에게 보고하고 통행증(通札)을 지참하여 훈도・별차처에 왕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결정된 뒤 8월에 이르러 약조내용을 비에 세겨 왜관의 경계지에 세웠다.[29] 이와 같이 첫 번째 항목을 내용을 보면 관수는 왜관 안에 있는 일본인들이 규칙을 엄수하도록 관리하는 역할과 조선의 역관들의 집무소 등이 있는 사카노시타에 가는 자들에게 통행증을 지참시키고 급하게 나가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은 쓰시마에서 파견된 사자와 첨관과 관련된 관수의 의무사항이다. 두 번째 항목은 사자와 첨관을 위한 연향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 사람만 참석하더라도 예에 따라 시행하고 지체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다. 관수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주관하는 연향은 가능하면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하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지체없이 연향이 시행되도록 조선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조선에서 사자와 첨관이 가져온 서계에 대한 답서를 조선의 역관이 전달할 때 관수가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신 사이항(裁判)이나 최고 요코메(横目)를 참석시키고 문서를 담당하는 동향사의 승려와 조선어통사가 동석하여 답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관수가 조일간의 외교서한의 검수를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항목은 다섯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조선의 답서에 오류가 있어서 한양에 되돌려 보내 고쳐서 다시 받게 되면 지체된 일수만큼 5일마다 지급되는 잡물을 왜관에서 체제하는 동안 반드시 챙겨서 받게 하라는 내용으로 관수는 역관들을 통해 사자와 첨관에게 잡물이 정확히 지급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항목에서는 관수가 조일 양국의 통교・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섭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조선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쓰시마에 보고해야했을 뿐만 아니라 관수의 의견 역시 보고해야했고 나아가 일본 상인들에 대한 제재와 관리 등도 담당해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28) 田代和生, 앞의 책(1981), p. 179, pp. 225~231
29) 김건서 저, 하우봉・홍성덕 역,『국역 증정교린지』第4卷 志「約條」주29)

네 번째 항목은 조선과 북경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비밀리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田代和生은 '이쪽'을 쇼군으로 보았다. 왜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쓰시마에 보고되고, 쓰시마에서는 쓰시마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누락시키고 선별하여 바쿠후에 보고를 한다. 즉, 쓰시마에게 필요한 정보는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관수가 수집한 정보는 쇼군의 관심여부를 고려한 선별된 정보수집이 아니라 조선을 비롯한 중국 등 대륙방면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쓰시마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0] 관수는 왜관에 체제하는 기간 동안 조선어를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조선어통역관인 朝鮮語通詞 및 조선상인과 자주 접촉하는 무역담당 관리인 代官 등에게 정보를 수집하게 하여 쓰시마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어통사가 수집한 정보의 내용은 조선의 정치・외교・사회・경제・문화・군사・풍문을 비롯하여 북경과 북방의 상황을 아우르는 다양한 것이었다.[31]

여덟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항목을 보면 왜관 안에서 일본인 단속 및 치안 등을 담당했던 요코메, 뱃사공, 연석에 동반하여 참석하는 자 등을 관수에게 제재・관리하도록 의무지웠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요코메에 대해서는 관수가 재량껏 지시하되 그 취지를 쓰시마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다.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항목은 조선과의 외교문서 및 조선관리와 왕복했던 문서의 기록 및 관리를 관수에게 담당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관수는 조선과의 왕복서한의 경우 정해진 것 외에 불시의 서한의 경우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 두도록 東向寺에 지시해야 했다.

열여섯 번째 항목은 쓰시마인 선박이 조선을 왕래하는 중에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표류했을 때 나가사키가 아닌 쓰시마로 바로 돌려보내도록 바쿠후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관수는 왜관에서 쓰시마로 귀국하는 쓰시마인들에게 표착지에서 신고 후 바로 쓰시마로 귀국하도록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관수의 역할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관수조서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왜관 내에서의 관수의 역할과 기능은 왜관 내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 조일 양국 통교에 관한 의견 제안, 조선 및 북경에 관한 정보수집 및 보고, 東向寺에 조일간에 왕래하는 문서사본 기록을 지시 등 조일간의 왕복문서의 기록과 관리, 왜관 안에서 근무하는 일본일들에 대한 제재 및 관리 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수조서의 첫 번째 열여섯 번째 항목의 내용을 통해 관수조서의 작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항목에 언급된 왜관벽서가 처음 작성된 것이 1671년이고, 왜

30) 田代和生 著・정성일 譯, 앞의 책(2005), p. 161

31) 조선어통사의 성립과정 및 수집한 정보의 내용 및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는 허지은,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서울; 경인문화사, 2012) 참조

관에 있는 일본인들이 사카노시타에 있는 조선의 역관들을 만나러 갈 때 통행증을 지참하도록 조일간에 약정한 것이 1683년이었고, 쓰시마 에도번저에서 조선에 왕래하는 쓰시마선박이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표류한 경우 그 송환과 관련하여 바쿠후에 보고한 것에 대한 답서가 1709년 7월 18일에 있었다는 점에서 관수조서가 작성된 시기는 1709년 7월 18일 이후라고 생각된다.

당시 쓰시마에서는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儉約令을 내리고 地方知行을 받는 家臣의 숫자를 줄이는 등의 정책을 施行하는 한편 아메노모리 호슈・마츠우라 카쇼(松浦霞沼) 등 儒者를 등용하여 쓰시마 재정의 재구축을 위해 方策을 내게 하였다. 그들은 조선과의 외교에 있어서 기록의 중요성, 信義를 바탕으로 한 통교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과거 조일간의 통교의 樣態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쓰시마에서는 호슈와 마츠우라의 의견을 수렴하여 1719년부터는『分類紀事大綱』를 1721년부터는『朝鮮通交大紀』등의 기록을 정비하고 나아가 조선과의 의사소통의 최전선을 담당했던 조선어통사를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하기 시작했다.[32] 관수조서의 작성과 내용에도 쓰시마의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 4. 관수 도다 도노모(戶田賴毛)

<표 1>의 내용을 보면 관수직을 한 차례 이상 역임했던 경우가 보인다. 이 가운데 도다 도노모의 경우 유일하게 총 네 차례에 걸쳐 관수직을 역임했다. 그 기간은 처음엔 1779년 3월 17일부터 1781년 6월 17일까지, 두 번째는 1787년 4월 22일부터 1790년 5월 4일까지, 세 번째는 1793년 4월 18일부터 1795년 10월 9일까지, 네 번째는 1796년 3월 24일부터 1800년 12월 1일까지로 총 12년 6개월 동안 왜관에서 근무했다.

그렇다면 도다 도노모가 네 차례나 관수로 파견되었던 이유와 쓰시마번에서 도다 도노모에게 임기 이후에도 왜관에 체류하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또한 쓰시마에서 1801년 3월 4일 관수에게 보낸 답서에 언급된 '도다 도노모가 담당한 업무가 특별히 다른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업무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1811년 조선이 바쿠후의 제11대 장군 德川家齊(토쿠가와 이에나리)의 장군직 계승을 축하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을 때, 외교의례 장소를 에도에서 대마도로 변경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易地通信은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국서 전달식을 비롯하여 외교의례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일본의 역지통신 제의를 수락할 때까지 20여년이라

32) 허지은, 위의 책(2010), p. 37

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 기간에 도다 도노모는 왜관에서 관수와 고관수로 근무하면서 역지통신[33] 교섭에 직접 관여하였다.

도다 도노모가 재임 관수로 왜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1788년 10월 쓰시마 도주 平義功이 延聘使(通信使請退大差使) 平暢常을 보내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통신사 파견 연기를 요구하였다.[34] 조선에서는 처음에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대를 허락하지 않다가 정조의 명에 따라 다음해인 1789년 3월 서계를 접수하고 답서를 교부함으로써 통신사파견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35]

그리고 쓰시마번에서 조선과 역지통신 교섭을 하는 기간 중인 1793년 4월 11일 도다 도노모는 관수로 임명되어 세 번째 왜관에 부임했다. 역지통신 찬성파인 오모리 일파였던 도다 도노모는 정치생명을 걸고 역지통신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선의 왜학역관과의 결탁을 도모하였다.[36] 마침 1795년 3월 경 왜학역관으로 동래에 내려와 있던 士正 朴俊漢은 "의빙사가 일본만을 위하고 조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이해해서 바로 허락하지 않았지만 조선도 省弊로 이익이 있다면 易地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저런 省弊를 들어서 얘기하면 조정에서도 다시 講議하도록 지시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쓰시마에서는 저번 의빙사 회답서를에도 바쿠후에 제출했으므로 이번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우선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했는데,[37] 1795년 10월 동래부사 尹長烈은 세 번째 관수직 임기를 마치고 쓰시마로 돌아가는 도다 도노모를 통해 쓰시마에 생폐와 역지교섭을 위해 통신사청래대차사의 파견을 요구하자 바쿠후에 보고를 하였다. 바쿠후에서는 조선인 우선 역지통신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생폐 등에 대해 상의할 수 없으며, 통신사청래대차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796년 8월 致賀兼問慰渡海譯官[38] 박준한은 쓰시마에 가서 역지통신에 관해 협의를 하고 銅鐵 2000근 등의 수표를 받아서 돌아왔다.[39]

---

33) 田保橋潔, 「朝鮮國通信使易地行聘考」, 『東洋學報』 24, 1937, 長正統,「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禮交涉」『史淵』 115, 1978, 정성일, 「역지빙례 실시 전후 대일무역의 동향(1809-1812 年), 『經濟史學』 15, 1991, 李薰, 「1811年の對馬易地聘禮と積弊の改善」, 『(對馬宗家文書第一期)朝鮮通信使記錄別冊下』(東京; ゆまに書房, 2000) 외 다수의 연구가 있다.

34) 『증정교린지』 제2권 志 「差倭」, 正官은 平暢住, 도선주는 大浦左衛門, 封進은 重田土肥之介이다. 1788년 10월 27일부터 이듬해 5월 10일까지 왜관에 체류하였다.(김건서 저, 하우봉 · 홍성덕 역, 『국역 증정교린지』 第1卷 「別差倭」 주 548))

35) 『交隣志』 「信使各年例」, 이들은 1791년 12월 9일부터 1795년 1월 23일까지 왜관에 체류하였다. (『국역변례집요』 「別差倭」 주) 552)

36) 長正統, 위의 논문(1978), p. 106

37) 宗家文庫 記錄類 III 朝鮮關係 A-① 21 「口陳幷口寫」1806년 8월 19일

38) 1796년 관백 이에나리(家齊의 儲君이 죽어서 다시 저군을 세우고, 대마도주 義功이 대마도로 돌아왔으므로 당상 朴俊漢, 崔昌謙과 당하 林瑞茂를 보내어 치하 겸 문위, 조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정교린지』 제6권 志 「問慰各年例」)

조선조정에서도 1797년 2월 통신사파견을 14~5년간 연기하는 교섭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박준한을 講定官으로 임명하여 동래부로 파견했는데, 박준한은 당시 네 번째로 관수에 임명되어 왜관에서 근무 중이던 도다 도노모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그 해 9월 예조참의와 동래부사의 서계를 위조하고 세 가지 생폐를 조건으로 역지통신에 합의하였다.[40] 이 위조서계는 쓰시마를 통해 바쿠후에 제출되었고 바쿠후의 지시에 따라 강정역관 박준한과 관수 도다 도노모는 교섭을 통해 1798년 5월 戊午易地行聘協定을 체결하게 되었고,[41] 그 결과 통신사 파견은 1807년으로 10년간 연기되었다.

長正統에 의하면 이후 생폐에 대한 교섭 과정에서 도다 도노모는 조선의 왜학훈도 박준한 등과 결탁하여 왜학훈도의 동래부임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42] 그리고 네 번째 관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쓰시마번의 지시로 古館守로 왜관에 체류하면서 通信使講定裁判의 역할을 담당하였다.[43] 도다 도노모는 1802년부터 1805년까지 戊午易地行聘協定을 바탕으로 왜학 훈도(崔王冏・朴致儉・崔國禎)와 通信使行節目을 講定하였는데, 결국 위조 서계였음이 밝혀져 이에 연루되었던 최왕경・최국정과, 서계를 위조한 朴潤漢・金漢謨 등이 초량왜관 앞에서 처형을 당했다.[44] 도다 도노모는 쓰시마의 지시로 역지통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왜학역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서계위조에 가담했지만 그와 쓰시마에서는 끝까지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조선의 강정역관이 쓰시마번을 속이고 많은 物貨를 빼앗아 간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45]

이후 쓰시마에서는 1804년 11월 통신사청래대차사를 조선에 파견하였고, 조선에서는 논의 끝에 1806년 3월 동래부사로부터 서계 등본을 받았다. 그 내용은 통신사를 1809년 쓰시마에서 통신사를 맞겠다는 것이었다.[46] 5월 통신사청래대차사에 대한 접대가 이루어지고 서계가 전달되는 자리에서 도다 도노모는 무오협정 당시 강정했던 節目 두 장을 내보였다. 동래부사와 접위관이 흉역배들이 위조한 것이라 받아 보지 않고 責諭하자 도다 도노모는 '이와 같이 한다면 對馬島가 장차 멸망한 다음에야 그만둘 것이다' 라며 화를 내고 문을 닫아버려 논의는 중단되었다.[47] 이후 도다 도노모를 비롯한 왜관측에서는 왜관 난출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

---

39) 長正統, 위의 논문(1978), pp. 106~107
40) 長正統, 위의 논문(1978), p. 107
41) 宗家文庫 記錄類 III 朝鮮關係 A-① 21「口陳幷口寫」1806년 8월 19일
42) 長正統, 위의 논문(1978), pp. 114~116, 119~120
43)『通信使草謄錄』1802년 7월 29일조
44) 국사편찬위원회,『新編韓國史通』32권(경기도; 탐구당), 1997, pp. 458~459
45) 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研究』下(서울; 민속원 影刊), 1940, pp. 724~725
46)『순조실록』1806년 3월 27일조
47)『순조실록』1806년 5월 20일조

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1806년 8월 파견된 通信使幹事裁判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48] 그 후 도다 도노모가 정확히 언제 조선에서 쓰시마로 돌아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일간의역지통신 교섭은 계속되어 결국 1811년 3월 통신사는 쓰시마에 파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수 도다 도노모는 역지통신 교섭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고관수 시기에는 통신사강정재판으로 역지통신의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쓰시마에서는 1802년 1월 쓰시마에서는 도다 도노모가 조선관련 업무에 능숙하여 계속해서 관수로 임명하여 議聘 업무를 처음부터 맡겼고 교대 후에도 왜관에 체류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견줄 바가 없는 일처리를 한다고 생각되어 계속 교섭도 하게 했는데, 기후가 좋지 않은 곳에 오랫동안 체류하는 고관수 도다 도노모에게 몸을 보호하라는 뜻으로 인삼 3兩을 주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49]

한편 도다 도노모는 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수의 근무일지인『館守日記』뿐만 아니라『分類事考』『古館守日記』[50]『贅言試集』[51]등의 기록을 남겼다. 관수의 주요 의무 중의 하나였던 기록을 남기는 일에도 충실했던 것이다.

도다 도노모가 남긴『古館守日記』는『館守日記』와는 달리 매일 매일의 기상은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선박의 출입을 비롯하여 쓰시마로부터의 사람과 서한의 왕래 및 조선사람들과의 교류, 조선 측의 고관수에 대한 예우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도다 도노모가 쓰시마에 관수임기 이후의 급여(宛行)에 대해 요청한 내용도 있어 주목된다.

그 내용을 보면 관수가 쓰시마로부터 받았던 녹봉의 정도와 조선인에게 드는 선물비용의 일부를 직접 마련했다는 점, 나아가 직접 마련해야하는 선물비용은 조선으로부터 접대가 줄어든 고관수 시절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다 도노모는 고관수로 왜관 재직 중이었던 1803년 당시 관수였던 오우라 헤자에몽(大浦兵左衛門)의 부탁으로『贅言試集』을 저술했다.『贅言試集』은 통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자리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어통사들이 제출한 각종 메모(覺書)를 바탕으로 당번 조선어통사와 조선의 역관이 대화하는 형식을 빌어서 작성하였다.[52] 대상연대는 1609~1803년까지로, 근세초기부터 후기까지 약 200여 년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왜관 안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편, 도다 도노모는 세 번

48) 田保橋潔, 위의 책(1940), pp. 744~747
49) 戶田賴母,『古館守日記』1802년 2월 3일조(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877, 이하『古館守日記』)
50)『古館守日記』
51) 戶田賴母,『贅言試集』(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750, 이하『贅言試集』)
52)『贅言試集』序文

째부터 네 번째 관수로 있는 동안 역관들과 내통하면서 남긴 역관기록을 서기에게 완성하도록 해서 1801년 4월 5일 새로 부임한 관수 오우라 헤자에몽을 만나 넘겨주기도 하였다.[53]

이렇게 쓰시마로부터도 새로 부임한 관수로부터도 조선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다 도노모의 조선인 인맥, 특히 왜학역관과의 관계가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도다 도노모가 남긴『古館守日記』를 보면 2년 동안 왜학역관이 21차례나 도다 도노모를 방문하고 있다. 특히 왜학역관 박준한은 역지통신 교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선측의 주요인물이었으며 도다 도노모와 가장 밀착했던 인물이었다. 도다 도노모는『贅言試集』에서 박준한이 왜관의 일본인들을 상대로 근무를 하면서 보여주었던 모습에 대해 칭찬으로 일관하며 조선의 최고 역관으로 호평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박준한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 역지통신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후 박준한 일파인 역관들이 그를 대신하였지만, 결국 1802년부터 위조서계가 발각되면서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이 기록을 남긴 1803년은 쓰시마의 지시로 역지통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왜학역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서계위조에 가담했던 도다 도노모가 끝까지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던 때였다. 이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박준한에 대한 감상이 남다르지 않았을까. 도다 도노모는 이후 무리하게 역진통신교섭을 추진하다가 면직을 당했는데, 이후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 5. 결론

조・일관계상에서의 관수가 왜관에 처음 파견된 시기에 대해 일본에서는 1637년에 파견된 平成連(우찌노 곤베(内野權兵衛)부터, 조선에서는 1639년에 파견된 平智連(시마오 곤노스케)부터로 보고 있다. 조선에서는 국서개작사건 이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들의 동향에 주목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듬해인 1636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에서는 일본과의 불란은 가능하면 만들지 않기 위해 왜관의 일본인 단속을 강화할 목적으로 관수의 파견을 허락하고 관수 및 그의 솔속들에 대한 접대규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번에서 조선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朝鮮方에서 작성하여 관수에게 주었던『館守調書』의 내용을 보면 관수가 왜관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기능은 왜관 내 일본인들에 대한 통제, 조일 양국 통교에 관한 의견 제안, 조선 및 북경에 관한 정보수집 및 보고, 東向寺

53)『古館守日記』1801년 4월 5일조

에 조일간에 왕래하는 문서사본 기록을 지시 등 조일간의 왕복문서의 기록과 관리, 왜관 안에서 근무하는 일본일들에 대한 제재 및 관리 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일간에 관수제도가 확립되고, 1873년 메이지 정부에서 왜관을 침탈할 때까지 100명이 넘는 관수가 조선에 파견되어 왜관의 총괄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가운데 네 차례나 조선에 파견되었던 도다 도노모는 역지통신 교섭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고관수 시기에는 통신사강정재판으로 역지통신의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쓰시마에서는 이러한 도다 도노모의 노고를 인정하여 특별히 인삼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도다 도노모는 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수의 근무일지인『館守日記』뿐만 아니라『分類事考』『古館守日記』『贅言試集』등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贅言試集』은 후임 관수의 부탁으로 저술하여 제공한 것이었다.

이렇게 쓰시마로부터도 새로 부임한 관수로부터도 조선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다 도노모의 조선인 인맥, 특히 왜학역관과의 관계가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왜학역관 박준한은 역지통신 교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선측의 주요인물이었으며 도다 도노모와 가장 밀착했던 인물이었다. 비록 역지통신교섭을 추진하다가 면직을 당했지만, 결국 역지통신이 시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도다 도노모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대일본의 양학수용과 유교적 교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고찰

## —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와 '천(天)'관념의 변용을 중심으로 —

김 도 형(영남대)

목 차

1. 들어가며
2. 초기사상에 나타나는 유교적 맥락들 - '천하위공'을 위한 제도론
3.『진정대의』- 제도론으로부터 인간론・국가론에로
4. 안민과 국체론
5.『국체신론』에서의 천부인권 - 天의 변용와 권리개념
6. 맺으며

## 1. 들어가며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시기, 일본의 서구사상 및 제도의 수용문제는 오랫동안 사상사의 주요한 과제들 중 하나였다. 특히 일본의 근대이행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수용양상의 적부(適否)를 따지는 것은 사상사연구의 한 전형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것이 매우 유효하고 적절한 사상사의 방법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겠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전형을 기준으로 하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라던가 '서구사상의 오용 및 실패'와 같은 단순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초를 이루는 데 일조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형성된 '근대일본'의 이미지는, 이윽고 중국이나 한국과의 비교를 시도할 때에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근대화에 실패한 중국,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혹은 '제국주의의 길을 간 일본'과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한 단순비교를 만들어내 일쑤였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만들어 낸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유교'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과거의 비교연구들에서는 일본의 근대사상 수용에 끼친 '유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소위 '올바른' 수용에 방해가 되거나 수용 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로 작동하였음

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많이 사라지고 일본사상에서의 전통적 맥락들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가령 '한문맥'에 주목[1]하거나 근대 지식과 유교적 소양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등[2]), 소위 '유교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문명개화'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던 후쿠자와 유키치 이래로 이와 같은 인식은 뿌리 깊게 일본사상사, 혹은 일본의 타자인식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유학연구가 양명학과 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서구의 철학사와 쌍을 이루는 철학사의 성립을 위한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주자학에 대한 '냉담한 시선'[3]이 존재하였음을 잘 알려진 바인데, 이런 시선은 단순히 에도기 사상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상징[4]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를 운영하였던 조선, 중국까지도 그 정체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사 연구자인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교수는 일본의 왜곡된 한국・중국 인식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유교인식(혹은 오해)이 놓여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5], 그런 의미에서도 메이지 초기 지식인들의 '문명개화'와 유교적 교양 간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재인식해 보는 일은 일본의 근대사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의 근대사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토 히로유키는 막부 말기에서부터 메이지를 관통한 대표적인 지식관료이다. 일본에서는 독일학의 開祖라 일컬어지는 양학자이자, 동경대학의 초대 총장으로서 일본의 근대적인 대학체제 확립에 깊이 관련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메이지 초기의 대표적인 洋學者들 가운데 한 명으로, 그래서인지 그에 관련한 연구들 대부분은 서구사상의 수용자(혹은 오용자)로서의 가토상(像)에 주목해 왔다. 단적으로 그의 진화론 수용 및 국가사상의 확립은 근대 일본에서 일어난 지식인들의 소위 '전향'의 선구이자, 그 파시즘적 국가이론과의 유사성으로부터 '서구사상을 그릇되게 수용'한 하나의 전형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가토의 이러한 '그릇된 수용'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유교가 지목되는 경우도 있었다.[6] 그러나 과연 후기 가토의 국가주의사상형성을 '유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정작 가토가 보다 풍부한 유교적 교양을 바탕에 두고 서구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하던 초기단계에서, 그는 소위 '천부인권론자'로 잘 알려져 있

1) 가령 齋藤希史『漢文脈の近代』, 名古屋大學出版會(2005)
2) 가령 中村春作『江戸儒教と近代の知』ぺりかん社(2002)
3) 中村春作「근대일본의 學知와 유교의 재편」『史林』 제32호(2009), 77면.
4) 上同.
5) 미야지마 히로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유교인식」『한국실학연구』 제23권(2012)
6) 대표적으로 石田雄『明治政治思想史研究』, 未來社(1954)의 前篇 「家族國家觀の構造と機能」등을 참조.

었다. 그가 서구사상(특히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자칭 '주의의 변화'[7], 혹은 타칭 '전향'을 이룬 이후의 시점에서도, 유교는 여전히 그의 사상형성에 강한 자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지 '유교'의 영향으로 서구사상이 잘/못 수용되었다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기와 후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거기에서 차이, 혹은 연속성 내지 변화의 양상을 찾아보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가토의 '유교적 교양',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요소라 할 수 있는 '天'이라는 관념이 가토의 사상형성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서구사상의 수용과 함께 그 자체가 어떻게 變容하는가에 주목하였다. 특히 가토가 양학수용을 본격화한 이후 천부인권론을 표방한 저작들, 즉『입헌정체략』『진정대의』『국체신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후 그의 소위 '전향'이후의 사상구조 안에서 유교적 교양의 역할과 비교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 2. 초기사상에 나타나는 유교적 맥락들 - '천하위공'을 위한 제도론

가토는 일찍이 자신의 처녀작『도나리구사(隣草)』(1860)에서 人和를 이루어 武備의 정신을 채우고, 이로써 淸朝(=막부)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上下分權의 제도를 세울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상하분권의 제도는 군주권력의 입법을 통한 제한과 公會의 설치를 통해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그가 어릴 적부터 익혀왔던 유교적 교양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가령 그가 '武備보다 人和'를 중시하는 자세는 마치 論語 顔淵편에서 군비와 식량과 백성의 신의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느냐는 子貢의 질문에 대해서 군비를 가장 먼저 버리고, 식량을 그 다음에 버리고 신의를 가장 마지막에 버려야 한다고 했던 공자의 대답[8]을 연상시키고, 인화에 대해서 '상하의 정이 능히 화합하는 것이 마치 부자와 같으며, 사해만민이 서로 친목하는 것이 마치 형제와도 같'[9]은 상태, 즉 君民간의 화합, 인민간의 친목이 부모형제와도 같이 단결된 상태라고 설명할 때에는 또한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

---

7) 加藤弘之,『經歷談』『日本の名著 34 西周 · 加藤弘之』, 中央公論社(1972), 489면. 이하『鄰草』,『立憲政體略』,『眞政大意』,『國體新論』,『人權新說』,『經歷談』에서의 인용은 모두 본 책의 면수를 참조한 것이다.

8) 《論語》 <顔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9) 加藤弘之,『鄰草』『日本の名著 34 西周 · 加藤弘之』, 中央公論社(1972), 310-311면. 이하『鄰草』,『立憲政體略』,『眞政大意』,『國體新論』,『人權新說』,『經歷談』에서의 인용은 모두 본 책의 면수를 참조한 것이다.

람의 화합함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10]고 했던 맹자의 언어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의 바탕에는 仁義의 정치를 바라는 가토의 소망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 상하분권을 통해서건 萬民同權을 통해서건 궁극적으로는 소위 '공명정대'한 '天心'에 부합하는 정치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토 초기사상의 특징이다. 가령 가토는 미국 남북전쟁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 ……남부인의 주장은 대단히 天心에 어긋나는 것으로 다만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여 진정으로 국가만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설이라 말할 수 있고, 이에 반해 링컨의 주장은 실로 공명관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소위 '사람의 힘이 왕성하여 하늘을 이기는(人盛勝天)' 시기이므로, 욕심 많고 무도한 남부인이 일단은 승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하늘은 반드시 사람을 이기는(天定勝人)'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므로, 결코 남부인이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남부인은 수년 안에 북부인에게 항복하여 처음처럼 합중국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11]

여기에서 그 승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공명정대'한 '천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두고 있다. 가토는 링컨의 공명관인함이 남부인에 비해 천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유교적 천인관, 군주관에 입각한 판단으로부터 북부인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고를 보여준다.

> 군주악권의 나라에서는, 만사를 왕실과 조정을 위해 도모하고, 상하분권의 나라에서는 만사를 국가와 만민을 위해서 도모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만 이 차이로부터 이 두 정체의 공정함과 사사로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12]

이 부분에 대해 니시 아마네(西周)가 '萬言縷說이 모두 이 한 구절에 그친다'[13]고 평하였듯이, '사사롭지 않은, 만민을 위해서 도모하는 정치'는 결국 가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다. 가토는 각국 의회정치의 양태들을 설명하면서 '이 정체가 공명관인한 연유'로 유의해야 할 바로 '천하는 천하 만민의 천하임을 잊지 않고, 만사가 모두 오직 국왕을 위해서 도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가만민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을 본의로 삼는다'[14]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런 견해는 유교의 민본주의 내지 '天下爲公'[15]의 관념을 기

---

10) 《孟子》 <公孫丑> 下.

11) 加藤弘之, 『鄰草』, 326면. 이에 대해 쓰다 마미치는 '가히 식견을 지닌 말[具眼之言]이라 할 만하다'며 논평을 붙이고 있다. 上田勝美ほか編「解題」『加藤弘之文書』第1卷, 同朋舍(1990), 561면.

12) 加藤弘之, 『鄰草』, 326면.

13) 전게 上田勝美ほか編, 『加藤弘之文書』 第1卷, 563면.

초로 해서 근대서양의 사회정치제도를 이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동 시기에 활약 중이던 유학자 요코이 쇼난(横井小楠)의 생각과도 대단히 유사하다.[16] 말할 것도 없이,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천하의 천하'라는 천하위공의 관념은 위정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논의로서 유교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던 것으로, 쇼난은 위정자의 心術의 방식을 정치의 근본조건으로 생각하여 이 관념을 매우 중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7] 가토가 한때 사사한 바 있던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이 주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유교적 시좌의 변혁을 시도하였던 데 비해, 쇼난의 경우는 그것이 사회정치의 영역까지 확대시키고 있는데, 가토는 이『도나리구사』를 통해 무비를 통한 해방의 구축을 강조하던 쇼잔적인 주장에 대해서 쇼난적인 주장을 내세워 반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토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쇼난과 쇼잔은 모두 '요순삼대의 도'라고 하는 봉건적 질서와 그 가치관 자체에 대한 믿음을 한 차례도 의심한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문명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그것에 대항하여 비약시킬 수 있었던 것'[18]인데, 가토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서구의 제도에 대해 '漢土의 缺典'[19]이라던가, '요임금께서 敢諫鼓를 만들고 순임금께서 誹謗木을 세우신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20]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만일 쇼난이라면, '감간고나 비방목을 세우신 그 마음에 부합하는 것'을 서양에서 발견하였다고 평가하는 데에서 그쳤을 것이다. 또한 위정자의 '심술'을 중시하는 쇼난과 마찬가지로 가토 역시 군주의 공명정대함을 바라는 마음에 호소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 '공명정대'한 마음을 지닌 군주가 궁극적으로는 그 공명정대함을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를 채택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쇼난이 중시한 '심술'을 대체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도를 통해 '인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천하위공'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가토의 의도는, 이후의 저술에서도 계속된다. 가령『입헌정체략(立憲政體略)』(1868)을 저술하기 1년 전, 가토는 블록(M. Block)의 저서인『Die Machtstellung der europaischen Staten, Gotha』(1862)의 초역인『서양각국성쇠강약일람표(西洋各國盛衰强弱一覽表)』를 번

14) 加藤弘之,『鄰草』, 316면.

15) 《禮記》 <禮運>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16) 실제로 가토가 도나리구사를 집필하던 이 시기는, 쇼난이『國是三論』(1860)을 집필하고 마쓰다이라 요시나가(松平慶永)에게 초빙되어 에도를 드나들던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쇼난은 이전까지 유교의 도를 강하게 고수하여 서구의 제도나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국시삼론』에서 사회정치체제의 면에서 서양문명을 '요순의 도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게 되면서 그것을 도입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植手通有,「佐久間象山における儒學・武士精神・洋學-横井小楠との比較において」『渡邊華山・高野長英・佐久間象山・横井小楠・橋本左內』(『日本思想大系』55), 岩波書店(1971), 679면.

17) 植手通有, 전게논문(1971), 675면.

18) 松浦玲,「文明の衝突と儒者の立場：日本における儒教型理想主義の終焉」(3)『思想』592(1973) 59면.

19) 加藤弘之,『鄰草』, 319-320면.

20) 加藤弘之,『鄰草』, 320면.

역했는데, 이 책 머리말에서 가토는 5대륙 가운데 가장 작은 대륙인 유럽이 '부강함에서 홀로 세상에서 으뜸'인데, 그 이유를 '천문지리격물의 학문들로부터 병법항해의 제술에 이르기까지'의 학문기술이나, '화륜차선, 풍구, 전기 등의 기계에서 서구의 부강함의 원인을 찾는 것'[21]은, 아직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은 '유럽 각국민 상하가 부자와 같이 능히 서로 친목하는 데'(=인화)에 있으며, 그 궁극의 원인은 '유럽 각국의 인문이 모두 열려 올바른 정체를 세우고 좋은 제도를 설치한 데에서 기인한다'[22] 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입헌정체략』에서도 여전히 이어진다. 이 책은 『도나리구사』에서 부족했던 서양각국 입헌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정체론'에 대한 모색의 연장선상에 놓인 저작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체구분에 더하여 군주천제라는 정체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23]되는데, 가토는 '군주천제'를 '군주가 천하를 사유하며 백성을 제멋대로 제어하여, 생사여탈의 권리가 오직 그 마음대로 맡겨지는 것을 말한다'[24]고 규정한다. 이것은 『도나리구사』에서 이미 부정했던 정체인 '군주악권'(=군주전치)이 그래도 '다만 습속이 저절로 법률이 되어 약간 군권을 제한하는 바가 있'는데 비해, 이 '군주천제'는 완전한 군주의 私有에 해당하는 것이다.[25] 이런 인식은 귀현전치에 대해서도 이어져서 '나라 안의 貴戚・顯族 수 명이 대대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즉 貴顯이 천하를 사유하는 것'[26]이라고 하여, '이 다섯 정체 중에서 군주천제, 군주전치, 귀현전치 등과 같은 것은 모두 아직 개화문명으로 향하지 않은 나라의 정체'[27]라고 평가한다. 즉 이것은 군주의 '사유'라는 점에서 천하위공의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종류의 정체인 것으로, 가토가 가장 피하고 싶은 정체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입헌정체략』에서는 이전 『도나리구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개화문명으로 향한다'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서양서에 대한 접촉이 늘어나고, 일반적으로도 서양에 관련된 지식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받아들인 관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8]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토의 '개화문명'에 대한 개념이 『도나리구사』

---

21) 上同, 1면.

22) 上同.

23) 『立憲政體略』보다 2년 전에 나온 후쿠자와 유키치의 『西洋事情』에서도 군주제는 立君獨裁와 立君定律의 두 정체로 분류되어 있어, 이 시대에 정체를 세 가지로 구별한 논의는 쓰다 마미치의 『泰西國法論』이 최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加藤弘之『立憲政體略』, 332면.

25) 참고로 '군주천제'는 Despotize의 번역어이며, '군주전치'는 서양의 절대주의국가(Absolute State)를 지칭하는 것이다.

26) 加藤弘之『立憲政體略』, 332면.

27) 上同, 333면.

28) 문명이나 개화 등의 개념은 시기에 이르면 이미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西洋事情)』외편(外

에서 말한 공명정대한 정치의 실현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가토의 관점에서 '개화'는 군주나 귀족의 사사로운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문명의 개화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지금으로부터 1, 2백 년 전 무렵부터 名彦과 鴻儒들을 배출하여 이들로 인해 慷慨함을 품은 자가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영국인 밀튼씨, 로크씨, 프랑스인 몽테스키외씨, 루소씨, 독일인 칸트씨, 피히테씨, 그 외 여러 명이 빈번히 왕공(王公)이 천하의 백성들을 사사로이 소유하는 것이 그릇된 일임을 변론하고, 혹은 상하동치, 혹은 만민공치의 정체를 주장하였는데, 이 공론에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결국 왕공의 학정을 거부하고 종종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공의 暴威는 조금씩 쇠퇴하여 결국 종래의 정체가 영존할 수 없는 기세가 되어 각국이 조금씩 그 정체를 바꾸면서 혹은 상하동치, 혹은 만민공화의 정체를 세우고, 이로써 인민과 정치를 함께 하게 되었다.[29]

흔히 서구의 문명개화에 대한 관념을 받아들임으로써 공명정대한 정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적어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하위공'적인 관념으로부터 서구의 정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가토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명정대한 정치'라고 하는 보편성이 서구의 역사 안에서 실현된 것일 뿐이다. 나아가 가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 황국 또한 2천여 년 간 고유한 정체를 가졌으나, 작년에 우리 구 막부가 시세를 관찰하여 정권을 天朝에 歸納하신 이래로 만기일신하여 공명정대한 정체를 일으키셨다. 진실로 황국중흥의 성업으로, 백성의 행복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사실 이와 같은 메이지 유신에 대한 평가는 의례적인 것이겠으나, 동시에 가토의 희망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했을 것이었다. 막부의 신하였던 가토의 입장에서 보자면, 막부가 '정권을 천조에 귀납'한 사건은, 그야말로 천하위공의 관념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함을 실현한 결단으로 합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기에서도 앞의 『도나리구사』에서 확인하였던 천하위공의 관념이 여전히 공명정대함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지상과제이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양술로서의 정체'가 시행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어서 가토는 상하동치와 만민공치의 입헌제도와 '三大權柄', 즉 삼권분립에 대해 각

---

篇)(1867)에서 civilization을 '세상의 문명개화(文明開化)라는 표제어로 번역한 이래 잘 알려져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양신, 전게논문(2008) 및 石井研堂「增補改訂明治事物起源」明治文化研究會編,『明治文化全集 別卷-明治事物起源』, 日本評論社(1944), 55면. 을 참조.

29) 加藤弘之『立憲政體略』, 333-334면.

국의 사례들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國民公私二權'에 대해 덧붙인다. 이 부분은『도나리구사』로부터 이어진 이제까지의 저술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데, 여태까지 이루어진 '良術'로서의 정체와 그 구체적 설명은 어디까지나 정책적 제언이었던 데 비해 이 부분은 그 근거에 대한 설명, 즉 한걸음 더 나아가 '인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시도되고 있다.

> 군주천제, 군주전치, 귀현전치와 같은 데에서는 천하의 백성들이 군주, 귀현의 私有僕妾이다. 복첩이라면 다만 그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하나의 권리도 가질 수 없음은 논할 것도 없다. 단 입헌의 양 정체와 같은 데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천하를 군주, 귀현의 私物로 삼지 않고, 소위 천하의 천하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 신민인 자에게는 스스로 권리가 존재한다. 권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를 사권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공권이라고 한다. 사권이란 자기 몸에 관계된 것으로, 소위 임의자재의 권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공권이란 국사에 관여할 권리를 말한다.[30]

이렇게『입헌정체략』에서는『도나리구사』의 입헌 양 정체의 규정에, 근대국가의 공적 성격, 서양 근대국가에서 실현되고 있는 공명정대한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 제도인 국헌, 3대권병, 나아가서는 만민을 공사 두 권리의 소유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기존의 가토연구들에서는 헌법, 삼권분립, 개인적 권리라는 세 가지의 '서구적'인 개념들을 수용함으로써 '명확한 근대국가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31]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서구 제도에 대한 가토의 이해는 유교적 교양으로부터 형성되거나, 혹은 그 색채를 여전히 강하게 남기면서 변주된 것으로 보는 관점 또한 가능할 것이다.

가령 가토가『입헌정체략』을 저술하기 이전에 쓰인 미완초고 가운데「자주의 권리(自主の權)」[32]등을 살펴보면, 그의 권리 및 자유개념이 그가 지닌 유교적 교양으로부터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네덜란드어 '프레이헤이트(freiheit)'를 두고 '일본인은 물론 漢人들도 일찍이 직역할 수 없는 말'로 '우선 자유자재라고 하던가, 勝手次第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로 사실 마땅한 번역어를 찾는 데 고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요사이 영국인 미국인 등이 한문으로 저술한 책을 보면 그 안에 자주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저 프레이헤이트라는 글자를 번역한 것'으로 직역이 아닌 의역이므로 번역어로 쓰기에 마땅하지 않지만, '글자를 음미하여 보면 실로 원어의

---

30) 上同, 341-343면.

31) 가령 安世舟,「明治初期におけるドイツ國家思想の受容に關する一考察-ブルンチュリと加藤弘之を中心として―」『年報政治學・日本における西歐政治思想』, 岩波書店(1975), 118면 참조.

32) 加藤弘之,「自主の權」, 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第1卷, 36-37면.

의미를 잘 담고 있는 飜譯字라고 생각되어 그 맛이 매우 깊다'[33]고 평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프레이헤이트'는 단지 '자유자재'나 '승수차제'에 그치지 않고 '자유자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권리의 소유개념으로까지 나아감으로써 가토가 '자주'라는 표현이 의역이기는 하지만 번역어로서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입헌정체략』에서 '公私二權'을 인민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관념이 이미 초기의 사상형성단계에서부터 가토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토가 초기에 신봉하였던 '천부인권설'은 루소적인 개념이 아닌 사실은 블룬칠리 국가학에서 나온 자유 및 권리개념의 영향이라는 점이 지적[34]된 바 있었고, 이로부터 가토의 소위 '전향'을 설명하는 논리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 초고에서 가토가 이해하는 '자주', 즉 '자유의 권리(소유)'의 개념은 블룬칠리나 루소 이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초고가 작성된 일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전술한『도나리구사』의 탈고(1861) 이후 그리 오래지 않은 시점에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35]을 고려하면, 이후 가토가 주장하게 되는 '천부인권설'은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유교적 교양이나 가치관이 관련 개념들을 이해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 기초를 마련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자주의 권리'에 대한 관념은 곧바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한, 즉 굳이 말하자면 평등의 관념으로까지 이어지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지금 서양일반에 이 프레이헤이트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하는 것'은 즉 '존귀한 이가 가능한 일이라면 가령 비천한 이에게도 허용하고, 또 비천한 이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가령 존귀한 이에게도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세운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금 서양에서 이 '자주의 권리'는 존귀비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양에서는 이 '존귀비천의 구별'이 서양에 비해서 어떠한가. 가토의 문제의식은 자연스레 동양의 '자연적'인 봉건질서에 대한 의문으로 이행하게 된다.「자주의 권리」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군신존비」[36]에서 가토는 서양의 군신관계와 그 외의 나라들의 군신관계를 비교하면서,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논법을 취한다. 가

33) 上同.

34) 安世舟, 전게논문(1975), 132면

35)『加藤弘之文書』第1卷의 본 초고에 대한 해제(565면)에서 고노 쓰네오(河野恒男)는, 이 초고가 '번서조소라고 인쇄된 괘지(罫紙)에 붓글씨로 쓰여 있으며, 집필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도나리구사』가 완성되고(文久 元)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쓰인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번서조소가 1862(文久2)년 5월에 양서조소(洋書調所)로 개칭되었고, 그 이듬해 8월에 다시 개성소(開成所)로 개칭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번서조소'라고 쓰인 원고용지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해제의 시기추정의 타당성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36) 加藤弘之,「君臣尊卑」, 전게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第1卷, 37-39면.

토에 따르면, 서양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몸을 바쳐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신민 제일의 요무'라고 하는 데 비해, 서양의 나라들에서는 '임금의 지휘에 따라서 몸을 바쳐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신민 제일의 요무'로 삼는다고 하여 '임금에게 충성'하는가, '나라에 충성'하는가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를 두고 기존에는 '서양군신의 도가 대단히 천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지만, '公眼平心'하게 바라보면 '서양군신의 도가 도리어 천리에 가까운 것임이 명료'[37]하다는 대담한 주장에까지 이른다.

특히 이 초고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토가 군신관계 성립의 이치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추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가토는 인간세상의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이건 和漢이건 관계없이 처음에 부부로부터 시작하여 부자, 형제, 장유로 이어지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인간관계, 즉 '四倫은 반드시 천리자연에서 나온 것'[38]으로 개벽 이래로부터 언제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다. 원래 유학적 질서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나아가는 동심원적 질서를 그 기초로 한다고 일컬어지는데, 가족, 친지, 이웃은 사실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孝적 질서로부터 연역된다는 점에서 '자연적 질서 = 천리'로부터 나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군주마저도 동심원적인 자연 질서 안으로 포함시키려면 사실 어떤 식으로든 비약이 필요하게 된다. 가토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민하였던 듯한데, 이런 생각 자체가 군신간의 상하적인 忠적 질서를 '자연적 질서 = 천리'로 정당화하는 일본 주자학의 인식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군신존비가 천리일 수 있는 근거를 그는 '자연 그 자체로서의 위계질서'로부터가 아닌, '현명한 군주가 암매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의 자연성으로부터 찾아서 정당화하고 있다. 즉 가토는 '賢愚의 차이'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상하관계를 자연적인 질서(=천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시기의 가토가 생각하기에 '군주의 지배'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권위에 입각한 것도, 혈연적 정당성이나 장유질서에 기반하는 것도 아닌, '인민이 점점 증식'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才智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더욱 뛰어난 자가 모든 일에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일을 도모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여 '무엇이든 처리하도록 하게' 한 데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39]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현상으로, 여기에는 군주의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발상이 깔려있다. 이윽고 이 우두머리된 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손은 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지휘를 감수

37) 上同, 37면.
38) 上同, 38면
39) 上同.

하면서 그 家筋이 군주의 가문이 되었고, 그 친척이나 가까운 자들로부터 유력한 이들이 귀하게 여겨지면서 군신존비가 생겨났다'[40]고 말한다. 이것이 오래되면서 마치 자연적 질서와도 같이 여겨지게 되었지만, 가토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군신의 一倫만은 부자, 부부, 장유, 붕우의 사륜과 같이 천리자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만 우연한 기세로부터 이와 같이 된 것'[41]이다.

이처럼 가토는 적어도『입헌정체략』를 집필하기 이전부터 '인간의 동등한 본성(모두가 자주의 권리를 지닌)', 즉 '동등한 사람들'에 대한 감각과, 그로부터 사회(나아가 국가)형성의 당위성(=천리)을 찾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프레이헤이트'의 번역어를 고심하던 가토는 주자학과도 소라이학과도 다른, 그러나 유교적 이상으로부터는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마저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감각은 단지 관념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의 입안제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령 그가 1869(明治 2)년에 公議所에 제출한 '히닌・에타 폐지의견(非人穢多御廢止ノ議)'은 이 시기 가토가 지니고 있던 인간관을 무엇보다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히닌・에타와 같은 것은, 그 연유한 바를 분명히 안다고는 하지만, 人類임에 틀림없는 자에게 인간 이외의 취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천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 지금 외국과 교제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한 國辱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御一新의 때를 맞아 히닌・에타라는 칭호를 폐지하시고 庶人으로 하시기 청합니다. 이미 구 막부가 지난 봄에 단자에몬(彈左衛門) 지배하에 있던 것을, 히닌・에타의 칭호를 폐지한 일이 있음에도, 어일신을 맞아 여전히 이와 같은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왕정의 큰 缺典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번에 다시 서민으로 하시기를 바라옵니다.[42]

이 히닌・에타를 폐지하는 이유로 그는 외국과의 교제상에서 생길 곤란함, 어일신의 취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인류이면서 인간 이외의 취급을 하는 것이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듯 누구나 '권리'를 동등하게 지녔다는 인간론의 문제는 이후 일본 양학사에서 가토의 초기

40) 上同.

41) 上同.

42) 明治２年 公議所 加藤弘藏「非人穢多御廢止ノ議」
非人穢多之儀、其緣由確說分リ兼候得共、到底人類二相違無之者ヲ、人外ノ御取扱ニ相成候ハ、甚以天理ニ背き候儀、且ハ方今外國交際ノ時ニ方リテ、右樣ノ事其儘ニ被成置候テハ、第一御國辱此上モ無之儀ト奉存候。何卒此御一新ニ方リ、右非人穢多ノ称被廢止、庶人ニ御加ヘ相成候樣仕度、已に旧幕府ニテ、昨春彈內記支配下ノ者穢多ノ称被廢儀有之候處、御一新ニ方リ、猶右樣ノ儀ニ御心付無之候ハ、乍恐王政ノ大御欠典ト奉存候間、右此度改テ庶民エ御加ヘ有之度奉存候.

사상이 지니는 특수성을 규정해줄 만큼 중요하다.

가토의 초기 저술들은 어디까지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주군에서 간언하는 '관료지식인'적인 것으로, 이 시점에서는 아직 '국가의 기원(성립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였는데, 『입헌정체략』의 말미에 언급한 '공사이권'이 어디로부터 연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의 필요로부터, 이제 『진정대의』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인간론과 그로부터 연역되는 국가론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 3.『진정대의』- 제도론으로부터 인간론・국가론에로

『입헌정체략』으로부터 다음의 저술인 『진정대의』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가토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승진을 거듭하면서 관료로 승승장구 하고 있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입헌정체략』까지에서 제시하였던 '제도'의 문제로부터, 본격적으로 그 제도의 운용과 정당성의 단계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진정대의』에서 가토는 먼저 '治法'과 '治術'을 구분하고, 이 두 가지는 '국정에서 소위 수레바퀴의 축,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으로 결코 하나라도 빠질 수 없'[43]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본래 치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새롭게 고치는 것도 즉 치술로, 특히 제1의 급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법이 좋고 나쁨도 치술의 巧拙에 관련되는 것으로, 좋은 치법을 제정하는 것은 곧 훌륭한 치술이고, 나쁜 치법을 세우는 것은 즉 그 졸렬한 치술로서, 국가의 안위와 존망은 오로지 치술의 교졸에 달린 것'[44]이라고 하여, 이 저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치술'에 그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치술'이란 무엇인가. 이전에 가토 설명했던 '치법(=제도)'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실제 사례들도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에 비해 치술은 '설령 입헌의 양 정체를 갖춘 나라들에서도 치법처럼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서 그 마땅함을 정하는 것'[45]인 만큼, 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지는 않고, 특히 이것은 '오로지 정권을 쥔 자의 지략, 재능에 의하는 것'[46]이라고 설명한다. 즉 치법이 제도, 규칙으로서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해, 이 치술은 인물, 그 나라의 사정 등에 따라서 보다 특수할 수 있는 것이다.

---

43) 加藤弘之『眞政大意』, 347면.
44) 上同, 347-348면.
45) 上同, 348면.
46) 上同.

그러면서도, 역시 고금의 학자들이 연구한 규칙들과 각종 사례들을 통해서 그 대강을 설명하자면, '치술의 정칙'은 '먼저 첫째로 治國의 本意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치국의 본의라고 하면, 어려운 듯하지만,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다만 安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치술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 안민을 일대목적으로 하여, 이 안목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실로 그대로만 된다면 진정으로 치안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치술을 곧 眞政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47)

이 저술의 제목인 '진정'의 의미가 제시된다. 안민을 달성하고 치안을 영위하는 치술, 그것이 곧 진정이다. 그러면서도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안민에 있으면서도, 치술이 대단히 졸렬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인민을 괴롭히는 경우, 진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가 병을 치료하면서 '병자를 진찰하여 그 병의 성질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치술을 시행하'면서 '꼭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요건'은 치술의 대상인 '사람의 천성과 국가정부가 일어난 연유인 天理를 아는 일'이다.48)

이제 제도론으로부터 정치론으로 넘어온 가토는, '사람의 천성과 국가정부가 일어난 연유', 즉 국가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을 설명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서 함부로 치술을 시행하면 자칫 인성과 천리에 어긋나게 되므로, 마치 실력이 없는 의사가 그 병증을 잘못 아는 것과 같은 일로, 다만 그 목적인 안민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로 인하여 마음에도 없는 虐民에 빠지게'49)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 사람이라는 것은 새삼 덧붙일 것도 없이 하늘이 가장 사랑하신 것으로, 사람에 대해서만 만복을 내려주신 하늘의 뜻(天意)을 보자면, 모든 신체의 구성법으로부터 그 정신・재지의 영묘함이라는 것이 결코 금수와 비슷하지 않고, 게다가 또 천성에 다양한 여러 가지 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不羈自立을 바라는 정이 가장 왕성하여 특히 이것이 일신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紹介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50)

가토가 보기에 사람의 성질은 '하늘이 가장 사랑'하여 '만복을 내려주신' 까닭에 애초에 '금수와는 다른' 것으로, 그 차이점에는 정신과 재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을 가졌

47) 上同, 348-349면.
48) 上同, 349면.
49) 上同.
50) 上同, 350면.

다는 점도 포함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기자립의 정'임을 강조한다. 가령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는 대로 하면 유쾌하나, 만일 타인으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면 즉시 불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이므로, '누구라도 束縛拘制를 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51]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즉 가토에 따르면 우리는 불기자립의 정으로 인하여 행/불행을 구분하게 되고, 이 정을 온전히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전제하는 셈이 된다. 나아가 가토는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느끼는 쾌, 불쾌의 감정으로부터 그것이 '天性에 있다는 확증'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불기자립의 정'의 존재증명, 즉 실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가토의 향후 사상 전개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그의 인간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늘이 사랑'하여 '만복을 내려'주었다고 하는 인간관은, 이후 가토 초기사상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국체신론』의 천부인권설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 천부인권설의 방기를 계기로 하여 그의 소위 '전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체 '하늘이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인간만이 지닌 성질들, 즉 '천부인권'에 대한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연유하였는가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전술하였던 대로 루소의 영향으로 보는 관점으로, 가토 스스로가『경력담』에서 '루소 등이 주장하는 천부인권의 주장을 믿고, 모든 우리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하게 평등한 권리・자유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설을 대단히 흥미로운 진리'라고 언급한 부분으로부터 일찍부터 루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가토가 루소 본인의 저작 등을 통해 그 사상을 이해하였다기보다는, 이후 가토의 주요한 사상적 원천이 되는 블룬칠리의 자유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이해된 루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초기부터 '루소의 과격한 정치사상은 방법론적으로는 편리법론, 즉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방법의 산물'[52]이라고 한 블룬칠리의 주장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천부인권론 비판과 전향의 계기를[53] 안고 있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토의 천부인권 개념은 역시 유교의 인간관을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앞에서 번서조소 시대의 가토가 인간의 천성을 '자주의 권리(자유)'로부터 정의하고, 그로부터 '군신존비의 구별'이 없는 질서를 생각한 바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진정대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는 '불기자립의 정'은 'freiheit'의 번역

51) 上同.
52) 加藤弘之譯『國法汎論』(『明治文化全集』補卷(2)), 23-24면.
53) 安世舟, 전게논문(1975), 150면.

어로서 가토가 논하였던 '자주의 권리'를 연상케 한다. 가토는 거기에서 이 '자주의 권리'가 인간이 타고나는 性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타고나는 성질로서의 '불기자립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거기서 말하는 天性이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런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하늘이 부여해준 것(天賦)이라는 관념 또한 함께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디 天관념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애매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이 완전히 자연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가령 마쓰모토 산노스케는 일본사상사에서 나타나는 천의 관념을 1. 인격적인 천 2. 규범으로서의 천 3. 불가항력적 힘으로서의 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54] 여기서 가토가 말하는 천은, 앞의 '하늘이 사랑하셔서' '만복을 내려주셨다'는 표현 등으로부터 이미 인격적인 천이 부여한 성질이라는 종교적, 혹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토의 천성론은, 이전 「자주의 권리」때와도 또한 미묘하게 달라져있다. 여전히 '불기자립의 정'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성질로서 설명되고는 있지만, 이 정 자체는 구속의 배제나 이익의 추구와 같이 크건 적건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것은 본질상 개별적이며 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이 개별적이며 사적인 본성이 단순한 개인의 자기주장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널리 사회적으로도 용인할 수 있는 일반적, 공적인 관념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이 본성의 존재양식을 둘러싸고 당연히 제기되게 된다. 가토는 이에 대한 해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사람은 선악에 관계없이 불기자립의 정을 멋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造化라는 것은 실로 기기묘묘한 것으로, 또 다른 하나의 적절한 性을 부여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위 인의, 예양, 효제, 충신 등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늘날 교제상 각각 다할 바 본분이라는 것이 있으니, 자기 혼자만 좋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55]

인간의 본성이 지닌 한 측면, 즉 '불기자립의 정'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사회에서 권리로 용인되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 규범에 기초한 억제가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유교적인 性의 개념으로 돌아오고

54) 松本三之介「天賦人權論と天の觀念--思想史的整理のための一つの試み」家永三郎教授東京教育大學退官記念論集刊行委員會編『近代日本の國家と思想』, 三省堂(1979).

55) 加藤弘之『眞政大意』, 350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가토는 그 억제를 외부의 법이나 예로 돌리지 않고, 또 하나의 천성이라 하여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인의, 예양, 효제와 같은 개념들이 '불기자립의 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천성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마치 주자학의 이기론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 설명은 이제 사회(질서)를 이루고자 하면 역시 '불기자립의 정'을 표출할 권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포기선언이기도 하다.

> 결코 자기의 권리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기 본분을 다하여 타인의 권리까지 敬重하여 감히 屈害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道는 서지 않는 이치는 분명하다.[56]

가토는 이에 대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타인의 권리를 경중하는 것은 즉 義務라고도 칭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 된 자라면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라고 말한다. 즉 '불기자립의 정'을 행사할 권리가 온전한 질서 속에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의무개념이 요청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는 인간의 부여받은 천성으로부터 도출되고, '불기자립의 정'은 이와 같은 효제, 충신, 예양 등과 같은 '도리'와 결부되어야 만이 비로소 자연적 권리 즉 '천부인권'으로서 인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토의 '천부인권설'에서는 이러한 '천'이라는 유교적인 관념이 개인의 생존이나 행복의 추구라는 '天意'를 위한 수단으로서 소위 자연적 자유(불기자립을 바라는 정)를 기초매기는 역할을 달성함과 동시에, 또한 이 자연적 자유가 권리로서 인정되기 위한 도덕적 규범과도 결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 그 특징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본래 내재된 인간의 道를 이끌어내는 가토의 설명방식은 언뜻 주자학으로의 회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의 문맥은 주자학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자학자라면, 저와 같은 이원적 도식에서 理의 철저한 우위를 주장하였을 것이다. 만일 소라이학의 입장이었다면, 인간의 천성으로서의 의무개념보다도 그것을 규정한 예(혹은 법)개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서구의 정치사상이나 인간관을 반영한 발상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만일 루소였다면, 저 '강자는 언제나 약자를 능멸하고 큰 것은 언제나 작은 것을 쓰러뜨리게 되'는 상태 자체로부터 '사회계약'을 끌어냈을 것이기 때문이다.[57]

---

56) 上同.

57) 그런데 여기에서 가토가 사회(국가)를 바라보는 논거를 인간의 '천성'으로부터 '국가의 성립'에로 확대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일찍이 가와하라 지키치로(川原次吉郎)는 이런 사고방식이 로크나 홉스의 사상 일부에도 있지만, '가토는 그것을 계약설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川原次吉郎「眞政大意の研究」『明治文化研究』 第三輯, 書物展望社(1934), 41-42면) 이러한 견해에 대해 야스 세이슈는 전게논문(1975)에서 '인간의 천성으로서의 불기자립

그러나 가토에게 저 '불기자립의 정'은 사람들이 천성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권리'로, '의무'는 그 '권리'의 원활한 소유, 행사를 위해서 요청된 것이다. 그 관계를 가토는 굳이 '조화라는 것의 기기묘묘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쩌면 가토는 서구의 '프레이헤이트'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도달하였던 '권리'로서의 자유를, 이제 유학적인 틀로 받아들임으로써 온존시키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처럼 천성으로서의 자유와 타인 자유의 경중의 '조화'는 모두 교제의 도를 위해서 천이 부여해준 것이다. 만일 이것이 조화되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강자는 언제나 약자를 능멸하고 큰 것은 언제나 작은 것을 쓰러뜨리게 되어서, 오늘날의 교제의 도라는 것이 결코 서지 않'[58]게 된다. 그리고 교제의 도가 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여 그 생을 편케 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59]해 질 것이다.

이렇듯 이 시기 가토의 천부인권설에로 이어지는 사고방식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익혀왔던 유교를 위시한 전통사상의 天관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교양이 서구의 천부인권적인 관념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일단 큰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가토는 '인위적인 계약'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의 천성으로부터 국가와 정부가 일어나'는 것을 천리[60]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기초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그리고 불가결한 요건'[61]으로서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이 '천성'이라는 인간의 자연성에 근거를 가지는 한, 인위에 의한 국가의 재구성이라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시할 가능성을 또한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도출되는 권리 또한, 천성으로서의 '불기자립을 바라는 정'이라는 것에서 도출되어, 규범적 내지 이념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62]로서 주장되게 되는

---

의 정이라는 권리가 절대적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약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로크의 사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134면)이라고 논평한 바 있는데, 이것은 물론 로크를 위시한 서구의 자연권개념과의 비교상 타당한 '지적'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토의 전향을 예비하는 것이었다거나, 서구의 사상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완전하다는 식의 '평가'는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시각은 '서구적 근대'를 절대적인 잣대로 삼았던 시기의 근대주의에 입각한 것일 텐데, 이런 시각에 입각해 본다면 메이지의 계몽주의는 모두 '불완전한 것' 내지 '미숙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메이지의 계몽주의 지식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상기와 같은 근대주의적인 시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자체가 가진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8) 上同.

59) 上同.

60) 加藤弘之『眞政大意』, 351면.

61) 松本三之介『天皇制國家の政治思想』, 未來社(1969), 229면.

62) 石田雄『日本近代思想における法と政治』, 岩波書店(1967), 102면.

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런데 가토가 이『진정대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전의 저술들과 달라진 특징이 있다면, 국학자류의 국가론이나 복고적인 주장들에 대한 반박이 눈에 띠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서술이 이 시기 가토의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령 헌법의 제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토는 군주천제의 정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천하의 백성이 군주의 사유복첩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그 신민은 국가의 일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의 일이라도 결코 자유로이 처치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그리하여 소위 불기자립의 권리라는 것이 조금도 서지 않고, 선악사정을 막론하고 다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정부와 시민 사이에 권리, 의무와 같은 주장이 있을 도리가 꿈에도 없다. 이래서는 실로 예의 인성, 천리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로, 억조를 위해서 일군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군을 위해서 억조가 있는 셈이 된다. 진실로 한심한 도리가 아닌가.63)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도 느껴지는 위의 발언이야말로 가토가 당시 어떤 주장을 주된 論敵으로 삼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신민들을 '군주의 사유복첩'으로 사유하는 입장으로, 이것은 불기자립의 정과 그 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논리였다. 이것은 곧 당시의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 군주인 천황을, 그 백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인간관, 그리고 그로부터 연역된 국가관(국체)의 차이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었다.

> 단 이렇게 말하면 혹은 남을 비난하는 자(難者)가 있으니, 億兆를 위해서 一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異邦)의 국체이지 결코 우리 황국의 국체는 아니라고 한다. 황국의 경우는 이자나기가 명하고, 미토스사노오미코토의 부름을 받아……천지가 있는 한 황국을 天孫의 나라로 정하셨으므로, 외국과 같이 억조를 위해서 일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군을 위해서 억조가 있는 것으로, 이것이 곧 황국이 가장 고귀한 연유, 저 이방의 국체 등과는 천지현격의 차이가 있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다.64)

가토는 국학자들이 말하는 위와 같은 국체를 정면에서 반대한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가토가 초기의『도나리구사』에서부터 가장 기초로 삼아왔던 원리, 즉 '만사를 왕실조정을 위해서 도모하는가, 국가만민을 위해서 도모하는가'로부터 公私여하를 판단해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이다. 동시에 에도시대의 선학들로부터 이어받은 '천하는 모두의 천하'이

63) 加藤弘之『眞政大意』, 354면.
64) 上同.

지 '군주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는 '천하위공'의 관념이야말로 메이지의 일본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고, 진정한 치술의 판단 근거이며,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진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토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국학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 원래 황국은 天神天祖의 조칙에 의해서 영원히 천손의 나라라고 정하신 것이므로 황통의 萬古一姓에 대한 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원래 그 천신천조께서 이와 같이 정하신 바가 곧 억조를 愛憐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나와……천조대어신이 천손에게 내린 조칙에, '그대 스메미마노미코토에게 명하노니,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려 운운(汝皇御孫命いでまして, 安國と平らけく安らけく, 云云)'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간략히 말하자면 천손황국의 군주가 되신 이상은, 영원히 황국을 安泰하게 다스리시라고 말씀하신 조칙으로, 즉 억조창생을 위해서 일군을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신 것이라는 점에는 조금의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으며, 특히 또 人皇의 세상에 이르러서도, 닌토쿠(仁德)천황의 조칙에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므로, 이로써 억조창생을 위해서 일군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일군을 위해서 억조창생이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명료하다.[65]

라고 하여 일본의 국체 역시 이 '천하위공'의 관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릇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가토가 생각한 '진정'은 곧 '안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기자립의 정'으로부터 생겨나는 권리와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이것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제일의 급무'이며, 이러한 제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안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동시에 이 안민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신민을 '권도'하는 일인데, 이 권도는 절대로 정부의 과다한 간섭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신민의 '생명, 권리, 사유(재산)'를 보호한다고 하는 국가의 제일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것은 천하가 군주의 사유가 만민이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천하위공'의 국체관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가토는 이 점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이제 가토의 다음 목표는 천하가 만민을 위한 천하라는 점을 증명해야만 했다. '불기자립의 정'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국가관이 연역될 차례가 된 것이다.

## 4. 안민과 국체론

『국체신론』은 이런 와중에서 가토의 이전까지의 생각을 집대성하여 간행한 책이다. 이

65) 上同, 354-355면.

전의 저술들,『진정대의』는 물론 그 이전의『입헌정체략』이나『도나리구사』에 나온 가토의 인간론, 정체론, 국체론 등이 모두『국체신론』에서 보다 구체화되어서 비교적 명백한 국가상을 제시하는 데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가토의 천하위공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양학의 지식으로 제시되는 국가론은, 당시 조정의 관료 및 지식인들에게 그다지 환영을 받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가토는 특히 자신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학류의 국체론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앞의『진정대의』에서도 '모고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국학자들의 국가론에 대한 비판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제『국체신론』에서는 그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여서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국체에 대한 최신이론'이 지닌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가령 초기의「군신존비」에 대한 초고에서 가토가 군신관계의 '비자연성'을 주장한 이래로 일관되게 지녀온 원칙, 즉 평등에 대한 감각은, 이제 그런 감각 없이 여전히 신분질서의 '자연성'을 주장하면서 이루어진 국체를 '野鄙陋劣'하다고 비판하기에까지 이르렀다.

> 군주도 사람이고 인민도 사람이다. 결코 다른 종류(異類)의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오직 권리에 대해서 天地霄壤의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 어째서인가. 이렇게 야비누열한 국체의 나라에서 태어난 인민이야말로, 실로 가장 불행하다 말해야 할 것이다.[66]

이 비판은 단지 국학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신분질서를 '천리당연'한 것으로 가르쳐 온 기존의 유학을 배워 온 한학자들을 향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군주도 인민도, 결코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의식은 앞에서 언급했던「군신존비」나「히닌・에타 폐지의견」에서도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이처럼 강력한 어조로 기존의 질서를 비난하는 것은 약간 놀랍기도 하다. 가토의 비판은 다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 和漢과 같이 개화가 완전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옛날부터 아직 국가・군민의 진리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야비누열한 국체에 대해 실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옳다고 하며 점점 이를 양성하기에 이른 것은 실로 개탄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67]

기존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국가와 군민에 대한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체가 심지어 '야비누열'한 것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이것을 옳다고 하면서 계속 '조장'함으로써 인민들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사실 당사자들이라면 듣기 거북할 정도의 이런 비판의 화살은, 이제 '경전'과 '성인'을 향하는 것마저 서슴지 않게 되

66) 加藤弘之,『國体新論』, 383면.
67) 上同.

었다.

> 시경에 이르길, '온 하늘 밑은 왕의 땅이 아닌 데가 없고, 땅 닿은 곳에 사는 이 치고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은 없다(普天・率土, 王土・王臣)'(小雅, 北山篇,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라고 하였고, 또 맹자가 '온 나라의 재부를 홀로 차지하였다(富有天下)'(孟子 萬章上篇)라고 하였던 것은 완전히 국토를 군주의 사유로 보고, 인민을 군주의 신복으로 여긴 것임이 분명하지만, 옛날부터 아직까지 이 말을 非理라고 한 자가 있음을 들어본 일이 없다.[68]

가토가 보기에는, 경전의 내용과 맹자의 말씀마저도 '비리'이다. 천하는 만민의 천하로 일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가토가 일관되게 자기 입론의 기준으로 삼는 준거적 가치관, 즉 '천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가토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시경에 나오는 성인의 말씀도, 맹자의 말씀도 모두 '천리'에 합당치 못한 '비리'인 것이다.

사실 가토의 이런 생각은, 이미 『국체신론』에 이르기 전부터 엿보이기는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만민공치에 대한 인식이나, 자유와 평등을 수용하는 데 있어 '천하위공'이라는 관념으로부터 그 사유를 연역해 가는 방식을 보면 가토는 그다지 주자학적인 입장에 매여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이 지닌 유교적 교양을 변형시키거나, 때로는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군의 사유가 아닌 만민의 공유로서의 천하'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단하는 가치들에는 비단 서구지식들 만이 아니라, 자신이 익혀 왔던 유교적 교양들 또한 포함되어 재평가가 이루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령 가토는 우선 유교의 좋은 점들을 열거한다. '지나는 일찍이 개명으로 나아간 나라'이므로 거기에는 감탄할 만한 좋은 가르침들이 있다. 가령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은이 가장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 孟子 盡心下篇)'고 한 맹자의 가르침이나, 상서(尙書)의 '민은 나라의 근본(民惟邦本 / 五子之歌篇)'이니, 제범(帝範)에 '백성이 나라보다 먼저이고, 나라는 임금의 근원이다(夫人者國之先 國者君之本)'라고 한 것 등,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좋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가토가 보기에 이것들은 '단지 인군・성주 및 명현・홍유들의 언행에 그치는 것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실로 그 국체를 개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69]이다. 무엇보다 앞에서는 온 국토를 군주의 사유(富有天下)로 본 맹자가 다른 데에서는 백성이 가장 무겁고 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하니, '대체 얼마나 표리모순한 말'이냐며 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

---

68) 上同.

69) 加藤弘之, 『國体新論』, 384면.

이와 같은 일군의 국가사유에 대한 반론은 그대로 국학자류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간다. 그들이 황통을 중시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군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천하의 국토는 모두 천황의 사유이며, 억조인민은 모두 천황의 신복이라 하고, 따라서 여러 가지 견강부회의 망설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인민은 오로지 천황의 미고코로(御心)를 그 마음으로 삼고, 천황의 말씀만 있다면 선악사정을 막론하고 다만 감수하면서 칙명대로 따르는 것이 眞誠한 臣道'[70]라고 말하며 이를 일본의 '국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견해의 누열(陋劣)함과 그 주장의 야루(野陋)함이 실로 비웃을 만'[71]한 것이다.

> 천황도 사람이고 인민도 사람이므로, 다만 동일한 인류 가운데에 존비상하의 구분이 있을 뿐인 것으로, 결코 사람과 가축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소나 말은 천연상 존비의 구별이 있는 다른 부류이므로 사람이 소와 말을 자기 사유로 삼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천황은 인민과 같은 인류이므로, 설령 천황의 권리라고 한들 인민을 소나 말과 같이 대하는 일은 옳다고 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72]

가토가 보기에 한학자와 국학자를 막론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성립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들이 모두 과거로부터 이어진 '天神政治'를 믿기 때문이다. 모든 개화가 완전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툭하면 국가상의 일에 天神을 끌어들여서 神勅이니 天命이니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군주가 지식이 몽매한 인민을 駕馭하기 위한 權謀로부터 나온 풍습'[73]이라고 비판한다. 가토가 보기에 한학자나 국학자들이 주장하는 국체란 바로 이 천신정치에 입각하여 나온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체는 '국가・군민의 진리를 배반하는 것'[74]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시 살펴본 바 있듯이, 가토의 초기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늘이 사랑하셔서' '만복을 내려주'신 사람이라는 '천부'의 개념은, 위에서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천신성국적인 논의와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 앞의『진정대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토의 인간관은 어디까지나 '천'이 부여해 준 성질, 즉 '천성'에 입각함으로써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불기자립의 정'에 효제, 예양과 같은 '타인의 정을 배려하는 성질'마저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이미 '인격적인 천'의 존재를 암암리에 상정하여, 그로부터 부여받은 성질이라는 종교적, 혹은 형이상학적인

---

70) 上同.
71) 上同, 384-385면.
72) 上同, 385면.
73) 上同.
74) 上同, 385면.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토는 이『국체신론』에서 국학자나 한학자류의 국가론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종교적, 형이상학적 '천'의 관념을 넘어서서 완전한 실증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잠시 가토의 또 다른 초고『진정대의 초고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국학자류 논의에 대한 비판은 앞서『진정대의』에서도 확인할 수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유형들과, 그 국가들이 성립한 연유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구상하는 국가론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초고본에서 가토는 국가의 유형을 그 성립의 근원에 따라서 天勅成國, 宗支成國, 强弱成國, 立約成國, 必要成國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천칙성국'에 대한 설로, 이에 대해 가토는 '천하의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상제가 하시는 것이나 가령 한 성인에게 명하여 인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폐단이 결국 후세가 천명을 구실로 삼아서 그 나라의 군주된 자가 이것도 천의, 저것도 천명이라고 하여 함부로 폭학한 정치를 시행하였던 것'[75]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에서 오래도록 시행되었던 것으로, 가토가 보기에는 이 '천칙성국'이야말로 '천하를 사유'하는 가장 좋지 않는 근원이었던 것이다.

> 한토 삼대성왕의 정치 등은 결코 폭학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설은 역시 제왕이 하늘을 대신하여 인민을 다스린다고 하는 설로 [그 증거로는 상서(尙書)에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다(天工人其代之)고 하였고, 혹은 요가 순을 하늘에 천거하고 순은 다시 우를 하늘에 천거하였다(堯薦舜於天舜薦禹於天)고 하였다. 맹자에 보면 만장(萬章)이 묻기를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 하거니와 그런 일이 있었나이까?(堯以天下與舜有諸)하자 맹자께서 아니다, 천자가 남에게 천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孟子曰否天子不能以天下與人) 다시 만장이 그렇다면 순임금이 천하를 가지신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然則舜有天下也孰與之)라고 묻자, 하늘이 준 것이다(曰天與之)라고 답하였다고 하는 것 등이 있는데, 모두 이에 관한 것들이다] 모두 하늘을 대신한다는 설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도 결코 국가를 사사로이 한다고 하는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군이 국가를 사사로이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모두 견강부회의 설로 조금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76]

이처럼 지배자가 '천'의 이름을 들어 정치하는 것은 비록 결코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모두 '부회설'로서, 그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보자면 가토가

75) 上同, 72면.
76) 上同, 82-83면.

‘천’의 형이상학적, 인격적 성격을 부정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다만 여기에서 가토가 비판하는 것은 ‘천’ 그 자체라기보다는 ‘천의 이름을 들어서’ 정치하는 행위일 것이다.

가토가 보기에 ‘천’은 어떤 한 개인에게 특별히 천리를 부여하거나 대신하게 하는 것(天工人其代之)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평한 존재였다. 그것이 비록 ‘인격적인 공평함’의 차원에서 사고되었을지언정, 이미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렵지 않게 ‘원리적인 공평함’으로 전화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군신존비」등의 텍스트로부터 읽혀지는데, 가령 ‘군신은 천리자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자가 위에 서서 아래의 암매함을 다스려서 비로소 천리당연의 도가 되는 것’[77]과 같은 논리는 결국 천리당연의 도가 애초부터 누군가에게 부여되어 있다기보다는, 부여된 원리로부터 사람들의 삶을 통해 ‘되는 것’이라는 관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가토에게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늘이 부여해 준 천성들이 자기의 ‘하고 싶은 바 불기자립의 정’을 가지고 부딪히고 양보하면서 사회, 국가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양새로부터 누군가는 군주로 추대되고, 그 군주는 하늘의 뜻(하늘이 부여한 사람들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며 사유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을 세상에서 펼치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 자체에 대해서 가토는 ‘어쩔 수 없는 도리(已ムヲ得ザルの道理)’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토는 자신의 논의를 서구사상의 수용 등을 통해서 심화시키고 개발시켜 가는 와중에서 유교적인 ‘천’의 형이상학으로부터 벗어났다기보다는, ‘천’의 형이상학을 보다 탈 인격적, 탈 종교적인 경향이 짙은 것으로 재구축함으로써 그것이 ‘사유’되거나 남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에 더욱 충실한 것으로 자신의 이론 속에서 ‘변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인간관과 사회관, 그리고 법칙적으로 더욱 경도된 ‘천’으로부터 가토는 기존 국학자류 국체론을 비판하는 새로운 국체론, 즉 『國體新論』의 저술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철저한 ‘천칙성국’에 입각한 ‘인민・국가의 사유화’에 대한 공격과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천’의 관념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엿보인다.

## 5. 『국체신론』에서의 천부인권 - 天의 변용와 권리개념

『국체신론』에서 ‘천’의 변용양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책의 제5장 ‘인민의 군주정부에 대한 권리・의무’안에서는 조건부이기는 하나 인민의 저항권을 주장하고

77) 加藤弘之, 「君臣尊卑」, 39면.

있는 부분이다.[78] 그는 먼저 '납세의 의무', '군역의 의무'라는 인민의 2대 의무를 든 후에, 인민의 의무로서 다시 정부에 '공순준봉'할 것을 권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저항의 의무를 주장했다. '군주정부가 만일 그 권한을 넘어서 멋대로 인민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해지면, 인민은 감히 여기에 공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기에 공순하지 않는 것을 인민의 의무로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때를 당해서는, 인민은 단지 공순하지 않을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 또한 힘써 군주정부의 악을 바로잡고, 이로써 그 명령・처분을 올바르게 돌리도록 할 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단 인민이 백방으로 초심진력하여 군주정부의 악을 바로잡고자 하여도, 군주정부가 감히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폭정을 행하며, 인민을 殘害하는 것이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도하게 되면,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군주정부에 항거하여 폭정의 큰 재해를 면하고, 이로써 천부의 인권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79] 이와 같이 가토는 폭정에 맞서 인민이 일어서서 그것을 '올바르게 돌려놓게 하'는 일이 인민의 의무, 즉 자유권을 부여해 준 천에 대한 인민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천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저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그것이 천도에 합치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까지도 함께 부가한다. '내란과 같은 것은 국가의 위해가 가장 커다란 것이므로, 인민된 자는 반드시 공명정대라는 한 가지의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군주정부의 명령・처분을 고찰하고, 그 명령・처분이 실로 잔학무도하여 천하의 공론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때가 아니면, 감히 저항의 소행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인민도 바로잡는 방술을 다하지 않고, 경솔하게 이와 같은 일을 벌인다면, 다만 국가를 어지럽히는 인민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천신의 대죄인이 될 것'[80]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토의 저항권 개념은 천부인권론 개념에서 보자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애초에 국가 위에 '천'이라는 상위존재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나의 권리에 손해가 된다면 국가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가토가 '천'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진다. 가토의 '천'개념은 이 시기에 오면 어떤 인격적인 천개념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사상에 나타나는 가토의 천개념에는 인격적 절대자 개념이나 天人相關적인 사고가 작동하고 있었다. 가령 『도나리구사』에 남북전쟁에 대한 전망에서 가토는 '사람의 힘이 왕성하여 하늘을 이긴다'던가, '하늘이 반드시 사람을 이긴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

78) 上同, 399면.
79) 上同, 401면.
80) 上同, 401-402면.

다.[81] 사실 유교에서 말하는 '천'은 여타 종교 등에서 말하는 '절대자'만큼 인격성을 분명하게 띠고 있지 않으며, 전술한 마쓰모토 논문[82]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관념이 복합적으로 뒤섞이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성격을 떼어서 명확히 규정해 보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그 복합적인 '천'의 관념 안에서 어떠한 성격이 보다 우세한가는, 천이라는 언설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로부터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토가 말하는 천은 1. 인간과 경쟁하는 인격적 천 2. 결국에는 그 이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으로서의 두 가지 관념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토의 천개념은,『진정대의초고』등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이 사람을 대신하여 시킨다'는 식의 인격적인 天勅개념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불가항력적 법칙'의 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토가 말하는 천부인권의 개념 또한, 국가의 상위개념에 있는 어떤 절대자가 부여한 '어찌할 수 없이 고유한' 권리로부터, 여전히 고유한 권리이기는 하나 '누구나가 동등하게 지닌 어찌할 수 없는 본성으로서의 권리'개념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천부인권의 신성성, 절대성, 불가침성보다는 그 공공성, 상대성, 상호보존성 등의 개념이 더 핵심적인 성격으로 떠오를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그가 말한 '어찌할 수 없는 도리(已むを得ざるの道理)'란, 결국 '절대자로서의 천'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법칙'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초기의 '천'이 지니고 있던 인격성, 절대성은 서구 정치이론 등의 섭취와 더불어,『진정대의』집필 당시의 초고들에서 드러나는 '유교적 가치의 객관화'와 함께 그 형이상학적 근거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토가 여기에서 말하는 '저항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권리'로서의 저항권이라기보다는 '법칙'으로서의 저항의 원리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세상 법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저항의 원리. 이 원리에 따라 인간은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니고, 그것을 절제할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개개인들의 천성으로부터 지배자를 '요청'함으로써 세상의 질서(군신존비와 같은)를 세웠다. 군주는 어디까지나 천성에 의해서 요청된 자이며, 이것을 지키고 이 균형상태(=안민)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천리의 수호' = '천하위공'의 달성인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균형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천리에 어긋나리만치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유함으로써 '안민'을 해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안민'을 되찾기 위해서, 즉 어디까지나 천하위공의 유지를 위해서 저항에 나설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군주가 되어 천하위공을 달성한다는 개념의 저항권으로는 절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개인은 이미 '천명을 위탁'받는다고 하는 정당성도, 명분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개념은 여전

81) 加藤弘之,『鄰草』, 326면.
82) 松本三之介, 전게논문(1979).

히 유효하지만, 그것이 지닌 절대성, 인격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그의 '의지'를 대행할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여전히 가토는 '천'의 개념에 기대고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천부적 권리'로서의 '저항권'은, 그것이 '타고나는 것'일지언정 그것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 결과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의 인민의 절제와 '불가항력'적인 저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토는 이 책에서 『도나리구사』이래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국학자류 천황제국가론에 대항하면서 이론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주장하고자 힘썼다. 유교적인 '천하위공'개념을 유지하면서, 그 원리로부터 다양한 서구의 개념들을 재단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관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저원리로서의 천개념이 서구의 입헌주의사상의 섭취와 조화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변용을 겪게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가토는 이 시기까지 '천하의 私有'라는 강적과 싸우는 와중에 그 치열함에 눈을 빼앗긴 나머지, 어쩌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현실 위의 규율적 개념으로서 천이라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원리)가 녹이 슬어 그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마저 하게 되는 것이다.

## 6. 맺으며

가토는 위의 『국체신론』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상의 진행에 따라 자신이 본래 지녔던 유교적 교양,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天'과 관련한 형이상학을 바꾸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초기의 인격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던 '天'은, 후반부로 갈수록 그 인격성은 후퇴하고 법칙성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일견 서구사상의 본격적인 수용과 그 궤를 함께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본래 내포하던 다양성이 도출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법칙적인 '天'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서, 그가 이후 진화론에 급격히 빠져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양상은 그가 애초에 본격적인 주자학자나 유학자라기보다는 교양 수준에서의 유교적 소양을 익혔고, 그것이 비록 굳건힌 신념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사고의 준거를 마련해주고 있었다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토의 자칭 '주의의 변화', 타칭 '전향'은 이러한 인격적 '天'관념의 후퇴, 또는 변용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법칙적 천'의 등장과 진화론의 수용으로 인해 촉발된 변화였던 것일까. 그것이 관계없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그러했던 것 또한 아니다. 가토는 후일 자신이 '주의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한 『人權新說』에서 '優勝劣

敗의 법칙’에 입각한 천부인권론비판과 천황중심적 국가관을 주장하지만, 정작 우승열패를 설명하면서 ‘養正한 우승열패’라는 관념을 도입해야만 했다. 완전한 법칙으로서의 우승열패(=天理)는 자칫 군주마저도 그 법칙의 소용돌이 안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임을 그 또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最大優者’인 군주(=천황)을 잘 보필하는 優者들의 존재까지 만을 용인하는 우승열패만이 ‘養正’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인격적이어야만 하는 법칙에 다시금 인격적인 선악구분을 넣어야만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토의 자칭 ‘주의의 변화’, 타칭 ‘전향’은 사실상 불완전한 채로 끝나버렸으며, 이 불완전함은 그가 이후의 사상에서도 끊임없어 안고 가야 할, 혹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버리게 된다. 이에 대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토 진화론수용의 ‘불완전성’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도리어 그 자체로 가토 사상의(혹은 메이지초기 양학수용, 나아가 동아시아 사상사를 생각할 때) 특징을 드러내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 가토 사상의 변화추이를 보자면 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으로서의 ‘天’은 끝까지 해소되지 않고 스스로 변용하면서, 혹은 타자를 변용시키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완전성’으로 인한 ‘모순’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사상 내부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서의 ‘모순’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면, 『인권신설』은 ‘잘못된 수용’으로 끝나버리는 텍스트가 아닌, 메이지 사상사에서(혹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상사에서) 그 모순의 존재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유교적 교양’이라는 대단히 넓고도 애매한 개념을 설정한다는 한계를 갖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보다 자유롭게 변용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도 어쩌면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개념인 ‘천’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확장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토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양학수용과 ‘천의 변용’간의 상관관계는, 이후 여타 일본 지식인의 양학수용문제는 물론, 중국이나 한국 지식인들의 서구수용양상을 비교하는 데 있어 ‘누가 더 서구사상을 잘/못 이해했다’는 관점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수용의 주체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재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論語》
《孟子》
《禮記》
ブロック(Block)著, 加藤弘藏述『西洋各國盛衰强弱一覽表附図』, 谷山僂, 慶応丁卯孟秋(1867)
石田雄『日本近代思想における法と政治』, 岩波書店(1967)
石田雄『明治政治思想史研究』, 未來社(1954)
上田勝美ほか編『加藤弘之文書』 第1卷, 同朋舍(1990)
加藤弘之, 『日本の名著 34 西周・加藤弘之』, 中央公論社(1972)
川原次吉郎「眞政大意の研究」『明治文化研究』 第三輯, 書物展望社(1934)
齋藤希史『漢文脈の近代』, 名古屋大學出版會(2005)
田畑忍『加藤弘之』, 吉川弘文館(1986)
田畑忍『加藤弘之の國家思想』, 河出書房(1939)
中村春作『江戶儒教と近代の知』ぺりかん社(2002)
松本三之介『天皇制國家の政治思想』, 未來社(1969)
吉田曠二『加藤弘之の研究』, 大原新生社(1976)
石井研堂「增補改訂明治事物起源」明治文化研究會編, 『明治文化全集 別卷-明治事物起源』, 日本評論社(1944)
植手通有, 「佐久間象山における儒學・武士精神・洋學-橫井小楠との比較において」『渡邊華山・高野長英・佐久間象山・橫井小楠・橋本左內』 (『日本思想大系』 55), 岩波書店(1971)
中村春作「근대일본의 學知와 유교의 재편」『史林』 제32호(2009)
松浦玲, 「文明の衝突と儒者の立場 : 日本における儒教型理想主義の終焉」(3)『思想』 592(1973)
松本三之介「天賦人權論と天の觀念--思想史的整理のための一つの試み」家永三郎教授東京教育大學退官記念論集刊行委員會編『近代日本の國家と思想』, 三省堂(1979)
미야지마 히로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유교인식」『한국실학연구』 제23권(2012)
安世舟, 「明治初期におけるドイツ國家思想の受容に關する一考察-ブルンチュリと加藤弘之を中心として—」『年報政治學・日本における西歐政治思想』, 岩波書店(1975)

#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와 집단적 자위권

## — 안보조약과 신안보조약을 중심으로 —

유 지 아(국민대)

목 차

1. 머리말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기 일본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3. 미일안보조약과 집단적 자위권문제
4. 신안보조약과 집단적 자위권 문제
5. 맺음말

## 1. 머리말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미국・영국 등 48개국(연합국) 사이에 대일강화조약을 맺고, 이듬해 4월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독립국가로 복귀하였다. 이후 1990년대까지 "전후(戰後) 일본"의 구조적 특징은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5년 체제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1] 이 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전 후 일본이 근린 국가와 달리 평화를 향유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꿔 말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미일안보협력관계를 기초로 전면적인 재무장을 억제하고 경무장과 경제부흥을 정책 목표로 하는 통상국가노선[2]이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와 더불어 기본 방침으로 계승되어 왔다.

대일강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 2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몇몇 나라와

---

1) 五百旗頭眞『戰爭・占領・講和』中央公論社, 2001, p. 396-398.

2) 소에야 요시히데(添谷 芳秀) 교수는 미일동맹 관계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노선에 관한 국내 입장을 크게 통상국가노선(요시다노선), 자주노선, 독립노선으로 나누고, 자주노선은 미일동맹 위에 미일의 대등한 관계 형성과 헌법 개정을 통한 재군비와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노선으로, 독립노선은 미일동맹과 재무장을 반대하고 비무장 중립을 주장하는 노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봉근 "일본 안정보장론의 이해"『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을유문화사, 2003, p. 118에서 인용.

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戰死者)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추가되었다. 본래 교전 당사국 간의 평화관계 회복을 위한 전쟁배상, 영토문제 해결 등 제반 조건을 정리하는 전후처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대일강화조약은 일본의 외교, 안보를 포함한 체제적 차원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계기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원인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일점령정책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일강화조약교섭 당시,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국제정세가 주는 압박감 속에서 일본은 '조기강화'를, 미국은 '미군의 일본주둔'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는 양국에게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졌으나, 일미양국의 의견이 엇갈리는 접점은 일본의 재군비였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일본은 재군비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며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헌법을 개헌하지는 않았지만 미일안보 차원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시켜왔으며, '해석개헌'이라는 논리 하에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군력보유와 교전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애매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헌법개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헌법 제9조 개정의 내용은 첫째 자위대의 헌법적 인정과 둘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 전자는 자위전쟁을 가능케 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 즉 통상국가의 충실화이며, 후자는 보통국가와 권력국가로서의 지향이다. 여기에서 동아시아 관계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평화주의자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은 군사력을 미국처럼 행사하는 나라, 즉 군사적 패권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일본이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의 힘에 걸맞은 방위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초 보통국가론[3]을 기점으로 현재 일본 내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과 미일동맹의 재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일동맹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본의 방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일본 방위정책의 강도와 범위는 예상지 못한 사건과 위협들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안보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의 논문이 있다.[4] 이 논문에서는 안보정책의 실질적인 정책변

---

3) 小澤一郎 『日本改造計畫』 講談社, 1993. 보통국가론은 오자와이치로가 만든 용어로 이른바 자립한 안전보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오자와주의의 근간으로 3가지 자립, 즉 자립한 국가 · 자립한 국민 · 자립한 사회 중 하나로 오자와는 1993년 '정치개혁'(소선거구제도입)소동을 일으키며 미디어나 평론가, 오자와 관료를 총동원하여 극장형 정치를 연출하면서 개혁파 대 수구파의 대립구도를 통하여 정치개혁파의 절대적 다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본을 '전쟁체제 만들기'와 '시장원리주의'에 의해 무장시키고자 했다.

4) 박철희「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미일동맹 및 위협인식의 변화와 일본 방위정책의 정치」『국제

화의 시기와 내용은 국내정치의 다양한 역학관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같은 미일관계 관점에서 전후 일본의 방위 정책을 논한 다른 논문은 냉전상태에서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한 1976년 체제라고 불리는 전수방위로 규정지었으나, 냉전이 끝난 후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미국은 일본의 방위전략을 재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도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5)]

본고에서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논의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미일안전보장을 중심을 한 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그 구상을 1951년의 안보조약과 1960년 신안보조약 개정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해나갔다는 관점에서,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은 외부의 위협을 계기로 한 안보체제 강화라는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후 일본이 국제정세와 미일관계의 변화에 의해 안보체제를 변용해왔다는 입장보다는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안보체제를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안보조약과 신안보조약에 나타난 일본의 안보체제에 대한 인식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안보체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기 일본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강화조약은 준비과정부터 일본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이 대일강화조약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미국은 대일강화 7원칙의 전문을 공표하여, 국내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통합참모본부는 군사적 견지에서 한국정세가 해결되기 전에 일본을 독립시키면 일본을 한국전쟁에서 작전의 주요한 기지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즉 일본에 실질적으로 보다 빠른 시기에 일본자신의 안전보장과 자위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국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일강화조약은 이러한 조치가 끝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시기부터 이미 미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달레스는 통합참모본부의 걱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더 이상 평화조약의 교섭이 연기되면 일본을 불안하게 하여 반대로 위험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아도 일미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치슨 국무장관과 마샬 국방장관

---

정치논총』 제44집 1호, 2004.

5) 이용주 「군사동맹 변혁과 일본 방위정책의 재구조화: 자위대의 역할을 중심으로」『군사논단』 제49호, 한국군사학회, 2007.; 김준섭 「일본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한 연구-일본정부의 논리를 중심으로-」『일본학보』 제76집, 한국일본학회, 2008.;

은 1951년 1월 9일 달레스를 일본에 보내 대일평화조약문제에 대해 맥아더와 협의를 통해 일본정부를 평화조약 조문작성과정에 참가시키도록 트루먼에게 요청하였다.[6]

이에 달레스 특사는 1월 22일 워싱턴을 출발하여 29일에는 미츠이 본관에서 요시다와 회담을 가졌다. 달레스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일본측에 "일본은 독립회복만을 이야기한다. 독립을 회복하여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이상 일본은 자유세계의 강화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자 하는가. 지금 미국은 세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어야 할 일본은 이 싸움에서 어떠한 공헌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요시다는 어떠한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재군비의 뜻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만 현재 일본은 먼저 독립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일본과 미국간의 이러한 견해차이는 1990년대에 들어서 첨예하게 재현되게 되면,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하에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시키게 된다.

요시다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장애는 급격한 재군비는 현재 지하에 숨어있는 군국주의자를 불러내게 되어 일본을 다시 군부의 지배에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옛날처럼 군부가 정부를 차지할 수 없도록 입법을 강화하고 군부재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장애는 경제문제를 들고 있다. 일본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데, 이제 겨우 일본의 재정이 자립할 수 있을 때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어 아마 생활수준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군비를 경제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건전한 기초를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있다.[7] 회담의 내용을 볼 때,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일본이 무조건 재군비를 반대하기보다는 시기상조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회담 후 요시다는 달레스와 동행하여 맥아더를 방문하게 되는데 회담의 내용을 대략 전하자, 맥아더는 자유세계가 오늘날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군사력이어서는 안된다고 확실히 언급하여 요시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요시다와 달레스의 2차 회담은 1월 31일에 이루어졌다. 일본측은 회담전날 미국의 강화조약 7원칙에 대한 요시다의 의견이라는 각서를 미국에 보냈다. 각서의 내용 중 안전보장은 다음과 같다.

---

6) Foreign Relations of the U.S., 1950, Vol. Ⅵ p.1363~1364.

7) 外務省資料 B'4003 對日平和條約關係 第一次ダレス來日關係

Ⅱ 안전보장

안전보장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일국의 안전보장은 그 나라 자신이 지켜야 한다. 불행하게도 패전한 일본은 스스로의 방위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

(2) 일본은 스스로 국내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러나 대외적인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국연(국제연합) 그리고 특히 미국의 군대 주둔이라는 적절한 수단에 의한 협력을 바란다.

(3)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은 결정은 평화조약과는 별도로 일미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양국간에 상호안전보장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8)]

이 각서에 대해서 미국은 대등한 파트너란 일미 양국이 각각 자기 나라의 군대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일본의 재군비를 역설하였으나, 일본은 앞에서 서술한 재군비의 장애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한편 2월부터는 사무당국 간의 회담도 이루어졌는데 논의의 중심은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그리고 미국정부내의 국무, 국방 양성의 대립을 야기시키는 문제인 강화 후 일본지역의 안전보장문제였다. 사무당국 간의 첫째 날 논의에서 일본은 협정의 명문에 미국에 의한 일본 방위의 보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은 이러한 보증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에 국방성과 같은 중앙기관의 설치 약속을 요구하였다. 다음날 두 번째 회합에서 미국은 “일미양국의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초안을 일본에 건넸다. 이 초안에는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과 함께, 제8장에 다음과 같은 “집단방위조치”를 넣었다.

(1) 일본정부에 의한 병력의 수립은 어떠한 것이더라도 일본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호할 목적이어야 하며, 또한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확인하고 있는 국연헌장 제51조를 포함한 국연헌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본지역에서 적대행위가 일어나거나 적대행위의 위험이 있으면 미국정부가 결정한 때에 경찰예비대 및 다른 일본의 무력병력은 모두 일본정부와 협의한 후 미국정부가 지명하는 최고사령관의 통일된 지휘하게 놓이게 된다.[9)]

이에 대해 일본은 “집단방위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주둔군의 지위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정부는 평화조약, 일미안보협정 발표와 함께 일본은 재군비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조치를 간단하게 정리한 “재군비계획을 위한 초기의 조치”라는 제목의 각서를 미국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5만명 정도의 육・해 치안부대가 치안성을 설치하여 후에 민주적 군대

8) 外務省資料 B'4003 對日平和條約關係 第一次ダレス來日關係

9) 外務省資料 B'4004 對日平和條約關係 ダレス來日から第2次交涉までの過程

를 발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그리고 구체적인 일본의 재군비 계획은 아니더라도 일본은 대일평화조약과 안보협정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각서를 달레스가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평화조약 안에 직접 미군의 일본주둔을 언급하지 않고 2개국 간의 협정으로 한다는 것과 통일지휘 문제 등은 행정협정으로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5일 세 번째 회의에서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언급한 "잠정각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다음날 네 번째 회의에서 일미안보협정의 미국초안을 일본에 보냈다. 이로써 대일강화조약과 안보조약에 대한 일미 양국의 교섭은 일단락되었다. "잠정각서"의 안전보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래의 국연가맹국으로서 일본은 국연헌장 제2조의 의무를 사전에 수락한다. 다른 당사국은 일본에 관해서는 상호 같은 원칙에 의해 진행될 것을 약속한다. 연합국은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연합헌장에서 말하는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이 스스로 연합국의 한 나라 또는 복수가 참가하는 집단안전보장의 약정에 들어갈 것을 합의한다. 이러한 약정은 외부로부터 무장공격에 대한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 약정에 따라 연합국이 제공하는 병력은 일본의 내정에 개입할 어떠한 책임 또는 권한도 갖지 않는다. 일본은 국연의 행동 및 권고 또는 상기의 집단안전보장의 약정에 따를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군사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10]

이 각서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군비나 미군의 주둔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보장은 대일평화조약안에 들어가는 조항이다. 이후 달레스가 4월 16일에 제2차 일미교섭을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맥아더의 후임인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요시다와 3자회담을 가졌다. 23일까지 진행된 제2차 교섭에서는 당시까지 정해진 원칙에서 큰 수정은 없었으나, "이러한 약정은 외부로부터 무장공격에 대한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 조치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일본의 안전보장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한 미국에 일본은 곧바로 동의했다. 실제로 미국이 제안하여 고친 내용은 일본과 미국의 대등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오키나와가 공격당했을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요청을 한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동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크게 숙려하지 않았다.[11] 즉 일본은 군사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제9조에서 금지한

---

10) 外務省資料　B'4004 對日平和條約關係　ダレス來日から第2次交涉までの過程

11) 豊下楢彦 『安保條約の成立—吉田外交と天皇外交』, p. 93~95.

군력보유와 교전권의 가능성을 이미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의 조기강화와 미국의 군대주둔이라는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교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이러한 자위권에 대한 부분도 보류하는 모습을 모임으로써 이후 일본의 안보문제를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다.

## 3. 미일안보조약과 집단적 자위권문제

점령이 시작된 후 이른 시기에 일본 외문성은 강화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의 첫째는 강화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에 가해진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여 가능한 완전에 가까운 자주독립 국가로서 국제생활에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국민이 생존 가능한 경제적 환경의 확보, 셋째는 안전보장의 확보이다.[12] 안전보장의 확보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이 가맹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안전보장에 일본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본이 국제연합에 가맹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당시 간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이 독립 후에 바로 국제연합에 가맹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국제연합이 구 적국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나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연합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은 1947년 6월에 “국제연합체제에 참가하는 것은 일본처럼 특수한 지위에 놓인 국가로서는 차라리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입장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단, 국제연합 체제에 참가하는 문제는 국제연합이 가맹국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분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9조에 명기한 전쟁방기 항목과 상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외무성은 국제연합에 가맹하여 평화헌법의 이념을 국제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솔선하여 전쟁을 방기한 일본의 사명이라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 문서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의견(安全保障問題に關する意見)[14]’에서 “일본은 신헌법의 이념으로부터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국제연합의 기구에 참가하며, 가령 무력은 가지지 않지만 다른 수단에 의해 그 의무를 다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령초기부터 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제연합의 안전보장 유지기능에 의존하면서 적극

12) 外務省資料 B’0008-1 平和條約締結に關する(１) 問題の所在と(２)日本の立場
13) 條約局條約課 「國際連合による安全保障の限界」 東京大學法學部図書館所藏, 1946年11月
14) 外務省資料 B’0008-2 安全保障問題に關する意見 1947年6月12日文書 『對日平和條約關係、準備研究關係(第二卷)』

적으로 국제연합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연합에 가맹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제연합헌장 제52장에 근거하여 '지역적 보장기관'의 창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 1.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15]

국제연합헌장 제52장은 결정되지 않은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을 포함한 서부 태평양 제국에서 지역기구를 구축하여 협위, 파괴 또는 침략행위를 방기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16] 이 단계에서 지역기구의 구축에 소련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미소관계가 긴장일로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 주도의 점령통치하에 있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미일관계를 축으로 한 지역안전보장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안보조약에 대해서는 1951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제3차 일미교섭에서 그 모습이 확실해진다. 이 교섭에는 아치슨 공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참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 8월 25일 "안전보장조약최종안"이 결정된다. 그 내용은 보면, "미국 합중국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현재 약간의 자위국 군대를 일본국내 및 그 부근에 유지할 의사가 있다. 단 미합중국은 일본국이 공격적인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군비를 갖는 것을 항상 견제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략에 대한 시급한 방위를 위해 점증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17] 이 협정안은 1952년 안전보장협정의 근간이 되는데, 그 전문은 다

---

15) 국제연합헌장, 제8장 지역적 약정 제52조
16) 앞의 문서, 安全保障問題に關する意見
17) 外務省資料 B'4007 安全保障協定交涉關係書類

음과 같다.

> 일본국은 오늘 연합국과의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일본국은 무장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조약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할 유효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
>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아직 세계에서 축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기술한 상태에 있는 일본국에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본국은 평화조약이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에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동하는 미합중국과의 안전보장조약을 희망한다.
>
> 평화조약은 일본국이 주권국으로서 집단적 안전보장약정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승인하고, 국제연합헌장은 모든 국가가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승인하고 있다.
>
> 이들 권리의 행사로서 일본국은 방위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일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국내 및 그 부근에 미합중국이 군대를 유지할 것을 희망한다.
>
> 미합중국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현재 약간의 자국군대를 일본국내 및 그 부근에 유지할 의사가 있다. 단, 미합중국은 일본국이 공격적인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일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군비를 보유하는 것을 피하면서 직접 및 간접의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위를 위해 점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한다.

이 안보조약에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안보를 위한 고유의 권리는 미합중국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자국의 방위를 위한 재군비의 측면에서도 모호한 표현으로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목적은 일본의 자위권에 대한 승인보다는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미군의 무제한 그리고 무기한 일본주둔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안전보장 전문과 함께 강화조약항목을 살펴보면, 강화조약 제5조 c항에서는 “연합국은 일본이 주권국으로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권리를 보유하는 것 및 일본국이 집단적 안전보장을 자발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보다는 미국이 일본에 대일강화조약을 조기에 맺음으로써 이루려했던 독립국으로서의 타국가와의 안보조약을 위한 항목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호주 등 영연방국가들도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불안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사에 의해 일본은 군비제한 조항이 없는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18]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이 조인되자 코린즈 참모총장은 13일에 경찰예비대의 전투능력을 신속하게 증강하도록 주장하였으며, 통합참모본부에 경찰예비대에게 중장비를 공여하는 건에 대한 국무성 승인을 권고하였다. 통합참모본부는 코린즈의 권고를 승인하

18) 후지와라 아키라『일본군사사』하권, 사회비평사, 1987년, (한국어판, 2013년 제이앤씨), p.45.

였으나 국무성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 이유는 점령시기에 결정된 일본의 비군사화 정책을 파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찰예비대의 중장비화는 일본의 재군비를 염려하는 태평양 국가들이 강화조약을 비준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9] 그리고 점령군 사령관인 리지웨이도 경찰예비대에 중장비를 공여하는 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난색을 표하였다. 리지웨이는 재군비가 정치문제의 이슈가 되어 있는 일본에 중장비를 공여하는 것은 요시다를 더욱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요시다에게 재군비를 실시할 국내환경을 정비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장기계획으로 경찰예비대를 증강하여 통상의 군대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다.[20]

이에 강화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1월 GHQ는 경찰예비대의 병력증강을 요구하였다. 극동군 참모장 힉키(Doyle. O. Hickey) 중장은 요시다 수상의 군사고문인 다츠미 에이이치 중장에게 32만 5천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먼저 11만 명에서 시작하여 이듬해에 13만 명으로 늘릴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52년 1월 5일 리지웨이 최고사령관과 요시다 수상의 회담에서 일본의 점진적 방위력 증강과 독립 후의 경찰예비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요시다 수상은 보안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안대와 경비대를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육해군을 통합하는 미국방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보안청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것은 강화조약 논의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안보조항에서 미국방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국가기관의 설치라는 항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보안청법에 의해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개편되었고 이 두 부대에 대한 관리는 보안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1952년 10월 15일에는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개편되었다. 보안대는 11만 명의 인원으로 1개 방면대, 4개 관구대로 편성되었다. 한편, 52년 8월 1일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개칭되어 해상보안청 관할에서 보안청 관할로 이관되었다.

결국 경찰예비대에 중장비를 공여한다는 논의는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인해 일본재군비가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유사시에 미일양국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협정의 실시협정인 행정협정에서 '집단방위조치'로 다음과 같이 포함시켰다.

---

19) 楠綾子 『吉田茂と安全保障政策の形成』 國際政治・日本外交叢書, ミネルヴァ書店, 2009, pp.252-254.

20) CINCFE to DA, C 51649, Septenber 26, 1951; CINCFE to DA, C 51750, September 28, 1951, ccs 383.21, Japan (3-13-45), Sec. 26, GF 51-53, RG218

1. 일본 구역 내에서 적대행위, 또는 그 위험이 생겼을 때 일본국 지역 내에 있는 미주둔군, 경찰예비대 및 군사적 능력을 가진 다른 모든 일본의 조직은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미국정부에 의해 지명된 최고사령관의 통합적 지휘 하에 놓인다.

2. 최고사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본국 지역 내의 구역, 설비・시설의 사용 및 군대의 전략적, 전술적 배치와 정비를 행할 권리를 갖는다.

3. 전략적, 전술적 배치와 정비를 위하여 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모순되지 않는 한 지역주민의 복지, 건강, 및 경제적 필요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21]

행정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점령이 끝난 후에도 일본 내에 긴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은 미군에게 모든 작전권과 통합지휘권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은 일본의 군사능력을 가진 조직을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군에게 군 설비・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다. 이는 점령상태와 마찬가지로 주권의 제한을 명기한 내용이며, '군사 능력을 가진 조직'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군력'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과 미국은 안전보장조약에서 애매한 표현과 합의로 넘긴 일본의 재군비 문제를 실시협정인 행정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53년이 되자 미국의 상호방위원조협정(MSA) 원조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은 당면한 재군비 규모와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일본 정부가 먼저 결정해서 미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고 나서 원조를 받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3년 10월 일본 자유당 정조회장이었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국무차관보 로버트슨과 회담을 하였다. 미국 측은 일본의 강력한 재군비를 요구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해 가급적 군사력을 축소시키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의 MSA 원조를 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22] 미국은 일본에 대해 3년간 육상 10개 사단 32만 5,000명 요구했으나, 일본은 18만 명 안을 제시하였다. 평화헌법, 국민정서 그리고 재정사정을 이유로 급속한 증강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 결과 10월 30일에 '자위력의 점진적인 증강'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마침내 1954년 3월에 MSA협정이 체결되었고, 미국이 대소련 전략을 위해 서방 제국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원조국은 군사력을 강화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서 일본은 미국에게 본격적인 재군비를 약속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54년 6월 9일에 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이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더불어 보안청이 방위청으로 개편되고 외국과의 전쟁을 상정하는 군사조직인 자위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

21) "Administrativ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to Implement Privisions of the Agreement They Have Entered into for Collective Defense", February 9, 1951, 外務省編 『日本外交文書ー平和條約の締結に關する調書 Ⅳ』 2002, p.243-248.

22) 宮澤喜一,『東京ーワシントンの密談』(中公文庫, 1956) 참조.

## 4. 신안보조약과 집단적 자위권 문제

일본 내에서는 1952년 일본이 독립하자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등 전전의 정치가들이 정치로 복귀하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을 제정하여 재군비가 다시 논의되었다. 특히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전후 개혁과 민주적 법체계와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개헌주장의 배경에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조국의 재건과 안정된 보수통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개헌을 통한 자위대의 보유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고 생각하였다.[23] 다시 말해 개헌파들은 개헌과 재군비가 일본의 자립과 재건을 위한 민족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안보조약 개정 문제가 등장하자, 1952년 결당한 개신당은 안보조약 '상호방위조약을 바꾸는 집단안전 보장체제에 참가' 할 것을 주장하였고, 1954년에 결성한 일본민주당도 그리고 1956년의 자유민주당도 '안보개정'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 추진자 중 한 명이 기시 노부스케였다. 기시 노부스케의 신안보조약에 대한 의도는 다음과 같다.

> 전후 일본의 일반국민이 국방이라든가 방위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현상이 아닌가. 안보개정에 착수하면 각 방면의 논의가 상당히 끓어오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방문제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서 독립국가로서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방위와 안전보장이 어쨌든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이 안보조약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근본이었습니다.(중략)
>
> 나는 그런 의미에서 착수한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자신의 정치생명과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진정으로 걸어서 이 조약만큼은 반드시 성립시키려고 생각했다. 나는 내용에서 개정안보는 구 안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일본을 위해서 또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신념에서다, 따라서 결국에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압적으로라도 이것을 성립시키자고 생각했다. 성립되면 더 이상 자신의 사명은 끝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24]

기시 노부스케는 1952년 안보조약 체결이후 개헌과 재군비 논의를 안보조약 개정문제로 이슈화시켜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사회당은 기시 노부스케와 같이 안보조약의 불평등성을 비판하고는 있었지만 개정이 구체화되었던 1959년까지는 확실히 반대의

---

23) 渡辺治 『政治改革と憲法改正: 仲曾根康弘から小澤一郎へ』 青木書店, 1994, p.218.

24) 中央公論 52年7月号. 岸信介, 矢次一夫, 伊藤隆 『岸信介の回想』 文芸春秋, 1981. p.229-230. 인용

태도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같은 해 4월 15일에 '안보조약개정 저지국민의회 제1차 통일행동'이 행해졌으나 운동가들에게 안보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다. 냉전 하에서 개정에 의해 조약으로서는 대등화가 진전되었다고는 해도 반면 '미국 진영과 연합하여 전쟁에 연루되는 것은 아니가' 하는 불안고라 '중립주의'의 현실성에 대한 의혹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시내각은 '안보개정'을 사회당 등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평온하게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59년 3월에 '안보개정 저지 국민의회'가 결성되어, 1960년 1월 미일교섭타결로 반대운동이 급속하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조약반대라는 반전적인 운동이 주축이 되었으나, 기시내각이 5월에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경관대를 도입하여 질의 종결・타결 강행, 그리고 본회의에서 토론 없는 단독가결을 진행하자 민주주의 옹호 운동의 색채가 강해졌다. 결국, 안보조약은 참의원에서 실질심사 없이 6월 19일 자연성립(헌법 제61조)[25]하여 23일 비준・발표되었다. 그러나 기시 내각은 혼란의 책임을 지고 7월에 총사직하였다.

일본국민의 신안보조약을 격렬하게 반대한 이유의 첫째는 신안보조약도 미국이 극동전략상 일본을 기지로 이용한다는 기본적 성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6조). 둘째는 일본과 미국은 일본 자체뿐만 아니라 극동에 출동하는 재일미군기지가 공격을 당할 경우, 함께 전쟁을 이행한다는 것이 의무화 된 조항 때문이다(제5조).[26] 자위대가 미국의 군사전략 안에 포함되어 일본이 알지 못하는 미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논의과정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조약과는 별도의 교환공문으로 미군 배치의 중요한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군 배치의 변경의 문제보다는 자위대의 일본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파병 문제, 즉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더욱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1960년 신안보조약 심의과정에서 법제국장관이었던 하야시 쥬조(林修三)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 소위 타국에 가서 타국을 방위하는 것은 UN 헌장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으로서 위법성을 물리치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헌법에서는 거기까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UN 헌장에서는 인정되어 있어도 일본의 헌법에서는 인

25) 第四章 國會
第六十一條 條約の締結に必要な國會の承認については、前條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六十條 予算は、さきに衆議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項 予算について、參議院で衆議院と異なつた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參議院が、衆議院の可決した予算を受け取つ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三十日以內に、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

26) 日本國とアメリカ合衆國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條約, 1960年1月19日.

> 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지의 제공 혹은 경제원조라는 두 가지 사안은 일본의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이것을 사람들이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부를지라도 그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27)

기시 노부스케는 국회답변에서 해외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잠재울 수 있는 말이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주일미군기지가 일본의 영토 내에 존재하므로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문제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경우에 한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되었으며, 기시는 당시에 자위대의 해외활동 그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무임승차론'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한 동맹구조라고 비판받아왔다.28) 그러나 현재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기본입장과 논리의 시발점이고 하다. 1972년 사회당의 미즈구치 히로유키(水口宏之)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이 논리를 기초로 작성된 최초의 일본정부의 공식문서이다. 결국, 신안보조약은 1960년에 개정하였으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일본국 및 미합중국은 양국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모든 원칙, 개인의 자유 및 법의 지배를 옹호할 것을 희망하며, 또한 양국간의 한층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며, 나아가 각 국가의 경제적 안적 및 복지의 조건을 조장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 및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바람을 재확인하며,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이 정한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양국이 극동에서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공통의 관심을 기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한다.29)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미국군대의 주둔이라는 전제조항 없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정된 안보조약 제3조에 "체약국은 개별적 및 상호 협력하여 계통적이고 효과적인 자주 및 상호원조에 의해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 이는 일본국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군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과 헌법의 해석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안보조약에서 자위권과 자위대와 관련한

---

27) 衆議院憲法調査局事務局 『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議事錄』 21号, 1960, p.28.
28) 室山義正 『日米安保体制上下』 有斐閣, 1992, p.209-262.
29) 日本國とアメリカ合衆國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條約, 1960年1月19日.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안보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자위대는 신안보조약 이후 변신과 전환을 거쳐 2007년 1월 9일 방위성・자위대가 발족했다. 2006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성립한 개정방위 2개법인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이 승인되어 바로 정령으로 시행된 것이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이행하면서 관련 70법의 부분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법률에는 모두 방위성이라는 명칭이 쓰이게 되었다. 방위성 발족 식전행사에서 아베수상은 간부직원과 자위관에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족하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고 5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국방이라는 국가주권과 불가분의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방위성을 발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는 현재의 총리대신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훈시하여 방위성은 기존의 방위청에 소속된 자위대와 국방을 담당한다는 면에서 위상이 다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는 이제까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피'[30]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후체제는 보편불이(普遍不易)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21세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아베가 강조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는 자민당의 방위정책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베의 궁극적 목표가 헌법개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래 자위대는 국토방위 임무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일미동맹의 의무이행'과 함께 '주변사태에 대한 대처', 및 해외에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활동'도 기본 임무에 포함시켜 극히 평범한 군대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헌법 제9조의 '전쟁을 방기한다'는 항목과 현실정치 사이에서 점차 자위대가 실질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기정사실화 해나갔음을 의미하며, 엄연한 위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2007년에 아베가 실각을 하면서 헌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에 대한 헌법해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즉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서 언급한 고유의 자위권 그리고 헌법 제9조와의 해석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서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가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맹국이 취한 조치는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헌법 제9조 "제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

30) 安部晋三 『美しい國へ』 文春親書, 2006에서 사용하고 있음.

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방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배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즉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개별적 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말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써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해석[31]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의 제약으로 인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즉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법상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취해왔다.[32] 이러한 기존 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보통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 일미안보협의위원회에서 채택한 ‘더 강고한 동맹과 더 많이 공유하는 책임’ 공동성명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 등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신형X밴드레이더와 글로벌호크 같은 고가의 무기 구매를 일본에 떠넘겼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집단적 자위권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북한이 한반도 미군 증파를 막으려고 주일 미군기지에 노동 미사일을 쏠 경우 현재로서 일본 자위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그런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2008년 제1차 아베 내각 때 작성한 “야나이 보고서"[33]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나리오는 공해상에서 미국 군함이 공격받았을 대 자위대가 반격하는 경우,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와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정권에서 야나이가 주축이 된 안보법제간담회가 이보다 더 나아간 역할을 상정할 경우 미국이 계속 지지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즉 전후 대일강화조약과 일미안보조약에서 규정한 미국의 일방적인 집단적 자위권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일본으

---

31) 2003년 7월 15일. 일본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의 일본 정부의 답변서(平成十五年七月十五日受領答弁第一一九号, 内閣衆質一五六第一一九号　平成十五年七月十五日)

32) 1981년 5월 29일 일본중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답변서(昭和五十六年五月二十九日受領 答弁第三二号　(質問の　三二)　内閣衆質九四第三二号　昭和五十六年五月二十九日)

33) 제1차 아베내각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일본국헌법의 관계 정리 및 연구를 위해 수상의 사적자문기관 설치된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關する懇談會’의 회의 내용을 2008년 6월 좌장인 柳井俊二의 이름으로 작성된 보고서.

로서는 만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 미국과의 공조 무력행사에 제약이 거의 줄어들게 되어 잘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분쟁에 일본이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도 쉽지 않다. 결국 일본이 개헌을 하는 것과 상응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강한 일본국민정서에 집단적 자위권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앞으로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전후 대일강화조약과 안보조약 내에서의 일본안보문제와 자위대 문제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안보조약 당시, 일본은 군사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제9조에서 금지한 군력보유와 교전권의 가능성을 이미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의 조기강화와 미국의 군대주둔이라는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교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이러한 자위권에 대한 부분도 보류하는 모습을 모임으로써 이후 일본의 안보문제를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재군비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이관되게 된다.

안보조약 체결 후 일본의 경찰예비대에 증강 논의는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인해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판단 하에 보류되었다. 그러나 유사시에 미일양국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협정의 실시협정인 행정협정에서 ‘집단방위조치’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점령이 끝난 후에도 일본 내에 긴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은 미군에게 모든 작전권과 통합지휘권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은 일본의 군사 능력을 가진 조직을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군사 능력을 가진 조직’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군력’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과 미국은 안전보장조약에서 애매한 표현과 합의로 넘긴 일본의 재군비 문제를 실시협정인 행정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안보조약에서는 전문에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미국군대의 주둔이라는 전제조항 없이 서술하고 있으며,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제3조와 일본국내가 아닌 지역에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항목인 제5조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개헌과 헌법해석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